

대한민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

서문

대한민국(“한국”) 정부와 필리핀공화국(“필리핀”) 정부 (이하 공동으로 “양 당사국”이라 하고, 개별적으로 “당사국”이라 한다)는,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양국의 돈독한 우호관계와 양국 간의 긴밀한 경제 관계를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자유무역지대가 양국의 영역에서 상품 및 서비스를 위한 확장되고 안전한 시장과 투자를 위한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창출하여, 세계시장에서 양국 기업의 경쟁력을 증진할 것임을 확신하며,

경제협력 확대 및 심화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성장을 증진하고 새로운 고용기회를 창출하기를 희망하며,

양 당사국 간의 상이한 경제발전 수준을 인식하고,

창의성과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호혜적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양국 경제의 역동적인 분야에서 그리고 그 분야들 간에 더 강한 유대관계를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양국의 무역 및 투자를 규율하는 명확하고 상호 이익이 되는 규칙을 제정하고 양국 간 그러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장벽을 축소하거나 철폐할 것을 추구하고,

기업들이 효과적으로 계획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측가능하고, 투명하며, 일관된 사업환경을 증진할 것을 희망하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을 통하여 무역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과 확장에 기여할 것을 결의하고,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다자, 지역 및 양자 협정상의 그들 각자의 권리 및 의무에 기초하며, 그리고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그 기본협정에 따른 그 밖의 관련 협정상의 약속에 기초하고자 하는 양국의 희망을 재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제1장 일반규정

제1.1조 자유무역지대의 창설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 및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의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한다.

제1.2조 목적

이 협정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의 실질적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
- 나. GATS 제5조에 합치되게 양 당사국 간 서비스 무역의 실질적 자유화를 달성하는 것
- 다. 투자 기회를 상호 증대하는 것
- 라. 양 당사국 경제에서의 경쟁, 특히 양 당사국 간의 경제관계에 관련된 경쟁을 증진하는 것
- 마. 소상공인·중소기업을 특별히 고려하면서, 양 당사국에 실질적 혜택을 가져오는 것
- 바. 혁신 및 연구개발 분야에서 적절한 협력 이니셔티브를 개발하는 것, 그리고

사. 이 협정에서 양 당사국이 합의한 분야에서 더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틀을 수립하는 것

제1.3조

다른 협정과의 관계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 및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상의 그들의 권리 및 의무를 재확인한다.
2.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협정과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다른 협정 간 불일치가 있는 경우,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즉시 서로 협의한다.

제1.4조

의무의 범위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규정을 조건으로, 자국의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에 의한, 그리고 중앙, 지역 및 지방 정부나 당국이 위임한 정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기관에 의한 이 협정상의 모든 의무 및 약속의 준수를 보장한다.

제1.5조

일반 정의

이 협정의 목적상,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농업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반덤핑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 제6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관세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법률에 따라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
는 당국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나 관세청 또는 그 각각의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필리핀의 경우, 관세청 또는 그 승계기관

관세란 모든 관세 또는 수입세, 그리고 모든 형태의 추가세 또는 추가금을 포함하여 상
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부과금을 말하나, 다음의 어떠한 것도 포함
하지 않는다.

가. 동종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또는 대체 가능한 당사국의 상품에 대하여,
또는 그 상품으로부터 수입 상품의 전체나 부분이 제조되거나 생산된 상
품에 대하여, 1994년도 GATT 제3조제2항에 합치되게 부과되는 내국세
에 상당하는 부과금

나.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되게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부과되는 관세

다. 제공된 서비스의 비용에 상응하는 것으로서 수입과 관련된 수수료 또는
그 밖의 부과금

라. 수입수량 제한 또는 관세율 할당의 운영에 관한 모든 입찰제도로부터 발
생하는 것으로서 수입품에 제공되거나 징수되는 할증금, 또는

마. 농업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모든 농업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라 부
과되는 관세

관세평가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

반협정 제7조의 이행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일이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하여 달력상의 일을 말한다.

기존의란 이 협정의 발효일에 유효한 것을 말한다.

GATS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나의 「서비스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1994년도 GATT란 주해 및 보충규정을 포함하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일부인 「1994년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말한다.

상품이란 모든 제품, 생산품, 물품 또는 재료를 말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란 당시 발효 중이며 수시로 개정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 및 그에 포함된 모든 법적 주석에 정의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따른 표기방법을 말한다.

공동위원회란 제11.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공동위원회를 말한다.

법인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 인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모든 법적 실체를 말한다.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이란 「대한민국과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부 간의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기본협정」과 그 기본협정 제1.4조제1항에 규정된 그 밖의 관련 협정을 말한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조치의 형태이거나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란 다음을 말한다.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그리고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와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
정부 기관이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조치

국민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개정되는 바에 따른 「국적법」 상 의미에서 한국의 국민,
그리고

나. 필리핀의 경우, 개정되는 바에 따른 필리핀 헌법상 정의된 필리핀의 국민

원산지 상품이란 제4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원산지 자격을 갖춘 생상품 또는 재료를 말
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반
영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긴급수입제한조치
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보조금 및 상계
조치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영역이란 다음을 말한다.

가. 한국의 경우, 한국 주권하의 육지, 해양 및 상공, 그리고 한국이 국제법과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해

의 외측한계에 인접하고 그 한계 밖에 있는 해저 및 하층토를 포함한 해양지역, 그리고

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헌법 제1조에 정의된 국가 영역. “국가 영역”이라는 용어는 또한 필리핀이 자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국제법에 따라 주권적 권리 또는 관할권을 행사하는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을 포함한다.

무역원활화협정이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정」을 말한다.

세계무역기구란 세계무역기구를 말한다. 그리고

세계무역기구협정이란 1994년 4월 15일에 채택된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을 말한다.

제2장 상품 무역

제2.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영사거래란 상업 송장, 원산지 증명서, 적하목록, 선적자 수출신고서나 수입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요구되는 그 밖의 모든 통관서류를 위한 영사 송장 또는 영사 비자를 취득할 목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될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수출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입 당사국 영사의 감독을 위하여 먼저 제출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말한다. 그리고

수입허가란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하기 위한 사전조건으로서 신청서 또는 그 밖의 서류(통관목적을 위하여 요구되는 것 외의 것을 말한다)를 관련 행정기관에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행정적 절차를 말한다.

제2.2조 목적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24조에 합치되게, 이 협정에 따른 상품 무역을 자유화한다.

제2.3조 적용범위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에 적용된다.

제2.4조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부속서 2-가에 반영된 자국의 관세 양허표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자국의 관세를 인하하거나 철폐한다.
2. 세계무역기구협정에 따라, 원산지 상품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이 그 당사국의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특혜 관세율보다 낮은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은 수입 시 그러한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수입 시 적용 가능한 더 낮은 최혜국 실행 관세율을 요구하지 않은 경우 그 수입자가 상품에 대하여 지불한 관세 초과분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3.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기존의 관세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관세를 채택하지 않는다.

제2.5조

관세 양허의 가속화

1. 당사국은 언제라도 자국의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 양허를 일방적으로 개선하거나 가속화할 수 있다. 그러한 당사국은 새로운 특혜 관세율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 실행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다른 쪽 당사국에 알린다.
2.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양 당사국은 양국의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가속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협의할 것이다. 상품에 대한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를 가속화하기로 한 양 당사국의 합의는 부속서 2-가에 반영된 양국의

관세 양허표에 따라 결정된 관세율 또는 단계별 양허유형을 대체한다.

3. 제1항에서 언급된 관세 양허의 일방적 개선 또는 가속화 후, 당사국은 해당 연도에 대하여 자국의 관세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를 초과하지 않는 수준으로 자국의 특혜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 그러한 당사국은 새로운 특혜 관세율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을 그러한 날 전, 실행 가능한 한 이른 시기에 다른 쪽 당사국에 알린다.

제2.6조

상품 분류

양 당사국 간 무역에서의 상품 분류는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합치한다.

제2.7조

농업 수출 보조금

양 당사국은 농산물에 대하여 예정된 수출 보조금 권리의 철폐를 포함하여, 2015년 나이로비에서 채택된 「수출 경쟁에 관한 각료회의 결정」에서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제2.8조

통과 중인 상품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5조제3항 및 무역원활화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또는 다른 쪽 당사국으로 통과 중인 상품의 통관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한다.

제2.9조

상품의 일시 반입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대로, 다음의 경우 상품이 수입관세 및 조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불을 조건부로 면제받고 자국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는 것을 허용한다.

가. 그러한 상품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자국의 관세 영역으로 반입되는 경우

나. 그러한 상품이 명시된 기간 내에 재수출될 의도를 가진 경우, 그리고

다. 그러한 상품의 사용으로 인한 통상적인 감가상각 및 손실을 제외한 어떠한 변화도 거치지 않은 경우

2. 각 당사국은, 관계인의 요청이 있고 자국의 관세 당국이 타당하다고 여기는 사유가 있는 경우, 처음에 정해진 기간을 초과하여 제1항에 규정된 무관세 일시 반입의 기한을 연장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제1항에 규정된 상품의 무관세 일시 반입에 대하여 다음을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는다.

가. 그 상품이 다른 쪽 당사국의 국민이나 거주자에 의해서만 또는 그 개인적인 감독하에서만 그 인의 영업활동, 거래, 직업 또는 스포츠를 수행하는 데 사용될 것

나. 그 상품이 자국 영역에 있는 동안 판매되거나 임대되지 않을 것

다. 그 상품이 다른 경우라면 반입 또는 최종 수입 시에 부담하게 될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을 넘지 않는 액수로서 그 상품의 수출 시에 반환될 수 있는 담보 또는 보증을 수반할 것

라. 그 상품이 수입 및 수출될 때 식별이 가능할 것

마. 그 상품이 가호에 언급된 인의 출국 시 또는 그 당사국이 설정할 수 있는 일시 반입의 목적에 관련된 그 밖의 기간 내에 수출될 것. 다만, 연장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그 상품이 의도된 사용을 위한 합리적인 수량을 넘지 않게 반입될 것, 그리고

사. 그 상품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당사국 영역에 달리 반입 가능할 것

4.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부과하는 어떠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으로 부담하게 될 관세 및 그 밖의 부과금에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그 밖의 부과금 또는 벌금을 더하여 적용할 수 있다.

5. 각 당사국은 이 조에 따라 일시 반입되었던 상품이 반입되었던 통관 항구 외의 다른 통관 항구를 통하여 재수출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2.10조

관세 평가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의 관세가격을 결정하는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 제1부가 적용되며,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2.11조

수량제한 및 비관세 조치

1.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당사국도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관련 규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

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쿼터, 수입이나 수출 허가 또는 그 밖의 조치를 통하여 시행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관세, 조세 또는 그 밖의 부과금 외의 어떠한 금지 또는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11조가 적용되며 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이와 관련하여, 당사국은 자국의 세계무역기구상의 권리 및 의무나 이 협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 또는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을 목적지로 하는 상품의 수출에 대하여 어떠한 비관세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3. 각 당사국은 제2항에 따라 허용된 자국의 비관세조치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어떠한 그러한 조치도 양 당사국 간의 무역에 불필요한 장애를 초래하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그러한 효과를 가지도록 준비, 채택 또는 적용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제2.12조

수입허가

1. 수입허가에 관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에 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수입허가절차에 관한 협정」이 적용되며 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2. 이 협정의 발효일 후 30일 내에, 각 당사국은 기존의 자국 수입허가절차가 있을 경우, 그 기존의 수입허가절차¹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그 통보는

가. 수입허가협정 제5조에 명시된 정보를 포함한다. 그리고

나. 그 수입허가절차가 이 협정에 합치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하다.

¹ 이 항에 언급된 기존의 수입허가절차는 이 협정의 발효일에 아직 세계무역기구에 통보되지 않은 절차이다.

3. 모든 새로운 또는 변경된 수입허가절차를 적용하기 전에, 당사국은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그 새로운 절차 또는 변경사항이 발효하기 최소 20일 전에 정부 공식 웹사이트에 공표한다.

제2.13조

수수료 및 형식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8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나 수출에 대하여 또는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수수료 및 부과금(수입 또는 수출 관세 외의 것, 그리고 1994년도 GATT 제3조 범위 내의 세금과 제3장(무역구제)에 합치하는 조치의 결과로 징수된 추가 관세 외의 것을 말한다)이 제공된 서비스의 대략적 비용으로 금액이 한정되도록, 그리고 이것이 국내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보호나 재정적 목적을 위한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수입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자국이 부과하는 수수료 및 부과금의 세부사항을 신속하게 공표하고 그러한 정보를 인터넷에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다른 쪽 당사국 상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관련 수수료 및 부과금을 포함한 영사거래를 요구하지 않는다.

제2.14조

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상품에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1994년도 GATT 제3조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를 구성한다.

제2.15조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1. 제2.4조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은 어느 연도에 원산지 농산물의 총 수입 물량이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규정된 발동 수준을 초과하는 경우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합치하게, 부속서 2-나의 자국 양허표에 기재된 그 농산물에 대하여 더 높은 수입관세의 형태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그 조치가 부과된 특정 연도의 연말까지만 적용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관세는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다.

가. 현행 최혜국 실행관세율

나.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유효한 최혜국 실행관세율, 또는

다. 부속서2-나의 적용 당사국의 양허표에 규정된 관세율

3.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이 적용하는 관세는 부속서 2-나의 당사국의 양허표에서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관세율에 따라 정해진다.

4.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면서 동시에 다음을 적용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

가. 제3장(무역구제)에 따른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조치, 또는

다.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따른 조치

5. 당사국은 모든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투명한 방식으로 이행한다. 조치를 부과

한 후 60일 내에, 그 조치를 적용하는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고 그 조치에 관한 적절한 자료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면 요청에 따라, 당사국은 그 서면 요청의 접수로부터 45일 내에 그 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6. 이 조의 이행 및 운영은 제2.20조에 따른 상품무역위원회에서 논의 및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7. 부속서 2-나의 당사국 양허표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규정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된 경우, 어떠한 당사국도 원산지 농산물에 대하여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제2.16조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1.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의 적용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양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2. 어떠한 당사국도 이 조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제9장(분쟁해결)을 이용하지 않는다.

제2.17조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 1가의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따른 서로에 대한 양국의 기존의 권리 및 의무를 확인한다.

제2.18조

양허의 수정

예외적인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관세 양허를 이행하는 데 예측하지 못한 어려움에 직면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합의에 따라 자국의 관세 양허표에 포함된 양허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그러한 합의에 도달하기 위하여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의 협상에 참여한다. 그러한 협상에서, 양허를 수정 또는 철회할 것을 제안하는 당사국은 그러한 협상 전에 이 협정에 규정된 것보다 다른 쪽 당사국에 더 불리하지 않은 호혜적이고 상호 이익이 되는 양허의 수준을 유지한다. 그러한 협상은 그 밖의 상품에 관한 보상 조정을 포함할 수 있다. 보상 조정을 포함하는 상호 합의된 협상 결과는 제12.2조(개정)에 따라 이 협정에 통합된다.

제2.19조

접촉선

양 당사국은 소통 및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 장에 대한 세부 연락처 정보를 교환한다.

제2.20조

상품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정부 대표들로 구성되는 상품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상품무역위원회는 부속서 2-가를 포함하여,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할 수 있다.
3. 상품무역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각국의 특혜를 활용하는 것을 포함하여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을 점검하고, 적절한 경우 협의를 진행하는 것

-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수정에 따른 관세 철폐 또는 인하 양허표의 전환을 포함하여, 기술적 수정을 준비하는 것
 - 다.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하여 검토하고 공동위원회에 적절한 권고를 하는 것
 - 라. 양 당사국 간 상품 무역과 관련된 사안, 특히 수량제한 및 비관세조치와 관련된 사안을 다루고, 적절한 경우 공동위원회에서의 검토를 위하여 그러한 사안을 공동위원회로 회부하는 것, 그리고
 - 마. 공동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거나 양 당사국 간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4. 제3항에 따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상, 상품무역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정보 교환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협력을 강화한다.
5. 상품무역위원회는 최소 연 1회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회합한다. 회의는 직접 대면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기술 수단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6. 상품무역위원회는 회의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부속서 2-가
관세 인하 또는 철폐

1.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은 제2.4조제1항에 따른 각 당사국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적용된다.

가.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Cat 0” 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완전히 철폐되며, 이 협정의 발효일에 그러한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나. 당사국 양허표에 다음의 단계별 양허유형으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그리고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이 협정의 발효일을 시작으로 기준관세율로부터 철폐된다.

- 1)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Cat 3” 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행 3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2)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Cat 5” 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행 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3)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Cat 7” 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행 7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4)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Cat 10” 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행 10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그리고
- 5)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Cat 15” 인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이행 15년차 1월 1일부터 그 상품에 대하여 무관세가 적용된다.

- 다.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SL”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에 대한 관세는 각 당사국의 관세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기준관세율에서 최종관세율로 인하된다.
2. 당사국 양허표에 단계별 양허유형 “EX” 로 규정된 원산지 상품은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의 모든 약속으로부터 배제된다.
3. 이 부속서의 당사국 양허표에 규정된 기준관세율은 2018년 1월 1일에 유효한 각 당사국의 최혜국 실행 관세율과 2016년 1월 1일에 유효한 한국-동남아시아국가연합 자유무역협정상의 자국의 특혜 관세율 중 더 낮은 것을 반영한다.
4. 상품에 대한 각 관세 감축 단계에서의 과도적 관세율은 각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다.
5. 이 부속서 및 당사국 양허표의 목적상, 이행 1년차란 제12.5조(발효)에서 규정된 대로 이 협정이 발효되는 연도를 말한다.
6. 이 부속서의 목적상 그리고 각 당사국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이행 2년차를 시작으로 매년 단계별 관세 인하는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7. 양 당사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전환이 이 부속서에 따른 관세 양허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장한다.
8. 한국의 경우, 관세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한국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이하 “HSK” 라 한다)식으로 표현되며,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HSK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따라 규율된다. 양허표의 규정이 이에 상응하는 HSK의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HSK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9. 필리핀의 경우, 관세 양허표의 규정은 일반적으로 필리핀의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통합관세품목분류표(이하 “AHTN” 이라 한다)식으로 표현되며, 양허표의 규정에 대한 해석은 AHTN의 일반 주해, 부 주해 및 류 주해에 따라 규율된다. 양허표의 규정이 이

에 상응하는 AHTN의 규정과 일치하는 한도에서, 양허표의 규정은 이에 상응하는 AHTN의 규정과 같은 의미를 가진다.

부속서 2-나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

한국 양허표

1. 이 부속서는 제2.15조에 따른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 원산지 상품, 그러한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발동수준, 그리고 그러한 각 상품에 대하여 각 연도에 적용될 수 있는 최대 관세율을 규정한다.

2.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어떠한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도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아래에 규정된 긴급수입제한조치 관세율이 0이 된 날 후에는 그러한 상품에 적용되거나 유지될 수 없다.

아래에 포함된 바나나에 대하여,

적용범위: HSK 세번 0803900000

이행년도	1	2	3	4	5	6
발동수준 (메트릭톤)	322,687	325,687	328,687	331,687	334,687	337,687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30	30	30	30	30	27

이행년도	7	8	9	10	11
발동수준 (메트릭톤)	340,687	343,687	346,687	349,687	해당없음
긴급수입 제한조치 관세율(%)	24	21	18	15	0

한국 관세 양허표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101211000	농가 사육용	Cat 0	0	
0101219000	기타	Cat 0	0	
0101291000	결주말	Cat 0	0	
0101299000	기타	Cat 0	0	
0101301000	번식용	Cat 0	0	
0101309000	기타	Cat 0	0	
0101900000	기타	Cat 0	0	
0102211000	젖소	Cat 0	0	
0102212000	육우(肉牛)	Cat 0	0	
0102219000	기타	Cat 0	0	
0102291000	젖소	Cat 0	0	
0102292000	육우(肉牛)	EX	32	
0102299000	기타	Cat 0	0	
0102310000	번식용	Cat 0	0	
0102391000	젖소	Cat 0	0	
0102392000	육우(肉牛)	EX	32	
0102399000	기타	Cat 0	0	
0102901000	번식용	Cat 0	0	
0102909010	젖소	Cat 0	0	
0102909020	육우(肉牛)	EX	32	
0102909090	기타	Cat 0	0	
0103100000	번식용	Cat 0	0	
010391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Cat 0	0	
0103920000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Cat 0	0	
0104101000	번식용	Cat 0	0	
0104109000	기타	Cat 0	0	
0104201000	젖산양	Cat 0	0	
0104209000	기타	Cat 0	0	
0105111000	번식용	Cat 0	0	
0105119000	기타	Cat 0	0	
0105120000	칠면조	Cat 0	0	
0105131000	번식용	Cat 0	0	
0105139000	기타	Cat 0	0	
0105140000	거위	Cat 0	0	
0105150000	기니아새	Cat 0	0	
0105941000	번식용	Cat 0	0	
0105949000	기타	Cat 0	0	
0105991010	번식용	Cat 0	0	
0105991090	기타	Cat 0	0	
0105992000	칠면조	Cat 0	0	
0105999000	기타	Cat 0	0	
0106110000	염장류	Cat 0	0	
010612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Cat 0	0	
0106122000	물개, 바다사자와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Cat 0	0	
010613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데(Camelidae)과]	Cat 0	0	
0106141000	번식용	Cat 0	0	
0106149000	기타	Cat 0	0	
0106191000	개	Cat 0	0	
0106193000	사슴	Cat 0	0	
0106194000	곰	Cat 0	0	
0106195010	번식용	Cat 0	0	
0106195090	기타	Cat 0	0	
0106196010	번식용	Cat 0	0	
0106196090	기타	Cat 0	0	
0106199000	기타	Cat 0	0	
0106201000	뱀	Cat 0	0	
0106202000	자라	EX	5	
0106203000	거북	Cat 0	0	
0106209000	기타	Cat 0	0	
0106310000	맹금류	Cat 0	0	
0106320000	앵무류[파렛류(parrots) · 패러키트류(parakeets) · 금강앵무류 ·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Cat 0	0	
0106330000	타조와 에뮤(emu)[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디아(Dromaius novaehollandiae)]	Cat 0	0	
0106390000	기타	Cat 0	0	
0106411000	꿀벌	Cat 0	0	
0106419000	기타	Cat 0	0	
0106490000	기타	Cat 0	0	
0106901000	양서류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106903010	갯지렁이	Cat 0	0	
0106903020	실지렁이	Cat 0	0	
0106903090	기타	Cat 0	0	
0106909000	기타	Cat 0	0	
0201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EX	32	
0201201000	갈비	EX	32	
0201209000	기타	EX	32	
0201300000	뼈 없는 것	EX	32	
020210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EX	32	
0202201000	갈비	EX	40	
0202209000	기타	EX	40	
0202300000	뼈 없는 것	EX	40	
02031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EX	18	
02031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	18	
0203191000	삼겹살	EX	22.5	
0203199000	기타	EX	22.5	
0203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EX	20	
0203220000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	20	
0203291000	삼겹살	EX	25	
0203299000	기타	EX	25	
0204100000	어린 연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2042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Cat 0	0	
02042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Cat 0	0	
0204230000	뼈 없는 것	Cat 0	0	
0204300000	어린 연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204410000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Cat 0	0	
0204420000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Cat 0	0	
0204430000	뼈 없는 것	Cat 0	0	
02045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0	0	
0204502000	냉동한 것	Cat 0	0	
0205001000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0	0	
0205002000	냉동한 것	Cat 0	0	
0206100000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5	
0206210000	혀	EX	5	
0206220000	간	EX	5	
0206291000	꼬리	EX	14.4	
0206292000	족	EX	14.4	
0206299000	기타	EX	14.4	
0206300000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14.4	
0206410000	간	EX	14.4	
0206491000	족	EX	14.4	
0206499000	기타	EX	14.4	
0206800000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4.4	
0206900000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4.4	
0207111000	총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EX	14.4	
0207119000	기타	EX	14.4	
0207121000	총량이 550그램 이하인 것	EX	16	
0207129000	기타	EX	16	
0207131010	다리	EX	18	
0207131020	가슴	EX	18	
0207131030	날개	EX	18	
0207131090	기타	EX	18	
0207132010	간	EX	18	
0207132090	기타	EX	27	
0207141010	다리	EX	20	
0207141020	가슴	EX	20	
0207141030	날개	EX	20	
0207141090	기타	EX	20	
0207142010	간	EX	5	
0207142090	기타	EX	5	
020724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20725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207261000	절단육	Cat 0	0	
0207262010	간	Cat 0	0	
0207262090	기타	Cat 0	0	
0207271000	절단육	Cat 0	0	
0207272010	간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207272090	기타	Cat 0	0	
02074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14.4	
02074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14.4	
02074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207441000	절단육	EX	14.4	
0207442010	간	Cat 0	0	
0207442090	기타	Cat 0	0	
0207451000	절단육	EX	18	
0207452010	간	Cat 0	0	
0207452090	기타	Cat 0	0	
0207510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SL	14.4	
0207520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SL	14.4	
0207530000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207541000	절단육	SL	14.4	
0207542010	간	Cat 0	0	
0207542090	기타	Cat 0	0	
0207551000	절단육	EX	18	
0207552010	간	Cat 0	0	
0207552090	기타	Cat 0	0	
0207601000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SL	14.4	
0207602000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SL	14.4	
0207603100	절단육	SL	14.4	
0207603210	간	Cat 0	0	
0207603290	기타	Cat 0	0	
0207604100	절단육	EX	18	
0207604210	간	Cat 0	0	
0207604290	기타	Cat 0	0	
0208100000	토끼의 것	Cat 0	0	
0208300000	영장류의 것	Cat 0	0	
020840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Cat 0	0	
0208402000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Cat 0	0	
020850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Cat 0	0	
0208600000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Cat 0	0	
0208901000	사슴의 것	Cat 0	0	
0208909010	해양동물의 것	Cat 0	0	
0208909090	기타	Cat 0	0	
0209100000	돼지의 것	Cat 0	0	
0209900000	기타	Cat 0	0	
0210110000	냉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	20	
0210120000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EX	24	
0210190000	기타	EX	20	
0210201000	건조하거나 훈제한 것	EX	5	
0210209000	기타	Cat 0	0	
0210910000	영장류의 것	Cat 0	0	
0210921000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Cat 0	0	
0210922000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Cat 0	0	
0210930000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Cat 0	0	
0210991010	소의 것	Cat 0	0	
0210991020	돼지의 것	EX	5	
0210991030	가금(家禽)류의 것	Cat 0	0	
0210991090	기타	Cat 0	0	
0210999010	면양과 산양의 것	Cat 0	0	
0210999020	가금(家禽)류의 것	Cat 0	0	
0210999090	기타	Cat 0	0	
0301111000	비단잉어	Cat 0	0	
0301119000	기타	EX	5/8	
0301190000	기타	EX	5/8	
0301911000	참모노두라(Saimo trutta) · 옹코링쿠스 마이키스(Oncorhynchus mykiss) · 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Cat 0	0	
0301912000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301921000	실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0301922000	새끼뱀장어(한 마리당 0.3그램 초과 50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양식용으로 한정한다)	EX	5	
0301929010	실뱀장어(양식용은 제외한다)	Cat 15	5	
0301929090	기타	EX	20	
0301930000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랩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Cat 0	0	
030194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SL	10	
030194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SL	10	
030195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SL	10	
0301992000	망어	EX	5	
0301994010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Cat 10	0	
0301994090	기타	EX	28% 또는 2,052원/kg, 양자 중 고액(율)	
0301995000	붕장어	SL	5	
0301996000	갯장어	SL	5	
0301997000	먹장어	EX	5	
0301998000	납치류	EX	10	
0301999010	능성어	SL	10	
0301999020	복어	SL	10	
0301999030	틸라피아	Cat 15	10	
0301999040	불락(적어를 포함한다)	SL	10	
0301999051	치어(稚魚)(양식용으로 한정한다)	Cat 10	0	
0301999059	기타	EX	28	
0301999060	송어	SL	10	
0301999070	미꾸라지	Cat 0	0	
0301999080	메기	Cat 0	0	
0301999091	노래미[헥사그라모스(Hexagrammos)종 · 아그라무스(Agrammus)종]	SL	10	
0301999092	붕어	Cat 0	0	
0301999093	연어	Cat 0	0	
0301999094	초어	Cat 0	0	
0301999095	민어	EX	10	
0301999096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랩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은 제외한다]	Cat 0	0	
0301999099	기타	Cat 15	10	
0302111000	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옹코링쿠스 마이키스(Oncorhynchus mykiss) · 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옹코링쿠스 길레(Oncorhynchus gilchristi)	Cat 0	0	
0302112000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와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30213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벨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Cat 0	0	
030214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Cat 0	0	
0302190000	기타	Cat 0	0	
0302210000	넙치[레인하르트티우스 히포글로소이드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SL	16	
03022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SL	5	
03022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Cat 0	0	
0302240000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SL	5	
0302290000	기타	SL	5	
0302310000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SL	5	
03023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Cat 15	5	
0302330000	가다랑어·줄무늬 버니토	Cat 0	0	
03023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SL	16	
03023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Cat 0	0	
03023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SL	5	
03023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Cat 0	0	
0302390000	기타	Cat 15	5	
03024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Cat 0	0	
0302420000	멸치[엔그라울라스(Engraulis)종]	SL	20	
0302430000	송아나[사르디나 피찰두스(Sardinia pilchardus)·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렛(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Cat 0	0	
03024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Cat 0	0	
0302450000	전갱이[트라커루스(Trachurus)종]	Cat 0	0	
03024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SL	20	
03024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우스(Xiphias gladius)]	SL	20	
0302491000	상치[스콤버로모루스(Scomberomorus)종]	SL	20	
0302492000	병어[팜푸스(Pampus)종]	SL	20	
0302493000	공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Cat 0	0	
0302499000	기타	EX	20	
0302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EX	5	
03025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Cat 0	0	
0302530000	경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Cat 0	0	
03025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티피키스(Urophycis)종]	SL	20	
03025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302560000	블루 화이트잉스(blue whit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SL	20	
0302590000	기타	SL	0/20	
03027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SL	20	
03027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루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루스(Ictalurus)종]	SL	20	
0302730000	잉어[사이프린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EX	20	
0302740000	뱀장어[앙굴라(Anguilla)종]	Cat 0	0	
0302790000	기타	SL	20	
0302810000	곰상어와 그 밖의 상어	Cat 0	0	
0302820000	가오리과 홍어[라지대(Rajidae)과]	EX	20	
0302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SL	20	
0302840000	놀어[디센트라쿠스(Dicentrarchus)종]	SL	20	
0302850000	돔[스파리대(Sparidae)과]	EX	20	
0302891000	방어	SL	5	
0302892000	갈치	EX	20	
0302893000	불장어	Cat 0	0	
0302894000	갯장어	Cat 0	0	
0302895000	학꽂치(Hyporhamphus sajori)	Cat 0	0	
0302896000	돔[스파리대(Sparidae)과는 제외한다]	SL	20	
0302899020	복어	EX	20	
0302899040	아귀	SL	20	
0302899090	기타	EX	20	
0302911000	간	Cat 0	0	
0302912000	어란(魚卵) · 어백(魚白)	Cat 0	0	
0302920000	상어 지느러미	Cat 0	0	
0302990000	기타	EX	0/5/16/20	
0303110000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옹코링쿠스 벨카(Oncorhynchus nerka)]	Cat 0	0	
0303120000	그 밖의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Cat 0	0	
0303130000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Cat 0	0	
030314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Cat 0	0	
0303190000	기타	Cat 0	0	
030323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EX	10	
030324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루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루스(Ictalurus)종]	EX	1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303250000	잉어[사이프린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EX	10	
0303260000	뱀장어[앙굴라(Anguilla)종]	Cat 0	0	
0303290000	기타	SL	10	
0303310000	납치[레인하르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SL	5	
0303320000	가자미[플루로넥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SL	5	
0303330000	서대[솔레아(Solea)종]	Cat 0	0	
0303340000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SL	5	
0303390000	기타	EX	5	
0303410000	날개다랑어나 간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Cat 0	0	
0303420000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EX	5	
0303430000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	EX	5	
0303440000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SL	5	
0303451000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Cat 0	0	
0303452000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Cat 15	5	
0303460000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Cat 0	0	
0303490000	기타	SL	5	
03035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SL	5	
0303530000	상어[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i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EX	5	
0303540000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EX	8	
0303550000	전갱이[트라커루스(Trachurus)종]	EX	10	
0303560000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돔(Rachycentron canadum)]	SL	10	
030357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EX	10	
0303591000	삼치[스콤버로모루스(Scomberomorus)종]	SL	10	
0303592000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EX	10(콜로라비스 사이라)/26(콜로라비스 사이라)(머리부터 꼬리까지 총길이가 22cm를 초과하는 것)	
0303599000	기타	EX	10	
030363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EX	5	
030364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Cat 0	0	
030365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30366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유르피키스(Urophycis)종]	Cat 0	0	
0303670000	명태[테라그라 칼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EX	22	
0303680000	블루 화이트잉스(blue whit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SL	10	
0303691000	새꼬리민태	Cat 0	0	
0303699000	기타	SL	22	
0303810000	굴상어와 그 밖의 상어	EX	5	
0303821000	가오리	EX	5	
0303822000	홍어	EX	10	
030383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Cat 0	0	
0303840000	농어[디센트라쿠스(Dicentrarchus)종]	Cat 0	0	
0303891000	은대구	Cat 0	0	
0303892000	갈치	EX	10	
0303893010	옥돔[브랜치오스테거스 자포니커스(Branchiostegus Japonicus)]	EX	5	
0303893090	기타	EX	10	
0303894000	불장어	Cat 0	0	
0303895000	조기	EX	10	
0303896000	학꽂지(Hyporhamphus sajori)	EX	10	
0303898000	북어	EX	5	
0303899010	보리멸	Cat 0	0	
0303899020	홍살치	Cat 0	0	
0303899030	날고기	Cat 0	0	
0303899040	임연수어	Cat 0	0	
0303899050	불낙(적어를 포함한다)	EX	5	
0303899060	아귀	SL	10	
0303899070	먹장어(대서양 또는 태평양)	SL	5	
0303899080	말크피쉬	Cat 0	0	
0303899091	민어	EX	10	
0303899092	까나리	Cat 0	0	
0303899093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	Cat 0	0	
0303899099	기타	EX	10	
0303911000	간	Cat 0	0	
0303912010	멸란	Cat 0	0	
0303912090	기타	Cat 0	0	
0303920000	상어 지느러미	EX	5	
0303990000	기타	EX	0/5/8/10	
0304310000	탈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Cat 0	0	
0304320000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루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as)종·익타루라스(Ictalurus)종]	Cat 0	0	
03043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Cat 0	0	
0304390000	기타	Cat 0	0	
03044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벨카(Oncorhynchus nerka)·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oscha)·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Cat 0	0	
030442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Cat 0	0	
0304431000	가자미	Cat 0	0	
030443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304440000	브레그마세노리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o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연어	Cat 0	0	
030445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Cat 0	0	
030446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Cat 0	0	
0304470000	곰상어와 그 밖의 상어	Cat 0	0	
0304481000	가오리	Cat 0	0	
0304482000	홍어	Cat 0	0	
0304491000	붕장어	Cat 0	0	
0304492000	참다랑어	Cat 0	0	
0304499000	기타	Cat 0	0	
0304511000	연육	Cat 0	0	
0304519000	기타	Cat 0	0	
0304521000	연육	Cat 0	0	
0304529000	기타	Cat 0	0	
0304531000	연육	Cat 0	0	
0304539000	기타	Cat 0	0	
0304541000	연육	Cat 0	0	
0304549000	기타	Cat 0	0	
0304551000	연육	Cat 0	0	
0304559000	기타	Cat 0	0	
0304561000	연육	Cat 0	0	
0304569000	기타	Cat 0	0	
0304571010	연육	Cat 0	0	
0304571090	기타	Cat 0	0	
0304572010	연육	Cat 0	0	
0304572090	기타	Cat 0	0	
0304591010	연육	Cat 0	0	
0304591090	기타	Cat 0	0	
0304592010	연육	Cat 0	0	
0304592090	기타	Cat 0	0	
0304593010	연육	Cat 0	0	
0304593090	기타	Cat 0	0	
0304599010	연육	Cat 0	0	
0304599090	기타	Cat 0	0	
030461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Cat 0	0	
0304620000	메기[판가사우스(Pangasius)종 · 실루루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루스(Ictalurus)종]	Cat 0	0	
0304630000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Cat 0	0	
0304690000	기타	Cat 0	0	
03047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Cat 0	0	
0304720000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Cat 0	0	
0304730000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Cat 0	0	
0304740000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 · 유르피키스(Urophycis)종]	Cat 0	0	
0304750000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Cat 0	0	
0304790000	기타	Cat 0	0	
03048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oscha) · 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더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304820000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Cat 0	0	
0304831000	가자미	Cat 0	0	
0304839000	기타	Cat 0	0	
0304840000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Cat 0	0	
0304850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Cat 0	0	
030486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Cat 0	0	
0304871000	참다랑어	Cat 0	0	
0304879000	기타	Cat 0	0	
0304881000	곱상어, 그 밖의 상어	Cat 0	0	
0304882000	가오리	Cat 0	0	
0304883000	롤어	Cat 0	0	
0304891000	물장어의 것	Cat 0	0	
0304892000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은 제외한다]의 것	Cat 0	0	
0304893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은 제외한다]의 것	Cat 0	0	
0304894000	취치의 것	Cat 0	0	
0304899000	기타	Cat 0	0	
0304911000	냉동 연육	Cat 0	0	
0304919000	기타	Cat 0	0	
0304921000	냉동 연육	Cat 0	0	
0304929000	기타	Cat 0	0	
0304931000	냉동 연육	Cat 0	0	
0304939000	기타	Cat 0	0	
0304941000	냉동 연육	Cat 0	0	
0304949000	기타	Cat 0	0	
0304951000	냉동 연육	Cat 0	0	
0304959000	기타	Cat 0	0	
0304961000	냉동 연육	Cat 0	0	
0304969000	기타	Cat 0	0	
0304971010	냉동 연육	Cat 0	0	
0304971090	기타	Cat 0	0	
0304972010	냉동 연육	Cat 0	0	
0304972090	기타	Cat 0	0	
0304991000	냉동 연육	Cat 0	0	
0304999000	기타	Cat 0	0	
0305100000	어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305201000	간	Cat 0	0	
0305202000	건조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SL	5	
0305203000	훈제한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Cat 0	0	
0305204010	명태의 것	Cat 0	0	
0305204020	조기의 것	Cat 0	0	
0305204030	청어의 것	Cat 0	0	
0305204090	기타	Cat 0	0	
0305311000	건조한 것	Cat 0	0	
030531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5321000	건조한 것	Cat 0	0	
030532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5391000	건조한 것	Cat 0	0	
030539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5410000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Cat 0	0	
030542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305430000	송어[살모 트루타(<i>Salmo trutta</i>) · 옹코링쿠스 미키스(<i>Oncorhynchus mykiss</i>) · 옹코링쿠스 클라키(<i>Oncorhynchus clarki</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i>Oncorhynchus aguabonita</i>) · 옹코링쿠스 길래(<i>Oncorhynchus gilae</i>) · 옹코링쿠스 아파케(<i>Oncorhynchus apache</i>) ·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i>Oncorhynchus chrysogaster</i>)]	Cat 0	0	
0305440000	탈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종],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종 · 실루라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i>Clarias</i>)종 · 익타루러스(<i>Ictalurus</i>)종], 잉어[사이프린스(<i>Cyprinus</i>)종 · 카라시우스(<i>Carassius</i>)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종 · 시리누스(<i>Cirrhinus</i>)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랩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종], 뱀장어[앙굴라(<i>Anguilla</i>)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종]	Cat 0	0	
0305491000	멸치	Cat 0	0	
0305492000	명태	Cat 0	0	
0305499000	기타	Cat 0	0	
030551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Cat 0	0	
0305520000	탈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i>Oreochromis</i>)종],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종 · 실루라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i>Clarias</i>)종 · 익타루러스(<i>Ictalurus</i>)종], 잉어[사이프린스(<i>Cyprinus</i>)종 · 카라시우스(<i>Carassius</i>)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종 · 시리누스(<i>Cirrhinus</i>)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i>Osteochilus hasselti</i>) · 랩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종], 뱀장어[앙굴라(<i>Anguilla</i>)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종]	Cat 0	0	
030553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데(<i>Bregmacerotidae</i>)과 · 유클리티데(<i>Euclichthyidae</i>)과 · 가디데(<i>Gadidae</i>)과 · 마크로우리데(<i>Macrouridae</i>)과 · 멜라노니데(<i>Melanonidae</i>)과 · 메르루치데(<i>Merlucciidae</i>)과 · 모리데(<i>Moridae</i>)과 · 무라에놀레피디데(<i>Muraenolepididae</i>)과의	Cat 0	0	
0305541000	멸치[엔그라울리스(<i>Engraulis</i>)종]	EX	16	
0305549000	기타	Cat 0	0	
0305593000	명태(북어)	Cat 0	0	
0305594000	조기(굴비)	Cat 0	0	
0305595000	북어	Cat 0	0	
0305596000	갯장어	Cat 0	0	
0305597000	까나리	Cat 0	0	
0305598000	베도라치(실치)	Cat 0	0	
0305599000	기타	Cat 0	0	
0305610000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Cat 0	0	
0305620000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Cat 0	0	
0305631000	멸치젓	SL	5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305639000	기타	Cat 0	0	
0305640000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SL	5	
0305691000	연어	Cat 0	0	
0305692000	송어	Cat 0	0	
0305693000	갈치	Cat 0	0	
0305694000	점어리	Cat 0	0	
0305695000	고등어	Cat 0	0	
0305696000	조기	SL	5	
0305697000	전갱이	Cat 0	0	
0305698000	꽂치(학꽂치를 포함한다)	Cat 0	0	
0305699000	기타	Cat 15	5	
0305711000	훈제한 것	Cat 0	0	
0305712000	건조한 것	Cat 0	0	
030571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SL	5	
0305721000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가두스 오각(Gadus ogac)·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의 것	Cat 0	0	
0305729000	기타	SL	0/5/16	
0305790000	기타	SL	0/5/16	
0306111000	훈제한 것	Cat 0	0	
0306119000	기타	Cat 0	0	
0306121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0	0	
03061210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Cat 0	0	
0306129000	기타	Cat 0	0	
0306141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0	0	
0306141012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Cat 0	0	
0306141090	기타	Cat 0	0	
0306142010	훈제한 것	Cat 0	0	
0306142090	기타	Cat 0	0	
0306143010	훈제한 것	Cat 0	0	
0306143090	기타	EX	11.2	
0306149010	훈제한 것	Cat 0	0	
0306149090	기타	SL	11.2	
0306151000	훈제한 것	Cat 0	0	
0306159000	기타	Cat 0	0	
0306161010	훈제한 것	Cat 0	0	
0306161090	기타	EX	20	
0306169010	훈제한 것	Cat 0	0	
0306169090	기타	EX	20	
0306171010	훈제한 것	Cat 0	0	
0306171090	기타	EX	20	
0306179010	훈제한 것	Cat 0	0	
0306179090	기타	EX	20	
0306191000	훈제한 것	Cat 0	0	
0306199000	기타	Cat 0	0	
0306310000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Cat 0	0	
0306320000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Cat 0	0	
0306331000	꽃게	Cat 15	16	
0306332000	대게	SL	16	
0306339000	기타	EX	5	
0306340000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Cat 0	0	
0306350000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EX	20	
0306360000	그 밖의 새우류	EX	20	
0306390000	기타[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306912000	건조한 것	Cat 0	0	
030691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6914000	훈제한 것	Cat 0	0	
0306922000	건조한 것	Cat 0	0	
030692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69240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0	0	
03069240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Cat 0	0	
0306932000	건조한 것	Cat 0	0	
030693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6934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0	0	
0306934012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Cat 0	0	
0306934090	기타	Cat 0	0	
0306942000	건조한 것	Cat 0	0	
030694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6944000	훈제한 것	Cat 0	0	
0306951020	건조한 것	SL	16	
030695103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SL	32	
0306951040	훈제한 것	Cat 0	0	
0306959020	건조한 것	SL	16	
030695903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EX	32	
0306959040	훈제한 것	Cat 0	0	
0306992000	건조한 것	Cat 0	0	
03069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6994000	훈제한 것	Cat 0	0	
0307111010	총패용	Cat 0	0	
0307111090	기타	Cat 0	0	
0307119000	기타	Cat 0	0	
0307120000	냉동한 것	Cat 0	0	
0307192000	건조한 것	Cat 0	0	
0307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7194000	훈제한 것	Cat 0	0	
0307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EX	5	
0307220000	냉동한 것	Cat 0	0	
0307292000	건조한 것	Cat 0	0	
0307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7294000	훈제한 것	Cat 0	0	
03073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Cat 0	0	
0307320000	냉동한 것	Cat 0	0	
0307392000	건조한 것	Cat 0	0	
0307393000	훈제한 것	Cat 0	0	
0307399000	기타	Cat 0	0	
0307421010	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 · 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 · 세피올라(Sepiolo)종	SL	5	
0307421090	기타	Cat 0	0	
0307422010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 로리고(Loligo)종 · 노토타루스(Nototodarus)종 · 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Cat 15	8	
0307422090	기타	Cat 0	0	
0307431010	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 · 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 · 세피올라(Sepiolo)종	EX	10	
0307431090	기타	SL	5	
0307432010	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 로리고(Loligo)종 · 노토타루스(Nototodarus)종 · 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EX	21.6	
0307432090	기타	EX	5	
0307492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 · 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 · 세피올라(Sepiolo)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 로리고(Loligo)종 · 노토타루스(Nototodarus)종 · 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EX	8	
0307492090	기타	SL	5	
0307493010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 · 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 · 세피올라(Sepiolo)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 로리고(Loligo)종 · 노토타루스(Nototodarus)종 · 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EX	8	
0307493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307494010	감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로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세피올라(Sepiola)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로리고(Loligo)종·노토토다루스(Nototodarus)종·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SL	0/16	
0307494090	기타	Cat 0	0	
0307511000	낙지	Cat 0	0	
0307512000	주꾸미	Cat 0	0	
0307519000	기타	Cat 0	0	
0307521000	문어	Cat 0	0	
0307522000	낙지	Cat 0	0	
0307523000	주꾸미	Cat 0	0	
0307529000	기타	Cat 0	0	
0307592000	건조한 것	Cat 0	0	
0307593000	훈제한 것	Cat 0	0	
0307599000	기타	Cat 0	0	
0307601000	훈제한 것	Cat 0	0	
0307609000	기타	Cat 0	0	
0307711010	치패(稚貝)	Cat 0	0	
0307711090	기타	Cat 0	0	
0307712010	총패용	Cat 10	0	
0307712090	기타	SL	5	
0307713000	새조개	Cat 0	0	
0307714000	바지락	SL	5	
0307715000	개조개	Cat 0	0	
0307719000	기타	Cat 0	0	
0307721000	새조개	Cat 0	0	
0307722000	개량조개	Cat 0	0	
0307723000	바지락	SL	5	
0307724000	피조개	Cat 15	5	
0307725000	개조개	EX	5	
0307729000	기타	SL	5	
0307792010	개량조개	Cat 0	0	
0307792020	바지락	Cat 0	0	
0307792030	개조개	Cat 0	0	
0307792090	기타	Cat 0	0	
0307793010	개량조개	Cat 0	0	
0307793020	바지락	SL	5	
0307793030	개조개	SL	5	
0307793090	기타	SL	5	
0307794011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0	0	
0307794019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Cat 0	0	
0307794090	기타	Cat 0	0	
0307810000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EX	16	
0307820000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Cat 0	0	
0307830000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Cat 15	5	
0307840000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EX	5	
0307871000	건조한 것	Cat 0	0	
030787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SL	5	
0307873000	훈제한 것	Cat 0	0	
0307881000	건조한 것	Cat 0	0	
0307882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SL	5	
0307883000	훈제한 것	Cat 0	0	
0307911000	소라	Cat 0	0	
0307912010	총패용	Cat 0	0	
0307912090	기타	Cat 0	0	
0307913000	개아지살	Cat 0	0	
0307914000	재첩	Cat 0	0	
0307919000	기타	Cat 0	0	
0307921000	개아지살	Cat 0	0	
0307922000	소라	Cat 0	0	
0307929000	기타	EX	5	
0307992100	개아지살	Cat 0	0	
0307992900	기타	Cat 0	0	
0307993100	소라	Cat 0	0	
0307993900	기타	SL	5	
0307994110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0	0	
0307994120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Cat 0	0	
0307994900	기타	Cat 0	0	
03081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Cat 0	0	
0308120000	냉동한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308192000	건조한 것	Cat 0	0	
03081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8194000	통제한 것	Cat 0	0	
0308210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Cat 0	0	
0308220000	냉동한 것	Cat 15	5	
0308292000	건조한 것	Cat 0	0	
0308293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8294000	통제한 것	Cat 0	0	
0308301000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Cat 0	0	
0308302000	냉동한 것	SL	5	
0308303000	건조한 것	Cat 0	0	
03083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8305000	통제한 것	Cat 0	0	
0308901011	종묘(種苗)	Cat 0	0	
0308901019	기타	Cat 0	0	
0308901090	기타	Cat 0	0	
0308902010	우렐셀이(명게)	Cat 0	0	
0308902090	기타	SL	5	
0308903010	우렐셀이(명게)	Cat 0	0	
0308903090	기타	Cat 0	0	
0308904000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8905000	통제한 것	Cat 0	0	
0401100000	지방분이 전 총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EX	28.8	
0401200000	지방분이 전 총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EX	28.8	
0401401000	냉동크림	EX	28.8	
0401409000	기타	EX	28.8	
0401501000	냉동크림	EX	28.8	
0401509000	기타	EX	28.8	
0402101010	탈지(脫脂)분유	EX	140.8	
0402101090	기타	EX	140.8	
0402109000	기타	EX	140.8	
0402211000	전지분유	EX	140.8	
0402219000	기타	EX	140.8	
0402290000	기타	EX	140.8	
0402911000	무가당연유(無加糖煉乳)	EX	71.2	
0402919000	기타	EX	71.2	
0402991000	가당연유(加糖煉乳)	EX	71.2	
0402999000	기타	EX	71.2	
0403101000	액체 상태인 것	EX	28.8	
0403102000	냉동한 것	EX	28.8	
0403109000	기타	EX	28.8	
0403901000	버터밀크	EX	71.2	
0403902000	응고밀크와 응고크림	EX	5	
0403903000	케피어(kephir)	Cat 0	0	
0403909000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	EX	5	
0404101011	사료용	SL	5	
0404101019	기타	EX	5	
0404101091	사료용	SL	5	
0404101099	기타	EX	5	
0404102111	사료용	SL	5	
0404102119	기타	EX	5	
0404102121	사료용	SL	5	
0404102129	기타	EX	5	
0404102131	사료용	SL	5	
0404102139	기타	EX	5	
0404102191	사료용	SL	5	
0404102199	기타	EX	5	
0404102910	사료용	SL	5	
0404102990	기타	EX	5	
0404901000	지방분이 전 총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EX	36	
0404902000	지방분이 전 총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EX	36	
0405100000	버터	EX	71.2	
0405200000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Cat 0	0	
0405900000	기타	EX	71.2	
0406101010	모차렐라 치즈(Mozzarella cheese)	EX	36	
0406101020	크림 치즈	EX	36	
0406101090	기타	EX	36	
0406102000	커드(curd)	EX	5	
0406200000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EX	28.8	
0406300000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EX	28.8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406400000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EX	5	
0406901000	체다 치즈(Cheddar cheese)	EX	36	
0406902000	하우다 치즈(Gouda cheese)	EX	36	
0406903000	카망베르 치즈(Camembert cheese)	EX	36	
0406904000	에멘탈 치즈(Emmental cheese)	EX	36	
0406909000	기타	EX	36	
04071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EX	21.6	
0407190000	기타	EX	21.6	
0407210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EX	5	
0407290000	기타	EX	5	
0407900000	기타	EX	5	
0408110000	견조한 것	Cat 0	0	
0408190000	기타	Cat 0	0	
0408910000	견조한 것	EX	5	
0408991000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EX	33.2	
0408999000	기타	EX	5	
0409000000	천연꿀	EX	194.4% 또는 1,491원/kg, 양자 중 고액(율)	
0410002000	칼새동지	Cat 0	0	
0410003000	로열젤리	Cat 0	0	
0410009000	기타	Cat 0	0	
050100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Cat 0	0	
0502100000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Cat 0	0	
0502902000	염소털	Cat 0	0	
0502909000	기타	Cat 0	0	
0504001010	소의 것	Cat 0	0	
0504001021	소시지 케이싱용	Cat 0	0	
0504001029	기타	Cat 0	0	
0504001031	소시지 케이싱용	Cat 0	0	
0504001039	기타	Cat 0	0	
0504001090	기타	Cat 0	0	
0504002000	방광	Cat 0	0	
0504003000	위	Cat 0	0	
0505100000	숨털과 충전재용 깃털	Cat 0	0	
0505901000	깃털 가루	Cat 0	0	
0505909000	기타	Cat 0	0	
0506100000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506901020	소의 것	Cat 0	0	
0506901090	기타	Cat 0	0	
0506902000	뿔가루	EX	5	
0506909000	기타	Cat 0	0	
0507101000	상아	Cat 0	0	
0507109000	기타	Cat 0	0	
0507901110	전지(全枝)	EX	16	
0507901190	기타	EX	16	
0507901200	녹각	EX	16	
0507902010	귀갑(龜甲)과 귀판(龜板)	Cat 0	0	
0507902020	고래수염과 그 털	Cat 0	0	
0507902090	기타	Cat 0	0	
0508001000	산호	Cat 0	0	
0508002010	진주패각	Cat 0	0	
0508002020	청패각(전복)	Cat 0	0	
0508002030	철패각과 지철패각	Cat 0	0	
0508002040	아광패각(소라)	Cat 0	0	
0508002050	트로커스(Trocas) 패각	Cat 0	0	
0508002060	아고아(Agoya) 패각	Cat 0	0	
0508002070	민물패각[메가로나이아스네보사(Megalonaia nervosa), 앰브레마프리카타(Amblymauricaria), 콰드루라 콰드루라(Quadrula quadrula)종]	Cat 0	0	
0508002090	기타	Cat 0	0	
0508009000	기타	Cat 0	0	
0510001000	율연황(ambergris)	Cat 0	0	
0510002000	해리황(castoreum)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510003000	사향	Cat 0	0	
0510004000	우황	Cat 0	0	
0510005000	오렁지	Cat 0	0	
0510009010	체장	Cat 0	0	
0510009020	담즙	Cat 0	0	
0510009030	합개(蛤蚧)	Cat 0	0	
0510009090	기타	Cat 0	0	
0511100000	소의 정액	Cat 0	0	
0511911010	브라인 슈림프(brine shrimp) 알	Cat 0	0	
0511911090	기타	Cat 0	0	
0511912000	어류의 웨이스트(waste)	Cat 0	0	
0511919000	기타	Cat 0	0	
0511991000	동물의 피	Cat 0	0	
0511992010	돼지의 정액	Cat 0	0	
0511992090	기타	Cat 0	0	
0511993010	소의 것	Cat 0	0	
0511993020	돼지의 것	Cat 0	0	
0511993090	기타	Cat 0	0	
0511994000	동물의 건(腱)과 근(筋)	Cat 0	0	
0511995011	정돈한 것	Cat 0	0	
0511995019	기타	Cat 0	0	
0511995020	말의 털의 웨이스트(waste)	Cat 0	0	
0511996000	동물성의 해면	Cat 0	0	
0511999010	잠충(蠶種)	Cat 0	0	
0511999020	누에번대기	Cat 0	0	
0511999030	동물의 사체(제3류 물품의 사체는 제외한다)	Cat 0	0	
0511999040	원피의 패어링(paring)과 이와 유사한 웨이스트(waste)	Cat 0	0	
0511999090	기타	Cat 0	0	
0601101000	틀림의 것	Cat 0	0	
0601102000	백합의 것	Cat 0	0	
0601103000	달리아의 것	Cat 0	0	
0601104000	히아신스의 것	Cat 0	0	
06011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Cat 0	0	
0601106000	아이리스의 것	Cat 0	0	
0601107000	프리지어의 것	Cat 0	0	
0601108000	수선화의 것	Cat 0	0	
0601109000	기타	Cat 0	0	
0601201000	틀림의 것	Cat 0	0	
0601202000	백합의 것	Cat 0	0	
0601203000	달리아의 것	Cat 0	0	
0601204000	히아신스의 것	Cat 0	0	
0601205000	글라디올러스의 것	Cat 0	0	
0601206000	치커리와 치커리 뿌리	Cat 0	0	
0601207000	아이리스의 것	Cat 0	0	
0601208000	프리지어의 것	Cat 0	0	
0601209010	수선화의 것	Cat 0	0	
0601209090	기타	Cat 0	0	
0602101000	과일나무의 것	Cat 0	0	
0602109000	기타	Cat 15	5	
0602201000	사과나무	Cat 0	0	
0602202000	배나무	Cat 0	0	
0602203000	복숭아나무	Cat 0	0	
0602204000	포도나무	Cat 0	0	
0602205000	감나무	Cat 0	0	
0602206000	귤나무	Cat 0	0	
0602207010	밤나무	Cat 0	0	
0602207020	호두나무	Cat 0	0	
0602207030	잣나무	Cat 0	0	
0602209000	기타	Cat 0	0	
0602300000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0602400000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0602901010	난초	Cat 0	0	
0602901020	카네이션	Cat 0	0	
0602901030	구즈마니아	Cat 0	0	
0602901040	안개초	Cat 0	0	
0602901050	국화	Cat 0	0	
0602901060	선인장류	Cat 0	0	
0602901090	기타	EX	5	
0602902011	분재용	Cat 0	0	
0602902019	기타	Cat 0	0	
0602902020	낙엽송	Cat 0	0	
0602902030	삼나무	Cat 0	0	
0602902040	편백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602902050	리기테다	Cat 0	0	
0602902061	분재용	Cat 0	0	
0602902069	기타	Cat 0	0	
0602902071	분재용	Cat 0	0	
0602902079	기타	Cat 0	0	
0602902081	분재용	Cat 0	0	
0602902089	기타	Cat 0	0	
0602902091	분재용	Cat 0	0	
0602902099	기타	Cat 0	0	
0602909010	목단	Cat 0	0	
0602909020	동백	Cat 0	0	
0602909030	뽕나무	Cat 0	0	
0602909040	버섯의 종균(種菌)	Cat 0	0	
0602909090	기타	EX	5	
0603110000	장미	EX	20	
0603120000	카네이션	EX	20	
0603131000	삼비디움(Cymbidiums)	EX	20	
0603132000	팔레놉시스(Phalaenopsis)	EX	5	
0603139000	기타	EX	5	
0603140000	국화	EX	20	
0603150000	백합 [릴리움(Lilium)종]	EX	5	
0603191000	튤립	Cat 0	0	
0603192000	글라디올러스	Cat 0	0	
0603194000	안개초	EX	5	
0603199000	기타	EX	5	
0603900000	기타	EX	5	
0604201000	이끼와 지의(地衣)	Cat 0	0	
0604202010	은행잎	Cat 0	0	
0604202090	기타	Cat 0	0	
0604209000	기타	Cat 0	0	
0604901000	이끼와 지의(地衣)	Cat 0	0	
0604909000	기타	Cat 0	0	
0701100000	총자용	EX	243.2	
0701900000	기타	EX	243.2	
070200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5	
0703101000	양파	EX	50(쿼터 내)/135% 또는 180 원/kg, 양자 중 고액 (율)(쿼터 외)	
0703102000	쪽파	Cat 0	0	
0703201000	깻질을 깠 것	EX	50(쿼터 내)/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 (율)(쿼터 외)	
0703209000	기타	EX	50(쿼터 내)/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 (율)(쿼터 외)	
0703901000	리크(leek)	Cat 0	0	
0703909000	기타	Cat 0	0	
0704100000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EX	5	
0704200000	방울다다기 양배추	EX	5	
0704901000	양배추	Cat 0	0	
0704902000	배추	Cat 0	0	
0704909000	기타	Cat 0	0	
0705110000	결구(結球) 상추	Cat 0	0	
0705190000	기타	Cat 0	0	
0705210000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 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Cat 0	0	
0705290000	기타	Cat 0	0	
0706101000	달근	Cat 0	0	
0706102000	순무	Cat 0	0	
0706901000	무	Cat 0	0	
0706902000	고추냉이와 겨자무	Cat 0	0	
0706903000	더덕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706904000	도라지	Cat 0	0	
0706909000	기타	Cat 0	0	
070700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70810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Cat 0	0	
070820000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Cat 0	0	
0708900000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Cat 0	0	
07092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EX	5	
0709300000	가지(에그플랜트)	Cat 0	0	
0709400000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Cat 0	0	
0709517000	양송이 버섯	EX	5	
0709519000	기타	Cat 0	0	
0709591000	송이버섯	Cat 0	0	
0709592000	표고버섯	EX	5	
0709593000	영지버섯	Cat 0	0	
0709594010	큰느타리버섯	Cat 0	0	
0709594090	기타	Cat 0	0	
0709595000	팽이버섯	Cat 0	0	
0709596000	송로(松露)	Cat 0	0	
0709599000	기타	Cat 0	0	
0709601000	단고추(벨타입으로 한정한다)	EX	50(쿼터 내)/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 (율)(쿼터 외)	
0709609000	기타	EX	50(쿼터 내)/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 (율)(쿼터 외)	
0709700000	시금치류	Cat 0	0	
0709910000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Cat 0	0	
0709920000	올리브	Cat 0	0	
0709930000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EX	5	
0709991000	고사리	Cat 0	0	
0709992000	고비	Cat 0	0	
0709999000	기타	Cat 10	0/5	
0710100000	감자	Cat 0	0	
0710210000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Cat 0	0	
0710220000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Cat 0	0	
0710290000	기타	Cat 0	0	
0710300000	시금치류	Cat 0	0	
0710400000	스위트콘	Cat 0	0	
0710801000	양파	EX	5	
0710802000	마늘	EX	27	
0710803000	죽순	Cat 0	0	
0710804000	당근	Cat 0	0	
0710805000	고사리	Cat 0	0	
0710806000	송이버섯	Cat 0	0	
0710807000	고추류[캡시쿰(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EX	27	
0710808010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Cat 0	0	
0710808020	고려엉겅퀴(곤드레)	Cat 0	0	
0710809000	기타	Cat 0	0	
0710900000	채소류의 혼합물	Cat 0	0	
0711200000	올리브	Cat 0	0	
0711400000	오이류	Cat 0	0	
0711510000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Cat 0	0	
0711591000	송로(松露)	Cat 0	0	
0711599000	기타	Cat 0	0	
0711901000	마늘	EX	50(쿼터 내)/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 (율)(쿼터 외)	
0711903000	죽순	Cat 0	0	
0711904000	당근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711905010	고사리	Cat 0	0	
0711905020	고비	Cat 0	0	
0711905091	고추류[캡시쿰(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EX	50(쿼터 내)/270% 또는 6,210 원/kg, 양자 중 고액 (율)(쿼터 외)	
0711905099	기타	Cat 0	0	
0711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Cat 0	0	
0712200000	양파	EX	50(쿼터 내)/135% 또는 180 원/kg, 양자 중 고액 (율)(쿼터 외)	
0712311000	알송이 버섯	Cat 0	0	
0712319000	기타	Cat 0	0	
0712320000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Cat 0	0	
0712330000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Cat 0	0	
0712391010	송이버섯	Cat 0	0	
0712391020	표고버섯	EX	5	
0712391030	영지버섯	Cat 0	0	
0712391040	느타리버섯	Cat 0	0	
0712391050	팽이버섯	Cat 0	0	
0712391090	기타	Cat 0	0	
0712392000	송로(松露)	Cat 0	0	
0712901000	마늘	EX	50(쿼터 내)/360% 또는 1,800 원/kg, 양자 중 고액 (율)(쿼터 외)	
0712902010	고사리	EX	24% 또는 1,446원/kg, 양자 중 고 액(율)	
0712902020	무	Cat 0	0	
0712902030	파	EX	5	
0712902040	달근	EX	5	
0712902050	홍박	EX	5	
0712902060	알배추	Cat 0	0	
0712902070	토란줄기	SL	5	
0712902080	고구마줄기	Cat 0	0	
0712902091	스위트콘(종자용)	EX	296	
0712902092	스위트콘(기타)	EX	296	
0712902093	감자	Cat 0	0	
0712902094	고비	Cat 0	0	
0712902095	더덕	Cat 0	0	
0712902096	취(참취, 개미취, 곰취, 미역취)	Cat 0	0	
0712902097	고려엉겅퀴(곤드레)	Cat 0	0	
0712902099	기타	Cat 0	0	
0712909000	채소류의 혼합물	Cat 0	0	
0713101000	총자용	Cat 0	0	
0713102000	사료용	Cat 0	0	
0713109000	기타	Cat 0	0	
0713200000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Cat 0	0	
0713311000	총자용	EX	486	
0713319000	기타	EX	486	
0713321000	총자용	EX	336.6	
0713329000	기타	EX	336.6	
0713331000	총자용	SL	27	
0713339000	기타	EX	27	
0713340000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 · 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 아(Voandzeia subterranea)]	Cat 15	21.6	
0713350000	동부콩[비그나 운구쿨라타(Vigna unguiculata)]	Cat 15	21.6	
0713390000	기타	Cat 15	21.6	
0713400000	렌즈콩	Cat 15	5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713500000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 · 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Cat 0	0	
0713600000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Cat 0	0	
0713900000	기타	Cat 0	0	
0714101000	신선한 것	EX	20(쿼터 내)/887.4(쿼터 외)	
0714102010	칩	EX	20(쿼터 내)/887.4(쿼터 외)	
0714102020	펠릿(pellet)	EX	709.9	
0714102090	기타	EX	20(쿼터 내)/887.4(쿼터 외)	
0714103000	냉장한 것	EX	20(쿼터 내)/887.4(쿼터 외)	
0714104000	냉동한 것	EX	45	
0714201000	신선한 것	EX	308	
0714202000	건조한 것	EX	308	
0714203000	냉장한 것	EX	308	
0714204000	냉동한 것	EX	5	
0714301000	냉동한 것	Cat 5	5	
0714309000	기타	EX	192.5	
0714401000	냉동한 것	SL	5	
0714409000	기타	EX	192.5	
0714501000	냉동한 것	SL	5	
0714509000	기타	EX	192.5	
0714901010	냉동한 것	Cat 15	5	
0714901090	기타	SL	5	
0714909010	냉동한 것	EX	5	
0714909090	기타	EX	192.5	
0801110000	말린 것	Cat 0	0	
0801120000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Cat 0	0	
0801190000	기타	Cat 0	0	
0801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0	0	
0801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Cat 0	0	
0801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10	5	
0801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Cat 10	5	
08021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0	0	
08021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Cat 0	0	
08022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0	0	
08022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Cat 0	0	
08023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EX	36	
08023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EX	24	
08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EX	175.5% 또는 1,176원/kg, 양자 중 고액(율)	
08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EX	175.5% 또는 1,176원/kg, 양자 중 고액(율)	
08025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0	0	
08025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Cat 0	0	
08026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0	0	
0802620000	껍데기를 벗긴 것	Cat 0	0	
0802700000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Cat 0	0	
0802800000	빈랑자(areca nut)	Cat 0	0	
0802901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EX	453.4% 또는 2,131원/kg, 양자 중 고액(율)	
0802901020	껍데기를 벗긴 것	EX	453.4% 또는 2,131원/kg, 양자 중 고액(율)	
080290201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0	0	
0802902020	껍데기를 벗긴 것	Cat 0	0	
0802909000	기타	Cat 0	0	
0803100000	플랜틴(plantain)	Cat 10	30	
0803900000	기타	Cat 5	30	부속서 2-나 참조
0804100000	대추야자	Cat 15	24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804200000	무화과	Cat 0	0	
0804300000	파인애플	EX	30	
0804400000	아보카도(avocado)	Cat 0	0	
0804501000	구아바(quava)	Cat 15	24	
0804502000	망고(mango)	EX	24	
0804503000	망고스틴(mangosteen)	Cat 15	24	
0805100000	오렌지	EX	50	
0805211000	감귤	EX	50(쿼터 내)/144(쿼터 외)	
0805219000	기타	EX	50(쿼터 내)/144(쿼터 외)	
0805220000	클레멘타인(clementine)	EX	50(쿼터 내)/144(쿼터 외)	
0805290000	기타	EX	50(쿼터 내)/144(쿼터 외)	
0805400000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Cat 0	0	
0805501000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눔(Citrus limonum)]	SL	5	
0805502010	시트러스 호박나물리아(Citrus aurantiifolia)	Cat 0	0	
0805502020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Cat 0	0	
0805900000	기타	EX	50(쿼터 내)/144(쿼터 외)	
0806100000	신선한 것	EX	36	
0806200000	건조한 것	SL	5	
0807110000	수박	Cat 0	0	
0807190000	기타	EX	5	
0807200000	포포(papaw)[파파야(papaya)]	Cat 15	24	
0808100000	사과	EX	45	
0808300000	배	EX	45	
0808400000	마르멜로(quince)	Cat 0	0	
0809100000	살구	Cat 0	0	
0809210000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Cat 15	5	
0809290000	기타	EX	5	
0809300000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EX	36	
0809401000	자두	Cat 0	0	
0809402000	슬로(sloe)	Cat 15	5	
0810100000	초분류 딸기	EX	5	
0810200000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loganberry)	Cat 0	0	
0810300000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Cat 0	0	
0810400000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Cat 0	0	
0810500000	키위프루트(kiwifruit)	EX	5	
0810600000	두리안(durian)	Cat 15	36	
0810701000	단감	EX	36	
0810709000	기타	EX	5	
0810903000	대추	EX	489.2% 또는 4,640원/kg, 양자 중 고액(율)	
0810905000	매실	EX	5	
0810909000	기타	EX	36	
0811100000	초분류 딸기	EX	5	
0811200000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Cat 0	0	
0811901000	밤	Cat 15	24	
0811902000	대추	EX	24	
0811903000	잣	EX	24	
0811909000	기타	Cat 15	24	
0812100000	체리	Cat 15	5	
0812901000	초분류 딸기	EX	5	
0812909000	기타	Cat 0	0	
0813100000	살구	Cat 0	0	
0813200000	프룬(prune)	Cat 0	0	
0813300000	사과	EX	36	
0813401000	감	EX	4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813402000	대추	EX	489.2% 또는 4,640원/kg, 양자 중 고액(율)	
0813409000	기타	SL	36	
0813500000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EX	5	
0814001000	감귤류의 껍질	Cat 15	5	
0814002000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	Cat 0	0	
09011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Cat 0	0	
09011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Cat 0	0	
0901210000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Cat 10	8	
0901220000	카페인을 제거한 것	Cat 10	8	
0901901000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Cat 10	3	
0901902000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	Cat 10	8	
0902100000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EX	40(쿼터 내)/513.6(쿼터 외)	
0902200000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EX	40(쿼터 내)/513.6(쿼터 외)	
0902300000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902400000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Cat 0	0	
0903000000	마테(maté)	Cat 0	0	
0904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0	0	
0904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4210000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EX	50(쿼터 내)/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쿼터 외)	
0904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EX	50(쿼터 내)/270% 또는 6,210원/kg, 양자 중 고액(율)(쿼터 외)	
0905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0	0	
0905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6110000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Cat 0	0	
0906191000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을 제외한다]	Cat 0	0	
0906192000	계피나무의 꽃	Cat 0	0	
0906201000	계피	Cat 0	0	
0906202000	계피나무의 꽃	Cat 0	0	
090710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0	0	
090720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81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0	0	
09081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8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0	0	
0908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8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0	0	
0908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92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0	0	
09092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9310000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0	0	
0909320000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961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Cat 0	0	
090961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Cat 0	0	
090961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Cat 0	0	
0909621000	아니스(anise)나 대회향(大茴香)의 씨	Cat 0	0	
0909622000	캐러웨이(caraway)의 씨	Cat 0	0	
0909623000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Cat 0	0	
091011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EX	301.8% 또는 744원/kg, 양자 중 고액(율)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0910112000	건조한 것	EX	301.8% 또는 744원/kg, 양자 중 고액(율)	
0910119000	기타	EX	301.8% 또는 744원/kg, 양자 중 고액(율)	
0910121000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EX	301.8% 또는 744원/kg, 양자 중 고액(율)	
0910122000	건조한 것	EX	301.8% 또는 744원/kg, 양자 중 고액(율)	
0910129000	기타	EX	301.8% 또는 744원/kg, 양자 중 고액(율)	
0910200000	사프란(saffron)	Cat 0	0	
0910300000	삼황[강황(薑黃)]	Cat 0	0	
0910911000	카레	Cat 0	0	
0910919000	기타	Cat 0	0	
0910991000	타임과 월계수의 잎	Cat 0	0	
0910999000	기타	Cat 0	0	
1001110000	종자	Cat 0	0	
1001190000	기타	Cat 0	0	
1001911000	메슬린(meslin)	Cat 0	0	
1001919000	기타	Cat 0	0	
1001991010	메슬린(meslin)	Cat 0	0	
1001991090	기타	Cat 0	0	
1001992010	메슬린(meslin)	Cat 0	0	
1001992090	기타	Cat 0	0	
1001999010	메슬린(meslin)	Cat 0	0	
1001999090	기타	Cat 0	0	
1002100000	종자	Cat 0	0	
1002900000	기타	Cat 0	0	
1003101000	맥주보리	EX	256.5	
1003102000	겉보리	EX	162% 또는 163원/kg, 양자 중 고액(율)	
1003103000	쌀보리	EX	149.8% 또는 180원/kg, 양자 중 고액(율)	
1003109000	기타	EX	149.8	
1003901000	맥주보리	EX	256.5	
1003902000	겉보리	EX	162% 또는 163원/kg, 양자 중 고액(율)	
1003903000	쌀보리	EX	149.8% 또는 180원/kg, 양자 중 고액(율)	
1003909000	기타	EX	149.8	
1004100000	종자	Cat 0	0	
1004900000	기타	Cat 0	0	
1005100000	종자용	Cat 0	0	
1005901000	사료용	Cat 0	0	
1005902000	팥콘	EX	315	
1005909000	기타	EX	164	
1006100000	벼	EX	5(쿼터 내)/513(쿼터 외)	
1006201000	메현미	EX	5(쿼터 내)/513(쿼터 외)	
1006202000	찰현미	EX	5(쿼터 내)/513(쿼터 외)	
1006301000	멥쌀	EX	5(쿼터 내)/513(쿼터 외)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1006302000	참쌀	EX	5(쿼터 내)/513(쿼터 외)	
1006400000	쇄미(broken rice)	EX	5(쿼터 내)/513(쿼터 외)	
1007100000	종자	Cat 0	0	
1007900000	기타	Cat 0	0	
1008100000	메밀	EX	204.8	
1008211000	조	Cat 0	0	
1008219000	기타	Cat 0	0	
1008291000	조	Cat 0	0	
1008299000	기타	Cat 0	0	
1008300000	카나리시드(canary seed)	Cat 0	0	
1008400000	포니오(Fonio)[디지털리아(Digitaria)종]	EX	400.1	
1008500000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EX	400.1	
1008600000	라이말(triticale)	EX	400.1	
1008900000	그 밖의 곡물	EX	400.1	
1101001000	밀가루	Cat 0	0	
1101002000	메슬린(meslin) 가루	Cat 0	0	
1102200000	옥수수가루	Cat 0	0	
1102901000	보릿가루	EX	130	
1102902000	쌀가루	EX	5(쿼터 내)/513(쿼터 외)	
1102903000	호밀가루	Cat 0	0	
1102909000	기타	EX	400.1	
1103110000	밀로 만든 것	EX	5	
11031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EX	130.3	
1103191000	보리로 만든 것	EX	130	
1103192000	귀리로 만든 것	EX	277.4	
1103193000	쌀로 만든 것	EX	5(쿼터 내)/513(쿼터 외)	
1103199000	기타	EX	400.1	
1103201000	밀로 만든 것	EX	5	
1103202000	쌀로 만든 것	EX	5(쿼터 내)/513(쿼터 외)	
1103203000	보리로 만든 것	EX	5	
1103209000	기타	EX	5	
1104120000	귀리로 만든 것	EX	277.4	
1104191000	쌀로 만든 것	EX	5(쿼터 내)/513(쿼터 외)	
1104192000	보리로 만든 것	EX	116.5	
1104199000	기타	EX	400.1	
1104220000	귀리로 만든 것	EX	277.4	
1104230000	옥수수로 만든 것	EX	133.6	
1104291000	물우로 만든 것	EX	400.1	
1104292000	보리로 만든 것	EX	63	
1104299000	기타	EX	400.1	
1104301000	쌀로 만든 것	EX	5	
1104309000	기타	Cat 0	0	
1105100000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EX	243.2	
1105200000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EX	243.2	
1106100000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106201000	최뿌리의 것	SL	5	
1106209000	기타	SL	5	
1106300000	제8류 물품의 것	Cat 15	5	
1107100000	볶지 않은 것	EX	134.5	
1107201000	훈연(燻煙)한 것	EX	134.5	
1107209000	기타	Cat 0	0	
1108110000	밀로 만든 것	EX	40.7	
1108121000	식품용	EX	180.8	
1108129000	기타	EX	180.8	
1108130000	감자로 만든 것	EX	364	
1108141000	식품용	EX	9(쿼터 내)/455(쿼터 외)	
1108149000	기타	EX	9(쿼터 내)/455(쿼터 외)	
1108191000	고구마로 만든 것	EX	192.9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1108199000	기타	EX	400.1	
1108200000	이눌린(inulin)	EX	400.1	
110900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1201101000	콩나물용	EX	389.6% 또는 765원/kg, 양자 중 고액(율)	
1201109000	기타	EX	389.6% 또는 765원/kg, 양자 중 고액(율)	
1201901000	채유용과 탈지대두박(脫脂大豆粕)용	Cat 0	0	
1201902000	사료용	EX	389.6% 또는 765원/kg, 양자 중 고액(율)	
1201903000	콩나물용	EX	389.6% 또는 765원/kg, 양자 중 고액(율)	
1201909000	기타	EX	389.6% 또는 765원/kg, 양자 중 고액(율)	
1202301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EX	184.4	
1202302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EX	184.4	
1202410000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EX	184.4	
1202420000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EX	184.4	
1203000000	코프라(copra)	Cat 0	0	
120400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12051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Cat 0	0	
1205109000	기타	Cat 0	0	
1205901000	사료작물 재배용 종자	Cat 0	0	
1205909000	기타	Cat 0	0	
120600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1207100000	팜너트(palm nut)와 핵(核)	Cat 0	0	
1207210000	종자	Cat 0	0	
1207291000	사료용	Cat 0	0	
1207299000	기타	Cat 0	0	
1207300000	피마자	Cat 0	0	
1207400000	참깨	EX	504% 또는 5,328원/kg, 양자 중 고액(율)	
1207500000	겨자씨	Cat 0	0	
1207600000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Carthusmus tinctorius)] 종자	Cat 0	0	
1207700000	벨론 종자	Cat 0	0	
1207910000	양귀비씨	Cat 0	0	
1207991000	들깨	EX	5	
1207992000	시어너트(shea nut)[캐리트너트(karite nut)]	Cat 0	0	
1207999000	기타	Cat 0	0	
1208100000	대두로 만든 것	Cat 0	0	
1208900000	기타	Cat 0	0	
1209100000	사탕무 종자	Cat 0	0	
1209210000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Cat 0	0	
1209220000	클로버(clover)[트리폴리움(Trifolium)종] 종자	Cat 0	0	
1209230000	페스큐(fescue) 종자	Cat 0	0	
1209240000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Cat 0	0	
1209250000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 · 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Cat 0	0	
1209291000	루핀(lupine) 종자	Cat 0	0	
1209292000	수단그래스(Sudan grass) 종자	Cat 0	0	
1209293000	오차드그래스(orchard grass) 종자	Cat 0	0	
1209294000	티모디그래스(timothy grass) 종자	Cat 0	0	
1209299000	기타	Cat 0	0	
1209300000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Cat 0	0	
1209911010	알팔 종자	Cat 0	0	
1209911090	기타	Cat 0	0	
1209912000	무 종자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1209913000	고추·단고추류(Capsicum annuum)의 종자	Cat 0	0	
1209914000	양배추 종자	Cat 0	0	
1209915000	토마토 종자	Cat 0	0	
1209919000	기타	Cat 0	0	
1209991010	참나무	Cat 0	0	
1209991090	기타	Cat 0	0	
1209992000	과수목의 종자	Cat 0	0	
1209993000	달배 종자	Cat 0	0	
1209994000	잔디 종자	Cat 0	0	
1209999000	기타	Cat 0	0	
1210100000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Cat 0	0	
1210201000	홉(hop)	Cat 0	0	
1210202000	루플린(lupulin)	Cat 0	0	
1211201110	산양삼(山養蔘)	EX	178.2	
1211201190	기타	EX	178.2	
1211201211	본삼	EX	178.2	
1211201219	기타	EX	178.2	
1211201291	본삼	EX	178.2	
1211201299	기타	EX	178.2	
1211201311	본삼	EX	603.4	
1211201319	기타	EX	603.4	
1211201391	본삼	EX	603.4	
1211201399	기타	EX	603.4	
1211202110	가루	Cat 0	0	
1211202120	타브렛이나 캡슐	EX	5	
1211202190	기타	Cat 0	0	
1211202210	가루	EX	603.4	
1211202220	타브렛이나 캡슐	EX	603.4	
1211202290	기타	EX	603.4	
1211203100	인삼잎과 줄기	EX	603.4	
1211203200	종자	EX	603.4	
12112093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EX	603.4	
1211209900	기타	EX	36	
12113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Cat 0	0	
1211309000	기타	Cat 0	0	
12114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Cat 0	0	
1211409000	기타	Cat 0	0	
1211501000	신선·냉장하거나 건조한 것	Cat 0	0	
1211509000	기타	Cat 0	0	
1211901100	부자(附子)	Cat 0	0	
1211901200	황련(黃連)	Cat 0	0	
1211901300	원지(遠志)	Cat 0	0	
1211901400	패모(貝母)	Cat 0	0	
1211901500	두충(杜沖)	Cat 0	0	
1211901600	감초	Cat 0	0	
1211901700	사인(砂仁)	Cat 0	0	
1211901800	산조인(酸棗仁)	Cat 0	0	
1211901910	용안육(龍眼肉)	Cat 0	0	
1211901920	산사자(山査子)	Cat 0	0	
1211901930	연자육(蓮子肉)	Cat 0	0	
1211901940	박하	Cat 0	0	
1211901950	초피(檳皮)	Cat 0	0	
1211901960	건조한 도라지	Cat 0	0	
1211901970	구기자	Cat 0	0	
1211901980	오미자	Cat 0	0	
1211901991	사군자(使君子)	Cat 0	0	
1211901992	백수오	Cat 0	0	
1211901993	하수오	Cat 0	0	
1211901999	기타	Cat 0	0	
1211909010	식용에 적합한 것	EX	36	
1211909090	기타	Cat 0	0	
1212211010	건조한 것	EX	16	
1212211020	냉장한 것	Cat 0	0	
1212211030	냉동한 것	Cat 0	0	
1212211090	기타	Cat 0	0	
1212212010	건조한 것	EX	16	
1212212020	염장한 것	EX	16	
1212212030	냉장한 것	Cat 0	0	
1212212040	냉동한 것	Cat 0	0	
1212212090	기타	Cat 0	0	
1212213010	건조한 것	SL	16	
1212213020	냉장한 것	Cat 0	0	
1212213030	냉동한 것	Cat 0	0	
1212213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1212214010	신선한 것	Cat 0	0	
1212214020	냉장한 것	Cat 0	0	
1212214030	냉동한 것	Cat 0	0	
1212214090	기타	Cat 0	0	
1212215010	염장한 것	SL	16	
1212215020	냉장한 것	Cat 0	0	
1212215030	냉동한 것	Cat 0	0	
1212215090	기타	SL	16	
1212216010	냉동한 것	Cat 0	0	
1212216090	기타	Cat 0	0	
1212217011	냉동한 것	Cat 0	0	
1212217019	기타	Cat 0	0	
1212217021	냉동한 것	Cat 0	0	
1212217029	기타	Cat 0	0	
1212217031	냉동한 것	Cat 0	0	
1212217039	기타	Cat 0	0	
1212218011	냉동한 것	Cat 0	0	
1212218019	기타	Cat 0	0	
1212218021	냉동한 것	Cat 0	0	
1212218029	기타	Cat 0	0	
1212218031	냉동한 것	Cat 0	0	
1212218039	기타	Cat 0	0	
1212219011	냉동한 것	Cat 0	0	
1212219019	기타	Cat 0	0	
1212219091	냉동한 것	Cat 0	0	
1212219099	기타	EX	16	
1212291010	냉동한 것	Cat 0	0	
1212291090	기타	Cat 15	0/16	
1212292010	냉동한 것	Cat 0	0	
1212292090	기타	EX	0/16	
1212293010	냉동한 것	Cat 0	0	
1212293090	기타	SL	0/16	
1212294010	냉동한 것	Cat 0	0	
1212294090	기타	Cat 0	0	
1212295010	냉동한 것	Cat 0	0	
1212295090	기타	SL	0/16	
1212296010	냉동한 것	Cat 0	0	
1212296090	기타	Cat 0	0	
1212297011	냉동한 것	Cat 0	0	
1212297019	기타	Cat 0	0	
1212297021	냉동한 것	Cat 0	0	
1212297029	기타	Cat 0	0	
1212297031	냉동한 것	Cat 0	0	
1212297039	기타	Cat 0	0	
1212298011	냉동한 것	Cat 0	0	
1212298019	기타	Cat 0	0	
1212298021	냉동한 것	Cat 0	0	
1212298029	기타	Cat 0	0	
1212298031	냉동한 것	Cat 0	0	
1212298039	기타	Cat 0	0	
1212299011	냉동한 것	Cat 0	0	
1212299019	기타	Cat 0	0	
1212299091	냉동한 것	Cat 0	0	
1212299099	기타	SL	16	
1212910000	사탕무	Cat 0	0	
12129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Cat 0	0	
1212930000	사탕수수	Cat 0	0	
1212940000	치커리(chicory) 뿌리	Cat 0	0	
1212992000	구약구(kuyaku) 뿌리	Cat 0	0	
1212993000	꽃가루	Cat 0	0	
1212996000	살구·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 다]·자두의 핵(核)	Cat 0	0	
1212999000	기타	Cat 0	0	
1213000000	곡물의 짚과 껍질 [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 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 관없다]	Cat 0	0	
1214101000	사료용	Cat 0	0	
1214109000	기타	Cat 0	0	
1214901000	사료용 뿌리채소류	EX	5	
1214909011	사료용	Cat 0	0	
1214909019	기타	Cat 0	0	
1214909090	기타	EX	5	
1301200000	아라비아 검	Cat 0	0	
1301901000	올레오레진(oleoresin)	Cat 0	0	
1301902010	셸락(shellac)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1301902090	기타	Cat 0	0	
1301909000	기타	Cat 15	3	
1302110000	아편	Cat 0	0	
1302120000	감초로 만든 것	Cat 0	0	
1302130000	홉(hop)으로 만든 것	Cat 0	0	
1302140000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Cat 0	0	
1302191110	인삼 추출물(extract)	EX	5	
1302191120	인삼 추출물(extract) 가루	Cat 0	0	
1302191190	기타	Cat 0	0	
1302191210	홍삼 추출물(extract)	EX	603.4	
1302191220	홍삼 추출물(extract) 가루	EX	603.4	
1302191290	기타	EX	603.4	
1302191900	기타	EX	16	
1302192000	캐슈너트 쉼액(cashew nut shell liquid)	Cat 0	0	
1302193000	생활(生漆)	Cat 0	0	
1302199010	알로에 수액과 추출물(extract)	Cat 0	0	
1302199020	콜라 추출물(extract)	Cat 0	0	
1302199031	당귀(當歸) 추출물	Cat 0	0	
1302199032	오미자(五味子) 추출물	Cat 0	0	
1302199033	작약(芍藥) 추출물	Cat 0	0	
1302199034	천궁(川芎) 추출물	Cat 0	0	
1302199035	황기(黃芪) 추출물	Cat 0	0	
1302199039	기타	Cat 0	0	
1302199091	바닐라 올레오레진이나 바닐라 추출물(extract)	Cat 0	0	
1302199099	기타	Cat 0	0	
1302200000	펙틴질 ·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Cat 0	0	
1302311000	실 한천	Cat 0	0	
1302312000	가루 한천	Cat 0	0	
1302319000	기타	Cat 0	0	
1302320000	로커스트콩(locust bean) ·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1302390000	기타	Cat 0	0	
1401101000	맹종죽(孟宗竹)	SL	5	
1401102000	청환죽(靑丸竹)	Cat 15	5	
1401109000	기타	Cat 15	5	
1401201000	쪼개거나 뽑아서 늘린 것	Cat 0	0	
1401209000	기타	Cat 0	0	
1401900000	기타	Cat 0	0	
1404200000	면(綿) 린터(linter)	Cat 0	0	
1404901000	조각용 종자 · 껍질 · 너트(예: 상아야자)	Cat 0	0	
1404902010	닥나무나 꾸지나무(paper mulberry) 껍질	Cat 0	0	
1404902090	기타	Cat 0	0	
1404903010	떡갈잎	Cat 0	0	
1404903020	청미래덩굴잎	Cat 0	0	
1404903090	기타	Cat 0	0	
1404904000	충전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 [예: 케이폭(kapok) · 식물성 헤어 · 거머리 말][층상(層狀)으로 한 것인지 또는 지지 물을 사용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1404905000	비나 브러시를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수수류 · 피아사바(plassava) · 카우치 그라스(couch-grass) · 이스탈리(istle)](다발이나 꾸러미 상태 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1404906010	오배자(五倍子)	Cat 0	0	
1404906020	아몬드 핵(almond hull)	Cat 0	0	
1404906090	기타	Cat 0	0	
1404909000	기타	Cat 0	0	
1501101000	산가(酸價)가 1 이하인 것	Cat 0	0	
1501109000	기타	Cat 0	0	
1501200000	그 밖의 돼지의 지방	Cat 0	0	
1501900000	기타	Cat 0	0	
1502101010	산가(酸價)가 2 이하인 것	Cat 0	0	
1502101090	기타	Cat 0	0	
1502109000	기타	Cat 0	0	
1502901000	소의 것	Cat 0	0	
1502909000	기타	Cat 0	0	
1503002000	라드유(lard oil)	Cat 0	0	
1503009000	기타	Cat 0	0	
1504101000	상어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Cat 0	0	
15041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1504200000	어유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간유(肝油)는 제외한다]	Cat 0	0	
1504301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Cat 0	0	
1504309000	기타	Cat 0	0	
1505001000	가공하지 않은 울그리스(wool grease)	Cat 0	0	
1505009000	기타	Cat 0	0	
1506001000	우각유(neat's foot oil)와 그 분획물	Cat 0	0	
1506009000	기타	Cat 0	0	
1507101000	식품용	Cat 0	0	
1507102000	바이오디젤 제조용	Cat 0	0	
1507109000	기타	Cat 0	0	
1507901010	식품용	EX	5	
1507901020	바이오디젤 제조용	Cat 15	5	
1507901090	기타	Cat 15	5	
1507909000	기타	Cat 15	5	
1508100000	조유(粗油)	Cat 0	0	
1508901000	정제유(精製油)	Cat 0	0	
1508909000	기타	Cat 0	0	
1509100000	버진(virgin)	Cat 0	0	
1509900000	기타	Cat 0	0	
151000000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1511100000	조유(粗油)	Cat 0	0	
1511901000	팜 올레인(palm olein)	Cat 0	0	
1511902000	팜 스테아린(palm stearin)	Cat 0	0	
1511909000	기타	Cat 0	0	
1512111000	해바라기씨유	Cat 0	0	
1512112000	잇꽃유	Cat 0	0	
1512191010	해바라기씨유	Cat 0	0	
1512191020	잇꽃유	Cat 0	0	
1512199010	해바라기씨유	Cat 0	0	
1512199020	잇꽃유	Cat 0	0	
1512210000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1512291000	정제유(精製油)	Cat 0	0	
1512299000	기타	Cat 0	0	
1513110000	조유(粗油)	Cat 0	0	
1513191000	정제유(精製油)	Cat 10	3	
1513199000	기타	Cat 10	3	
1513211000	팜핵유(palm kernel oil)	Cat 0	0	
1513212000	바바수유(babassu oil)	Cat 0	0	
1513291010	팜핵유(palm kernel oil)	Cat 0	0	
1513291020	바바수유(babassu oil)	Cat 0	0	
1513299000	기타	Cat 0	0	
1514110000	조유(粗油)	Cat 0	0	
1514191000	정제유(精製油)	EX	5	
1514199000	기타	Cat 10	5	
151491100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Cat 0	0	
1514912000	겨자유	Cat 0	0	
1514991010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Cat 15	5	
1514991020	겨자유	Cat 15	5	
1514999000	기타	Cat 15	5	
1515110000	조유(粗油)	Cat 0	0	
1515190000	기타	Cat 0	0	
1515210000	조유(粗油)	Cat 0	0	
1515290000	기타	Cat 0	0	
1515300000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Cat 0	0	
1515500000	참기름과 그 분획물	EX	504% 또는 9,648원/kg, 양자 중 고액(율)	
1515901000	들기름과 그 분획물	EX	18	
1515909010	쌀겨기름과 그 분획물	Cat 15	5	
1515909020	동백유와 그 분획물	Cat 0	0	
1515909030	호호바유(jojoba oil)와 그 분획물	Cat 0	0	
1515909040	통유(tung oil)와 그 분획물	Cat 0	0	
1515909090	기타	Cat 0	0	
1516101000	우지(牛脂)와 그 분획물	Cat 0	0	
1516102000	고래기름과 그 분획물	Cat 0	0	
1516109000	기타	Cat 0	0	
1516201010	말총기름과 그 분획물	SL	5	
1516201020	해바라기씨유와 그 분획물	Cat 0	0	
1516201030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1516201040	들기름과 그 분획물	EX	28.8	
1516201050	참기름과 그 분획물	EX	5	
1516202010	아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Cat 0	0	
1516202020	팜유와 그 분획물	Cat 0	0	
1516202030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Cat 0	0	
1516202040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Cat 0	0	
1516202050	대두유와 그 분획물	Cat 0	0	
1516202090	기타	Cat 10	5	
1517100000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Cat 0	0	
1517901000	이미테이션 라드	Cat 0	0	
1517902000	쇼트닝	Cat 0	0	
1517909000	기타	Cat 0	0	
1518001000	탈수피마자유	Cat 0	0	
1518002000	에폭시화(epoxidised)한 대두유	Cat 0	0	
1518009010	사료용	Cat 0	0	
1518009090	기타	Cat 0	0	
152000000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Cat 0	0	
1521101000	카나버 왁스	Cat 0	0	
1521102000	팜왁스	Cat 0	0	
1521109000	기타	Cat 0	0	
1521901000	경납(鯨蠟)	Cat 0	0	
1521902000	밀랍(蜜蠟)	Cat 0	0	
1521909000	기타	Cat 0	0	
1522001000	데그라스(degras)	Cat 0	0	
1522009000	기타	Cat 0	0	
1601001000	소시지	EX	14.4	
1601009000	기타	Cat 15	24	
1602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EX	24	
16022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2209000	기타	Cat 0	0	
16023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2319000	기타	Cat 0	0	
1602321010	삼계탕	EX	24	
1602321090	기타	EX	30	
1602329000	기타	EX	30	
16023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EX	24	
1602399000	기타	EX	24	
16024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EX	24	
1602419000	기타	EX	21.6	
16024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EX	24	
1602429000	기타	EX	21.6	
160249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EX	30	
1602499000	기타	EX	27	
16025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EX	57.6	
1602509000	기타	EX	57.6	
160290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2909000	기타	Cat 0	0	
1603001000	육 추출물(extract)	EX	24	
1603002000	육즙	SL	24	
1603003000	어류의 추출물(extract)	Cat 0	0	
1603004000	어류의 즙	Cat 0	0	
1603009000	기타	Cat 0	0	
160411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4119000	기타	Cat 0	0	
160412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4129000	기타	Cat 0	0	
160413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15	16	
1604139000	기타	Cat 0	0	
1604141011	가름에 담근 것	EX	20	
1604141012	삶은 것	Cat 15	20	
1604141019	기타	EX	20	
1604141021	가름에 담근 것	EX	20	
1604141022	삶은 것	Cat 15	20	
1604141029	기타	Cat 15	20	
1604141031	가름에 담근 것	EX	20	
1604141032	삶은 것	Cat 15	20	
1604141039	기타	EX	20	
1604149000	기타	EX	20	
160415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4159000	기타	Cat 0	0	
160416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4169000	기타	Cat 0	0	
1604171000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4179000	기타	EX	5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160418100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4189000	기타	EX	5	
1604191010	공차	Cat 0	0	
1604191020	전갱이	Cat 0	0	
1604191090	기타	Cat 0	0	
1604199010	취치포	Cat 0	0	
1604199090	기타	SL	5	
1604201000	생선 페이스트(paste)	Cat 0	0	
1604202000	생선 마리네이드(marinade)	Cat 0	0	
1604203000	생선 소시지	Cat 0	0	
1604204010	게맛의 것	EX	5	
1604204090	기타	EX	5	
1604209000	기타	EX	5	
1604310000	캐비아	Cat 0	0	
1604320000	캐비아 대용물	Cat 0	0	
160510101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101091	붉은대게살	Cat 0	0	
1605101099	기타	Cat 0	0	
1605109000	기타	Cat 0	0	
1605211000	빵가루를 압한 것	Cat 0	0	
1605219000	기타	EX	20	
1605290000	기타	Cat 0	0	
160530100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309000	기타	Cat 0	0	
160540100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409000	기타	Cat 0	0	
160551100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519000	기타	Cat 15	5	
160552100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529000	기타	SL	5	
160553100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539000	기타	Cat 0	0	
160554101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541090	기타	EX	5	
160554201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542091	조미오징어	EX	5/16	
1605542099	기타	EX	5	
160555100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559000	기타	EX	5	
160556101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561090	기타	SL	5	
160556201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562090	기타	SL	5	
160556901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569090	기타	Cat 15	5	
160557100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579000	기타	EX	5	
160558100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589000	기타	SL	5	
160559101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591090	기타	Cat 0	0	
160559201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592090	기타	SL	5	
160559901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599090	기타	EX	5	
160561100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619000	기타	Cat 0	0	
160562100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629000	기타	SL	5	
160563100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639000	기타	SL	5	
1605691000	밀페용기에 넣은 것	Cat 0	0	
1605699000	기타	EX	5	
1701121000	당도(糖度)가 98.5도 이하인 것	Cat 0	0	
1701122000	당도(糖度)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Cat 0	0	
1701130000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 당	Cat 0	3	
1701141000	당도(糖度)가 98.5도 이하인 것	Cat 0	3	
1701142000	당도(糖度)가 98.5도를 초과하는 것	Cat 10	3	
1701910000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EX	30	
1701990000	기타	EX	30	
1702111000	유당(乳糖)	Cat 0	0	
1702119000	유당(乳糖)시럽	Cat 0	0	
1702191000	유당(乳糖)	Cat 0	0	
1702199000	유당(乳糖)시럽	Cat 0	0	
1702201000	단풍당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1702202000	단풍당시럽	Cat 0	0	
1702301000	포도당	EX	5	
1702302000	포도당시럽	Cat 0	0	
1702401000	포도당	EX	5	
1702402000	포도당시럽	Cat 0	0	
1702500000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Cat 0	0	
1702601000	과당	EX	5	
1702602000	과당시럽	Cat 0	0	
1702901000	인조꿀	EX	194.4	
1702902000	캐러멜당	EX	5	
1702903000	맥아당	Cat 3	5	
1702909000	기타	Cat 15	5	
1703101000	주정 제조용	Cat 0	0	
1703109000	기타	Cat 0	0	
1703901000	주정 제조용	Cat 0	0	
1703909000	기타	Cat 0	0	
1704100000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1704901000	감초 추출물(과자로 만들어진 것은 제외한다)	Cat 10	8	
1704902010	드롭스(drops)	Cat 10	8	
1704902020	캐러멜	Cat 10	8	
1704902090	기타	Cat 10	8	
1704909000	기타	Cat 10	8	
1801001000	생 것	Cat 0	0	
1801002000	볶은 것	Cat 0	0	
1802001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Cat 0	0	
1802009000	기타	Cat 0	0	
1803100000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Cat 0	0	
1803200000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Cat 0	0	
180400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Cat 0	0	
180500000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Cat 0	0	
1806100000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8062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Cat 0	0	
18062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806209090	기타	Cat 0	0	
180631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Cat 0	0	
1806319000	기타	Cat 0	0	
180632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Cat 0	0	
1806329000	기타	Cat 0	0	
1806901000	초콜릿과 초콜릿과자	Cat 0	0	
1806902111	조제 분류	Cat 0	0	
1806902119	기타	Cat 0	0	
1806902191	오트밀의 것	Cat 0	0	
1806902199	기타	Cat 0	0	
1806902210	보릿가루의 것	Cat 0	0	
1806902290	기타	EX	5(쿼터 내)/513(쿼터 외)	
1806902910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EX	5	
1806902920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	Cat 0	0	
1806902991	오트밀의 것	Cat 0	0	
1806902992	보릿가루의 것	Cat 0	0	
1806902999	기타	EX	5(쿼터 내)/513(쿼터 외)	
1806903010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Cat 0	0	
1806903091	낱알 모양의 쌀	EX	6.4	
1806903099	기타	Cat 10	5	
1806909010	코코아 조제품(밀크분의 함유량이 100분의 50 이상의 것)	Cat 0	0	
1806909090	기타	Cat 0	0	
1901101010	조제 분류	EX	28.8	
1901101090	기타	EX	32	
1901109010	오트밀의 것	Cat 0	0	
1901109090	기타	Cat 0	0	
1901201000	쌀가루의 것	EX	5(쿼터 내)/513(쿼터 외)	
1901202000	보릿가루의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1901209000	기타	EX	5(쿼터 내)/513(쿼터 외)	
1901901000	맥아 추출물(extract)	EX	24	
190190201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EX	36	
1901902020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것	EX	36	
1901909010	오트밀	Cat 0	0	
1901909091	쌀가루의 것	EX	5(쿼터 내)/513(쿼터 외)	
1901909092	보릿가루의 것	Cat 0	0	
1901909099	기타	EX	5(쿼터 내)/513(쿼터 외)	
1902111000	스파게티	Cat 0	0	
1902112000	마카로니	Cat 0	0	
1902119000	기타	Cat 0	0	
1902191000	국수	Cat 15	5	
1902192000	당면	Cat 5	5	
1902193000	냉면	Cat 0	0	
1902199000	기타	Cat 0	0	
1902200000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1902301010	라면	Cat 0	0	
1902301090	기타	Cat 0	0	
1902309000	기타	Cat 0	0	
1902400000	쿠스쿠스(couscous)	Cat 0	0	
1903001000	타피오카	Cat 0	0	
1903009000	기타	Cat 0	0	
1904101000	콘 플레이크(corn flake)	Cat 0	0	
1904102000	콘 칩	Cat 0	0	
1904103000	튀긴 쌀	Cat 0	0	
1904109000	기타	Cat 5	5	
1904201000	무슬리(Musli) 형태의 조제 식료품	SL	5	
1904209000	기타	Cat 15	5	
1904300000	불거 밀(bulgur wheat)	Cat 0	0	
1904901010	찌거나 삶은 쌀	EX	40	
1904901090	기타	EX	8	
1904909000	기타	Cat 15	5	
1905100000	귀리빵	Cat 0	0	
1905200000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1905310000	스위트 비스킷	Cat 0	0	
1905320000	와플과 웨이퍼	Cat 0	0	
1905400000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Cat 0	0	
1905901010	빵	Cat 0	0	
1905901020	건빵	Cat 0	0	
1905901030	파이와 케이크	Cat 0	0	
1905901040	비스킷, 쿠키와 크래커	Cat 0	0	
1905901050	쌀과자	Cat 15	5	
1905901090	기타	Cat 0	0	
1905909010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Cat 0	0	
1905909020	라이스 페이퍼	Cat 15	5	
1905909090	기타	Cat 0	0	
2001100000	오이류	Cat 0	0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Cat 15	24	
2001909010	쪽파	Cat 0	0	
2001909020	토마토	Cat 0	0	
2001909030	꽃양배추	Cat 0	0	
2001909040	스위트콘	Cat 15	5	
2001909050	염교(rakkyo)	Cat 0	0	
2001909060	마늘	EX	24	
2001909070	양파	EX	24	
2001909090	기타	EX	15	
2002100000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Cat 0	0	
2002901000	토마토 페이스트(paste)(가용성 고형분이 100분의 2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002909000	기타	Cat 0	0	
2003104000	양송이 버섯	Cat 0	0	
2003109000	기타	Cat 0	0	
2003901000	표고버섯	Cat 0	0	
2003902000	송이버섯	Cat 0	0	
2003903000	송로(松露)	Cat 0	0	
20039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004100000	감자	EX	5	
2004901000	스위트콘	Cat 0	0	
2004909000	기타	Cat 0	0	
2005101000	유아용 퓨레콘(pureed corn)	Cat 0	0	
2005109000	기타	Cat 0	0	
2005201000	플레이크로 만든 감자크로켓	Cat 0	0	
2005209000	기타	Cat 0	0	
2005400000	완두 [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Cat 0	0	
2005511000	녹두	Cat 0	0	
2005512000	팥	Cat 0	0	
2005519000	기타	Cat 0	0	
2005591000	녹두	Cat 0	0	
2005592000	팥	Cat 0	0	
2005599000	기타	Cat 0	0	
2005600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Cat 0	0	
2005700000	올리브	Cat 0	0	
2005800000	스위트콘 [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Cat 10	5	
2005910000	죽순	Cat 0	0	
2005991000	김치	EX	16	
2005992000	사우어크라우트(sauerkraut)	Cat 0	0	
2005994000	고려엉겅퀴(곤드레)	Cat 0	0	
2005999000	기타	Cat 0	0	
2006001000	마롱 글라세(marrons glacés)	EX	24	
2006002000	파인애플	Cat 15	24	
2006003000	생강	EX	15	
2006004000	연 뿌리	Cat 0	0	
2006005000	완두 [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Cat 0	0	
2006006010	껍질을 제거한 콩	Cat 0	0	
2006006090	기타	Cat 0	0	
2006007000	아스파라거스(asparagus)	Cat 0	0	
2006008000	올리브	Cat 0	0	
2006009010	스위트콘 [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Cat 0	0	
2006009020	죽순	Cat 0	0	
2006009030	그 밖의 채소	Cat 0	0	
2006009090	기타	Cat 0	0	
2007100000	균질화한 조제품	Cat 0	0	
2007911000	잼 · 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Cat 5	5	
2007919000	기타	Cat 0	0	
2007991000	잼 · 과실젤리와 마멀레이드(marmalade)	EX	24	
2007999000	기타	Cat 0	0	
2008111000	피넛 버터	Cat 0	0	
2008119000	기타	EX	51.1	
2008191000	밤	Cat 0	0	
2008192000	코코넛	Cat 0	0	
2008199000	기타	Cat 0	0	
2008200000	파인애플	Cat 7	36	
2008301000	유자	EX	36	
2008309000	기타	EX	36	
2008400000	배	EX	36	
2008500000	살구	SL	5	
2008600000	체리	SL	5	
200870100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Cat 0	0	
2008709000	기타	Cat 0	0	
2008800000	초본류 딸기	EX	5	
2008910000	팜 하트(palm heart)	Cat 0	0	
2008930000	크랜베리(cranberry) [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SL	36	
2008971010	설탕을 첨가한 밀폐용기에 넣은 것	EX	40	
2008971090	기타	EX	36	
2008972000	과실 샐러드	EX	5	
2008979000	기타	EX	36	
2008991000	포도	EX	36	
2008992000	사과	EX	22.5	
2008993000	팥콘	Cat 15	36	
2008994000	소금에 절인 초피	SL	36	
2008999000	기타	SL	36	
2009110000	냉동한 것	EX	27	
2009120000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EX	5	
2009190000	기타	EX	27	
2009210000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009290000	기타	Cat 0	0	
2009311000	레몬주스	Cat 15	5	
2009312000	라임주스	Cat 15	5	
2009319000	기타	EX	5	
2009391000	레몬주스	Cat 0	0	
2009392000	라임주스	Cat 15	5	
2009399000	기타	Cat 15	5	
2009410000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Cat 15	40	
2009490000	기타	Cat 15	5	
2009500000	토마토주스	Cat 0	0	
2009610000	브릭스(Brix) 값이 30을 초과하지 않은 것	Cat 0	0	
2009690000	기타	EX	5	
2009710000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EX	5	
2009790000	기타	Cat 0	0	
2009810000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SL	40	
2009891010	복숭아주스	EX	40	
2009891020	딸기주스	Cat 0	0	
2009891090	기타	EX	40	
2009892000	채소 주스	Cat 0	0	
2009901010	오렌지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Cat 0	0	
2009901020	사과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Cat 0	0	
2009901030	포도주스를 주요 재료로 만든 것	Cat 0	0	
2009901090	기타	Cat 0	0	
2009902000	채소로 만든 것	Cat 0	0	
2009909000	기타	Cat 0	0	
2101111000	인스턴트 커피	Cat 0	0	
2101119000	기타	Cat 0	0	
2101121000	인스턴트 커피의 조제품	Cat 10	8	
2101129010	말크 · 크림 또는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Cat 10	8	
2101129090	기타	Cat 10	8	
2101201000	설탕 · 레몬이나 이들의 대용물을 함유한 것	EX	5	
2101209011	티백 포장의 것	EX	20	
2101209019	기타	SL	20	
2101209090	기타	EX	20	
2101301000	보리의 것	Cat 0	0	
2101309000	기타	Cat 0	0	
2102101000	알조효모	Cat 0	0	
2102102000	증류효모	Cat 0	0	
2102103000	제빵효모	Cat 0	0	
2102104000	배양효모	Cat 0	0	
2102109000	기타	Cat 0	0	
2102201000	불활성 효모	Cat 0	0	
2102202000	누룩	Cat 0	0	
2102203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Cat 0	0	
2102203090	기타	Cat 0	0	
2102204010	둥글넓적한 모양의 것	Cat 0	0	
2102204090	기타	Cat 0	0	
2102209000	기타	Cat 0	0	
2102300000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Cat 0	0	
2103100000	간장	EX	5	
2103201000	토마토 케첩	Cat 0	0	
2103202000	토마토 소스	Cat 0	0	
2103301000	겨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Cat 0	0	
2103302000	조제한 겨자	Cat 0	0	
2103901010	된장	EX	5	
2103901020	춘장	SL	5	
2103901030	고추장	EX	5	
2103901090	기타	Cat 0	0	
2103909010	마요네스	Cat 0	0	
2103909020	인스턴트 카레	Cat 0	0	
2103909030	혼합조미료	EX	36	
2103909040	메주	EX	5	
2103909090	기타	EX	36	
2104101000	육류로 만든 것	Cat 0	0	
2104102000	어류로 만든 것	Cat 0	0	
2104103000	채소로 만든 것	Cat 0	0	
2104109000	기타	Cat 0	0	
2104200000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품	SL	24	
2105001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Cat 0	0	
2105001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105009010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Cat 0	0	
2105009090	기타	Cat 0	0	
2106101000	두부	SL	5	
2106109020	단백질 농축물	Cat 0	0	
2106109030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 계 물질	Cat 0	0	
2106901010	콜라 베이스	Cat 0	0	
2106901020	과일향의 음료베이스	Cat 0	0	
2106901090	기타	Cat 0	0	
2106902000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106903011	인삼차	Cat 0	0	
2106903019	기타	Cat 0	0	
2106903021	홍삼차	EX	603.4	
2106903029	기타	EX	603.4	
2106904010	김	SL	5	
2106904090	기타	Cat 0	0	
2106909010	커파크리머	Cat 0	0	
2106909021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SL	5	
2106909022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0 초과 100분의 70 이하인 것	SL	5	
2106909023	버터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을 초과하는 것	SL	5	
2106909030	아이스크림 제조용 조제품	Cat 0	0	
2106909040	자기소화효모(autolyzed yeast)와 그 밖의 효모 추출물(extract)	Cat 0	0	
2106909050	향미(香味)용 조제품	Cat 5	5	
2106909060	도토리 가루	Cat 0	0	
2106909070	알로에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Cat 0	0	
2106909080	음료 제조용 조제품[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하며, 알코올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106909091	로열젤리, 벌꿀조제품의 것	Cat 0	0	
2106909099	기타	Cat 0	0	
2201100000	광천수와 탄산수	Cat 0	0	
2201901000	알음과 눈	Cat 0	0	
2201909000	기타	Cat 0	0	
2202101000	색깔을 입힌 것	Cat 0	0	
2202109000	기타	Cat 0	0	
2202910000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Cat 0	0	
2202991000	인삼음료	EX	5	
2202992000	과실주스 음료	Cat 10	5	
2202993000	식혜	Cat 0	0	
2202999000	기타	Cat 0	0	
2203000000	맥주	Cat 15	15	
2204100000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Cat 0	0	
2204211000	붉은 포도주	Cat 0	0	
2204212000	흰 포도주	Cat 0	0	
2204219000	기타	Cat 0	0	
2204221000	붉은 포도주	Cat 0	0	
2204222000	흰 포도주	Cat 0	0	
2204229000	기타	Cat 0	0	
2204291000	붉은 포도주	Cat 0	0	
2204292000	흰 포도주	Cat 0	0	
2204299000	기타	Cat 0	0	
2204300000	그 밖의 포도즙	Cat 0	0	
2205100000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Cat 0	0	
2205900000	기타	Cat 0	0	
2206001010	사과주	Cat 0	0	
2206001020	배술	Cat 0	0	
2206001090	기타	Cat 0	0	
2206002010	청주	Cat 0	0	
2206002020	약주	Cat 0	0	
2206002030	탁주	Cat 0	0	
2206002090	기타	Cat 15	5	
2206009010	와인쿨러(제2009호나 제2202호의 물품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하며, 포도를 원료로 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2206009090	기타	Cat 0	0	
2207101000	조주정(粗酒精)	EX	5	
2207109010	주류 제조용 발효주정	EX	216	
2207109090	기타	Cat 0	0	
2207200000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Cat 0	0	
2208201000	꼬냇	Cat 15	5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208209000	기타	Cat 10	5	
2208301000	스카시 위스키	SL	5	
2208302000	버본 위스키	Cat 0	0	
2208303000	라이(rye) 위스키	Cat 0	0	
2208309000	기타	Cat 10	5	
2208400000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Cat 10	5	
2208500000	진(gin)과 제네바(geneva)	Cat 10	5	
2208600000	보드카	Cat 10	5	
2208701000	인삼주	Cat 0	0	
2208702000	오가피주	Cat 0	0	
2208709000	기타	SL	5	
2208901000	브랜디류(소호 제2208.20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5	5	
2208904000	소주	Cat 0	0	
2208906000	고량주	Cat 0	0	
2208907000	대궐라	Cat 0	0	
2208909000	기타	Cat 10	5	
2209001000	양조식초	Cat 0	0	
2209009000	기타	Cat 0	0	
2301101000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Cat 0	0	
2301102000	수지방(greaves)	Cat 0	0	
2301201000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	Cat 0	0	
2301209000	기타	SL	5	
2302100000	옥수수에서 나온 것	Cat 0	0	
2302300000	밀에서 나온 것	Cat 0	0	
2302401000	쌀에서 나온 것	Cat 0	0	
2302409000	기타	Cat 0	0	
2302500000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Cat 0	0	
2303100000	잔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Cat 0	0	
2303200000	비트펄프(beet-pulp), 버갸스(bagasse)와 그 밖의 설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Cat 0	0	
2303301000	사료용	Cat 0	0	
2303309000	기타	Cat 0	0	
2304000000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230500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2306100000	목화씨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200000	아마씨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300000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410000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490000	기타	Cat 0	0	
2306500000	아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600000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901000	참깨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902000	들깨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903000	옥수수 씨눈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909000	기타	Cat 0	0	
2307000000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Cat 0	0	
2308001000	도토리	Cat 0	0	
2308002000	마로니에 열매	Cat 0	0	
2308003000	목화씨 껍질	Cat 0	0	
2308009000	기타	EX	5	
2309101000	개 사료	Cat 0	0	
2309102000	고양이 사료	Cat 0	0	
2309901010	양돈용	Cat 0	0	
2309901020	양계용	Cat 0	0	
2309901030	어류용	Cat 0	0	
2309901040	축우용	Cat 0	0	
2309901091	대용유(代用乳)	Cat 0	0	
2309901099	기타	Cat 0	0	
2309902010	무기물 혹은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 (미량 광물질을 주로 한 것은 제외한다)	SL	40.4	
2309902020	향미제(香味劑)를 주로 한 것	SL	40.4	
2309902091	1994.12.31 현재 수입자동승인 품목	Cat 0	0	
2309902099	기타	Cat 15	40.4	
2309903010	항생물질을 주로 한 것	Cat 0	0	
2309903020	비타민을 주로 한 것	Cat 0	0	
2309903030	미량 광물질(mineral)을 주로 한 것	Cat 0	0	
2309903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309909010	낚시용 떡밥	SL	5	
2309909090	기타	Cat 15	40.4	
2401101000	황색종(種)	Cat 0	0	
2401102000	버어리(burley)종(種)	Cat 0	0	
2401103000	오리엔트종(種)	Cat 0	0	
2401109000	기타	Cat 0	0	
2401201000	황색종	Cat 0	0	
2401202000	버어리(burley)종(種)	Cat 0	0	
2401203000	오리엔트종(種)	Cat 0	0	
2401209000	기타	Cat 0	0	
2401301000	잎의 주맥(主脈)	Cat 0	0	
2401302000	잎 부스러기	Cat 0	0	
2401309000	기타	Cat 0	0	
2402101000	시가(cigar)	Cat 0	0	
2402102000	셔루트(cheroot)	Cat 0	0	
2402103000	시가릴로(cigarillo)	Cat 0	0	
2402201000	필터담배	Cat 0	0	
2402209000	기타	Cat 0	0	
2402900000	기타	Cat 0	0	
2403110000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Cat 0	0	
2403191000	파이프 담배	Cat 0	0	
2403199000	기타	Cat 0	0	
2403911000	판상엽(板狀葉)	Cat 0	0	
2403919000	기타	Cat 0	0	
2403991000	쌌는 담배	Cat 0	0	
2403992000	코 담배	Cat 0	0	
2403993000	담배의 추출물(extracts)과 에센스(essence)	Cat 0	0	
2403994000	입안에 머금은 담배(예: 스누스)	Cat 0	0	
2403999000	기타	Cat 0	0	
2501001010	암염(岩鹽)	Cat 0	0	
2501001020	천일염	Cat 0	0	
2501009010	식염	Cat 0	0	
2501009020	순염화나트륨	Cat 0	0	
2501009090	기타	Cat 0	0	
250200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5030000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Cat 0	0	
2504101000	인상(鱗狀)흑연	Cat 0	0	
2504102000	토상(土狀)흑연	Cat 0	0	
2504109000	기타	Cat 0	0	
2504901000	인상(鱗狀)흑연	Cat 0	0	
2504902000	토상(土狀)흑연	Cat 0	0	
2504909000	기타	Cat 0	0	
2505100000	규사	Cat 0	0	
2505901010	점토사	Cat 0	0	
2505901020	장석사(長石砂)	Cat 0	0	
2505901090	기타	Cat 0	0	
2505909000	기타	Cat 0	0	
2506101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미만인 것	Cat 0	0	
2506102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06 이상 100분의 0.1 이하인 것	Cat 0	0	
2506103000	불순물의 함유량이 100분의 0.1을 초과하는 것	Cat 0	0	
250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Cat 0	0	
2506209000	기타	Cat 0	0	
2507001010	하소(假燒)하지 않은 것	Cat 0	0	
2507001090	기타	Cat 0	0	
2507002010	와목점토(蛙目粘土)	Cat 0	0	
2507002020	목절점토(木節粘土)	Cat 0	0	
2507002090	기타	Cat 0	0	
2507009000	기타	Cat 0	0	
2508100000	벤토나이트(bentonite)	Cat 0	0	
2508300000	내화(耐火)점토	Cat 0	0	
2508401000	산성백토	Cat 0	0	
2508402000	탈색토(奪色土)와 표포토(漂布土)	Cat 0	0	
2508409000	기타	Cat 0	0	
2508501000	홍주석(紅柱石)	Cat 0	0	
2508502000	남정석(藍晶石)	Cat 0	0	
2508503000	규선석(珉線石)	Cat 0	0	
2508600000	몰라이트(mullite)	Cat 0	0	
2508701000	사모트(chamotte)	Cat 0	0	
2508702000	다이너스 어스(dinas earth)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509000000	초크	Cat 0	0	
2510101000	천연 인산칼슘	Cat 0	0	
2510109000	기타	Cat 0	0	
2510201000	천연 인산칼슘	Cat 0	0	
2510202000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Cat 0	0	
2510209000	기타	Cat 0	0	
2511100000	천연 황산바탕[중정석(重晶石)]	Cat 0	0	
2511200000	천연 탄산바탕[독중석(毒重石)]	Cat 0	0	
2512000000	규조토[예: 키셀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 [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겔보 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513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불규칙한 조각[잘게 부순 부석(邦스키)을 포함한다]	Cat 0	0	
2513109000	기타	Cat 0	0	
2513201010	금강사(金剛砂)	Cat 0	0	
2513201020	천연 커런덤(corundum)	Cat 0	0	
2513201030	천연 석류석	Cat 0	0	
2513201090	기타	Cat 0	0	
2513202010	금강사(金剛砂)	Cat 0	0	
2513202020	천연 커런덤(corundum)	Cat 0	0	
2513202030	천연 석류석	Cat 0	0	
2513202090	기타	Cat 0	0	
25140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Cat 0	0	
2514009000	기타	Cat 0	0	
2515111000	대리석	Cat 0	0	
2515112000	트래버틴(travertine)	Cat 0	0	
2515121000	대리석	Cat 0	0	
2515122000	트래버틴(travertine)	Cat 0	0	
2515200000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 석고(alabaster)	Cat 0	0	
2516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Cat 0	0	
2516120000	통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Cat 0	0	
25162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Cat 0	0	
2516209000	통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Cat 0	0	
251690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Cat 0	0	
2516909000	기타	Cat 0	0	
2517101000	자갈	Cat 0	0	
2517102000	쇄석(碎石)	Cat 0	0	
2517109000	기타	Cat 0	0	
2517200000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2517300000	타르 머캐덤(tar macadam)	Cat 0	0	
2517410000	대리석으로 만든 것	Cat 0	0	
2517491000	현무암으로 만든 것	Cat 0	0	
2517492000	화강암으로 만든 것	Cat 0	0	
2517499000	기타	Cat 0	0	
2518100000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Cat 0	0	
2518200000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Cat 0	0	
2518300000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Cat 0	0	
2519100000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Cat 0	0	
2519901000	용융(溶融)·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Cat 0	0	
2519902000	천연 산화마그네슘	Cat 0	0	
2519909000	기타	Cat 0	0	
2520101000	석고	Cat 0	0	
2520102000	무수(無水)석고	Cat 0	0	
2520201000	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하소하거나 미세하게 분쇄한 것	Cat 0	0	
2520209000	기타	Cat 0	0	
2521001000	석회석	Cat 0	0	
2521009000	기타	Cat 0	0	
2522100000	생석회(生石灰)	Cat 0	0	
2522200000	소석회(消石灰)	Cat 0	0	
2522300000	수경성(水硬性) 석회	Cat 0	0	
2523100000	시멘트 클링커(clinker)	Cat 10	5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523210000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10	5	
2523290000	기타	EX	5	
2523300000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Cat 0	0	
2523901000	슬래그(slag) 시멘트	Cat 10	5	
2523909000	기타	Cat 0	0	
2524100000	청(靑)석면	Cat 0	0	
2524901000	갈(褐)석면	Cat 0	0	
2524902000	백(白)석면	Cat 0	0	
2524909000	기타	Cat 0	0	
2525100000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쪼갬 운모	Cat 0	0	
2525200000	운모 가루	Cat 0	0	
2525300000	운모 웨이스트(waste)	Cat 0	0	
2526101000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Cat 0	0	
2526109000	기타	Cat 0	0	
2526200000	부수거나 가루인 것	Cat 0	0	
2528001000	천연 봉산나트륨과 그 정광(精鑛)[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2528002000	봉산칼슘	Cat 0	0	
2528003000	염화봉산마그네슘	Cat 0	0	
2528004000	천연 봉산	Cat 0	0	
2528009000	기타	Cat 0	0	
2529100000	장석(長石)	Cat 0	0	
2529211000	가루	Cat 0	0	
2529219000	기타	Cat 0	0	
2529221000	가루	Cat 0	0	
2529229000	기타	Cat 0	0	
2529301000	백류석(白榴石)	Cat 0	0	
2529302000	하석(霞石)	Cat 0	0	
2529303000	하석 석장암(霞石 閃長巖)	Cat 0	0	
2530101000	질석(蛭石)	Cat 0	0	
2530102000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	Cat 0	0	
2530200000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Cat 0	0	
2530901000	천연 황화비소	Cat 0	0	
2530902000	건전지 제조용에 적합한 연망간광	Cat 0	0	
2530903000	스트론티아나이트(strontianite)	Cat 0	0	
2530904000	주사(朱沙)	Cat 0	0	
2530905000	납석(蠟石)	Cat 0	0	
2530906000	불석(沸石)	Cat 0	0	
2530907000	명반석(明礬石)	Cat 0	0	
2530908000	규회석(珉灰石)	Cat 0	0	
2530909010	도석(陶石)	Cat 0	0	
2530909020	견운모(絹雲母)	Cat 0	0	
2530909030	어스컬러(earth colour)	Cat 0	0	
2530909040	천연의 운모상 산화철	Cat 0	0	
2530909050	천연 빙정석(氷晶石)과 천연 치올라이트(chiolite)	Cat 0	0	
2530909091	천연탄산칼슘	Cat 0	0	
2530909099	기타	Cat 0	0	
2601111000	적(赤)철광	Cat 0	0	
2601112000	자(磁)철광	Cat 0	0	
2601119000	기타	Cat 0	0	
2601121000	적(赤)철광	Cat 0	0	
2601122000	자(磁)철광	Cat 0	0	
2601129000	기타	Cat 0	0	
2601200000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Cat 0	0	
260200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총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Cat 0	0	
260300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0400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0500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0600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0700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0800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0900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00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1001000	흑중석(wolframite)	Cat 0	0	
2611002000	회중석(scheelite)	Cat 0	0	
26110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612100000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2200000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3100000	배소(焙燒)한 것	Cat 0	0	
2613900000	기타	Cat 0	0	
2614001000	금홍석(rutile)	Cat 0	0	
2614009000	기타	Cat 0	0	
2615100000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5901000	니오븀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5902000	탄탈륨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5903000	바나듐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6100000	은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6901000	금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6902000	백금광과 그 정광(精鑛)[백금족의 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Cat 0	0	
2617100000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7901000	수은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7902000	게르마늄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7904000	비스무트(bismuth)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7909000	기타	Cat 0	0	
261800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Cat 0	0	
2619001010	용광로 슬래그(slag)	Cat 0	0	
2619001090	기타	Cat 0	0	
2619002000	드로스(dross)	Cat 0	0	
2619003000	스케일링(scaling)	Cat 0	0	
2619009000	기타	Cat 0	0	
2620110000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Cat 0	0	
2620190000	기타	Cat 0	0	
2620210000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Cat 0	0	
2620290000	기타	Cat 0	0	
2620300000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Cat 0	0	
2620400000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Cat 0	0	
2620600000	비스,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Cat 0	0	
2620910000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Cat 0	0	
2620990000	기타	Cat 0	0	
2621100000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Cat 0	0	
2621900000	기타	Cat 0	0	
2701110000	무연탄	Cat 0	0	
2701121000	강점결성 코크스용 탄	Cat 0	0	
2701122000	그 밖의 코크스용 탄	Cat 0	0	
2701129010	취발성 물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2 미만인 것(건조하고 광물질이 없는 상태 기준에 의한다)	Cat 0	0	
2701129090	기타	Cat 0	0	
2701190000	그 밖의 석탄	Cat 0	0	
2701201000	연탄	Cat 0	0	
2701202000	조개탄(ovoid)	Cat 0	0	
2701209000	기타	Cat 0	0	
2702100000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Cat 0	0	
2702200000	응결시킨 갈탄	Cat 0	0	
2703001000	응결시키지 않은 것	Cat 0	0	
2703002000	응결시킨 것	Cat 0	0	
2704001010	석탄에서 제조한 것	Cat 0	0	
2704001090	기타	Cat 0	0	
2704002000	반성(半成) 코크스	Cat 0	0	
2704003000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Cat 0	0	
270500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Cat 0	0	
2706001000	콜타르(coal tar)	Cat 0	0	
2706009000	기타	Cat 0	0	
2707100000	벤조올(벤젠)	Cat 0	0	
2707200000	톨루올(톨루엔)	Cat 0	0	
2707300000	크실렌(크실렌)	Cat 0	0	
2707400000	나프탈렌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707500000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아이·에스·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86의 방법과 동등}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 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707910000	크레오소트(cresote)유	Cat 0	0	
2707991000	솔벤트 나프타(solvent naphtha)	Cat 0	0	
2707992000	안트라센(anthracene)	Cat 0	0	
2707993000	페놀(석탄산)	Cat 0	0	
2707999000	기타	Cat 0	0	
2708100000	피치(pitch)	Cat 0	0	
2708200000	피치코크스(pitch cokes)	Cat 0	0	
270900101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796 초과 0.841 이하인 것	Cat 0	0	
270900102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1 초과 0.847 이하인 것	Cat 0	0	
270900103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47 초과 0.855 이하인 것	Cat 0	0	
270900104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55 초과 0.869 이하인 것	Cat 0	0	
270900105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69 초과 0.885 이하인 것	Cat 0	0	
270900106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85 초과 0.899 이하인 것	Cat 0	0	
270900107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899 초과 0.904 이하인 것	Cat 0	0	
2709001080	섭씨 15도에서 비중이 0.904 초과 0.966 이하인 것	Cat 0	0	
2709001090	기타	Cat 0	0	
2709002000	역청유(瀝靑油)	Cat 0	0	
2710121000	자동차 휘발유	EX	3	
2710122000	항공 휘발유	Cat 0	0	
271012300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Cat 0	0	
2710124000	나프타	Cat 0	0	
2710125000	엔지엘(NGL)	Cat 0	0	
2710129000	기타	Cat 0	5	
2710191010	제트 연료유	Cat 0	0	
2710191090	기타	Cat 10	5	
2710192010	등유	EX	3	
2710192020	제트 연료유	EX	3	
2710192030	노르말-파라핀(n-paraffin)	Cat 0	0	
2710192090	기타	EX	5	
2710193000	경유	EX	3	
2710194010	경질(輕質)중유(벵커에이유)	Cat 0	3	
2710194020	중유(벵커비유)	Cat 0	3	
2710194030	벵커시유	Cat 0	3	
2710194090	기타	Cat 0	5	
2710195010	조유(粗油)	Cat 0	5	
2710195020	윤활유 기유(基油)	Cat 15	5	
2710196000	신장유(extender oil)	Cat 0	0	
2710197110	항공기용 기관오일	Cat 0	0	
2710197120	자동차용 기관오일	Cat 0	0	
2710197130	선박용 기관오일	Cat 0	0	
2710197210	실린더오일	Cat 0	0	
2710197220	스핀들(spindle)오일	Cat 0	0	
2710197230	기어오일	Cat 0	0	
2710197240	터빈오일	Cat 0	0	
2710197250	냉동기오일	Cat 0	0	
2710197310	컴파운드오일	Cat 0	0	
2710197320	유동파라핀	Cat 0	0	
2710197330	자동차용기용 윤활유	Cat 0	0	
2710197410	방청유(anti-corrosive oil)	Cat 0	0	
2710197420	절삭유	Cat 0	0	
2710197430	세척유	Cat 0	0	
2710197440	주형이형유	Cat 0	0	
2710197450	유압브레이크유	Cat 0	0	
2710197510	프로세스유	Cat 0	0	
2710197520	전기전열유	Cat 0	0	
2710197530	열처리유	Cat 0	0	
2710197540	열매체유	Cat 0	0	
2710197900	기타	Cat 0	0	
27101980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Cat 0	0	
2710198020	칼슘을 첨가한 것	Cat 0	0	
27101980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Cat 0	0	
2710198040	리튬을 첨가한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710198090	기타	Cat 0	0	
2710199000	기타	Cat 0	0	
2710201010	자동차 휘발유	EX	5	
2710201020	항공 휘발유	Cat 0	0	
2710201030	프로필렌테트라머(propylene tetramer)	Cat 0	0	
2710201040	나프타	Cat 0	0	
2710201050	엔지엘(NGL)	Cat 0	0	
2710201090	기타	Cat 0	5	
2710209110	제트 연료유	Cat 0	0	
2710209190	기타	Cat 0	5	
2710209210	등유	EX	5	
2710209220	제트 연료유	EX	5	
2710209230	노르말-파라핀(n-paraffin)	Cat 0	0	
2710209290	기타	EX	5	
2710209300	경유	EX	5	
2710209410	경질(輕質)중유(벵커에이유)	Cat 0	5	
2710209420	중유(벵커비유)	Cat 0	5	
2710209430	벵커시유	Cat 0	5	
2710209490	기타	Cat 0	5	
2710209510	조유(粗油)	Cat 0	5	
2710209520	윤활유 기유(基油)	EX	5	
2710209600	신전유(extender oil)	Cat 0	0	
2710209711	항공기용 기관오일	Cat 0	0	
2710209712	자동차용 기관오일	Cat 0	0	
2710209713	선박용 기관오일	Cat 0	0	
2710209721	실린더오일	Cat 0	0	
2710209722	스핀들(spindle)오일	Cat 0	0	
2710209723	기어오일	Cat 0	0	
2710209724	터빈오일	Cat 0	0	
2710209725	냉동기오일	Cat 0	0	
2710209731	콤파운드오일	Cat 0	0	
2710209732	유도파라핀	Cat 0	0	
2710209733	자동변속기용 윤활유	Cat 0	0	
2710209741	방청유	Cat 0	0	
2710209742	절삭유	Cat 0	0	
2710209743	세척유	Cat 0	0	
2710209744	주형이형유	Cat 0	0	
2710209745	유압브레이크유	Cat 0	0	
2710209751	프로세스유	Cat 0	0	
2710209752	전기전열유	Cat 0	0	
2710209753	열처리유	Cat 0	0	
2710209754	열매체유	Cat 0	0	
2710209790	기타	Cat 0	0	
2710209810	알루미늄을 첨가한 것	Cat 0	0	
2710209820	칼슘을 첨가한 것	Cat 0	0	
2710209830	나트륨을 첨가한 것	Cat 0	0	
2710209840	리튬을 첨가한 것	Cat 0	0	
2710209890	기타	Cat 0	0	
2710209900	기타	Cat 0	0	
2710911010	자동차 휘발유 · 항공 휘발유 · 제트 연료유의 것	Cat 0	0	
271091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Cat 0	0	
2710911090	기타	Cat 0	0	
271091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Cat 0	0	
2710912090	기타	Cat 0	0	
2710913000	경유로 만든 것	Cat 0	0	
2710914010	경질(輕質)중유(벵커에이유) · 중유(벵커비유) · 벵커시유의 것	Cat 0	0	
2710914090	기타	Cat 0	0	
2710915000	조유(粗油) · 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 · 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Cat 0	0	
2710919000	기타	Cat 0	0	
2710991010	자동차 휘발유 · 항공 휘발유 · 제트 연료유의 것	Cat 0	0	
2710991020	나프타와 엔지엘(NGL)의 것	Cat 0	0	
2710991090	기타	Cat 0	0	
2710992010	등유와 제트 연료유의 것	Cat 0	0	
2710992090	기타	Cat 0	0	
2710993000	경유로 만든 것	Cat 0	0	
2710994010	경질(輕質)중유(벵커에이유) · 중유(벵커비유) · 벵커시유의 것	Cat 0	0	
2710994090	기타	Cat 0	0	
2710995000	조유(粗油) · 윤활유[신전유(extender oil)는 제외한다] · 윤활유 기유(基油)의 것	Cat 0	0	
2710999000	기타	Cat 0	0	
2711110000	천연가스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711120000	프로판	Cat 0	0	
2711130000	부탄	Cat 0	0	
2711141000	에틸렌	Cat 0	0	
2711142000	프로필렌	Cat 0	0	
2711143000	부틸렌	Cat 0	0	
2711144000	부타디엔	Cat 0	0	
2711190000	기타	Cat 0	0	
2711210000	천연가스	Cat 0	0	
2711290000	기타	Cat 0	0	
2712101000	바셀린	Cat 0	0	
2712109000	기타	Cat 0	0	
2712200000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712901010	슬랙왁스와 스케일왁스	Cat 0	0	
2712901020	마이크로크리스탈린왁스	Cat 0	0	
2712901090	기타	Cat 0	0	
2712909010	문탄왁스	Cat 0	0	
2712909020	토탄왁스	Cat 0	0	
2712909030	세래신왁스	Cat 0	0	
2712909040	합성 파라핀왁스	Cat 0	0	
2712909090	기타	Cat 0	0	
2713110000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Cat 0	0	
2713120000	하소(煨燒)한 것	Cat 0	0	
2713200000	석유역청(瀝靑)	Cat 0	0	
2713900000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Cat 0	0	
2714100000	역청질 철암(瀝靑質 眞巖) · 유모 철암(油母 眞巖), 타르샌드(tar sand)	Cat 0	0	
2714901000	천연의 역청(瀝靑)과 아스팔트	Cat 0	0	
2714902000	아스팔타이트	Cat 0	0	
2714903000	아스팔트질의 암석	Cat 0	0	
2715001000	컷백(cut-back)	Cat 0	0	
2715002000	아스팔트 · 역청(瀝靑) · 피치(pitch) · 타르의 에멀션(emulsion)이나 안정분산액	Cat 0	0	
2715003000	매스틱(mastic)	Cat 0	0	
2715009000	기타	Cat 0	0	
2716000000	전기에너지	Cat 0	0	
2801100000	염소	Cat 0	0	
2801200000	요드	Cat 0	0	
2801301000	플루오르	Cat 0	0	
2801302000	브롬	Cat 0	0	
2802001000	승화황(昇華黃)	Cat 0	0	
2802002000	침강황(沈降黃)	Cat 0	0	
2802003000	콜로이드황	Cat 0	0	
2803001000	아세틸렌 블랙	Cat 0	0	
2803009011	이차전지 제조용	Cat 0	0	
2803009019	기타	Cat 0	0	
2803009090	기타	Cat 0	0	
2804100000	수소	Cat 0	0	
2804210000	아르곤	Cat 0	0	
2804291000	헬륨	Cat 0	0	
2804292000	네온	Cat 0	0	
2804293000	크립톤	Cat 0	0	
2804294000	크세논	Cat 0	0	
2804299000	기타	Cat 0	0	
2804300000	질소	Cat 0	0	
2804400000	산소	Cat 0	0	
2804501000	불소	Cat 0	0	
2804502000	텔루르	Cat 0	0	
2804611010	잉곳(ingot) 또는 브릭(brick)	Cat 0	0	
2804611090	기타	Cat 0	0	
2804619000	기타	Cat 0	0	
2804690000	기타	Cat 0	0	
2804701000	황린	Cat 0	0	
2804709000	기타	Cat 0	0	
2804800000	비소	Cat 0	0	
2804900000	셀렌	Cat 0	0	
2805110000	나트륨	Cat 0	0	
2805120000	칼슘	Cat 0	0	
2805190000	기타	Cat 0	0	
2805301000	세륨그룹	Cat 0	0	
2805302000	테르븀그룹	Cat 0	0	
2805303000	에르븀그룹	Cat 0	0	
2805304000	이트륨	Cat 0	0	
2805305000	스칸듐	Cat 0	0	
2805309000	기타	Cat 0	0	
2805400000	수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806100000	염화수소(염산)	Cat 0	0	
2806200000	클로로황산	Cat 0	0	
28070010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2807001090	기타	Cat 0	0	
2807002000	발연황산	Cat 0	0	
28080010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2808001090	기타	Cat 0	0	
2808002000	황질산	Cat 0	0	
2809100000	오산화인	Cat 0	0	
28092010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2809201090	기타	Cat 0	0	
2809202010	메타인산	Cat 0	0	
2809202020	피로인산	Cat 0	0	
2809202090	기타	Cat 0	0	
2810001010	삼산화 이붕소	Cat 0	0	
2810001090	기타	Cat 0	0	
2810002000	오르토붕산	Cat 0	0	
2810003000	메타붕산	Cat 0	0	
2810009000	기타	Cat 0	0	
281111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2811119000	기타	Cat 0	0	
2811120000	시아화수소(시아화수소산)	Cat 0	0	
2811191000	황화수소	Cat 0	0	
2811192000	브롬화수소산	Cat 0	0	
2811193000	솔파민산	Cat 0	0	
2811194000	과염소산	Cat 0	0	
2811195000	염소산	Cat 0	0	
2811196000	하이포아인산	Cat 0	0	
2811197000	아인산	Cat 0	0	
2811198000	비산	Cat 0	0	
2811199000	기타	Cat 0	0	
2811210000	이산화탄소	Cat 0	0	
2811221000	화이트카본	Cat 0	0	
2811229010	실리카겔	Cat 0	0	
2811229090	기타	Cat 0	0	
2811291000	일산화탄소	Cat 0	0	
2811292000	아산화질소	Cat 0	0	
2811293000	이산화질소	Cat 0	0	
2811294000	삼산화비소	Cat 0	0	
2811295000	오산화비소	Cat 0	0	
2811299000	기타	Cat 0	0	
2812110000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Cat 0	0	
2812120000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Cat 0	0	
2812130000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Cat 0	0	
2812140000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Cat 0	0	
2812150000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Cat 0	0	
2812160000	설퍼 디클로라이드	Cat 0	0	
2812170000	티오닐 클로라이드	Cat 0	0	
2812190000	기타	Cat 0	0	
2812901000	삼플루오르붕소	Cat 0	0	
2812902000	설퍼헥사플루오라이드	Cat 0	0	
2812909000	기타	Cat 0	0	
2813100000	이황화탄소	Cat 0	0	
2813901020	오황화인	Cat 0	0	
2813901090	기타	Cat 0	0	
2813902010	오황화비소	Cat 0	0	
2813902090	기타	Cat 0	0	
2813903000	황화규소	Cat 0	0	
2813909000	기타	Cat 0	0	
2814100000	무수(無水)암모니아	Cat 0	0	
2814200000	암모니아수	Cat 0	0	
2815110000	고체	EX	5	
2815120000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Cat 3	5	
2815200000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Cat 0	0	
2815301000	과산화나트륨	Cat 0	0	
2815302000	과산화칼륨	Cat 0	0	
2816101000	수산화마그네슘	Cat 0	0	
2816102000	과산화마그네슘	Cat 0	0	
2816400000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Cat 0	0	
2817001000	산화아연	Cat 0	0	
2817002000	과산화아연	Cat 0	0	
2818101000	선별된 알갱이 모양	Cat 0	0	
2818109000	기타	Cat 0	0	
2818200000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818301000	알루미늄아셀	Cat 0	0	
2818309000	기타	Cat 0	0	
2819100000	삼산화크로뮴	Cat 0	0	
2819901010	산화제이크로뮴	Cat 0	0	
2819901090	기타	Cat 0	0	
2819902000	수산화크로뮴	Cat 0	0	
2820100000	이산화망간	Cat 0	0	
2820901000	일산화망간	Cat 0	0	
2820902000	삼산화제이망간	Cat 0	0	
2820909000	기타	Cat 0	0	
2821101000	산화철	Cat 0	0	
2821102000	수산화철	Cat 0	0	
2821200000	어스컬러(earth colour)	Cat 0	0	
2822001010	산화제이코발트	Cat 0	0	
2822001091	이차전지 제조용	Cat 0	0	
2822001099	기타	Cat 0	0	
2822002010	수산화제이코발트	Cat 0	0	
2822002090	기타	Cat 0	0	
2823001000	아나타스형	Cat 0	0	
2823009000	기타	Cat 0	0	
2824100000	알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Cat 0	0	
2824901000	연단(鉛丹)과 오렌지납	Cat 0	0	
2824909000	기타	Cat 0	0	
2825101000	히드라진 히드레이트	Cat 0	0	
2825109010	히드라진	Cat 0	0	
2825109020	히드라진과 무기염	Cat 0	0	
2825109030	히드록실아민	Cat 0	0	
2825109041	히드록실 암모늄클로라이드(히드록실아민 염산염)	Cat 0	0	
2825109049	기타	Cat 0	0	
2825201000	산화리튬	Cat 0	0	
2825202000	수산화리튬	Cat 0	0	
2825301000	오산화바나듐	Cat 0	0	
2825309000	기타	Cat 0	0	
2825401000	산화니켈	Cat 0	0	
2825402000	수산화니켈	Cat 0	0	
2825501000	산화구리	Cat 0	0	
28255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825502090	기타	Cat 0	0	
2825601000	산화게르마늄	Cat 0	0	
2825602000	이산화지르코늄	Cat 0	0	
2825701000	산화몰리브덴	Cat 0	0	
2825702000	수산화몰리브덴	Cat 0	0	
2825800000	산화안티모니	Cat 0	0	
2825901010	산화칼슘	Cat 0	0	
2825901020	산화텅스텐	Cat 0	0	
2825901030	산화석	Cat 0	0	
2825901090	기타	Cat 0	0	
2825902010	수산화칼슘	Cat 0	0	
2825902020	수산화망간	Cat 0	0	
2825902030	수산화텅스텐	Cat 0	0	
2825902040	수산화석	Cat 0	0	
2825902090	기타	Cat 0	0	
2825903010	과산화니켈	Cat 0	0	
2825903090	기타	Cat 0	0	
2825909000	기타	Cat 0	0	
2826120000	플루오르화알루미늄	Cat 0	0	
2826191000	플루오르화칼슘	Cat 0	0	
2826193010	산성플루오르화칼슘	Cat 0	0	
2826193090	기타	Cat 0	0	
2826194000	플루오르화암모늄이나 플루오르화나트륨	Cat 0	0	
2826195000	텅스텐 핵사플루오라이드(WF6)	Cat 0	0	
2826199000	기타	Cat 0	0	
2826300000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Cat 0	0	
2826901000	인조치올라이트	Cat 0	0	
2826902000	플루오르화규산칼슘	Cat 0	0	
2826903000	플루오르화붕산염	Cat 0	0	
2826904000	플루오르화인산염	Cat 0	0	
2826905000	플루오르화황산염	Cat 0	0	
2826906000	플루오르화규산나트륨이나 플루오르화규산칼슘	Cat 0	0	
2826909000	기타	Cat 0	0	
2827100000	염화암모늄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827200000	염화칼슘	Cat 0	0	
2827310000	마그네슘 염화물	Cat 0	0	
2827320000	알루미늄 염화물	Cat 0	0	
2827350000	니켈 염화물	Cat 0	0	
2827391000	구리염화물	Cat 0	0	
2827399000	기타	Cat 0	0	
2827411000	산화염화구리	Cat 0	0	
282741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827412090	기타	Cat 0	0	
2827491000	산화염화물	Cat 0	0	
2827492000	수산화염화물	Cat 0	0	
2827511000	브롬화나트륨	Cat 0	0	
2827512000	브롬화칼륨	Cat 0	0	
2827591000	브롬화칼슘	Cat 0	0	
2827599000	기타	Cat 0	0	
2827601000	산화요드화물	Cat 0	0	
2827609010	요드화칼륨	Cat 0	0	
2827609090	기타	Cat 0	0	
2828100000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Cat 0	0	
2828901010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Cat 0	0	
2828901020	하이포아염소산칼륨	Cat 0	0	
2828901090	기타	Cat 0	0	
2828902010	아염소산나트륨	Cat 0	0	
2828902020	아염소산알루미늄	Cat 0	0	
2828902090	기타	Cat 0	0	
2828903000	하이포아브롬산염	Cat 0	0	
2829110000	염소산나트륨	Cat 0	0	
2829191000	염소산칼륨	Cat 0	0	
2829192000	염소산바륨	Cat 0	0	
2829199000	기타	Cat 0	0	
2829901010	과염소산나트륨	Cat 0	0	
2829901020	과염소산암모늄	Cat 0	0	
2829901090	기타	Cat 0	0	
2829902010	브롬산염	Cat 0	0	
2829902020	과브롬산염	Cat 0	0	
2829902030	요오드산염	Cat 0	0	
2829902040	과요오드산염	Cat 0	0	
2830101000	황화수소나트륨	Cat 0	0	
2830109000	기타	Cat 0	0	
2830901000	황화물	Cat 0	0	
2830902000	폴리황화물	Cat 0	0	
2831101000	아이티온산나트륨	Cat 0	0	
2831102000	숯독실산나트륨(포름알데히드 숯독실산나트륨)	Cat 0	0	
2831901000	아이티온산염	Cat 0	0	
2831902000	숯독실산염	Cat 0	0	
2832101000	아황산수소나트륨	Cat 0	0	
2832109000	기타	Cat 0	0	
2832201000	아황산 암모늄	Cat 0	0	
2832202000	아황산 칼륨	Cat 0	0	
2832203000	아황산 칼슘	Cat 0	0	
2832209000	기타	Cat 0	0	
2832301000	티오황산 암모늄	Cat 0	0	
2832302000	티오황산 나트륨	Cat 0	0	
2832303000	티오황산 칼륨	Cat 0	0	
2832309000	기타	Cat 0	0	
2833110000	황산이나트륨	Cat 0	0	
2833191000	황산수소나트륨	Cat 0	0	
2833192000	이황산이나트륨	Cat 0	0	
2833199000	기타	Cat 0	0	
2833210000	황산마그네슘	Cat 0	0	
2833221000	이차전지 제조용	Cat 0	0	
2833229000	기타	Cat 0	0	
2833240000	황산니켈	Cat 0	0	
283325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833259000	기타	Cat 0	0	
2833270000	황산바륨	Cat 0	0	
2833291000	황산철	Cat 0	0	
2833292010	이차전지 제조용	Cat 0	0	
2833292090	기타	Cat 0	0	
2833293010	이차전지 제조용	Cat 0	0	
2833293090	기타	Cat 0	0	
283329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833300000	염반	Cat 0	0	
2833401000	과황산암모늄	Cat 0	0	
2833402000	과황산나트륨	Cat 0	0	
2833403000	과황산칼슘	Cat 0	0	
2833409000	기타	Cat 0	0	
2834101000	아질산나트륨	Cat 0	0	
2834109000	기타	Cat 0	0	
2834210000	질산칼륨	Cat 0	0	
2834291000	질산바륨	Cat 0	0	
2834299000	기타	Cat 0	0	
2835101010	하이포아인산나트륨	Cat 0	0	
2835101020	하이포아인산칼슘	Cat 0	0	
2835101090	기타	Cat 0	0	
2835102000	아인산염	Cat 0	0	
2835221000	인산일나트륨	Cat 0	0	
2835222000	인산이나트륨	Cat 0	0	
2835240000	인산칼륨	Cat 0	0	
2835250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Cat 0	0	
2835260000	그 밖의 인산칼슘	Cat 0	0	
2835291000	인산알루미늄	Cat 0	0	
2835299000	기타	Cat 0	0	
2835310000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Cat 0	0	
2835391000	메타인산나트륨	Cat 0	0	
2835392000	피로인산나트륨	Cat 0	0	
2835399000	기타	Cat 0	0	
2836200000	탄산이나트륨	Cat 0	0	
2836300000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Cat 0	0	
2836400000	탄산칼륨	Cat 0	0	
2836500000	탄산칼슘	Cat 0	0	
2836600000	탄산바륨	Cat 0	0	
2836910000	탄산리튬	Cat 0	0	
2836920000	탄산스트론튬	Cat 0	0	
2836991010	탄산마그네슘	Cat 0	0	
2836991020	상관습상의 탄산암모늄과 그 밖의 탄산암모늄	Cat 0	0	
2836991031	이차전지 제조용	Cat 0	0	
2836991039	기타	Cat 0	0	
2836991090	기타	Cat 0	0	
2836992000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Cat 0	0	
2837111000	시아나이드나트륨	Cat 0	0	
2837112000	산화시아나이드나트륨	Cat 0	0	
2837191010	시아나이드칼륨	Cat 0	0	
2837191020	시아나이드구리	Cat 0	0	
2837191030	시아나이드아연	Cat 0	0	
2837191090	기타	Cat 0	0	
2837192000	산화시아나이드화물	Cat 0	0	
2837201000	페로시아나이드화물	Cat 0	0	
2837202000	페리시아나이드화물	Cat 0	0	
2837209000	기타	Cat 0	0	
2839110000	메타규산나트륨	Cat 0	0	
2839190000	기타	Cat 0	0	
2839901000	규산지르코늄	Cat 0	0	
2839902000	규산바륨	Cat 0	0	
2839909000	기타	Cat 0	0	
2840110000	무수물(無水物)	Cat 0	0	
2840190000	기타	Cat 0	0	
2840200000	그 밖의 붕산염	Cat 0	0	
2840300000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Cat 0	0	
2841300000	중크롬산나트륨	Cat 0	0	
2841501000	크롬산칼륨	Cat 0	0	
2841509000	기타	Cat 0	0	
2841610000	과망간산칼륨	Cat 0	0	
2841691000	아망간산염	Cat 0	0	
2841692000	망간산염	Cat 0	0	
2841693000	과망간산염	Cat 0	0	
2841700000	몰리브덴산염	Cat 0	0	
2841800000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Cat 0	0	
2841901000	주석산염	Cat 0	0	
2841902010	티탄산바륨	Cat 0	0	
2841902020	티탄산스트론튬	Cat 0	0	
2841902030	티탄산납	Cat 0	0	
2841902090	기타	Cat 0	0	
2841903000	안티몬산염	Cat 0	0	
2841904000	철산염과 아철산염	Cat 0	0	
2841905000	바나듐산염	Cat 0	0	
2841906000	비스무트산염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841909000	기타	Cat 0	0	
2842101000	알루미늄노실리케이트	Cat 0	0	
2842109000	기타	Cat 0	0	
2842901000	셀렌산염	Cat 0	0	
2842903000	황을 함유하는 겔염이나 착염	Cat 0	0	
2842905000	셀렌의 겔염이나 착염	Cat 0	0	
2842909000	기타	Cat 0	0	
2843101000	콜로이드 은	Cat 0	0	
2843102000	콜로이드 금	Cat 0	0	
2843103000	콜로이드 백금	Cat 0	0	
2843109000	기타	Cat 0	0	
284321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2843219000	기타	Cat 0	0	
284329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2843299000	기타	Cat 0	0	
2843301000	반도체 제조용 금청산칼륨	Cat 0	0	
2843309000	기타	Cat 0	0	
2843901000	아말감(amalgam)	Cat 0	0	
2843909010	백금 화합물	Cat 0	0	
2843909090	기타	Cat 0	0	
2844101000	천연 우라늄	Cat 0	0	
2844102000	분산물(分散物)(천연 우라늄이나 그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844109000	기타	Cat 0	0	
2844201000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	Cat 0	0	
2844202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844209000	기타	Cat 0	0	
2844301000	분산물(分散物)(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844309000	기타	Cat 0	0	
2844401000	방사성원소	Cat 0	0	
2844402000	방사성동위원소	Cat 0	0	
2844403000	분산물(分散物)(방사성원소와 방사성동위원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844409000	기타	Cat 0	0	
2844500000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Cat 0	0	
2845100000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Cat 0	0	
2845901000	중수소	Cat 0	0	
2845902000	탄소의 동위원소	Cat 0	0	
2845909000	기타	Cat 0	0	
2846100000	세륨화합물	Cat 0	0	
2846901000	산화이트륨	Cat 0	0	
2846909000	기타	Cat 0	0	
2847002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2847009000	기타	Cat 0	0	
2849100000	탄화칼슘	Cat 0	0	
2849200000	탄화규소	Cat 0	0	
2849901000	복탄화물	Cat 0	0	
2849909010	탄화텅스텐	Cat 0	0	
2849909090	기타	Cat 0	0	
2850001000	수소화물	Cat 0	0	
2850002000	질화물	Cat 0	0	
2850003000	아지드화물	Cat 0	0	
2850004000	규화물	Cat 0	0	
2850005000	붕화물	Cat 0	0	
2852101000	소호 제2825.90호, 제2827.39호, 제2827.49호, 제2827.60호, 제2830.90호, 제2833.29호, 제2834.29호, 제2835.39호, 제2837.19호, 제2837.20호, 제2841.50호, 제2842.10호, 제2842.90호, 제2843.90호, 제2849.90호, 제2850.00호, 또는 제2853호의 것	Cat 0	0	
2852102000	제2931호의 것, 소호 제2918.11호, 제2932.99호, 제2934.99.9090호, 제3201.90.2000호, 제3201.90.4000호, 제3206.50호, 제3707.90호, 제3822.00.1091호, 제3822.00.2091호의 것	EX	0/5	
2852103000	제2934.99.2000호, 제3822.00.1092호, 제3822.00.2092호의 것	Cat 0	0	
2852104000	소호 제3502.90호, 제3504.00호의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852105000	제3822.00.101호, 제3822.00.102호, 제3822.00.1093호, 제3822.00.201호, 제3822.00.202호, 제3822.00.2093호의 것	Cat 0	0	
2852106000	제3822.00.1099호, 제3822.00.2099호의 것	Cat 0	0	
2852901000	소호 제2830.90호, 제2835.39호, 제2842.10.9000호, 제2849.90호, 제2850.00호, 제2853.90.2000호의 것	Cat 0	0	
2852902000	제2842.10.1000호, 제2934.99.2000호, 제2934.99.9090호, 소호 제3201.90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2100호, 제3824.99.2290호부터 제3824.99.9090호까지의 것	Cat 0	0/5	
2852903000	소호 제3501.90호의 카세인산염과 그 밖의 카세인 유도체의 것(커피크리머 제조용은 제외한다)	Cat 0	0	
2852904000	소호 제3502.90호, 제3504.00호의 것	Cat 0	0	
2853100000	시아노겐 클로라이드	Cat 0	0	
2853901000	중류수, 전도도수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	Cat 0	0	
2853902000	인화물(燐化合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Cat 0	0	
2853909000	기타	Cat 0	0	
2901101000	부탄	Cat 0	0	
2901102000	헥산	Cat 0	0	
2901103000	헵탄	Cat 0	0	
2901109000	기타	Cat 0	0	
2901210000	에틸렌	Cat 0	0	
2901220000	프로펜(프로필렌)	Cat 0	0	
2901230000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Cat 0	0	
2901241000	1,3-부타디엔	Cat 0	0	
2901242000	이소프렌	Cat 0	0	
2901291000	헥센	Cat 0	0	
2901292000	옥텐	Cat 0	0	
2901299000	기타	Cat 0	0	
2902110000	시클로헥산	Cat 0	0	
2902191000	에틸리덴 노르보넨	Cat 0	0	
2902199000	기타	Cat 0	0	
2902200000	벤젠	Cat 0	0	
2902300000	톨루엔	Cat 0	0	
2902410000	오르토-크실렌	Cat 0	0	
2902420000	메타-크실렌	Cat 0	0	
2902430000	para-크실렌	Cat 0	0	
2902440000	혼합크실렌이성체	Cat 0	0	
2902500000	스티렌	Cat 0	0	
2902600000	에틸벤젠	Cat 0	0	
2902700000	큐멘	Cat 0	0	
2902901000	나프탈렌	Cat 0	0	
2902902000	메틸나프탈렌	Cat 0	0	
2902903000	메틸스티렌	Cat 0	0	
2902909000	기타	Cat 0	0	
2903111000	염화메탄(염화메틸)	Cat 0	0	
2903112000	염화에탄(염화에틸)	Cat 0	0	
2903120000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Cat 0	0	
2903130000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Cat 0	0	
2903140000	사염화탄소	Cat 0	0	
2903150000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EX	5	
2903191000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Cat 0	0	
2903199000	기타	Cat 0	0	
2903210000	염화비닐(염화에틸렌)	EX	5	
2903220000	삼염화에틸렌	Cat 0	0	
2903230000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Cat 0	0	
2903290000	기타	Cat 0	0	
2903310000	이브로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Cat 0	0	
2903391000	브로모에탄(메틸 브로마이드)	Cat 0	0	
2903392000	디브로모에탄(1,2-디브로모에탄은 제외한다)	Cat 0	0	
2903393000	요드메탄	Cat 0	0	
2903394000	헥사플루오르에탄(CFC-116)	Cat 0	0	
2903395000	1,1-디플루오르에탄(HFC-152a)	Cat 0	0	
2903396000	1,1,1,2-테트라 플루오르에탄(HFC-134a)	Cat 0	0	
2903397000	1,1,3,3,3-펜타플루오로-2-(트리플루오로메틸)-1-프로펜	Cat 0	0	
2903399000	기타	Cat 0	0	
2903710000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Cat 0	0	
2903720000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Cat 0	0	
2903730000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903740000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Cat 0	0	
2903750000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Cat 0	0	
290376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에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Cat 0	0	
2903770000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Cat 0	0	
2903780000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Cat 0	0	
2903791100	클로로플루오르에탄	Cat 0	0	
2903791210	클로로테트라플루오르에탄(HCFC-124)	Cat 0	0	
2903791290	기타	Cat 0	0	
2903791300	클로로플루오르프로판	Cat 0	0	
2903792000	불소와 염소만을 가지는 할로겐화 메탄·에탄·프로판의 유도체	Cat 0	0	
2903799000	기타	Cat 0	0	
2903810000	1,2,3,4,5,6-헥사플루오르헥산 [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 것]	Cat 0	0	
2903820000	알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Cat 0	0	
2903830000	미렉스(ISO)	Cat 0	0	
2903890000	기타	Cat 0	0	
2903911000	클로로벤젠	Cat 0	0	
2903919000	기타	Cat 0	0	
2903921000	헥사클로로벤젠(ISO)	Cat 0	0	
2903922000	디다티(ISO)[클로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Cat 0	0	
290393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Cat 0	0	
2903940000	헥사브로모비페닐	Cat 0	0	
2903991000	염화벤질	Cat 0	0	
2903992010	1,2,4-트리클로로벤젠	Cat 0	0	
2903992090	기타	Cat 0	0	
2903993000	벤조트리클로라이드	Cat 0	0	
2903999000	기타	Cat 0	0	
2904101000	벤젠 술폰산	Cat 0	0	
2904109000	기타	Cat 0	0	
2904201000	니트로톨루엔	Cat 0	0	
2904209010	니트로벤젠	Cat 0	0	
2904209090	기타	Cat 0	0	
290431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Cat 0	0	
290432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Cat 0	0	
290433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Cat 0	0	
2904340000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Cat 0	0	
2904350000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Cat 0	0	
2904360000	과불화옥탄술폰플루오라이드	Cat 0	0	
2904910000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Cat 0	0	
2904990000	기타	Cat 0	0	
2905110000	메탄올(메틸알코올)	Cat 0	0	
2905121000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	Cat 0	0	
2905122010	반도체 제조용	EX	5	
2905122090	기타	EX	5	
2905130000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EX	5	
2905140000	그 밖의 부탄올	EX	5	
2905161000	2-에틸헥실알코올	EX	5	
2905169000	기타	Cat 0	0	
2905171000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Cat 0	0	
2905172000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Cat 0	0	
2905173000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Cat 0	0	
2905191000	헵탈알코올	Cat 0	0	
2905192000	노닐알코올	Cat 0	0	
2905193000	이소노닐알코올	Cat 0	0	
2905194000	펜탄올(아밀알코올)과 그 이성체	Cat 0	0	
2905199010	3,3-디메틸부탄-2-올(피나코릴 알코올)	Cat 0	0	
2905199020	2-프로필 헵탈 알코올	Cat 0	0	
2905199030	이소데실 알코올	Cat 0	0	
2905199090	기타	Cat 0	0	
2905221000	게라니올·시트로네올·리날롤·로디놀·네올	Cat 0	0	
2905229000	기타	Cat 0	0	
2905290000	기타	Cat 0	0	
2905310000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Cat 0	0	
2905320000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EX	5	
2905391000	1,4-부탄디올	Cat 0	0	
2905392000	네오펜틸 글리콜	EX	5	
2905399000	기타	Cat 0	0	
2905410000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Cat 0	0	
2905420000	펜타에리트리톨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905430000	만니톨	Cat 10	5	
2905440000	디-글루시톨(소르비톨)	EX	5	
2905450000	글리세롤	Cat 0	0	
2905490000	기타	Cat 0	0	
2905510000	에스글로비놀(INN)	Cat 0	0	
2905590000	기타	Cat 0	0	
2906110000	멘톨	Cat 0	0	
2906120000	시클로헥산올 · 메틸시클로헥산올 · 디메틸 시클로헥산올	Cat 0	0	
2906131000	스테롤	Cat 0	0	
2906132000	아노시톨	Cat 0	0	
2906191000	보르네올	Cat 0	0	
2906192000	테르피네올	Cat 0	0	
2906199000	기타	Cat 0	0	
2906210000	벤질알코올	Cat 0	0	
2906291000	페닐에틸알코올	Cat 0	0	
2906292000	페닐프로필알코올	Cat 0	0	
2906293000	신나밀알코올	Cat 0	0	
2906299000	기타	Cat 0	0	
2907111000	페놀	Cat 0	0	
2907112000	페놀의 염	Cat 0	0	
2907121000	크레졸	Cat 0	0	
2907122000	크레졸의 염	Cat 0	0	
2907131000	옥틸페놀	Cat 0	0	
2907132000	노닐페놀	Cat 0	0	
2907139000	기타	Cat 0	0	
2907151000	나프톨	Cat 0	0	
2907152000	나프톨의 염	Cat 0	0	
2907191000	티올	Cat 0	0	
2907192000	크실레놀과 이들의 염	Cat 0	0	
2907199000	기타	Cat 0	0	
2907211000	레소르시놀	Cat 0	0	
2907212000	레소르시놀의 염	Cat 0	0	
2907221000	히드로퀴논	Cat 0	0	
2907222000	히드로퀴논의 염	Cat 0	0	
2907231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 A)	EX	5	
2907232000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 A) 의 염	Cat 0	0	
2907291000	카테콜	Cat 0	0	
2907299000	기타	Cat 0	0	
2908110000	펜타클로로페놀(ISO)	Cat 0	0	
2908191000	클로로페놀(펜타클로로페놀은 제외한다)	Cat 0	0	
2908192000	테트라브로모비스페놀에이	Cat 0	0	
2908193000	트리브로모페놀	Cat 0	0	
2908199000	기타	Cat 0	0	
2908910000	디노셀(ISO)과 그 염	Cat 0	0	
2908920000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 [DNOC(ISO)]과 그 염	Cat 0	0	
2908991000	나프톨술폰산과 이들의 염	Cat 0	0	
2908992000	페놀술폰산	Cat 0	0	
2908993000	니트로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Cat 0	0	
2908994000	니트로소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Cat 0	0	
2908999000	기타	Cat 0	0	
2909110000	디에틸에테르	Cat 0	0	
2909191000	비스(클로로메틸)에테르	Cat 0	0	
2909192000	메틸터사리 부틸에테르	Cat 0	0	
2909199000	기타	Cat 0	0	
2909200000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 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 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 체	Cat 0	0	
2909301000	아니솔	Cat 0	0	
2909302000	아네톨	Cat 0	0	
2909303000	디페닐 에테르	Cat 0	0	
2909304000	앵브렛 머스크	Cat 0	0	
2909305000	데카브로모디페닐 옥사이드	Cat 0	0	
29093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09309090	기타	Cat 0	0	
2909410000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Cat 0	0	
2909430000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 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Cat 0	0	
2909441000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Cat 0	0	
2909449000	기타	Cat 0	0	
2909491000	트리에틸렌 글리콜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909499000	기타	Cat 0	0	
2909501000	오이게놀	Cat 0	0	
2909502000	이소오이게놀	Cat 0	0	
2909503000	에테르알코올페놀	Cat 0	0	
2909509000	기타	Cat 0	0	
2909601000	과산화알코올	Cat 0	0	
2909602000	디쿠밀퍼록사이드	Cat 0	0	
2909603000	메탈에틸케톤퍼록사이드	Cat 0	0	
2909609000	기타	Cat 0	0	
2910100000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Cat 0	0	
2910200000	메탈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EX	5	
2910300000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하이드린)	EX	5	
2910400000	디올드린(ISO, INN)	Cat 0	0	
2910500000	엔드린(ISO)	Cat 0	0	
2910900000	기타	Cat 0	0	
2911001010	아세탈	Cat 0	0	
2911001020	헤미아세탈	Cat 0	0	
2911009000	기타	Cat 0	0	
2912110000	메탈알(포름알데히드)	Cat 0	0	
2912120000	에탈알(아세트알데히드)	Cat 0	0	
2912191000	사트로널알데히드	Cat 0	0	
2912192000	시롤알	Cat 0	0	
2912193000	부탈알(부티르알데히드, 노르말-이성체)	Cat 0	0	
2912199000	기타	Cat 0	0	
2912210000	벤즈알데히드	Cat 0	0	
2912292000	페닐아세트알데히드	Cat 0	0	
2912293000	산남알데히드	Cat 0	0	
2912294000	알파아릴산남알데히드	Cat 0	0	
2912295000	시클라멘알데히드	Cat 0	0	
2912299000	기타	Cat 0	0	
2912410000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Cat 0	0	
2912420000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Cat 0	0	
2912491000	3,4,5-트리메톡시벤즈알데히드	Cat 0	0	
2912499000	기타	Cat 0	0	
2912501000	트리옥산	Cat 0	0	
2912503000	메탈알데히드	Cat 0	0	
2912509000	기타	Cat 0	0	
2912600000	파라포름알데히드	Cat 0	0	
2913000000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Cat 0	0	
2914110000	아세톤	EX	5	
2914120000	부탄온(메틸에틸케톤)	Cat 0	0	
2914130000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Cat 0	0	
2914191000	3,3-디메틸-2-부탄논(피나콜론)	Cat 0	0	
2914199000	기타	Cat 0	0	
2914221000	시클로헥사논	Cat 0	0	
2914222000	메틸시클로헥사논	Cat 0	0	
2914231000	이오논	Cat 0	0	
2914232000	메틸이오논	Cat 0	0	
2914291000	자스몬	Cat 0	0	
2914299000	기타	Cat 0	0	
2914310000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Cat 0	0	
2914390000	기타	Cat 0	0	
2914401000	디아세톤 알코올(4-히드록시-4-메틸펜탄-2-온)	Cat 0	0	
2914409000	기타	Cat 0	0	
2914501000	케톤-페놀	Cat 0	0	
2914509000	기타	Cat 0	0	
2914610000	안트라퀴논	Cat 0	0	
2914620000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Cat 0	0	
2914691000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Cat 0	0	
2914699010	퀴논알코올 · 퀴논페놀과 퀴논알데히드	Cat 0	0	
2914699090	기타	Cat 0	0	
2914710000	클로르데콘(ISO)	Cat 0	0	
29147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14799000	기타	Cat 0	0	
2915110000	포름산	Cat 0	0	
2915121000	포름산 칼슘	Cat 0	0	
2915122000	포름산 암모늄	Cat 0	0	
2915129000	기타	Cat 0	0	
2915131000	포름산 메틸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915132000	2-에틸헥실클로로포에이트	Cat 0	0	
2915139000	기타	Cat 0	0	
2915210000	초산	EX	5	
2915240000	무수(無水)초산	Cat 0	0	
2915291000	초산칼슘	Cat 0	0	
2915292000	초산나트륨	Cat 0	0	
2915293000	초산코발트	Cat 0	0	
2915299000	기타	Cat 0	0	
2915310000	초산에틸	EX	5	
2915320000	초산비닐	EX	5	
291533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2915339000	기타	EX	5	
2915360000	초산디노셉(ISO)	Cat 0	0	
2915391000	초산아밀	Cat 0	0	
2915392000	초산이소아밀	Cat 0	0	
2915393000	초산메틸	Cat 0	0	
2915394000	초산이소부틸	Cat 0	0	
2915395000	초산2-에톡시에틸	Cat 0	0	
2915399000	기타	Cat 0	0	
2915401000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Cat 0	0	
2915409000	기타	Cat 0	0	
2915500000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5600000	부탄산·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5701000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5702010	스테아르산	Cat 0	0	
2915702020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Cat 0	0	
2915702030	스테아르산 연	Cat 0	0	
2915702040	스테아르산 아연	Cat 0	0	
2915702050	스테아르산 바륨	Cat 0	0	
2915702060	스테아르산 카드뮴	Cat 0	0	
2915702070	스테아르산 칼슘	Cat 0	0	
2915702080	스테아르산 부틸	Cat 0	0	
2915702090	기타	Cat 0	0	
2915901000	네오데카노일 클로라이드와 피발로일클로라이드	Cat 0	0	
2915909010	2-에틸헥소산	Cat 0	0	
2915909090	기타	Cat 0	0	
2916111000	아크릴산	EX	5	
2916119000	기타	Cat 0	0	
2916121000	아크릴산에틸	EX	5	
2916122000	아크릴산메틸	EX	5	
2916123000	아크릴산부틸	EX	5	
2916124000	아크릴산 2-에틸헥실	EX	5	
2916129000	기타	Cat 0	0	
2916131000	메타아크릴산	EX	5	
2916139000	기타	Cat 0	0	
2916141000	메타아크릴산에틸	EX	5	
2916149000	기타	Cat 0	0	
2916151000	올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6152000	리놀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6153000	리놀레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6160000	비나파크릴(ISO)	Cat 0	0	
2916190000	기타	Cat 0	0	
2916201000	시클로 헥산카르복시산	Cat 0	0	
2916202000	시클로 펜테닐 초산	Cat 0	0	
2916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16209090	기타	Cat 0	0	
2916311000	벤조산	Cat 0	0	
2916312000	벤조산나트륨	Cat 0	0	
2916313000	벤조산벤질	Cat 0	0	
291631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16319090	기타	Cat 0	0	
2916321000	과산화벤조일	Cat 0	0	
2916322000	염화벤조일	Cat 0	0	
2916341000	페닐아세트산	Cat 0	0	
2916342000	페닐아세트산의 염	Cat 0	0	
2916391000	계피산	Cat 0	0	
2916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16399090	기타	Cat 0	0	
2917111000	옥살산	Cat 0	0	
2917112000	옥살산의 염	Cat 0	0	
2917113000	옥살산의 에스테르	Cat 0	0	
2917121000	아디프산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917122000	아디프산의 염	Cat 0	0	
2917123010	아디프산 디옥틸	Cat 0	0	
2917123090	기타	Cat 0	0	
2917131000	아젤라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7132000	세바스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7140000	무수말레산	Cat 0	0	
2917191000	말레산	Cat 0	0	
2917192000	숙신산	Cat 0	0	
2917193000	숙신산 나트륨	Cat 0	0	
2917194000	말론산 디에틸	Cat 0	0	
2917195000	말론산 디아소프로필	Cat 0	0	
2917199000	기타	Cat 0	0	
2917200000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시클로테르펜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17321000	오르토프탈산 디-2-에틸헥실	EX	5	
2917329000	기타	Cat 0	5	
2917331000	오르토프탈산디노닐	Cat 0	0	
2917332000	오르토프탈산디데실	Cat 0	0	
2917341000	오르토프탈산 디헥틸	Cat 0	0	
2917342000	오르토프탈산 디아소데실	EX	5	
2917343000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Cat 0	0	
2917349000	기타	Cat 0	0	
2917350000	무수프탈산	Cat 0	0	
2917361000	테레프탈산	Cat 0	0	
2917369000	기타	Cat 0	0	
2917370000	테레프탈산디에틸	Cat 0	0	
2917391000	이소프탈산	EX	5	
2917392000	트리옥틸트리메라테이트(T.O.T.M)	Cat 0	0	
2917393000	무수트리멜리트산	Cat 0	0	
2917399000	기타	Cat 0	0	
2918111000	락트산	Cat 0	0	
2918112000	락트산의 염	Cat 0	0	
2918113000	락트산의 에스테르	Cat 0	0	
2918120000	타르타르산	Cat 0	0	
2918131000	타르타르산의 염	Cat 0	0	
2918132000	타르타르산의 에스테르	Cat 0	0	
2918140000	시트르산	Cat 0	0	
2918151010	시트르산 칼슘	Cat 0	0	
2918151090	기타	Cat 0	0	
2918152000	시트르산의 에스테르	Cat 0	0	
2918161000	글루콘산	Cat 0	0	
2918162000	글루콘산의 염	Cat 0	0	
2918163000	글루콘산의 에스테르	Cat 0	0	
2918170000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 산)	Cat 0	0	
2918180000	클로로벤질레이트(ISO)	Cat 0	0	
2918191010	말산	Cat 0	0	
2918191090	기타	Cat 0	0	
2918192010	말산의 염	Cat 0	0	
2918192090	기타	Cat 0	0	
2918193010	말산의 에스테르	Cat 0	0	
2918193020	메틸벤질레이트	Cat 0	0	
2918193090	기타	Cat 0	0	
2918199000	기타	Cat 0	0	
2918211000	살리실산	Cat 0	0	
2918212010	살리실산 나트륨	Cat 0	0	
2918212090	기타	Cat 0	0	
2918221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Cat 0	0	
2918222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염	Cat 0	0	
2918223000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의 에스테르	Cat 0	0	
2918231010	살리실산 메틸	Cat 0	0	
2918231020	살리실산 에틸	Cat 0	0	
2918231090	기타	Cat 0	0	
2918232000	그 밖의 살리실산에스테르의 염	Cat 0	0	
2918291000	베타옥시나프토산과 그 염	Cat 0	0	
2918299010	갈산	Cat 0	0	
2918299030	파라히드록시 벤조산	Cat 0	0	
2918299040	갈산의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8299090	기타	Cat 0	0	
29183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18309000	기타	Cat 0	0	
2918910000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 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9189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18999000	기타	Cat 0	0	
291910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Cat 0	0	
291990101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19901019	기타	Cat 0	0	
2919901020	글리세로민산	Cat 0	0	
2919901090	기타	Cat 0	0	
2919902000	인산에스테르의 염	Cat 0	0	
2919909000	기타	Cat 0	0	
29201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0119000	기타	Cat 0	0	
2920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0199000	기타	Cat 0	0	
2920210000	디메틸 포스파이트	Cat 0	0	
2920220000	디메틸 포스파이트	Cat 0	0	
292023000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Cat 0	0	
2920240000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Cat 0	0	
2920290000	기타	Cat 0	0	
29203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0309000	기타	Cat 0	0	
2920901010	황산디메틸	Cat 0	0	
2920901020	황산디에틸	Cat 0	0	
2920901090	기타	Cat 0	0	
2920902000	아질산에스테르와 질산에스테르의 것	Cat 0	0	
2920903000	탄산에스테르의 것	Cat 0	0	
29209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0909090	기타	Cat 0	0	
2921111010	메틸아민	Cat 0	0	
2921111020	메틸아민의 염	Cat 0	0	
2921112010	디메틸아민	Cat 0	0	
2921112020	디메틸아민의 염	Cat 0	0	
2921113010	트리메틸아민	Cat 0	0	
2921113020	트리메틸아민의 염	Cat 0	0	
2921120000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Cat 0	0	
292113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Cat 0	0	
2921140000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Cat 0	0	
2921192000	디에틸아민과 그 염	Cat 0	0	
2921199010	디메틸라우릴아민	Cat 0	0	
2921199020	클로르메틴(INN)[비스(2-클로로에틸)메틸아민]	Cat 0	0	
2921199030	비스(2-클로로에틸)에틸아민	Cat 0	0	
2921199040	트리클로르메틴(INN)[트리스(2-클로로에틸)아민]	Cat 0	0	
2921199050	디-이소프로필아민	Cat 0	0	
292119907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2-클로로에틸아민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Cat 0	0	
2921199090	기타	Cat 0	0	
2921211000	에틸렌디아민	Cat 0	0	
2921212000	에틸렌디아민의 염	Cat 0	0	
2921221000	헥사메틸렌디아민	Cat 0	0	
2921222000	헥사메틸렌디아민아디페이트	Cat 0	0	
2921229000	기타	Cat 0	0	
2921291000	디에틸렌 트리아민	Cat 0	0	
2921292000	트리에틸렌 테트라아민	Cat 0	0	
2921299000	기타	Cat 0	0	
2921301000	시클로 헥실아민	Cat 0	0	
2921309000	기타	Cat 0	0	
2921411000	아닐린	Cat 0	0	
2921412000	아닐린의 염	Cat 0	0	
2921421000	아닐린의 니트로할로겐화 유도체	Cat 0	0	
2921422000	2,4,5-트리클로로아닐린	Cat 0	0	
292142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1429090	기타	Cat 0	0	
2921431000	파라-톨루이딘-메타-술폰산과 그 염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921432000	2-클로로-파라-톨루이딘-5-술폰산과 그 염	Cat 0	0	
2921433000	3-아미노-6-클로로톨루엔-4-술폰산과 그 염	Cat 0	0	
2921439010	톨루이딘	Cat 0	0	
292143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1439099	기타	Cat 0	0	
2921441000	디페닐아민	Cat 0	0	
2921449000	기타	Cat 0	0	
2921451000	1-나프틸아민-4-술폰산과 그 염	Cat 0	0	
2921459010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Cat 0	0	
2921459020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그 염	Cat 0	0	
2921459030	2-나프틸아민-3,6,8-트리술폰산과 그 염	Cat 0	0	
2921459090	기타	Cat 0	0	
2921460000	암페타민(INN) · 벤즈페타민(INN) · 맥스암페타민(INN) · 에틸암페타민(INN) · 펜캄파민(INN) · 레페타민(INN) · 레브암페타민(INN) · 메페노렉스(INN) · 펜터민(INN), 이들의 염	Cat 0	0	
29214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1499000	기타	Cat 0	0	
2921511000	엔-페닐-엔-이소프로필 파라-페닐렌디아민	Cat 0	0	
2921512000	엔-(1,3-디에틸 부틸)-엔-페닐-파라-페닐렌디아민	Cat 0	0	
2921519010	오르토-페닐렌 디아민	Cat 0	0	
2921519020	메타-페닐렌 디아민	Cat 0	0	
2921519030	파라-페닐렌 디아민	Cat 0	0	
2921519040	디아미노톨루엔	Cat 0	0	
2921519090	기타	Cat 0	0	
2921591000	3,3-디클로로벤지딘술폰산염	Cat 0	0	
2921599010	벤지딘	Cat 0	0	
2921599020	벤지딘 디히드로 클로라이드	Cat 0	0	
2921599030	4,4'-디아미노스틸벤-2,2'-디술폰산과 그 염	Cat 0	0	
2921599040	벤지딘의 염(벤지딘디히드로클로라이드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2921599050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Cat 0	0	
2921599090	기타	Cat 0	0	
2922111000	모노에탄올아민	Cat 0	0	
2922112000	모노에탄올아민의 염	Cat 0	0	
2922121000	디에탄올아민	Cat 0	0	
2922122000	디에탄올아민의 염	Cat 0	0	
2922140000	텍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Cat 0	0	
2922150000	트리에탄올아민	Cat 0	0	
292216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Cat 0	0	
2922171000	메틸디에탄올아민	Cat 0	0	
2922172000	에틸디에탄올아민	Cat 0	0	
2922180000	2-(엔,엔-디아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Cat 0	0	
2922191000	아릴에탄올아민	Cat 0	0	
2922193010	엔,엔-디메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Cat 0	0	
2922193020	엔,엔-디에틸-2-아미노에탄올과 그의 수소화된 염들	Cat 0	0	
2922193090	기타	Cat 0	0	
2922196000	디에틸아미노에탄올	Cat 0	0	
2922199000	기타	Cat 0	0	
2922211000	7-아미노-1-나프톨-3-술폰산(감마 에시드)과 그 염	Cat 0	0	
2922212000	8-아미노-1-나프톨-3, 6-디술폰산(에이치 에시드)과 그 염	Cat 0	0	
2922213000	2-아미노-5-나프톨-7-디술폰산(제이 에시드)과 그 염	Cat 0	0	
2922219000	기타	Cat 0	0	
29222291000	파라-아미노페놀	Cat 0	0	
2922229010	메타-아미노페놀	Cat 0	0	
2922229020	오르토-아미노페놀	Cat 0	0	
2922229030	아미노 크레졸	Cat 0	0	
2922229040	페네티딘과 이들의 염	Cat 0	0	
2922229090	기타	Cat 0	0	
2922310000	암페프라론(INN) · 메타돈(INN) · 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Cat 0	0	
2922320000	아미노 안트라퀴논과 이들의 염	Cat 0	0	
2922393000	아미노 안트라퀴논의 유도체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922399000	기타	Cat 0	0	
2922411000	리신	Cat 0	0	
2922412000	리신의 에스테르	Cat 0	0	
2922413000	리신의 염과 리신에스테르의 염	Cat 0	0	
2922421000	글루탐산	Cat 0	0	
2922422000	글루탐산 나트륨	Cat 0	0	
2922423000	그 밖의 글루탐산의 염	Cat 0	0	
2922431000	안트라닐산	Cat 0	0	
2922439000	안트라닐산의 염	Cat 0	0	
2922440000	틸리딘(INN)과 그 염	Cat 0	0	
2922491000	글라신	Cat 0	0	
2922492000	알라닌	Cat 0	0	
2922493000	류우신	Cat 0	0	
2922494000	바린	Cat 0	0	
2922495000	아스파르트산	Cat 0	0	
2922496000	페닐글리신	Cat 0	0	
2922497000	에틸파라아미노 벤조에이트	Cat 0	0	
2922499000	기타	Cat 0	0	
2922501000	세린	Cat 0	0	
2922502000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Cat 0	0	
2922503000	1-파라-니트로 페놀-2-아미노-1,3-프로판디올	Cat 0	0	
2922504000	디알파히드록시페닐글리신	Cat 0	0	
29225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2509090	기타	Cat 0	0	
2923101000	콜린	Cat 0	0	
2923102000	콜린의 염	Cat 0	0	
2923201000	레시틴	Cat 0	0	
2923202000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Cat 0	0	
29233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Cat 0	0	
292340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Cat 0	0	
2923900000	기타	Cat 0	0	
2924110000	메프로바메이트(INN)	Cat 0	0	
2924121000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Cat 0	0	
2924122000	모노크로토포스(ISO)	Cat 0	0	
2924123000	포스파미드(ISO)	Cat 0	0	
2924191000	디메틸포름아미드	Cat 0	0	
2924192000	디메틸아세트아미드	Cat 0	0	
2924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4199090	기타	Cat 0	0	
29242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4219000	기타	Cat 0	0	
2924230000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Cat 0	0	
2924240000	에치나메이트(INN)	Cat 0	0	
292425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4259000	기타	Cat 0	0	
2924291010	아미노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Cat 0	0	
2924291020	아세트아미노펜	Cat 0	0	
2924291090	기타	Cat 0	0	
2924292000	아세토아세트아닐리드와 그 유도체	Cat 0	0	
2924299010	염산리도카인	Cat 0	0	
2924299020	이오프로마이드, 이오파미돌, 이오프롤, 이오텍솔, 이오버솔, 이오딕산올	Cat 0	0	
2924299092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4299099	기타	Cat 0	0	
2925111000	사카린	Cat 0	0	
2925112000	사카린의 염	Cat 0	0	
2925120000	구루테치미드(INN)	Cat 0	0	
2925191000	프탈이미드	Cat 0	0	
29251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5199090	기타	Cat 0	0	
2925210000	클로르디메포름(ISO)	Cat 0	0	
2925291000	디페닐구아니딘	Cat 0	0	
2925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5299090	기타	Cat 0	0	
2926100000	아크릴로니트릴	Cat 0	0	
2926200000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926300000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Cat 0	0	
2926400000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Cat 0	0	
2926901000	아세토니트릴	Cat 0	0	
2926902000	1,4-디아미노-2,3-디시아노안트라퀴논	Cat 0	0	
2926909010	말로노니트릴	Cat 0	0	
2926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6909099	기타	Cat 0	0	
2927001100	6-니트로-1-디아조-2-나프톨-4-술폰산	Cat 0	0	
2927001900	기타	Cat 0	0	
2927002100	아조디카본아미드	Cat 0	0	
2927002910	아조이소부티로니트릴	Cat 0	0	
2927002990	기타	Cat 0	0	
2927003000	아족시화합물	Cat 0	0	
2928001000	페닐히드라진	Cat 0	0	
2928009010	페릴랄린	Cat 0	0	
2928009020	메틸에틸 케토옥심	Cat 0	0	
29280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28009099	기타	Cat 0	0	
2929101000	톨루엔 디아소시아네이트	Cat 0	0	
2929102000	디페닐메탄 디아소시아네이트	Cat 0	0	
2929109000	기타	Cat 0	0	
2929901000	이소시아나화물	Cat 0	0	
2929903000	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데이트	Cat 0	0	
2929904000	디에틸-노르말, 노르말-디메틸 포스포라미데이트	Cat 0	0	
2929905000	오르토-에틸-2-디아소프로필 아미노에틸 메틸포스포나이트	Cat 0	0	
292990600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드 디할라이드	Cat 0	0	
2929909000	기타	Cat 0	0	
293020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0201090	기타	Cat 0	0	
2930202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0202090	기타	Cat 0	0	
2930301000	티우람모노설파이드	Cat 0	0	
2930302000	티우람디설파이드	Cat 0	0	
2930303000	티우람테트라설파이드	Cat 0	0	
2930400000	메타오닌	Cat 0	0	
2930600000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Cat 0	0	
2930700000	비스(2-하이드록시메틸)설파이드[티오디글리콜(INN)]	Cat 0	0	
2930800000	알디카브(ISO), 캄타폴(ISO) 및 메타미도 포스(ISO)	Cat 0	0	
2930901000	2-아미노-4-메틸티오부티르산나트륨	Cat 0	0	
2930902010	티오우레아	Cat 0	0	
2930902020	티오카르바닐리드	Cat 0	0	
2930902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0902099	기타	Cat 0	0	
2930903010	티오알코올	Cat 0	0	
2930903020	티오페놀	Cat 0	0	
2930903030	엔,엔-디아소프로필-메타-아미노에탄티올	Cat 0	0	
2930903040	엔-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또는 이소프로필) 아미노에탄-2-티올과 이들의 수소화된 염들	Cat 0	0	
2930904020	티오아닐린	Cat 0	0	
2930904090	기타	Cat 0	0	
2930905010	2-클로로 에틸클로로메틸설파이드	Cat 0	0	
2930905020	비스(2-클로로에틸)설파이드	Cat 0	0	
2930905070	1,3-비스(2-클로로에틸디올) 포스폰-펜타	Cat 0	0	
2930905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930906000	[에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와 이들의 알킬화나 수산화된 염들	Cat 0	0	
2930907000	오, 오-디에틸에스-[2-(디에틸아미노)에틸]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그의 알킬화나 수산화된 염들	Cat 0	0	
2930908000	오-에틸, 에스-페닐 에틸포스포노티올로티오에이트(포노포스)	Cat 0	0	
2930909010	티오산	Cat 0	0	
2930909020	이소티오시아네이트	Cat 0	0	
2930909030	시스테인	Cat 0	0	
2930909040	시스틴	Cat 0	0	
2930909050	글루타티온	Cat 0	0	
2930909060	8-클로로-6-토시록틴산에틸에스테르	Cat 0	0	
2930909070	하나의 인(磷) 원자가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화합물	Cat 0	0	
2930909080	디티오키르본산염(크산틴산염)	Cat 0	0	
2930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0909099	기타	Cat 0	0	
2931100000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Cat 0	0	
2931200000	트리부틸린 화합물	Cat 0	0	
2931310000	디에틸 메틸포스포네이트	Cat 0	0	
2931320000	디에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Cat 0	0	
2931330000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Cat 0	0	
2931340000	3-(트리하이드록시시릴)프로필 메틸포스포네이트 나트륨	Cat 0	0	
2931350000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포피넨 2,4,6-트리옥사이드	Cat 0	0	
2931360000	(5-에틸-2-메틸-2-옥사도-1,3,2-디옥사포스포피난-5-일)에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Cat 0	0	
2931370000	비스[(5-에틸-2-메틸-2-옥사도-1,3,2-디옥사포스포피난-5-일)에틸] 메틸포스포네이트	Cat 0	0	
2931380000	메틸포스포산과 (아미노아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Cat 0	0	
2931390000	기타	Cat 0	0	
2931901010	2-클로로비닐 디클로로아르신	Cat 0	0	
2931901020	비스(2-클로로비닐)클로로아르신	Cat 0	0	
2931901030	트리스(2-클로로비닐) 아르신	Cat 0	0	
2931901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1901099	기타	Cat 0	0	
2931902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 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나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에스테르, 이들의 알킬화나 수산화된 염들	Cat 0	0	
2931902200	오-이소프로필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Cat 0	0	
2931902300	오-피나콜릴 메틸포스포노클로리데이트	Cat 0	0	
29319024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노플루오리데이트	Cat 0	0	
2931902500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알킬을 포함한다) 엔, 엔-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포스포라미도시아니데이트	Cat 0	0	
2931902913	디에틸 메틸포스포네이트	Cat 0	0	
2931902914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Cat 0	0	
2931902915	기타[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로 한정한다]	Cat 0	0	
2931902919	기타	Cat 0	0	
29319029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1902999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931903010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포스포닐 디플루오라이드	Cat 0	0	
2931903090	기타	Cat 0	0	
2931904030	에틸포스포닐디클로라이드	Cat 0	0	
2931904090	기타	Cat 0	0	
2931909010	디부틸 탄 옥사이드	Cat 0	0	
2931909020	디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Cat 0	0	
2931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1909099	기타	Cat 0	0	
2932110000	테트라히드로푸란	Cat 0	0	
2932120000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Cat 0	0	
2932131000	푸르푸릴 알코올	Cat 0	0	
2932132000	테트라히드로푸르푸릴 알코올	Cat 0	0	
2932140000	수크할로스	Cat 0	0	
29321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2199000	기타	Cat 0	0	
2932201010	쿠마린	Cat 0	0	
2932201020	메틸쿠마린	Cat 0	0	
2932201030	에틸쿠마린	Cat 0	0	
2932209010	노나락톤	Cat 0	0	
2932209020	운데카락톤	Cat 0	0	
2932209030	부티로락톤	Cat 0	0	
2932209040	산토닌	Cat 0	0	
2932209050	페닐프탈레인	Cat 0	0	
2932209060	글루쿠로노락톤	Cat 0	0	
2932209070	탈수소초산과 그 염	Cat 0	0	
2932209080	아세틸케텐(디케텐)	Cat 0	0	
29322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2209099	기타	Cat 0	0	
2932910000	이소사프롤	Cat 0	0	
2932920000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Cat 0	0	
2932930000	피페로닐	Cat 0	0	
2932940000	사프롤	Cat 0	0	
2932950000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Cat 0	0	
2932991000	디옥산	Cat 0	0	
2932992000	벤조푸란(쿠마론)	Cat 0	0	
2932993000	시네올	Cat 0	0	
2932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2999090	기타	Cat 0	0	
2933111000	메틸렌비스(1-페닐-2,3-디메틸-4-메틸아미노피라조론-5)	Cat 0	0	
2933119010	페나존(안티파린)	Cat 0	0	
2933119030	설파린	Cat 0	0	
2933119040	이소프로필 안티피린	Cat 0	0	
293311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3119099	기타	Cat 0	0	
2933191000	피라조론과 그 유도체	Cat 0	0	
2933199010	페닐부타존	Cat 0	0	
2933199020	피라졸레이트	Cat 0	0	
29331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3199099	기타	Cat 0	0	
2933211000	히단토인	Cat 0	0	
2933212000	히단토인의 유도체	Cat 0	0	
2933291000	리시딘	Cat 0	0	
29332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3299090	기타	Cat 0	0	
2933311000	파리딘	Cat 0	0	
2933312000	파리딘의 염	Cat 0	0	
2933321000	피페리딘	Cat 0	0	
2933329000	피페리딘의 염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933330000	알펜타닐(INN) · 아날레리딘(INN) · 베지트 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디페녹 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 (INN) · 펜타일(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 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 (INN) · 피프라드롤(INN) · 피라트라미드 (INN) · 프로피랑(INN) · 트리메페리딘 (INN)과 이들의 염	Cat 0	0	
2933391000	아소니코틴산 히드라지드	Cat 0	0	
2933393000	3-하이드록시-1-메틸피페리딘	Cat 0	0	
2933394000	3-퀴뉴클리디닐 벤질레이트	Cat 0	0	
2933395000	퀴뉴클리딘-3-올	Cat 0	0	
29333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3399090	기타	Cat 0	0	
2933410000	레보파눌(INN)과 그 염	Cat 0	0	
2933491000	피비나움파모에이트	Cat 0	0	
29334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3499090	기타	Cat 0	0	
2933520000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Cat 0	0	
2933530000	아로바르비탈(INN) · 아모바르비탈(INN) · 바르비탈(INN) · 부탈비탈(INN) · 부도바르 비탈(INN) · 싸이클로바르비탈(INN) · 메틸 페노바르비탈(INN) · 펜토바르비탈(INN) · 페노바르비탈(INN) · 섹부타바르비탈(INN) · 세코바르비탈(INN) · 비날비탈(INN)과 이들의 염	Cat 0	0	
2933540000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 산)와 이들의 염	Cat 0	0	
2933550000	로프라졸람(INN) · 메크로과론(INN) · 메타 과론(INN) · 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Cat 0	0	
2933591100	5-플루오로우라실	Cat 0	0	
2933591910	파리미딘	Cat 0	0	
29335919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3591999	기타	Cat 0	0	
2933592010	피페라진	Cat 0	0	
2933592020	시트르산 피페라진	Cat 0	0	
2933592040	1-아미노-4-메틸피페라진	Cat 0	0	
2933592090	기타	Cat 0	0	
2933610000	멜라민	Cat 0	0	
2933691000	염화시아놀	Cat 0	0	
2933692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	Cat 0	0	
2933699010	트리메틸렌 트리니트라민	Cat 0	0	
293369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3699099	기타	Cat 0	0	
2933710000	6-헥사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Cat 0	0	
2933720000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Cat 0	0	
2933791000	아사틴	Cat 0	0	
2933792000	2- 히드록시퀴놀린	Cat 0	0	
2933793000	1-비닐-2-피롤리돈	Cat 0	0	
2933799000	기타	Cat 0	0	
2933910000	알프라졸람(INN) · 카마제팜(INN) · 클로르 디아제폭사이드(INN) · 클로나제팜(INN) · 클로라제페이트 · 델로라제팜(INN) · 디아 제팜(INN) · 에스타졸람(INN) · 에틸로프라 제페이트(INN) · 플르디아제팜(INN) · 플루 니트라제팜(INN) · 플루라제팜(INN) · 할라 제팜(INN) · 로라제팜(INN) · 로르메타제팜 (INN) · 마진돌(INN) · 메다제팜(INN) · 미 다졸람(INN) · 니메타제팜(INN) · 니트라제 팜(INN) · 놀다제팜(INN) · 옥사제팜(INN) · 피나제팜(INN) · 프라제팜(INN) · 피로발 레론(INN) · 테마제팜(INN) · 테트라제팜 (INN) · 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Cat 0	0	
29339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3929000	기타	Cat 0	0	
2933991000	인돌과 그 유도체	Cat 0	0	
2933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3999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934101000	아미노티아졸과 그 유도체	Cat 0	0	
29341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4109090	기타	Cat 0	0	
2934201000	벤조티아졸	Cat 0	0	
2934202000	머케프토 벤조티아졸	Cat 0	0	
2934203000	디벤조티아졸린 디술파이드	Cat 0	0	
29342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4209090	기타	Cat 0	0	
2934301000	페노티아진(티오디페닐아민)	Cat 0	0	
2934309000	기타	Cat 0	0	
2934910000	아미노렉스(INN) · 브로티졸람(INN) · 클로티아제팜(INN) · 클록사졸람(INN) · 맥스트로모라미드(INN) · 할록사졸람(INN) · 케타졸람(INN) · 메소카브(INN) · 옥사졸람(INN) · 페올린(INN) · 펜디메트라진(INN) · 펜메트라진(INN) · 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Cat 0	0	
2934991000	모르포린	Cat 0	0	
2934992000	핵산, 이들의 염과 유도체	Cat 0	0	
2934993000	7-아미노세팔로스פור린산	Cat 0	0	
293499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2	
2934999090	기타	Cat 10	5	
2935100000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Cat 0	0	
2935200000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Cat 0	0	
2935300000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Cat 0	0	
2935400000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Cat 0	0	
2935500000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Cat 0	0	
2935901000	2-아미노-엔-메틸벤젠 술폰아닐리드	Cat 0	0	
2935902000	솔파메톡사졸	Cat 0	0	
2935903010	솔파티아졸	Cat 0	0	
2935903090	기타	Cat 0	0	
29359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5909090	기타	Cat 0	0	
2936210000	비타민 A와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20000	비타민 B1과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30000	비타민 B2와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40000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50000	비타민 B6와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60000	비타민 B12와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71000	아스코르브산	Cat 0	0	
2936272000	아스코르브산나트륨	Cat 0	0	
2936273000	아스코르브산 칼슘	Cat 0	0	
2936279000	기타	Cat 0	0	
2936281000	조산알파토포페롤	Cat 0	0	
2936289000	기타	Cat 0	0	
2936291010	비타민 B9	Cat 0	0	
2936291090	기타	Cat 0	0	
2936292000	비타민 D와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93000	비타민 H와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94000	비타민 K와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95000	니코틴아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99000	기타	Cat 0	0	
2936901000	프로비타민(혼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6909000	기타	Cat 0	0	
2937111000	소호 제2933.9호나 제2934.9호의 것	Cat 0	0	
2937119000	기타	Cat 0	0	
2937120000	인슐린과 그 염	Cat 0	0	
293719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Cat 0	0	
2937199000	기타	Cat 0	0	
2937211000	코르티손	Cat 0	0	
2937212000	히드로코르티손	Cat 0	0	
2937213000	프레드니손	Cat 0	0	
2937214000	프레드니손	Cat 0	0	
29372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Cat 0	0	
2937230000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겐	Cat 0	0	
2937292000	소호 제2914.50호의 것	Cat 0	0	
293729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937501000	소호 제2918.17호, 제2918.19호, 제2918.9호의 것	Cat 0	0	
2937502000	소호 제2934.9호의 것	Cat 0	0	
2937509000	기타	Cat 0	0	
2937901000	소호 제2933.9호, 제2934.9호의 것	Cat 0	0	
2937902100	에피네프린	Cat 0	0	
2937902910	소호 제2922.50호의 것	Cat 0	0	
2937902990	기타	Cat 0	0	
2937903000	아미노산 유도체	Cat 0	0	
2937909000	기타	Cat 0	0	
2938101000	루토시드(루틴)	Cat 0	0	
2938102000	루토시드의 유도체	Cat 0	0	
2938901000	디기탈리스 글리코시드	Cat 0	0	
2938902000	글리시리진과 글리시리제이트	Cat 0	0	
2938903000	사포닌	Cat 0	0	
2938904000	스테비아사이드	Cat 0	0	
2938909000	기타	Cat 0	0	
2939111000	모르핀	Cat 0	0	
2939112000	에틸모르핀	Cat 0	0	
2939113000	코데인	Cat 0	0	
2939114000	양귀비 줄기 농축물(전종량의 100분의 50 이상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9119000	기타	Cat 0	0	
2939190000	기타	Cat 0	0	
2939200000	기타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Cat 0	0	
2939300000	카페인과 그 염	Cat 0	0	
2939411000	에페드린	Cat 0	0	
2939419000	에페드린의 염	Cat 0	0	
2939421000	슈도에페드린(INN)	Cat 0	0	
2939429000	슈도에페드린의 염	Cat 0	0	
2939430000	캐진(INN)과 그 염	Cat 0	0	
2939440000	놀에페드린과 그 염	Cat 0	0	
2939490000	기타	Cat 0	0	
2939510000	페넨탈린(INN)과 그 염	Cat 0	0	
2939590000	기타	Cat 0	0	
2939611000	엘고메트린(INN)	Cat 0	0	
2939619000	엘고메트린(INN)의 염	Cat 0	0	
2939621000	엘고타민(INN)	Cat 0	0	
2939629000	엘고타민(INN)의 염	Cat 0	0	
2939631000	리세르그산	Cat 0	0	
2939639000	리세르그산의 염	Cat 0	0	
2939690000	기타	Cat 0	0	
2939710000	코카인 · 엑고닌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Cat 0	0	
2939791000	니코틴과 그 염	Cat 0	0	
2939799000	기타	Cat 0	0	
2939801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5	
2939801090	기타	Cat 10	0/5	
2939802000	히스트리노코톡신, 테트로도톡신	Cat 0	0	
2939809000	기타	Cat 10	0/5	
2940001010	갈락토오스	Cat 0	0	
2940001020	소르보오스	Cat 0	0	
2940001030	키살로오스	Cat 0	0	
2940001090	기타	Cat 0	0	
2940002010	히드록시프로필 슈크로오스	Cat 0	0	
2940002090	기타	Cat 0	0	
2941101000	페니실린 지(G) 칼륨	Cat 0	0	
2941109010	페니실린 지(G) 나트륨	Cat 0	0	
2941109020	페니실린 브이(V)	Cat 0	0	
2941109090	기타	Cat 0	0	
294120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41209000	기타	Cat 0	0	
2941301000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Cat 0	0	
2941302000	염산 옥시 테트라사이클린	Cat 0	0	
2941303000	염산 클로로 테트라사이클린	Cat 0	0	
2941309000	기타	Cat 0	0	
2941400000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Cat 0	0	
2941501000	에리트로마이신 티오시아네이트	Cat 0	0	
29415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2941902000	11-알파글로로-6-데옥시-6-데메틸-6-메틸렌-5-옥시테트라시클린-파라톨루엔술포네이트	Cat 0	0	
2941909010	황산 카나마이신	Cat 0	0	
2941909020	레다마이신	Cat 0	0	
2941909030	황산 겐타마이신	Cat 0	0	
2941909040	류코마이신	Cat 0	0	
2941909091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41909099	기타	Cat 0	0	
2942001000	케텐	Cat 0	0	
2942009010	아세트 아비산 동	Cat 0	0	
2942009090	기타	Cat 0	0	
3001201000	선(腺) 추출물	Cat 0	0	
3001202000	간장 추출물	Cat 0	0	
3001203000	담낭 추출물	Cat 0	0	
3001204000	췌장 추출물	Cat 0	0	
3001205000	위장 추출물	Cat 0	0	
3001209000	기타	Cat 0	0	
3001901010	인체의 것	Cat 0	0	
3001901090	기타	Cat 0	0	
3001902010	웅담	Cat 0	0	
3001902090	기타	Cat 0	0	
3001909010	헤파린과 그 염	Cat 0	0	
3001909020	인체의 것	Cat 0	0	
3001909090	기타	Cat 0	0	
3002110000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	Cat 0	0	
300212100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Cat 0	0	
3002129010	면역혈청	Cat 0	0	
3002129021	헤모글로빈	Cat 0	0	
3002129022	글로불린(globulin)	Cat 0	0	
3002129030	트롬빈(thrombin)과 프로트롬비나제(prothrombinase)	Cat 0	0	
3002129040	혈청과 혈장(합성인 것은 제외한다)	Cat 0	0	
3002129090	기타	Cat 0	0	
3002131000	소호 제2925.29호, 제2933.29호, 제2934.99호, 제2937.90.1000호, 제3002.90.3010호, 제3907.20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Cat 0	0/5	
3002139000	기타	Cat 0	0	
3002141000	소호 제2925.29호, 제2933.29호, 제2934.99호, 제2937.90.1000호, 제3002.90.3010호, 제3907.20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Cat 0	0/5	
3002149000	기타	Cat 0	0	
3002150000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Cat 0	0	
3002191000	소호 제2925.29호, 제2933.29호, 제2934.99호, 제2937.90.1000호, 제3002.90.3010호, 제3907.20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Cat 0	0/5	
3002199000	기타	Cat 0	0	
3002200000	백신(인체의약품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2301000	구제역 백신	Cat 0	0	
3002309000	기타	Cat 0	0	
3002901000	사람의 피	Cat 0	0	
3002902000	동물의 피(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2903010	색사톡신(saxitoxin)	Cat 0	0	
3002903020	리신(ricin)	Cat 0	0	
3002903090	기타	Cat 0	0	
3002904000	미생물 배양체	Cat 0	0	
3002905000	바이러스와 항바이러스	Cat 0	0	
3002906000	살균소	Cat 0	0	
3002907000	제2933.29호의 것[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는 제외한다]	Cat 0	0	
3002908000	소호 제3002.12.1000호, 제3002.12.9021호, 제3002.12.9022호, 3002.12.9030호의 것	Cat 0	0	
30029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003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Cat 0	0	
3003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Cat 0	0	
3003201000	항결핵제와 항암제	Cat 0	0	
3003209000	기타	Cat 0	0	
3003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Cat 0	0	
3003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Cat 0	0	
3003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Cat 0	0	
3003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Cat 0	0	
3003397000	남성 호르몬제제	Cat 0	0	
3003398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Cat 0	0	
3003399000	기타	Cat 0	0	
3003410000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Cat 0	0	
3003420000	류코에페드린(leukine)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Cat 0	0	
3003430000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Cat 0	0	
3003491000	항암제	Cat 0	0	
3003499000	기타	Cat 0	0	
300360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Cat 0	0	
30039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 항암제	Cat 0	0	
3003909100	아스피린제제	Cat 0	0	
3003909200	황히스타민제제	Cat 0	0	
3003909300	비타민제제	Cat 0	0	
3003909400	녹용제제	Cat 0	0	
3003909500	인삼제제	Cat 0	0	
3003909900	기타	Cat 0	0	
3004101000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를 함유하는 것	Cat 0	0	
3004102000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Cat 0	0	
30042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 항암제	Cat 0	0	
3004209100	클로람페니콜제제	Cat 0	0	
3004209200	에리트로마이신제제	Cat 0	0	
3004209300	옥시테트라 사이클린제제	Cat 0	0	
3004209400	카나마이신제제	Cat 0	0	
3004209900	기타	Cat 0	0	
3004310000	인슐린을 함유한 것	Cat 0	0	
3004320000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Cat 0	0	
3004391010	뇌하수체 전엽 호르몬제제	Cat 0	0	
3004391020	뇌하수체 후엽 호르몬제제	Cat 0	0	
3004392000	수액성 호르몬제제	Cat 0	0	
3004393000	갑상샘과 부갑상샘 호르몬제제	Cat 0	0	
3004394000	단백동화 스테로이드제제	Cat 0	0	
3004395000	부신피질 호르몬제제	Cat 0	0	
3004396000	남성 호르몬제제	Cat 0	0	
3004397000	난포와 황체 호르몬제제	Cat 0	0	
3004399000	기타	Cat 0	0	
3004410000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Cat 0	0	
3004420000	류코에페드린(leukine)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Cat 0	0	
3004430000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Cat 0	0	
3004491000	항암제	Cat 0	0	
3004492010	코카인제제	Cat 0	0	
3004492020	맥각알칼로이드제제	Cat 0	0	
3004492030	니코틴제제	Cat 0	0	
3004493000	아트로핀과 호마트로핀제제	Cat 0	0	
3004499000	기타	Cat 0	0	
3004501000	비타민 A제제	Cat 0	0	
3004502010	비타민 B1제제	Cat 0	0	
3004502090	기타	Cat 0	0	
3004503000	비타민 C제제	Cat 0	0	
3004504000	비타민 D제제	Cat 0	0	
3004505000	비타민 E제제	Cat 0	0	
3004506000	비타민 H제제	Cat 0	0	
3004507000	비타민 K제제	Cat 0	0	
3004509000	기타	Cat 0	0	
3004600000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Cat 0	0	
3004901000	항결핵제 · 구충제 · 항암제	Cat 0	0	
3004909100	아스피린제제	Cat 0	0	
3004909200	황히스타민제제	Cat 0	0	
3004909300	녹용제제	Cat 0	0	
3004909400	인삼제제	Cat 0	0	
3004909500	로열젤리 제제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004909900	기타	Cat 0	0	
3005101000	반창고	Cat 0	0	
3005109000	기타	Cat 0	0	
3005901000	탈지면	Cat 0	0	
3005902000	거즈	Cat 0	0	
3005903000	붕대	Cat 0	0	
3005904000	조제 드레싱과 습포제	Cat 0	0	
3005909000	기타	Cat 0	0	
3006101010	살균한 외과용 캐터гут(catgut)	Cat 0	0	
3006101020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Cat 0	0	
3006102000	살균한 외과용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Cat 0	0	
3006103000	살균한 라미나리아와 살균한 라미나리아의 텐트	Cat 0	0	
3006104000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Cat 0	0	
300610501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300610502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Cat 0	0	
3006105090	기타	Cat 0	0	
3006200000	혈액형 분류용 시약	Cat 0	0	
3006301000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Cat 0	0	
3006302000	진단용 시약(환자 투여용)	Cat 0	0	
3006401000	치과용 시멘트	Cat 0	0	
3006402000	치과용 충전제	Cat 0	0	
3006403000	뼈 형성용 시멘트	Cat 0	0	
3006500000	구급상자와 구급대	Cat 0	0	
3006600000	제2937호의 호르몬과 기타 제품이나 살정 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 성의 화학조제품	Cat 0	0	
3006700000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 기 사이의 접촉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 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Cat 0	0	
3006910000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Cat 0	0	
3006921010	피부와 뼈(식육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6921090	기타	Cat 0	0	
3006922010	혈액 분획물의 조제품, 의약품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Cat 0	0	
3006922020	헤모글로빈과 글로불린(globulin)	Cat 0	0	
3006922031	색시톡신(saxitoxin)	Cat 0	0	
3006922032	리신(ricin)	Cat 0	0	
3006922090	기타	Cat 0	0	
3006923000	제3003호와 제3004호의 것	Cat 0	0	
3006924000	제3005호와 제3006호의 것	Cat 0	0	
3006925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Cat 0	0	
3101001010	구아노(guano)	Cat 0	0	
3101001090	기타	Cat 0	0	
3101002000	식물성 비료	Cat 0	0	
3101003000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Cat 0	0	
3102101000	비료나 비료제조용	Cat 3	2	
3102109000	기타	Cat 3	5	
3102210000	황산암모늄	Cat 0	0	
3102291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겹염	Cat 0	0	
3102292000	황산암모늄과 질산암모늄의 혼합물	Cat 0	0	
3102300000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3102400000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102501000	천연의 것	Cat 0	0	
3102509000	기타	Cat 0	0	
3102600000	질산칼슘·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Cat 0	0	
3102800000	요소·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102901000	질산칼슘과 질산마그네슘의 겹염	Cat 0	0	
3102909000	기타	Cat 0	0	
3103110000	오산화인(P2O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Cat 0	0	
3103190000	기타	Cat 0	0	
3103901000	소성인산석회	Cat 0	0	
3103902000	오르토인산수소칼슘(플루오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 이상으로 한정한다)	Cat 0	0	
3103903000	기타 인산석회	Cat 0	0	
3103904000	혼합 인산질비료	Cat 0	0	
31039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104200000	염화칼륨	Cat 0	0	
310430100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총량의 100분의 52 이하인 것	Cat 0	0	
3104309000	기타	Cat 0	0	
3104901010	산화칼륨으로 계산한 칼륨분의 함유량이 전 총량의 100분의 30 이하인 것	Cat 0	0	
3104901090	기타	Cat 0	0	
3104909000	기타	Cat 0	0	
3105100000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등궤넉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 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 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Cat 0	0	
3105200000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Cat 0	0	
3105300000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Cat 0	0	
3105400000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 모늄)의 혼합물	Cat 0	0	
3105510000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Cat 0	0	
3105590000	기타	Cat 0	0	
3105600000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 료	Cat 0	0	
3105901000	질소와 칼륨을 함유한 비료	Cat 0	0	
3105909000	기타	Cat 0	0	
3201100000	퀘브라초 추출물(quebracho extract)	Cat 0	0	
3201200000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Cat 0	0	
3201901010	망그로브 추출물(extract)	Cat 0	0	
3201901020	마로보란 추출물(extract)	Cat 0	0	
3201901040	감비어 추출물(extract)	Cat 0	0	
3201901090	기타	Cat 0	0	
3201902000	탄닌산과 그 염	Cat 0	0	
3201903000	탄닌의 에테르나 에스테르	Cat 0	0	
3201904000	그 밖의 탄닌의 유도체	Cat 0	0	
3202101000	방향족 신탄스	Cat 0	0	
3202102000	염화 알킬술폰	Cat 0	0	
3202103000	수지성 유연제	Cat 0	0	
3202109000	기타	Cat 0	0	
3202901000	무기유연제	Cat 0	0	
3202902000	인조 탈회제	Cat 0	0	
3202909000	기타	Cat 0	0	
3203001100	천연 인디고(indigo)	Cat 0	0	
3203001910	로그우드(logwood)	Cat 0	0	
3203001930	염록소	Cat 0	0	
3203001990	기타	Cat 0	0	
3203002010	코치니알(cochineal)	Cat 0	0	
3203002030	세피아(sepia)	Cat 0	0	
3203002090	기타	Cat 0	0	
3203003000	식물성이나 동물성 착색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Cat 0	0	
3204111000	분산성 염료 중간체[프레스케익(press cake)으로 한정한다]	Cat 0	0	
3204119000	기타	Cat 0	0	
3204121000	산성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품	Cat 0	0	
3204122000	매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Cat 0	0	
3204130000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품	Cat 0	0	
3204140000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Cat 0	0	
3204150000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 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Cat 0	0	
3204160000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품	Cat 0	0	
3204170000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Cat 0	0	
3204191000	유기용제 용해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Cat 0	0	
3204192000	래피드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품	Cat 0	0	
3204193000	황화염료·황화 건염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Cat 0	0	
3204199000	기타	Cat 0	0	
3204200000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 산물	Cat 0	0	
320490101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Cat 0	0	
3204901090	기타	Cat 0	0	
32049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205001000	플라스틱 안료색소	Cat 0	0	
3205009000	기타	Cat 0	0	
3206110000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Cat 0	0	
3206190000	기타	Cat 0	0	
3206200000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Cat 0	0	
3206411000	군청	Cat 0	0	
3206419000	기타	Cat 0	0	
3206421000	리도폰(lithopone)	Cat 0	0	
3206429000	기타	Cat 0	0	
3206491000	아연화	Cat 0	0	
3206492000	광물성 블랙	Cat 0	0	
3206493000	어스칼러(colored earth)	Cat 0	0	
3206494000	용해성 반다이케브라운	Cat 0	0	
3206495000	코발트 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	Cat 0	0	
3206496000	카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Cat 0	0	
3206499000	기타	Cat 0	0	
3206500000	주마노프(nutmopone)로 가공된 무기	Cat 0	0	
3207100000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Cat 0	0	
3207201000	벌랑과 유약	Cat 0	0	
3207202000	슬립	Cat 0	0	
3207209000	기타	Cat 0	0	
3207301000	금으로 만든 것	Cat 0	0	
3207302000	백금으로 만든 것	Cat 0	0	
3207303000	팔라듐으로 만든 것	Cat 0	0	
3207304000	은으로 만든 것	Cat 0	0	
3207309000	기타	Cat 0	0	
3207400000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208101010	에나멜	Cat 0	0	
3208101090	기타	Cat 0	0	
320810200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Cat 0	0	
320810300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Cat 0	0	
3208201011	에나멜	Cat 0	0	
3208201019	기타	Cat 0	0	
32082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Cat 0	0	
32082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Cat 0	0	
3208202011	에나멜	Cat 0	0	
3208202019	기타	Cat 0	0	
3208202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Cat 0	0	
3208202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Cat 0	0	
3208901011	에나멜	Cat 0	0	
3208901019	기타	Cat 0	0	
32089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Cat 0	0	
3208901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Cat 0	0	
3208909011	에나멜	Cat 0	0	
3208909019	기타	Cat 0	0	
3208909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Cat 0	0	
3208909030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Cat 0	0	
3209101011	에나멜	Cat 0	0	
3209101019	기타	Cat 0	0	
32091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Cat 0	0	
3209102010	페인트(에나멜을 포함한다)	Cat 0	0	
3209102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Cat 0	0	
3209901011	에나멜	Cat 0	0	
3209901019	기타	Cat 0	0	
3209901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Cat 0	0	
3209909011	에나멜	Cat 0	0	
3209909019	기타	Cat 0	0	
3209909020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Cat 0	0	
3210001011	에나멜	Cat 0	0	
3210001019	기타	Cat 0	0	
3210001091	에나멜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210001099	기타	Cat 0	0	
3210002010	오일 바니시(vernish)	Cat 0	0	
3210002020	락·천연 경이나 천연 수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ernish)와 래커(lacquer)	Cat 0	0	
3210002030	역청질·피치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바니시(vernish)	Cat 0	0	
3210002040	용제를 함유하지 않은 액상 바니시(vernish)	Cat 0	0	
3210003010	디스템퍼(distemper)	Cat 0	0	
3210003090	기타	Cat 0	0	
3211000000	조제 드라이어	Cat 0	0	
3212100000	스탬프용 박(箔)	Cat 0	0	
3212901000	소매용의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Cat 0	0	
3212909000	기타	Cat 0	0	
3213101000	유성 물감	Cat 0	0	
3213102000	수성 물감	Cat 0	0	
3213109000	기타	Cat 0	0	
3213901000	유성 물감	Cat 0	0	
3213902000	수성 물감	Cat 0	0	
3213909000	기타	Cat 0	0	
321410106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3214101080	수지매스틱과 수지시멘트	Cat 0	0	
3214101090	기타	Cat 0	0	
3214102000	도장용 충전제	Cat 0	0	
3214109000	기타	Cat 0	0	
3214900000	기타	Cat 0	0	
3215110000	흑색	Cat 0	0	
3215190000	기타	Cat 0	0	
3215901000	필기용 잉크	Cat 0	0	
3215902000	제도용 잉크	Cat 0	0	
3215903000	복사용 잉크	Cat 0	0	
3215904010	유성	Cat 0	0	
3215904020	수성	Cat 0	0	
3215904030	유성·수성 겸용	Cat 0	0	
3215905000	금속성 잉크	Cat 0	0	
3215906010	유성	Cat 0	0	
3215906020	수성	Cat 0	0	
3215906030	유성·수성 겸용	Cat 0	0	
3215909000	기타	Cat 0	0	
3301120000	오렌지유	Cat 0	0	
3301130000	레몬유	Cat 0	0	
3301190000	기타	Cat 0	0	
3301240000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Cat 0	0	
3301250000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Cat 0	0	
3301291000	바닐라유	Cat 0	0	
3301292000	시트로넬라유	Cat 0	0	
3301293000	신나몬바크유	Cat 0	0	
3301294000	신나몬리프유	Cat 0	0	
3301299000	기타	Cat 0	0	
3301300000	레지노이드(resinoid)	Cat 0	0	
3301901000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에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Cat 0	0	
3301902000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	Cat 0	0	
3301903000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Cat 0	0	
3301904100	아편에서 추출한 것	Cat 0	0	
3301904200	감초에서 추출한 것	Cat 0	0	
3301904300	홉(hop)에서 추출한 것	Cat 0	0	
3301904400	제충국(除蟲菊)에서 추출한 것이나 로테논(rotenone)을 함유하는 식물 뿌리에서 추출한 것	Cat 0	0	
3301904510	백상에서 추출한 것	Cat 0	0	
3301904520	홍상에서 추출한 것	EX	603.4	
3301904530	그 밖의 인삼에서 추출한 것	Cat 0	0	
3301904600	캐슈너트 쉘액(cashew nut shell liquid)에서 추출한 것	Cat 0	0	
3301904700	생칠(生漆)에서 추출한 것	Cat 0	0	
3301904800	기타	Cat 0	0	
3302101000	식품공업용	Cat 0	0	
3302102011	알코올성 합성 조제품	Cat 0	0	
3302102019	기타	Cat 0	0	
3302102090	기타	Cat 0	0	
3302900000	기타	Cat 0	0	
3303001000	향수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303002000	화장수	Cat 0	0	
3304101000	립스틱	Cat 0	0	
3304109000	기타	Cat 0	0	
3304201000	아이섀도	Cat 0	0	
3304209000	기타	Cat 0	0	
3304301000	네일에나멜	Cat 0	0	
3304309000	기타	Cat 0	0	
3304911000	페이스파우더	Cat 0	0	
3304912000	베이비파우더(탈콜파우더를 포함한다)	Cat 0	0	
3304919000	기타	Cat 0	0	
3304991000	기초화장용 제품류	Cat 0	0	
3304992000	메이크업용 제품류	Cat 0	0	
3304993000	어린이용 제품류	Cat 0	0	
3304999000	기타	Cat 0	0	
3305100000	샴푸	Cat 10	5	
3305200000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Cat 0	0	
3305300000	헤어 래커(hair lacquer)	Cat 0	0	
3305901000	헤어린스	EX	5	
3305902000	헤어크림	Cat 0	0	
3305909000	기타	Cat 0	0	
3306100000	치약	Cat 0	0	
3306201011	70덱시텍스를 초과하지 않는 것	Cat 0	0	
3306201019	기타	Cat 0	0	
3306201020	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를 초과하는 것	Cat 0	0	
3306209000	기타	Cat 0	0	
3306901000	구강위생용 제품류	Cat 0	0	
3306902000	치과위생용 제품류	Cat 0	0	
3307101000	애프터 셰이빙로션	Cat 0	0	
3307109000	기타	Cat 0	0	
3307200000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Cat 0	0	
3307301000	가향한 목욕용 염	Cat 0	0	
3307302000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Cat 0	0	
3307410000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Cat 0	0	
3307490000	기타	Cat 0	0	
3307901000	탈모제	Cat 0	0	
3307902000	향낭	Cat 0	0	
3307903000	콘택트렌즈의 액이나 의안의 액	Cat 0	0	
3307909000	기타	Cat 0	0	
3401111000	약용비누	Cat 0	0	
3401119000	기타	Cat 10	5	
3401191010	세탁비누	Cat 0	0	
3401191090	기타	Cat 10	5	
3401192000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wadding) · 펠트(felt)와 부직포	Cat 0	0	
3401200000	그 밖의 모양의 비누	EX	5	
3401300000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3402110000	elaiosin	Cat 0	0	
3402120000	elaiosin	Cat 0	0	
340213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402139000	기타	Cat 0	0	
3402190000	기타	Cat 0	0	
3402201000	조제 세제	Cat 0	0	
3402202000	조제 청정제	Cat 0	0	
3402209000	기타	Cat 0	0	
3402901000	조제 계면활성제	Cat 0	0	
3402902000	조제 세제	Cat 0	0	
3402903000	조제 청정제	Cat 0	0	
34031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Cat 0	0	
34031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Cat 0	0	
3403119000	기타	Cat 0	0	
3403191000	조제 절삭유	Cat 0	0	
3403192000	블트 · 너트 방출제	Cat 0	0	
3403193000	방청제나 부식방지제	Cat 0	0	
3403194000	이형(mold release) 조제품	Cat 0	0	
3403195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Cat 0	0	
3403199000	기타	Cat 0	0	
3403911000	방직용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Cat 0	0	
3403912000	가죽이나 모피의 처리용 조제품	Cat 0	0	
3403919000	기타	Cat 0	0	
3403991000	조제 절삭유	Cat 0	0	
3403992000	신선용(伸線用) 조제 윤활제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403999000	기타	Cat 0	0	
3404200000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Cat 0	0	
3404901010	글로로 파라핀왁스	Cat 0	0	
3404901030	폴리알킬렌왁스	Cat 0	0	
3404901040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Cat 0	0	
3404901090	기타	Cat 0	0	
3404902000	조제 왁스	Cat 0	0	
3405100000	산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Cat 0	0	
3405200000	목재가구 · 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 · 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Cat 0	0	
3405300000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Cat 0	0	
3405400000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 · 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Cat 0	0	
3405901010	초크를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3405901020	규조토를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3405901030	다이아몬드 가루나 더스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3405901090	기타	Cat 0	0	
3405909000	기타	Cat 0	0	
340600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3407001000	조형용 페이스트(paste)	Cat 0	0	
3407002000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	Cat 0	0	
3407003000	플라스터를 기본 재료로 한 기타 치과용 조제품	Cat 0	0	
3501101000	커피 크림어 제조용	Cat 0	0	
3501109000	기타	Cat 0	0	
3501901110	커피 크림어 제조용	Cat 0	0	
3501901190	기타	Cat 0	0	
3501901200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Cat 0	0	
3501902000	카세인 글루(casein glue)	Cat 0	0	
3502110000	건조한 것	Cat 0	0	
3502190000	기타	Cat 0	0	
3502200000	밀크알부민(물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Cat 0	0	
3502901000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Cat 0	0	
3502909000	기타	Cat 0	0	
3503001010	젤라틴	Cat 0	0	
3503001020	젤라틴 유도체	Cat 0	0	
3503002000	아이징글라스(isinglass)	Cat 0	0	
3503003000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	Cat 0	0	
3504001010	펩톤(peptone)	Cat 0	0	
3504001020	펩톤(peptone) 유도체	Cat 0	0	
3504002010	케라틴	Cat 0	0	
3504002020	핵산단백질	Cat 0	0	
3504002030	유리단백질	Cat 0	0	
3504002090	기타	Cat 0	0	
3504003000	하이드 파우더(hide powder)	Cat 0	0	
3505101000	덱스트린	Cat 0	0	
3505102000	가용성 전분(아밀로겐)	Cat 0	0	
3505103000	배소전분	EX	192.8	
3505104010	식품용	EX	308.5	
3505104090	기타	EX	308.5	
3505105010	식품용	EX	308.5	
3505105090	기타	EX	308.5	
3505109010	식품용	EX	308.5	
3505109090	기타	EX	308.5	
3505201000	전분 글루(glue)	EX	100.6	
3505202000	덱스트린 글루(glue)	EX	100.6	
3505209000	기타	EX	100.6	
3506101000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3506102000	플라스틱(인조수지를 포함한다)을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3506109000	기타	Cat 0	0	
3506911000	광학용 투명 접착 필름 접착제 · 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접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506919000	기타	Cat 0	0	
3506991000	비오텔나 글루(glue)	Cat 0	0	
3506992000	화학처리한 천연검에서 얻은 글루(glue)	Cat 0	0	
3506993000	규산염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Cat 0	0	
3506999000	기타	Cat 0	0	
3507100000	레넬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507901010	트립신	Cat 0	0	
3507901020	키모트립신	Cat 0	0	
3507901030	알파아말라제	Cat 0	0	
3507901040	리파제	Cat 0	0	
3507901090	기타	Cat 0	0	
3507902000	펩신	Cat 0	0	
3507903000	맥아효소	Cat 0	0	
3507904010	파파인	Cat 0	0	
3507904020	브로멜라인	Cat 0	0	
3507904030	피신	Cat 0	0	
3507906010	아말라제	Cat 0	0	
3507906020	프로테아제	Cat 0	0	
3507907000	펙틱효소	Cat 0	0	
3507909000	기타	Cat 0	0	
3601001000	특색화약	Cat 0	0	
3601002000	무연화약	Cat 0	0	
360200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Cat 0	0	
3603001000	도화선	Cat 0	0	
3603002000	도폭선	Cat 0	0	
3603003000	뇌관	Cat 0	0	
3603004000	점화기	Cat 0	0	
3603005000	전기뇌관	Cat 0	0	
3604100000	불꽃제품	Cat 0	0	
3604901000	신호용 조명탄	Cat 0	0	
3604909000	기타	Cat 0	0	
3605001000	황린(黃磷) 성냥	Cat 0	0	
3605009000	기타	Cat 0	0	
3606100000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액화가스연료	Cat 0	0	
3606901010	메타 연료	Cat 0	0	
3606901020	헥사민	Cat 0	0	
3606901030	고체 알코올	Cat 0	0	
3606901090	기타	Cat 0	0	
3606902010	라이터 돌	Cat 0	0	
3606902090	기타	Cat 0	0	
3606909010	라이터 돌	Cat 0	0	
3606909090	기타	Cat 0	0	
3701100000	엑스선용	Cat 0	0	
370120000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Cat 0	0	
370130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3701309100	인쇄제판용	Cat 0	0	
3701309200	인쇄회로기판용	Cat 0	0	
3701309930	평판디스플레이용[블랭크마스크(blank mask)로 한정한다]	Cat 0	0	
3701309990	기타	Cat 0	0	
370191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3701919100	인쇄제판용	Cat 0	0	
3701919200	인쇄회로기판용	Cat 0	0	
3701919900	기타	Cat 0	0	
370199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3701999100	인쇄제판용	Cat 0	0	
3701999200	인쇄회로기판용	Cat 0	0	
3701999920	항공촬영용	Cat 0	0	
3701999990	기타	Cat 0	0	
3702100000	엑스선용	Cat 0	0	
3702311110	네거티브	Cat 0	0	
3702311120	포지티브	Cat 0	0	
3702311210	네거티브	Cat 0	0	
3702311220	포지티브	Cat 0	0	
3702311910	네거티브	Cat 0	0	
3702311920	포지티브	Cat 0	0	
3702312000	인쇄제판용	Cat 0	0	
3702313000	인쇄회로기판용	Cat 0	0	
3702319000	기타	Cat 0	0	
3702321110	네거티브	Cat 0	0	
3702321120	포지티브	Cat 0	0	
3702321210	네거티브	Cat 0	0	
3702321220	포지티브	Cat 0	0	
3702321910	네거티브	Cat 0	0	
3702321920	포지티브	Cat 0	0	
3702322000	인쇄제판용	Cat 0	0	
3702323000	인쇄회로기판용	Cat 0	0	
3702329030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702329090	기타	Cat 0	0	
3702391110	네거티브	Cat 0	0	
3702391120	포지티브	Cat 0	0	
3702391210	네거티브	Cat 0	0	
3702391220	포지티브	Cat 0	0	
3702391910	네거티브	Cat 0	0	
3702391920	포지티브	Cat 0	0	
3702392000	인쇄재판용	Cat 0	0	
3702393000	인쇄회로기판용	Cat 0	0	
3702399000	기타	Cat 0	0	
3702411000	영화필름	Cat 0	0	
3702419000	기타	Cat 0	0	
3702421000	영화필름	Cat 0	0	
3702422000	인쇄재판용	Cat 0	0	
3702423000	인쇄회로기판용	EX	5	
3702429000	기타	Cat 0	0	
3702431010	네거티브	Cat 0	0	
3702431020	포지티브	Cat 0	0	
3702432000	인쇄재판용	Cat 0	0	
3702433000	인쇄회로기판용	Cat 0	0	
3702439000	기타	Cat 0	0	
3702441010	네거티브	Cat 0	0	
3702441020	포지티브	Cat 0	0	
3702442000	인쇄재판용	Cat 0	0	
3702443000	인쇄회로기판용	Cat 0	0	
3702449020	항공촬영용	Cat 0	0	
3702449090	기타	Cat 0	0	
3702521010	네거티브	Cat 0	0	
3702521020	포지티브	Cat 0	0	
3702523000	인쇄회로기판용	Cat 0	0	
3702529000	기타	Cat 0	0	
3702530000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 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 로 한정한다)	Cat 0	0	
3702541010	네거티브	Cat 0	0	
3702541020	포지티브	Cat 0	0	
3702542000	인쇄재판용	Cat 0	0	
3702543000	인쇄회로기판용	Cat 0	0	
3702549010	광전복음용	Cat 0	0	
3702549090	기타	Cat 0	0	
3702551010	네거티브	Cat 0	0	
3702551020	포지티브	Cat 0	0	
3702553000	인쇄회로기판용	Cat 0	0	
3702559000	기타	Cat 0	0	
3702561010	네거티브	Cat 0	0	
3702561020	포지티브	Cat 0	0	
3702562000	인쇄재판용	Cat 0	0	
3702569000	기타	Cat 0	0	
3702961010	네거티브	Cat 0	0	
3702961020	포지티브	Cat 0	0	
3702963000	인쇄회로기판용	Cat 0	0	
3702969000	기타	Cat 0	0	
3702971010	네거티브	Cat 0	0	
3702971020	포지티브	Cat 0	0	
3702973000	인쇄회로기판용	Cat 0	0	
3702979010	광전복음용	Cat 0	0	
3702979090	기타	Cat 0	0	
3702981010	네거티브	Cat 0	0	
3702981020	포지티브	Cat 0	0	
3702982000	인쇄재판용	Cat 0	0	
3702983000	인쇄회로기판용	Cat 0	0	
3702989000	기타	Cat 0	0	
3703101030	사진복사용	Cat 0	0	
3703101040	기록용	Cat 0	0	
3703101090	기타	Cat 0	0	
3703109030	사진복사용	Cat 0	0	
3703109090	기타	Cat 0	0	
3703201000	엑스선용	Cat 0	0	
3703203000	사진복사용	Cat 0	0	
3703204000	기록용	Cat 0	0	
3703209000	기타	Cat 0	0	
3703901000	엑스선용	Cat 0	0	
3703903000	사진복사용	Cat 0	0	
3703904000	기록용	Cat 0	0	
3703909000	기타	Cat 0	0	
3704001100	영화용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704001200	오프셋 복사용(엽서·그림엽서·카드·캘린더 제작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7040013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3704001900	기타	Cat 0	0	
3704002000	사진 인화지·판지·적물	Cat 0	0	
3705001010	엽서·그림엽서·카드와 캘린더 제작용	Cat 0	0	
3705001090	기타	Cat 0	0	
37050090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3705009090	기타	Cat 0	0	
37061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Cat 0	0	
3706102000	뉴스용	Cat 0	0	
3706103010	편집용 필름(rush)	Cat 0	0	
37061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Cat 0	0	
37061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Cat 0	0	
37061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 순히 외국 품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Cat 0	0	
3706105010	네거티브	Cat 0	0	
3706105020	포지티브	EX	5%, 140 원/m	
3706106010	네거티브	Cat 0	0	
3706106020	포지티브	Cat 0	0	
3706901000	사운드트랙만 있는 것	Cat 0	0	
3706902000	뉴스용	Cat 0	0	
3706903010	편집용 필름(rush)	Cat 0	0	
3706903020	그 밖의 네거티브 합작영화	Cat 0	0	
3706903030	그 밖의 포지티브 합작영화	Cat 0	0	
3706904000	대한민국 제작자가 외국에서 촬영한 것(단 순히 외국 품물만 촬영한 것이나 대한민국 배우가 출연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한국영화	Cat 0	0	
3706905010	네거티브	Cat 0	0	
3706905020	포지티브	Cat 0	0	
3706906010	네거티브	Cat 0	0	
3706906020	포지티브	Cat 0	0	
3707100000	감광유제	Cat 0	0	
37079010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3707901020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Cat 0	0	
3707901090	기타	Cat 0	0	
3707902100	천연색 사진용	Cat 0	1.625	
3707902910	엑스선용	Cat 0	0	
3707902920	인쇄제판용	Cat 0	1.625	
3707902990	기타	Cat 0	0	
3707903100	천연색 사진용	Cat 0	1.625	
3707903910	엑스선용	Cat 0	0	
3707903920	인쇄제판용	Cat 0	0	
3707903990	기타	Cat 0	0	
3707909100	증도제와 감도제	Cat 0	0	
3707909200	조색제	Cat 0	0	
3707909300	세정제	Cat 0	0	
3707909400	섬광재료	Cat 0	0	
3707909900	기타	Cat 0	0	
3801101000	이차전지 제조용	Cat 0	0	
3801109000	기타	Cat 0	0	
3801200000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Cat 0	0	
3801300000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Cat 0	0	
3801900000	기타	Cat 0	0	
3802100000	활성탄	Cat 0	0	
3802901010	활성 규조토	Cat 0	0	
3802901020	활성토	Cat 0	0	
3802901090	기타	Cat 0	0	
3802902000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Cat 0	0	
3803000000	탈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3804001000	액체 상태인 것	Cat 0	0	
3804009000	기타	Cat 0	0	
3805101000	검테레빈유	Cat 0	0	
3805102000	우드테레빈유	Cat 0	0	
3805103000	황산테레빈유	Cat 0	0	
3805900000	기타	Cat 0	0	
3806101000	로진(rosin)	Cat 0	0	
3806102000	수지산	Cat 0	0	
3806201000	로진염	Cat 0	0	
3806202000	수지산염	Cat 0	0	
38062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806300000	에스테르 검(ester gum)	Cat 0	0	
3806903000	로진스피릿과 로진유	Cat 0	0	
3806909000	기타	Cat 0	0	
3807001000	목(木)타르 · 목(木)타르유 · 목(木)크레오 소트(creosote)	Cat 0	0	
3807002000	목(木)나프타	Cat 0	0	
3807003000	식물성 피치(pitch)	Cat 0	0	
3807009010	목초액	Cat 0	0	
3807009090	기타	Cat 0	0	
3808520000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Cat 0	0	
38085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08599000	기타	Cat 0	0	
38086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08619000	기타	Cat 0	0	
38086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08629000	기타	Cat 0	0	
380869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08699000	기타	Cat 0	0	
380891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08919000	기타	Cat 0	0	
380892100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08929000	기타	Cat 0	0	
3808931000	제초제	Cat 0	0	
3808932000	발아억제제	Cat 0	0	
3808933000	식물성장조절제	Cat 0	0	
3808940000	소독제	Cat 0	0	
3808991000	살서제(쥐약)	Cat 0	0	
3808999000	기타	Cat 0	0	
3809100000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3809910000	성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 하는 것	Cat 0	0	
3809920000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 하는 것	Cat 0	0	
3809930000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 하는 것	Cat 0	5	
381010100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Cat 0	0	
3810109000	기타	Cat 0	0	
3810901000	납땜임 · 땜질이나 용접용의 용제와 그 밖 의 보조 조제품	Cat 0	0	
3810909000	기타	Cat 0	0	
3811110000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3811190000	기타	Cat 0	0	
3811210000	석유나 역청유(瀝青油)를 함유하는 것	Cat 0	5	
3811290000	기타	Cat 0	0	
3811900000	기타	Cat 0	0	
3812101000	디페닐구아니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3812102000	디티오카르바메이트를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3812103000	티우람 술폰아이드를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3812104000	헥사메틸렌테트라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3812105000	머캅토 벤조티아졸을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3812106000	디벤조티아질 디술폰아이드(DM)를 기본 재 료로 한 것	Cat 0	0	
3812109000	기타	Cat 0	0	
3812200000	고무용 ·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Cat 0	5	
3812310000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 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Cat 0	0	
3812391000	산화방지 조제품	Cat 0	0	
3812392000	그 밖의 복합안정제	Cat 0	0	
3813001000	소화기용 조제품	Cat 0	0	
3813002000	소화기용 장전물	Cat 0	0	
3813003000	장전된 소화탄	Cat 0	0	
3814001010	아세톤 · 초산메틸과 메틸알코올 혼합물	Cat 0	0	
3814001020	초산메틸 · 부틸알코올과 톨루엔 혼합물	Cat 0	0	
3814001090	기타	Cat 0	0	
38140021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3814002190	기타	Cat 0	0	
3814002900	기타	Cat 0	0	
3815110000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Cat 0	0	
3815121000	백금이나 백금화합물의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815122000	팔라듐이나 팔라듐화합물의 것	Cat 0	0	
3815129000	기타	Cat 0	0	
3815191000	활성물질로서 철이나 철화합물의 것	Cat 0	0	
3815192000	티타늄이나 티타늄화합물의 것	Cat 0	0	
3815199000	기타	Cat 0	0	
3815901000	반응시작제	Cat 0	0	
3815909000	기타	Cat 0	0	
3816001000	내화시멘트	Cat 0	0	
3816002000	내화모르타르	Cat 0	0	
3816003000	내화콘크리트	Cat 0	0	
3816009000	기타	Cat 0	0	
381700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Cat 0	0	
3818001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	Cat 0	0	
3818002010	태양전지 제조용 웨이퍼	Cat 0	0	
3818002090	기타	Cat 0	0	
3819001000	유압제동액	Cat 0	0	
3819002000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Cat 0	0	
3820001000	부동(不凍) 조제품	Cat 0	0	
3820002000	조제 제빙액	Cat 0	0	
3821000000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Cat 0	0	
3822001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Cat 0	0	
3822001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Cat 0	0	
382200101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2001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Cat 0	0	
3822001019	기타	Cat 0	0	
3822001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2001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Cat 0	0	
3822001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Cat 0	0	
3822001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2001099	기타	Cat 0	0	
382200201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Cat 0	0	
382200201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Cat 0	0	
382200201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2002014	리트머스 시험지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험지	Cat 0	0	
3822002019	기타	Cat 0	0	
3822002020	조제된 것(뒷편을 보강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200209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 필름, 박(箔)과 스트립(strip)의 것	Cat 0	0	
3822002092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Cat 0	0	
3822002093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 섬유 웹(web)[제48류의 주 제8호의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2002099	기타	Cat 0	0	
3822003041	이 표에서 세율이 무세인 것	Cat 0	0	
3822003042	이 표에서 세율이 1퍼센트인 것	Cat 0	0	
3822003043	이 표에서 세율이 2퍼센트인 것	Cat 0	0	
3822003044	이 표에서 세율이 3퍼센트인 것	Cat 0	0	
3822003045	이 표에서 세율이 4퍼센트인 것	Cat 0	0	
3822003046	이 표에서 세율이 5퍼센트인 것	Cat 0	0	
3822003047	이 표에서 세율이 5.4퍼센트인 것	Cat 0	0	
3822003048	이 표에서 세율이 6.5퍼센트인 것	Cat 0	0	
3822003049	이 표에서 세율이 7퍼센트인 것	Cat 0	0	
3822003050	이 표에서 세율이 8퍼센트인 것	Cat 0	0	
3822003051	이 표에서 세율이 10퍼센트인 것	Cat 0	0	
3822003052	이 표에서 세율이 20퍼센트인 것	Cat 0	0	
3822003053	이 표에서 세율이 27퍼센트인 것	Cat 0	0	
3822003054	이 표에서 세율이 30퍼센트인 것	Cat 0	0	
3822003055	이 표에서 세율이 36퍼센트인 것	Cat 0	0	
3822003056	이 표에서 세율이 40퍼센트인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822003057	이 표에서 세율이 50퍼센트인 것	Cat 0	0	
3822003058	제3706.10.1000호, 제3706.10.5020호, 제3706.90.6020호의 것	Cat 0	0	
3822003059	제3706.10.2000호, 제3706.90.2000호의 것	Cat 0	0	
3822003060	제3706.10.3010호, 제3706.10.4000호, 제3706.90.3010호, 제3706.90.4000호의 것	Cat 0	0	
3822003061	제3706.10.3020호, 제3706.90.3020호의 것	Cat 0	0	
3822003062	제3706.10.3030호, 제3706.90.3030호의 것	Cat 0	0	
3822003063	제3706.10.5010호, 제3706.90.6010호의 것	Cat 0	0	
3822003064	제3706.10.6010호의 것	Cat 0	0	
3822003065	제3706.10.6020호의 것	Cat 0	0	
3822003066	제3706.90.1000호, 제3706.90.5020호의 것	Cat 0	0	
3822003067	제3706.90.5010호의 것	Cat 0	0	
3823110000	스테아린산	EX	5	
3823120000	올레인산	Cat 0	0	
3823130000	톨유(tall oil) 지방산	Cat 0	0	
3823191000	팔미탄산	Cat 0	0	
3823192000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EX	5	
3823199000	기타	Cat 0	0	
3823701000	세탈 알코올	Cat 0	0	
3823702000	스테아릴 알코올	Cat 0	0	
3823703000	올레일 알코올	Cat 0	0	
3823704000	라우릴 알코올	EX	3	
38237090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3709090	기타	Cat 0	0	
3824100000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4300000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4400000	시멘트용·모르타르용·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Cat 0	0	
3824500000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Cat 0	0	
3824600000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Cat 0	0	
3824711000	트리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을 기본 재료로 한 세정제	Cat 0	0	
3824719000	기타	Cat 0	0	
3824720000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에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Cat 0	0	
3824730000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Cat 0	0	
3824740000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4750000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Cat 0	0	
3824760000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Cat 0	0	
3824770000	브로모에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에탄을 함유하는 것	Cat 0	0	
3824780000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 [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Cat 0	0	
3824790000	기타	Cat 0	0	
3824810000	독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Cat 0	0	
3824820000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Cat 0	0	
3824830000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Cat 0	0	
3824840000	폴드린(ISO), 캄페놀도(ISO)(옥사린),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824850000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hex산 [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Cat 0	0	
3824860000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Cat 0	0	
3824870000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이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폰일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Cat 0	0	
3824880000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Cat 0	0	
3824910000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포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와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포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	Cat 0	0	
3824991000	크롬광 배소물	Cat 0	0	
3824992100	진공관의 게터(getter)	Cat 0	0	
3824992210	농약원제(農藥原劑)(「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4992290	기타	Cat 0	0	
3824992900	기타	Cat 0	0	
3824993100	[오-2-디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하이드로젠 알킬(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 이소프로필)포스포노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오-알킬(탄소수가 10개 이하로서 사이클로 알킬을 포함한다)에스테르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이들의 알킬화나 수소화된 염들로 구성된 혼합물	Cat 0	0	
3824993910	하나의 인(磷) 원자가 하나의 메틸, 에틸, 노르말-프로필이나 이소프로필 그룹과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더 이상의 탄소 원자와 결합하지 않은 화합물로 주로 구성된 그 밖의 혼합물	Cat 0	0	
3824993990	기타	Cat 0	0	
3824994100	혼합 폴리에틸렌글리콜	Cat 0	0	
3824994200	이온교환제	Cat 0	0	
3824994300	스케일방지제	Cat 0	0	
3824994400	바니시(vernish)경화제나 글루(glue)의 경화제	Cat 0	0	
3824995100	임크제거제	Cat 0	0	
3824995200	등사판원지 수정제	Cat 0	0	
3824995300	수정액	Cat 0	0	
3824996100	페인트용 혼합증량제	Cat 0	0	
3824996200	특정요업제품 제조용 조제품(의치 등)	Cat 0	0	
3824996300	소다석회	Cat 0	0	
3824996400	수화실리카겔	Cat 0	0	
3824996500	방청제(anti-rust preparation)	Cat 0	0	
3824996600	세라믹코팅제와 페라이트코어 제조용 조제품	Cat 0	0	
3824997100	도금용 조제품	Cat 0	0	
3824997200	염화파라핀	Cat 0	0	
3824997300	소포제	Cat 0	0	
3824997400	발포제	Cat 0	0	
3824997500	조제 탄산칼슘	Cat 0	0	
3824997600	액정용 조제품	Cat 0	0	
3824997700	암모니아성 가스액	Cat 0	0	
3824998000	조제유기과산화물(제3815호의 물품과 제3824.99.440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Cat 0	0	
3824999010	미량요소비료(제31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Cat 0	0	
3824999020	추잉껌 베이스	Cat 0	0	
3824999030	나프텐산과 이들의 수불용성염과 이들의 에스테르	Cat 0	0	
3824999041	니코틴을 함유한 것	Cat 0	0	
3824999049	기타	Cat 0	0	
3824999090	기타	Cat 0	0	
3825100000	생활폐기물	Cat 0	0	
3825200000	하수 찌꺼기	Cat 0	0	
3825301000	제3005호의 것	Cat 0	0	
3825302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Cat 0	0	
3825303000	소호 제4015.11호의 것	Cat 0	0	
3825304000	소호 제9018.3호의 것	Cat 0	0	
3825410000	활로겐을 함유하는 것	Cat 0	0	
3825490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825500000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Cat 0	0	
3825610000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Cat 0	0	
3825690000	기타	Cat 0	0	
3825900000	기타	Cat 0	0	
3826000000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 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총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901101000	선황지밀도폴리에틸렌	EX	5	
3901109000	기타	EX	5	
3901201000	필프의 것	EX	5	
3901209000	기타	EX	5	
3901300000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EX	5	
3901400000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EX	5	
3901900000	기타	EX	5	
3902100000	폴리프로필렌	EX	5	
3902200000	폴리이소부틸렌	Cat 0	0	
3902300000	프로필렌 공중합체	Cat 0	0	
3902900000	기타	Cat 0	0	
3903110000	발포성의 것	Cat 0	0	
3903190000	기타	Cat 0	0	
3903200000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SAN)	Cat 0	0	
3903300000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 체(ABS)	Cat 0	0	
3903901000	스티렌-부타디엔 공중합체	Cat 0	0	
3903909000	기타	EX	5	
3904100000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 은 것으로 한정한다)	EX	5	
39042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Cat 0	0	
3904220000	가소화한 것	Cat 0	0	
3904300000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EX	5	
3904400000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Cat 0	0	
3904500000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Cat 0	0	
3904610000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Cat 0	0	
3904690000	기타	Cat 0	0	
3904900000	기타	Cat 0	0	
3905120000	물에 분산된 것	Cat 0	0	
3905190000	기타	Cat 0	0	
3905210000	물에 분산된 것	Cat 0	0	
3905290000	기타	Cat 0	0	
3905300000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 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EX	5	
3905910000	공중합체(共重合體)	Cat 0	0	
3905990000	기타	Cat 0	0	
3906100000	폴리(에틸 메타크리레이트)	EX	5	
3906901000	폴리아크릴아미드	Cat 0	0	
3906909000	기타	EX	5	
3907100000	폴리아세탈수지	Cat 0	0	
3907201000	폴리옥시메틸렌(폴리에틸렌 글리콜)	Cat 0	0	
3907202000	폴리옥시프로필렌(폴리프로필렌 글리콜)	EX	5	
3907203000	폴리페닐렌 옥사이드	Cat 0	0	
3907209000	기타	Cat 0	0	
390730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3907309000	기타	Cat 0	0	
3907400000	폴리카보네이트	EX	5	
3907500000	알키드수지	Cat 0	0	
3907610000	점도번호가 그림당 78 밀리리터 이상인 것	Cat 0	0	
3907690000	기타	Cat 0	0	
3907700000	폴리(락트산)	Cat 0	0	
3907910000	불포화의 것	Cat 0	0	
3907991000	폴리부틸렌 테레프탈레이트	Cat 0	0	
3907992000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공 중합체	Cat 0	0	
3907999000	기타	Cat 0	0	
3908101000	폴리아미드 -6	Cat 0	0	
3908102000	폴리아미드 -6,6	EX	5	
3908103000	폴리아미드 -11, -12, -6,9, -6,10 또는 - 6,12	EX	5	
3908900000	기타	EX	5	
3909101000	요소수지	Cat 0	0	
3909102000	타오요소수지	Cat 0	0	
3909200000	멜라민수지	Cat 0	0	
3909310000	폴리(메탈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크루드 엠디아미, 중합 엠디아미)	Cat 0	0	
3909390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909400000	페놀수지	Cat 0	0	
3909500000	폴리우레탄	Cat 0	0	
391000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3910009010	실리콘오일	Cat 0	0	
3910009020	실리콘고무	Cat 0	0	
3910009090	기타	Cat 0	0	
3911101000	석유수지	Cat 0	0	
3911102000	쿠마론·인덴이나 쿠마론-인덴수지	Cat 0	0	
3911103000	폴리테르펜	Cat 0	0	
3911901000	폴리술폰	Cat 0	0	
3911902000	폴리술폰	Cat 0	0	
3911903000	포란수지	Cat 0	0	
3911909000	기타	Cat 0	0	
3912110000	가소화하지 않은 것	Cat 0	0	
3912120000	가소화한 것	Cat 0	0	
3912200000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Cat 0	0	
3912311000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나트륨	Cat 0	0	
3912319000	기타	Cat 0	0	
3912391000	메틸셀룰로오스	Cat 0	0	
3912399000	기타	Cat 0	0	
3912901000	재생 셀룰로오스	Cat 0	0	
3912909000	기타	Cat 0	0	
3913101000	알칸산 나트륨	Cat 0	0	
3913102000	알칸산 프로필렌 글리콜	Cat 0	0	
3913109000	기타	Cat 0	0	
3913901000	경화단백질	Cat 0	0	
3913902010	염화고무	Cat 0	0	
3913902040	황화고무	Cat 0	0	
3913902090	기타	Cat 0	0	
3913909010	텍스트란	Cat 0	0	
3913909090	기타	Cat 0	0	
3914001000	약이온성의 것	Cat 0	0	
3914009000	기타	Cat 0	0	
3915101000	제조 당시 필름·시트(sheet)·판·박(箔) 상태의 것	Cat 0	0	
3915102000	제조 당시 파이프·호스 상태의 것	Cat 0	0	
3915109000	기타	Cat 0	0	
39152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53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5901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5902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5903000	폴리아세탈수지로 만든 것	Cat 0	0	
3915904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Cat 0	0	
3915905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Cat 0	0	
3915909000	기타	Cat 0	0	
3916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620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690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6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6903000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6904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Cat 0	0	
3916909000	기타	Cat 0	0	
3917101000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Cat 0	0	
3917102000	셀룰로오스 물질로 만든 것	Cat 0	0	
391721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22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230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291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292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Cat 0	0	
3917299000	기타	Cat 0	0	
391731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31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319000	기타	Cat 0	0	
391732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32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329000	기타	Cat 0	0	
391733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33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339000	기타	Cat 0	0	
391739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392000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399000	기타	Cat 0	0	
3917400000	연결구류	Cat 0	0	
391810100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Cat 0	0	
3918102000	염화비닐과 초산비닐의 공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918109000	기타	Cat 0	0	
391890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3919100000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Cat 0	0	
3919900000	기타	Cat 0	0	
3920100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20200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20300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20430000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Cat 0	0	
3920490000	기타	Cat 0	0	
3920510000	폴리(에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Cat 0	0	
3920590000	기타	Cat 0	0	
392061000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Cat 0	0	
392062000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Cat 0	0	
392063000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Cat 0	0	
3920690000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Cat 0	0	
392071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Cat 0	0	
392073000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Cat 0	0	
392079100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Cat 0	0	
3920799000	기타	Cat 0	0	
392091000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Cat 0	0	
392092000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Cat 0	0	
392093000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Cat 0	0	
3920940000	페놀수지로 만든 것	Cat 0	0	
3920991000	항공기용	Cat 0	0	
3920999010	폴리아미드 필름(리드프레임의 기능을 하는 인쇄회로기판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920999090	기타	Cat 0	0	
3921110000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21120000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2113000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Cat 0	0	
392114000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Cat 0	0	
3921191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921191090	기타	Cat 0	0	
3921192010	격리막(이차전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921192090	기타	Cat 0	0	
3921193010	폴리에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Cat 0	0	
3921193090	기타	Cat 0	0	
3921194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Cat 0	0	
3921194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Cat 0	0	
3921194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Cat 0	0	
3921194090	기타	Cat 0	0	
392119501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Cat 0	0	
392119502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Cat 0	0	
3921195090	기타	Cat 0	0	
392119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Cat 0	0	
392119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Cat 0	0	
392119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Cat 0	0	
392119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Cat 0	0	
3921199090	기타	Cat 0	0	
3921901000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21902000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21903000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21904010	견질의 것	Cat 0	0	
3921904020	연질의 것	Cat 0	0	
3921905010	폴리에틸메타크릴레이트로 만든 것	Cat 0	0	
3921905090	기타	Cat 0	0	
3921906010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Cat 0	0	
3921906020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Cat 0	0	
3921906030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Cat 0	0	
3921906090	기타	Cat 0	0	
3921907010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Cat 0	0	
3921907020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Cat 0	0	
3921907030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Cat 0	0	
3921907090	기타	Cat 0	0	
3921909010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Cat 0	0	
3921909020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Cat 0	0	
3921909030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Cat 0	0	
3921909040	페놀수지로 만든 것	Cat 0	0	
392190905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Cat 0	0	
3921909090	기타	Cat 0	0	
3922101000	목욕통과 샤워통	Cat 0	0	
3922102000	세면대	Cat 0	0	
3922103000	설거지통	Cat 0	0	
3922200000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3922901000	비데	Cat 0	0	
3922909000	기타	Cat 0	0	
3923100000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3923210000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23290000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3923300000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3923400000	스풀(spool)·콤프(cop)·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3923500000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3923900000	기타	Cat 0	0	
3924100000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Cat 0	0	
3924901000	비누접시와 통	Cat 0	0	
3924902000	탁상보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3924909000	기타	Cat 0	0	
3925100000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9252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자방	Cat 0	0	
3925300000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Cat 0	0	
3925900000	기타	Cat 0	0	
3926101000	필통과 지우개	Cat 0	0	
3926102000	바인더	Cat 0	0	
3926109000	기타	Cat 0	0	
39262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한다)	Cat 0	0	
3926300000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Cat 0	0	
3926400000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Cat 0	0	
3926901000	기계용의 부분품	Cat 0	0	
3926902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살·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Cat 0	0	
3926903000	레이블과 태그	Cat 0	0	
3926904000	케이스를 갖춘 접착테이프	Cat 0	0	
3926905000	그림틀·사진틀·거울틀과 이와 유사한 틀	Cat 0	0	
3926906000	앨범	Cat 0	0	
3926909000	기타	Cat 0	0	
4001100000	천연고무의 라텍스[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4001210000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Cat 0	0	
4001220000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Cat 0	0	
4001290000	기타	Cat 0	0	
4001301000	치클검(chicle gum)	Cat 0	0	
4001309000	기타	Cat 0	0	
4002110000	라텍스	Cat 0	0	
4002190000	기타	Cat 0	0	
4002201000	라텍스	Cat 0	0	
4002209000	기타	Cat 0	0	
4002311000	라텍스	Cat 0	0	
4002319000	기타	Cat 0	0	
4002391000	라텍스	Cat 0	0	
4002399010	염화부틸고무(CIIR)의 것	Cat 0	0	
4002399020	브롬화 부틸고무(BIIR)의 것	Cat 0	0	
4002410000	라텍스	Cat 0	0	
4002490000	기타	Cat 0	0	
4002510000	라텍스	Cat 0	0	
4002590000	기타	Cat 0	0	
4002601000	라텍스	Cat 0	0	
4002609000	기타	Cat 0	0	
4002701000	라텍스	Cat 0	0	
4002709000	기타	EX	5	
4002801000	라텍스	Cat 0	0	
4002809000	기타	Cat 0	0	
4002910000	라텍스	Cat 0	0	
4002991000	카르복시화한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고무(XNBR)의 것	Cat 0	0	
4002992000	아크릴로니트릴 이소프렌고무(NIR)의 것	Cat 0	0	
4002993000	티오폴라스트(TM)	Cat 0	0	
4002999000	기타	Cat 0	0	
400300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00400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 · 패어링(paring) · 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Cat 0	0	
4005101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Cat 0	0	
4005109000	기타	Cat 0	0	
4005200000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Cat 0	0	
4005910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Cat 0	0	
4005991000	배합고무 라텍스	Cat 0	0	
4005999000	기타	Cat 0	0	
4006100000	고무타이어 재생용 “개일-백(camel-back)” 스트립	Cat 0	0	
4006901000	고무막대(rod)	Cat 0	0	
4006902000	고무관	Cat 0	0	
4006903000	고무형재(形材)	Cat 0	0	
4006904000	고무디스크 · 링 · 와셔	Cat 0	0	
4006905000	고무실	Cat 0	0	
4006909000	기타	Cat 0	0	
4007001000	고무실	Cat 10	5	
4007002000	고무끈	Cat 0	0	
400811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Cat 0	0	
4008119000	기타	Cat 0	0	
4008191000	보강을 위하여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Cat 0	0	
4008199000	기타	Cat 0	0	
400821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Cat 0	0	
4008219000	기타	Cat 0	0	
4008291000	보강을 위해서 방직용 직물과 결합된 것	Cat 0	0	
4008299000	기타	Cat 0	0	
40091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Cat 0	0	
40091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Cat 0	0	
40092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Cat 0	0	
40092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Cat 0	0	
40093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Cat 0	0	
40093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Cat 0	0	
4009410000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Cat 0	0	
4009420000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Cat 0	0	
4010110000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Cat 0	0	
4010120000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Cat 0	0	
4010191000	플라스틱으로만 보강된 것	Cat 0	0	
4010199000	기타	Cat 0	0	
401031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01032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Cat 0	0	
401033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010340000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Cat 0	0	
401035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4010360000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4010390000	기타	Cat 0	0	
4011101000	래디알 구조의 것	Cat 0	0	
4011102000	바이어스 구조의 것	Cat 0	0	
4011109000	기타	Cat 0	0	
4011201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Cat 0	0	
4011201090	기타	Cat 0	0	
4011202010	림의 지름이 49.53센티미터 미만인 것	Cat 0	0	
4011202090	기타	Cat 0	0	
4011209000	기타	Cat 0	0	
4011300000	항공기용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011400000	모터사이클용	Cat 0	0	
4011500000	자전거용	Cat 0	0	
4011701000	헤링본(herring-bone)이나 이와 유사한 트레드(tread)가 있는 것	Cat 0	0	
4011709000	기타	Cat 0	0	
4011801010	림(rim)의 자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4011801090	기타	Cat 0	0	
4011809010	림(rim)의 자름이 61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4011809090	기타	Cat 0	0	
4011901000	헤링본(herring-bone)이나 이와 유사한 트레드(tread)가 있는 것	Cat 0	0	
4011909000	기타	Cat 0	0	
4012110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Cat 0	0	
4012120000	버스용 · 화물자동차용	Cat 0	0	
4012130000	항공기용	Cat 0	0	
4012190000	기타	Cat 0	0	
4012201000	항공기용	Cat 0	0	
401220901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Cat 0	0	
4012209020	버스용이나 화물차용의 것	Cat 0	0	
4012209090	기타	Cat 0	0	
4012901010	솔리드 타이어	Cat 0	0	
4012901020	쿠션 타이어	Cat 0	0	
4012901030	타이어트레드	Cat 0	0	
4012901040	타이어 플랩	Cat 0	0	
4012909010	솔리드 타이어	Cat 0	0	
4012909020	쿠션 타이어	Cat 0	0	
4012909030	타이어트레드	Cat 0	0	
4012909040	타이어 플랩	Cat 0	0	
4012909090	기타	Cat 0	0	
4013101000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Cat 0	0	
4013102000	버스 · 화물차용	Cat 0	0	
4013200000	자전거용	Cat 0	0	
4013901000	항공기용	Cat 0	0	
4013909010	모터사이클 · 모터스쿠터용	Cat 0	0	
4013909020	산업용 · 농경용	Cat 0	0	
4013909090	기타	Cat 0	0	
4014100000	콘돔	Cat 0	0	
4014901000	정꼭지	Cat 0	0	
4014909000	기타	Cat 0	0	
4015110000	외과용	Cat 0	0	
4015190000	기타	Cat 0	0	
4015901000	잠수복	Cat 0	0	
4015902000	방사선 방호복	Cat 0	0	
4015909000	기타	Cat 0	0	
4016100000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Cat 0	0	
4016910000	바닥 깔개와 매트	Cat 0	0	
4016920000	자우개	Cat 0	0	
4016930000	개스킷(gasket) · 와셔(washer) · 그 밖의 실(seal)	Cat 0	0	
4016940000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016951000	공기 매트리스	Cat 0	0	
4016952000	베개	Cat 0	0	
4016953000	쿠션	Cat 0	0	
4016959000	기타	Cat 0	0	
4016991010	기구 · 비행선 · 비행기계류 · 글라이더 · 연과 로토슈트의 부품	Cat 0	0	
4016991090	기타	Cat 0	0	
4016992000	고무밴드	Cat 0	0	
4016993000	병마개	Cat 0	0	
4016999000	기타	Cat 0	0	
4017001000	경질고무	Cat 0	0	
4017002000	경질고무의 제품	Cat 0	0	
4101201000	유연처리하지 않은 원피	Cat 0	0	
4101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101501011	카우하이드(cow hide)	Cat 0	0	
410150101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Cat 0	0	
4101501013	옥스하이드(ox hide)	Cat 0	0	
4101501014	불하이드(bull hide)	Cat 0	0	
4101501019	기타	Cat 0	0	
4101501021	카우하이드(cow hide)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101501022	스티어하이드(steer hide)	Cat 0	0	
4101501023	옥스하이드(ox hide)	Cat 0	0	
4101501024	불하이드(bull hide)	Cat 0	0	
4101501029	기타	Cat 0	0	
4101501090	기타	Cat 0	0	
41015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101901010	버트(butt)와 벤드(bend)	Cat 0	0	
4101901091	송아지의 원피	Cat 0	0	
4101901099	기타	Cat 0	0	
4101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102100000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Cat 0	0	
410221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Cat 0	0	
410221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10229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Cat 0	0	
410229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103201010	백의 원피	Cat 0	0	
4103201030	악어의 원피	Cat 0	0	
4103201090	기타	Cat 0	0	
41032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103301000	유연처리 하지 않은 원피	Cat 0	0	
41033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103901010	장어류의 원피	Cat 0	0	
4103901020	캥거루의 원피	Cat 0	0	
4103901030	낙타(단봉낙타를 포함한다)의 원피	Cat 0	0	
4103901090	기타	Cat 0	0	
4103902000	유연처리(유연전처리를 포함한다)한 원피 (원상태로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104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Cat 0	0	
4104190000	기타	Cat 0	0	
41044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Cat 0	0	
4104490000	기타	Cat 0	0	
410510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Cat 0	0	
410530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Cat 0	0	
41062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Cat 0	0	
41062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Cat 0	0	
41063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Cat 0	0	
41063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Cat 0	0	
4106400000	파충류의 원피	Cat 0	0	
4106910000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Cat 0	0	
4106920000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Cat 0	0	
41071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Cat 0	0	
41071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Cat 0	0	
4107190000	기타	Cat 0	0	
4107910000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Cat 0	0	
4107920000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Cat 0	0	
4107990000	기타	Cat 0	0	
4112000000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Cat 0	0	
4113100000	산양의 가죽	Cat 0	0	
4113200000	돼지의 가죽	Cat 0	0	
4113300000	파충류의 가죽	Cat 0	0	
4113900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114100000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Cat 0	0	
4114201000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Cat 0	0	
4114202000	적층한 페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Cat 0	0	
4114203000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Cat 0	0	
4115100000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이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4115200000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패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Cat 0	0	
4201001000	파충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1009010	안장과 안장용 방석	Cat 0	0	
4201009020	고삐줄	Cat 0	0	
4201009030	끈	Cat 0	0	
4201009040	재갈	Cat 0	0	
4201009090	기타	Cat 0	0	
42021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1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1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1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111050	캥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111090	기타	Cat 0	0	
42021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Cat 0	0	
42021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Cat 0	0	
42021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Cat 0	0	
42021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121090	기타	Cat 0	0	
42021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Cat 0	0	
4202191000	판지로 만든 것	Cat 0	0	
4202199000	기타	Cat 0	0	
42022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2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2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2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211050	캥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211090	기타	Cat 0	0	
42022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Cat 0	0	
42022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Cat 0	0	
42022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Cat 0	0	
42022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221090	기타	Cat 0	0	
42022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Cat 0	0	
4202291000	판지로 만든 것	Cat 0	0	
4202299000	기타	Cat 0	0	
42023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3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3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3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311050	캥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311090	기타	Cat 0	0	
42023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Cat 0	0	
42023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Cat 0	0	
42023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Cat 0	0	
42023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321090	기타	Cat 0	0	
42023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Cat 0	0	
4202391000	판지로 만든 것	Cat 0	0	
4202399000	기타	Cat 0	0	
420291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91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91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91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911050	캥가루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911090	기타	Cat 0	0	
4202912000	컴퍼지션 레더로 만든 것	Cat 0	0	
4202913000	페이턴트 레더로 만든 것	Cat 0	0	
4202921010	폴리염화비닐로 만든 것	Cat 0	0	
4202921020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Cat 0	0	
4202921090	기타	Cat 0	0	
420292200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Cat 0	0	
4202991000	판지로 만든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202999000	기타	Cat 0	0	
4203101010	코트류	Cat 0	0	
4203101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Cat 0	0	
4203101050	조끼류	Cat 0	0	
4203101060	바지류	Cat 0	0	
4203101070	스커트류	Cat 0	0	
4203101080	오버롤류	Cat 0	0	
4203101090	기타	Cat 0	0	
4203102010	코트류	Cat 0	0	
4203102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Cat 0	0	
4203102050	조끼류	Cat 0	0	
4203102060	바지류	Cat 0	0	
4203102070	스커트류	Cat 0	0	
4203102080	오버롤류	Cat 0	0	
4203102090	기타	Cat 0	0	
4203103010	코트류	Cat 0	0	
4203103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Cat 0	0	
4203103050	조끼류	Cat 0	0	
4203103060	바지류	Cat 0	0	
4203103070	스커트류	Cat 0	0	
4203103080	오버롤류	Cat 0	0	
4203103090	기타	Cat 0	0	
4203109010	코트류	Cat 0	0	
4203109020	재킷, 블레이저와 점퍼류	Cat 0	0	
4203109050	조끼류	Cat 0	0	
4203109060	바지류	Cat 0	0	
4203109070	스커트류	Cat 0	0	
4203109080	오버롤류	Cat 0	0	
4203109090	기타	Cat 0	0	
4203211000	야구장갑	Cat 0	0	
4203212000	골프장갑	Cat 0	0	
4203213000	스키장갑	Cat 0	0	
4203214000	모터싸이클장갑	Cat 0	0	
4203215000	배팅장갑	Cat 0	0	
4203216000	테니스장갑	Cat 0	0	
4203217000	아이스하키장갑	Cat 0	0	
4203219000	기타	Cat 0	0	
4203291000	작업용 장갑	Cat 0	0	
4203292000	방한용 장갑	Cat 0	0	
4203293000	운전용 장갑	Cat 0	0	
4203299000	기타	Cat 0	0	
4203301010	뱀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3301020	도마뱀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3301030	악어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3301040	장어류의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4203301090	기타	Cat 0	0	
4203309000	기타	Cat 0	0	
4203400000	그 밖의 의류 부속품	Cat 0	0	
4205001110	벨트	Cat 0	0	
4205001190	기타	Cat 0	0	
4205001900	그 밖의 가죽제품	Cat 0	0	
4205002110	벨트	Cat 0	0	
4205002190	기타	Cat 0	0	
4205002900	그 밖의 가죽제품과 컴퓨터용 레더 (composition leather)제품	Cat 0	0	
4206001000	캣가트(catgut)	Cat 0	0	
4206009000	기타	Cat 0	0	
4301100000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30130000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브로드테일(Broadtail)·카라쿨(Caracul)·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중국·몽고·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301600000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꼬리 부분·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301802000	오파섬(opossum)의 것	Cat 0	0	
4301803000	리쿤(raccoon)의 것	Cat 0	0	
4301804000	코요테의 것	Cat 0	0	
4301805000	토끼의 것	Cat 0	0	
4301806000	사향위취의 것	Cat 0	0	
43018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301900000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at 0	0	
4302110000	밍크의 것	Cat 0	0	
4302191000	비버(beaver)의 것	Cat 0	0	
4302192000	사향위취의 것	Cat 0	0	
4302193000	여우의 것	Cat 0	0	
4302195000	친철라의 것	Cat 0	0	
4302196000	오파섬(opossum)의 것	Cat 0	0	
4302197000	라쿤(raccoon)의 것	Cat 0	0	
4302198000	코요테의 것	Cat 0	0	
4302199010	면양의 것	Cat 0	0	
4302199020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쿨(Caracul) · 페르시아와 이와 유사한 어린 양 · 인도 · 중국 · 몽고나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302199090	기타	Cat 0	0	
4302201000	밍크의 것	Cat 0	0	
4302202000	토끼의 것	Cat 0	0	
4302203000	비버(beaver)의 것	Cat 0	0	
4302204000	사향위취의 것	Cat 0	0	
4302205000	여우의 것	Cat 0	0	
4302207000	친철라의 것	Cat 0	0	
4302209020	라쿤(raccoon)의 것	Cat 0	0	
4302209030	코요테의 것	Cat 0	0	
4302209090	기타	Cat 0	0	
4302300000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303101100	밍크의 것	Cat 0	0	
4303101200	토끼의 것	Cat 0	0	
4303101300	어린 양의 것	Cat 0	0	
4303101400	비버(beaver)의 것	Cat 0	0	
4303101500	사향위취의 것	Cat 0	0	
4303101600	여우의 것	Cat 0	0	
4303101800	친철라의 것	Cat 0	0	
4303101910	오파섬(opossum)의 것	Cat 0	0	
4303101920	라쿤(raccoon)의 것	Cat 0	0	
4303101930	코요테의 것	Cat 0	0	
4303101990	기타	Cat 0	0	
4303102100	밍크의 것	Cat 0	0	
4303102200	토끼의 것	Cat 0	0	
4303102300	어린 양의 것	Cat 0	0	
4303102400	비버(beaver)의 것	Cat 0	0	
4303102500	사향위취의 것	Cat 0	0	
4303102600	여우의 것	Cat 0	0	
4303102800	친철라의 것	Cat 0	0	
4303102920	라쿤(raccoon)의 것	Cat 0	0	
4303102930	코요테의 것	Cat 0	0	
4303102990	기타	Cat 0	0	
4303900000	기타	Cat 0	0	
4304001000	인조모피	Cat 0	0	
4304002000	인조모피의 제품	Cat 0	0	
4401110000	침엽수류	Cat 0	0	
4401120000	활엽수류	Cat 0	0	
4401210000	침엽수류	Cat 0	0	
4401221000	펄프 제조용	Cat 0	0	
4401229000	기타	Cat 0	0	
4401310000	목재 펠릿(peillet)	Cat 0	0	
4401390000	기타	Cat 0	0	
4401400000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2101000	성형 목탄	Cat 0	0	
4402109000	기타	Cat 0	0	
4402901000	성형 목탄	Cat 0	0	
4402909000	기타	Cat 0	0	
4403110000	침엽수류	Cat 0	0	
4403121000	열대산 목재	Cat 0	0	
4403129000	기타	Cat 0	0	
4403211000	적송	Cat 0	0	
440321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Cat 0	0	
4403219000	기타	Cat 0	0	
4403221000	적송	Cat 0	0	
440322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Cat 0	0	
4403229000	기타	Cat 0	0	
440323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403232000	가운비나무[피세아(Picea)종]	Cat 0	0	
440324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Cat 0	0	
4403242000	가운비나무[피세아(Picea)종]	Cat 0	0	
4403251000	삼나무	Cat 0	0	
4403252000	미송	Cat 0	0	
4403253000	낙엽송	Cat 0	0	
4403254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종을 제외한다]	Cat 0	0	
4403259000	기타	Cat 0	0	
4403261000	삼나무	Cat 0	0	
4403262000	미송	Cat 0	0	
4403263000	낙엽송	Cat 0	0	
4403264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종을 제외한다]	Cat 0	0	
4403269000	기타	Cat 0	0	
440341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Cat 0	0	
4403491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 아란(Alan)	Cat 0	0	
4403492000	케루잉(Keruing) · 라민(Ramin) · 카폴(Kapur) · 티크(Teak) · 종콩(Jongkong) · 멜바우(Merbau) · 제루통(Jelutong) · 캄파스(Kempas)	Cat 0	0	
4403493000	오쿠메(Okoumé) · 오베체(Obeche) · 사펠리(Sapelli) · 시포(Sipo) · 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 · 마코레(Makoré) · 이로코(Iroko)	Cat 0	0	
4403494000	티아마(Tiama) · 만소니아(Mansonia) · 이롬바(Ilomba) · 디베토우(Dibétou) · 림바(Limba) · 아조베(Azobé)	Cat 0	0	
4403495000	마호가니(Mahogany)와 발사(Balsa)	Cat 0	0	
4403499000	기타	Cat 0	0	
4403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Cat 0	0	
440393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94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950000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960000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971000	포플러	Cat 0	0	
4403972000	사시나무	Cat 0	0	
4403980000	유타립투스[유타립투스(Eucalyptus)종]의 것	Cat 0	0	
4403991010	자단(rosewood)	Cat 0	0	
4403991020	흑단(ebony wood)	Cat 0	0	
4403991040	불푸레나무	Cat 0	0	
4403991050	호두나무	Cat 0	0	
4403991090	기타	Cat 0	0	
4403992000	리그넘 바이티(Lignum vitae)	Cat 0	0	
4403993030	단풍나무	Cat 0	0	
4403993040	느릅나무	Cat 0	0	
4403993060	피나무	Cat 0	0	
4403994000	오동나무	Cat 0	0	
4403999000	기타	Cat 0	0	
4404100000	침엽수류	Cat 0	0	
4404200000	활엽수류	Cat 0	0	
4405000000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Cat 0	0	
4406110000	침엽수류	Cat 0	0	
4406120000	활엽수류	Cat 0	0	
4406910000	침엽수류	Cat 0	0	
4406920000	활엽수류	Cat 0	0	
4407111000	적송	EX	5	
4407112000	라디에타소나무(radiata pine)	EX	5	
4407119000	기타	EX	5	
4407121000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EX	5	
4407122000	가운비나무[피세아(Picea)종]	Cat 15	5	
4407191000	삼나무	Cat 15	5	
4407192010	더글러스퍼(Douglas fir)	Cat 15	5	
4407192020	헴록(hemlock)	Cat 15	5	
4407192090	기타	Cat 15	5	
4407193000	전나무류[아비에스(Abies)종을 제외한다]	Cat 15	5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407194000	낙엽송	Cat 10	5	
4407195000	편백나무	Cat 15	5	
4407199000	기타	Cat 15	5	
4407210000	마호가니(Mahogany)[스웨테니아(Swietenia)종]	Cat 15	5	
4407220000	비롤라(Virola) · 임부아(Imbua) · 발사(Balsa)	Cat 10	5	
4407250000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Cat 10	5	
4407260000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 아란(Alan)	Cat 10	5	
4407270000	사펠리(Sapelli)	Cat 15	5	
4407280000	이로코(Iroko)	Cat 15	5	
4407291000	케루잉(Keruing) · 라민(Ramin) · 카폴(Kapur) · 중콩(Jongkong) · 멜바우(Merbau) · 제루통(Jelutong) · 캄파스(Kempas)	Cat 10	5	
4407292000	티크(Teak)	Cat 10	5	
4407293000	오루메(Okoume) · 오베체(Obeche) · 지포(Sipo) · 아까주다푸리케(Acajou d'Afrique) · 마꼬레(Makoré) · 티아마(Tiama) · 만소니아(Mansonia) · 이롬바(Ilomba) · 디벤투우(Dibétou) · 림바(Limba) · 알루메(Aloume)	Cat 10	5	
4407299000	기타	EX	5	
4407910000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Cat 15	5	
4407920000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Cat 10	5	
4407930000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Cat 15	5	
4407940000	채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Cat 15	5	
4407950000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Cat 15	5	
4407960000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	Cat 10	5	
4407971000	포플러	Cat 10	5	
4407972000	사시나무	Cat 10	5	
4407991010	자단(rosewood)	Cat 10	5	
4407991020	흑단(ebony wood)	Cat 10	5	
4407991040	호두나무	Cat 15	5	
4407991090	기타	Cat 15	5	
4407992000	리그넌 바이티(Lignum vitae)	Cat 15	5	
4407993040	느릅나무	Cat 10	5	
4407993060	피나무	Cat 10	5	
4407994000	오동나무	Cat 10	5	
4407999000	기타	EX	5	
440810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Cat 0	0	
4408109100	합판 제조용	Cat 0	0	
4408109200	무늬목	Cat 0	0	
4408109910	삼나무	Cat 0	0	
4408109920	미송	Cat 0	0	
4408109950	낙엽송	Cat 0	0	
4408109960	가문비나무	Cat 0	0	
4408109990	기타	Cat 0	0	
4408313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Cat 0	0	
4408319011	합판 제조용	Cat 0	0	
4408319012	무늬목	Cat 0	0	
4408319019	기타	Cat 0	0	
4408319021	합판 제조용	Cat 0	0	
4408319022	무늬목	Cat 0	0	
4408319029	기타	Cat 0	0	
4408396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Cat 0	0	
4408399011	합판 제조용	Cat 0	0	
4408399012	무늬목	Cat 0	0	
4408399019	기타	Cat 0	0	
4408399021	합판 제조용	Cat 0	0	
4408399022	무늬목	Cat 0	0	
4408399029	기타	Cat 0	0	
4408399031	합판 제조용	Cat 0	0	
4408399032	무늬목	Cat 0	0	
4408399039	기타	Cat 0	0	
4408399041	합판 제조용	Cat 0	0	
4408399042	무늬목	Cat 0	0	
4408399049	기타	Cat 0	0	
4408399051	합판 제조용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408399052	무늬목	Cat 0	0	
4408399059	기타	Cat 0	0	
4408399091	합판 제조용	Cat 0	0	
4408399092	무늬목	Cat 0	0	
4408399099	기타	Cat 0	0	
4408901000	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베니어용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Cat 0	0	
4408909150	합판 제조용	Cat 0	0	
4408909160	무늬목	Cat 0	0	
4408909191	자단(Rosewood)	Cat 0	0	
4408909192	흑단(Ebony wood)	Cat 0	0	
4408909193	물푸레나무	Cat 0	0	
4408909194	호두나무	Cat 0	0	
4408909195	참나무	Cat 0	0	
4408909199	기타	Cat 0	0	
4408909210	합판 제조용	Cat 0	0	
4408909220	무늬목	Cat 0	0	
4408909290	기타	Cat 0	0	
4408909370	합판 제조용	Cat 0	0	
4408909380	무늬목	Cat 0	0	
4408909391	사시나무	Cat 0	0	
4408909392	포플러	Cat 0	0	
4408909393	단풍나무	Cat 0	0	
4408909394	느릅나무	Cat 0	0	
4408909395	자작나무	Cat 0	0	
4408909396	피나무	Cat 0	0	
4408909410	합판 제조용	Cat 0	0	
4408909420	무늬목	Cat 0	0	
4408909490	기타	Cat 0	0	
4408909910	합판 제조용	Cat 0	0	
4408909920	무늬목	Cat 0	0	
4408909990	기타	Cat 0	0	
4409101000	사이딩(Siding)	Cat 0	0	
4409102000	플로어링(Flooring)	Cat 0	0	
4409109000	기타	Cat 0	0	
44092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Cat 0	0	
4409221000	사이딩(Siding)	Cat 0	0	
4409222000	플로어링(Flooring)	Cat 0	0	
4409229000	기타	Cat 0	0	
4409291000	사이딩(Siding)	Cat 0	0	
4409292000	플로어링(Flooring)	Cat 0	0	
4409299000	기타	Cat 0	0	
441011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EX	6.4	
441011200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EX	5	
441011300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EX	5	
4410119000	기타	Cat 15	5	
4410121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Cat 0	0	
4410129000	기타	Cat 0	0	
441019101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연마가공 이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	Cat 0	0	
4410191090	기타	Cat 0	0	
4410199020	멜라민을 침투한 종이로 표면을 피복한 것	Cat 10	5	
4410199030	장식용 플라스틱라미네이트로 표면을 피복한 것	Cat 15	5	
4410199090	기타	Cat 15	5/6.4	
4410900000	기타	EX	5	
441112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EX	5/6.4/8	
4411129000	기타	Cat 10	0/5	
441113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EX	5/6.4/8	
4411139000	기타	EX	0/5	
441114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EX	5/6.4/8	
4411149010	마루판	EX	0/5/6.4	
4411149090	기타	EX	0/5	
441192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EX	6.4	
4411929010	마루판	EX	0/6.4	
4411929090	기타	Cat 0	0	
441193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EX	8	
4411939010	마루판	EX	5/6.4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411939090	기타	Cat 10	5	
4411941000	기계적 가공과 표면 피복을 모두 하지 않은 것	EX	0/5	
4411949000	기타	Cat 0	0	
441210101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10	5	
441210102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Cat 15	5/8	
4412102000	마루판	Cat 15	8	
4412109010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Cat 10	5	
4412109090	기타	Cat 10	5	
441231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10	5	
4412312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Cat 10	5	
4412312090	기타	Cat 10	5	
441231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EX	5	
441231401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EX	8	
4412314019	기타	EX	5	
4412314021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EX	10.4	
4412314029	기타	EX	5	
4412315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EX	10.4	
4412315090	기타	EX	5	
4412316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EX	10.4	
4412316090	기타	EX	5	
4412317010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이류의 국내주 제1호의 열대산 목재인 것	EX	5	
4412317090	기타	EX	5	
441233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10	5	
441233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10	5	
441233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EX	5	
441233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EX	5	
4412334020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EX	5	
441233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EX	5	
441233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EX	5	
441233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EX	5	
4412341000	두께가 3.2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10	5	
4412342000	두께가 3.2밀리미터 이상 4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10	5	
4412343000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 6밀리미터 미만인 것	EX	5	
4412344010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미만인 것	EX	5	
4412344020	두께가 8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미만인 것	EX	5	
441234500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상 12밀리미터 미만인 것	EX	5	
4412346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상 15밀리미터 미만인 것	EX	5	
4412347000	두께가 15밀리미터 이상인 것	EX	5	
4412391000	두께가 6밀리미터 미만인 것	EX	5	
4412399000	기타	EX	5	
4412941000	블록보드(blockboard)	Cat 15	5/8	
4412942000	라민보드(laminboard)	Cat 15	5/8	
4412943000	배튼보드(battenboard)	Cat 15	5/8	
4412994100	합판	EX	5	
4412994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EX	5/10	
4412994919	기타	EX	5/8	
4412994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EX	5	
4412994999	기타	Cat 10	5	
4412995100	합판	EX	5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412995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EX	5/10	
4412995919	기타	EX	5/8	
4412995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EX	5	
4412995999	기타	Cat 10	5	
4412996100	합판	EX	5	
4412996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EX	10	
4412996919	기타	Cat 15	8	
4412996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EX	5	
4412996999	기타	Cat 10	5	
4412999100	합판	Cat 15	5	
441299991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EX	5/10	
4412999919	기타	Cat 15	5/8	
4412999991	각 플라이가 6밀리미터 이하인 시트(sheet)만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전체 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인 것	EX	5	
4412999999	기타	Cat 10	5	
441300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44140000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Cat 0	0	
4415100000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볼드럼	Cat 0	0	
4415200000	팔렛(pallet)·박스팔렛(box pallet)·그 밖의 팔판류, 나무로 만든 팔렛칼라(pallet collar)	Cat 0	0	
4416000000	나무로 만든 통·배럴(barrel)·배트(vat)·텀(tub)·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Cat 0	0	
4417000000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굽	Cat 0	0	
4418100000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Cat 0	0	
4418200000	문·문틀·문지방	Cat 0	0	
4418400000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Cat 0	0	
4418500000	지붕을 이는 판자	Cat 0	0	
4418600000	기둥과 들보	Cat 0	0	
441873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Cat 0	0	
4418739000	기타	Cat 0	0	
441874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Cat 0	0	
4418749000	기타	Cat 0	0	
441875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Cat 0	0	
4418759000	기타	Cat 0	0	
4418791000	파케이패널(parquet panel)	Cat 0	0	
4418799000	기타	Cat 0	0	
44189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Cat 0	0	
4418991000	셀룰러우드패널	Cat 0	0	
4418999000	기타	Cat 0	0	
4419110000	황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Cat 0	0	
4419120000	젓가락	Cat 0	0	
4419190000	기타	Cat 0	0	
4419901000	황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Cat 0	0	
4419902000	대접(공기)	Cat 0	0	
4419903000	젓가락	Cat 0	0	
4419909000	기타	Cat 0	0	
4420101000	작은 조각상	Cat 0	0	
4420109000	기타	Cat 0	0	
4420901000	마르케트리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Cat 0	0	
4420902010	담배상자	Cat 0	0	
4420902020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Cat 0	0	
4420902030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Cat 0	0	
4420902090	기타	Cat 0	0	
4420909010	담배용 상자와 신변장식용품용 상자	Cat 0	0	
4420909020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가구	Cat 0	0	
4420909090	기타	Cat 0	0	
4421100000	못결이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421911000	스플·콤파·보빈·재봉사 릴과 이와 유사한 것(선반가공한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21912000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 펙(peg)과 못	Cat 0	0	
4421913000	이쑤시개	Cat 0	0	
442191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Cat 0	0	
4421915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이들의 살과 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Cat 0	0	
4421919000	기타	Cat 0	0	
4421991000	스플·콤파·보빈·재봉사 릴과 이와 유사한 것(선반가공한 목재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21992000	성냥개비의 나무, 신발용의 나무 펙(peg)과 못	Cat 0	0	
4421993000	이쑤시개	Cat 0	0	
4421994000	포장용의 목재블록	Cat 0	0	
4421995000	부채·핸드스크린(기계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이들의 살과 자루(살·자루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Cat 0	0	
4421999000	기타	Cat 0	0	
4501100000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501900000	기타	Cat 0	0	
450200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Cat 0	0	
4503100000	마개	Cat 0	0	
4503900000	기타	Cat 0	0	
4504100000	블록·판·시트(sheet)·스트립(strip)·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Cat 0	0	
4504900000	기타	Cat 0	0	
4601211000	매트류	Cat 0	0	
4601212000	발	Cat 0	0	
4601221000	매트류	Cat 0	0	
4601222000	발	Cat 0	0	
4601291000	매트류	Cat 0	0	
4601292000	발	Cat 0	0	
4601921000	은축발장(폭이 35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601929000	기타	Cat 0	0	
46019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Cat 0	0	
4601941000	은축발장(폭이 35센티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601949000	기타	Cat 0	0	
4601991000	플라스틱재료로 엮은 시트(sheet) 모양의 물품	Cat 0	0	
4601999000	기타	Cat 0	0	
4602111000	바구니	Cat 0	0	
4602112000	쟁반, 접시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Cat 0	0	
4602119000	기타	Cat 0	0	
4602120000	등나무로 만든 것	Cat 0	0	
4602191000	골판제품	Cat 0	0	
4602199000	기타	Cat 0	0	
4602900000	기타	Cat 0	0	
4701001000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470100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Cat 0	0	
470200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703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Cat 0	0	
4703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Cat 0	0	
4703211000	반표백한 것	Cat 0	0	
4703212000	표백한 것	Cat 0	0	
4703291000	반표백한 것	Cat 0	0	
4703292000	표백한 것	Cat 0	0	
47041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Cat 0	0	
47041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Cat 0	0	
4704210000	침엽수류로 만든 것	Cat 0	0	
4704290000	활엽수류로 만든 것	Cat 0	0	
470500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Cat 0	0	
4706100000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706200000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Cat 0	0	
4706301000	기계펄프	Cat 0	0	
4706302000	화학펄프	Cat 0	0	
4706303000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Cat 0	0	
4706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470691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Cat 0	0	
4706921000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470692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Cat 0	0	
4706931000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4706932000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Cat 0	0	
4707100000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Cat 0	0	
4707200000	주로 표백과 약탈로 만든 종이 종이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707300000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Cat 0	0	
4707900000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Cat 0	0	
4801000000	신문용지(물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4802100000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Cat 0	0	
4802200000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Cat 0	0	
4802400000	벽지용 원지(原紙)	Cat 0	0	
480254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541090	기타	Cat 0	0	
480254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549090	기타	Cat 0	0	
480255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551020	복사용지	Cat 0	0	
480255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Cat 0	0	
4802551040	팬시지	Cat 0	0	
4802551090	기타	Cat 0	0	
480255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559090	기타	Cat 0	0	
480256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561020	복사용지	Cat 0	0	
480256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Cat 0	0	
4802561040	팬시지	Cat 0	0	
4802561090	기타	Cat 0	0	
480256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569090	기타	Cat 0	0	
480257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571020	복사용지	Cat 0	0	
480257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Cat 0	0	
4802571040	팬시지	Cat 0	0	
4802571090	기타	Cat 0	0	
480257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579090	기타	Cat 0	0	
480258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581020	팬시지	Cat 0	0	
4802581090	기타	Cat 0	0	
4802582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582090	기타	Cat 0	0	
480258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589090	기타	Cat 0	0	
480261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611020	복사용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80261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 (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Cat 0	0	
4802611090	기타	Cat 0	0	
480261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619090	기타	Cat 0	0	
480262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621020	복사용지	Cat 0	0	
480262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Cat 0	0	
4802621090	기타	Cat 0	0	
480262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629090	기타	Cat 0	0	
4802691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691020	복사용지	Cat 0	0	
4802691030	전산용지와 품용지(컴퓨터용지와 지로용지를 포함한다)	Cat 0	0	
4802691040	팬시지	Cat 0	0	
4802691090	기타	Cat 0	0	
480269901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2699090	기타	Cat 0	0	
4803001000	화장지 · 안면용 티슈스톡	Cat 0	0	
4803002000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Cat 0	0	
4803009000	기타	Cat 0	0	
4804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4804190000	기타	Cat 0	0	
4804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4804290000	기타	Cat 0	0	
480431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Cat 0	0	
4804312000	콘덴서지와 판지	Cat 0	0	
4804313000	포장지와 판지	Cat 0	0	
4804319000	기타	Cat 0	0	
4804391000	전기절연지와 판지	Cat 0	0	
4804392000	콘덴서지와 판지	Cat 0	0	
4804393000	포장지와 판지	Cat 0	0	
4804399000	기타	Cat 0	0	
4804411010	총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Cat 0	0	
4804411090	기타	Cat 0	0	
4804419010	총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Cat 0	0	
4804419090	기타	Cat 0	0	
4804421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Cat 0	0	
480442102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 · 의약품 · 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4804421030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4804421090	기타	Cat 0	0	
480442901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Cat 0	0	
4804429030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4804429090	기타	Cat 0	0	
4804491000	총량이 1제곱미터당 200그램 미만인 것	Cat 0	0	
4804499000	기타	Cat 0	0	
4804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4804521000	밀크카톤(carton)과 그 밖의 음료용기용 원지	Cat 0	0	
4804522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 · 의약품 · 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4804523000	쟁반 · 접시 · 플레이트 · 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4804529000	기타	Cat 0	0	
4804590000	기타	Cat 0	0	
4805110000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Cat 0	0	
4805120000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Cat 0	0	
4805190000	기타	Cat 0	0	
480524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5249000	기타	Cat 0	0	
480525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805259000	기타	Cat 0	0	
4805300000	아황산포장지	Cat 0	0	
4805400000	여과지와 판지	Cat 0	0	
4805500000	벨트지와 판지	Cat 0	0	
480591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5919010	콘덴서지와 판지	Cat 0	0	
4805919090	기타	Cat 0	0	
480592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5929000	기타	Cat 0	0	
4805931000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로서 각 층을 표백한 것	Cat 0	0	
4805939000	기타	Cat 0	0	
4806100000	황산지	Cat 0	0	
4806200000	내지지(耐脂紙)	Cat 0	0	
4806300000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Cat 0	0	
4806401000	글라스신지(glassine paper)	Cat 0	0	
4806409000	기타	Cat 0	0	
4807000000	겉불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겉불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808100000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808401000	자루(sack)용	Cat 0	0	
4808409000	기타	Cat 0	0	
4808900000	기타	Cat 0	0	
4809201000	한 겹의 것	Cat 0	0	
4809202000	두 겹 이상의 것	Cat 0	0	
4809901000	전사지	Cat 0	0	
4809902010	제곱미터당 총량이 65그램 이상의 것	Cat 0	0	
4809902090	기타	Cat 0	0	
4809903000	인쇄용 제판용지	Cat 0	0	
4809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Cat 0	0	
4809909000	기타	Cat 0	0	
4810131000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Cat 0	0	
4810139000	기타	Cat 0	0	
4810141000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Cat 0	0	
4810149000	기타	Cat 0	0	
4810191000	인쇄용·필기용 종이와 판지	Cat 0	0	
4810199000	기타	Cat 0	0	
4810220000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Cat 0	0	
4810290000	기타	Cat 0	0	
481031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4810312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4810319000	기타	Cat 0	0	
4810321000	카톤(carton)용 원지(화장품·의약품·담배의 포장용과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4810322000	쟁반·접시·플레이트·컵 원지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4810329000	기타	Cat 0	0	
4810390000	기타	Cat 0	0	
4810921010	제곱미터당 총량이 250그램 이하인 것	Cat 0	0	
4810921090	기타	Cat 0	0	
4810922000	아이보리판지	Cat 0	0	
4810929000	기타	Cat 0	0	
4810991000	지형지	Cat 0	0	
4810992000	여과지	Cat 0	0	
4810999000	기타	Cat 0	0	
4811101000	루필지	Cat 0	0	
4811109000	기타	Cat 0	0	
4811410000	셀프접착지	Cat 0	0	
4811490000	기타	Cat 0	0	
4811511000	1제곱미터당 총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며 265그램 이하인 것	Cat 0	0	
481151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Cat 0	0	
4811519019	기타	Cat 0	0	
4811519090	기타	Cat 0	0	
4811590000	기타	Cat 0	0	
4811600000	왁스·파라핀왁스·스테아린(stearin)·기름·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Cat 0	0	
4811901010	패션, 선이나 방안선을 그은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811901090	기타	Cat 0	0	
4811902010	셀룰로오스워딩	Cat 0	0	
4811902090	기타	Cat 0	0	
48120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Cat 0	0	
4813100000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Cat 0	0	
4813200000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Cat 0	0	
4813900000	기타	Cat 0	0	
4814201000	벽지	Cat 0	0	
4814202000	링크라스타	Cat 0	0	
4814209000	기타	Cat 0	0	
4814901010	갈포섬유로 만든 것	Cat 0	0	
4814901090	기타	Cat 0	0	
4814909000	기타	Cat 0	0	
4816201000	한 겹의 것	Cat 0	0	
4816202000	두 겹 이상의 것	Cat 0	0	
4816901000	전사지	Cat 0	0	
4816902010	제곱미터당 중량이 65그램 이상인 것	Cat 0	0	
4816902090	기타	Cat 0	0	
4816903000	인쇄용 재판용지	Cat 0	0	
4816904000	카본지나 이와 유사한 복사지	Cat 0	0	
4816905000	등사원지	Cat 0	0	
4816909000	기타	Cat 0	0	
4817100000	봉투	Cat 0	0	
4817200000	불합엽서·우편엽서·통신용카드	Cat 0	0	
4817300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818100000	화장지	Cat 0	0	
4818200000	손수건·클렌징티슈·안면용 화장지·타월	Cat 0	0	
4818300000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Cat 0	0	
4818500000	의류와 의류 부속품	Cat 0	0	
4818900000	기타	Cat 0	0	
4819100000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819200000	합성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제외한다)	Cat 0	0	
4819300000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Cat 0	0	
4819400000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Cat 0	0	
4819501000	액체 포장에 적합한 것	Cat 0	0	
4819509000	기타	Cat 0	0	
4819600000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820100000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첩·메모첩·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4820200000	연습장	Cat 0	0	
4820300000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서류철·표지	Cat 0	0	
4820400000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Cat 0	0	
4820500000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Cat 0	0	
4820900000	기타	Cat 0	0	
4821100000	인쇄한 것	Cat 0	0	
4821900000	기타	Cat 0	0	
4822100000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Cat 0	0	
4822900000	기타	Cat 0	0	
4823200000	여과용 종이와 판지	Cat 0	0	
4823400000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다이얼	Cat 0	0	
4823610000	대나무로 만든 것	Cat 0	0	
4823690000	기타	Cat 0	0	
482370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롤드·프레스한 제품	Cat 0	0	
4823901010	구멍을 뚫은 카드	Cat 0	0	
4823901090	기타	Cat 0	0	
4823902000	전기절연지	Cat 0	0	
4823903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Cat 0	0	
4823903019	기타	Cat 0	0	
482390302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Cat 0	0	
4823903029	기타	Cat 0	0	
4823903090	기타	Cat 0	0	
4823905000	자카드(Jacquard) 직기용 구멍을 뚫은 종이	Cat 0	0	
4823909011	종이나 판지를 기본 재료로 한 바닥 깔개	Cat 0	0	
4823909019	기타	Cat 0	0	
4823909090	기타	Cat 0	0	
4901101000	국문판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4901109000	기타	Cat 0	0	
4901911000	국문판	Cat 0	0	
4901919000	기타	Cat 0	0	
4901991000	국문판	Cat 0	0	
4901999000	기타	Cat 0	0	
4902101010	신문	Cat 0	0	
4902101090	기타	Cat 0	0	
4902109000	기타	Cat 0	0	
4902901010	잡지	Cat 0	0	
4902901090	기타	Cat 0	0	
4902909010	잡지	Cat 0	0	
4902909090	기타	Cat 0	0	
49030000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Cat 0	0	
490400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재본 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905100000	지구의	Cat 0	0	
4905911000	지도와 해도	Cat 0	0	
4905919000	기타	Cat 0	0	
4905990000	기타	Cat 0	0	
4906001000	설계도	Cat 0	0	
4906002000	도안	Cat 0	0	
4906009000	기타	Cat 0	0	
4907001000	우표(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907002000	항공화물증권	Cat 0	0	
4907009000	기타	Cat 0	0	
4908100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somania)]로 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Cat 0	0	
4908901000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somania)]로 서 쿠션 플로어링 시트(sheet)용의 것	Cat 0	0	
4908909000	기타	Cat 0	0	
4909000000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 · 전언용 · 안내용으로서 그림 · 봉투 · 장 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910001000	종이나 판지로 만든 것	Cat 0	0	
4910009000	기타	Cat 0	0	
4911100000	광고 선전물 · 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 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4911911000	인쇄된 설계도와 도안	Cat 0	0	
4911919000	기타	Cat 0	0	
4911990000	기타	Cat 0	0	
500100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002001010	20데시텍스 이하인 것	Cat 0	0	
5002001020	20데시텍스 초과 25.56데시텍스 이하인 것	Cat 0	0	
5002001030	25.56데시텍스 초과 28.89데시텍스 이하 인 것	Cat 0	0	
5002001040	28.89데시텍스 초과 36.67데시텍스 이하 인 것	Cat 0	0	
5002001050	36.67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	Cat 0	0	
5002002000	목사(doupion silk)	Cat 0	0	
5002009000	기타	Cat 0	0	
5003001000	카드(card)하지도 코용(comb)하지도 않은 것	Cat 0	0	
5003009000	기타	Cat 0	0	
500400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Cat 0	0	
5005001000	견수방사	Cat 0	0	
5005002000	견방사	Cat 0	0	
5005003000	견방주사	Cat 0	0	
5006001000	견사	Cat 0	0	
5006002000	견수방사	Cat 0	0	
5006003000	견방사	Cat 0	0	
5006004000	견방주사	Cat 0	0	
5006005000	누에의 거트(gut)	Cat 0	0	
5007100000	견 노일(noil) 직물	Cat 0	0	
5007201000	생지견직물	Cat 0	0	
5007202010	홀치기가금	Cat 0	0	
5007202020	사틴	Cat 0	0	
5007202030	크렙 데신(crepe de chine)	Cat 0	0	
5007202090	기타	Cat 0	0	
5007209000	기타	Cat 0	0	
5007901000	생지견직물	Cat 0	0	
5007902000	아세테이트사와 혼방한 견직물	Cat 0	0	
5007903000	그 밖의 인조섬유와 혼방한 견직물	Cat 0	0	
5007904000	양모와 혼방한 견직물	Cat 0	0	
50079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5101110000	짧은 양모	Cat 0	0	
5101190000	기타	Cat 0	0	
5101210000	짧은 양모	Cat 0	0	
5101290000	기타	Cat 0	0	
5101300000	탄화처리한 것	Cat 0	0	
51021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Cat 0	0	
5102190000	기타	Cat 0	0	
5102200000	동물의 거친 털	Cat 0	0	
51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Cat 0	0	
5103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Cat 0	0	
5103300000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Cat 0	0	
5104000000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넷스톡(garnetted stock)	Cat 0	0	
5105100000	카드(card)한 양모	Cat 0	0	
5105210000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5105290000	기타	Cat 0	0	
5105310000	캐시미어 산양의 것	Cat 0	0	
5105390000	기타	Cat 0	0	
5105400000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106101000	순모의 것	Cat 3	5	
5106109000	기타	Cat 3	5	
5106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Cat 3	5	
5106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Cat 3	5	
5106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Cat 3	5	
5106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Cat 3	5	
5106209000	기타	Cat 3	5	
5107101000	순모의 것	Cat 3	5	
5107102000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Cat 3	5	
51071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Cat 3	5	
5107201000	폴리에스테르섬유와 혼방한 것	Cat 0	0	
5107202000	폴리아미드섬유와 혼방한 것	Cat 3	5	
5107203000	아크릴섬유와 혼방한 것	Cat 3	5	
5107204000	그 밖의 합성섬유와 혼방한 것	Cat 3	5	
5107209000	그 밖의 섬유와 혼방한 것	Cat 3	5	
5108100000	카드(card)한 것	Cat 3	5	
5108200000	코움(comb)한 것	Cat 3	5	
5109101000	양모사	Cat 3	5	
51091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Cat 3	5	
5109901000	양모사	Cat 3	5	
5109909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Cat 3	5	
51100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정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Cat 0	5	
5111111000	양모로 만든 것	Cat 3	5	
5111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Cat 0	0	
5111191000	양모로 만든 것	Cat 0	0	
5111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Cat 0	0	
5111200000	기타(주로 인조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111300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111900000	기타	Cat 0	0	
5112111000	양모로 만든 것	Cat 0	0	
511211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Cat 0	0	
5112191000	양모로 만든 것	Cat 0	0	
5112192000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실로 만든 것	Cat 0	0	
5112200000	기타(주로 인조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112300000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112900000	기타	Cat 0	0	
511300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1001000	실면(實綿)	Cat 0	0	
5201009010	섬유 길이가 23.2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5201009020	섬유 길이가 23.2밀리미터 이상 25.4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5201009030	섬유 길이가 25.4밀리미터 이상 28.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5201009050	섬유 길이가 28.5밀리미터 이상 34.9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5201009060	섬유 길이가 34.9밀리미터 이상인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5202100000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Cat 0	0	
5202910000	가넷스톡(garnetted stock)	Cat 0	0	
5202990000	기타	Cat 0	0	
520300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4110000	면의 함유량이 전 종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Cat 0	5	
5204190000	기타	Cat 0	5	
5204200000	소매용	Cat 0	0	
52051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5119000	기타	Cat 0	0	
5205121010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Cat 0	0	
5205121090	기타	Cat 0	0	
5205129000	기타	Cat 0	0	
52051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5139000	기타	Cat 0	0	
52051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5149000	기타	Cat 0	0	
52051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5159000	기타	Cat 0	0	
52052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5	
5205219000	기타	Cat 0	5	
52052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EX	5	
5205229000	기타	EX	5	
52052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EX	5	
5205239000	기타	EX	5	
52052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EX	5	
5205249000	기타	EX	5	
520526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EX	5	
5205269000	기타	EX	5	
520527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EX	5	
5205279000	기타	EX	5	
520528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EX	5	
5205289000	기타	EX	5	
52053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5319000	기타	Cat 0	0	
5205321010	370.37데시텍스 이하 232.56데시텍스 이상(미터식 번수 27수 이상 43수 이하)인 것. 다만, 오픈·엔드사(open end yarn)는 제외한다.	Cat 0	0	
5205321090	기타	Cat 0	0	
5205329000	기타	Cat 0	0	
52053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5339000	기타	Cat 0	0	
52053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5349000	기타	Cat 0	0	
52053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5359000	기타	Cat 0	0	
52054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5	
5205419000	기타	Cat 0	5	
52054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5	
5205429000	기타	Cat 0	5	
52054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5	
5205439000	기타	Cat 0	5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52054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5	
5205449000	기타	Cat 0	5	
520546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5	
5205469000	기타	Cat 0	5	
520547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5	
5205479000	기타	Cat 0	5	
520548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5	
5205489000	기타	EX	5	
52061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119000	기타	Cat 0	0	
52061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129000	기타	Cat 0	0	
52061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139000	기타	Cat 0	0	
52061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149000	기타	Cat 0	0	
52061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159000	기타	Cat 0	0	
52062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219000	기타	Cat 0	0	
52062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229000	기타	Cat 0	0	
52062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239000	기타	Cat 0	0	
52062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249000	기타	Cat 0	0	
52062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259000	기타	Cat 0	0	
52063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319000	기타	Cat 0	0	
52063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329000	기타	Cat 0	0	
52063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339000	기타	Cat 0	0	
52063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349000	기타	Cat 0	0	
52063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359000	기타	Cat 0	0	
520641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419000	기타	Cat 0	0	
520642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429000	기타	Cat 0	0	
520643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439000	기타	Cat 0	0	
520644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449000	기타	Cat 0	0	
520645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6459000	기타	Cat 0	0	
520710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71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5207901000	표백하지 않거나 머서(mercer)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5207909000	기타	Cat 0	0	
52081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81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5	
52081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81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Cat 0	0	
52082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82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82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8290000	그 밖의 직물의 것	Cat 0	5	
52083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83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83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8390000	그 밖의 직물	Cat 0	0	
52084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84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843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8490000	그 밖의 직물	Cat 0	0	
520851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8520000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85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8599000	기타	Cat 0	0	
5209110000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091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9190000	그 밖의 직물	Cat 0	0	
5209210000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092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9290000	그 밖의 직물	Cat 0	0	
5209310000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093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9390000	그 밖의 직물	Cat 0	0	
5209410000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09420000	데님(denim)	Cat 0	0	
5209430000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9490000	그 밖의 직물	Cat 0	0	
5209510000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095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9590000	그 밖의 직물	Cat 0	0	
5210110000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101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10199000	기타	Cat 0	0	
5210210000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102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10299000	기타	Cat 0	0	
5210310000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10320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10390000	그 밖의 직물	Cat 0	0	
5210410000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10491000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10499000	기타	Cat 0	0	
5210510000	평직물(平織物)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5210590000	그 밖의 직물	Cat 0	0	
5211110000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11120000	3줄이나 4줄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11190000	그 밖의 직물	Cat 0	0	
5211200000	표백한 것	Cat 0	0	
5211310000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11320000	3줄이나 4줄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11390000	그 밖의 직물	Cat 0	0	
5211410000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11420000	데님(denim)	Cat 0	0	
5211430000	3줄이나 4줄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11490000	그 밖의 직물	Cat 0	0	
5211510000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11520000	3줄이나 4줄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11590000	그 밖의 직물	Cat 0	0	
52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5212120000	표백한 것	Cat 0	0	
5212130000	염색한 것	Cat 0	0	
52121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212150000	날염한 것	Cat 0	0	
5212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5212220000	표백한 것	Cat 0	0	
5212230000	염색한 것	Cat 0	0	
521224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212250000	날염한 것	Cat 0	0	
5301100000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Cat 0	0	
5301210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Cat 0	0	
5301290000	기타	Cat 0	0	
5301301000	아마의 토우(tow)	Cat 0	0	
5301302000	아마의 웨이스트(waste)	Cat 0	0	
5302100000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Cat 0	0	
5302901000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흠어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대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Cat 0	0	
5302902010	대마의 토우(tow)	Cat 0	0	
5302902020	대마의 웨이스트(waste)	Cat 0	0	
5303101000	황마	Cat 0	0	
5303102000	그 밖의 방적용 인피(靱皮)섬유	Cat 0	0	
5303901010	황마	Cat 0	0	
5303901090	그 밖의 방적용 인피(靱皮)섬유	Cat 0	0	
5303909010	황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Cat 0	0	
5303909090	그 밖의 방적용 인피(靱皮)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Cat 0	0	
5305001000	코코넛[코이어(coir)]의 것	Cat 0	0	
5305002000	아바카의 것	Cat 0	0	
5305003000	사이잘(sisal)마와 아가베(Agave)속의 것	Cat 0	0	
5305009000	기타	Cat 0	0	
5306101000	순아마사	Cat 0	0	
5306102000	혼방아마사	Cat 0	0	
5306201000	순아마사	Cat 0	0	
5306202000	혼방아마사	Cat 0	0	
5307101000	황마사	Cat 0	0	
5307109000	기타	Cat 0	0	
5307201000	황마사	Cat 0	0	
5307209000	기타	Cat 0	0	
5308100000	코이어(coir)사	Cat 0	0	
5308200000	대마사	Cat 0	0	
5308901000	라미(ramie)사	Cat 0	0	
5308909000	기타	Cat 0	0	
5309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309190000	기타	Cat 0	0	
5309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309290000	기타	Cat 0	0	
5310101000	황마직물	Cat 0	0	
5310109000	기타	Cat 0	0	
5310901000	황마직물	Cat 0	0	
5310909000	기타	Cat 0	0	
5311001000	라미(ramie)의 것	Cat 0	0	
5311002000	대마의 것	Cat 0	0	
5311003000	종이실(paper yarn)의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5311009000	기타	Cat 0	0	
5401101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40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40110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1109000	기타	Cat 0	0	
5401201000	비스코스 레이온의 것	Cat 0	0	
5401209000	기타	Cat 0	0	
5402110000	아라미드의 것	Cat 0	0	
5402191011	타이어 코드사	Cat 0	0	
5402191012	여망사	Cat 0	0	
5402191019	기타	Cat 0	0	
5402191021	타이어 코드사	Cat 0	0	
5402191022	여망사	Cat 0	0	
5402191029	기타	Cat 0	0	
5402191090	기타	Cat 0	0	
5402199000	기타	Cat 0	0	
5402200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5402311010	나일론 6의 것	Cat 0	0	
5402311020	나일론 66의 것	Cat 0	0	
5402311090	기타	Cat 0	0	
5402319000	기타	Cat 0	0	
5402321010	나일론 6의 것	Cat 0	0	
5402321020	나일론 66의 것	Cat 0	0	
5402321090	기타	Cat 0	0	
5402329000	기타	Cat 0	0	
5402331000	폴리 트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Cat 0	5	
5402339000	기타	Cat 3	5	
540234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Cat 0	0	
5402390000	기타	Cat 0	0	
5402440000	탄성사	Cat 0	0/5	
5402451010	나일론 6의 것	Cat 0	0	
5402451020	나일론 66의 것	Cat 0	0	
5402451090	기타	Cat 0	0	
5402459000	기타	Cat 0	0	
5402461000	폴리 트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Cat 0	0	
5402469000	기타	Cat 0	0	
5402471000	폴리 트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Cat 0	5	
5402479000	기타	Cat 3	5	
540248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4024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2499000	기타	Cat 0	5	
54025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4025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40253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Cat 0	0	
54025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2599000	기타	Cat 0	0	
540261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40262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40263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Cat 0	0	
540269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2692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Cat 0	0	
5402699000	기타	Cat 0	0	
5403100000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403311000	텍스처드사	Cat 0	0	
5403319000	기타	Cat 0	0	
5403321000	텍스처드사	Cat 0	0	
5403329000	기타	Cat 0	0	
5403331000	텍스처드사	Cat 0	0	
5403339000	기타	Cat 0	0	
5403391000	텍스처드사	Cat 0	0	
5403399000	기타	Cat 0	0	
5403411000	텍스처드사	Cat 0	0	
5403419000	기타	Cat 0	0	
5403421000	텍스처드사	Cat 0	0	
5403429000	기타	Cat 0	0	
5403491000	텍스처드사	Cat 0	0	
5403499000	기타	Cat 0	0	
5404110000	탄성사	Cat 0	0	
5404120000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404191000	나일론이나 기타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404192000	폴리우레탄의 것	Cat 0	0	
5404193000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Cat 0	0	
5404199000	기타	Cat 0	0	
5404901000	스트립 모양의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5404909000	기타	Cat 0	0	
5405001000	모노필라멘트	Cat 0	0	
5405009000	기타	Cat 0	0	
5406001000	합성필라멘트사	Cat 0	0	
5406002000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	Cat 0	0	
5407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407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407200000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Cat 0	0	
5407300000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Cat 0	0	
5407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407420000	염색한 것	Cat 0	0	
54074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407440000	날염한 것	Cat 0	0	
54075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407520000	염색한 것	Cat 0	0	
54075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407540000	날염한 것	Cat 0	0	
54076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407612000	염색한 것	Cat 0	0	
540761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407614000	날염한 것	Cat 0	0	
54076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407692000	염색한 것	Cat 0	0	
5407693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407694000	날염한 것	Cat 0	0	
540771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7719000	기타	Cat 0	0	
540772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7729000	기타	Cat 0	0	
540773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7739000	기타	Cat 0	0	
5407741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7749000	기타	Cat 0	0	
54078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4078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4078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7819000	기타	Cat 0	0	
54078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4078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4078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7829000	기타	Cat 0	0	
54078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4078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4078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7839000	기타	Cat 0	0	
54078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4078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4078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7849000	기타	Cat 0	0	
5407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40791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40791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7919000	기타	Cat 0	0	
5407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40792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40792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7929000	기타	Cat 0	0	
540793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40793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40793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7939000	기타	Cat 0	0	
540794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40794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407943000	아크릴 중합체의 것	Cat 0	0	
5407949000	기타	Cat 0	0	
5408100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Cat 0	0	
5408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408220000	염색한 것	Cat 0	0	
54082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408240000	날염한 것	Cat 0	0	
5408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408320000	염색한 것	Cat 0	0	
540833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408340000	날염한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5501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01200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501301000	아크릴의 것	Cat 0	0	
550130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01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Cat 0	0	
5501900000	기타	Cat 0	0	
5502101000	44,000 데시텍스 미만의 것	Cat 0	0	
5502102000	44,000 데시텍스 이상의 것	Cat 0	0	
55029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02909000	기타	Cat 0	0	
550311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Cat 0	0	
5503119000	기타	Cat 0	0	
550319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Cat 0	0	
5503199000	기타	Cat 0	0	
5503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Cat 0	0	
5503209010	폴리 트레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	Cat 0	0	
5503209090	기타	Cat 0	0	
5503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Cat 0	0	
5503301090	기타	Cat 0	0	
5503302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Cat 0	0	
5503302090	기타	Cat 0	0	
5503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Cat 0	0	
5503900000	기타	Cat 0	0	
5504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Cat 0	0	
550410200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Cat 0	0	
5504109000	기타	Cat 0	0	
5504902000	리오셀(lyocell)의 것	Cat 0	0	
5504909000	기타	Cat 0	0	
5505100000	합성섬유의 것	Cat 0	0	
55052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Cat 0	0	
55061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Cat 0	0	
5506109000	기타	Cat 0	0	
550620100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Cat 0	0	
5506209000	기타	Cat 0	0	
5506301010	이형단면(異型斷面)인 것	Cat 0	0	
5506301090	기타	Cat 0	0	
550630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06400000	폴리프로필렌의 것	Cat 0	0	
5506900000	기타	Cat 0	0	
5507001020	폴리노직(polynosic) 단면인 것	Cat 0	0	
5507001090	기타	Cat 0	0	
55070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07009000	기타	Cat 0	0	
5508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08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508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08109000	기타	Cat 0	0	
55082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08209000	기타	Cat 0	0	
5509111000	강력사	Cat 0	0	
5509119000	기타	Cat 0	0	
5509121000	강력사	Cat 0	0	
5509129000	기타	Cat 0	0	
5509211000	강력사	Cat 0	0	
5509219000	기타	Cat 0	0	
5509221000	강력사	Cat 0	0	
5509229000	기타	Cat 0	0	
5509311000	아크릴의 것	Cat 0	0	
55093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09321000	아크릴의 것	Cat 0	0	
55093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09410000	단사	Cat 0	0	
5509420000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Cat 0	0	
5509510000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Cat 0	0	
5509520000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Cat 0	0	
5509530000	주로 면과 혼방한 것	Cat 0	0	
5509590000	기타	Cat 0	0	
5509611000	아크릴의 것	Cat 0	0	
55096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09621000	아크릴의 것	Cat 0	0	
550962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09691010	아크릴의 것	Cat 0	0	
5509691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09692010	아크릴의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55096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09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09919000	기타	Cat 0	0	
550992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09929000	기타	Cat 0	0	
5509990000	기타	Cat 0	0	
55101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0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0119000	기타	Cat 0	0	
55101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0129000	기타	Cat 0	0	
55102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0209000	기타	Cat 0	0	
55103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03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0309000	기타	Cat 0	0	
55109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090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0909000	기타	Cat 0	0	
55111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111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5111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11109000	기타	Cat 0	0	
551120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11202000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511203000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11209000	기타	Cat 0	0	
551130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1309000	기타	Cat 0	0	
551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2191000	염색한 것	Cat 0	0	
5512192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512193000	날염한 것	Cat 0	0	
5512211000	아크릴의 것	Cat 0	0	
551221200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12290000	기타	Cat 0	0	
551291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12919000	기타	Cat 0	0	
55129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12999000	기타	Cat 0	0	
5513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Cat 0	0	
5513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Cat 0	0	
55131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Cat 0	0	
5513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13192010	아크릴의 것	Cat 0	0	
5513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13199000	기타	Cat 0	0	
5513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Cat 0	0	
5513231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Cat 0	0	
5513239000	기타	Cat 0	0	
5513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13292010	아크릴의 것	Cat 0	0	
5513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13299000	기타	Cat 0	0	
55133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Cat 0	0	
55133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13392010	아크릴의 것	Cat 0	0	
55133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13399000	기타	Cat 0	0	
5513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Cat 0	0	
5513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13492010	아크릴의 것	Cat 0	0	
5513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13499000	기타	Cat 0	0	
55141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55141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Cat 0	0	
55141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14192010	아크릴의 것	Cat 0	0	
55141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14193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기타직물	Cat 0	0	
5514199000	기타	Cat 0	0	
55142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Cat 0	0	
55142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Cat 0	0	
55142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Cat 0	0	
55142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14292010	아크릴의 것	Cat 0	0	
55142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14299000	기타	Cat 0	0	
5514300000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51441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Cat 0	0	
551442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Cat 0	0	
5514430000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Cat 0	0	
5514491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14492010	아크릴의 것	Cat 0	0	
5514492020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14499000	기타	Cat 0	0	
55151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5119000	기타	Cat 0	0	
55151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5129000	기타	Cat 0	0	
551513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5139000	기타	Cat 0	0	
55151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5199000	기타	Cat 0	0	
55152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5219000	기타	Cat 0	0	
551522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5229000	기타	Cat 0	0	
55152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5299000	기타	Cat 0	0	
551591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5919000	기타	Cat 0	0	
551599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5999000	기타	Cat 0	0	
55161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1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6119000	기타	Cat 0	0	
55161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1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6129000	기타	Cat 0	0	
55161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1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6139000	기타	Cat 0	0	
55161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1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6149000	기타	Cat 0	0	
55162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2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6219000	기타	Cat 0	0	
55162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2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6229000	기타	Cat 0	0	
55162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2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6239000	기타	Cat 0	0	
55162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24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6249000	기타	Cat 0	0	
55163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31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631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55163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3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6329000	기타	Cat 0	0	
55163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339000	기타	Cat 0	0	
55163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349000	기타	Cat 0	0	
55164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419000	기타	Cat 0	0	
55164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4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6429000	기타	Cat 0	0	
55164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43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6439000	기타	Cat 0	0	
55164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449000	기타	Cat 0	0	
551691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919000	기타	Cat 0	0	
551692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922000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16929000	기타	Cat 0	0	
551693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939000	기타	Cat 0	0	
5516941000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16949000	기타	Cat 0	0	
56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6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601290000	기타	Cat 0	0	
5601301000	섬유의 플록(flock)	Cat 0	0	
5601309000	기타	Cat 0	0	
5602101000	니들룸 펠트(needleloom felt)	Cat 0	0	
5602102000	스티치 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Cat 0	0	
5602211000	피아노 펠트(felt)	Cat 0	0	
5602219000	기타	Cat 0	0	
560229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602900000	기타	Cat 0	0	
560311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Cat 0	0	
5603119000	기타	Cat 0	0	
560312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Cat 0	0	
5603129000	기타	Cat 0	0	
560313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Cat 0	0	
5603139000	기타	Cat 0	0	
5603141000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	Cat 0	0	
5603149000	기타	Cat 0	0	
5603910000	1제곱미터당 총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Cat 0	0	
5603920000	1제곱미터당 총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Cat 0	0	
5603930000	1제곱미터당 총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Cat 0	0	
5603940000	1제곱미터당 총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Cat 0	0	
5604100000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604901000	모조 캣가트(방직용 섬유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604902000	강력사(폴리에스테르·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비스코스레이온의 것으로서 침투·도포한 것)	Cat 0	0	
5604909000	기타	Cat 0	0	
560500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zimpran (gimpran) 것인지에 상관없이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스트립(strip)·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606001000	zimpran(Gimpran yarn)	Cat 0	0	
5606002000	chenille yarn	Cat 0	0	
5606003000	loop wale-yarn	Cat 0	0	
5606009000	기타	Cat 0	0	
5607210000	포장용 끈	Cat 0	0	
5607290000	기타	Cat 0	0	
5607410000	포장용 끈	Cat 0	0	
5607490000	기타	Cat 0	0	
5607500000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5607901000	제5303호의 황마, 방직용 인피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607909000	기타	Cat 0	0	
56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608119000	기타	Cat 0	0	
560819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608199000	기타	Cat 0	0	
5608901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608909000	기타	Cat 0	0	
5609001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609002000	식물성 섬유로 만든 것(면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Cat 0	0	
56090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609009000	기타	Cat 0	0	
5701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57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702100000	켈렘(kelem) · 슈맥(schumack) · 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Cat 0	0	
5702200000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 깔개	Cat 0	0	
5702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57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7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702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57024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70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702500000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Cat 0	0	
57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5702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7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7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5703200000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Cat 0	0	
5703300000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70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7041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704200000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704900000	기타	Cat 0	0	
5705000000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Cat 0	0	
5801101000	파일(pile)직물	Cat 0	0	
5801102000	셔닐(chenille)직물	Cat 0	0	
58012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Cat 0	0	
58012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Cat 0	0	
58012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Cat 0	0	
5801260000	셔닐(chenille)직물	Cat 0	0	
5801271000	절단되지 않은 것	Cat 0	0	
5801272000	절단된 것	Cat 0	0	
5801310000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Cat 0	0	
5801320000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Cat 0	0	
5801330000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Cat 0	0	
5801360000	셔닐(chenille)직물	Cat 0	0	
5801371000	절단되지 않은 것	Cat 0	0	
5801372000	절단된 것	Cat 0	0	
58019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802110000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5802190000	기타	Cat 0	0	
5802200000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Cat 0	0	
5802300000	터프트(tuft)한 직물	Cat 0	0	
5803000000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Cat 0	0	
580410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5804102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804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804109000	기타	Cat 0	0	
580421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8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5804292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804299000	기타	Cat 0	0	
5804300000	손으로 만든 레이스	Cat 0	0	
5805001000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5805002000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Cat 0	0	
5806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5806102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806103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806109000	기타	Cat 0	0	
5806200000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총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8063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806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806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5806392000	식물성섬유(면은 제외한다)로 만든 것	Cat 0	0	
5806399000	기타	Cat 0	0	
5806400000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불턱)	Cat 0	0	
5807101000	레이블(label)	Cat 0	0	
5807109000	기타	Cat 0	0	
5807901000	레이블(label)	Cat 0	0	
5807909000	기타	Cat 0	0	
5808100000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Cat 0	0	
5808901000	장식용 트리밍(trimming)	Cat 0	0	
5808909000	기타	Cat 0	0	
580900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Cat 0	0	
5810100000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8109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810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810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81100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58110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5811003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8110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811009000	기타	Cat 0	0	
5901100000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Cat 0	0	
5901901000	투사포(tracing cloth)	Cat 0	0	
5901902000	회화용 캔버스	Cat 0	0	
5901903000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Cat 0	0	
5902100000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Cat 0	0	
5902200000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Cat 0	0	
5902900000	기타	Cat 0	0	
5903100000	폴리(염화비닐)의 것	Cat 0	0	
5903200000	폴리우레탄의 것	Cat 0	0	
5903900000	기타	Cat 0	0	
5904100000	리놀륨	Cat 0	0	
5904900000	기타	Cat 0	0	
5905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Cat 0	0	
5906100000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Cat 0	0	
5906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Cat 0	0	
5906990000	기타	Cat 0	0	
5907001000	간성유의 조제품이나 기름을 도포·침투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Cat 0	0	
5907002000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Cat 0	0	
5907009000	기타	Cat 0	0	
5908001000	심지	Cat 0	0	
5908009000	기타	Cat 0	0	
5909000000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5910000000	전동(transmission)용·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5911101000	세폭(細幅)직물로 만든 것	Cat 0	0	
5911109000	기타	Cat 0	0	
5911200000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591131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Cat 0	0	
5911320000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Cat 0	0	
5911400000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 것)	Cat 0	0	
5911900000	기타	Cat 0	0	
6001101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001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001109000	기타	Cat 0	0	
60012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001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001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0019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0019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0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0024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Cat 0	0	
6002900000	기타	Cat 0	0	
6003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00320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003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003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003900000	기타	Cat 0	0	
6004100000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Cat 0	0	
6004900000	기타	Cat 0	0	
6005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6005220000	염색한 것	Cat 0	0	
6005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Cat 0	0	
6005240000	날염한 것	Cat 0	0	
6005351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6005352000	염색한 것	Cat 0	0	
6005353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Cat 0	0	
6005354000	날염한 것	Cat 0	0	
6005360000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005370000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005380000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005390000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005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6005420000	염색한 것	Cat 0	0	
6005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Cat 0	0	
6005440000	날염한 것	Cat 0	0	
6005900000	기타	Cat 0	0	
6006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0062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6006220000	염색한 것	Cat 0	0	
60062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Cat 0	0	
6006240000	날염한 것	Cat 0	0	
60063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6006320000	염색한 것	Cat 0	0	
60063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Cat 0	0	
6006340000	날염한 것	Cat 0	0	
6006410000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6006420000	염색한 것	Cat 0	0	
6006430000	서로 다른 색실의 것	Cat 0	0	
6006440000	날염한 것	Cat 0	0	
6006900000	기타	Cat 0	0	
610120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1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1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1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21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220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2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2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2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310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31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31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3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61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34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5	
61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191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4199000	기타	Cat 0	0	
61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491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4499000	기타	Cat 0	0	
61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46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6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510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5	
6105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5	
6105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5901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5909000	기타	Cat 0	0	
610610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62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62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5	
6106901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6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6909000	기타	Cat 0	0	
61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71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71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7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7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7999000	기타	Cat 0	0	
61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191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8199000	기타	Cat 0	0	
61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3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83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3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9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8999000	기타	Cat 0	0	
6109101000	티셔츠	Cat 0	0	
6109109000	기타	Cat 0	0	
6109901010	티셔츠	Cat 0	0	
6109901090	기타	Cat 0	0	
6109902010	티셔츠	Cat 0	0	
6109902090	기타	Cat 0	0	
6109903010	티셔츠	Cat 3	5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6109903090	기타	Cat 0	0	
6109909010	티셔츠	Cat 0	0	
6109909090	기타	Cat 0	0	
6110110000	양모로 만든 것	Cat 0	0	
6110120000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Cat 0	0	
6110190000	기타	Cat 0	0	
611020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3	5	
6110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0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090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110909000	기타	Cat 0	0	
6111201000	의류	Cat 0	0	
6111202000	부속품	Cat 0	0	
6111301000	의류	Cat 0	0	
6111302000	부속품	Cat 0	0	
6111901000	의류	Cat 0	0	
6111902000	부속품	Cat 0	0	
61121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12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2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2209000	기타	Cat 0	0	
61123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24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2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3001000	제5903호의 것	Cat 0	0	
6113002000	제5906호의 것	Cat 0	0	
6113003000	제5907호의 것	Cat 0	0	
611420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14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4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490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114909000	기타	Cat 0	0	
6115100000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Cat 0	0/5	
611521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115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115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53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5309000	기타	Cat 0	0	
611594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1595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1596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5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5	
6116100000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Cat 0	0	
6116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16921000	작업용 장갑	Cat 0	0	
6116929000	기타	Cat 0	0	
6116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6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710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1171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17103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17104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7109000	기타	Cat 0	0	
6117801000	넥타이류	Cat 0	0	
6117809000	기타	Cat 0	0	
6117900000	부속품	Cat 0	0	
6201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11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1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1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1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1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19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1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1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1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2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5	
62021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21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21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6202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29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29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29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29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3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3	5	
62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3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32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3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32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3299000	기타	Cat 0	0	
6203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3	5	
62033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5	
6203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3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3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3	5	
6203421000	대남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Cat 0	0	
6203429000	기타	Cat 0	0	
6203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34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41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5	
62041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41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419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4199000	기타	Cat 0	0	
62042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42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42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429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4299000	기타	Cat 0	0	
62043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5	
62043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5	
62043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439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4399000	기타	Cat 0	0	
62044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44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44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444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449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4499000	기타	Cat 0	0	
62045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3	5	
620452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45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459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4599000	기타	Cat 0	0	
620461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3	5	
6204621000	대남의 것(청바지를 포함한다)	Cat 0	0	
6204629000	기타	Cat 3	5	
62046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469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4699000	기타	Cat 0	0	
62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3	5	
62053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53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590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590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5909000	기타	Cat 0	0	
6206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Cat 0	0	
6206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630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640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640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6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71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719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7199000	기타	Cat 0	0	
62072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7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7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7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79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799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7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620799301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799302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7999000	기타	Cat 0	0	
620811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811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819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8192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8199000	기타	Cat 0	0	
62082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82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82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8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5	
62089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892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892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8991000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8992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8999000	기타	Cat 0	0	
6209201000	의류	Cat 0	0	
6209202000	부속품	Cat 0	0	
6209301000	의류	Cat 0	0	
6209302000	부속품	Cat 0	0	
620990101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9901090	기타	Cat 0	0	
6209902000	부속품	Cat 0	0	
6210101000	제5602호의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210102000	제56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2102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2102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2102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2103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2103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2103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2104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2104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2104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210501000	제59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210502000	제5906호의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210503000	제5907호의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21111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1119000	기타	Cat 0	0	
621112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1129000	기타	Cat 0	0	
6211201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1209000	기타	Cat 0	0	
62113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Cat 0	0	
6211329000	기타	Cat 0	0	
62113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13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13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11399000	기타	Cat 0	0	
6211421000	유도, 태권도와 그 밖의 동양 무술복	Cat 0	0	
6211429000	기타	Cat 0	0	
6211431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1432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1491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11499000	기타	Cat 0	0	
6212101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121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2109000	기타	Cat 0	5	
6212201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12202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2209000	기타	Cat 0	0	
6212300000	코르세렛(corsette)	Cat 0	0	
6212900000	기타	Cat 0	0	
621320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13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4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Cat 0	5	
6214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1430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4400000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4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5100000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Cat 0	0	
621520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6001000	플라스틱·고무를 침투, 도포, 피복한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6216009000	기타	Cat 0	5	
6217100000	부속품	Cat 0	0	
6217900000	부속품	Cat 0	0	
6301100000	전기모포	Cat 0	0	
6301200000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Cat 0	0	
6301300000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Cat 0	0	
6301400000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Cat 0	0	
6301900000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Cat 0	0	
6302101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2109000	기타	Cat 0	0	
63022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22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2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23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232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23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2400000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Cat 0	0	
63025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25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25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2600000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3029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2930000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2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3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3191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3199000	기타	Cat 0	0	
630391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39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3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41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Cat 0	0	
6304190000	기타	Cat 0	0	
6304200000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304910000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Cat 0	0	
6304920000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Cat 0	0	
630493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Cat 0	0	
63049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Cat 0	0	
6305100000	황마나 제5303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鞣皮)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5200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5320000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305330000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305390000	기타	Cat 0	0	
630590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61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61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6220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6290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6300000	토	Cat 0	0	
6306401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6409000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6901000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6902000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6909000	기타	Cat 0	0	
6307100000	마루닥이포·접시닥이포·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Cat 0	0	
6307200000	구명재킷과 구명벨트	Cat 0	0	
6307901000	신발류 끈	Cat 0	0	
6307902000	보자기	Cat 0	0	
6307903000	드레스 패턴(dress pattern)	Cat 0	0	
63079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6308000000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 · 서비에트(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 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 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Cat 0	0	
630900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Cat 0	0	
6310100000	선별한 것	Cat 0	0	
6310900000	기타	Cat 0	0	
6401100000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Cat 0	0	
6401921000	스키부츠	Cat 0	0	
6401929010	고무로 만든 것	Cat 0	0	
6401929090	기타	Cat 0	0	
6401991010	고무로 만든 것	Cat 0	0	
6401991090	기타	Cat 0	0	
6401999000	기타	Cat 0	0	
6402120000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 부츠	Cat 0	0	
6402190000	기타	Cat 0	0	
6402200000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402911000	방한화	Cat 0	0	
6402912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6402919000	기타	Cat 0	0	
6402991000	센들이나 이와 유사한 신발로서 주조에 의하여 단일체로 제조된 것	Cat 0	0	
6402992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6402999000	기타	Cat 0	0	
6403120000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 부츠	Cat 0	0	
6403190000	기타	Cat 0	0	
6403200000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403400000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403511000	드레스화	Cat 0	0	
6403519000	기타	Cat 0	0	
6403591000	드레스화	Cat 0	0	
6403599000	기타	Cat 0	0	
6403911000	드레스화	Cat 0	0	
6403912000	등산화	Cat 0	0	
6403913000	편상화(lace-boots)	Cat 0	0	
6403914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6403919000	기타	Cat 0	0	
6403991000	드레스화	Cat 0	0	
6403992000	등산화	Cat 0	0	
6403993000	편상화(lace-boots)	Cat 0	0	
6403994000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6403999000	기타	Cat 0	0	
6404110000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 · 농구화 · 체조화 · 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6404191000	실내화	Cat 0	0	
6404199000	기타	Cat 0	0	
6404201000	실내화	Cat 0	0	
6404209000	기타	Cat 0	0	
6405100000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Cat 0	0	
6405200000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Cat 0	0	
6405900000	기타	Cat 0	0	
6406101000	갑피	Cat 0	0	
6406102000	부분품	Cat 0	0	
6406201000	바깥바닥	Cat 0	0	
6406202000	뒷굽	Cat 0	0	
6406901000	목재로 만든 것	Cat 0	0	
6406909010	갈아 끼울수 있는 안창	Cat 0	0	
6406909020	힐 쿠션	Cat 0	0	
6406909030	각반	Cat 0	0	
6406909040	레깅	Cat 0	0	
6406909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650100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레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Cat 0	0	
650200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504000000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6505001000	헤어네트	Cat 0	0	
6505009011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505009019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505009021	운동모	Cat 0	0	
6505009022	베레모	Cat 0	0	
6505009029	기타	Cat 0	0	
6505009090	기타	Cat 0	0	
6506100000	안전모자	Cat 0	0	
6506910000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6506991000	가죽으로 만든 것	Cat 0	0	
6506992000	금속으로 만든 것	Cat 0	0	
6506999000	기타	Cat 0	0	
6507000000	헤드밴드·내장재·커버·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모자의 프레임(frame)·챙·턱끈	Cat 0	0	
6601100000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Cat 0	0	
6601910000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Cat 0	0	
6601991000	지팡이 경용 우산	Cat 0	0	
6601992000	양산	Cat 0	0	
6601999000	기타	Cat 0	0	
6602001000	지팡이	Cat 0	0	
6602002000	시트스틱(seat-stick)	Cat 0	0	
6602003000	채찍·승마용 채찍	Cat 0	0	
6602009000	기타	Cat 0	0	
6603200000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Cat 0	0	
6603900000	기타	Cat 0	0	
670100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한다]	Cat 0	0	
67021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6702901000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702902000	종이로 만든 것	Cat 0	0	
6702909000	기타	Cat 0	0	
6703001010	세척·정돈한 것	Cat 0	0	
6703001090	기타	Cat 0	0	
6703009000	기타	Cat 0	0	
6704110000	전체가발	Cat 0	0	
6704191000	부분가발	Cat 0	0	
6704192000	가수염	Cat 0	0	
6704193000	가눈썹	Cat 0	0	
6704194000	가속눈썹	Cat 0	0	
6704199000	기타	Cat 0	0	
6704201000	전체가발	Cat 0	0	
6704202000	부분가발	Cat 0	0	
6704203000	가수염	Cat 0	0	
6704204000	가눈썹	Cat 0	0	
6704205000	가속눈썹	Cat 0	0	
6704209000	기타	Cat 0	0	
670490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Cat 0	0	
6801000000	포석·연석·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Cat 0	0	
6802100000	타일·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 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조각·가루	Cat 0	0	
6802211000	대리석	Cat 0	0	
6802212000	트래버틴(travertine)	Cat 0	0	
6802213000	설화석고(alabaster)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6802230000	화강암	Cat 0	0	
6802291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Cat 0	0	
6802299000	기타	Cat 0	0	
6802911000	대리석	Cat 0	0	
6802912000	트래버틴(travertine)	Cat 0	0	
6802913000	설화석고(alabaster)	Cat 0	0	
6802920000	그 밖의 석회질 암석	Cat 0	0	
6802930000	화강암	Cat 0	0	
6802990000	그 밖의 돌	Cat 0	0	
6803001000	벼루	Cat 0	0	
6803009000	기타	Cat 0	0	
6804100000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그라인딩(grinding)용·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6804210000	합성·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804220000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재의 것	Cat 0	0	
6804230000	천연석으로 만든 것	Cat 0	0	
6804300000	수지석(手砥石)	Cat 0	0	
6805100000	방직용 섬유 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6805200000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6805300000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6806101000	슬래그 울(slag wool)	Cat 0	0	
6806102000	암면(rock wool)	Cat 0	0	
6806103000	세라믹 파이버	Cat 0	0	
6806109000	기타	Cat 0	0	
6806201000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Cat 0	0	
6806202000	팽창점토	Cat 0	0	
6806204000	팽창퍼라이트	Cat 0	0	
6806209000	기타	Cat 0	0	
6806901000	내화피복재	Cat 0	0	
6806909000	기타	Cat 0	0	
6807100000	롤 모양인 것	Cat 0	0	
6807900000	기타	Cat 0	0	
6808000000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꺾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809110000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Cat 0	0	
6809190000	기타	Cat 0	0	
6809900000	그 밖의 제품	Cat 0	0	
6810111000	블록	Cat 0	0	
6810112000	벽돌	Cat 0	0	
6810191000	타일	Cat 0	0	
6810192000	판석	Cat 0	0	
6810193000	기와(지붕타일)	Cat 0	0	
6810199000	기타	Cat 0	0	
6810910000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6810991000	빔(beam)과 거더(girder)	Cat 0	0	
6810992000	파일	Cat 0	0	
6810993000	전신주	Cat 0	0	
6810994000	철도 받침목	Cat 0	0	
6810995000	관	Cat 0	0	
6810999000	기타	Cat 0	0	
6811401010	지붕·천장·벽과 바닥재용	Cat 0	0	
6811401090	기타	Cat 0	0	
6811402010	지붕·천장·벽과 바닥재용	Cat 0	0	
6811402090	기타	Cat 0	0	
6811403000	관·관의 연결구류	Cat 0	0	
6811409010	지붕·천장·벽과 바닥재용	Cat 0	0	
6811409090	기타	Cat 0	0	
6811810000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Cat 0	0	
6811820000	그 밖의 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	Cat 0	0	
6811891000	관·관의 연결구류	Cat 0	0	
6811899000	기타	Cat 0	0	
6812801000	의류·의류부속품·신발·모자류	Cat 0	0	
6812803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트(jointing)	Cat 0	0	
6812809000	기타	Cat 0	0	
6812910000	의류·의류 부속품·신발·모자류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6812920000	축이 · 표지용 판지 · 펠트(felt)	Cat 0	0	
6812930000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 인 석면섬유 조인트링(jointing)	Cat 0	0	
6812990000	기타	Cat 0	0	
6813201010	자동차용	Cat 0	0	
6813201090	기타	Cat 0	0	
6813202000	클러치 페이싱	Cat 0	0	
6813209010	자동차용	Cat 0	0	
6813209090	기타	Cat 0	0	
6813810000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Cat 0	0	
6813891000	클러치 페이싱	Cat 0	0	
6813899000	기타	Cat 0	0	
6814100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응결시키 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 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6814900000	기타	Cat 0	0	
6815101000	비전기용 흑연제품	Cat 0	0	
6815102000	탄소섬유	Cat 0	0	
6815109000	기타	Cat 0	0	
6815200000	이탄(泥炭)제품	Cat 0	0	
6815910000	마그네사이트 · 백운석 · 크로마이트를 함 유한 것	Cat 0	0	
6815990000	기타	Cat 0	0	
6901001000	벽돌	Cat 0	0	
6901002000	블록	Cat 0	0	
6901003000	타일	Cat 15	5	
6901009010	슬래브와 패널	Cat 0	0	
6901009090	기타	Cat 0	0	
6902100000	마그네슘 · 칼슘 ·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 네슘 · 산화칼슘 ·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 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Cat 0	0	
6902200000	알루미나 · 실리카,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 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Cat 0	0	
6902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6902909000	기타	Cat 0	0	
6903101000	레토르트(retort)	Cat 0	0	
6903102010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 (爐)용	Cat 0	0	
6903102090	기타	Cat 0	0	
6903103000	반응그릇	Cat 0	0	
6903104000	머플	Cat 0	0	
6903105000	노즐	Cat 0	0	
6903106000	플러그(plug)	Cat 0	0	
6903107000	관(管)	Cat 0	0	
6903108000	막대(bar, rod)	Cat 0	0	
6903109000	기타	Cat 0	0	
6903201000	레토르트(retort)	Cat 0	0	
6903202000	도가니	Cat 0	0	
6903203000	반응그릇	Cat 0	0	
6903204000	머플	Cat 0	0	
6903205000	노즐	Cat 0	0	
6903206000	플러그(plug)	Cat 0	0	
6903207000	관(管)	Cat 0	0	
6903208000	막대(bar, rod)	Cat 0	0	
6903209000	기타	Cat 0	0	
6903901000	탄화규소나 지르콘을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6903909010	레토르트(retort)	Cat 0	0	
6903909020	도가니	Cat 0	0	
6903909030	반응그릇	Cat 0	0	
6903909040	머플	Cat 0	0	
6903909050	노즐	Cat 0	0	
6903909060	플러그(plug)	Cat 0	0	
6903909070	관(管)	Cat 0	0	
6903909080	막대(bar, rod)	Cat 0	0	
6903909090	기타	Cat 0	0	
6904100000	건축용 벽돌	Cat 0	0	
6904900000	기타	Cat 0	0	
6905100000	기와(지붕타일)	Cat 0	0	
6905901000	굴뚝통 · 굴뚝갓 · 굴뚝용 내장재	Cat 0	0	
6905902000	건축용 장식품	Cat 0	0	
6905909000	기타	Cat 0	0	
6906001000	관(管) · 도관(導管) · 홀통	Cat 0	0	
6906002000	관의 연결구류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6907210000	수분흡수계수가 종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SL	0/5	
6907221000	수분흡수계수가 종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3 이하인 것	SL	0/5	
6907229000	기타	SL	0/5	
6907230000	수분흡수계수가 종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SL	0/5	
6907301000	자기제의 것	SL	0/5	
6907309000	기타	EX	0/5	
6907401000	자기제의 것	SL	0/5	
6907409000	기타	SL	0/5	
6909110000	자기제의 것	Cat 15	5	
6909120000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Cat 0	0	
6909190000	기타	Cat 0	0	
6909900000	기타	Cat 0	0	
6910101000	세면대	SL	5	
6910102000	목욕통	Cat 0	0	
6910103000	수세식 변기통	SL	5	
6910104000	소변기	Cat 0	0	
6910109000	기타	Cat 0	0	
6910900000	기타	Cat 0	0	
6911101000	커피 세트 · 티세트	Cat 0	0	
6911102000	공기, 대접과 접시	Cat 0	0	
6911109000	기타	Cat 0	0	
6911901000	가정용품	Cat 0	0	
6911902000	화장용품	Cat 0	0	
6911909000	기타	Cat 0	0	
6912001010	커피 세트 · 티세트	Cat 0	0	
6912001020	공기, 대접과 접시	Cat 0	0	
6912001090	기타	Cat 0	0	
6912002000	가정용품	Cat 0	0	
6912003000	화장용품	Cat 0	0	
6912009000	기타	Cat 0	0	
6913101000	조각상 · 작은 조각상 · 흉상	Cat 0	0	
6913109020	식탁장식용품	Cat 0	0	
6913109090	기타	Cat 0	0	
6913901000	조각상 · 작은 조각상 · 흉상	Cat 0	0	
6913909020	식탁장식용품	Cat 0	0	
6913909090	기타	Cat 0	0	
6914101000	화분	Cat 0	0	
6914109000	기타	Cat 0	0	
6914901000	화분	Cat 0	0	
6914909000	기타	Cat 0	0	
7001001000	괴(塊)	Cat 0	0	
7001002000	웨이스트(waste) · 스크랩(scrap), 깨진 유리	Cat 0	0	
7002100000	구(球)	Cat 0	0	
700220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Cat 0	0	
7002209000	기타	Cat 0	0	
7002311000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Cat 0	0	
7002319000	기타	Cat 0	0	
7002320000	선팽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1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Cat 0	0	
7002390000	기타	Cat 0	0	
700312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312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312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312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312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312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312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00319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319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319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319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00319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319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319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003200000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Cat 0	0	
7003300000	프로파일(profile)	Cat 0	0	
70042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42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42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42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42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42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42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00490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490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490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490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490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490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4907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005101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5101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5101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5101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005102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5102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5102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5102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005109010	두께가 4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510902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510903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510904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005211000	두께가 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5212000	두께가 2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3	5	
7005213000	두께가 3밀리미터 초과 4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3	5	
7005214000	두께가 4밀리미터 초과 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5215000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6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5216000	두께가 6밀리미터 초과 8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5217010	두께가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5217020	두께가 10밀리미터 초과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521703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005291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Cat 0	0	
7005291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랙크마스크(blank mask)용	Cat 0	0	
7005291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Cat 0	0	
7005291040	액정 디스플레이용	Cat 0	0	
7005291091	얇은 유리	Cat 0	0	
7005291092	지철분 유리	Cat 0	0	
7005291099	기타	Cat 0	0	
700529201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Cat 0	0	
700529202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랙크마스크(blank mask)용	Cat 0	0	
700529203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005292091	맑은 유리	Cat 0	0	
7005292092	자철분 유리	Cat 0	0	
7005292099	기타	Cat 0	0	
7005293010	맑은 유리	Cat 0	0	
7005293020	자철분 유리	Cat 0	0	
7005293090	기타	Cat 0	0	
7005294010	맑은 유리	Cat 0	0	
7005294020	자철분 유리	Cat 0	0	
7005294090	기타	Cat 0	0	
7005295010	맑은 유리	Cat 0	0	
7005295020	자철분 유리	Cat 0	0	
7005295090	기타	Cat 0	0	
7005296010	맑은 유리	Cat 0	0	
7005296020	자철분 유리	Cat 0	0	
7005296090	기타	Cat 0	0	
7005297010	맑은 유리	Cat 0	0	
7005297020	자철분 유리	Cat 0	0	
7005297090	기타	Cat 0	0	
7005298010	맑은 유리	Cat 0	0	
7005298020	자철분 유리	Cat 0	0	
7005298090	기타	Cat 0	0	
7005299010	맑은 유리	Cat 0	0	
7005299020	자철분 유리	Cat 0	0	
7005299090	기타	Cat 0	0	
7005300000	망입(網入) 유리	Cat 0	0	
7006001000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용	Cat 0	0	
7006002000	반도체나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에 사용되는 블랭크마스크(blank mask)용	Cat 0	0	
7006003000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패널용	Cat 0	0	
7006004000	액정 디스플레이용	Cat 0	0	
7006009000	기타	Cat 0	0	
700711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7112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007191000	두께가 8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07192000	두께가 8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007211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Cat 0	0	
700721200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Cat 0	0	
7007291000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Cat 0	0	
7007292000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필름 두께를 포함한다)	Cat 0	0	
700800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Cat 0	0	
7009100000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09910000	틀이 붙지 않은 것	Cat 0	0	
7009920000	틀이 붙은 것	Cat 0	0	
7010100000	앵글	Cat 0	0	
7010200000	마개 · 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Cat 0	0	
7010900000	기타	Cat 0	0	
7011100000	전등용	Cat 0	0	
7011201000	천연색용	Cat 0	0	
7011209000	기타	Cat 0	0	
7011900000	기타	Cat 0	0	
7013100000	유리 도자제의 것	Cat 0	0	
701322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Cat 0	0	
7013280000	기타	Cat 0	0	
701333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Cat 0	0	
7013370000	기타	Cat 0	0	
70134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Cat 0	0	
7013420000	선평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Cat 0	0	
7013490000	기타	Cat 0	0	
7013910000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Cat 0	0	
7013990000	기타	Cat 0	0	
7014001000	실드빔 램프(sealed beam lamp)의 것	Cat 0	0	
7014009010	신호용 유리제품	Cat 0	0	
7014009020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	Cat 0	0	
7015100000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Cat 0	0	
7015901000	선글라스용	Cat 0	0	
7015902000	시계용 유리외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7015909000	기타	Cat 0	0	
7016100000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 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016901000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16909010	레드라이트(leaded light)	Cat 0	0	
7016909020	스테인드글라스(stained glass)	Cat 0	0	
7016909090	기타	Cat 0	0	
7017100000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Cat 0	0	
7017200000	선평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Cat 0	0	
7017900000	기타	Cat 0	0	
7018101000	비드(bead)	Cat 0	0	
7018102000	모조 진주	Cat 0	0	
7018103000	모조 귀석과 반귀석	Cat 0	0	
7018104000	모조 산호	Cat 0	0	
7018109000	기타	Cat 0	0	
7018200000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Cat 0	0	
7018901000	유리안구(인체용은 제외한다)	Cat 0	0	
7018909000	기타	Cat 0	0	
7019110000	단연사(길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19120000	로빙(roving)	Cat 0	0	
7019190000	기타	Cat 0	0	
7019310000	매트(mat)	Cat 0	0	
7019320000	얇은 시트(sheet)(보일)	Cat 0	0	
7019390000	기타	Cat 0	0	
7019400000	로빙(roving) 직물	Cat 0	0	
7019510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19520000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19590000	기타	Cat 0	0	
7019901000	글라스울(glass wool)	Cat 0	0	
7019909000	기타	Cat 0	0	
7020001011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Cat 0	0	
7020001012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에 사용되는 노(爐)용 석영 도가니	Cat 0	0	
7020001013	반도체 제조용으로서 석영제품(quartz ware) 제조에 사용되는 것	Cat 0	0	
7020001019	기타	Cat 0	0	
7020001090	기타	Cat 0	0	
7020009000	기타	Cat 0	0	
7101101000	가공하지 않은 것	Cat 0	0	
7101102000	가공한 것	Cat 0	0	
7101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	Cat 0	0	
7101220000	가공한 것	Cat 0	0	
7102100000	선별하지 않은 것	Cat 0	0	
71022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102290000	기타	Cat 0	0	
7102310000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102390000	기타	Cat 0	0	
7103100000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Cat 0	0	
7103911000	공업용	Cat 0	0	
7103919010	루비	Cat 0	0	
7103919020	사파이어	Cat 0	0	
7103919030	에메랄드	Cat 0	0	
7103991000	공업용	Cat 0	0	
7103999010	오팔	Cat 0	0	
7103999020	비취	Cat 0	0	
7103999030	옥수(玉髓)	Cat 0	0	
7103999040	수정	Cat 0	0	
7103999090	기타	Cat 0	0	
7104100000	압전기용 석영	Cat 0	0	
7104201000	다이아몬드	Cat 0	0	
7104209000	기타	Cat 0	0	
7104901010	다이아몬드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104901020	인조수정	Cat 0	0	
7104901090	기타	Cat 0	0	
7104909010	다이아몬드	Cat 0	0	
7104909090	기타	Cat 0	0	
7105101000	천연의 것	Cat 0	0	
7105102000	합성한 것	Cat 0	0	
7105901000	석류석의 것	Cat 0	0	
7105909000	기타	Cat 0	0	
7106100000	가루	Cat 0	0	
7106911000	은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Cat 0	0	
7106919000	기타	Cat 0	0	
710692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Cat 0	0	
7106922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Cat 0	0	
7106923000	선	Cat 0	0	
7106929000	기타	Cat 0	0	
710700100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Cat 0	0	
7107002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Cat 0	0	
7107003000	선	Cat 0	0	
7107004000	관(管)과 중공(中空)봉	Cat 0	0	
7107009000	기타	Cat 0	0	
7108110000	가루	Cat 0	0	
7108121000	럼프(lump) · 빌릿(billet) · 알갱이	Cat 0	0	
7108129000	기타	Cat 0	0	
71081310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7108131090	기타	Cat 0	0	
7108139010	막대(bar, rod)와 형재(形材)	Cat 0	0	
7108139020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Cat 0	0	
7108139090	기타	Cat 0	0	
7108200000	화합물	Cat 0	0	
7109000000	금을 입힌 비금속(非金屬)이나 은(銀)가 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1101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Cat 0	0	
7110190000	기타	Cat 0	0	
71102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Cat 0	0	
7110290000	기타	Cat 0	0	
71103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Cat 0	0	
7110390000	기타	Cat 0	0	
7110410000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Cat 0	0	
7110490000	기타	Cat 0	0	
7111000000	백금을 입힌 비금속(非金屬) · 은 ·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112300000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Cat 0	0	
7112911000	잔재물의 것	Cat 0	0	
7112919000	기타	Cat 0	0	
7112921000	잔재물의 것	Cat 0	0	
7112929000	기타	Cat 0	0	
7112991000	잔재물의 것	Cat 0	0	
7112992000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 · 스크랩(scrap)의 것	Cat 0	0	
7112999000	기타	Cat 0	0	
7113110000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는 상관없다)	Cat 0	0	
7113191000	백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113192000	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113199000	기타	Cat 0	0	
7113201000	백금을 입힌 것	Cat 0	0	
7113202000	금을 입힌 것	Cat 0	0	
7113203000	은을 입힌 것	Cat 0	0	
7113209000	기타	Cat 0	0	
7114111000	식탁용	Cat 0	0	
7114112000	화장실용	Cat 0	0	
711411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Cat 0	0	
7114114000	편연용	Cat 0	0	
7114119000	기타	Cat 0	0	
7114191000	식탁용	Cat 0	0	
711419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Cat 0	0	
7114199000	기타	Cat 0	0	
7114201000	식탁용	Cat 0	0	
7114203000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Cat 0	0	
7114204000	편연용	Cat 0	0	
7114209000	기타	Cat 0	0	
7115100000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115901010	백금 도가니	Cat 0	0	
7115901090	기타	Cat 0	0	
7115909010	금으로 만든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 다)	Cat 0	0	
7115909020	은으로 만든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한 다)	Cat 0	0	
7115909090	기타	Cat 0	0	
7116101000	천연진주로 만든 것	Cat 0	0	
7116102000	양식진주로 만든 것	Cat 0	0	
7116201000	공업용	Cat 0	0	
7116209010	산별장식용	Cat 0	0	
7116209090	기타	Cat 0	0	
7117110000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Cat 0	0	
7117191000	목걸이	Cat 0	0	
7117192000	팔찌	Cat 0	0	
7117193000	귀걸이	Cat 0	0	
7117194000	브로치	Cat 0	0	
7117195000	반지	Cat 0	0	
7117196000	산별장식용 채인	Cat 0	0	
7117199000	기타	Cat 0	0	
7117900000	기타	Cat 0	0	
7118100000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 닌 것	Cat 0	0	
7118901000	금화	Cat 0	0	
7118902000	은화	Cat 0	0	
7118909000	기타	Cat 0	0	
7201101000	주물용	Cat 0	0	
7201102000	제강용	Cat 0	0	
7201109000	기타	Cat 0	0	
7201200000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 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01500000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Cat 0	0	
72021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202190000	기타	Cat 0	0	
7202210000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 는 것	Cat 0	0	
7202291000	마그네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 이상인 것	Cat 0	0	
7202299000	기타	Cat 0	0	
7202300000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Cat 0	0	
7202410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202490000	기타	Cat 0	0	
7202500000	페로몰리브덴(ferro-molybdenum)	Cat 0	0	
7202600000	페로니켈(ferro-nickel)	Cat 0	0	
7202700000	페로몰리브덴(ferro-molybdenum)	Cat 0	0	
7202800000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Cat 0	0	
7202910000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 타늄(ferro-silico-titanium)	Cat 0	0	
7202920000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Cat 0	0	
7202930000	페로니오븀(ferro-niobium)	Cat 0	0	
7202991000	인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02999000	기타	Cat 0	0	
7203100000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Cat 0	0	
7203900000	기타	Cat 0	0	
7204100000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7204210000	스테인리스강의 것	Cat 0	0	
7204290000	기타	Cat 0	0	
7204300000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7204410000	선삭(旋削)·셰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 (filing)·트리밍(trimming)·스탬핑 (stamping)(변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7204490000	기타	Cat 0	0	
7204500000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Cat 0	0	
7205101000	샷(shot)	Cat 0	0	
7205102000	그릿(grit)	Cat 0	0	
7205109000	기타	Cat 0	0	
7205210000	합금강의 것	Cat 0	0	
7205290000	기타	Cat 0	0	
7206100000	잉곳(ingot)	Cat 0	0	
7206900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207111000	블룸(bloom)	Cat 0	0	
7207112000	빌릿(billet)	Cat 0	0	
7207121000	슬래브	Cat 0	0	
7207122000	시트바(sheet bar)	Cat 0	0	
7207190000	기타	Cat 0	0	
7207201000	블룸(bloom)	Cat 0	0	
7207202000	빌릿(billet)	Cat 0	0	
7207203000	슬래브	Cat 0	0	
7207209000	기타	Cat 0	0	
7208101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Cat 0	0	
7208109000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20825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8259000	기타	Cat 0	0	
720826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8269000	기타	Cat 0	0	
720827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8279000	기타	Cat 0	0	
720836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8369000	기타	Cat 0	0	
720837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8379000	기타	Cat 0	0	
720838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8389000	기타	Cat 0	0	
720839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8399000	기타	Cat 0	0	
7208400000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Cat 0	0	
720851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8519000	기타	Cat 0	0	
720852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8529000	기타	Cat 0	0	
720853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8539000	기타	Cat 0	0	
720854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8549000	기타	Cat 0	0	
7208900000	기타	Cat 0	0	
720915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9159000	기타	Cat 0	0	
720916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9169000	기타	Cat 0	0	
720917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9179000	기타	Cat 0	0	
720918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9189000	기타	Cat 0	0	
720925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9259000	기타	Cat 0	0	
720926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9269000	기타	Cat 0	0	
720927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9279000	기타	Cat 0	0	
720928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09289000	기타	Cat 0	0	
7209900000	기타	Cat 0	0	
721011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Cat 0	0	
7210120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210200000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합석판을 포함한다)	Cat 0	0	
72103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10309000	기타	Cat 0	0	
7210410000	물결 모양의 것	Cat 0	0	
7210491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10491090	기타	Cat 0	0	
721049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10499090	기타	Cat 0	0	
7210500000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0	0	
7210610000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0	0	
7210690000	기타	Cat 0	0	
7210701000	두께가 4.75mm 이상인 것	Cat 0	0	
7210702000	두께가 4.75mm 미만인 것	Cat 0	0	
72109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0	0	
72109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0	0	
72109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211130000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Cat 0	0	
721114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11149000	기타	Cat 0	0	
721119100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11199000	기타	Cat 0	0	
721123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11239000	기타	Cat 0	0	
721129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11299000	기타	Cat 0	0	
72119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11909000	기타	Cat 0	0	
7212101000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Cat 0	0	
7212102000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21220100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12209000	기타	Cat 0	0	
7212301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12301090	기타	Cat 0	0	
721230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12309090	기타	Cat 0	0	
7212401000	두께가 4.75mm 이상인 것	Cat 0	0	
7212402000	두께가 4.75mm 미만인 것	Cat 0	0	
7212501000	니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0	0	
7212502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0	0	
7212509000	기타	Cat 0	0	
7212600000	클래드(clad)한 것	Cat 0	0	
7213100000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리브(rib)·홀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Cat 0	0	
7213200000	기타[괘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391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Cat 0	0	
7213911090	기타	Cat 0	0	
7213919000	기타	Cat 0	0	
721399101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Cat 0	0	
7213991090	기타	Cat 0	0	
7213999000	기타	Cat 0	0	
7214100000	단조(鍛造)한 것	Cat 0	0	
7214201000	철근	Cat 0	0	
7214209000	기타	Cat 0	0	
7214300000	기타[괘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4910000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Cat 0	0	
7214991000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	Cat 0	0	
7214999000	기타	Cat 0	0	
7215100000	괘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5500000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5900000	기타	Cat 0	0	
7216101000	유(U)형강	Cat 0	0	
7216102000	아이(I)형강	Cat 0	0	
7216103000	에이치(H)형강	Cat 0	0	
7216210000	엘(L)형강	Cat 0	0	
7216220000	티(T)형강	Cat 0	0	
7216310000	유(U)형강	Cat 0	0	
7216320000	아이(I)형강	Cat 0	0	
7216333000	높이가 300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216334000	높이가 300밀리미터 이상 60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16335000	높이가 6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216401000	엘(L)형강	Cat 0	0	
7216402000	티(T)형강	Cat 0	0	
7216500000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66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Cat 0	0	
7216690000	기타	Cat 0	0	
7216910000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Cat 0	0	
7216990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217100000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것(연마한 것인 지에 상관없다)	Cat 0	0	
7217200000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0	0	
7217301000	구리를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0	0	
7217309000	기타	Cat 0	0	
7217900000	기타	Cat 0	0	
7218101000	잉곳(ingot)	Cat 0	0	
7218109000	기타	Cat 0	0	
7218911000	슬래브	Cat 0	0	
7218912000	시트바(sheet bar)	Cat 0	0	
7218919000	기타	Cat 0	0	
7218991000	블룸(bloom)	Cat 0	0	
7218992000	빌릿(billet)	Cat 0	0	
7218999000	기타	Cat 0	0	
72191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19111090	기타	Cat 0	0	
7219119000	기타	Cat 0	0	
72191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19121090	기타	Cat 0	0	
7219129000	기타	Cat 0	0	
72191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19131090	기타	Cat 0	0	
7219139000	기타	Cat 0	0	
72191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19141090	기타	Cat 0	0	
7219149000	기타	Cat 0	0	
72192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19211090	기타	Cat 0	0	
7219219000	기타	Cat 0	0	
72192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19221090	기타	Cat 0	0	
7219229000	기타	Cat 0	0	
72192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19231090	기타	Cat 0	0	
7219239000	기타	Cat 0	0	
72192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19241090	기타	Cat 0	0	
7219249000	기타	Cat 0	0	
72193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19311090	기타	Cat 0	0	
7219319000	기타	Cat 0	0	
72193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19321090	기타	Cat 0	0	
7219329000	기타	Cat 0	0	
721933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19331090	기타	Cat 0	0	
7219339000	기타	Cat 0	0	
721934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19341090	기타	Cat 0	0	
7219349000	기타	Cat 0	0	
721935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19351090	기타	Cat 0	0	
7219359000	기타	Cat 0	0	
72199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19901090	기타	Cat 0	0	
7219909000	기타	Cat 0	0	
722011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20111090	기타	Cat 0	0	
7220119000	기타	Cat 0	0	
722012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220121090	기타	Cat 0	0	
7220129000	기타	Cat 0	0	
72202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20201090	기타	Cat 0	0	
7220209000	기타	Cat 0	0	
7220901010	니켈 함유량이 6% 미만이고, 망간 함유량이 3% 이상인 것	Cat 0	0	
7220901090	기타	Cat 0	0	
7220909000	기타	Cat 0	0	
722100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22110000	횡단면이 원형인 것	Cat 0	0	
7222190000	기타	Cat 0	0	
7222200000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22300000	그 밖의 봉	Cat 0	0	
7222400000	형강(形鋼)	Cat 0	0	
7223000000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Cat 0	0	
7224101000	잉곳(ingot)	Cat 0	0	
7224109000	기타	Cat 0	0	
7224901000	블룸(bloom)	Cat 0	0	
7224902000	빌릿(billet)	Cat 0	0	
7224903000	슬래브	Cat 0	0	
7224904000	시트바(sheet bar)	Cat 0	0	
7224909000	기타	Cat 0	0	
7225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Cat 0	0	
7225190000	기타	Cat 0	0	
7225301000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530901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25309091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Cat 0	0	
7225309092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Cat 0	0	
7225309099	기타	Cat 0	0	
7225401000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5409010	인장강도가 49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25409091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Cat 0	0	
7225409092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Cat 0	0	
7225409099	기타	Cat 0	0	
7225501000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5509000	기타	Cat 0	0	
7225911000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5919010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25919090	기타	Cat 0	0	
7225921000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5929011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25929019	기타	Cat 0	0	
7225929091	인장강도가 340메가파스칼 이상인 것	Cat 0	0	
7225929099	기타	Cat 0	0	
7225991000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5999000	기타	Cat 0	0	
7226110000	방향성(方向性)인 것	Cat 0	0	
7226190000	기타	Cat 0	0	
7226200000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6911000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이상의 것	Cat 0	0	
7226912000	봉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으로서 두께가 4.75mm 미만의 것	Cat 0	0	
7226919000	기타	Cat 0	0	
7226920000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Cat 0	0	
7226991000	비정질 합금 박판(두께가 100마이크론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26992000	아연을 전해도금이나 전해 도포한 것	Cat 0	0	
7226993000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이나 도포한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226999000	기타	Cat 0	0	
7227100000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7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Cat 0	0	
7227901000	내열강의 것	Cat 0	0	
722790901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이고 전 중량의 100분의 0.003 미만의 것	Cat 0	0	
722790902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3 이상의 것	Cat 0	0	
7227909090	기타	Cat 0	0	
7228100000	고속도강의 붕	Cat 0	0	
7228200000	실리코망간강의 붕	Cat 0	0	
722830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Cat 0	0	
7228309000	기타	Cat 0	0	
722840100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Cat 0	0	
7228409000	기타	Cat 0	0	
7228500000	그 밖의 붕[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28601000	철근(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Cat 0	0	
7228609000	기타	Cat 0	0	
7228701010	붕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008 이상의 것	Cat 0	0	
7228701090	기타	Cat 0	0	
7228709000	기타	Cat 0	0	
7228800000	중공(中空)드릴봉	Cat 0	0	
7229200000	실리코망간강의 것	Cat 0	0	
7229901010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9901090	기타	Cat 0	0	
7229902010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9902090	기타	Cat 0	0	
7229909010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9909090	기타	Cat 0	0	
7301101000	유(U)형	Cat 0	0	
7301109000	기타	Cat 0	0	
7301201000	유(U)형강	Cat 0	0	
7301202000	에이치(H)형강	Cat 0	0	
7301203000	아이(I)형강	Cat 0	0	
7301209000	기타	Cat 0	0	
7302101010	열처리한 것	Cat 0	0	
7302101090	기타	Cat 0	0	
7302102010	열처리한 것	Cat 0	0	
7302102090	기타	Cat 0	0	
7302103010	열처리한 것	Cat 0	0	
7302103090	기타	Cat 0	0	
7302104010	열처리한 것	Cat 0	0	
7302104090	기타	Cat 0	0	
7302300000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Cat 0	0	
7302400000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Cat 0	0	
7302900000	기타	Cat 0	0	
7303001010	구상흑연 주철로 만든 것	Cat 0	0	
7303001090	기타	Cat 0	0	
7303002000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Cat 0	0	
730411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Cat 0	0	
7304190000	기타	Cat 0	0	
730422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Cat 0	0	
7304230000	그 밖의 드릴파이프	Cat 0	0	
7304240000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4290000	기타	Cat 0	0	
73043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 환원)한 것	Cat 0	0	
7304390000	기타	Cat 0	0	
73044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 환원)한 것	Cat 0	0	
7304490000	기타	Cat 0	0	
7304510000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 환원)한 것	Cat 0	0	
7304590000	기타	Cat 0	0	
7304900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305111000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 초과 1,422.4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305112000	바깥지름이 1,422.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305120000	가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5190000	기타	Cat 0	0	
7305200000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Cat 0	0	
7305311000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Cat 0	0	
7305312000	전기저항 용접한 것	Cat 0	0	
7305319000	기타	Cat 0	0	
7305390000	기타	Cat 0	0	
7305900000	기타	Cat 0	0	
7306110000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6190000	기타	Cat 0	0	
7306211000	케이싱	Cat 0	0	
7306212000	튜브	Cat 0	0	
7306291000	케이싱	Cat 0	0	
7306292000	튜브	Cat 0	0	
7306301010	아연도금한 것	Cat 0	0	
7306301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Cat 0	0	
7306301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Cat 0	0	
7306301090	기타	Cat 0	0	
7306302010	아연도금한 것	Cat 0	0	
7306302020	아연 이외의 금속으로 도금이나 클래드한 것	Cat 0	0	
7306302030	비금속으로 도포한 것	Cat 0	0	
7306302090	기타	Cat 0	0	
7306401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306402000	바깥지름이 114.3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306500000	가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6611010	아연도금한 것	Cat 0	0	
7306611090	기타	Cat 0	0	
730661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Cat 0	0	
730661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Cat 0	0	
7306691010	아연도금한 것	Cat 0	0	
7306691090	기타	Cat 0	0	
7306692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Cat 0	0	
7306693000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	Cat 0	0	
7306901000	이중벽(double wall) 강관	Cat 0	0	
7306909000	기타	Cat 0	0	
730711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Cat 0	0	
7307190000	기타	Cat 0	0	
7307210000	플랜지(flange)	Cat 0	0	
73072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Cat 0	0	
7307229000	기타	Cat 0	0	
73072300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Cat 0	0	
7307290000	기타	Cat 0	0	
7307910000	플랜지(flange)	Cat 0	0	
7307921000	나선 가공한 슬리브(sleeve)(철강으로 만든 것에 한정한다)	Cat 0	0	
7307929000	기타	Cat 0	0	
7307930000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Cat 0	0	
7307991000	나선가공한 것(도금여부에 상관없다)	Cat 0	0	
7307999000	기타	Cat 0	0	
7308100000	다리 와 교량	Cat 0	0	
7308200000	탑과 격자주(格子柱)	Cat 0	0	
73083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Cat 0	0	
7308400000	비계(飛階)·차단기·지주·광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Cat 0	0	
7308901000	수문	Cat 0	0	
7308909000	기타	Cat 0	0	
730900000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 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7310100000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310210000	납땜이나 크리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Cat 0	0	
7310290000	기타	Cat 0	0	
7311001000	용적이 30리터 이하인 것	Cat 0	0	
7311002000	용적이 30리터 초과 100리터 이하인 것	Cat 0	0	
7311003000	용적이 100리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312101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Cat 0	0	
7312101019	기타	Cat 0	0	
7312101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Cat 0	0	
7312101092	스탈타이어 코드	Cat 0	0	
7312101099	기타	Cat 0	0	
7312102011	연결구류 부착한 것	Cat 0	0	
7312102019	기타	Cat 0	0	
7312102091	연결구류 부착한 것	Cat 0	0	
7312102092	스탈타이어 코드	Cat 0	0	
7312102099	기타	Cat 0	0	
7312900000	기타	Cat 0	0	
7313001000	유자선(有刺鉄)	Cat 0	0	
7313009000	기타	Cat 0	0	
7314120000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4140000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4190000	기타	Cat 0	0	
7314200000	그릴·망·울타리[점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43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0	0	
7314390000	기타	Cat 0	0	
7314410000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0	0	
7314420000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Cat 0	0	
7314490000	기타	Cat 0	0	
7314500000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Cat 0	0	
7315110000	롤러체인(roller chain)	Cat 0	0	
7315120000	그 밖의 체인	Cat 0	0	
7315190000	부분품	Cat 0	0	
7315200000	스키드체인(skid chain)	Cat 0	0	
7315810000	스터드링크(stud-link)	Cat 0	0	
7315820000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5890000	기타	Cat 0	0	
7315900000	그 밖의 부분품	Cat 0	0	
7316001000	못	Cat 0	0	
7316002000	부분품	Cat 0	0	
7317001011	도금·도포·페인트한 것	Cat 0	0	
7317001019	기타	Cat 0	0	
7317001021	도금·도포·페인트한 것	Cat 0	0	
7317001029	기타	Cat 0	0	
7317002000	압정	Cat 0	0	
7317003000	제도용과 사무용 핀	Cat 0	0	
7317004000	파형 못	Cat 0	0	
7317005000	스테이플	Cat 0	0	
7317009000	기타	Cat 0	0	
7318110000	코치 스크루(coach screw)	Cat 0	0	
7318120000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Cat 0	0	
7318130000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Cat 0	0	
7318140000	셀프타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Cat 0	0	
7318151000	머신스크루(screw)	Cat 0	0	
7318152000	볼트(bolt)	Cat 0	0	
7318153000	볼트(bolt)·너트(nut)(세트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8159000	기타	Cat 0	0	
7318160000	너트(nut)	Cat 0	0	
7318190000	기타	Cat 0	0	
7318210000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Cat 0	0	
7318220000	그 밖의 와셔(washer)	Cat 0	0	
7318230000	리벳(rivet)	Cat 0	0	
7318240000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Cat 0	0	
7318290000	기타	Cat 0	0	
7319401000	안전핀	Cat 0	0	
7319402000	반도체 웨이퍼·반도체 디바이스의 측정이나 검사에 사용되는 핀	Cat 0	0	
7319409000	기타	Cat 0	0	
7319901010	수북침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319901020	수판침	Cat 0	0	
7319901090	기타	Cat 0	0	
7319909000	기타	Cat 0	0	
7320101000	자동차용 판상 스프링	Cat 0	0	
7320102000	기관차·철도 차량용 판상 스프링	Cat 0	0	
7320109000	기타	Cat 0	0	
7320201000	자동차용	Cat 0	0	
7320202000	충격 흡수용	Cat 0	0	
7320203000	철도차량 연계완충기용	Cat 0	0	
7320204000	가구용	Cat 0	0	
7320209000	기타	Cat 0	0	
7320901000	평나선형 스프링	Cat 0	0	
7320909000	그 밖의 스프링	Cat 0	0	
73211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Cat 0	0	
7321120000	액체연료용	Cat 0	0	
73211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Cat 0	0	
7321810000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Cat 0	0	
7321820000	액체연료용	Cat 0	0	
7321890000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Cat 0	0	
7321900000	부분품	Cat 0	0	
7322111000	발열기	Cat 0	0	
7322112000	부분품	Cat 0	0	
7322191000	발열기	Cat 0	0	
7322192000	부분품	Cat 0	0	
732290100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Cat 0	0	
7322909010	공기가열기	Cat 0	0	
7322909020	온풍배분기	Cat 0	0	
7322909030	부분품	Cat 0	0	
7323100000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732391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가 아닌 것	Cat 0	0	
7323920000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Cat 0	0	
7323930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Cat 0	0	
7323940000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Cat 0	0	
7323990000	기타	Cat 0	0	
7324101000	설거지통	Cat 0	0	
7324102000	세면대	Cat 0	0	
7324210000	주철로 만든 것(법령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7324291000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Cat 0	0	
7324299000	기타	Cat 0	0	
7324901000	화장용 세트	Cat 0	0	
7324908000	기타	Cat 0	0	
7324909000	부분품	Cat 0	0	
7325100000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Cat 0	0	
73259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7325991000	주철로 만든 것	Cat 0	0	
7325992000	주강으로 만든 것	Cat 0	0	
7325993000	합금강으로 만든 것	Cat 0	0	
7325999000	기타	Cat 0	0	
7326110000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7326190000	기타	Cat 0	0	
7326200000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Cat 0	0	
7326901000	방직기계용 보빈(bobbin)	Cat 0	0	
7326909000	기타	Cat 0	0	
7401001000	구리의 매트(mat)	Cat 0	0	
7401002000	시멘트동(침전동)	Cat 0	0	
7402001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Cat 0	0	
7402002000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Cat 0	0	
7403110000	음극과 음극의 형재	Cat 0	0	
7403120000	와이어바(wire-bar)	Cat 0	0	
7403130000	빌릿(billet)	Cat 0	0	
7403191000	슬래브	Cat 0	0	
7403192000	잉곳(ingot)	Cat 0	0	
7403199000	기타	Cat 0	0	
7403210000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Cat 0	0	
7403220000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Cat 0	0	
7403291010	구리-니켈의 합금(백동)	Cat 0	0	
7403291020	구리-니켈-아연의 합금(양백)	Cat 0	0	
7403299000	기타	Cat 0	0	
740400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740500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406100000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Cat 0	0	
7406201000	충상조직인 가루	Cat 0	0	
7406202000	플레이크(flake)	Cat 0	0	
7407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Cat 0	0	
7407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Cat 0	0	
7407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Cat 0	0	
740729201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Cat 0	0	
740729202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Cat 0	0	
7407299000	기타	Cat 0	0	
7408110000	황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EX	5	
7408190000	기타	Cat 0	0	
7408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Cat 0	0	
7408221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Cat 0	0	
7408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Cat 0	0	
7408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Cat 0	0	
7408299000	기타	Cat 0	0	
740911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7409119000	기타	Cat 0	0	
740919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7409199000	기타	Cat 0	0	
740921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7409219000	기타	Cat 0	0	
740929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7409299000	기타	Cat 0	0	
740931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7409319000	기타	Cat 0	0	
740939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7409399000	기타	Cat 0	0	
74094010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7409401090	기타	Cat 0	0	
74094020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7409402090	기타	Cat 0	0	
740990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7409909000	기타	Cat 0	0	
741011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Cat 0	0	
741012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41021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Cat 0	0	
7410219000	기타	Cat 0	0	
7410221000	인쇄회로판 제조에 적합한 모양인 것	Cat 0	0	
7410229000	기타	Cat 0	0	
7411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Cat 0	0	
7411210000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Cat 0	0	
7411221000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백동)	Cat 0	0	
7411222000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Cat 0	0	
7411291000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Cat 0	0	
7411299000	기타	Cat 0	0	
7412100000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Cat 0	0	
7412200000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413000000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Cat 0	0	
7415101000	귀금속을 도금·피복·도포한 것	Cat 0	0	
7415109000	기타	Cat 0	0	
7415210000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Cat 0	0	
7415290000	기타	Cat 0	0	
7415330000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nut)	Cat 0	0	
7415390000	기타	Cat 0	0	
7418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7418109010	식탁용품·주방용품	Cat 0	0	
7418109020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7418109030	기타 가정용 물품	Cat 0	0	
7418109091	태양열 집열기(가정용에 사용되는 비전기식으로 한정한다)용	Cat 0	0	
7418109099	기타	Cat 0	0	
7418201000	위생용품	Cat 0	0	
7418202000	부분품	Cat 0	0	
7419101000	체인	Cat 0	0	
7419102000	부분품	Cat 0	0	
7419910000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419991010	클로스(cloth)	Cat 0	0	
7419991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419992000	구리로 만든 스프링	Cat 0	0	
7419999000	기타	Cat 0	0	
7501100000	니켈의 매트(mat)	Cat 0	0	
7501201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Cat 0	0	
7501201090	기타	Cat 0	0	
7501209010	니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8 이상인 것	Cat 0	0	
7501209090	기타	Cat 0	0	
7502101000	음극	Cat 0	0	
7502109000	기타	Cat 0	0	
7502200000	니켈 합금	Cat 0	0	
750300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7504001000	가루	Cat 0	0	
7504002000	플레이크(flake)	Cat 0	0	
7505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Cat 0	0	
7505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5052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Cat 0	0	
75052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5061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Cat 0	0	
7506102000	박(箔)	Cat 0	0	
7506201000	판·시트(sheet)·스트립	Cat 0	0	
7506202000	박(箔)	Cat 0	0	
750711000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Cat 0	0	
750712000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507200000	관(管) 연결구류	Cat 0	0	
7508100000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Cat 0	0	
7508901000	전기도금용 양극	Cat 0	0	
7508902010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Cat 0	0	
7508902020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508909000	기타	Cat 0	0	
76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Cat 0	0	
7601201000	캐스팅 열로이(casting alloy)	Cat 0	0	
7601202000	빌렛(billet)	Cat 0	0	
7601209000	기타	Cat 0	0	
7602000000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7603100000	비(非)충상조적인 가루	Cat 0	0	
7603201000	가루	Cat 0	0	
7603202000	플레이크(flake)	Cat 0	0	
7604101000	봉	Cat 0	0	
760410201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Cat 0	0	
7604102090	기타	Cat 0	0	
7604210000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Cat 0	0	
7604291000	봉	Cat 0	0	
7604299000	그 밖의 프로파일(profile)	Cat 0	0	
76051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605190000	기타	Cat 0	0	
7605210000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605290000	기타	Cat 0	0	
7606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Cat 0	0	
7606119000	기타	Cat 0	0	
76061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6069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Cat 0	0	
7606919000	기타	Cat 0	0	
760692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60711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Cat 0	0	
7607119000	기타	Cat 0	0	
760719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Cat 0	0	
7607199000	기타	Cat 0	0	
7607201000	알루미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Cat 0	0	
7607209000	기타	Cat 0	0	
7608100000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Cat 0	0	
7608200000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609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Cat 0	0	
7610100000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자방	Cat 0	0	
7610901000	구조물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610908000	기타	Cat 0	0	
7610909000	부분품	Cat 0	0	
761100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7612100000	연질의 튜브형 용기	Cat 0	0	
7612901000	경질의 튜브형 용기	Cat 0	0	
7612909010	용적이 1리터 미만인 것	Cat 0	0	
7612909020	용적이 1리터 이상 20리터 미만인 것	Cat 0	0	
7612909030	용적이 20리터 이상인 것	Cat 0	0	
7613001000	압축가스용	Cat 0	0	
7613002000	액화가스용	Cat 0	0	
7614100000	철감상으로 되어 있는 것	Cat 0	0	
7614900000	기타	Cat 0	0	
7615101000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 패드 · 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7615109010	태양열 집열기와 그 부분품	Cat 0	0	
7615109020	식탁용품 · 주방용품	Cat 0	0	
7615109030	그 밖의 가정용 물품	Cat 0	0	
7615109090	부분품	Cat 0	0	
7615201000	위생용품	Cat 0	0	
7615202000	부분품	Cat 0	0	
7616100000	못 · 압정 · 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 · 스크루(screw) · 볼트(bolt) · 너트(nut) · 스크루 훅(screw hook) · 리벳(rivet) · 코터(cotter) · 코터핀(cotter-pin) · 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7616910000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 그릴 · 망 · 울타리	Cat 0	0	
7616991000	보빈(bobbin)	Cat 0	0	
7616999010	알루미늄 파우치(pouch)	Cat 0	0	
7616999020	알루미늄 노브(knob)	Cat 0	0	
7616999090	기타	Cat 0	0	
7801101000	납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Cat 0	0	
7801109000	기타	Cat 0	0	
7801910000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Cat 0	0	
7801991000	정제하지 않은 납	Cat 0	0	
7801992010	납-주석 합금	Cat 0	0	
7801992090	기타	Cat 0	0	
780200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7804111000	시트(sheet) · 스트립	Cat 0	0	
7804112000	박(箔)	Cat 0	0	
7804190000	기타	Cat 0	0	
7804201000	가루	Cat 0	0	
7804202000	플레이크(flake)	Cat 0	0	
7806001000	납으로 만든 용기	Cat 0	0	
7806002000	전기도금용 양극	Cat 0	0	
7806003010	봉	Cat 0	0	
7806003020	프로파일(profile)	Cat 0	0	
7806003030	선(線)	Cat 0	0	
7806004000	관(管)과 관(管) 연결부류[예: 기결령(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Cat 0	0	
7806009000	기타	Cat 0	0	
790111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Cat 0	0	
7901120000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Cat 0	0	
7901201000	아연-알루미늄 합금	Cat 0	0	
7901209000	기타	Cat 0	0	
790200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7903100000	아연 더스트(dust)	Cat 0	0	
7903901000	가루	Cat 0	0	
7903902000	플레이크(flake)	Cat 0	0	
7904001000	봉	Cat 0	0	
7904002000	프로파일(profile)	Cat 0	0	
7904003000	선(線)	Cat 0	0	
7905001000	판 · 시트(sheet) · 스트립	Cat 0	0	
7905002000	박(箔)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7907001000	아연으로 만든 홀통·지붕덮개·채광 창틀 과 그 밖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Cat 0	0	
7907002010	관(管)	Cat 0	0	
7907002020	관(管) 연결구류	Cat 0	0	
7907009010	전기도금용 양극	Cat 0	0	
7907009090	기타	Cat 0	0	
8001100000	합금하지 않은 주석	Cat 0	0	
8001200000	주석 합금	Cat 0	0	
800200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003001010	합금하지 않은 것	Cat 0	0	
8003001090	기타	Cat 0	0	
8003002010	합금하지 않은 것	Cat 0	0	
8003002090	기타	Cat 0	0	
8007001000	전기도금용 양극	Cat 0	0	
8007002000	판·시트(sheet) 및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007003010	박(箔)	Cat 0	0	
8007003021	가루	Cat 0	0	
8007003022	플레이크(flake)	Cat 0	0	
8007004000	관(管)과 연결구류(예: 기결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	Cat 0	0	
8007009000	기타	Cat 0	0	
8101100000	가루	Cat 0	0	
8101940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Cat 0	0	
8101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Cat 0	0	
8101969000	기타	Cat 0	0	
8101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1991010	붕	Cat 0	0	
8101991020	프로파일(profile)	Cat 0	0	
8101991030	판·시트(sheet)·스트립	Cat 0	0	
8101991040	박(箔)	Cat 0	0	
8101999000	기타	Cat 0	0	
8102100000	가루	Cat 0	0	
8102940000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Cat 0	0	
8102951000	붕	Cat 0	0	
8102952000	프로파일(profile)	Cat 0	0	
8102953000	판·시트(sheet)·스트립	Cat 0	0	
8102954000	박(箔)	Cat 0	0	
8102961000	전구용이나 전자관용 스파이럴 필라멘트	Cat 0	0	
8102969000	기타	Cat 0	0	
810297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2990000	기타	Cat 0	0	
8103201000	괴(塊)	Cat 0	0	
8103202000	가루	Cat 0	0	
8103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3900000	기타	Cat 0	0	
8104110000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총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Cat 0	0	
8104190000	기타	Cat 0	0	
8104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4301000	솔밥(rasping)·연삭설(tuning)·알갱이	Cat 0	0	
8104302000	가루	Cat 0	0	
8104901000	붕	Cat 0	0	
8104909000	기타	Cat 0	0	
8105201000	괴(塊)	Cat 0	0	
8105202000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재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Cat 0	0	
8105203000	가루	Cat 0	0	
8105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5900000	기타	Cat 0	0	
8106001010	괴(塊)	Cat 0	0	
810600102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6001030	가루	Cat 0	0	
8106009000	기타	Cat 0	0	
8107201000	괴(塊)	Cat 0	0	
8107202000	가루	Cat 0	0	
8107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7900000	기타	Cat 0	0	
8108201000	괴(塊)	Cat 0	0	
8108202000	가루	Cat 0	0	
8108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8901000	판과 스트립	Cat 0	0	
8108902000	관	Cat 0	0	
81089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109201000	괴(塊)	Cat 0	0	
8109202000	가루	Cat 0	0	
81093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9901010	관	Cat 0	0	
8109901020	판·시트(sheet)·스트립	Cat 0	0	
8109901030	볼	Cat 0	0	
8109901090	기타	Cat 0	0	
8109909000	기타	Cat 0	0	
8110100000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Cat 0	0	
811020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10900000	기타	Cat 0	0	
8111000000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Cat 0	0	
8112120000	괴(塊), 가루	Cat 0	0	
811213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12190000	기타	Cat 0	0	
8112210000	괴(塊), 가루	Cat 0	0	
81122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12290000	기타	Cat 0	0	
8112510000	괴(塊), 가루	Cat 0	0	
8112520000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12590000	기타	Cat 0	0	
8112921000	게르마늄	Cat 0	0	
8112922000	바나듐	Cat 0	0	
8112923000	갈륨	Cat 0	0	
8112924000	하프늄	Cat 0	0	
8112925000	인듐	Cat 0	0	
8112926000	니오븀(컬럼븀)	Cat 0	0	
8112927000	레늄	Cat 0	0	
8112929000	기타	Cat 0	0	
8112991000	게르마늄	Cat 0	0	
8112992000	바나듐	Cat 0	0	
8112993000	갈륨	Cat 0	0	
8112994000	하프늄	Cat 0	0	
8112995000	인듐	Cat 0	0	
8112996000	니오븀(컬럼븀)	Cat 0	0	
8112997000	레늄	Cat 0	0	
8112999000	기타	Cat 0	0	
811300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Cat 0	0	
8201100000	가래와 삽	Cat 0	0	
8201300000	곡괭이·픽스(picks)·괭이·쇠스랑	Cat 0	0	
8201400000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Cat 0	0	
8201500000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 [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Cat 0	0	
8201600000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Cat 0	0	
8201901000	낫	Cat 0	0	
8201904000	포크	Cat 0	0	
8201909000	기타	Cat 0	0	
8202101000	목재용	Cat 0	0	
8202102000	금속용	Cat 0	0	
8202109000	기타	Cat 0	0	
8202200000	띠톱의 날	Cat 0	0	
8202310000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Cat 0	0	
8202391000	작용하는 부분이 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Cat 0	0	
8202392010	반도체 웨이퍼, 반도체 디바이스를 개별 단위로 절단하는 기기에 사용되는 것	Cat 0	0	
8202392090	기타	Cat 0	0	
8202393000	작용하는 부분이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Cat 0	0	
8202399000	부분품	Cat 0	0	
8202400000	체인톱의 날	Cat 0	0	
8202911000	쇠톱의 날	Cat 0	0	
8202919000	기타	Cat 0	0	
8202991000	사파이어 잉곳(ingot) 절단용	Cat 0	0	
8202999000	기타	Cat 0	0	
8203101000	톱날용	Cat 0	0	
8203109000	기타	Cat 0	0	
8203201000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	Cat 0	0	
8203202000	집게	Cat 0	0	
8203203000	핀셋	Cat 0	0	
8203209000	기타	Cat 0	0	
8203300000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203401000	파이프커터(pipe-cutter)	Cat 0	0	
8203402000	볼트크로퍼(bolt cropper)와 클리퍼	Cat 0	0	
8203403000	철공퍼치	Cat 0	0	
8203409000	기타	Cat 0	0	
8204110000	조절할 수 없는 것	Cat 0	0	
8204120000	조절할 수 있는 것	Cat 0	0	
8204200000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8205101000	드릴링용	Cat 0	0	
8205102000	드레딩(threading)용	Cat 0	0	
8205103000	태핑용(tapping)	Cat 0	0	
8205109000	기타	Cat 0	0	
8205200000	망치(hammer, sledge hammer)	Cat 0	0	
8205300000	목재 가공용 대패 · 끌 · 둥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Cat 0	0	
8205400000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Cat 0	0	
8205510000	가정용 공구	Cat 0	0	
8205591000	유리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	Cat 0	0	
8205592000	땀인두	Cat 0	0	
8205593000	그리스 건(grease gun)	Cat 0	0	
8205595000	광산용과 토목공사용 공구	Cat 0	0	
8205596000	마장용과 도장용 공구	Cat 0	0	
8205597000	시계 제조용 공구	Cat 0	0	
8205599000	기타	Cat 0	0	
8205600000	블로램프(blow lamp)	Cat 0	0	
8205701000	바이스(vice)	Cat 0	0	
8205702000	클램프(clamp)	Cat 0	0	
8205709000	기타	Cat 0	0	
8205901000	모루	Cat 0	0	
8205902000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	Cat 0	0	
8205909010	이후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	Cat 0	0	
8205909090	기타	Cat 0	0	
8206000000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Cat 0	0	
8207130000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Cat 0	0	
8207191000	작용하는 부분을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Cat 0	0	
8207199000	부분품	Cat 0	0	
8207201000	인발(引拔)용	Cat 0	0	
8207202000	압출용	Cat 0	0	
8207301000	프레싱(pressing)용	Cat 0	0	
8207302000	스탬핑(stamping)용	Cat 0	0	
8207303000	펀칭(punching)용	Cat 0	0	
8207309000	기타	Cat 0	0	
8207401000	태핑(tapping)용	Cat 0	0	
8207402000	드레딩(threading)용	Cat 0	0	
8207409000	기타	Cat 0	0	
8207501010	고속도강으로 만든 것	Cat 0	0	
8207501090	기타	Cat 0	0	
8207502000	브레이스비트(brace bit)	Cat 0	0	
8207509000	기타	Cat 0	0	
8207601000	리머(reamer)	Cat 0	0	
8207603000	브로치(broach)	Cat 0	0	
8207609000	기타	Cat 0	0	
8207701000	기어커터	Cat 0	0	
8207702000	밀링커터	Cat 0	0	
8207703000	기어커팅 호브(gear cutting hob)	Cat 0	0	
8207704000	로타리파일	Cat 0	0	
8207709000	기타	Cat 0	0	
8207801000	선반용 공구	Cat 0	0	
8207809000	기타	Cat 0	0	
8207901000	다이아몬드 공구	Cat 0	0	
8207909000	기타	Cat 0	0	
8208100000	금속 가공용	Cat 0	0	
8208200000	목재 가공용	Cat 0	0	
8208300000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Cat 0	0	
8208400000	농업용 · 원예용 · 임업용 기계의 것	Cat 0	0	
8208900000	기타	Cat 0	0	
8209001010	팅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으로 코팅 처리된 것	Cat 0	0	
8209001050	티타늄의 것	Cat 0	0	
8209001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209002010	텃스텐 카바이드로 만든 것	Cat 0	0	
8209002050	티타늄의 것	Cat 0	0	
8209002090	기타	Cat 0	0	
8210001000	분쇄기·마쇄기	Cat 0	0	
8210002000	추출기·압착기	Cat 0	0	
8210003000	비터(beater)·믹서	Cat 0	0	
8210004000	세절기·커터	Cat 0	0	
8210005000	오프너·코르크·실러	Cat 0	0	
8210008000	그 밖의 가정용 식품가공기기	Cat 0	0	
8210009000	부분품	Cat 0	0	
8211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Cat 0	0	
8211910000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Cat 0	0	
8211920000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Cat 0	0	
8211930000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Cat 0	0	
8211940000	칼날	Cat 0	0	
821195000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Cat 0	0	
8212100000	면도기	Cat 0	0	
8212200000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Cat 0	0	
8212900000	그 밖의 부분품	Cat 0	0	
8213001000	가정용·사무용 가위	Cat 0	0	
8213002010	재단용 가위	Cat 0	0	
8213002020	이발용 가위	Cat 0	0	
8213002090	기타	Cat 0	0	
8213003000	매니큐어용 가위	Cat 0	0	
8213004000	가위날	Cat 0	0	
8213009000	기타	Cat 0	0	
8214101000	연필깎이	Cat 0	0	
8214109000	기타	Cat 0	0	
8214200000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Cat 0	0	
8214901000	이발기	Cat 0	0	
8214902000	정육점이나 주방용 칼날이와 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	Cat 0	0	
8214909000	기타	Cat 0	0	
82151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커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215200000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Cat 0	0	
8215911000	스푼	Cat 0	0	
8215912000	포크	Cat 0	0	
821591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Cat 0	0	
821591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Cat 0	0	
8215915000	각종 접게	Cat 0	0	
8215919000	기타	Cat 0	0	
8215991000	스푼	Cat 0	0	
8215992000	포크	Cat 0	0	
8215993000	국자와 스키머(skimmer)	Cat 0	0	
8215994000	생선용 칼과 버터용 칼	Cat 0	0	
8215995000	각종 접게	Cat 0	0	
8215999000	기타	Cat 0	0	
8301100000	자물쇠	Cat 0	0	
8301200000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Cat 0	0	
8301300000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Cat 0	0	
8301401010	디지털 도어 록	Cat 0	0	
8301401090	기타	Cat 0	0	
8301409000	기타	Cat 0	0	
8301500000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Cat 0	0	
8301600000	부분품	Cat 0	0	
8301700000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Cat 0	0	
8302100000	경첩	Cat 0	0	
8302200000	카스터(caster)	Cat 0	0	
8302300000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8302411000	문·창에 적합한 것	Cat 0	0	
8302419000	기타	Cat 0	0	
8302420000	기타(가구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302491000	트렁크·슈트케이스나 이와 유사한 여행용 구에 적합한 것	Cat 0	0	
8302499000	기타	Cat 0	0	
8302500000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Cat 0	0	
8302600000	자동차용 페지	Cat 0	0	
8303001000	금고	Cat 0	0	
83030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30400000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카드인덱스함·페이퍼 트레이(paper tray)·페이퍼 레스트(paper rest)·펜 트레이(pen tray)·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Cat 0	0	
8305100000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Cat 0	0	
8305200000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Cat 0	0	
8305900000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Cat 0	0	
8306100000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8306210000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Cat 0	0	
8306290000	기타	Cat 0	0	
8306301000	사진틀·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Cat 0	0	
830630200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거울	Cat 0	0	
8307100000	철강으로 만든 것	Cat 0	0	
8307900000	그 밖의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	Cat 0	0	
8308101000	훅(hook)	Cat 0	0	
8308102000	아이(eye)·아일릿(eyelet)	Cat 0	0	
8308200000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Cat 0	0	
8308901000	걸쇠나 걸쇠가 붙은 프레임	Cat 0	0	
8308902000	버클(buckle)이나 버클(buckle)걸쇠	Cat 0	0	
8308903000	구슬	Cat 0	0	
8308904000	스팽글(spangle)	Cat 0	0	
8308909000	기타	Cat 0	0	
8309100000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Cat 0	0	
8309901000	캔우껍(E.O.E)	Cat 0	0	
8309909000	기타	Cat 0	0	
831000000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사인판·명판·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831110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8311109000	기타	Cat 0	0	
831120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8311209000	기타	Cat 0	0	
831130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8311309010	납-주석 합금의 땀납	Cat 0	0	
8311309090	기타	Cat 0	0	
831190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8311909000	기타	Cat 0	0	
8401100000	원자로	Cat 0	0	
8401200000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Cat 0	0	
8401300000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Cat 0	0	
8401400000	원자로의 부분품	Cat 0	0	
840211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하는 수관(水管)보일러	Cat 0	0	
8402120000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Cat 0	0	
8402191000	열매체보일러	Cat 0	0	
8402199000	기타	Cat 0	0	
8402200000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Cat 0	0	
8402901000	증기발생보일러의 것	Cat 0	0	
8402902000	과열수보일러의 것	Cat 0	0	
8403101000	유류를 사용하는 것	Cat 0	0	
8403102000	석탄을 사용하는 것	Cat 0	0	
8403103000	가스를 사용하는 것	Cat 0	0	
8403109000	기타	Cat 0	0	
8403900000	부분품	Cat 0	0	
8404101000	연료절약기	Cat 0	0	
8404102000	과열기	Cat 0	0	
8404103000	그을음제거기	Cat 0	0	
8404104000	가스회수기	Cat 0	0	
8404109000	기타	Cat 0	0	
8404200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Cat 0	0	
8404901000	보일러용 응축기의 것	Cat 0	0	
8404902000	증기원동기용 응축기의 것	Cat 0	0	
8404909000	기타	Cat 0	0	
84051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	Cat 0	0	
8405102000	수성가스 발생기	Cat 0	0	
8405104000	산소 발생기	Cat 0	0	
8405109000	기타	Cat 0	0	
8405901000	발생로가스 발생기의 것	Cat 0	0	
8405902000	수성가스 발생기의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05904000	산소 발생기의 것	Cat 0	0	
8405909000	기타	Cat 0	0	
8406100000	선박추진용 터빈	Cat 0	0	
8406811000	출력이 40메가와트 초과 100메가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06812000	출력이 100메가와트 초과 300메가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06813000	출력이 30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06820000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06901000	선박추진용 증기터빈의 것	Cat 0	0	
8406909000	기타	Cat 0	0	
8407100000	항공기용 엔진	Cat 0	0	
8407210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	Cat 0	0	
8407290000	기타	Cat 0	0	
8407311000	모터사이클의 것	Cat 0	0	
8407319000	기타	Cat 0	0	
8407321000	모터사이클의 것	Cat 0	0	
8407329000	기타	Cat 0	0	
8407331000	모터사이클의 것	Cat 0	0	
8407339000	기타	Cat 0	0	
8407341000	모터사이클의 것	Cat 0	0	
8407349000	기타	Cat 0	0	
8407901000	철도차량용	Cat 0	0	
8407909000	기타	Cat 0	0	
8408101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5	
840810200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5	
8408103000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408201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408202000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408203000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 초과 4,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408204000	실린더용량이 4,000시시 초과 10,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408205000	실린더용량이 10,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08901010	철도용 기관차의 내연기관	Cat 0	0	
8408901090	기타	Cat 0	0	
8408909010	선박용 내연기관	Cat 0	5	
8408909021	출력이 400킬로와트 이상인 발전기용[분당 회전수(알피엡)가 1,500이나 1,800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8909029	기타	Cat 0	0	
8408909030	제8429호용 내연기관	Cat 0	0	
8408909090	기타	Cat 0	0	
8409100000	항공기 엔진용	Cat 0	0	
8409911000	제87류의 차량용	Cat 0	0	
8409912000	아웃보드(outboard) 모터의 것	Cat 0	0	
8409919000	기타	Cat 0	0	
8409991000	철도차량용	Cat 0	0	
8409992000	제87류의 차량용	Cat 5	8	
8409993010	출력이 3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Cat 0	5	
8409993020	출력이 300킬로와트 초과 2,000킬로와트 이하인 내연기관의 것	Cat 0	5	
8409993030	출력이 2,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내연기관의 것	Cat 0	0	
8409999010	발전용	Cat 0	0	
8409999090	기타	Cat 0	0	
8410111000	수력터빈	Cat 0	0	
8410119000	기타	Cat 0	0	
8410120000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10130000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10901010	수력터빈의 것	Cat 0	0	
8410901090	기타	Cat 0	0	
8410909010	수력터빈의 것	Cat 0	0	
8410909090	기타	Cat 0	0	
8411111000	항공기용	Cat 0	0	
8411119010	선박용	Cat 0	0	
8411119090	기타	Cat 0	0	
8411121000	항공기용	Cat 0	0	
8411129010	선박용	Cat 0	0	
8411129090	기타	Cat 0	0	
8411211000	항공기용	Cat 0	0	
8411219010	선박용	Cat 0	0	
8411219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11221000	항공기용	Cat 0	0	
8411229010	선박용	Cat 0	0	
8411229090	기타	Cat 0	0	
8411811000	항공기용	Cat 0	0	
8411819010	선박용	Cat 0	0	
8411819090	기타	Cat 0	0	
8411821000	항공기용	Cat 0	0	
8411829010	선박용	Cat 0	0	
8411829090	기타	Cat 0	0	
8411911000	항공기용	Cat 0	0	
8411919000	기타	Cat 0	0	
8411991000	항공기용	Cat 0	0	
8411999000	기타	Cat 0	0	
8412101000	항공기의 것	Cat 0	0	
8412109000	기타	Cat 0	0	
8412211000	액압실린더	Cat 0	0	
8412219000	기타	Cat 0	0	
8412290000	기타	Cat 0	0	
8412310000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Cat 0	0	
8412390000	기타	Cat 0	0	
8412800000	기타	Cat 0	0	
8412901010	램제트나 펄스제트 엔진의 것	Cat 0	0	
8412901090	기타	Cat 0	0	
8412902000	수력엔진의 것	Cat 0	0	
8412909000	기타	Cat 0	0	
8413110000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Cat 0	0	
8413190000	기타	Cat 0	0	
8413200000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8413301000	항공기용	Cat 0	0	
8413302000	철도용 기관차용	Cat 0	0	
8413303000	선박용	Cat 0	5	
8413304000	제87류에 해당하는 차량용	Cat 5	8	
8413309000	기타	Cat 0	0	
8413400000	콘크리트 펌프	Cat 0	0	
8413504000	수영장용 펌프	Cat 0	0	
8413509010	플러지펌프	Cat 0	0	
8413509020	파스툼펌프	Cat 0	0	
8413509030	다이아프램펌프	Cat 0	0	
8413509090	기타	Cat 0	0	
8413604000	수영장용 펌프	Cat 0	0	
8413609010	기어펌프	Cat 0	0	
8413609020	배인펌프	Cat 0	0	
8413609030	스크루펌프	Cat 0	0	
8413609090	기타	Cat 0	0	
8413703000	수영장용 펌프	Cat 0	0	
8413709010	터빈펌프	Cat 0	0	
8413709020	볼류트 펌프	Cat 0	0	
8413709090	기타	Cat 0	0	
8413811000	수영장용 펌프	Cat 0	0	
8413819000	기타	Cat 0	0	
8413820000	액체엘리베이터	Cat 0	0	
8413911000	급유용 펌프의 것	Cat 0	0	
8413912000	내연기관의 것	Cat 0	0	
8413913000	왕복펌프의 것	Cat 0	0	
8413914000	원심펌프의 것	Cat 0	0	
8413915000	로터리펌프의 것	Cat 0	0	
8413919000	기타	Cat 0	0	
8413920000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Cat 0	0	
8414101000	항공기용	Cat 0	0	
84141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Cat 0	0	
84141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기의 것	Cat 0	0	
8414109090	기타	Cat 0	0	
8414200000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Cat 0	0	
8414301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Cat 0	0	
841430200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Cat 0	0	
8414400000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Cat 0	0	
8414511000	항공기용	Cat 0	0	
8414519000	기타	Cat 0	0	
8414591000	항공기용	Cat 0	0	
8414592000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 냉각을 위해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14599000	기타	Cat 0	0	
8414601000	항공기용	Cat 0	0	
8414609000	기타	Cat 0	0	
8414801000	후드(수평면의 최대길이 12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14809110	항공기용	Cat 0	0	
8414809190	기타	Cat 0	0	
841480921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미만인 것	Cat 0	0	
8414809220	사용동력이 74.6킬로와트 이상 373킬로와트 미만인 것	Cat 0	0	
8414809230	사용동력이 373킬로와트 이상인 것	Cat 0	0	
8414809900	기타	Cat 0	0	
8414901000	팬과 후드의 것	Cat 0	0	
8414909010	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 압축기의 것	Cat 0	0	
8414909020	기체압축기의 것(냉장설비용이나 냉동설비용은 제외한다)	Cat 0	0	
8414909090	기타	Cat 0	0	
8415101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Cat 0	0	
8415101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Cat 0	0	
8415102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Cat 0	0	
8415102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Cat 0	0	
841510901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미만인 것	Cat 0	0	
8415109020	사용동력이 11킬로와트 이상인 것	Cat 0	0	
8415200000	자동차용(탑승차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15810000	냉각유닛과 냉·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Cat 0	0	
8415820000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15830000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Cat 0	0	
8415900000	부분품	Cat 0	0	
8416101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Cat 0	0	
8416102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200리터 초과 1,500리터 미만인 것	Cat 0	0	
8416103000	시간당 최대연료소비량이 1,500리터 이상인 것	Cat 0	0	
8416201000	잘게 부순 고체연료용	Cat 0	0	
8416202000	기체연료용	Cat 0	0	
8416209000	기타	Cat 0	0	
8416300000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화(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Cat 0	0	
8416901000	노출 버너의 것	Cat 0	0	
8416909000	기타	Cat 0	0	
8417101010	철광석용	Cat 0	0	
8417101090	기타	Cat 0	0	
8417102010	철강용	Cat 0	0	
8417102090	기타	Cat 0	0	
8417200000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Cat 0	0	
8417801010	시멘트용	Cat 0	0	
8417801020	유리용	Cat 0	0	
8417801030	도자기용	Cat 0	0	
8417801090	기타	Cat 0	0	
8417802000	이화학용	Cat 0	0	
8417809000	기타	Cat 0	0	
8417900000	부분품	Cat 0	0	
8418101010	용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Cat 0	0	
8418101020	용량이 200리터 초과 400리터 이하인 것	Cat 0	0	
8418101030	용량이 400리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18109000	기타	Cat 0	0	
8418211000	용량이 200리터 미만인 것	Cat 0	0	
8418212000	용량이 200리터 이상 400리터 미만인 것	Cat 0	0	
8418213000	용량이 400리터 이상인 것	Cat 0	0	
8418291000	흡수식(전기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18299000	기타	Cat 0	0	
8418300000	체스트(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18400000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18501000	쇼케이스	Cat 0	0	
8418509000	기타	Cat 0	0	
8418610000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Cat 0	0	
8418691000	혈액 저장용 냉장고	Cat 0	0	
8418692010	아이스크림 제조기	Cat 0	0	
8418692020	아이스큐브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18692030	냉수기	Cat 0	0	
8418692090	기타	Cat 0	0	
8418693000	열펌프	Cat 0	0	
8418910000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Cat 0	0	
8418991000	가정형 냉장고의 것	Cat 0	0	
8418999000	기타	Cat 0	0	
8419110000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Cat 0	0	
8419190000	기타	Cat 0	0	
8419200000	내과용 · 외과용 · 실험실용 살균기	Cat 0	0	
8419310000	농산물용	Cat 0	0	
8419320000	목재용 · 제지필름용 · 종이용 · 판지용	Cat 0	0	
8419391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스펀 드라이어	Cat 0	0	
8419399000	기타	Cat 0	0	
8419400000	증류기나 정류기	Cat 0	0	
8419501000	항공기용	Cat 0	0	
841950200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내경이 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Cat 0	0	
8419509000	기타	Cat 0	0	
8419600000	기체 액화용 기기	Cat 0	0	
8419810000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Cat 0	0	
8419891000	인조섬유 제조용 종합기	Cat 0	0	
8419899010	가열기	Cat 0	0	
8419899020	냉각기	Cat 0	0	
8419899030	증발기	Cat 0	0	
8419899040	응축기	Cat 0	0	
8419899050	태양열 집열기와 그 장치	Cat 0	0	
8419899060	고온항온기 · 저온항온기	Cat 0	0	
8419899070	환온합습기	Cat 0	0	
8419899080	공기조절기	Cat 0	0	
8419899090	기타	Cat 0	0	
8419901000	인조섬유 제조용 종합기의 것	Cat 0	0	
8419909010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가열기의 것	Cat 0	0	
8419909020	뜨거운 음료제조용 기기의 것, 음식물의 조리나 가열용 기기의 것	Cat 0	0	
8419909030	공기조절용 기기의 것	Cat 0	0	
8419909040	내과용 · 외과용 · 실험실용 살균장치의 것	Cat 0	0	
8419909090	기타	Cat 0	0	
8420101000	제지용	Cat 0	0	
8420102000	직물용	Cat 0	0	
8420103000	가죽용	Cat 0	0	
8420104000	고무용 · 플라스틱용	Cat 0	0	
8420105000	인쇄회로기판이나 인쇄회로 제조용	Cat 0	0	
8420109000	기타	Cat 0	0	
8420910000	살린더	Cat 0	0	
8420990000	기타	Cat 0	0	
8421110000	크림분리기	Cat 0	0	
8421120000	의류탈수기	Cat 0	0	
8421191000	내과용 · 외과용 · 이화학용	Cat 0	0	
8421192000	식품공업용	Cat 0	0	
8421193000	석유화학공업용	Cat 0	0	
8421199000	기타	Cat 0	0	
8421211000	가정형	Cat 0	0	
8421219010	수염장용 여과기나 청정기	Cat 0	0	
8421219020	반도체 제조용 여과기나 청정기	Cat 0	0	
8421219090	기타	Cat 0	0	
8421220000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Cat 0	0	
842123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Cat 0	0	
8421232000	항공기용	Cat 0	0	
8421239000	기타	Cat 0	0	
8421291000	낙농용	Cat 0	0	
8421292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Cat 0	0	
8421292090	기타	Cat 0	0	
8421293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Cat 0	0	
8421293090	기타	Cat 0	0	
8421294000	항공기용	Cat 0	0	
8421299010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Cat 0	0	
8421299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21311000	제87류 차량의 내연기관의 것	Cat 0	0	
8421312000	항공기용	Cat 0	0	
8421319000	기타	Cat 0	0	
8421391000	가정형	Cat 0	0	
8421392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 정화용	Cat 0	0	
842139901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Cat 0	0	
8421399019	기타	Cat 0	0	
842139902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Cat 0	0	
8421399029	기타	Cat 0	0	
8421399030	항공기용	Cat 0	0	
8421399091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Cat 0	0	
8421399099	기타	Cat 0	0	
8421910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Cat 0	0	
8421991000	제87류 차량의 배기가스정화기의 것	Cat 0	0	
8421999010	내연기관용의 여과기나 청정기의 것	Cat 0	0	
842199902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Cat 0	0	
8421999029	기타	Cat 0	0	
842199903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Cat 0	0	
8421999039	기타	Cat 0	0	
8421999091	액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나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스테인리스강의 하우징을 갖춘 기체용의 여과기나 청정기(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Cat 0	0	
8421999099	기타	Cat 0	0	
8422110000	가정형	Cat 0	0	
8422190000	기타	Cat 0	0	
8422200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Cat 0	0	
8422301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기계	Cat 0	0	
8422302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봉합용·봉지용 기계	Cat 0	0	
8422303000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캡슐 취부용·레이블 첨부용 기계	Cat 0	0	
8422304000	음료용 탄산가스주입기	Cat 0	0	
8422309000	기타	Cat 0	0	
8422404000	열수축포장기계	Cat 0	0	
8422409010	자동포장기계	Cat 0	0	
8422409020	자동결속기	Cat 0	0	
8422409030	진공포장기	Cat 0	0	
8422409090	기타	Cat 0	0	
8422901000	접시세척기의 것	Cat 0	0	
8422902000	그 밖의 포장기계의 것	Cat 0	0	
8422909000	기타	Cat 0	0	
8423100000	제종기(유아용 지물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지울	Cat 0	0	
8423201000	컨베이어 스케일	Cat 0	0	
8423202000	피드미터(feed meter)·피드웨이어(feed weigher)	Cat 0	0	
8423209000	기타	Cat 0	0	
8423301000	총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Cat 0	0	
8423309000	기타	Cat 0	0	
8423811000	총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Cat 0	0	
8423819000	기타	Cat 0	0	
8423821000	총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는 제외한다)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23829000	기타	Cat 0	0	
8423891000	트럭 스케일	Cat 0	0	
842389901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Cat 0	0	
8423899090	기타	Cat 0	0	
8423901011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Cat 0	0	
8423901019	기타	Cat 0	0	
8423901091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Cat 0	0	
8423901099	기타	Cat 0	0	
8423909010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기의 부분품은 제외한다)	Cat 0	0	
8423909090	기타	Cat 0	0	
8424100000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8424201000	스프레이건	Cat 0	0	
8424202010	로봇트형	Cat 0	0	
8424202090	기타	Cat 0	0	
8424209000	기타	Cat 0	0	
8424301000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	Cat 0	0	
8424302000	고압증기 세척기	Cat 0	0	
8424309000	기타	Cat 0	0	
8424410000	휴대용 방제기	Cat 0	0	
8424491000	자주식(自走式) 방제기	Cat 0	0	
8424499000	기타	Cat 0	0	
8424820000	농업용이나 원예용	Cat 0	0	
842489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8424892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용	Cat 0	0	
8424899000	기타	Cat 0	0	
8424901000	소화기의 것	Cat 0	0	
8424902000	스프레이건의 것	Cat 0	0	
8424903000	방제기의 것	Cat 0	0	
84249090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842490902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용	Cat 0	0	
8424909090	기타	Cat 0	0	
8425111010	체인블록	Cat 0	0	
8425111090	기타	Cat 0	0	
8425112010	체인블록	Cat 0	0	
8425112090	기타	Cat 0	0	
8425190000	기타	Cat 0	0	
8425311000	광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25319000	기타	Cat 0	0	
8425391000	광구용 와인딩 기어와 윈치(winch)(지하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특수설계 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25399000	기타	Cat 0	0	
8425410000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Cat 0	0	
842542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Cat 0	0	
842542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425491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 이하인 것	Cat 0	0	
8425492000	양하중량이 1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426110000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Cat 0	0	
8426121000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	Cat 0	0	
8426122000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Cat 0	0	
8426190000	기타	Cat 0	0	
8426200000	타워크레인(tower crane)	Cat 0	0	
8426301000	문형 크레인	Cat 0	0	
8426302000	정지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Cat 0	0	
8426410000	타이어가 달린 것	Cat 0	0	
8426491000	신축복식(telescopic boom type)	Cat 0	0	
8426492000	앵글식(latticed boom type)	Cat 0	0	
8426499000	기타	Cat 0	0	
8426910000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Cat 0	0	
8426991000	선박의 데릭(derrick)	Cat 0	0	
8426999000	기타	Cat 0	0	
8427101010	신품	Cat 0	0	
8427101020	중고품	Cat 0	0	
8427102010	신품	Cat 0	0	
8427102020	중고품	Cat 0	0	
8427201011	신품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27201012	중고품	Cat 0	0	
8427201021	신품	Cat 0	0	
8427201022	중고품	Cat 0	0	
8427209000	기타	Cat 0	0	
8427901000	수동식 팰릿(pallet) 트럭	Cat 0	0	
8427909000	기타	Cat 0	0	
8428101000	리프트	Cat 0	0	
8428102000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Cat 0	0	
8428201000	뉴매틱 엘리베이터	Cat 0	0	
8428202000	뉴매틱 컨베이어	Cat 0	0	
8428310000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Cat 0	0	
8428320000	그 밖의 버켓형	Cat 0	0	
8428331010	분당 속도가 240미터 미만인 것	Cat 0	0	
8428331020	분당 속도가 240미터 이상인 것	Cat 0	0	
8428332000	컨베이어	Cat 0	0	
8428390000	기타	Cat 0	0	
8428401000	에스컬레이터	Cat 0	0	
8428402000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Cat 0	0	
8428600000	텔레페릭(teleferic)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 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Cat 0	0	
8428901000	광산용 왜건푸셔 · 기관차 · 화차의 트레버서 · 화차 경사기나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Cat 0	0	
8428909000	기타	Cat 0	0	
8429111000	불도저(bulldozer)	Cat 0	0	
8429112000	앵글도저(angledozer)	Cat 0	0	
8429190000	기타	Cat 0	0	
8429200000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Cat 0	0	
8429300000	스크래퍼(scraper)	Cat 0	0	
8429401000	탬핑머신(tamping machine)	Cat 0	0	
8429402000	로드롤러(road roller)	Cat 0	0	
8429511011	신품	Cat 0	0	
8429511012	중고품	Cat 0	0	
8429511021	신품	Cat 0	0	
8429511022	중고품	Cat 0	0	
8429511031	신품	Cat 0	0	
8429511032	중고품	Cat 0	0	
8429511091	신품	Cat 0	0	
8429511092	중고품	Cat 0	0	
8429519000	기타	Cat 0	0	
8429521011	신품	Cat 0	0	
8429521012	중고품	Cat 0	0	
8429521021	신품	Cat 0	0	
8429521022	중고품	Cat 0	0	
8429521090	기타	Cat 0	0	
8429529000	기타	Cat 0	0	
8429590000	기타	Cat 0	0	
8430100000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Cat 0	0	
8430200000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Cat 0	0	
8430310000	자주식(自走式)	Cat 0	0	
8430390000	기타	Cat 0	0	
8430411000	천공용 기계	Cat 0	0	
8430412000	시굴용 기계	Cat 0	0	
8430491000	시추기	Cat 0	0	
8430499000	기타	Cat 0	0	
8430500000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30610000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Cat 0	0	
8430690000	기타	Cat 0	0	
8431100000	제8425호의 기계의 것	Cat 0	0	
8431200000	제8427호의 기계의 것	Cat 0	0	
8431310000	리프트 ·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 에스컬레이터의 것	Cat 0	0	
8431390000	기타	Cat 0	0	
8431411000	엑스캐베이터(excavator)의 것	Cat 0	0	
8431419000	기타	Cat 0	0	
8431420000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Cat 0	0	
8431430000	소호 제8430.41호나 제8430.49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Cat 0	0	
8431491000	유압브레이커	Cat 0	0	
8431492000	크러셔(crusher)	Cat 0	0	
843149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32100000	플라우(쟁기)	Cat 0	0	
8432210000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Cat 0	0	
8432291000	스카리파이어	Cat 0	0	
8432292000	제초기	Cat 0	0	
8432299000	기타	Cat 0	0	
8432310000	무경간(無耕壟) 직접 농법용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Cat 0	0	
8432391000	파종기	Cat 0	0	
8432392000	식부기(植付機)·이식기(이앙기를 포함한 다)	Cat 0	0	
8432410000	퇴비 살포기	Cat 0	0	
8432420000	비료 살포기	Cat 0	0	
8432800000	그 밖의 기계	Cat 0	0	
8432901000	플라우(쟁기)의 것	Cat 0	0	
8432902000	자동경운기의 것	Cat 0	0	
8432909000	기타	Cat 0	0	
8433110000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33190000	기타	Cat 0	0	
8433200000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 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Cat 0	0	
8433300000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Cat 0	0	
8433400000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Cat 0	0	
8433510000	수확·탈곡 겸용기	Cat 0	0	
8433520000	그 밖의 탈곡기	Cat 0	0	
8433530000	구경(球莖)이나 과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Cat 0	0	
8433590000	기타	Cat 0	0	
8433601000	새의 알 선별기	Cat 0	0	
8433609010	농산물 선별기	Cat 0	0	
8433609090	기타	Cat 0	0	
8433901000	수확·탈곡 겸용기의 것	Cat 0	0	
8433902000	불베는 기계의 것	Cat 0	0	
8433909000	기타	Cat 0	0	
8434100000	착유기	Cat 0	0	
8434201000	균질기	Cat 0	0	
8434209000	기타	Cat 0	0	
8434901000	착유기의 것	Cat 0	0	
8434902000	균질기의 것	Cat 0	0	
8434909000	기타	Cat 0	0	
8435101000	과실주스 추출용 프레스(press)	Cat 0	0	
8435102000	과실주스 추출용 크러셔(crusher)	Cat 0	0	
8435109000	기타	Cat 0	0	
8435900000	부분품	Cat 0	0	
8436101000	사료절단기	Cat 0	0	
8436102000	사료분쇄기	Cat 0	0	
8436103000	사료배합기	Cat 0	0	
8436109000	기타	Cat 0	0	
8436211000	부란기	Cat 0	0	
8436219000	기타	Cat 0	0	
8436290000	기타	Cat 0	0	
8436800000	그 밖의 기계	Cat 0	0	
8436910000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Cat 0	0	
8436990000	기타	Cat 0	0	
8437101000	목초종자 정선기	Cat 0	0	
8437109000	기타	Cat 0	0	
8437801000	제분업용 기계	Cat 0	0	
8437802000	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용	Cat 0	0	
8437901000	종자·곡물이나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용의 것	Cat 0	0	
8437909000	기타	Cat 0	0	
8438101000	베이커리 기계	Cat 0	0	
8438109000	기타	Cat 0	0	
8438200000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Cat 0	0	
8438300000	설탕 제조용 기계	Cat 0	0	
8438400000	양조용 기계	Cat 0	0	
8438501000	육류 조제용 기계	Cat 0	0	
8438509000	기타	Cat 0	0	
8438600000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Cat 0	0	
8438801000	어패류 조제용 기계	Cat 0	0	
8438809000	기타	Cat 0	0	
8438900000	부분품	Cat 0	0	
8439101000	쇄목기	Cat 0	0	
8439102000	절단기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39103000	스트레이너	Cat 0	0	
8439109000	기타	Cat 0	0	
8439201000	초지 준비기	Cat 0	0	
8439202000	초지기	Cat 0	0	
8439209000	기타	Cat 0	0	
8439301000	종이·판지를 감는 기계	Cat 0	0	
8439302000	표면 가공기	Cat 0	0	
8439303000	침투 가공기	Cat 0	0	
8439309000	기타	Cat 0	0	
8439910000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Cat 0	0	
8439990000	기타	Cat 0	0	
8440101000	제분용 재분기	Cat 0	0	
8440102000	제분용 접는 기계	Cat 0	0	
8440109000	기타	Cat 0	0	
8440901000	제분용 재분기의 것	Cat 0	0	
8440909000	기타	Cat 0	0	
8441100000	절단기	Cat 0	0	
8441201000	종이백·봉지 제조용 기계	Cat 0	0	
8441202000	봉투 제조기	Cat 0	0	
8441300000	가운(carton)·박스·게이스·큐브·트럼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 [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 다]	Cat 0	0	
8441400000	제지용 펄프·종이·판지 제품의 몰딩 (moulding)용 기계	Cat 0	0	
8441801000	종이·판지의 트리밍기	Cat 0	0	
8441809000	기타	Cat 0	0	
8441900000	부분품	Cat 0	0	
8442301000	활자 주조용 기계류, 장치	Cat 0	0	
8442302000	특수 성형 프레스	Cat 0	0	
8442303000	산 부식용 기기	Cat 0	0	
8442305000	다른 공정에 의한 식자용 기계류, 장치, 장 비(활자 주조용 장치를 갖추었는지에 상관 없다)	Cat 0	0	
8442309000	기타	Cat 0	0	
8442401000	식자용 기계류·장치의 것	Cat 0	0	
8442402000	활자주조용 기계류·장치의 것	Cat 0	0	
8442409000	기타	Cat 0	0	
8442500000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 · 그레인·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Cat 0	0	
844311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 정한다]	Cat 0	0	
8443120000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 무실용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 정한다]	Cat 0	0	
8443130000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Cat 0	0	
844314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 인쇄용은 제외한다]	Cat 0	0	
8443150000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Cat 0	0	
8443160000	곡면인쇄용 기계	Cat 0	0	
8443170000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Cat 0	0	
8443191000	직물날염기	Cat 0	0	
8443192000	그 밖의 직물, 가죽, 벽지, 포장지, 리노름 등의 재료에 동일한 모양이나 문자를 반복 하여 인쇄하거나 지색을 인쇄하는 인쇄기	Cat 0	0	
8443199000	기타	Cat 0	0	
8443311010	레이저 프린터	Cat 0	0	
8443311020	도트 프린터	Cat 0	0	
8443311030	잉크젯 프린터	Cat 0	0	
8443311090	기타	Cat 0	0	
8443312000	팩시밀리(프린터, 복사기능 중 하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43313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43313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43314000	잉크젯방식 인쇄기(제8443.31.10호의 것 은 제외한다)	Cat 0	0	
8443321010	레이저 프린터	Cat 0	0	
8443321020	도트 프린터	Cat 0	0	
8443321030	잉크젯 프린터	Cat 0	0	
8443321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43322000	팩시밀리	Cat 0	0	
8443323000	텔레프린터	Cat 0	0	
8443324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43324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433250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8443325090	기타	Cat 0	0	
84433910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8443391090	기타	Cat 0	0	
8443392010	원래의 영상을 직접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 (직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43392020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복사하는 것(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43393010	광학기구를 갖춘 것	Cat 0	0	
8443393020	밀착식	Cat 0	0	
8443394000	열식 복사기	Cat 0	0	
8443399000	기타	Cat 0	0	
8443911010	자동급지기	Cat 0	0	
8443911020	접기용, 풀칠용, 천공용, 지철용의 기계	Cat 0	0	
8443911090	기타	Cat 0	0	
8443919000	기타	Cat 0	0	
8443991000	제8443.31.10호나 제8443.32.10호의 것	Cat 0	0	
8443992000	팩시밀리의 것	Cat 0	0	
8443993000	텔레프린터의 것	Cat 0	0	
8443994010	자동 문서공급기	Cat 0	0	
8443994020	종이공급기	Cat 0	0	
8443994030	분류기	Cat 0	0	
8443994090	기타	Cat 0	0	
8443995000	제8443.31.4000호, 제8443.32.5010호, 제8443.32.5090호, 제8443.39.1010호, 제8443.39.1090호의 것	Cat 0	0	
8443999000	기타	Cat 0	0	
8444001000	방사(紡絲)기	Cat 0	0	
8444002000	연신(drawing)기	Cat 0	0	
8444003000	텍스처(texture)기	Cat 0	0	
8444004000	절단기	Cat 0	0	
8444009000	기타	Cat 0	0	
8445110000	카드기(carding machine)	Cat 0	0	
8445120000	코밍기(combing machine)	Cat 0	0	
8445130000	연조기나 조방기	Cat 0	0	
8445191000	흔타면기	Cat 0	0	
8445192000	래프성형기	Cat 0	0	
8445193000	조면기	Cat 0	0	
8445199000	기타	Cat 0	0	
8445201010	정방기	Cat 0	0	
8445201090	기타	Cat 0	0	
8445202000	모방용	Cat 0	0	
8445203000	견방용	Cat 0	0	
8445209000	기타	Cat 0	0	
8445301000	필라멘트사용	Cat 0	0	
8445302000	방적사용	Cat 0	0	
8445309000	기타	Cat 0	0	
8445401000	콘 와인더	Cat 0	0	
8445402000	치즈 와인더	Cat 0	0	
8445409000	기타	Cat 0	0	
8445901000	정경기	Cat 0	0	
8445902000	정경호부기	Cat 0	0	
8445903000	통경기	Cat 0	0	
8445904000	연경기	Cat 0	0	
8445909000	기타	Cat 0	0	
8446100000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Cat 0	0	
8446211000	면직기	Cat 0	0	
8446213000	견직기	Cat 0	0	
8446219000	기타	Cat 0	0	
8446290000	기타	Cat 0	0	
8446301010	면직기	Cat 0	0	
8446301020	견직기	Cat 0	0	
8446301030	타올직기	Cat 0	0	
8446301090	기타	Cat 0	0	
8446302010	면직기	Cat 0	0	
8446302020	견직기	Cat 0	0	
8446302030	타올직기	Cat 0	0	
8446302090	기타	Cat 0	0	
8446303010	면직기	Cat 0	0	
8446303020	견직기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46303030	타올직기	Cat 0	0	
8446303090	기타	Cat 0	0	
8446309010	연직기	Cat 0	0	
8446309020	견직기	Cat 0	0	
8446309030	타올직기	Cat 0	0	
8446309090	기타	Cat 0	0	
8447111000	양말편기	Cat 0	0	
8447119000	기타	Cat 0	0	
8447120000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47201010	수(手) 편직기(반자동 횡(橫) 편직기는 포함한다)	Cat 0	0	
8447201020	자동 횡(橫) 편직기	Cat 0	0	
8447201090	기타	Cat 0	0	
8447202010	랏셀기	Cat 0	0	
8447202020	트리코트기	Cat 0	0	
8447202090	기타	Cat 0	0	
8447209000	기타	Cat 0	0	
8447901000	레이스기	Cat 0	0	
8447902010	자동자수기	Cat 0	0	
8447902090	기타	Cat 0	0	
8447903000	결말기	Cat 0	0	
8447909000	기타	Cat 0	0	
8448111000	도비(dobby)기	Cat 0	0	
8448112000	자카드기	Cat 0	0	
8448113000	카드 천공기	Cat 0	0	
8448119000	기타	Cat 0	0	
8448191000	경사용 빔스탠드와 크릴(creel)	Cat 0	0	
8448199010	실 제조용 보조기계(조연기는 제외한다)	Cat 0	0	
8448199090	기타	Cat 0	0	
8448201000	방사 니플	Cat 0	0	
8448209000	기타	Cat 0	0	
8448310000	침포	Cat 0	0	
8448321000	카드기(carding machine)용[가넷와이어(garnet wire)는 제외한다]	Cat 0	0	
8448329000	기타	Cat 0	0	
8448331000	스핀들 플라이어	Cat 0	0	
8448339010	스핀들	Cat 0	0	
8448339020	스피닝링	Cat 0	0	
8448339030	립트래블러	Cat 0	0	
8448391000	경사빔	Cat 0	0	
8448399000	기타	Cat 0	0	
8448420000	직조기용 바디·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Cat 0	0	
8448491000	셔틀	Cat 0	0	
8448499000	기타	Cat 0	0	
8448511000	메리야스용 바늘	Cat 0	0	
8448512000	자수기용 바늘	Cat 0	0	
8448513000	레이스기용 바늘	Cat 0	0	
8448519000	기타	Cat 0	0	
8448590000	기타	Cat 0	0	
8449001000	기계	Cat 0	0	
8449002000	모자제조용 형(型)	Cat 0	0	
8449009000	부분품	Cat 0	0	
8450110000	완전자동 세탁기	Cat 0	0	
8450120000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50190000	기타	Cat 0	0	
8450200000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450900000	부분품	Cat 0	0	
8451100000	드라이클리닝기	Cat 0	0	
8451210000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총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Cat 0	0	
8451290000	기타	Cat 0	0	
8451301000	스팀 프레스	Cat 0	0	
8451309000	기타	Cat 0	0	
8451401000	세척기	Cat 0	0	
8451402000	표백기	Cat 0	0	
8451403000	염색기	Cat 0	0	
8451501000	감기(reeling)용 기계·풀기(unreeling)용 기계	Cat 0	0	
8451502000	절단기	Cat 0	0	
8451509000	기타	Cat 0	0	
8451801000	열처리기	Cat 0	0	
8451802000	폭출기(幅出機)	Cat 0	0	
8451803000	머서라이징(mercerizing)기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51809010	방축가공기	Cat 0	0	
8451809020	도포기, 칠투기	Cat 0	0	
8451809030	기모기(起毛機)	Cat 0	0	
8451809040	패딩기	Cat 0	0	
8451809090	기타	Cat 0	0	
8451901000	드라이크리닝기의 것	Cat 0	0	
8451902000	건조기의 것	Cat 0	0	
8451909000	기타	Cat 0	0	
8452101020	지그재그형	Cat 0	0	
8452101030	프리압식	Cat 0	0	
8452101090	기타	Cat 0	0	
8452102000	수동식	Cat 0	0	
8452212000	포장대 포함용	Cat 0	0	
8452219000	기타	Cat 0	0	
8452292000	포장대 포함용	Cat 0	0	
8452299000	기타	Cat 0	0	
8452300000	재봉기용 바늘	Cat 0	0	
8452901000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밀판·덮개와 그 부분품	Cat 0	0	
8452909000	그 밖의 재봉기 부분품	Cat 0	0	
8453101000	유평준비기계	Cat 0	0	
8453102000	유평기계	Cat 0	0	
8453103000	원피·가죽 가공기계	Cat 0	0	
8453200000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Cat 0	0	
8453800000	그 밖의 기계	Cat 0	0	
8453900000	부분품	Cat 0	0	
8454100000	전로	Cat 0	0	
8454200000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블(ladle)	Cat 0	0	
8454301010	다이캐스팅기	Cat 0	0	
8454301090	기타	Cat 0	0	
8454309000	기타	Cat 0	0	
8454901000	전로의 것	Cat 0	0	
8454909000	기타	Cat 0	0	
8455100000	관 압연기	Cat 0	0	
8455210000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Cat 0	0	
8455220000	냉간(冷間) 압연기	Cat 0	0	
8455301000	주조제의 것	Cat 0	0	
8455302000	단조제의 것	Cat 0	0	
8455309000	기타	Cat 0	0	
8455900000	그 밖의 부분품	Cat 0	0	
845611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Cat 0	0	
8456119000	기타	Cat 0	0	
845612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Cat 0	0	
8456129000	기타	Cat 0	0	
8456200000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Cat 0	0	
8456301010	와이어 컷 방전 가공기	Cat 0	0	
8456301090	기타	Cat 0	0	
8456309000	기타	Cat 0	0	
8456400000	플라즈마마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Cat 0	0	
8456500000	위타제트 절단기	Cat 0	0	
8456900000	기타	Cat 0	0	
8457101000	수직형	Cat 0	0	
8457102000	수평형	Cat 0	0	
8457103000	문형	Cat 0	0	
8457109000	기타	Cat 0	0	
8457200000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Cat 0	0	
8457300000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 머신(transfer machine)	Cat 0	0	
8458110000	수치제어식	Cat 0	0	
8458190000	기타	Cat 0	0	
8458910000	수치제어식	Cat 0	0	
8458990000	기타	Cat 0	0	
8459100000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Cat 0	0	
8459210000	수치제어식	Cat 0	0	
8459291000	레이디얼 드릴링 머신	Cat 0	0	
8459292000	직립 드릴링 머신	Cat 0	0	
8459293000	다축 드릴링 머신	Cat 0	0	
845929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59310000	수치제어식	Cat 0	0	
8459390000	기타	Cat 0	0	
8459411000	지그 보링머신	Cat 0	0	
8459412000	수평 보링머신	Cat 0	0	
8459419000	기타	Cat 0	0	
8459490000	기타	Cat 0	0	
8459510000	수치제어식	Cat 0	0	
8459590000	기타	Cat 0	0	
8459611000	베드형 밀링머신	Cat 0	0	
845961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Cat 0	0	
8459619000	기타	Cat 0	0	
8459691000	베드형 밀링머신	Cat 0	0	
8459692000	평삭(平削) 밀링머신	Cat 0	0	
8459693000	만능공구 밀링머신	Cat 0	0	
8459694000	프로필 밀링머신	Cat 0	0	
8459699000	기타	Cat 0	0	
8459701000	태핑머신(tapping machine)	Cat 0	0	
8459709000	그 밖의 나사절삭기	Cat 0	0	
8460120000	수치제어식	Cat 0	0	
8460190000	기타	Cat 0	0	
8460220000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60230000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60241000	내면연삭기	Cat 0	0	
8460242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Cat 0	0	
8460249000	기타	Cat 0	0	
8460291000	원통연삭기	Cat 0	0	
8460292000	내면연삭기	Cat 0	0	
8460293000	무심연삭기	Cat 0	0	
8460294000	프로파일(profile) 연삭기	Cat 0	0	
8460299000	기타	Cat 0	0	
8460310000	수치제어식	Cat 0	0	
8460390000	기타	Cat 0	0	
8460401000	호닝머신(honing machine)	Cat 0	0	
8460402000	래핑머신(lapping machine)	Cat 0	0	
8460900000	기타	Cat 0	0	
8461200000	셰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Cat 0	0	
8461300000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Cat 0	0	
8461401010	수치제어식	Cat 0	0	
8461401090	기타	Cat 0	0	
8461402000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	Cat 0	0	
8461500000	톱기계나 절단기	Cat 0	0	
8461900000	기타	Cat 0	0	
8462101000	에어해머	Cat 0	0	
8462109000	기타	Cat 0	0	
8462210000	수치제어식	Cat 0	0	
8462290000	기타	Cat 0	0	
8462310000	수치제어식	Cat 0	0	
8462390000	기타	Cat 0	0	
846241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8462412000	넛칭기(notching machine)	Cat 0	0	
8462491000	편칭기(전단기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8462492000	넛칭기(notching machine)	Cat 0	0	
846291100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이하인 것	Cat 0	0	
846291200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초과 300메트릭톤 이하인 것	Cat 0	0	
8462913000	최고가압이 300메트릭톤 초과 1,000메트릭톤 이하인 것	Cat 0	0	
8462914000	최고가압이 1,000메트릭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462991010	최고가압이 30메트릭톤 이하인 것	Cat 0	0	
8462991020	최고가압이 30메트릭톤 초과 100메트릭톤 이하인 것	Cat 0	0	
8462991030	최고가압이 100메트릭톤 초과 300메트릭톤 이하인 것	Cat 0	0	
8462991040	최고가압이 300메트릭톤 초과 600메트릭톤 이하인 것	Cat 0	0	
8462991050	최고가압이 600메트릭톤 초과 1,500메트릭톤 이하인 것	Cat 0	0	
8462991090	기타	Cat 0	0	
8462999000	기타	Cat 0	0	
8463100000	드로우벤치(draw-bench)[봉 · 관 · 프로파일(profile) · 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63200000	나사 전조기	Cat 0	0	
8463300000	선 가공기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63901000	3D 프린터	Cat 0	0	
8463909000	기타	Cat 0	0	
8464100000	톱기계	Cat 0	0	
8464201000	광학유리용 · 안경유리용	Cat 0	0	
8464202000	그 밖의 유리용	Cat 0	0	
8464209000	기타	Cat 0	0	
8464901000	유리 냉간 가공용 공작기계	Cat 0	0	
8464902000	콘크리트 가공용 공작기계	Cat 0	0	
8464903000	도자기 가공용 공작기계	Cat 0	0	
8464909000	기타	Cat 0	0	
8465101000	목재 가공용	Cat 0	0	
8465109000	기타	Cat 0	0	
8465201000	목재 가공용	Cat 0	0	
8465209000	기타	Cat 0	0	
8465911000	목재 가공용	Cat 0	0	
8465919000	기타	Cat 0	0	
8465921000	목재 가공용	Cat 0	0	
8465929000	기타	Cat 0	0	
8465931000	목재 가공용	Cat 0	0	
8465939000	기타	Cat 0	0	
8465941000	목재 가공용	Cat 0	0	
8465949000	기타	Cat 0	0	
8465951000	목재 가공용	Cat 0	0	
8465959000	기타	Cat 0	0	
8465961000	목재 가공용	Cat 0	0	
8465969000	기타	Cat 0	0	
8465991000	목재 가공용	Cat 0	0	
8465999000	기타	Cat 0	0	
8466100000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Cat 0	0	
8466201000	항공기용	Cat 0	0	
8466209000	기타	Cat 0	0	
8466300000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Cat 0	0	
8466910000	제8464호의 기계용	Cat 0	0	
8466920000	제8465호의 기계용	Cat 0	0	
8466931000	인쇄회로, 인쇄회로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기계의 것	Cat 0	0	
8466939000	기타	Cat 0	0	
8466940000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Cat 0	0	
8467111000	착암기	Cat 0	0	
8467112000	스크루 드라이버	Cat 0	0	
8467113000	그라인더	Cat 0	0	
8467114000	임팩트 렌치	Cat 0	0	
8467115000	드릴	Cat 0	0	
8467119000	기타	Cat 0	0	
8467191000	착암기	Cat 0	0	
8467199000	기타	Cat 0	0	
8467210000	각종 드릴	Cat 0	0	
8467220000	톱	Cat 0	0	
8467290000	기타	Cat 0	0	
8467810000	체인톱	Cat 0	0	
8467891010	소호 제8430.49호, 제8479.10호의 것	Cat 0	0	
8467891020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91호의 것	Cat 0	0	
8467891090	기타	Cat 0	0	
8467899000	기타	Cat 0	0	
8467910000	체인톱의 것	Cat 0	0	
8467920000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Cat 0	0	
8467990000	기타	Cat 0	0	
8468100000	수지식 취관(吹管)	Cat 0	0	
8468201000	가스 용접기	Cat 0	0	
8468202000	가스 자동절단기	Cat 0	0	
8468209000	기타	Cat 0	0	
8468800000	그 밖의 기기	Cat 0	0	
8468900000	부분품	Cat 0	0	
8470103010	17단위 미만인 것	Cat 0	0	
8470103020	17단위 이상인 것	Cat 0	0	
8470104010	제8472.90.9000호의 것	Cat 0	0	
8470104090	기타	Cat 0	0	
8470210000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Cat 0	0	
8470290000	기타	Cat 0	0	
8470300000	그 밖의 계산기	Cat 0	0	
8470500000	금전 등록기	Cat 0	0	
8470902000	표권 발행기	Cat 0	0	
8470903000	회계기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70909000	기타	Cat 0	0	
8471300000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7141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Cat 0	0	
847141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Cat 0	0	
8471419000	기타	Cat 0	0	
847149101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Cat 0	0	
847149102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Cat 0	0	
8471491090	기타	Cat 0	0	
8471499000	기타	Cat 0	0	
8471501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64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64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Cat 0	0	
8471502000	중앙처리장치의 자료전송량이 32비트 이상인 것으로서 주기억용량이 최소 16메가바이트 이상인 것	Cat 0	0	
8471509000	기타	Cat 0	0	
8471601010	문자(표식) 판독장치	Cat 0	0	
8471601020	키 입력장치	Cat 0	0	
8471601030	마우스	Cat 0	0	
8471601040	스캐너	Cat 0	0	
8471601090	기타	Cat 0	0	
8471602000	출력장치	Cat 0	0	
8471603030	음성 입출력장치	Cat 0	0	
8471603090	기타	Cat 0	0	
8471701000	주기억장치(램·롬)	Cat 0	0	
8471702020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Cat 0	0	
8471702031	씨디(CD) 드라이브	Cat 0	0	
8471702032	다브이디(DVD) 드라이브	Cat 0	0	
8471702033	블루레이 디스크 드라이브	Cat 0	0	
8471702039	기타	Cat 0	0	
8471702090	기타	Cat 0	0	
8471709000	기타	Cat 0	0	
8471801000	사운드카드	Cat 0	0	
8471802000	비디오 카드	Cat 0	0	
8471809000	기타	Cat 0	0	
8471900000	기타	Cat 0	0	
8472100000	들사기	Cat 0	0	
8472301000	편지 분류기	Cat 0	0	
8472302000	소인기	Cat 0	0	
8472309000	기타	Cat 0	0	
8472901010	현금자동지불기	Cat 0	0	
8472901020	현금자동입금기	Cat 0	0	
8472901040	현금자동지불·입금기	Cat 0	0	
8472901050	주화계수 포장기	Cat 0	0	
8472901090	기타	Cat 0	0	
8472902000	등사용이나 인쇄용 자동제판기	Cat 0	0	
8472903000	표권발행기	Cat 0	0	
8472904000	연필찰삭기	Cat 0	0	
8472905000	서류절단기	Cat 0	0	
8472906000	주소인쇄기와 주소판 엠보싱기	Cat 0	0	
8472909000	기타	Cat 0	0	
8473210000	소호 제8470.10호·제8470.21호·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Cat 0	0	
8473291000	소호 제8470.30호의 기계의 것	Cat 0	0	
8473293000	소호 제8470.50호의 기계의 것	Cat 0	0	
8473294000	소호 제8470.90호의 기계의 것	Cat 0	0	
8473301000	자기헤드	Cat 0	0	
8473302000	주기판(마이크로프로세서 유닛이 장착될 수 있도록 설계제작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73303000	컴퓨터 케이스	Cat 0	0	
8473304060	디램 모듈	Cat 0	0	
8473304090	기타	Cat 0	0	
8473309010	컴퓨터용 중앙처리장치로서 제8542호에 분류되지 않는 것	Cat 0	0	
8473309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73401000	현금자동처리기(제8472.90.1050호와 제8472.90.1090호는 제외한다)용 평판디스크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스마,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8473402000	현금자동처리기(제8472.90.1050호와 제8472.90.1090호는 제외한다)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73409000	기타	Cat 0	0	
8473501000	소호 제8470.10호, 제8470.21호, 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계산기에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473509000	기타	Cat 0	0	
8474100000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Cat 0	0	
8474201000	파쇄·분쇄능력이 시간당 20톤 이하인 것	Cat 0	0	
8474209000	기타	Cat 0	0	
8474311000	배치 플랜트	Cat 0	0	
8474319000	기타	Cat 0	0	
8474321000	아스팔트 플랜트	Cat 0	0	
8474329000	기타	Cat 0	0	
8474390000	기타	Cat 0	0	
8474801000	주물용 사형의 성형기	Cat 0	0	
8474802000	조괴기(造塊機)·형입기와 성형기	Cat 0	0	
8474809000	기타	Cat 0	0	
8474900000	부분품	Cat 0	0	
8475100000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Cat 0	0	
8475210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Cat 0	0	
8475291000	판유리 제조용	Cat 0	0	
8475292000	유리병 제조용	Cat 0	0	
8475299000	기타	Cat 0	0	
8475901000	판유리 제조용	Cat 0	0	
8475902000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Cat 0	0	
8475909000	기타	Cat 0	0	
8476210000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Cat 0	0	
8476290000	기타	Cat 0	0	
8476811000	식품 자동판매기	Cat 0	0	
8476819000	기타	Cat 0	0	
8476891000	식품 자동판매기	Cat 0	0	
8476894000	화폐 교환기	Cat 0	0	
8476899000	기타	Cat 0	0	
8476901000	화폐교환기의 것	Cat 0	0	
8476909000	기타	Cat 0	0	
8477101000	고무 공업용	Cat 0	0	
8477102000	플라스틱 공업용	Cat 0	0	
8477201000	고무 공업용	Cat 0	0	
8477202000	플라스틱 공업용	Cat 0	0	
8477300000	취입 성형기	Cat 0	0	
8477400000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Cat 0	0	
8477510000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Cat 0	0	
8477591000	3D 프린터	Cat 0	0	
8477599000	기타	Cat 0	0	
8477800000	그 밖의 기계	Cat 0	0	
8477900000	부분품	Cat 0	0	
8478100000	기계류	Cat 0	0	
8478900000	부분품	Cat 0	0	
8479101000	모듈타르나 콘크리트 살포기	Cat 0	0	
8479102000	그 밖의 도로공사용 기계	Cat 0	0	
8479109000	기타	Cat 0	0	
847920000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Cat 0	0	
847930000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의 기계	Cat 0	0	
8479400000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Cat 0	0	
8479501000	제8479.81호, 제8479.82호, 제8479.89.9010호, 제8479.89.9030호, 제8479.89.9040호, 제8479.89.9060호, 제8479.89.9091호의 것	Cat 0	0	
8479502000	제8479.89.9080호의 것	Cat 0	0	
8479509000	기타	Cat 0	0	
8479600000	증발식 에어컨러	Cat 0	0	
8479710000	공황에서 사용되는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79790000	기타	Cat 0	0	
8479811000	금속 세척기	Cat 0	0	
84798120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8479812090	기타	Cat 0	0	
8479813000	권선기	Cat 0	0	
8479814000	절연이나 보호재료 피복기	Cat 0	0	
8479819000	기타	Cat 0	0	
8479821000	혼합기	Cat 0	0	
8479822000	파쇄기와 분쇄기	Cat 0	0	
8479823000	균질기	Cat 0	0	
8479824000	교반기	Cat 0	0	
8479829000	기타	Cat 0	0	
8479891010	공기청정기(제습 및 가습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79891090	기타	Cat 0	0	
8479892010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Cat 0	0	
8479892090	기타	Cat 0	0	
8479899010	프레스 · 압출기	Cat 0	0	
8479899020	선박용 · 어업용 기기	Cat 0	0	
8479899030	아이레팅(eyeletting)기 · 튜블러리베팅(tubular reventing)기	Cat 0	0	
8479899050	코팅머신(도포기)	Cat 0	0	
8479899060	자동도어 작동기	Cat 0	0	
8479899070	3D 프린터	Cat 0	0	
8479899080	조상기(釣上機)	Cat 0	0	
8479899091	제87류의 차량용	Cat 0	0	
8479899099	기타	Cat 0	0	
8479901010	냉방기기용(카쿨러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8479901020	가정형 기기용	Cat 0	0	
8479901030	제87류의 차량용	Cat 0	0	
8479902000	제8479.89.9080호의 것	Cat 0	0	
847990300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Cat 0	0	
8479904000	제8479.7호의 것	Cat 0	0	
8479905010	인쇄회로조립품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Cat 0	0	
8479905090	기타	Cat 0	0	
8479909010	토목공사, 건축,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기계류의 것	Cat 0	0	
8479909020	동물성이나 비휘발성의 식물성 유지의 추출 및 조제용 기계의 것	Cat 0	0	
8479909030	로프, 케이블 제조기의 것	Cat 0	0	
8479909040	금속처리용 기계류의 것	Cat 0	0	
8479909050	혼합기 · 반죽기 · 파쇄기 · 분쇄기 · 기계식 체 · 시프팅기 · 균질기 · 유화기 · 교반기의 것	Cat 0	0	
8479909060	프레스 · 압출기의 것	Cat 0	0	
8479909070	선박용 · 어업 기기의 것	Cat 0	0	
8479909080	자동 마그네틱 제조기의 것	Cat 0	0	
8479909090	기타	Cat 0	0	
8480100000	금속 주조용 주형틀	Cat 0	0	
8480200000	주형 베이스	Cat 0	0	
8480300000	주형 제조용 모형	Cat 0	0	
84804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Cat 0	0	
8480490000	기타	Cat 0	0	
8480500000	유리 성형용 주형	Cat 0	0	
8480600000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Cat 0	0	
8480710000	사출식이나 압축식	Cat 0	0	
8480790000	기타	Cat 0	0	
8481100000	감압밸브	Cat 0	0	
8481201000	유압 전송용 밸브	Cat 0	0	
8481202000	공기압 전송용 밸브	Cat 0	0	
8481300000	체크(논리턴)밸브	Cat 0	0	
8481400000	안전밸브	Cat 0	0	
8481801010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81801020	액압 작동식의 것	Cat 0	0	
8481801030	그 밖의 자동제어식의 것	Cat 0	0	
8481801090	기타	Cat 0	0	
8481802000	탭 · 코크와 트랩	Cat 0	0	
8481809000	기타	Cat 0	0	
8481900000	부분품	Cat 0	0	
8482102000	내경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SL	5	
8482109000	기타	SL	5	
8482200000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82300000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Cat 0	0	
8482400000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Cat 0	0	
8482500000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Cat 0	0	
8482800000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8482910000	볼 · 니들 · 롤러	Cat 0	0	
8482990000	기타	Cat 0	0	
8483101000	항공기용	Cat 0	0	
8483109010	제87류 차량용	Cat 0	0	
8483109090	기타	Cat 0	0	
8483201000	항공기용	Cat 0	0	
8483209000	기타	Cat 0	0	
8483301000	항공기용	Cat 0	0	
8483309000	기타	Cat 0	0	
8483401010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Cat 0	0	
8483401090	기타	Cat 0	0	
8483409010	기어	Cat 0	0	
8483409020	기어박스	Cat 0	0	
8483409030	무단변속기	Cat 0	0	
8483409041	제87류 차량용	Cat 0	0	
8483409049	기타	Cat 0	0	
8483409090	기타	Cat 0	0	
8483501000	항공기용	Cat 0	0	
8483509000	기타	Cat 0	0	
8483601000	항공기용	Cat 0	0	
8483602000	동력발전기용	Cat 0	0	
8483609000	기타	Cat 0	0	
8483901000	항공기용	Cat 0	0	
8483902000	동력발전기용	Cat 0	0	
8483909000	기타	Cat 0	0	
8484101000	제87류 차량용	Cat 0	0	
8484109000	기타	Cat 0	0	
8484200000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Cat 0	0	
8484900000	기타	Cat 0	0	
84861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86102000	단결정 보울(boule)을 성장시키는 기계	Cat 0	0	
8486103011	레이저 작동식 절단기	Cat 0	0	
8486103019	기타	Cat 0	0	
8486103020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 · 광택기(래핑기를 포함한다)	Cat 0	0	
8486103090	기타	Cat 0	0	
8486104011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Cat 0	0	
8486104019	기타	Cat 0	0	
8486104021	웨이퍼를 스트리핑 · 세척하는 기기	Cat 0	0	
8486104029	기타	Cat 0	0	
848610501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Cat 0	0	
8486105020	전자유도식 · 유전식 노(爐)와 오븐	Cat 0	0	
8486105030	그 밖의 노(爐)와 오븐	Cat 0	0	
8486109000	기타	Cat 0	0	
8486201000	스핀 드라이어(원심분리방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86202100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Cat 0	0	
8486202210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용도의 것	Cat 0	0	
8486202290	기타	Cat 0	0	
8486202310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Cat 0	0	
8486202390	기타	Cat 0	0	
8486203000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Cat 0	0	
8486204000	반도체웨이퍼 위에 막을 형성하거나 금속을 증착하는 기계	Cat 0	0	
8486205110	반도체 리드의 것	Cat 0	0	
8486205190	기타	Cat 0	0	
8486205910	반도체 리드의 것	Cat 0	0	
8486205990	기타	Cat 0	0	
8486206010	반도체웨이퍼 위에 직접 그리는 기기	Cat 0	0	
8486206020	스텝 앤 리프트 얼라이너	Cat 0	0	
8486206091	레이저 작동식 기기	Cat 0	0	
8486206099	기타	Cat 0	0	
8486207000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Cat 0	0	
8486208110	반도체 제조공정 중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86208120	반도체 웨이퍼 제조공정에서 재료를 제거하는 방식에 의하여 재료를 가공하는 기계	Cat 0	0	
8486208190	기타	Cat 0	0	
8486208410	반도체재료의 건식식각 패턴용의 것	Cat 0	0	
8486208420	반도체웨이퍼를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Cat 0	0	
8486208490	기타	Cat 0	0	
8486209110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을 위한 분사기	Cat 0	0	
8486209120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과 오염물질제거기	Cat 0	0	
8486209190	기타	Cat 0	0	
8486209200	포토리소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Cat 0	0	
8486209310	반도체 웨이퍼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레핑기를 포함한다)	Cat 0	0	
8486209321	레이저 작동식 기기	Cat 0	0	
8486209329	기타	Cat 0	0	
8486209390	기타	Cat 0	0	
8486209400	웨이퍼·캐리어·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Cat 0	0	
8486209500	반도체웨이퍼 위에 테이프를 부착시키는 기계	Cat 0	0	
8486209600	반도체웨이퍼를 개별 칩으로 절단하는 기기	Cat 0	0	
8486209900	기타	Cat 0	0	
8486301000	습식 식각, 현상, 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Cat 0	0	
8486302000	강광성 평판디스플레이용기판에 회로모형을 투영하거나 드로잉하는 기기	Cat 0	0	
8486303010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광자빔 방식에 의한 것	Cat 0	0	
8486303020	초음파 방식에 의한 것	Cat 0	0	
8486303030	방전 방식에 의한 것	Cat 0	0	
8486303042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건식식각기	Cat 0	0	
8486303043	그 밖의 건식식각기	Cat 0	0	
8486303049	기타	Cat 0	0	
8486304010	연마기·광택기	Cat 0	0	
8486304090	기타	Cat 0	0	
8486305011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제조용	Cat 0	0	
8486305019	기타	Cat 0	0	
8486305020	도포·현상기	Cat 0	0	
8486305041	물리적 방식의 것	Cat 0	0	
8486305042	화학적 방식의 것	Cat 0	0	
8486305049	기타	Cat 0	0	
8486305051	물리적 방식의 것	Cat 0	0	
8486305052	화학적 방식의 것	Cat 0	0	
8486305059	기타	Cat 0	0	
8486306010	실(seal), 쇼트, 스페이서, 액정 디스펜서	Cat 0	0	
8486306020	스크라이빙 머신	Cat 0	0	
8486306030	패널 어셈블러	Cat 0	0	
8486306090	기타	Cat 0	0	
8486307000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Cat 0	0	
8486308000	액체나 분말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	Cat 0	0	
8486309020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로보트	Cat 0	0	
8486309090	기타	Cat 0	0	
8486401010	패턴형성기(주로 사진 광광액이 도포된 광광판으로부터 마스크와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Cat 0	0	
8486401020	마스크와 레티클을 처리·수리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Cat 0	0	
8486401030	포토리소스트를 도포·현상·경화시키는 기계	Cat 0	0	
8486401040	마스크와 레티클을 식각, 세척, 스트리핑하는 기계와 기기	Cat 0	0	
8486401090	기타	Cat 0	0	
8486402010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 테이프자동접착기·와이어접착기	Cat 0	0	
8486402020	반도체 디바이스를 삽입·제거시키는 기계	Cat 0	0	
8486402031	반도체조립용 인캡슐레이션 기기	Cat 0	0	
8486402039	기타	Cat 0	0	
8486402040	납땀을 반도체 제조용 인쇄회로기판이나 세라믹기판에 탑재하는 기계	Cat 0	0	
8486402050	웨이퍼를 세라믹판에 부착·분리하는 기계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86402070	사출식·압축식의 고무·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Cat 0	0	
8486402080	반도체 다이를 부착하거나 웨이퍼, 캐리어, 튜브를 세척하는 기계	Cat 0	0	
8486402091	금침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Cat 0	0	
8486402092	금침용·접음용·교정용·펼침용 금속가공 공작기계(반도체 리드 외의 것으로서 프레스를 포함하며, 수치제어식의 여부는 상관없다)	Cat 0	0	
8486402093	웨이퍼의 결판 이전에 전체 웨이퍼에 반을 점점(범프)을 형성하는 웨이퍼 범핑용 기계	Cat 0	0	
8486402094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 리드의 세척이나 오염물질제거기(액체나 분말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86402095	저항가열식의 전기식 노(爐)와 오븐	Cat 0	0	
8486402099	기타	Cat 0	0	
8486403010	반도체 소자 제조용 웨이퍼, 웨이퍼캐셋트, 상자나 그 밖의 물품을 이송, 핸들링 그리고 저장하기 위한 것	Cat 0	0	
8486403020	평판디스플레이의 권양(捲揚), 취급, 적하(積荷)나 양하(揚荷)용의 것	Cat 0	0	
8486403090	기타	Cat 0	0	
8486901010	제8486.10.1000호, 제8486.10.2000호, 제8486.10.3011호, 제8486.10.3019호, 제8486.10.3020호, 제8486.10.4011호, 제8486.10.4021호, 제8486.10.5010호, 제8486.10.5020호, 제8486.10.5030호의 것	Cat 0	0	
8486901020	제8486.10.3090호, 제8486.10.4019호, 제8486.10.4029호, 제8486.10.9000호의 것	Cat 0	0	
8486902010	제8486.20.1000호, 제8486.20.2100호, 제8486.20.2210호, 제8486.20.2310호, 제8486.20.2390호, 제8486.20.3000호, 제8486.20.4000호, 제8486.20.5110호, 제8486.20.5910호, 제8486.20.6010호, 제8486.20.6020호, 제8486.20.6091호, 제8486.20.6099호, 제8486.20.7000호, 제8486.20.8110호, 제8486.20.8120호, 제8486.20.8410호, 제8486.20.8420호, 제8486.20.9110호, 제8486.20.9120호, 제8486.20.9190호, 제8486.20.9200호, 제8486.20.9310호, 제8486.20.9321호, 제8486.20.9329호, 제8486.20.9400호, 제8486.20.9500호, 제8486.20.9600호의 것	Cat 0	0	
8486902020	제8486.20.2290호, 제8486.20.5190호, 제8486.20.5990호, 제8486.20.8190호, 제8486.20.8490호, 제8486.20.9390호, 제8486.20.9900호의 것	Cat 0	0	
8486903010	제8486.30.1000호, 제8486.30.2000호의 것	Cat 0	0	
8486903020	제8486.30.3010호, 제8486.30.3020호, 제8486.30.3030호, 제8486.30.3043호, 제8486.30.3049호, 제8486.30.4010호, 제8486.30.4090호, 제8486.30.6020호, 제8486.30.7000호, 제8486.30.8000호, 제8486.30.9020호, 제8486.30.9090호의 것	Cat 0	0	
8486903030	제8486.30.3019호, 제8486.30.3020호, 제8486.30.5051호, 제8486.30.5052호, 제8486.30.5059호, 제8486.30.6010호, 제8486.30.6030호, 제8486.30.6090호의 것	Cat 0	0	
8486903040	제8486.30.3042호, 제8486.30.5011호, 제8486.30.5041호, 제8486.30.5042호, 제8486.30.5049호의 것	Cat 0	0	
8486904010	제8486.40.1010호, 제8486.40.1020호, 제8486.40.1030호, 제8486.40.2010호, 제8486.40.2031호, 제8486.40.2070호, 제8486.40.2080호, 제8486.40.2091호, 제8486.40.2094호, 제8486.40.2095호, 제8486.40.3010호, 제8486.40.3020호, 제8486.40.3090호의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486904020	제8486.40.1040호, 제8486.40.1090호, 제8486.40.2020호, 제8486.40.2039호, 제8486.40.2040호, 제8486.40.2050호, 제8486.40.2092호, 제8486.40.2093호, 제8486.40.2099호의 것	Cat 0	0	
8487100000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 (blade)	Cat 0	0	
8487901000	제87류 차량용	Cat 0	0	
8487909010	오일 실링	Cat 0	0	
8487909090	기타	Cat 0	0	
8501101000	직류 전동기	Cat 0	0	
8501102000	교류 전동기	Cat 0	0	
8501103000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	Cat 0	0	
8501201000	출력이 37.5와트 초과 100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012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01203000	출력이 750와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131101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01311090	기타	Cat 0	0	
8501312000	직류 발전기	Cat 0	0	
8501321000	직류 전동기	Cat 0	0	
8501322000	직류 발전기	Cat 0	0	
8501331000	직류 전동기	Cat 0	0	
8501332000	직류 발전기	Cat 0	0	
8501341000	직류 전동기	Cat 0	0	
8501342000	직류 발전기	Cat 0	0	
8501401000	출력이 100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01402000	출력이 100와트 초과 750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01403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01404000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1510000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01520000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01531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01532000	출력이 375킬로와트 초과 1,500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01534000	출력이 1,5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161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161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162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163100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Cat 0	0	
8501639000	기타	Cat 0	0	
8501640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2111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112000	출력이 750볼트암페어 초과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120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131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Cat 0	0	
8502131090	기타	Cat 0	0	
8502132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134000	출력이 3,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220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20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203010	400킬로와트에 상응하는 출력 이상인 것	Cat 0	0	
8502203090	기타	Cat 0	0	
850220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231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31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31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2391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392000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393000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394000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2400000	회전변환기	Cat 0	0	
8503001000	전동기의 것	Cat 0	0	
8503002010	풍력발전기용	Cat 0	0	
8503002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503003000	회전변환기의 것	Cat 0	0	
8504101010	전류가 1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101020	전류가 1암페어 초과 20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102000	전류가 20암페어 초과 60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103000	전류가 60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4211000	계기용 변압기	Cat 0	0	
850421901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21902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221000	계기용 변압기	Cat 0	0	
8504229010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229020	용량이 1,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229030	용량이 5,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230000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4311000	계기용 변압기	Cat 0	0	
8504312000	전압 조정기	Cat 0	0	
850431901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319020	용량이 100볼트암페어 초과 500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319040	용량이 500볼트암페어 초과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321000	계기용 변압기	Cat 0	0	
8504322000	전압 조정기	Cat 0	0	
8504329010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329020	용량이 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331000	계기용 변압기	Cat 0	0	
8504332000	전압 조정기	Cat 0	0	
8504339010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339020	용량이 3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339040	용량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341000	계기용 변압기	Cat 0	0	
8504342000	전압 조정기	Cat 0	0	
8504349010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2,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349030	용량이 2,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44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Cat 0	0	
8504401090	기타	Cat 0	0	
850440201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Cat 0	0	
8504402019	기타	Cat 0	0	
850440209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Cat 0	0	
8504402099	기타	Cat 0	0	
8504403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Cat 0	0	
8504403090	기타	Cat 0	0	
8504404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Cat 0	0	
8504404090	기타	Cat 0	0	
8504405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Cat 0	0	
8504405090	기타	Cat 0	0	
8504409011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504409019	기타	Cat 0	0	
8504409091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Cat 0	0	
8504409099	기타	Cat 0	0	
8504501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Cat 0	0	
8504501090	기타	Cat 0	0	
8504502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Cat 0	0	
8504502090	기타	Cat 0	0	
8504509010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제8471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제8528.42호, 제8528.52호, 제8528.62호)의 것 및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	Cat 0	0	
8504509090	기타	Cat 0	0	
8504901000	인쇄회로조립품(조립 제8504.40호 · 제8504.50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 그 단위 기기와 전기통신용 기기의 것으로서 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함)	Cat 0	0	
8504909000	기타	Cat 0	0	
8505111000	알니코(alnico)의 것	Cat 0	0	
8505119000	기타	Cat 0	0	
8505191000	산화철의 것	Cat 0	0	
8505199000	기타	Cat 0	0	
8505200000	전자석 커플링(coupling) · 클러치 · 브레이크	Cat 0	0	
8505901010	자기공명 촬영기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제9018호의 전자석은 제외한다)	Cat 0	0	
8505901090	기타	Cat 0	0	
8505902000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의 척(chuck) · 클램프 · 바이스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Cat 0	0	
8505903000	전자석 리프팅 헤드(lifting head)	Cat 0	0	
8505909000	부분품	Cat 0	0	
8506101000	망간건전지	Cat 0	5	
8506102000	알칼리망간건전지	Cat 0	5	
8506109000	기타	Cat 0	0	
8506300000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Cat 0	0	
8506400000	산화은으로 만든 것	Cat 0	0	
8506500000	리튬으로 만든 것	Cat 0	0	
8506600000	에어징크로 만든 것	Cat 0	0	
8506801000	산화아연으로 만든 것	Cat 0	0	
8506809000	기타	Cat 0	0	
8506900000	부분품	Cat 0	0	
8507100000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Cat 0	0	
8507200000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Cat 0	0	
8507300000	니켈-카드뮴 축전지	Cat 0	0	
8507400000	니켈-철 축전지	Cat 0	0	
8507500000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Cat 0	0	
8507601000	리튬폴리머 축전지	Cat 0	0	
8507609000	기타	Cat 0	0	
8507800000	그 밖의 축전지	Cat 0	0	
8507901000	격리판	Cat 0	0	
8507909000	기타	Cat 0	0	
8508111000	로봇트형	Cat 0	0	
8508119000	기타	Cat 0	0	
8508192000	로봇트형	Cat 0	0	
8508199000	기타	Cat 0	0	
8508600000	그 밖의 진공청소기	Cat 0	0	
8508701000	제8508.11.9000호의 것	Cat 0	0	
8508702000	제8508.19.9000호, 제8508.60.0000호의 것	Cat 0	0	
8508703000	제8508.11.1000호, 제8508.19.2000호의 것	Cat 0	0	
8509400000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 채소즙 추출기	Cat 0	0	
8509801000	커피분쇄기	Cat 0	0	
8509802000	얼음분쇄기	Cat 0	0	
8509803000	바닥광택기	Cat 0	0	
8509804000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Cat 0	0	
8509809000	기타	Cat 0	0	
8509900000	부분품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510100000	면도기	Cat 0	0	
8510200000	이발기	Cat 0	0	
8510300000	모발제거기	Cat 0	0	
8510901000	면도기의 것	Cat 0	0	
8510902000	이발기의 것	Cat 0	0	
8510903000	모발제거기의 것	Cat 0	0	
8511101000	항공기용	Cat 0	0	
8511109000	기타	Cat 0	0	
8511201000	항공기용	Cat 0	0	
8511209000	기타	Cat 0	0	
8511301000	항공기용	Cat 0	0	
8511309000	기타	Cat 0	0	
8511401000	항공기용	Cat 0	0	
8511409000	기타	Cat 0	0	
8511501000	항공기용	Cat 0	0	
8511509000	기타	Cat 0	0	
8511801000	항공기용	Cat 0	0	
8511809000	기타	Cat 0	0	
8511901000	항공기용	Cat 0	0	
8511909000	기타	Cat 0	0	
8512101000	발광다이오드(LED)의 것	Cat 0	0	
8512109000	기타	Cat 0	0	
8512201010	발광다이오드(LED)의 것	Cat 0	0	
8512201090	기타	Cat 0	0	
8512202010	발광다이오드(LED)의 것	Cat 0	0	
8512202090	기타	Cat 0	0	
8512300000	음향신호용 기구	Cat 5	8	
8512400000	윈드스크린 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 상기(defroster) · 제무기(demister)	Cat 0	0	
8512900000	부분품	Cat 0	0	
8513101000	광산용 안전등	Cat 0	0	
8513102010	발광다이오드(LED)의 것	Cat 0	0	
8513102090	기타	Cat 0	0	
8513109010	발광다이오드(LED)의 것	Cat 0	0	
8513109090	기타	Cat 0	0	
8513900000	부분품	Cat 0	0	
8514101000	실험실용	Cat 0	0	
8514102000	금속공업용	Cat 0	0	
8514103000	식품공업용	Cat 0	0	
8514109000	기타	Cat 0	0	
8514201000	실험실용	Cat 0	0	
8514202000	금속공업용	Cat 0	0	
8514203000	식품공업용	Cat 0	0	
8514209000	기타	Cat 0	0	
8514301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	Cat 0	0	
8514309000	기타	Cat 0	0	
851440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8514409000	기타	Cat 0	0	
851490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8514902000	인쇄회로나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 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노(爐)와 오븐의 것	Cat 0	0	
8514909000	기타	Cat 0	0	
8515110000	납땜용 인두와 건(gun)	Cat 0	0	
8515191000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침적 납땜용(wave soldering) 기 계	Cat 0	0	
8515199000	기타	Cat 0	0	
8515211010	로봇트형	Cat 0	0	
8515211090	기타	Cat 0	0	
8515212010	로봇트형	Cat 0	0	
8515212090	기타	Cat 0	0	
8515213010	로봇트형	Cat 0	0	
8515213090	기타	Cat 0	0	
8515219010	로봇트형	Cat 0	0	
8515219090	기타	Cat 0	0	
8515291000	점 용접기기	Cat 0	0	
8515292000	불합 용접기기	Cat 0	0	
8515293000	바트 용접기기	Cat 0	0	
8515299000	기타	Cat 0	0	
8515311010	로봇트형	Cat 0	0	
8515311090	기타	Cat 0	0	
8515319010	로봇트형	Cat 0	0	
8515319090	기타	Cat 0	0	
8515391000	교류아크 용접기기	Cat 0	0	
851539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515801000	초음파 응용기기	Cat 0	0	
8515802000	전자방출 기기	Cat 0	0	
8515803000	레이저 작동식 기기	Cat 0	0	
8515809000	기타	Cat 0	0	
8515901010	레이저 작동식의 것	Cat 0	0	
8515901090	기타	Cat 0	0	
8515902000	인쇄회로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침적 납땜용(wave soldering) 기기의 것	Cat 0	0	
8515909000	기타	Cat 0	0	
8516100000	전기식의 즉시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Cat 0	0	
8516210000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Cat 0	0	
8516290000	기타	Cat 0	0	
8516310000	헤어드라이어	Cat 0	0	
8516320000	그 밖의 이용기기	Cat 0	0	
8516330000	손 건조기	Cat 0	0	
8516400000	전기다리미	Cat 0	0	
8516500000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Cat 0	0	
8516601000	전기오븐	Cat 0	0	
8516602000	전기밥솥(보온기능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Cat 0	0	
8516609000	기타	Cat 0	0	
8516710000	커피·차를 끓이는 기기	Cat 0	0	
8516720000	토스터	Cat 0	0	
8516791000	전기보온밥통	Cat 0	0	
8516799000	기타	Cat 0	0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Cat 0	0	
8516900000	부품품	Cat 0	0	
8517110000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7121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Cat 0	0	
8517121090	기타	Cat 0	0	
8517122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Cat 0	0	
8517122090	기타	Cat 0	0	
8517123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Cat 0	0	
8517123090	기타	Cat 0	0	
8517124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Cat 0	0	
8517124090	기타	Cat 0	0	
8517129010	디지털 방송수신이 가능한 것	Cat 0	0	
8517129090	기타	Cat 0	0	
8517181000	푸쉬 버튼식 전화기	Cat 0	0	
8517189000	기타	Cat 0	0	
8517611000	기지국용 송수신기	Cat 0	0	
8517619000	기타	Cat 0	0	
8517621000	텔레프린터	Cat 0	0	
8517622010	기간통신사업용 교환기	Cat 0	0	
8517622020	사설통신용 교환기	Cat 0	0	
8517622090	기타	Cat 0	0	
8517623110	단국장치	Cat 0	0	
8517623120	중계장치	Cat 0	0	
8517623190	기타	Cat 0	0	
8517623210	단국장치	Cat 0	0	
8517623220	중계장치	Cat 0	0	
8517623290	기타	Cat 0	0	
8517623310	광중계장치	Cat 0	0	
8517623320	광단국장치	Cat 0	0	
8517623390	기타	Cat 0	0	
8517623410	에이/디(A/D), 디/에이(D/A)변환기	Cat 0	0	
8517623420	코덱	Cat 0	0	
8517623430	모뎀(모뎀카드를 포함한다)	Cat 0	0	
8517623490	기타	Cat 0	0	
8517623510	아날로그 신호전송 방식	Cat 0	0	
8517623520	디지털 신호전송 방식	Cat 0	0	
8517623590	기타	Cat 0	0	
8517623900	기타	Cat 0	0	
8517624010	키-폰	Cat 0	0	
8517624020	영상전송기기	Cat 0	0	
8517624090	기타	Cat 0	0	
851762500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	Cat 0	0	
8517626020	영상전송기기	Cat 0	0	
8517626031	웍키토키 세트	Cat 0	0	
8517626039	기타	Cat 0	0	
8517626050	무선통신용 교환기	Cat 0	0	
8517626060	무선통신용 중계기	Cat 0	0	
8517626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51762700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Cat 0	0	
8517629000	기타	Cat 0	0	
8517691100	장중단파 수신기	Cat 0	0	
8517691211	휴대용 무선호출기	Cat 0	0	
8517691219	기타	Cat 0	0	
8517691290	기타	Cat 0	0	
8517691900	기타	Cat 0	0	
8517692000	영상전화기	Cat 0	0	
8517699000	기타	Cat 0	0	
8517701010	유선전화기의 것	Cat 0	0	
8517701021	키패드	Cat 0	0	
8517701022	프레임	Cat 0	0	
8517701023	디스플레이 모듈	Cat 0	0	
8517701029	기타	Cat 0	0	
8517701090	기타	Cat 0	0	
8517702000	소호 제8517.61호의 것	Cat 0	0	
8517703010	텔레프린터의 것	Cat 0	0	
8517703021	기관통신사업용 교환기의 것	Cat 0	0	
8517703022	시설통신용 교환기의 것	Cat 0	0	
8517703029	기타	Cat 0	0	
8517703031	동축케이블 반송장치의 것	Cat 0	0	
8517703032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것	Cat 0	0	
8517703039	기타	Cat 0	0	
8517703041	영상전송기기의 것	Cat 0	0	
8517703049	기타	Cat 0	0	
851770305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송신기기의 것	Cat 0	0	
8517703061	디스플레이 모듈	Cat 0	0	
8517703069	기타	Cat 0	0	
8517703070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기기의 것	Cat 0	0	
8517703090	기타	Cat 0	0	
8517704011	호출용·경보용·페이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의 것	Cat 0	0	
8517704019	기타	Cat 0	0	
8517704020	영상전화기의 것	Cat 0	0	
8517704090	기타	Cat 0	0	
8518101000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8109010	무선 마이크로폰(무선 마이크로폰 세트를 포함한다)	Cat 0	0	
8518109090	기타	Cat 0	0	
8518210000	단일형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8220000	복합형 확성기[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8291000	전기통신용의 것(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킬로헤르츠까지이며, 하우징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8299000	기타	Cat 0	0	
8518304000	유선전화 핸드세트	Cat 0	0	
8518309000	기타	Cat 0	0	
8518400000	가청주파증폭기	Cat 0	0	
8518500000	음향증폭세트	Cat 0	0	
8518901000	인쇄회로조립품(제8518.10.1000호·제8518.29.1000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8909000	기타	Cat 0	0	
8519201000	코인이나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9209000	기타(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9301000	레코드판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것	Cat 0	0	
8519309000	기타	Cat 0	0	
8519500000	전화응답기	Cat 0	0	
8519811000	트랜스크라이빙 머신(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9812100	카세트 플레이어(제85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9812210	자동차음	Cat 0	0	
8519812220	휴대용(제85류 소호주 제1호에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Cat 0	0	
85198122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519812310	자동차용	Cat 0	0	
8519812320	휴대용	Cat 0	0	
8519812390	기타	Cat 0	0	
8519812900	기타	Cat 0	0	
8519813000	딕테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9814111	자동차용	Cat 0	0	
8519814112	휴대용	Cat 0	0	
8519814119	기타	Cat 0	0	
8519814190	기타	Cat 0	0	
8519814200	기타(카세트형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9814300	기타	Cat 0	0	
8519815020	디스크형	Cat 0	0	
8519815030	카세트형	Cat 0	0	
8519815090	기타	Cat 0	0	
851981900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 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8519891000	그 밖의 레코드 플레이어(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9893000	데크(음성재생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8519899010	그 밖의 음성재생기(음성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9899020	그 밖의 음성기록기(음성재생기를 갖춘 것 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8521100000	마그네틱 테이프형	Cat 0	0	
8521901000	디스크형	Cat 0	0	
8521909000	기타	Cat 0	0	
8522100000	픽업 카트리지	Cat 0	0	
8522901020	비디오 녹화용	Cat 0	0	
8522901090	기타	Cat 0	0	
8522902000	레이저 픽업	Cat 0	0	
8522909010	전화응답기용 평판 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8522909020	전화응답기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22909090	기타	Cat 0	0	
8523210000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기록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8523291110	폭이 4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523291120	폭이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523291130	폭이 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23291200	마그네틱 디스크	Cat 0	0	
8523291900	기타	Cat 0	0	
85232921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Cat 0	0	
8523292119	기타	Cat 0	0	
852329212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Cat 0	0	
8523292129	기타	Cat 0	0	
852329213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Cat 0	0	
8523292139	기타	Cat 0	0	
8523292210	폭이 4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523292220	폭이 4밀리미터 초과 6.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523292231	비디오 녹화된 것	Cat 0	0	
8523292239	기타	Cat 0	0	
85232929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Cat 0	0	
8523292919	기타	Cat 0	0	
8523292991	비디오 녹화된 것	Cat 0	0	
8523292992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차자료처리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23292999	기타	Cat 0	0	
8523410000	기록이 안 된 것	Cat 0	0	
85234910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Cat 0	0	
8523491019	기타	Cat 0	0	
8523491020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Cat 0	0	
8523491031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차자료처리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23491039	기타	Cat 0	0	
8523499011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Cat 0	0	
8523499019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523499091	비디오 녹화된 것	Cat 0	0	
8523499092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23499099	기타	Cat 0	0	
852351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Cat 0	0	
852351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Cat 0	0	
8523512190	기타	Cat 0	0	
8523512920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23512990	기타	Cat 0	0	
8523521000	한 개의 전자집적회로를 갖춘 것과 그 부분품	Cat 0	0	
8523529000	기타와 그 부분품	Cat 0	0	
852359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Cat 0	0	
85235921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Cat 0	0	
8523592190	기타	Cat 0	0	
8523592920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23592990	기타	Cat 0	0	
8523593000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와 태그	Cat 0	0	
8523801000	기록이 안 된 매체	Cat 0	0	
8523802100	축음기용 레코드판	Cat 0	0	
8523802210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수록한 것	Cat 0	0	
8523802290	기타	Cat 0	0	
8523802920	명령·데이터·음성·영상을 재생하는 것 (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23802990	기타	Cat 0	0	
8525501000	라디오 방송용	Cat 0	0	
8525502000	텔레비전용	Cat 0	0	
8525509000	기타	Cat 0	0	
8525601000	라디오 방송용	Cat 0	0	
8525602000	텔레비전용	Cat 0	0	
8525609000	기타	Cat 0	0	
8525801010	녹화기용	Cat 0	0	
8525801020	모니터용	Cat 0	0	
8525801090	기타	Cat 0	0	
8525802010	정지화상비디오카메라	Cat 0	0	
8525802090	기타	Cat 0	0	
8525803000	비디오카메라레코더	Cat 0	0	
8526101000	항공기용	Cat 0	0	
8526109000	기타	Cat 0	0	
8526911010	항공기용	Cat 0	0	
8526911090	기타	Cat 0	0	
8526912010	항공기용	Cat 0	0	
8526912090	기타	Cat 0	0	
8526913010	항공기용	Cat 0	0	
8526913020	자동차용	Cat 0	0	
8526913090	기타	Cat 0	0	
8526914000	로란 리시버	Cat 0	0	
8526919010	항공기용	Cat 0	0	
8526919020	자동차용	Cat 0	0	
8526919090	기타	Cat 0	0	
8526920000	무선원격조절기기	Cat 0	0	
8527120000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Cat 0	0	
8527131000	카세트형	Cat 0	0	
8527132000	디스크형	Cat 0	0	
852713300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Cat 0	0	
8527139000	기타	Cat 0	0	
8527190000	기타	Cat 0	0	
8527211000	카세트형	Cat 0	0	
8527212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Cat 0	0	
8527212090	기타	Cat 0	0	
8527213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Cat 0	0	
8527213090	기타	Cat 0	0	
8527219010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527219090	기타	Cat 0	0	
8527290000	기타	Cat 0	0	
8527911010	카세트형	Cat 0	0	
8527911020	디스크형	Cat 0	0	
8527911030	카세트형과 디스크형의 결합기기	Cat 0	0	
8527911090	기타	Cat 0	0	
8527919000	기타	Cat 0	0	
8527920000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나 재생기 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Cat 0	0	
8527990000	기타	Cat 0	0	
852842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에 사용하도 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Cat 0	0	
852849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Cat 0	0	
8528491090	기타	Cat 0	0	
852849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Cat 0	0	
8528492090	기타	Cat 0	0	
8528521000	액정모니터	Cat 0	0	
8528529000	기타	Cat 0	0	
8528591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Cat 0	0	
8528591090	기타	Cat 0	0	
8528592010	의료용으로 특수 제작된 것	Cat 0	0	
8528592090	기타	Cat 0	0	
8528620000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에 사용하도 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Cat 0	0	
8528690000	기타	Cat 0	0	
8528711000	비디오 튜너	Cat 0	0	
8528712020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기능을 갖춘 것	Cat 0	0	
8528712090	기타	Cat 0	0	
8528719000	기타	Cat 0	0	
8528721010	아날로그의 것	Cat 0	0	
8528721020	디지털의 것	Cat 0	0	
8528722010	아날로그의 것	Cat 0	0	
8528722020	디지털의 것	Cat 0	0	
8528723010	아날로그의 것	Cat 0	0	
8528723020	디지털의 것	Cat 0	0	
8528724010	아날로그의 것	Cat 0	0	
8528724020	디지털의 것	Cat 0	0	
8528725010	아날로그의 것	Cat 0	0	
8528725020	디지털의 것	Cat 0	0	
8528729000	기타	Cat 0	0	
8528732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 이가 45.72센티미터 미만인 것	Cat 0	0	
8528733000	수상기의 형광면을 대각선으로 측정한 길 이가 45.72 센티미터 이상인 것	Cat 0	0	
8528739000	기타	Cat 0	0	
8529101000	레이더기기용	Cat 0	0	
8529109100	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용	Cat 0	0	
8529109210	위성방송 수신용	Cat 0	0	
8529109290	기타	Cat 0	0	
8529109300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 기기의 것	Cat 0	0	
8529109900	기타	Cat 0	0	
8529901000	레이더기기의 것	Cat 0	0	
8529909100	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격조절기의 것	Cat 0	0	
8529909200	라디오 방송용·텔레비전용 송신기의 것	Cat 0	0	
8529909400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의 것	Cat 0	0	
8529909500	텔레비전 카메라의 것	Cat 0	0	
8529909610	천연색 튜너	Cat 0	0	
8529909620	흑백이나 단색 튜너	Cat 0	0	
8529909630	영상투사기용 스크린	Cat 0	0	
8529909641	플라즈마 디스플레이 패널 방식용	Cat 0	0	
8529909642	액정 디스플레이 방식용	Cat 0	0	
8529909643	유기발광 디스플레이 방식용	Cat 0	0	
8529909649	기타	Cat 0	0	
8529909650	그 밖의 흑백이나 단색용	Cat 0	0	
8529909910	수신기기가 결합된 송신기기, 디지털카메 라용(디지털정지화상 비디오카메라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8529909921	디스플레이 모듈	Cat 0	0	
8529909929	기타	Cat 0	0	
8529909990	기타	Cat 0	0	
8530101010	자상장치용	Cat 0	0	
8530101090	기타	Cat 0	0	
8530109000	기타	Cat 0	0	
8530800000	그 밖의 기기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530900000	부분품	Cat 0	0	
8531101000	도난경보기	Cat 0	0	
8531102000	화재경보기	Cat 0	0	
8531103000	가스경보기	Cat 0	0	
8531104000	전기식의 벨	Cat 0	0	
8531105000	사이렌	Cat 0	0	
8531109000	그 밖의 신호기기	Cat 0	0	
8531201000	액정 디바이스(엘시디)가 결합된 표시반	Cat 0	0	
8531202000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Cat 0	0	
8531802000	도어벨 · 차임 · 버저와 이와 유사한 기기	Cat 0	0	
8531809000	기타	Cat 0	0	
8531901000	소호 제8531.10호의 것	Cat 0	0	
8531902000	소호 제8531.20호의 것	Cat 0	0	
8531909000	기타	Cat 0	0	
8532100000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킬로바트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Cat 0	0	
8532210000	탄탈륨의 것	Cat 0	0	
8532220000	알루미늄 전해의 것	Cat 0	0	
853223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축)	Cat 0	0	
8532240000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축)	Cat 0	0	
8532250000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Cat 0	0	
8532290000	기타	Cat 0	0	
8532301000	폴리에틸렌 가변식 축전기	Cat 0	0	
8532309000	기타	Cat 0	0	
8532901000	고정식	Cat 0	0	
8532902000	가변식	Cat 0	0	
8532909000	기타	Cat 0	0	
8533100000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컴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33212000	서미스터	Cat 0	0	
8533219000	기타	Cat 0	0	
8533292000	서미스터	Cat 0	0	
8533299000	기타	Cat 0	0	
8533310000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33390000	기타	Cat 0	0	
8533401000	탄소가변의 것	Cat 0	0	
8533403000	바리스터	Cat 0	0	
8533409000	기타	Cat 0	0	
8533901000	가변식 저항기의 것	Cat 0	0	
8533909000	그 밖의 것	Cat 0	0	
8534001000	수동소자 부분[인덕턴스(inductance), 저항기, 축전기 등]이 형성된 것	Cat 0	0	
8534002000	테이프형이나 리드프레임(lead frame) 기능을 하는 회로가 형성된 것	Cat 0	0	
8534009000	기타	Cat 0	0	
8535100000	퓨즈	Cat 0	0	
853521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Cat 0	0	
853521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Cat 0	0	
8535291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미만인 것	Cat 0	0	
8535292000	정격전압이 200킬로볼트 이상인 것	Cat 0	0	
8535301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Cat 0	0	
8535302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Cat 0	0	
8535303000	정격전압이 72.5킬로볼트 이상인 것	Cat 0	0	
8535400000	피뢰기 · 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Cat 0	0	
8535901000	커넥터	Cat 0	0	
8535902000	터미널	Cat 0	0	
8535909000	기타	Cat 0	0	
8536101000	관형	Cat 0	0	
8536109000	기타	Cat 0	0	
8536200000	자동차단기	Cat 0	0	
8536300000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Cat 0	0	
8536410000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Cat 0	0	
8536490000	기타	Cat 0	0	
8536501000	회전형	Cat 0	0	
8536502000	푸쉬 버튼형	Cat 0	0	
8536503000	마이크로형	Cat 0	0	
8536504000	전자개폐형(전자접속기를 포함한다)	Cat 0	0	
8536509010	전기기계식의 스냅동작방식의 것(11암페어 이하로 한정한다)	Cat 0	0	
8536509020	교류(AC)방식의 것(입출력 회로가 광학적으로 짝지워진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536509030	온도보호용의 것(1,000볼트 이하의 전압용으로 트랜지스터와 논리칩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36509090	기타	Cat 0	0	
8536610000	램프홀더	Cat 0	0	
8536691000	동축케이블 · 인쇄회로용의 것	Cat 0	0	
8536699000	기타	Cat 0	0	
85367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8536702000	실험실용 · 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의 것	Cat 0	0	
8536703010	주조 · 주형 · 압착 · 단조(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36703090	기타	Cat 0	0	
8536901000	접속함	Cat 0	0	
8536902000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또는 제8711호의 자동차용 배터리 클램프(battery clamp)	Cat 0	0	
8536909010	선이나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Cat 0	0	
8536909090	기타	Cat 0	0	
8537101000	배전반	Cat 0	0	
8537102010	수치 제어반	Cat 0	0	
8537102020	프로그램이 가능한 제어기	Cat 0	0	
8537102090	기타	Cat 0	0	
8537109000	기타	Cat 0	0	
8537201000	배전반	Cat 0	0	
8537202000	제어반	Cat 0	0	
8537209000	기타	Cat 0	0	
8538100000	보드 · 패널 · 콘솔 · 책상 · 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Cat 0	0	
8538901000	개폐기의 것	Cat 0	0	
8538902000	자동차단기의 것	Cat 0	0	
8538903000	계전기기의 것	Cat 0	0	
8538904000	제어반의 것	Cat 0	0	
8538909000	기타	Cat 0	0	
8539100000	열선형 램프 튜브(sealed beam lamp tube)	Cat 0	0	
8539210000	튠스텐 할로겐의 것	Cat 0	0	
8539221000	백열램프	Cat 0	0	
8539222000	장식용 램프	Cat 0	0	
8539223000	빔 램프	Cat 0	0	
8539224000	집어(集魚)용 램프	Cat 0	0	
8539229000	기타	Cat 0	0	
8539290000	기타	Cat 0	0	
8539310000	황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39321000	수은램프	Cat 0	0	
8539322000	나트륨 증기 램프	Cat 0	0	
8539323000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램프	Cat 0	0	
8539391010	평판디스플레이의 후면광원(backlighting)용	Cat 0	0	
8539391090	기타	Cat 0	0	
8539399000	기타	Cat 0	0	
8539410000	아크램프	Cat 0	0	
8539491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Cat 0	0	
8539491090	기타	Cat 0	0	
8539492000	적외선 램프	Cat 0	0	
8539500000	발광다이오드(LED)램프	Cat 0	0	
85399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Cat 0	0	
8539902000	방전램프의 것	Cat 0	0	
8539909000	기타	Cat 0	0	
8540110000	천연색	Cat 0	0	
8540120000	단색	Cat 0	0	
8540200000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Cat 0	0	
8540400000	데이터/그래픽 표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표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0601000	천연색	Cat 0	0	
8540609000	기타	Cat 0	0	
8540710000	자전관(magnetron)	Cat 0	0	
8540791000	속도변조관(klystron)	Cat 0	0	
8540799000	기타	Cat 0	0	
8540810000	수신관이나 증폭관	Cat 0	0	
8540891000	송신기용 열전자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540892000	발전관	Cat 0	0	
8540899000	기타	Cat 0	0	
8540911000	디플렉션 코일	Cat 0	0	
8540912000	전자총	Cat 0	0	
8540913000	새도우마스크	Cat 0	0	
8540919000	기타	Cat 0	0	
8540990000	기타	Cat 0	0	
85411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Cat 0	0	
8541109000	기타	Cat 0	0	
854121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Cat 0	0	
8541219000	기타	Cat 0	0	
854129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Cat 0	0	
8541299000	기타	Cat 0	0	
85413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Cat 0	0	
8541302000	사이리스터(thyristor)	Cat 0	0	
8541303000	다이액(diac)	Cat 0	0	
8541304000	트라이액(triac)	Cat 0	0	
85414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Cat 0	0	
8541402010	레이저소자	Cat 0	0	
8541402090	기타	Cat 0	0	
8541409010	광전도 셀	Cat 0	0	
8541409021	태양전지	Cat 0	0	
8541409022	태양광모듈(태양전지가 모듈 또는 패널로 조립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8541409029	기타	Cat 0	0	
8541409030	전하결합소자	Cat 0	0	
8541409090	기타	Cat 0	0	
8541501000	칩, 다이스와 절단되지 않은 웨이퍼	Cat 0	0	
8541502000	정류소자	Cat 0	0	
8541509000	기타	Cat 0	0	
8541601000	수정진동자	Cat 0	0	
8541609000	기타	Cat 0	0	
8541902000	다이오드의 것	Cat 0	0	
8541903000	트랜지스터의 것	Cat 0	0	
8541909000	기타	Cat 0	0	
854231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Cat 0	0	
854231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Cat 0	0	
8542313000	복합구조집 집적회로	Cat 0	0	
8542314010	제9301호·제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314020	제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231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것	Cat 0	0	
8542314040	제8528.42호·제8528.52호·제8528.62 호·제8531.2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 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314050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것(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2314060	제8425호·제8426호·제8428호·제 8429호·제8430호·제8443.99호·제 8470호·제8471호·제8472호·제9026 호·제9030호·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 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314090	기타	Cat 0	0	
8542321010	디램	Cat 0	0	
8542321020	에스램	Cat 0	0	
8542321030	플래시 메모리	Cat 0	0	
8542321090	기타	Cat 0	0	
854232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Cat 0	0	
8542323000	복합구조집 집적회로	Cat 0	0	
8542324010	제9301호·제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324020	제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232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것	Cat 0	0	
8542324040	제8528.42호·제8528.52호·제8528.62 호·제8531.2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 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324050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 되는 것(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542324060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제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324090	기타	Cat 0	0	
854233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Cat 0	0	
854233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Cat 0	0	
8542333000	복합구조집 집적회로	Cat 0	0	
8542334010	제9301호 · 제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334020	제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233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334040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8531.2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334050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2334060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제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334090	기타	Cat 0	0	
854239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	Cat 0	0	
854239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Cat 0	0	
8542393000	복합구조집 집적회로	Cat 0	0	
8542394010	제9301호 · 제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394020	제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239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394040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8531.2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394050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2394060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제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394090	기타	Cat 0	0	
8542901000	모노리식(monolithic) 집적회로의 것	Cat 0	0	
8542902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의 것	Cat 0	0	
8542903000	복합구조집 집적회로의 것	Cat 0	0	
8542904010	제9301호 · 제9306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904020	제9032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항공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2904030	제8517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904040	제8528.42호 · 제8528.52호 · 제8528.62호 · 제8531.20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904050	제903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반도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2904060	제8425호 · 제8426호 · 제8428호 · 제8429호 · 제8430호 · 제8443.99호 · 제8470호 · 제8471호 · 제8472호 · 제9026호 · 제9030호 · 제9504호의 기계 또는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42904090	기타	Cat 0	0	
8543100000	입자가속기	Cat 0	0	
8543200000	신호발생기	Cat 0	0	
8543301000	인쇄회로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전기영동용은 제외한다)	Cat 0	0	
8543309000	기타	Cat 0	0	
8543701000	일렉트릭 펜스 에너지아저	Cat 0	0	
8543702010	이온정수기	Cat 0	0	
8543702020	미용기기	Cat 0	0	
8543702030	오디오믹서	Cat 0	0	
8543702040	이퀄라이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543702050	오존 발생기	Cat 0	0	
8543702090	기타	Cat 0	0	
8543703000	전자변역기·전자사전	Cat 0	0	
8543704010	니코틴 용액을 포함한 것	Cat 0	0	
8543704090	기타	Cat 0	0	
8543705000	유선전신용·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전신용·유선전화용 통신망 연결용 제품	Cat 0	0	
8543709010	고주파증폭기	Cat 0	0	
8543709020	디렉터(광센서를 포함한다)	Cat 0	0	
8543709040	비디오게임 콘솔용 무선 적외선 원격조절 장치	Cat 0	0	
8543709050	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Cat 0	0	
8543709060	휴대용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 리더기(문자, 정지화상 또는 음성파일의 기록 및 재생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3709070	디지털신호처리기(사운드 믹싱을 위해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 연결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3709090	기타	Cat 0	0	
8543901000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Cat 0	0	
8543909011	유기발광다이오드(오엘이디)	Cat 0	0	
8543909019	기타	Cat 0	0	
8543909020	전자변역기·전자사전용 인쇄회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3909090	기타	Cat 0	0	
8544111000	절연도료 피복전선	Cat 0	0	
8544119000	기타	Cat 0	0	
8544190000	기타	Cat 0	0	
8544200000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Cat 0	0	
8544300000	정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선박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4421010	전기통신용	Cat 0	0	
8544421090	기타	Cat 0	0	
8544422010	전기통신용	Cat 0	0	
8544422090	기타	Cat 0	0	
8544429010	전기통신용	Cat 0	0	
8544429090	기타	Cat 0	0/5	
8544491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Cat 0	0	
8544491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Cat 0	0	
8544491090	기타	Cat 0	0	
8544492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Cat 0	0	
8544492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Cat 0	0	
8544492090	기타	Cat 0	0	
8544499011	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	Cat 0	0	
8544499012	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	Cat 10	0/5	
8544499090	기타	Cat 10	0/5	
8544601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Cat 0	0	
8544601090	기타	Cat 0	0	
8544602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Cat 0	0	
8544602090	기타	Cat 0	0	
8544603010	플라스틱 절연전선	Cat 0	5	
8544603090	기타	Cat 0	0	
8544700000	광섬유 케이블	Cat 0	0	
8545110000	노(爐)용	Cat 0	0	
8545190000	기타	Cat 0	0	
8545200000	브러시	Cat 0	0	
8545901000	탄소봉	Cat 0	0	
8545909000	기타	Cat 0	0	
8546100000	유리로 만든 것	Cat 0	0	
8546200000	도자제의 것	Cat 0	0	
854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애자	Cat 0	0	
8546909000	기타	Cat 0	0	
8547100000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Cat 0	0	
854720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Cat 0	0	
8547900000	기타	Cat 0	0	
8548101000	소호 제3824.84호부터 제3824.88호까지, 제3824.91호, 제3824.99호의 것	Cat 0	0	
8548102000	소호 제7204.21호, 제7204.29호, 제7204.30호, 제7204.49호의 것	Cat 0	0	
8548103000	소호 제7404.00호의 것	Cat 0	0	
8548104000	소호 제7503.00호, 제7902.00호의 것	Cat 0	0	
8548105000	소호 제7802.00호의 것	Cat 0	0	
8548106000	소호 제8107.30호, 제8111.00호의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548107000	소호 제8506.10호, 제8506.30호, 제8506.40호, 제8506.50호, 제8506.60호, 제8506.80호의 것	Cat 0	0	
8548109000	기타	Cat 0	0	
8548901000	전자 초소형 조립회로	Cat 0	0	
8548902010	유기발광다이오드(LED)의 것	Cat 0	0	
8548902090	기타	Cat 0	0	
8548909000	기타	Cat 0	0	
8601100000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Cat 0	0	
8601200000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Cat 0	0	
8602100000	디젤 전기기관차	Cat 0	0	
8602900000	기타	Cat 0	0	
8603101000	객차	Cat 0	0	
8603102000	화차	Cat 0	0	
8603901000	객차	Cat 0	0	
8603902000	화차	Cat 0	0	
8604004000	궤도검사차	Cat 0	0	
8604009000	기타	Cat 0	0	
8605001000	객차	Cat 0	0	
8605002000	수하물차	Cat 0	0	
8605009000	기타	Cat 0	0	
8606100000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Cat 0	0	
8606300000	자기방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8606910000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Cat 0	0	
8606920000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606990000	기타	Cat 0	0	
8607110000	구동식 bogie(bogie)와 비셀bogie(bissel-bogie)	Cat 0	0	
8607120000	그 밖의 bogie(bogie)와 비셀bogie(bissel-bogie)	Cat 0	0	
8607191000	차축	Cat 0	0	
8607192000	차륜	Cat 0	0	
8607193000	윤축(輪軸)	Cat 0	0	
8607199000	기타	Cat 0	0	
8607210000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Cat 0	0	
8607290000	기타	Cat 0	0	
8607301000	축	Cat 0	0	
8607302000	연결장치	Cat 0	0	
8607303000	완충장치	Cat 0	0	
8607309000	기타	Cat 0	0	
8607910000	기관차용	Cat 0	0	
8607990000	기타	Cat 0	0	
8608001000	철도·궤도선로용 장치물	Cat 0	0	
8608002000	기계식의 신호·안전·교통 관제용 기기	Cat 0	0	
8608009000	부분품	Cat 0	0	
8609001000	액체 운반용	Cat 0	0	
8609002000	압축가스 운반용	Cat 0	0	
8609003000	알루미늄 운반용	Cat 0	0	
8609004000	살아있는 동물 운반용	Cat 0	0	
8609005000	냉동용과 냉장용	Cat 0	0	
8609009000	기타	Cat 0	0	
8701100000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Cat 0	0	
8701201000	신차	Cat 0	0	
8701202000	중고차	Cat 0	0	
8701300000	무한궤도식 트랙터	Cat 0	0	
8701911010	신차	Cat 0	0	
8701911020	중고차	Cat 0	0	
8701912000	농업용 트랙터	Cat 0	0	
8701919000	기타	Cat 0	0	
8701921010	신차	Cat 0	0	
8701921020	중고차	Cat 0	0	
8701922000	농업용 트랙터	Cat 0	0	
8701929000	기타	Cat 0	0	
8701931010	신차	Cat 0	0	
8701931020	중고차	Cat 0	0	
8701932000	농업용 트랙터	Cat 0	0	
8701939000	기타	Cat 0	0	
8701941010	신차	Cat 0	0	
8701941020	중고차	Cat 0	0	
8701942000	농업용 트랙터	Cat 0	0	
8701949000	기타	Cat 0	0	
8701951010	신차	Cat 0	0	
8701951020	중고차	Cat 0	0	
8701952000	농업용 트랙터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701959000	기타	Cat 0	0	
8702101010	신차	Cat 5	10	
8702101020	중고차	Cat 0	10	
8702102010	신차	Cat 5	10	
8702102020	중고차	Cat 0	10	
8702103010	신차	Cat 5	10	
8702103020	중고차	Cat 0	10	
8702201000	신차	Cat 0	10	
8702202000	중고차	Cat 0	10	
8702301000	신차	Cat 0	10	
8702302000	중고차	Cat 0	10	
8702401000	신차	Cat 0	10	
8702402000	중고차	Cat 0	10	
8702901010	신차	Cat 5	10	
8702901020	중고차	Cat 0	10	
8702902010	신차	Cat 0	10	
8702902020	중고차	Cat 0	10	
8702903010	신차	Cat 5	10	
8702903020	중고차	Cat 0	10	
8703101000	설상주행음	Cat 0	0	
8703102000	골프용차	Cat 0	0	
8703109000	기타	Cat 0	0	
8703217000	신차	Cat 5	8	
8703218000	중고차	Cat 0	8	
8703227000	신차	Cat 5	8	
8703228000	중고차	Cat 0	8	
8703231010	신차	Cat 5	8	
8703231020	중고차	Cat 0	8	
8703239010	신차	Cat 5	8	
8703239020	중고차	Cat 0	8	
8703241010	신차	Cat 5	8	
8703241020	중고차	Cat 0	8	
8703249010	신차	Cat 5	8	
8703249020	중고차	Cat 0	8	
8703317000	신차	Cat 5	8	
8703318000	중고차	Cat 0	8	
8703321010	신차	Cat 5	8	
8703321020	중고차	Cat 0	8	
8703329010	신차	Cat 5	8	
8703329020	중고차	Cat 0	8	
8703337000	신차	Cat 5	8	
8703338000	중고차	Cat 0	8	
8703401000	신차	Cat 5	8	
8703402000	중고차	Cat 0	8	
8703501000	신차	Cat 5	8	
8703502000	중고차	Cat 0	8	
8703601000	신차	Cat 5	8	
8703602000	중고차	Cat 0	8	
8703701000	신차	Cat 5	8	
8703702000	중고차	Cat 0	8	
8703801000	신차	Cat 5	8	
8703802000	중고차	Cat 5	8	
8703900000	기타	Cat 0	8	
8704100000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704211010	신차	Cat 5	10	
8704211020	중고차	Cat 0	10	
8704219010	냉동차·냉장차	Cat 0	10	
8704219020	탱크차	Cat 0	10	
8704219090	기타	Cat 0	10	
8704221011	신차	Cat 5	10	
8704221012	중고차	Cat 0	10	
8704221091	신차	Cat 5	10	
8704221092	중고차	Cat 0	10	
8704229010	냉동차·냉장차	Cat 0	10	
8704229020	탱크차	Cat 0	10	
8704229090	기타	Cat 0	10	
8704231010	신차	Cat 5	10	
8704231020	중고차	Cat 0	10	
8704239010	냉동차·냉장차	Cat 0	10	
8704239020	탱크차	Cat 0	10	
8704239090	기타	Cat 0	10	
8704311010	신차	Cat 5	10	
8704311020	중고차	Cat 0	10	
8704319010	냉동차·냉장차	Cat 0	10	
8704319020	탱크차	Cat 0	1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704319090	기타	Cat 0	10	
8704321010	신차	Cat 0	10	
8704321020	중고차	Cat 0	10	
8704329010	냉동차 · 냉장차	Cat 0	10	
8704329020	탱크차	Cat 0	10	
8704329090	기타	Cat 0	10	
8704901010	신차	Cat 0	10	
8704901020	중고차	Cat 0	10	
8704909010	냉동차 · 냉장차	Cat 0	10	
8704909020	탱크차	Cat 0	10	
8704909090	기타	Cat 0	10	
8705101000	신축복식	Cat 0	0	
8705102000	앵글식	Cat 0	0	
8705109000	기타	Cat 0	0	
8705200000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Cat 0	0	
8705300000	소방차	Cat 0	0	
8705400000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Cat 0	0	
8705901010	농업용 살포차	Cat 0	0	
8705901090	기타	Cat 0	0	
8705909010	구난차	Cat 0	0	
8705909020	도로청소차	Cat 0	0	
8705909030	이동공작차	Cat 0	0	
8705909040	이동방송차	Cat 0	0	
8705909050	이동진료차	Cat 0	0	
8705909060	이동통신차와 레이더차	Cat 0	0	
8705909070	제설차	Cat 0	0	
8705909090	기타	Cat 0	0	
8706001000	제8701호의 것	Cat 0	0	
8706002000	제8702호의 것	Cat 0	0	
8706003000	제8703호의 것	Cat 0	0	
8706004000	제8704호의 것	Cat 0	0	
8706005000	제8705호의 것	Cat 0	0	
8707100000	제8703호의 차량용	Cat 0	0	
8707901000	제8701호의 것	Cat 0	0	
8707902000	제8702호의 것	Cat 0	0	
8707903000	제8704호의 것	Cat 0	0	
8707904000	제8705호의 것	Cat 0	0	
8708100000	완충기와 그 부분품	Cat 5	8	
8708210000	안전벨트	Cat 0	8	
8708290000	기타	Cat 5	8	
870830100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Cat 0	8	
8708302000	브레이크 부스터	Cat 5	8	
8708303000	전자 제어식 제동장치	Cat 5	8	
8708309000	기타	Cat 5	8	
8708400000	기어박스과 그 부분품	Cat 5	8	
8708501000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변속장치를 갖 추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부분품	Cat 5	8	
8708502000	비구동 차축과 그 부분품	Cat 5	8	
8708700000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 · 부속품	Cat 5	8	
8708800000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 를 포함한다]	Cat 5	8	
8708910000	발열기와 그 부분품	Cat 5	8	
8708920000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Cat 5	8	
8708930000	클러치와 그 부분품	Cat 5	8	
8708940000	운전대 · 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 · 운전박스과 그 부분품	Cat 5	8	
8708951000	에어백	Cat 0	8	
8708959000	기타	Cat 5	8	
8708991010	제8701호의 것	Cat 0	8	
8708991020	제8702호의 것	Cat 0	8	
8708991030	제8703호의 것	Cat 0	8	
8708991040	제8704호의 것	Cat 0	8	
8708991050	제8705호의 것	Cat 0	8	
8708999000	기타	Cat 5	8	
8709110000	전기석의 것	Cat 0	0	
8709190000	기타	Cat 0	0	
8709900000	부분품	Cat 0	0	
8710001000	전차	Cat 0	0	
8710002000	그 밖의 장갑차량	Cat 0	0	
8710009000	부분품	Cat 0	0	
8711101000	모터사이클	Cat 0	8	
8711102000	모페드	Cat 0	8	
8711109000	기타	Cat 0	8	
8711201000	모터사이클	Cat 0	8	
8711209000	기타	Cat 0	8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711301000	모터사이클	Cat 0	8	
8711309000	기타	Cat 0	8	
8711401000	모터사이클	Cat 0	8	
8711409000	기타	Cat 0	8	
8711501000	모터사이클	Cat 0	0	
8711509000	기타	Cat 0	0	
8711601000	모터사이클	Cat 0	0	
8711609000	기타	Cat 0	0	
8711901000	모터사이클	Cat 0	0	
8711909000	기타	Cat 0	0	
8712001000	경가용	Cat 0	5	
8712009020	삼륜자전거	Cat 0	5	
8712009090	기타	Cat 0	5	
8713100000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713900000	기타	Cat 0	0	
8714101000	안장	Cat 0	8	
8714109000	기타	Cat 0	8	
8714200000	신체장애인을 위한 차량의 것	Cat 0	0	
8714911000	프레임	Cat 0	5	
8714912000	포크	Cat 0	5	
8714919000	이들의 부분품	Cat 0	5	
8714921000	휠 림	Cat 0	5	
8714922000	스포크	Cat 0	5	
8714931000	허브[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Cat 0	5	
8714932000	프리휠(free-wheel) 스프로킷 휠(sprocket-wheel)	Cat 0	5	
8714941000	브레이크	Cat 0	5	
8714949000	이들의 부분품	Cat 0	5	
8714950000	안장	Cat 0	5	
8714961000	페달	Cat 0	5	
8714962000	크랭크 기어(crankgear)	Cat 0	5	
8714969000	이들의 부분품	Cat 0	5	
8714990000	기타	Cat 0	5	
871500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Cat 0	0	
8716100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축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716200000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Cat 0	0	
8716310000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Cat 0	0	
8716390000	기타	Cat 0	0	
8716400000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Cat 0	0	
8716801000	순수레	Cat 0	0	
8716802000	우마차	Cat 0	0	
8716803000	썰매	Cat 0	0	
8716809000	기타	Cat 0	0	
8716901000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의 것	Cat 0	0	
8716909000	기타	Cat 0	0	
8801001000	글라이더와 행글라이더	Cat 0	0	
8801009010	기구와 비행선	Cat 0	0	
8801009090	기타	Cat 0	0	
8802111000	군용	Cat 0	0	
8802119000	기타	Cat 0	0	
8802121000	군용	Cat 0	0	
8802129000	기타	Cat 0	0	
8802201000	프로펠러식	Cat 0	0	
8802202000	터보프로펠러식	Cat 0	0	
8802203000	터보제트식	Cat 0	0	
8802209000	기타	Cat 0	0	
8802301000	프로펠러식	Cat 0	0	
8802302000	터보프로펠러식	Cat 0	0	
8802303000	터보제트식	Cat 0	0	
8802309000	기타	Cat 0	0	
8802401000	프로펠러식	Cat 0	0	
8802402000	터보프로펠러식	Cat 0	0	
8802403000	터보제트식	Cat 0	0	
8802409000	기타	Cat 0	0	
8802601010	인공위성	Cat 0	0	
8802601090	기타	Cat 0	0	
8802602000	우주선 운반로켓	Cat 0	0	
8802603000	서보비틀(suborbital)	Cat 0	0	
8803100000	프로펠러 · 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Cat 0	0	
8803200000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Cat 0	0	
8803301000	비행기의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8803302000	헬리콥터의 것	Cat 0	0	
8803901000	글라이더나 행글라이더의 것	Cat 0	0	
8803902000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의 것	Cat 0	0	
8803909000	기타	Cat 0	0	
880400100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	Cat 0	0	
8804002000	로토슈트(rotachute)	Cat 0	0	
8804009010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의 것	Cat 0	0	
8804009020	로토슈트(rotachute)의 것	Cat 0	0	
8805101010	군용·경찰용	Cat 0	0	
8805101090	기타	Cat 0	0	
8805102010	군용·경찰용	Cat 0	0	
8805102090	기타	Cat 0	0	
8805109010	군용·경찰용	Cat 0	0	
8805109090	기타	Cat 0	0	
8805211010	군용·경찰용	Cat 0	0	
8805211090	기타	Cat 0	0	
8805212010	군용·경찰용	Cat 0	0	
8805212090	기타	Cat 0	0	
8805291010	군용·경찰용	Cat 0	0	
8805291090	기타	Cat 0	0	
8805292010	군용·경찰용	Cat 0	0	
8805292090	기타	Cat 0	0	
8901100000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Cat 0	0	
8901200000	탱커(tanker)	Cat 0	0	
8901300000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8901901000	화물선	Cat 0	0	
8901902000	화객선	Cat 0	0	
8902001010	철강선	Cat 0	0	
8902001020	에프알피(FRP)선	Cat 0	0	
8902001030	목조선	Cat 0	0	
8902001090	기타	Cat 0	0	
8902002010	어획물의 가공선·저장선	Cat 0	0	
8902002090	기타	Cat 0	0	
8903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Cat 0	0	
8903910000	방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8903920000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Cat 0	0	
8903991000	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	Cat 0	0	
8903999000	기타	Cat 0	0	
8904001000	예인선	Cat 0	0	
8904002000	푸셔크래프트(pusher craft)	Cat 0	0	
8904009000	기타	Cat 0	0	
8905100000	준설선	Cat 0	0	
8905201000	사추대	Cat 0	0	
8905202000	작업대	Cat 0	0	
8905209000	기타	Cat 0	0	
8905901000	조명선	Cat 0	0	
8905902000	소방선	Cat 0	0	
8905903000	기중기선	Cat 0	0	
8905905000	해난구조선	Cat 0	0	
8905907000	시추선	Cat 0	0	
8905908000	부선거(艇船渠)	Cat 0	0	
8905909000	기타	Cat 0	0	
8906100000	군함	Cat 0	0	
8906900000	기타	Cat 0	0	
8907100000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Cat 0	0	
8907901000	부교(소호 제8907.10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8907902000	탱크	Cat 0	0	
8907903000	코퍼댐(coffer-dam)	Cat 0	0	
8907904000	부잔교(landing stage)	Cat 0	0	
8907905000	부표	Cat 0	0	
8907906000	수로부표	Cat 0	0	
8907909000	기타	Cat 0	0	
8908001000	해체용 선박	Cat 0	0	
8908009000	기타	Cat 0	0	
9001101000	광섬유	Cat 0	0	
9001102000	광섬유다발	Cat 0	0	
9001103000	광섬유 케이블	Cat 0	0	
9001200000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편	Cat 0	0	
9001300000	콘택트렌즈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9001401000	시력 교정용	Cat 0	0	
9001409000	기타	Cat 0	0	
9001501000	시력 교정용	Cat 0	0	
9001509000	기타	Cat 0	0	
9001901000	프리즘	Cat 0	0	
9001902000	반사경	Cat 0	0	
9001903000	그 밖의 렌즈	Cat 0	0	
9001909000	기타	Cat 0	0	
9002111000	사진기용	Cat 0	0	
9002119010	촬영기·비디오카메라용	Cat 0	0	
9002119020	열사기용	Cat 0	0	
9002119090	기타	Cat 0	0	
9002191000	현미경용	Cat 0	0	
9002192000	천체망원경용	Cat 0	0	
9002199000	기타	Cat 0	0	
9002201000	사진기용	Cat 0	0	
9002209000	기타	Cat 0	0	
9002901000	사진기용	Cat 0	0	
9002909010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Cat 0	0	
9002909090	기타	Cat 0	0	
9003110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00319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Cat 0	0	
9003199000	기타	Cat 0	0	
9003900000	부분품	Cat 0	0	
9004101000	귀금속을 사용한 것	Cat 0	0	
9004109000	기타	Cat 0	0	
9004901000	시력교정용 안경	Cat 0	0	
9004902000	3D 입체영상용 안경(능동방식인지 수동방식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9004909010	귀금속을 사용한 것	Cat 0	0	
9004909090	기타	Cat 0	0	
9005100000	쌍안경	Cat 0	0	
9005801000	단안경	Cat 0	0	
9005802010	반사망원경	Cat 0	0	
9005802020	굴절식 천체망원경	Cat 0	0	
9005802090	기타	Cat 0	0	
9005809000	기타	Cat 0	0	
900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정착구를 포함한다)	Cat 0	0	
9006301000	수중촬영용 사진기	Cat 0	0	
9006302000	공중촬영용 사진기	Cat 0	0	
9006303000	내부기관의 내과용·외과용 검진용 사진기	Cat 0	0	
9006304000	법정비교용 사진기	Cat 0	0	
9006401000	폴라로이드 사진기	Cat 0	0	
9006402000	스티커 사진기	Cat 0	0	
9006409000	기타	Cat 0	0	
9006511000	특수용도 사진기	Cat 0	0	
9006519000	기타	Cat 0	0	
9006521000	특수용도 사진기	Cat 0	0	
9006529000	기타	Cat 0	0	
9006531000	특수용도 사진기	Cat 0	0	
9006539010	일회용사진기	Cat 0	0	
9006539090	기타	Cat 0	0	
9006591000	특수용도 사진기	Cat 0	0	
9006599000	기타	Cat 0	0	
9006610000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06691000	섬광전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9006699000	기타	Cat 0	0	
9006910000	카메라용	Cat 0	0	
9006990000	기타	Cat 0	0	
9007100000	촬영기	Cat 0	0	
9007201000	폭이 20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	Cat 0	0	
9007209000	기타	Cat 0	0	
9007910000	촬영기용	Cat 0	0	
9007920000	열사기용	Cat 0	0	
9008501000	마이크로필름·마이크로파세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는 상관없다)	Cat 0	0	
9008502000	그 밖의 투영기	Cat 0	0	
9008503000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9008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0101000	인쇄 재판용	Cat 0	0	
9010102000	마이크로필름용	Cat 0	0	
90101090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901010909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9010501000	반도체 제조용 현상기	Cat 0	0	
9010509000	기타	Cat 0	0	
9010600000	영사용 스크린	Cat 0	0	
9010901010	제9010.50.1000호의 것	Cat 0	0	
9010901090	기타	Cat 0	0	
9010902000	제9010.50호 및 제9010.60호의 것(반도체 제조용은 제외한다)	Cat 0	0	
9010909000	기타	Cat 0	0	
901110100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Cat 0	0	
9011109000	기타	Cat 0	0	
9011201010	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	Cat 0	0	
9011201090	기타	Cat 0	0	
9011209000	기타	Cat 0	0	
9011801000	편광 현미경	Cat 0	0	
9011802000	금속 현미경	Cat 0	0	
9011803000	위상차 현미경	Cat 0	0	
9011804000	생물 현미경	Cat 0	0	
9011809000	기타	Cat 0	0	
9011901000	제9011.10.1000호, 제9011.20.1010호의 것	Cat 0	0	
9011909000	기타	Cat 0	0	
9012101010	일렉트론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12101090	기타	Cat 0	0	
9012102000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Cat 0	0	
9012901000	제9012.10.1010호의 것	Cat 0	0	
9012909000	기타	Cat 0	0	
9013101000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Cat 0	0	
9013109000	기타	Cat 0	0	
9013200000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Cat 0	0	
9013801120	전자계산기용	Cat 0	0	
9013801130	텔레비전용	Cat 0	0	
9013801140	모니터용	Cat 0	0	
9013801190	기타	Cat 0	0	
9013801920	전자계산기용	Cat 0	0	
9013801930	텔레비전용	Cat 0	0	
9013801990	기타	Cat 0	0	
9013802000	확대경, 루페, 섬유 카운터	Cat 0	0	
9013803000	도어아이	Cat 0	0	
9013809000	기타	Cat 0	0	
9013901000	제9013.80.1120호, 제9013.80.1920호의 것	Cat 0	0	
9013902000	무기용 망원 조준기 또는 장망경의 것	Cat 0	0	
9013909000	기타	Cat 0	0	
9014101010	항공기용	Cat 0	0	
9014101090	기타	Cat 0	0	
9014102010	항공기용	Cat 0	0	
9014102090	기타	Cat 0	0	
9014109000	기타	Cat 0	0	
9014200000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Cat 0	0	
9014800000	그 밖의 항행용 기기	Cat 0	0	
9014901000	항공기용	Cat 0	0	
9014909000	기타	Cat 0	0	
9015100000	거리측정기	Cat 0	0	
9015200000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Cat 0	0	
9015300000	수준기(水準器)	Cat 0	0	
9015400000	사진측량기기	Cat 0	0	
9015801000	토지 측량용	Cat 0	0	
9015802000	수로 측량용	Cat 0	0	
9015803000	해양 측량용	Cat 0	0	
9015804000	수리 계측용	Cat 0	0	
9015805000	기상 관측용	Cat 0	0	
9015809000	기타	Cat 0	0	
901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6001000	적시식	Cat 0	0	
9016002000	전자식	Cat 0	0	
9016008000	기타	Cat 0	0	
9016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7101000	플로터	Cat 0	0	
9017109000	기타	Cat 0	0	
9017201010	플로터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9017201090	기타	Cat 0	0	
9017202010	플로터	Cat 0	0	
9017202090	기타	Cat 0	0	
9017203000	계산용구	Cat 0	0	
9017209000	기타	Cat 0	0	
9017301000	마이크로미터	Cat 0	0	
9017302000	다이알 게이지류	Cat 0	0	
9017303000	버니어 캘리퍼스(Vernier callipers)	Cat 0	0	
9017309000	기타	Cat 0	0	
9017801000	눈금이 든 공은 자와 출자	Cat 0	0	
90178090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9017809090	기타	Cat 0	0	
901790100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9017909010	플로터용 인쇄화로조립품(제8534호의 인쇄회로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17909020	플로터용 평판디스플레이(엘시디, 이엘, 플라즈마와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이용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9017909090	기타	Cat 0	0	
9018111000	심전계	Cat 0	0	
9018119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8121000	초음파 영상진단기	Cat 0	0	
9018129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8131000	자기공명 촬영기기	Cat 0	0	
9018139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8140000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Cat 0	0	
9018191000	뇌파계	Cat 0	0	
9018192000	청력검사용 기구	Cat 0	0	
9018194000	혈압 측정기기	Cat 0	0	
9018197000	환자 감시장치	Cat 0	0	
9018198000	기타	Cat 0	0	
9018199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8201000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Cat 0	0	
9018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8310000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9018321000	주사침	Cat 0	0	
9018322000	봉합침	Cat 0	0	
9018329000	기타	Cat 0	0	
9018391000	수혈세트와 수액세트	Cat 0	0	
9018392000	카테터(catheter)	Cat 0	0	
9018398000	기타	Cat 0	0	
9018399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8411000	치과용 드릴 엔진	Cat 0	0	
9018419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8491000	치과용 버(bur)	Cat 0	0	
9018492000	치과용 유닛	Cat 0	0	
9018493000	치석 제거기	Cat 0	0	
9018498000	기타	Cat 0	0	
9018499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8501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Cat 0	0	
9018501090	기타	Cat 0	0	
9018509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8901000	임상진단기	Cat 0	0	
9018902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Cat 0	0	
9018902090	기타	Cat 0	0	
9018903000	산부인과용 기기	Cat 0	0	
9018904000	내시경(위내시경, 복막경, 방광경과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18905000	인공신장기(인공신장기용 투석기를 포함한다)	Cat 0	0	
9018906000	전기신경자극기	Cat 0	0	
9018907000	수의과용 기기	Cat 0	0	
9018908010	레이저 작동식 기기	Cat 0	0	
9018908090	기타	Cat 0	0	
9018909080	기타	Cat 0	0	
901890909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9101000	기계요법용 기기	Cat 0	0	
9019102000	마사지용 기기	Cat 0	0	
9019103000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Cat 0	0	
9019109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9201000	오존 흡입기	Cat 0	0	
9019202000	산소 흡입기	Cat 0	0	
9019203000	에어로졸 치료기	Cat 0	0	
9019204000	인공호흡기	Cat 0	0	
9019208000	기타	Cat 0	0	
9019209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9020001000	가스마스크	Cat 0	0	
9020008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	Cat 0	0	
9020009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21100000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를 기기	Cat 0	0	
9021210000	의치	Cat 0	0	
9021290000	기타	Cat 0	0	
9021310000	인조관절	Cat 0	0	
9021390000	기타	Cat 0	0	
9021400000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Cat 0	0	
9021500000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Cat 0	0	
9021901000	스크류 · 스테이플 · 핀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인체에 삽입되는 것	Cat 0	0	
9021908000	기타	Cat 0	0	
9021909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22120000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Cat 0	0	
9022130000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22141020	혈관조영 촬영장치	Cat 0	0	
9022141030	배(골)밀도측정기	Cat 0	0	
9022141090	기타	Cat 0	0	
9022142000	수의과용	Cat 0	0	
9022191000	물리 · 화학시험용	Cat 0	0	
9022192000	공업용	Cat 0	0	
9022199000	기타	Cat 0	0	
9022211010	감마사진기 장치	Cat 0	0	
9022211020	선형 가속치료 장치	Cat 0	0	
9022211030	코발트 60 치료기	Cat 0	0	
9022211090	기타	Cat 0	0	
9022212000	수의과용	Cat 0	0	
9022291000	물리 · 화학시험용	Cat 0	0	
9022292000	공업용	Cat 0	0	
9022299000	기타	Cat 0	0	
9022300000	엑스선관	Cat 0	0	
9022901010	엑스선 발생기	Cat 0	0	
9022901020	엑스선의 스크린	Cat 0	0	
9022901030	엑스선용 고압발생기	Cat 0	0	
9022901090	기타	Cat 0	0	
9022909010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것	Cat 0	0	
9022909090	기타	Cat 0	0	
9023001000	인체나 동물의 해부 전시모형	Cat 0	0	
9023009000	기타	Cat 0	0	
9024101000	경도시험기	Cat 0	0	
9024102000	항장력(인장)시험기	Cat 0	0	
9024103000	압축시험기	Cat 0	0	
9024104000	피로시험기	Cat 0	0	
9024105000	만능시험기	Cat 0	0	
9024106000	인쇄회로기판, 반도체디바이스 및 전자집적회로의 불이나 와이어의 접착력 · 전단력 측정을 위한 기기	Cat 0	0	
9024109000	기타	Cat 0	0	
9024801010	선속시험기	Cat 0	0	
9024801020	마모시험기	Cat 0	0	
9024801090	기타	Cat 0	0	
9024809010	탄성시험기	Cat 0	0	
9024809020	소성시험기	Cat 0	0	
9024809090	기타	Cat 0	0	
9024901000	센서(특정의 변화량을 감지하는 소자로서 감지된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환하는 장치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9024909000	기타	Cat 0	0	
9025111000	의료용 · 수의과용 온도계	Cat 0	0	
9025119000	기타	Cat 0	0	
9025191000	온도계	Cat 0	0	
9025192010	광학식 고온계	Cat 0	0	
9025192090	기타	Cat 0	0	
9025801000	액체 비중계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Cat 0	0	
9025802000	기압계(다른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25803010	건습구 습도계	Cat 0	0	
9025803090	기타	Cat 0	0	
9025809000	기타	Cat 0	0	
90259000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26101000	유량계	Cat 0	0	
9026102000	액면계	Cat 0	0	
9026109000	기타	Cat 0	0	
9026201110	액체형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9026201120	금속형	Cat 0	0	
9026201190	기타	Cat 0	0	
9026201900	기타	Cat 0	0	
9026209000	기타	Cat 0	0	
9026801000	열측정계	Cat 0	0	
9026802000	불력계	Cat 0	0	
9026809000	기타	Cat 0	0	
9026900000	부품품과 부속품	Cat 0	0	
9027100000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Cat 0	0	
9027200000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Cat 0	0	
9027301000	분광계	Cat 0	0	
9027302000	분광광도계	Cat 0	0	
9027303000	분광사진기	Cat 0	0	
9027501000	편광계	Cat 0	0	
9027502000	굴절계	Cat 0	0	
9027503000	비색계	Cat 0	0	
9027504000	조도계	Cat 0	0	
9027509000	기타	Cat 0	0	
9027801000	그 밖의 물리분석용·화학분석용 기기	Cat 0	0	
9027802010	피·에이치(PH) 미터	Cat 0	0	
9027802020	열량계	Cat 0	0	
9027802030	점도계	Cat 0	0	
9027802040	팽창계	Cat 0	0	
9027802050	노출계	Cat 0	0	
9027802090	기타	Cat 0	0	
9027901000	마이크로톰(microtome)	Cat 0	0	
9027909010	반도체 제조용	Cat 0	0	
9027909091	가스·매연분석기기와 마이크로톰(microtome)의 것	Cat 0	0	
9027909099	기타	Cat 0	0	
9028101010	디지털식	Cat 0	0	
9028101090	기타	Cat 0	0	
9028102000	검정용 계기	Cat 0	0	
9028201010	디지털식	Cat 0	0	
9028201090	기타	Cat 0	0	
9028202000	검정용 계기	Cat 0	0	
9028301010	전류가 50암페어 이상인 것	Cat 0	0	
9028301020	전류가 50암페어 미만인 것	Cat 0	0	
9028302000	검정용 계기	Cat 0	0	
9028900000	부품품과 부속품	Cat 0	0	
9029101000	적산(積算)회전계	Cat 0	0	
9029102000	생산량계	Cat 0	0	
9029103000	택시미터	Cat 0	0	
9029104000	주행거리계	Cat 0	0	
9029105000	기계 중의 각종지언 지시중 적산(積算)계	Cat 0	0	
9029109000	기타	Cat 0	0	
9029201010	시계식	Cat 0	0	
9029201090	기타	Cat 0	0	
9029202000	스트로보스코우프(stroboscope)	Cat 0	0	
9029900000	부품품과 부속품	Cat 0	0	
9030100000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Cat 0	0	
9030201010	음극선관의 것	Cat 0	0	
9030201090	기타	Cat 0	0	
9030202000	오실로 그래프(oscillograph)	Cat 0	0	
9030310000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Cat 0	0	
9030320000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Cat 0	0	
9030331000	전압계	Cat 0	0	
9030332000	전류계	Cat 0	0	
9030333000	회로계	Cat 0	0	
9030334000	저항계	Cat 0	0	
9030335000	검류계	Cat 0	0	
9030336000	주파수 측정기	Cat 0	0	
9030339000	기타	Cat 0	0	
9030391000	전압계	Cat 0	0	
9030392000	전류계	Cat 0	0	
9030393000	회로계	Cat 0	0	
9030394000	저항계	Cat 0	0	
9030395000	검류계	Cat 0	0	
9030396000	주파수 측정기	Cat 0	0	
9030399000	기타	Cat 0	0	
9030401000	누화계(cross-talk meter)	Cat 0	0	
9030402000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	Cat 0	0	
9030403000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Cat 0	0	
9030404000	점음전압계(psophometer)	Cat 0	0	
9030409000	기타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9030820000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Cat 0	0	
9030840000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30890000	기타	Cat 0	0	
9030901000	소호 제9030.82호의 것	Cat 0	0	
9030909000	기타	Cat 0	0	
9031100000	균형시험기	Cat 0	0	
9031200000	테스트벤치(Test bench)	Cat 0	0	
9031411000	포시미터	Cat 0	0	
9031412000	반도체웨이퍼 표면의 파티클 오염상태 측정용	Cat 0	0	
9031419000	기타	Cat 0	0	
9031491000	광학식 표면 테스터	Cat 0	0	
9031492000	광학식 각도계와 앵글게이지	Cat 0	0	
9031493000	포시미터	Cat 0	0	
9031494010	반도체 제조공정의 것	Cat 0	0	
9031494090	기타	Cat 0	0	
9031499000	기타	Cat 0	0	
9031801000	초음파 어군탐지기	Cat 0	0	
9031802000	로드셀	Cat 0	0	
9031809010	내연기관 특성 시험기	Cat 0	0	
9031809020	기어 테스터	Cat 0	0	
9031809030	연착계	Cat 0	0	
9031809040	구면계	Cat 0	0	
9031809050	작물 감사장치	Cat 0	0	
9031809060	초음파 두께 측정기	Cat 0	0	
9031809070	흙·균열 등 측정기	Cat 0	0	
9031809080	동력시험기	Cat 0	0	
9031809091	반도체 제조용	Cat 0	0	
9031809099	기타	Cat 0	0	
9031901010	소호 제9031.41호의 것	Cat 0	0	
9031901090	그 밖의 것	Cat 0	0	
9031909000	기타	Cat 0	0	
9032101010	냉장고용	Cat 0	0	
9032101020	환공기용	Cat 0	0	
9032101090	기타	Cat 0	0	
9032102000	고정식	Cat 0	0	
9032200000	매노우스타트(manostat)	Cat 0	0	
9032811010	환공기용	Cat 0	0	
9032811090	기타	Cat 0	0	
9032812010	환공기용	Cat 0	0	
9032812091	반도체 제조용 기기의 것	Cat 0	0	
9032812099	기타	Cat 0	0	
9032819010	환공기용	Cat 0	0	
9032819090	기타	Cat 0	0	
9032891010	환공기용	Cat 0	0	
9032891090	기타	Cat 0	0	
9032892010	환공기용	Cat 0	0	
9032892090	기타	Cat 0	0	
9032893010	환공기용	Cat 0	0	
9032893090	기타	Cat 0	0	
9032899010	환공기용	Cat 0	0	
9032899090	기타	Cat 0	0	
9032901000	환공기용	Cat 0	0	
9032909000	기타	Cat 0	0	
9033000000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101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Cat 0	0	
9101191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Cat 0	0	
9101199000	기타	Cat 0	0	
9101210000	자동권(自動捲)식	Cat 0	0	
9101290000	기타	Cat 0	0	
9101910000	전기구동식	Cat 0	0	
9101990000	기타	Cat 0	0	
9102111000	시각장애인용	Cat 0	0	
91021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Cat 0	0	
9102119010	باتد레리·축전지 구동식	Cat 0	0	
9102119090	기타	Cat 0	0	
9102121000	باتد레리·축전지 구동식	Cat 0	0	
9102129010	시각장애인용	Cat 0	0	
910212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Cat 0	0	
9102129090	기타	Cat 0	0	
9102191000	باتد레리·축전지 구동식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9102199010	시각장애인용	Cat 0	0	
910219902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 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Cat 0	0	
9102199090	기타	Cat 0	0	
9102211000	시각장애인용	Cat 0	0	
910221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 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Cat 0	0	
9102219000	기타	Cat 0	0	
9102291000	시각장애인용	Cat 0	0	
9102292000	문자판·밴드 등을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 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Cat 0	0	
9102299000	기타	Cat 0	0	
9102911000	스톱워치	Cat 0	0	
9102912000	시각장애인용	Cat 0	0	
910291901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Cat 0	0	
9102919090	기타	Cat 0	0	
9102991000	스톱워치	Cat 0	0	
9102992000	시각장애인용	Cat 0	0	
9102999000	기타	Cat 0	0	
9103100000	전기구동식	Cat 0	0	
9103900000	기타	Cat 0	0	
9104001000	차량용	Cat 0	0	
9104002000	항공기용	Cat 0	0	
9104004000	선박용	Cat 0	0	
9104009000	기타	Cat 0	0	
9105110000	전기구동식	Cat 0	0	
9105190000	기타	Cat 0	0	
9105210000	전기구동식	Cat 0	0	
9105290000	기타	Cat 0	0	
9105910000	전기구동식	Cat 0	0	
9105990000	기타	Cat 0	0	
9106100000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레코 더(time-recorder)	Cat 0	0	
9106902000	타이머	Cat 0	0	
9106909000	기타	Cat 0	0	
9107001000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	Cat 0	0	
9107009000	기타	Cat 0	0	
9108110000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 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Cat 0	0	
9108120000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Cat 0	0	
9108190000	기타	Cat 0	0	
9108200000	자동권(自動捲)식	Cat 0	0	
9108900000	기타	Cat 0	0	
9109100000	전기구동식	Cat 0	0	
9109900000	기타	Cat 0	0	
911011100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Cat 0	0	
9110119000	기타	Cat 0	0	
911012100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Cat 0	0	
9110129000	기타	Cat 0	0	
9110190000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Cat 0	0	
9110901000	배터리·축전지 구동식	Cat 0	0	
9110909000	기타	Cat 0	0	
9111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 속으로 만든 케이스	Cat 0	0	
911120000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9111800000	그 밖의 케이스	Cat 0	0	
9111901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 속으로 만든 케이스	Cat 0	0	
9111909000	기타	Cat 0	0	
9112200000	케이스	Cat 0	0	
9112900000	부분품	Cat 0	0	
9113100000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 속으로 만든 것	Cat 0	0	
9113200000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9113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113902000	가죽이나 폼퍼지션레더로 만든 것	Cat 0	0	
9113909000	기타	Cat 0	0	
9114100000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Cat 0	0	
9114300000	문자판	Cat 0	0	
9114400000	지판과 브리지(bridge)	Cat 0	0	
9114900000	기타	Cat 0	0	
9201100000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Cat 0	0	
9201200000	그랜드 피아노	Cat 0	0	
9201901000	하프시코드(harpsichord)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9201909000	기타	Cat 0	0	
9202101000	바이올린	Cat 0	0	
9202102000	첼로	Cat 0	0	
9202109000	기타	Cat 0	0	
9202901000	기타	Cat 0	0	
9202902000	하프	Cat 0	0	
9202903000	만도린	Cat 0	0	
9202904000	밴조(banjo)	Cat 0	0	
9202909000	기타	Cat 0	0	
9205101000	트럼펫	Cat 0	0	
9205102000	트럼본	Cat 0	0	
9205109000	기타	Cat 0	0	
9205901010	플루트	Cat 0	0	
9205901020	클라리넷	Cat 0	0	
9205901030	색소폰	Cat 0	0	
9205901040	리코더(recorder)	Cat 0	0	
9205901090	기타	Cat 0	0	
9205902010	파이프 오르간	Cat 0	0	
9205902090	기타	Cat 0	0	
9205903010	아코디언	Cat 0	0	
9205903020	멜로디카	Cat 0	0	
9205903090	기타	Cat 0	0	
9205904000	하모니카	Cat 0	0	
9205909000	기타	Cat 0	0	
9206001000	북	Cat 0	0	
9206002000	목금	Cat 0	0	
9206003000	심벌	Cat 0	0	
9206004000	캐스터네츠	Cat 0	0	
9206005000	마라카스(maracas)	Cat 0	0	
9206006000	탬버린	Cat 0	0	
9206009000	기타	Cat 0	0	
9207101000	오르간(신디사이저를 포함한다)	Cat 0	0	
9207103000	피아노	Cat 0	0	
9207109000	기타	Cat 0	0	
9207901000	기타	Cat 0	0	
9207902000	아코디언	Cat 0	0	
9207909000	기타	Cat 0	0	
9208100000	뮤지컬박스	Cat 0	0	
9208901000	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	Cat 0	0	
9208902000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Cat 0	0	
9208903000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Cat 0	0	
9208904000	뮤지컬소(musical saw)	Cat 0	0	
9208909000	기타	Cat 0	0	
9209301000	금속선으로 만든 것	Cat 0	0	
9209309000	기타	Cat 0	0	
9209910000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209920000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209940000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209991000	뮤지컬 무브먼트의 것	Cat 0	0	
9209992000	박질기(metronom) · 소리금쇠와 각종 조율관(調律管)	Cat 0	0	
9209993000	뮤지컬 박스용 메커니즘	Cat 0	0	
9209999000	기타	Cat 0	0	
9301101000	자주식(自走式)	Cat 0	0	
9301109000	기타	Cat 0	0	
9301200000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 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Cat 0	0	
9301901000	완전자동 산탄총	Cat 0	0	
9301902010	노리쇠작동	Cat 0	0	
9301902020	반자동	Cat 0	0	
9301902030	완전자동	Cat 0	0	
9301902090	기타	Cat 0	0	
9301903000	기관총	Cat 0	0	
9301904010	완전자동 피스톨(pistol)	Cat 0	0	
9301904090	기타	Cat 0	0	
9301909000	기타	Cat 0	0	
9302001010	리볼버(revolver)	Cat 0	0	
9302001021	반자동	Cat 0	0	
9302001029	기타	Cat 0	0	
9302001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Cat 0	0	
9302001090	기타	Cat 0	0	
9302009010	리볼버(revolver)	Cat 0	0	
9302009021	반자동	Cat 0	0	
9302009029	기타	Cat 0	0	
9302009030	피스톨(pistol)(다열총열)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9302009090	기타	Cat 0	0	
9303100000	총구장전 화기	Cat 0	0	
9303201011	펄프작동	Cat 0	0	
9303201012	반자동	Cat 0	0	
9303201019	기타	Cat 0	0	
9303201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은 포함한다]	Cat 0	0	
9303201090	기타	Cat 0	0	
9303209011	펄프작동	Cat 0	0	
9303209012	반자동	Cat 0	0	
9303209019	기타	Cat 0	0	
9303209020	산탄총(다열총열)[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은 포함한다]	Cat 0	0	
9303209090	기타	Cat 0	0	
9303301010	단발	Cat 0	0	
9303301020	반자동	Cat 0	0	
9303301090	기타	Cat 0	0	
9303309010	단발	Cat 0	0	
9303309020	반자동	Cat 0	0	
9303309090	기타	Cat 0	0	
9303900000	기타	Cat 0	0	
9304001000	공기총	Cat 0	0	
9304009000	기타	Cat 0	0	
9305101010	격발장치	Cat 0	0	
9305101020	프레임과 총몸	Cat 0	0	
9305101030	총열	Cat 0	0	
9305101040	피스톤 · 잠금러그(locking lug) · 가스완충기	Cat 0	0	
930510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Cat 0	0	
930510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Cat 0	0	
9305101070	개머리판 · 손잡이 · 플레이트	Cat 0	0	
9305101080	슬라이드[피스톨(pistol)용]와 실린더[리볼버(revolver)용]	Cat 0	0	
9305101090	기타	Cat 0	0	
9305109010	격발장치	Cat 0	0	
9305109020	프레임과 총몸	Cat 0	0	
9305109030	총열	Cat 0	0	
9305109040	피스톤 · 잠금러그(locking lug) · 가스완충기	Cat 0	0	
9305109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Cat 0	0	
9305109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Cat 0	0	
9305109070	개머리판 · 손잡이 · 플레이트	Cat 0	0	
9305109080	슬라이드(피스톨용)와 실린더(리볼버용)	Cat 0	0	
9305109090	기타	Cat 0	0	
9305201000	산탄총의 총열	Cat 0	0	
9305209010	라이플 총열	Cat 0	0	
9305209020	탄알집과 그 부분품	Cat 0	0	
9305209090	기타	Cat 0	0	
9305911010	격발장치	Cat 0	0	
9305911020	프레임과 총몸	Cat 0	0	
9305911030	총열	Cat 0	0	
9305911040	피스톤 · 잠금러그(locking lug) · 가스완충기	Cat 0	0	
9305911050	탄알집과 그 부분품	Cat 0	0	
9305911060	소음기와 그 부분품	Cat 0	0	
9305911070	소음기와 그 부분품	Cat 0	0	
9305911080	브리치(breech) · 노리쇠와 노리쇠집	Cat 0	0	
9305911090	기타	Cat 0	0	
9305919000	기타	Cat 0	0	
9305990000	기타	Cat 0	0	
9306210000	탄약	Cat 0	0	
9306290000	기타	Cat 0	0	
9306301000	리베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 · 무통 도살기용 탄약과 이들의 부분품	Cat 0	0	
9306309000	기타	Cat 0	0	
9306900000	기타	Cat 0	0	
9307000000	검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Cat 0	0	
9401100000	항공기용 의자	Cat 0	0	
9401200000	차량용 의자	Cat 0	0	
9401303000	가죽으로 덮여있는 것	Cat 0	0	
9401309000	기타	Cat 0	0	
9401401000	등나무로 만든 것	Cat 0	0	
9401402000	가죽으로 덮여있는 것	Cat 0	0	
9401409000	기타	Cat 0	0	
94015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94015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Cat 0	0	
9401591000	등나무로 만든 것	Cat 0	0	
9401599000	기타	Cat 0	0	
94016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Cat 0	0	
9401619000	기타	Cat 0	0	
94016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Cat 0	0	
9401699000	기타	Cat 0	0	
940171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Cat 0	0	
9401719000	기타	Cat 0	0	
9401791000	가죽으로 덮어씌운 것	Cat 0	0	
9401799000	기타	Cat 0	0	
9401801000	석재로 만든 것	Cat 0	0	
9401809000	기타	Cat 0	0	
9401901000	목재로 만든 것	Cat 0	0	
9401902000	금속으로 만든 것	Cat 0	0	
9401909000	기타	Cat 0	0	
9402101010	차과용 의자	Cat 0	0	
9402101090	기타	Cat 0	0	
9402109010	이발용·미용실용 의자	Cat 0	0	
9402109090	기타	Cat 0	0	
9402901000	수술대	Cat 0	0	
9402902000	산부인과용 검진대	Cat 0	0	
9402903000	분만대	Cat 0	0	
9402908000	기타	Cat 0	0	
9402909000	부분품	Cat 0	0	
9403100000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Cat 0	0	
9403201000	침대	Cat 0	0	
9403209000	기타	Cat 0	0	
9403301000	책상	Cat 0	0	
9403309000	기타	Cat 0	0	
9403401000	식탁	Cat 0	0	
9403409000	기타	Cat 0	0	
9403501000	침대	Cat 0	0	
9403509000	기타	Cat 0	0	
9403601010	문갑	Cat 0	0	
9403601020	화장대	Cat 0	0	
9403601030	장롱	Cat 0	0	
9403601090	기타	Cat 0	0	
9403609010	문갑	Cat 0	0	
9403609020	화장대	Cat 0	0	
9403609030	장롱	Cat 0	0	
9403609090	기타	Cat 0	0	
9403701000	보행기	Cat 0	0	
9403709000	기타	Cat 0	0	
9403820000	대나무로 만든 것	Cat 0	0	
9403830000	등나무로 만든 것	Cat 0	0	
9403890000	기타	Cat 0	0	
9403900000	부분품	Cat 0	0	
9404100000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Cat 0	0	
9404210000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9404290000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Cat 0	0	
9404300000	침낭(sleeping bag)	Cat 0	0	
9404900000	기타	Cat 0	0	
94051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Cat 0	0	
9405102000	형광램프의 것	Cat 0	0	
9405103000	발광다이오드(LED)의 것	Cat 0	0	
9405109000	기타	Cat 0	0	
9405201000	필라멘트 램프의 것	Cat 0	0	
9405202000	형광램프의 것	Cat 0	0	
9405203000	발광다이오드(LED)의 것	Cat 0	0	
9405209000	기타	Cat 0	0	
9405301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Cat 0	0	
9405302000	발광다이오드(LED)의 것	Cat 0	0	
9405309000	기타	Cat 0	0	
9405401000	반광형	Cat 0	0	
9405402000	투광형	Cat 0	0	
9405403000	가로등의 것	Cat 0	0	
9405409000	기타	Cat 0	0	
9405500000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Cat 0	0	
9405601000	네온관의 것	Cat 0	0	
9405602000	필라멘트램프의 것	Cat 0	0	
9405603000	형광램프의 것	Cat 0	0	
9405604000	발광다이오드(LED)의 것	Cat 0	0	
9405609000	기타	Cat 0	0	
9405911000	상들리에용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9405919000	기타	Cat 0	0	
9405921000	상들리에용	Cat 0	0	
9405929000	기타	Cat 0	0	
9405991000	상들리에용	Cat 0	0	
9405999000	기타	Cat 0	0	
9406100000	나무로 만든 것	EX	5	
940690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406902000	철강으로 만든 것	Cat 0	0	
9406903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Cat 0	0	
9406909000	기타	Cat 0	0	
9503001100	어린이용 세발자전거	Cat 0	0	
9503001200	스쿠터	Cat 0	0	
9503001300	페달차	Cat 0	0	
9503001400	인형용 차	Cat 0	0	
9503001800	기타	Cat 0	0	
9503001900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503002110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Cat 0	0	
9503002120	고무로 만든 것	Cat 0	0	
950300213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503002140	도자제의 것	Cat 0	0	
9503002150	유리로 만든 것	Cat 0	0	
9503002160	나무로 만든 것	Cat 0	0	
9503002190	기타	Cat 0	0	
9503002910	인형용 의류와 부속품, 신발과 모자	Cat 0	0	
9503002990	기타	Cat 0	0	
9503003110	전기식 기차	Cat 0	0	
9503003190	부속품	Cat 0	0	
9503003200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작동하는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제9503.00.31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9503003300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	Cat 0	0	
950300341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Cat 0	0	
9503003419	기타	Cat 0	0	
9503003491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Cat 0	0	
9503003492	고무로 만든 것	Cat 0	0	
9503003493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503003494	금속으로 만든 것	Cat 0	0	
9503003495	도자제의 것	Cat 0	0	
9503003496	유리로 만든 것	Cat 0	0	
9503003497	나무로 만든 것	Cat 0	0	
9503003499	기타	Cat 0	0	
9503003500	완구용 악기류	Cat 0	0	
9503003600	퍼즐	Cat 0	0	
9503003700	그 밖의 완구(세트·아웃피트로 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Cat 0	0	
9503003800	그 밖의 완구와 모형(모터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503003911	풍선·완구용 골·연과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9503003919	기타	Cat 0	0	
9503003990	부분품과 부속품(제9503.00.3190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9504201000	담구대	Cat 0	0	
9504202000	담구공	Cat 0	0	
9504209000	기타	Cat 0	0	
9504301000	금전적 보상을 즉시 지급하는 사행성 게임 용구	Cat 0	0	
9504309000	기타	Cat 0	0	
9504400000	오락용 카드	Cat 0	0	
9504501000	비디오 게임용구(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504509000	기타	Cat 0	0	
9504901020	핀 세트	Cat 0	0	
9504901030	볼링 볼	Cat 0	0	
9504901040	레인	Cat 0	0	
9504901050	볼링 핀	Cat 0	0	
9504901090	기타	Cat 0	0	
9504902000	전자식 게임기	Cat 0	0	
9504903000	그 밖의 용구	Cat 0	0	
9504909020	전자식 게임기의 것	Cat 0	0	
9504909090	기타	Cat 0	0	
9505100000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Cat 0	0	
9505900000	기타	Cat 0	0	
9506110000	스키	Cat 0	0	
9506120000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	Cat 0	0	
9506190000	기타	Cat 0	0	
9506210000	세일보드(sailboard)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9506290000	기타	Cat 0	0	
9506310000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Cat 0	0	
9506320000	골프공	Cat 0	0	
9506391000	골프채의 부분품	Cat 0	0	
9506399000	기타	Cat 0	0	
9506401000	탁구대	Cat 0	0	
9506402000	탁구라켓	Cat 0	0	
9506403000	탁구공	Cat 0	0	
9506409000	기타	Cat 0	0	
9506510000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 지에 상관없다)	Cat 0	0	
9506591000	배드민턴 라켓	Cat 0	0	
9506599000	기타	Cat 0	0	
9506610000	론테니스(lawn-tennis) 공	Cat 0	0	
9506621000	축구공	Cat 0	0	
9506622000	농구공	Cat 0	0	
9506623000	배구공	Cat 0	0	
9506624000	핸드볼공	Cat 0	0	
9506625000	미식축구용	Cat 0	0	
9506629000	기타	Cat 0	0	
9506691000	배드민턴 셔틀콕	Cat 0	0	
9506692000	야구공	Cat 0	0	
9506699000	기타	Cat 0	0	
9506700000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 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Cat 0	0	
9506910000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제조·육상 경기 에 사용하는 물품	Cat 0	0	
9506990000	기타	Cat 0	0	
9507101000	유리섬유로 만든 것	Cat 0	0	
9507102000	카본으로 만든 것	Cat 0	0	
9507109000	기타	Cat 0	0	
9507200000	낚시바늘(낚시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 에 상관없다)	Cat 0	0	
9507300000	낚시 릴	Cat 0	0	
9507901000	낚시용 망과 그 밖의 낚시용구	Cat 0	0	
9507909000	기타	Cat 0	0	
9508100000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Cat 0	0	
9508900000	기타	Cat 0	0	
9601100000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Cat 0	0	
9601901010	진주 양식용 핵	Cat 0	0	
9601901090	기타	Cat 0	0	
9601902000	뿔로 된 것	Cat 0	0	
9601909010	진주양식용 핵	Cat 0	0	
9601909090	기타	Cat 0	0	
9602001000	질라틴 캡슐	Cat 0	0	
9602009010	가공한 식물성 조각용 재료(예: 상아자) 와 식물성 조각용 재료의 제품	Cat 0	0	
9602009020	흑옥(광물성 흑옥 유사품을 포함한다)·호 박·해포석·응결한 호박·응결한 해포석 의 가공품과 그 제품	Cat 0	0	
9602009090	기타	Cat 0	0	
9603100000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 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9603210000	치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 를 포함한다]	Cat 0	0	
9603290000	기타	Cat 0	0	
9603300000	화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 용 붓	Cat 0	0	
9603400000	페인트용·디스탬퍼(distemper)용·바니 시(va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 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 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Cat 0	0	
9603500000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 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603900000	기타	Cat 0	0	
9604000000	수동식 채와 어레미	Cat 0	0	
960500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 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9606100000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스냅파스 너(snap-fastener)·프레스스터드(press- stud)와 이들의 부분품	Cat 0	0	
9606210000	플라스티크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 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Cat 0	0	
960622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9606291000	조개껍질로 만든 것	Cat 0	0	
9606299000	기타	Cat 0	0	
9606300000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Cat 0	0	
9607110000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Cat 0	0	
9607191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607199000	기타	Cat 0	0	
9607201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Cat 0	0	
9607202000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607209000	기타	Cat 0	0	
9608100000	볼펜	Cat 0	0	
9608200000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Cat 0	0	
9608301000	만년필	Cat 0	0	
9608309000	기타	Cat 0	0	
9608401000	프로펠링 펜슬(propelling pencil)	Cat 0	0	
9608402010	메카니컬 타입의 것	Cat 0	0	
9608402090	기타	Cat 0	0	
9608500000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Cat 0	0	
9608600000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608911000	펜촉	Cat 0	0	
9608912000	납 포인트(nib point)	Cat 0	0	
9608991000	부분품	Cat 0	0	
9608999000	기타	Cat 0	0	
9609101000	연필	Cat 0	0	
9609102000	색연필	Cat 0	0	
9609103000	크레용	Cat 0	0	
9609200000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609901000	크레용 · 오일파스텔	Cat 0	0	
9609902000	파스텔	Cat 0	0	
9609903010	필기용	Cat 0	0	
9609903090	기타	Cat 0	0	
9609909000	기타	Cat 0	0	
9610001000	석판	Cat 0	0	
9610002000	흑판	Cat 0	0	
9610009000	기타	Cat 0	0	
9611001000	스탬프	Cat 0	0	
9611002000	수동식 인쇄용 세트	Cat 0	0	
9611009000	기타	Cat 0	0	
9612101000	타자기용	Cat 0	0	
9612102000	자동자료처리기계용	Cat 0	0	
9612109000	기타	Cat 0	0	
9612200000	잉크 패드	Cat 0	0	
961310000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613200000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613800000	그 밖의ライター	Cat 0	0	
9613901000	압전식 전화 유닛	Cat 0	0	
9613909000	기타	Cat 0	0	
9614001000	파이프와 파이프 볼(pipe bowl)	Cat 0	0	
9614009000	기타	Cat 0	0	
9615111000	빗	Cat 0	0	
9615119000	기타	Cat 0	0	
9615191000	빗	Cat 0	0	
9615199000	기타	Cat 0	0	
9615901000	머리핀	Cat 0	0	
9615909000	기타	Cat 0	0	
9616100000	항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Cat 0	0	
9616200000	화장용 분점과 패드	Cat 0	0	
9617001000	보온병	Cat 0	0	
9617002000	보온 도시락	Cat 0	0	
9617008000	기타	Cat 0	0	
9617009000	부분품	Cat 0	0	
9618001000	마네킹 인형	Cat 0	0	
9618002000	자동 인형	Cat 0	0	
9618009000	기타	Cat 0	0	
961900101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Cat 0	0	
9619001090	기타	Cat 0	0	
9619002000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wadding)으로 만든 것	Cat 0	0	

HSK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긴급수입제한조치
9619003010	제6108.21호, 제6108.22호, 제6108.29호, 제6111.20호, 제6111.30호, 제6111.90호, 제6209.20호, 제6209.30호, 제6209.90호, 제6210.50호의 것	Cat 0	0	
9619003020	제6113호, 제6208.91호, 제6208.92호, 제6208.99호의 것	Cat 0	0	
9619004000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재료의 그 밖의 물품(제63류 주2호 각 목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9619009010	유아용 냅킨과 냅킨라이너(napkin liner)	Cat 0	0	
9619009090	기타	Cat 0	0	
9620000000	일각대 · 양각대 · 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9701101000	회화	Cat 0	0	
9701102000	대생	Cat 0	0	
9701103000	파스텔	Cat 0	0	
9701900000	기타	Cat 0	0	
9702001000	판화	Cat 0	0	
9702002000	인쇄화	Cat 0	0	
9702003000	석판화	Cat 0	0	
9703001000	조각	Cat 0	0	
9703002000	조상(彫像)	Cat 0	0	
9704001000	우표	Cat 0	0	
9704009000	기타	Cat 0	0	
9705000000	수집품과 표본[동물학 · 식물학 · 광물학 · 해부학 · 사학 · 고고학 · 고생물학 · 민족학 ·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706001000	도자기류	Cat 0	0	
9706002000	악기류	Cat 0	0	
9706009000	기타	Cat 0	0	

필리핀 관세 양허표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101.21.00	-- 번식용	Cat 0	0
0101.29.00	-- 기타	Cat 0	0
0101.30.10	-- 번식용	Cat 0	0
0101.30.90	-- 기타	Cat 0	0
0101.90.00	- 기타	Cat 0	0
0102.21.00	-- 번식용	Cat 0	0
0102.29.11	---- 황소	Cat 0	3/0
0102.29.19	---- 기타	Cat 0	3/0
0102.29.90	--- 기타	Cat 0	3/0
0102.31.00	-- 번식용	Cat 0	0
0102.39.00	-- 기타	Cat 0	3/0
0102.90.10	-- 번식용	Cat 0	0
0102.90.90	-- 기타	Cat 0	3/0
0103.10.00	- 번식용	Cat 0	0
0103.91.00A	--- 쿼터이내	EX	24
0103.91.00B	--- 쿼터초과	EX	28
0103.92.00A	--- 쿼터이내	EX	24
0103.92.00B	--- 쿼터초과	EX	28
0104.10.10	-- 번식용	Cat 0	0
0104.10.90	-- 기타	Cat 0	0
0104.20.10	-- 번식용	Cat 0	0
0104.20.90A	--- 쿼터이내	Cat 0	0
0104.20.90B	--- 쿼터초과	Cat 0	0
0105.11.10	--- 번식용 닭	Cat 0	0
0105.11.90A	---- 쿼터이내	EX	28
0105.11.90B	---- 쿼터초과	EX	28
0105.12.10	--- 번식용 칠면조	Cat 0	0
0105.12.90A	---- 쿼터이내	Cat 0	0
0105.12.90B	---- 쿼터초과	Cat 0	0
0105.13.10	--- 번식용 오리 새끼	Cat 0	0
0105.13.90A	---- 쿼터이내	Cat 0	0
0105.13.90B	---- 쿼터초과	Cat 0	0
0105.14.10	--- 번식용 거위 새끼	Cat 0	0
0105.14.90A	---- 쿼터이내	Cat 0	0
0105.14.90B	---- 쿼터초과	Cat 0	0
0105.15.10A	---- 쿼터이내	Cat 0	0
0105.15.10B	---- 쿼터초과	Cat 0	0
0105.15.90A	---- 쿼터이내	Cat 0	0
0105.15.90B	---- 쿼터초과	Cat 0	0
0105.94.10	--- 번식용 닭(싸움닭은 제외한다)	Cat 0	0
0105.94.41	---- 중량이 2킬로그램 이하인 것	Cat 0	0
0105.94.49	---- 기타	Cat 0	0
0105.94.91A	----- 쿼터이내	EX	28
0105.94.91B	----- 쿼터초과	EX	32
0105.94.99A	----- 쿼터이내	EX	28
0105.94.99B	----- 쿼터초과	EX	32
0105.99.10A	---- 쿼터이내	Cat 0	0
0105.99.10B	---- 쿼터초과	Cat 0	0
0105.99.20A	---- 쿼터이내	Cat 15	5
0105.99.20B	---- 쿼터초과	Cat 15	5
0105.99.30A	---- 쿼터이내	Cat 0	0
0105.99.30B	---- 쿼터초과	Cat 0	0
0105.99.40A	---- 쿼터이내	Cat 0	0
0105.99.40B	---- 쿼터초과	Cat 0	0
0106.11.00	-- 영장류	Cat 0	0
0106.12.00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 및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Cat 0	0
0106.13.00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카멜리대(Camelidae)과]	Cat 0	0
0106.14.00	-- 토끼	Cat 0	0
0106.19.00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106.20.0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Cat 10	5/0
0106.31.00	- - 앵금류	Cat 0	0
0106.32.00	- -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트류(parakeets)·금강 앵무류 및 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Cat 0	0
0106.33.00	- - 타조, 에뮤(emu)[드로마이어스 노배홀란드iae(Dromaius novaehollandiae)]	Cat 0	0
0106.39.00	- - 기타	Cat 0	0
0106.41.00	- - 벌	Cat 0	0
0106.49.00	- - 기타	Cat 0	0
0106.90.00	- 기타	Cat 0	0
0201.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Cat 15	10
0201.2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Cat 15	10
0201.30.00	- 뼈 없는 것	Cat 15	10
0202.10.0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Cat 15	10
0202.20.0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Cat 15	10
0202.30.00	- 뼈 없는 것	Cat 15	10
0203.11.00A	- - - 쿼터이내	EX	24
0203.11.00B	- - - 쿼터초과	EX	32
0203.12.00A	- - - 쿼터이내	EX	24
0203.12.00B	- - - 쿼터초과	EX	32
0203.19.00A	- - - 쿼터이내	EX	24
0203.19.00B	- - - 쿼터초과	EX	32
0203.21.00A	- - - 쿼터이내	EX	24
0203.21.00B	- - - 쿼터초과	EX	32
0203.22.00A	- - - 쿼터이내	EX	24
0203.22.00B	- - - 쿼터초과	EX	32
0203.29.00A	- - - 쿼터이내	EX	24
0203.29.00B	- - - 쿼터초과	EX	32
0204.10.0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 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204.2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Cat 0	0
0204.22.00	-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Cat 0	0
0204.23.00	- - 뼈 없는 것	Cat 0	0
0204.30.0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204.41.00	-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Cat 0	0
0204.42.00	-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Cat 0	0
0204.43.00	- - 뼈 없는 것	Cat 0	0
0204.50.00A	- - 쿼터이내	Cat 0	0
0204.50.00B	- - 쿼터초과	Cat 0	0
0205.00.00	말·당나귀·노새 또는 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206.10.00	-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0	5
0206.21.00	- - 혀	Cat 10	5
0206.22.00	- - 간	Cat 10	5
0206.29.00	- - 기타	Cat 15	7
0206.30.00	-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7
0206.41.00	- - 간	EX	5
0206.49.00	- - 기타	SL	10
0206.80.00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3
0206.90.00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3
0207.11.00A	- - - 쿼터이내	EX	32
0207.11.00B	- - - 쿼터초과	EX	32
0207.12.00A	- - - 쿼터이내	EX	32
0207.12.00B	- - - 쿼터초과	EX	32
0207.13.00A	- - - 쿼터이내	EX	32
0207.13.00B	- - - 쿼터초과	EX	32
0207.14.10A	- - - - 쿼터이내	EX	32
0207.14.10B	- - - - 쿼터초과	EX	32
0207.14.20A	- - - - 쿼터이내	EX	32
0207.14.20B	- - - - 쿼터초과	EX	32
0207.14.30A	- - - - 쿼터이내	EX	32
0207.14.30B	- - - - 쿼터초과	EX	32
0207.14.91	- - - - 기계로 뼈를 발라내거나 분리한 육	EX	32
0207.14.99A	- - - - - 쿼터이내	EX	32
0207.14.99B	- - - - - 쿼터초과	EX	32
0207.24.00A	- - - 쿼터이내	Cat 1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207.24.00B	- - - 쿼터초과	Cat 15	5
0207.25.00A	- - - 쿼터이내	Cat 15	5
0207.25.00B	- - - 쿼터초과	Cat 15	5
0207.26.00A	- - - 쿼터이내	Cat 15	5
0207.26.00B	- - - 쿼터초과	Cat 15	5
0207.27.10A	- - - - 쿼터이내	Cat 15	5
0207.27.10B	- - - - 쿼터초과	Cat 15	5
0207.27.91A	- - - - - 쿼터이내	Cat 15	5
0207.27.91B	- - - - - 쿼터초과	Cat 15	5
0207.27.99A	- - - - - 쿼터이내	Cat 15	5
0207.27.99B	- - - - - 쿼터초과	Cat 15	5
0207.41.00A	- - - 쿼터이내	Cat 15	5
0207.41.00B	- - - 쿼터초과	Cat 15	5
0207.42.00A	- - - 쿼터이내	Cat 15	5
0207.42.00B	- - - 쿼터초과	Cat 15	5
0207.43.00A	- - - 쿼터이내	Cat 15	5
0207.43.00B	- - - 쿼터초과	Cat 15	5
0207.44.00A	- - - 쿼터이내	Cat 15	5
0207.44.00B	- - - 쿼터초과	Cat 15	5
0207.45.00A	- - - 지방간, 쿼터이내	Cat 15	5
0207.45.00B	- - - 지방간, 쿼터초과	Cat 15	5
0207.45.00C	- - - 기타, 쿼터이내	Cat 15	5
0207.45.00D	- - - 기타, 쿼터초과	Cat 15	5
0207.51.00A	- - - 쿼터이내	Cat 15	5
0207.51.00B	- - - 쿼터초과	Cat 15	5
0207.52.00A	- - - 쿼터이내	Cat 15	5
0207.52.00B	- - - 쿼터초과	Cat 15	5
0207.53.00A	- - - 쿼터이내	Cat 15	5
0207.53.00B	- - - 쿼터초과	Cat 15	5
0207.54.00A	- - - 쿼터이내	Cat 15	5
0207.54.00B	- - - 쿼터초과	Cat 15	5
0207.55.00A	- - - 지방간, 쿼터이내	Cat 15	5
0207.55.00B	- - - 지방간, 쿼터초과	Cat 15	5
0207.55.00C	- - - 기타, 쿼터이내	Cat 15	5
0207.55.00D	- - - 기타, 쿼터초과	Cat 15	5
0207.60.00A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쿼터이내)	Cat 15	5
0207.60.00B	-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쿼터초과)	Cat 15	5
0207.60.00C	- - 냉동한 것(쿼터이내)	Cat 15	5
0207.60.00D	- - 냉동한 것(쿼터초과)	Cat 15	5
0207.60.00E	- - 기타, 쿼터이내	Cat 15	5
0207.60.00F	- - 기타, 쿼터초과	Cat 15	5
0208.10.00	- 토끼의 것	Cat 0	0
0208.30.00	- 영장류의 것	Cat 0	0
0208.40.10	- -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Cat 0	0
0208.40.90	- - 기타	Cat 0	0
0208.50.0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Cat 0	0
0208.60.00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Cat 0	0
0208.90.10	- - 개구리 다리	Cat 0	0
0208.90.90	- - 기타	Cat 0	0
0209.10.00	- 돼지의 것	Cat 0	0
0209.90.00	- 기타	Cat 0	0
0210.11.00	- - 넓적다리살 · 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	40
0210.12.00	- -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EX	40
0210.19.30	- - - 베이컨이나 뼈 없는 햄	EX	40
0210.19.90	- - - 기타	EX	40
0210.20.00	- 쇠고기	EX	5/0
0210.91.00	- - 영장류의 것	Cat 0	0
0210.92.10	- - -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의 것	Cat 0	0
0210.92.90	- - - 기타	Cat 0	0
0210.93.00	-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의 것	Cat 0	0
0210.99.10	- - - 냉동건조한 치킨 다이스(dice)	Cat 0	0
0210.99.20	- - - 건조한 돼지 껍질	EX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210.99.90	- - - 기타	EX	5/0
0301.11.11	- - - - 보티아[크로모보티아 마크라칸투스(Chromobotia macracanthus)]	Cat 0	3
0301.11.19	- - - - 기타	Cat 0	3/0
0301.11.91	- - - - 비단잉어[사이프리너스 카르피오(Cyprinus carpio)]	Cat 0	0
0301.11.92	- - - - 금붕어[카라시우스 아우라투스(Carassius auratus)]	Cat 0	3
0301.11.93	- - - - 삼투어[베타 스피렌덴스(Beta splendens)]	Cat 0	3
0301.11.94	- - - - 오스카[아스토노투스 오셀라투스(Astonotus ocellatus)]	Cat 0	3
0301.11.95	- - - - 아로와나[스클레로파게스 포르모수스(Scleropages formosus)]	Cat 0	3
0301.11.96	- - - - 아로와나 자르디니[스클레로파게스 자르디니(Scleropages jardini)]	Cat 0	3
0301.11.99	- - - - 기타	Cat 0	3
0301.19.10	- - - 치어	Cat 0	3
0301.19.91	- - - - 뱀가이 카디날[프테라포곤 카우데르니(Pterapogon kauderni)]	Cat 0	3
0301.19.92	- - - - 나폴레옹 피쉬[세일리누스 언둘라투스(Cheilinus undulatus)]	Cat 0	3
0301.19.99	- - - - 기타	Cat 0	3
0301.91.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Cat 0	0
0301.92.00	- - 뱀장어[앙굴라(Anguilla)종]	Cat 0	3
0301.93.10	- - - 번식용(치어는 제외한다)	Cat 0	0
0301.93.90A	- - -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치어는 제외한다)	Cat 0	0
0301.93.90B	- - - - 기타	Cat 0	0
0301.94.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Cat 15	7
0301.95.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Cat 15	7
0301.99.11	- - - - 번식용	Cat 0	0
0301.99.19	- - - - 기타	Cat 0	1
0301.99.21A	- - - - - 잉어	Cat 0	0
0301.99.21B	- - - - - 기타	Cat 10	7/5/0
0301.99.29A	- - - - - 잉어	Cat 0	0
0301.99.29B	- - - - - 기타	Cat 10	7/5/0
0301.99.41	- -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Cat 15	7
0301.99.42	- - - - 그 밖의 잉어(번식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0301.99.49	- - - - 기타	Cat 0	0
0301.99.51	- - - - 밀크피쉬(번식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0301.99.52	- - - - 그루퍼	Cat 15	7
0301.99.59	- - - - 기타	EX	7/5/0
0301.99.90	- - - 기타	Cat 15	7
0302.11.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옹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옹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옹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옹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Cat 0	0
0302.13.00	- - 태평양 연어[옹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옹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옹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옹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옹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옹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옹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Cat 0	0
0302.14.00	-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Cat 0	0
0302.19.00	- - 기타	Cat 0	0
0302.21.00	- - 넙치[레인하르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Cat 15	7
0302.22.00	- -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Cat 10	5
0302.23.00	- - 서대[솔레아(Solea)종]	Cat 0	0
0302.24.00	- -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Cat 10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302.29.00	- - 기타	Cat 10	5
0302.31.00	-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Cat 10	5
0302.32.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Cat 10	5
0302.33.00	-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Cat 0	0
0302.34.00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Cat 10	5
0302.35.00	-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Cat 10	5/0
0302.36.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Cat 0	0
0302.39.00	- - 기타	Cat 10	5
0302.41.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Cat 0	0
0302.42.00	-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Cat 15	10
0302.43.00	-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Cat 0	0
0302.44.00	-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Cat 0	0
0302.45.00	-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Cat 0	0
0302.46.00	-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Cat 15	10
0302.47.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Cat 15	10
0302.49.00	- - 기타	Cat 15	10/5/0
0302.51.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Cat 10	5
0302.52.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Cat 0	0
0302.53.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Cat 0	0
0302.54.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 · 유르피키스(Urophycis)종]	Cat 15	10
0302.55.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Cat 0	0
0302.56.00	-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Cat 15	10
0302.59.00	- - 기타	Cat 15	10/0
0302.7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Cat 15	10
0302.72.10	- - - 노랑꼬리 메기[판가시우스 판가시우스(Pangasius pangasius)]	Cat 15	10
0302.72.90	- - - 기타	Cat 15	10
0302.73.00	-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Cat 15	10
0302.74.00	- -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Cat 0	0
0302.79.00	- - 기타	Cat 15	10
0302.81.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Cat 0	0
0302.82.00	- - 가오리와 흉어[라지대(Rajidae)과]	Cat 15	10
0302.83.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Cat 15	10
0302.84.00	-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Cat 15	10
0302.85.00	- - 돔[스파리대(Sparidae)과]	Cat 15	10
0302.89.11	- - - - 그루퍼	Cat 15	10
0302.89.12	- - - - 긴 지느러미 게레치[펜타프리온 롱기마누스(Pentaprion longimanus)]	Cat 15	10
0302.89.13	- - - - 황매통이[트라치노세팔루스 미오프스(Trachinocephalus myops)]	Cat 15	10
0302.89.14	- - - - 리본피시[렘투라칸투스 사발라(Lepturacanthus savala)] · 등갈민태[죤니우스 벨랑게리(Johnius belangerii) · 황금리브민어[크리소치르 아우레우스(Chrysochir aureus)] 및 대안이석태[펜나히아 아네아(Pennahia anea)]	Cat 15	10
0302.89.16	- - - - 고등가라지[메갈라스피스 코르딜라(Megalaspis cordyla)], 얼룩활치[디프란 평타타(Drepane punctata)]와 큰꼬치고기[스피레나 바라쿠다(Sphyræna barracuda)]	Cat 15	10
0302.89.17	- - - - 흑병어[파라스트로마투스 니게르(Parastromatus niger)]	Cat 15	10
0302.89.18	- - - - 멍그로브 홍돔[루트야누스 아르겐티마쿨라투스(Lutjanus argentimaculatus)]	Cat 15	10
0302.89.19	- - - - 기타	Cat 15	10/5/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302.89.22	- - - - 스왁프 바브[펀티우스 출라(Puntius chola)]	Cat 15	10
0302.89.26	- - - - 줄무늬 날가지송어[폴리네무스 인디쿠스(Polynemus indicus)]와 별도랑벤자리[포마다시스 아르겐테우스(Pomadasyus argenteus)]	Cat 15	10
0302.89.27	- - - - 힐사 샤드[테누아로사 일리샤(Tenua losa ilisha)]	Cat 15	10
0302.89.28	- - - - 왈라고메기[왈라고 아투(Wallago attu)]와 자이언트 리버 메기[스페라타 싱갈라(Sperata seenghala)]	Cat 15	10
0302.89.29	- - - - 기타	Cat 15	10
0302.91.00	-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Cat 0	0
0302.92.00	- - 상어 지느러미	Cat 0	0
0302.99.00A	- - - 송어의 것[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다랑어의 것[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및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Cat 10	5/0
0302.99.00B	-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를 제외한 연어과의 것, 넙치[레인하르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서대[솔레아(Solea)종],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Cat 10	7/5/0
0302.99.00C	- - - 기타	Cat 0	10/5/0
0303.11.00	- -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Cat 0	0
0303.12.00	- - 그 밖의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Cat 0	0
0303.13.00	-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Cat 0	0
0303.14.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Cat 0	0
0303.19.00	- - 기타	Cat 0	0
0303.23.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EX	10
0303.24.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EX	10
0303.25.00	-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EX	10
0303.26.00	- -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Cat 0	0
0303.29.00	- - 기타	SL	1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303.31.00	- - 넙치[레인하드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Cat 15	5
0303.32.00	- - 가자미[플루로빅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Cat 15	5
0303.33.00	- - 서대[솔레아(Solea)종]	Cat 0	0
0303.34.00	- - 터벗(turbot)[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Cat 15	5
0303.39.00	- - 기타	Cat 15	5
0303.41.00	-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Cat 0	0
0303.42.00	-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Cat 15	5
0303.43.00	-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	Cat 15	5
0303.44.00	-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Cat 15	5
0303.45.10	- - - 대서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Cat 0	0
0303.45.90	- - -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Cat 15	5
0303.46.00	-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Cat 0	0
0303.49.00	- - 기타	Cat 15	5
0303.51.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EX	5
0303.53.00	-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EX	5
0303.54.10	- -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Cat 15	5
0303.54.20	- - - 태평양 고등어[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Cat 15	5
0303.55.00	-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SL	10
0303.56.00	-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돔(Rachycentron canadum)]	SL	10
0303.57.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SL	10
0303.59.10	- - - 줄무늬고등어[라스트렐리거 카나구르타(Rastrelliger kanagurta)], 아일랜드고등어[라스트렐리거 파우니(Rastrelliger faughni)]	SL	10
0303.59.20	- - - 은병어[팜푸스(Pampus)종]	SL	10
0303.59.90	- - - 기타	Cat 0	10/5/0
0303.63.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aeglefinus)]	Cat 15	5
0303.64.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Cat 0	0
0303.65.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Cat 0	0
0303.66.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 · 유르피키스(Urophycis)종]	Cat 0	0
0303.67.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SL	10
0303.68.00	-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Micromesistius poutassou)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Micromesistius australis)]	SL	10
0303.69.00	- - 기타	Cat 0	10/0
0303.81.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Cat 15	5
0303.82.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Cat 15	10/5
0303.83.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Cat 0	0
0303.84.00	- - 농어[디센트라르쿠스(Dicentrarchus)종]	Cat 0	0
0303.89.11	- - - - 그루퍼	EX	10
0303.89.12	- - - - 긴 지느러미 게레치[펜타프리온 롱기마누스(Pentaprion longimanus)]	SL	10
0303.89.13	- - - - 황매통이[트라치노세팔루스 미오프스(Trachinocephalus myops)]	SL	10
0303.89.14	- - - - 리본피시[렘투라칸투스 사발라(Lepturacanthus savala)] · 등갈민태[죤니우스 벨랑게리(Johnius belangerii) · 황금리브민어[크리소치르 아우레우스(Chrysochir aureus)] 및 대안이석태[펜나히아 아네아(Pennahia anea)]	SL	10
0303.89.16	- - - - 고등가라지[메갈라스피스 코르딜라(Megalaspis cordyla)], 얼룩활치[디프란 평타타(Drepane punctata)]와 큰꼬치고기[스피레나 바라쿠다(Sphyraena barracuda)]	SL	10
0303.89.17	- - - - 흑병어[파라스트로마투스 니게르(Parastromatus niger)]	SL	10
0303.89.18	- - - - 멩그로브 홍돔[루트야누스 아르겐티마쿨라투스(Lutjanus argentimaculatus)]	Cat 15	10
0303.89.19	- - - - 기타	Cat 0	10/5/0
0303.89.22	- - - - 스왁프 바브[펀티우스 촐라(Puntius chola)]	SL	10
0303.89.26	- - - - 줄무늬 날가지숭어[폴리네무스 인디쿠스(Polynemus indicus)와 별도랑벤자리[포마다시스 아르겐테우스(Pomadasyus argenteus)]	SL	1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303.89.27	- - - - 힐사 샤드[테누아로사 일리샤(Tenualeosa ilisha)]	SL	10
0303.89.28	- - - - 왈라고메기[왈라고 아투(Wallago attu)]와 자이언트 리버 메기[스페라타 싱갈라(Sperata seenghala)]	SL	10
0303.89.29	- - - - 기타	EX	10/0
0303.91.00	-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Cat 0	0
0303.92.00	- - 상어 지느러미	Cat 15	5
ex1 0303.99.00A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Cat 15	5
ex2 0303.99.00A	다랑어의 것[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 {Euthynnus(Katsuwonus) pelamis}],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EX	5/0
0303.99.00B	- - - 연어과의 것,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넙치[레인하르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서대[솔레아(Solea)종],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 · 유르피키스(Urophycis)종],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농어[디	EX	7/0
0303.99.00C	- - - 기타	EX	10/5/0
0304.3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Cat 0	0
0304.32.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루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루스(Ictalurus)종]	Cat 0	0
0304.33.00	-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Cat 0	0
0304.39.00	- - 기타	Cat 0	0
0304.41.00	-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벨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Cat 0	0
0304.42.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Cat 0	0
0304.43.00	- - 넙치류[플루로벡티대(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킵탈미대(Scophthalmidae)과 및 시타리대(Citharidae)과]	Cat 0	0
0304.44.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o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Cat 0	0
0304.45.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Cat 0	0
0304.46.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Cat 0	0
0304.47.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Cat 0	0
0304.48.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Cat 0	0
0304.49.0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304.5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Cat 0	0
0304.52.00	- - 연어과	Cat 0	0
0304.53.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Cat 0	0
0304.54.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Cat 0	0
0304.55.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Cat 0	0
0304.56.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Cat 0	0
0304.57.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Cat 0	0
0304.59.00	- - 기타	Cat 0	0
0304.6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Cat 0	0
0304.62.00	-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Cat 0	0
0304.63.00	-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Cat 0	0
0304.69.00	- - 기타	Cat 0	0
0304.71.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Cat 0	0
0304.72.00	-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Melanogrammus aeglefinus)]	Cat 0	0
0304.73.00	-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Pollachius virens)]	Cat 0	0
0304.74.00	-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 · 유르피키스(Urophycis)종]	Cat 0	0
0304.75.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Cat 0	0
0304.79.00	- - 기타	Cat 0	0
0304.81.00	-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벨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Cat 0	0
0304.82.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Cat 0	0
0304.83.00	- - 넙치류[플루로벡티대(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킵탈미대(Scophthalmidae)과 및 시타리대(Citharidae)과]	Cat 0	0
0304.84.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Cat 0	0
0304.85.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Cat 0	0
0304.86.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Cat 0	0
0304.87.00	-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또는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Katsuwonus) pelamis)]	Cat 0	0
0304.88.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Cat 0	0
0304.89.00	- - 기타	Cat 0	0
0304.91.00	-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Cat 0	0
0304.92.00	-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Dissostichus)종]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304.93.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겔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Cat 0	0
0304.94.00	-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	Cat 0	0
0304.95.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Cat 0	0
0304.96.00	-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Cat 0	0
0304.97.00	-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Cat 0	0
0304.99.00	- - 기타	Cat 0	0
0305.10.00	- 어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305.20.10	- - 그 밖의 민물어류의 것(건조한 것 · 염장한 것 또는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5/0
0305.20.90	- - 기타	EX	5/0
0305.31.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겔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Cat 0	0
0305.32.00	-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Cat 0	0
0305.39.10	- - - 민물 동갈치[세네톤 칸실라(Xenentodon cancila)] · 범꼬리촉수[유페네우스 비타투스(Upeneus vittatus)] 및 턱전갱이[올루아 멘테일스(Ulua mentalis)]	Cat 0	0
0305.39.20	- - - 리본피시[렙투라칸투스 사발라(Lepturacanthus savala)] · 등갈민태[조니우스 벨랑게리(Johnius belangerii)] · 황금리브민어[크리소치르 아우레우스(Chrysochir aureus)] 및 대안이석태[팬나히아 아네아(Pennahia anea)]	Cat 0	0
0305.39.91	- - - - 그 밖의 민물어류의 것	Cat 0	0
0305.39.92	- - - - 해수어의 것	Cat 0	0
0305.39.99	- - - - 기타	Cat 0	0
0305.41.00	-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및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Cat 0	0
0305.42.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Cat 0	0
0305.43.00	-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및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Oncorhynchus chrysogaster)]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305.44.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램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Cat 0	0
0305.49.00	- - 기타	Cat 0	0
0305.51.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Cat 0	0
0305.52.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램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Cat 0	0
0305.53.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및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	Cat 0	0
0305.54.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종], 상치[스콤버로모러스(Scomberomorus)종],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종],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Rachycentron canadum)], 은병어[팜푸스(Pampus)종], 콩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데캅테러스(Decapterus)종],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종],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EX	15/0
0305.59.21	- - - - 멸치[스톨레포러스(Stolephorus)종 · 코일리아(Coilia)종 · 스테티핀나(Setipinna)종 · 리코트리사(Lycothrissa)종 · 트리사(Thryssa)종 · 엔크라니콜리나	EX	15/0
0305.59.29	- - - - 기타	EX	15/0
0305.59.90	- - - 기타	Cat 0	0
0305.61.00	-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Cat 0	0
0305.62.00	-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Cat 0	0
0305.63.00	- - 멸치[엔그라울리스(Engraulis)종]	EX	5
0305.64.00	-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램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및 가물치[카나(Channa)종]	EX	5
0305.69.10	- - - 해수어	EX	5
0305.69.90	- - 기타	Cat 1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ex1 0305.71.00	훈제한 것 또는 건조한 것	Cat 0	0
ex2 0305.71.00	기타	Cat 15	5
0305.72.11	- - - - 대구의 것	EX	5/0
ex1 0305.72.19	멸치의 것(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어류의 것(훈제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10/0
ex2 0305.72.19	기타	Cat 15	5
0305.72.91	- - - - 대구의 것	EX	5/0
ex1 0305.72.99	멸치의 것(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어류의 것(훈제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10/0
ex2 0305.72.99	기타	Cat 15	5
0305.79.10	- - - 대구의 것	EX	5/0
ex1 0305.79.90	멸치의 것(건조한 것으로 염장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그 밖의 어류의 것(훈제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10/0
ex2 0305.79.90	기타	Cat 15	5
0306.11.10	- - - 훈제한 것	Cat 0	0
0306.11.90	- - - 기타	Cat 0	0
0306.12.10	- - - 훈제한 것	Cat 0	0
0306.12.90	- - - 기타	Cat 0	0
0306.14.10	- - - 딱지가 연한 게(soft shell crabs)	EX	15/0
0306.14.90	- - - 기타	EX	15/0
0306.15.00	-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Cat 0	0
0306.16.00	-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 · 크란곤 크란곤(Crangon crangon)]	EX	15/0
0306.17.11	- - - - 머리가 없는 것	EX	15/0
0306.17.19	- - - - 기타	EX	15/0
0306.17.21	- - - - 머리가 없는 것(꼬리를 포함한다)	EX	15/0
0306.17.22	- - - - 머리가 없는 것(꼬리를 포함하지 않는다)	EX	15/0
0306.17.29	- - - - 기타	EX	15/0
0306.17.30	- - - 담수산 새우(Macrobrachium rosenbergii)	EX	15/0
0306.17.90	- - - 기타	EX	15/0
0306.19.00	- - 기타[갑각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306.31.10	- - - 번식용	Cat 0	0
0306.31.20	- - - 기타(살아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306.31.3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0	0
0306.32.10	- - - 번식용	Cat 0	0
0306.32.20	- - - 기타(살아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306.32.3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0	0
0306.33.00	- - 게	EX	15
0306.34.00	-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Cat 0	0
0306.35.10	- - - 번식용	EX	15
0306.35.20	- - - 기타(살아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EX	15
0306.35.3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EX	15
0306.36.11	- - - - 홍다리 얼룩새우(Penaeus monodon)	EX	15
0306.36.12	- - - - 흰다리새우(Litopenaeus vannamei)	EX	15
0306.36.13	- - - - 담수산 새우(Macrobrachium rosenbergii)	EX	15
0306.36.19	- - - - 기타	EX	15
0306.36.21	- - - - 홍다리 얼룩새우(Penaeus monodon)	EX	15
0306.36.22	- - - - 흰다리새우(Litopenaeus vannamei)	EX	15
0306.36.23	- - - - 담수산 새우(Macrobrachium rosenbergii)	EX	15
0306.36.29	- - - - 기타	EX	15
0306.36.31	- - - - 홍다리 얼룩새우(Penaeus monodon)	EX	15
0306.36.32	- - - - 흰다리새우(Litopenaeus vannamei)	EX	15
0306.36.33	- - - - 담수산 새우(Macrobrachium rosenbergii)	EX	15
0306.36.39	- - - - 기타	EX	15
0306.39.10	- - - 살아 있는 것	Cat 0	0
0306.39.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0	0
0306.39.30	- - -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Cat 0	0
0306.91.21	- - - - 훈제한 것	Cat 0	0
0306.91.29	- - - - 기타	Cat 0	0
0306.91.31	- - - - 훈제한 것	Cat 0	0
0306.91.39	- - - - 기타	Cat 0	0
0306.92.21	- - - - 훈제한 것	Cat 0	0
0306.92.29	- -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306.92.31	- - - - 훈제한 것	Cat 0	0
0306.92.39	- - - - 기타	Cat 0	0
0306.93.21	- - - - 훈제한 것	Cat 0	0
0306.93.29	- - - - 기타	Cat 0	0
0306.93.30	- - - 기타	Cat 0	0
0306.94.21	- - - - 훈제한 것	Cat 0	0
0306.94.29	- - - - 기타	Cat 0	0
0306.94.31	- - - - 훈제한 것	Cat 0	0
0306.94.39	- - - - 기타	Cat 0	0
0306.95.21	- - - - 껍질이 붙은 것(물에 삶았거나 찢 것으로 한정한다)	EX	15/0
0306.95.29	기타	EX	15/0
0306.95.30	- - - 기타	EX	15/0
0306.99.21	- - - - 훈제한 것	Cat 0	0
0306.99.29	- - - - 기타	Cat 0	0
0306.99.31	- - - - 훈제한 것	Cat 0	0
0306.99.39	- - - - 기타	Cat 0	0
0307.11.10	- - - 살아 있는 것	Cat 0	0
0307.1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0	0
0307.12.00	- - 냉동한 것	Cat 0	0
0307.1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7.19.30	- - - 훈제한 것	Cat 0	0
0307.21.10	- - 살아 있는 것	EX	5
0307.2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15	5
0307.22.00	- - 냉동한 것	Cat 0	0
0307.29.3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7.29.40	- - - 훈제한 것	Cat 0	0
0307.31.10	- - - 살아 있는 것	Cat 0	0
0307.3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0	0
0307.32.00	- - 냉동한 것	Cat 0	0
0307.39.3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7.39.40	- - - 훈제한 것	Cat 0	0
0307.42.11	- - -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 · 러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 · 세피올라(Sepiola) 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 로리고(Loligo)종 · 노토타다루스(Nototodarus)종 · 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Cat 15	3
0307.42.19	- - - - 기타	Cat 0	0
0307.42.21	- - -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 · 러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 · 세피올라(Sepiola) 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 로리고(Loligo)종 · 노토타다루스(Nototodarus)종 · 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Cat 15	3
0307.42.29	- - - - 기타	Cat 0	0
0307.43.10	- -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 · 러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 · 세피올라(Sepiola) 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 로리고(Loligo)종 · 노토타다루스(Nototodarus)종 · 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Cat 15	3
0307.43.90	- - - 기타	EX	5/0
0307.49.21	- - - - 갑오징어[세피아 오피시날리스(Sepia officinalis) · 러시아 마크로소마(Rossia macrosoma) · 세피올라(Sepiola) 종]와 오징어[옴마스트레페스(Ommastrephes)종 · 로리고(Loligo)종 · 노토타다루스(Nototodarus)종 · 세피오투디스(Sepioteuthis)종]	Cat 15	3
0307.49.29	- - - - 기타	EX	5/0
0307.49.30	- - - 훈제한 것	EX	10/0
0307.51.10	- - - 살아 있는 것	Cat 0	0
0307.5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0	0
0307.52.00	- - 냉동한 것	Cat 0	0
0307.5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7.59.30	- - - 훈제한 것	Cat 0	0
0307.60.10	- - 살아 있는 것	Cat 0	0
0307.60.20	- - 신선한 것, 냉장이나 냉동한 것	Cat 0	0
0307.60.40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7.60.50	- - 훈제한 것	Cat 0	0
0307.71.10	- - - 살아 있는 것	EX	5/0
0307.7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10	5/0
0307.72.00	- - 냉동한 것	EX	5/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307.79.3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EX	5/0
0307.79.40	－ － － 훈제한 것	Cat 0	0
0307.81.10	－ － － 살아 있는 것	SL	10
0307.8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SL	10
0307.82.10	－ － － 살아 있는 것	Cat 0	0
0307.82.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0	0
0307.83.00	－ －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EX	5
0307.84.00	－ －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Cat 15	5
0307.87.1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EX	5/0
0307.87.20	－ － － 훈제한 것	Cat 0	0
0307.88.1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EX	5/0
0307.88.20	－ － － 훈제한 것	Cat 0	0
0307.91.10	－ － － 살아 있는 것	Cat 0	0
0307.9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0	0
0307.92.00	－ － 냉동한 것	EX	5/0
0307.99.30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EX	5/0
0307.99.40	－ － － 훈제한 것	EX	5/0
0307.99.50	－ － －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Cat 0	0
0308.11.10	－ － － 살아 있는 것	Cat 0	0
0308.1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0	0
0308.12.00	－ － 냉동한 것	Cat 0	0
0308.1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8.19.30	－ － － 훈제한 것	Cat 0	0
0308.21.10	－ － － 살아 있는 것	Cat 0	0
0308.21.20	－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0	0
0308.22.00	－ － 냉동한 것	Cat 15	5
0308.29.20	－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8.29.30	－ － － 훈제한 것	Cat 0	0
0308.30.10	－ － 살아 있는 것	Cat 0	0
0308.30.20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0	0
0308.30.30	－ － 냉동한 것	Cat 15	5
0308.30.40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8.30.50	－ － 훈제한 것	Cat 0	0
0308.90.10	－ － 살아 있는 것	Cat 0	0
0308.90.20	－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Cat 0	0
0308.90.30	－ － 냉동한 것	Cat 10	5/0
0308.90.40	－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Cat 0	0
0308.90.50	－ － 훈제한 것	Cat 0	0
0308.90.90	－ － 기타	Cat 0	0
0401.10.10	－ － 액체 상태의 것	Cat 15	3
0401.10.90	－ － 기타	Cat 15	3
0401.20.10	－ － 액체 상태의 것	Cat 15	3
0401.20.90	－ － 기타	Cat 15	3
0401.40.10	－ － 액체 상태의 밀크	Cat 15	3
0401.40.20	－ － 냉동한 밀크	Cat 15	3
0401.40.90	－ － 기타	Cat 15	3
0401.50.10	－ － 액체 상태의 것	Cat 15	3
0401.50.90	－ － 기타	Cat 15	3
0402.10.41	－ － － 순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Cat 0	1
0402.10.42	－ － － 순중량이 2킬로그램 미만으로 포장한 것	Cat 0	0
0402.10.49	－ － － 기타	Cat 0	0
0402.10.91	－ － － 순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Cat 0	0
0402.10.92	－ － － 순중량이 2킬로그램 미만으로 포장한 것	Cat 0	0
0402.10.99	－ － － 기타	Cat 0	0
0402.21.20	－ － － 순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Cat 0	1
0402.21.30	－ － － 순중량이 2킬로그램 미만으로 포장한 것	Cat 0	1
0402.21.90	－ － － 기타	Cat 0	1
0402.29.20	－ － － 순중량이 20킬로그램 이상으로 포장한 것	Cat 0	1
0402.29.30	－ － － 순중량이 2킬로그램 미만으로 포장한 것	Cat 0	1
0402.29.90	－ － － 기타	Cat 0	1
0402.91.0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Cat 15	5
0402.99.00	－ － 기타	Cat 15	5
0403.10.21	－ － － 향·과실[펄프(pulp)나 잼을 포함한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	Cat 15	7
0403.10.29	－ － － 기타	Cat 15	7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403.10.91	- - - 향·과실[펄프(pulp)나 잼을 포함한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	Cat 15	7
0403.10.99	- - - 기타	Cat 15	7
0403.90.10	- - 버터밀크	Cat 0	1
0403.90.90	- - 기타	EX	5/0
0404.10.10	- - 가루 모양	Cat 0	0
0404.10.90	- - 기타	Cat 0	0
0404.90.00	- 기타	Cat 15	3
0405.10.00	- 버터	Cat 15	5
0405.20.00	-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Cat 0	0
0405.90.10	- - 무수 유지방	Cat 0	1
0405.90.20	- - 버터오일	Cat 0	1
0405.90.30	- - 버터기름	Cat 0	1
0405.90.90	- - 기타	Cat 0	1
0406.10.10	-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포함한다)	Cat 15	3
0406.10.20	- - 커드(curd)	Cat 15	3
0406.20.10	- - 총중량이 20킬로그램을 초과하여 포장한 것	Cat 0	1
0406.20.90	- - 기타	Cat 0	1
0406.30.00	-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Cat 15	7
0406.40.00	-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Cat 15	3
0406.90.00	- 그 밖의 치즈	Cat 15	7
0407.11.10	- - - 번식용	Cat 0	0
0407.11.90	- - - 기타	Cat 15	10
0407.19.11	- - - - 번식용	Cat 0	0
0407.19.19	- - - - 기타	Cat 15	10
0407.19.91	- - - - 번식용	Cat 0	0
0407.19.99	- - - - 기타	Cat 15	10
0407.21.0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Cat 15	5
0407.29.10	- - - 오리	Cat 10	5
0407.29.90	- - - 기타	Cat 15	5
0407.90.10	-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Cat 15	5
0407.90.20	- - 오리	Cat 10	5
0407.90.90	- - 기타	Cat 15	5
0408.11.00	- - 건조한 것	Cat 0	0
0408.19.00	- - 기타	Cat 0	0
0408.91.00	- - 건조한 것	Cat 15	3
0408.99.00	- - 기타	Cat 15	3
0409.00.00	천연꿀	Cat 15	7
0410.00.10	- 조류의 동지	Cat 0	0
0410.00.90	- 기타	Cat 0	0
0501.00.00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 그 웨이스트(waste)	Cat 0	0
0502.10.00	- 돼지털 또는 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Cat 0	0
0502.90.00	- 기타	Cat 0	0
0504.00.00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 및 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건조한 것이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505.10.10	- - 오리 깃털	Cat 0	0
0505.10.90	- - 기타	Cat 0	0
0505.90.10	- - 오리 깃털	Cat 0	0
0505.90.90	- - 기타	Cat 0	0
0506.10.00	-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0506.90.00	- 기타	Cat 0	3/0
0507.10.00	-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가루와 웨이스트(waste)	Cat 0	0
0507.90.20	- - 귀갑(龜甲)	Cat 0	0
0507.90.90	- - 기타	Cat 0	3/0
0508.00.20	- 연체동물·갑각류 또는 극피동물의 껍데기	Cat 0	0
0508.00.90	- 기타	Cat 0	0
0510.00.0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빗(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썬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과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511.10.00	- 소의 정액	Cat 0	0
0511.91.10	- - - 어란(魚卵)과 어백(魚白)	Cat 0	0
0511.91.20	- - - 알테미아의 알[브라인 쉬림프(Brine shrimp)의 알]	Cat 0	0
0511.91.30	- - - 어피(魚皮)	Cat 0	0
0511.91.90	- - - 기타	Cat 0	0
0511.99.10	- - - 가축의 정액	Cat 0	0
0511.99.20	- - - 잠종(蠶種)	Cat 0	0
0511.99.30	- - - 해면 스펀지	Cat 0	0
0511.99.90	- - - 기타	Cat 0	0
0601.10.00	-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 및 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Cat 0	0
0601.20.10	- - 치커리(chicory)	Cat 0	0
0601.20.20	- - 치커리(chicory) 뿌리	Cat 0	0
0601.20.90	- - 기타	Cat 0	0
0602.10.10	- - 난의 것	Cat 0	1
0602.10.20	- - 고무나무의 것	Cat 0	1
0602.10.90	- - 기타	Cat 0	1/0
0602.20.00	-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0602.30.00	-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0602.40.00	-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0602.90.10	- - 뿌리가 있는 껌꽃이용 난과 접붙임용 난	Cat 0	0
0602.90.20	- - 난의 묘목	Cat 0	0
0602.90.40	- - 히비어 속의 발아시킨 그루터기	Cat 0	3
0602.90.50	- - 히비어 속의 묘목	Cat 0	3
0602.90.60	- - 히비어 속의 눈접용 접가지	Cat 0	3
0602.90.90	- - 기타	Cat 0	3/0
0603.11.00	- - 장미	Cat 15	15
0603.12.00	- - 카네이션	Cat 15	15
0603.13.00	- - 난	Cat 15	15/5
0603.14.00	- - 국화	Cat 15	15
0603.15.00	- - 백합[릴리움(Lilium)종]	Cat 10	5
0603.19.00	- - 기타	Cat 10	5/0
0603.90.00	- 기타	Cat 10	5
0604.20.10	- - 이끼와 지의(地衣)	Cat 0	0
0604.20.90	- - 기타	Cat 0	0
0604.90.10	- - 이끼와 지의(地衣)	Cat 0	0
0604.90.90	- - 기타	Cat 0	0
0701.10.00	- 종자	Cat 0	0
0701.90.10A	- - - 쿼터이내	EX	32
0701.90.10B	- - - 쿼터초과	EX	32
0701.90.90A	- - - 쿼터이내	EX	32
0701.90.90B	- - - 쿼터초과	EX	32
0702.00.00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0703.10.11	- - - 증식용 인경(鱗莖)	EX	32
0703.10.19	- - - 기타	EX	32
0703.10.21	- - - 증식용 인경(鱗莖)	EX	32
0703.10.29	- - - 기타	EX	32
0703.20.10	- - 증식용 인경(鱗莖)	EX	32
0703.20.90	- - 기타	EX	32
0703.90.10	- - 증식용 인경(鱗莖)	Cat 15	5
0703.90.90	- - 기타	Cat 15	5
0704.10.10	- - 꽃양배추	EX	20
0704.10.20	- -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EX	20
0704.20.00	- 방울다다기 양배추	Cat 15	3
0704.90.10	- - 라운드[드럼헤드(drumhead)] 양배추	EX	32
0704.90.20	- - 갓	Cat 0	0
0704.90.90A	- - - 양배추	EX	32
0704.90.90B	- - - 기타	Cat 0	0
0705.11.00	- - 결구(結球) 상추	EX	20
0705.19.00	- - 기타	Cat 15	5
0705.21.00	- -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Cat 15	5
0705.29.00	- - 기타	Cat 15	5
0706.10.10	- - 당근	EX	32
0706.10.20	- - 순무	Cat 1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706.90.00	- 기타	Cat 15	5
0707.00.00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0708.10.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Cat 15	5
0708.20.10	- - 강낭콩	Cat 15	5
0708.20.20	- - 긴 콩	Cat 15	5
0708.20.90	- - 기타	Cat 15	5
0708.90.00	-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Cat 15	5
0709.20.0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Cat 15	5
0709.30.00	- 가지(에그플랜트)	Cat 0	0
0709.40.00	-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Cat 15	5
0709.51.00	-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Cat 3	5/0
0709.59.10	- - - 송로(松露)	Cat 0	0
0709.59.90	- - - 기타	EX	5/0
0709.60.10	-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	Cat 15	5
0709.60.90	- - 기타	Cat 15	5
0709.70.00	- 시금치류	Cat 10	5
0709.91.00	- -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Cat 0	0
0709.92.00	- - 올리브	Cat 0	0
0709.93.00	- -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Cat 15	5
0709.99.10	- - - 스위트콘	Cat 0	0
0709.99.20	- - - 레이디스 핑거[오크라(Okra)]	Cat 0	0
0709.99.90	- - - 기타	EX	5/0
0710.10.00	- 감자	Cat 0	0
0710.21.00	-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Cat 0	0
0710.22.00	- -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Cat 0	0
0710.29.00	- - 기타	Cat 0	0
0710.30.00	- 시금치류	Cat 0	0
0710.40.00	- 스위트콘	Cat 0	0
0710.80.00	- 그 밖의 채소	EX	10/5/0
0710.90.00	- 채소류의 혼합물	Cat 0	0
0711.20.10	- - 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	Cat 0	0
0711.20.90	- - 기타	Cat 0	0
0711.40.10	- - 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	Cat 15	5
0711.40.90	- - 기타	Cat 15	5
0711.51.10	- - - 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	Cat 0	0
0711.51.90	- - - 기타	Cat 0	0
0711.59.10	- - - 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	Cat 0	0
0711.59.90	- - - 기타	Cat 0	0
0711.90.10	- - 스위트콘	EX	16
0711.90.20	-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	EX	16
0711.90.30	- - 서양풍조목	Cat 0	0
0711.90.40	- - 양파(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32
0711.90.50	- - 양파(이산화유황가스 외의 것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16
0711.90.60	- - 기타(이산화유황가스로 보존처리 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16
0711.90.90	- - 기타	EX	16
0712.20.00	- 양파	Cat 15	3
0712.31.00	-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Cat 0	0
0712.32.00	- -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Cat 0	0
0712.33.00	- -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Cat 0	0
0712.39.10	- - - 송로(松露)	Cat 0	0
0712.39.20	- - - 표고버섯(donggu)	Cat 15	3
0712.39.90	- - - 기타	Cat 0	0
0712.90.10	- - 마늘	Cat 15	3
0712.90.90	- - 기타	EX	3/0
0713.1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Cat 0	0
0713.10.90	- - 기타	Cat 0	0
0713.2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Cat 0	0
0713.20.90	- - 기타	Cat 0	0
0713.31.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Cat 15	10
0713.31.90	- - - 기타	Cat 15	10
0713.32.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Cat 15	10
0713.32.90	- - - 기타	Cat 15	10
0713.33.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Cat 0	1
0713.33.90	- - - 기타	Cat 0	1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713.34.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Cat 0	3
0713.34.90	- - - 기타	Cat 15	3
0713.35.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Cat 0	3
0713.35.90	- - - 기타	Cat 15	3
0713.39.10	- - - 파종에 적합한 것	Cat 0	3
0713.39.90	- - - 기타	Cat 15	3
0713.4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Cat 0	3
0713.40.90	- - 기타	Cat 15	3
0713.5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Cat 0	0
0713.50.90	- - 기타	Cat 0	0
0713.6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Cat 0	0
0713.60.90	- - 기타	Cat 0	0
0713.9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Cat 0	0
0713.90.90	- - 기타	Cat 0	0
0714.10.11	- - - 건조한 칩	EX	32
0714.10.19	- - - 기타	EX	32
0714.10.91	- - - 냉동한 것	EX	32
0714.10.99	- - - 기타	EX	32
0714.20.10	- - 냉동한 것	EX	32
0714.20.90	- - 기타	EX	32
0714.30.10	- - 냉동한 것	Cat 10	5
0714.30.90	- - 기타	Cat 15	10
0714.40.10	- - 냉동한 것	Cat 10	5
0714.40.90	- - 기타	Cat 15	10
0714.50.10	- - 냉동한 것	Cat 10	5
0714.50.90	- - 기타	Cat 15	10
0714.90.11	- - - 냉동한 것	Cat 10	5
0714.90.19	- - - 기타	Cat 15	10
0714.90.91	- - - 냉동한 것	Cat 10	5
0714.90.99	- - - 기타	Cat 0	10/5
0801.11.00	- - 말린 것	Cat 0	0
0801.12.00	- -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Cat 0	0
0801.19.10	- - - 어린 코코넛	Cat 0	0
0801.19.90	- - - 기타	Cat 0	0
0801.2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0	0
0801.2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Cat 0	0
0801.3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15	5
0801.3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Cat 15	5
0802.1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0	0
0802.1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Cat 0	0
0802.2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0	0
0802.2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Cat 0	0
0802.3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15	3
0802.3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Cat 15	3
0802.4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15	3
0802.4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Cat 15	3
0802.5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0	0
0802.5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Cat 0	0
0802.6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0	0
0802.62.00	- - 껍데기를 벗긴 것	Cat 0	0
0802.70.00	-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Cat 0	0
0802.80.00	- 빈랑자(areca nut)	Cat 0	0
0802.90.00	- 기타	Cat 0	3/0
0803.10.00	- 플랜틴(plantain)	EX	15
0803.90.10	- - 레이디핑거 바나나(Lady's finger banana)	EX	15
0803.90.90	- - 기타	EX	15
0804.10.00	- 대추야자	Cat 0	3
0804.20.00	- 무화과	Cat 0	0
0804.30.00	- 파인애플	EX	10
0804.40.00	- 아보카도(avocado)	Cat 0	0
0804.50.10	- - 구아바(guava)	EX	15
0804.50.20	- - 망고(mango)	EX	15
0804.50.30	- - 망고스틴(mangosteen)	EX	15
0805.10.10	- - 신선한 것	EX	10
0805.10.20	- - 건조한 것	EX	1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805.21.00	- -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과 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Cat 3	10
0805.22.00	- - 클레멘타인(clementine)	SL	10
0805.29.00	- - 기타	SL	10
0805.40.0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Cat 0	0
0805.50.10	- -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시트러스 리머눔(Citrus limonum)]	EX	10
0805.50.20	- -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Citrus aurantifolia)·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Cat 0	0
0805.90.00	- 기타	SL	10
0806.10.00	- 신선한 것	Cat 15	7
0806.20.00	- 건조한 것	Cat 15	3
0807.11.00	- - 수박	Cat 0	0
0807.19.00	- - 기타	Cat 15	5
0807.20.00	- 포포(papaw)[파파야(papaya)]	EX	15
0808.10.00	- 사과	Cat 3	7
0808.30.00	- 배	Cat 15	7
0808.40.00	- 마르멜로(quince)	Cat 0	0
0809.10.00	- 살구	Cat 0	0
0809.21.00	- -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Cat 15	5
0809.29.00	- - 기타	Cat 15	5
0809.30.00	- 복숭아[넥터린(nectarine)을 포함한다]	Cat 15	7
0809.40.10	- - 자두	Cat 0	0
0809.40.20	- - 슬로(sloe)	Cat 15	5
0810.10.00	- 초본류 딸기	Cat 3	5
0810.20.00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 및 로간베리(loganberry)	Cat 0	0
0810.30.00	-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스베리(gooseberry)	Cat 0	0
0810.40.00	-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Cat 0	0
0810.50.00	- 키위프루트(kiwifruit)	Cat 15	5
0810.60.00	- 두리안(durian)	Cat 15	10
0810.70.00	- 감	Cat 3	10/5
0810.90.10	- - 용안(longans), 마타쿠칭(mata kucing)	Cat 15	10
0810.90.20	- - 리치(lychees)	EX	10
0810.90.30	- - 람부탄(rambutan)	Cat 15	10
0810.90.40	- - 랑삿(langsat)[란조네스(Lanzones)]	Cat 15	10
0810.90.50	- - 잭프루트(jackfruit)[첼페닥과 낭까(cempedak and nangka)를 포함한다]	Cat 15	10
0810.90.60	- - 타마린드(tamarinds)	Cat 15	10
0810.90.70	- - 스타프루트(starfruit)	Cat 15	10
0810.90.91	- - - 살락(salacca)[스네이크 프루트(snake fruit)]	Cat 15	10
0810.90.92	- - - 용과(dragon fruit)	Cat 15	10
0810.90.93	- - - 사포딜라(sapodilla)[치쿠 프루트(ciku fruit)]	Cat 15	10
0810.90.94	- - - 석류[푸니카(Punica)종], 사위쑤이나 스위트쑤[안노나(Annona)종], 벨 프루트(bell fruit)[시지지움(Syzygium)종·에우게니아(Eugenia)종], 마프랑[보우에아(Bouea)종], 패션프루트(passion fruit)[패시플로라(Passiflora)종], 코튼 프루트[산도리کم(Sandoricum)종], 대추나무[지지푸스(Ziziphus)종] 및 탬포이나 람바이[바카우레아(Baccaurea)종]	EX	10
0810.90.99	- - - 기타	EX	10/5
0811.10.00	- 초본류 딸기	EX	5
0811.20.0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 또는 적색의 커런트(currant) 및 구스베리	Cat 0	0
0811.90.00	- 기타	Cat 15	7
0812.10.00	- 체리	Cat 15	3
0812.90.10	- - 초본류 딸기	EX	5
0812.90.90	- - 기타	Cat 0	0
0813.10.00	- 살구	Cat 0	0
0813.20.00	- 프룬(prunes)	Cat 0	0
0813.30.00	- 사과	EX	7
0813.40.10	- - 용안(longans)	Cat 15	7
0813.40.20	- - 타마린드(tamarinds)	Cat 15	7
0813.40.90	- - 기타	Cat 15	7
0813.50.10	- - 전중량에서 캐슈너트(cashew nut)나 브라질너트(Brazil nuts)가 차지하는 중량이 우세한 것	Cat 15	5
0813.50.20	- - 전중량에서 그 밖의 견과류가 차지하는 중량이 우세한 것	Cat 15	5
0813.50.30	- - 전중량에서 대추야자가 차지하는 중량이 우세한 것	Cat 1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813.50.40	- - 전중량에서 아보카도(avocado)나 오렌지나 만다린(mandarins)[탄제린(tangerines)과 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이 차지하는 중량이 우세한 것	Cat 15	5
0813.50.90	- - 기타	Cat 15	5
0814.00.00	감귤류의 껍질이나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한 것, 건조한 것 또는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 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0901.11.10A	- - - - 쿼터이내	EX	5
0901.11.10B	- - - - 쿼터초과	EX	5
0901.11.90A	- - - - 쿼터이내	EX	5
0901.11.90B	- - - - 쿼터초과	EX	5
0901.12.10A	- - - - 쿼터이내	EX	5
0901.12.10B	- - - - 쿼터초과	EX	5
0901.12.90A	- - - - 쿼터이내	EX	5
0901.12.90B	- - - - 쿼터초과	EX	5
0901.21.10A	- - - - 쿼터이내	EX	5
0901.21.10B	- - - - 쿼터초과	EX	5
0901.21.20A	- - - - 쿼터이내	EX	5
0901.21.20B	- - - - 쿼터초과	EX	5
0901.22.10A	- - - - 쿼터이내	EX	5
0901.22.10B	- - - - 쿼터초과	EX	5
0901.22.20A	- - - - 쿼터이내	EX	5
0901.22.20B	- - - - 쿼터초과	EX	5
0901.90.10A	- - - 쿼터이내	EX	5
0901.90.10B	- - - 쿼터초과	EX	5
0901.90.20A	- - - 쿼터이내	EX	5
0901.90.20B	- - - 쿼터초과	EX	5
0902.10.10	- - 잎	Cat 15	3
0902.10.90	- - 기타	Cat 15	3
0902.20.10	- - 잎	Cat 15	3
0902.20.90	- - 기타	Cat 15	3
0902.30.10	- - 잎	Cat 0	0
0902.30.90	- - 기타	Cat 0	0
0902.40.10	- - 잎	Cat 0	0
0902.40.90	- - 기타	Cat 0	0
0903.00.00	마테(maté)	Cat 0	0
0904.11.10	- - - 백색	Cat 0	0
0904.11.20	- - - 흑색	Cat 15	5
0904.11.90	- - - 기타	Cat 0	0
0904.12.10	- - - 백색	Cat 0	0
0904.12.20	- - - 흑색	Cat 0	0
0904.12.90	- - - 기타	Cat 0	0
0904.21.10	- -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	Cat 15	5
0904.21.90	- - - 기타	Cat 15	5
0904.22.10	- - - 고추류[캡시컴(Capsicum)속의 열매]	Cat 15	5
0904.22.90	- - - 기타	Cat 15	5
0905.10.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0	0
0905.2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6.11.00	- -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Cinnamomum zeylanicum Blume)]	Cat 0	0
0906.19.00	- - 기타	Cat 0	0
0906.2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7.10.0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0	0
0907.20.0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8.1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0	0
0908.1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8.2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0	0
0908.2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8.3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0	0
0908.3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9.2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0	0
0909.2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9.3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0	0
0909.3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0	0
0909.61.10	- - - 아니스(anise)의 것	Cat 0	0
0909.61.20	- - - 대회향(大茴香)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0909.61.30	- - - 캐러웨이(caraway)의 것	Cat 0	0
0909.61.90	- - - 기타	Cat 0	0
0909.62.10	- - - 아니스(anise)의 것	Cat 0	0
0909.62.20	- - - 대회향(大茴香)의 것	Cat 0	0
0909.62.30	- - - 캐러웨이(caraway)의 것	Cat 0	0
0909.62.90	- - - 기타	Cat 0	0
0910.11.00	-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Cat 15	5
0910.12.00	-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Cat 15	5
0910.20.00	- 사프란(saffron)	Cat 0	0
0910.30.00	- 심황[강황(薑黃)]	Cat 0	0
0910.91.10	- - - 카레	Cat 0	0
0910.91.90	- - - 기타	Cat 0	0
0910.99.10	- - - 타임, 월계수의 잎	Cat 0	0
0910.99.90	- - - 기타	Cat 0	0
1001.11.00	- - 종자	Cat 0	0
1001.19.00	- - 기타	Cat 0	0
1001.91.00	- - 종자	Cat 0	0
1001.99.11	- - - - 메슬린(meslin)	Cat 0	0
1001.99.12	- - - - 껍질 없는 밀알	Cat 0	0
1001.99.19	- - - - 기타	Cat 0	0
1001.99.91	- - - - 메슬린(meslin)	Cat 0	0
1001.99.99	- - - - 기타	Cat 0	0
1002.10.00	- 종자	Cat 0	0
1002.90.00	- 기타	Cat 0	0
1003.10.00	- 종자	Cat 15	7
1003.90.00	- 기타	Cat 15	7
1004.10.00	- 종자	Cat 0	0
1004.90.00	- 기타	Cat 0	0
1005.10.00	- 종자	Cat 0	0
1005.90.10	- - 팝콘	Cat 15	7
1005.90.90A	- - - 쿼터이내	EX	28
1005.90.90B	- - - 쿼터초과	EX	40
1006.10.10	- - 파종에 적합한 것	Cat 0	0
1006.10.90A	- - - 쿼터이내	EX	35
1006.10.90B	- - - 쿼터초과	EX	50
1006.20.10A	- - - 쿼터이내	EX	35
1006.20.10B	- - - 쿼터초과	EX	50
1006.20.90A	- - - 쿼터이내	EX	35
1006.20.90B	- - - 쿼터초과	EX	50
1006.30.30A	- - - 쿼터이내	EX	35
1006.30.30B	- - - 쿼터초과	EX	50
1006.30.40A	- - - 쿼터이내	EX	35
1006.30.40B	- - - 쿼터초과	EX	50
1006.30.91A	- - - - 쿼터이내	EX	35
1006.30.91B	- - - - 쿼터초과	EX	50
1006.30.99A	- - - - 쿼터이내	EX	35
1006.30.99B	- - - - 쿼터초과	EX	50
1006.40.10A	- - - 쿼터이내	EX	35
1006.40.10B	- - - 쿼터초과	EX	50
1006.40.90A	- - - 쿼터이내	EX	35
1006.40.90B	- - - 쿼터초과	EX	50
1007.10.00	- 종자	Cat 0	0
1007.90.00	- 기타	Cat 0	0
1008.10.00	- 메밀	Cat 0	0
1008.21.00	- - 종자	Cat 0	0
1008.29.00	- - 기타	Cat 0	0
1008.30.00	- 카나리시드(canary seed)	Cat 0	0
1008.40.00	- 폰니오(Fonio)[디지털리아(Digitaria)종]	Cat 10	7
1008.50.00	- 퀴노아(quinoa)[제노포디움 퀴노아(Chenopodium quinoa)]	Cat 10	7
1008.60.00	- 라이밀(triticale)	Cat 10	7
1008.90.00	- 그 밖의 곡물	Cat 10	7
1101.00.11	- - 강화된 것	Cat 15	5
1101.00.19	- - 기타	Cat 15	5
1101.00.20	- 메슬린(meslin) 가루	Cat 0	0
1102.20.00	- 옥수수가루	Cat 1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1102.90.10	- - 쌀가루	SL	10
1102.90.20	- - 호밀가루	Cat 0	0
1102.90.90	- - 기타	Cat 15	7
1103.11.00	- - 밀로 만든 것	Cat 10	5
1103.13.00	- - 옥수수로 만든 것	EX	5
1103.19.10	- - - 메슬린(meslin)의 것	Cat 15	7
1103.19.20	- - - 쌀의 것	EX	5
1103.19.90	- - - 기타	Cat 15	7
1103.20.00	- 펠릿(pellet)	Cat 15	7/5
1104.12.00	- - 귀리로 만든 것	Cat 0	3
1104.19.10	- - - 옥수수로 만든 것	Cat 0	3
1104.19.90	- - - 기타	Cat 15	3
1104.22.00	- - 귀리로 만든 것	Cat 15	7
1104.23.00	- - 옥수수로 만든 것	EX	5
1104.29.20	- - - 보리로 만든 것	Cat 15	7
1104.29.90	- - - 기타	Cat 15	7
1104.30.00	-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압축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또는 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EX	5/0
1105.10.00	-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가루	Cat 0	1
1105.20.00	- 플레이크(flake)·알갱이 및 펠릿(pellet)	Cat 15	7
1106.10.00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106.20.10	-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의 것	Cat 10	5
1106.20.20	- - 사고(sago)의 것	Cat 10	5
1106.20.30	- - 고구마의 것[이포메아 바타타스(ipomoea batatas)]	Cat 15	5
1106.20.90	- - 기타	Cat 15	5
1106.30.00	- 제8류 물품의 것	Cat 15	5
1107.10.00	- 볶지 않은 것	Cat 0	1
1107.20.00	- 볶은 것	Cat 0	1/0
1108.11.00	- - 밀로 만든 것	Cat 15	3
1108.12.00	- - 옥수수로 만든 것	EX	16
1108.13.00	- - 감자로 만든 것	Cat 15	3
1108.14.00	-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으로 만든 것	EX	5
1108.19.10	- - - 사고(sago)	Cat 0	3
1108.19.90	- - - 기타	Cat 0	3
1108.20.00	- 이눌린(inulin)	Cat 0	3
1109.00.00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1201.10.00	- 종자	Cat 0	0
1201.90.00	- 기타	Cat 0	1/0
1202.30.00	- 종자	Cat 15	15
1202.41.00	-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Cat 15	15
1202.42.00	- -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Cat 15	15
1203.00.00	코프라(copra)	Cat 0	0
1204.00.00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1205.10.00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 colza)의 씨	Cat 0	0
1205.90.00	- 기타	Cat 0	0
1206.00.00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1207.10.10	- - 팜너트(palm nut)(파종이나 재배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1207.10.30	- - 핵(核)	Cat 15	5
1207.10.90	- - 기타	Cat 15	5
1207.21.00	- - 종자	Cat 0	0
1207.29.00	- - 기타	Cat 0	0
1207.30.00	- 피마자	Cat 0	0
1207.40.10	- - 식용인 것	Cat 15	7
1207.40.90	- - 기타	Cat 15	7
1207.50.00	- 겨자씨	Cat 0	0
1207.60.00	- 잇꽃[카르타무스 틱토리우스(Carthamus tinctorius)] 종자	Cat 0	0
1207.70.00	- 멜론 종자	Cat 0	0
1207.91.00	- - 양귀비씨	Cat 0	0
1207.99.40	- - - 일리프 종자(illipe nuts)	Cat 0	0
1207.99.50	- - - 신선한 팜유용 과일다발	Cat 0	0
1207.99.90	- - - 기타	Cat 0	1/0
1208.10.00	- 대두로 만든 것	Cat 0	0
1208.90.00	- 기타	Cat 0	0
1209.10.00	- 사탕무 종자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1209.21.00	- -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Cat 0	0
1209.22.00	- -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Trifolium)종] 종자	Cat 0	0
1209.23.00	- - 페스큐(fescue) 종자	Cat 0	0
1209.24.00	- -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엘(Poa pratensis L.)] 종자	Cat 0	0
1209.25.00	- -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 · 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Cat 0	0
1209.29.10	- - - 티머시 그라스(timothy grass)[플레움프라텐스(Phleumpratense)] 종자	Cat 0	0
1209.29.20	- - - 그 밖의 사탕무 종자	Cat 0	0
1209.29.90	- - - 기타	Cat 0	0
1209.30.00	-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Cat 0	0
1209.91.10	- - - 양파 종자	Cat 0	0
1209.91.90	- - - 기타	Cat 0	0
1209.99.10	- - - 고무 나무 종자, 케나프(kenaf) 종자	Cat 0	0
1209.99.90	- - - 기타	Cat 0	0
1210.10.00	- 홉(hop)[잘게 부순 것 또는 가루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Cat 0	0
1210.20.00	- 홉(hop)[잘게 부순 것 · 가루모양이나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Cat 0	0
1211.20.00A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EX	3/0
1211.20.00B	- - 기타	EX	10
1211.30.00	- 코카잎	Cat 0	0
1211.40.00	- 양귀비줄기	Cat 0	0
1211.50.00	- 마황(麻黃)	Cat 0	0
1211.90.11A	- - -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Cat 0	0
1211.90.11B	- -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Cat 0	0
1211.90.11C	- - - - 기타	Cat 15	10
1211.90.12A	- - -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Cat 0	0
1211.90.12B	- -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Cat 0	0
1211.90.12C	- - - - 기타	Cat 15	10
1211.90.13A	- - -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Cat 0	0
1211.90.13B	- -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Cat 0	0
1211.90.13C	- - - - 기타	Cat 15	10
1211.90.15A	- - -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Cat 0	0
1211.90.15B	- -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1211.90.15C	- -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1211.90.15D	- - - - 기타	Cat 15	10
1211.90.16A	- - -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Cat 0	0
1211.90.16B	- -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Cat 0	0
1211.90.16C	- - - - 기타	Cat 15	10
1211.90.19A	- - - -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Cat 0	0
1211.90.19B	- -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Cat 0	0
1211.90.19C	- - - - 기타	Cat 15	10
1211.90.91A	- - - - 신선한 것, 건조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Cat 0	0
1211.90.91B	- - - - 기타	Cat 15	10
1211.90.92A	- - - - 신선한 것, 건조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Cat 0	0
1211.90.92B	- - - - 기타	Cat 15	10
1211.90.94A	- - - - 신선한 것, 건조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Cat 0	0
1211.90.94B	- - - - 기타	Cat 15	10
1211.90.95A	- - - - 신선한 것, 건조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	Cat 0	0
1211.90.95B	- - - - 기타	Cat 15	10
1211.90.97A	- - - -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Cat 0	0
1211.90.97B	- - - - 기타	Cat 15	10
1211.90.98A	- - - - 감초(신선한 것, 건조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211.90.98B	- - - - 기타(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211.90.98C	- - - - 기타	Cat 15	10
1211.90.99A	- - - - 감초(신선한 것, 건조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기타(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211.90.99B	- - - - 기타(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211.90.99C	- - - - 기타	Cat 15	10
1212.21.11	- - - - 유케마스피노섬(Eucheumaspinosum)	Cat 0	0
1212.21.12	- - - - 유케마코토니(Eucheumacottonii)	Cat 0	0
1212.21.13	- - - - 꼬시래기(Gracilaria)종	Cat 15	10
1212.21.14	- - - - 우뚝가사리(Gelidium)종	Cat 0	10/0
1212.21.15	- - - - 사르가숨(Sargassum)종	Cat 15	1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1212.21.19	- - - - 기타	EX	10/0
1212.21.90	- - - 기타	EX	10/0
1212.29.11	- - - - 의료용의 것	Cat 15	10/0
1212.29.19	- - - - 기타	Cat 15	10/0
1212.29.20	- - - 기타(신선한 것 · 냉장한 것 또는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10/0
1212.29.30	- -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212.91.00	- - 사탕무	Cat 0	0
1212.92.00	- -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Cat 0	0
1212.93.10	- - - 재배용에 적합한 것	Cat 0	0
1212.93.90	- - - 기타	Cat 0	0
1212.94.00	- - 치커리(chicory) 뿌리	Cat 0	0
1212.99.10	- - - 살구,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나 자두의 핵(核)	Cat 0	0
1212.99.90	- - - 기타	Cat 0	0
1213.00.00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1214.10.00	-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Cat 0	0
1214.90.00	- 기타	Cat 0	3/0
1301.20.00	- 아라비아검	Cat 0	0
1301.90.30	- - 대마 수지	Cat 0	1
1301.90.40	- - 락(lac)	Cat 0	0
1301.90.90	- - 기타	Cat 0	1/0
1302.11.10	- - - 아편가루	Cat 0	0
1302.11.90	- - - 기타	Cat 0	0
1302.12.00	- - 감초로 만든 것	Cat 0	0
1302.13.00	- - 홉(hop)으로 만든 것	Cat 0	0
1302.14.00	- -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Cat 0	0
1302.19.20	- - - 대마의 추출물과 톨크제	Cat 0	0
1302.19.40	- - - 제충국(除蟲菊)이나 로테논(rotenonon)을 포함하는 식물 뿌리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Cat 0	0
1302.19.50	- - - 일본(이나 중국) 락커(lacquer)(생칠)	Cat 0	0
1302.19.90	- - - 기타	EX	3/0
1302.20.00	- 펙틴질 ·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Cat 0	0
1302.31.00	- - 한천	Cat 0	0
1302.32.00	- - 로커스트콩(locust bean) ·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1302.39.11	- - - - 가루[반정제(semi-refined)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302.39.12	- - - - 가루(정제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302.39.13	- - - - 알칼리 처리된 카라기난(carrageenan) 침(ATCC)	Cat 0	0
1302.39.19	- - - - 기타	Cat 0	0
1302.39.90	- - - 기타	Cat 0	0
1401.10.00	- 대나무	Cat 15	3
1401.20.10	- - 원형인 것	Cat 0	0
1401.20.21	- - - 지름이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1401.20.29	- - - 기타	Cat 0	0
1401.20.30	- - 분할스킨(Split-skin)	Cat 0	0
1401.20.90	- - 기타	Cat 0	0
1401.90.00	- 기타	Cat 0	0
1404.20.00	- 면(綿) 린터(linter)	Cat 0	0
1404.90.20	- - 주로 유연용이나 염색용의 것	Cat 0	0
1404.90.30	- - 케이폭(kapok)	Cat 0	0
1404.90.91	- - - 팜핵(核)의 껍데기	Cat 0	0
1404.90.92	- - - 속이 빈 팜유용 과일다발	Cat 0	0
1404.90.99	- - - 기타	Cat 0	0
1501.10.00	- 라드(lard)	Cat 0	0
1501.20.00	- 그 밖의 돼지의 지방	Cat 0	0
1501.90.00	- 기타	Cat 0	0
1502.10.00	- 탤로우(tallow)	Cat 0	0
1502.90.10	- - 식용인 것	Cat 0	0
1502.90.90	- - 기타	Cat 0	0
1503.00.10	-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이나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Cat 0	0
1503.00.90	- 기타	Cat 0	0
1504.10.20	- - 고체 분획물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1504.10.90	- - 기타	Cat 0	0
1504.20.10	- - 고체 분획물	Cat 0	0
1504.20.90	- - 기타	Cat 0	0
1504.30.00	-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Cat 0	0
1505.00.10	- 라놀린(lanolin)	Cat 0	0
1505.00.90	- 기타	Cat 0	0
1506.00.00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 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Cat 0	0
1507.10.00	-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1507.90.10	- - 정제하지 않은 대두유의 분획물	Cat 15	5
1507.90.90	- - 기타	Cat 15	5
1508.10.00	- 조유(粗油)	Cat 0	0
1508.90.00	- 기타	Cat 0	0
1509.10.10	- - 순중량이 3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Cat 0	0
1509.10.90	- - 기타	Cat 0	0
1509.90.11	- - - 순중량이 3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Cat 0	0
1509.90.19	- - - 기타	Cat 0	0
1509.90.91	- - - 순중량이 3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Cat 0	0
1509.90.99	- - - 기타	Cat 0	0
1510.00.10	- 조유(粗油)	Cat 0	0
1510.00.20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Cat 0	0
1510.00.90	- 기타	Cat 0	0
1511.10.00	- 조유(粗油)	EX	5
1511.90.20	- - 정제유(精製油)	EX	5
1511.90.31	- - - 30 이상 48 미만의 요드값을 가진 것	EX	5
1511.90.32	- - - 기타	EX	5
1511.90.36	- - - - 순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EX	5
1511.90.37	- - - - 기타(55 이상 60 미만의 요드값을 가진 것으로 한정 한다)	EX	5
1511.90.39	- - - - 기타	EX	5
1511.90.41	- - - 고체 분획물	EX	5
1511.90.42	- - - 기타(순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 한다)	EX	5
1511.90.49	- - - 기타	EX	5
1512.11.00	- - 조유(粗油)	Cat 0	0
1512.19.10	- - - 해바라기씨유나 잇꽃유 분획물(정제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512.19.20	- - - 정제된 것	Cat 0	0
1512.19.90	- - - 기타	Cat 0	0
1512.21.00	- -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1512.29.10	- - - 정제하지 않은 목화씨유의 분획물	Cat 0	0
1512.29.90	- - - 기타	Cat 0	0
1513.11.00	- - 조유(粗油)	Cat 0	0
1513.19.10	- - - 정제하지 않은 야자유의 분획물	Cat 0	0
1513.19.90	- - - 기타	Cat 0	0
1513.21.10	- - - 팜핵유(palm kernel oil)	EX	5
1513.21.90	- - - 기타	EX	5
1513.29.11	- - - - 정제되지 않은 팜핵유(palm kernel oil)의 고체 분획 물	EX	5
1513.29.12	- - - - 정제되지 않은 바바수유(babassu oil)의 고체 분획물	EX	5
1513.29.13	- - - - 기타[정제되지 않은 팜핵유(palm kernel olein)의 것 으로 한정한다]	EX	5
1513.29.14	- - - - 기타[정제되지 않은 바바수유(babassu oil)의 것으로 한정한다]	EX	5
1513.29.91	- - - - 팜핵유(palm kernel oil)의 고체 분획물	EX	5
1513.29.92	- - - - 바바수유(babassu oil)의 고체 분획물	EX	5
1513.29.94	- - - - 팜핵올레인[정제·표백 및 탈취(RBD)한 것으로 한정 한다]	EX	5
1513.29.95	- - - - 팜핵유(palm kernel oil)[정제·표백 및 탈취(RBD)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5
1513.29.96	- - - - 기타[팜핵유(palm kernel oil)의 것으로 한정한다]	EX	5
1513.29.97	- - - - 기타[바바수유(babassu oil)의 것으로 한정한다]	EX	5
1514.11.00	- - 조유(粗油)	Cat 0	0
1514.19.10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Cat 15	3
1514.19.20	- - - 정제된 것	Cat 15	3
1514.19.90	- - - 기타	Cat 15	3
1514.91.10	- - - 그 밖의 유채유(rape oil, colza oil)	Cat 0	0
1514.91.90	- - - 기타	Cat 0	0
1514.99.10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Cat 15	3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1514.99.90	- - - 기타	Cat 15	3
1515.11.00	- - 조유(粗油)	Cat 0	0
1515.19.00	- - 기타	Cat 0	0
1515.21.00	- - 조유(粗油)	Cat 15	5
1515.29.11	- - - - 고체 분획물	Cat 15	5
1515.29.19	- - - - 기타	Cat 15	5
1515.29.91	- - - - 고체 분획물	Cat 15	5
1515.29.99	- - - - 기타	Cat 15	5
1515.30.10	- - 조유(粗油)	Cat 0	0
1515.30.90	- - 기타	Cat 0	0
1515.50.10	- - 조유(粗油)	Cat 15	3
1515.50.20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Cat 15	3
1515.50.90	- - 기타	Cat 15	3
1515.90.11	- - - 조유(粗油)	Cat 0	0
1515.90.12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Cat 0	0
1515.90.19	- - - 기타	Cat 0	0
1515.90.21	- - - 조유(粗油)	Cat 0	0
1515.90.22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Cat 0	0
1515.90.29	- - - 기타	Cat 0	0
1515.90.31	- - - 조유(粗油)	Cat 0	0
1515.90.32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Cat 0	0
1515.90.39	- - - 기타	Cat 0	0
1515.90.91	- - - 조유(粗油)	EX	3/0
1515.90.92	- - - 정제하지 않은 오일의 분획물	EX	3/0
1515.90.99	- - - 기타	EX	3/0
1516.10.20	- - 리에스텔화한(reesterified) 것	Cat 0	0
1516.10.90	- - 기타	Cat 0	0
1516.20.11	- - - 대두의 것	Cat 0	0
1516.20.12	- - - 팜유의 과실의 것[조유(粗油)로 한정한다]	Cat 15	5
1516.20.13	- - - 팜유의 과실의 것[조유(粗油)는 제외한다]	Cat 15	5
1516.20.14	- - - 코코넛의 것	Cat 15	5
1516.20.15	- - - 팜핵의 것[조유(粗油)로 한정한다]	Cat 15	5
1516.20.16	- - - 팜핵의 것[정제·표백 및 탈취(RBD)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1516.20.17	- - - 땅콩의 것	Cat 15	5
1516.20.18	- - - 아마씨의 것	Cat 15	5
ex1 1516.20.19	팜핵올레인[정제·표백 및 탈취(RBD)한 조유(粗油)로 한정한다]	Cat 15	5
ex2 1516.20.19	기타	EX	15/5/0
1516.20.31	- - - 땅콩, 코코넛, 대두의 것	Cat 0	3/0
1516.20.32	- - - 아마씨의 것	Cat 15	3
1516.20.33	- - - 올리브의 것	Cat 15	3
1516.20.34	- - - 팜유의 과실의 것	Cat 15	3
1516.20.35	- - - 팜핵의 것	Cat 15	3
1516.20.39	- - - 기타	Cat 0	3/0
1516.20.41	- - - 피마자씨의 것(opal wax)	Cat 15	5
1516.20.42	- - - 코코넛의 것	Cat 15	5
1516.20.43	- - - 땅콩의 것	Cat 15	5
1516.20.44	- - - 아마씨의 것	Cat 15	5
1516.20.45	- - - 올리브의 것	Cat 10	5
1516.20.46	- - - 팜유의 과실의 것	Cat 15	5
1516.20.47	- - - 팜핵의 것	Cat 15	5
1516.20.48	- - - 대두의 것	Cat 15	5
1516.20.49	- - - 기타	Cat 15	5
1516.20.51	- - - 아마씨의 것	Cat 15	5
1516.20.52	- - - 올리브의 것	Cat 10	5
1516.20.53	- - - 대두의 것	Cat 15	5
1516.20.54	- - - 땅콩, 팜유나 코코넛의 것	Cat 15	5
1516.20.59	- - - 기타	Cat 15	5
1516.20.61	- - - 정제하지 않은 것	Cat 15	5
1516.20.62	- - - 정제·표백 및 탈취(RBD)한 것	Cat 15	5
1516.20.69	- - - 기타	Cat 15	5
1516.20.91	- - - 팜스테아틴(48 초과와 52 이하의 요드값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1516.20.92	- - - 아마씨의 것	Cat 15	5
1516.20.93	- - - 올리브의 것	Cat 10	5
1516.20.94	- - - 대두의 것	Cat 1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1516.20.96	- - - 정제·표백 및 탈취(RBD)한 팜 핵 스테아린(palm kerel stearin)	Cat 15	5
1516.20.98	- - - 땅콩, 팜유나 코코넛의 것	Cat 15	5
1516.20.99	- - - 기타	Cat 15	5
1517.10.10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15	5
1517.10.90	- - 기타	Cat 15	5
1517.90.10	- - 이미테이션 버터기름	Cat 15	5
1517.90.20	- - 액체 상태의 마가린	Cat 15	5
1517.90.30	- - 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용의 것	Cat 15	5
1517.90.43	- - - 쇼트닝	Cat 15	5
1517.90.44	- - - 이미테이션 라드	Cat 15	5
1517.90.50	- - 식물성 지방 또는 기름 또는 그 분획물의 그 밖의 고체 혼합물 또는 조제품	Cat 15	5
1517.90.61	- - - 전중량에서 땅콩기름의 비중이 높은 것	Cat 15	5
1517.90.62	- - - 전중량에서 천연 팜유의 비중이 높은 것	Cat 15	5
1517.90.63	- - - 전중량에서 그 밖의 팜유의 비중이 높은 것(순중량이 2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1517.90.64	- - - 전중량에서 그 밖의 팜유의 비중이 높은 것(순중량이 25킬로그램 초과하여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1517.90.65	- - - 전중량에서 팜핵유의 비중이 높은 것	Cat 15	5
1517.90.66	- - - 전중량에서 팜핵올레인(palm kernel olein)의 비중이 높은 것	Cat 15	5
1517.90.67	- - - 전중량에서 대두유나 코코넛 유의 비중이 높은 것	Cat 15	5
1517.90.68	- - - 전중량에서 일리프 너트(Illipe nut) 오일의 비중이 높은 것	Cat 0	0
1517.90.69	- - - 기타	Cat 15	5
1517.90.80	- -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Cat 15	5
1517.90.90	- - 기타	Cat 15	5
1518.00.12	- - 동물성 지방과 기름	Cat 0	0
1518.00.14	- - 땅콩, 대두, 팜이나 코코넛 유	Cat 0	0
1518.00.15	- -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Cat 0	0
1518.00.16	- -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Cat 0	0
1518.00.19	- - 기타	Cat 0	0
1518.00.20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Cat 0	0
1518.00.31	- - 팜유나 팜핵유 과실의 것	Cat 0	0
1518.00.33	- - 아마씨의 것	Cat 0	0
1518.00.34	- - 올리브의 것	Cat 0	0
1518.00.35	- - 땅콩의 것	Cat 0	0
1518.00.36	- - 대두나 코코넛의 것	Cat 0	0
1518.00.37	- - 목화씨의 것	Cat 0	0
1518.00.39	- - 기타	Cat 0	0
1518.00.60	-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 및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Cat 0	0
1520.00.10	-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520.00.90	- 기타	Cat 0	0
1521.10.00	- 식물성 납(蠟)	Cat 0	0
1521.90.10	- - 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납(昆蟲蠟)	Cat 0	0
1521.90.20	- - 경납(鯨蠟)	Cat 0	0
1522.00.10	- 데그라스(degras)	Cat 0	0
1522.00.90	- 기타	Cat 0	0
1601.00.10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EX	5
1601.00.90	- 기타	EX	5
1602.10.10	- - 돼지고기를 함유한 것(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EX	24
1602.10.90	- - 기타	EX	24
1602.20.00	- 동물 간으로 만든 것	Cat 0	0
1602.31.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1602.31.91	- - - - 기계로 뼈를 발라내거나 분리한 육으로 만든 것	Cat 0	0
1602.31.99	- - - - 기타	Cat 0	0
1602.32.10	- - - 치킨 카레(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15	5
1602.32.90	- - - 기타	EX	5
1602.39.00	- - 기타	EX	5
1602.41.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EX	5
1602.41.90	- - - 기타	EX	5
1602.42.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EX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1602.42.90	- - - 기타	EX	5
1602.49.1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EX	5
1602.49.19	- - - - 기타	EX	5
1602.49.9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EX	5
1602.49.99	- - - - 기타	EX	5
1602.50.00	- 소로 만든 것	Cat 15	5
1602.90.10	- - 양고기 카레(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1602.90.90	- - 기타	Cat 0	0
1603.00.00	육 · 어류나 갑각류 · 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EX	3/0
1604.11.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1604.11.90	- - - 기타	Cat 0	0
1604.12.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1604.12.90	- - - 기타	Cat 0	0
1604.13.1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15	15
1604.13.19	- - - - 기타	Cat 0	0
1604.13.91	-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15	15
1604.13.99	- - - - 기타	Cat 0	0
1604.14.11	- - - - 다랑어	Cat 15	15
1604.14.19	- - - - 기타	Cat 15	15
1604.14.90	- - - 기타	Cat 15	15
1604.15.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1604.15.90	- - - 기타	Cat 0	0
1604.16.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15	5
1604.16.90	- - - 기타	Cat 15	5
1604.17.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1604.17.90	- - - 기타	Cat 15	5
1604.18.10	- - - 그 상태로 식용에 적합한 것	Cat 15	5
1604.18.91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15	5
1604.18.99	- - - - 기타	Cat 15	5
1604.19.20	- - - 전갱이(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1604.19.30	- - -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1604.19.90	- - - 기타	EX	5/0
1604.20.20	- - 생선소시지	Cat 0	0
1604.20.30	- - 피쉬볼(Fish ball)	EX	5/0
1604.20.40	- - 생선 페이스트(paste)	Cat 0	0
1604.20.91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EX	5/0
1604.20.99	- - - 기타	EX	5/0
1604.31.00	- - 캐비아	Cat 0	0
1604.32.00	- - 캐비아 대용물	Cat 0	0
1605.10.10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1605.10.90	- - 기타	Cat 0	0
ex1 1605.21.00	새우 페이스트(paste)	Cat 15	5
ex2 1605.21.00	기타	EX	15/0
1605.29.20	- - - 새우 볼(ball)	Cat 0	0
1605.29.30	- - - 빵가루 입힌 튀김용새우(Breaded shrimp)	Cat 0	0
ex1 1605.29.90	새우 페이스트(paste)	Cat 15	5
ex2 1605.29.90	기타	Cat 0	0
1605.30.00	- 바닷가재	Cat 0	0
1605.40.00	- 그 밖의 갑각류	Cat 0	0
1605.51.00	- - 굴	EX	5/0
1605.52.00	- -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EX	5/0
1605.53.00	- - 홍합	Cat 0	0
1605.54.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1605.54.90	- - - 기타	EX	10/5/0
1605.55.00	- - 문어	EX	5/0
1605.56.00	- - 클램(clam), 새조개 및 피조개	EX	5/0
1605.57.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1605.57.90	- - - 기타	EX	5/0
1605.58.00	-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EX	5/0
1605.59.00	- - 기타	EX	5/0
1605.61.00	- - 해삼	Cat 0	0
1605.62.00	- - 성게	EX	5/0
1605.63.00	- - 해파리	EX	5/0
1605.69.00	- - 기타	EX	5/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1701.12.00A	- - - 쿼터이내	EX	50
1701.12.00B	- - - 쿼터초과	EX	50
1701.13.00A	- - - 쿼터이내	EX	50
1701.13.00B	- - - 쿼터초과	EX	65
1701.14.00A	- - - 쿼터이내	EX	50
1701.14.00B	- - - 쿼터초과	EX	65
1701.91.00A	- - - 건조된 설탕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하는 것(쿼터이내)	EX	50
1701.91.00B	- - - 건조된 설탕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하는 것(쿼터초과)	EX	50
1701.91.00C	- - - 기타, 쿼터이내	EX	1
1701.91.00D	- - - 기타, 쿼터초과	EX	1
1701.99.10A	- - - - 건조된 설탕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하는 것(쿼터이내)	EX	50
1701.99.10B	- - - - 건조된 설탕 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5를 초과하는 것(쿼터초과)	EX	65
1701.99.10C	- - - - 기타, 쿼터이내	EX	1
1701.99.10D	- - - - 기타, 쿼터초과	EX	1
1701.99.90A	- - - - 쿼터이내	EX	50
1701.99.90B	- - - - 쿼터초과	EX	65
1702.11.00	- - 건조 상태에서 측정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Cat 0	0
1702.19.00	- - 기타	Cat 0	0
1702.20.00	-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Cat 0	0
1702.30.10	- - 포도당	EX	3
1702.30.20	- - 포도당시럽	Cat 0	0
1702.40.0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EX	3/0
1702.50.0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Cat 0	0
1702.60.10	- - 과당	EX	5
1702.60.20	- - 과당시럽	Cat 0	0
1702.90.11	- - - 화학적으로 순수한 맥아당	EX	3
1702.90.19	- - - 기타	EX	3
1702.90.20	- -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EX	3
1702.90.30	-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맥아당은 제외한다)	EX	3
1702.90.40	- - 캐러멜당	EX	3
1702.90.91	- - - 당시럽	EX	3
1702.90.99	- - - 기타	EX	3
1703.10.10	-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Cat 0	0
1703.10.90	- - 기타	Cat 0	0
1703.90.10	-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Cat 0	0
1703.90.90	- - 기타	Cat 0	0
1704.10.00	-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1704.90.10	- - 약용 원료가 첨가된 파스텔(pastilles)과 드롭스(drops)	EX	5
1704.90.20	- - 백색 초콜릿	EX	5
1704.90.91	- - - 부드러운 것(젤라틴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EX	5
1704.90.99	- - - 기타	EX	5
1801.00.00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802.00.00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및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Cat 0	0
1803.10.00	-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Cat 0	0
1803.20.00	-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Cat 0	0
1804.00.00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Cat 0	0
1805.00.00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Cat 0	0
1806.10.00	- 코코아 가루(설탕 또는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806.20.10	- - 초콜릿 과자[블록 모양·슬래브 모양 또는 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806.20.90	- - 기타	Cat 0	0
1806.31.00	- - 속을 채운 것	Cat 0	0
1806.32.00	- - 속을 채우지 않은 것	Cat 0	0
1806.90.10	- - 초콜릿 과자[둥글넓적한(tablet) 것이나 알약(pastilles)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806.90.30	- - 고운 가루·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EX	3/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1806.90.40	- -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미만인 것으로 유아용으로 특별히 조제되고 소매용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806.90.90	- - 기타	EX	6.4/5/0
1901.10.10	- -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	Cat 0	0
1901.10.20	- -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것	Cat 10	7
1901.10.30	- - 대두 가루의 것	Cat 0	0
1901.10.91	- - - 의료용도 식품	Cat 0	0
1901.10.92	- - - 기타(1세 초과 3세 이하 어린이용 제품으로 한정한다)	Cat 0	0
1901.10.99	- - - 기타	Cat 0	0
1901.20.10	- -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EX	10/0
1901.20.20	- -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것(코코아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10/0
1901.20.30	- - 기타(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0
1901.20.40	- - 기타(코코아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0
1901.90.11	- - - 의료용도 식품	Cat 0	1
1901.90.19	- - - 기타	Cat 0	1/0
1901.90.20	- - 맥아 추출물(extract)	Cat 0	1
1901.90.31	- - - 유지방대체 밀크(milk)	Cat 10	7
1901.90.32	- - - 기타(코코아 가루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0	7
1901.90.39	- - - 기타	Cat 10	7
1901.90.41	- - - 가루 모양	Cat 0	3
1901.90.49	- - - 그 밖의 모양	Cat 0	3
1901.90.91	- - - 의료용도 식품	Cat 15	7
1901.90.99	- - - 기타	EX	7/0
1902.11.00	- - 새의 알을 넣은 것	Cat 0	0
1902.19.20	- - - 라이스 버미첼리(Rice vermicelli)[비훈(bee hoon)을 포함한다]	Cat 15	5
1902.19.31	- - - - 옥수수의 것	Cat 15	5
1902.19.39	- - - - 기타	Cat 15	5
1902.19.40	- - - 그 밖의 곡수	Cat 15	5
1902.19.90	- - - 기타	Cat 15	5
1902.20.10	- - 육(肉)이나 설육(屑肉)으로 속을 채운 것	Cat 0	0
1902.20.30	- - 어류, 갑각류나 연체동물로 속을 채운 것	Cat 0	0
1902.20.90	- - 기타	Cat 0	0
1902.30.20	- - 라이스 버미첼리(Rice vermicelli)[비훈(bee hoon)을 포함한다]	Cat 0	0
1902.30.30	- - 투명한 버미첼리(Transparent vermicelli)	Cat 0	0
1902.30.40	- - 그 밖의 인스턴트 면류	Cat 0	0
1902.30.90	- - 기타	Cat 0	0
1902.40.00	- 쿠스쿠스(couscous)	Cat 0	0
1903.00.00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날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 또는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1904.10.10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EX	5/0
1904.10.90	- - 기타	EX	5/0
1904.20.10	-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	Cat 15	5
1904.20.90	- - 기타	Cat 15	5
1904.30.00	- 불거 밀(bulgur wheat)	Cat 0	0
1904.90.10	- - 쌀 조제품(사전 조리한 쌀을 포함한다)	Cat 15	7/5
1904.90.90	- - 기타	Cat 15	5
1905.10.00	- 귀리빵	Cat 15	5
1905.20.00	- 진저브레드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1905.31.10	- - - 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	Cat 0	0
1905.31.20	- - - 코코아를 함유한 것	Cat 0	0
1905.32.10	- - - 와플	Cat 0	0
1905.32.20	- - - 웨이퍼	Cat 0	0
1905.40.10	- - 설탕, 꿀, 새의 알, 지방, 치즈나 과실을 함유하지 않은 것	Cat 0	0
1905.40.90	- - 기타	Cat 0	0
1905.90.10	- - 무가당 티딩(teething) 비스킷	Cat 0	0
1905.90.20	- - 그 밖의 무가당 비스킷	Cat 0	0
1905.90.30	- - 케이크	Cat 0	0
1905.90.40	- - 파이	Cat 0	0
1905.90.50	- - 밀가루가 없는 베이커리 제품	EX	5/0
1905.90.60	-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과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1905.90.70	- - 성찬용 웨이퍼 · 실링웨이퍼(sealing wafer) · 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EX	5/0
1905.90.80	- - 그 밖의 바삭바삭한 짭짤한 맛의 식품	Cat 0	0
1905.90.90	- - 기타	Cat 0	0
2001.10.00	- 오이류	Cat 0	0
2001.90.10	- - 양파	EX	15/0
2001.90.90	- - 기타	EX	15/5/0
2002.10.00	-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Cat 0	0
2002.90.10	- - 토마토 페이스트(paste)	Cat 15	5
2002.90.20	- - 토마토 가루	Cat 0	0
2002.90.90	- - 기타	Cat 0	0
2003.10.00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Cat 0	0
2003.90.10	- - 송로(松露)	Cat 0	0
2003.90.90	- - 기타	Cat 0	0
2004.10.00	- 감자	Cat 0	0
2004.90.10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에 적합한 것	Cat 0	0
2004.90.90	- - 기타	Cat 0	0
2005.10.10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2005.10.90	- - 기타	Cat 0	0
2005.20.11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2005.20.19	- - - 기타	Cat 0	0
2005.20.91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2005.20.99	- - - 기타	Cat 0	0
2005.40.0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Cat 0	0
2005.51.00	- - 껍데기를 벗긴 콩	Cat 0	0
2005.59.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2005.59.90	- - - 기타	Cat 0	0
2005.60.0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Cat 0	0
2005.70.00	- 올리브	Cat 0	0
2005.80.0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Zea mays var. saccharata)]	Cat 15	5
2005.91.00	- - 죽순	Cat 0	0
2005.99.10	-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EX	10/0
2005.99.90	- - - 기타	EX	10/0
2006.00.00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 · 과일 · 견과류 · 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Cat 15	5
2007.10.00	- 균질화한 조제품	Cat 0	0
2007.91.00	- - 감귤류의 과일	EX	5/0
2007.99.10	- - - 과일 페이스트(paste)(망고, 파인애플이나 딸기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2007.99.20	- - - 잼 및 과일젤리	Cat 15	15
2007.99.90	- - - 기타	EX	15/0
2008.11.10	- - - 볶은 것	Cat 15	15
2008.11.20	- - - 피넛 버터	Cat 0	0
2008.11.90	- - - 기타	Cat 15	15
2008.19.10	- - - 캐슈너트(cashew nut)	Cat 0	0
2008.19.91	- - - - 볶은 것	Cat 0	0
2008.19.99	- - - - 기타	Cat 0	0
2008.20.10	- - 밀폐용기에 넣은 것(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15	10
2008.20.90	- - 기타	Cat 15	10
2008.30.1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	Cat 15	10
2008.30.90	- - 기타	Cat 15	10
2008.40.00	- 배	Cat 15	7
2008.50.00	- 살구	EX	5
2008.60.1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	Cat 15	5
2008.60.90	- - 기타	Cat 15	5
2008.70.10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	Cat 0	0
2008.70.90	- - 기타	Cat 0	0
2008.80.00	- 초본류 딸기	EX	5
2008.91.00	- - 팜 하트(palm heart)	Cat 0	0
2008.93.10	- -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	Cat 15	10
2008.93.90	- - - 기타	Cat 15	10
2008.97.10	- - -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과실이나 견과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008.97.20	- - - 기타(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0/5
2008.97.90	- - - 기타	Cat 15	10
2008.99.10	- - - 리치(lychees)	Cat 15	10
2008.99.20	- - - 용안(longans)	Cat 15	10
2008.99.30	- - - 식물의 줄기, 뿌리와 그 밖의 식용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과실이나 견과류를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0
2008.99.40	- - - 기타(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0
2008.99.90	- - - 기타	Cat 15	10
2009.11.00	- - 냉동한 것	Cat 15	7
2009.12.00	-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Cat 0	1
2009.19.00	- - 기타	Cat 0	1
2009.21.00	- -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Cat 0	0
2009.29.00	- - 기타	Cat 0	0
2009.31.00	- -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Cat 15	5
2009.39.00	- - 기타	EX	5/0
2009.41.00	- -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Cat 15	10
2009.49.00	- - 기타	Cat 15	5
2009.50.00	- 토마토주스	Cat 0	0
2009.61.00	- - 브릭스(Brix) 값이 30을 초과하지 않은 것	Cat 0	0
2009.69.00	- - 기타	Cat 15	3
2009.71.00	- -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Cat 15	5
2009.79.00	- - 기타	Cat 0	0
2009.81.10	-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에 적합한 것	Cat 15	10
2009.81.90	- - - 기타	Cat 15	10
2009.89.10	- - - 블랙커런트(blackcurrant) 주스	Cat 15	10
2009.89.91	- -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에 적합한 것	EX	10/0
2009.89.99	- - - - 기타	EX	10/0
2009.90.10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에 적합한 것	Cat 0	0
2009.90.91	- - - 그 상태로 식용에 적합한 것	Cat 0	0
2009.90.99	- - - 기타	Cat 0	0
2101.11.10A	- - - - 쿼터이내	Cat 15	5
2101.11.10B	- - - - 쿼터초과	Cat 15	5
2101.11.90A	- - - - 쿼터이내	Cat 0	0
2101.11.90B	- - - - 쿼터초과	Cat 0	0
2101.12.10A	- - - - 쿼터이내	EX	5
2101.12.10B	- - - - 쿼터초과	EX	5
2101.12.91A	- - - - - 쿼터이내	EX	5
2101.12.91B	- - - - - 쿼터초과	EX	5
2101.12.92A	- - - - - 쿼터이내	EX	5
2101.12.92B	- - - - - 쿼터초과	EX	5
2101.12.99A	- - - - - 쿼터이내	EX	5
2101.12.99B	- - - - - 쿼터초과	EX	5
2101.20.20	- - 차 조제품 제조에 사용되는 차 추출물(가루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7
2101.20.30	- - 차 · 밀크 분말과 자당의 혼합물로 구성된 차의 조제품	SL	10
2101.20.90	- - 기타	Cat 15	10/5
2101.30.00	- 볶은 치커리(chicory)와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및 그 농축물	Cat 0	0
2102.10.00	- 활성 효모	Cat 0	0
2102.20.10	- - 사료용	Cat 0	0
2102.20.90	- - 기타	Cat 0	0
2102.30.00	-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Cat 0	0
2103.10.00	- 간장	Cat 15	5
2103.20.00	-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Cat 0	0
2103.30.00	- 겨자의 고운 가루 및 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Cat 0	0
2103.90.11	- - - 칠리소스	Cat 0	0
2103.90.12	- - - 어간장	Cat 0	0
2103.90.13	- - - 그 밖의 소스	Cat 3	5/0
2103.90.19	- - - 기타	Cat 15	7
2103.90.21	- - - 새우 페이스트(paste)[벨라찬(belachan) · 블라찬(blachan)을 포함한다]	Cat 15	7
2103.90.29	- - - 기타	EX	7/5/0
2104.10.11	-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에 적합한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104.10.19	- - - 기타	Cat 0	0
2104.10.91	-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에 적합한 것	Cat 0	0
2104.10.99	- - - 기타	Cat 0	0
2104.20.11	-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에 적합한 것	Cat 15	7
2104.20.19	- - - 기타	Cat 15	7
2104.20.91	- - - 영유아 또는 어린이용에 적합한 것	Cat 15	7
2104.20.99	- - - 기타	Cat 15	7
2105.00.00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 없다)	Cat 0	0
2106.10.00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	EX	3/0
2106.90.11	- - - 건조한 두부와 건조한 두부 스틱(stick)	Cat 0	0
2106.90.12	- - - 신선한 두부	Cat 0	0
2106.90.19	- - - 기타	Cat 0	0
2106.90.20	- - 알코올 파우더	Cat 0	0
2106.90.30	- - 유제품이 아닌 크리머(creamers)	Cat 15	5
2106.90.41	- - - 가루 모양	Cat 0	0
2106.90.49	- - - 기타	Cat 0	0
2106.90.53	- - - 인상을 기본재료로 한 물품	Cat 0	0
2106.90.54	- - - 혼합 농축물 제조용 원료로 사용되는 그 밖의 조제품	Cat 0	0
2106.90.55	- - - 기타(음료 제조용으로 물에 단순히 희석한 혼합 농축물 로 한정한다)	Cat 0	0
2106.90.59	- - - 기타	Cat 0	0
2106.90.61	- - - - 알코올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액체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106.90.62	- - - - 알코올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그 밖의 형태의 것 으로 한정한다)	Cat 0	0
2106.90.64	- - - - 알코올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액체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106.90.65	- - - - 알코올 음료 제조에 사용되는 것(그 밖의 형태의 것 으로 한정한다)	Cat 0	0
2106.90.66	- - - 기타(알코올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액체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106.90.67	- - - 기타(알코올 음료 제조용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형태 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106.90.69	- - - 기타	Cat 0	0
2106.90.71	- - - 인상을 기본재료로 한 식이 보조제	EX	7/0
2106.90.72	- - - 그 밖의 식이 보조제	Cat 0	0
2106.90.73	- - - 강화용 프리믹스(premixes)	Cat 0	0
2106.90.81	- - - 락타아제(lactase) 결핍 유아용 조제 식료품	Cat 0	0
2106.90.89	- - - 기타	Cat 0	0
2106.90.91	- - - 그 밖의 화학품의 혼합물(식품가공에 사용하는 식료품 이나 그 밖의 영양가 있는 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106.90.92	- - - 향미제나 착색제를 첨가한 시럽	Cat 0	0
2106.90.95	- - - 세리 카야(seri kaya)	Cat 0	0
2106.90.96	- - - 그 밖의 의료용도 식품	Cat 0	0
2106.90.97	- - - 템페	Cat 0	0
2106.90.98	- - - 그 밖의 향미가 첨가된 조제품	Cat 0	1
2106.90.99	- - - 기타	Cat 3	5/0
2201.10.10	- - 광천수	Cat 0	0
2201.10.20	- - 탄산수	Cat 0	0
2201.90.10	- - 얼음과 눈	Cat 0	0
2201.90.90	- - 기타	Cat 0	0
2202.10.10	- - 향미를 첨가한 탄산이 든 광천수 또는 탄산수	Cat 0	0
2202.10.90	- - 기타	Cat 0	0
2202.91.00	-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EX	5/0
2202.99.10	- - - 향미를 첨가한 초고온 처리(UHT)된 우유를 기본재료 로 한 음료	Cat 0	0
2202.99.20	- - - 두유 음료	Cat 0	0
2202.99.40	- - - 커피를 기본재료로 한 음료나 커피 향미를 첨가한 음 료	Cat 0	0
2202.99.50	- - - 그 밖의 비탄산수(희석 없이 그 상태로 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202.99.90	- - - 기타	EX	5/0
2203.00.11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5.8 이하인 것	Cat 15	15
2203.00.19	- - 기타	Cat 15	15
2203.00.91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5.8 이하인 것	Cat 15	15
2203.00.99	- - 기타	Cat 15	15
2204.10.00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Cat 0	0
2204.21.1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204.21.13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 초과 100분의 23 이하인 것	Cat 0	0
2204.21.14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23을 초과하는 것	Cat 0	0
2204.21.2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Cat 0	0
2204.21.22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Cat 0	0
2204.22.1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Cat 0	0
2204.22.12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 초과 100분의 23 이하인 것	Cat 0	0
2204.22.13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23을 초과하는 것	Cat 0	0
2204.22.2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Cat 0	0
2204.22.22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Cat 0	0
2204.29.1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Cat 0	0
2204.29.13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 초과 100분의 23 이하인 것	Cat 0	0
2204.29.14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23을 초과하는 것	Cat 0	0
2204.29.21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Cat 0	0
2204.29.22	-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Cat 0	0
2204.30.1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Cat 0	0
2204.30.2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Cat 0	0
2205.10.1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Cat 0	0
2205.10.2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Cat 0	0
2205.90.1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Cat 0	0
2205.90.2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Cat 0	0
2206.00.10	- 사과술 또는 배술	Cat 0	0
2206.00.20	- 사케	Cat 15	5
2206.00.31	-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Cat 0	0
2206.00.39	- - 기타	Cat 0	0
2206.00.41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14 이하인 것	Cat 0	0
2206.00.49	- - 기타	Cat 0	0
2206.00.91	- - 그 밖의 라이스 와인(rice wine)[약용 라이스 와인(rice wine)을 포함한다]	Cat 10	5/0
2206.00.99	- - 기타	Cat 0	0
2207.10.00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EX	10/5/0
2207.20.11	- - - 에틸알코올(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99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207.20.19	- - - 기타	Cat 0	0
2207.20.90	- - 기타	Cat 0	0
2208.20.50	- - 브랜디(brandy)	Cat 15	5
2208.20.90	- - 기타	Cat 15	5
2208.30.00	- 위스키류	EX	5/0
2208.40.00	- 럼 및 발효된 사탕수수물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주정	Cat 15	5
2208.50.00	- 진(gin)과 제네바(geneva)	Cat 15	5
2208.60.00	- 보드카	Cat 15	5
2208.70.10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57 이하인 것	EX	5/0
2208.70.90	- - 기타	EX	5/0
2208.90.10	- - 약용원료가 첨가된 삼수(samsu)(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4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2208.90.20	- - 약용원료가 첨가된 삼수(samsu)(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2208.90.30	- - 그 밖의 삼수(samsu)(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4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2208.90.40	- - 그 밖의 삼수(samsu)(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2208.90.50	- - 아라크나 파인애플 주정(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4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2208.90.60	- - 아라크나 파인애플 주정(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4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2208.90.70	- - 비터(bitters)와 이와 유사한 음료(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57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2208.90.80	- - 비터(bitters)와 이와 유사한 음료(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57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2208.90.91	- - - 알코올 용량이 전용량의 100분의 1.14 이하인 것	EX	5/0
2208.90.99	- - - 기타	EX	5/0
2209.00.00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Cat 0	0
2301.10.00	-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 및 펠릿(pellet), 수지박	Cat 0	0
2301.20.10	- - 어류의 것(단백질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301.20.20	- - 어류의 것(단백질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6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301.20.90	- - 기타	Cat 0	0
2302.10.00	- 옥수수로 만든 것	Cat 0	0
2302.30.10	- - 밀기울과 폴라드(pollard)	Cat 0	0
2302.30.90	- - 기타	Cat 0	0
2302.40.10	- - 쌀의 것	Cat 0	0
2302.40.90	- - 기타	Cat 0	0
2302.50.00	- 채두류(菜豆類)로 만든 것	Cat 0	0
2303.10.10	-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이나 사고(sago)의 것	Cat 0	0
2303.10.90	- - 기타	Cat 0	0
2303.20.00	-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당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Cat 0	0
2303.30.00	-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Cat 0	0
2304.00.10	- 탈지(脫脂)한 대두의 고운 가루(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304.00.90	- 기타	Cat 0	0
2305.00.00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 없다]	Cat 0	0
2306.10.00	- 목화씨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20.00	- 아마씨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30.00	-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41.10	- -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rape)씨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41.20	- -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colza)씨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49.10	- - - 그 밖의 유채(rape)씨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49.20	- - - 그 밖의 유채(colza)씨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50.00	-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Cat 0	0
2306.60.10	- - 잘게 부순 것 또는 펠릿(pellet) 모양	Cat 0	0
2306.60.90	- - 기타	Cat 0	0
2306.90.10	- - 옥수수 씨눈의 것	Cat 0	0
2306.90.90	- - 기타	Cat 0	0
2307.00.00	와인리스(wine lees), 생주석(argol)	Cat 0	0
2308.00.00	사료용 식물성 물질과 식물성 웨이스트(waste) · 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EX	3/0
2309.10.10	- - 육을 함유하는 것	Cat 0	0
2309.10.90	- - 기타	Cat 0	0
2309.90.11	- - - 가금(家禽)용으로 적합한 것	Cat 15	5
2309.90.12	- - - 돼지용으로 적합한 것	Cat 15	5
2309.90.13	- - - 새우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2309.90.14	- - - 영장류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2309.90.19	- - - 기타	Cat 15	5
2309.90.20	- - 프리믹스(사료 보조제나 사료 첨가제로 한정한다)	Cat 0	0
2309.90.90	- - 기타	Cat 15	5
2401.10.10	- - 버지니아(virginia) 종(황색종으로 한정한다)	Cat 0	0
2401.10.20	- - 버지니아 종(황색종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2401.10.40	- - 버어리(burley) 종	Cat 0	0
2401.10.50	- - 기타(황색종으로 한정한다)	Cat 0	0
2401.10.90	- - 기타	Cat 0	0
2401.20.10	- - 버지니아(virginia) 종(황색종으로 한정한다)	Cat 0	0
2401.20.20	- - 버지니아 종(황색종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2401.20.30	- - 오리엔트 종	Cat 0	0
2401.20.40	- - 버어리(burley) 종	Cat 0	0
2401.20.50	- - 기타(황색종으로 한정한다)	Cat 0	0
2401.20.90	- - 기타	Cat 0	0
2401.30.10	- - 담배 주맥(主脈)	Cat 0	0
2401.30.90	- - 기타	Cat 0	0
2402.10.00	-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및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402.20.10	- - 실로 묶은 수제 담배	Cat 0	0
2402.20.20	- - 정향 껍질	Cat 0	0
2402.20.90	- - 기타	Cat 0	0
2402.90.10	- -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및 시가릴로(cigarillo)(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402.90.20	- - 껍질(담배 대용물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403.11.00	-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Cat 0	0
2403.19.11	- - - - 앙 훈(Ang Hoon)	Cat 0	0
2403.19.19	- - - - 기타	Cat 0	0
2403.19.20	- - - 그 밖의 제조한 담배(굴련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2403.19.91	- - - - 앙 훈(Ang Hoon)	Cat 0	0
2403.19.99	- - - - 기타	Cat 0	0
2403.91.10	- - -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Cat 0	0
2403.91.90	- - - 기타	Cat 0	0
2403.99.10	- - - 담배의 추출물(extracts)과 에센스(essence)	Cat 0	0
2403.99.30	- - - 제조한 담배 대용물	Cat 0	0
2403.99.40	- - - 코 담배(건조하지 않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2403.99.50	- - - 씹는 담배와 빠는 담배	Cat 0	0
2403.99.90	- - - 기타	Cat 0	0
2501.00.10	- 식탁염	Cat 0	0
2501.00.20	- 가공되지 않은 암염(岩鹽)	Cat 0	0
2501.00.50	- 바닷물	Cat 0	0
2501.00.91	- -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염화나트륨의 함유량이 60퍼센트 초과 97퍼센트 미만인 것(요드로 강화한 것에 한정한다)	Cat 0	0
2501.00.92	- - 그 밖의 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염화나트륨의 함유량이 97퍼센트 이상 99.9퍼센트 미만인 것	Cat 0	0
2501.00.99	- - 기타	Cat 0	0
2502.00.00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503.00.00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 및 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Cat 0	0
2504.10.00	-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Cat 0	0
2504.90.00	- 기타	Cat 0	0
2505.10.00	- 규사	Cat 0	0
2505.90.00	- 기타	Cat 0	0
2506.10.00	- 석영	Cat 0	0
2506.20.00	- 규암	Cat 0	0
2507.00.00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2508.10.00	- 벤토나이트(bentonite)	Cat 0	0
2508.30.00	- 내화(耐火)점토	Cat 0	0
2508.40.10	- - 표포토(漂布土)	Cat 0	0
2508.40.90	- - 기타	Cat 0	0
2508.50.00	-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 및 규선석(矽線石)	Cat 0	0
2508.60.00	- 멀라이트(mullite)	Cat 0	0
2508.70.00	- 샤모트 또는 다이나스 어스	Cat 0	0
2509.00.00	초크	Cat 0	0
2510.10.10	- - 인회석	Cat 0	0
2510.10.90	- - 기타	Cat 0	0
2510.20.10	- - 인회석	Cat 0	0
2510.20.90	- - 기타	Cat 0	0
2511.10.00	- 천연 황산바륨[중정석(重晶石)]	Cat 0	0
2511.20.00	- 천연 탄산바륨[독중석(毒重石)]	Cat 0	0
2512.00.00	규조토[예: 키질구어(kieselguhr)·트리폴리트(tripolite) 및 다이어토마이트(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513.10.00	- 부석	Cat 0	0
2513.20.00	-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Cat 0	0
2514.00.00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2515.1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Cat 0	0
2515.12.10	- - - 블록	Cat 0	0
2515.12.20	- - - 슬래브	Cat 0	0
2515.20.00	- 에코신과 그 밖의 석비용 또는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 설화 석고(alabaster)	Cat 0	0
2516.11.0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Cat 0	0
2516.12.10	- - - 블록	Cat 0	0
2516.12.20	- - - 슬래브	Cat 0	0
2516.20.10	-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Cat 0	0
2516.20.20	-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Cat 0	0
2516.90.00	- 그 밖의 석비(石碑)용 또는 건축용 암석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517.10.00	-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2517.20.00	-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 지에 상관없다)	Cat 0	0
2517.30.00	- 타르 머캐덤(tar macadam)	Cat 0	0
2517.41.00	- - 대리석으로 만든 것	Cat 0	0
2517.49.00	- - 기타	Cat 0	0
2518.10.00	-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Cat 0	0
2518.20.00	-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Cat 0	0
2518.30.00	-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Cat 0	0
2519.10.00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Cat 0	0
2519.90.10	- -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	Cat 0	0
2519.90.90	- - 기타	Cat 0	0
2520.10.00	- 석고, 무수(無水)석고	Cat 0	0
2520.20.10	- - 치과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2520.20.90	- - 기타	Cat 0	0
2521.00.00	석회석 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2522.10.00	- 생석회(生石灰)	Cat 0	0
2522.20.00	- 소석회(消石灰)	Cat 0	0
2522.30.00	- 수경성(水硬性) 석회	Cat 0	0
2523.10.10	- - 백색 시멘트 제조용의 것	Cat 0	3
2523.10.90	- - 기타	Cat 0	0
2523.21.00	- -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3
2523.29.10	- - - 착색된 시멘트	Cat 3	5
2523.29.90	- - - 기타	Cat 0	0
2523.30.00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Cat 0	0
2523.90.00	-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Cat 0	0
2524.10.00	- 청(靑)석면	Cat 0	0
2524.90.00	- 기타	Cat 0	0
2525.10.00	-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쏘렐 운모	Cat 0	0
2525.20.00	- 운모 가루	Cat 0	0
2525.30.00	- 운모 웨이스트(waste)	Cat 0	0
2526.10.00	-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Cat 0	0
2526.20.10	- - 활석 분말	Cat 0	0
2526.20.90	- - 기타	Cat 0	0
2528.00.00	천연 붕산염과 그 정광(精鑛)[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 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붕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붕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한 붕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 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529.10.10	- - 가성(苛性)칼륨, 소다 칼륨	Cat 0	0
2529.10.90	- - 기타	Cat 0	0
2529.21.00	- - 플루오르화칼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Cat 0	0
2529.22.00	- - 플루오르화칼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 하는 것	Cat 0	0
2529.30.00	-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閃長巖)	Cat 0	0
2530.10.00	-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과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 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530.20.10	- - 키테라이트	Cat 0	0
2530.20.20	- - 에프소마이트 (천연 황산마그네슘)	Cat 0	0
2530.90.10	- - 유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미분말로된 지르콘 모래(규산 지르코늄)	Cat 0	0
2530.90.90	- - 기타	Cat 0	0
2601.11.10	- - - 적(赤)철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01.11.90	- - - 기타	Cat 0	0
2601.12.10	- - - 적(赤)철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01.12.90	- - - 기타	Cat 0	0
2601.20.00	-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Cat 0	0
2602.00.00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 이 전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Cat 0	0
2603.00.00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04.00.00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05.00.00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606.00.00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07.00.00	납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08.00.00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09.00.00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0.00.0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1.00.00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2.10.00	-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2.20.00	-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3.10.00	- 배소한 것	Cat 0	0
2613.90.00	- 기타	Cat 0	0
2614.00.10	- 티타늄철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4.00.90	- 기타	Cat 0	0
2615.10.00	-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5.90.00	- 기타	Cat 0	0
2616.10.00	- 은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6.90.00	- 기타	Cat 0	0
2617.10.00	-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Cat 0	0
2617.90.00	- 기타	Cat 0	0
2618.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Cat 0	0
2619.00.00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Cat 0	0
2620.11.00	- -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Cat 0	0
2620.19.00	- - 기타	Cat 0	0
2620.21.00	- -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Cat 0	0
2620.29.00	- - 기타	Cat 0	0
2620.30.00	-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Cat 0	0
2620.40.00	-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Cat 0	0
2620.60.00	-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Cat 0	0
2620.91.00	-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Cat 0	0
2620.99.10	- - - 슬래그(slag)와 주석의 하드헤드(hardhead)	Cat 0	0
2620.99.90	- - - 기타	Cat 0	0
2621.10.00	-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Cat 0	0
2621.90.00	- 기타	Cat 0	0
2701.11.00	- - 무연탄	Cat 0	0
2701.12.10	- - - 점결탄	Cat 0	0
2701.12.90	- - - 기타	Cat 0	0
2701.19.00	- - 그 밖의 석탄	Cat 0	0
2701.20.00	-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Cat 0	0
2702.10.00	-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Cat 0	0
2702.20.00	- 응결시킨 갈탄	Cat 0	0
2703.00.10	- 토탄(응결시킨 것을 제외하며, 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2703.00.20	- 응결시킨 토탄	Cat 0	0
2704.00.10	-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704.00.20	-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갈탄 또는 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704.00.30	-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Cat 0	0
2705.00.00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Cat 0	0
2706.00.00	석탄·갈탄 또는 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Cat 0	0
2707.10.00	- 벤조올(벤젠)	Cat 0	0
2707.20.00	- 톨루올(톨루엔)	Cat 0	0
2707.30.00	- 크실롤(크실렌)	Cat 0	0
2707.40.00	- 나프탈렌	Cat 0	0
2707.50.00	-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아이·에스·오(ISO) 3405 방법{에이·에스·티·엠 디(ASTM D) 86의 방법과 동등}으로 증류한 양이 전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순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707.91.00	- - 크레오소트(creosote)유	Cat 0	0
2707.99.10	- - - 카본 블랙(carbon black) 공급 원료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707.99.90	- - - 기타	Cat 0	0
2708.10.00	- 피치(pitch)	Cat 0	0
2708.20.00	- 피치코크스(pitch cokes)	Cat 0	0
2709.00.10	- 석유	Cat 0	0
2709.00.20	- 콘덴세이트(condensates)	Cat 0	0
2709.00.90	- 기타	Cat 0	0
2710.12.11	- - - - 알·오·엔 97 이상의 것	Cat 0	0
2710.12.12	- - - - 알·오·엔 90 이상 알·오·엔 97 미만의 것	Cat 0	0
2710.12.13	- - - - 그 밖의 알·오·엔인 것	Cat 0	0
2710.12.21	- - - - - 혼합되지 않은 것	Cat 0	0
2710.12.22	- - - - - 에탄올과 혼합된 것	Cat 0	0
2710.12.23	- - - - - 기타	Cat 0	0
2710.12.24	- - - - - 혼합되지 않은 것	Cat 0	0
2710.12.25	- - - - - 에탄올과 혼합된 것	Cat 0	0
2710.12.26	- - - - - 기타	Cat 0	0
2710.12.27	- - - - - 혼합되지 않은 것	Cat 0	0
2710.12.28	- - - - - 에탄올과 혼합된 것	Cat 0	0
2710.12.29	- - - - - 기타	Cat 0	0
2710.12.31	- - - - 옥탄 100 이상의 것	Cat 0	0
2710.12.39	- - - - 기타	Cat 0	0
2710.12.40	- - - 테트라프로필렌(tetrapropylene)	Cat 0	0
2710.12.50	- - - 백정	Cat 0	0
2710.12.60	- - - 저 방향성 용제(방향성분의 함유량이 총중량의 100분의 1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710.12.70	- - - 그 밖의 용제 주정	Cat 0	0
2710.12.80	- - - 나프타(개질휘발유와 자동차 연료 혼합용의 그 밖의 조제품으로 한정한다)	Cat 0	0
2710.12.91	- - - - 알파 올레핀	Cat 0	0
2710.12.92	- - - - 그 밖의 휘발유(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710.12.99	- - - - 기타	Cat 0	0
2710.19.20	- - - 톱트 크루즈(Topped crudes)	Cat 0	0
2710.19.30	- - - 카본 블랙(carbon black) 공급 원료	Cat 0	0
2710.19.41	- - - - 윤활유 공급 원료	Cat 0	0
2710.19.42	- - - - 항공기 엔진용의 윤활유	Cat 0	0
2710.19.43	- - - - 그 밖의 윤활유	Cat 0	0
2710.19.44	- - - - 윤활 그리스	Cat 0	0
2710.19.50	- - - 유압 제동액	Cat 0	0
2710.19.60	- - - 변환기와 차단기 유	Cat 0	0
2710.19.71	- - - - 자동차용 디젤유	Cat 0	0
2710.19.72	- - - - 그 밖의 디젤유	Cat 0	0
2710.19.79	- - - - 연료유	Cat 0	0
2710.19.81	- - - 항공유(제트연료)(인화점이 섭씨 23도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710.19.82	- - - 항공유(제트연료)(인화점이 섭씨 23도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710.19.83	- - - 그 밖의 등유	Cat 0	0
2710.19.89	- - - 그 밖의 중유와 조제품	Cat 0	0
2710.19.90	- - - 기타	Cat 0	0
2710.20.00	- 석유 및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Cat 0	0
2710.91.00	-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Cat 0	0
2710.99.00	- - 기타	Cat 0	0
2711.11.00	- - 천연가스	Cat 0	0
2711.12.00	- - 프로판	Cat 0	0
2711.13.00	- - 부탄	Cat 0	0
2711.14.10	- - - 에틸렌	Cat 0	0
2711.14.90	- - - 기타	Cat 0	0
2711.19.00	- - 기타	Cat 0	0
2711.21.10	- - - 자동차 연료로 사용되는 것	Cat 0	0
2711.21.90	- - - 기타	Cat 0	0
2711.29.00	- - 기타	Cat 0	0
2712.10.00	- 석유젤리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712.20.00	-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712.90.10	- - 파라핀왁스	Cat 0	0
2712.90.90	- - 기타	Cat 0	0
2713.11.00	- -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Cat 0	0
2713.12.00	- - 하소(煨燒)한 것	Cat 0	0
2713.20.00	- 석유역청(瀝靑)	Cat 0	0
2713.90.00	-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Cat 0	0
2714.10.00	- 역청질혈암 또는 유모혈암 및 타르샌드	Cat 0	0
2714.90.00	- 기타	Cat 0	0
2715.00.10	- 폴리우레탄 타르 코팅제	Cat 0	0
2715.00.90	- 기타	Cat 0	0
2801.10.00	- 염소	Cat 0	0
2801.20.00	- 요드	Cat 0	0
2801.30.00	- 플루오르, 브롬	Cat 0	0
2802.00.00	승화황(昇華黃) · 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	Cat 0	0
2803.00.20	- 아세틸렌 블랙	Cat 0	0
2803.00.41	- - 고무가공용의 것	Cat 0	0
2803.00.49	- - 기타	Cat 0	0
2803.00.90	- 기타	Cat 0	0
2804.10.00	- 수소	Cat 0	0
2804.21.00	- - 아르곤	Cat 0	0
2804.29.00	- - 기타	Cat 0	0
2804.30.00	- 질소	Cat 0	0
2804.40.00	- 산소	Cat 0	0
2804.50.00	- 붕소, 텔루르	Cat 0	0
2804.61.00	- - 규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Cat 0	0
2804.69.00	- - 기타	Cat 0	0
2804.70.00	- 인	Cat 0	0
2804.80.00	- 비소	Cat 0	0
2804.90.00	- 셀렌	Cat 0	0
2805.11.00	- - 나트륨	Cat 0	0
2805.12.00	- - 칼슘	Cat 0	0
2805.19.00	- - 기타	Cat 0	0
2805.30.00	-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2805.40.00	- 수은	Cat 0	0
2806.10.00	- 염화수소(염산)	Cat 0	0
2806.20.00	- 클로로황산	Cat 0	0
2807.00.00	황산, 발연황산	Cat 0	0
2808.00.00	질산, 황질산	Cat 0	0
2809.10.00	- 오산화인	Cat 0	0
2809.20.31	- - - 차인산(次磷酸)	Cat 0	0
2809.20.32	- - - 인산	Cat 0	0
2809.20.39	- - - 기타	Cat 0	0
2809.20.91	- - - 차인산(次磷酸)	Cat 0	0
2809.20.92	- - - 인산	Cat 0	0
2809.20.99	- - - 기타	Cat 0	0
2810.00.00	붕소의 산화물, 붕산	Cat 0	0
2811.11.00	-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Cat 0	0
2811.12.00	- -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Cat 0	0
2811.19.10	- - - 비산	Cat 0	0
2811.19.20	- - - 아미노술폰산(술파민산)	Cat 0	0
2811.19.90	- - - 기타	Cat 0	0
2811.21.00	- - 이산화탄소	Cat 0	0
2811.22.10	- - - 가루 모양인 것	Cat 0	0
2811.22.90	- - - 기타	Cat 0	0
2811.29.10	- - - 오산화비소	Cat 0	0
2811.29.20	- - - 이산화황	Cat 0	0
2811.29.90	- - - 기타	Cat 0	0
2812.11.00	- -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Cat 0	0
2812.12.00	- -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Cat 0	0
2812.13.00	- -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Cat 0	0
2812.14.00	- -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Cat 0	0
2812.15.00	- -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Cat 0	0
2812.16.00	- - 설퍼 디클로라이드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812.17.00	- - 티오닐 클로라이드	Cat 0	0
2812.19.00	- - 기타	Cat 0	0
2812.90.00	- 기타	Cat 0	0
2813.10.00	- 이황화탄소	Cat 0	0
2813.90.00	- 기타	Cat 0	0
2814.10.00	- 무수(無水)암모니아	Cat 0	0
2814.20.00	- 암모니아수	Cat 0	0
2815.11.00	- - 고체	Cat 3	5
2815.12.00	- -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소다)	Cat 15	5
2815.20.00	-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Cat 0	0
2815.30.00	-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Cat 0	0
2816.10.00	-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Cat 0	0
2816.40.00	-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및 과산화물	Cat 0	0
2817.00.10	- 산화아연	Cat 0	0
2817.00.20	- 과산화아연	Cat 0	0
2818.10.00	-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 없다)	Cat 0	0
2818.20.00	- 산화알루미늄[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Cat 0	0
2818.30.00	- 수산화알루미늄	Cat 0	0
2819.10.00	- 삼산화크로뮴	Cat 0	0
2819.90.00	- 기타	Cat 0	0
2820.10.00	- 이산화망간	Cat 0	0
2820.90.00	- 기타	Cat 0	0
2821.10.00	- 산화철과 수산화철	Cat 0	0
2821.20.00	- 어스컬러(earth colour)	Cat 0	0
2822.00.00	- 산화코발트와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Cat 0	0
2823.00.00	- 산화티타늄	Cat 0	0
2824.10.00	-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Cat 0	0
2824.90.00	- 기타	Cat 0	0
2825.10.00	- 히드라진과 히드록실아민 및 이들의 무기염	Cat 0	0
2825.20.00	-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Cat 0	0
2825.30.00	-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Cat 0	0
2825.40.00	-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Cat 0	0
2825.50.00	-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Cat 0	0
2825.60.00	-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Cat 0	0
2825.70.00	-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Cat 0	0
2825.80.00	- 산화안티모니	Cat 0	0
2825.90.00	- 기타	Cat 0	0
2826.12.00	- - 플루오르화알루미늄	Cat 0	0
2826.19.00	- - 기타	Cat 0	0
2826.30.00	-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Cat 0	0
2826.90.00	- 기타	Cat 0	0
2827.10.00	- 염화암모늄	Cat 0	0
2827.20.10	- - 전중량의 73퍼센트부터 80퍼센트까지인 것	Cat 0	0
2827.20.90	- - 기타	Cat 0	0
2827.31.00	- - 마그네슘 염화물	Cat 0	0
2827.32.00	- - 알루미늄 염화물	Cat 0	0
2827.35.00	- - 니켈 염화물	Cat 0	0
2827.39.10	- - - 바륨이나 코발트의 것	Cat 0	0
2827.39.20	- - - 철의 것	Cat 0	0
2827.39.30	- - - 아연의 것	Cat 0	0
2827.39.90	- - - 기타	Cat 0	0
2827.41.00	- - 구리 염화물	Cat 0	0
2827.49.00	- - 기타	Cat 0	0
2827.51.00	- -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Cat 0	0
2827.59.00	- - 기타	Cat 0	0
2827.60.00	-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Cat 0	0
2828.10.00	-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Cat 0	0
2828.90.10	- - 하이포아염소산나트륨	Cat 0	0
2828.90.90	- - 기타	Cat 0	0
2829.11.00	- - 염소산나트륨	Cat 0	0
2829.19.00	- - 기타	Cat 0	0
2829.90.10	- - 과염소산나트륨	Cat 0	0
2829.90.9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830.10.00	- 황화나트륨	Cat 0	0
2830.90.10	- - 황화 카드뮴이나 황화 아연	Cat 0	0
2830.90.90	- - 기타	Cat 0	0
2831.10.00	-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술폭실산나트륨	Cat 0	0
2831.90.00	- 기타	Cat 0	0
2832.10.00	- 아황산나트륨	Cat 0	0
2832.20.00	- 그 밖의 아황산염	Cat 0	0
2832.30.00	- 티오황산염	Cat 0	0
2833.11.00	- - 황산이나트륨	Cat 0	0
2833.19.00	- - 기타	Cat 0	0
2833.21.00	- - 황산마그네슘	Cat 0	0
2833.22.10	- - - 상업용의 것	Cat 0	0
2833.22.90	- - - 기타	Cat 0	0
2833.24.00	- - 황산니켈	Cat 0	0
2833.25.00	- - 황산구리	Cat 0	0
2833.27.00	- - 황산바륨	Cat 0	0
2833.29.20	- - - 삼염기성황산염	Cat 0	0
2833.29.30	- - - 크로뮴의 것	Cat 0	0
2833.29.90A	- - - - 아연의 것	Cat 0	0
2833.29.90B	- - - - 기타	Cat 0	0
2833.30.00	- 명반	Cat 0	0
2833.40.00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Cat 0	0
2834.10.00	- 아질산염	Cat 0	0
2834.21.00	- - 질산칼륨	Cat 0	0
2834.29.10	- - - 비스무트의 것	Cat 0	0
2834.29.90	- - - 기타	Cat 0	0
2835.10.00	- 포스포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Cat 0	0
2835.22.00	- -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Cat 0	0
2835.24.00	- - 인산칼륨	Cat 0	0
2835.25.10	- - - 사료용	Cat 0	0
2835.25.90	- - - 기타	Cat 0	0
2835.26.00	- - 그 밖의 인산칼슘	Cat 0	0
2835.29.10	- - - 삼나트륨의 것	Cat 0	0
2835.29.90	- - - 기타	Cat 0	0
2835.31.00	-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Cat 0	0
2835.39.10	- - - 피로인산사나트륨	Cat 0	0
2835.39.90	- - - 기타	Cat 0	0
2836.20.00	- 탄산이나트륨	Cat 0	0
2836.30.00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Cat 0	0
2836.40.00	- 탄산칼륨	Cat 0	0
2836.50.10	- - 식용 또는 의약품용	Cat 0	0
2836.50.90	- - 기타	Cat 0	0
2836.60.00	- 탄산바륨	Cat 0	0
2836.91.00	- - 탄산리튬	Cat 0	0
2836.92.00	- - 탄산스트론튬	Cat 0	0
2836.99.10	- - -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 암모늄	Cat 0	0
2836.99.20	- - - 탄산납	Cat 0	0
2836.99.90	- - - 기타	Cat 0	0
2837.11.00	- -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Cat 0	0
2837.19.00	- - 기타	Cat 0	0
2837.20.00	- 시안착염	Cat 0	0
2839.11.00	- - 메타규산나트륨	Cat 0	0
2839.19.10	- - - 규산나트륨	Cat 0	0
2839.19.90	- - - 기타	Cat 0	0
2839.90.00	- 기타	Cat 0	0
2840.11.00	- - 무수물(無水物)	Cat 0	0
2840.19.00	- - 기타	Cat 0	0
2840.20.00	- 그 밖의 붕산염	Cat 0	0
2840.30.00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Cat 0	0
2841.30.00	- 중크롬산나트륨	Cat 0	0
2841.50.00	-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Cat 0	0
2841.61.00	- - 과망간산칼륨	Cat 0	0
2841.69.00	- - 기타	Cat 0	0
2841.70.00	- 몰리브덴산염	Cat 0	0
2841.80.00	-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841.90.00	- 기타	Cat 0	0
2842.10.00	-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늄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Cat 0	0
2842.90.10	- - 아비산나트륨	Cat 0	0
2842.90.20	- - 구리나 크로뮴 염	Cat 0	0
2842.90.30	- - 그 밖의 풀민산염, 시안산염과 티오시안산염	Cat 0	0
2842.90.90	- - 기타	Cat 0	0
2843.10.00	- 콜로이드 귀금속	Cat 0	0
2843.21.00	- - 질산은	Cat 0	0
2843.29.00	- - 기타	Cat 0	0
2843.30.00	- 금 화합물	Cat 0	0
2843.90.00	- 그 밖의 화합물, 아말감(amalgam)	Cat 0	0
2844.10.10	- -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Cat 0	0
2844.10.90	- - 기타	Cat 0	0
2844.20.10	- -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Cat 0	0
2844.20.90	- - 기타	Cat 0	0
2844.30.10	- -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Cat 0	0
2844.30.90	- - 기타	Cat 0	0
2844.40.10	- - 방사성 원소 및 방사성동위원소와 화합물, 방사성 잔재물	Cat 0	0
2844.40.90	- - 기타	Cat 0	0
2844.50.00	-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Cat 0	0
2845.10.0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Cat 0	0
2845.90.00	- 기타	Cat 0	0
2846.10.00	- 세륨화합물	Cat 0	0
2846.90.00	- 기타	Cat 0	0
2847.00.10	- 액체 상태의 것	Cat 0	0
2847.00.90	- 기타	Cat 0	0
2849.10.00	- 탄화칼슘	Cat 0	0
2849.20.00	- 탄화규소	Cat 0	0
2849.90.00	- 기타	Cat 0	0
2850.00.00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 및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Cat 0	0
2852.10.10	- - 황산수은	Cat 0	0
2852.10.20	- - 루미노퍼로 사용되는 수은 화합물	Cat 0	0
2852.10.90	- - 기타	Cat 0	1/0
2852.90.10	- - 수은 타닌산염	Cat 0	0
2852.90.20	- - 수은황화물, 수은폴리황화물, 수은폴리인산염, 수은탄화물, 소호 제2934.99.90호의 헤테고리수은화합물, 수은펩톤(peptone)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의 유도체	Cat 0	1/0
2852.90.90	- - 기타	Cat 0	0
2853.10.00	- 시아노겐 클로라이드(염화시아노겐)	Cat 0	0
2853.90.10	- - 탈염수(脫鹽水)	Cat 0	0
2853.90.90	- - 기타	Cat 0	0
2901.10.00	- 포화비환식탄화수소	Cat 0	0
2901.21.00	- - 에틸렌	Cat 0	0
2901.22.00	- - 프로펜(프로필렌)	Cat 0	0
2901.23.00	- -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Cat 0	0
2901.24.00	- -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Cat 0	0
2901.29.10	- - - 아세틸렌	Cat 0	0
2901.29.20	- - - 헥센과 이들의 이성체	Cat 0	0
2901.29.90	- - - 기타	Cat 0	0
2902.11.00	- - 시클로헥산	Cat 0	0
2902.19.00	- - 기타	Cat 0	0
2902.20.00	- 벤젠	Cat 0	0
2902.30.00	- 톨루엔	Cat 0	0
2902.41.00	- - 오르토-크실렌	Cat 0	0
2902.42.00	- - 메타-크실렌	Cat 0	0
2902.43.00	- - 파라-크실렌	Cat 0	0
2902.44.00	- - 혼합크실렌이성체	Cat 0	0
2902.50.00	- 스티렌	Cat 0	0
2902.60.00	- 에틸벤젠	Cat 0	0
2902.70.00	- 큐멘	Cat 0	0
2902.90.10	- - 도데실벤젠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902.90.20	- - 그 밖의 알킬벤젠	Cat 0	0
2902.90.90	- - 기타	Cat 0	0
2903.11.10	- - - 염화메탄(염화메틸)	Cat 0	0
2903.11.90	- - - 기타	Cat 0	0
2903.12.00	-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Cat 0	0
2903.13.00	-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Cat 0	0
2903.14.00	- - 사염화탄소	Cat 0	0
2903.15.00	- - 이염화에틸렌(ISO)(1,2-이염화에탄)	Cat 0	3
2903.19.10	- - - 1,2-디클로로프로판(프로필렌 디클로라이드)과 디클로로부탄	Cat 0	0
2903.19.20	- - - 1,1,1-트리클로로에탄(메틸클로로포름)	Cat 0	0
2903.19.90	- - - 기타	Cat 0	0
2903.21.00	-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Cat 0	0
2903.22.00	- - 삼염화에틸렌	Cat 0	0
2903.23.00	- -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Cat 0	0
2903.29.00	- - 기타	Cat 0	0
2903.31.00	- - 이브롬화에틸렌(ISO)(1,2-디브로모에탄)	Cat 0	0
2903.39.10	- - - 브로모메탄(메틸 브로마이드)	Cat 0	0
2903.39.90	- - - 기타	Cat 0	0
2903.71.00	-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Cat 0	0
2903.72.00	-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메탄	Cat 0	0
2903.73.00	- - 디클로로플루오르메탄	Cat 0	0
2903.74.00	-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Cat 0	0
2903.75.00	-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Cat 0	0
2903.76.00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과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	Cat 0	0
2903.77.00	- -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Cat 0	0
2903.78.00	- -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Cat 0	0
2903.79.00	- - 기타	Cat 0	0
2903.81.00	-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HCH(ISO)] [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Cat 0	0
2903.82.00	- - 앨드린(ISO), 클로르덴(ISO)과 헵타클로르(ISO)	Cat 0	0
2903.83.00	- - 미렉스(ISO)	Cat 0	0
2903.89.00	- - 기타	Cat 0	0
2903.91.00	- -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과 파라-디클로로벤젠	Cat 0	0
2903.92.00	- -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타(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Cat 0	0
2903.93.00	- - 펜타클로로벤젠(ISO)	Cat 0	0
2903.94.00	- - 헥사브로모비페닐	Cat 0	0
2903.99.00	- - 기타	Cat 0	0
2904.10.00	- 술폰화유도체, 이들의 염과 에틸에스테르	Cat 0	0
2904.20.10	- - 트리니트로톨루엔	Cat 0	0
2904.20.90	- - 기타	Cat 0	0
2904.31.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Cat 0	0
2904.32.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Cat 0	0
2904.33.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Cat 0	0
2904.34.00	- -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Cat 0	0
2904.35.00	- -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Cat 0	0
2904.36.00	- - 과불화옥탄술폰플루오라이드	Cat 0	0
2904.91.00	-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클로로피크린)	Cat 0	0
2904.99.00	- - 기타	Cat 0	0
2905.11.00	- - 메탄올(메틸알코올)	Cat 0	0
2905.12.00	- -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Cat 0	1
2905.13.00	-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Cat 0	3
2905.14.00	- - 그 밖의 부탄올	Cat 0	3
2905.16.00	- -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Cat 0	1/0
2905.17.00	-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및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Cat 0	0
2905.19.00	- - 기타	Cat 0	0
2905.22.00	-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Cat 0	0
2905.29.00	- - 기타	Cat 0	0
2905.31.00	-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Cat 0	0
2905.32.00	-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Cat 0	1
2905.39.00	- - 기타	Cat 0	1/0
2905.41.00	- -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905.42.00	- - 펜타에리트리톨	Cat 0	0
2905.43.00	- - 만니톨	Cat 0	1
2905.44.00	-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Cat 0	3
2905.45.00	- - 글리세롤	Cat 0	0
2905.49.00	- - 기타	Cat 0	0
2905.51.00	- - 에스클로비놀(INN)	Cat 0	0
2905.59.00	- - 기타	Cat 0	0
2906.11.00	- - 멘톨	Cat 0	0
2906.12.00	- - 시클로헥산올 · 메틸시클로헥산올 및 디메틸시클로헥산올	Cat 0	0
2906.13.00	- - 스테롤과 이노시톨	Cat 0	0
2906.19.00	- - 기타	Cat 0	0
2906.21.00	- - 벤질알코올	Cat 0	0
2906.29.00	- - 기타	Cat 0	0
2907.11.00	- - 페놀(석탄산)과 그 염	Cat 0	0
2907.12.00	- - 크레졸과 그 염	Cat 0	0
2907.13.00	- - 옥틸페놀 · 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Cat 0	0
2907.15.00	- - 나프톨과 이들의 염	Cat 0	0
2907.19.00	- - 기타	Cat 0	0
2907.21.00	- - 레소르시놀과 그 염	Cat 0	0
2907.22.00	- -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Cat 0	0
2907.23.00	- -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Cat 0	3/0
2907.29.10	- - - 페놀알코올	Cat 0	0
2907.29.90	- - - 기타	Cat 0	0
2908.11.00	- - 펜타클로로페놀(ISO)	Cat 0	0
2908.19.00	- - 기타	Cat 0	0
2908.91.00	- - 디노셉(ISO)과 그 염	Cat 0	0
2908.92.00	- -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DNOC(ISO)]과 그 염	Cat 0	0
2908.99.00	- - 기타	Cat 0	0
2909.11.00	- - 디에틸에테르	Cat 0	0
2909.19.00	- - 기타	Cat 0	0
2909.20.0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Cat 0	0
2909.30.00	-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Cat 0	0
2909.41.00	- -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Cat 0	0
2909.43.00	- -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Cat 0	0
2909.44.00	- -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또는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Cat 0	0
2909.49.00	- - 기타	Cat 0	0
2909.50.00	-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Cat 0	0
2909.60.00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Cat 0	0
2910.10.00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Cat 0	0
2910.20.00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Cat 0	3
2910.30.00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에피클로로히드린)	Cat 0	3
2910.40.00	- 디엘드린(ISO, INN)	Cat 0	0
2910.50.00	- 엔드린(ISO)	Cat 0	0
2910.90.00	- 기타	Cat 0	0
2911.00.00	- 아세탈 및 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Cat 0	0
2912.11.10	- - - 포르말린	Cat 0	0
2912.11.90	- - - 기타	Cat 0	0
2912.12.00	-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Cat 0	0
2912.19.00	- - 기타	Cat 0	0
2912.21.00	- - 벤즈알데히드	Cat 0	0
2912.29.00	- - 기타	Cat 0	0
2912.41.00	- -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Cat 0	0
2912.42.00	- -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Cat 0	0
2912.49.10	- - - 그 밖의 알데히드-알코올	Cat 0	0
2912.49.90	- - - 기타	Cat 0	0
2912.50.00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912.60.00	- 파라포름알데히드	Cat 0	0
2913.00.00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또는 니트로소화유도체	Cat 0	0
2914.11.00	- - 아세톤	Cat 0	1
2914.12.00	- - 부탄온(메틸에틸케톤)	Cat 0	0
2914.13.00	- - 4-메틸펜탄-2-온(메틸이소부틸케톤)	Cat 0	0
2914.19.00	- - 기타	Cat 0	0
2914.22.00	- -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Cat 0	0
2914.23.00	- -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Cat 0	0
2914.29.10	- - - 캄퍼	Cat 0	0
2914.29.90	- - - 기타	Cat 0	0
2914.31.00	- -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Cat 0	0
2914.39.00	- - 기타	Cat 0	0
2914.40.00	-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Cat 0	0
2914.50.00	-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Cat 0	0
2914.61.00	- - 안트라퀴논	Cat 0	0
2914.62.00	- -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Cat 0	0
2914.69.00	- - 기타	Cat 0	0
2914.71.00	- - 클로르데콘(ISO)	Cat 0	0
2914.79.00	- - 기타	Cat 0	0
2915.11.00	- - 포름산	Cat 0	0
2915.12.00	- - 포름산의 염	Cat 0	0
2915.13.00	- - 포름산의 에스테르	Cat 0	0
2915.21.00	- - 초산	Cat 0	3
2915.24.00	- - 무수(無水)초산	Cat 0	0
2915.29.10	- - - 초산나트륨, 초산코발트	Cat 0	0
2915.29.90	- - - 기타	Cat 0	0
2915.31.00	- - 초산에틸	Cat 0	1
2915.32.00	- - 초산비닐	Cat 0	1
2915.33.00	- - 초산노르말부틸	Cat 0	1/0
2915.36.00	- - 초산디노셉(ISO)	Cat 0	0
2915.39.10	- - - 초산이소부틸	Cat 0	0
2915.39.20	- - - 초산2-에톡시에틸	Cat 0	0
2915.39.90	- - - 기타	Cat 0	0
2915.40.00	-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 디클로로 아세트산 또는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5.50.00	-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5.60.00	- 부탄산 · 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5.70.10	- - 팔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5.70.20	- - 스테아르산	Cat 0	0
2915.70.30	- - 스테아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5.90.10	- - 염화아세틸	Cat 0	0
2915.90.20	- - 라우르산, 미리스트 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5.90.30	- - 카프릴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5.90.40	- - 카프릭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5.90.90	- - 기타	Cat 0	0
2916.11.00	- - 아크릴산과 그 염	Cat 0	3/0
2916.12.00	- -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Cat 0	1
2916.13.00	- -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Cat 0	1/0
2916.14.10	- - - 메타아크릴산메틸	Cat 0	0
2916.14.90	- - - 기타	Cat 0	0
2916.15.00	- - 올레산 · 리놀레산 또는 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6.16.00	- - 비나파크릴(ISO)	Cat 0	0
2916.19.00	- - 기타	Cat 0	0
2916.20.0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16.31.00	- -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6.32.00	- -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Cat 0	0
2916.34.00	- -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Cat 0	0
2916.39.10	- - - 2,4-디클로로페녹시 아세트산과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6.39.20	- - - 페닐아세트산의 에스테르	Cat 0	0
2916.39.90	- - - 기타	Cat 0	0
2917.11.00	- -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7.12.10	- - - 아디프산 디옥틸	Cat 0	0
2917.12.90	-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917.13.00	- - 아젤라산·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7.14.00	- - 무수말레산	Cat 0	0
2917.19.00	- - 기타	Cat 0	0
2917.20.00	- 포화지환식·불포화지환식 또는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17.32.00	-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Cat 0	1
2917.33.00	- - 오르토프탈산디노닐 또는 오르토프탈산디데실	Cat 0	0
2917.34.10	- - - 오르토프탈산 디부틸	Cat 0	0
2917.34.90	- - - 기타	Cat 0	1/0
2917.35.00	- - 무수프탈산	Cat 0	0
2917.36.00	- - 테레프탈산과 그 염	Cat 0	0
2917.37.00	- - 테레프탈산디메틸	Cat 0	0
2917.39.10	- - - 트리옥틸트리멜리테이트	Cat 0	0
2917.39.20	- - - 그 밖의 프탈 화합물(가소제용과 무수프탈산의 에스테르로 한정한다)	Cat 0	0
2917.39.90	- - - 기타	Cat 0	1/0
2918.11.00	- -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8.12.00	- - 타르타르산	Cat 0	0
2918.13.00	- -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8.14.00	- - 시트르산	Cat 0	0
2918.15.10	- - - 시트르산 칼슘	Cat 0	0
2918.15.90	- - - 기타	Cat 0	0
2918.16.00	- -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8.17.00	- -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벤질산)	Cat 0	0
2918.18.00	- - 클로로벤질레이트(ISO)	Cat 0	0
2918.19.00	- - 기타	Cat 0	0
2918.21.00	- - 살리실산과 그 염	Cat 0	0
2918.22.00	-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8.23.00	- -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Cat 0	0
2918.29.10	- - - 페놀의 알칼술폰 에스테르	Cat 0	0
2918.29.90	- - - 기타	Cat 0	0
2918.30.00	- 알데히드 또는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및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18.91.00	- - 2,4,5-티(ISO)(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Cat 0	0
2918.99.00	- - 기타	Cat 0	0
2919.10.00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Cat 0	0
2919.90.00	- 기타	Cat 0	0
2920.11.00	- -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메틸(ISO)(메틸파라티온)	Cat 0	0
2920.19.00	- - 기타	Cat 0	0
2920.21.00	- - 디메틸 포스파이트	Cat 0	0
2920.22.00	- - 디에틸 포스파이트	Cat 0	0
2920.23.00	- -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Cat 0	0
2920.24.00	- -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Cat 0	0
2920.29.00	- - 기타	Cat 0	0
2920.30.00	- 엔도설판(ISO)	Cat 0	0
2920.90.00	- 기타	Cat 0	0
2921.11.00	- - 메틸아민·디메틸아민 또는 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Cat 0	0
2921.12.00	- - 2-(엔,엔-디메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Cat 0	0
2921.13.00	-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Cat 0	0
2921.14.00	-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Cat 0	0
2921.19.00	- - 기타	Cat 0	0
2921.21.00	-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Cat 0	0
2921.22.00	- -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Cat 0	0
2921.29.00	- - 기타	Cat 0	0
2921.30.00	- 포화지환식아민·불포화지환식아민이나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또는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Cat 0	0
2921.41.00	- - 아닐린과 그 염	Cat 0	0
2921.42.00	- -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Cat 0	0
2921.43.00	- -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Cat 0	0
2921.44.00	- -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Cat 0	0
2921.45.00	- -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Cat 0	0
2921.46.00	- - 암페타민(INN)·벤즈페타민(INN)·덱스암페타민(INN)·에틸암페타민(INN)·펜캄파민(INN)·레페타민(INN)·레브암페타민(INN)·메페노렉스(INN) 및 펜터민(INN), 이들의 염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921.49.00	- - 기타	Cat 0	0
2921.51.00	- - 오르토펜틸렌디아민 · 메타페닐렌디아민 · 파라페닐렌디아민 · 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Cat 0	0
2921.59.00	- - 기타	Cat 0	0
2922.11.00	- -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Cat 0	0
2922.12.00	-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Cat 0	0
2922.14.00	- - 텍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Cat 0	0
2922.15.00	- - 트리에탄올아민	Cat 0	0
2922.16.00	-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Cat 0	0
2922.17.00	- - 메틸디에탄올아민과 에틸디에탄올아민	Cat 0	0
2922.18.00	-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에탄올	Cat 0	0
2922.19.10	- - - 에탐부톨과 그 염,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Cat 0	0
2922.19.20	- - - 디-2-아미노-엔-부틸-알코올	Cat 0	0
2922.19.90	- - - 기타	Cat 0	0
2922.21.00	- -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Cat 0	0
2922.29.00	- - 기타	Cat 0	0
2922.31.00	- - 암페프라몬(INN) · 메타돈(INN)과 노르메타돈(INN), 이들의 염	Cat 0	0
2922.39.00	- - 기타	Cat 0	0
2922.41.00	- - 라이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Cat 0	0
2922.42.10	- - - 글루탐산	Cat 15	5
2922.42.20	- - - 글루타민산나트륨(엠에스지)	Cat 15	5
2922.42.90	- - - 그 밖의 염	Cat 0	0
2922.43.00	- - 안트라닐산과 그 염	Cat 0	0
2922.44.00	- - 틸리딘(INN)과 그 염	Cat 0	0
2922.49.00	- - 기타	Cat 0	0
2922.50.10	- - 파라아미노살리실산과 그 염, 에스테르와 그 밖의 유도체	Cat 0	0
2922.50.90	- - 기타	Cat 0	0
2923.10.00	- 콜린과 그 염	Cat 0	0
2923.20.10	- - 레시틴(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2923.20.90	- - 기타	Cat 0	0
2923.30.00	-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Cat 0	0
2923.40.00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Cat 0	0
2923.90.00	- 기타	Cat 0	0
2924.11.00	- - 메프로바메이트(INN)	Cat 0	0
2924.12.10	- -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와 포스파미돈(ISO)	Cat 0	0
2924.12.20	- - - 모노크로토포스(ISO)	Cat 0	0
2924.19.10	- - - 카리소프로돌(Carisophrodol)	Cat 0	0
2924.19.90	- - - 기타	Cat 0	0
2924.21.10	- - - 4-에톡시페닐우레아(덜신)	Cat 0	0
2924.21.20	- - - 디우론과 모뉴론	Cat 0	0
2924.21.90	- - - 기타	Cat 0	0
2924.23.00	- -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Cat 0	0
2924.24.00	- - 에치나메이트(INN)	Cat 0	0
2924.25.00	- - 알라클로르(ISO)	Cat 0	0
2924.29.10	- - - 아스파탐	Cat 0	0
2924.29.20	- - - 뷰틸페닐메틸 카르바메이트, 메틸 이소프로필 페닐 카르바 메이트	Cat 0	0
2924.29.30	- - - 아세트아미노펜(파라세타몰), 살리실아미드, 에텐자마이드	Cat 0	0
2924.29.90	- - - 기타	Cat 0	0
2925.11.00	- - 사카린과 그 염	Cat 0	0
2925.12.00	- - 구루테치미드(INN)	Cat 0	0
2925.19.00	- - 기타	Cat 0	0
2925.21.00	- - 클로르디메포름(ISO)	Cat 0	0
2925.29.00	- - 기타	Cat 0	0
2926.10.00	- 아크릴로니트릴	Cat 0	0
2926.20.00	-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Cat 0	0
2926.30.00	-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디메틸아미노-4, 4-디페닐부탄)	Cat 0	0
2926.40.00	-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Cat 0	0
2926.90.00	- 기타	Cat 0	0
2927.00.10	- 아조디카본아미드	Cat 0	0
2927.00.90	- 기타	Cat 0	0
2928.00.10	- 리누론	Cat 0	0
2928.00.90	- 기타	Cat 0	0
2929.10.10	- - 디페닐메탄 디이소시아네이트(엠디아이)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929.10.20	- - 톨루엔 디이소시아네이트	Cat 0	0
2929.10.90	- - 기타	Cat 0	0
2929.90.10	- - 사이클라민산나트륨	Cat 0	0
2929.90.20	- - 그 밖의 사이클러메이트	Cat 0	0
2929.90.90	- - 기타	Cat 0	0
2930.20.00	- 티오키르바메이트와 디티오키르바메이트	Cat 0	0
2930.30.00	- 티우람모노술파이드 · 티우람디술파이드 또는 티우람테트라술파이드	Cat 0	0
2930.40.00	- 메티오닌	Cat 0	0
2930.60.00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Cat 0	0
2930.70.00	-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술파이드 [티오디글리콜(INN)]	Cat 0	0
2930.80.00	- 알디카브(ISO), 캡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Cat 0	0
2930.90.10	- - 디티오탄산염	Cat 0	0
2930.90.90	- - 기타	Cat 0	0
2931.10.10	- - 테트라메틸납	Cat 0	0
2931.10.20	- - 테트라에틸납	Cat 0	0
2931.20.00	- 트리부틸틴 화합물	Cat 0	0
2931.31.00	-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Cat 0	0
2931.32.00	- -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Cat 0	0
2931.33.00	- -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Cat 0	0
2931.34.00	- - 3-(트리하이드록시시알)프로필 메틸포스포네이트 나트륨	Cat 0	0
2931.35.00	- - 2,4,6-트리프로필-1,3,5,2,4,6-트리옥사트리포스피네인 2,4,6-트리옥사이드	Cat 0	0
2931.36.00	-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Cat 0	0
2931.37.00	- -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Cat 0	0
2931.38.00	- - 메틸포스포산과 (아미노이미노메틸)우레아의 염(1 : 1)	Cat 0	0
2931.39.00	- - 기타	Cat 0	0
2931.90.21	- - - 엔(포스포노메틸) 글리세린	Cat 0	0
2931.90.22	- - - 엔(포스포노메틸) 글리세린의 염	Cat 0	0
2931.90.30	- - 에테폰	Cat 0	0
2931.90.41	- - - 액체 상태의 것	Cat 0	0
2931.90.49	- - - 기타	Cat 0	0
2931.90.50	- - 디메틸틴 디클로라이드(Dimethyltin dichloride)	Cat 0	0
2931.90.90	- - 기타	Cat 0	0
2932.11.00	- - 테트라히드로푸란	Cat 0	0
2932.12.00	- -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Cat 0	0
2932.13.00	- - 푸르푸릴 알코올과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Cat 0	0
2932.14.00	- - 수크랄로스	Cat 0	0
2932.19.00	- - 기타	Cat 0	0
2932.20.10	- - 쿠마린 엔(1,2-벤조피론), 메틸쿠마린 및 에틸쿠마린	Cat 0	0
2932.20.90	- - 기타	Cat 0	0
2932.91.00	- - 이소사프롤	Cat 0	0
2932.92.00	- - 1-(1,3-벤조디옥솔-5-일)프로판-2-온	Cat 0	0
2932.93.00	- - 피페로날	Cat 0	0
2932.94.00	- - 사프롤	Cat 0	0
2932.95.00	-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Cat 0	0
2932.99.10	- - - 카보퓨란	Cat 0	0
2932.99.90	- - - 기타	Cat 0	0
2933.11.00	- -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Cat 0	0
2933.19.00	- - 기타	Cat 0	0
2933.21.00	- -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Cat 0	0
2933.29.00	- - 기타	Cat 0	0
2933.31.00	- - 피리딘과 그 염	Cat 0	0
2933.32.00	- - 피페리딘과 그 염	Cat 0	0
2933.33.00	- -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일(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 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및 트리메페리딘(INN), 이들의 염	Cat 0	0
2933.39.10	- - - 클로르페니라민과 이소니아지드	Cat 0	0
2933.39.30	- - - 파라콧트 염	Cat 0	0
2933.39.90	- - - 기타	Cat 0	0
2933.41.00	- - 레보파놀(INN)과 그 염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933.49.10	- - - 텍스트로메토르판(Dextromethorphan)	Cat 0	0
2933.49.90	- - - 기타	Cat 0	0
2933.52.00	- -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Cat 0	0
2933.53.00	- - 아로바르비탈(INN) · 아모바르비탈(INN) · 바르비탈(INN) · 부탈비탈(INN) · 부토바르비탈(INN) · 싸이클로바르비탈(INN) · 메틸페노바르비탈(INN) · 펜토바르비탈(INN) · 페노바르비탈(INN) · 섹부타바르비탈(INN) · 세코바르비탈(INN) 및 비닐비탈(INN), 이들의 염	Cat 0	0
2933.54.00	- -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 이들의 염	Cat 0	0
2933.55.00	- - 로프라졸람(INN) · 메크로과론(INN) · 메타과론(INN) 및 지페프롤(INN), 이들의 염	Cat 0	0
2933.59.10	- - - 다이아지논	Cat 0	0
2933.59.90	- - - 기타	Cat 0	0
2933.61.00	- - 멜라민	Cat 0	0
2933.69.00	- - 기타	Cat 0	0
2933.71.00	- -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Cat 0	0
2933.72.00	- -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Cat 0	0
2933.79.00	- - 그 밖의 락탐	Cat 0	0
2933.91.00	- - 알프라졸람(INN) · 카마제팜(INN) ·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 클로나제팜(INN) · 클로라제페이트 · 델로라제팜(INN) · 디아제팜(INN) · 에스타졸람(INN) ·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 플르디아제팜(INN) · 플루니트라제팜(INN) · 플루라제팜(INN) · 할라제팜(INN) · 로라제팜(INN) · 로르메타제팜(INN) · 마진돌(INN) · 메다제팜(INN) · 미다졸람(INN) · 니메타제팜(INN) · 니트라제팜(INN) · 놀다제팜(INN) · 옥사제팜(INN) · 피나제팜(INN) · 프라제팜(INN) · 피로발레톤(INN) · 테마제팜(INN) · 테트라제팜(INN) 및 트리아졸람(INN), 이들	Cat 0	0
2933.92.00	- - 아진포스-메틸(ISO)	Cat 0	0
2933.99.10	- - - 메벤다졸과 파르벤다졸	Cat 0	0
2933.99.90	- - - 기타	Cat 0	0
2934.10.00	- 불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Cat 0	0
2934.20.00	-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4.30.00	-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2934.91.00	- - 아미노렉스(INN) · 브로티졸람(INN) · 클로티아제팜(INN) · 클록사졸람(INN) · 텍스트로모라마이드(INN) · 할록사졸람(INN) · 케타졸람(INN) · 메소카브(INN) · 옥사졸람(INN) · 페몰린(INN) · 펜디메트라진(INN) · 펜메트라진(INN) 및 서펜타닐(INN), 이들의 염	Cat 0	0
2934.99.10	- - - 헥산과 이들의 염	Cat 0	0
2934.99.20	- - - 술톤, 술탕, 딜티아젬	Cat 0	1
2934.99.30	- - - 6-아미노페니실린산	Cat 0	1
2934.99.40	- - - 3-아지도-3-디옥시티미딘	Cat 0	1
2934.99.50	- - - 옥사디아존(순도가 전중량의 100분의 9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1
2934.99.90	- - - 기타	Cat 0	1/0
2935.10.00	-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Cat 0	0
2935.20.00	-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Cat 0	0
2935.30.00	- 엔-메틸-엔-(2-히드록시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Cat 0	0
2935.40.00	- 엔-(2-히드록시에틸)-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Cat 0	0
2935.50.00	-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Cat 0	0
2935.90.00	- 기타	Cat 0	0
2936.21.00	- - 비타민 A와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2.00	- - 비타민 B1과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3.00	- - 비타민 B2와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4.00	- -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비타민 B3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5.00	- - 비타민 B6와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6.00	- - 비타민 B12와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7.00	- - 비타민 C와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8.00	- - 비타민 E와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29.00	- -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Cat 0	0
2936.90.00	-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Cat 0	0
2937.11.00	- -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Cat 0	0
2937.12.00	- - 인슐린과 그 염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2937.19.00	- - 기타	Cat 0	0
2937.21.00	- - 코르티손 · 히드로코르티손 · 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 및 프레드니손(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Cat 0	0
2937.22.00	-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Cat 0	0
2937.23.00	- -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Cat 0	0
2937.29.00	- - 기타	Cat 0	0
2937.50.00	-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Cat 0	0
2937.90.10	- -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의 것	Cat 0	0
2937.90.20	- - 에피네프린, 아미노산 유도체	Cat 0	0
2937.90.90	- - 기타	Cat 0	0
2938.10.00	-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Cat 0	0
2938.90.00	- 기타	Cat 0	0
2939.11.10	- - - 양귀비 줄기 농축물과 이들의 염	Cat 0	0
2939.11.90	- - - 기타	Cat 0	0
2939.19.00	- - 기타	Cat 0	0
2939.20.10	- - 퀴닌과 그 염	Cat 0	0
2939.20.90	- - 기타	Cat 0	0
2939.30.00	- 카페인과 그 염	Cat 0	0
2939.41.00	- - 에페드린과 그 염	Cat 0	0
2939.42.00	-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Cat 0	0
2939.43.00	- - 캐친(INN)과 그 염	Cat 0	0
2939.44.00	- - 놀에페드린과 그 염	Cat 0	0
2939.49.10	- - - 페닐프로판올아민[Phenylpropanolamine(PPA)]	Cat 0	0
2939.49.90	- - - 기타	Cat 0	0
2939.51.00	- - 페네틸린(INN)과 그 염	Cat 0	0
2939.59.00	- - 기타	Cat 0	0
2939.61.00	- -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Cat 0	0
2939.62.00	- - 엘고타민(INN)과 그 염	Cat 0	0
2939.63.00	- - 리세르그산과 그 염	Cat 0	0
2939.69.00	- - 기타	Cat 0	0
2939.71.00	- - 코카인 · 엑고닌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이들의 염 · 에스테르 및 그 밖의 유도체	Cat 0	0
2939.79.00	- - 기타	Cat 0	0
2939.80.00	- 기타	Cat 0	1/0
2940.00.0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 · 유당 · 맥아당 · 포도당 및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 · 당아세탈과 당에스테르 및 그들의 염(제2937호 · 제2938호 또는 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Cat 0	0
2941.10.11	- - - 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2941.10.19	- - - 기타	Cat 0	0
2941.10.20	- - 암피실린과 그 염	Cat 0	0
2941.10.90	- - 기타	Cat 0	0
2941.20.00	-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Cat 0	0
2941.30.00	-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Cat 0	0
2941.40.00	-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Cat 0	0
2941.50.00	- 에리트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Cat 0	0
2941.90.00	- 기타	Cat 0	0
2942.00.00	그 밖의 유기화합물	Cat 0	0
3001.20.00	-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Cat 0	0
3001.90.00	- 기타	Cat 0	0
3002.11.00	- -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	Cat 0	0
3002.12.10	- - - 면역혈청, 혈장(단백)용액, 헤모글로빈 가루	Cat 0	1/0
3002.12.90	- - - 기타	Cat 0	0
3002.13.00	- -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Cat 0	0
3002.14.00	- -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Cat 0	1/0
3002.15.00	-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Cat 0	1/0
3002.19.00	- - 기타	Cat 0	0
3002.20.10	- - 파상풍독소이드	Cat 0	0
3002.20.20	- - 백일해(百日咳) · 홍역 · 뇌수막염이나 소아마비 백신	Cat 0	0
3002.20.90	- - 기타	Cat 0	0
3002.30.00	- 백신(동물용의약품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2.90.00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003.10.10	- - 아목시실린(INN)과 그 염을 함유하는 것	Cat 0	0
3003.10.20	- - 암피실린(INN)과 그 염을 함유하는 것	Cat 0	0
3003.10.90	- - 기타	Cat 0	0
3003.20.0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3.31.00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Cat 0	0
3003.39.00	- - 기타	Cat 0	0
3003.41.00	-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Cat 0	0
3003.42.00	-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Cat 0	0
3003.43.00	-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Cat 0	0
3003.49.00	- - 기타	Cat 0	0
3003.60.0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3.90.00	- 기타	Cat 0	0
3004.10.15	- - - 페니실린 G(페니실린 G 벤자틴은 제외한다), 페녹시메틸 페니실린 또는 이들의 염을 함유한 것	Cat 0	0
3004.10.16	- - - 암피실린, 아목시실린 또는 이들의 염을 함유한 것(복용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4.10.19	- - - 기타	Cat 0	0
3004.10.21	- - - 연고 형태의 것	Cat 0	0
3004.10.29	- - - 기타	Cat 0	0
3004.20.10	- - 겐타마이신, 링코마이신, 술파메톡사졸 또는 그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복용용이나 연고 형태로 한정한다)	Cat 0	0
3004.20.31	- - - 복용용의 것	Cat 0	0
3004.20.32	- - - 연고 형태의 것	Cat 0	0
3004.20.39	- - - 기타	Cat 0	0
3004.20.71	- - - 복용용의 것이나 연고 형태의 것	Cat 0	0
3004.20.79	- - - 기타	Cat 0	0
3004.20.91	- - - 복용용의 것이나 연고 형태의 것	Cat 0	0
3004.20.99	- - - 기타	Cat 0	0
3004.31.00	- - 인슐린을 함유한 것	Cat 0	0
3004.32.10	- - - 텍사메타손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Cat 0	0
3004.32.40	- - - 호박산히드로코르티손나트륨이나 플루오시놀론 아세토니드를 함유한 것	Cat 0	0
3004.32.90	- - - 기타	Cat 0	0
3004.39.00	- - 기타	Cat 0	0
3004.41.00	-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Cat 0	0
3004.42.00	-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Cat 0	0
3004.43.00	-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Cat 0	0
3004.49.10	- - - 모르핀이나 그 유도체를 함유한 것	Cat 0	0
3004.49.50	- - - 파파베린이나 베르베린을 함유한 것(복용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4.49.60	- - - 데오피린을 함유한 것(복용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4.49.70	- - - 황산 아트로핀을 함유한 것	Cat 0	0
3004.49.80	- - - 염산 퀸이나 염화 디히드로퀸을 함유한 것(주사용으로 한정한다), 황산 퀸이나 중황산염을 함유한 것(복용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4.49.90	- - - 기타	Cat 0	0
3004.50.10	- - 아동용으로 적합한 것(시럽 형태로 한정한다)	Cat 0	0
3004.50.21	- - - 복용용의 것	Cat 0	0
3004.50.29	- - - 기타	Cat 0	0
3004.50.91	- - - 비타민 A·B나 C를 함유한 것	Cat 0	0
3004.50.99	- - - 기타	Cat 0	0
3004.60.10	- - 알테미시닌을 함유한 것(그 밖의 다른 의약품 활성 성분과 혼합된 것에 한정한다)	Cat 0	0
3004.60.20	- - 알테수네이트나 클로로퀸을 함유한 것	Cat 0	0
3004.60.90	- - 기타	Cat 0	0
3004.90.10	- - 경피흡수시스템 패치(암이나 심장질환 치료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4.90.20	- - 내복용 멸균수(밀봉된 제약용에 한정한다)	Cat 0	0
3004.90.30	- - 소독제	Cat 0	0
3004.90.41	- - - 국소마취제를 함유한 것	Cat 0	0
3004.90.49	- - - 기타	Cat 0	0
3004.90.51	- - - 아세틸살리실산, 아세트아미노펜 또는 다이피론(INN)을 함유하는 것(복용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4.90.52	- - - 클로르페니라민말레산염을 함유한 것	Cat 0	0
3004.90.53	- - - 디클로페낙을 함유한 것(복용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4.90.54	- - - 피록시캄(INN)이나 이부프로펜을 함유한 것	Cat 0	0
3004.90.55	- - - 기타[도찰제(塗擦制)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004.90.59	- - - 기타	Cat 0	0
3004.90.62	- - - 프리마퀀을 함유한 것	Cat 0	0
3004.90.64	- - - 알테미시닌을 함유한 것(소호 제3004.60.10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3004.90.65	- - - - 한약(한약제)	Cat 0	0
3004.90.69	- - - - 기타	Cat 0	0
3004.90.71	- - - 피페라진이나 메벤다졸(INN)을 함유한 것	Cat 0	0
3004.90.72	- - - - 한약(한약제)	Cat 0	0
3004.90.79	- - - - 기타	Cat 0	0
3004.90.81	- - - 디페록사민을 함유한 것(주사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4.90.82	- - - 항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의약품	Cat 0	0
3004.90.89	- - - 기타	Cat 0	0
3004.90.91	- - - 염화나트륨이나 포도당을 함유하는 것(주입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4.90.92	- - - 소르비톨이나 살부타몰을 함유하는 것(주입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4.90.93	- - - 소르비톨이나 살부타몰을 함유하는 것(그 밖의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4.90.94	- - - 시메티딘(INN)이나 라니티딘(INN)을 함유한 것(주사용은 제외한다)	Cat 0	0
3004.90.95	- - - 페노바르비탈, 디아제팜이나 클로르프로마진을 함유한 것(주사용이나 주입용은 제외한다)	Cat 0	0
3004.90.96	- - - 점비액(點鼻液) 약품(나파졸린, 키실로메타졸린이나 옥시메타졸린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4.90.98	- - - - 한약(한약제)	Cat 0	0
3004.90.99	- - - - 기타	Cat 0	0
3005.10.10	- -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	Cat 0	0
3005.10.90	- - 기타	Cat 0	0
3005.90.10	- - 봉대	Cat 0	0
3005.90.20	- - 거즈	Cat 0	0
3005.90.90	- - 기타	Cat 0	0
3006.10.10A	- - - 에틸렌 중합체의 것, 폴리프로필렌 중합체의 것, 스틸렌 중합체의 것, 염화비닐 중합체의 것, 그 밖의 플라스틱제의 것(폴리우레탄, 재생 셀룰로오스, 셀룰러와 보강된 것은 제외한다)	Cat 0	0
3006.10.10B	- -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폴리아미드6으로 만든 것, 제6002호와 제6003호의 메리야스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소호 제6005.90호의 경(經)편직 직물류 [거룬(galloon) 편직기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Cat 0	0
3006.10.10C	- - - 그 밖의 아크릴중합체로 만든 것,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재생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경화섬유로 만든 것, 셀룰로오스 아세테이트와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아미노 수지로 만든 것(폴리아미드는 제외한다), 페놀릭 수지로 만든 것, 그 밖의 플라스틱제로 만든 것, 셀룰러 보강된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셀룰러 보강된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그 밖의 플라스틱제로 만든 것(셀룰러와 보강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6.10.10D	- - -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폴리아미드-6은 제외한다)	Cat 0	0
3006.10.10E	- - - 기타	Cat 0	0
3006.10.90	- - 기타	Cat 0	0
3006.20.00	- 혈액형 분류용 시약	Cat 0	0
3006.30.10	- - 황산바륨(복용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6.30.20	- - 미생물로 된 시약(동물용 생물학적 진단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006.30.30	- - 그 밖의 미생물 진단용 시약	Cat 0	0
3006.30.90	- - 기타	Cat 0	0
3006.40.10	- -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Cat 0	0
3006.40.20	- - 뼈 형성용 시멘트	Cat 0	0
3006.50.00	- 구급상자와 구급대	Cat 0	0
3006.60.00	- 제2937호의 호르몬, 그 밖의 제품 또는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Cat 0	0
3006.70.00	-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촉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Cat 0	0
3006.91.00	- -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Cat 0	0
3006.92.10	- - - 암,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이나 그 밖의 난치병 치료용 의약품의 것	Cat 15	10
3006.92.90	- - - 기타	Cat 15	20
3101.00.10	- 식물성 물질로만 만들어진 것	Cat 0	0
3101.00.92	- - 동물성 물질(구아노는 제외한다)로 화학적 처리를 한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101.00.99	- - 기타	Cat 0	0
3102.10.0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1
3102.21.00	- - 황산암모늄	Cat 0	0
3102.29.00	- - 기타	Cat 0	0
3102.30.00	-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3102.40.00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102.50.00	- 질산나트륨	Cat 0	0
3102.60.00	- 질산칼슘 및 질산암모늄의 검염과 혼합물	Cat 0	0
3102.80.00	- 요소 및 질산암모늄의 혼합물(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102.90.00	-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Cat 0	0
3103.11.10	- - - 사료용	Cat 0	0
3103.11.90	- - - 기타	Cat 0	0
3103.19.10	- - - 사료용	Cat 0	0
3103.19.90	- - - 기타	Cat 0	0
3103.90.10	- - 하소(煨燒)한 인산비료	Cat 0	0
3103.90.90	- - 기타	Cat 0	0
3104.20.00	- 염화칼륨	Cat 0	0
3104.30.00	- 황산칼륨	Cat 0	0
3104.90.00	- 기타	Cat 0	0
3105.10.10	- - 과인산석회와 하소(煨燒)한 인산비료	Cat 0	0
3105.10.20	- -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 및 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105.10.90	- - 기타	Cat 0	0
3105.20.00	- 질소·인 및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Cat 0	0
3105.30.00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	Cat 0	0
3105.40.00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인산일암모늄) 및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Cat 0	0
3105.51.00	- -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Cat 0	0
3105.59.00	- - 기타	Cat 0	0
3105.60.00	-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Cat 0	0
3105.90.00	- 기타	Cat 0	0
3201.10.00	- 퀘브라초 추출물(quebracho extract)	Cat 0	0
3201.20.00	-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Cat 0	0
3201.90.00	- 기타	Cat 0	0
3202.10.00	- 합성 유기유연제	Cat 0	0
3202.90.00	- 기타	Cat 0	0
3203.00.10	-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Cat 0	0
3203.00.90	- 기타	Cat 0	0
3204.11.10	- - - 정제하지 않은 것	Cat 0	0
3204.11.90	- - - 기타	Cat 0	0
3204.12.10	- - - 산성 염료	Cat 0	0
3204.12.90	- - - 기타	Cat 0	0
3204.13.00	- -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Cat 0	0
3204.14.00	- -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Cat 0	0
3204.15.00	- -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Cat 0	0
3204.16.00	- -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Cat 0	0
3204.17.10	- - - 합성 유기 안료(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204.17.90	- - - 기타	Cat 0	0
3204.19.00	- - 기타(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Cat 0	0
3204.20.00	-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	Cat 0	0
3204.90.00	- 기타	Cat 0	0
3205.00.00	레이크 안료,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206.11.10	- - - 안료	Cat 0	0
3206.11.90	- - - 기타	Cat 0	0
3206.19.10	- - - 안료	Cat 0	0
3206.19.90	- - - 기타	Cat 0	0
3206.20.10	- -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황연, 크롬 그린 및 몰리브덴산염 오렌지 또는 적색	Cat 0	0
3206.20.90	- - 기타	Cat 0	0
3206.41.10	- - - 조제품	Cat 0	0
3206.41.90	- - - 기타	Cat 0	0
3206.42.10	- - - 조제품	Cat 0	0
3206.42.90	-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ex1 3206.49.10	카드뮴화합물이나 욱시안산 철염(페로시아나이드 및 페리시아나이드)을 기본 재료로 한 무기안료 조제품	Cat 0	0
ex2 3206.49.10	기타	Cat 15	5
3206.49.90	- - - 기타	Cat 0	0
3206.50.10	- - 조제품	Cat 0	0
3206.50.90	- - 기타	Cat 0	0
3207.10.00	-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Cat 0	0
3207.20.10	- - 에나멜 유약	Cat 0	0
3207.20.90	- - 기타	Cat 0	0
3207.30.00	- 액상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Cat 0	0
3207.40.00	-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또는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208.10.11	- - - 치과용의 것	Cat 0	0
3208.10.19	- - - 기타	Cat 0	0
3208.10.20	- - 선체(船體)의 오염 및/또는 부식 방지용 페인트	Cat 0	0
3208.10.90	- - 기타	Cat 0	0
3208.20.40	- - 선체(船體)의 오염 및/또는 부식 방지용 페인트	Cat 0	0
3208.20.70	- -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치과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208.20.90	- - 기타	Cat 0	0
3208.90.11	- - - 치과용의 것	Cat 0	0
3208.90.19	- - - 기타	Cat 0	0
3208.90.21	- - - 치과용의 것	Cat 0	0
3208.90.29	- - - 기타	Cat 0	0
3208.90.30	- - 선체(船體)의 오염 및/또는 부식 방지용 페인트	Cat 0	0
3208.90.90	- - 기타	Cat 0	0
3209.10.10	- -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Cat 0	0
3209.10.40	- - 가죽 페인트	Cat 0	0
3209.10.50	- - 선체(船體)의 오염 및/또는 부식 방지용 페인트	Cat 0	0
3209.10.90	- - 기타	Cat 0	0
3209.90.00	- 기타	Cat 0	0
3210.00.10	- 바니시(vernish)[래커(lacquer)를 포함한다]	Cat 0	0
3210.00.20	- 디스탬퍼(distemper)	Cat 0	0
3210.00.30	- 가족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Cat 0	0
3210.00.91	- - 선체(船體)의 오염 및/또는 부식 방지용 페인트	Cat 0	0
3210.00.99	- - 기타	Cat 0	0
3211.00.00	조제 드라이어	Cat 0	0
3212.10.00	- 스탬프용 박(箔)	Cat 0	0
3212.90.11	- - - 알루미늄 페이스트	Cat 0	0
3212.90.13	- - - 기름에 분산시킨 연백(鉛白)	Cat 0	0
3212.90.14	- - - 기타(가죽 페인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212.90.19	- - - 기타	Cat 0	0
3212.90.21	- - -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Cat 0	0
3212.90.22	- - - 그 밖의 염료	Cat 0	0
3212.90.29	- - - 기타	Cat 0	0
3213.10.00	- 세트인 것	Cat 0	0
3213.90.00	- 기타	Cat 0	0
3214.10.00	- 유리 접합용 퍼티(putty) · 접목용 퍼티(putty) · 수지시멘트 · 코킹(caulking)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Cat 0	0
3214.90.00	- 기타	Cat 0	0
3215.11.10	- - - 자외선 경화형 잉크	Cat 0	0
3215.11.90A	- - - - 고체 잉크(소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또는 제8443.39호에 해당하는 장치에 삽입하기 위하여 제작된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215.11.90B	- - - - 기타	Cat 0	0
3215.19.00A	- - - 고체 잉크(소호 제8443.31호, 제8443.32호 또는 제8443.39호에 해당하는 장치에 삽입하기 위하여 제작된 형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215.19.00B	- - - 기타	Cat 0	0
3215.90.10	- - 카본 매스(mass)(카본지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215.90.60	- - 필기용 잉크 또는 제도용 잉크	Cat 0	0
3215.90.70	- - 제8472호의 등사기용으로 적합한 잉크	Cat 0	0
3215.90.90	- - 기타	Cat 0	0
3301.12.00	- - 오렌지유	Cat 0	0
3301.13.00	- - 레몬유	Cat 0	0
3301.19.0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301.24.00	- -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Cat 0	0
3301.25.00	- -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Cat 0	0
3301.29.10	- - - 레몬그라스, 시트로넬라, 육두구(肉荳), 계피, 생강, 소두구(小荳), 회향(茴香) 또는 팜로스(palmrose)의 것	Cat 0	0
3301.29.20	- - - 백단향(白檀香)의 것	Cat 0	0
3301.29.90	- - - 기타	Cat 0	0
3301.30.00	- 레지노이드(resinoid)	Cat 0	0
3301.90.10	- -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의약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3/0
3301.90.90	- - 기타	Cat 0	0
3302.10.10	- - 방향성(芳香性) 알코올 조제품(알코올 음료 제조용으로 액체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302.10.20	- - 방향성(芳香性) 알코올 조제품(알코올 음료 제조용으로 그 밖의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302.10.90	- - 기타	Cat 0	0
3302.90.00	- 기타	Cat 0	0
3303.00.00	향수와 화장수	Cat 0	0
3304.10.00	- 입술화장용 제품류	Cat 0	0
3304.20.00	- 눈화장용 제품류	Cat 0	0
3304.30.00	-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Cat 0	0
3304.91.00	- -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3304.99.20	- - - 여드름 억제용 조제품	Cat 0	0
3304.99.30	- - - 그 밖의 얼굴이나 피부용 크림과 로션	Cat 0	0
3304.99.90	- - - 기타	Cat 0	0
3305.10.10	- - 향진균 성분을 갖고 있는 것	Cat 3	5
3305.10.90	- - 기타	Cat 3	5
3305.20.00	-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Cat 0	0
3305.30.00	- 헤어 래커(hair lacquer)	Cat 0	0
3305.90.00	- 기타	Cat 3	10
3306.10.10	- - 예방적 치과치료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s)	Cat 0	0
3306.10.90	- - 기타	Cat 0	0
3306.20.00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Cat 0	0
3306.90.00	- 기타	Cat 0	0
3307.10.00	- 면도용 제품류	Cat 0	0
3307.20.00	-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Cat 0	0
3307.30.00	-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Cat 0	0
3307.41.10	- - - 향 가루(incense)(종교의식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307.41.90	- - - 기타	Cat 0	0
3307.49.10	- - - 절단용 가향 조제품(절단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3307.49.90	- - - 기타	Cat 0	0
3307.90.10	- - 동물용 화장품품	Cat 0	0
3307.90.30	- -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와 티슈	Cat 0	0
3307.90.40	- - 그 밖의 조제향료 또는 화장품(탈모제를 포함한다)	Cat 0	0
3307.90.50	- - 콘택트렌즈용이나 의안의 수용액	Cat 0	0
3307.90.90	- - 기타	Cat 0	0
3401.11.40	- - - 살균용 비누를 포함한 약용 비누	Cat 15	5
3401.11.50	- - - 목욕용 비누를 포함한 그 밖의 비누	Cat 15	5
3401.11.60	- - - 기타(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펠트(felt) 또는 부직포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3401.11.90	- - - 기타	Cat 15	5
3401.19.10	- - -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펠트(felt) 또는 부직포의 것	Cat 0	0
3401.19.90	- - - 기타	Cat 3	10
3401.20.20	- - 비누 칩(chips)	Cat 15	5
3401.20.91	- - - 재활용 종이의 부유 잉크 제거용의 것	Cat 0	3
3401.20.99	- - - 기타	Cat 3	5
3401.30.00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3402.11.10	- - - 황산화 지방성 알코올	Cat 0	0
3402.11.40	- - - 설펜화 알킬벤젠	Cat 15	5
3402.11.90	- - - 기타	Cat 15	5
3402.12.00	- - 양이온성	Cat 0	0
3402.13.10	- - - 하이드록시터미네이트(Hydroxyl-terminated) 폴리부타디엔	Cat 0	0
3402.13.90	-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402.19.10	- - - 소화용 조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at 0	0
3402.19.90	- - - 기타	Cat 0	0
3402.20.14	- - - 조제계면활성제	Cat 0	0
3402.20.15	- - -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Cat 0	0
3402.20.94	- - - 조제계면활성제	Cat 0	0
3402.20.95	- - -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Cat 0	0
3402.90.11	- - - 음이온성 습윤제	Cat 0	0
3402.90.12	- - - 음이온성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Cat 0	0
3402.90.13	- - - 그 밖의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Cat 0	0
3402.90.14	- - - 그 밖의 음이온성 조제계면활성제	Cat 0	0
3402.90.19	- - - 기타	Cat 0	0
3402.90.91	- - - 음이온성 습윤제	Cat 0	0
3402.90.92	- - - 음이온성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Cat 0	0
3402.90.93	- - - 그 밖의 조제세제나 조제 세척제(표백용·세척용이나 탈지용 조제품을 포함한다)	Cat 0	0
3402.90.94	- - - 그 밖의 음이온성 조제계면활성제	Cat 0	0
3402.90.99	- - - 기타	Cat 0	0
3403.11.11	- - - - 조제 윤활유	Cat 0	0
3403.11.19	- - - - 기타	Cat 0	0
3403.11.90	- - - 기타	Cat 0	0
3403.19.11	- - - - 항공기 엔진용 조제품	Cat 0	0
3403.19.12	- - - - 그 밖의 조제품(실리콘 오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403.19.19	- - - - 기타	Cat 0	0
3403.19.90	- - - 기타	Cat 0	0
3403.91.11	- - - - 조제품(실리콘 오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403.91.19	- - - - 기타	Cat 0	0
3403.91.90	- - - 기타	Cat 0	0
3403.99.11	- - - - 항공기 엔진용 조제품	Cat 0	0
3403.99.12	- - - - 그 밖의 조제품(실리콘 오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403.99.19	- - - - 기타	Cat 0	0
3403.99.90	- - - 기타	Cat 0	0
3404.20.00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Cat 0	0
3404.90.10	- - 화학적으로 변성한 갈탄왁스	Cat 0	0
3404.90.90	- - 기타	Cat 0	0
3405.10.00	- 신발용이나 가죽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Cat 0	0
3405.20.00	-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Cat 0	0
3405.30.00	-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Cat 0	0
3405.40.20	- -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Cat 0	0
3405.40.90	- - 기타	Cat 0	0
3405.90.10	- - 금속용 광택제	Cat 0	0
3405.90.90	- - 기타	Cat 0	0
3406.00.00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3407.00.10	-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으로 포장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3407.00.20	-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또는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407.00.30	-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Cat 0	0
3501.10.00	- 카세인(casein)	Cat 0	0
3501.90.10	- - 카세인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Cat 0	0
3501.90.20	- - 카세인 글루(casein glue)	Cat 0	0
3502.11.00	- - 건조한 것	Cat 0	0
3502.19.00	- - 기타	Cat 0	0
3502.20.00	- - 밀크알부민(물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Cat 0	0
3502.90.00	- 기타	Cat 0	0
3503.00.11	- - 어류 아교	Cat 0	0
3503.00.19	- - 기타	Cat 0	0
3503.00.30	- 아이징글라스(isinglass)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503.00.41	- - 가루 모양인 것[팽창 레벨이 블룸 스케일(Bloom scale) 기준으로 에이(A)250 또는 비(B)230이거나 그보다 높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503.00.49	- - 기타	Cat 0	0
3504.00.00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3505.10.10	- - 덱스트린, 가용성이나 볶은 전분	Cat 0	3/0
3505.10.90	- - 기타	Cat 0	3
3505.20.00	- 글루(glue)	Cat 5	7
3506.10.00	-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506.91.00A	- - - 광학용 투명 점착 필름 점착제 · 광학용 투명 경화성 액상 점착제(평판디스플레이 또는 터치 감지 스크린 패널의 제조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1
3506.91.00B	- - - 기타	Cat 15	5
3506.99.00	- - 기타	Cat 0	0
3507.10.00	-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Cat 0	0
3507.90.00	- 기타	Cat 0	0
3601.00.00	화약	Cat 0	0
3602.00.00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Cat 0	0
3603.00.10	- 세미 퓨즈, 소자 캡, 시그널 튜브	Cat 0	0
3603.00.20	- 도화선, 도폭선	Cat 0	0
3603.00.90	- 기타	Cat 0	0
3604.10.00	- 불꽃제품	Cat 0	0
3604.90.20	- - 발화성 모형 군수품과 장난감용 뇌관	Cat 0	0
3604.90.30A	- - - 신호용 조명탄	Cat 0	0
3604.90.30B	- - - 신호용 로켓	Cat 0	0
3604.90.90	- - 기타	Cat 0	0
3605.00.00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Cat 0	0
3606.10.00	-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또는 액화가스연료	Cat 0	0
3606.90.10	- - 고체나 반고체 연료, 고체 알코올과 이와 유사한 조제 연료	Cat 0	0
3606.90.20	- - 라이터 돌	Cat 0	0
3606.90.30	- - 그 밖의 페로세륨 및 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Cat 0	0
3606.90.40	- - - 주지 도지(torch), 불쏘시개(firelighter)와 이와 유사한 불표	Cat 0	0
3606.90.90	- - 기타	Cat 0	0
3701.10.00	- 엑스선용	Cat 0	0
3701.20.00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Cat 0	0
3701.30.00	-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701.91.10	- - - 인쇄 공업용에 적합한 것	Cat 0	0
3701.91.90	- - - 기타	Cat 0	0
3701.99.10	- - - 인쇄 공업용에 적합한 것	Cat 0	0
3701.99.90	- - - 기타	Cat 0	0
3702.10.00	- 엑스선용	Cat 0	0
3702.31.00	-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Cat 0	0
3702.32.00	- - 기타[할로겐화는 에멀션(emulsion)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702.39.00	- - 기타	Cat 0	0
3702.41.00	-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Cat 0	0
3702.42.10	- - -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이나 인쇄공업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3/0
3702.42.90	- - - 기타	Cat 0	3/0
3702.43.00	-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 이하인 것	Cat 0	0
3702.44.00	- - 폭이 10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61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3702.52.2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Cat 0	0
3702.52.90	- - - 기타	Cat 0	0
3702.53.00	-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하고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702.54.40	- - -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이나 인쇄공업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3702.54.90	- - - 기타	Cat 0	0
3702.55.2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702.55.50	- - -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또는 수의과용이나 인쇄공업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3702.55.90	- - - 기타	Cat 0	0
3702.56.2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Cat 0	0
3702.56.90	- - - 기타	Cat 0	0
3702.96.1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Cat 0	0
3702.96.90	- - - 기타	Cat 0	0
3702.97.1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Cat 0	0
3702.97.90	- - - 기타	Cat 0	0
3702.98.10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Cat 0	0
3702.98.30	- - - 기타(길이가 120미터 이상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702.98.90	- - - 기타	Cat 0	0
3703.10.10	- - 폭이 1,00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3703.10.90	- - 기타	Cat 0	0
3703.20.00	-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Cat 0	0
3703.90.00	- 기타	Cat 0	0
3704.00.10	- 엑스선 플레이트나 필름	Cat 0	0
3704.00.90	- 기타	Cat 0	0
3705.00.10	- 엑스선	Cat 0	0
3705.00.20	- 마이크로필름	Cat 0	0
3705.00.90A	- - 오프셋 복사용	Cat 0	0
3705.00.90B	- - 기타	Cat 0	0
3706.10.10	- - 뉴스·여행·기술 및 과학 영화용 필름	Cat 3	5/0
3706.10.30	- - 그 밖의 다큐멘터리 영화용 필름	Cat 3	5/0
3706.10.40	- - 기타(사운드 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706.10.90	- - 기타	Cat 3	5/0
3706.90.10	- - 뉴스·여행·기술 및 과학 영화용 필름	Cat 0	0
3706.90.30	- - 그 밖의 다큐멘터리 영화용 필름	Cat 0	0
3706.90.40	- - 기타(사운드 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706.90.90	- - 기타	Cat 0	0
3707.10.00	- 감광유제	Cat 0	0
3707.90.10	- - 섬광재료	Cat 0	0
3707.90.90	- - 기타	Cat 0	0
3801.10.00	- 인조흑연	Cat 0	0
3801.20.00	-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Cat 0	0
3801.30.00	-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Cat 0	0
3801.90.00	- 기타	Cat 0	0
3802.10.00	- 활성탄	Cat 0	0
3802.90.10	- - 활성 보크사이트	Cat 0	0
3802.90.20	- - 활성토	Cat 0	0
3802.90.90	- - 기타	Cat 0	0
3803.00.00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3804.00.10	- 농축 아황산 폐액	Cat 0	0
3804.00.20	- 내화 벽돌 제조용의 칼슘 리그닌 술폰산(Ca2LS) 바인더	Cat 0	0
3804.00.90	- 기타	Cat 0	0
3805.10.00	- 검테레빈유·우드테레빈유 또는 황산테레빈유	Cat 0	0
3805.90.00	- 기타	Cat 0	0
3806.10.00	- 로진(rosin)과 수지산	Cat 0	0
3806.20.00	- 로진염, 수지산염 또는 로진(rosin)이나 수지산의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Cat 0	0
3806.30.10	- - 블록 모양	Cat 0	0
3806.30.90	- - 기타	Cat 0	0
3806.90.10	- - 런검(run gum)(블록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06.90.90	- - 기타	Cat 0	0
3807.00.00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08.52.10	- - - 목재방부제(살충제나 살균제를 함유한 표면 코팅제는 제외한다)	Cat 0	0
3808.52.90A	- - - - 살충제(코일 모양의 모기향이나 모기약 파우더 형태의 것,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살균제(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Cat 0	0
3808.52.90B	- - - - 기타	Cat 0	0
3808.59.10A	- - - - 코일 모양의 모기향이나 모기약 파우더 형태의 것,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Cat 0	0
3808.59.10B	- -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808.59.21	-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Cat 0	0
3808.59.29	- - - - 기타	Cat 0	0
3808.59.31	-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Cat 0	0
3808.59.39	- - - - 기타	Cat 0	0
3808.59.40	- - - 발아억제제	Cat 0	0
3808.59.50	- - - 식물성장조절제	Cat 0	0
3808.59.60	- - - 소독제	Cat 0	0
3808.59.91	- - - - 목재방부재(살충제나 살균제를 함유한 표면 코팅제는 제외한다)	Cat 0	0
3808.59.99	- - - - 기타	Cat 0	0
3808.61.10	- - - 코일 모양의 모기 방충제	Cat 0	0
3808.61.20	- - - 매트 모양의 모기 방충제	Cat 0	0
3808.61.30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Cat 0	0
3808.61.40	- - - 그 밖의 액체 상태의 것	Cat 0	0
3808.61.50	- - - 그 밖의 탈취 기능이 있는 것	Cat 0	0
3808.61.90A	- - - - 모기약 파우더 형태의 것	Cat 0	0
3808.61.90B	- - - - 기타	Cat 0	0
3808.62.10	- - - 코일 모양의 모기향 성형용 가루	Cat 0	0
3808.62.20	- - - 코일 모양의 모기 방충제	Cat 0	0
3808.62.30	- - - 매트 모양의 모기 방충제	Cat 0	0
3808.62.40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Cat 0	0
3808.62.50	- - - 그 밖의 액체 상태의 것	Cat 0	0
3808.62.90	- - - 기타	Cat 0	0
3808.69.10	- - - 코일 모양의 모기향 성형용 가루	Cat 0	0
3808.69.90	- - - 기타	Cat 0	0
3808.91.10	- - - 2-(메틸 프로필-페놀 카르복산메틸)을 함유하는 중간 조제품	Cat 0	0
3808.91.20	- - - 그 밖의 코일 모양의 모기향 성형용 가루	Cat 0	0
3808.91.30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Cat 0	0
3808.91.40	- - - 코일 모양의 모기 방충제	Cat 0	0
3808.91.50	- - - 매트 모양의 모기 방충제	Cat 0	0
3808.91.90	- - - 기타	Cat 0	0
3808.92.11	- - - - 바리다마이신(validamycin) 함유량이 순중량의 100분의 3 이하인 것	Cat 0	0
3808.92.19	- - - - 기타	Cat 0	0
3808.92.90	- - - 기타	Cat 0	0
3808.93.11	- - - - 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	Cat 0	0
3808.93.19	- - - - 기타	Cat 0	0
3808.93.20	- - - 발아억제제	Cat 0	0
3808.93.30	- - - 식물성장조절제	Cat 0	0
3808.94.10	- - - 콜타르산과 알칼리의 혼합물을 함유한 것	Cat 0	0
3808.94.20	- - - 기타(에어로졸 용기에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08.94.90	- - - 기타	Cat 0	0
3808.99.10	- - - 목재 방부제(살충제나 살균제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08.99.90	- - - 기타	Cat 0	0
3809.10.00	-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3809.91.10	- - - 유연제	Cat 0	0
3809.91.90	- - - 기타	Cat 0	0
3809.92.00	- -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Cat 0	0
3809.93.00	- -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Cat 0	3
3810.10.00	-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땜용 · 땀질용 또는 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Cat 0	0
3810.90.00	- 기타	Cat 0	0
3811.11.00	- -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3811.19.00	- - 기타	Cat 0	0
3811.21.10	- - - 소매용	Cat 0	3
3811.21.90	- - - 기타	Cat 0	3
3811.29.00	- - 기타	Cat 0	0
3811.90.10	- - 녹 방지제(Rust preventatives)나 부식 억제제(corrosion inhibitors)	Cat 0	0
3811.90.90	- - 기타	Cat 0	0
3812.10.00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Cat 0	0
3812.20.00	- 고무용 또는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Cat 0	1
3812.31.00	- - 2,2,4-트리메틸-1,2-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812.39.00	- - 기타	Cat 0	0
3813.00.00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	Cat 0	0
3814.00.00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 제거제 또는 바니시(vanish) 제거제	Cat 0	0
3815.11.00	- -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Cat 0	0
3815.12.00	- -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Cat 0	0
3815.19.00	- - 기타	Cat 0	0
3815.90.00	- 기타	Cat 0	0
3816.00.10	- 내화시멘트	Cat 0	0
3816.00.90	- 기타	Cat 0	0
3817.00.00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제2707호 또는 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Cat 0	0
3818.00.00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Cat 0	0
3819.00.00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0.00.0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Cat 0	0
3821.00.10	- 미생물 성장용 조제배양제	Cat 0	0
3821.00.90	- 기타	Cat 0	0
3822.00.10	-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으로 도포되거나 침투된 플라스틱으로 만든 판·시트(sheet)·필름·박(箔)과 스트립(strip)	Cat 0	0
3822.00.20	- 진단용이나 실험실용 시약으로 도포되거나 침투된 판지·셀룰로오스웨딩과 셀룰로오스 섬유 의 웹	Cat 0	0
3822.00.30	- 스트립(strip)과 테이프(tapes)된 열균 지시약	Cat 0	0
3822.00.90	- 기타	Cat 0	0
3823.11.00	- - 스테아르산	Cat 0	1
3823.12.00	- - 올레인산	Cat 0	0
3823.13.00	- - 톨유(tall oil) 지방산	Cat 0	0
3823.19.10	- - -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Cat 3	5
3823.19.20	- - - 팜(Palm) 지방산 디스틸레이트	Cat 0	0
3823.19.30	- - - 팜핵(palm kernel) 지방산 디스틸레이트	Cat 0	0
3823.19.90	- - - 기타	Cat 0	0
3823.70.10	- - 왁스 형태의 것	Cat 15	5
3823.70.90	- - 기타	Cat 15	5
3824.10.00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4.30.00	-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4.40.00	- 시멘트용·모르타르용 또는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Cat 0	0
3824.50.00	-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Cat 0	0
3824.60.00	- 소르비톨(sorbitol)(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Cat 0	0
3824.71.10	- - - 변압기와 차단기 오일(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4.71.90	- - - 기타	Cat 0	0
3824.72.00	-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또는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메탄을 함유하는 것	Cat 0	0
3824.73.00	- -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Cat 0	0
3824.74.10	- - - 변압기와 차단기 오일(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4.74.90	- - - 기타	Cat 0	0
3824.75.00	- -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Cat 0	0
3824.76.00	- -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Cat 0	0
3824.77.00	- - 브로모메탄(브롬화메틸) 또는 브로모클로로메탄을 함유하는 것	Cat 0	0
3824.78.00	- - 과불화탄소(PFCs) 또는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Cat 0	0
3824.79.00	- - 기타	Cat 0	0
3824.81.00	- -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Cat 0	0
3824.82.00	-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Cat 0	0
3824.83.00	-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Cat 0	0
3824.84.00	- - 앰드린(ISO), 캄페클로(ISO)(톡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Cat 0	0
3824.85.00	-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hex산[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824.86.00	- -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Cat 0	0
3824.87.00	- -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폰닐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Cat 0	0
3824.88.00	- -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Cat 0	0
3824.91.00	- - (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와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1,3,2-디옥사포스피난-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Cat 0	0
3824.99.10	- - - 소매용으로 포장한 잉크제거제 · 등사판화지 수정제 · 그 밖의 수정액과 수정테이프(제9612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3824.99.30	- - - 젤라틴을 기본 재료로 한 복사용 페이스트(pastes)[벌크로 되어있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예: 종이나 방직용 섬유로 뒷면을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3824.99.40	- - - 혼합무기용제	Cat 0	0
3824.99.50	- - - 아세톤 오일	Cat 0	0
3824.99.60	- - - 글루탐산모노나트륨(MSG)을 함유한 화학조제품	Cat 0	0
3824.99.70	- - - 그 밖의 화학 조제품(식료품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824.99.91	- - - - 나프텐산, 이들의 수불용성염과 이들의 에스테르	Cat 0	0
3824.99.99	- - - - 기타	Cat 0	0
3825.10.00	- 생활폐기물	Cat 15	30
3825.20.00	- 하수 찌꺼기	Cat 15	30
3825.30.10	- - 주사기 · 바늘 · 케눌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Cat 15	10
3825.30.90	- - 기타	Cat 15	30
3825.41.00	- -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Cat 15	30
3825.49.00	- - 기타	Cat 15	30
3825.50.00	-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및 부동액 폐기물	Cat 15	30
3825.61.00	- -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Cat 15	30
3825.69.00	- - 기타	Cat 15	30
3825.90.00	- 기타	Cat 15	20
3826.00.10	- - 코코넛 메틸에스테르(CME)	Cat 0	0
3826.00.21	- - - 알킬에스테르(ester alkyl)의 함유량이 96.5퍼센트 이상 98퍼센트 이하인 것	Cat 0	0
3826.00.22	- - - 알킬에스테르(ester alkyl)의 함유량이 98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3826.00.29	- - - 기타	Cat 0	0
3826.00.30	- - 기타	Cat 0	0
3826.00.90	- 기타	Cat 0	0
3901.10.12	- - -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EX	10
3901.10.19	- - - 기타	EX	10
3901.10.92	- - -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EX	10
3901.10.99	- - - 기타	EX	10
3901.20.0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EX	10
3901.30.0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Cat 0	3
3901.40.00	-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Cat 0	3
3901.90.40	- - 분산액인 것	Cat 0	3
3901.90.90	- - 기타	Cat 0	3
3902.10.30	- - 분산액인 것	EX	10
3902.10.40	- - 알갱이 · 펠릿(pellet) · 비드(bead) · 플레이크(flake) · 칩과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	EX	10
3902.10.90	- - 기타	EX	10
3902.20.00	- 폴리이소부틸렌	Cat 0	0
3902.30.30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Cat 0	0
3902.30.90	- - 기타	Cat 0	0
3902.90.10	- - 프린트 잉크 배합용으로 적합한 염소화폴리프로필렌	EX	3
3902.90.90	- - 기타	Cat 0	0
3903.11.10	- - - 알갱이 모양인 것	EX	10
ex1 3903.11.90	가루 모양	Cat 0	0
ex2 3903.11.90	기타	EX	10
3903.19.10	- - - 분산액인 것	EX	10
3903.19.20	- - - 알갱이 · 펠릿(pellet) · 비드(bead) · 플레이크(flake) · 칩과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	EX	10
3903.19.90	- - - 기타	EX	10
3903.20.40	-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Cat 0	0
3903.20.50	- - 비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Cat 0	0
3903.20.9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903.30.40	-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Cat 0	0
3903.30.50	- - 비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Cat 0	0
3903.30.60	- - 알갱이 모양인 것	Cat 0	0
3903.30.90	- - 기타	Cat 0	0
3903.90.30	- - 분산액인 것	Cat 0	3/0
3903.90.91	- - - 내충격성 폴리스틸렌(섭씨 23도에서 노치 아이조드 충격(notched izod impact)값이 80 J/m 미만인 것으로 한정함)	Cat 0	10
3903.90.99	- - - 기타	Cat 0	10
3904.10.10	- - 단일폴리머(서스펜션형으로 한정한다)	EX	10
3904.10.91	- - - 알갱이 모양인 것	EX	10
3904.10.92	- - - 가루 모양인 것	EX	10
3904.10.99	- - - 기타	EX	10
3904.21.10	- - - 알갱이 모양인 것	Cat 15	5
3904.21.20	- - - 가루 모양인 것	Cat 15	5
3904.21.90	- - - 기타	Cat 15	5
3904.22.10	- - - 분산액인 것	Cat 0	0
3904.22.20	- - - 알갱이 모양인 것	Cat 0	0
3904.22.30	- - - 가루 모양인 것	Cat 0	0
3904.22.90	- - - 기타	Cat 0	0
3904.30.10	- - 알갱이 모양인 것	Cat 0	3
3904.30.20	- - 가루 모양인 것	Cat 0	3
3904.30.90	- - 기타	Cat 0	3
3904.40.10	- - 알갱이 모양인 것	Cat 0	0
3904.40.20	- - 가루 모양인 것	Cat 0	0
3904.40.90	- - 기타	Cat 0	0
3904.50.40	- - 분산액인 것	Cat 0	0
3904.50.50	- - 알갱이 모양인 것	Cat 0	0
3904.50.60	- - 가루 모양인 것	Cat 0	0
3904.50.90	- - 기타	Cat 0	0
3904.61.10	- - - 알갱이 모양인 것	Cat 0	0
3904.61.20	- - - 가루 모양인 것	Cat 0	0
3904.61.90	- - - 기타	Cat 0	0
3904.69.30	- - - 분산액인 것	Cat 0	0
3904.69.40	- - - 알갱이 모양인 것	Cat 0	0
3904.69.50	- - - 가루 모양인 것	Cat 0	0
3904.69.90	- - - 기타	Cat 0	0
3904.90.30	- - 분산액인 것	Cat 0	0
3904.90.40	- - 알갱이 모양인 것	Cat 0	0
3904.90.50	- - 가루 모양인 것	Cat 0	0
3904.90.90	- - 기타	Cat 0	0
3905.12.00	-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Cat 0	0
3905.19.10	-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Cat 0	0
3905.19.90	- - - 기타	Cat 0	0
3905.21.00	-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Cat 0	0
3905.29.00	- - 기타	Cat 0	0
3905.30.10	- - 분산액인 것	Cat 0	1
3905.30.90	- - 기타	Cat 0	3
3905.91.10	- - - 분산액인 것	Cat 0	0
3905.91.90	- - - 기타	Cat 0	0
3905.99.10	- - - 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Cat 0	0
3905.99.20	- - - 비수성물질에 분산된 것	Cat 0	0
3905.99.90	- - - 기타	Cat 0	0
3906.10.10	- - 분산액인 것	Cat 0	3
3906.10.90	- - 기타	Cat 0	3
3906.90.20	- - 분산액인 것	Cat 15	5
3906.90.92	- - - 폴리아크릴산나트륨	Cat 15	3
3906.90.99	- - - 기타	Cat 15	5
3907.10.00	- 폴리아세탈수지	Cat 0	0
3907.20.10	- - 폴리 테트라 메틸렌 에테르 글리콜	Cat 0	0
3907.20.90	- - 기타	Cat 0	0
3907.30.20	- - 코팅에 사용되는 것(가루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907.30.30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Cat 0	0
3907.30.90	- - 기타	Cat 0	0
3907.40.00	- 폴리카보네이트	Cat 0	3
3907.50.10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907.50.90	- - 기타	Cat 0	0
3907.61.00	- - 점도번호가 그램당 78밀리리터 이상인 것	Cat 0	0
3907.69.10	- - - 알갱이 모양인 것	Cat 0	0
3907.69.90	- - - 기타	Cat 0	0
3907.70.00	- 폴리(락트산)	Cat 0	0
3907.91.20	- - - 알갱이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것	Cat 0	0
3907.91.30	- - - 액체나 페이스트(paste) 모양인 것	Cat 0	0
3907.91.90	- - - 기타	Cat 0	0
3907.99.40	- - - 코팅에 사용되는 것(가루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907.99.90A	- - - - 열가소성의 액정 방향족 폴리에스테르 공중합체	Cat 0	0
3907.99.90B	- - - - 기타	Cat 0	0
3908.10.10	- - 폴리아미드 -6	Cat 0	0
3908.10.90	- - 기타	Cat 0	3
3908.90.00	- 기타	Cat 3	5
3909.10.10	- - 몰딩 화합물	Cat 0	0
3909.10.90	- - 기타	Cat 0	0
3909.20.10	- - 몰딩 화합물	Cat 0	0
3909.20.90	- - 기타	Cat 0	0
3909.31.00A	- - - 몰딩 화합물	Cat 0	0
3909.31.00B	- - - 기타	Cat 0	0
3909.39.10	- - - 몰딩 화합물	Cat 0	0
3909.39.91	- - - - 글리옥살 모노우레인 수지	Cat 0	0
3909.39.99	- - - - 기타	Cat 0	0
3909.40.10	- - 몰딩 화합물(페놀포름알데히드는 제외한다)	Cat 0	0
3909.40.90	- - 기타	Cat 15	5
3909.50.00	- 폴리우레탄	Cat 0	0
3910.00.20	- 분산액과 용액으로 된 것	Cat 0	0
3910.00.90	- 기타	Cat 0	0
3911.10.00	- 석유수지 · 쿠마론 · 인덴 또는 쿠마론-인덴수지 및 폴리테르펜	Cat 0	0
3911.90.00	- 기타	Cat 0	0
3912.11.00	- - 가소화하지 않은 것	Cat 0	0
3912.12.00	- - 가소화한 것	Cat 0	0
3912.20.11	- - - 물을 기본 재료로 한 반가공의 니트로셀룰로오스	Cat 0	0
3912.20.19	- - - 기타	Cat 0	0
3912.20.20	- - 가소화한 것	Cat 0	0
3912.31.00	-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Cat 0	0
3912.39.00	- - 기타	Cat 0	0
3912.90.20	- - 알갱이 모양인 것	Cat 0	0
3912.90.90	- - 기타	Cat 0	0
3913.10.00	- 알긴산, 그 염 및 에스테르	Cat 0	0
3913.90.10	- - 경화단백질	Cat 0	0
3913.90.20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	Cat 0	0
3913.90.30	- - 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중합체	Cat 0	0
3913.90.90	- - 기타	Cat 0	0
3914.00.00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Cat 0	0
3915.10.10	- - 비경질 셀룰러 물품으로 만든 것	Cat 0	0
3915.10.90	- - 기타	Cat 0	0
3915.20.10	- - 비경질 셀룰러 물품으로 만든 것	Cat 0	0
3915.20.90	- - 기타	Cat 0	0
3915.30.10	- - 비경질 셀룰러 물품으로 만든 것	Cat 0	0
3915.30.90	- - 기타	Cat 0	0
3915.90.0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3916.10.10	- - 모노필라멘트	Cat 15	5
3916.10.20	- - 막대(rod · stick)와 형재	Cat 15	5
3916.20.10	- - 모노필라멘트	Cat 15	5
3916.20.20	- - 막대(rod · stick)와 형재	Cat 15	5
3916.90.41	- - - 모노필라멘트	Cat 15	12
3916.90.42	- - - 막대(rod · stick)와 형재	Cat 15	12
3916.90.50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로 만든 것	Cat 15	12
3916.90.60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Cat 15	12
3916.90.70	- - 그 밖의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초산셀룰로오스와 그 밖의 셀룰로오스 에스테르, 셀룰로오스 에테르와 셀룰로오스의 그 밖의 화학적 유도체의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2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916.90.80	- -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로 만든 것	Cat 15	12
3916.90.91	- - - 모노필라멘트	Cat 15	12
3916.90.92	- - - 막대(rod・stick)와 형재	Cat 15	12
3917.10.10	-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Cat 0	0
3917.10.90	- - 기타	Cat 0	0
3917.21.00	-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22.00	-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23.00	-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29.11	- - - - 그 밖의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29.12	- - - -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그 밖의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29.19	- - - - 기타	Cat 15	5
3917.29.21	- - - - 그 밖의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29.22	- - - - 페놀수지로 만든 것	Cat 15	5
3917.29.23	- - - -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29.24	- - - -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그 밖의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Cat 15	5
3917.29.25	- - - - 그 밖의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29.29	- - - - 기타	Cat 15	5
3917.31.11	- - - -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31.12	- - - -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페놀수지로 만든 것,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31.19	- - - - 기타	Cat 15	5
3917.31.21	- - - -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31.23	- - - -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페놀수지로 만든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31.24	- -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Cat 15	5
3917.31.25	- - - - 그 밖의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로 만든 것,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그 밖의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3917.31.29	- - - - 기타	Cat 15	5
3917.32.10	- - - 소시지나 햄 케이싱	Cat 0	0
3917.32.20	- - - 가스 스토브용 열가소성 호스	Cat 15	5
3917.32.91	- - - - -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페놀수지나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32.92	- - - - - 기타	Cat 15	5
3917.32.93	- - - - -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32.94	- - - - - 아미노수지나 페놀수지로 만든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32.95	- - - - - 그 밖의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로 만든 것,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그 밖의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3917.32.99	- - - - - 기타	Cat 15	5
3917.33.10	- - - 그 밖의 것(단순가공이상의 것)	Cat 0	0
3917.33.91	- - - - 그 밖의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33.92	- - - -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33.93	- - - -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의 그 밖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917.33.94	- -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Cat 0	0
3917.33.95	- - -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Cat 0	0
3917.33.96	- -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Cat 0	0
3917.33.99	- - - - 기타	Cat 0	0
3917.39.11	- - - -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Cat 15	5
3917.39.12	- - - - 페놀수지나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39.13	- - - -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의 그 밖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3917.39.19	- - - - 기타	Cat 15	5
3917.39.91	- - - -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Cat 15	5
3917.39.92	- - - - 페놀수지나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39.93	- - - -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7.39.94	- - - -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셀룰로오스의 그 밖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3917.39.99	- - - - 기타	Cat 1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917.40.00	- 연결구류	Cat 15	5
3918.10.11	- - - 타일	Cat 15	12
3918.10.19	- - - 기타	Cat 15	12
3918.10.90	- - 기타	Cat 15	12
3918.90.11	- - - 타일(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2
3918.90.13	- - - 기타(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2
3918.90.14	-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Cat 15	12
3918.90.15	- - - 그 밖의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로 만든 것,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나 그 밖의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2
3918.90.16	-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Cat 15	12
3918.90.19	- - - 기타	Cat 15	12
3918.90.91	- - -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	Cat 15	12
3918.90.92	-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Cat 15	12
3918.90.93	- - - 그 밖의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로 만든 것,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나 그 밖의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2
3918.90.94	-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Cat 15	12
3918.90.99	- - - 기타	Cat 15	12
3919.10.10	-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9.10.20	- - 폴리에틸렌으로 만든 것	Cat 15	5
3919.10.91	- -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이나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Cat 15	5
3919.10.92	- - -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로 만든 것,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그 밖의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3919.10.99	- - - 기타	Cat 15	5
3919.90.10	-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Cat 15	15
3919.90.20	-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Cat 15	15
3919.90.91	- - -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Cat 15	15
3919.90.92	- - - 부가중합체로 만든 것, 응축이나 재배열된 중합체로 만든 것, 질산셀룰로오스, 초산셀룰로오스와 그 밖의 셀룰로오스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가소화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5
3919.90.99	- - - 기타	Cat 15	15
3920.10.11	- - - 경질의 것	Cat 15	12
ex1 3920.10.19	전화선 또는 전기선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Cat 0	0
ex2 3920.10.19	기타	Cat 15	12
3920.10.90	- - 기타	Cat 15	12
3920.20.10	- - 이축연신 폴리프로필렌(BOPP) 필름	Cat 0	0
3920.20.91	- - - 판과 시트(sheet)	Cat 0	0
3920.20.99	- - - 기타	Cat 0	0
3920.30.20	- - 냉장고 제조용의 아크릴로니트릴 부타디엔 스티렌(ABS) 판	Cat 15	15
3920.30.91	- - - 판과 시트(sheet)(경질의 것)	Cat 15	15
3920.30.92	- - - 기타[판과 시트(sheet)]	Cat 15	15
3920.30.99	- - - 기타	Cat 15	15
ex1 3920.43.10	전화선 또는 전기선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Cat 0	0
ex2 3920.43.10	기타	Cat 15	12
3920.43.90	- - - 기타	Cat 15	12
ex1 3920.49.00	전화선 또는 전기선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Cat 0	0
ex2 3920.49.00	기타	Cat 15	12
3920.51.11	- - - - 경질의 것	Cat 15	5
3920.51.19	- - - - 기타	Cat 15	5
3920.51.90	- - - 기타	Cat 15	5
3920.59.11	- - - - 경질의 것	Cat 0	5
3920.59.19	- - - - 기타	Cat 0	5
3920.59.90	- - - 기타	Cat 0	5
3920.61.10	- - - 판과 시트(sheet)	Cat 0	0
3920.61.90	- - - 기타	Cat 0	0
3920.62.10	- - - 판과 시트(sheet)	Cat 0	5
3920.62.90	- - - 기타	Cat 0	5
3920.63.10	- - - 판과 시트(sheet)	Cat 15	5
3920.63.90	- - - 기타	Cat 15	5
3920.69.10	- - - 판과 시트(sheet)	Cat 15	5
3920.69.90	- - - 기타	Cat 15	5
3920.71.10	- - - 셀로판 필름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920.71.91	- - - - 인쇄된 시트(sheet)	Cat 0	0
3920.71.99	- - - - 기타	Cat 0	0
3920.73.00	- -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Cat 15	5
3920.79.10	- - - 니트로셀룰로오스(숨화약)의 것	Cat 0	0
3920.79.20	- - - 벌커나이즈드 파이버의 것	Cat 0	0
3920.79.91	- - - - 판과 시트(sheet)	Cat 0	0
3920.79.99	- - - - 기타	Cat 0	0
3920.91.10	- - - 안전유리용 필름(두께가 0.38밀리미터 초과 0.76밀리미터 이하, 폭이 2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920.91.91	- - - - 판과 시트(sheet)	Cat 0	0
3920.91.99	- - - - 기타	Cat 0	0
3920.92.10	- - - 폴리아미드-6으로 만든 것	Cat 15	5
3920.92.91	- - - - 판과 시트(sheet)	Cat 0	0
3920.92.99	- - - - 기타	Cat 0	0
3920.93.10	- - - 판과 시트(sheet)로 만든 것	Cat 0	0
3920.93.90	- - - 기타	Cat 0	0
3920.94.10	- - - 페놀포름알데히드(베이클라이트) 시트(sheet)	Cat 0	0
3920.94.91	- - - - 판과 시트(sheet)	Cat 0	0
3920.94.99	- - - - 기타	Cat 0	0
3920.99.10	- - - 경화 단백질로 만든 것,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Cat 15	5
ex1 3920.99.21	그 밖의 불화탄소 시트(sheet)	Cat 0	0
ex2 3920.99.21	기타	Cat 15	5
3920.99.29	- - - - 기타	Cat 15	5
ex1 3920.99.31	그 밖의 불화탄소 시트(sheet)	Cat 0	0
ex2 3920.99.31	기타	Cat 15	5
3920.99.39	- - - - 기타	Cat 15	5
ex1 3920.99.90	그 밖의 불화탄소 시트(sheet)	Cat 0	0
ex2 3920.99.90	기타	Cat 15	5
3921.11.20	- - - 경질의 것	Cat 15	5
3921.11.91	- - - - 판과 시트(sheet)로 만든 것	Cat 15	5
3921.11.92	- - - - 필름으로 만든 것	Cat 15	5
3921.11.99	- - - - 기타	Cat 15	5
ex1 3921.12.00	전화선 또는 전기선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Cat 0	0
ex2 3921.12.00	기타	Cat 15	5
3921.13.10	- - - 경질의 것	Cat 15	5
3921.13.91	- - - - 판과 시트(sheet)로 만든 것	Cat 15	5
3921.13.92	- - - - 필름으로 만든 것	Cat 15	5
3921.13.99	- - - - 기타	Cat 15	5
3921.14.20	- - - 경질의 것	Cat 15	5
3921.14.91	- - - - 판과 시트(sheet)로 만든 것	Cat 15	5
3921.14.92	- - - - 필름으로 만든 것	Cat 15	5
3921.14.99	- - - - 기타	Cat 15	5
3921.19.20	- - - 경질의 것	Cat 15	5
ex1 3921.19.91	전화선 또는 전기선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Cat 0	0
ex2 3921.19.91	기타	Cat 15	5
3921.19.92	- - - - 필름으로 만든 것	Cat 15	5
ex1 3921.19.99	전화선 또는 전기선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Cat 0	0
ex2 3921.19.99	기타	Cat 15	5
ex1 3921.90.10	전화선 또는 전기선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Cat 0	0
ex2 3921.90.10	기타	Cat 15	12
ex1 3921.90.20	전화선 또는 전기선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Cat 0	0
ex2 3921.90.20	기타	Cat 15	12
ex1 3921.90.30	전화선 또는 전기선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Cat 0	0
ex2 3921.90.30	기타	Cat 15	12
ex1 3921.90.41	전화선 또는 전기선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Cat 0	0
ex2 3921.90.41	기타	Cat 15	12
3921.90.42	- - - 필름으로 만든 것	Cat 15	12
ex1 3921.90.43	전화선 또는 전기선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Cat 0	0
ex2 3921.90.43	기타	Cat 15	12
3921.90.49	- - - 기타	Cat 15	12
ex1 3921.90.50	전화선 또는 전기선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Cat 0	0
ex2 3921.90.50	기타	Cat 15	12
ex1 3921.90.60	전화선 또는 전기선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Cat 0	0
ex2 3921.90.60	기타	Cat 15	12
ex1 3921.90.90	전화선 또는 전기선 제조에 사용되는 테이프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ex2 3921.90.90	기타	Cat 15	12
3922.10.11	- - - 직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내부 모양의 욕조	Cat 0	0
3922.10.19	- - - 기타	Cat 0	0
3922.10.90	- - 기타	Cat 0	0
3922.20.00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SL	12
3922.90.11	- - - 수세식 양변기의 부분품	SL	12
3922.90.12	- - - 수세식 양변기(이들의 메커니즘이 갖춰진 것으로 한정한다)	SL	12
3922.90.19	- - - 기타	SL	12
3922.90.90	- - 기타	SL	12
3923.10.10	- - 필름·테이프와 광학 디스크의 케이스	Cat 15	5
3923.10.90A	- - - 물품운반이나 반도체 웨이퍼, 마스크, 레티클 포장용으로 특별히 고안된 것	Cat 15	5
3923.10.90B	- - - 기타	Cat 15	5
3923.21.11	- - - - 폭이 315밀리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410밀리미터 이상인 것(밀봉 뚜껑이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923.21.19	- - - - 기타	Cat 0	0
3923.21.91	- - - - 알루미늄 박(箔)으로 보강하지 않은 살균백[폭이 315밀리미터 이상, 길이가 41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밀봉 뚜껑이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레토르트 포장용은 제외한다)]	Cat 0	0
3923.21.99	- - - - 기타	Cat 0	0
3923.29.10	- - - 살균백[알루미늄 박(箔)으로 보강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두께가 315밀리미터 이상, 길이가 41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밀봉 뚜껑이 결합된 것으로 한정하며 레토르트 포장용은 제외한다]	Cat 0	0
3923.29.90	- - - 기타	Cat 0	0
3923.30.20	- - 다층 유리섬유로 보강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SL	15
3923.30.90	- - 기타	SL	15
ex1 3923.40.10	투자위원회의 사전승인하에 독점사용을 위해 방직공장이 직접 수입시	Cat 15	3
ex2 3923.40.10	기타	Cat 15	5
ex1 3923.40.90	투자위원회의 사전승인하에 독점사용을 위해 방직공장이 직접 수입시	Cat 15	3
ex2 3923.40.90	기타	Cat 15	5
3923.50.00	-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Cat 15	5
3923.90.10	- - 치약용 튜브	SL	15
3923.90.90	- - 기타	SL	12
3924.10.10	- - 멜라민으로 만든 것	SL	12
3924.10.90	- - 기타	SL	12
3924.90.10	- - 변기·소변기(휴대용)나 요강	SL	12
3924.90.20	- - 젓꼭지 형태의 것, 브레스트셸, 유두보호기, 손으로 젓짜는 깔때기	SL	12
3924.90.30	- - 아기용 보조제	SL	12
3924.90.90	- - 기타	SL	12
3925.10.00	-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3925.20.0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SL	12
3925.30.00	- 셔터·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이들의 부분품	SL	12
3925.90.00	- 기타	Cat 0	0
3926.10.00	-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Cat 15	5
3926.20.60	- - 화학물질·방사능이나 화재 보호용 의류	Cat 0	0
3926.20.90	- - 기타	SL	12
3926.30.00	- 가구·차체(coachwork) 또는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SL	12
3926.40.00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Cat 0	0
3926.90.10	- - 어망용 찌(Floats)	Cat 0	0
3926.90.20	- - 팬과 핸드스크린·이들의 프레임과 손잡이와 이들의 부분품	SL	15
3926.90.32	- - - 의치 거꾸집을 갖춘 플라스틱 몰드	Cat 0	0
3926.90.39	- - - 기타	Cat 0	0
3926.90.41	- - - 경찰 방패	Cat 0	0
3926.90.42	- - - 용접이나 이와 유사한 작업용 보호 마스크	Cat 0	0
3926.90.44	- - - 생명구조 쿠션(높은 곳에서 추락하는 사람 구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ex1 3926.90.49	반사광 손톱, 귀보호용 소음감소장치 및 커버, 유기물 또는 수은 증기 측정기기	Cat 0	0
ex2 3926.90.49	기타	Cat 15	5
3926.90.53	- - - 전동(transmission)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 또는 벨팅(belting)	SL	1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3926.90.55	--- 기록장치용 플라스틱 제마영 록(jinooks)이나 만지 글	Cat 0	0
ex1 3926.90.59	파이프, 실봉합테이프와 기류유출봉	Cat 0	0
ex2 3926.90.59	기타	Cat 15	15
3926.90.60	-- 가금류 급이기(Poultry feeders)	Cat 15	5
3926.90.70	--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용의 패딩	Cat 0	0
3926.90.81	--- 신발의 골	Cat 0	0
3926.90.82	--- 목주용 구슬	Cat 0	0
3926.90.89	--- 기타	Cat 0	0
3926.90.91	--- 곡물 저장용의 것	Cat 0	0
3926.90.92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Cat 15	5
3926.90.99A	----- 버클, 조절장치, 후크와 코트 스토퍼	Cat 15	5
ex1 3926.90.99B	젓꼭지 형태의 것, 브레스트셀, 유두보호기, 손으로 찢는 깔 때기, 보조간호용 시스템, 수유기	Cat 0	0
ex2 3926.90.99B	길이가 15미터 이하의 라켓용 줄(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목주 와 그 밖의 연질의 셀룰러 제품	Cat 15	15
ex3 3926.90.99B	기타	Cat 15	5
4001.10.11	--- 원심분리한 농축 천연 라텍스	Cat 0	0
4001.10.19	--- 기타	Cat 0	0
4001.10.21	--- 원심분리한 농축 천연 라텍스	Cat 0	0
4001.10.29	--- 기타	Cat 0	0
4001.21.10	--- 알·에스·에스(RSS) 1등급	Cat 0	0
4001.21.20	--- 알·에스·에스(RSS) 2등급	Cat 0	0
4001.21.30	--- 알·에스·에스(RSS) 3등급	Cat 0	0
4001.21.40	--- 알·에스·에스(RSS) 4등급	Cat 0	0
4001.21.50	--- 알·에스·에스(RSS) 5등급	Cat 0	0
4001.21.90	--- 기타	Cat 0	0
4001.22.10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10	Cat 0	0
4001.22.20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20	Cat 0	0
4001.22.30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L	Cat 0	0
4001.22.40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CV	Cat 0	0
4001.22.50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GP	Cat 0	0
4001.22.90	--- 기타	Cat 0	0
4001.29.10	--- 에어드라이(airdried)한 시트(sheets)	Cat 0	0
4001.29.20	--- 라텍스 크레이프	Cat 0	0
4001.29.30	--- 바닥 크레이프	Cat 0	0
4001.29.40	--- 리밀 크레이프[플랫 바크 크레이프(flat bark crepe)를 포함한다]	Cat 0	0
4001.29.50	--- 그 밖의 크레이프	Cat 0	0
4001.29.60	--- 슈퍼리오 가공 고무	Cat 0	0
4001.29.70	--- 탈지 고무	Cat 0	0
4001.29.80	--- 스크랩(나무, 흙 또는 혼연의 것으로 한정한다) 및 컵 모양의 덩어리	Cat 0	0
4001.29.91	----- 일차제품(primary form)인 것	Cat 0	0
4001.29.99	----- 기타	Cat 0	0
4001.30.20	-- 일차제품(primary form)인 것	Cat 0	0
4001.30.90	-- 기타	Cat 0	0
4002.11.00	-- 라텍스	Cat 0	0
4002.19.10	--- 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가황하지 않은 비합성 판, 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인 것	Cat 0	0
4002.19.90	--- 기타	Cat 0	0
4002.20.10	-- 일차제품(primary form)인 것	Cat 0	0
4002.20.90	-- 기타	Cat 0	0
4002.31.10	--- 가황하지 않은 비합성 판, 시트(sheet) 또는 스트립	Cat 0	0
4002.31.90	--- 기타	Cat 0	0
4002.39.10	--- 가황하지 않은 비합성 판, 시트(sheet) 또는 스트립	Cat 0	0
4002.39.90	--- 기타	Cat 0	0
4002.41.00	-- 라텍스	Cat 0	0
4002.49.10	--- 일차제품(primary form)인 것	Cat 0	0
4002.49.90	--- 기타	Cat 0	0
4002.51.00	-- 라텍스	Cat 0	0
4002.59.10	--- 일차제품(primary form)인 것	Cat 0	0
4002.59.90	--- 기타	Cat 0	0
4002.60.10	-- 일차제품(primary form)인 것	Cat 0	0
4002.60.90	-- 기타	Cat 0	0
4002.70.10	-- 일차제품인 것	Cat 0	1/0
4002.70.90	-- 기타	Cat 0	1
4002.80.10	-- 천연고무 라텍스와 합성고무 라텍스의 혼합물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4002.80.90	- - 기타	Cat 0	0
4002.91.00	- - 라텍스	Cat 0	0
4002.99.20	- - - 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가황하지 않은 비합성 판, 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인 것	Cat 0	0
4002.99.90	- - - 기타	Cat 0	0
4003.00.00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또는 판·시트(sheet)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4004.00.00	고무의 웨이스트(waste)·페어링(paring) 및 스크랩(scrap)[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Cat 0	0
4005.10.10	- - 천연 검의 것	Cat 0	0
4005.10.90	- - 기타	Cat 0	0
4005.20.00	- 용액,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Cat 0	0
4005.91.10	- - - 천연 검의 것	Cat 0	0
4005.91.90	- - - 기타	Cat 0	0
4005.99.10	- - - 라텍스	Cat 0	0
4005.99.20	- - - 카본이나 실리카를 제외한 물질과 배합한 천연고무	Cat 0	0
4005.99.90	- - - 기타	Cat 0	0
4006.10.00	-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백(camelback)” 스트립	Cat 0	0
4006.90.11	- - - 물품	Cat 0	0
4006.90.19	- - - 기타	Cat 0	0
4006.90.90	- - 기타	Cat 0	0
4007.00.00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0
4008.11.10	- - - 두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방직용 섬유로 한쪽 면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008.11.20	- - - 기타(바닥 타일과 벽 타일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008.11.90	- - - 기타	Cat 0	0
4008.19.00	- - 기타	Cat 0	0
4008.21.10	- - - 두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방직용 섬유로 한쪽 면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4008.21.20	- - - 기타(바닥 타일과 벽 타일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4008.21.30	- - - 지수판(止水板)	Cat 15	5
4008.21.40	- - - 고무 솔링 시트	Cat 15	5
4008.21.90	- - - 기타	Cat 15	5
4008.29.00	- - 기타	Cat 0	0
4009.11.00	-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Cat 0	0
4009.12.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Cat 0	0
4009.12.90	- - - 기타	Cat 0	0
4009.21.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Cat 0	0
4009.21.90	- - - 기타	Cat 0	0
4009.22.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Cat 0	0
4009.22.90	- - - 기타	Cat 0	0
4009.31.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Cat 0	0
4009.31.20	- - - 가스 스톱브용 고무 호스	Cat 15	5
4009.31.91	- - - - 제8702호·제8703호·제8704호 또는 제8711호의 자동차용 연료호스·히터호스 및 워터호스	Cat 15	5
4009.31.99	- - - - 기타	Cat 15	5
4009.32.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Cat 0	0
4009.32.20	- - - 가스 스톱브용 고무 호스	Cat 0	0
4009.32.90	- - - 기타	Cat 0	0
4009.41.10	- - - 가스 스톱브용 고무 호스	Cat 0	0
4009.41.90	- - - 기타	Cat 0	0
4009.42.10	- - - 채굴슬러리(slurry) 흡입 및 배출 호스	Cat 0	0
4009.42.20	- - - 가스 스톱브용 고무 호스	Cat 0	0
4009.42.90	- - - 기타	Cat 0	0
4010.11.00	- -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Cat 0	0
4010.12.00	-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Cat 0	0
4010.19.00	- - 기타	Cat 0	0
4010.31.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4010.32.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Cat 1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4010.33.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010.34.00	-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Cat 0	0
4010.35.00	-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4010.36.00	-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를 초과하고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4010.39.00	- - 기타	Cat 0	0
4011.10.0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Cat 0	0
4011.20.10	- -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15	5
4011.20.90	- - 기타	Cat 15	5
4011.30.00	- 항공기용	Cat 0	0
4011.40.00	- 모터사이클용	Cat 0	0
4011.50.00	- 자전거용	Cat 0	0
4011.70.00	- 농업용 또는 임업용 차량과 기계에 사용되는 것	Cat 0	0
4011.80.11	- - - 트랙터, 제8429호나 제8430호의 기계류, 지게차, 일륜 손수레 또는 그 밖의 산업용 차량과 기계에 사용되는 것	Cat 0	0
4011.80.19	- - - 기타	Cat 0	0
4011.80.21	- - - 트랙터, 제8429호나 제8430호의 기계류, 지게차 또는 그 밖의 산업용 차량과 기계에 사용되는 것	Cat 0	0
4011.80.29	- - - 기타	Cat 0	0
4011.90.10	- - 제87류의 차량에 사용되는 것	Cat 0	0
4011.90.20	- - 제8429호나 제8430호의 기계류에 사용되는 것	Cat 0	0
4011.90.30	- - 기타(폭이 4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011.90.90	- - 기타	Cat 0	0
4012.11.00	-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Cat 0	0
4012.12.10	- - -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4012.12.90	- - - 기타	Cat 0	0
4012.13.00	- - 항공기용	Cat 0	0
4012.19.30	- - - 제8429호나 제8430호의 기계류에 사용되는 것	Cat 0	0
4012.19.40	- - - 제87류의 차량에 사용되는 것	Cat 0	0
4012.19.90	- - - 기타	Cat 0	0
4012.20.10	-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Cat 0	0
4012.20.21	- - -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4012.20.29	- - - 기타	Cat 0	0
4012.20.30	- - 항공기용	Cat 0	0
4012.20.40	- - 모터사이클용	Cat 0	0
4012.20.50	- - 자전거용	Cat 0	0
4012.20.60	- - 제8429호나 제8430호의 기계류에 사용되는 것	Cat 0	0
4012.20.70	- - 제87류의 그 밖의 차량에 사용되는 것	Cat 0	0
4012.20.91	- - - 버프드(buffed) 타이어	Cat 0	0
4012.20.99	- - - 기타	Cat 0	0
4012.90.14	- - - 솔리드 타이어(바깥지름이 2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012.90.15	- - - 제8709호의 차량용 솔리드 타이어(바깥지름이 2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폭이 4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012.90.16	- - - 그 밖의 솔리드 타이어(바깥지름이 2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폭이 4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012.90.19	- - - 기타	Cat 0	0
4012.90.21	- - -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4012.90.22	- - - 폭이 4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4012.90.70	- - 대체용 타이어 트레드(tread)(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012.90.80	- - 타이어 플랩	Cat 0	0
4012.90.90	- - 기타	Cat 0	0
4013.10.11	- - -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Cat 0	0
4013.10.19	- - - 폭이 4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Cat 0	0
4013.10.21	- - -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Cat 0	0
4013.10.29	- - - 폭이 4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Cat 0	0
4013.20.00	- 자전거용	Cat 0	0
4013.90.11	- - -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4013.90.19	- - - 폭이 4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Cat 0	0
4013.90.20	- - 모터사이클용	Cat 0	0
4013.90.31	- - -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Cat 0	0
4013.90.39	- - - 폭이 4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Cat 0	0
4013.90.40	- - 항공기용	Cat 0	0
4013.90.91	- - - 폭이 450밀리미터 이하인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Cat 0	0
4013.90.99	- - - 폭이 45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타이어 부착에 적합한 것	Cat 0	0
4014.10.00	- 콘돔	Cat 0	0
4014.90.10	- - 젖병용과 이와 유사한 제품용 젖꼭지	Cat 0	0
4014.90.40	- - 제약용 마개	Cat 0	0
4014.90.50	- - 손가락 싸개	Cat 0	0
4014.90.90	- - 기타	Cat 0	0
4015.11.00	- - 외과용	Cat 0	0
4015.19.00	- - 기타	Cat 0	0
4015.90.10	- - 방사능 방호복	Cat 0	0
4015.90.20	- - 잠수복(웨트 슈트)	Cat 0	0
4015.90.90	- - 기타	Cat 0	0
4016.10.10	- - 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용의 패딩	Cat 0	0
4016.10.20	- - 바닥 타일과 벽 타일	Cat 0	0
4016.10.90	- - 기타	Cat 0	0
4016.91.10	- - - 매트(mat)	Cat 15	5
4016.91.20	- - - 타일	Cat 15	5
4016.91.90	- - - 기타	Cat 15	5
4016.92.10	- - - 지우개 팁(tips)	Cat 0	0
4016.92.90	- - - 기타	Cat 0	0
4016.93.10	- - - 전해질 축전기의 접속 단자 절연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4016.93.20	- - - 개스킷(gasket)과 오링(제8702호 · 제8703호 · 제8704호나 제8711호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016.93.90	- - - 기타	Cat 0	0
4016.94.00	- -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 없다)	Cat 0	0
4016.95.00	- - 그 밖의 팽창성 제품	Cat 0	0
4016.99.11	- - - - 제8702호 · 제8703호 · 제8704호나 제8705호의 자동차용(틈마개용 재료는 제외한다)	Cat 15	5
4016.99.12	- - - - 제8711호의 차량용	Cat 15	5
4016.99.13	- - - - 틈마개용 재료(제8702호 · 제8703호나 제8704호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SL	5
4016.99.15	- - - - 제8709호 · 제8713호 · 제8715호나 제8716호의 차량용	Cat 0	0
4016.99.16	- - - - 자전거 흡받이	Cat 0	0
4016.99.17	- - - - 자전거 부분품	Cat 0	0
4016.99.18	- - - - 그 밖의 자전거 부속품	Cat 0	0
4016.99.19	- - - - 기타	Cat 0	0
4016.99.20	- - - 제8804호의 로토슈트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4016.99.30	- - - 고무밴드	Cat 0	0
4016.99.40	- - - 벽 타일	Cat 0	0
4016.99.51	- - - - 고무 롤러	Cat 0	0
4016.99.52	- - - - 타이어 주형 주머니	Cat 0	0
4016.99.53	- - - - 애자 후드	Cat 0	0
4016.99.54	- - - -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용 그로밋과 커버(고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016.99.59	- - - - 기타	Cat 0	0
4016.99.60	- - - 레일 패드	Cat 0	0
4016.99.70	- - - 구조 베어링(브릿지 베어링을 포함한다)	Cat 0	0
4016.99.91	- - - - 테이블 커버	Cat 0	0
4016.99.99	- - - - 기타	Cat 0	0
4017.00.10	- 바닥 타일과 벽 타일	Cat 0	0
4017.00.20	- 그 밖의 경질(硬質)고무 제품	Cat 0	0
4017.00.90	- 기타	Cat 0	0
4101.20.00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또는 생 것 · 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101.50.00	- 전신 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101.90.10	- - 유연 전처리 한 것	Cat 0	0
4101.90.90	- - 기타	Cat 0	0
4102.10.00	-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4102.21.00	- - 산처리한 것	Cat 0	0
4102.29.00	- - 기타	Cat 0	0
4103.20.00	- 파충류의 것	Cat 0	0
4103.30.00	- 돼지의 것	Cat 0	0
4103.90.00	- 기타	Cat 0	0
4104.11.10	- - - 소가죽이나 배지터블 가죽의 것	Cat 0	0
4104.11.90	- - - 기타	Cat 0	0
4104.19.00	- - 기타	Cat 0	0
4104.4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Cat 0	0
4104.49.00	- - 기타	Cat 0	0
4105.10.00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Cat 0	0
4105.30.00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Cat 0	0
4106.21.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Cat 0	0
4106.22.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Cat 0	0
4106.31.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Cat 0	0
4106.32.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Cat 0	0
4106.40.00	- 파충류의 것	Cat 0	0
4106.91.00	-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Cat 0	0
4106.92.00	-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Cat 0	0
4107.1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Cat 0	0
4107.12.00	-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Cat 0	0
4107.19.00	- - 기타	Cat 0	0
4107.91.00	-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Cat 0	0
4107.92.00	-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Cat 0	0
4107.99.00	- - 기타	Cat 0	0
4112.00.00	유연처리 또는 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Cat 0	0
4113.10.00	- 산양 또는 어린 산양의 것	Cat 0	0
4113.20.00	- 돼지의 것	Cat 0	0
4113.30.00	- 파충류의 것	Cat 0	0
4113.90.00	- 기타	Cat 0	0
4114.10.00	-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Cat 0	0
4114.20.00	-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Cat 0	0
4115.10.00	-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4115.20.00	-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페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Cat 0	0
4201.00.00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Cat 0	0
4202.11.10	- - - 슈트 케이스나 서류가방으로 최대 크기가 56센티미터 x 45센티미터 x 25센티미터인 것	Cat 0	0
4202.11.90	- - - 기타	Cat 0	0
4202.12.11	- - - - 외부 표면을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로 만든 것	Cat 0	0
4202.12.19	- - - - 기타	Cat 0	0
4202.12.91	- - - - 외부 표면을 벌커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로 만든 것	Cat 0	0
4202.12.99	- - - - 기타	Cat 0	0
4202.19.20	- - - 외부 표면을 판지로 만든 것	Cat 0	0
4202.19.90	- - - 기타	Cat 0	0
4202.21.00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Cat 0	0
4202.22.00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Cat 0	0
4202.29.00	- - 기타	Cat 0	0
4202.31.00	-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Cat 15	5
4202.32.00	-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Cat 0	0
4202.39.00	- - 기타	Cat 0	0
4202.91.11	- - - - 볼링용구가방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4202.91.19	- - - - 기타	Cat 0	0
4202.91.90	- - - 기타	Cat 0	0
4202.92.10	- - - 제면용품 가방(플라스틱 지드도 만든 것으로 한정함)	Cat 0	0
4202.92.20	- - - 볼링용구가방	Cat 0	0
4202.92.90	- - - 기타	Cat 0	0
4202.99.10	- - - 외부 표면을 벌크나이즈드 파이버(vulcanised fibre)나 판지로 만든 것	Cat 0	0
4202.99.20	- - - 구리의 것	Cat 0	0
4202.99.90	- - - 기타	Cat 0	0
4203.10.00	- 의류	Cat 0	0
4203.21.00	-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Cat 0	0
4203.29.10	- - - 작업용 보호 장갑	Cat 0	0
4203.29.90	- - - 기타	Cat 0	0
4203.30.00	- 벨트와 띠	Cat 0	0
4203.40.00	- 그 밖의 의류 부속품	Cat 0	0
4205.00.10	- 부츠 끈, 매트	Cat 0	0
4205.00.20	- 산업용 안전 벨트와 하네스	Cat 0	0
4205.00.30	- 보석이나 신변장식용품에 사용되는 가죽 끈이나 줄	Cat 0	0
4205.00.40	- 기계류나 기계식의 기구 또는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제품	Cat 0	0
4205.00.90	- 기타	Cat 0	0
4206.00.00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 ·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 · 방광 또는 건(腱)의 제품	Cat 0	0
4301.10.00	-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301.30.00	-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쿨(Caracul) · 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 · 중국 · 몽고 또는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301.60.00	-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301.80.00	-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또는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301.90.00	-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302.11.00	- - 밍크의 것	Cat 0	0
4302.19.00	- - 기타	Cat 0	0
4302.20.00	-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302.30.00	-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303.10.00	-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Cat 0	0
4303.90.20	- - 산업용 제품	Cat 0	0
4303.90.90	- - 기타	Cat 0	0
4304.00.10	- 인조모피	Cat 0	0
4304.00.20	- 산업용 제품	Cat 0	0
4304.00.91	- - 운동용구가방	Cat 0	0
4304.00.99	- - 기타	Cat 0	0
4401.11.00	- - 침엽수류	Cat 0	0
4401.12.00	- - 활엽수류	Cat 0	0
4401.21.00	- - 침엽수류	Cat 0	0
4401.22.00	- - 활엽수류	Cat 0	0
4401.31.00	- - 목재 펠릿(pellet)	Cat 0	0
4401.39.00	- - 기타	Cat 0	0
4401.40.00	- 톱밥 및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시키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2.10.00	- 대나무로 만든 것	Cat 0	0
4402.90.10	- - 코코넛 쉼(shell)로 만든 것	Cat 0	0
4402.90.90	- - 기타	Cat 0	0
4403.11.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11.90	- - - 기타	Cat 0	0
4403.12.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12.90	- - - 기타	Cat 0	0
4403.21.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21.90	- - - 기타	Cat 0	0
4403.22.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22.90	- - - 기타	Cat 0	0
4403.23.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4403.23.90	- - - 기타	Cat 0	0
4403.24.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24.90	- - - 기타	Cat 0	0
4403.25.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25.90	- - - 기타	Cat 0	0
4403.26.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26.90	- - - 기타	Cat 0	0
4403.41.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41.90	- - - 기타	Cat 0	0
4403.49.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49.90	- - - 기타	Cat 0	0
4403.91.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91.90	- - - 기타	Cat 0	0
4403.93.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93.90	- - - 기타	Cat 0	0
4403.94.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94.90	- - - 기타	Cat 0	0
4403.95.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95.90	- - - 기타	Cat 0	0
4403.96.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96.90	- - - 기타	Cat 0	0
4403.97.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97.90	- - - 기타	Cat 0	0
4403.98.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98.90	- - - 기타	Cat 0	0
4403.99.10	- - - 바울크스(제재용과 베니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03.99.90	- - - 기타	Cat 0	0
4404.10.00	- 침엽수류	Cat 0	0
4404.20.10	- - 침우드(chipwood)	Cat 0	0
4404.20.90	- - 기타	Cat 0	0
4405.00.10	- 목모(wood wool)	Cat 0	0
4405.00.20	- 목분(wood flour)	Cat 0	0
4406.11.00	- - 침엽수류	Cat 0	0
4406.12.00	- - 활엽수류	Cat 0	0
4406.91.00	- - 침엽수류	Cat 0	0
4406.92.00	- - 활엽수류	Cat 0	0
4407.11.00	- - 소나무[피누스(Pinus)종]의 것	Cat 0	3
4407.12.00	- -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및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	Cat 0	3
4407.19.00	- - 기타	Cat 0	3
4407.21.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21.90	- - - 기타	Cat 3	5
4407.22.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22.90	- - - 기타	Cat 3	5
4407.25.1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25.19	- - - - 기타	Cat 3	5
4407.25.2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25.29	- - - - 기타	Cat 3	5
4407.26.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26.90	- - - 기타	Cat 3	5
4407.27.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27.90	- - - 기타	Cat 3	5
4407.28.10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28.90	- - - 기타	Cat 3	5
4407.29.1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29.19	- - - - 기타	Cat 3	5
4407.29.2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29.29	- - - - 기타	Cat 3	5
4407.29.3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29.39	- - - - 기타	Cat 3	5
4407.29.4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29.49	- - - - 기타	Cat 3	5
4407.29.5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29.59	- - - - 기타	Cat 3	5
4407.29.61	- - - - 대패질·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4407.29.69	- - - - 기타	Cat 3	5
4407.29.71	- - - -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29.79	- - - - 기타	Cat 3	5
4407.29.81	- - - -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29.89	- - - - 기타	Cat 3	5
4407.29.91	- - - - 종콩[닥틸로클라두스(Dactylocladus)종]과 멜바우[인씨아(Intsia)종][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4407.29.92	- - - - 종콩[닥틸로클라두스(Dactylocladus)종]과 멜바우[인씨아(Intsia)종](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4407.29.94	- - - - 알비지아[파라세리안더스 팔카타리아(Paraserianthes falcataria)][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4407.29.95	- - - - 알비지아[파라세리안더스 팔카타리아(Paraserianthes falcataria)](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4407.29.96	- - - - 고무[파라고우나무(Hevea Brasiliensis)][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4407.29.97	- - - - 고무[파라고우나무(Hevea Brasiliensis)](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4407.29.98	- - - - 기타[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4407.29.99	- - - - 기타	Cat 3	5
4407.91.10	- - -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91.90	- - - 기타	Cat 3	5
4407.92.10	- - -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92.90	- - - 기타	Cat 3	5
4407.93.10	- - -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93.90	- - - 기타	Cat 3	5
4407.94.10	- - -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94.90	- - - 기타	Cat 3	5
4407.95.10	- - -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95.90	- - - 기타	Cat 3	5
4407.96.10	- - -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96.90	- - - 기타	Cat 3	5
4407.97.10	- - -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97.90	- - - 기타	Cat 3	5
4407.99.10	- - - 대패질 · 연마 또는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	Cat 3	5
4407.99.90	- - - 기타	Cat 3	5
4408.10.10	- - 연필 제조용 향나무 목재 슬랫(slats), 블록보드 제조용 라디아타(radiata) 소나무 목재	Cat 0	0
4408.10.30	- - 앞판 베니어 시트(sheets)	Cat 0	0
4408.10.90	- - 기타	Cat 0	0
4408.31.00	-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와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Cat 0	0
4408.39.10	- - - 연필 제조용 제루통 목재 슬랫(slats)	Cat 0	0
4408.39.20	- - - 앞판 베니어 시트(sheets)	Cat 0	0
4408.39.90	- - - 기타	Cat 0	0
4408.90.10	- - 앞판 베니어 시트(sheets)	Cat 0	0
4408.90.90	- - 기타	Cat 0	0
4409.10.00	- 침엽수류	Cat 0	0
4409.2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Cat 0	0
4409.22.00	- - 열대산 목재로 만든 것	Cat 0	0
4409.29.00	- - 기타	Cat 0	0
4410.11.00	-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Cat 5	6.4/5
4410.12.00	- -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Cat 0	0
4410.19.00	- - 기타	Cat 5	6.4/5
4410.90.00	- 기타	Cat 3	5
4411.12.00	- -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5	15/6.4/5/0
4411.13.00	- - 두께가 5밀리미터를 초과하고 9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5	15/6.4/5/0
4411.14.00	- -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5	15/6.4/5/0
4411.92.00	-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8그램을 초과하는 것	Cat 5	6.4/0
4411.93.00	-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을 초과하고 0.8그램 이하인 것	Cat 5	15/6.4/5
4411.94.00	-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이하인 것	Cat 3	5/0
4412.10.00	- 대나무로 만든 것	Cat 5	10.4/5
4412.31.00	-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Cat 5	10.4/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4412.33.00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알너스(Alnus)종]·물푸레나무[프락시너스(Fraxinus)종]·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종]·느릅나무[울무스(Ulmus)종]·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히커리[카르야(Carya)종]·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종]·라임[틸리아(Tilia)종]·단풍나무[아서(Acer)종]·참나무[코커스(Quercus)종]·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종]·포플러와 사시나무[포푸러스(Populus)종]·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종]·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종]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4412.34.00	-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4412.39.00	-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4412.94.00	-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및 배튼보드(battenboard)	Cat 5	10.4/5
4412.99.10	- - - 적어도 한 변이 플라스틱인 것	Cat 5	10.4/5
4412.99.20	- - - 적어도 한 변이 티크인 것	Cat 5	10.4/5
4412.99.30	- - - 적어도 한 변이 열대산 목재인 것	Cat 5	10.4/5
4412.99.90	- - - 기타	Cat 5	10.4/5
4413.00.00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플레이트(plate) 모양·스트립(strip) 모양 또는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3
4414.00.00	나무로 만든 그림틀·사진틀·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Cat 0	0
4415.10.00	- 케이스·상자·크레이트(crate)·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Cat 0	0
4415.20.00	- 팰릿(pallet)·박스팰릿(box pallet)과 그 밖의 깔판류, 팰릿칼러(pallet collar)	Cat 0	0
4416.00.10	- 통재	Cat 0	0
4416.00.90	- 기타	Cat 0	0
4417.00.10	- 부츠나 신발의 골	Cat 0	0
4417.00.20	- 부츠나 신발의 골	Cat 0	0
4417.00.90	- 기타	Cat 0	0
4418.10.00	-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Cat 0	0
4418.20.00	- 문과 문틀과 문지방	Cat 0	0
4418.40.00	-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Cat 0	0
4418.50.00	- 지붕을 이는 판자	Cat 0	0
4418.60.00	- 기둥과 들보	Cat 0	0
4418.73.10	- - - 모자이크 마루용	Cat 0	0
4418.73.90	- - - 기타	Cat 0	0
4418.74.00	- - 기타(모자이크 마루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18.75.00	- -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418.79.00	- - 기타	Cat 0	0
4418.9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Cat 0	0
4418.99.10	- - - 셀룰러우드패널	Cat 0	0
4418.99.90	- - - 기타	Cat 0	0
4419.11.00	- - 브레드보드(도마와 이와 유사한 보드)	Cat 0	0
4419.12.00	- - 젓가락	Cat 0	0
4419.19.00	- - 기타	Cat 0	0
4419.90.00	- 기타	Cat 0	0
4420.10.00	-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Cat 0	0
4420.90.10	- -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재 가구	Cat 0	0
4420.90.90	- - 기타	Cat 0	0
4421.10.00	- 옷걸이	Cat 0	0
4421.91.10	- - - 스펀(spool)·콤프(cop)과 보빈(bobbin)·재봉사 릴(reel)과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4421.91.20	- - - 성냥개비의 나무	Cat 0	0
4421.91.30	- - - 캔디 스틱·아이스크림 스틱과 아이스크림 스푼	Cat 0	0
4421.91.40	- - - 부채와 핸드스크린·이들의 살과 자루와 그 부분품	Cat 0	0
4421.91.50	- - - 목주용 구슬	Cat 0	0
4421.91.60	- - - 이쑤시개	Cat 0	0
4421.91.90	- - - 기타	Cat 0	0
4421.99.10	- - - 스펀(spool)·콤프(cop)과 보빈(bobbin)·재봉사 릴(reel)과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4421.99.20	- - - 성냥개비의 나무	Cat 0	0
4421.99.30	- - - 신발용 나무 못이나 핀	Cat 0	0
4421.99.40	- - - 캔디 스틱·아이스크림 스틱과 아이스크림 스푼	Cat 0	0
4421.99.70	- - - 부채와 핸드스크린·이들의 살과 자루와 그 부분품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4421.99.80	- - - 이쑤시개	Cat 0	0
4421.99.93	- - - - 목주용 구슬	Cat 0	0
4421.99.94	- - - - 그 밖의 구슬	Cat 0	0
4421.99.95	- - - - 조스 스틱 제작용 스틱	Cat 0	0
4421.99.96	- - - - 베어 코어	Cat 0	0
4421.99.99	- - - - 기타	Cat 0	0
4501.10.00	-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501.90.00	- 기타	Cat 0	0
4502.00.00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또는 거칠게 각을 만든 것 또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 또는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개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Cat 0	0
4503.10.00	- 마개	Cat 0	0
4503.90.00	- 기타	Cat 0	0
4504.10.00	- 블록·판·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 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 솔리드실린더(solid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Cat 0	0
4504.90.00	- 기타	Cat 0	0
4601.2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Cat 0	0
4601.22.00	- - 등나무로 만든 것	Cat 0	0
4601.29.00	- - 기타	Cat 0	0
4601.92.10	- -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4601.92.20	- - - 부채와 핸드스크린·이들의 살과 자루와 그 부분품	Cat 0	0
4601.92.90	- - - 기타	Cat 0	0
4601.93.10	- -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4601.93.20	- - - 부채와 핸드스크린·이들의 살과 자루와 그 부분품	Cat 0	0
4601.93.90	- - - 기타	Cat 0	0
4601.94.10	- -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4601.94.20	- - - 부채와 핸드스크린·이들의 살과 자루와 그 부분품	Cat 0	0
4601.94.90	- - - 기타	Cat 0	0
4601.99.10	- - - 매트류	Cat 15	5
4601.99.20	- -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4601.99.30	- - - 부채와 핸드스크린·이들의 살과 자루와 그 부분품	Cat 15	5
4601.99.90	- - - 기타	Cat 15	5
4602.11.10	- - - 여행용 가방 및 슈트케이스	Cat 0	0
4602.11.20	- - - 병용 봉투	Cat 0	0
4602.11.90	- - - 기타	Cat 0	0
4602.12.10	- - - 여행용 가방 및 슈트케이스	Cat 0	0
4602.12.20	- - - 병용 봉투	Cat 0	0
4602.12.90	- - - 기타	Cat 0	0
4602.19.10	- - - 여행용 가방 및 슈트케이스	Cat 0	0
4602.19.20	- - - 병용 봉투	Cat 0	0
4602.19.90	- - - 기타	Cat 0	0
4602.90.10	- - 여행용 가방 및 슈트케이스	Cat 0	0
4602.90.20	- - 병용 봉투	Cat 0	0
4602.90.90	- - 기타	Cat 0	0
4701.00.00	기계목재펄프	Cat 0	0
4702.00.00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703.11.00	- - 침엽수류	Cat 0	0
4703.19.00	- - 활엽수류	Cat 0	0
4703.21.00	- - 침엽수류	Cat 0	0
4703.29.00	- - 활엽수류	Cat 0	0
4704.11.00	- - 침엽수류	Cat 0	0
4704.19.00	- - 활엽수류	Cat 0	0
4704.21.00	- - 침엽수류	Cat 0	0
4704.29.00	- - 활엽수류	Cat 0	0
4705.00.00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Cat 0	0
4706.10.00	-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Cat 0	0
4706.20.00	-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Cat 0	0
4706.30.00	-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706.91.00	- - 기계펄프	Cat 0	0
4706.92.00	- - 화학펄프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4706.93.00	- -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Cat 0	0
4707.10.00	-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 또는 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 또는 판지로 만든 것	Cat 0	0
4707.20.00	-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707.30.00	-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와 이와 유사한 인쇄물)	Cat 0	0
4707.90.00	-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Cat 0	0
4801.00.11	- - 폭이 28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Cat 0	0
4801.00.12	- - 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되는 롤 모양인 것	Cat 0	0
4801.00.13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8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센티미터 이하이며, 다른 한 변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01.00.14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01.00.21	- - 폭이 28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Cat 0	0
4801.00.22	- - 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되는 롤 모양인 것	Cat 0	0
4801.00.23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28센티미터를 초과하고 36센티미터 이하이며, 다른 한 변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01.00.24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를 초과하고, 다른 한 변이 1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02.10.00	-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Cat 0	0
4802.20.10	- -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02.20.90	- - 기타	Cat 0	0
4802.40.10	- -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02.40.90	- - 기타	Cat 0	0
4802.54.11	- - - -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02.54.19	- - - - 기타	Cat 0	0
4802.54.21	- - - -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02.54.29	- - - - 기타	Cat 0	0
4802.54.30	- - - 알루미늄 도포종이 제조용 원지(原紙)	Cat 0	0
4802.54.40	- - - 필기용·인쇄용 및 그 밖의 그래픽용[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02.54.50	- - -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	Cat 0	0
4802.54.90	- - - 기타	Cat 0	0
4802.55.20	- - -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펄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 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한 것 또는 작은 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Cat 0	0
4802.55.40	- - - 알루미늄 도포종이 제조용 원지(原紙)	Cat 0	0
4802.55.50	- - - 이형지 제조용 원지	Cat 0	0
4802.55.61	- - - -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4802.55.69	- - - - 기타	Cat 0	0
4802.55.70	- - - 여러 층의 종이	Cat 0	0
4802.55.90	- - - 기타	Cat 0	0
4802.56.20	- - -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펄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 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한 것 또는 작은 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Cat 0	0
4802.56.31	- -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Cat 0	0
4802.56.39	- - - - 기타	Cat 0	0
4802.56.41	- -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02.56.49	- - - - 기타	Cat 0	0
4802.56.50	- - - 여러 층의 종이	Cat 0	0
4802.56.90	- - - 기타	Cat 0	0
4802.57.11	- -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4802.57.19	- - - - 기타	Cat 0	0
4802.57.21	- -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Cat 0	0
4802.57.29	- - - - 기타	Cat 0	0
4802.57.30	- - - 여러 층의 종이	Cat 0	0
4802.57.90	- - - 기타	Cat 0	0
4802.58.21	- - - -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이 15센티미터 이하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Cat 0	0
4802.58.29	- - - - 기타	Cat 0	0
4802.58.31	- - - -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또는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02.58.39	- - - - 기타	Cat 0	0
4802.58.40	- - - 여러 층의 종이	Cat 0	0
4802.58.91	- -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고 225그램 미만인 것	Cat 0	0
4802.58.99	- - - - 기타	Cat 0	0
4802.61.30	- - -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펄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 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한 것 또는 작은 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Cat 0	0
4802.61.40	- - - 알루미늄 도포종이 제조용 원지(原紙)	Cat 0	0
4802.61.51	- - - -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4802.61.59	- - - - 기타	Cat 0	0
4802.61.60	- - - 여러 층의 종이	Cat 0	0
4802.61.91	- -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고 225그램 미만인 것	Cat 0	0
4802.61.99	- - - - 기타	Cat 0	0
4802.62.10	- - -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펄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 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한 것 또는 작은 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하며,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이고 다른 한 변이 15센티미터 이하인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802.62.20	- - - 그 밖의 팬시 지와 판지(워터마크가 있는 것, 화강암 무늬 펄트로 마무리한 것, 섬유로 마무리한 것, 골동품 피지로 마무리한 것 또는 작은 점들이 혼합된 종이와 판지를 포함한다)	Cat 0	0
4802.62.31	- -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02.62.39	- - - - 기타	Cat 0	0
4802.62.40	- - - 여러 층의 종이	Cat 0	0
4802.62.91	- -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고 225그램 미만인 것	Cat 0	0
4802.62.99	- - - - 기타	Cat 0	0
4802.69.11	- - - -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02.69.19	- - - - 기타	Cat 0	0
4802.69.20	- - - 여러 층의 종이	Cat 0	0
4802.69.91	- -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고 225그램 미만인 것	Cat 0	0
4802.69.99	- - - - 기타	Cat 0	0
4803.00.30	- 셀룰로오스워딩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의 것	Cat 0	0
4803.00.90	- 기타	Cat 0	0
4804.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4804.19.00	- - 기타	Cat 0	0
4804.21.10	- - - 시멘트 백 제조용의 것	Cat 0	0
4804.21.90	- - - 기타	Cat 0	0
4804.29.10	- - - 시멘트 백 제조용의 것	Cat 0	0
4804.29.90	- - - 기타	Cat 0	0
4804.31.10	- - - 전기 절연 크라프트지	Cat 0	0
4804.31.30	- - - 합판 접착 테이프 제조용으로 습윤 강도가 40그램에서 60그램인 것	Cat 0	0
4804.31.40	- - - 사포 원지	Cat 0	0
4804.31.50	- - - 시멘트 백 제조용의 것	Cat 0	0
4804.31.90	- - - 기타	Cat 0	0
4804.39.10	- - - 합판 접착 테이프 제조용으로 습윤 강도가 40그램에서 60그램인 것	Cat 0	0
4804.39.20	- - - 식품포장용 종이와 판지	Cat 0	0
4804.39.90	- - - 기타	Cat 0	0
4804.41.10	- - - 전기 절연 크라프트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4804.41.90	- - - 기타	Cat 0	0
4804.42.10	- - - 식품포장용 종이와 판지	Cat 0	0
4804.42.90	- - - 기타	Cat 0	0
4804.49.10	- - - 식품포장용 종이와 판지	Cat 0	0
4804.49.90	- - - 기타	Cat 0	0
4804.51.10	- - - 전기 절연 크라프트지	Cat 0	0
4804.51.20	- - - 1제곱미터당 600그램 이상의 프레스보드 (pressedboard)	Cat 0	0
4804.51.30	- - - 합판 접착 테이프 제조용으로 습윤 강도가 40그램에서 60그램인 것	Cat 0	0
4804.51.90	- - - 기타	Cat 0	0
4804.52.10	- - - 식품포장용 종이와 판지	Cat 0	0
4804.52.90	- - - 기타	Cat 0	0
4804.59.10	- - - 식품포장용 종이와 판지	Cat 0	0
4804.59.90	- - - 기타	Cat 0	0
4805.11.00	- -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Cat 0	0
4805.12.00	- -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Cat 0	0
4805.19.10	-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고 225그램 미 만인 것	Cat 0	0
4805.19.90	- - - 기타	Cat 0	0
4805.24.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Cat 0	0
4805.25.10	-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미만인 것	Cat 0	0
4805.25.90	- - - 기타	Cat 0	0
4805.30.10	- - 나무 성냥갑용 착색한 포장지	Cat 0	0
4805.30.90	- - 기타	Cat 0	0
4805.40.00	- 여과지와 판지	Cat 0	0
4805.50.00	- 펄트지와 판지	Cat 0	0
4805.91.10	- - - 판유리 제품 포장용 간지로 사용되는 종류의 종이(수 지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하인 것으로 한정된	Cat 0	0
4805.91.20	- - - 조스 페이퍼(Joss paper)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	Cat 0	0
4805.91.90	- - - 기타	Cat 0	0
4805.92.10	- - -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	Cat 0	0
4805.92.90	- - - 기타	Cat 0	0
4805.93.10	- - - 여러 층의 종이와 판지	Cat 0	0
4805.93.20	- - - 압지(Blotting paper)	Cat 0	0
4805.93.90	- - - 기타	Cat 0	0
4806.10.00	- 황산지	Cat 0	0
4806.20.00	- 내지지(耐脂紙)	Cat 0	0
4806.30.00	-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Cat 0	0
4806.40.00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Cat 0	0
4807.00.00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808.10.00	-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808.40.00	-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올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 관없다]	Cat 0	0
4808.90.20	- -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종이	Cat 0	0
4808.90.30	- - 올록볼록한(embossed) 종이	Cat 0	0
4808.90.90	- - 기타	Cat 0	0
4809.20.00	- 셀프복사지	Cat 0	0
4809.90.10	- - 카본지와 이와 유사한 복사지	Cat 0	0
4809.90.90	- - 기타	Cat 0	0
4810.13.10	- - - 인쇄된 것이며, 자동기록장치용의 것으로 폭이 150밀리 미터 이하인 것	Cat 0	0
4810.13.91	- - - - 폭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4810.13.99	- - - - 기타	Cat 0	0
4810.14.11	- - - - 심전도계 · 초음파 검사 · 호흡계 · 뇌파계와 태아용 모니터링 지	Cat 0	0
4810.14.19	- - - - 기타	Cat 0	0
4810.14.91	- - - - 각 변의 길이가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Cat 0	0
4810.14.99	- - - - 기타	Cat 0	0
4810.19.10	- - - 인쇄된 것이며, 자동기록장치용의 것으로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Cat 0	0
4810.19.91	- - - - 각 변의 길이가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Cat 0	0
4810.19.99	- - - - 기타	Cat 0	0
4810.22.10	- - - 인쇄된 것이며, 자동기록장치용의 것으로 폭이 150밀리 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 이가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4810.22.91	- - - - 폭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10.22.99	- - - - 기타	Cat 0	0
4810.29.10	- - - 인쇄된 것이며, 자동기록장치용의 것으로 폭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10.29.91	- - - - 폭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10.29.99	- - - - 기타	Cat 0	0
4810.31.30	- - - 폭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10.31.90	- - - 기타	Cat 0	0
4810.32.30	- - - 폭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10.32.90	- - - 기타	Cat 0	0
4810.39.30	- - - 폭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10.39.90	- - - 기타	Cat 0	0
4810.92.40	- - - 폭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10.92.90	- - - 기타	Cat 0	0
4810.99.40	- - - 폭이 150밀리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0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10.99.90	- - - 기타	Cat 0	0
4811.10.20	- -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11.10.90	- - 기타	Cat 0	0
4811.41.20	- - -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11.41.90	- - - 기타	Cat 0	0
4811.49.20	- - -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11.49.90	- - - 기타	Cat 0	0
4811.51.31	- - - - 바닥 깔개	Cat 0	0
4811.51.39	- - - - 기타	Cat 0	0
4811.51.91	- - - - 바닥 깔개	Cat 0	0
4811.51.99	- - - - 기타	Cat 0	0
4811.59.20	- - - 양 표면을 플라스틱 투명 시트로 피복하고 알루미늄 포일로 안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액체 식품 포장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4811.59.41	- - - - 바닥 깔개	Cat 0	0
4811.59.49	- - - - 기타	Cat 0	0
4811.59.91	- - - - 바닥 깔개	Cat 0	0
4811.59.99	- - - - 기타	Cat 0	0
4811.60.20	- - 폭이 1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거나 접지 않은 상태에서 각 변의 길이가 36센티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 모양인 것	Cat 0	0
4811.60.91	- - - 바닥 깔개	Cat 0	0
4811.60.99	- - - 기타	Cat 0	0
4811.90.41	- - - 바닥 깔개	Cat 0	0
4811.90.42	- - - 대리석 문양의 종이	Cat 0	0
4811.90.49	- - - 기타	Cat 0	0
4811.90.91	- - - 바닥 깔개	Cat 0	0
4811.90.92	- - - 대리석 문양의 종이	Cat 0	0
4811.90.99	- - - 기타	Cat 0	0
4812.00.00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와 필터플레이트	Cat 0	0
4813.10.00	-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Cat 0	0
4813.20.00	-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Cat 0	0
4813.90.10	- - 폭이 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롤 모양인 것(도포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813.90.9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4814.20.10	- - 폭이 60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4814.20.90	- - 기타	Cat 0	0
4814.90.00	- 기타	Cat 0	0
4816.20.10	- - 폭이 15센티미터 초과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Cat 0	0
4816.20.90	- - 기타	Cat 0	0
4816.90.10	- - 카본지	Cat 0	0
4816.90.20	- - 그 밖의 복사지	Cat 0	0
4816.90.30	- -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	Cat 0	0
4816.90.40	- - 열 전사지	Cat 0	0
4816.90.50	- - 기타(폭이 15센티미터 초과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Cat 0	0
4816.90.90	- - 기타	Cat 0	0
4817.10.00	- 봉투	Cat 0	0
4817.20.00	- 봉함엽서·우편엽서와 통신용카드	Cat 0	0
4817.30.00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지갑과 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818.10.00	- 화장지	Cat 0	0
4818.20.00	- 손수건·클렌징티슈 또는 안면용 화장지와 타월	Cat 0	0
4818.30.10	- - 책상보	Cat 0	0
4818.30.20	- - 서비에트(serviette)	Cat 0	0
4818.50.00	- 의류와 의류의 부속품	Cat 0	0
4818.90.00	- 기타	Cat 0	0
4819.10.00	-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4819.20.00	-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Cat 0	0
4819.30.00	-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Cat 0	0
4819.40.00	-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Cat 0	0
4819.50.00	-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Cat 0	0
4819.60.00	-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820.10.00	-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4820.20.00	- 연습장	Cat 0	0
4820.30.00	-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폴더와 서류철 표지	Cat 0	0
4820.40.00	-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삽입식 카본세트	Cat 0	0
4820.50.00	-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Cat 0	0
4820.90.00	- 기타	Cat 0	0
4821.10.10	- - 보석용 라벨(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신변장식용품이나 개인용품을 포함한다)	Cat 0	0
4821.10.90	- - 기타	Cat 15	5
4821.90.10	- - 보석용 라벨(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여 사용하는 신변장식용품이나 개인용품을 포함한다)	Cat 0	0
4821.90.90	- - 기타	Cat 0	0
4822.10.10	- - 콘	Cat 0	0
4822.10.90	- - 기타	Cat 0	0
4822.90.10	- - 콘	Cat 0	0
4822.90.90	- - 기타	Cat 0	0
4823.20.10	- - 스트립·롤 또는 시트 모양의 것	Cat 0	0
4823.20.90	- - 기타	Cat 0	0
4823.40.21	- - - 심박동 기록지	Cat 0	0
4823.40.29	- - - 기타	Cat 0	0
4823.40.90	- - 기타	Cat 0	0
4823.61.00	- - 대나무로 만든 것	Cat 0	0
4823.69.00	- - 기타	Cat 0	0
4823.70.00	- 제지용 펄프를 몰드 또는 프레스한 제품	Cat 0	0
4823.90.10	- - 누에용 고치 프레임	Cat 0	0
4823.90.20	- - 보석용 디스플레이 카드(일반적으로 주머니·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는 신변장식용품이나 개인용품을 포함한다)	Cat 0	0
4823.90.30	- - 폴리에틸렌으로 도포된 종이컵 제조용 다이컷(Die-cut) 판지	Cat 0	0
4823.90.40	- - 불꽃제품 제조용 종이관 세트	Cat 0	0
4823.90.51	-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Cat 0	0
4823.90.59	- - - 기타	Cat 0	0
4823.90.60	- - 구멍 뚫은 자카드 카드	Cat 0	0
4823.90.70	- - 팬과 핸드스크린	Cat 0	0
4823.90.91	- - - 실리콘 종이	Cat 0	0
4823.90.92	- - - 조스 페이퍼(Joss paper)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4823.90.94	- - - 셀룰로오스워딩과 셀룰로오스섬유의 웹(전체적으로 착색하거나 대리석 무늬를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823.90.95	- - - 바닥 깔개	Cat 0	0
4823.90.96	- - - 기타(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외의 형태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823.90.99	- - - 기타	Cat 0	0
4901.10.00	- 단매인 것(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4901.91.00	- - 사전 · 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Cat 0	0
4901.99.10	- - - 교육 · 기술 · 과학 · 역사나 문화 서적	Cat 0	0
4901.99.90	- - - 기타	Cat 0	0
4902.10.00	- 1주에 4회 이상 간행되는 것	Cat 0	0
4902.90.10	- - 교육 · 기술 · 과학 · 역사나 문화 저널과 정기 간행물	Cat 0	0
4902.90.90	- - 기타	Cat 0	0
4903.00.00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Cat 0	0
4904.00.00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905.10.00	- 지구의	Cat 0	0
4905.91.00	- - 책자로 된 것	Cat 0	0
4905.99.00	- - 기타	Cat 0	0
4906.00.00	설계도와 도안[건축용 · 공학용 · 공업용 · 상업용 · 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 및 카본복사한 것	Cat 0	0
4907.00.10	- 지폐(법정통화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907.00.21	- - 우표	Cat 0	0
4907.00.29	- - 기타	Cat 0	0
4907.00.40	- 주식 · 주권이나 채권 및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수표	Cat 0	0
4907.00.90	- 기타	Cat 0	0
4908.10.00	- 전사지[디칼커매니아(decalc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Cat 0	0
4908.90.00	- 기타	Cat 0	0
4909.00.00	인쇄된 엽서 또는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 · 전언용 또는 안내용으로 그림 · 봉투 또는 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4910.00.0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Cat 0	0
4911.10.10	- - 카탈로그(교육 · 기술 · 과학 · 역사나 문화 서적과 간행물 목록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4911.10.90	- - 기타	Cat 0	0
4911.91.10	- - - 디자인	Cat 0	0
4911.91.21	- - - - 해부학이나 식물학의 것	Cat 0	0
4911.91.29	- - - - 기타	Cat 0	0
4911.91.31	- - - - 해부학이나 식물학의 것	Cat 0	0
4911.91.39	- - - - 기타	Cat 0	0
4911.99.10	- - - 일반적으로 주머니 · 핸드백이나 신변에 휴대하는 보석용이나 소형 신변장식용품 또는 개인용품용으로 인쇄된 카	Cat 0	0
4911.99.20	- - - 폭발물용으로 인쇄된 라벨	Cat 0	0
4911.99.30	- - - 카드세트에 인쇄된 교육 · 기술 · 과학 · 역사나 문화 자료	Cat 0	0
4911.99.90A	- - - - 소프트웨어(게임을 포함한다), 데이터, 인터넷 콘텐츠(게임 내 또는 응용프로그램 내 콘텐츠를 포함한다)나 서비스, 또는 통신 서비스(모바일 서비스를 포함한다)를 접근, 설치, 재생하거나 그 밖에 사용할 수 있는 인쇄물	Cat 0	0
4911.99.90B	- - - - 기타	Cat 0	0
5001.00.00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002.00.00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Cat 0	0
5003.00.00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Cat 0	0
5004.00.00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Cat 0	0
5005.00.00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Cat 0	0
5006.00.00	견사와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한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Cat 0	0
5007.10.2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007.10.30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007.10.90	- - 기타	Cat 0	0
5007.20.2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007.20.30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007.20.90	- - 기타	Cat 0	0
5007.90.2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5007.90.30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007.90.90	- - 기타	Cat 0	0
5101.11.00	- - 깎은 양모	Cat 0	0
5101.19.00	- - 기타	Cat 0	0
5101.21.00	- - 깎은 양모	Cat 0	0
5101.29.00	- - 기타	Cat 0	0
5101.30.00	- 탄화처리한 것	Cat 0	0
5102.11.00	- - 캐시미어 산양의 것	Cat 0	0
5102.19.00	- - 기타	Cat 0	0
5102.20.00	- 동물의 거친 털	Cat 0	0
5103.10.00	-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Cat 0	0
5103.20.00	-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Cat 0	0
5103.30.00	-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Cat 0	0
5104.00.00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Cat 0	0
5105.10.00	- 카드(card)한 양모	Cat 0	0
5105.21.00	- -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5105.29.00	- - 기타	Cat 0	0
5105.31.00	- - 캐시미어 산양의 것	Cat 0	0
5105.39.00	- - 기타	Cat 0	0
5105.40.00	-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106.1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Cat 0	1
5106.2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Cat 0	1
5107.1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Cat 0	1
5107.20.00	- 양모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Cat 0	1/0
5108.10.00	- 카드(card)한 것	Cat 0	1
5108.20.00	- 코움(comb)한 것	Cat 0	1
5109.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Cat 0	1
5109.90.00	- 기타	Cat 0	1
5110.00.0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 없다]	Cat 0	1
5111.11.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인 것	Cat 0	1/0
5111.19.00	- - 기타	Cat 0	0
5111.20.0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111.30.0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111.90.00	- 기타	Cat 0	0
5112.11.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Cat 0	0
5112.19.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112.19.90	- - - 기타	Cat 0	0
5112.20.0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112.30.00	- 기타(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112.90.00	- 기타	Cat 0	0
5113.00.00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1.00.00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2.10.00	- 실(yarn)의 웨이스트(waste)[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Cat 0	0
5202.91.00	- - 가닛스톡(garnetted stock)	Cat 0	0
5202.99.00	- - 기타	Cat 0	0
5203.00.00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4.11.10	- - - 표백하지 않은 것	Cat 3	5
5204.11.90	- - - 기타	Cat 3	5
5204.19.00	- - 기타	Cat 3	5
5204.20.00	- 소매용	Cat 0	0
5205.11.00	-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Cat 0	0
5205.12.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Cat 0	0
5205.13.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Cat 0	0
5205.14.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Cat 0	0
5205.15.00	-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5205.21.00	-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Cat 3	5
5205.22.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Cat 3	5
5205.23.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Cat 3	5
5205.24.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Cat 3	5
5205.26.00	- -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Cat 3	5
5205.27.00	- -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Cat 3	5
5205.28.00	- -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120수 초과)	Cat 3	5
5205.3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Cat 0	0
5205.3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Cat 0	0
5205.3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52수 이하)	Cat 0	0
5205.3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Cat 0	0
5205.35.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Cat 0	0
5205.4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Cat 3	5
5205.4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Cat 3	5
5205.4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Cat 3	5
5205.4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Cat 3	5
5205.46.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Cat 3	5
5205.47.00	-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Cat 3	5
5205.48.00	- -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20수 초과)	Cat 3	5
5206.11.00	-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Cat 0	0
5206.12.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Cat 0	0
5206.13.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Cat 0	0
5206.14.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Cat 0	0
5206.15.00	-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Cat 0	0
5206.21.00	-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Cat 0	0
5206.22.00	-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Cat 0	0
5206.23.00	-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Cat 0	0
5206.24.00	-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Cat 0	0
5206.25.00	-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Cat 0	0
5206.3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Cat 0	0
5206.3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Cat 0	0
5206.3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52수 이하)	Cat 0	0
5206.3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Cat 0	0
5206.35.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Cat 0	0
5206.41.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Cat 0	0
5206.42.00	-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Cat 0	0
5206.43.00	-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52수 이하)	Cat 15	5
5206.44.00	-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Cat 0	0
5206.45.00	-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Cat 0	0
5207.10.00	- 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Cat 0	0
5207.90.00	- 기타	Cat 0	0
5208.11.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5208.12.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5208.13.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8.1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208.21.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8.22.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8.23.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8.29.00	- - 그 밖의 직물	Cat 3	5
5208.31.10	- - - 보일	Cat 0	0
5208.31.90	- - - 기타	Cat 0	0
5208.32.00	-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208.33.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8.3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208.41.10	- - - 이카트 직물	Cat 0	0
5208.41.90	- - - 기타	Cat 0	0
5208.42.10	- - - 이카트 직물	Cat 0	0
5208.42.90	- - - 기타	Cat 0	0
5208.43.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8.4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208.51.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208.51.90	- - - 기타	Cat 0	0
5208.52.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208.52.90	- - - 기타	Cat 0	0
5208.59.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208.59.20	- - - 그 밖의 것(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8.59.90	- - - 기타	Cat 0	0
5209.11.10	- - - 덕(duck)과 캔버스	Cat 0	0
5209.11.90	- - - 기타	Cat 0	0
5209.12.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9.1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209.21.00	- -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09.22.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9.2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209.31.00	- -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09.32.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9.3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209.41.00	- -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09.42.00	- - 데님(denim)	Cat 0	0
5209.43.00	-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09.4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209.51.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209.51.90	- - - 기타	Cat 0	0
5209.52.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209.52.90	- - - 기타	Cat 0	0
5209.59.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209.59.90	- - - 기타	Cat 0	0
5210.11.00	- -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10.1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210.21.00	- -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10.2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210.31.00	- -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10.32.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10.3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210.41.10	- - - 이카트 직물	Cat 0	0
5210.41.90	- - - 기타	Cat 0	0
5210.4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5210.51.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210.51.90	- - - 기타	Cat 0	0
5210.59.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210.59.90	- - - 기타	Cat 0	0
5211.11.00	- -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11.12.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11.1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211.20.00	- 표백한 것	Cat 0	0
5211.31.00	- - 평직물(平織物)	Cat 0	0
5211.32.00	-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11.3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211.41.10	- - - 이카트 직물	Cat 0	0
5211.41.90	- - - 기타	Cat 0	0
5211.42.00	- - 데님(denim)	Cat 0	0
5211.43.00	-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211.4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211.51.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211.51.90	- - - 기타	Cat 0	0
5211.52.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211.52.90	- - - 기타	Cat 0	0
5211.59.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211.59.90	- - - 기타	Cat 0	0
5212.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5212.12.00	- - 표백한 것	Cat 0	0
5212.13.00	- - 염색한 것	Cat 0	0
5212.14.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212.15.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212.15.90	- - - 기타	Cat 0	0
5212.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5212.22.00	- - 표백한 것	Cat 0	0
5212.23.00	- - 염색한 것	Cat 0	0
5212.24.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212.25.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212.25.90	- - - 기타	Cat 0	0
5301.10.00	-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Cat 0	0
5301.21.00	-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Cat 0	0
5301.29.00	- - 기타	Cat 0	0
5301.30.00	- 아마 토우(tow)나 웨이스트(waste)	Cat 0	0
5302.10.00	-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Cat 0	0
5302.90.00	- 기타	Cat 0	0
5303.10.00	-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생 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303.90.00	- 기타	Cat 0	0
5305.00.10	- 사이잘(sisal)마와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 웨이스트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Cat 0	0
5305.00.21	- - 코코넛 섬유(생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305.00.22	- - 그 밖의 코코넛 섬유	Cat 0	0
5305.00.23	- - 아바카 섬유	Cat 0	0
5305.00.90	- 기타	Cat 0	0
5306.10.00	- 단사	Cat 0	0
5306.20.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Cat 0	0
5307.10.00	- 단사	Cat 0	0
5307.20.0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Cat 0	0
5308.10.00	- 코이어(coir)사	Cat 0	0
5308.20.00	- 대마사	Cat 0	0
5308.90.10	- - 종이실(paper yarn)	Cat 0	0
5308.90.90	- - 기타	Cat 0	0
5309.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309.19.00	- - 기타	Cat 0	0
5309.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309.29.00	- - 기타	Cat 0	0
5310.10.10	- - 평직물(平織物)	Cat 0	0
5310.10.9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5310.90.00	- 기타	Cat 0	0
5311.00.10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5311.00.20	- 아바카 섬유	Cat 0	0
5311.00.90	- 기타	Cat 0	0
5401.10.10	- - 소매용	Cat 0	0
5401.10.90	- - 기타	Cat 0	0
5401.20.10	- - 소매용	Cat 0	0
5401.20.90	- - 기타	Cat 0	0
5402.11.00	- - 아라미드의 것	Cat 0	0
5402.19.00	- - 기타	Cat 0	0
5402.20.0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5402.31.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402.32.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402.33.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3	5
5402.34.00	- - 폴리프로필렌의 것	Cat 0	0
5402.39.00	- - 기타	Cat 0	0
5402.44.10	- - -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3	5/0
5402.44.20	- - - 폴리프로필렌의 것	Cat 0	0
5402.44.90	- - - 기타	Cat 3	5/0
5402.45.00	- -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402.46.00	-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402.47.00	-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5402.48.00	-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402.49.00	- - 기타	Cat 3	5/0
5402.51.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402.52.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402.53.00	- - 폴리프로필렌의 것	Cat 0	0
5402.59.00	- - 기타	Cat 0	0
5402.61.0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402.62.00	- -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402.63.00	- - 폴리프로필렌의 것	Cat 0	0
5402.69.00	- - 기타	Cat 0	0
5403.10.00	-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403.31.10	- - - 텍스처드사	Cat 0	0
5403.31.90	- - - 기타	Cat 0	0
5403.32.10	- - - 텍스처드사	Cat 0	0
5403.32.90	- - - 기타	Cat 0	0
5403.33.10	- - - 텍스처드사	Cat 0	0
5403.33.90	- - - 기타	Cat 0	0
5403.39.10	- - - 텍스처드사	Cat 0	0
5403.39.90	- - - 기타	Cat 0	0
5403.41.10	- - - 텍스처드사	Cat 0	0
5403.41.90	- - - 기타	Cat 0	0
5403.42.10	- - - 텍스처드사	Cat 0	0
5403.42.90	- - - 기타	Cat 0	0
5403.49.10	- - - 텍스처드사	Cat 0	0
5403.49.90	- - - 기타	Cat 0	0
5404.11.00	- - 탄성사	Cat 0	0
5404.12.00	-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404.19.00	- - 기타	Cat 0	0
5404.90.00	- 기타	Cat 0	0
5405.00.00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406.00.00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5407.10.21	- - -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5407.10.29	- - - 기타	Cat 0	0
5407.10.91	- - -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5407.10.99	- - - 기타	Cat 0	0
5407.20.00	-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5407.30.00	-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Cat 0	0
5407.41.10	- - - 방수포(tarpaulin) 보강 재료용으로 적합한 꼬임이 없는 필라멘트사로 만든 나일론 메쉬(mesh) 직물	Cat 0	0
5407.41.90	- - - 기타	Cat 0	0
5407.42.00	- - 염색한 것	Cat 0	0
5407.4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407.44.00	- - 날염한 것	Cat 0	0
5407.5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407.52.00	- - 염색한 것	Cat 0	0
5407.5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407.54.00	- - 날염한 것	Cat 0	0
5407.61.10	-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407.61.90	- - - 기타	Cat 0	0
5407.69.10	-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407.69.90	- - - 기타	Cat 0	0
5407.7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407.72.00	- - 염색한 것	Cat 0	0
5407.7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407.74.00	- - 날염한 것	Cat 0	0
5407.8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407.82.00	- - 염색한 것	Cat 0	0
5407.8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407.84.00	- - 날염한 것	Cat 0	0
5407.9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407.92.00	- - 염색한 것	Cat 0	0
5407.9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407.94.00	- - 날염한 것	Cat 0	0
5408.10.10	- -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5408.10.90	- - 기타	Cat 0	0
5408.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408.22.00	- - 염색한 것	Cat 0	0
5408.2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408.24.00	- - 날염한 것	Cat 0	0
5408.3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408.32.00	- - 염색한 것	Cat 0	0
5408.3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408.34.00	- - 날염한 것	Cat 0	0
5501.1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01.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501.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01.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Cat 0	0
5501.90.00	- 기타	Cat 0	0
5502.10.00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Cat 0	0
5502.90.00	- 기타	Cat 0	0
5503.11.00	- - 아라미드의 것	Cat 0	0
5503.19.00	- - 기타	Cat 0	0
5503.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503.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03.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Cat 0	0
5503.90.10	- - 폴리비닐알코올의 것	Cat 0	0
5503.90.90	- - 기타	Cat 0	0
5504.10.0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Cat 0	0
5504.90.00	- 기타	Cat 0	0
5505.10.00	- 합성섬유의 것	Cat 0	0
5505.20.00	- 재생·반(半)합성 섬유의 것	Cat 0	0
5506.10.0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Cat 0	0
5506.20.00	- 폴리에스테르의 것	Cat 0	0
5506.30.0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Cat 0	0
5506.40.00	- 폴리프로필렌의 것	Cat 0	0
5506.90.00	- 기타	Cat 0	0
5507.00.0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508.10.10	- - 소매용	Cat 0	0
5508.10.90	- - 기타	Cat 0	0
5508.20.10	- - 소매용	Cat 0	0
5508.20.9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5509.11.00	- - 단사	Cat 0	0
5509.1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Cat 0	0
5509.21.00	- - 단사	Cat 0	0
5509.2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Cat 0	0
5509.31.00	- - 단사	Cat 0	0
5509.3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Cat 0	0
5509.41.00	- - 단사	Cat 0	0
5509.4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Cat 0	0
5509.5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Cat 0	0
5509.52.10	- - - 단사	Cat 0	0
5509.52.90	- - - 기타	Cat 0	0
5509.53.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Cat 0	0
5509.59.00	- - 기타	Cat 0	0
5509.6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Cat 0	0
5509.62.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Cat 0	0
5509.69.00	- - 기타	Cat 0	0
5509.9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Cat 0	0
5509.92.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	Cat 0	0
5509.99.00	- - 기타	Cat 0	0
5510.11.00	- - 단사	Cat 0	0
5510.12.00	-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Cat 0	0
5510.20.00	-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510.30.00	- 그 밖의 실(주로 또는 전적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510.90.00	- 그 밖의 실	Cat 0	0
5511.10.10	- - 편물실·뜨개질 실과 자수실	Cat 0	0
5511.10.90	- - 기타	Cat 0	0
5511.20.10	- - 편물실·뜨개질 실과 자수실	Cat 0	0
5511.20.90	- - 기타	Cat 0	0
5511.30.0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Cat 0	0
5512.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2.19.00	- - 기타	Cat 15	5
5512.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2.29.00	- - 기타	Cat 0	0
5512.9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2.99.00	- - 기타	Cat 0	0
5513.1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물(平織物)로 한정한다]	Cat 0	0
5513.1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물(綾織物)[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Cat 0	0
5513.1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Cat 0	0
5513.1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513.2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물(平織物)로 한정한다]	Cat 0	0
5513.2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Cat 0	0
5513.2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513.3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물(平織物)로 한정한다]	Cat 0	0
5513.3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513.4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물(平織物)로 한정한다]	Cat 0	0
5513.4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514.1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물(平織物)로 한정한다]	Cat 0	0
5514.1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물(綾織物)[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Cat 0	0
5514.1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514.2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물(平織物)로 한정한다]	Cat 0	0
5514.2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물(綾織物)[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Cat 0	0
5514.2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Cat 0	0
5514.2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5514.30.0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514.41.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평직물(平織物)로 한정한다]	Cat 0	0
5514.42.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물(綾織物)[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Cat 0	0
5514.43.00	-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Cat 0	0
5514.49.00	- - 그 밖의 직물	Cat 0	0
5515.1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Cat 0	0
5515.12.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Cat 0	0
5515.13.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Cat 0	0
5515.19.00	- - 기타	Cat 0	0
5515.2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Cat 0	0
5515.22.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Cat 0	0
5515.29.00	- - 기타	Cat 0	0
5515.91.00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Cat 0	0
5515.99.10	- - - 주로 또는 전적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Cat 0	0
5515.99.90	- - - 기타	Cat 0	0
5516.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6.12.00	- - 염색한 것	Cat 0	0
5516.1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516.14.00	- - 날염한 것	Cat 0	0
5516.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6.22.00	- - 염색한 것	Cat 0	0
5516.2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516.24.00	- - 날염한 것	Cat 0	0
5516.3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6.32.00	- - 염색한 것	Cat 0	0
5516.3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516.34.00	- - 날염한 것	Cat 0	0
5516.4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6.42.00	- - 염색한 것	Cat 0	0
5516.4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516.44.00	- - 날염한 것	Cat 0	0
5516.9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5516.92.00	- - 염색한 것	Cat 0	0
5516.9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5516.94.00	- - 날염한 것	Cat 0	0
5601.2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601.22.10	- - - 포장한 담배 토	Cat 0	0
5601.22.90	- - - 기타	Cat 0	0
5601.29.00	- - 기타	Cat 0	0
5601.30.10	- - 폴리아미드 섬유 플록(flock)	Cat 0	0
5601.30.20	- - 폴리프로필렌 섬유 플록(flock)	Cat 0	0
5601.30.90	- - 기타	Cat 0	0
5602.10.00	-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Cat 0	0
5602.2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5602.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602.90.00	- 기타	Cat 0	0
5603.11.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Cat 15	5
5603.12.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	Cat 15	5
5603.13.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것	Cat 0	0
5603.14.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Cat 15	5
5603.91.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Cat 15	5
5603.92.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을 초과하고 70그램 이하인 것	Cat 0	0
5603.93.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을 초과하고 150그램 이하인 것	Cat 0	0
5603.94.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Cat 15	5
5604.10.00	-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604.90.10	- - 모조 켓거트(견사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604.90.20	- - 고무를 침투한 방직용 섬유 사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5604.90.30	-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 · 나일론의 것 또는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또는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604.90.90	- - 기타	Cat 0	0
5605.00.00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gimped)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또는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 또는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 · 스트립(strip) 또는 가루 모양으로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606.00.00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 yarn)	Cat 0	0
5607.21.00	- - 포장용 끈	Cat 0	0
5607.29.00	- - 기타	Cat 0	0
5607.41.00	- - 포장용 끈	Cat 0	0
5607.49.00	- - 기타	Cat 0	0
5607.50.10	- - 브이벨트 코드(cord)(레소르시놀 포름알데히드 처리를 한 인조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폴리아미드와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실로서 1만데시텍스를 초과하는 것(실링 펌프 · 밸브와 이와 유사한 제품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5607.50.90	- - 기타	Cat 0	0
5607.90.10	- - 재생 · 반(半)합성 섬유의 것	Cat 0	0
5607.90.21	- - - 아바카[(마닐라삼이나 마닐라삼 파초기(Musa textilis Nee))의 것	Cat 0	0
5607.90.22	- - - 그 밖의 경화(纒) 섬유의 것	Cat 0	0
5607.90.30	- - 제5303호의 황마 또는 그 밖의 방직용 인피섬유의 것	Cat 0	0
5607.90.90	- - 기타	Cat 0	0
5608.11.00	- - 제품으로 된 어망	Cat 0	0
5608.19.20	- - - 망태 가방	Cat 0	0
5608.19.90	- - - 기타	Cat 0	0
5608.90.10	- - 망태 가방	Cat 15	5
5608.90.90	- - 기타	Cat 15	5
5609.00.00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실 ·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 ·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또는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701.10.10	- - 기도용 깔개	Cat 0	0
5701.10.90	- - 기타	Cat 0	0
5701.90.11	- - - 기도용 깔개	Cat 0	0
5701.90.19	- - - 기타	Cat 0	0
5701.90.20	-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701.90.91	- - - 기도용 깔개	Cat 0	0
5701.90.99	- - - 기타	Cat 0	0
5702.10.00	- 켈렘(kelem) · 슈맥(schumack) · 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	Cat 0	0
5702.20.00	- 코코넛 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깔개	Cat 0	0
5702.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5702.3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702.39.10	-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702.39.20	- -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702.39.90	- - - 기타	Cat 0	0
5702.41.10	- - - 기도용 깔개	Cat 0	0
5702.41.90	- - - 기타	Cat 0	0
5702.42.10	- - - 기도용 깔개	Cat 0	0
5702.42.90	- - - 기타	Cat 0	0
5702.49.11	- - - - 기도용 깔개	Cat 0	0
5702.49.19	- - - - 기타	Cat 0	0
5702.49.20	- -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702.49.91	- - - - 기도용 깔개	Cat 0	0
5702.49.99	- - - - 기타	Cat 0	0
5702.50.1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702.50.20	-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702.50.90	- - 기타	Cat 0	0
5702.91.10	- - - 기도용 깔개	Cat 0	0
5702.91.90	- - - 기타	Cat 0	0
5702.92.10	- - - 기도용 깔개	Cat 0	0
5702.92.90	- - - 기타	Cat 0	0
5702.99.11	- - - - 기도용 깔개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5702.99.19	- - - - 기타	Cat 0	0
5702.99.20	- - - 황마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702.99.91	- - - - 기도용 깔개	Cat 0	0
5702.99.99	- - - - 기타	Cat 0	0
5703.10.10	- - 제8702호·제8703호나 제8704호의 자동차용 바닥 깔개	SL	20
5703.10.20	- - 기도용 깔개	Cat 0	0
5703.10.30	- - 제8702호·제8703호나 제8704호의 자동차용 양탄자	SL	5
5703.10.90	- - 기타	SL	15
5703.20.10	- - 기도용 깔개	Cat 0	0
5703.20.90	- - 기타	Cat 0	0
5703.30.10	- - 기도용 깔개	Cat 0	0
5703.30.90	- - 기타	Cat 0	0
5703.90.11	- - - 기도용 깔개	Cat 0	0
5703.90.19	- - - 기타	Cat 0	0
5703.90.21	- - - 제8702호·제8703호나 제8704호의 자동차용 바닥 깔개	SL	20
5703.90.22	- - - 제8702호·제8703호나 제8704호의 자동차용 양탄자	SL	5
5703.90.29	- - - 기타	SL	15
5703.90.91	- - - 제8702호·제8703호나 제8704호의 자동차용 바닥 깔개	SL	20
5703.90.92	- - - 기도용 깔개	SL	15
5703.90.93	- - - 제8702호·제8703호나 제8704호의 자동차용 양탄자	SL	5
5703.90.99	- - - 기타	SL	15
5704.10.0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704.20.0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 1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704.90.00	- 기타	Cat 0	0
5705.00.11	- - 기도용 깔개	SL	15
5705.00.19	- - 기타	SL	15
5705.00.21	- - 부직포로 만든 바닥 깔개(제8702호·제8703호나 제8704호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SL	15
5705.00.29	- - 기타	SL	15
5705.00.91	- - 기도용 깔개	SL	15
5705.00.92	- - 부직포로 만든 바닥 깔개(제8702호·제8703호나 제8704호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SL	15
5705.00.99	- - 기타	SL	15
5801.10.10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1.10.90	- - 기타	Cat 0	0
5801.21.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1.21.90	- - - 기타	Cat 0	0
5801.22.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1.22.90	- - - 기타	Cat 0	0
5801.23.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1.23.90	- - - 기타	Cat 0	0
5801.26.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1.26.90	- - - 기타	Cat 0	0
5801.27.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1.27.90	- - - 기타	Cat 0	0
5801.31.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1.31.90	- - - 기타	Cat 0	0
5801.32.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1.32.90	- - - 기타	Cat 0	0
5801.33.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1.33.90	- - - 기타	Cat 0	0
5801.36.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1.36.90	- - - 기타	Cat 0	0
5801.37.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1.37.90	- - - 기타	Cat 0	0
5801.90.11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1.90.19	- - - 기타	Cat 0	0
5801.90.91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1.90.99	- - - 기타	Cat 0	0
5802.11.00	- - 표백하지 않은 것	Cat 0	0
5802.19.00	- - 기타	Cat 0	0
5802.20.1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5802.20.90	- - 기타	Cat 0	0
5802.30.10	- - 침투·도포 또는 피복한 것	Cat 0	0
5802.30.20	- - 면이나 인조 섬유로 만든 직물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5802.30.30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직물	Cat 0	0
5802.30.90	- - 기타	Cat 0	0
5803.00.10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803.00.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803.00.3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5803.00.90	- 기타	Cat 0	0
5804.10.11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4.10.19	- - - 기타	Cat 0	0
5804.10.21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4.10.29	- - - 기타	Cat 0	0
5804.10.91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4.10.99	- - - 기타	Cat 0	0
5804.21.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4.21.90	- - - 기타	Cat 0	0
5804.29.10	- - -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	Cat 0	0
5804.29.90	- - - 기타	Cat 0	0
5804.30.00	- 손으로 만든 레이스	Cat 0	0
5805.00.10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805.00.90	- 기타	Cat 0	0
5806.10.10	- -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5806.10.2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806.10.90	- - 기타	Cat 0	0
5806.20.10	- - 스포츠 장비 그림을 싸는데 사용하는 스포츠 테이프	Cat 0	0
5806.20.90	- - 기타	Cat 0	0
5806.31.10	- - - 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용 잉크 리본 제조에 적합한 세폭(細幅)직물	Cat 0	0
5806.31.20	- - - 전기절연지용으로 뒷면을 보강한 것	Cat 0	0
5806.31.30	- - - 슬라이드패스너(slide fastener) 제작용 리본(폭이 1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806.31.90	- - - 기타	Cat 0	0
5806.32.10	- - - 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용 잉크 리본 제조에 적합한 세폭(細幅)직물, 좌석안전띠 직물	Cat 0	0
5806.32.40	- - - 전기절연지용으로 뒷면을 보강한 것	Cat 0	0
5806.32.50	- - - 슬라이드패스너(slide fastener) 제작용 리본(폭이 1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806.32.90	- - - 기타	Cat 0	0
5806.39.10	- - -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5806.39.91	- - - - 전기절연지용으로 뒷면을 보강한 것	Cat 0	0
5806.39.92	- - - - 타자기나 이와 유사한 기계용 잉크 리본 제조에 적합한 세폭(細幅)직물	Cat 0	0
5806.39.93	- - - - 슬라이드패스너(slide fastener) 제작용 리본(폭이 1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806.39.99	- - - - 기타	Cat 0	0
5806.40.00	-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불덕)	Cat 0	0
5807.10.00	- 직조한 것	Cat 15	5
5807.90.10	- - 부직포로 만든 것	Cat 0	0
5807.90.90	- - 기타	Cat 0	0
5808.10.10	- - 고무실과 결합된 것	Cat 0	0
5808.10.90	- - 기타	Cat 0	0
5808.90.10	- - 고무실과 결합된 것	Cat 0	0
5808.90.90	- - 기타	Cat 0	0
5809.00.00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	Cat 0	0
5810.10.00	-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5810.9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5810.9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810.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5811.00.10	-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것	Cat 0	0
5811.00.90	- 기타	Cat 0	0
5901.10.00	-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Cat 0	0
5901.90.10	- - 투사포(tracing cloth)	Cat 0	0
5901.90.20	- - 회화용 캔버스	Cat 0	0
5901.90.90	- - 기타	Cat 0	0
5902.10.11	- - - 나일론6 사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5902.10.19	- - - 기타	Cat 0	0
5902.10.91	- - - 나일론6 사의 것	Cat 0	0
5902.10.99	- - - 기타	Cat 0	0
5902.20.20	- - 고무 가공을 한 채이퍼 직물(Chafer fabric)	Cat 0	0
5902.20.91	- - - 면을 함유한 것	Cat 0	0
5902.20.99	- - - 기타	Cat 0	0
5902.90.10	- - 고무 가공을 한 채이퍼 직물(Chafer fabric)	Cat 0	0
5902.90.90	- - 기타	Cat 0	0
5903.10.10	인터라이닝	Cat 15	5
5903.10.90	기타	Cat 0	0
5903.20.00	- 폴리우레탄의 것	Cat 15	5
5903.90.10	-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캔버스 타입의 직물	Cat 15	5
5903.90.90	- - 기타	Cat 15	5
5904.10.00	- 리놀륨	Cat 15	5
5904.90.00	- 기타	Cat 15	5
5905.00.10	- 양모 또는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것	Cat 0	0
5905.00.90	- 기타	Cat 0	0
5906.10.00	-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Cat 0	0
5906.91.00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Cat 0	0
5906.99.10	- - - 병원에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고무가공을 한 시트	Cat 0	0
5906.99.90	- - - 기타	Cat 0	0
5907.00.10	- 오일이나 오일을 기본 재료로 만든 조제품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Cat 0	0
5907.00.30	- 내화성 물질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Cat 0	0
5907.00.40	- 전체표면이 섬유의 플록으로 피복된 벨벳 플록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Cat 0	0
5907.00.50	- 왁스·타르·역청이나 이와 유사한 물질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Cat 0	0
5907.00.60	- 그 밖의 물질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직물	Cat 0	0
5907.00.90	- 기타	Cat 0	0
5908.00.10	- 심지어, 백열가스 맨틀(mantle)	Cat 0	0
5908.00.90	- 기타	Cat 0	0
5909.00.10	- 소방 호스	Cat 0	0
5909.00.90	- 기타	Cat 0	0
5910.00.00	전동(transmission)용 또는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 또는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질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5911.10.00	-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와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가죽이나 그 밖의 물품을 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물질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Cat 0	0
5911.20.00	-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5911.31.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Cat 0	0
5911.32.00	-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Cat 0	0
5911.40.00	-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Cat 0	0
5911.90.10	- - 개스켓(gasket)과 실(seals)	Cat 0	0
5911.90.90	- - 기타	Cat 0	0
6001.10.00	- 롱파일(long pile) 편물	Cat 15	5
6001.2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001.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001.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001.9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001.92.20	- - - 파일 편물(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 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0이며, 페인트 롤러 제조용에 적합한 것으로, 폭이 63.5밀리미터 이상이고 76.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001.92.30	- - - 탄성사나 고무실을 함유한 것	Cat 0	0
6001.92.90	- - - 기타	Cat 0	0
6001.99.11	- - - - 탄성사나 고무실을 함유한 것	Cat 0	0
6001.99.19	- - - - 기타	Cat 0	0
6001.99.90	- - - 기타	Cat 0	0
6002.40.0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Cat 0	0
6002.90.00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6003.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003.20.00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003.3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003.40.00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003.90.00	- 기타	Cat 0	0
6004.10.10	-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0 이하인 것	Cat 0	0
6004.10.90	- - 기타	Cat 15	5
6004.90.00	- 기타	Cat 0	0
6005.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6005.22.00	- - 염색한 것	Cat 0	0
6005.2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6005.24.00	- - 날염한 것	Cat 0	0
6005.35.00	-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직물	Cat 0	0
6005.36.10	- - - 폴리에스터와 폴리부틸렌 텔레프탈레이트의 수영복용 편물(전중량 중 폴리에스터 비중이 높은 것)	Cat 0	0
6005.36.90	- - - 기타	Cat 0	0
6005.37.10	- - - 폴리에스터와 폴리부틸렌 텔레프탈레이트의 수영복용 편물(전중량 중 폴리에스터 비중이 높은 것)	Cat 0	0
6005.37.90	- - - 기타	Cat 0	0
6005.38.10	- - - 폴리에스터와 폴리부틸렌 텔레프탈레이트의 수영복용 편물(전중량 중 폴리에스터 비중이 높은 것)	Cat 0	0
6005.38.90	- - - 기타	Cat 0	0
6005.39.10	- - - 폴리에스터와 폴리부틸렌 텔레프탈레이트의 수영복용 편물(전중량 중 폴리에스터 비중이 높은 것)	Cat 0	0
6005.39.90	- - - 기타	Cat 0	0
6005.4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0	0
6005.42.00	- - 염색한 것	Cat 0	0
6005.4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6005.44.00	- - 날염한 것	Cat 0	0
6005.90.1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005.90.90	- - 기타	Cat 0	0
6006.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006.21.00	-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Cat 15	5
6006.22.00	- - 염색한 것	Cat 0	0
6006.23.00	-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Cat 0	0
6006.24.00	- - 날염한 것	Cat 0	0
6006.31.10	- - - 모자이크 타일의 뒷면 재료용 나일론 섬유 메쉬	Cat 0	0
6006.31.2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Cat 0	0
6006.31.90	- - - 기타	Cat 0	0
6006.32.10	- - - 모자이크 타일의 뒷면 재료용 나일론 섬유 메쉬	Cat 0	0
6006.32.2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Cat 0	0
6006.32.90	- - - 기타	Cat 0	0
6006.33.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Cat 0	0
6006.33.90	- - - 기타	Cat 0	0
6006.34.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Cat 0	0
6006.34.90	- - - 기타	Cat 0	0
6006.41.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Cat 0	0
6006.41.90	- - - 기타	Cat 0	0
6006.42.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Cat 0	0
6006.42.90	- - - 기타	Cat 0	0
6006.43.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Cat 0	0
6006.43.90	- - - 기타	Cat 0	0
6006.44.10	- - - 탄성제품(고무사와 결합한 것)	Cat 0	0
6006.44.90	- - - 기타	Cat 0	0
6006.90.00	- 기타	Cat 0	0
6101.20.00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1.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1.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2.1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2.20.00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2.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2.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3.10.00	- 슈트	Cat 0	0
6103.22.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3.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3.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6103.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3.32.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3.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3.39.10	- - - 라미(ramie) · 린넨(linen)이나 실크로 만든 것	Cat 0	0
6103.39.90	- - - 기타	Cat 0	0
6103.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3.42.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3.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3	5
6103.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1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19.20	-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4.19.90	- - - 기타	Cat 0	0
6104.22.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4.2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3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4.32.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4.3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4.42.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4.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44.00	- -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4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5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4.52.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4.5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5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6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4.62.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4.6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4.6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5.10.00	- 면으로 만든 것	Cat 3	5
6105.20.1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3	5
6105.20.20	- -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5.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6.10.00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6.2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15	5/0
6106.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7.1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7.1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7.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7.2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7.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7.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7.9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7.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11.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19.20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08.19.30	-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8.19.40	- - -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108.19.90	- - - 기타	Cat 0	0
6108.2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8.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15	5
6108.3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8.3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9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08.9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8.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09.10.10	- - 남성용이나 소년용	Cat 0	0
6109.10.20	- - 여성용이나 소녀용	Cat 0	0
6109.90.10	- - 남성용이나 소년용[라미(ramie) · 린넨(linen)이나 실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6109.90.20	- - 남성용이나 소년용(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0
6109.90.30	- - 여성용이나 소녀용	Cat 3	5/0
6110.11.00	- - 양모로 만든 것	Cat 0	0
6110.12.00	- - 캐시미어 산양의 것	Cat 0	0
6110.19.00	- - 기타	Cat 0	0
6110.20.00	- 면으로 만든 것	Cat 10	5
6110.3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0.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1.20.00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11.30.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1.90.1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11.90.90	- - 기타	Cat 0	0
6112.1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12.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2.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2.20.00	- 스키슈트	Cat 0	0
6112.31.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2.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2.41.10	- - - 유방절제술 수영복(유방수술 받은자용 수영복)	Cat 0	0
6112.41.90	- - - 기타	Cat 0	0
6112.49.10	- - - 유방절제술 수영복(유방수술 받은자용 수영복)	Cat 0	0
6112.49.90	- - - 기타	Cat 0	0
6113.00.10	- 잠수복(웨트 슈트)	Cat 0	0
6113.00.30	- 방화복	Cat 0	0
6113.00.40	- 그 밖의 보호용 작업 의류	Cat 0	0
6113.00.90	- 기타	Cat 0	0
6114.20.00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14.30.20	- - 방화복	Cat 0	0
6114.30.90	- - 기타	Cat 0	0
6114.90.1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14.90.90	- - 기타	Cat 0	0
ex1 6115.10.10	여성용으로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Cat 15	1
ex2 6115.10.10	기타	Cat 0	0
ex1 6115.10.90	여성용으로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Cat 15	1
ex2 6115.10.90	기타	Cat 0	0/1
6115.21.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115.2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115.29.10	-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15.29.90	- - - 기타	Cat 0	0
6115.30.10	- - 면으로 만든 것	Cat 15	5
6115.30.90	- - 기타	Cat 15	5
6115.94.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15.95.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15.96.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5.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15	5
6116.10.10	- - 잠수부용 장갑	Cat 0	0
6116.10.90	- - 기타	Cat 0	0
6116.9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116.92.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16.9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6.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117.10.1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117.10.90	- - 기타	Cat 0	0
6117.80.11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15	5
6117.80.19	- - - 기타	Cat 15	5
6117.80.20	- - 손목 밴드·무릎 밴드나 발목 밴드	Cat 15	5
6117.80.90	- - 기타	Cat 15	5
6117.90.00	- 부분품	Cat 15	5
6201.1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1.12.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6201.13.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1.19.10	---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1.19.20	--- 라미(ramie)로 만든 것	Cat 0	0
6201.19.90	--- 기타	Cat 0	0
6201.9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1.92.00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1.93.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1.99.10	---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1.99.20	--- 라미(ramie)로 만든 것	Cat 0	0
6201.99.90	--- 기타	Cat 0	0
6202.1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3	5
6202.12.00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2.13.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2.19.10	---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2.19.20	--- 라미(ramie)로 만든 것	Cat 0	0
6202.19.90	--- 기타	Cat 0	0
6202.9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2.92.00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2.93.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2.99.10	---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2.99.20	--- 라미(ramie)로 만든 것	Cat 0	0
6202.99.90	--- 기타	Cat 0	0
6203.1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3	5
6203.12.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3.19.11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3.19.19	---- 기타	Cat 0	0
6203.19.21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3.19.29	---- 기타	Cat 0	0
6203.19.90	--- 기타	Cat 0	0
6203.22.10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3.22.90	--- 기타	Cat 0	0
6203.23.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3.29.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3.29.90	--- 기타	Cat 0	0
6203.3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3	5
6203.32.10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10	5
6203.32.90	--- 기타	Cat 15	5
6203.33.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3.39.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3.4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3	5
6203.42.10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Cat 0	0
6203.42.90	--- 기타	Cat 0	0
6203.43.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3.49.10	---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3.49.90	--- 기타	Cat 0	0
6204.1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3	5
6204.12.10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4.12.90	--- 기타	Cat 0	0
6204.13.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4.19.11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4.19.19	---- 기타	Cat 0	0
6204.19.90	--- 기타	Cat 0	0
6204.2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4.22.10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4.22.90	--- 기타	Cat 0	0
6204.23.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4.29.10	---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4.29.90	--- 기타	Cat 0	0
6204.31.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3	5
6204.32.10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3	5
6204.32.90	--- 기타	Cat 3	5
6204.33.0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4.39.11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4.39.19	---- 기타	Cat 0	0
6204.39.90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6204.4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4.42.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4.42.90	- - - 기타	Cat 0	0
6204.4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4.44.00	-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4.49.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4.49.90	- - - 기타	Cat 0	0
6204.5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3	5
6204.52.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4.52.90	- - - 기타	Cat 0	0
6204.5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4.59.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4.59.90	- - - 기타	Cat 0	0
6204.61.0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3	5
6204.62.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3	5/0
6204.6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4.6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5.20.10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3	5
6205.20.20	- - 바롱 타갈로그	Cat 3	5
6205.20.90	- - 기타	Cat 3	5
6205.30.10	- - 바롱 타갈로그	Cat 0	0
6205.30.90	- - 기타	Cat 0	0
6205.90.10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5.90.91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5.90.92	- - - 바롱 타갈로그	Cat 0	0
6205.90.99	- - - 기타	Cat 0	0
6206.10.10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6.10.90	- - 기타	Cat 0	0
6206.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6.30.10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6.30.90	- - 기타	Cat 0	0
6206.40.0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6.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7.1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7.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7.21.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7.21.90	- - - 기타	Cat 0	0
6207.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7.29.10	- - - 견으로 만든 것	Cat 0	0
6207.29.90	- - - 기타	Cat 0	0
6207.9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07.99.10	-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7.99.90	- - - 기타	Cat 0	0
6208.11.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8.1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8.21.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8.21.90	- - - 기타	Cat 0	0
6208.22.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08.29.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3	5
6208.29.90	- - - 기타	Cat 3	5
6208.91.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8.91.90	- - - 기타	Cat 0	0
6208.92.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08.92.90	- - - 기타	Cat 0	0
6208.99.10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08.99.90	- - - 기타	Cat 0	0
6209.20.30	- - 티셔츠, 셔츠, 파자마와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6209.20.40	- - 슈트, 팬츠와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6209.20.90	- - 기타	Cat 0	0
6209.30.10	- - 슈트, 팬츠와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6209.30.30	- - 티셔츠, 셔츠, 파자마와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6209.30.40	- - 의류 부속품	Cat 0	0
6209.30.90	- - 기타	Cat 0	0
6209.90.0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0.10.11	- - - 화학 물질, 방사능이나 불로부터의 보호용 의류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6210.10.19	- - - 기타	Cat 0	0
6210.10.90	- - 기타	Cat 0	0
6210.20.20	- - 방화복	Cat 0	0
6210.20.30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으로부터의 보호용 의류	Cat 0	0
6210.20.40	- - 그 밖의 보호용 작업 의류	Cat 0	0
6210.20.90	- - 기타	Cat 0	0
6210.30.20	- - 방화복	Cat 0	0
6210.30.30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으로부터의 보호용 의류	Cat 0	0
6210.30.40	- - 그 밖의 보호용 작업 의류	Cat 0	0
6210.30.90	- - 기타	Cat 0	0
6210.40.10	- - 방화복	Cat 0	0
6210.40.20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으로부터의 보호용 의류	Cat 0	0
6210.40.90	- - 기타	Cat 0	0
6210.50.10	- - 방화복	Cat 0	0
6210.50.20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으로부터의 보호용 의류	Cat 0	0
6210.50.90	- - 기타	Cat 0	0
6211.11.00	- - 남성용이나 소년용	Cat 0	0
6211.12.00	- - 여성용이나 소녀용	Cat 0	0
6211.20.00	- 스키슈트	Cat 0	0
6211.32.1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Cat 0	0
6211.32.20	- - - 순례자용 로브(에람)	Cat 0	0
6211.32.90	- - - 기타	Cat 0	0
6211.33.1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Cat 0	0
6211.33.20	- - - 방화복	Cat 0	0
6211.33.30	-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으로부터의 보호용 의류	Cat 0	0
6211.33.90	- - - 기타	Cat 0	0
6211.39.1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Cat 0	0
6211.39.20	- - - 방화복	Cat 0	0
6211.39.30	- - - 화학 물질이나 방사능으로부터의 보호용 의류	Cat 0	0
6211.39.90	- - - 기타	Cat 0	0
6211.42.1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Cat 0	0
6211.42.20	- - - 기도용 클룩(cloaks)	Cat 0	0
6211.42.90	- - - 기타	Cat 0	0
6211.43.10	- - - 외과용 가운	Cat 0	0
6211.43.20	- - - 기도용 클룩(cloaks)	Cat 0	0
6211.43.30	- - - 방폭 보호 슈트	Cat 0	0
6211.43.4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Cat 0	0
6211.43.50	- - - 화학 물질, 방사능이나 불로부터의 보호용 의류	Cat 0	0
6211.43.60	- - - 비행사용 작업복	Cat 0	0
6211.43.90	- - - 기타	Cat 0	0
6211.49.10	- - - 펜싱이나 레슬링용 의류	Cat 0	0
6211.49.20	- - - 화학 물질, 방사능이나 불로부터의 보호용 의류	Cat 0	0
6211.49.31	- -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11.49.39	- - - - 기타	Cat 0	0
6211.49.40	- - - 기타(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211.49.90	- - - 기타	Cat 0	0
6212.10.11	- - - 유방절제술 브라(유방수술 받은자용 브라)	Cat 0	0
6212.10.19	- - - 기타	Cat 0	0
6212.10.91	- - - 유방절제술 브라(유방수술 받은자용 브라)	Cat 3	5/0
6212.10.99	- - - 기타	Cat 3	5/0
6212.20.1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12.20.9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2.30.1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212.30.9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212.90.11	- - - 상흔 조직과 피부 이식 처치용 압박복	Cat 0	0
6212.90.12	- - - 애슬레틱(athletic) 서포터(supporters)	Cat 0	0
6212.90.19	- - - 기타	Cat 0	0
6212.90.91	- - - 상흔 조직과 피부 이식 처치용 압박복	Cat 0	0
6212.90.92	- - - 애슬레틱(athletic) 서포터(supporters)	Cat 0	0
6212.90.99	- - - 기타	Cat 0	0
6213.20.10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13.20.90	- - 기타	Cat 0	0
6213.90.11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13.90.19	-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6213.90.91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13.90.99	- - - 기타	Cat 0	0
6214.10.10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3	5
6214.10.90	- - 기타	Cat 3	5
6214.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0	0
6214.30.10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14.30.90	- - 기타	Cat 0	0
6214.40.10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14.40.90	- - 기타	Cat 0	0
6214.90.10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14.90.90	- - 기타	Cat 0	0
6215.10.10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15.10.90	- - 기타	Cat 0	0
6215.20.10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15.20.90	- - 기타	Cat 0	0
6215.90.10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215.90.90	- - 기타	Cat 0	0
6216.00.10	- 보호용 작업 장갑, 병어리장갑	Cat 3	5/0
6216.00.91	-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Cat 3	5
6216.00.92	- - 면으로 만든 것	Cat 3	5
6216.00.99	- - 기타	Cat 3	5/0
6217.10.10	- - 유도 벨트	Cat 15	5
6217.10.90	- - 기타	Cat 15	5
6217.90.00	- 부분품	Cat 0	0
6301.10.00	- 전기모포	Cat 0	0
6301.20.0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Cat 0	0
6301.30.10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301.30.90	- - 기타	Cat 0	0
6301.40.10	- - 부직포로 만든 것	Cat 0	0
6301.40.90	- - 기타	Cat 0	0
6301.90.10	- - 부직포로 만든 것	Cat 0	0
6301.90.90	- - 기타	Cat 0	0
6302.10.00	-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Cat 0	0
6302.2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2.22.10	- - - 부직포로 만든 것	Cat 0	0
6302.22.90	- - - 기타	Cat 0	0
6302.2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2.3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2.32.10	- - - 부직포로 만든 것	Cat 0	0
6302.32.90	- - - 기타	Cat 0	0
6302.3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2.40.00	-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Cat 0	0
6302.51.10	- - - 전통바틱(batik) 공정으로 날염한 것	Cat 0	0
6302.51.90	- - - 기타	Cat 0	0
6302.5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2.59.10	아마로 만든 것	Cat 0	0
6302.59.90	기타	Cat 15	5
6302.60.00	-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6302.9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15	5
6302.93.00	- - 인조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2.99.10	- - - 아마로 만든 것	Cat 0	0
6302.99.90	- - - 기타	Cat 0	0
6303.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3.19.10	-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3.19.90	- - - 기타	Cat 0	0
6303.91.0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3.9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3.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4.11.00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Cat 0	0
6304.19.10	-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4.19.20	- - - 기타(부직포)	Cat 0	0
6304.19.90	-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6304.20.00	-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304.91.10	- - - 모기장	Cat 0	0
6304.91.90	- - - 기타	Cat 0	0
6304.92.00	- -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Cat 0	0
6304.93.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Cat 0	0
6304.99.00	-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Cat 0	0
6305.10.11	- - - 황마로 만든 것	Cat 15	5
6305.10.19	- - - 기타	Cat 15	5
6305.10.21	- - - 황마로 만든 것	Cat 15	5
6305.10.29	- - - 기타	Cat 15	5
6305.20.00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5.32.10	- - - 부직포	Cat 0	0
6305.32.20	-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Cat 0	0
6305.32.90	- - - 기타	Cat 0	0
6305.33.10	-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Cat 0	0
6305.33.20	- - - 스트립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6305.33.90	- - - 기타	Cat 0	0
6305.39.10	- - - 부직포	Cat 15	5
6305.39.20	- -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Cat 15	5
6305.39.90	- - - 기타	Cat 15	5
6305.90.10	- - 제5305호의 아마로 만든 것	Cat 15	5
6305.90.20	- - 제5305호의 코코넛(코이어)으로 만든 것	Cat 15	5
6305.90.90	- - 기타	Cat 15	5
6306.1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15	5
6306.19.10	- - - 제5305호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6.19.20	-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6.19.90	- - - 기타	Cat 0	0
6306.22.00	- - 합성섬유로 만든 것	Cat 0	0
6306.29.10	-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6.29.90	- - - 기타	Cat 0	0
6306.30.00	- 돛	Cat 0	0
6306.40.10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6.40.90	- - 기타	Cat 0	0
6306.90.10	- - 부직포로 만든 것	Cat 15	5
6306.90.91	- - - 면으로 만든 것	Cat 0	0
6306.90.99	- - - 기타	Cat 15	5
6307.10.10	- - 부직포(펠트는 제외한다)	Cat 0	0
6307.10.20	- - 펠트로 만든 것	Cat 0	0
6307.10.90	- - 기타	Cat 0	0
6307.20.00	- 구멍재킷과 구멍벨트	Cat 0	0
6307.90.30	- - 우산 커버(삼각형 형태로 사전에 자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307.90.40	- - 외과용 마스크	Cat 0	0
6307.90.61	- - - 산업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6307.90.69	- - - 기타	Cat 0	0
6307.90.70	- - 팬과 핸드스크린	Cat 0	0
6307.90.80	- - 신발, 부츠, 코르셋과 이와 유사한 제품의 레이스	Cat 0	0
6307.90.90	- - 기타	Cat 0	0
6308.00.00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 또는 서비에트(serviette)용이나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직물 및 실로 구성된 세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309.00.00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Cat 15	5
6310.10.10	- - 냅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Cat 0	0
6310.10.90	- - 기타	Cat 0	0
6310.90.10	- - 냅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Cat 0	0
6310.90.90	- - 기타	Cat 0	0
6401.10.00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Cat 0	0
6401.92.00	-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Cat 0	0
6401.99.10	- - - 무릎을 덮는 것	Cat 0	0
6401.99.90	- - - 기타	Cat 0	0
6402.12.00	-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Cat 0	0
6402.19.10	- - - 레슬링화	Cat 15	5
6402.19.90	- - - 기타	Cat 1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6402.20.00	-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402.91.10	- - - 잠수 부츠	Cat 0	0
6402.91.91	- - -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	Cat 0	0
6402.91.99	- - - - 기타	Cat 0	0
6402.99.10	- -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	Cat 0	0
6402.99.90	- - - 기타	Cat 0	0
6403.12.00	-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및 스노보드부츠	Cat 0	0
6403.19.10	- - - 스파이크 · 징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붙인 것	Cat 0	0
6403.19.20	- - - 승마용 부츠, 볼링화	Cat 0	0
6403.19.30	- - - 레슬링화 · 역도화나 체조화	Cat 0	0
6403.19.90	- - - 기타	Cat 0	0
6403.20.0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6403.40.0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403.51.00	- - 발목을 덮는 것	Cat 0	0
6403.59.10	- - - 볼링신발	Cat 0	0
6403.59.90	- - - 기타	Cat 0	0
6403.91.10	- - - 나무재질의 신발류[안창이나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403.91.20	- - - 승마용 부츠	Cat 0	0
6403.91.90	- - - 기타	Cat 0	0
6403.99.10	- - - 나무재질의 신발류[안창이나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403.99.20	- - - 볼링신발	Cat 0	0
6403.99.90	- - - 기타	Cat 0	0
6404.11.10	- - - 스파이크 · 징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붙인 것	Cat 0	0
6404.11.20	- - - 레슬링화 · 역도화나 체조화	Cat 0	0
6404.11.90	- - - 기타	Cat 0	0
6404.19.00	- - 기타	Cat 0	0
6404.20.0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콤포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405.10.00	-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Cat 0	0
6405.20.00	-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Cat 0	0
6405.90.00	- 기타	Cat 0	0
6406.10.10	- - 금속 토캡(toecap)	Cat 0	0
6406.10.90	- - 기타	Cat 0	0
6406.20.10	- - 고무로 만든 것	Cat 0	0
6406.20.2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6406.90.10	- - 목재로 만든 것	Cat 0	0
6406.90.21	- - - 철강으로 만든 것	Cat 0	0
6406.90.22	- - - 구리로 만든 것	Cat 0	0
6406.90.23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Cat 0	0
6406.90.29	- - - 기타	Cat 0	0
6406.90.31	- - - 안창	Cat 0	0
6406.90.32	- - - 완전한 창	Cat 0	0
6406.90.33	- - - 기타(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406.90.39	- - - 기타	Cat 0	0
6406.90.91	- - - 각반 · 레깅스 및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Cat 0	0
6406.90.99	- - - 기타	Cat 0	0
6501.00.00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래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Cat 0	0
6502.00.00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은 것,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504.00.00	모자 및 그 밖의 모자류[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6505.00.10	- 종교용 모자	Cat 0	0
6505.00.20	- 헤어네트	Cat 0	0
6505.00.90	- 기타	Cat 0	0
6506.10.10	- - 모터사이클 헬멧	Cat 0	0
6506.10.20	- - 산업 안전 헬멧과 소방관 헬멧(철강 헬멧은 제외한다)	Cat 0	0
6506.10.30	- - 철강 헬멧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6506.10.40	- - 수구용 헤드기어	Cat 0	0
6506.10.90	- - 기타	Cat 0	0
6506.91.00	- -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6506.99.10	- - - 모피로 만든 것	Cat 0	0
6506.99.90	- - - 기타	Cat 0	0
6507.00.00	모자용의 헤드밴드 · 내장재 · 커버 · 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 모자의 프레임(frame) · 챙 및 턱끈	Cat 0	0
6601.10.00	-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Cat 0	0
6601.91.00	- -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Cat 0	0
6601.99.00	- - 기타	Cat 15	5
6602.00.00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6603.20.00	-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Cat 0	0
6603.90.10	- - 제6601호의 제품용	Cat 0	0
6603.90.20	- - 제6602호의 제품용	Cat 0	0
6701.00.00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 깃털 · 깃털의 부분 · 솜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 및 깃촉(quill)은 제외한다]	Cat 0	0
6702.1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6702.90.10	- - 종이로 만든 것	Cat 0	0
6702.90.20	-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Cat 0	0
6702.90.90	- - 기타	Cat 0	0
6703.00.00	사람 머리카락(정돈 · 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Cat 0	0
6704.11.00	- - 전체가발	Cat 0	0
6704.19.00	- - 기타	Cat 0	0
6704.20.00	-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Cat 0	0
6704.9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Cat 0	0
6801.00.00	포석 · 연석 및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Cat 0	0
6802.10.00	-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 · 조각과 가루	Cat 0	0
6802.21.00	- -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및 설화석고(alabaster)	Cat 0	0
6802.23.00	- - 화강암	Cat 0	0
6802.29.10	- - - 그 밖의 석회질 암석	Cat 0	0
6802.29.90	- - - 기타	Cat 0	0
6802.91.10	- - - 대리석	Cat 0	0
6802.91.90	- - - 기타	Cat 0	0
6802.92.00	- - 그 밖의 석회질 암석	Cat 0	0
6802.93.10	- - - 연마한 슬래브	Cat 0	0
6802.93.90	- - - 기타	Cat 0	0
6802.99.00	- - 그 밖의 돌	Cat 0	0
6803.00.00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slate) 제품 또는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Cat 0	0
6804.10.00	-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grindstone)[밀링(milling)용 · 그라인딩(grinding)용 또는 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6804.21.00	- - 합성 또는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804.22.00	- -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Cat 0	0
6804.23.00	- - 천연석으로 만든 것	Cat 0	0
6804.30.00	- 수지석(手砥石)	Cat 0	0
6805.10.00	-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6805.20.00	-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6805.30.00	-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Cat 0	0
6806.10.00	- 슬래그 울(slag wool) · 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 · 시트(sheet) 모양 또는 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6806.20.00	-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 팽창점토 · 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Cat 0	0
6806.90.00	- 기타	Cat 0	0
6807.10.00	- 롤 모양인 것	Cat 0	0
6807.90.10	- - 타일	Cat 0	0
6807.90.90	- - 기타	Cat 0	0
6808.00.20	- 기와(지붕타일)	Cat 0	0
6808.00.30	- 패널 · 보드 · 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6808.00.90	- 기타	Cat 0	0
6809.11.00	- -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Cat 0	0
6809.19.10	- - - 타일	Cat 0	0
6809.19.90	- - - 기타	Cat 0	0
6809.90.10	- - 플라스터(plaster)로 만든 치아 주형	Cat 0	0
6809.90.90	- - 기타	Cat 0	0
6810.11.00	- - 건축용 블록과 벽돌	Cat 0	0
6810.19.10	- - - 타일	Cat 0	0
6810.19.90	- - - 기타	Cat 0	0
6810.91.00	- -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6810.99.00	- - 기타	Cat 0	0
6811.40.10	- -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Cat 0	0
6811.40.21	- - - 플라스틱을 함유한 바닥이나 벽 타일	Cat 0	0
6811.40.22	- - - 지붕, 외장이나 파티셔닝용	Cat 0	0
6811.40.29	- - - 기타	Cat 0	0
6811.40.30	- - 관이나 파이프	Cat 0	0
6811.40.40	- - 관(管) 연결구류	Cat 0	0
6811.40.50	- - 그 밖의 제품(건물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6811.40.90	- - 기타	Cat 0	0
6811.81.00	- -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Cat 0	0
6811.82.10	- - - 플라스틱을 함유한 바닥이나 벽 타일	Cat 0	0
6811.82.20	- - - 지붕, 외장이나 파티셔닝용	Cat 0	0
6811.82.90	- - - 기타	Cat 0	0
6811.89.10	- - - 관이나 파이프	Cat 0	0
6811.89.20	- - - 관(管) 연결구류	Cat 0	0
6811.89.30	- - - 그 밖의 제품(건물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6811.89.90	- - - 기타	Cat 0	0
6812.80.20	- - 의류	Cat 0	0
6812.80.30	- - 종이 · 표지용 판지 및 펄트(felt)	Cat 0	0
6812.80.40	- - 바닥이나 벽 타일	Cat 0	0
6812.80.50	- - 의류 부속품 · 신발과 모자류, 가공한 청석면 섬유, 청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또는 청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사와 실, 코드와 줄(엮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직물이나 메리야스 편물	Cat 0	0
6812.80.90	- - 기타	Cat 0	0
6812.91.10	- - - 의류	Cat 0	0
6812.91.90	- - - 기타	Cat 0	0
6812.92.00	- - 종이 · 표지용 판지 및 펄트(felt)	Cat 0	0
6812.93.00	- -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팅(jointing)	Cat 0	0
6812.99.11	- - - -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이나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제6813호의 물품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6812.99.19	- - - - 기타	Cat 0	0
6812.99.20	- - - 바닥이나 벽 타일	Cat 0	0
6812.99.90	- - - 기타	Cat 0	0
6813.20.10	- -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Cat 0	0
6813.20.90	- - 기타	Cat 0	0
6813.81.00	- -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Cat 0	0
6813.89.00	- - 기타	Cat 0	0
6814.10.00	- 판 · 시트(sheet) 및 스트립(strip)(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6814.90.00	- 기타	Cat 0	0
6815.10.10	- - 사(yarn)나 실	Cat 0	0
6815.10.20	- - 벽돌 · 포장용 평판 · 바닥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Cat 0	0
6815.10.91	- - - 카본섬유	Cat 0	0
6815.10.99	- - - 기타	Cat 0	0
6815.20.00	- 이탄(泥炭)제품	Cat 0	0
6815.91.00	- - 마그네사이트 · 백운석 또는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Cat 0	0
6815.99.00	- - 기타	Cat 0	0
6901.00.00	벽돌 · 블록 · 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 · 트리폴리트 또는 다이아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3/0
6902.10.00	- 마그네슘 · 칼슘 또는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 · 산화칼슘 또는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Cat 0	0
6902.20.00	- 알루미늄 · 실리카 또는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6902.90.00	- 기타	Cat 0	0
6903.10.00	-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Cat 0	0
6903.20.00	- 알루미나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Cat 0	0
6903.90.00	- 기타	Cat 0	0
6904.10.00	- 건축용 벽돌	Cat 0	0
6904.90.00	- 기타	Cat 0	0
6905.10.00	- 기와(지붕타일)	Cat 0	0
6905.90.00	- 기타	Cat 0	0
6906.00.00	도자제의 관(管)·도관(導管)·흙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Cat 0	0
6907.21.10	- - - 분쇄기용 라이닝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3
6907.21.21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907.21.22	- - - - 기타(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907.21.23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을 칠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907.21.24	- - - - 기타(유약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907.21.91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6907.21.92	- - - - 기타(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6907.21.93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6907.21.94	- - - - 기타(유약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6907.22.11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907.22.12	- - - - 기타(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907.22.13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907.22.14	- - - - 기타(유약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907.22.91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6907.22.92	- - - - 기타(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6907.22.93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6907.22.94	- - - - 기타(유약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6907.23.11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907.23.12	- - - - 기타(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907.23.13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907.23.14	- - - - 기타(유약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6907.23.91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6907.23.92	- - - - 기타(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3	5
6907.23.93	- - - - 포장(鋪裝)용·노(爐)용 또는 벽용 타일(유약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6907.23.94	- - - - 기타(유약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6907.30.11	- - -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	Cat 0	0
6907.30.19	- - - 기타	Cat 3	5
6907.30.91	- - -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인 것	Cat 0	0
6907.30.99	- - - 기타	Cat 15	5
6907.40.10	- - 라이닝 분쇄기용(유약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3
6907.40.21	- -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	Cat 0	0
6907.40.22	- - - 유약처리한 것	Cat 0	0
6907.40.91	- - - 유약처리하지 않은 것	Cat 3	5
6907.40.92	- - - 유약처리한 것	Cat 15	5
6909.11.00	- - 자기제의 것	Cat 0	3
6909.12.00	- -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Cat 0	0
6909.19.00	- - 기타	Cat 0	0
6909.90.00	- 기타	Cat 0	0
6910.10.00	- 자기제의 것	Cat 3	5/0
6910.90.00	- 기타	Cat 0	0
6911.10.0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Cat 0	0
6911.90.00	- 기타	Cat 0	0
6912.00.00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 및 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6913.10.10	- - 장식용 담배상자와 재떨이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6913.10.90	- - 기타	Cat 0	0
6913.90.10	- - 장식용 담배상자와 재떨이	Cat 0	0
6913.90.90	- - 기타	Cat 0	0
6914.10.00	- 자기제의 것	Cat 0	0
6914.90.00	- 기타	Cat 0	0
7001.00.00	깨진 파유리(破琉璃) 및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유리 괴(塊)	Cat 0	0
7002.10.00	- 구(球)	Cat 0	0
7002.20.00	- 막대(rod)	Cat 0	0
7002.31.10	- - - 진공관 제조용의 것	Cat 0	0
7002.31.90	- - - 기타	Cat 0	0
7002.32.10	- - - 진공관 제조용의 것	Cat 0	0
7002.32.30	- - - 작은병/앰플 제조용 봉규산 유리 튜브	Cat 0	0
7002.32.40	- - - 기타(투명하고 중성인 봉규산 유리로 만든 것으로 지름이 3밀리미터 이상이고 2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02.32.90	- - - 기타	Cat 0	0
7002.39.10	- - - 진공관 제조용의 것	Cat 0	0
7002.39.20	- - - 기타(투명하고 중성인 봉규산 유리로 만든 것으로 지름이 3밀리미터 이상이고 2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02.39.90	- - - 기타	Cat 0	0
7003.12.10	-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03.12.20	- - - 기타[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의 것(하나 이상의 코너를 자른 것을 포함한다)]	Cat 15	5
7003.12.90	- - - 기타	Cat 15	5
7003.19.10	-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03.19.90	- - - 기타	Cat 15	5
7003.20.10	- -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의 것(하나 이상의 코너를 자른 것을 포함한다)	Cat 0	0
7003.20.90	- - 기타	Cat 0	0
7003.30.10	- -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 모양의 것(하나 이상의 코너를 자른 것을 포함한다)	Cat 0	0
7003.30.90	- - 기타	Cat 15	5
7004.20.10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04.20.90	- - 기타	Cat 0	0
7004.90.10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04.90.90	- - 기타	Cat 0	0
7005.10.10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05.10.90	- - 기타	Cat 0	0
7005.21.10	-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3/0
7005.21.90	- - - 기타	Cat 15	5
7005.29.10	- -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05.29.90	- - - 기타	Cat 15	5
7005.30.00	- 망입(網入) 유리	Cat 0	0
7006.00.10	- 광학유리(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06.00.90	- 기타	Cat 15	5
7007.11.10	- - - 제87류의 차량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7007.11.20	- - - 제88류의 항공기용이나 우주선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7007.11.30	- - - 제86류의 철도용이나 궤도 기관차 또는 철도 차량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7007.11.40	- - - 제89류의 선박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7007.19.10	- - - 제8429호나 제8430호의 기계류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7007.19.90	- - - 기타	Cat 0	0
7007.21.10	- - - 제87류의 차량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7007.21.20	- - - 제88류의 항공기용이나 우주선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7007.21.30	- - - 제86류의 철도용이나 궤도 기관차 또는 철도 차량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7007.21.40	- - - 제89류의 선박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7007.29.10	- - - 제8429호나 제8430호의 기계류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7007.29.90	- - - 기타	Cat 0	0
7008.00.00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Cat 0	0
7009.10.00	-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Cat 15	5
7009.91.00	- - 틀이 붙지 않은 것	Cat 15	5
7009.92.00	- - 틀이 붙은 것	Cat 0	0
7010.10.00	- 앰플	Cat 0	0
7010.20.00	-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Cat 0	0
7010.90.10	- - 카보이(carboy)와 디미존스(demijohns)	Cat 0	0
7010.90.40	- - 항생제·혈청과 그 밖의 주사 액체용 병과 약병, 수액용의 병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010.90.91	- - - 용량이 1리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5
7010.90.99	- - - 기타	Cat 0	5
7011.10.10	- - 스템(Stems)	Cat 0	0
7011.10.90	- - 기타	Cat 0	0
7011.20.00	- 음극선관용	Cat 0	0
7011.90.00	- 기타	Cat 0	0
7013.10.00	- 유리 도자제의 것	Cat 0	0
7013.22.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Cat 0	0
7013.28.00	- - 기타	Cat 0	0
7013.33.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Cat 0	0
7013.37.00	- - 기타	Cat 0	0
7013.41.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Cat 0	0
7013.42.00	-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 온도당 1백만분의 5 이하인 유리로 만든 것	Cat 15	5
7013.49.00	- - 기타	Cat 0	0
7013.91.00	-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Cat 0	0
7013.99.00	- - 기타	Cat 0	0
7014.00.10	- 자동차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7014.00.90	- 기타	Cat 0	0
7015.10.0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Cat 0	0
7015.90.10	- - 시계용 유리	Cat 0	0
7015.90.90	- - 기타	Cat 0	0
7016.10.00	-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 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16.90.00	- 기타	Cat 0	0
7017.10.10	- -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Cat 0	0
7017.10.90	- - 기타	Cat 0	0
7017.20.00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 온도당 1백만분의 5 이하인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Cat 0	0
7017.90.00	- 기타	Cat 0	0
7018.10.10	- - 유리로 만든 비드(bead)	Cat 0	0
7018.10.90	- - 기타	Cat 0	0
7018.20.00	-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 스피어(microsphere)	Cat 0	0
7018.90.10	- - 유리안구	Cat 0	0
7018.90.90	- - 기타	Cat 0	0
7019.11.00	- -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19.12.00	- - 로빙(roving)	Cat 0	0
7019.19.10	- - - 실	Cat 0	0
7019.19.90	- - - 기타	Cat 0	0
7019.31.00	- - 매트(mat)	Cat 0	0
7019.32.00	- - 얇은 시트(sheet)(보일)	Cat 0	0
7019.39.10	- - - 파이프라인용의 것으로 아스팔트나 콜타르를 침투시킨 유리섬유 외피	Cat 0	0
7019.39.90	- - - 기타	Cat 0	0
7019.40.00	- 로빙(roving) 직물	Cat 0	0
7019.51.00	-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019.52.00	- -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019.59.00	- - 기타	Cat 0	0
7019.90.10	- - 유리 섬유[글라스울(glass wool)을 포함한다]	Cat 0	0
7019.90.20	- - 블라인드	Cat 0	0
7019.90.90	- - 기타	Cat 0	0
7020.00.11	- - 아크릴 물품의 제조용의 것	Cat 0	0
7020.00.19	- - 기타	Cat 0	0
7020.00.20	- 반도체 웨이퍼(wafer) 제조용으로 확산로(擴散爐)와 산화로(酸化爐)에 삽입할 수 있도록 고안된 석영 리액터(reactor) 튜브와 홀더	Cat 0	0
7020.00.30	- 보온병이나 그 밖의 진공용기용 유리로 만든 내부 용기	Cat 0	0
7020.00.40	- 태양열 집열기용으로 진공처리된 튜브	Cat 0	0
7020.00.90	- 기타	Cat 0	0
7101.10.00	- 천연진주	Cat 0	0
7101.21.00	- - 가공하지 않은 것	Cat 0	0
7101.22.00	- - 가공한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102.10.00	- 선별하지 않은 것	Cat 0	0
7102.21.00	- -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갬 것 또는 갈린 것	Cat 0	0
7102.29.00	- - 기타	Cat 0	0
7102.31.00	- - 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 쪼갬 것 또는 갈린 것	Cat 0	0
7102.39.00	- - 기타	Cat 0	0
7103.10.10	- - 루비	Cat 0	0
7103.10.20	- - 비취[연옥(軟玉)과 경옥(硬玉)]	Cat 0	0
7103.10.90	- - 기타	Cat 0	0
7103.91.10	- - - 루비	Cat 0	0
7103.91.90	- - - 기타	Cat 0	0
7103.99.00	- - 기타	Cat 0	0
7104.10.10	- - 가공하지 않은 것	Cat 0	0
7104.10.20	- - 가공한 것	Cat 0	0
7104.20.00	- 기타(원석 또는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104.90.00	- 기타	Cat 0	0
7105.10.00	- 다이아몬드의 것	Cat 0	0
7105.90.00	- 기타	Cat 0	0
7106.10.00	- 가루	Cat 0	0
7106.91.00	- - 가공하지 않은 것	Cat 0	0
7106.92.00	- - 반가공한 것	Cat 0	0
7107.00.00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108.11.00	- - 가루	Cat 0	0
7108.12.10	- - - 덩괴(lump), 잉곳(ingot) 또는 캐스트 바	Cat 0	0
7108.12.90	- - - 기타	Cat 0	0
7108.13.00	- -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Cat 0	0
7108.20.00	- 화폐용	Cat 0	0
7109.00.00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110.11.10	- - - 덩괴(lump), 잉곳(ingot), 캐스트 바 또는 가루 모양인 것	Cat 0	0
7110.11.90	- - - 기타	Cat 0	0
7110.19.00	- - 기타	Cat 0	0
7110.21.10	- - - 덩괴(lump), 잉곳(ingot), 캐스트 바 또는 가루 모양인 것	Cat 0	0
7110.21.90	- - - 기타	Cat 0	0
7110.29.00	- - 기타	Cat 0	0
7110.31.10	- - - 덩괴(lump), 잉곳(ingot), 캐스트 바 또는 가루 모양인 것	Cat 0	0
7110.31.90	- - - 기타	Cat 0	0
7110.39.00	- - 기타	Cat 0	0
7110.41.10	- - - 덩괴(lump), 잉곳(ingot), 캐스트 바 또는 가루 모양인 것	Cat 0	0
7110.41.90	- - - 기타	Cat 0	0
7110.49.00	- - 기타	Cat 0	0
7111.00.10	- 백금을 입힌 은 또는 금	Cat 0	0
7111.00.90	- 기타	Cat 0	0
7112.30.00	-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Cat 0	0
7112.91.00	- -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Cat 0	0
7112.92.00	-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Cat 0	0
7112.99.10	- - - 은의 것(은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Cat 0	0
7112.99.90	- - - 기타	Cat 0	0
7113.11.10	- - - 부분품	Cat 0	0
7113.11.90	- - - 기타	Cat 0	0
7113.19.10	- - - 부분품	Cat 0	0
7113.19.90	- - - 기타	Cat 0	0
7113.20.10	- - 부분품	Cat 0	0
7113.20.90	- - 기타	Cat 0	0
7114.11.00	-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 지에 상관없다)	Cat 0	0
7114.19.00	-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 지에 상관없다)	Cat 0	0
7114.20.0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Cat 0	0
7115.10.00	-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115.90.10	- - 금이나 은으로 만든 것	Cat 0	0
7115.90.20	- - 금이나 은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Cat 0	0
7115.90.9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116.10.00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Cat 0	0
7116.20.00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 또는 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Cat 0	0
7117.11.10	- - - 부분품	Cat 0	0
7117.11.90	- - - 기타	Cat 0	0
7117.19.10	- - - 뱅글스(Bangles)	Cat 0	0
7117.19.20	- - - 그 밖의 모조 신변장식용품	Cat 0	0
7117.19.90	- - - 부분품	Cat 0	0
7117.90.11	- - - 전체가 플라스틱이나 유리인 것	Cat 0	0
7117.90.12	- - - 전체가 우드·가공한 귀갑(龜甲)·상아·뼈·뿔·산호·자개와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 가공한 식물성이나 가공한 광물성 조각용 재료인 것	Cat 0	0
7117.90.13	- - - 전체가 자기제인 것	Cat 0	0
7117.90.19	- - - 기타	Cat 0	0
7117.90.21	- - - 전체가 플라스틱이나 유리인 것	Cat 0	0
7117.90.22	- - - 전체가 우드·가공한 귀갑(龜甲)·상아·뼈·뿔·산호·자개와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 가공한 식물성이나 가공한 광물성 조각용 재료인 것	Cat 0	0
7117.90.23	- - - 전체가 자기제인 것	Cat 0	0
7117.90.29	- - - 기타	Cat 0	0
7117.90.91	- - - 전체가 플라스틱이나 유리인 것	Cat 0	0
7117.90.92	- - - 전체가 우드·가공한 귀갑(龜甲)·상아·뼈·뿔·산호·자개와 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 가공한 식물성이나 가공한 광물성 조각용 재료인 것	Cat 0	0
7117.90.93	- - - 전체가 자기제인 것	Cat 0	0
7117.90.99	- - - 기타	Cat 0	0
7118.10.10	- - 은화	Cat 15	5
7118.10.90	- - 기타	Cat 15	5
7118.90.10	- - 금화(법정통화인지 여부는 상관없다)	Cat 0	0
7118.90.20	- - 은화(법정통화로 한정한다)	Cat 0	0
7118.90.90	- - 기타	Cat 0	0
7201.1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01.20.0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01.50.00	- 합금선철,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Cat 0	0
7202.11.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202.19.00	- - 기타	Cat 0	0
7202.21.00	- - 실리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202.29.00	- - 기타	Cat 0	0
7202.30.00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manganese)	Cat 0	0
7202.41.0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202.49.00	- - 기타	Cat 0	0
7202.50.00	-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chromium)	Cat 0	0
7202.60.00	- 페로니켈(ferro-nickel)	Cat 0	0
7202.70.00	-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Cat 0	0
7202.80.00	-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tungsten)	Cat 0	0
7202.91.00	- -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titanium)	Cat 0	0
7202.92.00	- -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Cat 0	0
7202.93.00	- - 페로니오븀(ferro-niobium)	Cat 0	0
7202.99.00	- - 기타	Cat 0	0
7203.10.00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Cat 0	0
7203.90.00	- 기타	Cat 0	0
7204.10.00	-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7204.21.00	- - 스테인리스강의 것	Cat 0	0
7204.29.00	- - 기타	Cat 0	0
7204.30.00	-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7204.41.00	- - 선삭(旋削)·세이빙(shaving)·칩·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톱밥·파일링(filing)·트리밍(trimming) 및 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7204.49.00	- - 기타	Cat 0	0
7204.50.00	-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Cat 0	0
7205.10.00	- 알루미늄	Cat 0	0
7205.21.00	- - 합금강의 것	Cat 0	0
7205.29.00	- - 기타	Cat 0	0
7206.1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을 초과하는 것	Cat 0	0
7206.10.9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206.90.00	- 기타	Cat 0	0
7207.11.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07.12.10	- - - 슬래브	Cat 0	0
7207.12.90	- - - 기타	Cat 0	0
7207.19.00	- - 기타	Cat 0	0
7207.20.10	- - - 슬래브	Cat 0	0
7207.20.21	- - - - 거칠게 성형한 단조된 블록, 시트바(sheet bar)	Cat 0	0
7207.20.29	- - - - 기타	Cat 0	0
7207.20.91	- - - - 슬래브	Cat 0	0
7207.20.92	- - - - 거칠게 성형한 단조된 블록, 시트바(sheet bar)	Cat 0	0
7207.20.99	- - - - 기타	Cat 0	0
7208.10.00	-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Cat 0	0
7208.25.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Cat 0	0
7208.26.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208.27.11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	Cat 0	0
7208.27.19	- - - - 기타	Cat 0	0
7208.27.91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	Cat 0	0
7208.27.99	- - - - 기타	Cat 0	0
7208.36.00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208.37.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08.38.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208.39.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0.17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08.39.90	- - - 기타	Cat 0	0
7208.40.00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Cat 0	0
7208.51.00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208.52.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08.53.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208.54.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0.17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08.54.90	- - - 기타	Cat 0	0
7208.90.10	- - 물결 모양의 것	Cat 0	0
7208.90.20	-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미만이고 두께가 0.17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208.90.90	- - 기타	Cat 0	0
7209.15.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Cat 0	0
7209.16.10	- - - 폭이 1,25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09.16.90	- - - 기타	Cat 0	0
7209.17.10	- - - 폭이 1,25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09.17.90	- - - 기타	Cat 0	0
7209.18.10	- - - 틴 밀 블랙플레이트(tin-mill blackplate)	Cat 0	0
7209.18.91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0.17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09.18.99	- - - - 기타	Cat 0	0
7209.25.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Cat 0	0
7209.26.10	- - - 폭이 1,25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09.26.90	- - - 기타	Cat 0	0
7209.27.10	- - - 폭이 1,25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09.27.90	- - - 기타	Cat 0	0
7209.28.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0.17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09.28.90	- - - 기타	Cat 0	0
7209.90.10	- - 물결 모양의 것	Cat 0	0
7209.90.90	- - 기타	Cat 0	0
7210.11.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	Cat 0	0
7210.11.90	- - - 기타	Cat 0	0
7210.12.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	Cat 0	0
7210.12.90	- - - 기타	Cat 0	0
7210.2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1.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10.20.90	- - 기타	Cat 0	0
7210.30.11	- - -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10.30.12	- - -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10.30.19	- - - 기타	Cat 0	0
7210.30.91	- - -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210.30.99	- - - 기타	Cat 0	0
7210.41.11	- - - -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10.41.12	- - - -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10.41.19	- - - - 기타	Cat 0	0
7210.41.91	- - - -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10.41.99	- - - - 기타	Cat 0	0
7210.49.11	- - - - 철-아연 합금 도포 방법에 의한 아연으로 도포된 것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04 미만인 것으로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7210.49.12	- - - - 기타(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7210.49.13	- - - -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15	5
7210.49.19	- - - - 기타	Cat 15	5
7210.49.91	- - - -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15	5
7210.49.99	- - - - 기타	Cat 15	5
7210.50.0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0	0
7210.61.11	- - - -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15	5
7210.61.12	- - - -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15	5
7210.61.19	- - - - 기타	Cat 15	5
7210.61.91	- - - -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15	5
7210.61.92	- - - - 기타(물결 모양의 것)	Cat 15	5
7210.61.99	- - - - 기타	Cat 15	5
7210.69.11	- - - -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15	5
7210.69.12	- - - - 두께가 1.2밀리미터를 초과하고 1.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15	5
7210.69.19	- - - - 기타	Cat 15	5
7210.69.91	- - - - 두께가 1.2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15	5
7210.69.99	- - - - 기타	Cat 15	5
7210.70.11	- - - 페인팅한 것	Cat 15	5
7210.70.19	- - - 기타	Cat 15	5
7210.70.91	- - - 페인팅한 것	Cat 15	5
7210.70.99	- - - 기타	Cat 15	5
7210.9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이며 두께가 1.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10.90.90	- - 기타	Cat 0	0
7211.13.11	- - - - 후프와 스트립, 만능 압연기(universal mill)에서 압연된 금속판(板)	Cat 0	0
7211.13.12	- - - - 물결 모양의 것	Cat 0	0
7211.13.19	- - - - 기타	Cat 0	0
7211.13.91	- - - - 후프와 스트립, 만능 압연기(universal mill)에서 압연된 금속판(板)	Cat 0	0
7211.13.99	- - - - 기타	Cat 0	0
7211.14.13	- - - - 후프와 스트립, 만능 압연기(universal mill)에서 압연된 금속판(板)	Cat 0	0
7211.14.14	- - - - 물결 모양의 것	Cat 0	0
7211.14.15	- - - - 재압연용 코일	Cat 0	0
7211.14.19	- - - - 기타	Cat 0	0
7211.14.91	- - - - 후프와 스트립, 만능 압연기(universal mill)에서 압연된 금속판(板)	Cat 0	0
7211.14.92	- - - - 물결 모양의 것	Cat 0	0
7211.14.93	- - - - 재압연용 코일	Cat 0	0
7211.14.99	- - - - 기타	Cat 0	0
7211.19.13	- - - - 후프와 스트립, 만능 압연기(universal mill)에서 압연된 금속판(板)	Cat 0	0
7211.19.14	- - - - 물결 모양의 것	Cat 0	0
7211.19.15	- - - - 재압연용 코일	Cat 0	0
7211.19.19	- - - - 기타	Cat 0	0
7211.19.91	- - - - 후프와 스트립, 만능 압연기(universal mill)에서 압연된 금속판(板)	Cat 0	0
7211.19.92	- - - - 물결 모양의 것	Cat 0	0
7211.19.93	- - - - 재압연용 코일	Cat 0	0
7211.19.99	- - - - 기타	Cat 0	0
7211.23.10	- - - 물결 모양의 것	Cat 0	0
7211.23.2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1.23.30	- - - 기타(두께가 0.17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1.23.90	-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211.29.10	- - - 물결 모양의 것	Cat 0	0
7211.29.2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1.29.30	- - - 기타(두께가 0.17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1.29.90	- - - 기타	Cat 0	0
7211.90.11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1.90.12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1.90.13	- - - 물결 모양의 것	Cat 0	0
7211.90.14	- - - 기타(두께가 0.17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1.90.19	- - - 기타	Cat 0	0
7211.90.91	- - - 두께가 0.17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11.90.99	- - - 기타	Cat 0	0
7212.10.11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2.10.13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밀리미터 초과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2.10.19	- - - 기타	Cat 0	0
7212.10.92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2.10.93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밀리미터 초과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2.10.99	- - - 기타	Cat 0	0
7212.2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2.20.20	- - 기타(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이고 두께가 1.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12.20.90	- - 기타	Cat 0	0
7212.30.11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2.30.12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밀리미터를 초과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2.30.13	- - - 기타(두께가 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2.30.14	- - - 기타(철-아연 합금 도포 방법에 의한 아연으로 도포된 것으로,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04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2.30.19	- - - 기타	Cat 0	0
7212.30.90	- - 기타	Cat 0	0
7212.40.11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2.40.12	- - - 그 밖의 후프와 스트립	Cat 0	0
7212.40.19	- - - 기타	Cat 0	0
7212.40.91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2.40.92	- - - 그 밖의 후프와 스트립, 만능 압연기(universal mill)에서 압연된 금속판(板)	Cat 0	0
7212.40.99	- - - 기타	Cat 0	0
7212.50.13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2.50.14	- - - 그 밖의 후프와 스트립, 만능 압연기(universal mill)에서 압연된 금속판(板)	Cat 0	0
7212.50.19	- - - 기타	Cat 0	0
7212.50.23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2.50.24	- - - 그 밖의 후프와 스트립, 만능 압연기(universal mill)에서 압연된 금속판(板)	Cat 0	0
7212.50.29	- - - 기타	Cat 0	0
7212.50.93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2.50.94	- - - 그 밖의 후프와 스트립, 만능 압연기(universal mill)에서 압연된 금속판(板)	Cat 0	0
7212.50.99	- - - 기타	Cat 0	0
7212.60.11	- - - 후프와 스트립	Cat 0	0
7212.60.12	- - - 기타(두께가 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2.60.19	- - - 기타	Cat 0	0
7212.60.91	- - - 후프와 스트립	Cat 0	0
7212.60.99	- - - 기타	Cat 0	0
7213.1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13.10.90	- - 기타	Cat 0	0
7213.20.00	- 기타[괘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3.91.10	- - - 납땜 스틱 제조용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213.91.20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Cat 0	0
7213.91.90	- - - 기타	Cat 0	0
7213.99.10	- - - 납땜 스틱 제조용의 것	Cat 0	0
7213.99.20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Cat 0	0
7213.99.90	- - - 기타	Cat 0	0
7214.10.11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Cat 0	0
7214.10.19	- - - 기타	Cat 0	0
7214.10.21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Cat 0	0
7214.10.29	- - - 기타	Cat 0	0
7214.20.31	-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Cat 0	0
7214.20.39	- - - - 기타	Cat 0	0
7214.20.41	-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Cat 0	0
7214.20.49	- - - - 기타	Cat 0	0
7214.20.51	-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Cat 0	0
7214.20.59	- - - - 기타	Cat 0	0
7214.20.61	-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Cat 0	0
7214.20.69	- - - - 기타	Cat 0	0
7214.3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Cat 0	0
7214.30.90	- - 기타	Cat 0	0
7214.91.11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38 이상이고 망간의 함유량은 전중량의 100분의 1.15 미만인 것	Cat 0	0
7214.91.12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17 이상 100분의 0.46 이하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 이상 100분의 1.65 미만인 것	Cat 0	0
7214.91.19	- - - - 기타	Cat 0	0
7214.91.21	- - - -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15 미만인 것	Cat 0	0
7214.91.29	- - - - 기타	Cat 0	0
7214.99.11	- - - -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15 미만인 것	Cat 0	0
7214.99.19	- - - - 기타	Cat 0	0
7214.99.91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38 미만인 것 (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05 이하이고 황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4.99.92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38 이상이고 망간의 함유량은 전중량의 100분의 1.15 미만인 것	Cat 0	0
7214.99.93	-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17 이상 100분의 0.46 미만이고 망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2 이상 100분의 1.65 미만인 것	Cat 0	0
7214.99.99	- - - - 기타	Cat 0	0
7215.1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Cat 0	0
7215.10.90	- - 기타	Cat 0	0
7215.5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횡단면이 원형인 것은 제외한다)	Cat 15	5
7215.50.91	-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Cat 15	5
7215.50.99	- - - 기타	Cat 15	5
7215.90.10	- - 콘크리트 보강(리바)용의 것	Cat 0	0
7215.90.90	- - 기타	Cat 0	0
7216.10.00	- 유(U)형강·아이(I)형강 또는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6.21.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미만인 것	Cat 0	0
7216.21.90	- - - 기타	Cat 0	0
7216.22.00	- - 티(T)형강	Cat 0	0
7216.31.10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	Cat 0	0
7216.31.90	- - - 기타	Cat 0	0
7216.32.10	- - -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16.32.90	- - - 기타	Cat 0	0
7216.33.11	- - - - 플랜지의 두께가 웹의 두께 이상인 것	Cat 0	0
7216.33.19	- - - - 기타	Cat 0	0
7216.33.90	- - - 기타	Cat 0	0
7216.4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	Cat 0	0
7216.40.90	- - 기타	Cat 0	0
7216.50.11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	Cat 0	0
7216.50.19	- - - 기타	Cat 0	0
7216.50.91	-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	Cat 0	0
7216.50.99	- - - 기타	Cat 0	0
7216.61.00	-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Cat 0	0
7216.69.0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216.91.10	- - - 형강(천공된 형강은 제외하며,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6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6.91.90	- - - 기타	Cat 0	0
7216.99.00	- - 기타	Cat 15	5
7217.1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Cat 15	5
7217.10.22	- - - 비드와이어, 리드와이어, 프리스트레싱 콘크리트 (prestressing concrete) 스트랜드 제작용 선, 쾌삭강(快削鋼) 선	Cat 15	5
7217.10.29	- - - 기타	Cat 15	5
7217.10.32	- - - 스포크와이어(spokes wire), 비드와이어, 리드와이어, 쾌삭강(快削鋼)선	Cat 15	5
7217.10.33	- - - 프리스트레싱 콘크리트(prestressing concrete) 스트랜드 제작용 선	Cat 15	5
7217.10.39	- - - 기타	Cat 15	5
7217.2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Cat 0	0
7217.20.2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이고 0.45 미만인 것	Cat 0	0
7217.20.91	- - - 강심선[강심 알루미늄 도체(ACSR)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7.20.99	- - - 기타	Cat 0	0
7217.30.11	- -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15	5
7217.30.19	- - - 기타	Cat 15	5
7217.30.21	- -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15	5
7217.30.29	- - - 기타	Cat 15	5
7217.30.33	- - - 황동으로 도포한 강선(고무로 만든 공기 타이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7.30.34	- - - 그 밖의 구리합금으로 도포한 강선(고무로 만든 공기 타이어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17.30.35	- - - 기타(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7217.30.39	- - - 기타	Cat 15	5
7217.90.10	- - 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Cat 15	5
7217.90.90	- - 기타	Cat 15	5
7218.10.0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primary form)인 것	Cat 0	0
7218.91.00	-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은 제외한다)	Cat 0	0
7218.99.00	- - 기타	Cat 0	0
7219.11.00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219.12.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19.13.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219.14.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219.21.00	-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219.22.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19.23.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219.24.00	-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219.31.00	-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Cat 0	0
7219.32.00	-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219.33.00	- -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219.34.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19.35.00	-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219.90.00	- 기타	Cat 0	0
7220.11.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20.11.90	- - - 기타	Cat 0	0
7220.12.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20.12.90	- - - 기타	Cat 0	0
7220.2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20.20.90	- - 기타	Cat 0	0
7220.9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20.90.90	- - 기타	Cat 0	0
7221.00.00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같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22.11.0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Cat 0	0
7222.19.00	- - 기타	Cat 0	0
7222.2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Cat 0	0
7222.20.90	- - 기타	Cat 0	0
7222.3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Cat 0	0
7222.30.9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222.40.10	- - 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Cat 0	0
7222.40.90	- - 기타	Cat 0	0
7223.00.10	- 횡단면이 13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223.00.90	- 기타	Cat 0	0
7224.10.0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 형태(primary form)인 것	Cat 0	0
7224.90.00	- 기타	Cat 0	0
7225.11.00	- - 방향성(方向性)인 것	Cat 0	0
7225.19.00	- - 기타	Cat 0	0
7225.30.10	- -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5.30.90	- - 기타	Cat 0	0
7225.40.10	- -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5.40.90	- - 기타	Cat 0	0
7225.50.10	- -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5.50.90	- - 기타	Cat 0	0
7225.91.10	- - -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5.91.90	- - - 기타	Cat 0	0
7225.92.10	- - -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5.92.90	- - - 기타	Cat 0	0
7225.99.10	- - -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5.99.90	- - - 기타	Cat 0	0
7226.11.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26.11.90	- - - 기타	Cat 0	0
7226.19.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26.19.90	- - - 기타	Cat 0	0
7226.20.10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26.20.90	- - 기타	Cat 0	0
7226.91.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26.91.90	- - - 기타	Cat 0	0
7226.92.10	- - - 후프와 스트립(폭이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226.92.90	- - - 기타	Cat 0	0
7226.99.11	- -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0	0
7226.99.19	- - - - 기타	Cat 0	0
7226.99.91	- -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0	0
7226.99.99	- - - - 기타	Cat 0	0
7227.10.00	- 고속도강의 것	Cat 0	0
7227.2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Cat 0	0
7227.90.00	- 기타	Cat 0	0
7228.1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Cat 0	0
7228.10.90	- - 기타	Cat 0	0
7228.20.11	- - - 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Cat 0	0
7228.20.19	- - - 기타	Cat 0	0
7228.20.91	- - - 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Cat 0	0
7228.20.99	- - - 기타	Cat 0	0
7228.3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Cat 0	0
7228.30.90	- - 기타	Cat 0	0
7228.4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Cat 0	0
7228.40.90	- - 기타	Cat 0	0
7228.5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Cat 0	0
7228.50.90	- - 기타	Cat 0	0
7228.60.10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Cat 0	0
7228.60.90	- - 기타	Cat 0	0
7228.70.10	- - 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또는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Cat 0	0
7228.70.90	- - 기타	Cat 0	0
7228.80.11	- - - 횡단면이 원형인 것	Cat 0	0
7228.80.19	- - - 기타	Cat 0	0
7228.80.90	- - 기타	Cat 0	0
7229.20.00	- 실리코망간강의 것	Cat 0	0
7229.90.20	- - 횡단면이 5.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229.90.30	- - 기타(고속도강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229.90.91	- - - 크로뮴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5 이상인 것	Cat 0	0
7229.90.99	- - - 기타	Cat 0	0
7301.10.00	- 널말뚝(sheet piling)	Cat 0	0
7301.20.00	- 형강(形鋼)	Cat 0	0
7302.10.00	- 레일(rail)	Cat 0	0
7302.30.00	-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 · 교차구류(crossing frog) · 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Cat 0	0
7302.40.00	-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Cat 0	0
7302.90.10	- - 받침목(크로스타이)	Cat 0	0
7302.90.90	- - 기타	Cat 0	0
7303.00.11	- - 허브리스(hubless) 관	Cat 0	0
7303.00.19	- - 기타	Cat 0	0
7303.00.91	- - 바깥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303.00.99	- - 기타	Cat 0	0
7304.11.00	- - 스테인리스강의 것	Cat 0	0
7304.19.00	- - 기타	Cat 0	0
7304.22.10	- - - 항복강도가 80,000psi 미만이고, 나선가공 하지 않은 파이프-엔드(pipe-end)의 것	Cat 0	0
7304.22.90	- - - 기타	Cat 0	0
7304.23.10	- - - 항복강도가 80,000psi 미만이고, 나선가공 하지 않은 파이프-엔드(pipe-end)의 것	Cat 0	0
7304.23.90	- - - 기타	Cat 0	0
7304.24.10	- - - 케이싱과 튜빙(tubing)(항복강도가 80,000psi 미만이고, 나선가공 하지 않은 엔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4.24.90	- - - 기타	Cat 0	0
7304.29.10	- - - 케이싱과 튜빙(tubing)(항복강도가 80,000psi 미만이고, 나선가공 하지 않은 엔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4.29.90	- - - 기타	Cat 0	0
7304.31.10	- - - 드릴로드 케이싱과 튜빙(tubing)[핀(pin)과 박스 스레드(box threads)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4.31.20	- - - 4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압력 파이프	Cat 0	0
7304.31.40	- - - 기타(바깥지름이 14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탄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4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4.31.90	- - - 기타	Cat 0	0
7304.39.20	- - - 4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압력 파이프	Cat 0	0
7304.39.40	- - - 기타(바깥지름이 14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탄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4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4.39.90	- - - 기타	Cat 0	0
7304.41.00	-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Cat 0	0
7304.49.00	- - 기타	Cat 0	0
7304.51.10	- - - 드릴로드 케이싱과 튜빙(tubing)[핀(pin)과 박스 스레드(box threads)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4.51.20	- - - 4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압력 파이프	Cat 0	0
7304.51.90	- - - 기타	Cat 0	0
7304.59.10	- - - 4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압력 파이프	Cat 0	0
7304.59.90	- - - 기타	Cat 0	0
7304.90.10	- - 4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압력 파이프	Cat 0	0
7304.90.30	- - 기타(바깥지름이 14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탄소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4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4.90.90	- - 기타	Cat 0	0
7305.11.00	- - 제노 평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submerged arc) 용접한 것	Cat 0	0
7305.12.10	- - - 전기저항용접(이 · 알 · 더블유)한 것	Cat 0	0
7305.12.90	- - - 기타	Cat 0	0
7305.19.10	- - - 나선이나 나선형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Cat 0	0
7305.19.90	- - - 기타	Cat 0	0
7305.20.00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Cat 0	0
7305.31.10	- - - 스테인리스강 관	Cat 0	0
7305.31.90	- - - 기타	Cat 0	0
7305.39.10	- - - 4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압력 파이프	Cat 0	0
7305.39.90	- - - 기타	Cat 0	0
7305.90.00	- 기타	Cat 0	0
7306.11.10	- - - 세로 방향으로 전기저항용접(이 · 알 · 더블유)한 것	Cat 15	5
7306.11.20	- - - 나선이나 나선형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Cat 15	5
7306.11.90	- - - 기타	Cat 15	5
7306.19.10	- - - 세로 방향으로 전기저항용접(이 · 알 · 더블유)한 것	Cat 15	5
7306.19.20	- - - 나선이나 나선형 서브머지드아크 용접한 것	Cat 15	5
7306.19.90	- - - 기타	Cat 15	5
7306.21.00	-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306.29.00	- - 기타	Cat 0	0
7306.30.11	- - - 바깥지름이 12.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306.30.19	- - - 기타	Cat 0	0
7306.30.21	- - - 바깥지름이 12.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306.30.29	- - - 기타	Cat 0	0
7306.30.30	- - 바깥지름이 12밀리미터 이하인 파이프[전기다리미나 전기발송용 발열체로 사용하는 시드(sheath) 파이프(히터 파이프)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6.30.41	- - - 바깥지름이 12.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15	5
7306.30.49	- - - 기타	Cat 15	5
7306.30.91	- - - 내부지름이 12.5밀리미터 이상, 바깥지름이 140밀리미터 미만인 것(탄소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0.4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7306.30.92	- - - 내부지름이 12.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15	5
7306.30.99	- - - 기타	Cat 15	5
7306.40.11	- - - 바깥지름이 12.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306.40.19	- - - 기타	Cat 0	0
7306.40.20	- - 스테인리스강의 관(바깥지름이 1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6.40.30	- - 니켈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30 이상인 관(바깥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6.40.90	- - 기타	Cat 0	0
7306.50.11	- - - 바깥지름이 12.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306.50.19	- - - 기타	Cat 0	0
7306.50.91	- - - 바깥지름이 12.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306.50.99	- - - 기타	Cat 0	0
7306.61.10	- - - 바깥 대각선 횡단면이 12.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306.61.90	- - - 기타	Cat 0	0
7306.69.10	- - - 바깥 대각선 횡단면이 12.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306.69.90	- - - 기타	Cat 0	0
7306.90.11	- - - 바깥 대각선 횡단면이 12.5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306.90.19	- - - 기타	Cat 0	0
7306.90.91	- - - 42,000psi 이상의 압력을 견딜 수 있는 고압력 파이프(내부지름이 12.5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7306.90.92	- - - 그 밖의 고압력 파이프	Cat 15	5
7306.90.93	- - - 기타(바깥 대각선 횡단면이 12.5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7306.90.99	- - - 기타	Cat 15	5
7307.11.10	- - - 허브리스(hubless) 관 연결구류	Cat 0	0
7307.11.90	- - - 기타	Cat 0	0
7307.19.00	- - 기타	Cat 15	5
7307.21.10	- - - 내부지름이 15센티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307.21.90	- - - 기타	Cat 0	0
7307.22.10	- - - 내부지름이 15센티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307.22.90	- - - 기타	Cat 0	0
7307.23.10	- - - 내부지름이 15센티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307.23.90	- - - 기타	Cat 0	0
7307.29.10	- - - 내부지름이 15센티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307.29.90	- - - 기타	Cat 0	0
7307.91.10	- - - 내부지름이 15센티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307.91.90	- - - 기타	Cat 0	0
7307.92.10	- - - 내부지름이 15센티미터 미만인 것	Cat 15	5
7307.92.90	- - - 기타	Cat 15	5
7307.93.10	- - - 내부지름이 15센티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307.93.90	- - - 기타	Cat 0	0
7307.99.10	- - - 내부지름이 15센티미터 미만인 것	Cat 0	0
7307.99.90	- - - 기타	Cat 0	0
7308.10.10	- - 시어(shear) 커넥터로 결합한 조립식 모듈형의 것	Cat 0	0
7308.10.90	- - 기타	Cat 0	0
7308.20.11	- - - 시어(shear) 커넥터로 결합한 조립식 모듈형의 것	Cat 0	0
7308.20.19	- - - 기타	Cat 0	0
7308.20.21	- - - 시어(shear) 커넥터로 결합한 조립식 모듈형의 것	Cat 0	0
7308.20.29	- - - 기타	Cat 0	0
7308.30.10	- - 문(두께가 6밀리미터 이상 8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8.30.90	- - 기타	Cat 0	0
7308.40.10	- - 시어(shear) 커넥터로 결합한 조립식 모듈형의 것	Cat 0	0
7308.40.9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308.90.20	- - 시어(shear) 커넥터로 결합한 조립식 모듈형의 것	Cat 0	0
7308.90.40	- - 물결 모양과 곡면으로 된 아연도금을 한 판이나 시트(sheets)[도관(conduits), 지하수로(culverts)나 터널용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08.90.50	- - 선박용 레일	Cat 0	0
7308.90.60	- - 구멍을 뚫은 케이블 트레이	Cat 0	0
7308.90.92	- - - 가드레일	Cat 0	0
7308.90.99	- - - 기타	Cat 0	0
7309.00.11	- - 내장이나 열절연한 것	Cat 15	5
7309.00.19	- - 기타	Cat 15	5
7309.00.91	- - 내장이나 열절연한 것	Cat 15	5
7309.00.99	- - 기타	Cat 15	5
7310.10.10	- - 주석도금한 것	Cat 0	0
7310.10.91	- - - 주조, 단조나 스탬핑(stamping)(거친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0.10.99	- - - 기타	Cat 0	0
7310.21.10	- - - 용적이 1리터 미만인 것	Cat 0	0
7310.21.91	- - - - 주석도금한 것	Cat 0	0
7310.21.99	- - - - 기타	Cat 0	0
7310.29.10	- - - 용적이 1리터 미만인 것	Cat 0	0
7310.29.91	- - - - 주석도금한 것	Cat 0	0
7310.29.92	- - - - 그 밖의 주조, 단조나 스탬핑(stamping)(거친 상태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0.29.99	- - - - 기타	Cat 0	0
7311.00.23	- - 용적이 30리터 미만인 것[액화석유가스(LPG)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1.00.24	- - 용적이 30리터 이상 110리터 미만인 것[액화석유가스(LPG)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1.00.25	- - 기타[액화석유가스(LPG)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1.00.26	- - 기타(용적이 30리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1.00.27	- - 기타(용적이 30리터 이상이고 110리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1.00.29	- - 기타	Cat 0	0
7311.00.91	- - 용적이 7.3리터 이하인 것	Cat 0	0
7311.00.92	- - 용적이 7.3리터 초과 30리터 미만인 것	Cat 0	0
7311.00.94	- - 용적이 30리터 이상 110리터 미만인 것	Cat 0	0
7311.00.99	- - 기타	Cat 0	0
7312.10.10	- - 록트(locked) 코일, 플랫텐드(flattened) 스트랜드와 비자전(non-rotating) 와이어로프	Cat 0	0
7312.10.20	- - 황동을 도금이나 도포하고 지름이 3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312.10.91	- - - 철강으로 만든 연선[프리스트레싱 콘크리트(prestressing concrete)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2.10.99	- - - 기타	Cat 0	0
7312.90.00	- 기타	Cat 0	0
7313.00.00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銃), 대 또는 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Cat 0	0
7314.12.00	-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4.14.00	- -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4.19.10	- -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Cat 0	0
7314.19.90	- - - 기타	Cat 0	0
7314.20.00	- 그릴·망 및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4.31.00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0	0
7314.39.00	- - 기타	Cat 0	0
7314.41.00	-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Cat 0	0
7314.42.00	-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Cat 0	0
7314.49.00	- - 기타	Cat 0	0
7314.50.00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Cat 0	0
7315.11.10	- -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체인	Cat 0	0
7315.11.91	- - - - 트랜스미션 형[피치(pitch)의 길이가 6밀리미터 이상이고 3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5.11.99	- - - - 기타	Cat 0	0
7315.12.10	- -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체인	Cat 0	0
7315.12.90	- - - 기타	Cat 0	0
7315.19.10	- -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체인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315.19.90	- - - 기타	Cat 0	0
7315.20.00	- 스킨드체인(skid chain)	Cat 0	0
7315.81.00	- - 스테드링크(stud-link)	Cat 0	0
7315.82.00	-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15.89.10	- -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체인	Cat 0	0
7315.89.90	- - - 기타	Cat 0	0
7315.90.20	- - 자전거나 모터사이클용 체인의 것	Cat 0	0
7315.90.90	- - 기타	Cat 0	0
7316.00.00	철강으로 만든 닳과 그 부분품	Cat 0	0
7317.00.10	- 머리가 둥근 못(wire nails)	Cat 0	0
7317.00.20	- 스테이플	Cat 0	0
7317.00.30	- 철도레일 침목용 큰 못, 갱 네일(gang nails)	Cat 0	0
7317.00.90	- 기타	Cat 0	0
7318.11.00	-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Cat 0	0
7318.12.10	- - - 생크 바깥지름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318.12.90	- - - 기타	Cat 0	0
7318.13.00	- -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Cat 0	0
7318.14.10	- - - 생크 바깥지름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318.14.90	- - - 기타	Cat 0	0
7318.15.10	- - - 생크 바깥지름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15	5
7318.15.90	- - - 기타	Cat 15	5
7318.16.10	- - - 생크 바깥지름이 16밀리미터 이하인 볼트용	Cat 0	0
7318.16.90	- - - 기타	Cat 0	0
7318.19.10	- - - 생크 바깥지름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318.19.90	- - - 기타	Cat 0	0
7318.21.00	- -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Cat 0	0
7318.22.00	- - 그 밖의 와셔(washer)	Cat 15	5
7318.23.10	- - - 바깥지름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15	5
7318.23.90	- - - 기타	Cat 15	5
7318.24.00	- -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Cat 0	0
7318.29.10	- - - 생크 바깥지름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318.29.90	- - - 기타	Cat 0	0
7319.40.10	- - 안전핀	Cat 0	0
7319.40.20	- - 그 밖의 핀	Cat 0	0
7319.90.10	- - 수봉침·수편침 또는 자수침	Cat 0	0
7319.90.90	- - 기타	Cat 0	0
7320.10.11	- - - 제8702호, 제8703호나 제8704호의 차량용에 적합한 것	Cat 5	20
7320.10.12	- - - 그 밖의 차량용에 적합한 것	Cat 5	15
7320.10.19	- - - 기타	Cat 0	0
ex1 7320.10.90	철도차량용 커플링 스프링(coupling spring)	Cat 0	0
ex2 7320.10.90	기타	SL	15
7320.20.11	- - - 차량용의 것	Cat 0	5
7320.20.12	- - - 토목용 기계의 것	Cat 0	5
7320.20.19	- - - 기타	Cat 0	5
7320.20.90	- - 기타	Cat 15	5
7320.90.10	- - 차량용에 적합한 것	Cat 0	0
7320.90.90	- - 기타	Cat 0	0
7321.11.00	-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Cat 0	0
7321.12.00	- - 액체연료용	Cat 15	5
7321.19.10	- - - 고체연료용	Cat 15	5
7321.19.90	- - - 기타	Cat 0	0
7321.81.00	-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Cat 15	5
7321.82.00	- - 액체연료용	Cat 15	5
7321.89.00	-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Cat 15	5
7321.90.10	- - 등유 스토프의 것	Cat 0	0
7321.90.20	- - 가스 연료를 이용한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의 것	Cat 0	0
7321.90.90	- - 기타	Cat 0	0
7322.11.00	- - 주철로 만든 것	Cat 0	0
7322.19.00	- - 기타	Cat 0	0
7322.90.00	- 기타	Cat 0	0
7323.10.00	-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7323.91.10	- - - 주방용품	Cat 15	5
7323.91.20	- - - 재떨이	Cat 15	5
7323.91.90	- - - 기타	Cat 1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323.92.00	-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Cat 0	0
7323.93.10	- - - 주방용품	Cat 0	0
7323.93.20	- - - 재떨이	Cat 0	0
7323.93.90	- - - 기타	Cat 0	0
7323.94.00	- -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Cat 0	0
7323.99.10	- - - 주방용품	Cat 0	0
7323.99.20	- - - 재떨이	Cat 0	0
7323.99.90	- - - 기타	Cat 0	0
7324.10.10	- - 주방용 설거지통	Cat 0	0
7324.10.90	- - 기타	Cat 0	0
7324.21.10	- - - 내부 모양이 직사각형이나 장방형인 욕조	Cat 0	0
7324.21.90	- - - 기타	Cat 0	0
7324.29.10	- - - 내부 모양이 직사각형이나 장방형인 욕조	Cat 15	5
7324.29.90	- - - 기타	Cat 15	5
7324.90.10	- - 수세식 화장실이나 소변기(고정 형태)	Cat 0	0
7324.90.30	- - 변기와 휴대용 소변기	Cat 0	0
7324.90.91	- - - 주방용 설거지통이나 욕조의 부분품	Cat 0	0
7324.90.93	- - - 수세식 화장실이나 소변기(고정 형태)의 부분품	Cat 0	0
7324.90.99	- - - 기타	Cat 0	0
7325.10.20	- - 맨홀 커버 · 그레이팅과 그들의 프레임	Cat 0	0
7325.10.30	- - 라텍스 수집용 스파우트와 컵	Cat 0	0
7325.10.90	- - 기타	Cat 0	0
7325.91.00	-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7325.99.20	- - - 맨홀 커버 · 그레이팅과 그들의 프레임	Cat 0	0
7325.99.90	- - - 기타	Cat 0	0
7326.11.00	-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Cat 0	0
7326.19.00	- - 기타	Cat 0	0
7326.20.50	- - 가금류 우리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7326.20.60	- - 쥐덫	Cat 0	0
7326.20.90	- - 기타	Cat 0	0
7326.90.10	- - 배의 키(rudders)	Cat 0	0
7326.90.20	- - 라텍스 수집용 스파우트와 컵	Cat 0	0
7326.90.30	- - 스테인리스강 클램프 조립품(고무 슬라이브가 있는 것으로, 허브리스 주철 관과 관 연결구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326.90.60	- - 분젠 버너	Cat 15	5
7326.90.70	- - 편자, 승마구두 스퍼(spurs)	Cat 15	5
7326.90.91	- - - 담배 케이스와 박스	Cat 15	5
7326.90.99	- - - 기타	Cat 15	5
7401.00.00	구리의 매트(mat), 시멘트동(침전동)	Cat 0	0
7402.00.00	정제하지 않은 구리,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Cat 0	0
7403.11.00	- - 음극과 음극의 형재	Cat 0	0
7403.12.00	- - 와이어바(wire-bar)	Cat 0	0
7403.13.00	- - 빌릿(billet)	Cat 0	0
7403.19.00	- - 기타	Cat 0	0
7403.21.00	- -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Cat 0	0
7403.22.00	- -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Cat 0	0
7403.29.00	- - 그 밖의 구리합금[제7405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Cat 0	0
7404.00.00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7405.00.00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Cat 0	0
7406.10.00	-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Cat 0	0
7406.20.00	- 충상조직인 가루, 플레이크(flake)	Cat 0	0
7407.10.30	- - 프로파일(profile)	Cat 0	0
7407.10.40	- - 막대(bar, rod)	Cat 0	0
7407.21.00	- -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Cat 0	0
7407.29.00	- - 기타	Cat 0	0
7408.11.10	-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14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Cat 0	1
7408.11.90	- - - 기타	Cat 0	1
7408.19.00	- - 기타	Cat 0	0
7408.21.00	- -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Cat 0	0
7408.22.00	- -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Cat 0	0
7408.29.00	- - 기타	Cat 0	0
7409.11.00	- - 코일 모양인 것	Cat 0	0
7409.19.0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409.21.00	- - 코일 모양인 것	Cat 0	0
7409.29.00	- - 기타	Cat 0	0
7409.31.00	- - 코일 모양인 것	Cat 0	0
7409.39.00	- - 기타	Cat 0	0
7409.40.00	-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Cat 0	0
7409.90.00	- 그 밖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410.11.00	-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Cat 0	0
7410.12.00	-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410.21.10	- - - 인쇄 회로판용 동박적층기판	Cat 0	0
7410.21.90	- - - 기타	Cat 0	0
7410.22.00	-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411.1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Cat 0	0
7411.21.00	- -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Cat 0	0
7411.22.00	- - 구리-니켈 합금(백동)으로 만든 것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양백)으로 만든 것	Cat 0	0
7411.29.00	- - 기타	Cat 0	0
7412.10.0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Cat 0	0
7412.20.20	- - 호스 연결구류	Cat 0	0
7412.20.91	- - - 구리-아연 합금(황동)으로 만든 것	Cat 0	0
7412.20.99	- - - 기타	Cat 0	0
ex1 7413.00.10	케이블	Cat 0	0
ex2 7413.00.10	기타	Cat 15	5
ex1 7413.00.90	케이블	Cat 0	0
ex2 7413.00.90	기타	Cat 15	5
7415.10.10	- - 못	Cat 0	0
7415.10.20	- - 스테이플	Cat 0	0
7415.10.90	- - 기타	Cat 0	0
7415.21.00	-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Cat 0	0
7415.29.00	- - 기타	Cat 0	0
7415.33.10	- - - 스크루	Cat 0	0
7415.33.20	- - - 볼트와 너트	Cat 0	0
7415.39.00	- - 기타	Cat 0	0
7418.10.10	- -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7418.10.30	- - 조리나 가열용 기구(가정용에 사용되는 전기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Cat 0	0
7418.10.90	- - 기타	Cat 0	0
7418.20.0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Cat 0	0
7419.10.00	- 체인과 그 부분품	Cat 0	0
7419.91.10	- - -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419.91.90	- - - 기타	Cat 0	0
7419.99.31	- - - - 기계류용의 것	Cat 0	0
7419.99.39	- - - - 기타	Cat 0	0
7419.99.40	- - - 스프링	Cat 0	0
7419.99.50	- - - 담배 케이스나 박스	Cat 0	0
7419.99.60	- - - 조리나 가열용 기구(가정용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Cat 0	0
7419.99.70	- - - 특별히 종교 의식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제품	Cat 0	0
7419.99.91	- - - - 전기 도금용 양극, 용적축정구(가정용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7419.99.92	- - - - 저장기·탱크·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419.99.99	- - - - 기타	Cat 0	0
7501.10.00	- 니켈의 매트(mat)	Cat 0	0
7501.20.00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Cat 0	0
7502.10.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	Cat 0	0
7502.20.00	- 니켈 합금	Cat 0	0
7503.00.00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7504.00.00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Cat 0	0
7505.11.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Cat 0	0
7505.12.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505.21.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Cat 0	0
7505.22.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506.10.00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506.20.00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507.11.00	-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Cat 0	0
7507.12.00	-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507.20.00	- 관(管) 연결구류	Cat 0	0
7508.10.00	-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 그릴 및 망	Cat 0	0
7508.90.30	- - 볼트와 너트	Cat 0	0
7508.90.50	- - 전기도금용 양극(전기분해에 의해 생산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7508.90.90	- - 기타	Cat 0	0
7601.1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Cat 0	0
7601.20.00	- 알루미늄 합금	Cat 0	0
7602.00.00	알루미늄 웨이스트와 스크랩	Cat 0	0
7603.10.00	- 비(非)충상조직인 가루	Cat 0	0
7603.20.10	- - 플레이크(flake)	Cat 0	0
7603.20.20	- - 충상조직인 가루	Cat 0	0
7604.10.10	- - 막대(bar, rod)	Cat 0	0
7604.10.90	- - 기타	Cat 0	0
7604.21.10	- - - 천공된 튜브 프로파일(자동차용 공기조절기의 증발기 코일용으로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604.21.20	- - - 알루미늄 스페이서(한 면에 전체 길이에 걸쳐 작은 구멍이 있는 중공프로파일)	Cat 0	0
7604.21.90	- - - 기타	Cat 0	0
7604.29.10	- - - 압출한 봉	Cat 0	0
7604.29.30	- - - 지퍼 파스너(fastener)용의 와이(Y)형 프로파일(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7604.29.90	- - - 기타	Cat 0	0
7605.11.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605.19.10	- - - 지름이 0.0508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605.19.90	- - - 기타	Cat 0	0
7605.21.00	-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7605.29.10	- - - 지름이 0.254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605.29.90	- - - 기타	Cat 0	0
7606.11.10	- - - 롤링이나 프레싱으로 평평하거나 무늬가 있는 것(그 밖의 방법으로 표면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606.11.90	- - - 기타	Cat 0	0
7606.12.20	- - - 알루미늄 판(감광처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인쇄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606.12.32	- - - - 캔 스톡(stock) 제조용(엔드 스톡과 탭 스톡을 포함하며,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7606.12.33	- - - - 기타(알루미늄합금 5082 또는 5182의 것으로서 폭이 1미터를 초과하는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Cat 0	0
7606.12.34	- - - - 기타(석판 시트 합금 HA 1052 견고성 H19 및 합금 HA 1050 견고성 H18)	Cat 0	0
7606.12.35	- - - - 기타(표면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606.12.39	- - - - 기타	Cat 0	0
7606.12.90	- - - 기타	Cat 0	0
7606.91.00	-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Cat 0	0
7606.92.00	-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607.11.00	- -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Cat 0	0
7607.19.00	- - 기타	Cat 0	0
ex1 7607.20.10	모조 금이나 은(패턴으로 인쇄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ex2 7607.20.10	기타	Cat 15	5
ex1 7607.20.90	모조 금이나 은(패턴으로 인쇄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ex2 7607.20.90	기타	Cat 15	5
7608.10.0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Cat 0	0
7608.20.0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7609.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Cat 0	0
7610.10.10	- - 문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Cat 0	0
7610.10.90	- - 기타	Cat 0	0
7610.90.30	- - 석유 저장탱크용 내부나 외부용 플로팅 루프	Cat 0	0
7610.90.91	- - - 다리와 교량, 탑 또는 격자주(格子柱)	Cat 0	0
7610.90.99	- - - 기타	Cat 0	0
7611.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7612.10.00	- 연질의 튜브형 용기	Cat 0	0
7612.90.10	- - 신선한 밀크용의 이음매 없는 용기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7612.90.90	- - 기타	Cat 0	0
7613.00.00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7614.10.11	- - - 지름이 25.3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614.10.12	- - - 지름이 25.3밀리미터 초과 28.28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614.10.19	- - - 기타	Cat 0	0
7614.10.90	- - 기타	Cat 0	0
7614.90.11	- - - 지름이 25.3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614.90.12	- - - 지름이 25.3밀리미터 초과 28.28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614.90.19	- - - 기타	Cat 0	0
7614.90.90	- - 기타	Cat 0	0
7615.10.10	- -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7615.10.90	- - 기타	Cat 0	0
7615.20.20	- - 변기·소변기와 요강	Cat 0	0
7615.20.90	- - 기타	Cat 0	0
7616.10.10	- - 못	Cat 0	0
7616.10.20	- - 스테이플과 축, 볼트와 너트	Cat 0	0
7616.10.90	- - 기타	Cat 0	0
7616.91.00	- -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 및 울타리	Cat 0	0
7616.99.20	- - - 연필 제조용의 끼움고리(ferrules)	Cat 0	0
7616.99.30	- - - 슬러그(slugs)(둥근 것으로, 치수는 두께가 직경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7616.99.40	- - - 보빈(bobbin)·스풀(spool)·릴(reel) 및 이와 유사한 지지구(방직용 섬유실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7616.99.51	- - - - 베네치안 블라인드	Cat 0	0
7616.99.59	- - - - 기타	Cat 0	0
7616.99.60	- - - 라텍스 수집용 스파우트와 컵	Cat 0	0
7616.99.70	- - - 담배 케이스나 박스	Cat 0	0
7616.99.80	- -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Cat 0	0
7616.99.90	- - - 기타	Cat 0	0
7801.10.00	- 정제한 납	Cat 0	0
7801.91.00	- -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Cat 0	0
7801.99.00	- - 기타	Cat 0	0
7802.00.00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7804.11.10	- - - 두께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804.11.90	- - - 기타	Cat 0	0
7804.19.00	- - 기타	Cat 0	0
7804.20.00	- 가루와 플레이크(flake)	Cat 0	0
7806.00.20	- 봉·프로파일(profile)과 선(線)	Cat 0	0
7806.00.30	-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Cat 0	0
7806.00.40	- 연모, 와셔(washer), 전기도금용 양극	Cat 0	0
7806.00.90	- 기타	Cat 0	0
7901.11.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Cat 0	0
7901.12.00	- - 아연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99 미만인 것	Cat 0	0
7901.20.00	- 아연 합금	Cat 0	0
7902.00.00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7903.10.00	- 아연 더스트(dust)	Cat 0	0
7903.90.00	- 기타	Cat 0	0
7904.00.00	아연의 봉·프로파일(profile)과 선(線)	Cat 0	0
7905.00.40	- 두께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7905.00.90	- 기타	Cat 0	0
7907.00.30	- 홀통·지붕덮개·채광 창틀과 그 밖의 가공한 건축용 재료	Cat 0	0
7907.00.40	-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Cat 0	0
7907.00.91	- - 담배 케이스나 박스, 재떨이	Cat 0	0
7907.00.92	- - 그 밖의 가정용 물품	Cat 0	0
7907.00.93	- - 전기도금용 양극, 등사판, 못·압정·너트·볼트·스크루·리벳(rivet)과 이와 유사한 잠금장치, 배터리 셀용 아연 캐럿(calot)	Cat 0	0
7907.00.99	- - 기타	Cat 0	0
8001.10.00	- 합금하지 않은 주석	Cat 0	0
8001.20.00	- 주석 합금	Cat 0	0
8002.00.00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003.00.10	- 납땜 바	Cat 0	0
8003.00.90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007.00.20	- 판(sheet)과 스트립(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007.00.30	- 박[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루와 플레이크	Cat 0	0
8007.00.40	- 관(管)과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엘보(elbow)·슬리브(sleeve)]	Cat 0	0
8007.00.91	- - 담배 케이스나 박스, 재떨이	Cat 0	0
8007.00.92	- - 그 밖의 가정용 물품	Cat 0	0
8007.00.93	- - 연질의 관(管)	Cat 0	0
8007.00.99	- - 기타	Cat 0	0
8101.10.00	- 가루	Cat 0	0
8101.94.00	- - 텅스텐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Cat 0	0
8101.96.00	- - 선	Cat 0	0
8101.97.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1.99.10	- - - 붕[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시트(sheet)·스트립 및 박(箔)	Cat 0	0
8101.99.90	- - - 기타	Cat 0	0
8102.10.00	- 가루	Cat 0	0
8102.94.00	- - 몰리브데늄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Cat 0	0
8102.95.00	- - 붕[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판(sheet)·스트립 및 박(箔)	Cat 0	0
8102.96.00	- - 선	Cat 0	0
8102.97.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2.99.00	- - 기타	Cat 0	0
8103.20.00	- 탄탈륨의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가루	Cat 0	0
8103.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3.90.00	- 기타	Cat 0	0
8104.11.00	-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Cat 0	0
8104.19.00	- - 기타	Cat 0	0
8104.2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4.30.0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연삭설(turning) 및 알갱이, 가루	Cat 0	0
8104.90.00	- 기타	Cat 0	0
8105.20.10	- - 코발트의 괴(塊)	Cat 0	0
8105.20.90	- - 기타	Cat 0	0
8105.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5.90.00	- 기타	Cat 0	0
8106.00.10	- 비스무트(bismuth)의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Cat 0	0
8106.00.90	- 기타	Cat 0	0
8107.20.00	- 카드뮴의 괴(塊), 가루	Cat 0	0
8107.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7.90.00	- 기타	Cat 0	0
8108.20.00	- 티타늄의 괴(塊), 가루	Cat 0	0
8108.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8.90.00	- 기타	Cat 0	0
8109.20.00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Cat 0	0
8109.3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09.90.00	- 기타	Cat 0	0
8110.10.00	-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Cat 0	0
8110.20.0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10.90.00	- 기타	Cat 0	0
8111.00.1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11.00.90	- 기타	Cat 0	0
8112.12.00	- - 괴(塊), 가루	Cat 0	0
8112.13.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12.19.00	- - 기타	Cat 0	0
8112.21.00	- - 괴(塊), 가루	Cat 0	0
8112.22.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12.29.00	- - 기타	Cat 0	0
8112.51.00	- - 괴(塊), 가루	Cat 0	0
8112.52.00	-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Cat 0	0
8112.59.0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112.92.00	-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Cat 0	0
8112.99.00	- - 기타	Cat 0	0
8113.00.00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Cat 0	0
8201.10.00	- 가래와 삽	Cat 0	0
8201.30.10	- - 괭이와 쇠스랑	Cat 0	0
8201.30.90	- - 기타	Cat 0	0
8201.40.00	-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Cat 0	0
8201.50.00	-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Cat 0	0
8201.60.00	- 울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위	Cat 0	0
8201.90.00	-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수공구	Cat 0	0
8202.10.00	- 수동식 톱	Cat 0	0
8202.20.00	- 띠톱의 날	Cat 0	0
8202.31.00	- -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Cat 0	0
8202.39.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Cat 0	0
8202.40.00	- 체인톱의 날	Cat 0	0
8202.91.00	- -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Cat 0	0
8202.99.10	- - - 직선형 톱날	Cat 0	0
8202.99.90	- - - 기타	Cat 0	0
8203.10.00	-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Cat 0	0
8203.20.00	-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와 유사한 공구	Cat 0	0
8203.30.00	-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구	Cat 0	0
8203.40.00	- 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 펀치와 이와 유사한 공구	Cat 0	0
8204.11.00	- - 조절할 수 없는 것	Cat 0	0
8204.12.00	- - 조절할 수 있는 것	Cat 0	0
8204.20.00	-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8205.10.00	- 드릴링·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Cat 0	0
8205.20.00	- 망치(hammer, sledge hammer)	Cat 0	0
8205.30.00	- 목재 가공용 대패·끌·동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Cat 0	0
8205.40.00	-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Cat 0	0
8205.51.00	- - 가정용 공구	Cat 0	0
8205.59.00	- - 기타	Cat 0	0
8205.60.00	- 블로램프(blow lamp)	Cat 0	0
8205.70.00	-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8205.90.00	-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Cat 0	0
8206.00.00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Cat 0	0
8207.13.00	- -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Cat 0	0
8207.19.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Cat 0	0
8207.20.00	- 금속의 인발(引拔)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Cat 0	0
8207.30.00	-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stamping)용 또는 펀칭(punching)용 공구	Cat 0	0
8207.40.00	-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Cat 0	0
8207.50.00	-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Cat 0	0
8207.60.00	-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Cat 0	0
8207.70.00	- 밀링(milling)용 공구	Cat 0	0
8207.80.00	- 터닝(turning)용 공구	Cat 0	0
8207.90.00	- 그 밖의 호환성 공구	Cat 0	0
8208.10.00	- 금속 가공용	Cat 0	0
8208.20.00	- 목재 가공용	Cat 0	0
8208.30.00	-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Cat 0	0
8208.40.00	-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기계의 것	Cat 0	0
8208.90.00	- 기타	Cat 0	0
8209.00.00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210.00.0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211.1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Cat 0	0
8211.91.00	- -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Cat 0	0
8211.92.50	- - -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의 것	Cat 0	0
8211.92.91	- - - - 잭 나이프 또는 스프링 나이프, 헌팅 나이프·다이빙 나이프 및 스카우트 나이프, 날의 길이가 15센티미터 이상인 펜 나이프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211.92.99	- - - - 기타	Cat 0	0
8211.93.21	- -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의 것	Cat 0	0
8211.93.29	- - - - 기타	Cat 0	0
8211.93.90	- - - 기타	Cat 0	0
8211.94.10	- - - 농업용·원예용 또는 임업용 칼의 것	Cat 0	0
8211.94.90	- - - 기타	Cat 0	0
8211.95.00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Cat 0	0
8212.10.00	- 면도기	Cat 0	0
8212.20.10	- - 양쪽날의 레이저(razor) 면도기	Cat 0	0
8212.20.90	- - 기타	Cat 0	0
8212.90.00	- 그 밖의 부분품	Cat 0	0
8213.00.00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및 이들의 날	Cat 0	0
8214.10.00	- 종이용 칼·편지 개봉기·지우개용 칼·연필깎이와 그 날	Cat 0	0
8214.20.00	-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Cat 0	0
8214.90.00	- 기타	Cat 0	0
8215.10.0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215.20.00	-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Cat 0	0
8215.91.00	-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Cat 0	0
8215.99.00	- - 기타	Cat 0	0
8301.10.00	- 자물쇠	Cat 0	0
8301.20.00	-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Cat 0	0
8301.30.00	-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Cat 0	0
8301.40.10	- - 수갑	Cat 0	0
8301.40.20	- - 도어 록	Cat 0	0
8301.40.90	- - 기타	Cat 0	0
8301.50.00	-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된 것	Cat 0	0
8301.60.00	- 부분품	Cat 0	0
8301.70.00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Cat 0	0
8302.10.00	- 경첩	Cat 0	0
8302.20.10	- - 지름(타이어를 포함한다)이 100밀리미터 초과 25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302.20.90	- - 기타	Cat 0	0
8302.30.10	- - 잠금쇠	Cat 0	0
8302.30.90	- - 기타	Cat 0	0
8302.41.31	- - - - 잠금쇠	Cat 0	0
8302.41.39	- - - - 기타	Cat 0	0
8302.41.90	- - - 기타	Cat 0	0
8302.42.20	- - - 잠금쇠	Cat 0	0
8302.42.90	- - - 기타	Cat 0	0
8302.49.10	- - - 마구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8302.49.91	- - - - 잠금쇠	Cat 0	0
8302.49.99	- - - - 기타	Cat 0	0
8302.50.00	- 모자걸이·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Cat 0	0
8302.60.00	- 자동도어 폐지기	Cat 0	0
8303.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strong-box) 및 스트롱룸(strong-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8304.00.10	- 서류정리함과 카드인덱스함	Cat 0	0
8304.00.91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Cat 0	0
8304.00.92	- - 니켈로 만든 것	Cat 0	0
8304.00.93	- - 구리나 납으로 만든 것	Cat 0	0
8304.00.99	- - 기타	Cat 0	0
8305.10.10	- - 이중 고리 와이어 바인더용의 것	Cat 0	0
8305.10.90	- - 기타	Cat 0	0
8305.20.10	- - 사무용으로 만든 것	Cat 0	0
8305.20.20	- - 기타(철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305.20.90	- - 기타	Cat 0	0
8305.90.10	- - 서류용 클립	Cat 0	0
8305.90.90	- - 기타	Cat 0	0
8306.10.00	- 벨·징과 이와 유사한 것	Cat 0	0
8306.21.00	-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Cat 15	5
8306.29.10	- - - 구리나 납으로 만든 것	Cat 0	0
8306.29.20	- - - 니켈로 만든 것	Cat 0	0
8306.29.30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Cat 0	0
8306.29.90	-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306.30.10	- - 구리로 만든 것	Cat 0	0
8306.30.91	- - - 교차로 또는 급커브 구간에 교통현황을 보여주는 금속 제 거울	Cat 0	0
8306.30.99	- - - 기타	Cat 0	0
8307.10.00	- 철강으로 만든 것	Cat 0	0
8307.90.0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Cat 0	0
8308.10.00	- 훅(hook) · 아이(eye) 및 아일릿(eyelet)	Cat 0	0
8308.20.00	-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Cat 0	0
8308.90.10	- - 비드(bead)	Cat 0	0
8308.90.20	- - 스팅글(spangle)	Cat 0	0
8308.90.90	- - 기타	Cat 0	0
8309.10.00	-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Cat 0	0
8309.90.10	- - 병용 마개	Cat 0	0
8309.90.20	- - 알루미늄 캔의 탑 엔드(Top ends)	Cat 0	0
8309.90.60	- - 에어줄 캔의 엔드(ends)(주석도금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309.90.70	- - 그 밖의 캔용 캡	Cat 0	0
8309.90.81	- - - 병 캡, 스크루 캡	Cat 0	0
8309.90.89	- - - 기타	Cat 0	0
8309.90.91	- - - 병 캡, 스크루 캡	Cat 0	0
8309.90.92	- - - 금속 드럼용 마개, 마개용 커버, 실(seal), 케이스 모서리 보호물	Cat 0	0
8309.90.99	- - - 기타	Cat 0	0
8310.00.0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 · 명판 · 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 · 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8311.10.10	- - 롤 모양인 것	Cat 0	0
8311.10.90	- - 기타	Cat 0	0
8311.20.21	- - - 롤 모양인 것	Cat 0	0
8311.20.29	- - - 기타	Cat 0	0
8311.20.90	- - 기타	Cat 0	0
8311.30.21	- - - 롤 모양인 것	Cat 0	0
8311.30.29	- - - 기타	Cat 0	0
8311.30.91	- - - 롤 모양인 것	Cat 0	0
8311.30.99	- - - 기타	Cat 0	0
8311.90.00	- 기타	Cat 0	0
8401.10.00	- 원자로	Cat 0	0
8401.20.00	-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Cat 0	0
8401.30.00	-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Cat 0	0
8401.40.00	- 원자로의 부분품	Cat 0	0
8402.1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02.1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02.12.11	- - -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15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Cat 0	0
8402.12.19	- - - - 기타	Cat 0	0
8402.12.21	- - -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15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Cat 0	0
8402.12.29	- - - - 기타	Cat 0	0
8402.19.11	- - -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15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Cat 0	0
8402.19.19	- - - - 기타	Cat 0	0
8402.19.21	- - -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15톤을 초과하는 보일러	Cat 0	0
8402.19.29	- - - - 기타	Cat 0	0
8402.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02.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02.90.10	- - 보일러 몸체, 동체나 케이싱	Cat 0	0
8402.90.90	- - 기타	Cat 0	0
8403.10.00	- 보일러	Cat 0	0
8403.90.10	- - 보일러 몸체, 동체나 케이싱	Cat 0	0
8403.90.90	- - 기타	Cat 0	0
8404.10.11	- - - 그을음제거기	Cat 0	0
8404.10.19	- - - 기타	Cat 0	0
8404.10.20	- - 제8403호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것	Cat 0	0
8404.20.00	-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Cat 0	0
8404.90.11	- - - 몸체, 동체나 케이싱	Cat 0	0
8404.90.19	- - - 기타	Cat 0	0
8404.90.21	- - - 몸체, 동체나 케이싱	Cat 0	0
8404.90.29	- - - 기타	Cat 0	0
8404.90.9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05.10.00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8405.90.00	- 부분품	Cat 0	0
8406.10.00	- 선박추진용 터빈	Cat 0	0
8406.81.00	- - 출력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06.82.10	- - - 출력이 5메가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06.82.90	- - - 기타	Cat 0	0
8406.90.00	- 부분품	Cat 0	0
8407.10.00	- 항공기용 엔진	Cat 0	0
8407.21.10	- - - 출력이 22.38킬로와트(30hp) 이하인 것	Cat 0	0
8407.21.90	- - - 기타	Cat 0	0
8407.29.20	- - - 출력이 22.38킬로와트(30hp) 이하인 것	Cat 0	0
8407.29.90	- - - 기타	Cat 0	0
8407.31.00	- - 실린더 용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407.32.11	-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0	0
8407.32.12	- - - - 제8711호의 차량용	Cat 0	0
8407.32.19	- - - - 기타	Cat 0	0
8407.32.21	-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0	0
8407.32.22	- - - - 제8711호의 차량용	Cat 0	0
8407.32.29	- - - - 기타	Cat 0	0
8407.33.10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0	0
8407.33.20	- - - 제8711호의 차량용	Cat 0	0
8407.33.90	- - - 기타	Cat 0	0
8407.34.40	- - - - 보행운전형 트랙터용으로 실린더 용량이 1,1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407.34.50	- - - - 제8701호의 그 밖의 차량용	Cat 0	0
8407.34.60	- - - - 제8711호의 차량용	Cat 0	0
8407.34.71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407.34.72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407.34.73	-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07.34.91	- - - - 보행운전형 트랙터용으로 실린더 용량이 1,1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407.34.92	- - - - 제8701호의 그 밖의 차량용	Cat 0	0
8407.34.93	- - - - 제8711호의 차량용	Cat 0	0
8407.34.94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407.34.95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407.34.99	-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07.90.10	- - 출력이 18.65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07.90.20	- - 출력이 18.65킬로와트 초과 22.38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07.90.90	- - 기타	Cat 0	0
8408.10.10	- - 출력이 22.38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08.10.20	- - 출력이 22.38킬로와트 초과 100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08.10.30	- - 출력이 100킬로와트 초과 750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08.10.90	- - 기타	Cat 0	0
8408.20.10	- - - 소호 제8701.10호의 차량용	Cat 0	0
8408.20.21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408.20.22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3,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408.20.23	- - - - 실린더 용량이 3,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08.20.93	- - - 소호 제8701.10호의 차량용	Cat 0	0
8408.20.94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408.20.9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3,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408.20.96	- - - - 실린더 용량이 3,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08.90.10	- - 출력이 18.65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08.90.51	- - - 제8429호나 제8430호의 기계류에 사용되는 것	Cat 0	0
8408.90.52	- - - 기관차나 철도 차량에 사용되는 것	Cat 0	0
8408.90.59	- - - 기타	Cat 3	5
8408.90.91	- - - 제8429호나 제8430호의 기계류용	Cat 0	0
8408.90.92	- - - 기관차나 철도 차량에 사용되는 것	Cat 0	0
8408.90.99	- - - 기타	Cat 3	5
8409.10.00	- 항공기 엔진용	Cat 0	0
8409.91.1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Cat 0	0
8409.91.1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Cat 0	0
8409.91.1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1.1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Cat 0	0
8409.91.1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09.91.1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1.17	- - - - 그 밖의 피스톤	Cat 0	0
8409.91.18	- - - - 피스톤 링과 거전 핀	Cat 0	0
8409.91.19	- - - - 기타	Cat 0	0
8409.91.2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Cat 0	0
8409.91.2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Cat 0	0
8409.91.2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1.2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Cat 0	0
8409.91.2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1.28	- - - - 피스톤 링과 거전 핀	Cat 0	0
8409.91.29	- - - - 기타	Cat 0	0
8409.91.3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Cat 0	0
8409.91.3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Cat 0	0
8409.91.34	- - - - 실린더 라이너	Cat 0	0
8409.91.3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Cat 0	0
8409.91.37	- - - - 피스톤	Cat 0	0
8409.91.38	- - - - 피스톤 링과 거전 핀	Cat 0	0
8409.91.39	- - - - 기타	Cat 0	0
8409.91.4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Cat 0	0
8409.91.4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Cat 0	1
8409.91.4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1.4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Cat 0	0
8409.91.4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Cat 0	1
8409.91.4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1.47	- - - - 그 밖의 피스톤	Cat 0	0
8409.91.48	- - - - 피스톤 링과 거전 핀	Cat 0	0
8409.91.49	- - - - 기타	Cat 0	0
8409.91.51	-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Cat 0	0
8409.91.52	-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1.53	-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Cat 0	0
8409.91.54	-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1.55	- - - - - 그 밖의 피스톤	Cat 0	0
8409.91.59	- - - - - 기타	Cat 0	0
8409.91.61	-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Cat 0	0
8409.91.62	-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1.63	-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Cat 0	0
8409.91.64	-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1.69	- - - - - 기타	Cat 0	0
8409.91.7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Cat 0	0
8409.91.7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Cat 0	0
8409.91.7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1.7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Cat 0	0
8409.91.7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1.77	- - - - 그 밖의 피스톤	Cat 0	0
8409.91.78	- - - - 피스톤 링과 거전 핀	Cat 0	0
8409.91.79	- - - - 기타	Cat 0	0
8409.99.1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Cat 0	0
8409.99.1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Cat 0	0
8409.99.1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9.1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Cat 0	0
8409.99.1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Cat 0	0
8409.99.1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9.17	- - - - 그 밖의 피스톤	Cat 0	0
8409.99.18	- - - - 피스톤 링과 거전 핀	Cat 0	0
8409.99.19	- - - - 기타	Cat 0	0
8409.99.2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09.99.2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Cat 0	0
8409.99.2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9.2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Cat 0	0
8409.99.2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Cat 0	0
8409.99.2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9.27	- - - - 그 밖의 피스톤	Cat 0	0
8409.99.28	- - - - 피스톤 링과 거전 핀	Cat 0	0
8409.99.29	- - - - 기타	Cat 0	0
8409.99.3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Cat 0	0
8409.99.3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Cat 0	0
8409.99.33	- - - - 실린더 라이너	Cat 0	0
8409.99.34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Cat 0	0
8409.99.35	- - - - 피스톤	Cat 0	0
8409.99.36	- - - - 피스톤 링과 거전 핀	Cat 0	0
ex1 8409.99.39	교류발전기 브래킷(Bracket), 오일팬(oil pan)	Cat 0	0
ex2 8409.99.39	기타	Cat 15	1
8409.99.4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Cat 0	0
8409.99.4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Cat 0	0
8409.99.4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9.4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Cat 0	0
8409.99.4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Cat 0	0
8409.99.4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9.47	- - - - 그 밖의 피스톤	Cat 0	0
8409.99.48	- - - - 피스톤 링과 거전 핀	Cat 0	0
ex1 8409.99.49	교류발전기 브래킷(Bracket), 오일팬(oil pan)	Cat 0	0
ex2 8409.99.49	기타	Cat 15	1
8409.99.51	-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Cat 0	1
8409.99.52	-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1
8409.99.53	-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Cat 0	1
8409.99.54	-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1
8409.99.55	- - - - - 그 밖의 피스톤	Cat 0	1
8409.99.59	- - - - - 기타	Cat 0	1
8409.99.61	-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Cat 0	1
8409.99.62	-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1
8409.99.63	-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Cat 0	1
8409.99.64	-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1
8409.99.65	- - - - - 그 밖의 피스톤	Cat 0	1
8409.99.69	- - - - - 기타	Cat 0	1
8409.99.71	- - - - 기화기와 그 부분품	Cat 0	0
8409.99.72	- - - - 실린더 블록, 크랭크 케이스	Cat 0	0
8409.99.73	- - - - 실린더 라이너(내부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9.74	- - - - 그 밖의 실린더 라이너	Cat 0	0
8409.99.75	- - - - 실린더 헤드와 헤드 커버	Cat 0	0
8409.99.76	- - - - 피스톤(바깥지름이 50밀리미터 이상 15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09.99.77	- - - - 그 밖의 피스톤	Cat 0	0
8409.99.78	- - - - 피스톤 링과 거전 핀	Cat 0	0
8409.99.79	- - - - 기타	Cat 0	0
8410.11.00	-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10.12.00	-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10.13.00	- -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10.90.0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Cat 0	0
8411.11.00	- -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것	Cat 0	0
8411.12.00	- -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411.21.00	- -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11.22.00	- -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11.81.00	- -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11.82.00	- -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11.91.00	- -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11.99.00	- - 기타	Cat 0	0
8412.10.00	-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Cat 0	0
8412.21.00	-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Cat 0	0
8412.29.00	- - 기타	Cat 0	0
8412.31.00	-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Cat 0	0
8412.39.00	- - 기타	Cat 0	0
8412.80.00	- 기타	Cat 0	0
8412.90.10	- - 소호 제8412.10호의 엔진용의 것	Cat 0	0
8412.90.20	- - 보일러를 갖춘 증기원동기용	Cat 0	0
8412.90.90	- - 기타	Cat 0	0
8413.11.00	-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Cat 0	0
8413.1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13.1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13.20.10	- - 워터펌프	Cat 0	0
8413.20.20	- - 유축기	Cat 0	0
8413.20.90	- - 기타	Cat 0	0
8413.30.30	- - 제8702호, 제8703호나 제8704호의 차량용 엔진에 사용되는 연료펌프	Cat 15	15
8413.30.40	- - 제8702호, 제8703호나 제8704호의 차량용 엔진에 사용되는 워터펌프	Cat 5	15
ex1 8413.30.51	자동차용(원심형은 제외한다)	Cat 15	1
ex2 8413.30.51	기타	Cat 0	1/0
ex1 8413.30.52	자동차용(원심형은 제외한다)	Cat 15	1
ex2 8413.30.52	기타	Cat 0	1/0
ex1 8413.30.90	자동차용(원심형은 제외한다)	Cat 15	1
ex2 8413.30.90	기타	Cat 0	1/0
8413.40.00	- 콘크리트 펌프	Cat 0	0
8413.50.31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13.50.3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13.50.40	- - 워터펌프(유속이 시간당 8,000세제곱미터 초과 13,0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13.50.90	- - 기타	Cat 0	0
8413.60.31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13.60.3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13.60.40	- - 워터펌프(유속이 시간당 8,000세제곱미터 초과 13,0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13.60.90	- - 기타	Cat 0	0
8413.70.11	- - - 흡입구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413.70.19	- - - 기타	Cat 0	0
8413.70.31	- - - 흡입구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413.70.39	- - - 기타	Cat 0	0
8413.70.42	- - - 흡입구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이면서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13.70.43	- - - 흡입구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이면서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13.70.49	- - - 기타	Cat 0	0
8413.70.51	- - - 흡입구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413.70.59	- - - 기타	Cat 0	0
8413.70.91	- - - 흡입구 지름이 20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413.70.99	- - - 기타	Cat 0	0
8413.81.13	- - - 워터펌프(유속이 시간당 8,000세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기작동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13.81.14	- - - 워터펌프(유속이 시간당 8,000세제곱미터 이하이면서 전기작동식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13.81.15	- - - 워터펌프(유속이 시간당 8,000세제곱미터 초과 13,000세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13.81.19	- - - 기타	Cat 0	0
8413.82.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13.82.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13.91.10	- - - 소호 제8413.20.10호의 펌프의 것	Cat 0	0
8413.91.20	- - - 소호 제8413.20.20호와 제8413.20.90호의 펌프의 것	Cat 0	0
8413.91.30	- - - 소호 제8413.70.11호와 제8413.70.19호의 펌프의 것	Cat 0	0
8413.91.40	- - - 그 밖의 원심펌프의 것	Cat 0	0
8413.91.90A	-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13.91.90B	-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13.92.00	-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Cat 0	0
8414.10.00	- 진공펌프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14.20.10	- - 자전거펌프	Cat 0	0
8414.20.90	- - 기타	Cat 0	0
8414.30.40	- - 냉장고 용량이 21.10킬로와트를 초과하거나 220시시 이상의 회전당 변위를 가지고 있는 것	Cat 0	0
8414.30.90	- - 기타	Cat 0	0
8414.40.00	-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Cat 0	0
8414.51.10	- - - 테이블 팬과 박스 팬	Cat 0	0
8414.51.91	- - - - 보호용 차폐가 있는 것	Cat 0	0
8414.51.99	- - - - 기타	Cat 0	0
8414.59.20	- - - - 광산에 쓰이는 방폭용 에어팬	Cat 15	5
8414.59.30	- - - - 송풍기	Cat 15	5
8414.59.41A	- - - - -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유닛 냉각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팬	Cat 15	3
8414.59.41B	- - - - - 기타	Cat 15	5
8414.59.49A	- - - - - 마이크로프로세서, 전기통신용 기기, 자동자료처리기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유닛 냉각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팬	Cat 15	3
8414.59.49B	- - - - - 기타	Cat 15	5
8414.59.50	- - - - 송풍기	Cat 15	5
8414.59.91	- - - - - 보호용 차폐가 있는 것	Cat 15	5
8414.59.92	- - - - - 광산에 쓰이는 방폭용 에어팬	Cat 15	5
8414.59.99	- - - - - 기타	Cat 15	5
8414.60.11	- - - 종류 방식 캐비닛	Cat 0	0
8414.60.19	- - - 기타	Cat 0	0
8414.60.91	- - - 산업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8414.60.99	- - - 기타	Cat 0	0
8414.80.11	- - - - 종류 방식 캐비닛	Cat 0	0
8414.80.19	- - - - 기타	Cat 0	0
8414.80.21	- - - - 산업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8414.80.29	- - - - 기타	Cat 0	0
8414.80.30	- - 가스 터빈용 자유 피스톤식 제너레이터	Cat 0	0
8414.80.41	- - - 오일 드릴링 작업용으로 적합한 가스 압축모듈	Cat 0	0
8414.80.42	- - - 자동차용 공기 조절기용	Cat 0	0
8414.80.43	- - - 공기조절기용 실드 유닛	Cat 0	0
8414.80.49	- - - 기타	Cat 0	0
8414.80.50	- - 기체펌프	Cat 0	0
8414.80.90	- - 기타	Cat 0	0
8414.90.21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14.90.22	- - - 송풍기의 것	Cat 0	0
8414.90.29	- - - 기타	Cat 0	0
8414.90.31	- - - 소호 제8414.6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14.90.32	- - - 소호 제8414.8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14.90.41	- - - 전기 작동식 기계용의 것	Cat 0	0
8414.90.4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용의 것	Cat 0	0
8414.90.50	- - 소호 제8414.2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14.90.60	- - 소호 제8414.3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14.90.71	- - - 전기구동식 기계의 것	Cat 0	0
8414.90.72	- - - 비전기구동식 기계의 것	Cat 0	0
8414.90.91	- - - 전기구동식 기계의 것	Cat 0	0
8414.90.92	- - - 비전기구동식 기계의 것	Cat 0	0
8415.10.10	- - 냉방 용량이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15	5
8415.10.90	- - 기타	Cat 15	5
8415.20.10	- - 냉방 용량이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15	5
8415.20.90	- - 기타	Cat 15	5
8415.81.11	- - - - 냉방 용량이 21.10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15.81.12	- - - - 냉방 용량이 21.10킬로와트를 초과하고, 증발기의 송풍량이 1분당 67.96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15.81.19	- - - - 기타	Cat 0	0
8415.81.21	- - - - 냉방 용량이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15.81.29	- - - - 기타	Cat 0	0
8415.81.31	- - - - 냉방 용량이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15.81.39	- - - - 기타	Cat 0	0
8415.81.91	- - - - 냉방 용량이 21.10킬로와트를 초과하고, 증발기의 송풍량이 1분당 67.96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15.81.93	- - - - - 냉방 용량이 21.10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15.81.94	- - - - 냉방 용량이 21.10킬로와트 초과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15.81.99	- - - - 기타	Cat 0	0
8415.82.11	- - - - 냉방 용량이 21.10킬로와트를 초과하고, 증발기의 송풍량이 1분당 67.96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15.82.19	- - - - 기타	Cat 0	0
8415.82.21	- - - - 냉방 용량이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15.82.29	- - - - 기타	Cat 0	0
8415.82.31	- - - - 냉방 용량이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15.82.39	- - - - 기타	Cat 0	0
8415.82.91	- - - - 냉방 용량이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15.82.99	- - - - 기타	Cat 0	0
8415.83.11	- - - - 냉방 용량이 21.10킬로와트를 초과하고, 증발기의 송풍량이 1분당 67.96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15.83.19	- - - - 기타	Cat 0	0
8415.83.21	- - - - 냉방 용량이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15.83.29	- - - - 기타	Cat 0	0
8415.83.31	- - - - 냉방 용량이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15.83.39	- - - - 기타	Cat 0	0
8415.83.91	- - - - 냉방 용량이 26.38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15.83.99	- - - - 기타	Cat 0	0
8415.90.13	- - - 항공기나 철도차량 용의 것	Cat 0	0
8415.90.14	- - - 차량용에 사용되는 공기조절기용 증발기나 압축기	Cat 0	0
8415.90.15	- - - 소호 제8415.90.13호 외의 용접 및 페인팅한 새시	Cat 0	0
8415.90.19	- - - 기타	Cat 0	0
8415.90.24	- - - - 항공기나 철도 차량용의 것	Cat 0	0
8415.90.25	- - - - 기타	Cat 0	0
8415.90.26	- - - - 항공기나 철도 차량용의 것	Cat 0	0
8415.90.29	- - - - 기타	Cat 0	0
8415.90.34	- - - - 항공기나 철도 차량용의 것	Cat 0	0
8415.90.35	- - - - 기타	Cat 0	0
8415.90.36	- - - - 항공기나 철도 차량용의 것	Cat 0	0
8415.90.39	- - - - 기타	Cat 0	0
8415.90.44	- - - - 항공기나 철도 차량용의 것	Cat 0	0
8415.90.45	- - - - 기타	Cat 0	0
8415.90.46	- - - - 항공기나 철도 차량용의 것	Cat 0	0
8415.90.49	- - - - 기타	Cat 0	0
8416.10.00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Cat 0	0
8416.20.00	-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Cat 0	0
8416.30.00	-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Cat 0	0
8416.90.00	- 부분품	Cat 0	0
8417.10.00	-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17.20.00	-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Cat 0	0
8417.80.00A	- - 쓰레기 소각로	Cat 0	0
8417.80.00B	- - 기타	Cat 0	0
8417.90.00	- 부분품	Cat 0	0
8418.10.11	- - - 용량이 230리터 이하인 것	Cat 0	0
8418.10.19	- - - 기타	Cat 0	0
8418.10.20	- - 기타(용량이 35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18.10.90	- - 기타	Cat 0	0
8418.21.10	- - - 용량이 230리터 이하인 것	Cat 15	5
8418.21.90	- - - 기타	Cat 15	5
8418.29.00	- - 기타	Cat 0	0
8418.30.10	- - 용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Cat 0	0
8418.30.90	- - 기타	Cat 0	0
8418.40.10	- - 용량이 200리터 이하인 것	Cat 0	0
8418.40.90	- - 기타	Cat 0	0
8418.50.11	- - -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418.50.19	- - - 기타	Cat 0	0
8418.50.91	- - - 내과용·외과용 또는 실험실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418.50.99	- - - 기타	Cat 0	0
8418.61.00	- -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Cat 0	0
8418.69.10	- - - 음료 쿨러	Cat 0	0
8418.69.30	- - - 냉수 디스펜서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18.69.41	- - - - 공기조절기용	Cat 0	0
8418.69.49	- - - - 기타	Cat 0	0
8418.69.50	- - - 스케일 얼음제조 기기	Cat 0	0
8418.69.90	- - - 기타	Cat 0	0
8418.91.00	- -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Cat 0	0
8418.99.10	- - - 증발기나 응축기	Cat 0	0
8418.99.40	- - - 소호 제8418.10.11호, 제8418.10.19호, 제8418.21.10호, 제8418.21.90호 또는 제8418.29.00호의 제 품용 알루미늄 롤 본디드 패널	Cat 0	0
8418.99.90	- - - 기타	Cat 0	0
8419.11.10	- - - 가정형	Cat 0	0
8419.11.90	- - - 기타	Cat 0	0
8419.19.10	- - - 가정형	Cat 0	0
8419.19.90	- - - 기타	Cat 0	0
8419.20.00	- 내과용 · 외과용 또는 실험실용 살균기	Cat 0	0
8419.31.30	- - - 증발기	Cat 0	0
8419.31.4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19.31.90	- - - 기타	Cat 0	0
8419.32.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19.32.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19.39.11	- - - - 열과 연관된 과정에 의한 물질의 처리용 기계로 인쇄 회로판, 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제조용의 것	Cat 0	0
8419.39.19	- - - - 기타	Cat 0	0
8419.3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19.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19.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19.50.10	- - 냉각탑	Cat 0	0
8419.50.91A	- - - - 공기조절기용 그 밖의 응축기	Cat 0	0
8419.50.91B	- - - - 기타	Cat 0	0
8419.50.92A	- - - - 공기조절기용 그 밖의 응축기	Cat 0	0
8419.50.92B	- - - -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내경이 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열교환기	Cat 0	0
8419.50.92C	- - - - 기타	Cat 0	0
8419.6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19.6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19.8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19.8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19.89.13	- - - - 열과 연관된 과정에 의한 물질의 처리용 기계로 인쇄 회로판, 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제조용의 것	Cat 0	0
8419.89.19	- - - - 기타	Cat 0	0
8419.8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19.90.12	- - - 열과 연관된 과정에 의한 물질의 처리용 기계의 부분 품으로 인쇄 회로판, 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제 조용의 것	Cat 0	0
8419.90.13	- - - 냉각탑용 케이싱	Cat 0	0
8419.90.19	- - - 기타	Cat 0	0
8419.90.22	- - -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의 것(가정형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19.90.29	- - - 기타	Cat 0	0
8420.10.10	- -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또는 그 구성부품에 드라이 필름 또는 액상 포토레지스트, 감광층, 납땜 페이스트, 납땜 또는 접착 물질을 바르기 위한 기계	Cat 0	0
8420.10.20	- - 가정용에 적합한 다리미나 탈수기	Cat 0	0
8420.10.90A	- - - 인쇄 회로 기판이나 인쇄 회로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 로 사용되는 롤 라미네이터(Roll laminators)	Cat 0	0
8420.10.90B	- - - 기타	Cat 0	0
8420.91.10	- - - 소호 제8420.10.1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0.91.90	- - - 기타	Cat 0	0
8420.99.10	- - - 소호 제8420.10.1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0.99.90	- - - 기타	Cat 0	0
8421.11.00	- - 크림분리기	Cat 0	0
8421.12.00	- - 의류탈수기	Cat 0	0
8421.19.10	- - - 설탕 제조에 사용하는 것	Cat 0	0
8421.19.90	- - - 기타	Cat 0	0
8421.21.11	- - - - 가정용 여과기	Cat 0	0
8421.21.19	- - - - 기타	Cat 0	0
8421.21.22	-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21.21.23	-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21.22.30	- - - 용적이 시간당 500리터를 초과하는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21.22.90	- - - 기타	Cat 0	0
8421.23.11	- - - - 오일 필터	Cat 0	0
8421.23.19	- - - - 기타	Cat 0	0
8421.23.21	- - - - 오일 필터	Cat 0	0
8421.23.29	- - - - 기타	Cat 0	0
8421.23.91	- - - - 오일 필터	Cat 0	0
8421.23.99	- - - - 기타	Cat 0	0
8421.29.10	- - - 내과용 · 외과용 또는 실험실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421.29.20	- - - 설탕 제조에 사용하는 것	Cat 0	0
8421.29.30	- - - 오일 드릴링 작업에 사용하는 것	Cat 0	0
8421.29.40	- - - 기타(휘발유 여과기로 한정한다)	Cat 0	0
8421.29.50	- - - 기타(유류 여과기로 한정한다)	Cat 0	0
8421.29.90A	- - - - 플루오르 중합체로 만든 것으로서 여과기 또는 청정기의 막 두께가 140마이크론 이하인 것	Cat 0	0
8421.29.90B	- - - - 기타	Cat 0	0
8421.31.10	- - - 제8429호나 제8430호의 기계류용	Cat 0	0
8421.31.20	- - - 제87류의 자동차용	Cat 0	0
8421.31.90	- - - 기타	Cat 0	0
8421.39.20	- - - 공기 정화기	Cat 0	0
8421.39.90A	- - - - 스테인리스강제의 하우징을 갖추고, 내경이 1.3센티미터 이하인 관 구멍을 가진 주입구와 배출구를 갖춘 것	Cat 0	0
8421.39.90B	- - - - 기타	Cat 0	0
8421.91.10	- - - 소호 제8421.12.0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1.91.20	- - - 소호 제8421.19.1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1.91.90	- - - 소호 제8421.11.00호나 제8421.19.9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1.99.21	- - - - 소호 제8421.23.11호 또는 제8421.23.21호용	Cat 0	0
8421.99.29	- - - - 기타	Cat 0	0
8421.99.30	- - - 소호 제8421.31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1.99.91	- - - - 소호 제8421.29.2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1.99.94	- - - - 소호 제8421.21.11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1.99.96	- - - - 소호 제8421.23.11호 또는 제8421.23.91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1.99.97	- - - - 소호 제8421.23.19호 또는 제8421.23.99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1.99.98A	- - - - - 소호 제8421.39.90A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1.99.98B	- - - - - 기타	Cat 0	0
8421.99.99A	- - - - - 소호 제8421.29.90A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1.99.99B	- - - - - 기타	Cat 0	0
8422.11.00	- - 가정형의 것	Cat 0	0
8422.19.00	- - 기타	Cat 0	0
8422.20.0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Cat 0	0
8422.30.00	- 병 · 강통 · 상자 · 자루 또는 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 · 봉합용 · 실링(sealing)용 또는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 · 단지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Cat 0	0
8422.40.00	-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한다)	Cat 0	0
8422.90.10	- - 소호 제8422.11호의 기계용의 것	Cat 0	0
8422.90.90	- - 기타	Cat 0	0
8423.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23.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23.20.10A	- - -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Cat 0	0
8423.20.10B	- - - 기타	Cat 0	0
8423.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23.30.10A	- - -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Cat 0	0
8423.30.10B	- - - 기타	Cat 0	0
8423.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23.81.10A	- - - -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Cat 0	0
8423.81.10B	- - - - 기타	Cat 0	0
8423.8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23.82.11A	- - - - -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계는 제외한다)	Cat 0	0
8423.82.11B	- - - - - 기타	Cat 0	0
8423.82.19A	- - - - -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측정용 기계는 제외한다)	Cat 0	0
8423.82.19B	- - - - - 기타	Cat 0	0
8423.82.21	- - - - 최대 측정용량이 1,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Cat 0	0
8423.82.29	- - - - 기타	Cat 0	0
8423.89.10A	- - - -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	Cat 0	0
8423.89.10B	- -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23.8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23.90.10	- - 저울 추	Cat 0	0
8423.90.21A	- - - - 중량 측정에 전자적 방법을 이용하는 것(자동차중량 측정용 기계는 제외한다)	Cat 0	0
8423.90.21B	- - - - 기타	Cat 0	0
8423.90.29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Cat 0	0
8424.10.10	- - 항공기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8424.10.90	- - 기타	Cat 0	0
8424.20.11	- - - 농업용이나 원예용	Cat 0	0
8424.20.19	- - - 기타	Cat 0	0
8424.20.21	- - - 농업용이나 원예용	Cat 0	0
8424.20.29	- - - 기타	Cat 0	0
8424.30.00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Cat 0	0
8424.41.10	- - - 수동식 살충 스프레이	Cat 0	0
8424.41.20	-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24.41.90	- - - 기타	Cat 0	0
8424.4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24.4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24.82.10	- - - 점적 관개 시스템	Cat 0	0
8424.82.2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24.82.30	-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24.89.10	- - - 용량이 3리터 이하인 수동식 가정용 스프레이	Cat 0	0
8424.89.20	- - - 딥 튜브가 부착된 분무기 헤드	Cat 0	0
8424.89.40	- - -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물질에 화학 또는 전기 화학 용액을 분사, 살포 또는 분무하는 습식프로세싱기구,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또는 그 구성부품에 액체, 납땜 페이스트, 솔더 볼(solder ball), 접착제 또는 밀봉제를 점처리하기 위한 기기,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물질 또는 그 구성부품에 건식 필름 또는 액상포토 레지스트, 감광층, 납땜 페이스트, 납땜 또는 접착 물질을 바르기 위한 기기	Cat 0	0
8424.89.50A	- - - - 인쇄 회로나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424.89.50B	- - - - 기타	Cat 0	0
8424.89.90	-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24.90.10	- - 소화기의 것	Cat 0	0
8424.90.21	- - - - 소호 제8424.20.11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4.90.23	- - - - 기타	Cat 0	0
8424.90.24	- - - - 소호 제8424.20.21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4.90.29	- - - - 기타	Cat 0	0
8424.90.30	-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의 것	Cat 0	0
8424.90.93	- - - 소호 제8424.82.1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4.90.94	- - - 소호 제8424.41.10호, 제8424.41.20호, 제8424.49.20호나 제8424.82.3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4.90.95	- - - 소호 제8424.41.90호, 제8424.49.10호나 제8424.82.2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24.90.99A	- - - - 인쇄 회로나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424.90.99B	- - - - 기타	Cat 0	0
8425.11.00	- - 전동식	Cat 0	0
8425.19.00	- - 기타	Cat 0	0
8425.31.00	- - 전동식	Cat 0	0
8425.39.00	- - 기타	Cat 0	0
8425.41.00	- -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Cat 0	0
8425.42.10	- - - 대형 트럭용 티핑 기계장치에 사용되는 잭	Cat 0	0
8425.42.90	- - - 기타	Cat 0	0
8425.4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25.4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26.11.00	- -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Cat 0	0
8426.12.00	- -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Cat 0	0
8426.19.20	- - - 교각(橋脚)형 크레인	Cat 0	0
8426.19.30	- - - 갠트리 크레인	Cat 0	0
8426.19.90	- - - 기타	Cat 0	0
8426.20.00	- 타워크레인(tower crane)	Cat 0	0
8426.30.00	-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Cat 0	0
8426.41.00	- - 타이어가 달린 것	Cat 0	0
8426.49.00	- - 기타	Cat 0	0
8426.91.00	- -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26.99.00	- - 기타	Cat 0	0
8427.10.00	-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Cat 0	0
8427.20.00	-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Cat 0	0
8427.90.00	- 그 밖의 작업트럭	Cat 0	0
8428.10.31	- - - 승객용	Cat 0	0
8428.10.39	- - - 기타	Cat 0	0
8428.10.40	- -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Cat 0	0
8428.20.10	-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428.20.90	- - 기타	Cat 0	0
8428.31.00	- -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Cat 0	0
8428.32.10	- -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428.32.90	- - - 기타	Cat 0	0
8428.33.10	- -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428.33.90	- - - 기타	Cat 0	0
8428.39.10	- - - 농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428.39.90	- - - 기타	Cat 0	0
8428.40.00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Cat 0	0
8428.60.00	- 텔레페릭(teleferic)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푸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Cat 0	0
8428.90.20	- - 인쇄 회로판 · 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운송 · 하역 및 보관용 자동화 기계	Cat 0	0
8428.90.30	- - 광산용 왜건푸셔 · 기관차 또는 화차의 트레버서 · 화차 경사기 및 이와 유사한 철도화차 취급 장비	Cat 0	0
8428.90.90	- - 기타	Cat 0	0
8429.11.00	- - 무한 궤도식	Cat 0	0
8429.19.00	- - 기타	Cat 0	0
8429.20.00	-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Cat 0	0
8429.30.00	- 스크래퍼(scraper)	Cat 0	0
8429.40.30	- - 탬핑머신(tamping machine)	Cat 0	0
8429.40.40	- - 매끄러운 진동 드럼 롤러(중량이 20톤 이하인 원심 드럼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29.40.50	- - 그 밖의 진동 로드 롤러	Cat 0	0
8429.40.90	- - 기타	Cat 0	0
8429.51.00	- -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Cat 0	0
8429.52.00	- -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Cat 0	0
8429.59.00	- - 기타	Cat 0	0
8430.10.00	- 항타기(杭打機)와 항발기(抗拔機)	Cat 0	0
8430.20.00	-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Cat 0	0
8430.31.00	- - 자주식(自走式)	Cat 0	0
8430.39.00	- - 기타	Cat 0	0
8430.41.00	- - 자주식(自走式)	Cat 0	0
8430.49.10	- - - 드릴 작업용에 적합한 웰헤드 플랫폼과 통합생산 모듈	Cat 0	0
8430.49.90	- - - 기타	Cat 0	0
8430.50.00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30.61.00	- - 탬핑(tamping)용이나 콤팩팅(compacting)용 기계	Cat 0	0
8430.69.00	- - 기타	Cat 0	0
8431.10.13	- - - 소호 제8425.11.00호, 제8425.31.00호나 제8425.49.1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31.10.19	- - - 기타	Cat 0	0
8431.10.22	- - - 소호 제8425.19.00호, 제8425.39.00호, 제8425.41.00호, 제8425.42.10호 또는 제8425.42.9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31.10.29	- - - 기타	Cat 0	0
8431.20.10	- - 소호 제8427.10호나 제8427.20호의 것	Cat 0	0
8431.20.90	- - 기타	Cat 0	0
8431.31.10	- - - 소호 제8428.10.39호나 제8428.10.4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31.31.20	- - - 소호 제8428.10.31호나 제8428.40.0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31.39.10	- - - 소호 제8428.20.10호, 제8428.32.10호, 제8428.33.10호나 제8428.39.1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31.39.40	- - - 인쇄 회로판 · 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운송 · 하역 및 보관용 자동화 기계의 것	Cat 0	0
8431.39.50	- - - 기타(제8428.90호의 물품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31.39.90	- - - 기타	Cat 0	0
8431.41.10	- - - 제8426호의 기계류용	Cat 0	0
8431.41.90	- - - 기타	Cat 0	0
8431.42.00	- -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31.43.00	- - 소호 제8430.41호나 제8430.49호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Cat 0	0
8431.49.10	- - - 제8426호의 기계류의 부분품	Cat 0	0
8431.49.20	- - - 스크래퍼, 그레이더나 레벨러용의 절단면이나 엔드 비트(end bit)	Cat 0	0
8431.49.40	- - - 볼도저나 앵글도저 블레이드용의 절단면이나 엔드 비트(end bit)	Cat 0	0
8431.49.50	- - - 로드 롤러의 것	Cat 0	0
8431.49.60	- - - 소호 제8430.20.0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31.49.90	- - - 기타	Cat 0	0
8432.10.00	- 플라우(쟁기)	Cat 0	0
8432.21.00	-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Cat 0	0
8432.29.00	- - 기타	Cat 0	0
8432.31.00	- -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업용 파종기·식부기(植付機) 및 이식기	Cat 0	0
8432.39.00	- - 기타	Cat 0	0
8432.41.00	- - 퇴비 살포기	Cat 0	0
8432.42.00	- - 비료 살포기	Cat 0	0
8432.80.10	- - 농업용이나 원예용	Cat 0	0
8432.80.20	- - 잔디나 운동장용의 롤러	Cat 0	0
8432.80.90	- - 기타	Cat 0	0
8432.90.10	- - 소호 제8432.80.90호의 기계류의 것	Cat 0	0
8432.90.20	- - 잔디나 운동장용의 롤러의 것	Cat 0	0
8432.90.90	- - 기타	Cat 0	0
8433.11.00	- -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33.19.10	- - - 동력식이 아닌 것	Cat 0	0
8433.19.90	- - - 기타	Cat 0	0
8433.20.00	-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Cat 0	0
8433.30.00	-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Cat 0	0
8433.40.00	-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결속기를 포함한다]	Cat 0	0
8433.51.00	- - 수확·탈곡 겸용기	Cat 0	0
8433.52.00	- - 그 밖의 탈곡기	Cat 0	0
8433.53.00	- -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Cat 0	0
8433.59.20	- - - 채면기	Cat 0	0
8433.59.90	- - - 기타	Cat 0	0
8433.6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3.6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3.90.10	- - 타이어를 포함한 바퀴[부착된 어떠한 바퀴나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를 초과할 경우, 지름(타이어를 포함한다)이 100밀리미터 초과 2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33.90.20	- - 기타(소호 제8433.11호나 제8433.19.90호의 물품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33.90.30	- - 기타(소호 제8433.19.10호의 물품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33.90.90	- - 기타	Cat 0	0
8434.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4.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4.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4.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4.90.10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at 0	0
8434.90.90	- - 기타	Cat 0	0
8435.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5.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5.90.10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의 것	Cat 0	0
8435.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Cat 0	0
8436.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6.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6.2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6.2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6.2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6.2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6.80.11	- - - 농업용이나 원예용	Cat 0	0
8436.80.19	- - - 기타	Cat 0	0
8436.80.21	- - - 농업용이나 원예용	Cat 0	0
8436.80.29	- - - 기타	Cat 0	0
8436.91.10	-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와 기구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36.9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와 기구의 것	Cat 0	0
8436.99.11	- - - - 농업용이나 원예용	Cat 0	0
8436.99.19	- - - - 기타	Cat 0	0
8436.99.21	- - - - 농업용이나 원예용	Cat 0	0
8436.99.29	- - - - 기타	Cat 0	0
8437.10.10	- - 곡물용으로 전기식으로 작동하는 것, 전기식으로 작동하는 키질(winnowing) 및 이와 유사한 세정용 기계	Cat 0	0
8437.10.20	- - 곡물용으로 전기식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 전기식으로 작 동하지 않는 키질(winnowing) 및 이와 유사한 세정용 기계	Cat 0	0
8437.10.30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7.10.40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7.80.10	- - 정미기와 원뿔형 정미기(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7.80.20	- - 정미기와 원뿔형 정미기(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7.80.30	- - 산업용 커피와 옥수수 제분기(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7.80.40	- - 산업용 커피와 옥수수 제분기(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7.80.51	- - - 쌀용 광택기 · 시프팅기와 체분석기 · 겨 세척 기구와 옥수수 껍질 벗기기 기계	Cat 0	0
8437.80.59	- - - 기타	Cat 0	0
8437.80.61	- - - 쌀용 광택기 · 시프팅기와 체분석기 · 겨 세척 기구와 옥수수 껍질 벗기기 기계	Cat 0	0
8437.80.69	- - - 기타	Cat 0	0
8437.90.11	- - - 소호 제8437.10호의 기계의 것	Cat 0	0
8437.90.19	- - - 기타	Cat 0	0
8437.90.21	- - - 소호 제8437.10호의 기계의 것	Cat 0	0
8437.90.29	- - - 기타	Cat 0	0
8438.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8.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8.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8.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8.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8.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8.40.00	- 양조용 기계	Cat 0	0
8438.5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8.5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8.6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8.6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8.80.11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8.80.1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8.80.21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8.80.2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8.80.91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38.80.92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38.90.11	- - - 소호 제8438.30.1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38.90.12	- - - 커피 채취기의 것	Cat 0	0
8438.90.19	- - - 기타	Cat 0	0
8438.90.21	- - - 소호 제8438.30.2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38.90.22	- - - 커피 채취기의 것	Cat 0	0
8438.90.29	- - - 기타	Cat 0	0
8439.10.00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Cat 0	0
8439.20.00	- 종이 또는 판지의 제조용 기계	Cat 0	0
8439.30.00	- 종이 또는 판지의 완성이공용 기계	Cat 0	0
8439.91.00	- -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Cat 0	0
8439.99.00	- - 기타	Cat 0	0
8440.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0.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0.90.10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의 것	Cat 0	0
8440.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Cat 0	0
8441.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1.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1.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1.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1.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1.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1.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1.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1.8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41.8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1.90.10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의 것	Cat 0	0
8441.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Cat 0	0
8442.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2.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2.40.10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장치 또는 장비의 것	Cat 0	0
8442.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장치 또는 장비의 것	Cat 0	0
8442.50.00	-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예: 평삭(平削)·그레인 또는 연마]한 플레이트·실린더와 석판석	Cat 0	0
8443.11.00	-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43.12.00	-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제본되지 않은 상태의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43.13.00	- -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Cat 0	0
8443.14.00	-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Cat 0	0
8443.15.00	-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Cat 0	0
8443.16.00	- - 곡면인쇄용 기계	Cat 0	0
8443.17.00	- - 그라비아(gravure) 인쇄용 기계	Cat 0	0
8443.19.00	- - 기타	Cat 0	0
8443.31.11	- - - - 천연색	Cat 0	0
8443.31.19	- - - - 기타	Cat 0	0
8443.31.21	- - - - 천연색	Cat 0	0
8443.31.29	- - - - 기타	Cat 0	0
8443.31.31	- - - - 천연색	Cat 0	0
8443.31.39	- - - - 기타	Cat 0	0
8443.31.91	- - - - 프린터-복사기-스캐너-팩시밀리 복합기	Cat 0	0
8443.31.99	- - - - 기타	Cat 0	0
8443.32.11	- - - - 천연색	Cat 0	0
8443.32.19	- - - - 기타	Cat 0	0
8443.32.21	- - - - 천연색	Cat 0	0
8443.32.29	- - - - 기타	Cat 0	0
8443.32.31	- - - - 천연색	Cat 0	0
8443.32.39	- - - - 기타	Cat 0	0
8443.32.41	- - - - 천연색	Cat 0	0
8443.32.49	- - - - 기타	Cat 0	0
8443.32.50	- - - 인쇄 회로판 또는 인쇄 배선판 제조용 스크린 인쇄 기계	Cat 0	0
8443.32.60	- - - 플로터	Cat 0	0
8443.32.90	- - - 기타	Cat 0	0
8443.39.10	- - - 원래의 영상을 복사지에 직접적으로 재생산하는 정전기식의 사진복사기기(직접 처리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43.39.20	- - - 원래의 영상을 매개체를 통하여 복사지에 재생산하는 정전기식의 사진복사기기(간접처리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43.39.30	- - - 광학기기를 갖춘 그 밖의 사진복사기기	Cat 0	0
8443.39.40	- - - 잉크젯 프린터	Cat 0	0
8443.39.90	- - - 기타	Cat 0	0
8443.91.00	-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8443.99.10	- - - 인쇄 회로판 또는 인쇄 배선판 제조용 스크린 인쇄 기계의 것	Cat 0	0
8443.99.20	- - - 잉크로 채워진 프린터 카트리지	Cat 0	0
8443.99.30	- - - 종이 공급기, 종이 분류기	Cat 0	0
8443.99.90	- - - 기타	Cat 0	0
8444.00.10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4.00.20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5.1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5.1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5.12.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5.12.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5.13.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5.13.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5.19.30	- - - 조면기	Cat 0	0
8445.19.4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5.19.50	-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5.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45.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5.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5.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5.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5.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5.9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5.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6.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6.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6.21.00	- -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46.29.00	- - 기타	Cat 0	0
8446.30.00	-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용[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47.1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7.1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7.12.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7.12.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7.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7.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7.9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7.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8.1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8.1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8.1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8.1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48.20.00	- 제8444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8448.31.00	- - 침포	Cat 0	0
8448.32.00	- -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Cat 0	0
8448.33.00	- - 스펀들 · 스펀들 플라이어 · 스피닝 링 및 링트래블러	Cat 0	0
8448.39.00	- - 기타	Cat 0	0
8448.42.00	- - 직조기용 바디 · 종광(heald)과 종광 프레임	Cat 0	0
8448.49.11	- - - - 전기 작동식 기계용	Cat 0	0
8448.49.12	-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용	Cat 0	0
8448.49.91	- - - - 전기 작동식 기계용의 것	Cat 0	0
8448.49.92	-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용의 것	Cat 0	0
8448.51.00	- -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 · 바늘과 그 밖의 물품	Cat 0	0
8448.59.00	- - 기타	Cat 0	0
8449.00.10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49.00.20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50.11.10	- -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 이하인 것	Cat 15	5
8450.11.90	- - - 기타	Cat 15	5
8450.12.10	- -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 이하인 것	Cat 15	5
8450.12.90	- - - 기타	Cat 15	5
8450.19.11	- - -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 이하인 것	Cat 0	0
8450.19.19	- - - - 기타	Cat 0	0
8450.19.91	- - -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6킬로그램 이하인 것	Cat 0	0
8450.19.99	- - - - 기타	Cat 0	0
8450.20.00	- 기계(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450.90.10	- - 소호 제8450.20.00호의 기계의 것	Cat 0	0
8450.90.20	- - 소호 제8450.11호, 제8450.12호나 제8450.19호의 기계의 것	Cat 0	0
8451.10.00	- 드라이클리닝기	Cat 0	0
8451.21.00	- -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Cat 0	0
8451.29.00	- - 기타	Cat 0	0
8451.30.10	- - 싱글 롤러 타입의 가정용 다리미기기	Cat 0	0
8451.30.90	- - 기타	Cat 0	0
8451.40.00	- 세탁기 · 표백기 또는 염색기	Cat 0	0
8451.50.00	- 감기(reeling)용 기계 · 풀기(unreeling)용 기계 · 접음기 · 절단기 또는 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51.80.00A	- - 가정용의 것	Cat 0	0
8451.80.00B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51.90.10A	- - - 가정용의 것	Cat 0	0
8451.90.10B	- - - 기타	Cat 0	0
8451.90.90	- - 기타	Cat 0	0
8452.10.00	- 가정형 재봉기	Cat 0	0
8452.21.00	- - 자동식	Cat 0	0
8452.29.00	- - 기타	Cat 0	0
8452.30.00	- 재봉기용 바늘	Cat 0	0
8452.90.11	- - - 암즈엔베드(arms and beds), 중심 프레임 부착여부에 상관없는 스탠드, 플라이 휠, 벨트 가드, 발판이나 페달	Cat 0	0
8452.90.12	- - - 가구·밀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Cat 0	0
8452.90.19	- - - 기타	Cat 0	0
8452.90.91	- - - 암즈엔베드(arms and beds), 중심 프레임 부착여부에 상관없는 스탠드, 플라이 휠, 벨트 가드, 발판이나 페달	Cat 0	0
8452.90.92	- - - 가구·밀판 및 덮개와 그 부분품	Cat 0	0
8452.90.99	- - - 기타	Cat 0	0
8453.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53.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53.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53.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53.8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53.8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53.90.00	- 부분품	Cat 0	0
8454.10.00	- 전로	Cat 0	0
8454.20.00	-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Cat 0	0
8454.30.00	- 주조기	Cat 0	0
8454.90.00	- 부분품	Cat 0	0
8455.10.00	- 관 압연기	Cat 0	0
8455.21.00	- - 열간(熱間)이나 열·냉간(熱冷間) 겸용 압연기	Cat 0	0
8455.22.00	- - 냉간(冷間) 압연기	Cat 0	0
8455.30.00	- 압연기용 롤	Cat 0	0
8455.90.00	- 그 밖의 부분품	Cat 0	0
8456.11.00A	- - - 인쇄 회로, 인쇄 회로 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456.11.00B	- - - 기타	Cat 0	0
8456.12.00A	- - - 인쇄 회로, 인쇄 회로 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456.12.00B	- - - 기타	Cat 0	0
8456.20.00	-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Cat 0	0
8456.30.00	-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Cat 0	0
8456.40.10	- - 각종 재료를 절단, 플라즈마 아크 공법으로 가공하는 공작기계로 수치제어식의 것(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제조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56.40.90A	- - - 전자 현미경 표본 및 표본 홀더에서 유기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플라즈마 클리너 기계	Cat 0	0
8456.40.90B	- - - 기타	Cat 0	0
8456.50.00	- 워터제트 절단기	Cat 0	0
8456.90.20	- - 전기화학 용액 투입으로 작동하는 인쇄 회로판 또는 인쇄 배선판의 물질을 제거하는 습식 프로세싱 기구	Cat 0	0
8456.90.90	- - 기타	Cat 0	0
8457.10.10	- - 스펀들의 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57.10.90	- - 기타	Cat 0	0
8457.20.00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Cat 0	0
8457.30.00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Cat 0	0
8458.11.10	- - - 스펀들의 출력이 4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58.11.90	- - - 기타	Cat 0	0
8458.19.10	- - - 주축과 베드 간의 거리가 30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458.19.90	- - - 기타	Cat 0	0
8458.91.00	- - 수치제어식	Cat 0	0
8458.99.10	- - - 주축과 베드 간의 거리가 30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458.99.90	- - - 기타	Cat 0	0
8459.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59.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59.21.00	- - 수치제어식	Cat 0	0
8459.2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59.2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59.31.00	- - 수치제어식	Cat 0	0
8459.3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59.3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59.41.00	- - 수치제어식	Cat 0	0
8459.4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59.4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59.51.00	- - 수치제어식	Cat 0	0
8459.5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59.5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59.61.00	- - 수치제어식	Cat 0	0
8459.6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59.6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59.7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59.7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0.12.00	- - 수치제어식	Cat 0	0
8460.19.00	- - 기타	Cat 0	0
8460.22.00	- -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60.23.00	- -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60.24.00	- -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60.2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0.2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0.31.10	- - - 가공 공작기계로 수치제어식의 것[카바이드(carbide) 드릴 날(drilling bits)을 샤프닝하기 위한 것으로, 샙크 지름이 3.175밀리미터 이하인, 고정된 콜릿(collet)과 함께 제공되고 출력이 0.74킬로와트를 초과하지 않는 것]	Cat 0	0
8460.31.90	- - - 기타	Cat 0	0
8460.3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0.3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0.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0.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0.9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0.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1.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1.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1.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1.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1.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1.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1.5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1.5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1.90.11	- - - 평삭기	Cat 0	0
8461.90.19	- - - 기타	Cat 0	0
8461.90.91	- - - 평삭기	Cat 0	0
8461.90.99	- - - 기타	Cat 0	0
8462.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2.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2.21.00	- - 수치제어식	Cat 0	0
8462.2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2.2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2.31.00	- - 수치제어식	Cat 0	0
8462.3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2.3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2.41.00	- - 수치제어식	Cat 0	0
8462.4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2.4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2.91.00	- - 액압 프레스	Cat 0	0
8462.99.10	- - - 주석 판의 박스, 캔과 이와 유사한 용기 제조용 기계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2.99.20	- - - 주석 판의 박스, 캔과 이와 유사한 용기 제조용 기계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2.99.5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2.99.60	-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3.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3.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3.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63.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3.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3.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3.9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3.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4.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4.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4.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4.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4.9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4.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5.10.00	-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65.20.0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Cat 0	0
8465.91.10	- - - 인쇄 회로판 또는 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판 물질 또는 인쇄 배선판 물질을 스코어링(scoring)하는 용도의 것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5.91.2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5.91.3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5.92.10	- - - 인쇄 회로판 또는 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판 물질 또는 인쇄 배선판 물질을 라우팅(routing)하는 용도로, 생크지름이 3.175밀리미터 이하인 라우터 비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인쇄 회로판 또는 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판 물질 또는 인쇄 배선판 물질을 스코어링(scoring)하는 용도의 것	Cat 0	0
8465.92.2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5.92.3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5.93.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5.93.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5.94.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5.94.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5.95.10	- - -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제조용 드릴링 머신(drilling machine)(스핀들 속도가 50,000알피엠을 초과하고 생크지름이 3.175밀리미터 이하인 드릴 비트를 가질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65.95.3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5.95.4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5.96.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5.96.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5.99.30	- - - 선반(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5.99.40	- - - 선반(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65.99.50	- - - 제조중 인쇄 회로판 또는 인쇄 배선판의 표면을 디버링(deburring)하는 기기,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판 물질이나 인쇄 배선판 물질을 스코어링 하는 기기, 인쇄 회로판 또는 인쇄 배선판의 제조용 적층 압축기	Cat 0	0
8465.99.60	-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65.99.90	- - - 기타	Cat 0	0
8466.10.10	- - 소호 제8456.90.10호 · 제8456.90.20호 · 제8460.31.10호 · 제8465.91.10호 · 제8465.92.10호 · 제8465.95.10호나 제8465.99.50호의 기계용	Cat 0	0
8466.10.90	- - 기타	Cat 0	0
8466.20.10	- - 소호 제8456.90.10호 · 제8456.90.20호 · 제8460.31.10호 · 제8465.91.10호 · 제8465.92.10호 · 제8465.95.10호나 제8465.99.50호의 기계용	Cat 0	0
8466.20.90	- - 기타	Cat 0	0
8466.30.10	- - 소호 제8456.90.10호 · 제8456.90.20호 · 제8460.31.10호 · 제8465.91.10호 · 제8465.92.10호 · 제8465.95.10호나 제8465.99.50호의 기계용	Cat 0	0
8466.30.90	- - 기타	Cat 0	0
8466.91.00	- - 제8464호의 기계용	Cat 0	0
8466.92.10	- - - 소호 제8465.91.10호, 제8465.92.10호, 제8465.95.10호나 제8465.99.50호의 기계용	Cat 0	0
8466.92.90	- - - 기타	Cat 0	0
8466.93.20	- - - 소호 제8456.90.10호 · 제8456.90.20호나 제8460.31.10호의 기계용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66.93.90A	－ － － － 공작기계의 것(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 또는 광자빔방식, 초음파 방식, 또는 방전의 방식으로 작동되는 것으로서, 인쇄 회로, 인쇄 회로 조립품, 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 수치제어식[그 밖의 드릴링(drilling)] · 수치제어식[그 밖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 톱기계나 절단기, 또는 수치제어식(그 밖의 선반)]의 것(제8517호의 부분품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66.93.90B	－ － － － 기타	Cat 0	0
8466.94.00	－ －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Cat 0	0
8467.11.00	－ －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8467.19.00	－ － 기타	Cat 0	0
8467.21.00	－ － 각종 드릴	Cat 0	0
8467.22.00	－ － 톱	Cat 0	0
8467.29.00	－ － 기타	Cat 0	0
8467.81.00	－ － 체인톱	Cat 0	0
8467.89.00	－ － 기타	Cat 0	0
8467.91.10	－ － － 전기 기계식의 것	Cat 0	0
8467.91.90	－ － － 기타	Cat 0	0
8467.92.00	－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Cat 0	0
8467.99.10	－ － － 소호 제8467.21.00호, 제8467.22.00호나 제8467.29.0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67.99.90	－ － － 기타	Cat 0	0
8468.10.00	－ 수지식 취관(吹管)	Cat 0	0
8468.20.10	－ － 수동식(수지식이 아닌 것) 가스 용접기나 금속용 땀질 기구	Cat 0	0
8468.20.90	－ － 기타	Cat 0	0
8468.80.00	－ 그 밖의 기기	Cat 0	0
8468.90.20	－ － 소호 제8468.20.1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468.90.90	－ － 기타	Cat 0	0
8470.10.00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데이터 기록, 재생산 및 표시 기계	Cat 0	0
8470.21.00	－ －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Cat 0	0
8470.29.00	－ － 기타	Cat 0	0
8470.30.00	－ 그 밖의 계산기	Cat 0	0
8470.50.00	－ 금전 등록기	Cat 0	0
8470.90.10	－ － 우편요금계기	Cat 0	0
8470.90.20	－ － 회계기	Cat 0	0
8470.90.90	－ － 기타	Cat 0	0
8471.30.20	－ － 랩탑(노트북 및 서브노트북을 포함한다)	Cat 0	0
8471.30.90	－ － 기타	Cat 0	0
8471.41.10	－ － － 소호 제8471.30호의 휴대용 컴퓨터를 제외한 개인용 컴퓨터	Cat 0	0
8471.41.90	－ － － 기타	Cat 0	0
8471.49.10	－ － － 소호 제8471.30호의 휴대용 컴퓨터를 제외한 개인용 컴퓨터	Cat 0	0
8471.49.90	－ － － 기타	Cat 0	0
8471.50.10	－ － 개인용(휴대용을 포함한다) 컴퓨터용 처리장치	Cat 0	0
8471.50.90	－ － 기타	Cat 0	0
8471.60.30	－ － 컴퓨터 키보드	Cat 0	0
8471.60.40	－ － 마우스 · 라이트 펜 · 조이스틱 · 트랙 볼과 터치 센서티브 스크린을 포함하는 XY 좌표 입력 기구	Cat 0	0
8471.60.90	－ － 기타	Cat 0	0
8471.70.10	－ － 플로피 디스크 드라이브	Cat 0	0
8471.70.20	－ － 하드 디스크 드라이브	Cat 0	0
8471.70.30	－ － 테이프 드라이브	Cat 0	0
8471.70.40	－ － 시디 롬 드라이브 · 디브이디 드라이브와 시디알 드라이브를 포함하는 광 디스크 드라이브	Cat 0	0
8471.70.50	－ － 독점적 포맷 저장 장치(자동자료처리기계용 매체를 포함하고 제거가능한 매체 여부와 자석 · 광학 또는 그 밖의 기술을 불문한다)	Cat 0	0
8471.70.91	－ － － 자동백업 시스템	Cat 0	0
8471.70.99	－ － － 기타	Cat 0	0
8471.80.10	－ － 제어용과 접속용의 기기	Cat 0	0
8471.80.70	－ － 사운드 카드 또는 비디오 카드	Cat 0	0
8471.80.9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71.90.10	- - 바 코드 리더	Cat 0	0
8471.90.30	- - 전자 지문 인식 시스템	Cat 0	0
8471.90.40	- - 그 밖의 광학식 문자 판독 장치	Cat 0	0
8471.90.90	- - 기타	Cat 0	0
8472.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2.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2.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2.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2.90.10	- - 현금 자동 처리기	Cat 0	0
8472.90.41	- - - 자동식	Cat 0	0
8472.90.49	- - - 기타	Cat 0	0
8472.90.50	- - 워드프로세싱 기계	Cat 0	0
8472.90.60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2.90.90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3.21.00	- - 소호 제8470.10.00호 · 제8470.21.00호 또는 제8470.29.00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Cat 0	0
8473.29.00	- - 기타	Cat 0	0
8473.30.10	- - 조립된 인쇄 회로판	Cat 0	0
8473.30.90	- - 기타	Cat 0	0
8473.40.10	- - 전기 작동식 기계용의 것	Cat 0	0
8473.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용의 것	Cat 0	0
8473.50.10	- - 제8471호의 기계와 함께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Cat 0	0
8473.50.90	- - 기타	Cat 0	0
8474.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4.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4.20.11	- - - 석재용의 것	Cat 0	0
8474.20.19	- - - 기타	Cat 0	0
8474.20.21	- - - 석재용의 것	Cat 0	0
8474.20.29	- - - 기타	Cat 0	0
8474.3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4.3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4.32.11	- - - - 출력이 시간당 80톤 이하인 것	Cat 0	0
8474.32.19	- - - - 기타	Cat 0	0
8474.32.21	- - - - 출력이 시간당 80톤 이하인 것	Cat 0	0
8474.32.29	- - - - 기타	Cat 0	0
8474.39.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4.3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4.8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4.8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4.90.10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의 것	Cat 0	0
8474.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Cat 0	0
8475.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5.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5.21.00	- -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Cat 0	0
8475.29.00	- - 기타	Cat 0	0
8475.90.10A	- - - 소호 제8475.21.00호의 기계의 것	Cat 0	0
8475.90.10B	- - - 기타	Cat 0	0
8475.90.20A	- - - 소호 제8475.21.00호의 기계의 것	Cat 0	0
8475.90.20B	- - - 기타	Cat 0	0
8476.21.00	-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Cat 0	0
8476.29.00	- - 기타	Cat 0	0
8476.81.00	-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Cat 0	0
8476.89.00A	- - - 화폐교환기	Cat 0	0
8476.89.00B	- - - 기타	Cat 0	0
8476.90.00A	- - 화폐교환기의 것	Cat 0	0
8476.90.00B	- - 기타	Cat 0	0
8477.10.10	- - 고무 성형용의 것	Cat 0	0
8477.10.31	- - - 폴리(염화 비닐)사출 성형기	Cat 0	0
8477.10.39	- - - 기타	Cat 0	0
8477.20.10	- - 고무 압출용의 것	Cat 0	0
8477.20.20	- - 플라스틱 압출용의 것	Cat 0	0
8477.30.00	- 취입 성형기	Cat 0	0
8477.40.10	- - 고무 성형용의 것	Cat 0	0
8477.40.20	- - 플라스틱 성형용의 것	Cat 0	0
8477.51.00	-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 또는 그 밖의 이너 튜브(inner tube) 성형기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77.59.10	- - - 고무용의 것	Cat 0	0
8477.59.20	- - - 플라스틱용의 것	Cat 0	0
8477.80.10	- - 고무를 가공하거나 고무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7.80.20	- - 고무를 가공하거나 고무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7.80.31	- - -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의 제조용 라미네이션 압축기	Cat 0	0
8477.80.39	- - - 기타	Cat 0	0
8477.80.40	- -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7.90.10	- - 고무를 가공하거나 고무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전기 작동식의 것)의 것	Cat 0	0
8477.90.20	- - 고무를 가공하거나 고무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의 것	Cat 0	0
8477.90.32	- - - 인쇄 회로판이나 인쇄 배선판의 제조용 라미네이션 압축기의 부분품	Cat 0	0
8477.90.39	- - - 기타	Cat 0	0
8477.90.40	- -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플라스틱으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의 것	Cat 0	0
8478.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8.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8.90.10	- - 전기 작동식의 기계의 것	Cat 0	0
8478.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Cat 0	0
8479.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9.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9.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9.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9.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9.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9.4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9.4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9.50.00	-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79.60.00	- 증발식 에어컨	Cat 0	0
8479.71.00	- - 공장에서 사용되는 것	Cat 0	0
8479.79.00	- - 기타	Cat 0	0
8479.81.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9.81.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9.82.10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8479.82.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9.89.20A	- - - -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자동식 전자부품장착기	Cat 0	0
8479.89.20B	- - - - 기타	Cat 0	0
8479.89.31	- - - - 자동판매기	Cat 0	0
8479.89.39	- - - - 기타	Cat 0	0
8479.89.40	-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479.90.20A	- - -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자동식 전자부품장착기의 것	Cat 0	0
8479.90.20B	- - - 기타	Cat 0	0
8479.90.30	- - 그 밖의 전기 작동식 기계의 것	Cat 0	0
8479.90.4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계의 것	Cat 0	0
8480.10.00	- 금속 주조용 주형틀	Cat 0	0
8480.20.00	- 주형 베이스	Cat 0	0
8480.30.10	- - 구리의 것	Cat 0	0
8480.30.90	- - 기타	Cat 0	0
8480.41.00	- - 사출식이나 압축식	Cat 0	0
8480.49.00	- - 기타	Cat 0	0
8480.50.00	- 유리 성형용 주형	Cat 0	0
8480.60.00	-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Cat 0	0
8480.71.10	- - - 신발 바닥용 몰드	Cat 0	0
8480.71.90	- - - 기타	Cat 0	0
8480.79.10	- - - 신발 바닥용 몰드	Cat 0	0
8480.79.90	- - - 기타	Cat 0	0
8481.10.11	- - - 내부지름이 5센티미터 초과 40센티미터 이하인 주입구나 배출구가 있는 수동식의 수문 또는 게이트 밸브	Cat 0	0
8481.10.19	- - - 기타	Cat 0	0
8481.10.21	- - - 내부지름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481.10.22	- - - 내부지름이 2.5센티미터 초과하는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81.10.91	- - - 내부지름이 1센티미터 이상 2.5센티미터 이하인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8481.10.99	- - - 기타	Cat 0	0
8481.20.10	- - 내부지름이 5센티미터 초과 40센티미터 이하인 주입구나 배출구가 있는 수동식의 수문 또는 게이트 밸브	Cat 0	0
8481.20.20	- - 구리 또는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지름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것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지름이 1센티미터 이상 2.5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481.20.90	- - 기타	Cat 0	0
8481.30.10	- - 스윙 체크 밸브, 주철로 만든 것으로, 주입구의 내부지름이 4센티미터 이상 6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81.30.20	- -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지름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481.30.40	- - 내부지름이 1센티미터 이상 2.5센티미터 이하인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8481.30.90	- - 기타	Cat 0	0
8481.40.10	- -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으로 내부지름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481.40.30	- - 내부지름이 1센티미터 이상 2.5센티미터 이하인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8481.40.90	- - 기타	Cat 0	0
8481.80.11	- - -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8481.80.12	-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Cat 0	0
8481.80.13	- - - 구리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Cat 0	0
8481.80.14	-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Cat 0	0
8481.80.21	- - - 주입구나 배출구 내부지름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481.80.22	- - - 주입구나 배출구 내부지름이 2.5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81.80.30	- - 코크와 밸브(가스 스톱브나 레인지용 압전식 점화기 장착 여부는 상관없다)	Cat 0	0
8481.80.40	- - 탄산이 든 액체 병 밸브, 가스식 맥주 도포기 밸브	Cat 0	0
8481.80.50	- - 혼합 탭과 밸브	Cat 0	0
8481.80.61	- - - - 내부지름이 5센티미터 초과 40센티미터 이하인 수동으로 작동하는 게이트 밸브	Cat 0	0
8481.80.62	- - - - 기타	Cat 0	0
8481.80.63	- - - 기타	Cat 0	0
8481.80.64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지름이 1센티미터 이상 2.5센티미터 이하의 것	Cat 0	0
8481.80.65	- - - 기타	Cat 0	0
8481.80.66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지름이 1센티미터 이상 2.5센티미터 이하의 것	Cat 0	0
8481.80.67	- - - 기타	Cat 0	0
8481.80.71	-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지름이 1센티미터 이상 2.5센티미터 이하의 것	Cat 0	0
8481.80.72	- - - - 기타	Cat 0	0
8481.80.73	- - - - 주입구와 배출구 내부지름이 5센티미터 초과 40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481.80.74	- - - - 주입구와 배출구 내부지름이 4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81.80.77	- - - - 주입구와 배출구 내부지름이 5센티미터 이하의 것	Cat 0	0
8481.80.78	-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지름이 1센티미터 이상 2.5센티미터 이하의 것	Cat 0	0
8481.80.79	- - - - 기타	Cat 0	0
8481.80.81	- - - - 플라스틱의 것으로 내부지름이 1센티미터 이상 2.5센티미터 이하의 것	Cat 0	0
8481.80.82	- - - - 기타	Cat 0	0
8481.80.85	- - - - 주입구 내부지름이 1센티미터 이상의 것	Cat 0	0
8481.80.87	- - - - - 제8702호·제8703호나 제8704호의 차량용 연료공급 차단 밸브	Cat 0	0
8481.80.88	- - - - - 기타	Cat 0	0
8481.80.89	- - - 기타(수동으로 작동하는 것으로 중량이 3킬로그램 미만이며 표면처리가 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니켈로 만들어진 것)	Cat 0	0
8481.80.91	- - - - 구리나 구리합금의 수도꼭지로 내부지름이 2.5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481.80.92	- - - - - 제8702호·제8703호나 제8704호의 차량용 연료공급 차단 밸브	Cat 0	0
8481.80.99	- - - - - 기타	Cat 0	0
8481.90.10	- - 수문이나 게이트밸브용 하우스형으로 흡입구나 배출구의 내부 지름이 50밀리미터 초과 400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481.90.21	- - - 수도꼭지용 몸체	Cat 0	0
8481.90.22	- - - 액화 석유가스(LPG) 실린더 밸브용 몸체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81.90.23	- - - 그 밖의 몸체	Cat 0	0
8481.90.29	- - - 기타	Cat 0	0
8481.90.31	- - - 구리나 구리합금의 것	Cat 0	0
8481.90.39	- - - 기타	Cat 0	0
8481.90.41	- - - 구리나 구리합금의 것	Cat 0	0
8481.90.49	- - - 기타	Cat 0	0
8481.90.90	- - 기타	Cat 0	0
8482.10.00	- 볼베어링(ball bearing)	Cat 0	0
8482.20.00	-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Cat 0	0
8482.30.00	-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Cat 0	0
8482.40.00	-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Cat 0	0
8482.50.00	-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Cat 0	0
8482.80.00	-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Cat 0	0
8482.91.00	- - 볼 · 니들 및 롤러	Cat 0	0
8482.99.00	- - 기타	Cat 0	0
8483.10.10	- - 제8429호나 제8430호의 기계류용	Cat 0	0
8483.10.24	- - - 제8711호의 차량용	Cat 0	0
8483.10.25	- - - - 차량용으로 실린더 용량이 2,000cc 이하인 것	Cat 0	0
8483.10.26	- - - - 차량용으로 실린더 용량이 2,000cc 초과 3,000cc 이하인 것	Cat 0	0
8483.10.27	- - - - 차량용으로 실린더 용량이 3,000cc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483.10.31	- - - 출력이 22.38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483.10.39	- - - 기타	Cat 0	0
8483.10.90	- - 기타	Cat 0	0
8483.20.20	- - 제8429호나 제8430호의 기계류용	Cat 0	0
8483.20.30	- - 제87류 차량의 엔진용	Cat 0	0
8483.20.90	- - 기타	Cat 0	0
8483.30.30	- - 제87류 차량의 엔진용	Cat 0	0
8483.30.90	- - 기타	Cat 0	0
8483.40.20	- - 선박용	Cat 0	0
8483.40.30	- - 제8429호나 제8430호의 기계류용	Cat 0	0
8483.40.40A	- - - 소호 제8701.20호, 제8701.30.00호나 제87.11호의 차량의 엔진용	Cat 0	0
8483.40.40B	- - - 기타	Cat 0	0
8483.40.90	- - 기타	Cat 0	0
8483.50.00	- 플라이휠(flywheel)과 폴리(pulley)[폴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Cat 0	0
8483.60.00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유니버설 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Cat 0	0
8483.90.11	- - - 소호 제8701.10호 또는 제8701.91호부터 제8701.95호까지의 트랙터용	Cat 0	0
8483.90.13	- - - 제8701호의 그 밖의 트랙터용	Cat 0	0
8483.90.14	- - - 제8711호의 물품용	Cat 0	0
8483.90.15	- - - 제87류의 그 밖의 물품용	Cat 0	0
8483.90.19	- - - 기타	Cat 0	0
8483.90.91	- - - 소호 제8701.10호 또는 제8701.91호부터 제8701.95호까지의 물품용	Cat 0	0
8483.90.93	- - - 제8701호의 그 밖의 트랙터용	Cat 0	0
8483.90.94	- - - 제8711호의 물품용	Cat 0	0
8483.90.95	- - - 제87류의 그 밖의 물품용	Cat 0	0
8483.90.99	- - - 기타	Cat 0	0
8484.10.00	-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84.20.00	-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Cat 0	0
8484.90.00	- 기타	Cat 0	0
8486.10.10	- -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	Cat 0	0
8486.10.20	- -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스�핀 드라이어	Cat 0	0
8486.10.30	- - 각종 재료의 가공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의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웨이퍼의 생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86.10.40	- - 단결정 반도체 보울을 얇게 절단하거나 웨이퍼를 칩으로 절단하는 기계	Cat 0	0
8486.10.50	- - 반도체 웨이퍼의 가공용 연삭기 · 광택기와 래핑기계	Cat 0	0
8486.10.60	- - 단결정 반도체 보울의 성장 또는 풀링용 기기	Cat 0	0
8486.10.90	- - 기타	Cat 0	0
8486.20.11	- - - 반도체 생산용 화학 기상 증착기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86.20.12	- - - 반도체 웨이퍼용 에피택시얼 증착기, 반도체 웨이퍼 위에 감광 유제를 도포하는 스피너	Cat 0	0
8486.20.13	- - - 반도체 웨이퍼의 스퍼터링(sputtering)방식의 물리적 증착기, 반도체 생산용 물리적 증착기	Cat 0	0
8486.20.19	- - - 기타	Cat 0	0
8486.20.21	- - - 반도체재료 도핑용 이온주입기	Cat 0	0
8486.20.29	- - - 기타	Cat 0	0
8486.20.31	- - - 전기도금공정에 앞서 반도체패키지의 금속리드의 세척과 오염물질제거기, 반도체 웨이퍼의 식각·스트리핑이나 세척을 위한 분사기	Cat 0	0
8486.20.32	- - - 반도체재료용 건식 식각 패턴용의 기기	Cat 0	0
8486.20.33	- - - 반도체 웨이퍼를 습식 식각·현상·스트리핑하거나 세척하는 기계	Cat 0	0
8486.20.39	- - - 기타	Cat 0	0
8486.20.41	- - - 웨이퍼 위에 직접 그리는 기기	Cat 0	0
8486.20.42	- - - 스텝 앤 리프트 얼라이너	Cat 0	0
8486.20.49	- - - 기타	Cat 0	0
8486.20.51	- - - 반도체 웨이퍼의 스크라이빙이나 스코어링을 위한 다 이싱기	Cat 0	0
8486.20.59	- - - 기타	Cat 0	0
8486.20.91	- - - 반도체 제조시 레이저빔에 의하여 연결통로를 절단하는 레이저절단기	Cat 0	0
8486.20.92	- - - 반도체 리드의 굽힘용·접음용 및 교정용 기계	Cat 0	0
8486.20.93	- - -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를 위한 저항 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Cat 0	0
8486.20.94	- - -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를 위한 인덕턴스(inductance)나 유전체 노(爐)와 오븐	Cat 0	0
8486.20.95	- - - 반도체 재료의 구성품 또는 접촉 요소(contact elements)의 배치 또는 제거용 자동화 기계	Cat 0	0
8486.20.99	- - - 기타	Cat 0	0
8486.30.10	- - 평판디스플레이 기판의 건식식각 패턴용 기기	Cat 0	0
8486.30.20	- - 평판디스플레이의 습식 식각·현상·스트리핑(stripping)이나 세척하는 기기	Cat 0	0
8486.30.30	- - 평판디스플레이 생산용 화학기상증착기, 평판디스플레이 기판에 감광 유제를 도포하는 스피너, 평판디스플레이 기판에 물리적 증착을 위한 기구	Cat 0	0
8486.30.90	- - 기타	Cat 0	0
8486.40.10	- - 반도체 디바이스의 패턴용의 마스크와 레티클의 생산이나 수리를 하기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	Cat 0	0
8486.40.20	- -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테이프 자동 접착기·와이어 접착기와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 기기, 반도체 웨이퍼·웨이퍼 카세트·웨이퍼상자와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용 재료의 이송·취급 및 저장을 위한 자동 기기	Cat 0	0
8486.40.30	- - 반도체 디바이스의 제조용 몰드	Cat 0	0
8486.40.40	- - 광학 입체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86.40.50	- - 사진 촬영용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86.40.60	- - 전자 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86.40.70	- - 패턴형성기(주로 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 또는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	Cat 0	0
8486.40.90	- - 기타	Cat 0	0
8486.90.11	- - - 반도체 웨이퍼 급속가열기의 것	Cat 0	0
8486.90.12	- - -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스핀 드라이어의 것	Cat 0	0
8486.90.13	- - - 각종 재료의 가공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이나 광자빔의 방식에 의하여 재료의 일부를 제거하는 방식으로 반도체 웨이퍼의 생산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의 것	Cat 0	0
8486.90.14	- - - - 톨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가공용 홀더(holder),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Cat 0	0
8486.90.15	- - - - 기타	Cat 0	0
8486.90.16	- - - 반도체 웨이퍼 가공용의 연마기·광택기 및 래핑기의 것	Cat 0	0
8486.90.17	- - - 단결정 반도체 보울의 성장 또는 폴링용 기기의 것	Cat 0	0
8486.90.19	- - - 기타	Cat 0	0
8486.90.21	- - - 반도체생산용의 화학 기상 증착기의 것	Cat 0	0
8486.90.22	- - - 반도체 웨이퍼용 에피택시얼 증착기의 것, 반도체 웨이퍼 위에 감광 유제를 도포하는 스피너의 것	Cat 0	0
8486.90.23	- - - 반도체 재료의 도핑용 이온주입기의 것, 반도체 웨이퍼의 스퍼터링(sputtering)방식의 물리적 증착기의 것, 반도체 생산용 물리적 증착기의 것, 반도체 웨이퍼 상에 직접 그리는 기기·스텝 앤 리프트 얼라이너 및 그 밖의 리소그래피 장비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486.90.24	- - - - 톨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가공용 홀더(holder),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Cat 0	0
8486.90.25	- - - - 기타	Cat 0	0
8486.90.26	- - - - 톨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가공용 홀더(holder),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Cat 0	0
8486.90.27	- - - - 기타	Cat 0	0
8486.90.28	- - -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용도의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의 것, 반도체 웨이퍼 위에 반도체 소자를 제조하는 용도의 인덕턴스(inductance)나 유전식 노(爐)와 오븐의 것	Cat 0	0
8486.90.29	- - - 기타	Cat 0	0
8486.90.31	- - - 평판디스플레이 기판의 건식식각 패턴용 기기의 것	Cat 0	0
8486.90.32	- - - - 톨홀더와 자동 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가공용 홀더(holder), 분할대와 그 밖의 공작기계용 특수 부착물	Cat 0	0
8486.90.33	- - - - 기타	Cat 0	0
8486.90.34	- - - 평판디스플레이 생산용 화학적 기상 증착기의 것	Cat 0	0
8486.90.35	- - - 평판디스플레이 기판에 감광 유제를 도포하는 스피너의 것	Cat 0	0
8486.90.36	- - - 평판디스플레이 기판에 물리적 증착을 위한 기구의 것	Cat 0	0
8486.90.39	- - - 기타	Cat 0	0
8486.90.41	- - - 반도체 디바이스의 패턴용의 마스크와 레티클의 생산이나 수리를 위한 포커스드 이온빔 밀링기의 것	Cat 0	0
8486.90.42	- - - 반도체 조립용의 다이 부착기·테이프 자동 접착기·와이어 접착기와 인캡슐레이션(encapsulation) 기기의 것	Cat 0	0
8486.90.43	- - - 반도체 웨이퍼, 웨이퍼 카세트, 웨이퍼 박스 및 그 밖의 반도체기기 재료의 운송, 취급 및 저장용 자동화 기기의 것	Cat 0	0
8486.90.44	- - - 광학 입체 현미경과 사진 촬영용 현미경의 것(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86.90.45	- - - 전자빔 현미경(반도체 웨이퍼나 레티클의 취급과 이송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486.90.46	- - - 패턴형성기의 것(주로 사진 감광액이 도포된 감광판으로부터 마스크나 레티클을 제조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으로 인쇄 회로 조립품을 포함한다)	Cat 0	0
8486.90.49	- - - 기타	Cat 0	0
8487.10.00	-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Cat 0	0
8487.90.00	- 기타	Cat 0	0
8501.10.21	-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01.10.22	- - - - 기타(출력이 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01.10.29	- - - - 기타	Cat 0	0
8501.10.30	- - - 스피들 모터	Cat 0	0
8501.10.41	-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01.10.49	- - - - 기타	Cat 0	0
8501.10.51	-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01.10.59	- - - - 기타	Cat 0	0
8501.10.60	- - - 스피들 모터	Cat 0	0
8501.10.91	-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01.10.99	- - - - 기타	Cat 0	0
8501.20.12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01.20.19	- - - 기타	Cat 0	0
8501.20.21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01.20.29	- - - 기타	Cat 0	0
8501.31.30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에 사용되는 모터	Cat 0	0
8501.31.40	- - - 그 밖의 모터	Cat 0	0
8501.31.50	- - - 발전기	Cat 0	0
8501.32.21	-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에 사용되는 모터	Cat 0	0
8501.32.22	- - - - 그 밖의 모터	Cat 0	0
8501.32.23	- - - - 발전기	Cat 0	0
8501.32.31	-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에 사용되는 모터	Cat 0	0
8501.32.32	- - - - 그 밖의 모터	Cat 0	0
8501.32.33	- - - - 발전기	Cat 0	0
8501.33.00	- -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고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01.34.00	- -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501.40.11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01.40.19	- - - 기타	Cat 0	0
8501.40.21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01.40.29	- - - 기타	Cat 0	0
8501.51.11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01.51.19	- - - 기타	Cat 0	0
8501.52.11	-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01.52.19	- - - - 기타	Cat 0	0
8501.52.21	-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01.52.29	- - - - 기타	Cat 0	0
8501.52.31	-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용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01.52.39	- - - - 기타	Cat 0	0
8501.53.00	- -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1.61.10	- - - 출력이 12.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1.61.20	- - - 출력이 12.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1.62.10	-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1.62.20	- - - 출력이 1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1.63.00	-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1.64.00	- -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2.11.00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12.10	-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2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12.20	- - - 출력이 12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13.20	- - - 출력이 12,5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Cat 0	0
8502.13.90	- - - 기타	Cat 0	0
8502.20.10	-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20.20	- - 출력이 75킬로볼트 암페어 초과 100킬로볼트 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20.30	- - 출력이 1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20.42	- - - 출력이 12,5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Cat 0	0
8502.20.49	- - - 기타	Cat 0	0
8502.31.10	- - - 출력이 10,000킬로볼트 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31.20	- - - 출력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2.39.10	- - - 출력이 1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39.20	- - - 출력이 1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2.39.32	- - - - 출력이 12,5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것	Cat 0	0
8502.39.39	- - - - 기타	Cat 0	0
8502.40.00	- 회전변환기	Cat 0	0
8503.00.20	- 제8501호나 제8502호의 출력이 12,500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인 발전기의 부분품(발전세트를 포함한다)	Cat 0	0
8503.00.90	- 기타	Cat 0	0
8504.10.00	-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Cat 0	0
8504.21.11	- - - - 계기용 변압기(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이고 고압전력이 110킬로볼트 이상인 것)	Cat 0	0
8504.21.19	- - - - 기타	Cat 0	0
8504.21.92	- - - - 용량이 1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고압전력이 110킬로볼트 이상인 것	Cat 0	0
8504.21.93	- - - - 용량이 1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고 고압전력이 66킬로볼트 이상 110킬로볼트 미만인 것	Cat 0	0
8504.21.99	- - - - 기타	Cat 0	0
8504.22.11	- - - - 고압전력이 66킬로볼트 이상인 것	Cat 0	0
8504.22.19	- - - - 기타	Cat 0	0
8504.22.92	- - - - 고압전력이 110킬로볼트 이상인 것	Cat 0	0
8504.22.93	- - - - 고압전력이 66킬로볼트 이상 110킬로볼트 미만인 것	Cat 0	0
8504.22.99	- - - - 기타	Cat 0	0
8504.23.10	- - - 용량이 15,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23.21	- - - - 2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23.22	- - - - 20,0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504.23.29	- - - - 기타	Cat 0	0
8504.31.11	- - - - 전압정격이 110킬로볼트 이상인 것	Cat 0	0
8504.31.12	- - - - 전압정격이 66킬로볼트 이상 110킬로볼트 미만인 것	Cat 0	0
8504.31.13	- - - - 전압정격이 1킬로볼트 이상 66킬로볼트 미만인 것	Cat 0	0
8504.31.19	- - - - 기타	Cat 0	0
8504.31.21	- - - - - 전압정격이 220킬로볼트 이하의 링타입(환상) 전류변압기	Cat 0	0
8504.31.22	- - - - - 기타	Cat 0	0
8504.31.23	- - - - 전압정격이 66킬로볼트 이상 110킬로볼트 미만인 것	Cat 0	0
8504.31.24	- - - - 전압정격이 1킬로볼트 이상 66킬로볼트 미만인 것	Cat 0	0
8504.31.29	- - - - 기타	Cat 0	0
8504.31.30	- - - 고압 변압기	Cat 0	0
8504.31.40	- - - 중간 주파 변압기	Cat 0	0
8504.31.91	- - - - 장난감, 축소 모형 또는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과 함께 사용하는 것	Cat 15	5
8504.31.92	- - - - 그 밖의 매칭 변압기	Cat 15	5
8504.31.93	- - - - 강압/승압 변압기, 슬라이드 전압조정기	Cat 15	5
8504.31.99	- - - - 기타	Cat 15	5
8504.32.11	- - - - 매칭 변압기	Cat 0	0
8504.32.19	- - - - 기타	Cat 0	0
8504.32.20	- - - 기타(장난감, 축소 모형이나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과 함께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04.32.30	- - - 기타(최소 주파수가 3메가헤르츠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04.32.41	- - - - 매칭 변압기	Cat 0	0
8504.32.49	- - - - 기타	Cat 0	0
8504.32.51	- - - - 매칭 변압기	Cat 0	0
8504.32.59	- - - - 기타	Cat 0	0
8504.33.11	- - - - 매칭 변압기	Cat 0	0
8504.33.19	- - - - 기타	Cat 0	0
8504.33.91	- - - - 매칭 변압기	Cat 0	0
8504.33.99	- - - - 기타	Cat 0	0
8504.34.11	- - - - - 매칭 변압기	Cat 0	0
8504.34.12	- - - - - 방폭형 건식 타입 변압기	Cat 0	0
8504.34.13	- - - - - 기타	Cat 0	0
8504.34.14	- - - - - 매칭 변압기	Cat 0	0
8504.34.15	- - - - - 방폭형 건식 타입 변압기	Cat 0	0
8504.34.16	- - - - - 기타	Cat 0	0
8504.34.22	- - - - - 매칭 변압기	Cat 0	0
8504.34.23	- - - - - 방폭형 건식 타입 변압기	Cat 0	0
8504.34.24	- - - - - 기타	Cat 0	0
8504.34.25	- - - - - 매칭 변압기	Cat 0	0
8504.34.26	- - - - - 방폭형 건식 타입 변압기	Cat 0	0
8504.34.29	- - - - - 기타	Cat 0	0
8504.40.11	- - - 무정전 전원장치(UPS)	Cat 0	0
8504.40.19	- - - 기타	Cat 0	0
8504.40.20	- - 출력이 1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배터리 충전기	Cat 0	0
8504.40.30	- - 그 밖의 정류기	Cat 0	0
8504.40.40	- - 인버터	Cat 0	0
8504.40.90	- - 기타	Cat 0	0
8504.50.10	-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가기 그리고 전기통신용 기기의 전원 공급기용 유도자	Cat 0	0
8504.50.20	- - 침 유형의 고정 유도자	Cat 0	0
8504.50.93	- - - 용량이 2,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50.94	- - - 용량이 2,50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04.50.95	- - -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04.90.10	- - 소호 제8504.1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504.90.20	- - 소호 제8504.40.11호 · 제8504.40.19호나 제8504.50.10호의 물품용 인쇄 회로 조립품	Cat 0	0
8504.90.31	- - - 방열기 패널, 배전용과 전력변압기용의 편평한 튜브 방열기 조립품	Cat 0	0
8504.90.39	- - - 기타	Cat 0	0
8504.90.41	- - - 방열기 패널, 배전용과 전력변압기용의 편평한 튜브 방열기 조립품	Cat 0	0
8504.90.49	- - - 기타	Cat 0	0
8504.90.90	- - 기타	Cat 0	0
8505.11.00	- - 금속으로 만든 것	Cat 0	0
8505.19.0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505.20.00	- 전자석 커플링(coupling) · 클러치와 브레이크	Cat 0	0
8505.90.00A	- - 제9018호의 전자석을 제외한 자기공명 촬영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전자석	Cat 0	0
8505.90.00B	- - 기타	Cat 0	0
8506.10.10	- - 외부 용적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3	5/0
8506.10.90	- - 기타	Cat 3	5/0
8506.30.00	-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Cat 0	0
8506.40.00	- 산화은으로 만든 것	Cat 0	0
8506.50.00	- 리튬으로 만든 것	Cat 0	0
8506.60.10	- - 외부 용적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506.60.90	- - 기타	Cat 0	0
8506.80.10	- - 아연 탄소(외부 용적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06.80.20	- - 아연 탄소(외부 용적이 300세제곱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06.80.91	- - - 외부 용적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506.80.99	- - - 기타	Cat 0	0
8506.90.00	- 부분품	Cat 0	0
8507.10.10	- - 항공기용	Cat 0	0
8507.10.92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센티미터 이하인 것	EX	15
8507.10.95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센티미터 초과 23센티미터 이하인 것	EX	15
8507.10.96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23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EX	15
8507.10.97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센티미터 이하인 것	EX	15
8507.10.98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센티미터 초과 23센티미터 이하인 것	EX	15
8507.10.99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23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EX	15
8507.20.10	- - 항공기용	EX	15
8507.20.94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센티미터 이하인 것	EX	15
8507.20.95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센티미터 초과 23센티미터 이하인 것	EX	15
8507.20.96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23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EX	15
8507.20.97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센티미터 이하인 것	EX	15
8507.20.98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13센티미터 초과 23센티미터 이하인 것	EX	15
8507.20.99	-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23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EX	15
8507.30.10	- - 항공기용	Cat 0	0
8507.30.90	- - 기타	Cat 0	0
8507.40.10	- - 항공기용	Cat 0	0
8507.40.90	- - 기타	Cat 0	0
8507.50.10	- - 항공기용	Cat 0	0
8507.50.90	- - 기타	Cat 0	0
8507.60.10	- - 랩탑용(노트북과 서브노트북을 포함한다)	Cat 0	0
8507.60.20	- - 항공기용	Cat 0	0
8507.60.90	- - 기타	Cat 0	0
8507.80.10	- - 항공기용	Cat 0	0
8507.80.20	- - 랩탑용(노트북과 서브노트북을 포함한다)	Cat 0	0
8507.80.90	- - 기타	Cat 0	0
8507.90.11	- - - 소호 제8507.10.92호, 제8507.10.95호, 제8507.10.96호, 제8507.10.97호, 제8507.10.98호나 제	EX	10
8507.90.12	- - - 항공기용	EX	10
8507.90.19	- - - 기타	EX	10
8507.90.91	- - - 항공기용	EX	10
8507.90.92	- - - 바로 사용할 수 있는 배터리 분리기[폴리(염화 비닐)는 제외한다]	EX	1
8507.90.93	- - - 기타(소호 제8507.10.92호, 제8507.10.95호, 제8507.10.96호, 제8507.10.97호, 제8507.10.98호나 제8507.10.99호의 물품의 것으로 한정한다)	EX	10
8507.90.99	- - - 기타	EX	10
8508.11.00	- -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Cat 0	0
8508.19.10	- - - 가정용으로 적합한 것	Cat 0	0
8508.19.90	-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508.60.00	- 그 밖의 진공청소기	Cat 0	0
8508.70.10	- - 진공청소기(소호 제8508.11.00호나 제8508.19.10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08.70.90	- - 기타	Cat 0	0
8509.40.00	-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 또는 채소즙 추출기	Cat 0	0
8509.80.10	- - 바닥광택기	Cat 0	0
8509.80.20	- - 주방용 쓰레기처리기	Cat 0	0
8509.80.90	- - 기타	Cat 0	0
8509.90.10	- - 소호 제8509.80.1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509.90.90	- - 기타	Cat 0	0
8510.10.00	- 면도기	Cat 0	0
8510.20.00	- 이발기	Cat 0	0
8510.30.00	- 모발제거기	Cat 0	0
8510.90.00	- 부분품	Cat 0	0
8511.10.10	- - 항공기엔진에 적합한 것	Cat 0	0
8511.10.20	- - 차량엔진에 적합한 것	Cat 0	0
8511.10.90	- - 기타	Cat 0	0
8511.20.10	- - 항공기엔진에 적합한 것	Cat 0	0
8511.20.21	- - - 조립되지 않은 것	Cat 0	0
8511.20.29	- - - 기타	Cat 0	0
8511.20.91	- - - 조립되지 않은 것	Cat 0	0
8511.20.99	- - - 기타	Cat 0	0
8511.30.30	- - 항공기엔진에 적합한 것	Cat 0	0
8511.30.41	- - - 조립되지 않은 것	Cat 0	0
8511.30.49	- - - 기타	Cat 15	10
8511.30.91	- - - 조립되지 않은 것	Cat 0	0
8511.30.99	- - - 기타	Cat 15	10
8511.40.10	- - 항공기엔진용	Cat 0	0
8511.40.21	- - - 차량엔진용(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나 제87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1.40.29	- - - 기타	Cat 0	0
8511.40.31	- - - 차량엔진용(제870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0
8511.40.32	- - - 차량엔진용(제8702호, 제8703호나 제870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20
8511.40.33	- - - 차량엔진용(제87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0
ex1 8511.40.91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것	Cat 0	0
ex2 8511.40.91	기타	Cat 15	10
ex1 8511.40.99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것	Cat 0	0
ex2 8511.40.99	기타	Cat 15	10
8511.50.10	- - 항공기엔진용	Cat 0	0
8511.50.21	- - - 차량엔진용(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나 제87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1.50.29	- - - 기타	Cat 0	0
8511.50.31	- - - 차량엔진용(제8701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8511.50.32	- - - 차량엔진용(제8702호, 제8703호나 제870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8511.50.33	- - - 차량엔진용(제87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5
ex1 8511.50.91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것(교류발전기 및 축전기 방전식 점화기는 제외한다)(제8711호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ex2 8511.50.91	기타	Cat 15	5
ex1 8511.50.99	완전히 조립되지 않은 것(교류발전기 및 축전기 방전식 점화기는 제외한다)(제8711호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ex2 8511.50.99	기타	Cat 15	5
8511.80.10	- - 항공기엔진용	Cat 0	0
8511.80.20	- - 차량엔진에 적합한 것	Cat 0	0
8511.80.90	- - 기타	Cat 0	0
8511.90.10	- - 항공기엔진용	Cat 0	0
8511.90.20	- - 차량엔진에 적합한 것	Cat 0	0
8511.90.90	- - 기타	Cat 0	0
8512.10.0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Cat 0	0
8512.20.20	- - 조립되지 않은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Cat 15	3
8512.20.91	- - - 모터사이클용	SL	20
ex1 8512.20.99	승용자동차에 사용되는 조립된 조명용 또는 시각신호용 기구(전조등, 제동등/미등 겸용, 후미등, 방향지시등은 제외한다)(제8711호의 모터사이클용으로 한정한다)	Cat 15	10
ex2 8512.20.99	기타	Cat 0	0
8512.30.10	- - 혼(horns)과 사이렌(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5	10
8512.30.20	- - 조립되지 않은 음향신호용 기구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512.30.91	- - - 차량용 장애물 감지(경고) 장치	Cat 5	30
8512.30.99	- - - 기타	Cat 5	10
8512.40.00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와 제무기(demister)	Cat 0	0
8512.90.10	- - 소호 제8512.1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512.90.20	- - 소호 제8512.20호, 제8512.30호나 제8512.4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513.10.30	- - 광부용 헬멧 램프와 채석용 램프	Cat 0	0
8513.10.90	- - 기타	Cat 0	0
8513.90.10	- - 광부용 헬멧 램프나 채석용 램프의 것	Cat 0	0
8513.90.30	- - 섬광 반사기, 플라스틱의 손전등 스위치 슬라이더	Cat 0	0
8513.90.90	- - 기타	Cat 0	0
8514.10.00	- 저항가열식의 노(爐)와 오븐	Cat 0	0
8514.20.20	- - 전기식 노(爐) 또는 오븐(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 제조용)	Cat 0	0
8514.20.90	- - 기타	Cat 0	0
8514.30.20	- - 전기식 노(爐) 또는 오븐(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 제조용)	Cat 0	0
8514.30.90	- - 기타	Cat 0	0
8514.40.00	-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Cat 0	0
8514.90.20	- -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 또는 오븐의 부분품(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 제조용)	Cat 0	0
8514.90.90	- - 기타	Cat 0	0
8515.11.00	- - 납땜용 인두와 건(gun)	Cat 0	0
8515.19.10A	- - - -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침적 납땜용(wave soldering) 기계	Cat 0	0
8515.19.10B	- - - - 기타	Cat 0	0
8515.19.90	- - - 기타	Cat 0	0
8515.21.00	-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Cat 0	0
8515.29.00	- - 기타	Cat 0	0
8515.31.00	-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Cat 0	0
8515.39.10	- - - 교류아크 용접기(트랜스포머 방식)	Cat 0	0
8515.39.90	- - - 기타	Cat 0	0
8515.80.10	- - 금속 또는 소결한 금속카바이드 가열분사용 전기기기	Cat 0	0
8515.80.90	- - 기타	Cat 0	0
8515.90.10	- - 교류아크 용접기의 것(트랜스포머 방식)	Cat 0	0
8515.90.20A	- - -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그 밖의 침적 납땜용(wave soldering) 기계	Cat 0	0
8515.90.20B	- - - 기타	Cat 0	0
8515.90.90	- - 기타	Cat 0	0
8516.10.11	- - - 물가열기만 부착된 물 디스펜서(가정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6.10.19	- - - 기타	Cat 0	0
8516.10.30	- - 투입식 가열기	Cat 0	0
8516.21.00	-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Cat 0	0
8516.29.00	- - 기타	Cat 0	0
8516.31.00	- - 헤어드라이어	Cat 0	0
8516.32.00	- - 그 밖의 이용기기	Cat 0	0
8516.33.00	- - 손 건조기	Cat 0	0
8516.40.10	- - 상업용 스팀 다리미	Cat 0	0
8516.40.90	- - 기타	Cat 0	0
8516.50.0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Cat 0	0
8516.60.10	- - 밥솥	Cat 0	0
8516.60.90	- - 기타	Cat 0	0
8516.71.00	- - 커피 또는 차를 끓이는 기기	Cat 0	0
8516.72.00	- - 토스터	Cat 0	0
8516.79.10	- - - 주전자	Cat 0	0
8516.79.90	- - - 기타	Cat 0	0
8516.80.10	- - 활자주조나 주식기(鑄植機)용, 공업 노(爐)용	Cat 0	0
8516.80.30	- - 가정용 기기용	Cat 0	0
8516.80.90	- - 기타	Cat 0	0
8516.90.21	- - - 가정용 기기용의 봉인된 전열판	Cat 0	0
8516.90.29	- - - 기타	Cat 0	0
8516.90.30	- - 소호 제8516.1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516.90.40	- - 활자 주조 또는 주식기(鑄植機)용 전열용 저항체의 것	Cat 0	0
8516.90.90	- - 기타	Cat 0	0
8517.11.00	- - 유선전화기 세트[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7.12.00	- -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517.18.00	- - 기타	Cat 0	0
8517.61.00	- - 기지국	Cat 0	0
8517.62.10	- - - 무선 송신기와 무선 수신기기(다국어 회의에서 동시통역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7.62.21	- - - - 제어 및 어댑터 유닛(게이트 웨이 · 브리지와 라우터를 포함한다)	Cat 0	0
8517.62.29	- - - - 기타	Cat 0	0
8517.62.30	- - -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 교환기	Cat 0	0
8517.62.41	- - - - 모뎀(케이블 모뎀과 모뎀카드를 포함한다)	Cat 0	0
8517.62.42	- - - - 컨센트레이터나 멀티플렉서	Cat 0	0
8517.62.49	- - - - 기타	Cat 0	0
8517.62.51	- - - - 무선랜	Cat 0	0
8517.62.52	- - - - 송신기와 수신기기(다국어 회의에서 동시통역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7.62.53	- - - - 그 밖의 송신기기(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Cat 0	0
8517.62.59	- - - - 기타	Cat 0	0
8517.62.61	- - - - 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Cat 0	0
8517.62.69	- - - - 기타	Cat 0	0
8517.62.91	- - - - 호출, 경보 또는 페이지징용의 휴대용 수신기기 및 페이지징 알람기기(무선호출기를 포함한다)	Cat 0	0
8517.62.92	- - - - 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Cat 0	0
8517.62.99	- - - - 기타	Cat 0	0
8517.69.00A	- - - 수신기기	Cat 0	0
8517.69.00B	- - - 기타	Cat 0	0
8517.70.10	- - 제어 및 어댑터 유닛(게이트웨이 · 브리지와 라우터를 포함한다)의 것	Cat 0	0
8517.70.21	- - - 휴대전화의 것	Cat 0	0
8517.70.29	- - - 기타	Cat 0	0
8517.70.31	- - - 유선전화나 유선전신용 물품의 것	Cat 0	0
8517.70.32	- - - 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물품의 것	Cat 0	0
8517.70.39	- - - 기타	Cat 0	0
8517.70.40	- - 무선전화와 무선전신용 기기에 사용되는 안테나	Cat 0	0
8517.70.91	- - - 유선전화나 유선전신용 물품의 것	Cat 0	0
8517.70.92	- - - 무선전화나 무선전신용 물품의 것	Cat 0	0
8517.70.99	- - - 기타	Cat 0	0
8518.10.11	- - - 전기통신용 마이크로폰(지름이 10밀리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3밀리미터 이하이며,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00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8.10.19	- - - 그 밖의 마이크로폰(스탠드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8518.10.90	- - 기타	Cat 0	0
8518.21.10	- - - 박스 스피커 타입	Cat 0	0
8518.21.90	- - - 기타	Cat 0	0
8518.22.10	- - - 박스 스피커 타입	Cat 0	0
8518.22.90	- - - 기타	Cat 0	0
8518.29.20	- - - 전기통신용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되지 않은 것으로 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주파수 대역이 300헤르츠부터 3,400헤르츠까지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8.29.90	- - - 기타	Cat 0	0
8518.30.10	- - 헤드폰	Cat 0	0
8518.30.20	- - 이어폰	Cat 0	0
8518.30.40	- - 유선전화 핸드세트	Cat 0	0
8518.30.51	- - - 소호 제8517.12.00호의 물품용의 것	Cat 0	0
8518.30.59	- - - 기타	Cat 0	0
8518.30.90	- - 기타	Cat 0	0
8518.40.20	- - 유선전화 중계기	Cat 0	0
8518.40.30	- - 유선전화를 제외한 전화중계기	Cat 0	0
8518.40.40	- - 기타(입력 신호라인을 6개 이상 가진 증폭기로서, 용량 증폭기의 구성요소의 유무는 상관없다)	Cat 0	0
8518.40.90	- - 기타	Cat 0	0
8518.50.10	- - 240와트 이상의 동력을 가진 것	Cat 0	0
8518.50.20	- - 기타[확성기를 가진 것으로 방송용에 적합한 것(전압정격이 50볼트 이상 1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8.50.90	- - 기타	Cat 0	0
8518.90.10	- - 소호 제8518.10.11호, 제8518.29.20호, 제8518.30.40호나 제8518.40.20호의 물품의 것(인쇄 회로 조립품을 포함한	Cat 0	0
8518.90.20	- - 소호 제8518.40.4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518.90.30	- - 소호 제8518.21호나 제8518.22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518.90.40	- - 소호 제8518.29.9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518.90.90	- - 기타	Cat 0	0
8519.20.10	- - 코인, 토큰이나 디스크 작동식 레코드 플레이어	Cat 0	0
8519.20.90	- - 기타	Cat 0	0
8519.30.00	-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Cat 0	0
8519.50.00	- 전화응답기	Cat 0	0
8519.81.10	- - - 포켓 사이즈형 카세트 레코더(치수가 170밀리미터 x 100밀리미터 x 4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Cat 0	0
8519.81.20	- - - 카세트 레코더(증폭기가 장착되어 있고, 하나 이상의 확성기가 있는 것으로 외부전원으로만 작동하는 것)	Cat 0	0
8519.81.30	- - - 컴팩트 디스크 플레이어	Cat 0	0
8519.81.41	- - - - 영화용이나 방송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19.81.49	- - - - 기타	Cat 0	0
8519.81.50	- - - 디케이팅기(외부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19.81.61	- - - - 영화용이나 방송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19.81.69	- - - - 기타	Cat 0	0
8519.81.71	- - - - 영화용이나 방송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19.81.79	- - - - 기타	Cat 0	0
8519.81.91	- - - - 영화용이나 방송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19.81.99	- - - - 기타	Cat 0	0
8519.89.11	- - - - 폭이 16밀리미터 미만인 필름용	Cat 0	0
8519.89.12	- - - - 폭이 16밀리미터 이상인 필름용	Cat 0	0
8519.89.20	- - - 레코드 플레이어(확성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8519.89.30	- - - 영화용이나 방송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19.89.90	- - - 기타	Cat 0	0
8521.10.10	- - 영화용이나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Cat 0	0
8521.10.90	- - 기타	Cat 0	0
8521.90.11	- - - 영화용이나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Cat 0	0
8521.90.19	- - - 기타	Cat 0	0
8521.90.91	- - - 영화용이나 텔레비전 방송용의 것	Cat 0	0
8521.90.99	- - - 기타	Cat 0	0
8522.10.00	- 픽업 카트리지	Cat 0	0
8522.90.20	- - 인쇄 회로판 조립품(전화응답기용)	Cat 0	0
8522.90.30	- - 인쇄 회로판 조립품(영화 음성기록기 또는 재생기용)	Cat 0	0
8522.90.40	- - 오디오나 비디오 테입데크(tapedeck)와 컴팩트 디스크 기계장치	Cat 0	0
8522.90.50	- - 오디오나 비디오 재생 헤드(마그네틱 유형), 마그네틱 이레이징 헤드와 로드	Cat 0	0
8522.90.91	- -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영화 음성기록기 또는 재생기용)	Cat 0	0
8522.90.92	- - - 그 밖의 전화응답기의 부분품	Cat 0	0
8522.90.93	- -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소호 제8519.81호나 제8521호의 물품용)	Cat 0	0
8522.90.99	- - - 기타	Cat 0	0
8523.21.10	- - - 기록이 안 된 것	Cat 0	0
8523.21.90	- - - 기타	Cat 0	0
8523.29.11	- - - - 컴퓨터 테이프	Cat 0	0
8523.29.19	- - - - 기타	Cat 0	0
8523.29.21	- - - - 비디오 테이프	Cat 0	0
8523.29.29	- - - - 기타	Cat 0	0
8523.29.31	- - - - 컴퓨터 테이프	Cat 0	0
8523.29.33	- - - - 비디오 테이프	Cat 0	0
8523.29.39	- - - - 기타	Cat 0	0
8523.29.41	- - - - 컴퓨터 테이프	Cat 0	0
8523.29.42	-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23.29.43	- - - - 그 밖의 비디오 테이프	Cat 0	0
8523.29.49	- - - - 기타	Cat 0	0
8523.29.51	- - - - 컴퓨터 테이프	Cat 0	0
8523.29.52	- - - - 비디오 테이프	Cat 0	0
8523.29.59	- - - - 기타	Cat 0	0
8523.29.61	- - - - 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맷 저장(기록)미디어	Cat 0	0
8523.29.62	- - - - 영화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23.29.63	- - - - 그 밖의 비디오 테이프	Cat 0	0
8523.29.69	- - - - 기타	Cat 0	0
8523.29.71	- - - -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디스켓	Cat 0	0
8523.29.79	- -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523.29.81	- - - - -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23.29.82	- - - - - 기타	Cat 0	0
8523.29.83	- - - - - 기타[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맷 저장(기록)미디어	Cat 0	0
8523.29.85	- - - - - 기타(뉴스·여행·기술·과학 영화 및 그 밖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외한 영사 영화를 수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23.29.86	- - - - - 기타(영화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23.29.89	- - - - - 기타	Cat 0	0
8523.29.91	- - - - -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23.29.92	- - - - - 기타	Cat 0	0
8523.29.93	- - - - -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23.29.94	- - - - - 기타	Cat 0	0
8523.29.95	- - - - - 기타[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맷 저장(기록)미디어	Cat 0	0
8523.29.99	- - - - - 기타	Cat 0	0
8523.41.10	- - -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23.41.90	- - - 기타	Cat 0	0
8523.49.11	-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Cat 0	0
8523.49.12	- - - - - 교육용, 기술용, 과학용, 역사적이거나 문화적 디스크	Cat 0	0
8523.49.13	- - - - - 기타	Cat 0	0
8523.49.14	- - - - 기타[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맷 저장(기록)미디어	Cat 0	0
8523.49.15	- - - - 기타(뉴스·여행·기술·과학 영화 및 그 밖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외한 영사 영화를 수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23.49.16	- - - - 기타(영화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23.49.19	- - - - 기타	Cat 0	0
8523.49.91	-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Cat 0	0
8523.49.92	- - - - 음성만을 재생하는 것	Cat 0	0
8523.49.93	- - - - 기타[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맷 저장(기록)미디어	Cat 0	0
8523.49.99	- - - - 기타	Cat 0	0
8523.51.11	- - - -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23.51.19	- - - - 기타	Cat 0	0
8523.51.21	- - - - -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23.51.29	- - - - - 기타	Cat 0	0
8523.51.30	- - - - 기타[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맷 저장(기록)미디어	Cat 0	0
8523.51.91	- - - - - 기타(뉴스·여행·기술·과학 영화 및 그 밖의 다큐멘터리 영화를 제외한 영사 영화를 수록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23.51.92	- - - - - 기타(영화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23.51.99	- - - - - 기타	Cat 0	0
8523.52.00	- - 스마트카드	Cat 0	0
8523.59.10	- - - 프록시미티 카드(Proximity card)와 태그	Cat 0	0
8523.59.21	- - - -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23.59.29	- - - - 기타	Cat 0	0
8523.59.30	-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Cat 0	0
8523.59.40	- - - - 기타[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맷 저장(기록)미디어	Cat 0	0
8523.59.90	- - - - 기타	Cat 0	0
8523.80.40	- - 축음기용 레코드판	Cat 0	0
8523.80.51	- - - 컴퓨터 이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23.80.59	- - - 기타	Cat 0	0
8523.80.91	- - - 음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것	Cat 0	0
8523.80.92	- - - 기타[명령·데이터·음성 및 영상을 재생하는 것(자동자료처리기계에서 이진법으로 운영되고, 사용자와 상호 연결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한다)], 독점적 포맷 저장(기록)미디어	Cat 0	0
8523.80.99	- - - 기타	Cat 0	0
8525.50.00	- 송신기기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525.60.0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Cat 0	0
8525.80.10	- - 웹 카메라	Cat 0	0
8525.80.31	- - - 방송용의 것	Cat 0	0
8525.80.39	- - - 기타	Cat 0	0
8525.80.40	- - 텔레비전 카메라	Cat 0	0
8525.80.51	- - - 디지털 일안 반사식 카메라(DSLR)	Cat 0	0
8525.80.59	- - - 기타	Cat 0	0
8526.10.10	- - 레이더 기기(지상에 설치된 것이나 민항기에 사용되는 것이나 항양선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26.10.90	- - 기타	Cat 0	0
8526.91.10	- - - 항행용 무선기기(민항기에 사용되는 것이나 항양선에 단독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26.91.90	- - - 기타	Cat 0	0
8526.92.00	- - 무선원격조절기기	Cat 0	0
8527.12.00	- -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Cat 0	0
8527.13.10	- - - 휴대용	Cat 0	0
8527.13.90	- - - 기타	Cat 0	0
8527.19.20	- - - 휴대용	Cat 0	0
8527.19.90	- - - 기타	Cat 0	0
8527.21.00A	- - - 디지털 무선 데이터 시스템 신호를 수신 및 디코딩할 수 있는 것	Cat 0	0
8527.21.00B	- - - 기타	Cat 0	0
8527.29.00	- - 기타	Cat 0	0
8527.91.10	- - - 휴대용	Cat 0	0
8527.91.90	- - - 기타	Cat 0	0
8527.92.20	- - - 주 작동식의 것	Cat 0	0
8527.92.90	- - - 기타	Cat 0	0
8527.99.20	- - - 주 작동식의 것	Cat 0	0
8527.99.90	- - - 기타	Cat 0	0
8528.42.00A	- -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28.42.00B	- - - 기타	Cat 0	0
8528.49.10	- - - 천연색	Cat 0	0
8528.49.20	- - - 단색	Cat 0	0
8528.52.00A	- -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시스템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	Cat 0	0
8528.52.00B	- - - 기타	Cat 0	0
8528.59.10	- - - 천연색	Cat 0	0
8528.59.20	- - - 단색	Cat 0	0
8528.62.00	-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Cat 0	0
8528.69.10	- - - 300인치 이상인 스크린(대각선 측정)에 투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것	Cat 0	0
8528.69.90	- - - 기타	Cat 0	0
8528.71.11	- - - - 주 작동식의 것	Cat 0	0
8528.71.19	- - - - 기타	Cat 0	0
8528.71.91	- - - - 주 작동식의 것	Cat 0	0
8528.71.99	- - - - 기타	Cat 0	0
8528.72.10	- - - 배터리 작동식의 것	Cat 0	0
8528.72.91	- - - - 음극선관 방식	Cat 0	0
8528.72.92	- - -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 발광다이오드(엘이디)와 그 밖의 평판디스플레이 방식	Cat 0	0
8528.72.99	- - - - 기타	Cat 0	0
8528.73.00	- - 기타(단색)	Cat 0	0
8529.10.21	- - - 텔레비전 수신용	Cat 0	0
8529.10.29	- - - 기타	Cat 0	0
8529.10.30	- - 텔레비전이나 라디오 수신기용 망원경 · 실내 소형 안테나 및 쌍극 안테나	Cat 0	0
8529.10.40	- - 안테나 필터와 분리기	Cat 0	0
8529.10.60	- - 피드혼(도파관)	Cat 0	0
8529.10.92	- - - 라디오 방송이나 텔레비전용의 송신기기에 사용되는 것	Cat 0	0
8529.10.99	- - - 기타	Cat 0	0
8529.90.20	- - 디코더(decoders)의 것	Cat 0	0
8529.90.40	- - 디지털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 기록기의 것	Cat 0	0
8529.90.51	- - - 소호 제8525.50호나 제8525.60호의 물품용	Cat 0	0
8529.90.52	- - - 소호 제8527.13호, 제8527.19호, 제8527.21호, 제8527.29호, 제8527.91호나 제8527.99호의 물품용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529.90.53	- - - - 평판디스플레이용	Cat 0	0
8529.90.54	- - - - 기타(텔레비전 수신기용)	Cat 0	0
8529.90.55	- - - - 기타	Cat 0	0
8529.90.59	- - - 기타	Cat 0	0
8529.90.91A	- - - - 소호 제8528.72호 또는 제8528.73호의 기기용 유기 발광다이오드 모듈(module) 및 유기발광다이오드 패널	Cat 0	0
8529.90.91B	- - - - 기타	Cat 0	0
8529.90.94	- - - 평판디스플레이용	Cat 0	0
8529.90.99	- - - 기타	Cat 0	0
8530.10.00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Cat 0	0
8530.80.00	- 그 밖의 기기	Cat 0	0
8530.90.00	- 부분품	Cat 0	0
8531.10.10	- - 도난경보기	Cat 0	0
8531.10.20	- - 화재경보기	Cat 0	0
8531.10.30	- - 연기 탐지기, 휴대용 개인용 알람(슈릴 알람)	Cat 0	0
8531.10.90	- - 기타	Cat 0	0
8531.20.00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Cat 0	0
8531.80.10A	- - - 도어 벨과 그 밖의 도어의 소리 신호용 기기	Cat 0	0
8531.80.10B	- - - 기타	Cat 0	0
8531.80.21	- - - 진공 형광 디스플레이 패널	Cat 0	0
8531.80.29	- - - 기타	Cat 0	0
8531.80.90	- - 기타	Cat 0	0
8531.90.10	- - 소호 제8531.20호, 제8531.80.21호나 제8531.80.29호의 인쇄 회로 조립품을 포함하는 부분품	Cat 0	0
8531.90.20	- - 도어벨이나 그 밖의 도어의 소리 신호용 기기의 것	Cat 0	0
8531.90.30	- - 그 밖의 벨이나 소리 신호용 기기	Cat 0	0
8531.90.90	- - 기타	Cat 0	0
8532.10.00	-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Cat 0	0
8532.21.00	- - 탄탈륨의 것	Cat 0	0
8532.22.00	- - 알루미늄 전해의 것	Cat 0	0
8532.23.00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Cat 0	0
8532.24.00	-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Cat 0	0
8532.25.00	- -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Cat 0	0
8532.29.00	- - 기타	Cat 0	0
8532.30.00	-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셋) 축전기	Cat 0	0
8532.90.00	- 부분품	Cat 0	0
8533.10.10	- - 표면실장형	Cat 0	0
8533.10.90	- - 기타	Cat 0	0
8533.21.00	-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33.29.00	- - 기타	Cat 0	0
8533.31.00	-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33.39.00	- - 기타	Cat 0	0
8533.40.00	-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한다]	Cat 0	0
8533.90.00	- 부분품	Cat 0	0
8534.00.10	- 단면의 것	Cat 0	0
8534.00.20	- 양면의 것	Cat 0	0
8534.00.30	- 다층의 것	Cat 0	0
8534.00.90	- 기타	Cat 0	0
8535.10.00	- 퓨즈	Cat 0	0
8535.21.10	- - - 몰드 유형의 것	Cat 0	0
8535.21.20	- - - 누전차단기	Cat 0	0
8535.21.90	- - - 기타	Cat 0	0
8535.29.10	- - - 누전차단기	Cat 0	0
8535.29.90	- - - 기타	Cat 0	0
8535.30.11	- - - 단로기(전압이 36킬로볼트 미만인 것)	Cat 0	0
8535.30.19	- - - 기타	Cat 0	0
8535.30.20	- - 전압이 66킬로볼트 이상인 것	Cat 0	0
8535.30.90	- - 기타	Cat 0	0
8535.40.00	- 피뢰기·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억제기	Cat 0	0
8535.90.10A	- - - 커넥터와 터미널	Cat 0	0
8535.90.10B	- - - 기타	Cat 0	0
8535.90.20	- - 전기 모터 시동에 사용되는 전환 스위치(change-over switch)	Cat 0	0
8535.90.9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536.10.11	－ － － 전기팬에 적합한 것	Cat 0	0
8536.10.12	－ － － 기타(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Cat 0	0
8536.10.13	－ － － 차량용 퓨즈 블록	Cat 0	0
8536.10.19	－ － － 기타	Cat 0	0
8536.10.91	－ － － 전기팬에 적합한 것	Cat 0	0
8536.10.92	－ － － 기타(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Cat 0	0
8536.10.93	－ － － 차량용 퓨즈 블록	Cat 0	0
8536.10.99	－ － － 기타	Cat 0	0
8536.20.11	－ － － 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Cat 0	0
8536.20.12	－ － － 전류가 16암페어 이상 32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36.20.13	－ － － 전류가 32암페어 초과 1,000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36.20.19	－ － － 기타	Cat 0	0
8536.20.20	－ － 제8516호의 전기가열식 가정용 기기에 부착되어 있는 것	Cat 0	0
8536.20.91	－ － － 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Cat 0	0
8536.20.99	－ － － 기타	Cat 0	0
8536.30.10	－ － 피뢰기	Cat 0	0
8536.30.20	－ － 무선장치나 전기팬에 사용되는 것	Cat 0	0
8536.30.90	－ － 기타	Cat 0	0
8536.41.10	－ － － 디지털 계전기	Cat 0	0
8536.41.20	－ － － 무선장비에 사용되는 것	Cat 0	0
8536.41.30	－ － － 전기팬에 사용되는 것	Cat 0	0
8536.41.40	－ － － 기타(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Cat 0	0
8536.41.91	－ － － － 전압이 28볼트 이하인 만도제 또는 전기자석식 계전기	Cat 0	0
8536.41.99	－ － － － 기타	Cat 0	0
8536.49.10	－ － － 디지털 계전기	Cat 0	0
8536.49.90	－ － － 기타	Cat 0	0
8536.50.20	－ － 과전류 및 잔류전류 자동 개폐기	Cat 0	0
8536.50.32	－ － － 전기팬이나 무선장비에 적합한 것	Cat 0	0
8536.50.33	－ － － 기타(정격 전류 용량이 16암페어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36.50.39	－ － － 기타	Cat 0	0
8536.50.40	－ － 밥솥 또는 토스터 오븐용에 적합한 미니어처 개폐기	Cat 0	0
8536.50.51	－ － － 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Cat 0	0
8536.50.59	－ － － 기타	Cat 0	0
8536.50.61	－ － － 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Cat 0	0
8536.50.69	－ － － 기타	Cat 0	0
8536.50.92	－ － － 전기팬에 적합한 것	Cat 15	3
8536.50.95	－ － － 기타[전기 모터 시동에 사용되는 전환 스위치 (change-over switch)], 퓨즈 스위치	Cat 15	3
ex1 8536.50.99	스모크 스위치	Cat 0	0
ex2 8536.50.99	기타	Cat 15	3
8536.61.10	－ － － 컴팩트 램프나 할로겐 램프용	Cat 0	0
8536.61.91	－ － － － 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Cat 0	0
8536.61.99	－ － － － 기타	Cat 0	0
8536.69.11	－ － － － 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Cat 0	0
8536.69.19	－ － － － 기타	Cat 0	0
8536.69.23	－ － － － 전류가 1.5암페어 이하인 것	Cat 0	0
8536.69.24	－ － － － 전류가 1.5암페어 초과 16암페어 미만인 것	Cat 0	0
8536.69.29	－ － － － 기타	Cat 0	0
8536.69.32	－ － － － 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Cat 0	0
8536.69.39	－ － － － 기타	Cat 0	0
8536.69.92	－ － － － 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Cat 15	5
8536.69.99	－ － － － 기타	Cat 15	5
8536.70.10	－ － 도자제의 것	Cat 0	0
8536.70.20	－ － 구리의 것	Cat 0	0
8536.70.90	－ － 기타	Cat 0	0
8536.90.12	－ － － 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Cat 0	0
8536.90.19	－ － － 기타	Cat 0	0
8536.90.22	－ － － 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Cat 0	0
8536.90.29	－ － － 기타	Cat 0	0
8536.90.32	－ － － 전류가 16암페어 미만인 것	Cat 0	0
8536.90.39	－ － － 기타	Cat 0	0
8536.90.93	－ － － － 전화기 패치패널	Cat 0	0
8536.90.94	－ － － － 기타	Cat 0	0
8536.90.99A	－ － － － 배터리 클램프(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또는 제8711호의 차량에 사용되는 것)	Cat 15	2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536.90.99B	- - - - 기타	Cat 0	0
8537.10.11	- - - 분산제어시스템에 사용되는 제어반	Cat 0	0
8537.10.12	- - - 프로그램이 가능한 프로세서가 부착된 제어반	Cat 0	0
8537.10.13	- - - 제8415호, 제8418호, 제8450호, 제8508호, 제8509호나 제8516호의 물품에 적합한 그 밖의 제어반	Cat 0	0
8537.10.19	- - - 기타	Cat 0	0
8537.10.20	- - 제8471호·제8517호나 제8525호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하는 배전반(백 패널과 백 플레인을 포함한다)	Cat 0	0
8537.10.30	- - 반도체기기를 위한 다이(die)의 이송·취급 및 저장용 자동화 기계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	Cat 0	0
8537.10.91	- - - 무선장비나 전기팬에 사용되는 것	Cat 0	0
8537.10.92A	- - - - 화면 표시 기능이 없는 터치 감지 데이터 입력 장치(소위 터치스크린)	Cat 0	0
8537.10.92B	- - - - 기타	Cat 0	0
8537.10.99A	- - - - 모터 제어기[출력이 직류 24볼트에서 120볼트이고 정격 전류(ampere rating)가 300암페어에서 500암페어인 것]	Cat 0	0
8537.10.99B	- - - - 화면 표시 기능이 없는 터치 감지 데이터 입력 장치(소위 터치스크린)	Cat 0	0
8537.10.99C	- - - - 기타	Cat 0	0
8537.20.11	- - - 전압이 66킬로볼트 이상인 전기 회로의 차단, 연결이나 보호용 전기 기기가 결합된 것	Cat 0	0
8537.20.19	- - - 기타	Cat 0	0
8537.20.21	- - - 전압이 66킬로볼트 이상인 전기 회로의 차단, 연결이나 보호용 전기 기기가 결합된 것	Cat 0	0
8537.20.29	- - - 기타	Cat 0	0
8537.20.90	- - 기타	Cat 0	0
8538.10.11	- - - 반도체기기를 위한 다이(die)의 이송·취급 및 저장용 자동화 기계의 프로그램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의 부분품	Cat 0	0
8538.10.12	- - - 무선장비용	Cat 0	0
8538.10.19	- - - 기타	Cat 0	0
8538.10.21	- - - 반도체기기를 위한 다이(die)의 이송·취급 및 저장용 자동화 기계의 프로그램이 가능한 로직 컨트롤러의 부분품	Cat 0	0
8538.10.22	- - - 무선장비용	Cat 0	0
8538.10.29	- - - 기타	Cat 0	0
8538.90.11	- - - 전화 플러그의 인쇄 회로 조립품을 포함하는 부분품, 선과 케이블의 접속용 구성품, 웨이퍼 프로버	Cat 0	0
8538.90.12	- - - 부분품(소호 제8536.50.51호, 제8536.50.59호, 제8536.69.32호, 제8536.69.39호, 제8536.90.12호나 제8536.90.19호의 물품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38.90.13	- - - 부분품(소호 제8537.10.20호의 물품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38.90.19	- - - 기타	Cat 0	0
8538.90.20	- -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39.10.10	- - 제87류의 자동차용의 것	Cat 0	0
8539.10.90	- - 기타	Cat 0	0
8539.21.20	- - - 의료장비용	Cat 0	0
8539.21.30	- - - 차량용	Cat 0	0
8539.21.40	- - - 그 밖의 반사형 전구	Cat 0	0
8539.21.90	- - - 기타	Cat 0	0
8539.22.20	- - - 의료장비용	Cat 0	0
8539.22.31	- - - - 장식 조명용의 것(전력이 60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39.22.32	- - - - 장식 조명용의 것(전력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39.22.33	- - - - 기타(가정용의 것)	Cat 0	0
8539.22.39	- - - - 기타	Cat 0	0
8539.22.91	- - - - 장식 조명용의 것(전력이 60와트 이하인 것)	Cat 0	0
8539.22.92	- - - - 장식 조명용의 것(전력이 60와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39.22.93	- - - - 기타(가정용의 것)	Cat 0	0
8539.22.99	- - - - 기타	Cat 0	0
8539.29.11	- - - - 수술용 램프	Cat 0	0
8539.29.19	- - - - 기타	Cat 0	0
8539.29.20	- - - 차량용	Cat 0	0
8539.29.30	- - - 그 밖의 반사형 전구	Cat 0	0
8539.29.41	- - - - 의료장비용에 적합한 것	Cat 0	0
8539.29.49	- - - - 기타	Cat 0	0
8539.29.50	- - - 기타(전력이 200와트 초과 300와트 이하이며 전압이 100볼트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539.29.60	- - - 기타(전력이 200와트 이하이고 전압이 100볼트 이하인 것)	Cat 0	0
8539.29.90	- - - 기타	Cat 0	0
8539.31.10	- - - 소형 형광등 튜브	Cat 0	0
8539.31.20	- - - 기타(그 밖의 형광등용 직선 튜브)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539.31.30	- - - 안정기 내장형 소형 형광등	Cat 0	0
8539.31.90	- - - 기타	Cat 0	0
8539.32.00	- -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Cat 0	0
8539.39.10	- - - 소형 형광등 튜브	Cat 0	0
8539.39.30A	- - - - 평판디스플레이의 후면광원(backlighting)용 냉음극 형광등(CCFLs)	Cat 0	0
8539.39.30B	- - - - 기타	Cat 0	0
8539.39.90	- - - 기타	Cat 0	0
8539.41.00	- - 아크램프	Cat 0	0
8539.49.00	- - 기타	Cat 0	0
8539.50.00	- 발광다이오드(LED)램프	Cat 0	0
8539.90.10	- - 형광등용 알루미늄 엔드캡(end cap), 백열등용 알루미늄 스크루 캡(screw cap)	Cat 0	0
8539.90.20	- - 기타(승용차 램프에 적합한 것)	Cat 0	0
8539.90.90	- - 기타	Cat 0	0
8540.11.00	- - 천연색	Cat 0	0
8540.12.00	- - 단색	Cat 0	0
8540.20.00	-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과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Cat 0	0
8540.40.10	-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제 8525호 물품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0.40.90	- - 기타	Cat 0	0
8540.60.00	- 그 밖의 음극선관	Cat 0	0
8540.71.00	- - 자전관(magnetron)	Cat 0	0
8540.79.00	- - 기타	Cat 0	0
8540.81.00	- - 수신관이나 증폭관	Cat 0	0
8540.89.00	- - 기타	Cat 0	0
8540.91.00	- - 음극선관의 것	Cat 0	0
8540.99.10	- - - 마이크로웨이브관의 것	Cat 0	0
8540.99.90	- - - 기타	Cat 0	0
8541.10.00	-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이오드는 제외한다)	Cat 0	0
8541.21.00	- - 전력 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 것	Cat 0	0
8541.29.00	- - 기타	Cat 0	0
8541.30.00	-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랙(diac) 및 트라이랙(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외한다)	Cat 0	0
8541.40.10	- - 발광다이오드	Cat 0	0
8541.40.21	- - - 광전지(조립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1.40.22	- - - 광전지(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1.40.29	- - - 기타	Cat 0	0
8541.40.90	- - 기타	Cat 0	0
8541.50.00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Cat 0	0
8541.60.00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Cat 0	0
8541.90.00	- 부분품	Cat 0	0
ex1 8542.31.00	소호 제9305.91.90호, 소호 제9305.99.99호 또는 소호 제 9306.90.00호의 복합부품 직접회로(MCOs)	Cat 0	0
ex2 8542.31.00	기타	Cat 0	0
ex1 8542.32.00	소호 제9305.91.90호, 소호 제9305.99.99호 또는 소호 제 9306.90.00호의 복합부품 직접회로(MCOs)	Cat 0	0
ex2 8542.32.00	기타	Cat 0	0
8542.33.00	- - 증폭기	Cat 0	0
ex1 8542.39.00	소호 제9305.91.90호, 소호 제9305.99.99호 또는 소호 제 9306.90.00호의 복합부품 직접회로(MCOs)	Cat 0	0
ex2 8542.39.00	소호 제8536.90.99B호 또는 ex2 제8536.50.99호의 복합부품 직접회로(MCOs)	Cat 0	0
ex3 8542.39.00	기타	Cat 0	0
8542.90.00	- 부분품	Cat 0	0
8543.10.00	- 입자가속기	Cat 0	0
8543.20.00	- 신호발생기	Cat 0	0
8543.30.20	- - 화학 또는 전기화학 용액의 투입식(immersion) 습식 프로세싱 기구(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기판의 물질을 제거하는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는 상관없다)	Cat 0	0
8543.30.90A	- - - 인쇄 회로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전기도금 용 및 전기분해용 기계	Cat 0	0
8543.30.90B	- - - 기타	Cat 0	0
8543.70.10	- - 일렉트릭 팬스 에너지저장	Cat 0	0
8543.70.20A	- - - 비디오게임 콘솔용 무선 적외선 원격조절장치	Cat 0	0
8543.70.20B	-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543.70.30	- - 번역이나 사전 기능이 있는 전자 기기	Cat 0	0
8543.70.40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의 생산 중 먼지 제거 또는 정전하 제거용 장비,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 제조용 자외선에 의한 양생재(curing material)용 기계	Cat 0	0
8543.70.90A	- - - 유선통신용이나 유선전화용 기기 또는 유선통신용이나 유선전화용 통신망 연결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제품	Cat 0	0
8543.70.90B	- - - 마이크로파 증폭기	Cat 0	0
8543.70.90C	- - - 디지털 비행 데이터 기록 장치	Cat 0	0
8543.70.90D	- - - 휴대용 배터리로 작동하는 전자 리더기(문자, 스틸 이미지 또는 음성 파일의 기록 및 재생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3.70.90E	- - - 디지털신호처리기(사운드 믹싱용 유선 또는 무선 통신망에 연결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3.70.90F	- - - 주로 어린이를 위해 설계된 휴대 대화용(interactive) 전자 교육 장치	Cat 0	0
8543.70.90G	- - - 기타	Cat 0	0
8543.90.10	- - 소호 제8543.10호나 제8543.2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543.90.20	- - 소호 제8543.30.2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543.90.30	- - 소호 제8543.70.3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543.90.40	- - 소호 제8543.70.4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8543.90.90A	- - - 직접 방송 멀티미디어 시스템용 통합 수신기/디코더(IRD)	Cat 0	0
8543.90.90B	- - - 기타	Cat 0	0
8544.11.20	- - - 종이, 섬유 또는 폴리(염화 비닐)로 외부가 도포되거나 피복된 것	Cat 0	0
8544.11.30	- - - 래커로 외부 코팅한 것	Cat 0	0
8544.11.40	- - - 에나멜로 외부 코팅한 것	Cat 0	0
8544.11.90	- - - 기타	Cat 0	0
8544.19.00	- - 기타	Cat 0	0
8544.20.11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Cat 0	0
8544.20.19	- - - 기타	Cat 0	0
8544.20.21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Cat 0	0
8544.20.29	- - - 기타	Cat 0	0
8544.20.31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Cat 0	0
8544.20.39	- - - 기타	Cat 0	0
8544.20.41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Cat 0	0
8544.20.49	- - - 기타	Cat 0	0
8544.30.12	- - - -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또는 제8711호 사양	Cat 15	30
8544.30.13	- - - - 기타	Cat 15	15
8544.30.14	- - - -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또는 제8711호 사양	Cat 15	30
8544.30.19	- - - - 기타	Cat 15	15
8544.30.91	- - - 고무나 플라스틱의 절연체	Cat 0	0
8544.30.99	- - - 기타	Cat 0	0
8544.42.11	- -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해저용)	Cat 0	0
8544.42.13	- - - - 기타(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절연된 것)	Cat 0	0
8544.42.19	- - - - 기타	Cat 0	0
8544.42.21	- -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해저용)	Cat 0	0
8544.42.23	- - - - 기타(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절연된 것)	Cat 0	0
8544.42.29	- - - - 기타	Cat 0	0
8544.42.32	- - - -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또는 제8711호 사양	Cat 15	20
8544.42.33	- - - - 기타	Cat 15	15
8544.42.34	- - - - 제8702호, 제8703호, 제8704호 또는 제8711호 사양	Cat 15	20
8544.42.39	- - - - 기타	Cat 15	15
ex1 8544.42.94	전기통신용을 제외한 것에 사용되는 것(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7
ex2 8544.42.94	전기통신용을 제외한 것에 사용되는 것(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ex1 8544.42.95	전기통신용을 제외한 것에 사용되는 것(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7
ex2 8544.42.95	전기통신용을 제외한 것에 사용되는 것(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ex1 8544.42.96	전기통신용을 제외한 것에 사용되는 것(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7
ex2 8544.42.96	전기통신용을 제외한 것에 사용되는 것(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ex1 8544.42.97	전기통신용을 제외한 것에 사용되는 것(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7
ex2 8544.42.97	전기통신용을 제외한 것에 사용되는 것(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5	5/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ex1 8544.42.98	전기통신용을 제외한 것에 사용되는 것(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7
ex2 8544.42.98	전기통신용을 제외한 것에 사용되는 것(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5	5/0
ex1 8544.42.99	전기통신용을 제외한 것에 사용되는 것(전압이 8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7
ex2 8544.42.99	전기통신용을 제외한 것에 사용되는 것(전압이 80볼트 초과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Cat 5	5/0
8544.49.11	- -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해저용)	Cat 0	0
8544.49.13	- - - - 기타(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절연된 것)	Cat 0	0
8544.49.19	- - - - 기타	Cat 0	0
8544.49.21	- - - - 자동차 와이어링 하네스의 제조에 사용되는 차폐면	Cat 0	0
8544.49.22	- - - -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전기 케이블(코어지름이 19.5밀리미터 이하인 것)	Cat 0	0
8544.49.23	- - - - - 그 밖의 전기 케이블(플라스틱으로 절연된 것)	Cat 0	0
8544.49.24	- - - - - 기타(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절연된 것)	Cat 0	0
8544.49.29	- - - - - 기타	Cat 0	0
8544.49.31	- -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해저용)	Cat 3	5/0
8544.49.32	- - - - 기타(플라스틱으로 절연된 것)	Cat 0	0
8544.49.39	- - - - 기타	Cat 3	5/0
8544.49.41	- - -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케이블	Cat 0	0
8544.49.42	- - - - 기타(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절연된 것)	Cat 3	5/0
8544.49.49	- - - - 기타	Cat 3	5/0
8544.60.11	- -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케이블(코어지름이 22.7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8544.60.12	- - - 기타(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절연된 것)	Cat 0	0
8544.60.19	- - - 기타	Cat 0	0
8544.60.21	- - - 플라스틱으로 절연된 케이블(코어지름이 22.7밀리미터 미만인 것)	Cat 0	0
8544.60.22	- - - 기타(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절연된 것)	Cat 0	0
8544.60.29	- - - 기타	Cat 0	0
8544.60.31	- - - 고무, 플라스틱 또는 종이로 절연된 것	Cat 3	5/0
8544.60.39	- - - 기타	Cat 3	5/0
8544.70.10	- - 전화기, 전신과 무선 중계 케이블(해저용)	Cat 0	0
8544.70.90	- - 기타	Cat 0	0
8545.11.00	- - 노(爐)용	Cat 0	0
8545.19.00	- - 기타	Cat 0	0
8545.20.00	- 브러시	Cat 0	0
8545.90.00	- 기타	Cat 0	0
8546.10.00	- 유리로 만든 것	Cat 0	0
8546.20.10	- - 변압기 부싱 및 회로 차단기 절연체	Cat 0	0
8546.20.90	- - 기타	Cat 0	0
8546.90.00	- 기타	Cat 0	0
8547.10.00	-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Cat 0	0
8547.20.00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Cat 0	0
8547.90.10	- - 전기용 도관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비금속(卑金屬)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7.90.90	- - 기타	Cat 0	0
8548.10.13	- - - 높이(터미널과 핸들은 제외한다)가 23센티미터 이하인 6볼트 및 12볼트의 축전지	Cat 0	0
8548.10.19	- - - 기타	Cat 0	0
8548.10.20	- -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철을 포함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8.10.30	- - 웨이스트와 스크랩(주로 구리를 포함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548.10.91	- - - 일차전지의 것	Cat 0	0
8548.10.92	- - - 항공기용 축전지의 것	Cat 0	0
8548.10.99	- - - 기타	Cat 0	0
8548.90.10	- - 광전도형 센서 요소, 전기 저장 콘덴서, 발광 다이오드의 광원, 박막 트랜지스터 매트릭스 및 문자 스캔이 가능한 스캐닝 콘덴서를 갖춘 밀착식 이미지 센서	Cat 0	0
8548.90.20	- - 인쇄 회로 조립품(외부 커넥터용 조립품을 포함한다)	Cat 0	0
8548.90.90A	- - - 발광다이오드(엘이디) 백라이트 모듈	Cat 0	0
8548.90.90B	- - - 기타	Cat 0	0
8601.10.0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Cat 0	0
8601.20.00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Cat 0	0
8602.10.00	- 디젤 전기기관차	Cat 0	0
8602.90.00	- 기타	Cat 0	0
8603.10.0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Cat 0	0
8603.90.00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604.00.00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자주식(自走式)의 것 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기중기차(crane)·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트랙라이너(trackliner)·검사차 및 궤도검사차]	Cat 0	0
8605.00.00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자주식(自走式)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8606.10.00	-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Cat 0	0
8606.30.00	-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8606.91.00	- -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Cat 0	0
8606.92.00	- -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606.99.00	- - 기타	Cat 0	0
8607.11.00	- -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Cat 0	0
8607.12.00	- -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Cat 0	0
8607.19.00	-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Cat 0	0
8607.21.00	-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Cat 0	0
8607.29.00	- - 기타	Cat 0	0
8607.30.00	- 축과 그 밖의 연결장치·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Cat 0	0
8607.91.00	- - 기관차용	Cat 0	0
8607.99.00	- - 기타	Cat 0	0
8608.00.20	- 전기기계식 기기	Cat 0	0
8608.00.90	- 기타	Cat 0	0
8609.00.1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Cat 0	0
8609.00.90	- 기타	Cat 0	0
8701.10.11A	- - - - 구성품,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8701.10.11B	- - - - 기타	Cat 0	0
8701.10.19A	- - - - 구성품,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8701.10.19B	- - - - 기타	Cat 0	0
8701.10.91A	- - - - 구성품,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8701.10.91B	- - - - 기타	Cat 0	0
8701.10.99A	- - - - 구성품,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8701.10.99B	- - - - 기타	Cat 0	0
8701.20.1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Cat 0	0
8701.20.91	- - - 신차	Cat 0	0
8701.20.99	- - - 기타	Cat 0	0
8701.30.00	- 무한궤도식 트랙터	Cat 0	0
8701.91.10	- - - 농업용 트랙터	Cat 0	0
8701.91.90	- - - 기타	Cat 0	0
8701.92.10	- - - 농업용 트랙터	Cat 0	0
8701.92.90	- - - 기타	Cat 0	0
8701.93.10	- - - 농업용 트랙터	Cat 0	0
8701.93.90	- - - 기타	Cat 0	0
8701.94.10	- - - 농업용 트랙터	Cat 0	0
8701.94.90	- - - 기타	Cat 0	0
8701.95.10	- - - 농업용 트랙터	Cat 0	0
8701.95.90	- - - 기타	Cat 0	0
8702.10.1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Cat 0	5
8702.10.41	- - - - 총중량이 6톤 이상 18톤 이하인 것	Cat 0	3
8702.10.42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5
8702.10.49	- - - - 기타	Cat 0	5
8702.10.50	- - - 기타	Cat 0	5
8702.10.6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Cat 0	5
8702.10.71	- - - - 총중량이 6톤 이상 18톤 이하인 것	Cat 0	5
8702.10.72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5
8702.10.79	- - - - 기타	Cat 0	5
8702.10.81	- - - - 총중량이 6톤 이상 18톤 이하인 것	Cat 0	5
8702.10.82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5
8702.10.89	- - - - 기타	Cat 0	5
8702.10.91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5
8702.10.99	- - - - 기타	Cat 0	5
8702.20.1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Cat 5	5
8702.20.21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702.20.29A	- - - - - 총중량이 6톤 이상 18톤 이하인 것[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3
8702.20.29B	- - - - - 기타	Cat 5	5
8702.20.31A	- - - - - 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3
8702.20.31B	- - - - - 기타	Cat 5	5
8702.20.32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5	5
8702.20.39	- - - - - 기타	Cat 5	5
8702.20.4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5	5
8702.20.49	- - - - - 기타	Cat 5	5
8702.20.5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EX	5
8702.20.61A	- - - - - 기타[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8702.20.61B	- - - - - 기타	EX	5
8702.20.62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EX	5
8702.20.69	- - - - - 기타	EX	5
8702.20.71A	- - - - - 기타[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EX	5
8702.20.71B	- - - - - 기타	EX	5
8702.20.72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EX	5
8702.20.79	- - - - - 기타	EX	5
8702.20.9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EX	5
8702.20.99	- - - - - 기타	EX	5
8702.30.1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Cat 5	5
8702.30.2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5	5
8702.30.29	- - - - - 기타	Cat 5	5
8702.30.3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5	5
8702.30.39	- - - - - 기타	Cat 5	5
8702.30.4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5	5
8702.30.49	- - - - - 기타	Cat 5	5
8702.30.5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EX	5
8702.30.6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EX	5
8702.30.69	- - - - - 기타	EX	5
8702.30.7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EX	5
8702.30.79	- - - - - 기타	EX	5
8702.30.9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EX	5
8702.30.99	- - - - - 기타	EX	5
8702.40.1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Cat 5	5
8702.40.2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5	5
8702.40.29	- - - - - 기타	Cat 5	5
8702.40.3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5	5
8702.40.39	- - - - - 기타	Cat 5	5
8702.40.4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5	5
8702.40.49	- - - - - 기타	Cat 5	5
8702.40.5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EX	5
8702.40.6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EX	5
8702.40.69	- - - - - 기타	EX	5
8702.40.7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EX	5
8702.40.79	- - - - - 기타	EX	5
8702.40.9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EX	5
8702.40.99	- - - - - 기타	EX	5
8702.90.1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Cat 0	5
8702.90.2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5
8702.90.29	- - - - - 기타	Cat 0	5
8702.90.3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5
8702.90.32	- - - - - 기타	Cat 0	5
8702.90.33	- - - 기타(총중량이 24톤 이하인 것)	Cat 0	5
8702.90.39	- - - 기타	Cat 0	5
8702.90.40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	Cat 0	5
8702.90.51	-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5
8702.90.59	- - - - - 기타	Cat 0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702.90.61	- -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5
8702.90.69	- - - - 기타	Cat 0	5
8702.90.71	- - - - 총중량이 24톤 이하인 것	Cat 0	5
8702.90.79	- - - - 기타	Cat 0	5
8702.90.80	- - - 기타(총중량이 24톤 이하인 것)	Cat 0	5
8702.90.90A	- - - -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하이브리드(전기 및 가솔린/디젤), 전기식, 플렉스 연료(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압축 천연가스, 하이드로겐 또는 그 밖의 대체 연료차량 조립용으로 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0	0
8702.90.90B	- - - - 그 밖의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0	1
8702.90.90C	- - - - 기타	Cat 0	5
8703.10.10	- - 골프용 차(골프 버기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차량	Cat 0	0
8703.10.90	- - 기타	Cat 0	0
8703.21.11	- - - - 고카트(Go-carts)	Cat 0	0
ex1 8703.21.12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1.12	기타	Cat 0	5
ex1 8703.21.13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1.13	기타	Cat 0	5
ex1 8703.21.14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1.14	기타	Cat 0	5
8703.21.15	- - - - 승용차(Sedan)	Cat 0	5
8703.21.21	- - - - - 사륜구동 방식의 것	Cat 0	5
8703.21.29	- - - - - 기타	Cat 0	5
ex1 8703.21.30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1.30	기타	Cat 0	5
8703.21.41	- - - - 고카트(Go-carts)	Cat 0	0
ex1 8703.21.42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1.42	기타	Cat 0	5
8703.21.43	- - - - 구급차	Cat 0	5
8703.21.44	- - - - 모터홈(motor-homes)	Cat 0	5
8703.21.45	- - - - 승용차(Sedan)	Cat 0	5
8703.21.51	- - - - - 사륜구동 방식의 것	Cat 0	5
8703.21.59	- - - - - 기타	Cat 0	5
ex1 8703.21.90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1.90	기타	Cat 0	5
ex1 8703.22.11	구급차,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2.11	기타	Cat 0	5
ex1 8703.22.12	구급차,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2.12	기타	Cat 0	5
ex1 8703.22.13	구급차,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2.13	기타	Cat 0	5
ex1 8703.22.14	구급차,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2.14	기타	Cat 0	5
ex1 8703.22.15	구급차,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2.15	기타	Cat 0	5
ex1 8703.22.16	구급차,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2.16	기타	Cat 0	5
8703.22.17	- - - - 승용차(Sedan)	Cat 0	5
8703.22.21	- - - - - 사륜구동 방식의 것	Cat 0	5
8703.22.29	- - - - - 기타	Cat 0	5
ex1 8703.22.30	구급차,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2.30	기타	Cat 0	5
ex1 8703.22.41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2.41	기타	Cat 0	5
ex1 8703.22.42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2.42	기타	Cat 0	5
8703.22.43	- - - - 구급차	Cat 0	0
ex1 8703.22.44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2.44	기타	Cat 0	5
ex1 8703.22.45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2.45	기타	Cat 0	5
8703.22.46	- - - - 모터홈(motor-homes)	Cat 0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703.22.47	- - - - 승용차(Sedan)	Cat 0	5
8703.22.51	- - - - - 사륜구동 방식의 것	Cat 0	5
8703.22.59	- - - - - 기타	Cat 0	5
ex1 8703.22.90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22.90	기타	Cat 0	5
8703.23.11	- - - - 구급차	Cat 0	0
8703.23.12	- - - - 영구차	Cat 0	0
8703.23.13	- - - - 수인용차량	Cat 0	0
8703.23.14	- - - - 모터홈(motor-homes)	Cat 0	5
8703.23.21	- - - - - 절단면 폭양이 1,500mm이하 초과 1,8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22	- - - - - 절단면 폭양이 1,800mm이하 초과 2,0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23	- - - - - 절단면 폭양이 2,000mm이하 초과 2,5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24	- - - - - 실린더 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23.31	- - - - - 절단면 폭양이 1,500mm이하 초과 1,8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32	- - - - - 절단면 폭양이 1,800mm이하 초과 2,0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33	- - - - - 절단면 폭양이 2,000mm이하 초과 2,5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34	- - - - - 실린더 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23.35	- - - - - 절단면 폭양이 1,500mm이하 초과 2,0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36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23.41	- - - - - 절단면 폭양이 1,500mm이하 초과 2,0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42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cc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23.51	- - - - 구급차	Cat 0	0
8703.23.52	- - - - 영구차	Cat 0	0
8703.23.53	- - - - 수인용차량	Cat 0	0
8703.23.54	- - - - 모터홈(motor-homes)	Cat 0	5
8703.23.55	- - - - - 절단면 폭양이 1,500mm이하 초과 1,8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56	- - - - - 절단면 폭양이 1,800mm이하 초과 2,0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57	- - - - - 절단면 폭양이 2,000mm이하 초과 2,5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58	- - - - - 실린더 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23.61	- - - - - 절단면 폭양이 1,500mm이하 초과 1,8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62	- - - - - 절단면 폭양이 1,800mm이하 초과 2,0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63	- - - - - 절단면 폭양이 2,000mm이하 초과 2,5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64	- - - - - 실린더 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23.65	- - - - - 절단면 폭양이 1,500mm이하 초과 1,8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66	- - - - - 절단면 폭양이 1,800mm이하 초과 2,0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67	- - - - - 절단면 폭양이 2,000mm이하 초과 2,5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68	- - - - - 실린더 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23.71	- - - - - 절단면 폭양이 1,500mm이하 초과 1,8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72	- - - - - 절단면 폭양이 1,800mm이하 초과 2,0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73	- - - - - 절단면 폭양이 2,000mm이하 초과 2,500mm이하인 것	Cat 0	5
8703.23.74	- - - - - 실린더 용량이 2,500cc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24.11	- - - - 구급차	Cat 0	0
8703.24.12	- - - - 영구차	Cat 0	0
8703.24.13	- - - - 수인용차량	Cat 0	0
8703.24.14	- - - - 모터홈(motor-homes)	Cat 0	5
8703.24.15	- - - - 승용차(Sedan)	Cat 0	5
8703.24.21	- - - - - 사륜구동 방식의 것	Cat 0	5
8703.24.29	- - - - - 기타	Cat 0	5
8703.24.30	- - - - 기타	Cat 0	5
8703.24.41	- - - - 구급차	Cat 0	0
8703.24.42	- - - - 영구차	Cat 0	0
8703.24.43	- - - - 수인용차량	Cat 0	0
8703.24.44	- - - - 모터홈(motor-homes)	Cat 0	5
8703.24.45	- - - - - 사륜구동 방식의 것	Cat 0	5
8703.24.49	- - - - - 기타	Cat 0	5
8703.24.51	- - - - - 사륜구동 방식의 것	Cat 0	5
8703.24.59	- - - - - 기타	Cat 0	5
8703.24.61	- - - - - 사륜구동 방식의 것	Cat 0	5
8703.24.69	- - - - - 기타	Cat 0	5
ex1 8703.31.11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31.11	기타	Cat 0	5
ex1 8703.31.12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31.12	기타	Cat 0	5
8703.31.13	- - - - 구급차	Cat 0	0
ex1 8703.31.14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ex2 8703.31.14	기타	Cat 0	5
ex1 8703.31.15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31.15	기타	Cat 0	5
8703.31.16	- - - - 모터홈(motor-homes)	Cat 0	5
8703.31.17	- - - - 승용차(Sedan)	Cat 0	5
8703.31.21	- - - - - 사륜구동 방식의 것	Cat 0	5
8703.31.29	- - - - - 기타	Cat 0	5
ex1 8703.31.30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31.30	기타	Cat 0	5
ex1 8703.31.41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31.41	기타	Cat 0	5
ex1 8703.31.42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31.42	기타	Cat 0	5
8703.31.43	- - - - 구급차	Cat 0	0
ex1 8703.31.44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31.44	기타	Cat 0	5
ex1 8703.31.45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31.45	기타	Cat 0	5
8703.31.46	- - - - 모터홈(motor-homes)	Cat 0	5
8703.31.47	- - - - 승용차(Sedan)	Cat 0	5
8703.31.51	- - - - - 사륜구동 방식의 것	Cat 0	5
8703.31.59	- - - - - 기타	Cat 0	5
ex1 8703.31.90	영구차와 수인용 차량	Cat 0	0
ex2 8703.31.90	기타	Cat 0	5
8703.32.11	- - - - 구급차	Cat 0	5
8703.32.12	- - - - 영구차	Cat 0	5
8703.32.13	- - - - 수인용차량	Cat 0	5
8703.32.14	- - - - 모터홈(motor-homes)	Cat 0	5
8703.32.21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치치 초과 1,8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22	-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치치 초과 2,0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23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치치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32.31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치치 초과 1,8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32	-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치치 초과 2,0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33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치치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32.34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치치 초과 1,8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35	-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치치 초과 2,0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36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치치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32.41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치치 초과 1,8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42	-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치치 초과 2,0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43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치치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32.51	- - - - 구급차	Cat 0	5
8703.32.52	- - - - 영구차	Cat 0	5
8703.32.53	- - - - 수인용차량	Cat 0	5
8703.32.54	- - - - 모터홈(motor-homes)	Cat 0	5
8703.32.61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치치 초과 1,8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62	-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치치 초과 2,0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63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치치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32.71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치치 초과 1,8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72	-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치치 초과 2,0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73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치치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32.74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치치 초과 1,8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75	-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치치 초과 2,0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76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치치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32.81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치치 초과 1,8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82	-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치치 초과 2,0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2.83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치치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33.11	- - - - 구급차	Cat 0	0
8703.33.12	- - - - 영구차	Cat 0	0
8703.33.13	- - - - 수인용차량	Cat 0	0
8703.33.14	- - - - 모터홈(motor-homes)	Cat 0	5
8703.33.21	-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치치 초과 3,0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3.22	-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치치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33.31	-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치치 초과 3,000치치 미하인	Cat 0	5
8703.33.32	-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치치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33.33	-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치치 초과 3,000치치 미하인	Cat 0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703.33.34	-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33.40	- - - - - 기타	Cat 0	5
8703.33.51	- - - - - 구급차	Cat 0	0
8703.33.52	- - - - - 영구차	Cat 0	0
8703.33.53	- - - - - 수인용차량	Cat 0	0
8703.33.54	- - - - - 모터홈(motor-homes)	Cat 0	5
8703.33.61	-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5
8703.33.62	-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33.71	-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5
8703.33.72	-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5
8703.33.80	- - - - - 사륜구동 방식이 아닌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 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Cat 0	5
8703.33.90	- - - - - 기타	Cat 0	5
ex1 8703.40.11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주요 추진동력이 불꽃점 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Cat 0	0
ex2 8703.40.11	기타	Cat 5	5
8703.40.1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Cat 5	5
ex1 8703.40.13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주요 추진동력이 불꽃점 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Cat 5	5
ex2 8703.40.13	기타	Cat 0	0
8703.40.14	- - - 영구차	Cat 0	0
8703.40.15	- - - 수인용차량	Cat 0	0
8703.40.16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17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40.18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19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21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40.22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23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24	- - - - -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40.25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26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40.27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28	- - - - - 실린더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ex1 8703.40.31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주요 추진동력이 불꽃점 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Cat 0	0
ex2 8703.40.31	기타	Cat 5	5
8703.40.32	-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33	-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40.34	-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40.35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ex1 8703.40.36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주요 추진동력이 불꽃점 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Cat 5	5
ex2 8703.40.36	기타	Cat 0	0
8703.40.41	-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40.42	-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40.43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40.44	-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40.45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40.46	-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40.47	-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703.40.51	-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40.52	-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40.53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40.54	-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40.55	-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703.40.56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57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58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40.61	-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62	-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63	-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64	-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65	-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66	-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67	-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구동 방식의 것)	Cat 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703.40.68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구동 방식이 아닌 것)	Cat 5	5
8703.40.7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7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7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7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7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7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7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40.8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8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8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8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8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8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8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40.9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9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9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9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9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9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40.9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구동 방식의 것)	Cat 5	5
8703.40.98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구동 방식이 아닌 것)	Cat 5	5
8703.50.11	- - - 고카트(Go-carts)	Cat 5	5
8703.50.1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Cat 5	5
ex1 8703.50.13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50.13	기타	Cat 0	0
ex1 8703.50.14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50.14	기타	Cat 0	0
ex1 8703.50.15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50.15	기타	Cat 0	0
8703.50.16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50.17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50.18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50.19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50.21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50.22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50.2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50.24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50.2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50.26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50.27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50.28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50.31	- - - 고카트(Go-carts)	EX	5
8703.50.3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33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8703.50.34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ex1 8703.50.35	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50.35	기타	Cat 0	0
8703.50.3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703.50.4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50.4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ex1 8703.50.43	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50.43	기타	Cat 0	0
ex1 8703.50.44	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50.44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ex1 8703.50.45	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 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50.45	기타	Cat 0	0
8703.50.4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50.4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703.50.5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50.5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ex1 8703.50.53	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 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50.53	기타	Cat 0	0
ex1 8703.50.54	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 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50.54	기타	Cat 0	0
8703.50.55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703.50.56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57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58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8703.50.6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6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6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6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6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6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6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8703.50.7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7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7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7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7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7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7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8703.50.8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8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8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8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8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8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8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8703.50.9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50.9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50.9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9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9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9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50.9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ex1 8703.60.11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주요 추진동력이 불꽃점 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Cat 0	0
ex2 8703.60.11	기타	Cat 5	5
8703.60.1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Cat 5	5
ex1 8703.60.13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주요 추진동력이 불꽃점 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Cat 5	5
ex2 8703.60.13	기타	Cat 0	0
8703.60.14	- - - 영구차	Cat 0	0
8703.60.15	- - - 수인용차량	Cat 0	0
8703.60.16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60.17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60.18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60.19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60.21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60.22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60.2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60.24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60.2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60.26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60.27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60.28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ex1 8703.60.31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주요 추진동력이 불꽃점 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Cat 0	0
ex2 8703.60.31	기타	Cat 5	5
8703.60.3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33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8703.60.34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60.35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ex1 8703.60.36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주요 추진동력이 불꽃점 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인 것)	Cat 5	5
ex2 8703.60.36	기타	Cat 0	0
8703.60.4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60.4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60.4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60.4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60.4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60.4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60.4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703.60.5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60.5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60.5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60.5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60.55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703.60.56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57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58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8703.60.6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6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6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60.6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60.6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6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6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구동 방식의 것)	EX	5
8703.60.68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구동 방식이 아닌 것)	EX	5
8703.60.7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7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7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60.7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7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7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7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8703.60.8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8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8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60.8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8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8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8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8703.60.9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9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9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9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9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9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60.9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구동 방식의 것)	EX	5
8703.60.98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사륜구동 방식이 아닌 것)	EX	5
8703.70.11	- - - 고카트(Go-carts)	Cat 5	5
8703.70.1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Cat 5	5
ex1 8703.70.13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70.13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ex1 8703.70.14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70.14	기타	Cat 0	0
ex1 8703.70.15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70.15	기타	Cat 0	0
8703.70.16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70.17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70.18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70.19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70.21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70.22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70.2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70.24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70.2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70.26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70.27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이하인 것	Cat 5	5
8703.70.28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5	5
8703.70.31	－ － － 고카트(Go-carts)	EX	5
8703.70.3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33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8703.70.34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ex1 8703.70.35	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70.35	기타	Cat 0	0
8703.70.3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703.70.4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70.4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ex1 8703.70.43	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70.43	기타	Cat 0	0
ex1 8703.70.44	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70.44	기타	Cat 0	0
ex1 8703.70.45	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70.45	기타	Cat 0	0
8703.70.4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70.4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703.70.5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8703.70.5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Cat 0	0
ex1 8703.70.53	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70.53	기타	Cat 0	0
ex1 8703.70.54	주요 추진동력이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인 것	Cat 5	5
ex2 8703.70.54	기타	Cat 0	0
8703.70.55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703.70.56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57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58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8703.70.6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6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6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6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6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6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6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8703.70.7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7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7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7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7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7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7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8703.70.8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EX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703.70.8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8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8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8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8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8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8703.70.91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92	－ － － － 실린더 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93	－ － － － 실린더 용량이 1,500시시 초과 1,8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94	－ － － － 실린더 용량이 1,800시시 초과 2,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95	－ － － － 실린더 용량이 2,0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96	－ － － － 실린더 용량이 2,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EX	5
8703.70.97	－ － － － 실린더 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EX	5
8703.80.11	－ － － 고카트(Go-carts)	Cat 5	5
8703.80.1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Cat 5	5
8703.80.13	－ － － 구급차	Cat 0	0
8703.80.14	－ － － 영구차	Cat 0	0
8703.80.15	－ － － 수인용차량	Cat 0	0
8703.80.16	－ － － 모터홈(motor-homes)	Cat 5	5
8703.80.17	－ － － 승용차(Sedan)	Cat 5	5
8703.80.18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Cat 5	5
8703.80.19	－ － － 기타	Cat 5	5
8703.80.91	－ － － 고카트(Go-carts)	Cat 5	5
8703.80.9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Cat 5	5
8703.80.93	－ － － 구급차	Cat 0	0
8703.80.94	－ － － 영구차	Cat 0	0
8703.80.95	－ － － 수인용차량	Cat 0	0
8703.80.96	－ － － 모터홈(motor-homes)	Cat 5	5
8703.80.97	－ － － 승용차(Sedan)	Cat 5	5
8703.80.98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Cat 5	5
8703.80.99A	－ － － －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전기차 조립용으로 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0	0
8703.80.99B	－ － － － 기타	Cat 0	5
8703.90.11	－ － － 고카트(Go-carts)	Cat 0	5
8703.90.1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Cat 0	5
8703.90.13	－ － － 구급차	Cat 0	5
8703.90.14	－ － － 영구차	Cat 0	5
8703.90.15	－ － － 수인용차량	Cat 0	5
8703.90.16	－ － － 모터홈(motor-homes)	Cat 0	5
8703.90.17	－ － － 승용차(Sedan)	Cat 0	5
8703.90.18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Cat 0	5
8703.90.19	－ － － 기타	Cat 0	5
8703.90.91	－ － － 고카트(Go-carts)	Cat 0	5
8703.90.92	－ － － 전지형(全地形) 만능차(ATV)	Cat 0	5
8703.90.93	－ － － 구급차	Cat 0	5
8703.90.94	－ － － 영구차	Cat 0	5
8703.90.95	－ － － 수인용차량	Cat 0	5
8703.90.96	－ － － 모터홈(motor-homes)	Cat 0	5
8703.90.97	－ － － 승용차(Sedan)	Cat 0	5
8703.90.98	－ － － 그 밖의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	Cat 0	5
8703.90.99A	－ － － －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하이브리드(전기 및 가솔린/디젤), 플렉스 연료(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압축천연가스, 하이드로젠 또는 그 밖의 대체 연료차량 조립용으로 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0	0
8703.90.99B	－ － － － 그 밖의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0	1
8703.90.99C	－ － － － 기타	Cat 0	5
8704.10.13	－ －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Cat 0	0
8704.10.14	－ － － 총중량이 5톤 초과 10톤 이하인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704.10.15	--- 총중량이 10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Cat 0	0
8704.10.16	--- 총중량이 20톤 초과 24톤 이하인 것	Cat 0	0
8704.10.17	--- 총중량이 24톤 초과 45톤 이하인 것	Cat 0	0
8704.10.18	--- 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704.10.3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Cat 0	0
8704.10.32	--- 총중량이 5톤 초과 10톤 이하인 것	Cat 0	0
8704.10.33	--- 총중량이 10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Cat 0	0
8704.10.34	--- 총중량이 20톤 초과 24톤 이하인 것	Cat 0	0
8704.10.35	--- 총중량이 24톤 초과 38톤 이하인 것	Cat 0	0
8704.10.36	--- 총중량이 38톤 초과 45톤 이하인 것	Cat 0	0
8704.10.37	--- 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704.21.11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21.19	----- 기타	Cat 0	5
8704.21.21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21.22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5
8704.21.23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Cat 0	5
8704.21.24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Cat 0	5
8704.21.25	----- 후크 리프트차(트럭)	Cat 0	5
8704.21.29	----- 기타	Cat 0	5
8704.22.11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22.19	----- 기타	Cat 0	5
8704.22.21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22.22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5
8704.22.23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Cat 0	5
ex1 8704.22.24	그 밖의 밴, 픽업 트럭과 이와 유사한 차량	Cat 0	5
ex2 8704.22.24	기타	Cat 0	0
ex1 8704.22.25	그 밖의 밴, 픽업 트럭과 이와 유사한 차량	Cat 0	5
ex2 8704.22.25	기타	Cat 0	0
ex1 8704.22.29	그 밖의 밴, 픽업 트럭과 이와 유사한 차량, 보통의 화물차(트럭)	Cat 0	5
ex2 8704.22.29	기타	Cat 0	0
8704.22.31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22.39	----- 기타	Cat 0	5
8704.22.41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22.42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5
8704.22.43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Cat 0	5
8704.22.45	----- 후크 리프트차(트럭)	Cat 0	5
8704.22.46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으로 총중량이 6톤 초과 10톤 이하인 것)	Cat 0	5
8704.22.47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으로 총중량이 10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Cat 0	5
8704.22.51	----- 총중량이 6톤 초과 10톤 이하인 것	Cat 0	5
8704.22.59	----- 기타	Cat 0	5
8704.23.11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23.19	----- 기타	Cat 0	5
8704.23.21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23.22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5
8704.23.23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Cat 0	5
8704.23.24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Cat 0	5
8704.23.25	----- 후크 리프트차(트럭)	Cat 0	5
8704.23.29	----- 기타	Cat 0	5
8704.23.51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23.59	----- 기타	Cat 0	5
8704.23.61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23.62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5
8704.23.63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Cat 0	5
8704.23.64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Cat 0	5
8704.23.65	----- 후크 리프트차(트럭)	Cat 0	5
8704.23.66	----- 덤프차	Cat 0	5
8704.23.69	----- 기타	Cat 0	5
8704.23.71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23.79	----- 기타	Cat 0	5
8704.23.81	----- 냉장차(트럭)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704.23.8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 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5
8704.23.8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Cat 0	5
8704.23.8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Cat 0	5
8704.23.86	- - - - - 덤프차	Cat 0	5
8704.23.89	- - - - - 기타	Cat 0	5
8704.31.11	- - - -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31.19	- - - - - 기타	Cat 0	5
8704.31.21	- - - -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31.2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 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5
8704.31.2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Cat 0	5
8704.31.2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Cat 0	5
8704.31.2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Cat 0	5
8704.31.29	- - - - - 기타	Cat 0	5
8704.32.11	- - - -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32.19	- - - - - 기타	Cat 0	5
8704.32.21	- - - -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32.2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 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5
8704.32.2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Cat 0	5
8704.32.2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Cat 0	5
8704.32.2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Cat 0	5
8704.32.29	- - - - - 기타	Cat 0	5
8704.32.31	- - - -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32.39	- - - - - 기타	Cat 0	5
8704.32.41	- - - -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32.4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 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5
8704.32.4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Cat 0	5
8704.32.4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Cat 0	5
8704.32.4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Cat 0	5
8704.32.48	- - - - - 기타(총중량이 6톤 초과 10톤 이하인 것)	Cat 0	5
8704.32.49	- - - - - 기타	Cat 0	5
8704.32.51	- - - -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32.59	- - - - - 기타	Cat 0	5
8704.32.61	- - - -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32.6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 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5
8704.32.6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Cat 0	5
8704.32.6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Cat 0	5
8704.32.6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Cat 0	5
8704.32.69	- - - - - 기타	Cat 0	5
8704.32.72	- - - -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32.79	- - - - - 기타	Cat 0	5
8704.32.81	- - - -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32.82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 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5
8704.32.83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Cat 0	5
8704.32.84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Cat 0	5
8704.32.85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Cat 0	5
8704.32.86	- - - - - 덤프차	Cat 0	5
8704.32.89	- - - - - 기타	Cat 0	5
8704.32.91	- - - -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32.92	- - - - - 기타	Cat 0	5
8704.32.93	- - - - - 냉장차(트럭)	Cat 0	0
8704.32.94	- - - - - 폐기물/쓰레기 수거용 차량(폐기물 압축장치를 갖 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5
8704.32.95	- - - - - 탱크차, 벌크 시멘트차(트럭)	Cat 0	5
8704.32.96	- - - - - 장갑차(귀중품 수송용)	Cat 0	5
8704.32.97	- - - - - 후크 리프트차(트럭)	Cat 0	5
8704.32.98	- - - - - 덤프차	Cat 0	5
8704.32.99	- - - - - 기타	Cat 0	5
8704.90.1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Cat 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704.90.91A	- - - -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하이브리드(전기 및 가솔린/디젤), 전기식, 플렉스 연료(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압축천연가스, 하이드로젠 또는 그 밖의 대체 연료차량 조립용으로 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0	0
8704.90.91B	- - - - 그 밖의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5	1
8704.90.91C	- - - - 기타	Cat 5	5
8704.90.92A	- - - -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하이브리드(전기 및 가솔린/디젤), 전기식, 플렉스 연료(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압축천연가스, 하이드로젠 또는 그 밖의 대체 연료차량 조립용으로 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0	0
8704.90.92B	- - - - 그 밖의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5	1
8704.90.92C	- - - - 기타	Cat 5	5
8704.90.93A	- - - -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하이브리드(전기 및 가솔린/디젤), 전기식, 플렉스 연료(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압축천연가스, 하이드로젠 또는 그 밖의 대체 연료차량 조립용으로 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0	0
8704.90.93B	- - - - 그 밖의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5	1
8704.90.93C	- - - - 기타	Cat 5	5
8704.90.94A	- - - -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하이브리드(전기 및 가솔린/디젤), 전기식, 플렉스 연료(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압축천연가스, 하이드로젠 또는 그 밖의 대체 연료차량 조립용으로 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0	0
8704.90.94B	- - - - 그 밖의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5	1
8704.90.94C	- - - - 기타	Cat 5	5
8704.90.95A	- - - -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하이브리드(전기 및 가솔린/디젤), 전기식, 플렉스 연료(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압축천연가스, 하이드로젠 또는 그 밖의 대체 연료차량 조립용으로 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0	0
8704.90.95B	- - - - 그 밖의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5	1
8704.90.95C	- - - - 기타	Cat 5	5
8705.10.00	- 기중기차(crane lorry)	Cat 0	0
8705.20.00	-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Cat 0	0
8705.30.00	- 소방차	Cat 0	0
8705.40.00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Cat 0	0
8705.90.50	- - 도로 청소차, 분노차, 이동진료차, 모든 종류의 살포차	Cat 0	0
8705.90.60	- - 이동식 폭발물 제조 차량	Cat 0	0
8705.90.90	- - 기타	Cat 0	0
8706.00.11	- - 소호 제8701.10.11호, 제8701.10.91호, 제8701.91.10호, 제8701.92.10호, 제8701.93.10호, 제8701.94.10호 또는 제8701.95.10호의 농업용 트랙터의 것	Cat 0	0
8706.00.19	- - 기타	Cat 0	5
8706.00.21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용의 것	Cat 0	5
8706.00.22	- - 기타(총중량이 24톤 이하인 차량용)	Cat 0	5
8706.00.23	- - 기타(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차량용)	Cat 0	5
8706.00.31	- - 고카트(go-karts) 및 골프용 차(골프 버기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차량용	Cat 0	5
8706.00.32	- - 구급차용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706.00.33	- - 승용자동차(스테이션왜건과 스포츠카를 포함하며 밴은 제외한다)용	Cat 0	5
8706.00.39	- - 기타	Cat 0	5
8706.00.41	- - 총중량이 24톤 이하인 차량용	Cat 0	5
8706.00.42	- - 총중량이 24톤을 초과하는 차량용	Cat 0	5
8706.00.50	- 제8705호의 차량용	Cat 0	0
8707.10.10	- - 고카트(go-karts) 및 골프용 차(골프 버기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차량용	Cat 5	10
8707.10.20	- - 구급차용	Cat 0	0
8707.10.90	- - 기타	Cat 5	10
ex1 8707.90.11	소호 제8701.10호와 제8701.90호의 차량용(농업용 트랙터로 한정한다)	Cat 0	0
ex2 8707.90.11	기타	Cat 5	15
ex1 8707.90.19	소호 제8701.10호와 제8701.90호의 차량용(농업용 트랙터로 한정한다)	Cat 0	0
ex2 8707.90.19	기타	Cat 5	15
8707.90.21	- - - 승용자동차[스트레치 리무진을 포함하나 코치(coaches), 버스, 미니버스나 밴은 제외한다]용의 것	Cat 5	15
8707.90.29	- - - 기타	Cat 5	15
8707.90.30	- - 제8705호의 차량용	Cat 0	0
8707.90.40	- - 운전실(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덤프차의 것)	Cat 5	20
8707.90.90	- - 기타	Cat 5	20
8708.10.10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10.90	- - 기타	Cat 5	10
8708.21.00	- - 안전벨트	Cat 5	10
8708.29.11	-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0	3
8708.29.15	- - - - 제8703호 차량용 문 팔걸이	Cat 0	5
8708.29.16	- - - - 기타(제8703호의 차량용)	Cat 0	5
8708.29.17	- - - - 소호 제8704.10호의 차량용	Cat 0	3
8708.29.18	- - - - 제8702호 차량 또는 제8704호의 그 밖의 차량용	Cat 0	5
8708.29.19	- - - - 기타	Cat 0	3
8708.29.20	- - - 안전벨트 부분품	Cat 0	3
8708.29.92	-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0	5
8708.29.93	- - - - - 인테리어트림 연결구류, 흡받기	Cat 0	5
8708.29.94	- - - - - 후드 로드	Cat 0	5
8708.29.95	- - - - - 기타	Cat 0	5
8708.29.96	- - - - - 인테리어트림 연결구류, 흡받기	Cat 0	5
8708.29.97	- - - - - 후드 로드	Cat 0	5
8708.29.98	- - - - - 기타	Cat 0	5
8708.29.99	- - - - 기타	Cat 0	5
ex1 8708.30.1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Cat 5	10
ex2 8708.30.10	기타	Cat 0	5
8708.30.21	- - - 브레이크 드럼 · 브레이크 디스크나 브레이크 파이프	Cat 0	5
ex1 8708.30.29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Cat 5	10
ex2 8708.30.29	기타	Cat 0	5
8708.30.30	- - 브레이크 드럼 · 브레이크 디스크나 브레이크 파이프(제8702호나 제8704호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Cat 0	5
ex1 8708.30.90	장착된 브레이크 라이닝	Cat 5	10
ex2 8708.30.90	기타	Cat 0	5
8708.40.11	- - - 제8703호의 차량용	Cat 0	3
8708.40.13	- - - 제8704호나 제8705호의 차량용	Cat 0	3
8708.40.14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0	3
8708.40.19	- - - 기타	Cat 0	3
8708.40.25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40.26	- - - 제8703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40.27	- - - 제8704호나 제8705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40.29	- - - 기타	Cat 5	10
8708.40.91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0	5
8708.40.92	- - - 제8703호의 차량용	Cat 0	5
8708.40.99	- - - 기타	Cat 0	5
ex1 8708.50.11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Cat 0	3
ex2 8708.50.11	기타	Cat 0	3
ex1 8708.50.13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Cat 0	3
ex2 8708.50.13	기타	Cat 0	3
ex1 8708.50.15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Cat 0	3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ex2 8708.50.15	기타	Cat 0	3
ex1 8708.50.19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Cat 0	3
ex2 8708.50.19	기타	Cat 0	3
ex1 8708.50.25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Cat 5	10
ex2 8708.50.25	기타	Cat 0	5
ex1 8708.50.26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구급차의 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Cat 5	10
ex2 8708.50.26	기타	Cat 0	5
ex1 8708.50.27	비구동 차축	Cat 0	5
ex2 8708.50.27	기타	Cat 5	10
ex1 8708.50.29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Cat 5	10
ex2 8708.50.29	기타	Cat 0	5
8708.50.91	－ － － － 크라운 휠(wheels)과 피니언	Cat 0	5
ex1 8708.50.92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Cat 5	10
ex2 8708.50.92	기타	Cat 0	5
ex1 8708.50.94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Cat 5	10
ex2 8708.50.94	기타	Cat 0	5
ex1 8708.50.95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Cat 5	10
ex2 8708.50.95	기타	Cat 0	5
ex1 8708.50.96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Cat 5	10
ex2 8708.50.96	기타	Cat 0	5
ex1 8708.50.99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Cat 5	10
ex2 8708.50.99	기타	Cat 0	5
8708.70.15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0	3
8708.70.16	－ － － 제8703호의 차량용	Cat 5	15
8708.70.17	－ － － － 소호 제8704.10호의 차량용	Cat 0	3
8708.70.18	－ － － － 기타	Cat 5	15
8708.70.19	－ － － 기타	Cat 0	3
8708.70.21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70.22	－ － － 제8703호의 차량용	Cat 5	15
8708.70.23	－ － － 제8702호 또는 제8704호의 차량용(소호 제8704.10호는 제외한다)	Cat 5	15
8708.70.29	－ － － 기타	Cat 5	10
8708.70.31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70.32	－ － － 제8703호의 차량용	Cat 5	15
8708.70.33	－ － － 총중량이 45톤을 초과하는 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덤프차의 것	Cat 5	10
8708.70.34A	－ － － － 소호 제8704.10호의 그 밖의 차량용	Cat 5	10
8708.70.34B	－ － － － 기타	Cat 5	15
8708.70.39	－ － － 기타	Cat 5	10
8708.70.95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70.96	－ － － 제8702호 또는 제8704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70.97	－ － － 제8703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70.99	－ － － 기타	Cat 5	10
8708.80.15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80.16	－ － － 제8703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80.17	－ － － 소호 제8704.10호나 제8705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80.19	－ － － 기타	Cat 5	10
8708.80.91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0	0
8708.80.92	－ － － 제8703호의 차량용	Cat 0	1
8708.80.99	－ － － 기타	Cat 0	0
8708.91.15	－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91.16	－ － － － 제8703호의 차량용	Cat 5	30
8708.91.17	－ － － － － 소호 제8704.10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91.18	－ － － － － 기타	Cat 5	30
8708.91.19	－ － － － 기타	Cat 5	10
8708.91.91	－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0	3
8708.91.93	－ － － － 드레인 플러그(제8703호의 차량용)	Cat 5	20
8708.91.94	－ － － － 드레인 플러그(제8702호 또는 제8704호 차량용의 것으로, 소호 제8704.10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5	20
8708.91.95	－ － － － 기타(제8703호의 차량용)	Cat 0	3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708.91.99	- - - - 기타	Cat 0	3
ex1 8708.92.10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농업용 트랙터용의 것)	Cat 5	10
ex2 8708.92.10	기타	Cat 0	5
ex1 8708.92.20	소음기와 배기관(구급차용의 것은 제외한다)	Cat 5	15
ex2 8708.92.20	기타	Cat 0	5
8708.92.51	- - -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Cat 5	10
8708.92.52	- - - - 부분품	Cat 5	10
8708.92.61	- - - -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Cat 5	15
8708.92.62	- - - - 부분품	Cat 5	15
8708.92.90	- - - 기타	Cat 5	10
8708.93.50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93.60	- - - 제8703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93.70	- - - 제8704호나 제8705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93.90	- - - 기타	Cat 5	10
8708.94.11	- - - - 제8701호의 차량용	Cat 0	1
8708.94.19	- - - - 기타	Cat 0	1
ex1 8708.94.94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과 운전박스	Cat 5	10
ex2 8708.94.94	기타	Cat 0	5
8708.94.95	- - - - 제8703호의 차량용	Cat 5	10
8708.94.99	- - - - 기타	Cat 5	10
8708.95.10	- -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	Cat 0	1
8708.95.90	- - - 부분품	Cat 0	1
8708.99.11	- - - - 미조립된 연료탱크, 엔진 브래킷	Cat 0	1
8708.99.19	- - - - 기타	Cat 0	5
8708.99.21A	- - - - - 조립되지 않은 것	Cat 0	5
8708.99.21B	- - - - - 기타	Cat 0	5
8708.99.24A	- - - - - 조립되지 않은 것	Cat 0	5
8708.99.24B	- - - - - 기타	Cat 0	5
8708.99.25A	- - - - - 탱크 어셈블리 리저브(미조립상태의 것)	Cat 0	5
8708.99.25B	- - - - - 탱크 어셈블리 리저브(기타)	Cat 0	5
8708.99.30	- - - - 가속기·브레이크나 클러치 페달	Cat 0	5
8708.99.40	- - - - 배터리 캐리어나 트레이와 그들의 브래킷	Cat 0	5
8708.99.50	- - - - 방열기 보호판(shroud)	Cat 5	20
8708.99.61	- - - - - 제8702호의 차량용	Cat 0	5
8708.99.62	- - - - - 제8703호의 차량용	Cat 0	5
8708.99.63	- - - - - 제8704호의 차량용	Cat 0	5
8708.99.70	- - - - 엔진 브래킷	Cat 0	1
8708.99.80	- - - - 기타	Cat 0	5
8708.99.91	- - - - 미조립된 연료탱크, 엔진 브래킷	Cat 0	1
8708.99.99	- - - - 기타	Cat 0	5
8709.11.00	- - 전기식의 것	Cat 0	0
8709.19.00	- - 기타	Cat 0	0
8709.90.00	- 부분품	Cat 0	0
8710.00.0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및 이들의 부분품	Cat 0	0
8711.10.12	- - - 모페드와 모터를 갖춘 자전거	Cat 15	5
8711.10.14	- - - 동력 킥 스쿠터, 미니 모터사이클	Cat 15	5
8711.10.15	- - - 그 밖의 모터사이클과 모터스쿠터	Cat 15	5
8711.10.19	- - - 기타	Cat 15	5
8711.10.92	- - - 모페드와 모터를 갖춘 자전거	Cat 15	5
8711.10.94	- - - 동력 킥 스쿠터, 미니 모터사이클	Cat 15	5
8711.10.95	- - - 그 밖의 모터사이클과 모터스쿠터	Cat 15	5
8711.10.99	- - - 기타	Cat 15	5
8711.20.11	- - -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	Cat 15	5
8711.20.12	- - - 모페드와 모터를 갖춘 자전거	Cat 15	5
8711.20.13	- - - 미니 모터사이클	Cat 15	5
8711.20.14	- - - - 실린더 용량이 150시시 초과 200시시 이하인 것	Cat 15	5
8711.20.15	- - - - 실린더 용량이 20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것	Cat 15	5
8711.20.16	- - - - 기타	Cat 15	5
8711.20.19	- - - 기타	Cat 15	5
8711.20.91	- - - 모터크로스 모터사이클	Cat 15	5
8711.20.92	- - - 모페드와 모터를 갖춘 자전거	Cat 15	5
8711.20.93	- - - 미니 모터사이클	Cat 15	5
8711.20.94	- - - - 실린더 용량이 150시시 초과 200시시 이하인 것	Cat 15	5
8711.20.95	- - - - 실린더 용량이 20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것	Cat 1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711.20.96	- - - - 기타	Cat 15	5
8711.20.99	- - - 기타	Cat 15	5
8711.30.11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Cat 15	5
8711.30.19	- - - 기타	Cat 15	5
8711.30.30	- - 기타[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Cat 15	5
8711.30.90	- - 기타	Cat 15	5
8711.40.11	-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Cat 15	5
8711.40.19	- - - 기타	Cat 15	5
8711.40.20	- - 기타[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Cat 15	5
8711.40.90	- - 기타	Cat 15	5
8711.50.2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Cat 15	5
8711.50.90	- - 기타	Cat 15	5
8711.60.11	- - - 자전거	Cat 15	5
8711.60.12	- - - 킥 스쿠터 · 셀프 밸런싱 사이클 · 미니 모터사이클	Cat 15	5
8711.60.13	- - - 그 밖의 모터사이클	Cat 15	5
8711.60.19	- - - 기타	Cat 15	5
8711.60.91	- - - 자전거	Cat 15	5
8711.60.92	- - - 킥 스쿠터 · 셀프 밸런싱 사이클 · 미니 모터사이클	Cat 15	5
8711.60.93	- - - 그 밖의 모터사이클	Cat 15	5
8711.60.99A	- - - -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전기식 자동차 조립용으로 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0	0
8711.60.99B	- - - - 기타	Cat 15	5
8711.90.40	- - 사이드카	Cat 15	5
8711.90.60	- - 완전분해(completely knocked down) 형태로 제시된 것	Cat 15	5
8711.90.90A	- - - -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하이브리드(전기 및 가솔린/디젤), 플렉스 연료(바이오 에탄올과 바이오 디젤), 압축 천연가스, 하이드로젠 또는 그 밖의 대체 연료차량 조립용으로 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0	0
8711.90.90B	- - - - 그 밖의 구성품, 부분품 및/또는 부속품(BOI로부터 받은 인증서를 가지고 자동차개발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에 의하여 자동차 조립을 위하여 하나 이상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것)	Cat 0	1
8711.90.90C	- - - - 기타	Cat 15	5
8712.00.10	- 경기용 자전거	Cat 3	5
8712.00.20	- 어린이용 자전거	Cat 3	5
8712.00.30	- 그 밖의 자전거	Cat 3	5
8712.00.90	- 기타	Cat 3	5
8713.10.00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Cat 0	0
8713.90.00	- 기타	Cat 0	0
8714.10.10	- - 안장	Cat 15	5
8714.10.20	- - 스포크와 니플(spokes and nipples)	Cat 15	5
8714.10.30	- - 프레임 및 포크[차륜포크(telescopic forks), 리어 서스펜션 및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한다]	Cat 15	5
8714.10.40	- - 기어링 · 기어박스 · 클러치 및 그 밖의 전동 장치와 그 부분품	Cat 15	5
8714.10.50	- - 휠 림(wheel rim)	Cat 15	5
8714.10.60	-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Cat 15	5
8714.10.70	- - 소음기(머플러)와 그 부분품	Cat 15	5
8714.10.90	- - 기타	Cat 15	5
8714.20.11	- - - 지름이(타이어를 포함한다) 75밀리미터 초과 100밀리미터 이하인 것(장착된 모든 바퀴 또는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 이상인 것)	Cat 0	0
8714.20.12	- - - 지름이(타이어를 포함한다) 100밀리미터 초과 250밀리미터 이하인 것(장착된 모든 바퀴 또는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 이상인 것)	Cat 0	0
8714.20.19	- - - 기타	Cat 0	0
8714.20.90	- - 기타	Cat 0	0
8714.91.10	- - - 소호 제8712.00.20호의 자전거용	Cat 3	5
8714.91.91	- - - - 포크(forks)용 부분품	Cat 3	5
8714.91.99	- - - - 기타	Cat 3	5
8714.92.10	- - - 소호 제8712.00.20호의 자전거용	Cat 3	5
8714.92.90	- - - 기타	Cat 3	5
8714.93.10	- - - 소호 제8712.00.20호의 자전거용	Cat 0	3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714.93.90	- - - 기타	Cat 0	3
8714.94.10	- - - 소호 제8712.00.20호의 자전거용	Cat 0	3
8714.94.90	- - - 기타	Cat 0	3
8714.95.10	- - - 소호 제8712.00.20호의 자전거용	Cat 0	3
8714.95.90	- - - 기타	Cat 0	3
8714.96.10	- - - 소호 제8712.00.20호의 자전거용	Cat 0	3
8714.96.90	- - - 기타	Cat 0	3
8714.99.11	- - - - 핸들 바(bars) · 필라(pillars) · 흡받기 · 반사경 · 캐리어 · 컨트롤케이블 · 램프 브래킷이나 브래킷용 러그, 그 밖의 부속품	Cat 3	5
8714.99.12	- - - - 체인 휠과 크랭크, 그 밖의 부분품	Cat 3	5
8714.99.91	- - - - 핸들 바(bars) · 필라(pillars) · 흡받기 · 반사경 · 캐리어 · 컨트롤케이블 · 램프 브래킷이나 브래킷용 러그, 그 밖의 부속품	Cat 3	5
8714.99.93	- - - - 스포크용 니플(nipples)	Cat 3	5
8714.99.94	- - - - 체인 휠과 크랭크, 그 밖의 부분품	Cat 3	5
8715.00.00	유모차와 그 부분품	Cat 0	0
8716.10.0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 또는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8716.20.00	-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Cat 0	0
8716.31.00	- -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Cat 0	0
8716.39.40	- - - 농업용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Cat 0	0
8716.39.91	- - - - 적재량(페이로드)이 200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716.39.99	- - - - 기타	Cat 0	0
8716.40.00	-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Cat 0	0
8716.80.10	- - 카트와 왜건 · 섶 트럭(sack trucks) · 핸드 트롤리와 이와 유사한 수동구동식의 차량(공장이나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외바퀴 손수레는 제외한다)	Cat 0	0
8716.80.20	- - 외바퀴 손수레	Cat 0	0
8716.80.90	- - 기타	Cat 0	0
8716.90.13	- - - 소호 제8716.20호의 물품용	Cat 0	0
8716.90.19	- - - 기타	Cat 0	0
8716.90.21	- - - 카스터 휠[지름이(타이어를 포함한다) 100밀리미터 초과 250밀리미터 이하인 것(장착된 휠 또는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716.90.22	- - - 그 밖의 카스터 휠	Cat 0	0
8716.90.23	- - - 기타(소호 제8716.80.10호의 물품용)	Cat 0	0
8716.90.24	- - - 기타(소호 제8716.80.20호의 물품용)	Cat 0	0
8716.90.94	- - - 스포크와 니플(spokes and nipples)	Cat 0	0
8716.90.95	- - - 카스터 휠[지름이(타이어를 포함한다) 100밀리미터 초과 250밀리미터 이하인 것(장착된 휠 또는 타이어의 폭이 3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Cat 0	0
8716.90.96	- - - 그 밖의 카스터 휠	Cat 0	0
8716.90.99	- - - 기타	Cat 0	0
8801.00.00	기구 및 비행선, 글라이더 · 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Cat 0	0
8802.11.00	-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Cat 0	0
8802.12.00	-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802.20.10	- - 비행기	Cat 0	0
8802.20.90	- - 기타	Cat 0	0
8802.30.10	- - 비행기	Cat 0	0
8802.30.90	- - 기타	Cat 0	0
8802.40.10	- - 비행기	Cat 0	0
8802.40.90	- - 기타	Cat 0	0
8802.60.00A	- - 전기통신위성	Cat 0	0
8802.60.00B	- - 기타	Cat 0	0
8803.10.00	- 프로펠러 및 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Cat 0	0
8803.20.00	-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Cat 0	0
8803.30.00	-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부분품	Cat 0	0
8803.90.10	- - 전기통신위성의 것	Cat 0	0
8803.90.90	- - 기타	Cat 0	0
8804.00.10	- 로토슈트(rotachute)와 그 부분품	Cat 0	0
8804.00.90	- 기타	Cat 0	0
8805.10.00	-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감판착륙장치 또는 이와 유사한 기어와 그 부분품	Cat 0	0
8805.21.00	- -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Cat 0	0
8805.29.10	- - - 지상비행 훈련장치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8805.29.90	- - - 기타	Cat 0	0
8901.10.10	- - 총톤수 26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10.20	- - 총톤수 26톤 초과 5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10.60	- - 총톤수 500톤 초과 1,0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10.70	- - 총톤수 1,000톤 초과 4,0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10.80	- - 총톤수 4,000톤 초과 5,0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10.90	- - 총톤수 5,000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901.20.50	- - 총톤수 5,0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20.70	- - 총톤수 5,000톤 초과 50,0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20.80	- - 총톤수 50,000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901.30.50	- - 총톤수 5,0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30.70	- - 총톤수 5,000톤 초과 50,0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30.80	- - 총톤수 50,000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901.90.11	- - - 총톤수 26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90.12	- - - 총톤수 26톤 초과 5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90.14	- - - 총톤수가 500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901.90.31	- - - 총톤수 26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90.32	- - - 총톤수 26톤 초과 5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90.33	- - - 총톤수 500톤 초과 1,0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90.34	- - - 총톤수 1,000톤 초과 4,0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90.35	- - - 총톤수 4,000톤 초과 5,0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90.36	- - - 총톤수 5,000톤 초과 50,0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1.90.37	- - - 총톤수 50,000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902.00.31	- - 총톤수 26톤 이하인 것	Cat 0	0
8902.00.32	- - 총톤수 26톤 초과 40톤 미만의 것	Cat 0	0
8902.00.33	- - 총톤수 40톤 이상 101톤 이하인 것	Cat 0	0
8902.00.34	- - 총톤수 101톤 초과 25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2.00.35	- - 총톤수 250톤 초과 1,0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2.00.36	- - 총톤수 1,000톤 초과 4,0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2.00.37	- - 총톤수 4,000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902.00.41	- - 총톤수 26톤 이하인 것	Cat 0	0
8902.00.42	- - 총톤수 26톤 초과 40톤 미만의 것	Cat 0	0
8902.00.43	- - 총톤수 40톤 이상 101톤 이하인 것	Cat 0	0
8902.00.44	- - 총톤수 101톤 초과 25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2.00.45	- - 총톤수 250톤 초과 1,0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2.00.46	- - 총톤수 1,000톤 초과 4,0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2.00.47	- - 총톤수 4,000톤을 초과하는 것	Cat 0	0
8903.10.0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Cat 0	0
8903.91.00	- -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8903.92.00	- -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Cat 0	0
8903.99.00	- - 기타	Cat 0	0
8904.00.10	- 총톤수 26톤 이하인 것	Cat 0	0
8904.00.31	- - 동력이 4,000마력(hp) 이하인 것	Cat 0	0
8904.00.39	- - 기타	Cat 0	0
8905.10.00	- 준설선	Cat 0	0
8905.20.00	-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8905.90.10	- - 부선거(解船渠)	Cat 0	0
8905.90.90	- - 기타	Cat 0	0
8906.10.00	- 군함	Cat 0	0
8906.90.10	- - 배수량이 3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6.90.20	- - 배수량이 30톤 초과 300톤 이하인 것	Cat 0	0
8906.90.90	- - 기타	Cat 0	0
8907.10.0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Cat 0	0
8907.90.10	- - 부표	Cat 0	0
8907.90.90	- - 기타	Cat 0	0
8908.00.00	-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해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01.10.10	- - 전기통신용과 그 밖의 전기용	Cat 0	0
9001.10.90	- - 기타	Cat 0	0
9001.20.00	- 편광재료(polarising material)로 만든 판	Cat 0	0
9001.30.00	- 콘택트렌즈	Cat 0	0
9001.40.00	-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Cat 0	0
9001.50.0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Cat 0	0
9001.90.10	- - 사진용 또는 영화용 카메라 또는 프로젝터용	Cat 0	0
9001.90.90	-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9002.11.00	- - 카메라용 · 영사기용 또는 사진 확대기용이나 사진 축소기용	Cat 0	0
9002.19.00	- - 기타	Cat 0	0
9002.20.10	- - 영화 프로젝터용	Cat 0	0
9002.20.20	- - 영상카메라, 사진기와 그 밖의 프로젝터용	Cat 0	0
9002.20.90	- - 기타	Cat 0	0
9002.90.20	- - 영화 프로젝터용	Cat 0	0
9002.90.30	- - 영상카메라, 사진기와 그 밖의 프로젝터용	Cat 0	0
9002.90.90	- - 기타	Cat 0	0
9003.11.0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003.19.00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Cat 0	0
9003.90.00	- 부분품	Cat 0	0
9004.10.00	- 선글라스	Cat 0	0
9004.90.10	- - 시력교정용 안경	Cat 0	0
9004.90.50	- - 보호용 고글	Cat 0	0
9004.90.90	- - 기타	Cat 0	0
9005.10.00	- 쌍안경	Cat 0	0
9005.80.10	- - 천체관측용 기기(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Cat 0	0
9005.80.90	- - 기타	Cat 0	0
9005.90.10	- - 천체관측 기기용(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Cat 0	0
9005.90.90	- - 기타	Cat 0	0
9006.30.00	- 수중촬영용 · 공중측량용 또는 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 법정비교용 사진기	Cat 0	0
9006.40.00	- 즉석인화 사진기	Cat 0	0
9006.51.00	- -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싱글렌즈리플렉스(SLR)를 갖춘 것(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06.52.00	- - 기타(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06.53.00	- -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의 롤 필름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06.59.21	- - - - 레이저 사진플로터	Cat 0	0
9006.59.29	- - - - 기타	Cat 0	0
9006.59.30	- - - 레스터 이미지 프로세서가 있는 레이저 사진플로터나 이미지 세터	Cat 0	0
9006.59.90	- - - 기타	Cat 0	0
9006.61.00	-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06.69.00	- - 기타	Cat 0	0
9006.91.10	- - - 소호 제9006.59.21호의 레이저 사진플로터용	Cat 0	0
9006.91.30	- - - 기타(소호 제9006.40호부터 제9006.53호까지의 카메라용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06.91.90	- - - 기타	Cat 0	0
9006.99.10	- - - 사진용 섬광기구	Cat 0	0
9006.99.90	- - - 기타	Cat 0	0
9007.10.00	- 촬영기	Cat 0	0
9007.20.10	- - 폭이 16밀리미터 미만의 필름용	Cat 0	0
9007.20.90	- - 기타	Cat 0	0
9007.91.00	- - 카메라용	Cat 0	0
9007.92.00	- - 영사기용	Cat 0	0
9008.50.10	- - 마이크로필름 · 마이크로피체나 그 밖의 마이크로폼 리더(복사기능의 유무는 상관없다)	Cat 0	0
9008.50.90	- - 기타	Cat 0	0
9008.90.20	- - 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영화용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9008.90.90	- - 기타	Cat 0	0
9010.10.00	-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또는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Cat 0	0
9010.50.10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제조용 감광성물질에 회로패턴을 투사하거나 그리는 기기	Cat 0	0
9010.50.20	- - 영화 편집과 자막 장비, 엑스선용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s), 필름의 색깔 분리 공정 전처리에 사용되는 접촉 노출 기기, 자동식 제판기	Cat 0	0
9010.50.90	- - 기타	Cat 0	0
9010.60.10	- - 300인치 이상의 것	Cat 0	0
9010.60.90	- - 기타	Cat 0	0
9010.90.10A	- - - 영사용 스크린의 것	Cat 0	0
9010.90.10B	- - - 소호 제9010.10호의 물품용	Cat 0	0
9010.90.30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제조용 감광성물질에 회로패턴을 투사하거나 그리는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0.90.90	- - 기타	Cat 0	0
9011.10.00	- 입체현미경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9011.20.00	-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 · 마이크로 영화촬영용 또는 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11.80.00	- 그 밖의 현미경	Cat 0	0
9011.90.00	-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2.10.00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 회절기기(diffraction apparatus)	Cat 0	0
9012.90.00	-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3.10.00A	- -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Cat 0	0
9013.10.00B	- - 기타	Cat 0	0
9013.20.00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Cat 0	0
9013.80.10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및 인쇄 회로 조립품용 광학 오류 검사 및 수리 기기	Cat 0	0
9013.80.20	- - 액정 디바이스	Cat 0	0
9013.80.90	- - 기타	Cat 0	0
9013.90.10	- - 소호 제9013.2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9013.90.50	- - 소호 제9013.80.2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9013.90.60	- - 소호 제9013.80.1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9013.90.90A	- - - 무기용 망원 조준기 또는 잠망경의 것	Cat 0	0
9013.90.90B	- - - 기타	Cat 0	0
9014.10.00	-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Cat 0	0
9014.20.00	-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Cat 0	0
9014.80.11	- - - 소나(Sonar) 또는 반향 측심기	Cat 0	0
9014.80.19	- - - 기타	Cat 0	0
9014.80.90	- - 기타	Cat 0	0
9014.90.10	- - 선박용의 기기(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14.90.90	- - 기타	Cat 0	0
9015.10.10	- - 사진용이나 영화용의 것	Cat 0	0
9015.10.90	- - 기타	Cat 0	0
9015.20.00	-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Cat 0	0
9015.30.00	- 수준기(水準器)	Cat 0	0
9015.40.00	- 사진측량기기	Cat 0	0
9015.80.10	- - 라디오존데(radiosonde)와 무선 풍향 기기	Cat 0	0
9015.80.90	- - 기타	Cat 0	0
9015.90.00	-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6.00.00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9017.10.10	- - 플로터	Cat 0	0
9017.10.90	- - 기타	Cat 0	0
9017.20.10	- - 자	Cat 0	0
9017.20.30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제조용 감광성물질에 회로패턴을 투사하거나 그리는 기기	Cat 0	0
9017.20.40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제조용 사진플로터	Cat 0	0
9017.20.50	- - 그 밖의 플로터	Cat 0	0
9017.20.90	- - 기타	Cat 0	0
9017.30.00	- 마이크로미터 · 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Cat 0	0
9017.80.00	- 그 밖의 기기	Cat 0	0
9017.90.20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제조용 감광성물질에 회로패턴을 투사하거나 그리는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7.90.30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제조용 사진플로터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7.90.40	- - 그 밖의 플로터의 부분품과 부속품(인쇄회로 조립품을 포함한다)	Cat 0	0
9017.90.90	- - 기타	Cat 0	0
9018.11.00	- - 심전계	Cat 0	0
9018.12.00	- - 초음파 영상진단기	Cat 0	0
9018.13.00	- - 자기공명 촬영기기	Cat 0	0
9018.14.00	- -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Cat 0	0
9018.19.00	- - 기타	Cat 0	0
9018.20.00	-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Cat 0	0
9018.31.10	- - - 일회용 주사기	Cat 0	0
9018.31.90	- - - 기타	Cat 0	0
9018.32.00	- -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Cat 0	0
9018.39.10	- - - 카테터(catheter)	Cat 0	0
9018.39.90	- - - 기타	Cat 0	0
9018.41.00	-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9018.49.00	- - 기타	Cat 0	0
9018.50.00	- 안과용 그 밖의 기기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9018.90.20	- - 수액투여 세트	Cat 0	0
9018.90.30A	- - - 전기식 외과용 또는 내과용 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18.90.30B	- - - 기타	Cat 0	0
9018.90.90	- - 기타	Cat 0	0
9019.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19.10.90	- - 기타	Cat 0	0
9019.20.00	- 오존 흡입기 · 산소 흡입기 · 에어로졸 치료기 · 인공 호흡기 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Cat 0	0
9020.00.0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Cat 0	0
9021.10.00	-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Cat 0	0
9021.21.00	- - 의치	Cat 0	0
9021.29.00	- - 기타	Cat 0	0
9021.31.00	- - 인조관절	Cat 0	0
9021.39.00	- - 기타	Cat 0	0
9021.40.00	-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Cat 0	0
9021.50.0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Cat 0	0
9021.90.00	- 기타	Cat 0	0
9022.12.00	-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Cat 0	0
9022.13.00	- -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22.14.00	- - 기타(내과용 · 외과용 또는 수의과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22.19.10	-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조립품의 납땜 이음의 물리적 검사용 엑스선 기기	Cat 0	0
9022.19.90	- - - 기타	Cat 0	0
9022.21.00	- - 내과용 · 외과용 · 치과용 또는 수의과용	Cat 0	0
9022.29.00	- - 그 밖의 용도의 것	Cat 0	0
9022.30.00	- 엑스선관	Cat 0	0
9022.90.10	- - 인쇄회로 조립품의 납땜 이음의 물리적 검사용 엑스선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22.90.90A	- - -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22.90.90B	- - - 기타	Cat 0	0
9023.00.00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24.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24.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24.8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24.8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24.90.10	- - 전기 작동식 기기용	Cat 0	0
9024.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기용	Cat 0	0
9025.11.00	- -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25.19.11	- - - - 차량용 온도계	Cat 0	0
9025.19.19	- - - - 기타	Cat 0	0
9025.19.20	-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25.80.2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25.80.3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25.90.10	- - 전기 작동식 기기용	Cat 0	0
9025.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기용	Cat 0	0
9026.10.10	- - 차량용 액면계(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26.10.20	- - 차량용 액면계(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26.10.30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26.10.40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26.20.10	- - 차량용 압력계(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26.20.20	- - 차량용 압력계(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26.20.30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26.20.40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26.8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26.8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26.90.10	- - 전기 작동식 기기용	Cat 0	0
9026.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기용	Cat 0	0
9027.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27.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27.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27.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27.3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27.3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27.5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9027.5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27.80.10	- - 노출계	Cat 0	0
9027.80.30	- - 기타(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27.80.40	- - 기타(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27.90.10	- - 부분품과 부속품(제9027호의 물품용 인쇄 회로 조립품을 포함하나 가스나 매연 분석기나 마이크로톤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9027.90.91	-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27.90.99	- - - 기타	Cat 0	0
9028.10.10	- - 기체용 계기(가스 컨테이너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28.10.90	- - 기타	Cat 0	0
9028.20.20	- - 수량계	Cat 0	0
9028.20.90	- - 기타	Cat 0	0
9028.30.10	- - 킬로와트 시계	Cat 0	0
9028.30.90	- - 기타	Cat 0	0
9028.90.10	- - 수량계 하우징이나 바디(bodies)	Cat 0	0
9028.90.90	- - 기타	Cat 0	0
9029.10.20	- - 택시미터	Cat 0	0
9029.10.90	- - 기타	Cat 0	0
9029.20.10	- - 차량용 속도계	Cat 15	5
9029.20.20	- - 차량용 회전 속도계(Tachometers)	Cat 0	0
ex1 9029.20.90	속도계와 회전속도계(기관차용의 것)	Cat 0	0
ex2 9029.20.90	기타	Cat 15	1
9029.90.10	- - 소호 제9029.10호의 물품의 것, 소호 제9029.20호의 스트로보스코우프(stroboscope)의 것	Cat 0	0
9029.90.20	- - 그 밖의 소호 제9029.2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9030.10.00	-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Cat 0	0
9030.20.00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노그래프(Oscillograph)	Cat 0	0
9030.31.00	-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Cat 0	0
9030.32.00	-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Cat 0	0
9030.33.10	-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이나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전압·전류·저항 또는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Cat 0	0
9030.33.20	- - - 전기 회로에 손상을 줄 수 있는 정전기 방전 상태에 대한 시각적 및/또는 청각적 경보를 제공하도록 설계된 임피던스 측정 기기, 정전기 제어 기구 및 정전기 지락 장치/부착물 검사용 기기	Cat 0	0
9030.33.30	- - - 차량용 전류계와 전압계	Cat 0	0
9030.33.90A	- - - - 저항 측정 장비	Cat 0	0
9030.33.90B	- - - - 기타	Cat 0	0
9030.39.00	-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30.40.0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잡음전압계(psophometer)]	Cat 0	0
9030.82.10	- - - 웨이퍼 프로버(Wafer probers)	Cat 0	0
9030.82.90	- - - 기타	Cat 0	0
9030.84.10	-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및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전기량 측정이나 검사용 기기	Cat 0	0
9030.84.90	- - - 기타	Cat 0	0
9030.89.10	- - - 기록장치를 갖추지 않은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및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전기량 측정이나 검사용 기기(소호 제9030.39호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은 제외한다)	Cat 0	0
9030.89.90	- - - 기타	Cat 0	0
9030.90.10	- - 소호 제9030.40호 또는 소호 제9030.82호의 물품의 부분품 및 부속품(인쇄 회로 조립품을 포함한다)	Cat 0	0
9030.90.30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및 인쇄 회로 조립품의 측정이나 검사용 광학 기구 및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30.90.40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및 인쇄 회로 조립품의 전기량 측정이나 검사용 그 밖의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30.90.90	- - 기타	Cat 0	0
9031.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31.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31.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31.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31.41.00	- -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사용	Cat 0	0
9031.49.10	- - -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미립자 오염 측정용 광학기구 및 기기	Cat 0	0
9031.49.20	-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및 인쇄 회로 조립품용 광학 오류 검사 및 수리 기기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9031.49.30	-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및 인쇄 회로 조립품의 측정 이나 검사용 그 밖의 광학 기구 및 기기	Cat 0	0
9031.49.90	- - - 기타	Cat 0	0
9031.80.10	- - 케이블 테스터(cable tester)	Cat 0	0
9031.80.90	- - 기타	Cat 0	0
9031.90.11	- - - 반도체 웨이퍼 또는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 조에 사용되는 마스크, 포토마스크(photomask)나 레티클 (reticle) 검사용 광학 기기의 인쇄 회로 조립품을 포함하는 부 분품과 부속품, 반도체 웨이퍼의 표면 미립자 오염 측정용 광 학 기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031.90.12	-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및 인쇄 회로 조립품용 광학 오류 검사 및 수리 기기의 것	Cat 0	0
9031.90.13	-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및 인쇄 회로 조립품의 측정 이나 검사용 그 밖의 광학 기구 및 기기의 것	Cat 0	0
9031.90.19	- - - 기타	Cat 0	0
9031.9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기용	Cat 0	0
9032.1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32.1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32.20.1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32.20.20	-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것	Cat 0	0
9032.81.00	- - 액압식이나 공기식	Cat 0	0
9032.89.10	- - -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결합하거나 작동하는 기기(선박의 추진력·밸러스트나 화물 처리시스템의 자동 조 절이나 제어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9032.89.20	- - - 인쇄 회로판/인쇄 배선판 또는 인쇄 회로 조립품 생산 의 화학적 또는 전기화학적 용액의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 용 기기	Cat 0	0
9032.89.31	- - - - 자동 조정 전압기(스태빌라이저)	Cat 0	0
9032.89.39	- - - - 기타	Cat 0	0
9032.89.90	- - - 기타	Cat 0	0
9032.90.10	- - 소호 제9032.89.1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9032.90.20	- - 소호 제9032.89.20호의 물품의 것	Cat 0	0
9032.90.30	- - 그 밖의 전기 작동식의 물품의 것	Cat 0	0
9032.90.90	- - 기타	Cat 0	0
9033.00.10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033.00.20	- 전기 작동식이 아닌 기기용	Cat 0	0
9101.11.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Cat 0	0
9101.19.00	- - 기타	Cat 0	0
9101.21.00	- - 자동권(自動捲)식	Cat 0	0
9101.29.00	- - 기타	Cat 0	0
9101.91.0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101.99.00	- - 기타	Cat 0	0
9102.11.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Cat 0	0
9102.12.00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Cat 0	0
9102.19.00	- - 기타	Cat 0	0
9102.21.00	- - 자동권(自動捲)식	Cat 0	0
9102.29.00	- - 기타	Cat 0	0
9102.91.0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102.99.00	- - 기타	Cat 0	0
9103.10.00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103.90.00	- 기타	Cat 0	0
9104.00.10	- 차량용	Cat 0	1
9104.00.90	- 기타	Cat 0	0
9105.11.0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105.19.00	- - 기타	Cat 0	0
9105.21.00	-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105.29.00	- - 기타	Cat 0	0
9105.91.10	- - - 항해용시계	Cat 0	0
9105.91.90	- - - 기타	Cat 0	0
9105.99.10	- - - 항해용시계	Cat 0	0
9105.99.90	- - - 기타	Cat 0	0
9106.10.00	-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 타임레코더(timerecorder)	Cat 0	0
9106.90.10	- - 주차시간 기록계	Cat 0	0
9106.90.90	- - 기타	Cat 0	0
9107.00.00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 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108.11.00	-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9108.12.00	-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Cat 0	0
9108.19.00	- - 기타	Cat 0	0
9108.20.00	- 자동권(自動捲)식	Cat 0	0
9108.90.00	- 기타	Cat 0	0
9109.10.00	- 전기 작동식의 것	Cat 0	0
9109.90.00	- 기타	Cat 0	0
9110.11.00	- -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Cat 0	0
9110.12.00	- -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110.19.00	- -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Cat 0	0
9110.90.00	- 기타	Cat 0	0
9111.10.0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Cat 0	0
9111.2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케이스(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9111.80.00	- 그 밖의 케이스	Cat 0	0
9111.90.00	- 부분품	Cat 0	0
9112.20.00	- 케이스	Cat 0	0
9112.90.00	- 부분품	Cat 0	0
9113.10.0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Cat 0	0
9113.2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9113.90.00	- 기타	Cat 0	0
9114.10.0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Cat 0	0
9114.30.00	- 문자판	Cat 0	0
9114.40.00	- 지판과 브리지(bridge)	Cat 0	0
9114.90.00	- 기타	Cat 0	0
9201.10.00	-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Cat 0	0
9201.20.00	- 그랜드 피아노	Cat 0	0
9201.90.00	- 기타	Cat 0	0
9202.10.00	- 활을 사용하는 것	Cat 0	0
9202.90.00	- 기타	Cat 0	0
9205.10.00	- 금관악기	Cat 0	0
9205.90.10	- - 건반이 있는 파이프오르간, 하모늄과 이와 유사한 프리메탈 리드식 건반악기	Cat 0	0
9205.90.90	- - 기타	Cat 0	0
9206.00.00	- 타악기[예: 북 · 목금 · 심벌 · 캐스터네츠 · 마라카스(maracas)]	Cat 0	0
9207.10.00	-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Cat 0	0
9207.90.00	- 기타	Cat 0	0
9208.10.00	- 유지컬박스	Cat 0	0
9208.90.10	- - 데코이 콜(decoy call) · 휘슬 · 호각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Cat 0	0
9208.90.90	- - 기타	Cat 0	0
9209.30.00	- 악기용 현	Cat 0	0
9209.91.10	- - -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용 스트럼 백(Strung back) · 키보드와 금속프레임	Cat 0	0
9209.91.90	- - - 기타	Cat 0	0
9209.92.00	- -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209.94.00	- -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Cat 0	0
9209.99.00	- - 기타	Cat 0	0
9301.10.00	- 포병 무기(예: 평사포 · 곡사포와 박격포)	Cat 15	10
9301.20.00	-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치	Cat 15	10
9301.90.00	- 기타	Cat 15	10
9302.00.00	-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제9303호나 제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15	15
9303.10.00	- 총구장전 화기	Cat 15	10
9303.20.10	- - 수렵용 산탄총	Cat 15	15
9303.20.90	- - 기타	Cat 15	15
9303.30.10	- - 수렵용 라이플(rifles)	Cat 15	15
9303.30.90	- - 기타	Cat 15	15
9303.90.00	- 기타	Cat 15	15
9304.00.10	- 공기총(1제곱센티미터당 7킬로그램중 미만의 압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5
9304.00.90	- 기타	Cat 15	15
9305.10.00	-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Cat 15	15
9305.20.00	- 산탄총 또는 라이플(rifle)의 것(제930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Cat 15	1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9305.91.10	- - - 가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Cat 15	15
9305.91.90	- - - 기타	Cat 15	15
9305.99.11	- - - - 가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Cat 15	15
9305.99.19	- - - - 기타	Cat 15	15
9305.99.91	- - - - 가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의 것	Cat 15	15
9305.99.99	- - - - 기타	Cat 15	15
9306.21.00	- - 탄약	Cat 15	15
9306.29.00	- - 기타	Cat 15	15
9306.30.11	- - - 22구경 탄약	Cat 15	15
9306.30.19	- - - 기타	Cat 15	15
9306.30.20	- - 리벳팅용이나 이와 유사한 공구용 또는 무통 도살기용 탄약, 이들의 부분품	Cat 15	3
9306.30.30	- - 스포츠용 · 수렵용 또는 표적사격용 총(guns) · 라이플(rifle) · 카빈총(carbines)(산탄총은 제외한다)	Cat 15	15
9306.30.91	- - - 22구경 탄약	Cat 15	15
9306.30.99	- - - 기타	Cat 15	15
9306.90.00	- 기타	Cat 15	15
9307.00.00	검류 · 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집	Cat 15	10
9401.10.00	- 항공기용 의자	Cat 0	0
9401.20.10	- - 제8702호·제8703호 또는 제8704호의 차량용	SL	30
9401.20.90	- - 기타	SL	15
9401.30.00	- 회전 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401.40.00	-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Cat 0	0
9401.52.00	- - 대나무로 만든 것	Cat 0	0
9401.53.00	- - 등나무로 만든 것	Cat 0	0
9401.59.00	- - 기타	Cat 0	0
9401.61.00	- -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	Cat 0	0
9401.69.10	- - - 등나무로 만든 등받이의자 및/또는 의자	Cat 0	0
9401.69.90	- - - 기타	Cat 0	0
9401.71.00	- - 의자의 속 · 용수철 · 커버 등을 댄 것	Cat 0	0
9401.79.10	- - - 등나무로 만든 등받이의자 및/또는 의자	Cat 0	0
9401.79.90	- - - 기타	Cat 0	0
9401.80.00	- 그 밖의 의자	Cat 0	0
9401.90.10	- - 소호 제9401.10.00호의 의자의 것	Cat 15	5
9401.90.31	- - - 헤드레스트(headrest) 보강재(소호 제9401.20.10호의 의자용)	Cat 15	5
9401.90.39A	- - - 소호 제9401.20.10호의 의자용 팔걸이	Cat 15	5
9401.90.39B	- - - 기타	Cat 15	5
9401.90.40	- - 소호 제9401.30.00호의 의자의 것	Cat 15	5
9401.90.92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15	5
9401.90.99	- - - 기타	Cat 15	5
9402.10.10	- - 치과용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Cat 0	0
9402.10.30A	- - - 이발용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Cat 0	0
9402.10.30B	- - - 기타	Cat 0	0
9402.90.10	- - 내과용 · 외과용이나 수의과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가구와 이들의 부분품	Cat 0	0
9402.90.20	- - 변기 겸용 의자	Cat 0	0
9402.90.90	- - 기타	Cat 0	0
9403.10.00	-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Cat 0	0
9403.20.10	- - 환기통	Cat 0	0
9403.20.90	- - 기타	Cat 0	0
9403.30.00	- 사무실용 목제가구	Cat 15	5
9403.40.00	- 주방용 목제가구	Cat 0	0
9403.50.00	- 침실용 목제가구	Cat 0	0
9403.60.10	- - 환기통	Cat 0	0
9403.60.90	- - 기타	Cat 0	0
9403.70.10	- - 보행기	Cat 0	0
9403.70.20	- - 환기통	Cat 0	0
9403.70.90	- - 기타	Cat 0	0
9403.82.00	- - 대나무로 만든 것	Cat 0	0
9403.83.00	- - 등나무로 만든 것	Cat 0	0
9403.89.10	- - - 환기통	Cat 0	0
9403.89.90	- - - 기타	Cat 0	0
9403.90.10	- - 소호 제9403.70.10호의 것	Cat 15	5
9403.90.90	- - 기타	Cat 0	0
9404.10.00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9404.21.10	- -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9404.21.20	- - - 셀룰러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9404.29.10	- - - 스프링 매트리스	Cat 0	0
9404.29.20	- - - 기타(발열/냉각형의 것)	Cat 0	0
9404.29.90	- - - 기타	Cat 0	0
9404.30.00	- 침낭(sleeping bag)	Cat 0	0
9404.90.10	- - 퀼트(quilts) · 침대덮개와 매트리스 보호용품	Cat 0	0
9404.90.90	- - 기타	Cat 0	0
9405.10.20	- - 수술실용 램프	Cat 0	0
9405.10.91	- - - 스포트라이트(spotlight)	Cat 0	0
9405.10.92	- - - 형광등과 조명기구	Cat 0	0
9405.10.99	- - - 기타	Cat 0	0
9405.20.10	- - 수술실용 램프	Cat 0	0
9405.20.90	- - 기타	Cat 0	0
9405.30.00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Cat 0	0
9405.40.20	- - 서치라이트(searchlight)	Cat 0	0
9405.40.40	- - 그 밖의 스포트라이트(spotlight)	Cat 0	0
9405.40.50	- - 기타[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405.40.60	- - 그 밖의 옥외조명	Cat 0	0
9405.40.70	- - 이착륙장의 비점멸 표시등,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램프(철도차량 · 기관차 · 비행기 · 선박이나 등대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9405.40.80	- - 제8516호의 가정용 전열기기의 장착용 파일럿 램프(pilot lamp)	Cat 0	0
9405.40.91	- - - 의학용으로 설계제작된 광섬유 헤드밴드 램프	Cat 0	0
9405.40.99	- - - 기타	Cat 0	0
9405.50.11	- - -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촛대	Cat 0	0
9405.50.19	- - - 기타	Cat 0	0
9405.50.40	- - 허리케인 램프(Hurricane lamp)	Cat 0	0
9405.50.50	- - 광부용 및 채석용 램프	Cat 0	0
9405.50.90	- - 기타	Cat 0	0
9405.60.10	- - 경보사인 · 도로명 사인 · 선로와 교통 사인	Cat 0	0
9405.60.90	- - 기타	Cat 0	0
9405.91.10	- - - 수술실 램프용	Cat 0	0
9405.91.20	- - - 스포트라이트(spotlight)용	Cat 0	0
9405.91.40	- - - 글로브(globe)나 굴뚝	Cat 0	0
9405.91.50	- - - 서치라이트(searchlight)용	Cat 0	0
9405.91.90	- - - 기타	Cat 0	0
9405.92.10	- - - 수술실 램프용	Cat 0	0
9405.92.20	- - - 스포트라이트(spotlight)용	Cat 0	0
9405.92.30	- - - 서치라이트(searchlight)용	Cat 0	0
9405.92.90	- - - 기타	Cat 0	0
9405.99.10	- - -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램프갓	Cat 0	0
9405.99.20	- -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램프갓	Cat 0	0
9405.99.30	- - - 소호 제9405.50.11호나 제9405.50.19호의 램프의 것	Cat 0	0
9405.99.40	- - - 서치라이트(searchlight)나 스포트라이트(spotlight)용	Cat 0	0
9405.99.50	- - - 기타(도자제 또는 금속으로 만든 것)	Cat 0	0
9405.99.90	- - - 기타	Cat 0	0
9406.10.10	- - 기계식 또는 열 장비를 갖춘 온실	Cat 0	1
9406.10.90	- - 기타	Cat 3	5
9406.90.11	- - - 철강으로 만든 것	Cat 0	0
9406.90.19	- - - 기타	Cat 0	0
9406.90.20	- - 기타(플라스틱 또는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Cat 0	0
9406.90.30	- - 기타(철강 또는 철강재로 만든 것)	Cat 0	0
9406.90.40	- - 기타(시멘트 · 콘크리트 또는 인조석으로 만든 것)	Cat 0	0
9406.90.90	- - 기타	Cat 0	0
9503.00.10	- 세발자전거 · 스쿠터 · 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Cat 0	0
9503.00.21	- - 인형(옷을 입힌 것인지는 상관없다)	Cat 0	0
9503.00.22	- - - 의류와 의류부속품, 신발과 모자류	Cat 0	0
9503.00.29	- - - 기타	Cat 0	0
9503.00.30	- 전기식 기차(궤도 · 신호기기와 그 밖의 부속품은 포함한다)	Cat 0	0
9503.00.40	-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9503.00.50	-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완구(플라스틱 재료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Cat 0	0
9503.00.60	- 속이 채워져 있는 동물을 모방한 완구나 사람을 모방하지 않은 완구	Cat 0	0
9503.00.70	- 각종 퍼즐	Cat 0	0
9503.00.91	- - 숫자·알파벳 또는 동물 블록이나 오리기 완구, 낱말 쌓기 세트, 낱말 만들기 및 말하기 세트, 완구 미술세트, 완구용 주판, 완구용 재봉틀, 완구용 타자기	Cat 0	0
9503.00.92	- - - 줄넘기 줄	Cat 0	0
9503.00.93	- - - 구슬	Cat 0	0
9503.00.94	- - - 그 밖의 완구(고무로 만든 것)	Cat 0	0
9503.00.99	- - 기타	Cat 0	0
9504.20.20	- - 모든 종류의 당구용 테이블	Cat 0	0
9504.20.30	- - 당구분필	Cat 0	0
9504.20.90	- - 기타	Cat 0	0
9504.30.10A	- - - 금전적 보상을 즉시 지급하는 사행성 게임용구	Cat 0	0
9504.30.10B	- - - 기타	Cat 0	0
9504.30.20A	- - - 금전적 보상을 즉시 지급하는 사행성 게임용구의 것	Cat 0	0
9504.30.20B	- - - 기타	Cat 0	0
9504.30.90A	- - - 금전적 보상을 즉시 지급하는 사행성 게임용구	Cat 0	0
9504.30.90B	- - - 기타	Cat 0	0
9504.40.00	- 오락용 카드	Cat 0	0
9504.50.10	- - 텔레비전 수상기와 함께 사용하는 것	Cat 0	0
9504.50.90	- - 기타	Cat 0	0
9504.90.10	- - 모든 종류의 볼링 용구	Cat 0	0
9504.90.21	- - - 나무·종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504.90.29	- - - 기타	Cat 0	0
9504.90.32	- - - 카지노 게임용으로 설계된 테이블(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504.90.33	- - - 그 밖의 테이블(카지노 게임용으로 설계된 것)	Cat 0	0
9504.90.34	- - - 마작 패(나무·종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504.90.35	- - - 그 밖의 마작 패	Cat 0	0
9504.90.36	- - - 기타(나무·종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504.90.39	- - - 기타	Cat 0	0
9504.90.92	- - - - 나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504.90.93	- - - - 기타	Cat 0	0
9504.90.95	- - - - 나무·종이 또는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504.90.99	- - - - 기타	Cat 0	0
9505.10.00	-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Cat 0	0
9505.90.00	- 기타	Cat 0	0
9506.11.00	- - 스키	Cat 0	0
9506.12.00	- - 스키파스닝(ski-fastening)[스키바인딩(ski-binding)]	Cat 0	0
9506.19.00	- - 기타	Cat 0	0
9506.21.00	- - 세일보드(sailboard)	Cat 0	0
9506.29.00	- - 기타	Cat 0	0
9506.31.00	- -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Cat 0	0
9506.32.00	- - 골프공	Cat 0	0
9506.39.00	- - 기타	Cat 0	0
9506.40.10	- - 탁구대	Cat 0	0
9506.40.90	- - 기타	Cat 0	0
9506.51.00	- -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Cat 0	0
9506.59.00	- - 기타	Cat 0	0
9506.61.00	- - 론테니스(lawn-tennis) 공	Cat 0	0
9506.62.00	-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Cat 0	0
9506.69.00	- - 기타	Cat 0	0
9506.70.00	-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Cat 0	0
9506.91.00	-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 또는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Cat 0	0
9506.99.10	- - - 활(석궁을 포함한다) 및 화살	Cat 0	0
9506.99.20	- - - 넷트, 크리켓 패드와 정강이 보호대	Cat 0	0
9506.99.30	- - - 셔틀콧	Cat 0	0
9506.99.90	- - - 기타	Cat 0	0
9507.10.00	- 낚싯대	Cat 0	0
9507.20.00	-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Cat 0	0
9507.30.00	- 낚시 릴	Cat 0	0
9507.90.00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9508.10.0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Cat 0	0
9508.90.00	- 기타	Cat 0	0
9601.10.10	- - 시가나 담배 케이스 · 담배항아리, 장식용 물품	Cat 0	0
9601.10.90	- - 기타	Cat 0	0
9601.90.11	- - - 시가나 담배 케이스 · 담배항아리, 장식용 물품	Cat 0	0
9601.90.12	- - - 진주핵	Cat 0	0
9601.90.19	- - - 기타	Cat 0	0
9601.90.90	- - 기타	Cat 0	0
9602.00.10	- 제약용 젤라틴 캡슐	Cat 0	0
9602.00.20	- 시가나 담배 케이스 · 담배항아리, 장식용 물품	Cat 0	0
9602.00.90	- 기타	Cat 0	0
9603.10.10	- - 브러시	Cat 0	0
9603.10.20	- - 비	Cat 0	0
9603.21.00	- -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Cat 0	0
9603.29.00	- - 기타	Cat 0	0
9603.30.00	- 회화용 붓 · 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Cat 0	0
9603.40.00	- 페인트용 · 디스탬퍼(distemper)용 · 바니시(ve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 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Cat 0	0
9603.50.00	- 그 밖의 브러시(기계 · 기구나 차량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603.90.10	- -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고 술(tufts)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Cat 0	0
9603.90.20	- -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 청소기(수동식으로 한정한다)	Cat 0	0
9603.90.40	- - 그 밖의 브러시	Cat 0	0
9603.90.90	- - 기타	Cat 0	0
9604.00.10	- 금속으로 만든 것	Cat 0	0
9604.00.90	- 기타	Cat 0	0
9605.00.00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 · 바느질용 또는 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9606.1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606.10.90	- - 기타	Cat 0	0
9606.21.0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Cat 0	0
9606.22.00	-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Cat 0	0
9606.29.00	- - 기타	Cat 0	0
9606.3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606.30.90	- - 기타	Cat 0	0
9607.11.00	- -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Cat 0	0
9607.19.00	- - 기타	Cat 0	0
9607.20.00	- 부분품	Cat 0	0
9608.1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608.10.90	- - 기타	Cat 0	0
9608.20.00	-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Cat 0	0
9608.30.20	- - 만년필	Cat 0	0
9608.30.90	- - 기타	Cat 0	0
9608.40.00	-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Cat 0	0
9608.50.00	-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Cat 0	0
9608.6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608.60.90	- - 기타	Cat 0	0
9608.91.10	- - - 금이나 금으로 도금한 것	Cat 0	0
9608.91.90	- - - 기타	Cat 0	0
9608.99.10	- - - 복사용 철필(鐵筆)	Cat 0	0
9608.99.91	-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볼펜 부분품	Cat 0	0
9608.99.99	- - - - 기타	Cat 0	0
9609.10.10	- - 검은색 연필	Cat 0	0
9609.10.90	- - 기타	Cat 0	0
9609.20.00	-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609.90.10	- - 칠판용 석필	Cat 0	0
9609.90.30	- - 연필과 크레용(소호 제9609.10호의 것은 제외한다)	Cat 0	0
9609.90.91	- - - 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	Cat 0	0
9609.90.99	- - - 기타	Cat 0	0
9610.00.10	- 칠판	Cat 0	0
9610.00.90	- 기타	Cat 0	0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9611.00.00	날짜 도장 · 봉합용 스탬프 또는 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Cat 0	0
9612.10.10	- - 방직용 직물로 만든 것	Cat 0	0
9612.10.90	- - 기타	Cat 0	0
9612.20.00	- 잉크 패드	Cat 0	0
9613.1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613.10.90	- - 기타	Cat 0	0
9613.20.1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613.20.90	- - 기타	Cat 0	0
9613.80.10	- - 스토브와 레인지용 압전 라이터	Cat 0	0
9613.80.20	- - 플라스틱으로 만든 담배라이터나 테이블 라이터	Cat 0	0
9613.80.30	- - 담배라이터나 테이블 라이터(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Cat 0	0
9613.80.90	- - 기타	Cat 0	0
9613.90.10	- - 액체연료 또는 액체 가스를 담는 기계식 라이터의 부분품인 재생가능한 카트리리지 또는 그 밖의 용기	Cat 0	0
9613.90.90	- - 기타	Cat 0	0
9614.00.10	- 나무나 뿌리로 거칠게 성형한 블록(파이프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Cat 0	0
9614.00.90	- 기타	Cat 0	0
9615.11.20	- - - 경화고무로 만든 것	Cat 0	0
9615.11.30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615.19.00	- - 기타	Cat 0	0
9615.90.11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Cat 0	0
9615.90.12	- - - 철강으로 만든 것	Cat 0	0
9615.90.13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615.90.19	- - - 기타	Cat 0	0
9615.90.21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615.90.22	- - - 철강으로 만든 것	Cat 0	0
9615.90.23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Cat 0	0
9615.90.29	- - - 기타	Cat 0	0
9615.90.91	- -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Cat 0	0
9615.90.92	- - - 철강으로 만든 것	Cat 0	0
9615.90.93	- -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Cat 0	0
9615.90.99	- - - 기타	Cat 0	0
9616.10.10	-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Cat 0	0
9616.10.20	- -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Cat 0	0
9616.20.00	- 화장용 분침과 패드	Cat 0	0
9617.00.10	-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9617.00.20	- 그 부분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Cat 0	0
9618.00.00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Cat 0	0
9619.00.11	- - 흡수성 코어가 방직용 섬유재료의 워딩으로 된 것	Cat 0	0
9619.00.12	- - 위생 타월과 탐폰(tampon)[종이 · 제지용 펄프 ·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	Cat 0	0
9619.00.13	- - 유아 실금용 냅킨과 패드[종이 · 제지용 펄프 ·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	Cat 0	0
9619.00.14	- - 기타[종이 · 제지용 펄프 · 셀룰로오스워딩(cellulose wadding) 또는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	Cat 0	0
ex1 9619.00.19	의류와 의류 부속품의 것	Cat 15	12
ex2 9619.00.19	기타	Cat 15	5
ex1 9619.00.91	브리프(brief)와 팬티(방직용 섬유의 것으로 면이나 인조섬유는 제외한다)	Cat 15	5
ex2 9619.00.91	기타	Cat 0	0
9619.00.99	- - 기타	Cat 0	0
ex1 9620.00.10	젓꼭지 형태의 것, 브레스트셸, 유두보호기, 손으로 찢는 깔때기, 보조간호용 시스템, 수유기(하베르만 타입)	Cat 0	0
ex2 9620.00.10	길이가 15미터 이하의 라켓용 줄(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목주와 그 밖의 연질의 셀룰러 제품	Cat 15	15
ex3 9620.00.10	기타	Cat 15	5
9620.00.20	- 탄소나 흑연으로 만든 것	Cat 0	0
ex1 9620.00.30	라텍스 수집용 스파우트와 컵, 쥐덫, 피스톨(pistol)이나 리볼버(revolver) 모양의 열쇠고리(뇌관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볼펜용 스틸볼	Cat 0	0
ex2 9620.00.30	기타	Cat 15	5

AHTN 2017	품목명	양허유형	기준세율
9620.00.40	-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Cat 0	0
9620.00.90A	- - 제84류의 기계용	Cat 0	0
9620.00.90B	- - - 제9015호의 물품용	Cat 0	0
9620.00.90C	- - - 기타	Cat 0	0
9620.00.90D	- - 기타	Cat 0	0
9701.10.00	- 회화 · 데생과 파스텔	Cat 0	0
9701.90.00	- 기타	Cat 0	0
9702.00.00	오리지널 판화 · 인쇄화와 석판화	Cat 0	0
9703.00.00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Cat 0	0
9704.00.00	우표 또는 수입인지 · 우편요금 별납증서 · 초일(初日)봉투 · 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4907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Cat 0	0
9705.00.10	- 사학 · 고고학 · 고생물학 · 민족학 또는 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	Cat 0	0
9705.00.90	- 기타	Cat 0	0
9706.00.00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Cat 0	0

제3장 무역구제

제1절 긴급수입제한조치

제3.1조 정의

이 절의 목적상,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란 제3.2조에 기술된 조치를 말한다.

국내 산업이란, 수입 상품에 대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생산자 전체, 또는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의 총 산출량이 그 상품의 국내 총생산의 상당한 부분을 구성하는 생산자를 말한다.

심각한 피해란 국내 산업의 입지에 대한 중대하고 전반적인 손상을 말한다.

실질적 원인이란 중요하고 다른 어떠한 원인보다 덜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말한다.

심각한 피해의 우려란 단순한 주장, 추측 또는 막연한 가능성이 아니라 사실에 기초하여 명백히 임박한 심각한 피해를 말한다. 그리고

과도기간이란 특정 상품과 관련하여,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당사국 관세 양허표에 따른 관세의 인하 또는 철폐 완료일 후 3년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제3.2조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적용

1.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수입 당사국 영역 내에서 동종이거나 직접적으로 경쟁적인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 피해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할 정도로 절대적으로 또는 국내 생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증가된 물량과 조건하에, 다른 쪽 당사국의 그러한 원산지 상품이 한쪽 당사국의 영역 내로 수입되고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다음의 형태로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할 수 있다.

가. 이 협정에 규정된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의 추가 인하를 정지하는 것, 또는

나. 다음 중 더 낮은 것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까지 그 상품에 대한 관세율을 인상하는 것

1)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취해지는 시점에서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또는

2) 이 협정의 발효일 직전일에 적용되는 최혜국 관세율

제3.3조

조건 및 제한

1. 한쪽 당사국은 제2항에 기술된 조사를 개시할 때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으로 통보하며, 조사로부터 얻는 정보를 검토하고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하여,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 실행 가능한 한 사전에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한다.

2.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및 제4조제2항다호에 따라 그 당

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한 후에만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며, 이 조항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3. 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그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 제4조제2항가호 및 제4조제2항나호의 요건을 준수하며, 이 조항들은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4. 각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러한 모든 조사를 개시일부터 1년 내에 완료하도록 보장한다.

5. 어떠한 당사국도

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와 기간을 제외하고

나.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의 총 기간이 최초 적용기간과 이에 대한 연장을 포함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수입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그 조치가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것과 그 산업이 구조조정되고 있다는 증거가 있다는 것을 이 조에 명시된 절차에 합치되게 판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1년까지 연장될 수 있다는 것을 제외하고,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동안, 또는

다. 과도기간의 만료 후에, 양자 한시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6. 당사국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1회를 초과하여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의 수입에 대한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 적용기간의 종료부터 최소 2년이 경과해야 한다.

7.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예상 존속기간이 1년을 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일정한 시간 간격을 두고 이를 점진적으로 자유화한다.

8. 당사국이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종료하는 경우, 관세율은 그 조치를 하지 않았더라면 부속서 2-가(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그 당사국의 양허표에 따라 유효하였을 관세율이 된다.

제3.4조

잠정조치

1. 지연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이 초래될 중대한 상황에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이 협정상의 관세 인하 또는 철폐의 결과로서 증가하였으며, 그러한 수입이 국내 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그에 대한 우려의 실질적 원인을 구성한다는 명백한 증거가 있다는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예비판정에 따라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잠정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예비판정을 내리기 전에, 그 당사국은 수입자 및 수출자를 포함한 이해당사자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요청하는 신청서의 공개본을 어떻게 취득할 수 있는지를 규정한 공고를 공표하고, 이해당사자들이 잠정조치의 적용에 관하여 증거 및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 공고의 공표일 후 최소한 20일의 기간을 부여한다. 당사국은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조사를 개시한 날 후 최소한 45일까지는 잠정조치를 적용할 수 없다.

3. 적용 당사국은 잠정적인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하기 전에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고,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그 조치의 적용 후 협의를 개시한다.

4.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200일을 초과하지 않으며, 그 기간 동안 그 당사국은 제3.3조제2항 및 제3.3조제3항의 요건을 준수한다.

5. 적용 당사국은 제3.3조제2항에 기술된 조사에서 제3.2조의 요건이 충족된다는 조사결과에 이르지 않는 경우, 모든 관세 인상분을 신속하게 반환한다. 모든 잠정조치의 존속기간은 제3.3조제5항나호에 기술된 기간의 일부로 계산된다.

제3.5조

보상

1. 적용 당사국은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한 후 30일 이내에,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거나 그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로부터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추가적인 관세액과 동등한 양허의 형태로 된 적절한 무역자유화 보상에 관하여 자국과 협의할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적용 당사국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하는 보상을 제공한다.
2. 양 당사국이 협의의 개시로부터 30일 내에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통한 보상에 대하여 합의할 수 없는 경우,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적용되는 원산지 상품의 당사국은 적용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긴급수입제한조치와 실질적으로 동등한 무역효과를 가지는 양허의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보상을 제공할 적용 당사국의 의무와 제2항에 따라 양허를 정지할 수 있는 다른 쪽 당사국의 권리는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종료하는 날에 소멸된다.
4. 모든 보상은 제3.4조에 따른 잠정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포함한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의 총 적용기간을 기초로 한다.
5.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수입품의 절대적 증가의 결과로서 적용되고 그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이 협정의 규정에 합치하는 한, 제2항에 언급된 정지할 수 있는 권리는 그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가 유효한 최초 24개월 동안에는 행사되지 않는다.

제3.6조

다자 긴급수입제한조치

1. 각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른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

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행해진 조치에 대하여 양 당사국에 어떠한 추가적인 권리나 의무도 부여하지 않는다. 이러한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할 때, 한쪽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 규칙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원산지 상품의 수입이 그 자체로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거나 초래할 우려가 없는 경우 그러한 수입을 배제한다.

2.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긴급수입제한조치를 하려는 당사국은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조사의 개시, 그 조사의 예비판정 및 최종 결과에 관한 모든 관련 정보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신속하게 제공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동일한 상품에 대하여, 동시에 다음의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가. 양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 그리고

나. 1994년도 GATT 제19조 및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에 따른 조치

제2절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제3.7조

일반 규정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반덤핑 및 상계 관세의 적용에 관하여 세계무역기구협정상의 자국의 권리 및 의무를 유지한다.

2. 양 당사국은 잠정조치의 부과 후 즉시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판정 전에, 반덤핑협정 제6.5조와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12.4조를 저해함이 없이, 조치를 적용하기 위한 결정의 근거를 형성하는 모든 필수적인 사실 및 고려사항의 완전하고 의미 있는 공개를 보장한다. 공개는 서면으로 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허용한다.

3. 양 당사국은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양국 간 반덤핑 또는 상계조치 사안에 대한 다음의 관행을 준수한다.

가. 반덤핑협정 제2.4조제2항에 따른 비교 기준과 관계없이, 반덤핑협정 제2조, 제9.3조, 제9.5조 및 제11조에 따라 덤핑 마진을 산정, 평가 또는 검토하는 경우, 모든 개별 마진은 양의 값인지 음의 값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평균으로 계산되어야 할 것이다.

나. 반덤핑협정 제9.1조에 따라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그러한 결정을 하는 당사국은 덤핑 마진보다 적은 관세가 국내 산업에 대한 피해를 제거하기에 충분한 경우 덤핑 마진보다 적은 그러한 관세를 부과함으로써 최소부과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조사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 있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자국의 질의서에 대한 적시의 답변을 요청한다. 조사 당사국이 마감기한 전에 관련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받은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정보의 중대한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거나 조사의 목적상 명확화를 요구하는 경우, 조사 당사국은 누락된 정보를 요구하거나 그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 관한 정보의 명확화를 요청한다. 이 절차는 조사의 부당한 지연을 초래하거나 당사국의 법과 규정상의 마감기한을 우회하기 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양 당사국은 반덤핑 협정 그리고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에 따라 이용 가능한 사실에 근거하여 예비판정 및 최종판정을 내릴 수 있다.

제3.8조

통보 및 협의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반덤핑 신청을 접수하면, 조사를 개시하기 15일 전에, 그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회의 또는 이와 유사한 그 밖의 기회를 다른 쪽 당사국에 부여한다.

2.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수입에 대하여 적절하게 서류를 갖춘 상계 관세 신청을 접수하면,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그 당사국은 신청의 접수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서면 통보를 제공하고 신청에 관하여 자국의 권한 있는 당국과 협의하기 위한 회의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제3.9조

약속

1.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반덤핑 또는 상계 관세 조사를 개시한 후, 그 당사국은 가격에 대한 약속을 자국의 당국이 고려하도록 요청하기 위한 자국의 절차에 관한 서면 정보를, 실행 가능한 경우 그러한 약속을 제안하고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대사관 또는 권한 있는 당국에 전달한다.

2. 반덤핑 조사에서,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덤핑과 그러한 덤핑으로 발생한 피해를 긍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3. 상계 관세 조사에서, 한쪽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보조금 지급과 그러한 보조금 지급으로 발생한 피해를 긍정하는 예비판정을 내린 경우, 그 당사국은 수락된다면 자국의 법, 규정 및 절차에 규정된 수단을 통하여 상계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조사를 중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가격 약속 제안에 관하여, 다른 쪽 당사국 및 다른 쪽 당사국의 수출자에게 적절한 고려와 충분한 협의 기회를 부여한다.

제3.10조

재심사 결과에 따른 종료 후 조사

양 당사국은 재심사의 결과로 이전 12개월 내에 반덤핑 조치가 종료된, 다른 쪽 당사국

의 원산지 상품에 대한 반덤핑 조사의 개시를 위한 신청을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검토하기로 합의한다. 이 개시 전 검토로 사정이 변경되었음이 나타나는 경우가 아니면, 조사가 진행되지 않는다.

제3절 무역구제위원회

제3.11조 무역구제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 문제를 포함하여, 무역구제 사안을 담당하는 각 당사국 관련 기관의 적절한 수준의 대표들로 구성되는 무역구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무역구제 법, 규정, 정책 및 관행에 대한 한쪽 당사국의 지식 및 이해 증진
 - 나. 이 장의 이행 감독
 - 다. 무역구제에 관한 사안을 담당하는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간 협력 증진
 - 라. 양 당사국에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조치, 그리고 긴급수입제한조치에 관한 문제에 대한 정보 교환의 장 제공
 - 마. 양 당사국에 다음을 포함한 그 밖의 관련된 상호 관심사에 대한 논의의 장 제공

1) 세계무역기구 도하 라운드 규범 협상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무역
구제와 관련된 국제적인 문제, 그리고

2) “이용 가능한 사실”의 적용 및 실사 절차와 같이 반덤핑 및 상계
관세 조사에서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의 관행, 그리고

바. 필요한 경우,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사안에 관한 협력

3.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회합하며,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대로 더 자주 회
합할 수 있다.

제4장 원산지 규정

제4.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이란 수입된 상품의 가격을 말하며,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수입국으로 들어오는 항구 또는 반입지점까지의 화물운송 및 보험 비용을 포함한다.

본선인도가격(FOB)이란 1994년도 GATT 제7조 및 관세평가협정에 따라, 생산자로부터 해외 최종 선적항 또는 선적지까지의 운송 비용을 포함한 상품의 본선인도가격의 가치를 말한다.

대체가능재료란 동종이고 상업적으로 동질이며, 동일한 기술적 및 물리적 특성을 지니고, 원산지 목적상 어떠한 표시나 단순한 시각적 검사만으로는 서로 구별될 수 없는 재료를 말한다.

재료란 상품의 생산에서 사용되는 원료, 원재료, 구성품, 부품 또는 부속품을 말한다.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란 운송 동안 상품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소매를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또는 용기와는 다르다.

특혜관세대우란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부여된, 이 협정에 따라 적용 가능한 관세율에 반영된 관세 양허를 말한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이란 재료가 세번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거나, 역내가치포함비율 또는 이러한 기준들이 결합된 기준을 충족함을 명시하는 규정을

말한다. 그리고

생산이란 상품의 재배, 채굴, 수확, 사육, 번식, 추출, 채집, 수집, 포획, 어로, 밧사냥, 수렵, 제조, 생산, 가공 또는 조립을 포함한 상품의 획득 방법을 말한다.

제4.2조 원산지 기준

이 협정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의 경우

- 가. 제4.3조에 따라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 나.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다만 그 상품은 부속서 4-나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는
- 다. 양 당사국을 원산지로 하는 재료로만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

그리고 그 상품이 이 장의 모든 그 밖의 적용 가능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제4.3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4.2조가호의 목적상, 다음의 상품은 전적으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것으로 여겨진다.

- 가. 그 당사국에서 재배 및 수확, 수집 또는 채집된 식물과 식물 생산품

- 나. 그 당사국에서 출생하고 사육된 살아있는 동물
- 다. 나호에서 언급된 살아있는 동물로부터 획득된 상품
- 라. 그 당사국에서 수행된 수렵, 뿔사냥, 어로, 양식, 채집 또는 포획으로 획득된 상품
- 마. 그 당사국의 토양,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추출되거나 채취된, 가호부터 라호까지에 포함되지 않는 광물 및 그 밖의 천연 자원
- 바. 당사국 영해 밖의 수역, 해저 또는 해저 하부에서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이 추출하거나 채취한 어획물 및 그 밖의 해산물, 그리고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의 인이 추출하거나 채취한 그 밖의 생산물. 다만 당사국이나 그 당사국의 인은 그러한 수역, 해저 및 해저 하부를 개발할 권리¹를 국제법²에 따라 가져야 한다.
- 사.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선박이 공해상에서 추출하거나 채취한 어획물 및 그 밖의 해산물
- 아. 당사국에 등록되고 그 당사국의 국기를 게양할 자격이 있는 가공선박에서 바호 또는 사호에 언급된 상품만으로 생산되거나 만들어진 상품
- 자. 그 당사국에서 수집된 물품으로서 더 이상 본래의 목적을 수행할 수 없고 저장 또는 수리할 수 없으며 원재료의 부품 회수 또는 재활용 목적으로만 적합한 물품

¹ 양 당사국은 어획물 및 그 밖의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목적상, “개발할 권리”는 당사국과 연안국의 정부 간 또는 적법하게 권한을 부여받은 민간 기관 간에 체결된 협정이나 그 밖의 약정에서 발생하는 그 연안국의 어로자원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함을 양해한다.

² 국제법은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과 같이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국제법을 지칭한다.

차. 다음으로부터 얻어진 폐기물 및 부스러기

- 1) 그 당사국에서 수행된 제조 또는 가공 공정, 또는
- 2) 당사국에서 수집된 중고품. 다만 그러한 상품은 원재료의 회수용으로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그리고

카. 가호부터 차호까지에 언급된 상품으로만 그 당사국 영역에서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제4.4조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지 않은 상품

1. 제4.2조나호의 목적상, 부속서 4-나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을 제외하고 일반 규칙으로서 역내가치포함비율(이하 “RVC” 라 한다)이 본선인도가격(FOB) 가치의 40 퍼센트 이상이거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4단위 수준(세번의 호 변경)에서 세 번변경이 이루어진 상품은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2. 제4.2조나호의 목적상, RVC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다.

가. 집적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원산지재료가치(VO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원산지재료가치(VOM)란 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원산지 재료의 가치, 직접 노무비, 직접 경비, 운송비 및 이윤을 포함한다.

나. 공제법

$$\text{역내가치포함비율(RVC)} = \frac{\text{본선인도가격(FOB)} - \text{비원산지재료가치(VNM)}}{\text{본선인도가격(FOB)}} \times 100\%$$

비원산지재료가치(VNM)란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를 말하며, 다음과 같다.

- 1) 재료, 부품 또는 상품의 수입 시 운임보험료포함가격(CIF), 또는
- 2)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당사국의 영역에서 원산지가 결정되지 않은 재료, 부품 또는 상품에 지불된, 최초로 확인된 가격

제4.5조

최소허용수준

1. 세번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은 다음의 경우,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가 그 상품의 본선인도가격(FOB) 가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제50류부터 제63류까지에 규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요구되는 세번변경이 일어나지 않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의 중량이 그 상품의 총 중량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

그리고 가호 및 나호에 명시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이 장에 규정된 그 밖의 모든 적용 가능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2. 그러나 제1항에 언급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는 그 상품에 적용 가능한 RVC 요건을 위한 비원산지 재료의 가치에 포함된다.

제4.6조 최소 공정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사국의 영역에서 상품에 다음의 공정이나 가공이 한번 또는 결합되어 수행된 경우, 그 상품은 그 당사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지지 않는다.

가. 운송되고 보관되는 동안 상품이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보장하는 보존 공정

나. 포장, 그리고 포장물의 재포장과 해체 및 조립

다. 단순 세탁, 세척, 먼지·녹·기름·페인트 또는 그 밖의 막의 제거

라. 방직용 섬유나 방직용 섬유 제품의 다림질 또는 압착

마. 단순 페인팅 및 광택

바. 곡물 및 쌀의 탈각, 부분 또는 전체 표백, 연마 및 도정

사. 당류 착색 또는 각설탕 제조

아. 단순 탈피, 씨 제거 또는 탈각

자. 연마, 단순 분쇄 또는 단순 절단

차. 감별, 체질, 선별, 분류, 등급화 또는 매칭

카. 병 · 캔 · 플라스크 · 가방 · 케이스 · 상자로의 단순 배치, 카드 또는 판 위에 고정,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유사한 단순 포장 공정

타. 마크, 라벨, 로고 및 그 밖의 유사한 구별 표시를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부착하거나 인쇄하는 것

파. 다른 종류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상품의 단순 혼합³

하. 완전한 물품을 구성하는 물품 부품의 단순 조립

거. 제품의 부품으로의 분해

너. 단순 시험 또는 측정, 또는

더. 동물의 도살⁴

2. 제1항의 목적상, 단순이란 특별한 기술, 또는 공정이나 가공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나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공정이나 가공을 말한다.

3.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다른 쪽 당사국으로부터 수출되었을 때, 제1항에 언급된 것 이상의 공정이 수행되지 않았을 경우, 최초의 원산지 지위를 유지한다.

제4.7조

원산지 누적

³ 단순 혼합이란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술, 또는 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히 생산되거나 설치된 기계나 기기 또는 장비를 필요로 하지 않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나 단순 혼합은 화학 반응을 포함하지 않는다. 화학 반응이란 분자 내 결합의 파괴 및 새로운 분자 내 결합의 생성, 또는 분자 내 원자의 공간배열 변경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를 가진 분자를 만들어내는 가공(생화학 가공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⁴ 도살이란 동물의 단순한 도살과 저장 및 운송을 위한 보존을 목적으로 한 절단이나 냉장 또는 냉동과 같은 후속 처리를 말한다.

이 장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에서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완성 상품의 재료로 사용되는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은, 그 완성 상품의 작업 또는 가공이 발생한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제4.8조

특정 상품의 취급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특정 상품은 한쪽 당사국에서 수출되고 그 후 그 당사국에 재수입된 재료에 대하여 양 당사국 밖에서 작업 또는 가공을 거쳤더라도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그 작업 또는 가공은 부속서 4-다에 따라 양 당사국이 지정한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제4.9조

중간재

원산지 상품이 다른 상품의 후속 생산에 사용되는 경우, 후속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는 목적상 원산지 상품에 포함된 비원산지 재료는 고려되지 않는다.

제4.10조

포장 및 포장재료의 취급

1. 가. 상품이 제4.4조에 규정된 RVC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의 가치는 그 포장 및 포장재가 그 상품과 함께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 여겨지면, 그 상품의 원산지 결정 시 고려된다.
- 나. 가호가 적용 가능하지 않은 경우, 소매용 판매를 위한 포장 및 포장재료는 그 포장된 상품과 같이 분류될 때, 그 상품의 제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그 언급된 상품의 세번변경, 또는 특정 제조나 가공 공정에 상응하는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2. 상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재료와 용기는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제4.11조

세트

1.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일반해석규칙의 규칙3에 정의된 대로, 세트는 세트의 모든 구성품이 원산지 상품인 경우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2.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트가 원산지 상품과 비원산지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그 세트는 전체가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진다. 다만, 제4.4조에 따라 결정된 비원산지 상품의 가치가 그 세트의 본선인도가격(FOB) 가치의 10퍼센트를 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12조

부속품, 예비부품 및 공구

1.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의 일부로 여겨지고,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가 부속서 4-나에 규정된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이나 특정 제조 또는 가공 공정을 거쳤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다. 다만,

가. 그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급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RVC 기준의 적용대상이 되는 경우, 그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가치는 그 상품의 RVC 산정 시 각 경우에 맞게 원산지 재료 또는 비원산지 재료로 고려된다. 다만,

가. 그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는 그 상품과 별도로 송장이 발급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나. 그 상품과 함께 제공되는 부속품, 예비부품, 공구, 그리고 사용 설명서나 그 밖의 안내서의 수량과 가치는 그 상품에 대하여 통상적인 수준이어야 한다.

제4.13조

중립재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될 수 있으나 그 상품에 결합되지 않을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원산지는 결정할 필요가 없다.

가. 연료 및 에너지

나. 도구, 형판 및 주형

다. 설비 및 건물의 유지에 사용되는 예비부품 및 재료

라. 생산에 사용되거나 설비 및 건물의 운영에 사용되는 윤활제, 그리스, 혼합물 및 그 밖의 재료

마. 장갑, 안경, 신발, 의류 및 안전장비와 보급품

바. 상품의 시험 또는 검사에 사용되는 설비, 장치 및 보급품, 그리고

사. 상품에 결합되지는 않으나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되어 그 생산의 일부가 되었음이 합리적으로 입증될 수 있는 그 밖의 모든 상품

제4.14조

대체가능재료

1. 상품의 원산지를 설정하기 위한 목적상, 그 상품이 혼합되거나 물리적으로 결합된 원산지 재료 및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하여 제조된 경우, 그러한 재료의 원산지는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시행되는 재고관리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2. 재고관리기법이 일단 선택되면, 그 기법은 그 회계연도 내내 사용되어야 한다.

제4.15조

직접 운송

1. 특혜관세대우는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면서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간에 직접 운송되는 상품에 적용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양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비당사국을 경유하여 운송되더라도, 다음의 경우 직접 운송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가. 그 경유가 지리적 이유로 또는 오직 운송 요건에만 관련된 고려에 의하여 정당화되는 경우

나. 그 상품이 경유국에서 거래되거나 소비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다. 그 상품이 하역 및 재선적, 또는 그 상품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공정 외의 어떠한 공정도 거치지 않은 경우

3. 제2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수출 당사국과 수입 당사국의 영역 외에 하나 이상의 중간 경유국들의 영역을 통하여 운송이 이루어지는 경우, 다음의 서류를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출한다.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 이는 수출 당사국부터 수입 당사국까지의 상품의 전체 운송 경로를 포함한 운송 문서를 결합한 것을 포함한다. 또는

나. 제2항의 요건이 준수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가 있는 경우 그 서류

제4.16조

원산지 증명

상품이 특혜관세대우를 받을 자격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는 신청은 부속서 4-가에 규정된 원산지 운영 절차에 따른 원산지 증명서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제4.17조

특혜대우의 거부

수입 당사국은 상품이 이 장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수입자 또는 수출자가 관련 요건의 준수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하거나 미납된 관세를 징수할 수 있다.

제4.18조

비밀유지

1.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부속서 4-가의 규칙 15에 따라 검증 과정에서 수집된 기밀 사업 정보의 비밀을 유지하고 그 정보를 제공한 인의 경쟁적 지위를 저해할 수 있는 공개로부터 그 정보를 보호한다.
2. 양 당사국의 법과 규정 그리고 합의에 따라, 기밀 정보는 원산지 결정의 운영 및 집행을 목적으로만 한쪽 당사국의 당국에 의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공개될 수 있다.

제4.19조

벌칙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과 관련된 법과 규정의 위반에 대하여 적절한 벌칙이나 제재 또는 그 밖의 조치가 부과되도록 보장한다.

제4.20조

통과 또는 보관 중인 상품에 대한 경과 규정

이 협정의 규정은 이 협정의 발효일에 통과 중이거나 통관 통제 하에 세관보세창고 또는 자유지역에 임시 보관 중인 상품에 적용될 수 있다. 그러한 상품의 경우, 원산지 증명이 이 협정의 발효 후 3개월까지 소급적으로 작성될 수 있다. 다만, 이 장의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제4.21조

품목별 원산지 규정 전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수정의 결과로 부속서 4-나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전환의 목적상, 다음 각 호가 적용된다.

- 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수정본의 발효 전에, 양 당사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변경을 반영하는 데 필요한 부속서 4-나의 갱신을 준비하기 위하여 협의를 수행한다.
- 나. 양 당사국은 부속서 4-나의 전환이 부속서에 규정된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을 손상하지 않고 수행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완료되도록 보장한다.
- 다. 공동위원회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분류체계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의 전환을 채택한다. 그리고
- 라. 양 당사국은 개정된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목분류체계에 따른 부속서 4-나의 채택된 전환 문서를 신속하게 공표한다.

제4.22조

협 의

양 당사국은 이 장의 정신 및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장의 규정이 효과적이고 통일적이며 일관되게 운영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주기적으로 협의한다.

제4.23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

양 당사국은 제5.21조(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에 따라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를 설치한다.

제4.24조

검토 및 수정

1. 이 장은 필요한 경우와 시기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검토되고 수정될 수 있으며, 제11.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설치된 공동위원회에서 합의될 수 있는 대로의 검토 및 수정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 이 장의 부속서 및 부록은 공동위원회가 승인한 개정을 통하여 수정될 수 있다. 그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각국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서면으로 통보한 날 후 60일째 되는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날에 발효한다.

부속서 4-가

제4장에 따른 원산지 규정에 대한 원산지 증명 운영 절차

제4장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원산지 증명의 발급, 원산지 검증 및 그 밖의 관련된 행정 사안에 대하여 다음의 운영 절차가 준수된다.

규칙 1

정의

이 부속서의 목적상,

- 가. **인증수출자**란 수출된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법하게 권한이 부여된 수출자를 말한다.
- 나. **관세 당국**이란 당사국의 법에 따라 관세법과 규정¹의 운영을 담당하는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 다. **수출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출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라. **수입자**란 당사국의 영역에 소재하며 상품을 수입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 마. **발급 기관**이란 이 부속서에 따라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하도록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권한을 부여받고,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된 정부 당국이나 기관을 말한다.

¹ 그러한 법과 규정은 관세, 부과금 및 그 밖의 조세, 또는 각 당사국 관세 영역의 경계를 넘어 통제된 물품의 이동에 대한 금지, 제한 및 통제와 관련된 상품의 수입, 수출 및 통과에 관하여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운영되고 집행된다.

바. **생산자**란 당사국의 영역에서 생산 활동을 수행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그리고

사. **원산지 증명**은 수출된 상품이 제4장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에 대한 규정을 충족함을 증명하는 문서를 말한다.

규칙 2

원산지 증명

1. 원산지 증명은 다음의 형태일 수 있다.

가.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

나.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또는

다.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발효 시에 원산지 증명서 및 인증수출자 제도를 이행한다. 이에 더하여,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0년 이내에 이행된다.

규칙 3

발급 기관의 견본 서명 및 관인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발급 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의 목록을 접촉선을 통하여 인쇄본 또는 파일의 형태로 제공한다. 해당 목록의 모든 변경은 동일한 방식으로 신속하게 제공된다.

2. 발급 기관의 견본 서명 및 관인은 매년 갱신된다. 제1항에 언급된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무원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는 수령 당사국에 의하여 인

정되지 않는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참조번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부호, 상품명, 수량, 발급일 및 수출자의 이름과 같은 수출 당사국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의 핵심 정보를 포함하는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면, 자국 발급 기관의 견본 서명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4. 가. 인증수출자 지위가 부여된 후 즉시, 각 당사국은 그 당사국의 안전한 웹사이트에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1) 인증수출자 인증번호

2) 적용 가능한 경우, 인증수출자 인증서 발급일 및 만료일

나. 안전한 웹사이트가 없는 당사국은 자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가호에 언급된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할 것이 요구된다.

다. 각 당사국은 자국의 접촉선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다음의 정보를 주기적으로 통보한다.

1) 회사의 법적 명칭 및 주소

2)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6단위² 상품명을 포함하는, 인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 목록, 그리고

3) 회사당³ 10명⁴을 초과하지 않는, 서명권자 및 그들 각자의 견본 서명 목록

라. 제4항다호 1목부터 3목까지의 모든 변경은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된다.

² 이 요건을 유지한다는 필요성은 이 협정의 이행일부터 1년 후 검토의 대상이 된다.

³ 이 요건을 유지한다는 필요성은 이 협정의 이행일부터 1년 후 검토의 대상이 된다.

⁴ 이 요건을 유지한다는 필요성은 이 협정의 이행일부터 1년 후 검토될 것이다.

인증의 철회나 중단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통보된다.

5. 제4항다호3목에도 불구하고, 한쪽 당사국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승인한 인증수출자에 대한 핵심 정보를 포함하는 안전한 웹사이트를 개설하면, 자국 서명권자의 견본 서명을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도록 요구받지 않는다.

6. 안전한 웹사이트에 포함되지 않거나 통보되지 않은 인증수출자가 작성한 원산지 신고서는 수령 당사국에 의하여 인정되지 않는다.

규칙 4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

양 당사국은 제4장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이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공동으로 결정한 방식으로 전자적 원산지 정보 교환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규칙 5

증명 서류

1.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발급 기관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뒷받침하는 증거 서류를 요청하거나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점검을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

2. 양 당사국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다고 여겨지는 발급 기관이 발급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와 관련된 점검을 수행하기 위하여, 이용 가능한 경우 전자적 증명 서류의 제출을 허용하도록 권장된다.

규칙 6

수출 전 검사

1.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발급 기관에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 전 검사의 요청을 신청한다.
2. 검사 결과는, 주기적인 검토를 조건으로 또는 적절한 경우 언제든지, 그 후 수출될 해당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는 데 증명 자료로 인정된다. 수출 전 검사는 그 특성상 원산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규칙 7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

1. 생산자나 수출자, 또는 그에게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은 양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되게, 수출되는 상품이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의 발급 자격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적절한 증명 서류와 함께 규칙2 제1항가호에 언급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를 신청한다.
2. 발급 기관은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의 매 신청마다 다음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최선의 권한과 능력으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한다.
 - 가.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가 서명권자에 의하여 적절히 작성되고 서명될 것
 - 나. 상품의 원산지가 제4장에 합치될 것
 - 다.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에 기재된 그 밖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하는 제출된 증거 서류와 일치할 것, 그리고
 - 라. 상품의 품목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시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가 명시된 대로 수출되는 상품에 부합할 것
3. 동일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에 다수의 품목을 신고하는 것은 허용

된다. 다만, 각 품목은 자체적으로 별도의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4.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는 A4 용지 크기이며 부록 4-가-1에 규정된 양식이다. 증명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는 RVC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9란에 본선인도가격(FOB)을 반영한다.

5.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제2사본 및 제3사본)로 구성된다. 증명서에는 각각의 발급처 또는 발급 관청에서 개별적으로 제공한 참조번호를 기재한다.

6. 원본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하도록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전달한다. 제2사본은 수출 당사국의 발급 기관이 보관한다. 제3사본은 생산자 또는 수출자가 보관한다.

7. 발급 기관은 발급 번호 및 발급 일자, 생산자 또는 수출자, 그리고 상품의 품목명을 포함하여, 발급되고 수락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에 대한 기록을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매년 제공한다.

8.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자는 수입 시에 수입 신고서와 증명서류(즉, 송장 및 요구되는 경우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발급된 통과선하증권)를 포함하는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 그리고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그 밖의 서류를 수입 시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한다.

9.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하여 거부되는 경우, 발급 기관에 특혜관세대우 거절 사유가 적절하게 통보된다.

10. 제9항에 기술된 대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가 수락되지 않을 경우,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합하다고 간주하는 바에 따라 관세 당국 또는 발급 기관의 해명을 수용 및 고려하고, 특혜관세대우의 부여를 위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의 수락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한 해명은 수입 당사국이 제기한 특혜관세대우의 거절 사유를 다루기 위하여 구체적이고 포괄적이어야 할 것이다.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또는 거절에 관한 결정은 해명을 수령한 날부터 3개월 내에 발급 기관에 통보된다.

11.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에서 삭제와 덮어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변경 시 잘못된 부분에 줄을 그어 지우고 필요한 추가 정보를 기재한다. 그러한 변경은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에 서명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에 의하여 승인되고 발급 기관에 의하여 인증된다. 사용하지 않는 여백은 차후의 추가 기재를 방지하기 위하여 줄을 그어 지운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가 발급될 수 있다. 발급 기관은 본래 발급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의 발급일을 신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에 명시한다.

12.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는 수출되는 상품이 제4장의 의미에서 수출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경우 언제나, 수출 전이나 수출 시 또는 수출 직후, 그러나 선적일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3일 이내에 발급된다.

13.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가 비자발적인 오류, 누락 또는 그 밖의 유효한 사유로 인하여 수출 전이나 수출 시, 또는 선적일부터 근무일을 기준으로 하여 3일 이내에 발급되지 않은 예외적인 경우,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는 선적일부터 1년 이내에, “소급 발급”이라는 문구를 기재하여 소급하여 발급될 수 있다.

14.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가 도난,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생산자 또는 수출자는 발급 기관이 보관 중인 수출서류를 근거로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의 제12란에 “진정 등본”이라는 보증문구가 기재된 원본의 진정 등본을 발급하여 줄 것을 발급 기관에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등본에는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 원본의 발급일이 기재된다.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의 진정 등본은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 원본의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급된다.

규칙 8

인증수출자

1.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이 협정에 따라 상품을 선적하는 수출자(이하 “인증

수출자”라 한다)가 해당 상품의 원산지 지위에 대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도록 인증할 수 있다. 그러한 인증을 구하는 수출자는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으로 신청해야 하고, 원산지 신고서가 작성된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보증을 권한 있는 당국이 만족할 정도로 제공해야 한다.

2.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여기는 조건에 따라 인증수출자의 지위를 부여할 수 있고, 이는 다음을 포함한다.

가.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히 등록된다.

나. 그 수출자는 이 협정에 규정된 원산지 규정을 알고 이해해야 한다.

다.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만족스러운 수준의 수출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라. 그 수출자는 원산지 규정에 따른 것을 포함하여,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른 어떠한 사기 행위도 한 기록이 없다.

마.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 관세 당국의 위험관리에 따라 측정된 우수한 준수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바. 그 수출자는 무역업자인 경우, 자체 인증 대상인 상품의 원산지를 기재한 “제조자 신고서”와 필요가 발생하면 검증에 협조하겠다는 제조자의 준비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사. 그 수출자는 수출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견실한 장부 및 기록 유지 체제를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아. 그 수출자는 수출 전 검사를 수행하는 것이 요구된다. 수출 전 검사는 그 특성상 그 원산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다.

3. 관세 당국은

- 가. 자국의 인증수출자 절차 및 요건을 공표하고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 나. 서면으로 또는 전자적 수단으로 인증을 부여한다.
- 다. 인증수출자에게 원산지 신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인증번호를 제공한다.
그리고
- 라. 부여된 인증과 관련한 안전한 웹사이트 또는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정보를 교환한다.

4. 인증수출자는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 가. 작성된 신고서의 정확성에 대한 인증 및 검증의 사용을 감독하는 목적상, 관세 당국에 기록 및 장소에 대한 접근을 허용한다.
- 나. 인증수출자가 인증을 받은 상품으로서, 그 신고서 작성 시에 관련 상품의 원산지 지위를 증명하기 위한 모든 적절한 서류를 가지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만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한다.
- 다. 제2항에 규정된 조건을 지속적으로 준수한다.
- 라. 검증에 협조한다.
- 마. 오용을 포함하여, 작성된 모든 원산지 신고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진다. 그리고
- 바. 규칙 3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정보와 관련된 모든 변경을 관세 당국에 신속하게 알린다.

5. 관세 당국은 작성된 원산지 신고서의 정확성 검증을 포함하여, 인증의 적절한 사

용을 감독한다. 그러한 조치의 빈도 및 정도에 관한 결정은 위험에 기초해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관세 당국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의한 소급적 검증 요청에 대하여 규칙 15에 합치되게 대응할 것이다.

6. 인증수출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대신하여 원산지 증명서(한국-필리핀 양식)를 신청할 수 있다.

7. 관세 당국은 언제든지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관세 당국은 인증수출자가 제1항에 언급된 보증을 더 이상 제공하지 않거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을 더 이상 충족하지 않거나, 달리 인증을 남용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

규칙 9 원산지 신고서

1.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규칙 2 제1항나호 및 규칙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서면 또는 전자적 원산지 신고서에 근거하여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원산지 신고서는 부록 4-가-2에 규정된 서식으로 작성될 수 있다.

2. 제1항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는

가. 영어로 작성된다. 그리고

나.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다.

- 1) 신원확인 정보를 얻기 위한 상세 연락처를 포함하여, 증명인의 이름
- 2) 상품의 수입자
- 3)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 4) 상품의 생산자(아는 경우로 한정한다)

- 5)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 6) 상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기준
- 7) 원산지 신고서의 날짜, 그리고
- 8) 제4항나호에 따라 발급되는 포괄신고서의 경우, 그 원산지 신고서가 포괄하는 기간

3.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수출자가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그 수출자가 다음에 기초하여 원산지 신고서를 작성하고 서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출자의 완전한 인지
- 나.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에 대한 수출자의 합리적인 신뢰, 또는
- 다.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에 대하여 작성하고 서명한 원산지 신고서

4.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적절히 작성하여 서명한, 규칙 2 제1항나호 및 규칙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원산지 신고서가 다음에 적용가능함을 규정한다.

-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하나 이상의 상품에 대한 단일 선적, 또는
- 나. 원산지 신고일부터 12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면서, 원산지 신고서에 명시된 기간 내에 같은 수입자에 대한 동일한 상품의 복수 선적

5. 규칙 2 제1항나호에 언급된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 신고서는 상업 송장에 작

성된다. 그러나 원산지 신고서가 수출 시 상업 송장에 작성될 수 없는 경우, 원산지 신고서는 청구명세서나 화물인도지시서 또는 포장명세서와 같은 상업 서류에 작성될 수 있으며, 상업 송장과 함께 제출되는 경우에는 수입 시 수락될 것이다.

규칙 10

원산지 증명의 유효기간

원산지 증명의 제시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이 준수된다.

- 가. 원산지 증명의 목적상, 원산지 증명은 발급일부터 12개월 간, 또는 원산지 신고서의 경우 작성일부터 12개월 간 유효하며, 그 기간 내에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되어야 한다.
- 나. 원산지 증명이 그 제출기간의 만료 후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경우로서 불가항력 또는 수출자나 생산자의 통제를 벗어난 그 밖의 타당한 이유로 인하여 그 기간을 준수하지 못한 때, 그러한 원산지 증명은 수락된다. 그리고
- 다. 그 밖의 지연된 제시의 경우, 상품이 규정된 기간의 만료 전에 수입되었다면,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그러한 원산지 증명을 수락할 수 있다.

규칙 11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 1. 제4장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각 당사국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하는 자국 영역의 수입자에게 다음을 요구한다.

- 가.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신고서를 세관 신고 시 작성한다.

나. 가호에 언급된 내용의 작성 시 규칙 2 제1항나호 또는 규칙 2 제1항다호에 언급된 유효한 원산지 증명을 소지한다.

다. 적용 가능한 경우, 제4.15조에 수립된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소지한다. 그리고

라. 요구되는 경우, 유효한 원산지 증명 및 다호에 언급된 문서를 관세 당국에 제출한다.

2. 수입자가 내용의 근거가 된 원산지 증명이 부정확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입자는 정정된 내용을 작성하고 부담해야 할 관세가 있는 경우 이를 납부한다.

규칙 12

수입 후 특혜관세대우의 신청

1. 수입 당사국은 원산지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경우, 그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다음을 제시하면 수입일부터 1년 내에 또는 수입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명시된 더 긴 기간 내에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를 신청할 수 있고 초과 납부한 관세의 환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규정한다.

가. 원산지 증명 및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그 밖의 증거, 그리고

나. 특혜관세대우의 신청을 충분히 입증하기 위하여 관세 당국이 요구할 수 있는 상품의 수입과 관련된 그 밖의 그러한 서류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입자가 특혜관세대우 신청의 의사를 수입 시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알리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규칙 13

원산지 증명의 면제

원산지 증명은 다음의 경우 요구되지 않는다.

가. 한쪽 당사국 영역의 원산지 상품으로서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 또는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우편으로 송부된 상품으로서 본선인도가격(FOB) 기준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상품

다만, 그 수입은 원산지 증명 제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거나 주선되었다고 합리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하나 이상의 수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아야 한다.

규칙 14

사소한 불일치의 처리

1. 상품의 원산지에 의심이 없는 경우, 상품의 수입을 위한 절차를 수행할 목적으로 원산지 증명에 작성된 내용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제출된 서류 사이에 오타와 같은 사소한 불일치가 발견되더라도, 그러한 서류가 제출된 상품에 사실상 상응한다면 그러한 사실만으로 원산지 증명이 무효화되지 않는다.

2. 동일한 원산지 증명으로 다수의 품목이 신고된 경우, 열거된 품목들 중 하나에 발생한 문제로 인하여 그 원산지 증명에 열거된 나머지 품목에 대한 특혜관세대우의 부여 및 통관이 영향을 받거나 지연되지 않는다. 해당 상품은 규칙 15 제3항라호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규칙 15

검증

1.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입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목적상,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다음의 순서로 검증을 수행할 수 있다.

가. 수입자에게 추가 정보 서면 요청

나.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게 추가 정보 서면 요청

다.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상품의 원산지 검증을 위한 서면 요청, 그리고

라. 수출 당사국 영역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사업장에 대한 검증방문

양 당사국은 그 밖의 향후 절차에 대하여 합의할 수 있으며, 이는 검증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수행될 수 있다.

2. 제1항가호 및 제1항나호의 목적상,

가. 수입 당사국이 작성한 정보에 대한 서면 요청에는,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요구되는 정보 및 서류를 회신해야 하는 기한은 그 접수일로부터 1개월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기간이 될 것이 적시될 것이다.

나.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1항가호 및 제1항나호에 따라 요구되는 정보와 서류를 수령하였고 검증 대상인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하여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관세 당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추가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다.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가호에 언급된 기간 내에 요구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수입 당사국은 수입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게 검증을 완료하기 전에 고려될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공하라는 서면 통보를 최소 1개월 간 제공한 후 해당 상품에 대한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3.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1항다호에 따라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 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요청의 수령부터 6개월 내의 현재 원가 및 가격을 기초로 생산자 또는 수출자의 원가명세서에 대한 검증을 수행한다.
- 나. 검증이 무작위로 요청된 것이 아닌 한, 검증 요청은 관련 원산지 증명을 수반하고, 그 이유와 해당 원산지 증명상의 특정 사항이 부정확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추가 정보를 명시한다.
- 다. 검증 요청을 수령한 관세 당국은 그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하고 그 요청의 접수 후 3개월 내에 회신한다.
- 라.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제공을 정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당국은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행정 조치를 조건으로 수입자에게 상품을 반출할 수 있다. 다만, 그 상품이 수입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이 아니어야 하고 사기에 대한 의심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 마. 관세 당국이 검증 절차의 결과를 수입 당사국에 신속하게 전달하면, 수입 당사국은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를 결정한다. 검증의 전 과정은,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그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의 결과를 통보하는 과정을 포함하여, 6개월 내에 완료된다. 검증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는 라호가 적용된다.

4.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제1항라호에 따라 검증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 가. 검증방문을 수행하기 전, 수입 당사국은 검증방문을 수행하려는 자국의 의사에 대한 서면 통보를 다음에 전달한다.

- 1)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 2) 적용 가능한 경우,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발급 기관
- 3) 검증방문이 이루어지는 영역의 당사국의 관세 당국⁵, 그리고
- 4) 검증방문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입자

나. 가호에 언급된 서면 통보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며, 특히 다음을 포함한다.

- 1) 통보서를 발급한 관세 당국의 명칭
- 2)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이름
- 3) 제안된 검증방문 날짜
- 4) 검증대상 상품에 대한 언급을 포함한 제안된 검증방문의 범위, 그리고
- 5)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이름과 직함

다. 수입 당사국은 제안된 검증방문 전, 가호에 언급된 방문할 사업장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서면동의를 받는다.

라. 가호에 따른 통보의 수령으로부터 1개월 내에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 통보 당사국은 검증방문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상품에 대하여 특혜관세대우를 거부할 수 있다.

⁵ 이 호는 인증수출자 및 자율증명제도에 적용된다.

- 마. 통보를 수령한 관세 당국은 제안된 검증방문을 연기할 수 있으며, 통보 수령일부터 15일 내에 그러한 의사를 수입 당사국에 통보할 수 있다. 검증방문의 연기에도 불구하고, 그 방문은 그러한 통보 수령일부터 2개월 내에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보다 더 긴 기간 내에 수행된다.
- 바. 수출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검증방문의 수행에 참여하는 것이 허용된다.
- 사. 검증방문을 수행하는 당사국은 그 검증의 대상이 되는 상품의 수출자 또는 생산자 그리고 관세 당국에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서면 결정서를 제공한다.
- 아. 정지된 특혜관세대우는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사호에 언급된 서면 결정서의 수령에 따라 복원된다.
- 자.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서면 결정서의 수령 후 1개월 내에 상품의 자격에 대한 서면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제출하도록 허용될 것이다. 그 상품이 여전히 비원산지 상품인 것으로 판명되면, 최종 서면 결정서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로부터 그 의견 또는 추가 정보를 수령한 후 1개월 내에 관세 당국에 통지될 것이다.
- 차. 실제 방문 및 대상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에 대한 결정을 포함한 검증방문 절차 및 그 결과의 관세 당국으로의 통지는 최대 6개월 내에 수행된다. 검증방문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특혜관세대우의 정지에 관한 제3항라호가 적용된다.

규칙 16

기록 유지 요건

1. 각 당사국은 다음을 요구한다.

- 가. 자국의 수출자나 생산자 또는 관세 당국은 원산지 증명이 발급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원산지 증명의 발급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수출 당사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그리고

나. 자국의 수입자는 특혜관세대우가 신청된 상품이 원산지 상품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기록을 그 상품의 수입일부터 최소 3년 동안 또는 수입 당사국의 관련 법과 규정에 따라 더 긴 기간 동안 유지한다.

2. 이러한 기록은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디지털, 전자, 광학, 자기 또는 서면 형태를 포함하여 신속한 검색이 가능한 모든 매체로 유지될 수 있다.

규칙 17

특혜

특정 당사국의 영역으로 수출된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도착지가 변경된 경우, 그 당사국의 영역에 도착하기 전에 또는 후에 다음 사항이 준수된다.

가. 특정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상품이 이미 수입된 경우에도, 그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수입자가 원산지 증명 제출과 함께 특혜관세대우를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 해당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원산지 증명을 승인한다. 또는

나. 원산지 증명에 명시된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하는 과정에서 도착지가 변경되는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발급된 원산지 증명과 함께 상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신규 발급을 서면으로 신청한다.

규칙 18

상품의 전시

1. 제4.15조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에서의 전시를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보내지고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전시 도중 또는 후에 판매된 상품은 제4장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한다는 조건하에 특혜관세대우를 부여받는다. 다만, 그 상품은 다음에 대하여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만족할 만한 정도로 입증되어야 한다.

가. 수출자가 그 상품을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로 발송하고, 그 상품을 그 국가에서 전시한 사실

나. 수출자가 그 상품을 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 수하인에게 판매 또는 양도했다는 사실, 그리고

다. 그 상품이 전시를 위하여 보내진 상태로 전시 도중 또는 직후에 수입 당사국의 영역으로 운송되었다는 사실

2. 제1항을 이행하기 위한 목적상, 원산지 증명은 수입 당사국의 관련 정부 당국에 제공된다. 전시의 명칭 및 주소가 기재된다. 상품의 식별 및 전시된 조건을 위한 증거로서, 제4.15조제3항에 규정된 증명 서류와 함께 전시회가 개최된 국가의 관세 당국이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3. 제1항은 전시 동안 상품이 세관의 통제하에 있는, 외국 상품의 판매를 위한 무역이나 농업 또는 공예품 전시회, 박람회나 이와 유사한 전시, 또는 상점이나 사업장에서의 진열에 적용된다.

규칙 19

제3자 송장

1. 수출자 외의 회사가 발행한 송장을 통한 특혜관세대우 신청은 상품이 제4장의 요건을 충족하는 한 수락된다.

2. 제1항의 목적상, 상품의 수출자는 “제3자 송장”이라 기재하고, 송장을 발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가와 같은 정보가 원산지 증명에 표시된다.

규칙 20
세관 접촉선

1. 각 당사국은 이 부속서와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접촉선을 지정한다.
2. 당사국의 접촉선이 제4장으로부터 발생하는 사안을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에 제기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그 사안을 검토하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검토 결과 및 그 사안의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안할 자국의 전문가를 선임한다.
3. 접촉선은 제4장에 따라 제기되는 사안을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부록 4-가-1

원산지 증명서

원본(제2사본/제3사본)

1. 송하인(수출자의 상호, 주소 및 국가) 2. 수하인(수입자의 이름, 주소 및 국가)			참조번호 한국-필리핀 자유무역 특혜관세 원산지 증명서 (원산지 신고 및 증명 비용) 한국-필리핀 양식 발행국 _____ (국가) (뒷면의 주해 참조)		
3. 운송수단 및 경로(아는 범위까지 기재합니다) 출항일: 선명/편명 등: 하역항:			4. 담당자란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10px;" type="checkbox"/>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에 따라 부여되는 특혜대우 <input style="width: 30px; height: 20px; border: 1px solid black; margin-right: 10px;" type="checkbox"/> 특혜대우 비부여(사유를 기재합니다) 수입국의 서명권자의 서명		
5. 품목번호	6. 포장의 표시 및 번호	7. 포장의 수량 및 종류, 상품명(적절한 경우, 수량 기재 및 6단위 HS번호를 포함합니다)	8. 원산지 기준 (뒷면의 주해 참조)	9. 총중량 또는 그 밖의 수량 및 가격(RVC 기준이 사용된 경우에만 FOB를 기재합니다)	10. 송장 번호 및 날짜
11. 수출자 신고 아래의 서명자는 위의 세부사항과 기재된 내용이 사실이고 모든 상품은 다음 국가에서 생산되었으며, (국가) 다음 국가로 수출되는 상품에 대하여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특혜관세의 이러한 상품에 대하여 규정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수입국) 장소 및 날짜, 서명권자의 서명			12. 증명 수행한 검사를 기초로 수출자의 신고가 사실임을 증명합니다. 장소 및 날짜, 서명 및 증명기관의 관인		
13. ☐ 제3자 송장			☐ 전시		

뒷면 주해

1.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KR-PH 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목적상 이 서식을 수용하는 양 당사국은 한국과 필리핀이다.
2. 조건: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KR-PH FTA)에 따른 특혜관세의 혜택을 향유하기 위하여, 위에 명시된 양 당사국에 송부된 상품은
 - 1) 목적지 국가에서 양허를 받을 자격이 있는 상품명에 해당되어야 한다.
 - 2)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KR-PH FTA) 제4장 제4.15조에 따라 운송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그리고
 - 3)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KR-PH FTA) 제4장의 원산지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3. 원산지 기준: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는 상품의 경우,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충족한 원산지 기준을 이 서식의 제8란에 다음의 표와 같은 방식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 서식의 제11란에 국가명이 기재된 첫 번째 국가의 생산 또는 제조 환경	제8란에 기입
가. 수출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된 상품	“WO”
나.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KR-PH FTA) 제4.4조제1항을 충족하는 상품	“RVC 40 또는 CTH”
다.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세번변경 RVC	“CTC”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RVC” : 예를

[RVC+세번변경] 특정 공정	들어, “RVC 45퍼센트” [원산지 상품의 자격을 갖추기 위하여 충족될 필요가 있는 결합 규정: 예를 들어, “CTH + RVC 40”] “특정 공정”
라. 양 당사국의 원산지 재료로만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PE”

4. 각 품목이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탁송물의 모든 상품은 각각 개별적으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이는 다른 크기의 유사한 품목 또는 예비부품을 송부하는 때 특히 관련이 있다.
5. 상품명: 제7란의 상품명은 그 상품을 검사하는 세관 공무원이 그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충분히 상세해야 한다. 상표도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한다.
6. 본선인도가격(FOB): 상품의 원산지를 결정 시 RVC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제9란에 본선인도가격(FOB)을 반영한다.
7.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번호: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번호는 수입 당사국의 번호를 말한다.
8. 수출자: 제1란과 제11란의 수출자는 제조업자 또는 생산자를 포함할 수 있다.
9. 담당자란: 수입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특혜관세의 부여 여부를 제4란의 해당 상자에 체크(√)로 표시해야 한다.
10. 제3자 송장: 제3자가 송장을 발급하는 경우, “제3자 송장”란에 체크(√)를 표시해야 할 것이고 송장을 발급하는 회사의 명칭 및 국가와 같은 정보가 제13란에 기재

된다.

11. 전시: 상품이 다른 국가에서의 전시를 위하여 수출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송부되고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의 수입을 위하여 전시 도중 또는 후에 판매된 경우, 부속서 4-가의 규칙 18에 따라, 제13란의 “전시”에 체크(√)를 표시하고 그 전시의 이름과 주소를 제2란에 기재해야 할 것이다.

부록 4-가-2
원산지 신고서

예시 가

원산지 신고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는 상품과 관련된 상업 송장이나 그 밖의 서류에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다.

본인_____ [이름 및 직위를 표기한다]은 [수출자/생산자/생산자 및 수출자] (해당되는 것만 삽입한다)로서 이 상업 송장에 열거되어 있는 상품은 [한국/필리핀] (해당되는 것만 삽입한다)이 원산지이며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제4장 (원산지 규정)의 규정을 준수함을 신고합니다.

특이사항/비고:

인증번호_____서명 _____날짜: _____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

원산지 신고서는 영어로 작성되고, 신고 대상 상품 관련 수출 송장에 이미 다음의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신고서의 “특이사항/비고” 란에 그러한 정보를 포함한다.

- 가. 상품의 수입자
- 나. 상품의 수출자(생산자와 다른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상품의 생산자(알고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6단위 세번 및 상품명
- 마. 상품이 충족하는 원산지 규정
- 바. 원산지 신고일, 그리고
- 사. 규칙 9(원산지 신고서)에 규정된 대로 발급되는 포괄신고서의 경우, 그 원산지 신고서가 포괄하는 기간

예시 나

원산지 신고서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1. 수출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인증번호:		2. 포괄증명기간: 연 월 일 연 월 일 _ _ _ _ / _ _ / _ _ 부터 _ _ _ _ / _ _ / _ _ / 까지					
3. 생산자의 이름 및 주소(알고 있는 경우):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4. 수입자의 이름 및 주소: 전화번호: 팩스: 이메일:					
5. 상품명	6. HS 세번	7. 원산지 기준	8. 생산자	9. RVC	10. 원산지 국가		
11. 특이사항/비고: 본인은 다음을 확인합니다. - 이 서류상 정보는 사실이고 정확하며, 본인이 그러한 진술을 증명할 책임을 부담합니다. 본인은 이 서류상 또는 이 서류와 관련한 모든 허위진술이나 중대한 누락사항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이해합니다. - 본인은 이 신고서를 입증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유지하고, 요청에 따라 제공할 것에 동의하며, 이 신고서를 받은 모든 인에게 이 신고서의 정확성이나 유효성에 영향을 미칠 모든 변경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할 것에 동의합니다. - 이 상품은 한쪽 당사국의 영역을 원산지로 하며 해당 상품에 대하여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에 명시된 원산지 요건을 준수합니다. 이 신고서는 모든 첨부물을 포함하여 _____ 쪽으로 구성됩니다.							
12. 공인된 서명:			회사:				
이름:			직위:				
연 월 일 날짜: _ _ _ _ _ _ / _ _ _ _ _ _ / _ _ _ _ _ _			전화번호: 팩스:				

원산지 신고서 작성을 위한 지침

수출자 또는 생산자가 원산지 신고서에 대하여 신고 방식을 사용하기로 선택하는 경우, 다음의 지침이 서식을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혜관세대우를 획득하기 위한 목적상, 이 서류는 수출자가 수기 또는 타자 형식으로 읽기 쉽게 빠짐없이 작성하고, 수입자는 신고 시에 소지한다. 이 서류는 또한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자발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추가 기재가 필요한 경우, 별지를 사용한다.

제1란: 수출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 주소, 인증번호를 기재한다.

제2란: 신고서가 최대 12개월(포괄증명기간)까지의 특정 기간 동안 한국 또는 필리핀으로 수입되는 제5란에 기술된 동일 상품의 복수선적에 적용되는 경우, 이 란을 작성한다. “부터”는 신고서가 포괄신고의 적용을 받는 상품에 적용 가능하게 되는 날이다(이 날은 이 신고서가 서명된 날보다 빠를 수 있다). “까지”는 포괄증명기간이 만료되는 날이다.

제3란: 생산자가 한 명인 경우, 제1란에 정의된 대로 그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둘 이상의 생산자가 신고서에 포함되는 경우, “다수”로 기재하고, 제5란에 기술된 상품과 상호 참조된 모든 생산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포함하여 모든 생산자의 목록을 첨부한다. 제공된 정보가 비밀인 경우, “요청에 따라 세관에 제공 가능”이라는 문구가 기재된다.

제4란: 수입자의 법적 이름, 주소(도시 및 국가를 포함한다),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 주소를 기재한다.

제5란: 상품의 품명을 제공한다. 그 품명은 그 상품에 대한 송장의 품명과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의 품명과 일치하는 충분한 세부사항을 포함한다. 신고서가 상품의 단일선적에 적용되는 경우, 가능한 경우 일련번호를 포함하여, 상품의 수량과 측정 단위,

그리고 상업 송장에 표시된 송장 번호를 기재한다. 송장 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 선적 주문번호, 구매주문번호 또는 상품을 식별하는 데 사용될 수 있는 그 밖의 번호와 같은 다른 고유 참조번호를 기재한다.

제6란: 제5란에 기술된 상품에 대하여, HS 세번 6단위까지 기재한다.

제7란: 제5란에 기술된 상품에 대하여, 아래에 규정된 가부터 다까지의 적용 가능한 기준을 기재한다.

특혜관세대우 자격을 부여받기 위하여, 상품은 한국-필리핀 자유무역협정 제4.2조(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기준 중 최소 하나를 충족해야 한다.

가. 제4.2조가호에 언급된 대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나. 제4.2조나호에 언급된 대로,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되고 부속서 4-나(품목별 원산지 규정)에 규정된 세부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상품

다. 제4.2조다호에 언급된 대로, 원산지 재료로만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

제8란: 제5란에 기술된 상품에 대하여,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인 경우, “예”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수출자가 그 상품의 생산자가 아닌 경우, “아니오”라는 문구를 기재하고 이 신고서가 다음 중 어느 것에 기초하는지에 따라 (1), (2) 또는 (3)을 기재한다: (1)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수출자의 완전한 인지, (2)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갖추었다는 생산자의 서면 진술(원산지 신고서 외)에 대한 수출자의 신뢰, 또는 (3) 생산자가 수출자에게 자발적으로 제공한, 그 상품에 관하여 작성되고 서명된 원산지 신고서

제9란: 제5란에 기술된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역내가치포함기준(RVC) 요건의 적용을 받는 경우, 제4.4조에 규정된 대로 RVC가 공제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D”

를, 또는 집적법에 따라 계산된 경우에는 “BU” 를 기재한다.

제10란: 원산지 국가의 이름을 기재한다. 즉,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KR” 를, 한국으로 수출되는 모든 원산지 상품에 대하여 “PH” 를 기재한다.

제11란: 이 란은 제5란에 기술된 상품이 품목분류 또는 재료 가치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판정을 받는 경우와 같이, 이 신고서에 관하여 특이사항/비고가 있는 경우 사용될 수 있다. 발급 당국 및 발급일이 기재된다.

제12란: 이 란은 수출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수출자의 사용을 위하여 생산자가 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 생산자가 작성 및 서명하고 날짜를 기재한다. 기재될 날짜는 신고서가 작성되고 서명된 날짜이다.

부속서 4-나
품목별 원산지 규정

두주

1. 특정 소호에 적용되는 품목별 원산지 규정(PSR) 또는 특정 원산지 규정들은 상품의 품목명 바로 옆에 규정된다.
2.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선택 기준(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기준들 중 하나를 충족하면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3. 소호가 품목별 원산지 규정상 결합 기준(예: 2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의 대상이 되는 경우, 상품이 기준들 모두를 충족하면 품목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것으로 여겨질 것이다.
4.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수반할 경우,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각각의 비원산지 재료는 적용 가능한 세번변경을 거치도록 요구된다.
5. 품목별 원산지 규정이 세번변경기준을 수반하고 류, 호 또는 소호 내에서 특정 제외를 명시한 경우, 상품이 원산지 상품으로서 자격을 인정받기 위하여 그 제외된 류, 호 또는 소호에 분류된 재료가 원산지 재료여야 한다는 것으로 양해된다.
6. 이 부속서의 목적상,

류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2단위를 말한다.

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4단위를 말한다. 그리고

소호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에 따른 세번에서 처음 6단위를 말한다.

7. 이 부속서 원산지 부여 기준 열의 목적상,

2단위 세번변경기준(CC)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2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CT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4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CTSH)이란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6단위 수준에서 세번변경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XX 퍼센트 이상일 것(RVC XX)이란 제4.4조에 따라 계산된 상품의 역내가치포함비율(RVC)이 XX퍼센트 이상이어야 함을 말한다. 그리고

완전생산기준(WO)이란 상품이 제4.3조에 따라 완전하게 획득되거나 생산되어야 함을 말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제1부 살아 있는 동물 및 동물성 생산품				
01			살아 있는 동물	
	01.01		살아 있는 말 · 당나귀 · 노새 · 버새	
		0101.2	- 말	
		0101.21	--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1.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1.30	- 당나귀	완전생산기준
		0101.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		살아 있는 소	
		0102.2	- 축우(畜牛)	
		0102.21	--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2.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3	- 버팔로	
		0102.31	--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2.3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2.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3		살아 있는 돼지	
		0103.10	- 번식용	완전생산기준
		0103.9	- 기타	
		0103.91	-- 중량이 50킬로그램 미만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3.92	-- 중량이 50킬로그램 이상인 것	완전생산기준
	01.04		살아 있는 면양과 산양	
		0104.10	- 면양	완전생산기준
		0104.20	- 산양	완전생산기준
	01.05		살아 있는 가금(家禽)류[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 오리 · 거위 · 칠면조 · 기니 아새로 한정한다]	
		0105.1	- 중량이 185그램 이하인 것	
		0105.1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12	-- 칠면조	완전생산기준
		0105.13	-- 오리	완전생산기준
		0105.14	-- 거위	완전생산기준
		0105.15	-- 기니아새	완전생산기준
		0105.9	- 기타	
		0105.94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105.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		그 밖의 살아 있는 동물	
		0106.1	- 포유동물	
		0106.11	-- 영장류	완전생산기준
		0106.12	-- 고래 · 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 바다사자 · 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	완전생산기준
		0106.13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의 동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카멜리대(Camelidae)과]	
		0106.14	-- 토끼	완전생산기준
		0106.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20	- 파충류(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	- 조류	
		0106.31	-- 앵금류	완전생산기준
		0106.32	--앵무류[패럿류(parrots)·패러키투류(parakeets)·금강앵무류·유황앵무류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106.33	-- 타조와 에뮤(emu)[드로마이어스노배홀란드애(Dromaius novaehollandiae)]	완전생산기준
		0106.3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4	- 곤충류	
		0106.41	-- 벌	완전생산기준
		0106.4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106.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2			육과 식용 설육(脛肉)	
	02.01		쇠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1.1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1.2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1.30	-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2		쇠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2.10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2.20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2.30	-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3		돼지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3.1	- 신선한 것이거나 냉장한 것	
		0203.1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3.12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3.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3.2	- 냉동한 것	
		0203.2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3.22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3.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4		면양과 산양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1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4.2	- 그 밖의 면양의 고기(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2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4.22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4.23	--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204.30	- 어린 면양의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4.4	- 그 밖의 면양의 고기(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4.41	-- 도체(屠體)와 이분도체(二分屠體)	완전생산기준
		0204.42	-- 그 밖의 것으로서 뼈째로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04.43	-- 뼈 없는 것	완전생산기준
		0204.50	- 산양의 고기	완전생산기준
	02.05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5.00	- 말·당나귀·노새·버새의 고기(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6		소·돼지·면양·산양·말·당나귀·노새·버새의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10	- 소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6.2	- 소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21	-- 혀	완전생산기준
		0206.22	-- 간	완전생산기준
		0206.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6.30	- 돼지의 것(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6.4	- 돼지의 것(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6.41	-- 간	완전생산기준
		0206.4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6.80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6.90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		제0105호의 가금(家禽)류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7.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0207.11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12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13	--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14	--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	- 칠면조의 것	
		0207.24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207.25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6	-- 절단육과 설육(屑肉)(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27	-- 절단육과 설육(屑肉)(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	- 오리 의 것	
		0207.41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2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3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4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45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	- 거위 의 것	
		0207.51	-- 절단하지 않은 육(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2	-- 절단하지 않은 육(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3	-- 지방간(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4	-- 기타(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55	-- 기타(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07.60	- 기니아새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		그 밖의 육과 식용 설육(屑肉)(신선한 것, 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8.10	- 토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30	- 영장류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40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50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208.60	- 낙타와 그 밖의 낙타과 [카멜리대(Camelidae)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8.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2.09		살코기가 없는 돼지 비계와 가금(家禽)의 비계(기름을 빼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추출하지 않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냉장하거나 냉동한 것·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209.10	- 돼지의 것	완전생산기준
		0209.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2.10		육과 식용 설육(屑肉)(염장하거나 염수장한 것·건조하거나 훈제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것으로 한정한다), 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	
		0210.1	- 돼지고기	
		0210.11	-- 넓적다리살·어깨살과 이를 절단한 것(뼈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210.12	-- 복부살과 이를 절단한 것	완전생산기준
		0210.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210.20	- 쇠고기	완전생산기준
		0210.9	- 기타[육이나 설육(屑肉)의 식용 고운 가루·거친 가루를 포함한다]	
		0210.91	-- 영장류의 것	완전생산기준
		0210.92	-- 고래·돌고래류(고래목의 포유동물), 바다소(바다소목의 포유동물), 물개· 바다사자·바다코끼리(기각아목의 포유동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210.93	-- 파충류의 것(뱀과 거북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210.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			어류·갑각류·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03.01		활어	
		0301.1	- 관상용	
		0301.11	-- 민물의 것	완전생산기준
		0301.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1.9	- 그 밖의 활어	
		0301.91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웅코링쿠스 클라키 (Oncorhynchus clarki)·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웅코링쿠스 길래 (Oncorhynchus gilae)·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1.92	--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완전생산기준
		0301.93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 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 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 (Osteochilus hasselti)·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 (Megalobrama)종]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301.94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 [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완전생산기준
		0301.95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Thunnus maccoyii)]	완전생산기준
		0301.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		신선하거나 냉장한 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2.1	- 연어과.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11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 (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 (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Oncorhynchus chrysogaster)]	완전생산기준
		0302.13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 (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 (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 (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완전생산기준
		0302.14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2.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2	- 넙치류[플루로벡티대 (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 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코프탈미대 (Scophthalmidae)과 · 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21	-- 넙치[레인하르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0302.22	--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 (Pleuronectes platessa)]	완전생산기준
		0302.23	-- 서대[솔레아(Solea)종]	완전생산기준
		0302.24	--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완전생산기준
		0302.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3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 [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pelamis)].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31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 [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완전생산기준
		0302.32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 (Thunnus albacares)]	완전생산기준
		0302.33	--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	완전생산기준
		0302.34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완전생산기준
		0302.35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 (Thunnus orientalis)]	완전생산기준
		0302.36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 (Thunnus maccoyii)]	완전생산기준
		0302.3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4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우리스 (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 (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 (Indian mackerels) [라스트헬리거 (Rastrelliger)종], 삼치[스콤버로모루스 (Scomberomorus)종], 전갱이 [트라커러스(Trachurus)종],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종],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i>Rachycentron canadum</i>)], 병어[팜푸스(<i>Pampus</i>)종], 콩치 [콜로라비스 사이라(<i>Cololabis saira</i>)], 가라지[데캅테러스(<i>Decapterus</i>)종],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i>Mallotus villosus</i>)],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점다랑어[유티너스 아피니스(<i>Euthynnus affinis</i>)], 버니토 [사르다(<i>Sarda</i>)종],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이스티오포리대(<i>Istiophoridae</i>)] .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41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i>Clupea harengus</i>) · 클루페아 팔라시(<i>Clupea pallasii</i>)]	완전생산기준
		0302.42	-- 멸치[엔그라울리스(<i>Engraulis</i>)종]	완전생산기준
		0302.43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i>Sardina pilchardus</i>) · 사르디노프스(<i>Sardinops</i>)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i>Sardinella</i>)종], 브리스링(<i>brisling</i>)이나 스프랫(<i>sprats</i>)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i>Sprattus sprattus</i>)]	완전생산기준
		0302.44	--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i>Scomber scombrus</i>)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i>Scomber australasicus</i>) · 스콤버 자포니쿠스(<i>Scomber japonicus</i>)]	완전생산기준
		0302.45	-- 전갱이[트라커러스(<i>Trachurus</i>)종]	완전생산기준
		0302.46	-- 날쌔기[라키센트론 카나둠(<i>Rachycentron canadum</i>)]	완전생산기준
		0302.47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i>Xiphias gladius</i>)]	완전생산기준
		0302.4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5	-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과 · 유클리티대(<i>Euclichthyidae</i>)과 · 가디대(<i>Gadidae</i>)과 · 마크로우리대(<i>Macrouridae</i>)과 · 멜라노니대(<i>Melanonidae</i>)과 · 메르루치대(<i>Merlucciidae</i>)과 · 모리대(<i>Moridae</i>)과 · 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과의 어류.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51	--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302.52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i>Melanogrammus aeglefinus</i>)]	완전생산기준
		0302.53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i>Pollachius virens</i>)]	완전생산기준
		0302.54	-- 민대구[메루키우스(<i>Merluccius</i>)종 · 유르피키스(<i>Urophycis</i>)종]	완전생산기준
		0302.55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i>Theragra chalcogramma</i>)]	완전생산기준
		0302.56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 (<i>Micromesistius poutassou</i>)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i>Micromesistius australis</i>)]	완전생산기준
		0302.5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7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i>Oreochromis</i>)종], 메기[판가시우스 (<i>Pangasius</i>)종 · 실루러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i>Clarias</i>)종 · 익타루러스(<i>Ictalurus</i>)종],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 종 · 카라시우스(<i>Carassius</i>)종 · 크테노 파린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i> <i>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i>Hypophthalmichthys</i>)종 · 시리누스(<i>Cirrhinus</i>)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 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 (<i>Osteochilus hasselti</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종], 뱀장어[앙귤라(<i>Anguilla</i>)종], 나일 퍼치 [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종].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脬肉)은 제외한다.	
		0302.7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i>Oreochromis</i>)종]	완전생산기준
		0302.72	--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종 · 실루러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i>Clarias</i>) 종 · 익타루러스(<i>Ictalurus</i>)종]	완전생산기준
		0302.73	-- 잉어[사이프리너스(<i>Cyprinus</i>)종 · 카라시우스(<i>Carassius</i>)종 · 크테노파린 고돈 이델루스(<i>Ctenopharyngodon</i> <i>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i>Hypophthalmichthys</i>)종 · 시리누스 (<i>Cirrhinus</i>)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 스(<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 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 (<i>Labeo</i>)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 로브라마(Megalobrama)종]	
		0302.74	-- 뱀장어[앙굴라(Anguilla)종]	완전생산기준
		0302.7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8	- 그 밖의 어류. 다만, 제0302.91호부터 제0302.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2.81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2.82	-- 가오리와 흥어[라지대(Raj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2.83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 (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2.84	-- 농어[디센트라쿠스 (Dicentrar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2.85	-- 돔[스파리대(Spar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2.8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2.9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 어류의 지느러미 · 머리 · 꼬리 · 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2.91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완전생산기준
		0302.92	-- 상어 지느러미	완전생산기준
		0302.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		냉동어류[제0304호의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은 제외한다]	
		0303.1	- 연어과.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11	-- 소크아이 연어[홍연어(red salmon)] [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	완전생산기준
		0303.12	-- 그 밖의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 (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 (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완전생산기준
		0303.13	--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와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3.14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 (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Oncorhynchus gilae) · 옹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옹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Oncorhynchus chrysogaster)]	
		0303.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2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 (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 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 (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 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2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종]	완전생산기준
		0303.24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 종 · 익타루러스(Ictal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3.25	--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 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 (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완전생산기준
		0303.26	--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완전생산기준
		0303.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3	- 넙치류[플루로벡티대 (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솔레이대(Soleidae)과 · 스코프탈미대(Scophthalmidae)과 · 시타리대(Citharidae)과].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31	-- 넙치[레인하르티우스 히포글러소이데스(Reinhardtius hippoglossoides) · 히포글러서스 히포글러서스(Hippoglossus hippoglossus) · 히포글러서스 스테노레피스(Hippoglossus stenolepis)]	완전생산기준
		0303.32	-- 가자미[플루로벡테스 플라테사(Pleuronectes platessa)]	완전생산기준
		0303.33	-- 서대[솔레아(Solea)종]	완전생산기준
		0303.34	-- 터벗(turbots)[프세타 맥시마(Psetta maxima)]	완전생산기준
		0303.3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4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 [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Katsuwonus) pelamis)].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41	-- 날개다랑어나 긴지느러미 다랑어 [터너스 알라롱가(Thunnus alalunga)]	완전생산기준
		0303.42	-- 황다랑어[터너스 알바카레스(Thunnus albacares)]	완전생산기준
		0303.43	--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	완전생산기준
		0303.44	-- 눈다랑어[터너스 오베서스(Thunnus obesus)]	완전생산기준
		0303.45	-- 대서양 참다랑어와 태평양 참다랑어[터너스 티너스(Thunnus thynnus) · 터너스 오리엔탈리스(Thunnus orientalis)]	완전생산기준
		0303.46	-- 남방 참다랑어[터너스 맥코이(Thunnus maccoyii)]	완전생산기준
		0303.4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5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우리스(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Scomber scombrus) · 스콧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콧 자포니쿠스 (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 (Indian mackerels) [라스트렐리거 (Rastrelliger)종], 삼치[스콧로모러스 (Scomberomorus)종], 전갱이 [트라커러스(Trachurus)종],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종],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 (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종],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 [데캅테러스(Decapterus)종], 열빙어[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 [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종], 새치류, 돔새치, 청새치 [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51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3.53	--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 (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랫(sprats)[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완전생산기준
		0303.54	-- 고등어[스콧 스콧루스 (Scomber scombrus) · 스콧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콧 자포니쿠스 (Scomber japonicus)]	완전생산기준
		0303.55	-- 전갱이[트라커러스(Trachurus)종]	완전생산기준
		0303.56	--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둠 (Rachycentron canadum)]	완전생산기준
		0303.57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3.5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6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 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 (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 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63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완전생산기준
		0303.64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Melanogrammus aeglefinus)]	완전생산기준
		0303.65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Pollachius virens)]	완전생산기준
		0303.66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 · 유르피키스(Urophycis)종]	완전생산기준
		0303.67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3.68	-- 블루 화이팅스(blue whittings)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포우타소우 (Micromesistius poutassou) · 마이크로메시스티우스 오스트랄리스 (Micromesistius australis)]	완전생산기준
		0303.6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8	- 그 밖의 어류. 다만, 제0303.91호부터 제0303.99호까지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3.81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3.82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3.83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 (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3.84	-- 농어[디센트라르쿠스 (Dicentrar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3.8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3.9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 어류의 지느러미 · 머리 · 꼬리 · 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3.91	-- 간 · 어란(魚卵) · 어백(魚白)	완전생산기준
		0303.92	-- 상어 지느러미	완전생산기준
		0303.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4		어류의 필레(fillet)와 그 밖의 어육(잘게 썰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 · 냉동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4.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 (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 종],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 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 (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 (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 (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 [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0304.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종]	완전생산기준
		0304.32	--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 · 실루루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 (Clarias)종 · 익타루루스(Ictalurus)종]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33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완전생산기준
		0304.3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4.4	- 그 밖의 어류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필레(fillet)	
		0304.41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 (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 (Oncorhynchus ts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 (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4.42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 (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 (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게(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Oncorhynchus chrysogaster)]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43	-- 넙치류[플루로벡티대 (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코프탈미대 (Scophthalmidae)과 · 시타리대 (Citharidae)과]	
		0304.44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 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 (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 (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완전생산기준
		0304.45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4.46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 (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4.47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4.48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4.4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4.5	- 그 밖의 신선하거나 냉장한 것	
		0304.51	-- 킬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 (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alurus) 종],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 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 (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렙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완전생산기준
		0304.52	-- 연어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53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 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 (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 (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304.54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i>Xiphias gladius</i>)]	완전생산기준
		0304.5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 (<i>Dissostichus</i>)종]	완전생산기준
		0304.56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4.57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i>Rajidae</i>)과]	완전생산기준
		0304.5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6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i>Oreochromis</i>)종], 메기[판가시우스 (<i>Pangasius</i>)종 · 실루러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i>Clarias</i>)종 · 익타루러스 (<i>Ictalurus</i>)종], 잉어[사이프리너스 (<i>Cyprinus</i>)종 · 카라시우스(<i>Carassius</i>) 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i>Ctenopharyngodon idellus</i>)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i>Hypophthalmichthys</i>)종 · 시리누스 (<i>Cirrhinus</i>)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 (<i>Mylopharyngodon piceus</i>) · 카틀라 카틀라(<i>Catla catla</i>) · 라베오(<i>Labeo</i>) 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 (<i>Osteochilus hasselti</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i>Leptobarbus hoeveni</i>) · 메갈로브라마(<i>Megalobrama</i>)종], 뱀장어[앙귤라(<i>Anguilla</i>)종], 나일 퍼치 [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가물치[카나(<i>Channa</i>)종]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6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i>Oreochromis</i>)종]	완전생산기준
		0304.62	-- 메기[판가시우스(<i>Pangasius</i>)종 · 실루러스(<i>Silurus</i>)종 · 클라리아스 (<i>Clarias</i>)종 · 익타루러스(<i>Ictalurus</i>)종]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63	--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i>Lates niloticus</i>)]	완전생산기준
		0304.6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4.7	- 브레그마세로티대(<i>Bregmacerotidae</i>) 과 · 유클리티대(<i>Euclichthyidae</i>)과 · 가디대(<i>Gadidae</i>)과 · 마크로우리대 (<i>Macrouridae</i>)과 · 멜라노니대 (<i>Melanonidae</i>)과 · 메르루치대 (<i>Merlucciidae</i>)과 · 모리대(<i>Moridae</i>)과 · 무라에놀레피디대(<i>Muraenolepididae</i>)과 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71	-- 대구[가두스 모르화(<i>Gadus morhua</i>) · 가두스 오각(<i>Gadus ogac</i>)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i>Gadus macrocephalus</i>)]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72	-- 해덕[멜라노그라무스 애그레피누스 (<i>Melanogrammus aeglefinus</i>)]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304.73	-- 검정대구[폴라치우스 비렌스 (Pollachius virens)]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74	-- 민대구[메루키우스(Merluccius)종 · 유르피키스(Urophycis)종]	완전생산기준
		0304.75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4.7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4.8	- 그 밖의 어류의 냉동한 필레(fillet)	
		0304.81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 (Oncorhynchus nerka) · 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 · 웅코링쿠스 케타 (Oncorhynchus keta) · 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chawytscha) · 웅코링쿠스 키수츠 (Oncorhynchus kisutch) · 웅코링쿠스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Hucho hucho)]	완전생산기준
		0304.82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 (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가스터 (Oncorhynchus chrysogaster)]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4.83	-- 넙치류[플루로벡티대 (Pleuronectidae)과 · 바디대(Bothidae) 과 · 사이노글로시대(Cynoglossidae)과 · 솔레이대(Soleidae)과 · 스킵탈미대 (Scophthalmidae)과 · 시타리대 (Cithar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4.84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4.85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 (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4.86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4.87	-- 다랑어[터너스(Thunnus)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 가다랑어 · 줄무늬 버니토[유티너스(카추워누스) 펠라미스(Euthynnus (Katsuwonus)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pelamis]]	
		0304.88	-- 곱상어, 그 밖의 상어,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4.8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4.9	- 그 밖의 냉동한 것	
		0304.91	--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 (Xiphias gladius)]	완전생산기준
		0304.92	-- 이빨고기[디소스티쿠스 (Dissostichus)종]	완전생산기준
		0304.93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 (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루스 (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 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 (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굴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완전생산기준
		0304.94	-- 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Theragra chalcogramma)]	완전생산기준
		0304.95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 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 (Macrouridae)과 · 멜라노니대 (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 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 과의 어류[명태(테라그라 찰코그라마 (Theragra chalcogramma))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304.96	-- 곱상어와 그 밖의 상어	완전생산기준
		0304.97	-- 가오리와 홍어[라지대(Rajidae)과]	완전생산기준
		0304.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5		건조한 어류, 염장이나 염수장한 어류, 훈제한 어류(훈제과정 중이나 훈제 전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어류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한정한다)	
		0305.10	- 어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305.20	- 어류의 간·어란(魚卵)·어백(魚白)(건조한 것·훈제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305.3	- 어류의 필레(fillet)(건조하거나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으로 한정하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31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Pangasius)종·실루러스(Silurus)종·클라리아스(Clarias)종·익타루러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카라시우스(Carassius)종·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시리누스(Cirrhinus)종·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라베오(Labeo)종·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굴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완전생산기준
		0305.32	--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가디대(Gadidae)과·마크로우리대(Macrouroidae)과·멜라노니대(Melanonidae)과·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모리대(Moridae)과·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과의 어류	완전생산기준
		0305.3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5.4	- 훈제한 어류[필레(fillet)를 포함하며, 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다]	
		0305.41	-- 태평양 연어[웅코링쿠스 넬카(Oncorhynchus nerka)·웅코링쿠스 고르부스카(Oncorhynchus gorbuscha)·웅코링쿠스 케타(Oncorhynchus keta)·웅코링쿠스 차비차(Oncorhynchus tshawytscha)·웅코링쿠스 키수츠(Oncorhynchus kisutch)·웅코링쿠스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마소(Oncorhynchus masou) · 웅코링쿠스 로두루스(Oncorhynchus rhodurus)], 대서양 연어[살모 살라 (Salmo salar)], 다뉴브 연어[후코 후코 (Hucho hucho)]	
		0305.42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5.43	-- 송어[살모 트루타(Salmo trutta) · 웅코링쿠스 미키스(Oncorhynchus mykiss) · 웅코링쿠스 클라키 (Oncorhynchus clarki) · 웅코링쿠스 아구아보니타(Oncorhynchus aguabonita) · 웅코링쿠스 길래(Oncorhynchus gilae) · 웅코링쿠스 아파케(Oncorhynchus apache) · 웅코링쿠스 크리스소가스터 (Oncorhynchus chrysogaster)]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 (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 (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 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 (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겔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4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5.5	- 건조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屑肉)은 제외한 것으로서 염장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훈제한 것은 제외한다]	
		0305.51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52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 (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루스(Ict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0305.53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이외의 브레그마세로티대(Bregmacerotidae)과 · 유클리티대(Euclichthyidae)과 · 가디대(Gadidae)과 · 마크로우리대(Macrouroidae)과 · 멜라노니대(Melanonidae)과 · 메르루치대(Merlucciidae)과 · 모리대(Moridae)과 · 무라에놀레피디대(Muraenolepididae) 과의 어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54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멸치[엔그라우리스(Engraulis)종], 정어리[사르디나 필차르두스(Sardina pilchardus) · 사르디노프스(Sardinops)종], 사르디넬라[사르디넬라(Sardinella)종], 브리스링(brisling)이나 스프렛(sprats) [스프라투스 스프라투스(Sprattus sprattus)], 고등어[스콤버 스콤브루스(Scomber scombrus) · 스콤버 오스트랄라시쿠스(Scomber australasicus) · 스콤버 자포니쿠스(Scomber japonicus)], 줄무늬 고등어(Indian mackerels)[라스트렐리거(Rastrelliger)종], 삼치[스콤버로모루스(Scomberomorus)종], 전갱이[트라커루스(Trachurus)종], 줄전갱이류[카랑크스(Caranx)종], 날새기[라키센트론 카나돔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Rachycentron canadum)], 병어 [팜푸스(Pampus)종], 꽁치[콜로라비스 사이라(Cololabis saira)], 가라지 [데캅테러스(Decapterus)종], 열빙어 [말로투스 빌로서스(Mallotus villosus)], 황새치[자이피어스 글래디어스(Xiphias gladius)], 점다랑어 [유티너스 아피니스(Euthynnus affinis)], 버니토[사르다(Sarda)종], 새치류, 돛새치, 청새치 [이스티오포리대(Istiophoridae)]	
		0305.59	-- 기타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305.6	- 건조하지도 훈제하지도 않은 염장한 어류, 염수장한 어류[식용 어류 설육(脣肉)은 제외한다]	
		0305.61	-- 청어[클루페아 하렌구스(Clupea harengus) · 클루페아 팔라시(Clupea pallasii)]	완전생산기준
		0305.62	-- 대구[가두스 모르화(Gadus morhua) · 가두스 오각(Gadus ogac) · 가두스 마크로세팔루스(Gadus macrocephalus)]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3	-- 멸치[엔그로리스(Engraulis)종]	완전생산기준
		0305.64	-- 틸라피아[오레오크로미스 (Oreochromis)종], 메기[판가시우스 (Pangasius)종 · 실루러스(Silurus)종 · 클라리아스(Clarias)종 · 익타루러스(Ict alurus)종], 잉어[사이프리너스 (Cyprinus)종 · 카라시우스(Carassius) 종 · 크테노파린고돈 이델루스 (Ctenopharyngodon idellus) · 하이포프탈미크티스 (Hypophthalmichthys)종 · 시리누스 (Cirrhinus)종 · 마일로파린고돈 피세우스(Mylopharyngodon piceus) · 카틀라 카틀라(Catla catla) · 라베오 (Labeo)종 · 오스테오킬루스 하셀티 (Osteochilus hasselti) · 렘토바르부스 호에베니(Leptobarbus hoeveni) · 메갈로브라마(Megalobrama)종], 뱀장어[앙귤라(Anguilla)종], 나일 퍼치 [라테스 니로티쿠스(Lates niloticus)], 가물치[카나(Channa)종]	2단위 세번변경기준
		0305.69	-- 기타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305.7	- 어류의 지느러미·머리·꼬리·부레와 그 밖의 식용 어류 설육(屑肉)	
		0305.71	-- 상어 지느러미	완전생산기준
		0305.72	-- 어류의 머리·꼬리·부레	완전생산기준
		0305.7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6		갑각류[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껍데기가 붙어 있는 상태로 물에 찌거나 삶은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건조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갑각류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6.1	- 냉동한 것	
		0306.1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완전생산기준
		0306.1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완전생산기준
		0306.14	-- 게	완전생산기준
		0306.15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완전생산기준
		0306.16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Crangon crangon)]	완전생산기준
		0306.17	-- 그 밖의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19	-- 기타[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306.3	-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0306.3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파누리루스(Panulirus)종·자수스(Jasus)종]	완전생산기준
		0306.3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완전생산기준
		0306.33	-- 게	완전생산기준
		0306.34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완전생산기준
		0306.35	-- 냉수성(冷水性) 새우류[판달러스(Pandalus)종·크란곤(Crangon crangon)]	완전생산기준
		0306.36	-- 그 밖의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39	-- 기타[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306.9	- 기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306.91	-- 닭새우류[팔리누루스(Palinurus)종 · 파누리루스(Panulirus)종 · 자수스 (Jasus)종]	완전생산기준
		0306.92	-- 바닷가재[호마루스(Homarus)종]	완전생산기준
		0306.93	-- 게	완전생산기준
		0306.94	-- 노르웨이 바닷가재[네프로프스 노르베지쿠스(Nephrops norvegicus)]	완전생산기준
		0306.95	-- 새우류	완전생산기준
		0306.99	-- 기타[식용에 적합한 것으로서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3.07		연체동물[껍데기가 붙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껍데기가 붙어 있는 것인지 또는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연체동물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7.1	- 굴	
		0307.1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12	-- 냉동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2	- 가리비과의 조개[펙텐(Pecten) · 클라미스(Chlamys) · 프라코펙텐 (Placopecten)속의 것으로서 여왕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0307.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22	-- 냉동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3	- 홍합[미틸루스(Mytilus)종 · 페르나 (Perna)종]	
		0307.3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32	-- 냉동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3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4	- 갑오징어와 오징어	
		0307.42	-- 살아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43	-- 냉동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4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5	- 문어[옥토퍼스(Octopus)종]	
		0307.5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52	-- 냉동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5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60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307.7	- 클램(clam), 새조개와 피조개 [아르치대(Arcidae)과 · 아르크티치대 (Arctidae)과 · 카르디치대(Cardidae)과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 도나치대(Donacidae)과 · 히아텔리대(Hiatellidae)과 · 마르크트리대(Mactridae)과 · 메소데스마티대(Mesodesmatidae)과 · 마이이대(Myidae)과 · 세멜리대(Semelidae)과 · 솔레쿠르티대(Solecurtidae)과 · 솔레니대(Solenidae)과 · 트리다크니대(Tridacnidae)과 · 베네리대(Veneridae)과]	
		0307.7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72	-- 냉동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7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7.8	-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과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0307.81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완전생산기준
		0307.82	-- 살아있거나, 신선하거나 냉장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완전생산기준
		0307.83	-- 냉동한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완전생산기준
		0307.84	-- 냉동한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완전생산기준
		0307.87	-- 그 밖의 전복[할리오티스(Haliotis)종]	완전생산기준
		0307.88	-- 그 밖의 수정고둥류[스트롬버스(Strombus)종]	완전생산기준
		0307.9	- 기타[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을 포함한다(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307.9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92	-- 냉동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7.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8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살아 있는 것과 신선한 것 · 냉장이나 냉동한 것 · 건조한 것, 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훈제한 것(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하며, 훈제 전이나 훈제과정 중에 조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생(水生) 무척추동물(갑각류와 연체동물은 제외한다)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0308.1	- 해삼[스티코푸스 자포니쿠스(Stichopus japonicus), 홀로투로이대(Holothuroidea)]	
		0308.1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8.12	-- 냉동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8.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308.2	- 성게[스트롱길로센트로투스(Strongylocentrotus)종 · 파라센트로투스 리비두스(Paracentrotus lividus) · 록세치누스 알버스(Loxechinus albus) · 에치누스 에스쿨렌투스(Echinus esculentus)]	
		0308.21	-- 살아 있는 것, 신선한 것, 냉장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8.22	-- 냉동한 것	완전생산기준
		0308.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308.30	- 해파리[로필레마(Rhopilema)종]	완전생산기준
		0308.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4			낙농품, 새의 알, 천연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01		밀크와 크림(농축하지 않은 것으로서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401.1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2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 초과 100분의 6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4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6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0401.50	-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	완전생산기준
	04.02		밀크와 크림(농축하였거나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2.10	- 가루 모양 · 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 이하인 것	완전생산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2.2	- 가루 모양 · 알갱이 모양이나 그 밖의 고체 상태인 것으로서 지방분이 전 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것	
		0402.21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2.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2.9	- 기타	
		0402.91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2.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3		버터밀크·응고밀크와 응고크림·요구르트·케피어(kephir)와 그 밖의 발효되거나 산성화된 밀크와 크림(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 또는 향·과실·견과류·코코아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3.10	- 요구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403호는 우유 원료 중 비당사국로부터 수입된 우유 원료 총중량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403호는 우유 원료 중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 원료 총중량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4		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따로 분류된 것 외의 천연밀크의 성분을 함유하는 물품(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4.10	- 유장과 변성유장(농축한 것인지 또는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4.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5		버터와 그 밖의 지방과 기름(밀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0405.10	- 버터	완전생산기준
		0405.20	- 데어리 스프레드(dairy spread)	완전생산기준
		0405.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6		치즈와 커드(curd)	
		0406.10	- 신선한(숙성되지 않은 것이나 처리하지 않은 것) 치즈(유장치즈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포함한다)와 커드(curd)	
		0406.20	- 갈았거나 가루 모양으로 한 모든 종류의 치즈	완전생산기준
		0406.30	- 가공치즈(갈았거나 가루 모양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406.30호는 우유 원료 중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우유 원료 총중량이 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406.40	- 블루바인 치즈(blue-veined cheese)와 페니실리움 로우크포티(Penicillium roqueforti)로 생산된 바인(vein)을 함유한 그 밖의 치즈	완전생산기준
		0406.90	- 그 밖의 치즈	완전생산기준
	04.07		새의 알(껍질이 붙은 것으로서 신선한 것, 보존처리하거나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407.1	- 부화용 수정란	
		0407.1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7.2	- 그 밖의 신선란	
		0407.21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으로 한정한다]의 것	완전생산기준
		0407.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7.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8		새의 알(껍질이 붙지 않은 것)과 알의 노른자위(신선한 것, 건조한 것, 물에 삶았거나 찐 것, 성형한 것, 냉동한 것이나 그 밖의 보존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0408.1	- 알의 노른자위	
		0408.11	--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8.9	- 기타	
		0408.91	--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408.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4.09		천연꿀	
		0409.00	- 천연꿀	완전생산기준
	04.10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0410.00	-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용인 동물성 생산품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5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물	
	05.01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0501.00	- 사람 머리카락(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세척이나 세정을 했는지에 상관없다)과 그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02		돼지털·멧돼지털·오소리털과 그 밖의 브러시 제조용 동물의 털과 이들의 웨이스트(waste)	
		0502.10	- 돼지털·멧돼지털과 이들의 웨이스트 (waste)	완전생산기준
		0502.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4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 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0504.00	- 동물(어류는 제외한다)의 장·방광· 위의 전체나 부분(신선한 것·냉장이나 냉동한 것·염장이나 염수장한 것· 건조한 것·훈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05		새의 깃털이나 솜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 깃털과 그 부분(가장자리를 정리했는지에 상관없다), 새의 솜털 (청정·소독·보존을 위한 처리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새의 깃털이나 그 부분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5.10	- 솜털과 충전재용 깃털	완전생산기준
		0505.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6		뼈와 혼코어(horn-core)[가공하지 않은 것, 탈지(脫脂)한 것, 단순히 정리한 것 (특정한 형상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산(酸)처리를 하거나 탈교한 (degelatinised) 것],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6.10	- 골소(骨素)와 뼈[산(酸)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06.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7		아이보리(ivory)·귀갑(龜甲)·고래수염 과 그 털·뿔(horn)·사슴뿔·발굽· 발톱·부리(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10	- 아이보리(ivory), 아이보리(ivory)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7.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5.08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0508.00	- 산호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연체동물·갑각류·극피동물의 껍데기와 오징어뼈(가공하지 않은 것과 단순히 정리한 것으로 한정하며, 특정한 모양으로 깎은 것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가루와 웨이스트(waste)	완전생산기준
	05.10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뵈(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510.00	- 용연향(ambergris)·해리향(castoreum)·시뵈(civet)과 사향, 캔대리디즈(cantharides), 쓸개즙(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의약품 제조용 선(腺)이나 그 밖의 동물성 생산품(신선한 것, 냉장·냉동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5.11		따로 분류되지 않은 동물성 생산품과 제1류나 제3류의 동물의 사체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	
		0511.10	- 소의 정액	완전생산기준
		0511.9	- 기타	
		0511.91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생산품, 제3류에 해당하는 동물의 사체	완전생산기준
		0511.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2부 식물성 생산품				
06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06.01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이거나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제1212호의 뿌리는 제외한다)	
		0601.10	-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휴면(休眠)상태인 것	완전생산기준
		0601.20	- 인경(鱗莖)·괴경(塊莖)·괴근(塊根)·구경(球莖)·관근(冠根)·근경(根莖)으로서 자라고 있거나 꽃이 피어 있는 것, 치커리·치커리 뿌리	완전생산기준
	06.02		그 밖의 살아 있는 식물(뿌리를 포함한다)·꺾꽂이용 가지·접붙임용 가지, 버섯의 종균(種菌)	
		0602.10	- 뿌리가 없는 꺾꽂이용 가지와 접붙임용 가지	완전생산기준
		0602.20	- 수목과 관목(식용 과실이나 견과류의 것으로서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30	- 철쭉과 진달래속의 식물 (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40	- 장미(접목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0602.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		절화(切花)와 꽃봉오리(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3.1	- 신선한 것	
		0603.11	-- 장미	완전생산기준
		0603.12	-- 카네이션	완전생산기준
		0603.13	-- 난	완전생산기준
		0603.14	-- 국화	완전생산기준
		0603.15	-- 백합[릴리움(Lilium)종]	완전생산기준
		0603.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3.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6.04		식물의 잎·가지와 그 밖의 부분(꽃과 꽃봉오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풀·이끼·지의(地衣)(신선한 것과 건조·염색·표백·침투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서 꽃다발용이나 장식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0604.20	-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604.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701.10	-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0701.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2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2.00	- 토마토(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10	- 양파와 쪽파	완전생산기준
		0703.20	- 마늘	완전생산기준
		0703.90	- 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07.04		양배추·꽃양배추·구경(球莖)양배추·케일(kale)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배추속(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4.10	- 꽃양배추와 결구(結球) 브로콜리(broccoli)	완전생산기준
		0704.20	- 방울다다기 양배추	완전생산기준
		0704.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		상추[락투카 사티바(Lactuca sativa)]와 치커리(chicory)[시커리엄(Cichorium)종](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5.1	- 상추	
		0705.11	-- 결구(結球) 상추	완전생산기준
		0705.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5.2	- 치커리(chicory)	
		0705.21	-- 위트루프 치커리(Witloof chicory) [시코리엄 인티부스 변종 포리오섬(Cichorium intybus var. foliosum)]	완전생산기준
		0705.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6		당근·순무·셀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6.10	- 당근과 순무	완전생산기준
		0706.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7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7.00	- 오이류(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7.08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이 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8.1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08.20	- 콩[비그나(Vigna)종·파세러스(Phaseolus)종]	완전생산기준
		0708.90	- 그 밖의 채두류(菜豆類)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7.09		그 밖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9.2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완전생산기준
		0709.30	- 가지(에그플랜트)	완전생산기준
		0709.40	- 셀러리(celery)[셀러리액(celeriac)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0709.5	- 버섯과 송로(松露)	
		0709.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09.5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09.60	- 고추류[캡시쿰(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완전생산기준
		0709.70	-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0709.9	- 기타	
		0709.91	-- 글로브 아티초크(globe artichoke)	완전생산기준
		0709.92	-- 올리브	완전생산기준
		0709.93	-- 호박류[쿠쿠르비타(Cucurbita)종]	완전생산기준
		0709.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찌서 조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710.10	- 감자	완전생산기준
		0710.2	-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0710.21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10.22	--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완전생산기준
		0710.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0.30	- 시금치류	완전생산기준
		0710.40	- 스위트콘	완전생산기준
		0710.80	- 그 밖의 채소	완전생산기준
		0710.90	-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1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 · 염수 · 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711.20	- 올리브	완전생산기준
		0711.40	- 오이류	완전생산기준
		0711.5	- 버섯과 송로(松露)	
		0711.5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11.5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1.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2		건조한 채소(원래 모양인 것, 절단한 것, 얇게 썬 것, 부순 것,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며, 더 이상 조제한 것은 제외한다)	
		0712.20	- 양파	완전생산기준
		0712.3	- 버섯,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송로(松露)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712.31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완전생산기준
		0712.32	-- 목이버섯[오리쿨라리아(Auricularia)종]	완전생산기준
		0712.33	-- 젤리균류[트레멜라(Tremella)종]	완전생산기준
		0712.3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2.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류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7.13		건조한 채두류(菜豆類)(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쪄낸 것인지에 상관없다)	
		0713.1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완전생산기준
		0713.20	- 이집트 콩[가반조스(garbanzos)]	완전생산기준
		0713.3	-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0713.31	-- 녹두[비그나 멍고(엘) 헤파(Vigna mungo (L) Hepper)종 · 비그나 라디에이타(엘) 윌크젝(Vigna radiata (L) Wilczek)종]	완전생산기준
		0713.32	-- 팥[아주기(Adzuki)][파세러스(Phaseolus) · 비그나 앵구라리스(Vigna angularis)]	완전생산기준
		0713.33	-- 강낭콩(흰 완두콩을 포함한다) [파세러스 불가리스(Phaseolus vulgaris)]	완전생산기준
		0713.34	-- 밤바라콩[비그나 서브터라니아(Vigna subterranea) · 보안드제이아 서브터라니아(Voandzeia subterranea)]	완전생산기준
		0713.35	-- 동부콩[비그나 운구이쿨라타(Vigna unguiculata)]	완전생산기준
		0713.3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3.40	- 렌즈콩	완전생산기준
		0713.50	-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메이저(Vicia faba var. major)]과 말먹이용 누에콩[비시아 파바 변종 에퀴나(Vicia faba var. equina) · 비시아 파바 변종 마이너(Vicia faba var. minor)]	완전생산기준
		0713.60	- 비둘기콩[카자누스 카잔(Cajanus cajan)]	완전생산기준
		0713.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7.14		매니옥(manioc) · 칩뿌리 · 살렘(salep) · 돼지감자(Jerusalem artichoke) · 고구마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분이나 이눌린(inulin)을 다량 함유한 뿌리 · 괴경(塊莖)[자른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신선한 것, 냉장 · 냉동한 것,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사고야자(sago)의 심(pith)	
		0714.10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714.20	- 고구마	완전생산기준
		0714.30	- 양[디오스코레아(Dioscorea)종]	완전생산기준
		0714.40	- 토란[콜로카시아(Colocasia)종]	완전생산기준
		0714.50	- 아메리카 토란[크산토소마(Xanthosoma)종]	완전생산기준
		0714.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08.01		코코넛·브라질너트·캐슈너트(cashew nut)(신선한 것이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1.1	- 코코넛	
		0801.11	-- 말린 것	완전생산기준
		0801.12	-- 내피[내과피(內果皮)]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1.2	- 브라질너트	
		0801.2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22	--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1.3	- 캐슈너트(cashew nut)	
		0801.3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1.32	--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		그 밖의 견과류(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껍데기나 껍질을 벗겼는지에 상관없다)	
		0802.1	- 아몬드	
		0802.1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12	--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2	- 헤즐너트(hazelnut)나 필버트(filbert) [코리루스(Corylus)종]	
		0802.2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22	--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3	- 호두	
		0802.3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32	--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4	- 밤[카스타네아(Castanea)종]	
		0802.4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42	--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5	- 피스타치오(pistachio)	
		0802.5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52	--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6	- 마카다미아 너트(macadamia nut)	
		0802.6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802.62	-- 껍데기를 벗긴 것	완전생산기준
		0802.70	- 콜라 너트(kola nut)[콜라(Cola)종]	완전생산기준
		0802.80	- 빈랑자(areca nut)	완전생산기준
		0802.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3.10	- 플랜틴(plantain)	완전생산기준
		0803.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4		대추야자 · 무화과 · 파인애플 · 아보카도 (avocado) · 구아바(guava) · 망고 (mango) · 망고스틴(mangosteen)(신선 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4.10	- 대추야자	완전생산기준
		0804.20	- 무화과	완전생산기준
		0804.30	- 파인애플	완전생산기준
		0804.40	- 아보카도(avocado)	완전생산기준
		0804.50	- 구아바(guava) · 망고(mango) · 망고스틴(mangosteen)	완전생산기준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5.10	- 오렌지	완전생산기준
		0805.2	- 만다린(mandarins)[탄제린 (tangerines) · 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클레멘타인(clementines), 윌킹(wilkins)과 이와 유사한 감귤류 잡종	
		0805.21	-- 만다린(mandarins)[탄제린 (tangerines) · 세트수머(satsumas)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5.22	-- 클레멘타인(clementine)	완전생산기준
		0805.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5.40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pomelos)를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5.50	- 레몬[시트러스 리몬(Citrus limon) · 시트러스 리머눔(Citrus limonum)], 라임(lime)[시트러스 오란티폴리아 (Citrus aurantifolia) · 시트러스 라티폴리아(Citrus latifolia)]	완전생산기준
		0805.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6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6.10	- 신선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6.20	- 건조한 것	완전생산기준
	08.07		멜론(수박을 포함한다)과 포포(papaw) [파파야(papaya)](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7.1	- 멜론(수박을 포함한다)	
		0807.11	-- 수박	완전생산기준
		0807.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7.20	- 포포(papaw)[파파야(papaya)]	완전생산기준
	08.08		사과 · 배 · 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8.10	- 사과	완전생산기준
		0808.30	- 배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808.40	- 마르멜로(quince)	완전생산기준
	08.09		살구·체리·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자두·슬로(sloe)(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09.10	- 살구	완전생산기준
		0809.2	- 체리	
		0809.21	-- 신 체리[프루너스 체라서스(Prunus cerasus)]	완전생산기준
		0809.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09.30	-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완전생산기준
		0809.40	- 자두와 슬로(sloe)	완전생산기준
	08.10		그 밖의 과실(신선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0.10	-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0.20	- 나무딸기·검은나무딸기·오디·로간베리(loganberry)	완전생산기준
		0810.30	-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와 구즈베리(gooseberry)	완전생산기준
		0810.40	- 크랜베리(cranberry)·빌베리(bilberry)와 그 밖의 박시니엄(Vaccinium)속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0.50	- 키위프루트(kiwifruit)	완전생산기준
		0810.60	- 두리안(durian)	완전생산기준
		0810.70	- 감	완전생산기준
		0810.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1		냉동 과실과 냉동 견과류(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찐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811.10	- 초본류 딸기	완전생산기준
		0811.20	- 나무딸기, 검은나무딸기, 오디, 로간베리(loganberry), 흑색·백색·적색의 커런트(currant), 구즈베리(gooseberry)	완전생산기준
		0811.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2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예: 이산화유황가스·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보존처리)한 과실과 견과류(그 상태로는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812.10	- 체리	완전생산기준
		0812.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08.13		건조한 과실(제0801호부터 제0806호까지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0813.10	- 살구	완전생산기준
		0813.20	- 프룬(prune)	완전생산기준
		0813.30	- 사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813.40	- 그 밖의 과실	완전생산기준
		0813.50	- 이 류의 견과류나 건조한 과실의 혼합물	완전생산기준
	08.14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0814.00	- 감귤류의 껍질과 멜론(수박을 포함한다)의 껍질(신선한 것, 냉동하거나 건조한 것, 염수·유황수나 그 밖의 저장용액으로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처리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09.01		커피(볶았는지, 카페인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커피의 껍데기와 껍질, 커피를 함유한 커피 대용물(커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0901.1	- 커피(볶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1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1.1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0901.2	- 커피(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0901.21	-- 카페인을 제거하지 않은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01.22	-- 카페인을 제거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01.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02		차류(맛과 향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0902.10	-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20	- 그 밖의 녹차(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0902.30	- 홍차(발효차)와 부분 발효차 (내용물의 무게가 3킬로그램 이하로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한정한다)	
		0902.40	- 그 밖의 홍차(발효차)와 그 밖의 부분 발효차	완전생산기준
	09.03		마테(maté)	
		0903.00	- 마테(maté)	완전생산기준
	09.04		후추[파이퍼(Piper)속의 것으로 한정한다], 건조하거나 부수거나 잘게 부순 고추류[캡시쿰(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4.1	- 후추	
		0904.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4.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04.2	- 고추류[캡시쿰(Capsicum)속]의 열매나 피멘타(Pimenta)속의 열매	
		0904.21	-- 건조한 것(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4.2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5		바닐라	
		0905.1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5.2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6		계피와 계피나무의 꽃	
		0906.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0906.11	-- 계피[신나모뎀 제이나이쿰 블룸 (Cinnamomum zeylanicum Blume)]	완전생산기준
		0906.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0906.2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07		정향(丁香)(과실·꽃·꽃대로 한정한다)	
		0907.10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7.20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8		육두구(肉荳蔻)·메이스(mace)·소두구 (小荳蔻)	
		0908.1	- 육두구(肉荳蔻)	
		0908.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8.2	- 메이스(mace)	
		0908.2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2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8.3	- 소두구(小荳蔻)	
		0908.3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8.3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9		아니스(anise)·대회향(大茴香)·회향 (茴香)·코리앤더(coriander)·커민 (cumin)·캐러웨이(caraway)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2	- 코리앤더(coriander)의 씨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0909.2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2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9.3	- 커민(cumin)의 씨	
		0909.3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3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09.6	- 아니스(anise) · 대회향(大茴香) · 캐러웨이(caraway) · 회향(茴香)의 씨와 주니퍼(juniper)의 열매	
		0909.6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09.6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10		생강 · 사프란(saffron) · 심황[강황(薑黃)] · 타임(thyme) · 월계수 잎 · 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	
		0910.1	- 생강	
		0910.11	-- 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0910.12	-- 부수거나 잘게 부순 것	완전생산기준
		0910.20	- 사프란(saffron)	완전생산기준
		0910.30	- 심황[강황(薑黃)]	완전생산기준
		0910.9	- 그 밖의 향신료	
		0910.91	-- 혼합물(제9류의 주 제1호나목의 것으로 한정한다)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0910.99	-- 기타	가. 타임, 월계수잎: 완전생산기준 나. 기타: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0			곡물	
	10.01		밀과 메슬린(meslin)	
		1001.1	- 듀럼종 밀(Durum wheat)	
		1001.11	--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1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1.9	- 기타	
		1001.91	--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1.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2		호밀	
		1002.10	-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2.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3		보리	
		1003.10	-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3.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4		귀리	
		1004.10	-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4.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5		옥수수	
		1005.10	- 종자용	완전생산기준
		1005.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10.06		쌀	
		1006.10	- 벼	완전생산기준
		1006.20	- 현미	완전생산기준
		1006.30	- 정미(연마·광택 여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006.40	- 쉼미(broken rice)	완전생산기준
	10.07		수수	
		1007.10	-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7.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		메밀·밀리트(millet)·카나리시드 (canary seed)와 그 밖의 곡물	
		1008.10	- 메밀	완전생산기준
		1008.2	- 밀리트(millet)	
		1008.21	-- 종자	완전생산기준
		1008.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008.30	- 카나리시드(canary seed)	완전생산기준
		1008.40	- 폰리오(Fonio)[디지털리아(Digitaria) 종]	완전생산기준
		1008.50	- 퀴노아(quinoa)[체노포디움 퀴노아 (Chenopodium quinoa)]	완전생산기준
		1008.60	- 라이밀(triticale)	완전생산기준
		1008.90	- 그 밖의 곡물	완전생산기준
11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11.01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1101.00	- 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	2단위 세번변경기준
	11.02		곡물의 고운 가루[밀가루나 메슬린(meslin) 가루는 제외한다]	
		1102.20	- 옥수수가루	완전생산기준
		1102.90	- 기타	가. 쌀가루, 호밀가루: 완전생산기준 나.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제1003 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003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11.03		곡물의 부순 알곡·거친 가루· 펠릿(pellet)	
		1103.1	- 부순 알곡과 거친 가루	
		1103.11	-- 밀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3.13	-- 옥수수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3.1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003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003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1103.20	- 펠릿(pellet)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003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003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11.04		그 밖의 가공한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압착한 것·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진주 모양인 것·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거칠게 뺀 것(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압착한 것·플레이크 (flake) 모양인 것·잘게 부순 것	
		1104.1	- 압착한 것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1104.12	-- 귀리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4.1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003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제1003호 및 제1006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1104.2	- 그 밖의 가공 곡물(예: 껍질을 벗긴 것 · 진주 모양인 것 · 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 · 거칠게 뿔은 것)	
		1104.22	-- 커리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23	-- 옥수수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29	-- 그 밖의 곡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104.30	- 곡물의 씨눈[원래 모양인 것 · 압착한 것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 · 잘게 부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11.05		감자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1105.10	-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5.20	- 플레이크(flake) · 알갱이 · 펠릿(pellet)	완전생산기준
	11.06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제0713호의 것), 사고(sago) · 뿌리나 괴경(塊莖)(제0714호의 것), 제8류 물품의 고운 가루 · 거친 가루 · 가루	
		1106.10	- 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것 (제071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6.20	- 사고(sago) · 뿌리나 괴경(塊莖)의 것(제0714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6.30	- 제8류 물품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7		맥아(볶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1107.10	- 볶지 않은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1107.20	- 볶은 것	완전생산기준
	11.08		전분과 이눌린(inulin)	
		1108.1	- 전분	
		1108.11	-- 밀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8.12	-- 옥수수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8.13	-- 감자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8.14	-- 매니옥(manioc)[카사바(cassava)] 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8.19	-- 그 밖의 전분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8.20	- 이눌린(inulin)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1.09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1109.00	- 밀의 글루텐(gluten)(건조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12.01		대두(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1.10	-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1.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2		땅콩(볶거나 그 밖의 조리를 한 것은 제외하며, 껍데기를 벗겼는지,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2.30	-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2.4	- 기타	
		1202.41	-- 껍데기를 벗기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1202.42	-- 껍데기를 벗긴 것(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3		코프라(copra)	
		1203.00	- 코프라(copra)	완전생산기준
	12.04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4.00	- 아마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5		유채(rape, colza)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5.10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 (rape, colza)의 씨	완전생산기준
		1205.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6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1206.00	- 해바라기씨(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07		그 밖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1207.10	- 팜너트(palm nut)와 핵(核)	완전생산기준
		1207.2	- 목화씨	
		1207.21	--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7.30	- 피마자	완전생산기준
		1207.40	- 참깨	완전생산기준
		1207.50	- 겨자씨	완전생산기준
		1207.60	- 잇꽃[카르타무스 틴크토리우스 (Carthamus tinctorius)]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70	- 멜론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7.9	- 기타	
		1207.91	-- 양귀비씨	완전생산기준
		1207.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8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겨자의 고운 가루와 거친 가루는 제외한다)	
		1208.10	- 대두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208.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9		파종용 종자·과실·포자(孢子)	
		1209.10	- 사탕무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	- 사료용 식물의 종자	
		1209.21	-- 루우산(lucerne)(알팔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2	-- 클로버(clover)[트리폴리엄 (Trifolium)종]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3	-- 페스큐(fescue)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4	-- 켄터키블루그래스(kentucky blue grass)[포아프래텐시스 엘(Poa pratensis L.)]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25	-- 라이그래스(rye grass) 종자[로리엄 멀티플로럼 램(Lolium multiflorum Lam)·로리엄 페레네 엘(Lolium perenne L.)]	완전생산기준
		1209.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09.30	- 화초용 초본(草本)식물의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	- 기타	
		1209.91	-- 채소 종자	완전생산기준
		1209.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0		홉(hop)[신선하거나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나 펠릿 (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루플린 (lupulin)	
		1210.10	-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펠릿(pellet) 모양은 제외한다]	완전생산기준
		1210.20	- 홉(hop)[잘게 부순 것·가루 모양· 펠릿(pellet) 모양으로 한정한다], 루플린(lupulin)	완전생산기준
	12.11		주로 향료용·의료용·살충용· 살균용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적합한 식물과 그 부분(종자와 과실을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포함하고,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에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1211.20	- 인삼	완전생산기준
		1211.30	- 코카잎	완전생산기준
		1211.40	- 양귀비줄기	완전생산기준
		1211.50	- 마황(麻黃)	완전생산기준
		1211.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2		로커스트콩(locust bean)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藻類) · 사탕무와 사탕수수 (신선한 것 · 냉장한 것 · 냉동한 것 · 건조한 것으로서 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다), 주로 식용에 적합한 과실의 핵(核)과 그 밖의 식물성 생산품[볶지 않은 시코리엄 인티부스 새티범(Cichorium intybus sativum) 변종의 치커리(chicory) 뿌리를 포함한다] 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1212.2	- 해초류와 그 밖의 조류	
		1212.21	-- 식용	완전생산기준
		1212.2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2.9	- 기타	
		1212.91	-- 사탕무	완전생산기준
		1212.92	-- 로커스트콩(locust bean)(캐롭)	완전생산기준
		1212.93	-- 사탕수수	완전생산기준
		1212.94	-- 치커리(chicory) 뿌리	완전생산기준
		1212.99	-- 기타	완전생산기준
	12.13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3.00	- 곡물의 짚과 껍질[조제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절단하거나 잘게 부수거나 압착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2.14		스워드(swede) · 망골드(mangold) · 사료용 뿌리채소류(根菜類) · 건초 · 루우산(lucerne)(알팔파) · 클로버(clover) · 샌포인(sainfoin) · 사료용 케일(kale) · 루핀(lupine) · 베치(vetch) 와 이와 유사한 사료용 식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1214.10	- 루우산(lucerne)(알팔파)의 거친 가루와 펠릿(pellet)	완전생산기준
		1214.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3			락(lac), 검 · 수지 · 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13.01		락(lac), 천연 검 · 수지 · 검 수지 · 올레오레진(oleoresin) [예: 발삼(balsam)]	
		1301.20	- 아라비아 검	완전생산기준
		1301.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3.02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펙틴질,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 (pectate),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한천 · 그 밖의 점질물과 시커너 (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1	-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1302.11	-- 아편	완전생산기준
		1302.12	-- 감초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302.13	-- 홉(hop)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302.14	-- 마황(麻黃)으로 만든 것	완전생산기준
		1302.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21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1302.20	- 펙틴질 · 펙티닝산염(pectinate)과 펙틴산염(pectate)	완전생산기준
		1302.3	- 식물성 원료에서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1302.31	-- 한천	2단위 세번변경기준
		1302.32	-- 로커스트콩(locust bean) · 로커스트콩(locust bean)의 씨나 구아(guar)의 씨로부터 얻은 점질물과 시커너(thickener)(변성 가공했는지에 상관없다)	완전생산기준
		1302.3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4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1		편조물(編組物)에 주로 사용되는 식물성 재료[예: 대나무, 등나무, 갈대, 골풀, 버드나무 가지(osier), 라피아(raffia), 청정 · 표백 · 염색한 곡물의 짚과 라임나무(lime) 껍질]	
		1401.10	- 대나무	완전생산기준
		1401.20	- 등나무	완전생산기준
		1401.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14.04		따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1404.20	- 면(綿) 린터(linter)	완전생산기준
		1404.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3부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 · 식물성 납(蠟)				
15			동물성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분해생산물, 조제한 식용 지방과 동물성·식물성 납(蠟)	
	15.01		돼지의 지방[라드(lard)를 포함한다]과 가금(家禽)의 지방(제0209호나 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1.10	- 라드(lard)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1.20	- 그 밖의 돼지의 지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2		소·면양·산양의 지방(제1503호의 것은 제외한다)	
		1502.10	- 텔로우(tallow)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3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텔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1503.00	- 라드스테아린(lard stearin), 라드유(lard oil), 올레오스테아린 (oleostearin), 올레오유(oleo-oil), 텔로우유(tallow oil)로서 유화·혼합 그 밖의 조제를 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4		어류나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4.10	- 어류의 간유(肝油)와 그 분획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4.20	- 어류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간유(肝油)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1504.30	- 바다에서 사는 포유동물의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5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1505.00	- 울그리스(wool grease)와 이것에서 얻은 지방성 물질[라놀린(lanolin)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6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6.00	- 그 밖의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7		대두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7.10	- 조유(粗油)[검(gum)질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8		땅콩기름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8.10	- 조유(粗油)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9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09.10	- 버진(virgi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0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0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1510.00	- 그 밖의 올리브유와 그 분획물 (올리브에서 얻은 것으로서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하고, 이들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이 제1509호의 기름이나 그 분획물과 혼합된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1		팜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1.10	- 조유(粗油)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2		해바라기씨유·잇꽃유·목화씨유와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2.1	- 해바라기씨유·잇꽃유와 그 분획물	
		1512.11	-- 조유(粗油)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2.2	- 목화씨유와 그 분획물	
		1512.21	-- 조유(粗油)[고시폴(gossypol)을 제거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3		야자[코프라(copra)]유, 팜핵유(palm)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kernel oil),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3.1	- 야자[코프라(copra)]유와 그 분획물	
		1513.11	-- 조유(粗油)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3.2	- 팜핵유(palm kernel oil)나 바바수유(babassu oil)와 이들의 분획물	
		1513.21	-- 조유(粗油)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3.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4		유채유(rape oil, colza oil), 겨자유와 이들의 분획물(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4.1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유(rape oil, colza oil)와 그 분획물	
		1514.11	-- 조유(粗油)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4.9	- 기타	
		1514.91	-- 조유(粗油)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4.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5		그 밖의 비취발성인 식물성 지방과 기름[호호바유(jojoba oil)를 포함한다]과 그 분획물(정제했는지에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상관없으며 화학적으로 변성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5.1	- 아마씨유와 그 분획물	
		1515.11	-- 조유(粗油)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5.2	- 옥수수유와 그 분획물	
		1515.21	-- 조유(粗油)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5.30	- 피마자유와 그 분획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5.50	- 참기름과 그 분획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2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151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6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전체적으로나 부분적으로 수소를 첨가한 것, 인터에스테르화한(inter-esterified) 것, 리에스테르화한(re-esterified) 것, 엘라이딘화한(elaidinised) 것으로 한정하며, 정제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더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1516.10	- 동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1516.20	- 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7		마가린,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로 만든 식용 혼합물이나 조제품 (제1516호의 식용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들의 분획물은 제외한다)	
		1517.10	- 마가린(액상 마가린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7.90	- 기타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18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황화· 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1518.00	- 동물성·식물성 지방과 기름 및 이들의 분획물(끓이거나 산화·탈수· 황화·취입하거나 진공상태나 불활성 가스에서 가열중합하거나 그 밖의 화학적 변성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151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서 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동물성·식물성 지방이나 기름 또는 이 류의 다른 지방이나 기름의 분획물의 혼합물이나 조제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20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1520.00	- 글리세롤(glycerol)(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리세롤 수(水), 글리세롤 폐액(廢液)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21		식물성 납(蠟)[트리글리세라이드 (triglyceride)는 제외한다]· 밀랍(蜜蠟)과 그 밖의 곤충납(昆蟲蠟)· 경납(鯨蠟)(정제했는지 또는 착색했는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1521.10	- 식물성 납(蠟)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2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5.22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1522.00	- 데그라스(degras), 지방성 물질이나 동물성·식물성 납(蠟)을 처리할 때 생기는 잔유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4부 조제 식료품, 음료·주류·식초, 담배·제조한 담배 대용물				
16			육류·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조제품	
	16.01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1601.00	- 소시지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육·설육(屑肉)이나 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 물품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식료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육·설육(屑肉)이나 피	
		1602.10	- 균질화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20	- 동물 간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3	- 가금류(家禽類)로 만든 것 (제105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1602.31	-- 칠면조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1602.32	-- 닭[갈루스 도메스티쿠스(Gallus domesticus)종의 것으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한정한다]으로 만든 것	
		1602.3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4	- 돼지로 만든 것	
		1602.41	-- 넓적다리살과 그 절단육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42	-- 어깨살과 그 절단육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4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2.50	- 소로 만든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2.90	- 기타(동물의 피 조제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류, 제2류 및 제5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16.03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 (extract)과 즙	
		1603.00	- 육·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추출물(extract)과 즙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	
		1604.1	- 어류(원래 모양이나 토막낸 것으로 한정하며, 잘게 다진 것은 제외한다)	
		1604.11	-- 연어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12	-- 청어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3	-- 정어리·사르디넬라(Sardinella)· 브리스링(brisling)·스프랫(sprat)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4	-- 다랑어·가다랑어·버니토(bonito) [사르다(Sarda)종]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15	-- 고등어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6	-- 멸치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4.17	-- 뱀장어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18	-- 상어 지느러미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20	- 그 밖의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3	- 캐비아와 캐비아 대용물	
		1604.31	-- 캐비아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4.32	-- 캐비아 대용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6.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 · 연체동물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10	- 게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2	- 새우류	
		1605.21	-- 밀폐용기에 넣지 않은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2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30	- 바닷가재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40	- 그 밖의 갑각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1605.5	- 연체동물	
		1605.51	-- 굴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2	-- 가리비과의 조개(여왕 가리비과 조개를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3	-- 홍합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4	-- 갑오징어와 오징어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5	-- 문어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1605.56	-- 클램(clam), 새조개, 피조개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7	-- 전복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8	-- 달팽이(바다달팽이는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5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6	-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	
		1605.61	-- 해삼	2단위 세번변경기준
		1605.62	-- 성게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1605.63	-- 해파리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3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3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1605.6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7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17.01		사탕수수당이나 사탕무당, 화학적으로 순수한 자당(蔗糖)(고체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1701.1	- 조당(粗糖)[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701.12	-- 사탕무당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1.13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규정된 사탕수수당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1.14	-- 그 밖의 사탕수수당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1.9	- 기타	
		1701.91	-- 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가 첨가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2		그 밖의 당류(糖類)[화학적으로 순수한 유당(乳糖)·맥아당·포도당·과당을 포함하며, 고체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당시럽[향미제(香味劑)나 착색제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인조꿀(천연꿀을 혼합했는지에 상관없다), 캐러멜당	
		1702.1	- 유당(乳糖)과 유당(乳糖)시럽	
		1702.11	-- 건조 상태에서 측정된 유당(乳糖)[무수유당(無水乳糖)]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2.20	- 단풍당과 단풍당시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2.3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과당을 함유하지 않거나 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2.40	- 포도당과 포도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2.50	- 화학적으로 순수한 과당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2.60	- 그 밖의 과당과 과당시럽(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전화당(轉化糖)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2.90	- 기타[전화당(轉化糖)과 그 밖의 당류(糖類)와 당시럽 혼합물(건조 상태에서 과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인 것으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3		당밀(糖蜜)[당류(糖類)를 추출하거나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정제할 때 생긴 것으로 한정한다]	
		1703.10	- 사탕수수에서 생긴 당밀(糖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4		설탕과자(백색 초콜릿을 포함하며, 코코아를 함유한 것은 제외한다)	
		1704.10	- 추잉껌(당을 도포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7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8			코코아와 그 조제품	
	18.01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1801.00	- 코코아두(원래 모양이나 부순 것으로서 생 것이나 볶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8.02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1802.00	- 코코아의 껍데기와 껍질, 그 밖의 코코아 웨이스트(wast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8.03		코코아 페이스트(paste)[탈지(脫脂)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803.10	- 탈지(脫脂)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803.20	- 전부나 일부를 탈지(脫脂)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8.04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1804.00	- 코코아 버터, 지방과 기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8.05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1805.00	-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8.06		초콜릿과 코코아를 함유한 그 밖의 조제 식료품	
		1806.10	- 코코아 가루(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806.20	- 그 밖의 조제 식료품[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서 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인 것과 용기에 들어 있거나 내용물에 직접 접하여 포장된 것으로서 내용물의 무게가 2킬로그램을 초과하는 액체·페이스트(paste)·가루·알갱이나 그 밖의 벌크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806.3	- 기타[블록 모양·슬래브 모양·막대(bar)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806.31	-- 다른 것으로 속을 채운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806.32	-- 속을 채우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8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19.01		맥아 추출물(extract)과 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전분이나 맥아 추출물(extract)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0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제0401호부터 제0404호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조제 식료품[코코아를 함유하지 않은 것이나 완전히 탈지(脫脂)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미만인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1.10	- 영유아·어린이용 조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식료품(소매용으로 한정한다)	
		1901.20	- 제1905호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	2단위 세번변경기준
		1901.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19.02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육(肉)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속을 채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스파게티·마카로니·누들 ·라자니아(lasagne)·뇨키(gnocchi)· 라비올리(ravioli)·카넬로니(cannelloni) 등과 같이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을 포함한다]와 쿠스쿠스(couscous)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1902.1	- 조리하지 않은 파스타(속을 채우지 않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 한정한다)	
		1902.11	-- 새의 알을 넣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2.20	- 속을 채운 파스타(조리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2.30	- 그 밖의 파스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2.40	- 쿠스쿠스(couscou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3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날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1903.00	- 타피오카와 전분으로 조제한 타피오카 대용물[플레이크(flake) 모양 ·날알 모양·진주 모양·무거리 모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		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예: 콘 플레이크(corn flake)]과 날알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곡물(옥수수는 제외한다)과 그 밖의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가공한 곡물(고운 가루·부순 알곡·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1904.10	- 곡물이나 곡물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20	- 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의 조제 식료품·볶지 않은 곡물 플레이크(flake)와 볶은 곡물 플레이크(flake)나 팽창된 곡물의 혼합물로 만든 조제 식료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30	- 불거 밀(bulgur whea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4.90	- 기타	한국의 제1904.90.1010호, 제1904.90.1090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다만,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상품의 소호와 다른 소호로 분류되지 않는 한 최소허용기준은 그 상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당사국으로부터 수입된 비원산지 재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		빵·파이·케이크·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실링웨이퍼(sealing wafer)·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905.10	- 귀리빵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20	- 생강과자(gingerbread)와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3	- 스위트 비스킷, 와플, 웨이퍼	
		1905.31	-- 스위트 비스킷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32	-- 와플과 웨이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40	- 러스크(rusk)·토스트 빵과 그 밖의 이와 유사한 토스트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19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20.01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	
		2001.10	- 오이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2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토마토(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2.10	- 토마토의 전체나 조각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3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버섯과 송로(松露)(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2003.10	- 아가리쿠스(Agaricus)속의 버섯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20.04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4.10	- 감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4.90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 (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005.10	- 균질화한 채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20	- 감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40	- 완두[피섬 새티범(Pisum sativum)]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5	- 콩[비그나(Vigna)종 · 파세러스(Phaseolus)종]	
		2005.51	-- 껍데기를 벗긴 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60	- 아스파라거스(asparagu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005.70	- 올리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80	- 스위트콘[자메이스 변종 사카라타 (Zea mays var. sacchara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9	- 그 밖의 채소와 채소의 혼합물	
		2005.91	-- 죽순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5.99	-- 기타	한국의 제2005.99.1000호: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기타: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6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 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2006.00	- 설탕으로 보존처리한 채소·과실· 견과류·과피와 식물의 그 밖의 부분[드레인한(drained) 것, 설탕을 입히거나 설탕에 절인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 ·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ée)· 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paste) (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	
		2007.10	- 균질화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7.9	- 기타	
		2007.91	-- 감귤류의 과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7.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견과류와 그 밖의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8.1	- 견과류·땅콩 그 밖의 씨류(서로 혼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008.11	-- 땅콩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12류의 것은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2008.1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1호, 제0802.42호 및 제0802.90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0802.31호, 제0802.32호, 제0802.41호, 제0802.42호 및 제0802.90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2008.20	- 파인애플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8.30	- 감귤류 과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40	- 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50	- 살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60	- 체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70	- 복숭아[넥타린(nectarine)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008.80	- 초본류 딸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	- 기타(혼합물을 포함하되, 소호 제2008.19호의 혼합물은 제외한다)	
		2008.91	-- 팜 하트(palm hear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3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7	-- 혼합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8.9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		과실 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와 채소 주스(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009.1	- 오렌지주스	
		2009.11	-- 냉동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12	--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서 브릭스 (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2	- 그레이프프루트(grapefruit) [포멜로(pomelo)를 포함한다] 주스	
		2009.21	--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3	- 그 밖의 한 가지 감귤류로 된 주스	
		2009.31	--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4	- 파인애플주스	
		2009.41	--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4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2009.50	- 토마토주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6	- 포도주스(포도즙을 포함한다)	
		2009.61	-- 브릭스(Brix) 값이 30을 초과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7	- 사과주스	
		2009.71	-- 브릭스(Brix) 값이 20을 초과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7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8	- 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	
		2009.81	-- 크랜베리(cranberry)[바치니움 매크로카르폰(Vaccinium macrocarpon) · 바치니움 옥시코코스(Vaccinium oxycoccos) · 바치니움 비티스-이다에아(Vaccinium vitis-idaea)] 주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009.8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009.90	- 혼합 주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			각종 조제 식료품	
	21.01		커피 · 차 · 마테(maté)의 추출물 (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과 이것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 · 차 ·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볶은 치커리(chicory) ·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2101.1	- 커피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 (essence) · 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2101.11	-- 추출물(extract) · 에센스 (essence) · 농축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1.12	-- 추출물(extract) · 에센스 (essence) · 농축물을 기본 재료로 하거나 커피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1.20	- 차나 마테(maté)의 추출물(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차나 마테(maté)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0902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제0902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2101.30	- 볶은 치커리(chicory) · 그 밖의 볶은 커피 대용물과 이들의 추출물 (extract) · 에센스(essence) · 농축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2		효모(활성이거나 불활성인 것), 그 밖의 단세포 미생물(죽은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의 백신은 제외한다)과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2102.10	- 활성 효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2.20	- 불활성 효모와 그 밖의 죽은 단세포 미생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2.30	- 조제한 베이킹 파우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10	- 간장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3.20	-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3.30	-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4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브로드 (broth)용 조제품,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2104.10	- 수프·브로드(broth)와 수프· 브로드(broth)용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4.20	- 균질화한 혼합 조제 식료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5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2105.00	- 아이스크림과 그 밖의 빙과류 (코코아를 함유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10	-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 (textured) 단백질계 물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106.90	- 기타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제1211.20호, 제1212.21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22			음료·주류·식초	
	22.01		물(천연이나 인조 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하며,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얼음과 눈	
		2201.10	- 광천수와 탄산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2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제2009호의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	
		2202.10	- 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2.9	- 기타	
		2202.91	--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맥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211.20호 및 제130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3		맥주	
		2203.00	- 맥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알코올로 강화한 포도주를 포함한다)와 포도즙(제2009호의 것은 제외한다)	
		2204.10	- 발포성(發泡性) 포도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2	- 그 밖의 포도주와 알코올 첨가에 따라 발효를 중지한 포도즙	
		2204.21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22	-- 2리터 초과 10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2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4.30	- 그 밖의 포도즙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5		베르무트(vermouth)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포도주[생포도로 제조한 것으로서 식물이나 방향성(芳香性) 물질로 맛이나 향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2205.10	- 2리터 이하의 용기에 넣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6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미드 (mead)·사케(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2206.00	- 그 밖의 발효주[예: 사과술·배술· 미드(mead)·사케(saké)], 따로 분류되지 않은 발효주의 혼합물, 발효주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와의 혼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7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변성 에틸알코올,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2207.10	-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7.20	- 변성 에틸알코올과 그 밖의 변성 주정(알코올의 용량은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	
		2208.20	- 포도주나 포도즙을 짜낸 찌꺼기에서 얻은 증류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30	- 위스키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40	- 럼(rum)과 발효된 사탕수수제품을 증류하여 얻은 그 밖의 증류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50	- 진(gin)과 제네바(geneva)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60	- 보드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8.70	- 리큐르(liqueur)류와 코디알(cordial)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22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2.09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2209.00	- 식초와 초산으로 만든 식초 대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3.01		육·설육(屑肉)·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식용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수지박	
		2301.10	- 육이나 설육(屑肉)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과 수지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1.20	- 어류·갑각류·연체동물이나 그 밖의 수생(水生) 무척추동물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펠릿(pellet)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2		밀기울·쌀겨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곡물·채두류(菜豆類)의 선별·제분 그 밖의 처리과정에서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2.10	- 옥수수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2.30	- 밀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2.40	- 그 밖의 곡물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2.50	- 채두류(菜豆類)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3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당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3.10	-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residue)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3.20	- 비트펄프(beet-pulp), 버개스(bagasse)와 그 밖의 설당을 제조할 때 생기는 웨이스트(wast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3.30	- 양조하거나 증류할 때 생기는 박과 웨이스트(wast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4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4.00	- 대두유를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5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2305.00	- 땅콩기름을 추출할 때 얻는 오일 케이크와 고체 형태의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		오일 케이크와 그 밖의 고체 형태인 유박[잘게 부순 것인지 또는 펠릿 (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304호나 제2305호의 것은 제외한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을 추출할 때 생기는 것으로 한정한다]	
		2306.10	- 목화씨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20	- 아마씨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30	- 해바라기씨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4	- 유채(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2306.41	-- 저에루크산(low erucic acid) 유채 (rape, colza)씨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50	- 야자나 코프라(copra)에서 나온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8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2306.60	- 팜 너트(palm nut)나 핵(核)에서 나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7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2307.00	- 와인리스(wine lees)와 생주석(argol)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8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 (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308.00	- 사료용 식물성 물질·식물성 웨이스트(waste)·식물성 박(residue)류와 부산물[펠릿(pellet)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제8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류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23.09		사료용 조제품	
		2309.10	- 개나 고양이용 사료(소매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30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24.01		잎담배와 담배 부산물	
		2401.10	- 잎담배[주맥(主脈)을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2401.20	- 잎담배[주맥(主脈)을 일부나 전부 제거한 것으로 한정한다]	완전생산기준
		2401.30	- 담배 부산물	완전생산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4.02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 · 쉼련(담배나 담배 대용물인 것으로 한정한다)	
		2402.10	- 시가(cigar) · 셔루트(cheroot) · 시가릴로(cigarillo)(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2.20	- 쉼련(담배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3		그 밖의 제조 담배, 제조한 담배 대용물,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 담배 추출물(extract)과 에센스(essence)	
		2403.1	- 흡연용 담배(담배 대용물의 포함비율은 상관없다)	
		2403.11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워터파이프(water pipe) 담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3.9	- 기타	
		2403.91	-- 균질화하거나 재구성한 담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403.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5부 광물성 생산품				
25			소금, 황, 토석류(土石類), 석고 · 석회 · 시멘트	
	25.01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2501.00	- 소금(식탁염과 변성염을 포함한다), 순염화나트륨[수용액(水溶液)인지 또는 고결(固結)방지제나 유동제를 첨가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바닷물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2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502.00	- 황화철광[배소(焙燒)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3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2503.00	- 황[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콜로이드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4		천연 흑연	
		2504.10	- 가루 모양이나 플레이크(flake) 모양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5		천연 모래(착색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6류의 금속을 함유하는 모래는 제외한다)	
		2505.10	- 규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6		석영(천연 모래는 제외한다)과 규암 [튼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06.10	- 석영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6.20	- 규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7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 [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507.00	- 고령토와 그 밖의 고령토질의 점토 [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8		그 밖의 점토(제6806호의 팽창된 점토는 제외한다)·홍주석(紅柱石)· 남정석(藍晶石)·규선석(珪線石) [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멀라이트(mullite), 샤모트(chamotte)나 다이나스 어스(dinas earth)	
		2508.10	- 벤토나이트(bentonit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8.30	- 내화(耐火)점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8.40	- 그 밖의 점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8.50	- 홍주석(紅柱石)·남정석(藍晶石)· 규선석(珪線石)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8.60	- 멀라이트(mullit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8.70	- 샤모트(chamotte), 다이나스 어스 (dinas earth)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09		초크	
		2509.00	- 초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0		천연 인산칼슘· 천연 인산알루미늄칼슘· 인산염을 함유한 초크	
		2510.10	- 잘게 부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0.20	- 잘게 부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5.11		천연 황산바름[중정석(重晶石)], 천연 탄산바름[독중석(毒重石)][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16호의 산화바름은 제외한다]	
		2511.10	- 천연 황산바름[중정석(重晶石)]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1.20	- 천연 탄산바름[독중석(毒重石)]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2		규조토[예: 키질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tripolite) · 다이어토마이트 (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12.00	- 규조토[예: 키질구어(kieselguhr) · 트리폴리트(tripolite) · 다이어토마이트 (diatomite)]와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겉보기 비중이 1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3		부석(浮石),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corundum) ·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3.10	- 부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3.20	- 금강사(金剛砂), 천연 커런덤 (corundum), 천연 석류석과 그 밖의 천연 연마재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4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4.00	- 슬레이트[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5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 에코신(e 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 · 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겉보기 비중이 2.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설화석고(alabaster)[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5.1	- 대리석과 트라버틴(travertine)	
		2515.1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5.12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5.20	- 에코신(ecaussine)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석회질의 암석과 설화 석고(alabast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6		화강암·반암(斑巖)·현무암·사암과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6.1	- 화강암	
		2516.1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거칠게 다듬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6.12	--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6.20	- 사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6.90	- 그 밖의 석비(石碑)용·건축용 암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7		자갈·왕자갈·쇄석(碎石)[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이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호의 앞부분에 열거한 물품들과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타르 머캐덤(tar macadam),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10	- 자갈·왕자갈·쇄석(碎石) [콘크리트용·도로포장용·철도용이나 그 밖의 밸러스트(ballast)용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싱글(shingle)과 플린트(flint)(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7.20	- 슬래그(slag)·드로스(dross)나 이와 유사한 산업폐기물의 머캐덤(macadam) (소호 제2517.10호의 물품을 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7.30	- 타르 머캐덤(tar macadam)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7.4	- 제2515호나 제2516호의 암석의 알갱이·파편·가루(열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7.41	-- 대리석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7.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8		백운석(白雲石)[하소(煨燒)한 것인지 또는 소결(燒結)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을 포함한다]과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2518.10	- 하소(煨燒)하지 않거나 소결(燒結)하지 않은 백운석(白雲石)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8.20	- 하소(煨燒)하거나 소결(燒結)한 백운석(白雲石)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8.30	- 응결(凝結) 백운석(白雲石)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9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용융(溶融) 마그네시아, 소결(燒結)한 마그네시아[소결(燒結)하기 전에 첨가된 그 밖의 산화물을 소량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산화마그네슘(순수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19.10	- 천연 탄산마그네슘(마그네사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1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0		석고, 무수(無水)석고, 플라스터(plaster)[하소(煨燒)한 석고나 황산칼슘을 원료로 한 것으로서 착색한 것인지 또는 촉진제나 지연제를 소량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0.10	- 석고와 무수(無水)석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0.20	- 플라스터(plast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1		석회석 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2521.00	- 석회석 용제(融劑), 석회석과 그 밖의 석회질의 암석(석회나 시멘트 제조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2		생석회(生石灰), 소석회(消石灰), 수경성(水硬性) 석회(제2825호의 산화칼슘과 수산화칼슘은 제외한다)	
		2522.10	- 생석회(生石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2.20	- 소석회(消石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2.30	- 수경성(水硬性) 석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3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 슬래그(slag) 시멘트 · 슈퍼설페이트(super sulphate)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수경성(水硬性) 시멘트[착색한 것인지 또는 클링커(clinker) 형태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523.10	- 시멘트 클링커(clink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3.2	- 포틀랜드(Portland) 시멘트	
		2523.21	-- 백색 시멘트(인위적으로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3.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3.30	- 알루미나(aluminous) 시멘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3.90	- 그 밖의 수경성(水硬性) 시멘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4		석면	
		2524.10	- 청(靑)석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5		운모(또는 깎은 것을 포함한다)와 운모 웨이스트(waste)	
		2525.10	- 가공하지 않은 운모와 판(板) 모양의 운모나 깎은 운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5.20	- 운모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5.30	- 운모 웨이스트(wast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6		천연 동석(凍石)[톱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칠게 다듬거나 단순히 절단하여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이나 슬래브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활석	
		2526.10	- 부수지 않은 것으로 가루도 아닌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6.20	- 부수거나 가루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8		천연 봉산염과 그 정광(精鑛) [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봉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봉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된 봉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528.00	- 천연 봉산염과 그 정광(精鑛) [하소(煨燒)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천연 염수(鹽水)에서 분리한 봉산염은 제외한다], 천연 봉산(건조한 상태에서 측정된 봉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9		장석(長石),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형석(螢石)	
		2529.10	- 장석(長石)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9.2	- 형석(螢石)	
		2529.21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9.22	-- 플루오르화칼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7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29.30	- 백류석(白榴石), 하석(霞石)과 하석 섬장암(霞石 閃長巖)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30		따로 분류되지 않은 광물	
		2530.10	- 질석(蛭石), 진주암(眞珠巖), 녹니석(綠泥石)(팽창되지 않은 것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한정한다)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30.20	- 키이저라이트, 에프소마이트(천연 황산마그네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53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			광(鑛)·슬래그(slag)·회(灰)	
	26.01		철광과 그 정광(精鑛)[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을 포함한다]	
		2601.1	- 철광과 그 정광[배소(焙燒)한 황화철광은 제외한다]	
		2601.11	-- 응결시키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01.12	-- 응결시킨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01.20	- 배소(焙燒)한 황화철광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02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2602.00	- 망간광과 그 정광(精鑛)[건조 상태에서 측정한 망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 이상인 철망간광과 그 정광(精鑛)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03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2603.00	- 구리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04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2604.00	- 니켈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05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2605.00	- 코발트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06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2606.00	- 알루미늄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07		납광과 그 정광(精鑛)	
		2607.00	- 납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08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2608.00	- 아연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09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2609.00	- 주석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10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2610.00	- 크로뮴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11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2611.00	- 텅스텐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12		우라늄광이나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2612.10	- 우라늄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12.20	- 토륨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13		몰리브덴광과 그 정광(精鑛)	
		2613.10	- 배소(焙燒)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1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6.14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2614.00	- 티타늄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15		니오븀광 · 탄탈륨광 · 바나듐광 · 지르코늄광과 이들의 정광(精鑛)	
		2615.10	- 지르코늄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1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16		귀금속광과 그 정광(精鑛)	
		2616.10	- 은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1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17		그 밖의 광과 그 정광(精鑛)	
		2617.10	- 안티모니광과 그 정광(精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1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18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2618.00	-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슬래그 샌드(slag sand)]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19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 (slag) · 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 (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2619.00	-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슬래그(slag) · 드로스(dross)[알갱이 모양의 슬래그(slag)는 제외한다], 스케일링(scal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6.20		슬래그(slag), 회(灰), 잔재물(금속·비소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하며, 철강을 제조할 때 생기는 것은 제외한다)	
		2620.1	- 주로 아연을 함유한 것	
		2620.11	-- 경(硬)아연 스펠터(spelt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20.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20.2	- 주로 납을 함유하는 것	
		2620.21	-- 유연(有鉛) 가솔린 슬러지(sludge)와 유연(有鉛) 안티녹(anti-knock) 화합물 슬러지(sludg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20.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20.30	- 주로 구리를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20.40	- 주로 알루미늄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20.60	- 비소, 수은, 탈륨이나 그 혼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비소나 이들 금속들의 채취용이나 그 화합물의 제조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20.9	- 기타	
		2620.91	-- 안티모니, 베릴륨, 카드뮴, 크로뮴이나 그 혼합물을 포함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20.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21		그 밖의 슬래그(slag)와 회(灰)[해초의 회(켈프)를 포함한다],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2621.10	- 생활폐기물의 소각으로 생기는 회(灰)와 잔재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62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			광물성 연료·광물유(鑛物油)와 이들의 증류물, 역청(瀝靑)물질, 광물성 왁스	
	27.01		석탄과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 (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2701.1	- 석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2701.11	-- 무연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1.12	-- 유연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1.19	-- 그 밖의 석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1.20	- 석탄으로 제조한 연탄·조개탄 (ovoid)과 이와 유사한 고체 연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2		갈탄(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흑옥은 제외한다)	
		2702.10	- 갈탄(잘게 부수었는지에 상관없으며 응결시킨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2.20	- 응결시킨 갈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3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2703.00	- 토탄(토탄 찌꺼기를 포함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4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 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2704.00	- 코크스와 반성(半成) 코크스(석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갈탄·토탄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토르트 카본(retort carbon)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5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發生 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2705.00	- 석탄가스·수성(水性)가스·발생로 (發生爐)가스와 이와 유사한 가스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6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2706.00	- 석탄·갈탄·토탄을 증류해서 얻은 타르와 그 밖의 광물성 타르(탈수나 부분 증류한 것과 재구성한 타르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7		콜타르(coal tar)를 고온 증류하여 얻은 오일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방향족(芳香族) 성분의 중량이 비방향족(非芳香族) 성분의 중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2707.10	- 벤조올(벤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7.20	- 톨루올(톨루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7.30	- 크실롤(크실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7.40	- 나프탈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7.50	- 그 밖의 방향족(芳香族) 탄화수소의 혼합물[섭씨 250도에서 아이·에스· 오(ISO) 3405방법{에이·에스·티· 엠 디(ASTM D)86의 방법과 동등}으로 증류한 양이 전 용량의 100분의 65 이상(손실분을 포함한다)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7.9	- 기타	
		2707.91	-- 크레오소트(creosote)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7.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8		피치(pitch)와 피치코크스[콜타르(coal tar)나 그 밖의 광물성 타르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2708.10	- 피치(pitch)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8.20	- 피치코크스(pitch coke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09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2709.0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0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한다],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1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 한정하며,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과 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10.12	-- 경질유(輕質油)와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0.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0.20	- 석유와 역청유(瀝靑油)(원유는 제외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이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인 것으로서 바이오디젤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웨이스트 오일(waste oil)은 제외한다]	
		2710.9	- 웨이스트 오일(waste oil)	
		2710.91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이나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0.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1		석유가스와 그 밖의 가스 상태의 탄화수소	
		2711.1	- 액화한 것	
		2711.11	-- 천연가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1.12	-- 프로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1.13	-- 부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1.14	-- 에틸렌 · 프로필렌 · 부틸렌 · 부타디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1.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1.2	- 가스 상태인 것	
		2711.21	-- 천연가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1.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2		석유젤리 · 파라핀왁스 · 마이크로크리스 탈린(micro crystalline)석유왁스 · 슬랙왁스(slack wax) · 오조케라이트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ozokerite) · 갈탄왁스 · 토탄왁스, 그 밖의 광물성 왁스와 합성이나 그 밖의 공정에 따라 얻은 이와 유사한 물품(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712.10	- 석유젤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2.20	- 파라핀왁스(기름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7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3		석유코크스 · 석유역청(瀝靑)과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2713.1	- 석유코크스	
		2713.11	-- 하소(煨燒)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3.12	-- 하소(煨燒)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3.20	- 석유역청(瀝靑)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3.90	- 그 밖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잔재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4		천연의 역청(瀝靑) · 아스팔트,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아스팔타이트와 아스팔트질의 암석	
		2714.10	- 역청질 혈암(瀝靑質 頁巖) · 유모 혈암(油母 頁巖), 타르샌드(tar sand)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5		역청질(瀝靑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2715.00	- 역청질(瀝青質) 혼합물[천연 아스팔트, 천연 역청(瀝靑), 석유역청(瀝靑), 광물성 타르, 광물성 타르 피치(tar 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예: 역청질 매스틱과 컷백)]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7.16		전기에너지(임의의 호)	
		2716.00	- 전기에너지(임의의 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6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의 생산품				
28			무기화합품, 귀금속·희토류(稀土類) 금속·방사성원소·동위원소의 유기화합물이나 무기화합물	
	28.01		플루오르·염소·브롬·요드	
		2801.10	- 염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1.20	- 요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1.30	- 플루오르와 브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2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	
		2802.00	- 승화황(昇華黃)·침강황(沈降黃)· 콜로이드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3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2803.00	- 탄소[카본 블랙(carbon black)과 따로 분류되지 않은 탄소물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4		수소·희가스(rare gas)와 그 밖의 비(非)금속원소	
		2804.10	- 수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804.2	- 희가스(rare gas)	
		2804.21	-- 아르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4.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4.30	- 질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4.40	- 산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4.50	- 붕소와 텔루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4.6	- 규소	
		2804.61	-- 규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99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4.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4.70	- 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4.80	- 비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4.90	- 셀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5		알칼리금속·알칼리토류금속,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합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수은	
		2805.1	- 알칼리나 알칼리토류 금속	
		2805.11	-- 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5.12	-- 칼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5.30	- 희토류(稀土類)금속, 스칸듐과 이트륨(상호 혼합된 것인지 또는 상호 함금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5.40	- 수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6		염화수소(염산)와 클로로황산	
		2806.10	- 염화수소(염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6.20	- 클로로황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7		황산과 발연황산	
		2807.00	- 황산과 발연황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8		질산과 황질산	
		2808.00	- 질산과 황질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9		오산화인, 인산, 폴리인산(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09.10	- 오산화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09.20	- 인산과 폴리인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0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2810.00	- 붕소의 산화물과 붕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1		그 밖의 무기산과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1	- 그 밖의 무기산	
		2811.11	-- 플루오르화수소(플루오르화수소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1.12	-- 시안화수소(시안화수소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1.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1.2	- 그 밖의 무기 비(非)금속 산화물	
		2811.21	-- 이산화탄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1.22	-- 이산화규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1.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2		비(非)금속 할로겐화물과 산화할로겐화물	
		2812.1	- 염화물과 산화염화물	
		2812.11	-- 카보닐 디클로라이드(포스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2.12	-- 포스포러스 옥시클로라이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2.13	-- 포스포러스 트리클로라이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2.14	-- 포스포러스 펜타클로라이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2.15	-- 설퍼 모노클로라이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2.16	-- 설퍼 디클로라이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2.17	-- 티오닐 클로라이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3		비(非)금속 황화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삼황화인	
		2813.10	- 이황화탄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4		무수(無水)암모니아나 암모니아수	
		2814.10	- 무수(無水)암모니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4.20	- 암모니아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5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과산화나트륨·과산화칼륨	
		2815.1	- 수산화나트륨[가성(苛性)소다]	
		2815.11	-- 고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5.12	-- 수용액(소다액이나 액체 상태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소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5.20	- 수산화칼륨[가성(苛性)칼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5.30	- 과산화나트륨이나 과산화칼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6		수산화마그네슘 · 과산화마그네슘,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 수산화물 · 과산화물	
		2816.10	- 수산화마그네슘과 과산화마그네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6.40	- 스트론튬이나 바륨의 산화물, 수산화물, 과산화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7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2817.00	- 산화아연과 과산화아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8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산화알루미늄, 수산화알루미늄	
		2818.10	- 인조 커런덤(corundum)(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8.20	- 산화알루미늄 [인조 커런덤(corundum)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8.30	- 수산화알루미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9		산화크로뮴과 수산화크로뮴	
		2819.10	- 삼산화크로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1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0		산화망간	
		2820.10	- 이산화망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1		산화철·수산화철·어스컬러(earth colour)[화합철분의 함유량이 산화제이철(Fe_2O_3)로서 계산하여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821.10	- 산화철과 수산화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1.20	- 어스컬러(earth colou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2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2822.00	- 산화코발트, 수산화코발트, 상관습(商慣習)상의 산화코발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3		산화티타늄	
		2823.00	- 산화티타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4		산화납·연단(鉛丹)·오렌지납	
		2824.10	- 일산화납[리사지(litharge)·메시코트(massico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5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그 밖의 무기염기·금속산화물·금속수산화물·금속과산화물	
		2825.10	- 히드라진·히드록실아민과 이들의 무기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5.20	- 산화리튬과 수산화리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5.30	- 산화바나듐과 수산화바나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5.40	- 산화니켈과 수산화니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5.50	- 산화구리와 수산화구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5.60	- 산화게르마늄과 이산화지르코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5.70	- 산화몰리브덴과 수산화몰리브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5.80	- 산화안티모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6		플루오르화물, 플루오르화규산염 · 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염과 그 밖의 플루오르착염	
		2826.1	- 플루오르화물	
		2826.12	-- 플루오르화알루미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6.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6.30	- 육플루오르화알루미늄산나트륨[인조 빙정석(氷晶石)]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82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7		염화물·산화염화물·수산화염화물, 브롬화물·산화브롬화물과 요드화물· 산화요드화물	
		2827.10	- 염화암모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7.20	- 염화칼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7.3	- 그 밖의 염화물	
		2827.31	-- 마그네슘 염화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7.32	-- 알루미늄 염화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7.35	-- 니켈 염화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7.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7.4	- 산화염화물과 수산화염화물	
		2827.41	-- 산화염화구리와 수산화염화구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7.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7.5	- 브롬화물과 산화브롬화물	
		2827.51	-- 브롬화나트륨이나 브롬화칼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7.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7.60	- 요드화합물과 산화요드화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8		하이포아염소산염 ·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 아염소산염 · 하이포아브롬산염	
		2828.10	- 상관습(商慣習)상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과 그 밖의 하이포아염소산칼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9		염소산염과 과염소산염, 브롬산염과 과브롬산염, 요드산염과 과요드산염	
		2829.1	- 염소산염	
		2829.11	-- 염소산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9.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2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0		황화물과 폴리황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0.10	- 황화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1		아이티온산염과 술폭실산염	
		2831.10	- 아이티온산나트륨과 술폭실산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2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2832.10	- 아황산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2.20	- 그 밖의 아황산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2.30	- 티오황산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3		황산염·명반·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2833.1	- 황산나트륨	
		2833.11	-- 황산이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3.2	- 그 밖의 황산염	
		2833.21	-- 황산마그네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3.22	-- 황산알루미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3.24	-- 황산니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3.25	-- 황산구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3.27	-- 황산바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3.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833.30	- 명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3.40	- 과산화황산염(과황산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4		아질산염과 질산염	
		2834.10	- 아질산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4.2	- 질산염	
		2834.21	-- 질산칼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4.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5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 · 포스포 네이트(아인산염) · 인산염, 폴리인산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35.10	- 포스피네이트(하이포아인산염)와 포스포네이트(아인산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5.2	- 인산염	
		2835.22	-- 인산일나트륨이나 인산이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5.24	-- 인산칼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5.25	-- 오르토인산수소칼슘(인산이칼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5.26	-- 그 밖의 인산칼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5.3	- 폴리인산염	
		2835.31	-- 삼인산나트륨(트리폴리인산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5.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6		탄산염, 과산화탄산염(과탄산염), 상관습(商慣習)상의 탄산암모늄 (카르바산암모늄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2836.20	- 탄산이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6.30	- 탄산수소나트륨(중탄산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6.40	- 탄산칼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6.50	- 탄산칼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6.60	- 탄산바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6.9	- 기타	
		2836.91	-- 탄산리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6.92	-- 탄산스트론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6.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7		시아화물 · 산화시아화물 · 시안착염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837.1	- 시안화물과 산화시안화물	
		2837.11	-- 시안화나트륨과 산화시안화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7.20	- 시안착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9		규산염과 상관습(商慣習)상의 알칼리금속의 규산염	
		2839.1	- 규산나트륨	
		2839.11	-- 메타규산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9.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3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0		붕산염과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2840.1	- 사붕산이나트륨[정제붕사(精製硼砂)]	
		2840.11	-- 무수물(無水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0.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0.20	- 그 밖의 붕산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0.30	- 과산화붕산염(과붕산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1		산화금속산염이나 과산화금속산염	
		2841.30	- 중크롬산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1.50	- 그 밖의 크롬산염과 중크롬산염, 과산화크롬산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1.6	- 아망간산염 · 망간산염 · 과망간산염	
		2841.61	-- 과망간산칼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1.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1.70	- 몰리브덴산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1.80	- 텅스텐산염[울프라메이트(wolframat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2		그 밖의 무기산염이나 과산화산염 (아지드화물은 제외하고,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늄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2842.10	- 규산의 겹염이나 착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알루미늄노실리케이트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3		콜로이드 귀금속, 귀금속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화합물인지에 상관없다), 귀금속의 아말감(amalgam)	
		2843.10	- 콜로이드 귀금속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3.2	- 은 화합물	
		2843.21	-- 질산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3.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3.30	- 금 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3.90	- 그 밖의 화합물과 아말감(amalgam)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4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핵분열성이나 연료핵천원소와 동위원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화합물, 이들의 물품을 함유한 혼합물과 잔재물	
		2844.10	- 천연 우라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천연 우라늄이나 천연 우라늄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4.20	- 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과 그 화합물, 플루토늄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농축한 우라늄·플루토늄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4.30	- 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과 그 화합물, 토륨과 그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우라늄 235를 열화시킨 우라늄·토륨이나 이들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4.40	-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와 소호 제2844.10호·제2844.20호·제2844.30호의 것은 제외한 이들의 화합물, 합금·분산물(分散物)[서멧(cermet)을 포함한다]·도자제품과 이들의 혼합물(이들의 방사성원소·방사성동위원소나 화합물을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사성 잔재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4.50	- 핵반응로에서 사용[조사(照射)]된 연료 요소[카트리지(cartridg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8.45		동위원소(제2844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동위원소의 무기화합물이나 유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5.10	- 중수(重水)(산화 중수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6		희토류(稀土類)금속·이트륨· 스칸듐이나 이들 금속혼합물의 무기· 유기 화합물	
		2846.10	- 세륨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7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7.00	- 과산화수소(요소로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9		탄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849.10	- 탄화칼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9.20	- 탄화규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4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50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규화물 ·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49호의 탄화물은 제외한다)	
		2850.00	- 수소화물·질화물·아지드화물· 규화물·붕화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2849호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탄화물은 제외한다)	40퍼센트 이상일 것
	28.52		무기나 유기 수산화합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2.10	-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5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53		인화물(燐化物)(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인철은 제외한다), 그 밖의 무기화합물[증류수나 전도도수(傳導度水)와 이와 유사한 순도의 물을 포함한다], 액체 공기 [희가스(rare gas)가 제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압축 공기, 아말감(amalgam)[귀금속의 아말감(amalgam)은 제외한다]	
		2853.10	- 시아노겐 클로라이드(클로르시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85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			유기화학품	
	29.01		비환식탄화수소	
		2901.10	- 포화비환식탄화수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1.2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	
		2901.21	-- 에틸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1.22	-- 프로펜(프로필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1.23	-- 부텐(부틸렌)과 이들의 이성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901.24	-- 1,3-부타디엔과 이소프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1.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2		환식탄화수소	
		2902.1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	
		2902.11	-- 시클로헥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2.20	- 벤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2.30	- 톨루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2.4	- 크실렌	
		2902.41	-- 오르토-크실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2.42	-- 메타-크실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2.43	-- 파라-크실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2.44	-- 혼합크실렌이성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2.50	- 스티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2.60	- 에틸벤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2.70	- 큐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		탄화수소의 할로겐화 유도체	
		2903.1	- 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11	-- 염화메탄(염화메틸)과 염화에탄(염화에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12	-- 이염화메탄(염화메틸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13	-- 클로로포름(삼염화메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14	-- 사염화탄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15	-- 이염화에틸렌(ISO)(1,2- 이염화에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2	- 불포화비환식탄화수소의 염소화유도체	
		2903.21	-- 염화비닐(염화에틸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22	-- 삼염화에틸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23	-- 사염화에틸렌(과염화에틸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3	- 비환식탄화수소의 플루오르화· 브롬화·요드화유도체	
		2903.31	-- 이브롬화에틸렌(ISO)(1,2- 디브로모에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7	- 비환식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할로겐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2903.71	-- 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72	-- 디클로로트리플루오르에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73	-- 디클로로플루오르에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74	-- 클로로디플루오르에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75	-- 디클로로펜타플루오르프로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76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77	-- 기타(불소와 염소만으로 퍼할로겐화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78	-- 그 밖의 퍼할로겐화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7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8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81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헥산 [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82	-- 엘드린(ISO), 클로르덴(ISO), 헵타클로르(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83	-- 미렉스(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8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9	- 방향족 탄화수소의 할로겐화유도체	
		2903.91	-- 클로로벤젠, 오르토-디클로로벤젠, 파라-디클로로벤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92	-- 헥사클로로벤젠(ISO)과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 트리클로로-2,2-비스(파라- 클로로페닐)에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93	-- 펜타클로로벤젠(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94	-- 헥사브로모비페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3.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4		탄화수소의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나 니트로소화유도체 (할로겐화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04.10	- 술폰화유도체와 이들의 염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에틸에스테르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4.20	- 니트로나 니트로소화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4.3	- 과불화옥탄술폰산, 그 염과 과불화옥탄술폰닐플루오라이드	
		2904.31	-- 과불화옥탄술폰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4.32	-- 과불화옥탄술폰산 암모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4.33	-- 과불화옥탄술폰산 리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4.34	-- 과불화옥탄술폰산 칼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4.35	-- 그 밖의 과불화옥탄술폰산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4.36	-- 과불화옥탄술폰닐플루오라이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4.9	- 기타	
		2904.91	-- 트리클로로니트로메탄 (클로로피크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4.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		비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1	- 포화 1가알코올	
		2905.11	-- 메탄올(메틸알코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12	-- 1-프로판올(프로필알코올)과 2-프로판올(이소프로필알코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13	-- 1-부탄올(노르말-부틸알코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14	-- 그 밖의 부탄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16	-- 옥탄올(옥틸알코올)과 그 이성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17	-- 1-도데칸올(라우릴알코올), 1-헥사데칸올(세틸알코올), 1-옥타데칸올(스테아릴알코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2	- 불포화 1가알코올	
		2905.22	-- 비환식테르펜알코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3	- 2가알코올	
		2905.31	-- 에틸렌글리콜(에탄디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32	-- 프로필렌글리콜(프로판-1,2-디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4	- 그 밖의 다가알코올	
		2905.41	-- 2-에틸-2-(히드록시메틸)프로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1,3-디올(트리메틸올프로판)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42	-- 펜타에리트리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43	-- 만니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44	-- 디-글루시톨(소르비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45	-- 글리세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5	- 비환식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5.51	-- 에스클로비놀(IN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5.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6		환식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6.1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	
		2906.11	-- 멘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6.12	-- 시클로헥산올 · 메틸시클로헥산올 · 디메틸시클로헥산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6.13	-- 스테롤과 이노시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6.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6.2	- 방향족(芳香族)	
		2906.21	-- 벤질알코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6.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7		페놀과 페놀알코올	
		2907.1	- 1가페놀	
		2907.11	-- 페놀(석탄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7.12	-- 크레졸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7.13	-- 옥틸페놀·노닐페놀과 이들의 이성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7.15	-- 나프톨과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7.2	- 다가페놀과 페놀알코올	
		2907.21	-- 레소르시놀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7.22	-- 히드로퀴논(퀴놀)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7.23	-- 4,4'-이소프로필리덴디페놀 (비스페놀에이, 디페닐올프로판)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907.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8		페놀이나 페놀알코올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8.1	- 할로겐화유도체와 이들의 염	
		2908.11	-- 펜타클로로페놀(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8.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8.9	- 기타	
		2908.91	-- 디노셉(ISO)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8.92	-- 4,6-디니트로-오르토-크레졸 [DNOC(ISO)]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8.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9		에테르 · 에테르알코올 · 에테르페놀 · 에테르알코올페놀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	- 비환식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11	-- 디에틸에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9.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9.2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909.30	- 방향족(芳香族)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9.4	- 에테르알코올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09.41	-- 2,2'-옥시디에탄올(디에틸렌글리콜, 디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9.43	-- 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모노부틸에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9.44	-- 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와 디에틸렌글리콜의 그 밖의 모노알킬에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9.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9.50	- 에테르페놀, 에테르알코올페놀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09.60	- 과산화알코올 · 과산화에테르 · 과산화케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0		3원고리의 에폭시드 · 에폭시알코올 · 에폭시페놀 · 에폭시에테르와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0.10	- 옥시란(에틸렌옥사이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0.20	- 메틸옥시란(프로필렌옥사이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0.30	- 1-클로로-2,3-에폭시프로판 (에피클로로하이드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0.40	- 디알드린(ISO, IN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0.50	- 엔드린(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1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1.00	- 아세탈·헤미아세탈(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술폰화유도체·니트로화유도체· 니트로소화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2		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파라포름알데히드	
		2912.1	- 비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11	-- 메탄알(포름알데히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2.12	-- 에탄알(아세트알데히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2.2	- 환식알데히드(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2.21	-- 벤즈알데히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2.4	- 알데히드-알코올, 알데히드-에테르· 알데히드-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알데히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912.41	-- 바닐린(4-히드록시-3-메톡시벤즈알데히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2.42	-- 에틸바닐린(3-에톡시-4-히드록시벤즈알데히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2.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2.50	- 알데히드의 환식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2.60	- 파라포름알데히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3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3.00	- 제2912호의 물품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 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		케톤 · 퀴논(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4.1	- 비환식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11	-- 아세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12	-- 부탄온(메틸에틸케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13	-- 4-메틸펜탄-2-온 (메틸이소부틸케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2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시클로테르펜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22	-- 시클로헥사논과 메틸시클로헥사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23	-- 이오논과 메틸이오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3	- 방향족 케톤(그 밖의 산소관능 결합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14.31	-- 페닐아세톤(페닐프로판-2-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40	- 케톤-알코올과 케톤-알데히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50	- 케톤-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 케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6	- 퀴논	
		2914.61	-- 안트라퀴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62	-- 코엔자임 Q10[유비데카레논(IN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7	-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4.71	-- 클로르데콘(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4.7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		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 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5.1	- 포름산, 그 염과 에스테르	
		2915.11	-- 포름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12	-- 포름산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13	-- 포름산의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2	- 초산과 그 염, 무수(無水)초산	
		2915.21	-- 초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24	-- 무수(無水)초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3	- 초산에스테르	
		2915.31	-- 초산에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32	-- 초산비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33	-- 초산노르말부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36	-- 초산디노셉(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40	- 모노클로로 아세트산 · 디클로로 아세트산 · 트리클로로 아세트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50	- 프로피온산, 그 염과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60	- 부탄산 · 펜탄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70	- 팔미트산 · 스테아르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6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 환식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6.1	- 불포화비환식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11	-- 아크릴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6.12	-- 아크릴산의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6.13	-- 메타아크릴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916.14	-- 메타아크릴산의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6.15	-- 올레산 · 리놀레산 · 리놀렌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6.16	-- 비나파크릴(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6.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6.2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모노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6.3	- 방향족(芳香族) 모노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6.31	-- 벤조산, 그 염과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6.32	-- 과산화벤조일과 염화벤조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6.34	-- 페닐아세트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6.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		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산화유도체	
		2917.1	- 비환식폴리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7.11	-- 옥살산, 그 염과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12	-- 아디프산, 그 염과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13	-- 아젤라산 · 세바스산, 이들의 염과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14	-- 무수말레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20	- 포화지환식 · 불포화지환식 · 시클로테르펜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3	- 방향족 폴리카르복시산,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7.32	-- 오르토프탈산디옥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33	-- 오르토프탈산디노닐과 오르토프탈산디데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34	-- 그 밖의 오르토프탈산의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35	-- 무수프탈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36	-- 테레프탈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37	-- 테레프탈산디메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7.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		추가 산소관능을 갖는 카르복시산과 이들의 무수물(無水物)·할로겐화물· 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할로겐유도체·술폰화유도체· 니트로화유도체·니트로소화유도체	
		2918.1	- 알코올관능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는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할로겐화물·과산화물·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8.11	-- 락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12	-- 타르타르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13	-- 타르타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14	-- 시트르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15	-- 시트르산의 염과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16	-- 글루콘산, 그 염과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17	-- 2,2-디페닐-2-하이드록시아세트산 (벤질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18	-- 클로로벤질레이트(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2	- 페놀관능기의 카르복시산(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2918.21	-- 살리실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22	-- 오르토-아세틸살리실산, 그 염과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23	-- 그 밖의 살리실산의 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30	- 알데히드 · 케톤관능기의 카르복시산 (그 밖의 산소관능을 가지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무수물 (無水物) · 할로겐화물 · 과산화물 · 과산화산, 이들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9	- 기타	
		2918.91	-- 2,4,5-티(ISO) (2,4,5-트리클로로페녹시아세트산), 그 염과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8.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9		인산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락토포스페이트를 포함한다),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19.10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1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0		그 밖의 비(非)금속 무기산의 에스테르(할로겐화수소의 에스테르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920.1	- 티오인산에스테르 (포스포로티오에이트)와 이들의 염, 이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11	-- 파라티온(ISO)과 파라티온- 메틸(ISO)(메틸-파라티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0.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0.2	- 아인산 에스테르와 그 염, 그들의 할로겐화유도체 · 술폰화유도체 · 니트로화유도체 · 니트로소화유도체	
		2920.21	-- 디메틸 포스파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0.22	-- 디에틸 포스파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0.23	-- 트리메틸 포스파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0.24	-- 트리에틸 포스파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0.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0.30	- 엔도설판(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		아민관능화합물	
		2921.1	- 비환식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11	-- 메틸아민 · 디메틸아민 · 트리메틸아민과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12	-- 2-(엔, 엔-디메틸아미노) 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13	-- 2-(엔, 엔-디에틸아미노) 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14	-- 2-(엔, 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 에틸클로라이드 염산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2	- 비환식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21	-- 에틸렌디아민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22	-- 헥사메틸렌디아민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2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30	- 포화지환식아민 · 불포화지환식아민 · 시클로테르펜 모노아민 ·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	- 방향족(芳香族) 모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41	-- 아닐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2	-- 아닐린유도체와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3	-- 톨루이딘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921.44	-- 디페닐아민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5	-- 1-나프틸아민(알파-나프틸아민), 2-나프틸아민(베타-나프틸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6	-- 암페타민(INN) · 벤즈페타민(INN) · 덱스암페타민(INN) · 에틸암페타민(INN)) · 펜캄파민(INN) · 레페타민(INN) · 레브암페타민(INN) · 메페노렉스(INN) · 펜터민(INN),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5	- 방향족(芳香族) 폴리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1.51	-- 오르토-페닐렌디아민 · 메타-페닐렌디아민 · 파라-페닐렌디아민 · 디아미노톨루엔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1.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2922.1	- 아미노알코올(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 ·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11	-- 모노에탄올아민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2	-- 디에탄올아민과 그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4	-- 덱스트로프로폭시펜(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5	-- 트리에탄올아민	6단위 세번변경기준 (제2922.19호의 트리에탄올아민 염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922.16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에탄올암모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7	-- 메틸디에탄올아민과 에틸디에탄올아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8	-- 2-(엔,엔-디이소프로필아미노) 에탄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2	- 아미노나프톨 · 그 밖의 아미노페놀 (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테르 ·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21	-- 아미노히드록시 나프탈렌술폰산과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3	- 아미노-알데히드 · 아미노-케톤과 아미노-퀴논(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2922.31	-- 암페프라몬(INN) · 메타돈(INN) · 노르메타돈(INN)과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4	- 아미노산(동종 산소관능을 가지는 것으로 한정한다)과 이들의 에스테르, 이들의 염	
		2922.41	-- 리신과 그 에스테르, 이들의 염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42	-- 글루탐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922.43	-- 안트라닐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44	-- 탈리딘(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2.50	- 아미노-알코올페놀 · 아미노산페놀과 그 밖의 산소관능아미노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		제4암모늄염과 수산화 제4암모늄,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923.10	- 콜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20	- 레시틴과 그 밖의 포스포아미노리피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30	- 과불화옥탄 술폰산 테트라에틸암모늄	6단위 세번변경기준 (제2923.40호 및 제2923.90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40	- 과불화옥탄 술폰산 디데실디메틸암모늄	6단위 세번변경기준 (제2923.30호 및 제2923.90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3.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제2923.30호 및 제2923.40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4		카르복시 아미드관능화합물, 탄산의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아미드관능화합물	
		2924.1	- 비환식아미드(비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11	-- 메프로바메이트(IN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4.12	-- 플루오로아세트아미드(ISO), 모노크로토포스(ISO), 포스파미돈(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4.2	- 환식아미드(환식카르바메이트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4.21	-- 우레인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4.23	-- 2-아세트아미도벤조산(엔-아세틸 안트라닐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4.24	-- 에치나메이트(IN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4.25	-- 알라클로르(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4.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5		카르복시이미드 관능화합물(사카린과 그 염을 포함한다)과 이민관능화합물	
		2925.1	- 이미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11	-- 사카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5.12	-- 구루테치미드(IN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5.2	- 이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25.21	-- 클로르디메포름(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6		니트릴관능화합물	
		2926.10	- 아크릴로니트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6.20	- 1-시아노구아니딘(디시안디아미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6.30	- 펜프로포렉스(INN)와 그 염, 메사돈(INN) 제조중간체(4-시아노-2- 디메틸아미노-4,4-디페닐부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6.40	- 알파-페닐아세토아세토니트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7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 아족시화합물	
		2927.00	- 디아조화합물 · 아조화합물 · 아족시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8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2928.00	- 히드라진 · 히드록실아민의 유기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29		그 밖의 질소관능화합물	
		2929.10	- 이소시아네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92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0		유기-황 화합물	
		2930.20	- 티오키르바메이트와 디티오키르바메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0.30	- 티우람모노설파이드 · 티우람디설파이드 · 티우람테트라설파이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0.40	- 메티오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0.60	- 2-(엔,엔-디에틸아미노)에탄티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0.70	- 비스(2-하이드록시에틸)설파이드 [티오디글리콜(IN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0.80	- 알디카브(ISO), 캅타폴(ISO) 및 메타미도포스(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1		그 밖의 유기-무기화합물	
		2931.10	- 테트라메칠납, 테트라에칠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1.20	- 트리부틸틴 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1.3	- 그 밖의 유기-인 유도체	
		2931.31	-- 디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1.32	-- 디메틸 프로필포스포네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1.33	-- 디에틸 에틸포스포네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1.34	-- 3-(트리하이드록시시릴)프로필 에틸포스포네이트 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1.35	-- 2,4,6-트리프로필-1,3,5,2,4,6- 트리옥사트리포스포네인 2,4,6- 트리옥사이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1.36	-- (5-에틸-2-메틸-2-옥시도-1,3,2- 디옥사포스포난-5-일)메틸 메틸 에틸포스포네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1.37	-- 비스[(5-에틸-2-메틸-2-옥시도- 1,3,2-디옥사포스포난-5-일)메틸] 에틸포스포네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1.38	-- 메틸포스포산과 (아미노아미노메틸) 우레아의 염(1 : 1)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1.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2		산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2.1	- 불지 않은 푸란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2.11	-- 테트라히드로푸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2.12	-- 2-푸르알데히드(푸르푸르알데히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2.13	-- 푸르푸릴 알코올, 테트라히드로 푸르푸릴 알코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2.14	-- 수크랄로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2.20	- 락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2.9	- 기타	
		2932.91	-- 이소사프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2.92	-- 1-(1,3-벤조디옥솔-5-일) 프로판-2-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2.93	-- 피페로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2.94	-- 사프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2.95	-- 테트라히드로카나비놀(모든 이성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		질소 원자만을 함유한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3.1	- 불지 않은 피라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11	-- 페나존(안티피린)과 그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2	- 불지 않은 이미다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21	-- 히단토인과 그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3	- 불지 않은 피리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31	-- 피리딘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32	-- 피페리딘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33	-- 알펜타닐(INN) · 아닐레리딘(INN) · 베지트라마이드(INN) · 브로마제팜(INN) · 디페녹신(INN) · 디펜옥실레이트(INN) · 디피파논(INN) · 펜타일(INN) · 케토베미돈(INN) · 메틸페니데이트(INN) · 펜타조신(INN) · 페치딘(INN) · 페치딘(INN) 제조중간체 에이 · 펜사이클리딘(INN)(PCP) · 페노페리딘(INN) · 피프라드롤(INN) · 피리트라미드(INN) · 프로피람(INN) · 트리메페리딘(INN)과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4	- 퀴놀린고리나 이소퀴놀린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3.41	-- 레보파놀(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5	- 피리미딘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나 피페라진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52	-- 말로닐우레아(바르비투르산)와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53	-- 아로바르비탈(INN) · 아모바르비탈(INN) · 바르비탈(INN) · 부탈비탈(INN) · 부토바르비탈(INN) · 싸이클로바르비탈(INN) · 메틸페노바르비탈(INN) · 펜토바르비탈(INN) · 페노바르비탈(INN) · 섹부타바르비탈(INN) · 세코바르비탈(INN) · 비닐비탈(INN)과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54	-- 그 밖의 말로닐우레아 유도체(바르비투르산)와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55	-- 로프라졸람(INN) · 메크로과론(INN) · 메타과론(INN) · 지페프롤(INN)과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6	- 불지 않은 트리아진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2933.61	-- 멜라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7	- 락탐	
		2933.71	-- 6-헥산락탐(에프시론-카프로락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72	-- 클로바잠(INN)과 메치푸리론(IN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79	-- 그 밖의 락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9	- 기타	
		2933.91	-- 알프라졸람(INN) · 카마제팜(INN) · 클로르디아제폭사이드(INN) · 클로나제팜(INN) · 클로라제페이트 · 델로라제팜(INN) · 디아제팜(INN) · 에스타졸람(INN) · 에틸로프라제페이트(INN) · 플르디아제팜(INN) · 플루니트라제팜(INN) · 플루라제팜(INN) · 할라제팜(INN) · 로라제팜(INN) · 로르메타제팜(INN) · 마진돌(INN) · 메다제팜(INN) · 미다졸람(INN) · 니메타제팜(INN) · 니트라제팜(INN) · 놀다제팜(INN) · 옥사제팜(INN) · 피나제팜(INN) · 프라제팜(INN) · 피로발레톤(INN) · 테마제팜(INN) · 테트라제팜(INN) · 트리아졸람(INN)과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92	-- 아진포스-메틸(IS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3.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4		핵산과 이들의 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그 밖의 헤테로고리 화합물	
		2934.10	- 불지 않은 티아졸고리(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다)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4.20	- 벤조티아졸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4.30	- 페노티아진고리의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수소를 첨가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리가 더 이상 불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4.9	- 기타	
		2934.91	-- 아미노렉스(INN) · 브로티졸람(INN) · 클로티아제팜(INN) · 클록사졸람(INN) · 텍스트로모라마이드(INN) · 할록사졸람(INN) · 케타졸람(INN) · 메소카브(INN) · 옥사졸람(INN) · 페몰린(INN) · 펜디메트라진(INN) · 펜메트라진(INN) · 서펜타닐(INN)과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934.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5		술폰아미드	
		2935.10	- 엔-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5.20	- 엔-에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5.30	- 엔-에틸-엔-(2-히드록시에틸)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5.40	- 엔-(2-히드록시에틸)-엔- 메틸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5.50	- 그 밖의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6		프로비타민과 비타민(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하며, 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이들의 유도체로서 주로 비타민으로 사용하는 것과 이들의 상호 혼합물(용매에 용해하였는지에 상관없다)	
		2936.2	-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936.21	-- 비타민 A와 이들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6.22	-- 비타민 B1과 이들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6.23	-- 비타민 B2와 이들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936.24	-- 디-판토텐산이나 디엘-판토텐산 (비타민 B3나 비타민 B5)과 이들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6.25	-- 비타민 B6와 이들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6.26	-- 비타민 B12와 이들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6.27	-- 비타민 C와 이들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6.28	-- 비타민 E와 이들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6.29	-- 그 밖의 비타민과 이들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6.90	- 기타(천연의 프로비타민 농축물과 비타민 농축물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7		호르몬 · 프로스타글란딘 · 트롬복산 · 류코트리엔(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으로서 주로 호르몬으로 사용되는 것(변성된 폴리펩타이드 체인을 가진 것을 포함한다)	
		2937.1	- 폴리펩타이드 호르몬, 단백질 호르몬, 글리코프로테인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11	-- 소마토트로핀, 그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7.12	-- 인슐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7.2	- 스테로이드 호르몬,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2937.21	-- 코르티손 · 히드로코르티손 · 프레드니손(데히드로코르티손) · 프레드니손(데히드로히드로코르티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7.22	--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할로겐화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7.23	--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토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7.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7.50	- 프로스타글렌딘, 트롬복산과 류코트리엔, 이들의 유도체와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8		글리코시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2938.10	- 루토시드(루틴)와 그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		알칼로이드(천연의 것과 이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는 합성의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염 · 에테르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2939.1	- 아편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11	-- 양귀비 줄기 농축물, 버프레노핀 (INN) · 코데인 · 디히드로코데인(INN) · 에틸모르핀 · 에토르핀(INN) · 헤로인 · 히드로코돈(INN) · 히드로모르폰(IN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 · 모르핀 · 니코모르핀(INN) · 옥시코돈 (INN) · 옥시모르폰(INN) · 폴코딘(INN) · 테바콘(INN) · 테바인, 이들의 염	
		2939.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20	- 기나의 알칼로이드와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30	- 카페인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4	- 에페드린과 이들의 염	
		2939.41	-- 에페드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42	-- 슈도에페드린(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43	-- 캐친(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44	-- 놀에페드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5	- 테오피린 · 아미노피린(테오피린- 에틸렌디아민)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2939.51	-- 페네틸린(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6	- 맥각 알칼로이드와 그 유도체, 이들의 염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939.61	-- 엘고메트린(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62	-- 엘고타민(INN)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63	-- 리세르그산과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7	- 기타(식물성의 것에 한정한다)	
		2939.71	-- 코카인 · 엑고닌 · 레보메탐페타민 · 메탐페타민(INN) · 메탐페타민 레이스메이트 및 이들의 염 · 에스테르 · 그 밖의 유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7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39.8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40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 · 유당 · 맥아당 · 포도당 ·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 · 당아세탈 · 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제2937호 · 제2938호 · 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2940.00	- 당류(화학적으로 순수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당 · 유당 · 맥아당 · 포도당 · 과당은 제외한다), 당에테르 · 당아세탈 · 당에스테르와 이들의 염 (제2937호 · 제2938호 · 제29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41		항생물질	
		2941.10	- 페니실린과 페니실린산의 구조를 갖는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41.20	- 스트렙토마이신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2941.30	- 테트라사이클린과 이들의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41.40	- 클로람페니콜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41.50	- 에리트로마이신과 그 유도체, 이들의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4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29.42		그 밖의 유기화합물	
		2942.00	- 그 밖의 유기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			의료용품	
	30.01		장기(臟器) 요법용 선(腺)과 그 밖의 기관(건조한 것으로 한정하며, 가루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선(腺)과 그 밖의 기관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로서 장기(臟器) 요법용의 것, 헤파린과 그 염, 치료용·예방용으로 조제한 그 밖의 인체물질이나 동물의 물질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	
		3001.20	- 선(腺)이나 그 밖의 기관의 추출물이나 이들의 분비물의 추출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		사람의 피, 치료용·예방용·진단용으로 조제한 동물의 피, 면역혈청·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백신·독소·미생물 배양체(효모는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3002.1	- 면역혈청, 그 밖의 혈액 분획물과 면역물품(생물공학적인 방법에 따라 변성되거나 얻어진 것인지에 상관없다)	
		3002.11	-- 말라리아 진단 테스트 키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12	-- 면역혈청과 그 밖의 혈액 분획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13	-- 면역물품(혼합하지 않은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14	-- 면역물품(혼합된 것에 한정하며,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15	-- 면역물품(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에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20	- 백신(인체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30	- 백신(동물의약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3		의약품(두 가지 이상의 성분을 혼합한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은 제외한다)	
		3003.1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3.2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3003.3	- 기타(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3.31	-- 인슐린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3.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3.4	-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3003.41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3.42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3.43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3.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3.6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항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4		의약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3002호·제3005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004.10	- 페니실린이나 이들의 유도체 (페니실린산 구조를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를 함유한 것, 스트렙토마이신이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4.20	- 기타(항생물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4.3	- 기타(제2937호의 호르몬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4.31	-- 인슐린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4.32	-- 코르티코스테로이드(corticosteroid) 호르몬을 함유한 것과 이들의 유도체나 그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4.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4.4	- 기타(알칼로이드나 이들의 유도체를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004.41	-- 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4.42	-- 슈도에페드린(INN)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4.43	-- 놀에페드린 또는 그 염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4.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4.50	- 기타(제2936호의 비타민이나 그 밖의 물품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4.60	- 기타(이 류의 소호주 제2호에 열거한 향말라리아 활성성분을 함유한 것에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5		탈지면·거즈·붕대와 이와 유사한 제품(예: 피복재·반창고·습포제) 으로서 내과용·외과용·치과용·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수의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의료물질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이나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	
		3005.10	- 접착성 피복재와 접착층을 갖는 그 밖의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6		의료용품(이 류의 주 제4호의 물품으로 한정한다)	
		3006.10	- 살균한 외과용 캣거트(catgut) · 이와 유사한 살균한 봉합재(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실을 포함한다) · 살균한 수술상처의 봉합용 접착제,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와 살균한 라미나리아(laminaria)의 텐트,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흡수성 지혈제, 살균한 외과용이나 치과용 유착방지제 (흡수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6.20	- 혈액형 분류용 시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6.30	- 엑스선 검사용 조영제, 환자에 투여할 진단용 시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6.40	- 치과용 시멘트와 그 밖의 치과용 충전제, 뼈 형성용 시멘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6.50	- 구급상자와 구급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6.60	- 제2937호의 호르몬과 그 밖의 제품이나 살정자제(殺精子劑)를 기본 재료로 하는 피임성의 화학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6.70	- 외과수술이나 신체검사를 할 때 신체 각 부분의 윤활제로 사용되거나 신체와 의료기기 사이의 접착약품으로서 사람이나 수의약에 사용되는 겔(gel)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6.9	- 기타	
		3006.91	-- 장루(腸瘻)용으로 인정되는 기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006.92	-- 폐(廢)의료용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			비료	
	31.01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3101.00	- 동물성·식물성 비료(함께 혼합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 처리를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동물성·식물성 물품을 혼합하거나 화학적으로 처리한 비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2		질소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2.10	- 요소(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2.2	- 황산암모늄, 황산암모늄·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3102.21	-- 황산암모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2.30	- 질산암모늄(수용액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2.40	- 질산암모늄의 혼합물(탄산칼슘이나 그 밖의 비료성분이 아닌 무기물을 첨가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2.50	- 질산나트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2.60	- 질산칼슘·질산암모늄의 겹염과 혼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3102.80	- 요소·질산암모늄의 혼합물 (수용액이나 암모니아용액을 혼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2.90	- 기타(위의 소호에 열거하지 않은 혼합물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3		인산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3.1	- 과인산석회	
		3103.11	-- 오산화인(P_2O_5)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35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4		칼륨비료(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로 한정한다)	
		3104.20	- 염화칼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4.30	- 황산칼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비료의 필수요소인 질소·인·칼륨 중 두 가지나 세 가지를 함유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의 비료,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3105.10	- 이 류에 열거한 물품을 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 것이거나 용기를 포함한 한 개의 총중량이 10킬로그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이하로 포장한 것	
		3105.20	- 질소·인·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30	- 오르토인산수소 이암모늄 (인산이암모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40	- 오르토인산이수소암모늄 (인산일암모늄), 이것과 오르토인산수소이암모늄(인산이암모늄)의 혼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5	- 질소와 인을 함유한 그 밖의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3105.51	-- 질산염과 인산염을 함유한 비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60	- 인과 칼륨을 함유한 광물성 비료나 화학비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1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			유연용·염색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이들의 유도체, 염료·안료와 그 밖의 착색제, 페인트·바니시(vernish), 퍼티(putty)와 그 밖의 매스틱(mastic), 잉크	
	32.01		식물성 유연용 추출물(extract), 탄닌과 그 염·에테르·에스테르·그 밖의 유도체	
		3201.10	- 케브라초 추출물(quebracho extrac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1.20	- 왓틀 추출물(wattle extrac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2		합성 유기유연제·무기유연제·조제 유연제(천연 유연제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유연전(柔軟前) 처리용 호소계 조제품	
		3202.10	- 합성 유기유연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3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3.00	- 식물성·동물성 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염색용 추출물(extract)을 포함하고 수탄(獸炭)은 제외한다]와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		합성 유기착색제(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형광증백제(螢光増白劑)나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4.1	- 합성 유기착색제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4.11	-- 분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12	-- 산성 염료(금속염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매염(媒染)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13	-- 염기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14	-- 직접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15	-- 건염(建染) 염료(그 상태에서 안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16	-- 반응성 염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17	-- 안료 색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19	-- 기타(소호 제3204.11호부터 제3204.19호까지에 해당하는 둘 이상의 착색제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20	- 형광증백제로 사용되는 종류의 합성유기생산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5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3205.00	- 레이크 안료와 이들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제3203호· 제3204호·제3205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루미노퍼 (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화학적으로 단일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06.1	- 이산화티타늄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3206.11	-- 건조 상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3206.20	- 크로뮴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안료와 그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4	- 그 밖의 착색제와 조제품	
		3206.41	-- 군청(群靑)과 이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42	-- 황아연을 기본 재료로 한 리도폰(lithopone) · 그 밖의 안료와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6.50	- 루미노퍼(luminophore)로 사용되는 무기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7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 · 법랑 · 유약 · 유약용 슬립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요업 · 에나멜공업 · 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3207.10	- 조제 안료 · 조제 유백제(乳白劑) · 조제 그림물감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7.20	- 법랑과 유약 · 유약용 슬립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7.30	- 액체 상태 러스터(lustre)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7.40	- 유리 프리트(frit)와 그 밖의 유리[가루 · 알갱이 · 플레이크(flak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8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 ·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4호의 용액	
		3208.10	- 폴리에스테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8.20	-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9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에나멜과 래커(lacquer)를 포함하며, 합성 중합체나 화학적으로 변성한 천연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하여 수성(水性) 매질(媒質)에 분산하거나 용해한 것으로 한정한다]	
		3209.10	- 아크릴이나 비닐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0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10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 [에나멜 · 래커(lacquer) · 디스탬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건축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3210.00	- 그 밖의 페인트와 바니시(vernish) [에나멜 · 래커(lacquer) · 디스탬퍼(distemper)를 포함한다], 건축의 완성가공용으로 사용하는 조제 수성안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11		조제 드라이어	
		3211.00	- 조제 드라이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12		비수성(非水性) 매질(媒質)에 분산시킨 안료[금속 가루 · 금속플레이크(flake)를 포함하며, 페인트 · 에나멜 제조에 사용되는 액체나 페이스트(paste) 상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용 박(箔),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염료와 그 밖의 착색제	
		3212.10	- 스탬프용 박(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1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13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 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	
		3213.10	- 세트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1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14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 (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화 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건물의 외면·실내벽·마루·천장과 이와 유사한 장소에 사용되는 비내화성 표면처리제	
		3214.10	- 유리 접합용 퍼티(putty)·접목용 퍼티 (putty)·수지시멘트·코킹(caulking) 화합물과 그 밖의 매스틱(mastic), 도장용 충전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1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15		인쇄용 잉크·필기용 잉크·제도용 잉크와 그 밖의 잉크(농축하거나 고체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215.1	- 인쇄용 잉크	
		3215.11	-- 흑색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21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321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			정유(essential oil)와 레지노이드 (resinoid), 조제향료와 화장품 · 화장용품	
	33.01		정유(essential oil)[콘크리트 (concrete)와 앵설루트(absolute)를 포함하며, 테르펜을 제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레지노이드(resinoid), 추출한 올레오레진(oleoresin), 정유(essential oil)의 농축물 [냉침법(冷浸法)이나 온침법(溫浸法)에 따라 얻은 것으로서 유지 · 불취발성유 · 왁스나 이와 유사한 물질을 매질(媒質)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정유(essential oil)에서 테르펜을 제거할 때 생기는 테르펜계 부산물,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	
		3301.1	- 정유(essential oil)(감귤류로 한정한다)	
		3301.12	-- 오렌지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13	-- 레몬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2	- 정유(essential oil)(감귤류 외의 것으로 한정한다)	
		3301.24	-- 박하유[멘타 피페리타(Mentha piperita)]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25	-- 그 밖의 민트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3301.30	- 레지노이드(resinoid)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211.20호, 제1302.14호 및 제1302.19호는 완전생산기준인 경우로 한정한다)
	33.02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혼합물과 방향성(芳香性) 물질의 하나 이상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알코올의 용액을 포함하며, 공업용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방향성(芳香性) 물질을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조제품(음료제조용으로 한정한다)	
		3302.10	- 식품공업용이나 음료공업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3		향수와 화장수	
		3303.00	- 향수와 화장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4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3304.10	- 입술화장용 제품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4.20	- 눈화장용 제품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4.30	-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4.9	- 기타	
		3304.91	--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4.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5		두발용 제품류	
		3305.10	- 샴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5.20	- 퍼머넌트 웨이빙(permanent waving)용이나 스트레이트닝(straightening)용 제품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5.30	- 헤어 래커(hair lacqu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6		구강·치과 위생용 제품류[치열 교정용 페이스트(paste)와 가루를 포함한다],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치실(dental floss)]	
		3306.10	- 치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6.20	- 치간 청결용 실[치실(dental flos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7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3307.10	- 면도용 제품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7.20	-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7.30	- 향을 첨가한 목욕용 염과 그 밖의 목욕용 제품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7.4	- 실내용 방향 조제품이나 탈취 조제품 (종교의식에 사용하는 방향 조제품을 포함한다)	
		3307.41	-- 아가바티(agarbatti)와 그 밖의 연소시켜 사용하는 향기성의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7.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30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			비누·유기계면활성제·조제 세제· 조제 윤활제·인조 왁스·조제 왁스· 광택용이나 연마용 조제품·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조형용 페이스트 (paste)·치과용 왁스와 플라스틱 (plaster)를 기본 재료로 한 치과용 조제품	
	34.01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	
		3401.1	- 비누·유기계면활성제제품과 조제품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막대(bar) 모양 · 케이크 모양 · 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 · 워딩(wadding) · 펄트(felt) · 부직포	
		3401.11	-- 화장용(약용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1.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1.20	- 그 밖의 모양의 비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1.30	-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2		유기계면활성제(비누는 제외한다), 조제 계면활성제 · 조제 세제(보조 조제 세제를 포함한다) · 조제 청정제(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4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402.1	- 유기계면활성제(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402.11	-- 음이온성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2.12	-- 양이온성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2.13	-- 비이온성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2.20	- 소매용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3		조제 윤활유[윤활제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 절삭제·볼트나 너트 방출제·방청제·부식방지제·이형(mould release) 조제품을 포함한다],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오일링처리나 가지처리에 사용하는 조제품[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을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3403.1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3403.11	--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3.9	- 기타	
		3403.91	-- 방직용 재료·가죽·모피나 그 밖의 재료의 처리용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3.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4		인조 왁스와 조제 왁스	
		3404.20	- 폴리(옥시에틸렌)(폴리에틸렌글리콜)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5		신발용·가구용·마루용·차체(coachwork)용·유리용·금속용 광택제와 크림, 연마페이스트(paste)·연마가루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이러한 조제품을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셀룰러 플라스틱·셀룰러 고무 형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제3404호의 왁스는 제외한다)	
		3405.10	- 신발용이나 가구용 광택제·크림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이와 유사한 조제품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5.20	- 목제가구·마루나 그 밖의 목제품의 유지용 광택제·크림과 이와 유사한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5.30	- 차체(coachwork)용 광택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금속용 광택제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5.40	- 조제 연마페이스트(paste)·조제 연마가루와 그 밖의 연마용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6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3406.00	- 양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4.07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3407.00	- 조형용 페이스트(paste)(아동 오락용을 포함한다), 치과용 왁스나 치과용 인상재료[세트로 된 것, 소매용으로 포장된 것, 판 모양·말굽 모양·막대(stick)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것으로 한정한다], 플라스터(plaster)(소석고나 황산칼슘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를 기본 재료로 한 그 밖의 치과용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			단백질계 물질, 변성전분, 글루(glue), 효소	
	35.01		카세인(casein)·카세인산염(caseinate)과 그 밖의 카세인(casein) 유도체, 카세인 글루(casein glue)	
		3501.10	- 카세인(casei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02		알부민(건조물 상태에서 계산한 유장단백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하는 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 알부민산염과 그 밖의 알부민 유도체	
		3502.1	- 알의 흰자위(egg albumin)	
		3502.11	-- 건조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02.20	- 밀크알부민(둘 이상의 유장단백질의 농축물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03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3503.00	- 젤라틴[직사각형(정사각형의 것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인 것을 포함하며, 표면가공이나 착색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젤라틴 유도체, 아이징글라스(isinglass), 그 밖의 동물성 글루(glue)[제3501호의 카세인 글루(casein glue)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04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 (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504.00	- 펩톤(peptone)과 이들의 유도체, 그 밖의 단백질계 물질과 이들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유도체(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하이드파우더(hide powder) (크롬명반을 첨가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05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예: 프리젤라티나이지드(pregelatinised) 전분이나 에스테르화 전분], 전분·덱스트린이나 그 밖의 변성전분을 기본 재료로 한 글루(glue)	
		3505.10	- 덱스트린과 그 밖의 변성전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05.20	- 글루(glu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06		조제 글루(glue)와 그 밖의 조제 접착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506.10	- 글루(glue)나 접착제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물품[소매용으로 한 글루(glue)나 접착제로서, 순중량이 1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06.9	- 기타	
		3506.91	---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폴리머(polymer)나 고무를 기본 재료로 한 접착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06.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07		효소와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효소	
		3507.10	- 레네트(rennet)와 이들의 농축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50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6			화약류, 화공품, 성냥, 발화성 합금, 특정 가연성 조제품	
	36.01		화약	
		3601.00	- 화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6.02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3602.00	- 폭약(화약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6.03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3603.00	- 도화선, 도폭선, 뇌관, 점화기, 전기뇌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6.04		불꽃제품 · 신호용 조명탄 · 레인로켓 (rain rocket) · 안개 신호용품과 그 밖의 화공품	
		3604.10	- 불꽃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6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6.05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3605.00	- 성냥(제3604호의 화공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6.06		페로세륨 · 그 밖의 발화성 합금(어떤 모양이라도 가능하다), 이 류의 주 제2호의 가연성 재료의 제품	
		3606.10	- 흡연용 라이터나 이와 유사한 라이터를 충전하거나 재충전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용기(용량이 300세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에 넣은 액체연료 · 액화가스연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6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			사진용이나 영화용 재료	
	37.01		평면 모양 사진플레이트 · 평면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 · 판지 · 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평면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팩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1.10	- 엑스선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1.20	- 인스턴트 프린트필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1.30	- 그 밖의 플레이트와 필름(각 변의 길이가 25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1.9	- 기타	
		3701.91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		를 모양 사진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종이·판지·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과 를 모양 인스턴트 프린트필름(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2.10	- 엑스선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3	-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3702.31	-- 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32	-- 기타[할로겐화은 에멀션(emulsion) 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4	- 그 밖의 필름(구멍이 없는 것으로서 폭이 10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한정한다)	
		3702.41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천연색 사진용의 것(폴리크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42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를 초과하는 것(천연색 사진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43	-- 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길이가 200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44	-- 폭이 105밀리미터 초과 610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5	- 그 밖의 필름[천연색 사진용 (폴리크롬)]	
		3702.52	-- 폭이 16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53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 (슬라이드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54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 (슬라이드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55	-- 폭이 16밀리미터 초과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56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9	- 기타	
		3702.96	--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97	-- 폭이 35밀리미터 이하로서 길이가 30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2.98	-- 폭이 3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3		사진 인화지 · 판지 · 직물(감광성이 있고 노광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3.10	- 롤 모양(폭이 6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3.20	- 기타[천연색 사진용(폴리크롬)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4		사진플레이트 · 필름 · 인화지 · 판지 ·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704.00	- 사진플레이트 · 필름 · 인화지 · 판지 · 직물(노광한 것으로서 현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5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3705.00	- 사진플레이트와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영화용 필름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6		영화용 필름(노광하여 현상한 것으로 한정하며, 사운드트랙이 있는 것인지 또는 사운드트랙만으로 구성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3706.10	- 폭이 35밀리미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7		사진용 화학조제품[바니시(vernish) · 글루(glue) · 접착제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은 제외한다], 사진용 단일 물품(일정 소량으로 나누거나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모양인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3707.10	- 감광유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70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			각종 화학공업 생산품	
	38.01		인조흑연, 콜로이드흑연 · 반콜로이드흑연,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를 기본 재료로 한 조제품 [페이스트(paste) · 블록 · 판 모양이나 그 밖의 반제품으로 한정한다]	
		3801.10	- 인조흑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1.20	- 콜로이드흑연이나 반콜로이드흑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1.30	- 전극용 탄소질 페이스트(paste)와 노(爐) 내장용의 이와 유사한 페이스트(past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2		활성탄, 활성화한 천연의 광물성 생산품, 수탄(獸炭)[폐수탄(廢獸炭)을 포함한다]	
		3802.10	- 활성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3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3803.00	- 톨유(tall oil)(정제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4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3804.00	- 목재펄프를 제조할 때 생기는 폐액(廢液)[농축한 것인지, 당류를 제거한 것인지 또는 화학적으로 처리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리그닌 술폰산을 포함하나, 제3803호의 톨유(tall oil)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5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 황산테레빈유와 그 밖의 테르펜계유(증류나 그 밖의 방법에 따라 침엽수 목재에서 얻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공하지 않은 디펜틴, 아황산테레빈과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파라시멘, 파인유(pine oil)(주성분이 알파테르피네올인 것으로 한정한다)	
		3805.10	- 검테레빈유 · 우드테레빈유 · 황산테레빈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6		로진(rosin) · 수지산과 이들의 유도체, 로진 스피릿(rosin spirit)과 로진유(rosin oil), 런검(run gum)	
		3806.10	- 로진(rosin)과 수지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6.20	- 로진염, 수지산염, 로진(rosin) · 수지산 유도체의 염[로진(rosin) 부가물의 염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6.30	- 에스테르 검(ester gum)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7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 · 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3807.00	- 목(木)타르, 목(木)타르유, 목(木)크레오소트(creosote), 목(木)나프타, 식물성 피치(pitch), 브루어피치(brewers' pitch)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로진(rosin)·수지산이나 식물성 피치(pitch)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		살충제·살서제(취약)·살균제·제초제 ·발아억제제·식물성장조절제·소독제 와 이와 유사한 물품[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을 한 것·조제품으로 한 것· 제품으로 한 것(예: 황으로 처리한 밴드·심지·양초·파리잡이 끈끈이) 으로 한정한다]	
		3808.5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의 물품	
		3808.52	--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에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6	- 이 류의 소호주 제2호의 물품	
		3808.61	-- 순중량이 300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62	-- 순중량이 300그램 초과 7.5킬로그램 이하로 포장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9	- 기타	
		3808.91	-- 살충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92	-- 살균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93	-- 제초제·발아억제제· 식물성장조절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94	-- 소독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8.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9		완성가공제, 염색 촉진용·염료 고착용 염색캐리어, 드레싱·매염제와 같은 그 밖의 물품과 조제품(섬유산업·제지산업·가죽산업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산업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09.10	- 전분질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9.9	- 기타	
		3809.91	-- 섬유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9.92	-- 제지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09.93	-- 가죽산업이나 이와 유사한 산업에서 사용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0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불임용·땀질용·용접용 용제와 그 밖의 보조 조제품, 납불임용·땀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용접용 전극·용접봉의 코어나 피복에 사용하는 조제품	
		3810.10	- 금속표면처리용 침지 조제품, 납불임용·땀질용·용접용 가루와 페이스트(paste)로서 금속과 그 밖의 재료로 조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1		안티녹(anti-knock)제·산화억제제·검화억제제(gum inhibitor)·점도향상제·부식방지제와 그 밖의 조제 첨가제 [광물유(가솔린을 포함한다)용이나 광물유와 동일한 목적에 사용하는 그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밖의 액체용으로 한정한다]	
		3811.1	- 안티녹(anti-knock)제	
		3811.11	-- 납화합물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1.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1.2	- 윤활유 첨가제	
		3811.21	--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1.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2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고무용· 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고무용· 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10	- 조제한 고무가황촉진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2.20	- 고무용·플라스틱용 복합가소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2.3	- 고무용·플라스틱용 산화방지 조제품과 그 밖의 복합안정제	
		3812.31	-- 2,2,4-트리메틸-1,2- 디히드로퀴놀린 올리고머(티엠큐)의 혼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2.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3		소화기용 조제품과 충전물, 충전된 소화탄	
		3813.00	- 소화기용 조제품과 충전물, 충전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소화탄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4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vernish) 제거제	
		3814.00	- 유기혼합용제와 시너(thinner)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제한 페인트·바니시(vernish) 제거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5		반응시작제·반응촉진제·촉매 조제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815.1	- 서포트된(supported) 촉매	
		3815.11	-- 활성물질로서 니켈이나 니켈화합물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5.12	-- 활성물질로서 귀금속이나 귀금속화합물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6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내화콘크리 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816.00	- 내화시멘트·내화모르타르· 내화콘크리트와 이와 유사한 혼합물 (제3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7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 (제2707호·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3817.00	- 혼합알킬벤젠과 혼합알킬나프탈렌 (제2707호·제2902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8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 (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3818.00	-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원소 (디스크·웨이퍼 모양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전자공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도프처리된(doped) 화학화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19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 [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3819.00	- 유압제동액과 그 밖의 조제 유압전동액[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석유나 역청유(瀝靑油)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0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3820.00	- 부동(不凍) 조제품과 조제 제빙액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1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3821.00	- 미생물(바이러스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식물·인간·동물 세포의 성장이나 보존을 위한 조제 배양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2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 (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3822.00	- 뒤편을 보강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과 조제된 진단용·실험실용 시약(뒤편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3002호·제3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보증된 참조물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3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 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3823.1	- 공업용 모노카르복시 지방산·유지를 정제할 때 생긴 애시드유(acid oil)	
		3823.11	-- 스테아린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3.12	-- 올레인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3.13	-- 톨유(tall oil) 지방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3.70	- 공업용 지방성 알코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3824.10	- 조제 점결제(주물의 주형용이나 코어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30	- 응집하지 않은 금속탄화물(상호 혼합되거나 금속점결제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40	- 시멘트용 · 모르타르용 · 콘크리트용 조제 첨가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50	- 비내화성 모르타르와 비내화성 콘크리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60	- 소르비톨(sorbitol) (소호 제2905.44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7	- 메탄, 에탄, 프로판의 할로겐화 유도체를 가지는 혼합물	
		3824.71	-- 염화불화탄소(CFCs)를 함유하는것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 · 과불화탄 소(PFCs) ·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72	-- 브로모클로로디플루오르메탄, 브로모트리플루오르메탄, 디브로모테트라플루오르에탄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73	-- 수소브로모플루오르카본(HBFCs)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74	--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는 것[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HFCs)를 함유한 것인지는 상관없으며 염화불화탄소 (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75	-- 사염화탄소를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76	-- 1,1,1-삼염화에탄(메틸 클로로포름)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77	-- 브로모에탄(브롬화메틸), 브로모클로로에탄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78	-- 과불화탄소(PFCs), 수소불화탄소 (HFCs)를 함유하는 것[염화불화탄소 (CFCs)나 수소염화불화탄소(HCFCs)를 함유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7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8	- 이 류의 소호주 제3호의 물품	
		3824.81	-- 옥시란(산화에틸렌)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82	-- 폴리염소화 비페닐(PCBs), 폴리염소화 테르페닐(PCTs), 폴리브롬화 비페닐(PBBs)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83	-- 트리스(2,3-디브로모프로필) 포스페이트를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84	- 앨드린(ISO), 캄페클로(ISO)(독사핀), 클로단(ISO), 클로르데콘(ISO), 디디티(ISO)[클로페노탄(INN), 1,1,1-트리클로로-2,2-비스(파라- 클로로페닐)에탄], 디엘드린(ISO, INN), 엔도설판(ISO), 엔드린(ISO), 헵타클로르(ISO) 또는 미렉스(ISO)를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3824.85	-- 1,2,3,4,5,6-헥사클로로시클로hex산 [HCH(ISO)][린데인(ISO, INN)을 포함하는 것]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86	-- 펜타클로로벤젠(ISO) 또는 헥사클로로벤젠(ISO)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87	-- 과불화옥탄 술폰산과 그 염, 과불화옥탄 술폰아미드, 또는 과불화옥탄술폰일 플루오라이드를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88	-- 테트라-, 펜타-, 헥사-, 헵타- 또는 옥타브로모디페닐 에테르를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9	- 기타	
		3824.91	-- (5-에틸-2-메틸-2-옥시도-1,3,2- 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와 비스[(5-에틸-2- 메틸-2-옥시도-1,3,2- 디옥사포스피란-5-일)메틸] 메틸포스포네이트로 주로 구성된 혼합물과 조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4.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5		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잔재물, 생활폐기물, 하수 찌꺼기, 이 류의 주 제6호의 그 밖의 폐기물	
		3825.10	- 생활폐기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5.20	- 하수 찌꺼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5.30	- 감염성 폐기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5.4	- 폐유기용제	
		3825.41	-- 할로겐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5.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5.50	- 금속세정액, 유압액, 브레이크액, 부동액 폐기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5.6	-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서 발생한 그 밖의 폐기물	
		3825.61	-- 주로 유기성분을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5.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8.26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3826.00	- 바이오디젤과 그 혼합물[석유나 역청유(瀝靑油)를 함유하지 않거나 중량기준으로 70 퍼센트 미만을 함유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7부 플라스틱과 그 제품, 고무와 그 제품				
39			플라스틱과 그 제품	
	39.01		에틸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1.1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1.20	- 폴리에틸렌(비중이 0.94 이상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1.30	- 에틸렌-초산비닐 공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1.40	- 에틸렌-알파-올레핀 공중합체 (비중이 0.94 미만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2		프로필렌의 중합체나 그 밖의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2.10	- 폴리프로필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2.20	- 폴리이소부틸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2.30	- 프로필렌 공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3		스티렌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3.1	- 폴리스티렌	
		3903.11	-- 발포성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3.20	- 스티렌-아크릴로니트릴 공중합체 (SA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3.30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티렌 공중합체(AB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4		염화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할로겐화 올레핀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form)으로 한정한다]	
		3904.10	- 폴리(염화비닐)(다른 물질을 혼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4.2	- 그 밖의 폴리(염화비닐)	
		3904.21	-- 가소화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4.22	-- 가소화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4.30	- 염화비닐-초산비닐 공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4.40	- 그 밖의 염화비닐 공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4.50	- 염화비닐리덴 중합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4.6	- 플루오르 중합체	
		3904.61	-- 폴리테트라 플루오르에틸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4.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5		초산비닐의 중합체나 그 밖의 비닐에스테르의 중합체, 그 밖의 비닐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5.1	- 폴리(초산비닐)	
		3905.12	-- 물에 분산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5.2	- 초산비닐 공중합체	
		3905.21	-- 물에 분산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5.30	- 폴리(비닐알코올)[가수분해되지 않은 초산기(基)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5.9	- 기타	
		3905.91	-- 공중합체(共重合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5.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6		아크릴의 중합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6.10	- 폴리(메틸 메타크리레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7		폴리아세탈수지 · 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 폴리카보네이트 · 알키드수지 · 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7.10	- 폴리아세탈수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7.20	- 그 밖의 폴리에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7.30	- 에폭시수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7.40	- 폴리카보네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7.50	- 알키드수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7.6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3907.61	-- 점도번호가 그램당 78 밀리리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7.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7.70	-- 폴리(락트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7.9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	
		3907.91	-- 불포화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7.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8		폴리아미드[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8.10	- 폴리아미드-6, -11, -12, -6,6, - 6,9, -6,10 또는 -6,12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9		아미노수지 · 페놀수지 · 폴리우레탄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09.10	- 요소수지와 티오요소수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9.20	- 멜라민수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9.3	- 그 밖의 아미노수지	
		3909.31	-- 폴리(메틸렌 페닐 이소시아네이트) (크루드 엠디아이, 중합 엠디아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9.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9.40	- 페놀수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09.50	- 폴리우레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0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0.00	- 실리콘수지[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1		석유수지 · 쿠마론-인덴수지 · 폴리테르펜 · 폴리술폰과 이 류의 주 제3호의 그 밖의 물품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1.10	- 석유수지 · 쿠마론 · 인덴 · 쿠마론- 인덴수지 · 폴리테르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2		셀룰로오스와 그 화학적 유도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2.1	- 초산셀룰로오스	
		3912.11	-- 가소화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3912.12	-- 가소화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2.20	- 질산셀룰로오스(콜로디온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2.3	- 셀룰로오스 에테르	
		3912.31	--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와 그 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2.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3		천연중합체(예: 알긴산)와 변성한 천연중합체(예: 경화 단백질, 천연고무의 화학적 유도체)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13.10	- 알긴산과 그 염 · 에스테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4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3914.00	- 이온교환수지[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의 중합체를 기본 재료로 한 것으로서 일차제품(primary form)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5		플라스틱의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 · 스크랩(scrap)	
		3915.1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5.2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5.3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5.9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6		플라스틱의 모노필라멘트(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막대(rod, stick)· 형재(形材)(표면 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3916.1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6.2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6.9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7		플라스틱의 관·파이프·호스와 이들의 연결구류[예: 조인트(joint)· 엘보(elbow)·플랜지(flange)]	
		3917.10	- 경화 단백질이나 셀룰로오스 물질의 인조 거트(gut)[소시지케이싱(sausage cas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7.2	- 경질(硬質)의 관·파이프·호스	
		3917.21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7.22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7.23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7.2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7.3	- 그 밖의 관·파이프·호스	
		3917.31	-- 연질(軟質)의 관·파이프·호스 [파열압(破裂壓)이 27.6메가파스칼 이상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7.32	-- 기타(연결구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7.33	-- 기타(연결구가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7.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7.40	- 연결구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8		플라스틱으로 만든 바닥 깔개(접착성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롤이나 타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이 류의 주 제9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벽 피복재나 천장 피복재	
		3918.10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8.90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9		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 시트(sheet)·필름·박(箔)·테이프· 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3919.10	- 롤 모양인 것(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1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롤러가 아닌 것으로서 그 밖의 재료로 보강·적층·지지하거나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0.10	- 에틸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20	- 프로필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30	- 스티렌의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4	- 염화비닐의 중합체로 만든 것	
		3920.43	-- 전 중량의 100분의 6 이상의 가소제를 함유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5	- 아크릴 중합체로 만든 것	
		3920.51	-- 폴리(메틸메타크리레이트)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6	- 폴리카보네이트·알키드수지· 폴리아릴 에스테르·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3920.61	-- 폴리카보네이트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62	--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63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69	--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7	- 셀룰로오스나 그 화학적 유도체로 만든 것	
		3920.71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73	-- 초산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79	-- 그 밖의 셀룰로오스 유도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3920.91	-- 폴리(비닐 부티랄)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92	--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93	-- 아미노수지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94	-- 페놀수지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0.9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1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 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	
		3921.1	- 셀룰러	
		3921.11	-- 스티렌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1.12	-- 염화비닐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3921.13	-- 폴리우레탄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1.14	-- 재생 셀룰로오스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1.1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2		플라스틱으로 만든 목욕통·샤워통· 설거지통·세면기·비데·화장실용 팬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수세용 물탱크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품	
		3922.10	- 목욕통·샤워통·설거지통·세면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2.20	- 변기용 시트(seat)와 커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3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3923.10	- 상자·케이스·바구니와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3.2	-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3923.21	-- 에틸렌 중합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3.29	-- 그 밖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3.30	- 카보이(carboy)·병· 플라스크(flask)와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3.40	- 스푼(spool) · 콕(cop) · 보빈(bobbin)과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3.50	- 뚜껑 · 마개 · 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4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 · 주방용품 · 그 밖의 가정용품 · 위생용품 · 화장용품	
		3924.1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5		플라스틱으로 만든 건축용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3925.10	- 저장기 · 탱크 · 배트(vat)와 이와 유사한 용기(용량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5.20	-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5.30	- 셔터 · 블라인드[베네치안 블라인드(venetian blind)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6		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과 제3901호부터 제3914호까지의 그 밖의 물품의 제품	
		3926.10	- 사무용품이나 학용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3926.20	- 의류와 의류 부속품 (장갑, 방어리장갑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6.30	- 가구·차체(coachwork)와 이와 유사한 것들의 부착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6.40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용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392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			고무와 그 제품	
	40.01		천연고무·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 (gutta-percha)·구아울(guayule)· 치클(chicle)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일차제품(primary form)·판· 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10	- 천연고무의 라텍스 [프리-벌커나이즈된(pre-vulcanis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1.2	- 천연고무(그 밖의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1.21	-- 스모크드 시트(smoked shee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1.22	-- 공업 규격화된 천연고무(TSN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1.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1.30	- 발라타(balata)·구타페르카(gutta- percha)·구아울(guayule)·치클(chicle) 과 이와 유사한 천연 검(gum)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2		합성고무와 기름에서 제조한 팩티스 (factice)[일차제품(primary form)· 판·시트(sheet)·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2.1	- 스티렌-부타디엔 고무(SBR) · 카르복시화한 스티렌-부타디엔 고무(XSBR)	
		4002.11	-- 라텍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2.20	- 부타디엔 고무(B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2.3	- 이소부텐-이소프렌(부틸)고무(IIR) · 할로-이소부텐-이소프렌고무(CIIR이나 BIIR)	
		4002.31	-- 이소부텐-이소프렌 고무(부틸고무)(II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2.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2.4	- 클로로프렌(클로로부타디엔) 고무(CR)	
		4002.41	-- 라텍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2.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2.5	-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고무(NBR)	
		4002.51	-- 라텍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2.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2.60	- 이소프렌 고무(I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2.70	- 에틸렌-프로필렌-비공액 디엔 고무(EPDM)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2.80	- 제4001호의 물품과 제4002호의 물품과의 혼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2.9	- 기타	
		4002.91	-- 라텍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3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3.00	- 재생고무[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4		고무의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 · 스크랩(scrap)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4004.00	- 고무의 웨이스트(waste) · 페어링(paring) · 스크랩(scrap)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과 이들의 가루와 알갱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5		가황하지 않은 배합고무 [일차제품(primary form)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005.10	- 카본블랙이나 실리카와 배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5.20	- 용액과 분산액(소호 제4005.10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5.9	- 기타	
		4005.91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5.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6		가황하지 않은 고무의 그 밖의 모양 [예: 막대(rod) · 관 · 형재(形材)]과 제품(예: 디스크 · 링)	
		4006.10	- 고무타이어 재생용 “캐멀- 백(camel-back)” 스트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7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007.00	- 고무실과 고무끈(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8		고무로 만든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막대(rod) · 형재(形材)[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한다]	
		4008.1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008.11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8.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8.2	- 셀룰러 고무 외로 만든 것	
		4008.21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8.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9		고무로 만든 관 · 파이프 · 호스[가황한 것으로 한정하고, 경질(硬質)고무인 것은 제외하며, 조인트(joint) ·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엘보(elbow) · 플랜지(flange) 등 연결구류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09.1	-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되지 않은 것	
		4009.1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9.1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9.2	- 금속으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2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9.2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9.3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3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9.3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9.4	- 그 밖의 재료로 보강되거나 결합된 것	
		4009.41	-- 연결구류를 부착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09.42	--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0		고무로 만든 컨베이어용 · 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4010.1	- 컨베이어용 벨트나 벨팅(belting)	
		4010.11	-- 금속으로만 보강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10.12	-- 방직용 섬유 재료로만 보강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0.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0.3	- 전동(transmission)용 벨트와 벨팅(belting)	
		4010.31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 (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0.32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 (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8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0.33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 (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0.34	-- 횡단면이 사다리꼴형의 전동 (transmission)용 엔드리스(endless) 벨트(브이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80센티미터 초과 240센티미터 이하인 것(브이홈이 파인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0.35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60센티미터 초과 150센티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0.36	-- 엔드리스 싱크러너스(endless synchronous) 벨트로서 바깥둘레가 150센티미터 초과 198센티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0.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1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신품으로 한정한다)	
		4011.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5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11.20	- 버스용 · 화물차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5퍼센트 이상일 것
		4011.30	- 항공기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1.40	- 모터사이클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그리고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5퍼센트 이상일 것
		4011.50	- 자전거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1.70	- 농경용 · 임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1.80	- 건설용 · 광산용 · 산업용 차량과 기계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2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재생품과 중고품으로 한정한다), 고무로 만든 솔리드(solid)나 쿠션타이어, 타이어 트레드(tread), 타이어 플랩(flap)	
		4012.1	- 재생타이어	
		4012.11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2.12	-- 버스용 · 화물자동차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2.13	-- 항공기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2.20	- 중고 공기타이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3		고무로 만든 이너튜브	
		4013.10	- 승용자동차용[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 자동차용을 포함한다]·버스용·화물차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3.20	- 자전거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4		고무로 만든 위생용품과 의료용품 [젓꼭지를 포함하며,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한다. 다만,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연결구류를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014.10	- 콘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5		고무로 만든 의류와 의류 부속품[장갑, 병어리장갑을 포함하고, 경질(硬質)고무 외의 가황한 것으로 한정하며, 어떤 용도인지는 상관없다]	
		4015.1	- 장갑, 병어리장갑	
		4015.11	-- 외과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16		가황한 고무의 그 밖의 제품 [경질(硬質)고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016.10	- 셀룰러 고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6.9	- 기타	
		4016.91	-- 바닥 깔개와 매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6.92	-- 지우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6.93	-- 개스킷(gasket) · 와셔(washer) · 그 밖의 실(seal)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6.94	-- 보트나 도크펜더(dock fender) (팽창성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6.95	-- 그 밖의 팽창성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6.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0.17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 (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4017.00	- 경질(硬質)고무[예: 에보나이트 (ebonite), 각종 모양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8부 원피 · 가죽 · 모피와 이들의 제품, 마구, 여행용구 · 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1			원피(모피는 제외한다)와 가죽	
	41.01		소(버팔로를 포함한다)와 마속(馬屬)동물의 원피[생 것 · 염장한 것 · 건조한 것 · 석회처리한 것 · 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 · 파치먼트(parchment)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101.20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전신 원피(단순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8킬로그램 이하, 염처리 후 건조시켰을 때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 생 것·습식염장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하였을 때의 중량이 16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1.50	- 전신 원피(16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1.90	- 기타[버트(butt), 밴드(bend), 벨리(belly)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2		면양이나 어린 양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2.10	- 털을 제거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2.2	- 털을 제거한 것	
		4102.21	-- 산처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3		그 밖의 원피[생 것·염장한 것·건조한 것·석회처리한 것·산처리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존처리한 것으로 한정하고, 유연처리·파치먼트(parchment) 가공이나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하며, 털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다만, 이 류의 주 제1호나목이나 다목에 따라 제외되는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것을 포함하지 않는다]	
		4103.20	- 파충류의 원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3.30	- 돼지의 원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4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유연처리나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4.1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 를 포함한다]	
		4104.1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4.4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104.4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4.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5		면양이나 어린 양의 유연처리· 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5.10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 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5.30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6		그 밖의 동물의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원피[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106.2	- 산양의 원피	
		4106.21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6.22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6.3	- 돼지의 원피	
		4106.31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6.32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6.40	- 파충류의 원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6.9	- 기타	
		4106.91	-- 습윤 상태의 것[웨트-블루(wet-blue)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6.92	-- 건조 상태의 것(크러스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7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소(버팔로를 포함한다)나 마속(馬屬)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가공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07.1	- 전신 가죽	
		4107.1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그레인(full grai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7.12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7.9	- 기타(반신의 가죽을 포함한다)	
		4107.91	-- 스플릿(split)하지 않은 풀 그레인(full grai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7.92	-- 그레인 스플릿(grain spli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07.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12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2.00	-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면양이나 어린 양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13		유연처리·크러스트 처리한 후 그 이상의 가공을 한 그 밖의 동물의 가죽[파치먼트(parchment) 가공 가죽을 포함한다][털을 제거한 것으로 한정하고, 스플릿(split)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4114호의 가죽은 제외한다]	
		4113.10	- 산양의 가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13.20	- 돼지의 가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13.30	- 파충류의 가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1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14		새미가죽(chamois leather)[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114.10	- 새미가죽(chamois leather) [콤비네이션 새미가죽(chamois leather)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14.20	-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와 적층한 패이턴트 레더(patent leather), 메탈라이즈드 레더(metallised leath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15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패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115.10	-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 [가죽이나 가죽섬유를 기본 재료로 하여 제조한 것으로서 롤 모양인지에 상관없으며 슬래브 모양·시트(sheet) 모양·스트립 모양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115.20	-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의 패어링(paring)과 그 밖의 웨이스트(waste)(가죽제품의 제조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가죽의 더스트(dust)와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			가죽제품, 마구, 여행용구·핸드백과 이와 유사한 용기, 동물 거트(gut) [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의 제품	
	42.01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4201.00	- 동물용 마구(고삐줄, 끈, 무릎받이, 재갈, 안장용 방석, 안장에 다는 주머니, 개용 코트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하며, 어떤 재료이든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2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zek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안경 케이스·쌍안경 케이스·사진기 케이스·악기 케이스·총 케이스·권총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용기, 가죽·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플라스틱의 시트(sheet)·방직용 섬유·벌커나이즈드파이버(vulcanised fibre)·판지 또는 이러한 재료나 종이로 전부 또는 주로 피복하여 만든 여행가방·식품용이나 음료용 단열가방·화장갑·배낭·핸드백·쇼핑백·돈주머니·지갑·지도용 케이스·담배 케이스·담배쌈지·공구가방·운동용구 가방, 병 케이스·신변장식용품용 상자·분갑·칼붙이집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	- 트렁크·슈트 케이스·화장품 케이스·이그zek큐티브 케이스(executive case)·서류가방·학생가방과 이와 유사한 용기	
		4202.1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2.1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이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2.2	- 핸드백(멜빵이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손잡이가 없는 것을 포함한다)	
		4202.2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컴퍼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2.2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것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2.3	- 통상 포켓이나 핸드백에 넣어 다니는 물품	
		4202.3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2.3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2.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2.9	- 기타	
		4202.91	-- 외부 표면을 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2.92	-- 외부 표면을 플라스틱 시트(sheet)나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3		의류와 의류 부속품[가죽이나 콤포지션 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203.10	- 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3.2	- 장갑류	
		4203.21	-- 운동용으로 특수 디자인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4203.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3.30	- 벨트와 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3.40	- 그 밖의 의류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5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제품	
		4205.00	- 그 밖의 가죽제품과 콤포지션 레더 (composition leather)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2.06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 ·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 · 방광 · 건(腱)의 제품	
		4206.00	- 거트(gut)[누에의 거트(gut)는 제외한다] · 골드비터 스킨(goldbeater skin) · 방광 · 건(腱)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3			모피 · 인조모피와 이들의 제품	
	43.01		생모피(모피 사용에 적합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며, 제4101호 · 제4102호 · 제4103호에 해당하는 원피는 제외한다)	
		4301.10	- 밍크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301.30	- 어린 양의 것[아스트라칸(Astrakhan) · 브로드테일(Broadtail) · 카라쿨 (Caracul) · 페르시아 어린 양과 이와 유사한 어린 양, 인도 · 중국 · 몽고 · 티베트 어린 양의 것으로서 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301.60	- 여우의 것(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301.80	- 그 밖의 모피(전신인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301.90	-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으로서 모피제품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3.02		모피(유연처리, 드레스가공한 것으로서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과 그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을 포함하고, 조합하지 않은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가하지 않고 조합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30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4302.1	- 전신 모피(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머리 부분, 꼬리 부분, 발 부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302.11	-- 밍크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3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302.20	- 머리 부분 · 꼬리 부분 · 발 부분과 그 밖의 조각이나 절단품(조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302.30	- 전신 모피와 그 조각이나 절단품 (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3.03		모피의류 · 모피의류의 부속품과 그 밖의 모피제품	
		4303.10	- 모피의류와 모피의류의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3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3.04		인조모피와 그 제품	
		4304.00	- 인조모피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9부 목재와 그 제품, 목탄, 코르크와 그 제품, 짚 · 에스파르토 또는 기타의 조물(粗物) 재료의 제품, 농세공물(籠細工物) 및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4			목재와 그 제품, 목탄	
	44.01		멜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톱밥 ·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 · 브리케트 (briquette) · 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401.1	- 뿔나무(통나무, 목편, 작은 가지, 다발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한정한다)	
		4401.11	-- 침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1.12	-- 활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1.2	- 칩이나 삭편(削片) 모양인 목재	
		4401.21	-- 침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1.22	-- 활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1.3	-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통나무 · 브리케트 (briquette) · 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으로 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4401.31	-- 목재 펠릿(pelle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1.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1.40	- 톱밥, 목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응결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2		목탄[셸(shell)이나 너트(nut)의 탄을 포함하며, 응결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2.10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		원목[껍질 · 변재(邊材)를 벗긴 것인지 또는 거칠게 각을 뜯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403.1	- 페인트, 착색, 크레오소트(creosote)나 그 밖의 방부제로 처리한 것	
		4403.11	-- 침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12	-- 활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2	- 기타(침엽수류로 한정한다)	
		4403.21	--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22	-- 소나무[피너스(Pinus)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23	--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24	--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와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25	-- 기타(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26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4	- 기타(열대산 목재로 한정한다)	
		4403.41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9	- 기타	
		4403.91	--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403.93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94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의 것(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95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 (모든 횡단면의 치수가 15 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96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 (그 밖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97	-- 포플러와 사시나무 [포푸러스(Populus)종]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98	-- 유칼립투스 [유칼립투스(Eucalyptus)종]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3.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4		후프우드(hoopwood), 꼬갠 말뚝, 뽕죽하게 만든 목재의 말뚝류(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은 제외한다), 목재의 막대(stick)[지팡이 · 산류(傘類) · 공구의 자루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제조에 적합한 것으로서 거칠게 깎은 것으로 한정하며, 선반가공 · 휨 가공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은 제외한다], 칩우드(chipwood)와 이와 유사한 것	
		4404.10	- 침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4.20	- 활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5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4405.00	- 목모(wood wool)와 목분(wood flou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6		철도용 또는 궤도용 받침목(크로스타이)	
		4406.1	- 주약처리(impregnated)하지 않은 것	
		4406.11	-- 침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6.12	-- 활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6.9	- 기타	
		4406.91	-- 침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6.92	-- 활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		제재목[길이의 방향으로 쪼갠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 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7.1	- 침엽수류	
		4407.11	-- 소나무[피누스(Pinus)종]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12	-- 전나무[아비에스(Abies)종] 및 가문비나무[피세아(Picea)종]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2	- 열대산의 목재의 것	
		4407.21	-- 마호가니(Mahogany) [스웨테니아(Swietenia)종]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22	-- 비롤라(Virola)·임부아(Imbua)· 발사(Balsa)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25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 · 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 · 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26	-- 화이트라왕(White Lauan) · 화이트메란티(White Meranti) · 화이트세라야(White Seraya) · 옐로메란티(Yellow Meranti) · 아란(Ala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27	-- 사펠리(Sapelli)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28	-- 이로코(Iroko)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9	- 기타	
		4407.91	--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92	--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93	-- 단풍나무[아세르(Acer)종]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94	--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95	-- 물푸레나무[프라시너스(Fraxinus)종]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96	--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97	-- 포플러와 사시나무 [포푸러스(Populus)종]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7.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8		베니어용 단판[적층 목재를 평삭(平削)한 것을 포함한다], 합판용 단판이나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용 단판, 그 밖의 목재[길이의 방향으로 톱질한 것, 평삭(平削)한 것, 회전식으로 절단한 것으로서 두께가 6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대패질·연마·엔드-조인트한(end- 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8.10	- 침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8.3	- 열대산 목재의 것	
		4408.31	-- 다크레드메란티(Dark Red Meranti)·라이트레드메란티(Light Red Meranti)·메란티바카우(Meranti Bakau)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8.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9		목재[미조립한 쪽마루판용 스트립(strip)과 프리즈(frieze)를 포함한다]로서 어느 한쪽의 가장자리· 마구리·면을 따라 연속적으로 성형한 것[블록가공·홈가공·은축이음가공· 경사이음가공·브이형이음가공·구슬형 가공·주형가공·원형가공이나 이와 유사한 가공을 한 것으로서 대패질· 연마·엔드-조인트한(end-jointed) 것인지에 상관없다]	
		4409.10	- 침엽수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9.2	- 활엽수류	
		4409.21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409.22	-- 열대산 목재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09.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0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 (OSB: oriented strand board)와 이와 유사한 보드[예: 웨이퍼보드(wafer board)](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결합제로 응결시킨 것인지에 상관없다)	
		4410.1	- 목재로 만든 것	
		4410.11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0.12	-- 배향성(配向性)이 있는 스트랜드 보드(OSB: oriented strand board)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0.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1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수지나 그 밖의 유기물질로 접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411.1	- 중밀도 섬유판(MDF)	
		4411.12	-- 두께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1.13	-- 두께가 5밀리미터 초과 9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1.14	-- 두께가 9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1.9	- 기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411.92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8그램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1.93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초과 0.8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1.94	-- 밀도가 1세제곱센티미터당 0.5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2		합판·베니어패널과 이와 유사한 적층 목재	
		4412.10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2.3	- 그 밖의 합판[각 플라이(ply)가 6밀리미터 이하의 목재 시트(sheet) 만으로 구성된 것으로 한정하며, 대나무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412.31	-- 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열대산 목재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2.33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오리나무 [알너스(Alnus)종]·물푸레나무 [프락시너스(Fraxinus)종]· 너도밤나무[파구스(Fagus)종]· 자작나무[베틀라(Betula)종]· 체리나무[프루누스(Prunus)종]· 밤나무[카스타네아(Castanea)종]· 느릅나무[울무스(Ulmus)종]· 유칼립투스[유칼립투스(Eucalyptus)종]]·히커리[카르야(Carya)종]· 칠엽수[아에스쿨러스(Aesculus)종]· 라임[틸리아(Tilia)종]· 단풍나무[아서(Acer)종]· 참나무[코커스(Quercus)종]· 버즘나무[플라타너스(Platanus)종]· 포플러와 사시나무 [포푸러스(Populus)종]· 아까시나무[로비니아(Robinia)종]· 백합나무[리리오덴드론(Liriodendron)종]] 또는 호두나무[주글란스(Juglans)종]의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2.34	-- 기타[적어도 한쪽 외면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플라이(ply)가 소호 제4412.33호에 특정하지 않은 활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2.39	-- 기타[양쪽 외면의 플라이(ply)가 침엽수 목재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2.9	- 기타	
		4412.94	-- 블록보드(blockboard), 라민보드(laminboard), 배튼보드(battenboard)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3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 · 플레이트(plate) 모양 · 스트립(strip) 모양 ·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413.00	- 고밀도화 목재[블록 모양 · 플레이트(plate) 모양 · 스트립(strip) 모양 · 프로파일(profile)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4		나무로 만든 그림틀 · 사진틀 · 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414.00	- 나무로 만든 그림틀 · 사진틀 · 거울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5		나무로 만든 케이스 · 상자 · 크레이트(crate) · 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나무로 만든 케이블드럼, 나무로 만든 팔렛(pallet), 박스팔렛(box pallet),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팔렛칼러(pallet collar)	
		4415.10	- 케이스 · 상자 · 크레이트(crate) · 드럼과 이와 유사한 포장용기, 케이블드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5.20	- 팔렛(pallet) · 박스팔렛(box pallet) · 그 밖의 깔판류, 나무로 만든 팔렛칼러(pallet colla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6		나무로 만든 통 · 배럴(barrel) · 배트(vat) · 튜(tub) · 그 밖의 용기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4416.00	- 나무로 만든 통 · 배럴(barrel) · 배트(vat) · 튜(tub) · 그 밖의 용기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이들의 부분품(통재와 준재를 포함한다)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7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4417.00	- 나무로 만든 공구·공구의 몸체·공구의 손잡이·비나 브러시의 몸체와 손잡이·나무로 만든 신발의 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8		나무로 만든 건축용 건구와 목공품 [셀룰러우드패널(cellular wood panel)·조립된 마루판용 패널·지붕을 이는 판자를 포함한다]	
		4418.10	- 창, 프랑스 창과 이들의 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8.20	- 문·문틀·문지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8.40	- 콘크리트 구조물 작업용 거푸집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8.50	- 지붕을 이는 판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8.60	- 기둥과 들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8.7	- 조립된 마루판용 패널	
		4418.73	-- 대나무로 만든 것 또는 최소한 최상층(마모층)을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8.74	-- 기타(모자이크 마루용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8.75	-- 기타(다층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8.7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418.9	- 기타	
		4418.91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8.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9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419.1	- 대나무로 만든 것	
		4419.11	-- 빵도마, 도마 및 이와 유사한 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9.12	-- 젓가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9.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1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20		마르케트리(marquetry) 목제품과 상감세공 목제품, 신변장식용품, 칼붙이, 이와 유사한 제품용인 나무로 만든 상자와 용기,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제94류에 해당하지 않는 목제 가구	
		4420.10	- 나무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2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21		그 밖의 목제품	
		4421.10	- 옷걸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21.9	- 기타	
		4421.91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42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5			코르크(cork)와 그 제품	
	45.01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코르크(cork)의 웨이스트(waste), 부순 코르크(cork), 알갱이 모양 코르크(cork), 잘게 부순 코르크(cork)	
		4501.10	- 천연 코르크(cork)(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단순히 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5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5.02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 판 모양·시트(sheet) 모양·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감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4502.00	- 천연 코르크(cork)[외피를 제거한 것, 거칠게 각을 만든 것,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블록 모양·판 모양·시트(sheet) 모양· 스트립(strip) 모양인 것으로 한정하고, 각이 예리한 마감용 블랭크(blank)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5.03		천연 코르크(cork) 제품	
		4503.10	- 마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5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5.04		응집 코르크(cork)(응집제를 사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응집 코르크(cork)의 제품	
		4504.10	- 블록·판·시트(sheet)· 스트립(strip)·타일(어떤 모양이라도 상관없다)·솔리드실린더(solid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cylinder)(디스크를 포함한다)	40퍼센트 이상일 것
		45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6			짚 · 에스파르토(esparto)나 그 밖의 조물 재료의 제품,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과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	
	46.01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이를 조합하여 스트립(strip) 모양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조물 재료 · 플레이트(plait)와 이와 유사한 조물 재료의 물품을 평행으로 연결하거나 직조한 물품[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매트류 · 발 등 최종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4601.2	- 매트류와 발(식물성 재료로 한정한다)	
		4601.21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601.22	-- 등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601.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601.9	- 기타	
		4601.92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601.93	-- 등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601.94	-- 그 밖의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60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6.02		바구니 세공물(basketware),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지조세공물(枝條細工物)과 그 밖의 제품(조물 재료로 직접 조형한 것이나 제4601호의 물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수세미제품	
		4602.1	- 식물성 재료로 만든 것	
		4602.11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602.12	-- 등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6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6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0부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종이·판지와 이들의 제품				
47			목재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회수한 종이·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1		기계목재펄프	
		4701.00	- 기계목재펄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2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4702.00	- 화학목재펄프(용해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3		화학목재펄프(소다펄프나 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3.1	- 표백하지 않은 것	
		4703.1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3.1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703.2	-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3.2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3.2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4		화학목재펄프(아황산펄프로 한정하며, 용해용은 제외한다)	
		4704.1	- 표백하지 않은 것	
		4704.1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4.1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4.2	- 반표백하거나 표백한 것	
		4704.21	-- 침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4.29	-- 활엽수류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5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705.00	- 기계펄프공정과 화학펄프공정을 결합하여 얻은 목재펄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6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나 그 밖의 섬유질 셀룰로오스재료의 펄프	
		4706.10	- 면 린터 펄프(cotton linters pul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6.20	- 회수한 종이나 판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에서 뽑아낸 섬유펄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6.30	- 기타(대나무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6.9	- 기타	
		4706.91	-- 기계펄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6.92	-- 화학펄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6.93	-- 기계공정과 화학공정의 결합으로 생산된 펄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7		회수한 종이나 판지[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707.10	- 표백하지 않은 크라프트지·판지나 물결 모양의 종이·판지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7.20	- 주로 표백화학펄프로 된 그 밖의 종이나 판지(전체를 착색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7.30	- 주로 기계펄프로 만들어진 종이나 판지(예: 신문, 잡지, 이와 유사한 인쇄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707.90	- 기타[선별하지 않은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			종이와 판지, 제지용 펄프·종이· 판지의 제품	
	48.01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1.00	- 신문용지(롤 모양이나 시트 모양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2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으로 한정한다), 구멍을 뚫지 않은 펀치카드와 펀치테이프지[제4801호와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하며,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802.10	- 수제지(手製紙)와 판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2.20	- 사진 감광성·열 감응성·전자 감광성 종이나 판지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종이와 판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2.40	- 벽지용 원지(原紙)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2.5	-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2.54	--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2.55	-- 롤 모양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2.56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이고,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으며,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2.57	-- 그 밖의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40그램 이상 15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2.58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2.6	- 그 밖의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02.61	-- 롤 모양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2.62	-- 시트(sheet) 모양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802.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3		화장지·안면용 티슈스톡, 타월· 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울룩불룩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3.00	- 화장지·안면용 티슈스톡, 타월· 냅킨스톡과 이와 유사한 가정용이나 위생용 종이,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 울룩불룩한(embossed) 것, 구멍을 뚫은(perforated) 것, 착색한 것, 표면장식한 것,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4		도포하지 않은 크라프트지와 판지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2호나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4.1	- 크라프트라이너(kraftliner)	
		4804.11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4.2	- 자루(sack)용 크라프트지	
		4804.21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4.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4.3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31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4.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4.4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225그램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41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4.42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4.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4.5	- 그 밖의 크라프트지와 판지 (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804.51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4.52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으로서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 섬유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4.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5		그 밖의 도포하지 않은 종이와 판지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이 류의 주 제3호의 것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805.1	- 플루팅지(fluting paper)	
		4805.11	-- 반화학 플루팅지(fluting pap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5.12	-- 스트로 플루팅지(straw fluting pap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5.2	- 테스트라이너(testliner) (재생라이너판)	
		4805.24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5.25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5.30	- 아황산포장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5.40	- 여과지와 판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5.50	- 펄트지와 판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5.9	- 기타	
		4805.9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5.9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초과 225그램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5.93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25그램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6		황산지 · 내지지(耐脂紙) · 트레이싱지 (tracing paper)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6.10	- 황산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806.20	- 내지지(耐脂紙)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6.30	- 트레이싱지(tracing pap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6.40	- 글라신지(glassine paper)와 그 밖의 투명 광택지나 반투명 광택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7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807.00	- 겹붙인 종이와 판지[접착제로 겹붙인 것으로서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표면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킨 것은 제외하고, 내면을 보강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8		물결 모양으로 하거나(corrugated) (평면지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지거나(crinkled) 울록볼록하거나(embossed) 구멍을 뚫은(perforated) 종이와 판지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의 것은 제외한다]	
		4808.10	- 물결 모양의 종이와 판지(구멍을 뚫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8.40	- 크라프트지[주름지거나(creped) 구겨진(crinkled) 것으로서 울록볼록한지(embossed), 구멍을 뚫었는지(perforated)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9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전사지[등사원지나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로 사용하는 도포지와 침투지를 포함하고, 인쇄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롤 모양이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09.20	- 셀프복사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0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0		한 면이나 양면을 도포한 종이와 판지[결합재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고령토(kaolin)[차이나 클레이(China clay)]나 그 밖의 무기물질을 도포한 것(그 밖의 다른 물질을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으며 크기와는 관계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 (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한다]	
		4810.1	-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를 함유하지 않거나 그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810.13	-- 롤 모양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0.14	-- 시트(sheet) 모양인 것으로서 접지 않은 상태에서 한 변이 435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고, 다른 한 변은 297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0.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0.2	- 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 종이와 판지(기계공정이나 화학-기계공정에 따른 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0.22	-- 경량(輕量)의 도포한 종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0.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0.3	- 크라프트지와 판지(필기용, 인쇄용, 그 밖의 그래픽용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810.31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0.32	--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표백한 것 (화학공정에 따른 목재섬유의 함유량이 전 섬유중량의 100분의 95를 초과하는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0.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0.9	- 그 밖의 종이와 판지	
		4810.92	-- 여러 겹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0.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1		종이,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으로서 도포·침투· 피복·표면착색·표면장식·인쇄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4803호· 제4809호·제4810호에 열거한 것은 제외한다]	
		4811.10	- 타르·역청물질·아스팔트 처리를 한 종이와 판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1.4	- 접착지와 판지	
		4811.41	-- 셀프접착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1.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1.5	- 플라스틱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접착제는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811.51	-- 표백한 것(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1.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1.60	- 왁스 · 파라핀왁스 · 스테아린(stearin) · 기름 · 글리세롤을 도포하거나 침투시키거나 피복한 종이와 판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1.90	- 그 밖의 종이와 판지, 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2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4812.00	- 제지용 펄프로 만든 필터블록, 필터슬래브, 필터플레이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3		꺾련지(적합한 크기로 절단하였는지 또는 소책자나 튜브 모양인지에 상관없다)	
		4813.10	- 소책자 모양이나 튜브 모양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3.20	- 폭이 5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4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와 창용 투명지	
		4814.20	- 벽지와 이와 유사한 벽 피복재 [표면에 그레인한(grained) 것, 울록볼록한(embossed) 것, 착색한 것, 디자인 인쇄한 것, 그 밖의 모양으로 장식한 플라스틱층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종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6		카본지, 셀프복사지, 그 밖의 복사지나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전사지(제4809호의 것은 제외한다), 종이로 만든 등사원지와 오프셋 플레이트(offset plate)(상자에 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4816.20	- 셀프복사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7		종이나 판지로 만든 봉투·봉함엽서· 우편엽서·통신용 카드,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 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7.10	- 봉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7.20	- 봉함엽서·우편엽서·통신용카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7.30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상자·파우치· 지갑·필기첩(안에 종이로 만든 문구류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8		화장지와 이와 유사한 종이· 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가정용이나 위생용으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폭이 36센티미터 이하인 롤 모양이나 특정의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한다)· 손수건·클렌징티슈·타월·책상보· 서비에트(serviette)·베드시트와 이와 유사한 가정용품·위생용품이나 병원용품·의류와 의류 부속품[제지용 펄프·종이·셀룰로오스워딩·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818.10	- 화장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8.20	- 손수건·클렌징티슈·안면용 화장지·타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818.30	- 책상보와 서비에트(serviett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8.50	- 의류와 의류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9		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상자·포장대·그 밖의 포장용기, 종이나 판지로 만든 서류상자·서류받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819.10	-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9.20	- 접는 상자류(골판지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9.30	- 폭이 40센티미터 이상인 포장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9.40	- 그 밖의 포장대[콘(cone)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9.50	- 그 밖의 포장용기[레코드 슬리브(record sleeve)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19.60	- 서류상자·서류받침·보관함과 이와 유사한 물품(사무실·상점이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0		종이나 판지로 만든 장부·회계부·노트북·주문장·영수장·편지지철·메모철·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연습장·압지철(blotting-pad)·바인더 [예: 루스리프(loose-leaf) 등]·폴더·서류철 표지·각종 사무용 양식·삼입식 카본세트와 그 밖의 문구류,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과 책커버	
		4820.10	- 장부 · 회계부 · 노트북 · 주문장 · 영수장 · 편지지철 · 메모철 · 일기장과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0.20	- 연습장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0.30	- 바인더(책표지는 제외한다) · 폴더 · 서류철 표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0.40	- 각종 사무용 양식과 삼입식 카본세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0.50	- 견본용이나 수집용 앨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1		종이나 판지로 만든 레이블 (인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821.10	- 인쇄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2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로 만든 보빈(bobbin) · 스푼(spool) · 콕(cop)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경화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822.10	- 방직용 섬유사를 감는 데에 사용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3		그 밖의 종이 · 판지 · 셀룰로오스워딩 · 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특정한 크기나 모양으로 절단한 것으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한정한다),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셀룰로오스워딩·셀룰로오스섬유의 웹(web)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823.20	- 여과용 종이와 판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3.40	- 자동기록장치용으로 인쇄된 롤·시트(sheet)·다이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3.6	- 종이나 판지로 만든 쟁반·접시·플레이트·컵과 이와 유사한 것	
		4823.61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3.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3.70	- 제지용 펄프로 만든 몰드·프레스한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82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			인쇄서적·신문·회화·그 밖의 인쇄물, 수제(手製)문서·타자문서·도면	
	49.01		인쇄서적·소책자·리플릿(leaflet)과 이와 유사한 인쇄물(단매인지에 상관없다)	
		4901.10	- 단매인 것(접어 포갠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01.9	- 기타	
		4901.91	-- 사전·백과사전과 이들의 분할 연속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0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02		신문·잡지·정기간행물(그림이나 광고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선전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2.10	- 1주에 4회 이상 간행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03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4903.00	- 아동용 그림책과 습화책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04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4.00	- 악보[인쇄나 수제(手製)의 것으로서 제본되었는지 또는 그림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05		지도·해도나 이와 유사한 차트(제본한 것·벽걸이용의 것·지형도와 지구의를 포함하며, 인쇄한 것으로 한정한다)	
		4905.10	- 지구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05.9	- 기타	
		4905.91	-- 책자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05.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06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 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4906.00	- 설계도와 도안[건축용·공학용· 공업용·상업용·지형학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수제(手製) 원도(原圖)로 한정한다], 손으로 쓴 책자와 이들을 감광지에 사진복사·카본복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9.07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907.00	- 사용하지 않은 우표·수입인지나 이와 유사한 물품(해당국에서 통용되거나 발행된 것으로서 액면가를 갖거나 가질 예정인 것으로 한정한다), 스탬프를 찍은 종이, 지폐, 수표, 주식·주권·채권과 이와 유사한 유가증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08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somania)]	
		4908.10	- 전사지[디칼커매니어(decalsomania)]로서 유리화할 수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09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909.00	- 인쇄된 엽서와 그림엽서, 인쇄카드(인사용·전언용·안내용으로서 그림·봉투·장식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10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910.00	- 캘린더(인쇄된 것으로서 캘린더 블록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11		그 밖의 인쇄물(인쇄된 서화와 사진을 포함한다)	
		4911.10	- 광고 선전물·상업용 카탈로그(catalogue)와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11.9	- 기타	
		4911.91	-- 서화·디자인·사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491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1부 방직용 섬유와 방직용 섬유의 제품				
50			견	
	50.01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5001.00	- 누에고치(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2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5002.00	- 생사(끈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3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003.00	- 견 웨이스트(waste)[생사를 뽑는 데에 적합하지 않은 누에고치, 실 웨이스트(waste),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4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004.00	- 견사[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견방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5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005.00	- 견방사[견 웨이스트(waste)인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6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5006.00	- 견사·견방사(소매용으로 한정한다), 누에의 거트(gut)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004호부터 제5005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0.07		견직물[견 웨이스트(waste)의 것을 포함한다]	
		5007.10	- 견 노일(noil)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007.20	- 그 밖의 식물[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견 노일(noil)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007.90	- 그 밖의 식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1			양모·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말의 털로 만든 실과 식물	
	51.01		양모[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 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1.1	- 그리지(greasy) [플리스와시한(fleece-washed) 양모를 포함한다]	
		5101.11	-- 깎은 양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1.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1.2	- 탈지한 것(탄화처리한 것은 제외한다)	
		5101.21	-- 깎은 양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1.2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1.30	- 탄화처리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2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 [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102.1	- 동물의 부드러운 털	
		5102.11	-- 캐시미어 산양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2.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2.20	- 동물의 거친 털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3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하며,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은 제외한다]	
		51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노일(noil)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3.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3.30	- 동물의 거친 털의 웨이스트(waste)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4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5104.00	-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의 가닛스톡(garnetted stock)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5		양모 · 동물의 부드러운 털이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코움(comb)한 단편 모양인 양모를 포함한다]	
		5105.10	- 카드(card)한 양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105.2	- 울톱과 그 밖의 코움(comb)한 양모	
		5105.21	-- 코움(comb)한 양모(단편 모양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5.2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5.3	- 동물의 부드러운 털 [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105.31	-- 캐시미어 산양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5.3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5.40	- 동물의 거친 털[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6		카드(card)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6.1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6.2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7		코움(comb)한 양모사(소매용은 제외한다)	
		5107.1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7.20	- 양모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8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 [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하며, 소매용은 제외한다]	
		5108.10	- 카드(card)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8.20	- 코움(comb)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9		양모사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실(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109.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0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106호부터 제5108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10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110.00	- 동물의 거친 털로 만든 실이나 말의 털로 만든 실[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을 포함하며,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1.11		직물[카드(card)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111.1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30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111.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111.20	-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111.30	-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11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1.12		직물[코움(comb)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5112.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112.1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11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112.20	- 기타(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112.30	- 기타(주로 인조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11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1.13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5113.00	- 직물(동물의 거친 털이나 말의 털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2			면	
	52.01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201.00	- 면[카드(card)하지도 코움(comb)하지도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2		면 웨이스트(waste) [실 웨이스트(waste)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202.10	- 실(yarn)의 웨이스트(waste) [실(thread)의 웨이스트(waste)를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2.9	- 기타	
		5202.91	-- 가닛스톡(garnetted stock)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2.9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3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5203.00	- 면[카드(card)하거나 코움(comb)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4		면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204.1	- 소매용이 아닌 것	
		5204.11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4.20	- 소매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5.1	-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1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1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1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1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15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2	- 단사[코움(comb)한 섬유 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2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2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2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2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26	--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27	--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28	-- 83.33 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12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3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 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31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32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3수 이하)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33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34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35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4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5.41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42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43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44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46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 106.38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80수 초과 9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47	-- 구성하는 단사가 106.38데시텍스 미만 83.33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94수 초과 12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5.48	-- 구성하는 단사가 83.33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변수 12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		면사(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며,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206.1	- 단사[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206.1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1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1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1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15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2	- 단사[코움(comb)한 섬유 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21	--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22	--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23	--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24	--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25	--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3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코움(comb)하지 않은 섬유 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31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32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33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34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35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4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코움(comb)한 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206.41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42	-- 구성하는 단사가 714.29데시텍스 미만 232.56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14수 초과 43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43	-- 구성하는 단사가 232.56데시텍스 미만 192.31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43수 초과 52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44	-- 구성하는 단사가 192.31데시텍스 미만 125데시텍스 이상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52수 초과 80수 이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6.45	-- 구성하는 단사가 125데시텍스 미만인 것(단사당 미터식 번수 80수 초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7		면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207.10	- 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204호부터 제5206호까지의 것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08.1	- 표백하지 않은 것	
		5208.1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1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13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19	-- 그 밖의 직물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2	- 표백한 것	
		5208.2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2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23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29	-- 그 밖의 직물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3	- 염색한 것	
		5208.3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3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한정한다)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33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3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8.4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4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43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4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5	- 날염한 것	
		5208.51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52	-- 평직물(平織物)(1제곱미터당 중량이 100그램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8.5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09.1	- 표백하지 않은 것	
		5209.1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209.1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1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2	- 표백한 것	
		5209.2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2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2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3	- 염색한 것	
		5209.3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3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3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09.4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42	-- 데님(denim)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43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4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5	- 날염한 것	
		5209.5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5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09.5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0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210.1	- 표백하지 않은 것	
		5210.1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0.1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0.2	- 표백한 것	
		5210.2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0.2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0.3	- 염색한 것	
		5210.3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0.3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0.3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0.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0.4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0.4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0.5	- 날염한 것	
		5210.5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0.5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		면직물(면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이고 주로 인조섬유와 혼방한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211.1	- 표백하지 않은 것	
		5211.1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1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1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20	-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3	- 염색한 것	
		5211.3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3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211.3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211.4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42	-- 데님(denim)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43	-- 3올이나 4올의 그 밖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4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5	- 날염한 것	
		5211.51	-- 평직물(平織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52	-- 3올이나 4올의 능직물(綾織物) [파사문직(破斜文織)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1.5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2		그 밖의 면직물	
		5212.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이하인 것	
		5212.11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2.12	--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2.13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212.1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2.15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2.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00그램 초과인 것	
		5212.21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2.22	--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2.23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2.24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212.25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종이실(paper yarn)과 종이실로 만든 직물	
	53.01		아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1.10	- 생아마나 침지(沈漬)아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1.2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리거나(scutched) 흩어 내리거나(hackled)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아마(방적한 것은 제외한다)	
		5301.21	-- 줄기를 으깨거나(broken) 두드린(scutched)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301.2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1.30	- 아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2		대마(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대마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2.10	- 생대마나 침지(沈漬)대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2.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3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靸皮)섬유 [아마·대마·라미(ramie)는 제외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 섬유의 토우(tow)와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3.10	- 황마와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靸皮)섬유[생것이나 침지(沈漬)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3.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5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라미(ramie) 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토우(tow)·노일(noil)·웨이스트(waste) [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5.00	- 코코넛·아바카(마닐라마)· 라미(ramie)와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생것이거나 가공은 하였으나 방적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토우(tow) · 노일(noil) · 웨이스트(waste)[실의 웨이스트(waste)와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53.06		아마사	
		5306.10	- 단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6.2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7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사	
		5307.10	- 단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7.20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8		그 밖의 식물성 섬유사와 종이실(paper yarn)	
		5308.10	- 코이어(coir)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8.20	- 대마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3.09		아마직물	
		5309.1	-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309.1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309.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309.2	- 아마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309.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309.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3.10		제5303호의 황마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의 직물	
		5310.10	- 표백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31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3.11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직물과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5311.00	- 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직물과 종이실(paper yarn)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최소한 두가지 준비 공정 또는 마무리 공정이 동반되는 날염이나 염색
54			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것	
	54.01		인조필라멘트의 재봉사(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401.10	- 합성필라멘트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1.20	-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		합성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합성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2.1	-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402.11	-- 아라미드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20	- 강력사[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하며, 텍스처화한(textured) 것인지에 상관없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3	- 텍스처드사	
		5402.3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32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구성하는 단사가 50텍스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402.33	--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34	-- 폴리프로필렌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3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4	- 그 밖의 실(단사로서 꼬임이 없거나 미터당 50회 이하의 꼬임의 것으로 한정한다)	
		5402.44	-- 탄성사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45	-- 기타(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46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서 부분적으로 방향성(方向性)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47	-- 기타(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48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4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5	- 그 밖의 실(단사로서 미터당 꼬임이 50회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402.5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52	--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53	-- 폴리프로필렌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5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6	-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2.6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62	--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63	-- 폴리프로필렌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2.6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3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하며, 67데시텍스 미만인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를 포함한다]	
		5403.10	- 강력사[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3.3	- 그 밖의 실(단사)	
		5403.31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없거나, 꼬임이 미터당 120회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3.32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꼬임이 미터당 120회 초과인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3.33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3.3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403.4	- 그 밖의 실[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5403.41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3.42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3.4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4		합성모노필라멘트(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합성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스트로(straw)] (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4.1	- 모노필라멘트	
		5404.11	--- 탄성사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4.12	--- 기타(폴리프로필렌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4.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4.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5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 (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5.00	- 재생·반(半)합성 모노필라멘트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서 횡단면의 치수가 1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재생·반(半)합성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예: 인조 스트로(straw)](시폭이 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6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406.00	- 인조필라멘트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7.10	- 강력사(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와 폴리에스테르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20	-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30	- 제11부의 주 제9호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4	- 그 밖의 직물(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4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4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4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5	- 그 밖의 직물(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5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5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5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5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6	- 그 밖의 직물(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61	-- 비(非)텍스처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7	-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7.7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7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7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7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8	- 그 밖의 직물(합성필라멘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5407.8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8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8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8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9	- 그 밖의 직물	
		5407.9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9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9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7.9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8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사의 직물 (제5405호의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	
		5408.1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강력사로 직조한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8.2	- 그 밖의 직물[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408.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8.2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408.2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8.2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8.3	- 그 밖의 직물	
		5408.3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8.3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8.3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408.3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			인조스테이플섬유	
	55.01		합성필라멘트 토우(tow)	
		5501.1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1.20	-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1.3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1.40	- 폴리프로필렌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1.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2		재생·반(半)합성 필라멘트 토우(tow)	
		5502.10	- 초산셀룰로오스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2.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3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3.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5503.11	-- 아라미드(aramid)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3.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3.20	-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3.3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3.40	- 폴리프로필렌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3.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4		재생 · 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 [카드(card) ·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은 제외한다]	
		5504.10	-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4.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5		인조섬유의 웨이스트(waste) [노일(noil) · 실의 웨이스트 · 가닛스톡(garnetted stock)을 포함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505.10	- 합성섬유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5.20	- 재생·반(半)합성 섬유류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6		합성스테이플섬유[카드(card)· 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6.1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6.20	- 폴리에스테르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6.30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6.40	- 폴리프로필렌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6.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7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5507.0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 [카드(card)·코움(comb)이나 그 밖의 방적준비 처리를 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8		인조스테이플섬유의 재봉사 (소매용인지에 상관없다)	
		5508.1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8.2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		합성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509.1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의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09.11	-- 단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1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09.21	-- 단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2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3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09.31	-- 단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3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4	- 그 밖의 실(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09.41	-- 단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4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5	- 그 밖의 실(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51	-- 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509.52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53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6	- 그 밖의 실[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으로 한정한다]	
		5509.61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62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9	- 그 밖의 실	
		5509.91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92	-- 주로 면과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09.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0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사 (재봉사와 소매용은 제외한다)	
		5510.1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10.11	-- 단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510.12	-- 복합사(연합사)나 케이블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0.20	- 그 밖의 실(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0.30	- 그 밖의 실(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0.90	- 그 밖의 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1		인조스테이플섬유사(재봉사는 제외하며,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5511.1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1.20	-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1.30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제5508호부터 제5510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2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 (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2.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12.1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51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2.2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12.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2.9	- 기타	
		5512.9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3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5513.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3.1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3.1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3.1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3.1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3.2	- 염색한 것	
		5513.2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3.2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3.2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3.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5513.3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3.3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3.4	- 날염한 것	
		5513.4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3.4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4		주로 면과 혼방한 합성스테이플섬유의 직물(합성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170그램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551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5514.1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4.1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4.1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4.2	- 염색한 것	
		5514.2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4.2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4.2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4.2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4.30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4.4	- 날염한 것	
		5514.4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평직(平織)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4.42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능직(綾織)[3올이나 4올의 능직(綾織)으로 한정하며 파사문직(破斜文織)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4.43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4.49	-- 그 밖의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5		합성스테이플섬유의 그 밖의 직물	
		5515.1	- 폴리에스테르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11	-- 주로 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 스테이플섬유와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5.12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5.13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51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5.2	- 아크릴이나 모다크릴(modacrylic) 스테이플섬유의 것	
		5515.21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5.22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5.9	- 그 밖의 직물	
		5515.91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5.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직물	
		5516.1	-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이상인 것	
		5516.1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1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1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1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2	- 주로 인조필라멘트와 혼방한 것으로 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 인 것	
		5516.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2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2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2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3	- 주로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과 혼방한 것으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516.3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3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3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3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4	- 주로 면과 혼방한 것으로서 재생·반(半)합성 스테이플섬유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85 미만인 것	
		5516.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4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516.4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4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9	- 기타	
		5516.9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9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93	-- 서로 다른 색실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516.9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			워딩(wadding) · 펠트(felt) · 부직포, 특수사,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과 이들의 제품	
	56.01		방직용 섬유의 워딩(wadding)과 그 제품, 방직용 섬유로서 길이가 5밀리미터 이하인 것(플록), 방직용 섬유의 더스트(dust)와 밀네프(mill nep)	
		5601.2	- 워딩(wadding)과 워딩(wadding)의 그 밖의 제품	
		5601.2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1.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1.2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1.30	- 섬유의 플록(flock), 더스트(dust), 밀네프(mill nep)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2		펠트(felt)(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2.10	- 니들룸펠트(needleloom felt)와 스티치본드(stitch-bonded) 섬유직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2.2	- 그 밖의 펠트(felt)(침투·도포· 피복하거나 적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602.2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2.29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2.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3		부직포(침투·도포·피복·적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3.1	- 인조필라멘트의 것	
		5603.1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3.1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3.13	--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3.14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3.9	- 기타	
		5603.9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이하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3.9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그램 초과 70그램 이하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3.93	-- 1제곱미터당 중량이 70그램 초과 150그램 이하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3.94	-- 1제곱미터당 중량이 150그램을 초과하는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4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사·제 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과 이와 유사한 물품[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시드한 (sheathed) 것으로 한정한다]	
		5604.10	- 고무실과 고무끈(방직용 섬유로 피 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4.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5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 (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 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 · 스트립(strip)· 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5605.00	-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짐프한 (gimped)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직용 섬유사,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 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실 · 스트립(strip)· 가루 모양의 금속과 결합한 것이나 금속을 피복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6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 [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606.00	- 짐프사(Gimped yarn)와 제5404호나 제5405호에 열거한 스트립(strip)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짐프한(gimped) 것으로 한정하며 제5605호의 것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짐프한(gimped) 말의 털로 만든 실은 제외한다], 셔닐사(chenille yarn) [플록(flock) 모양의 셔닐사(chenille yarn)를 포함한다], 루프웨일사(loop wale-yarn)	
	56.07		끈·배의 밧줄(cordage)·로프·케이블 [엮거나 짠 것인지, 고무나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시드한(sheathed) 것인지에 상관없다]	
		5607.2	- 사이잘(sisal)마나 아가베(Agave)속의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5607.21	-- 포장용 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7.2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7.4	- 폴리에틸렌이나 폴리프로필렌으로 만든 것	
		5607.41	-- 포장용 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7.4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7.50	- 그 밖의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7.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8		매듭이 있는 그물감[끈·배의 밧줄(cordage)·로프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만든 어망, 그 밖의 제품으로 만든 그물	
		5608.1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608.11	-- 제품으로 된 어망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8.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608.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6.09		실 ·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 ·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5609.00	- 실 · 제5404호나 제5405호의 스트립(strip)이나 이와 유사한 것 ·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의 제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	
	57.01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매듭이 있는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1.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1.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2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 든 바닥 깔개[직조한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고,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 없으며 켈렘(kelem) · 슈맥(schumack) · 카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러그(rug)를 포함한다]	
		5702.10	- 켈렘(kelem) · 슈맥(schumack) · 카 라마니(karamanie)와 이와 유사한 손 으로 짠 러그(rug)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2.20	- 코코넛섬유(코이어)로 만든 바닥 깔 개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2.3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5702.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2.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2.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2.4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으로서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2.4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2.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2.50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과 제품으로 된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2.9	- 기타[파일(pile)직물로 만든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702.9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2.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2.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3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갈래[터프트(tuft)한 것으로 한정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3.20	- 나일론이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3.30	- 그 밖의 인조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3.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4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펠트(felt)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고, 터프트(tuft)하거나 플록(flock)한 것은 제외하며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4.1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인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4.20	- 타일(tile)(표면적이 최고 0.3제곱미터 초과 1제곱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4.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7.05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5705.00	- 그 밖의 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 깔개(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			특수직물, 터프트(tuft)한 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tapestry), 트리밍(trimming), 자수천	
	58.01		파일(pile)직물 · 셔닐(chenille)직물 (제5802호나 제5806호에 해당하는 직물은 제외한다)	
		5801.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1.2	- 면으로 만든 것	
		5801.21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1.22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1.23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1.26	-- 셔닐(chenille)직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1.27	-- 경(經)파일(pile)직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1.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5801.31	-- 절단되지 않은 위(緯)파일(pile)직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1.32	-- 절단된 코듀로이(corduroy)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1.33	-- 그 밖의 위(緯)파일(pile)직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1.36	-- 셔닐(chenille)직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1.37	-- 경(經)파일(pile) 직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1.9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2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 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직물은 제외한다], 터프트(tuft)한 직물(제5703호에 해당하 는 물품은 제외한다)	
		5802.1	- 면으로 만든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 (terry)직물	
		5802.11	-- 표백하지 않은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2.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2.20	- 그 밖의 섬유로 만든 테리타월지 (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2.30	- 터프트(tuft)한 직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3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幅) 직물은 제외한다]	
		5803.00	- 거즈[제5806호에 해당하는 세폭(細 幅)직물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4		틸(tulle)과 그 밖의 망직물(제작한 것·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 한다), 레이스[원단 상태·스트립(strip) 이나 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하 며, 제6002호부터 제6006호까지의 편 물은 제외한다]	
		5804.10	- 틸(tulle)과 그 밖의 망직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4.2	- 기계로 만든 레이스	
		5804.21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4.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4.30	- 손으로 만든 레이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5		고블랭(gobelin)직·플랜더스(flanders) 직·오뵈송(aubusson)직·보베 (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 리(tapestry) [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십자수]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805.00	- 고블랭(gobelin)직 · 플랜더스(flanders)직 · 오뷔송(aubusson)직 · 보베(beauvais)직과 이와 유사한 손으로 짠 태피스트리(tapestry), 자수의 태피스트리(tapestry) [예: 프티포인트(petit point) · 십자수] (제품으로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6		세폭(細幅)직물(제5807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과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불덕)	
		5806.10	- 파일(pile)직물[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와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 셔닐(chenille)직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6.20	- 그 밖의 직물(탄성사나 고무실의 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6.3	- 그 밖의 직물	
		5806.3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6.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6.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6.40	- 접착제로 접착한 경사(經絲)만으로 이루어진 세폭(細幅)직물(불덕)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7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레이블(label), 배지(badge)와 이와 유사한 물품[원단 상태인 것 · 스트립(strip) 모양인 것 · 특정한 모양이나 크기로 절단한 것으로 한정하며, 자수한 것은 제외한다]	
		5807.10	- 직조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7.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8.08		원단 상태인 브레이드(braid)와 원단 상태인 장식용 트리밍(trimming)(자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술·폼퐁(pompon)과 이와 유사한 물품	
		5808.10	- 브레이드(braid)(원단 상태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8.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09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5809.00	- 금속사의 직물과 제5605호에 해당하는 금속드리사(metallised yarn)의 직물(의류·실내용품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따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10		자수천[원단 상태인 것·스트립(strip) 모양인 것·모티프(motif)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5810.10	- 자수천(바탕천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10.9	- 그 밖의 자수천	
		5810.91	-- 면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10.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10.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8.11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5811.00	- 원단 상태인 방직용 누비제품(바느질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패딩과 조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한 한 층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제5810호의 자수천은 제외한다)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공업용인 방직용 섬유제품	
	59.01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투사포(tracing cloth), 회화용 캔버스, 모자 제조에 사용되는 버크럼(buckram)과 이와 유사한 경화가공된 방직용 섬유의 직물	
		5901.10	- 서적 장정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검(gum)이나 전분질의 물품을 도포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1.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2		강력사의 타이어코드(tyre cord)직물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폴리에스테르·비스코스레이온(viscose rayon)의 것으로 한정한다]	
		5902.10	- 나일론이나 그 밖의 폴리아미드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2.20	- 폴리에스테르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2.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3		플라스틱을 침투·도포·피복하거나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3.10	- 폴리(염화비닐)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3.20	- 폴리우레탄의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3.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4		리놀륨과 방직용 섬유직물의 뒷면을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으로 만든 바닥 깔개 (특정한 모양으로 절단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904.10	- 리놀륨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4.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5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5905.00	- 방직용 섬유로 만든 벽 피복재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6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제5902호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	
		5906.10	-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인 접착테이프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6.9	- 기타	
		5906.91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6.9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7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5907.00	- 그 밖의 방법으로 침투·도포하거나 피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극장용 배경이나 스튜디오용 배경막이나 이 와 유사하게 사용되는 그림이 그려진 캔버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8		램프용·스토브용·라이터용·양초용이 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 용 섬유의 심지(직조·편조·편직한 것 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mantle) 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없다)	
		5908.00	- 램프용 · 스토브용 · 라이터용 · 양초 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 의 심지(직조 · 편조 · 편 직한 것으로 한정한다), 백열가스 맨틀 (mantle)과 백열가스 맨틀(mantle)용 관 모양의 편물(침투시켰는지에 상관 없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09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 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 · 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5909.00	- 방직용 섬유로 만든 호스와 이와 유사한 관 모양의 물품(다른 재료를 내장 · 보강한 것인지 또는 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10		전동(transmission)용 ·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 · 도포 · 피복 ·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5910.00	- 전동(transmission)용 · 컨베이어용 벨트와 벨팅(belting)(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플라스틱을 침투 · 도포 · 피복 · 적층한 것인지 또는 금속이나 그 밖의 물품으로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11		방직용 섬유제품과 방직용 섬유로 만든 물품(이 류의 주 제7호에 열거된 물품으로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5911.10	- 침포(針布)로 사용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 펠트(felt), 펠트(felt)로 안을 붙인 직물로서 고무 · 가죽 그 밖의 물품을 도포 · 피복하거나 적층한 물품으로 그 밖의 기술적 용도로 사용하는 이와 유사한 직물 [위빙스핀들(weaving spindle) (위빙빔)을 피복하기 위한 고무를 침투시킨 벨벳으로 된 세폭(細幅)직물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11.20	- 볼팅 클로스(bolting cloth)(제품인지에 상관없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11.3	- 제지용 기계나 이와 유사한 기계(예: 펄프나 석면시멘트 제조용)에 사용하는 것으로 엔드리스(endless)나 연결구를 갖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와 펠트 (felt)류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5911.31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미만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11.32	-- 1제곱미터당 중량이 650그램 이상인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11.40	- 착유기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여과포(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5911.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			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0.01		파일(pile) 편물[롱파일(long pile) 편물과 테리(terry) 편물을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001.10	- 롱파일(long pile) 편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1.2	- 루프파일(looped pile) 편물	
		6001.21	-- 면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1.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1.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1.9	- 기타	
		6001.91	-- 면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1.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1.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2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이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2.4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3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서 제6001호나 제6002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3.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3.20	- 면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3.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3.40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4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며 탄성사나 고무실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인 것으로서 제6001호의 것은 제외한다)	
		6004.10	- 탄성사의 함유중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 이상이며, 고무실은 함유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60.05		경(經)편직 편물류[거룬(galloon) 편직기로 제조한 것을 포함하며, 제6001호부터 제6004호까지의 것은 제외한다]	
		6005.2	- 면으로 만든 것	
		6005.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5.2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5.23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5.2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5.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5.35	--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5.36	-- 기타(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5.37	-- 기타(염색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5.38	-- 기타(서로 다른 색실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5.39	-- 기타(날염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5.4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5.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5.4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5.43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5.4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6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006.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6.2	- 면으로 만든 것	
		6006.2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6.2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6.23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6.2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6.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6006.3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6.3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6.33	-- 서로 다른 색실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6.3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6.4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6006.41	-- 표백하지 않은 것이나 표백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6.42	-- 염색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6.43	-- 서로 다른 색상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6.44	-- 날염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0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에만 적용한다)	
	61.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 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 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1.20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1.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1.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클룩(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제6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102.1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2.20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2.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2.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 · 앙상블(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blazer)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3.10	- 슈트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3.2	- 앙상블(ensemble)	
		6103.2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3.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3.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3.3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3.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3.3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3.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3.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3.4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	
		6103.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3.4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3.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3.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 · 앙상블(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 (blazer) · 드레스 · 스커트 · 치마바지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	
		6104.1	- 슈트	
		6104.1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2	- 앙상블(ensemble)	
		6104.2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3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104.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3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4	- 드레스	
		6104.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4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44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5	- 스커트와 치마바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6104.5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5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5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5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6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	
		6104.6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6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6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4.6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5.10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5.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5.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 · 셔츠 ·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셔츠블라우스(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6.10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6.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6.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 (brief)·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 정한다)	
		6107.1	-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107.1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7.1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7.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7.2	-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107.2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7.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7.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7.9	- 기타	
		6107.9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7.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슬립·페티코트 (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 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 (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 과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8.1	-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108.11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8.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8.2	- 브리프(brief)와 팬티	
		6108.2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8.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8.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8.3	-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108.3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8.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8.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8.9	- 기타	
		6108.9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8.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8.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9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9.10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09.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0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 (cardigan)·웨이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0.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6110.11	-- 양모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0.12	-- 캐시미어 산양의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0.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0.20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0.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0.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1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1.20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1.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1.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2		트랙슈트 · 스키슈트 · 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2.1	- 트랙슈트	
		6112.1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2.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2.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2.20	- 스키슈트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2.3	- 남성용이나 소년용 수영복	
		6112.31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2.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2.4	- 여성용이나 소녀용 수영복	
		6112.41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2.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3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3.00	- 의류(제5903호·제5906호·제5907호에 해당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4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4.20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4.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4.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5		팬티호스(panty hose)·타이츠(tights)·스타킹과 그 밖의 양말류[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와 바닥을 대지 않은 신발류를 포함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5.10	- 단계압박 양말류(예: 정맥류 치료용 스타킹)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5.2	- 그 밖의 팬티호스(panty hose)와 타이츠(tights)	
		6115.21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5.22	-- 합성섬유로 만든 것(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5.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5.30	- 그 밖의 여성용인 전길이(full-length)나 무릎길이(knee-length)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양말(구성하는 단사가 67데시텍스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5.9	- 기타	
		6115.94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5.95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5.96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5.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6		장갑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16.10	- 플라스틱이나 고무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하거나 피복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6.9	- 기타	
		6116.9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6.9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6.9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6.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7		그 밖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부속품과 의류·의류부속품의 부분품	
		6117.10	- 숄(shawl)·스카프·머플러·만틸라(mantilla)·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6117.80	- 그 밖의 부속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117.90	- 부분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			의류와 그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편물은 제외한다)	
	62.01		남성용이나 소년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1.1	- 오버코트(overcoat) · 레인코트 (rain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 (cape) · 클룩(cloak)과 이와 유사한 의 류	
		6201.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1.1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1.1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1.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1.9	- 기타	
		6201.9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1.9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1.9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1.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2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over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룩(cloak) · 아노락(anorak)(스키재킷을 포함한다) · 윈드치터(wind-cheater) · 윈드재킷(wind-jacket)과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4호의 것은 제외한다)	
		6202.1	- 오버코트(overcoat) · 레인코트(raincoat) · 카코트(car-coat) · 케이프(cape) · 클룩(cloak)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2.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2.1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2.1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2.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2.9	- 기타	
		6202.9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2.9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2.9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2.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3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 · 앙상블(ensemble) · 재킷 · 블레이저(blazer)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6203.1	- 슈트	
		6203.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3.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3.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3.2	- 앙상블(ensemble)	
		6203.2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3.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3.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3.3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3.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3.3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3.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3.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3.4	- 긴 바지 ·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 · 짧은 바지(breeches) · 반바지(shorts)	
		6203.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3.4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3.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3.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양상블 (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 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 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 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	
		6204.1	- 슈트	
		6204.1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1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1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2	- 양상블(ensemble)	
		6204.2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2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2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6204.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3	- 재킷과 블레이저(blazer)	
		6204.3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3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3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4	- 드레스	
		6204.4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4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4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44	-- 재생·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5	- 스커트와 치마바지	
		6204.5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5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5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5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6	-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 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 (shorts)	
		6204.61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6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63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4.6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5		남성용이나 소년용 셔츠	
		6205.20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5.3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5.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6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 셔츠블라우스	
		6206.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6.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2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것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6.30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6.4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6.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7		남성용이나 소년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언더팬츠·브리프(brief) · 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 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07.1	- 언더팬츠와 브리프(brief)	
		6207.1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7.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7.2	- 나이트셔츠와 파자마	
		6207.2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7.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7.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7.9	- 기타	
		6207.9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7.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8		여성용이나 소녀용 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슬립·페티코트(petticoat)·브리프(brief)·팬티·나이트드레스·파자마·네그리제(negligee)·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의류	
		6208.1	- 슬립과 페티코트(petticoat)	
		6208.11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8.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8.2	- 나이트드레스와 파자마	
		6208.2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8.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8.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8.9	- 기타	
		6208.9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8.9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8.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9		유아용 의류와 그 부속품	
		6209.20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9.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09.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0		의류(제5602호·제5603호·제5903호 ·제5906호·제5907호의 직물류의 제 품으로 한정한다)	
		6210.10	- 제5602호나 제5603호의 직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0.20	- 그 밖의 의류(소호 제6201.11호부터 제6201.19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0.30	- 그 밖의 의류(소호 제6202.11호부터 제6202.19호까지에 열거된 종류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0.40	- 그 밖의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0.50	- 그 밖의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1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과 그 밖의 의류	
		6211.1	- 수영복	
		6211.11	-- 남성용이나 소년용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1.12	-- 여성용이나 소녀용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1.20	- 스키슈트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1.3	- 남성용이나 소년용 그 밖의 의류	
		6211.3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6211.3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1.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1.4	- 여성용이나 소녀용 그 밖의 의류	
		6211.42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1.4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1.4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2		브래지어 · 거들 · 코르셋(corset) · 브레이스(braces) · 서스펜더(suspender) · 가터(garter)와 이와 유사한 제품, 이들의 부분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다)	
		6212.10	- 브래지어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2.20	- 거들과 팬티거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2.30	- 코르슬렛(corselette)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2.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3		손수건	
		6213.20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3.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4		숄(shawl) · 스카프 · 머플러 · 만틸라(mantilla) · 베일(veil)과 이와 유사한 물품	
		6214.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4.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4.30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4.40	- 재생 · 반(半)합성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4.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5		넥타이류	
		6215.10	- 견이나 견 웨이스트(waste)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5.20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5.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6		장갑류	
		6216.00	- 장갑류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2.17		그 밖의 제품으로 된 의류부속품, 의류 · 의류부속품의 부분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6217.10	- 부속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6217.90	- 부분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외 그 밖의 물품, 세트, 사용하던 의류·방직용 섬유제품, 낱마	
	63.01		모포류와 여행용 러그(rug)	
		6301.10	- 전기모포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1.20	- 양모나 동물의 부드러운 털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1.30	- 면으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1.40	- 합성섬유로 만든 모포(전기모포는 제외한다)와 여행용 러그(rug)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1.90	- 그 밖의 모포와 여행용 러그(rug)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		베드린넨(bed linen)·테이블린넨(table linen)·토일렛린넨(toilet linen)·주방 린넨(kitchen linen)	
		6302.10	- 베드린넨(bed linen)(메리야스 편물 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2	-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날염된 것으로 한정한다)	
		6302.2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2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6302.3	- 그 밖의 베드린넨(bed linen)	
		6302.3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32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3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40	- 테이블린넨(table linen)(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5	- 그 밖의 테이블린넨(table linen)	
		6302.5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5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5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60	- 면으로 만든 토일렛린넨(toilet linen)과 주방린넨(kitchen linen) [테리타월지(terry towelling fabric)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테리(terry)직물의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9	- 기타	
		6302.9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93	-- 인조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2.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3		커튼[드레이프(drape)를 포함한다] ·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실내용 블라인드(blind), 커튼이나 침대용 밸런스(valance)	
		6303.1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6303.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3.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3.9	- 기타	
		6303.91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3.9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3.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4		그 밖의 실내용품(제9404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304.1	- 침대덮개	
		6304.11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4.1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4.20	-- 베드 네트(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규정된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4.9	- 기타	
		6304.91	--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4.92	-- 면으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6304.93	-- 합성섬유로 만든 것(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4.9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은 제외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5		포장용 빈 포대	
		6305.10	- 황마나 제5303호의 그 밖의 방직용 인피(靱皮)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5.20	- 면으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5.3	- 인조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6305.32	-- 중간 벌크컨테이너(신축성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5.33	-- 기타[폴리에틸렌·폴리프로필렌 스트립(strip)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5.39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5.90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6		방수포(tarpaulin)·차양·차일, 텐트, 돛[보트용·세일보드(sailboard)용·랜 드크라프트(landcraft)용], 캠프용품	
		6306.1	- 방수포(tarpaulin)·천막·차양	
		6306.1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6.1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6.2	- 텐트	
		6306.22	-- 합성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6.29	--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6.30	- 돛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6.40	- 압축공기식 매트리스(mattress)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6.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7		그 밖의 제품[드레스패턴(dress pattern)을 포함한다]	
		6307.10	- 마루닦이포 · 접시닦이포 · 더스터(duster)와 이와 유사한 청소용 포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7.20	- 구멍재킷과 구멍벨트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7.90	- 기타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8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 · 서비에트 (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 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 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6308.00	- 러그(rug)용 · 태피스트리(tapestry) 용 · 자수한 테이블보용 · 서비에트 (serviette)용 직물이나 실로 구성된 세 트(부속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와 유사한 방직용 섬유제품을 제조하기 위한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3.09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6309.00	- 사용하던 의류와 그 밖의 사용하던 물품	완전생산기준
	63.10		닝마(사용하던 것이나 신품으로 한정한다), 끈 · 배의 밧줄(cordage) ·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로프 · 케이블의 스크랩(scrap), 끈 · 배의 밧줄(cordage) · 로프 · 케이블 제품의 폐품(방직용 섬유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310.10	- 선별한 것	완전생산기준
		6310.90	- 기타	완전생산기준
제12부 신발류 · 모자류 ·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조제 깃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4			신발류 · 각반과 이와 유사한 것, 이들의 부분품	
	64.01		방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갑피(甲皮)를 바닥에 스티칭(stitching) · 리벳팅(riveting) · 네일링(nailing) · 스크루잉(screwing) · 플러그(plugging)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부착하거나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6401.10	- 보호용 금속 토캡(toe-cap)을 넣은 신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1.9	- 그 밖의 신발	
		6401.92	-- 발목을 덮는 것(무릎을 덮는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2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과 갑피(甲 皮)를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 로 한정한다]	
		6402.1	- 스포츠용 신발류	
		6402.12	-- 스키부츠 · 크로스컨트리스키화 · 스노보드부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2.20	- 신발[갑피(甲皮)끈을 플러그(plug) 삽입식으로 바닥에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2.9	- 그 밖의 신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6402.91	-- 발목을 덮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3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 가죽·컴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1	- 스포츠용 신발류	
		6403.12	-- 스키부츠·크로스컨트리스키화· 스노보드부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3.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발등과 엄지발가락의 주위를 감싸는 가죽끈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3.40	- 그 밖의 신발류[보호용 금속 토퍼(toe-cap)를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3.5	- 그 밖의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3.51	-- 발목을 덮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3.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3.9	- 그 밖의 신발류	
		6403.91	-- 발목을 덮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3.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4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플라스틱·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가죽·컴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들고,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	- 신발류(바깥 바닥을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6404.11	-- 스포츠용 신발류, 테니스화·농구화·체조화·훈련화나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4.20	- 신발류[바깥 바닥을 가죽이나 컴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5		그 밖의 신발류	
		6405.10	- 갑피(甲皮)를 가죽이나 컴퍼지션레더(composition leather)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5.20	- 갑피(甲皮)를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6		신발류 부분품[갑피(甲皮)(바깥 바닥을 제외한 바닥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포함한다], 갈아 끼울 수 있는 안창과 힐쿠션(heel cushion)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 각반·레깅스나 이와 유사한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6406.10	- 갑피(甲皮)와 그 부분품(보강재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6.20	- 바깥 바닥과 뒷굽(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4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5			모자류와 그 부분품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65.01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레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6501.00	- 모체(hat-form)[펠트(felt)로 만든 성형하지 않은 것으로서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펠트(felt)로 만든 플레토우(plateaux)와 망송(manchon)[슬릿망송(slit manchon)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5.02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502.00	- 모체(hat-shape)[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서 미성형인 것, 차양을 붙이지 않은 것, 안을 대지 않거나 장식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5.04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4.00	- 모자[각종 재료로 만든 스트립(strip)을 엮거나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5.05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직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5.00	-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직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5.06		그 밖의 모자(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506.10	- 안전모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506.9	- 기타	
		6506.91	--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506.99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5.07		헤드밴드 · 내장재 · 커버 · 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 모자의 프레임(frame) · 챙 · 턱끈	
		6507.00	- 헤드밴드 · 내장재 · 커버 · 모자의 파운데이션(foundation) · 모자의 프레임(frame) · 챙 · 턱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6			산류(傘類) · 지팡이 · 시트스틱(seat- 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들의 부분품	
	66.01		산류(傘類)[지팡이 겸용 우산 · 정원용 산류(傘類)와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를 포함한다]	
		6601.10	- 정원용 산류(傘類)나 이와 유사한 산류(傘類)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601.9	- 기타	
		6601.91	-- 대가 절첩식(折疊式)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60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6.02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6602.00	- 지팡이 · 시트스틱(seat-stick) · 채찍 · 승마용 채찍과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6.03		제6601호나 제6602호의 물품의 부분품 · 트리밍(trimming) · 부속품	
		6603.20	- 산류(傘類)의 틀(대에 부착된 틀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66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7			조제 깃털·송털과 그 제품, 조화,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67.01		새의 깃털이나 송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송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한다]	
		6701.00	- 새의 깃털이나 송털이 붙은 가죽과 그 밖의 부분·깃털과 그 부분·송털과 이들의 제품[제0505호의 물품과 가공한 깃대(scape)·깃촉(quill)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7.02		인조 꽃·잎·과실과 이들의 부분품, 인조 꽃·잎·과실로 만든 제품	
		6702.1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702.9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7.03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6703.00	- 사람 머리카락(정돈·표백이나 그 밖의 가공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가발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제조하기 위한 양모나 그 밖의 동물의 털이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재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7.04		가발·가수염·눈썹·속눈썹·스위치와 이와 유사한 것(사람 머리카락·동물의 털·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사람 머리카락으로 된 제품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704.1	- 합성 방직용 섬유재료로 만든 것	
		6704.11	-- 전체가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70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6704.20	- 사람 머리카락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704.9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3부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도자제품, 유리 유리제품				
68			돌 · 플라스터(plaster) · 시멘트 · 석면 · 운모나 이와 유사한 재료의 제품	
	68.01		포석 · 연석 ·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6801.00	- 포석 · 연석 · 판석[천연 석재로 한정하며,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2		가공한 석비용 · 건축용 석재 [슬레이트(slate)는 제외한다]와 이들의 제품(제6801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천연 석재의 것으로서 슬레이트(slate) 제품을 포함하며, 뒷면을 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천연 석재[슬레이트(slate)를 포함한다]의 알갱이 · 조각 · 가루	
		6802.10	- 타일 · 큐브와 이와 유사한 물품 (사각형인지에 상관없으며 최대 표면적이 한 변이 7센티미터 미만인 정사각형의 면적 이내로 한정한다), 인공적으로 착색한 알갱이 · 조각 ·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2.2	- 그 밖의 석비용 · 건축용 석재와 이들의 제품(단순히 평판 모양이나 수평 모양으로 절단하였거나 톱질한 것으로 한정한다)	
		6802.21	--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 설화석고(alabast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2.23	-- 화강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2.29	-- 그 밖의 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6802.9	- 기타	
		6802.91	-- 대리석 · 트래버틴(travertine) · 설화석고(alabaster)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2.92	-- 그 밖의 석회질 암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2.93	-- 화강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2.99	-- 그 밖의 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3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 (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6803.00	- 가공한 슬레이트(slate)와 슬레이트 (slate) 제품, 응결 슬레이트(slate)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4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드스톤 (grindstone) ·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연마용 · 버리 기용 · 광택용 · 정형용 · 절단용인 것으 로서 프레임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 정한다) · 수지석(手砥石)과 이들의 부분 품 [천연석, 응결시킨 천연 · 인조의 연 마재료로 만든 것이나 도자(陶瓷)제의 것으로 한정하며, 그 밖의 재료로 만든 부분품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6804.10	- 밀스톤(millstone)과 그라인드스톤 (grindstone)[밀링(milling)용 · 그라인 딩(grinding)용 · 펄핑(pulping)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4.2	- 그 밖의 밀스톤(millstone) · 그라인 드스톤(grindstone) · 그라인딩휠 (grinding wheel)과 이와 유사한 것	
		6804.21	-- 합성 · 천연 다이아몬드로 만든 것 (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4.22	-- 그 밖의 연마재료로 만든 것(응결된 것으로 한정한다)이나 도자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4.23	-- 천연석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4.30	- 수지석(手砥石)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5		천연·인조의 연마용 가루나 알갱이를 방직용 섬유재료·종이·판지나 그 밖의 재료에 부착한 물품(특정한 모양으로 절단·봉합한 것인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만든 제품인지에 상관없다)	
		6805.10	- 방직용 섬유의 직물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5.20	- 종이나 판지만을 기본 재료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5.30	- 그 밖의 재료를 기본 재료로 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6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 단열용·방음용·흡음용 광물성 재료의 혼합물과 그 제품(제6811호·제6812호나 제69류의 것은 제외한다)	
		6806.10	- 슬래그 울(slag wool)·암면(rock wool)과 이와 유사한 광물성 울[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하며 벌크 모양·시트(sheet) 모양·롤 모양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6.20	- 박리한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팽창점토·다포슬래그(slag)와 이와 유사하게 팽창하는 광물성 재료(이들의 혼합물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7		아스팔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재료 [예: 석유역청이나 콜타르 피치(coal tar pitch)]의 제품	
		6807.10	- 롤 모양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8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팻밥 ·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 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6808.00	- 패널·보드·타일·블록과 이와 유 사한 물품[식물성 섬유·짚·목재의 대팻밥·칩·파티클(particle)·톱밥이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를 시멘트· 플라스터(plaster)나 그 밖의 광물성 결합재로 응결시킨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9		플라스터(plaster) 제품이나 플라스터 (plaster)를 기본 재료로 조합한 제품	
		6809.1	- 보드·시트(sheet)·패널·타일과 이와 유사한 제품(장식한 것은 제외하 다)	
		6809.11	-- 종이나 판지만을 입혔거나 보강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9.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09.90	- 그 밖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0		시멘트 제품·콘크리트 제품·인조석 제품(보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0.1	- 타일·판석·벽돌과 이와 유사한 제품	
		6810.11	-- 건축용 블록과 벽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0.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0.9	- 그 밖의 제품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6810.91	-- 조립식 건축자재(건축용이나 토목 공사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0.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1		석면시멘트 제품 · 셀룰로오스파이버시 멘트 제품이나 이와 유사한 것	
		6811.40	- 석면을 함유한 것	가. 그 밖의 시트 · 패널 · 타일 및 이와 유사한 제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상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1.8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1.81	-- 물결 모양의 시트(shee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1.82	-- 그 밖의 시트(sheet) · 패널 · 타일 과 이와 유사한 제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1.89	-- 그 밖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2		가공한 석면섬유, 석면을 기본 재료로 한 혼합물, 석면과 탄산마그네슘을 기 본 재료로 한 혼합물, 그 혼합물들의 제품, 석면제품[예: 석면의 실 · 직물 · 의류 · 모자 · 신발 · 개스킷(gasket)](보 강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제6811호와 제6813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812.80	- 청석면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2.9	- 기타	
		6812.91	-- 의류 · 의류 부속품 · 신발 · 모자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2.92	-- 종이 · 표지용 판지 · 펄트(fel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2.93	-- 압축가공한 시트(sheet) 모양이나 롤 모양인 석면섬유 조인트(joint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3		마찰 재료와 그 제품[예: 시트(sheet) · 롤 · 스트립(strip) · 세그먼트 · 디스크 (disc) · 와셔(washer) · 패드](장착되지 않은 것으로서 브레이크용 · 클러치용이 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석면 · 그 밖의 광물성 재료 · 셀룰로오스를 기본 재료 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 직물이나 그 밖의 재료와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 다)	
		6813.20	- 석면을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3.8	- 석면을 함유하지 않은 것	
		6813.81	-- 브레이크 라이닝(brake lining)과 패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3.8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4		운모(가공한 것으로 한정한다)와 운모의 제품(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를 포함하며 종이 · 판지나 그 밖의 재료로 된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6814.10	- 판 · 시트(sheet) · 스트립(strip) (응결시키거나 재생한 운모의 것으로 한정하며 지지물에 부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5		석제품이나 그 밖의 광물성 재료의 제품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탄소성유 · 탄소성유의 제품 · 이탄(泥炭)제품을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6815.10	- 비(非)전기용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5.20	- 이탄(泥炭)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5.9	- 그 밖의 제품	
		6815.91	-- 마그네사이트 · 백운석 · 크로마이트를 함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815.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			도자제품	
	69.01		벽돌 · 블록 · 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 [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 · 트리폴리트 · 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6901.00	- 벽돌 · 블록 · 타일과 그 밖의 도자제품 [규산질의 화석 가루(예: 규조토 · 트리폴리트 · 다이어토마이트)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제조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02		내화벽돌 · 내화블록 · 내화타일과 이와 유사한 건설용 내화 도자제품(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2.10	- 마그네슘 · 칼슘 · 크로뮴원소를 산화마그네슘 · 산화칼슘 · 산화크로뮴으로 표현하였을 때 하나 이상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02.20	- 알루미나 · 실리카, 이들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03		그 밖의 내화성 도자제품[예: 레토르트(retort) · 도가니 · 머플 · 노즐 · 플러그]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 서포트 · 큐펠(cupel) · 관(管) · 쉬드(sheath) · 막대(rod)](규산질의 화석 가루나 이와 유사한 규산질의 흙으로 만든 제품은 제외한다)	
		6903.10	- 흑연이나 그 밖의 탄소 또는 이들 혼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03.20	- 알루미나(Al_2O_3) 또는 알루미나와 실리카(SiO_2)의 혼합물이나 화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04		도자제의 건축용 벽돌 · 바닥 깔개용 블록 · 서포트타일(support tile) · 필러타일(filler tile)과 이와 유사한 것	
		6904.10	- 건축용 벽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05		기와 · 굴뚝통 · 굴뚝갓 · 굴뚝용 내장재 · 건축용 장식품과 그 밖의 도자제의 건설용품	
		6905.10	- 기와(지붕타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06		도자제의 관(管) · 도관(導管) · 흠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6906.00	- 도자제의 관(管) · 도관(導管) · 흠통과 관(管)의 연결구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07		도자제의 판석과 포장(鋪裝)용 · 노(爐)용 · 벽용 타일, 도자제의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뒷면을 보강한 것 인지에 상관없다), 피니싱 세라믹	
		6907.2	- 판석과 포장(鋪裝)용 · 노(爐)용 · 벽용 타일(소호 제6907.30호 및 제6907.40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호의 것은 제외한다)	
		6907.21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 퍼센트 이상일 것, 또 는 제6907호의 광택처 리가 되지 않은 상품 에서 제6907호의 광택 처리가 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6907.22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0.5 초과 100분의 10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6907호의 광택처리가 되지 않은 상품에서 제6907호의 광택처리가 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6907.23	-- 수분흡수계수가 중량기준으로 100분의 10 초과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6907호의 광택처리가 되지 않은 상품에서 제6907호의 광택처리가 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6907.30	- 모자이크 큐브와 이와 유사한 것 (소호 제6907.40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6907호의 광택처리가 되지 않은 상품에서 제6907호의 광택처리가 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6907.40	- 피니싱 세라믹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6907호의 광택처리가 되지 않은 상품에서 제6907호의 광택처리가 된 상품으로 변경된 것
	69.09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농업용 도자제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물품의 수송용· 포장용으로 사용하는 도자제의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항아리·단지와 이와 유사한 제품	
		6909.1	- 실험실용·화학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 도자제품	
		6909.11	-- 자기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09.12	-- 모스 경도가 9 이상인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09.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0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10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 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	
		6910.10	- 자기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1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11		자기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	
		6911.10	- 식탁용품과 주방용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1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12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6912.00	- 도자제의 식탁용품·주방용품·그 밖의 가정용품·화장용품(자기제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13		도자제의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장식용 제품	
		6913.10	- 자기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1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14		도자제의 그 밖의 제품	
		6914.10	- 자기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691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			유리와 유리제품	
	70.01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 스크랩(scrap), 유리 괴(塊)	
		7001.00	- 깨진 유리, 유리의 그 밖의 웨이스트(waste) · 스크랩(scrap), 유리 괴(塊)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2		유리로 만든 구(球)[제7018호의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는 제외한다], 막대(rod)나 관(管)(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2.10	- 구(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2.20	- 막대(rod)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2.3	- 관(管)	
		7002.31	-- 석영유리와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2.32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1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2.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3		주입법과 롤(roll)법으로 제조한 유리 [시트(sheet) 모양이나 프로파일 (profile) 모양으로 한정하고, 흡수층· 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3.1	- 망입(網入)하지 않은 시트(sheet) 유리	
		7003.12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 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 무반사층을 갖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3.20	- 망입(網入) 시트(sheet) 유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3.30	- 프로파일(profil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4		인상법(引上法)과 취입법(吹入法)으로 제조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 정하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 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 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4.20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착색한 것을 포함한다), 불투명한 것, 다른 착 색유리로 입힌 것, 흡수층·반사층· 무반사층을 갖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4.90	- 그 밖의 유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5		플로트유리(float glass)와 표면을 연마 한 유리[시트(sheet) 모양으로 한정하 고, 흡수층·반사층·무반사층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005.10	-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흡수층· 반사층·무반사층을 갖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5.2	- 그 밖의 망입(網入)하지 않은 유리	
		7005.21	-- 전 부분을 착색한 것(얇게 색상이 있는 색유리를 포함한다), 불투명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것, 다른 착색유리로 입힌 것, 단순히 표면을 연마한 것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5.30	- 망입(網入) 유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6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 (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7006.00	- 제7003호·제7004호·제7005호의 유리(구부린 것·가장자리 가공한 것·조각한 것·구멍을 뚫은 것·에나멜을 칠한 것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가공한 것으로 한정하며, 프레임을 붙인 것이나 그 밖의 재료를 붙인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7		안전유리(강화유리나 점합유리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7007.1	- 강화 안전유리	
		7007.11	--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7.2	- 점합 안전유리	
		7007.21	-- 차량·항공기·우주선·선박에 사용하기 적합한 크기와 모양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7.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8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7008.00	- 유리로 만든 복층 절연유닛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0.09		유리거울(백미러를 포함하며, 틀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다)	
		7009.10	- 백미러(차량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9.9	- 기타	
		7009.91	-- 틀이 붙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09.92	-- 틀이 붙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0		유리로 만든 카보이(carboy)·병·플라스크·단지·항아리·약병·앰플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물품의 수송용·포장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보존병, 유리로 만든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7010.10	- 앰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0.20	- 마개·뚜껑과 그 밖의 마개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1		밀폐되지 않은 유리로 만든 외피(벌브와 튜브를 포함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전구·음극선관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것으로서 부착물이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7011.10	- 전등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1.20	- 음극선관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0.13		유리제품(식탁용·주방용·화장실용·사무용·실내장식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로 한정하며, 제7010호나 제7018호의 것은 제외한다)	
		7013.10	- 유리 도자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3.2	- 굽 달린 음료용 유리컵류 (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22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3.28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3.3	- 그 밖의 음료용 유리컵류 (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33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3.37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3.4	- 식탁용 유리제품(음료용 유리컵류는 제외한다)과 주방용 유리제품 (유리 도자제의 것은 제외한다)	
		7013.41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3.42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3.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3.9	- 그 밖의 유리제품	
		7013.91	-- 납 크리스탈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3.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4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7014.00	- 신호용 유리제품과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제7015호의 것과 광학적으로 가공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5		시계용 유리와 이와 유사한 유리, 안경용(시력교정용인지에 상관없다) 유리 [곡면인 것·구부린 것·중공(中空)인 것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제조에 사용하는 중공구면(中空球面)유리와 그 세그먼트	
		7015.10	- 시력교정용 안경유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6		압축하거나 주형한 유리로 만든 포장(鋪裝)용 블록·슬래브·벽돌·스퀘어(square)·타일과 그 밖의 제품[망입(網入)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건축용이나 건설용으로 한정한다],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레드라이트(leaded light)와 이와 유사한 것, 블록(block)·패널(panel)·플레이트(plate)·셸(shell)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의 다공(多孔)유리나 다포(多泡)유리	
		7016.10	- 유리로 만든 입방체와 그 밖의 유리 세공품(뒷면을 보강한지에 상관없으며 모자이크용이나 이와 유사한 장식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7		실험실용·위생용·약제용 유리제품 (눈금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7017.10	- 석영유리 또는 용융실리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7.20	- 선팅창계수가 섭씨 0도에서 300도 의 범위 내에서 1켈빈온도당 백만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그 밖의 유리로 만 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8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 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을 제외한 유리제품, 인체용을 제외한 유리 안구, 작은 조각상과 램프 가공한(lamp- worked) 그 밖의 장식용 유리제품(모조 신변장식용품은 제외한다), 지름이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7018.10	- 유리로 만든 비드(bead)·모조 진주 ·모조 귀석과 반귀석·이와 유사한 유리 세공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8.20	- 1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유리로 만든 마이크로스피어(microspher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9		유리섬유[글라스 울(glass wool)을 포함한다]와 이들의 제품(예: 실·직물)	
		7019.1	- 슬리버(sliver)·로빙(roving)·실· 단연사	
		7019.11	-- 단연사(길이가 50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9.12	-- 로빙(rov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9.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9.3	-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 매트(mat)·매트리스(mattress)·보드 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019.31	-- 매트(ma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9.32	-- 얇은 시트(sheet)(보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9.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9.40	- 로빙(roving) 직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9.5	- 그 밖의 직물	
		7019.51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9.52	-- 폭이 30센티미터 초과인 것 (평직물로서 1제곱미터당 중량이 250그램 미만이며, 구성하는 단사가 136텍스 이하의 필라멘트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9.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1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0.20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020.00	- 유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4부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			천연진주 · 양식진주 · 귀석 · 반귀석 · 귀금속 · 귀금속을 입힌 금속과 이들의 제품, 모조 신변장식용품, 주화	
	71.01		천연진주나 양식진주(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켜 것 · 장착되거나 세트에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 것을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포함한다)	
		7101.10	- 천연진주	완전생산기준
		7101.2	- 양식진주	
		7101.21	-- 가공하지 않은 것	완전생산기준
		7101.22	-- 가공한 것	완전생산기준
	71.02		다이아몬드(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7102.10	- 선별하지 않은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2.2	- 공업용	
		7102.21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2.2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2.3	- 공업용이 아닌 것	
		7102.31	-- 원석(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쪼갠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2.3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3		귀석(다이아몬드는 제외한다)과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펜 것·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펜 것을 포함한다)	
		7103.10	- 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3.9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가공한 것	
		7103.91	-- 루비·사파이어·에메랄드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3.9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4		합성·재생한 귀석이나 반귀석(가공한 것인지 또는 등급을 매긴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실로 켜진 것, 장착되거나 세트로 된 것은 제외한다. 다만, 등급을 매기지 않은 것으로서 수송의 편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실로 켜진 것을 포함한다)	
		7104.10	- 압전기용 석영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4.20	- 기타(원석, 단순히 톱질한 것이나 거칠게 성형한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4.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5		천연의 것이나 합성한 귀석·반귀석의 더스트(dust)와 가루	
		7105.10	- 다이아몬드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5.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6		은(금이나 백금을 도금한 은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6.10	-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6.9	- 기타	
		7106.91	-- 가공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6.92	-- 반가공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7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107.00	- 은을 입힌 비금속(卑金屬)(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8		금(백금을 도금한 금을 포함하며, 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08.1	- 화폐용이 아닌 것	
		7108.11	--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8.12	-- 그 밖의 가공하지 않은 모양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8.13	-- 그 밖의 반가공한 모양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8.20	- 화폐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09		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09.00	-金を 입힌 비금속(卑金屬)이나 은(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0		백금(가공하지 않은 것·반가공한 모양이나 가루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110.1	- 플라티늄(platinum)	
		7110.1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0.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0.2	- 팔라듐(palladium)	
		7110.2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0.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0.3	- 로듐(rhodium)	
		7110.3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0.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0.4	- 이리듐(iridium) · 오스뮴(osmium) · 루테튬(ruthenium)	
		7110.41	-- 가공하지 않은 것이나 가루 모양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0.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1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 · 은 · 금 (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111.00	- 백금을 입힌 비금속(卑金屬) · 은 · 금(반가공한 것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2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주로 귀금속의 회수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7112.30	- 귀금속이나 귀금속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는 회(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2.9	- 기타	
		7112.91	-- 금의 것(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2.92	-- 백금의 것(백금을 입힌 금속을 포함하며, 그 밖의 귀금속을 함유한 부스러기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3		신변장식용품과 그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3.1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3.11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3.19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3.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4		금 세공품이나 은 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귀금속으로 만들거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114.1	- 귀금속으로 만든 것(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4.11	-- 은으로 만든 것(그 밖의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4.19	-- 그 밖의 귀금속으로 만든 것 (귀금속을 도금하거나 입힌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4.20	- 귀금속을 입힌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5		귀금속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의 그 밖의 제품	
		7115.10	- 촉매제[백금으로 만든 와이어 클로스(wire cloth)나 그릴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5.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6		천연진주나 양식진주, 귀석이나 반귀석 (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의 제품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116.10	- 천연진주나 양식진주로 만든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6.20	- 귀석이나 반귀석(천연의 것, 합성·재생한 것)으로 만든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7		모조 신변장식용품	
		7117.1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귀금속을 도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117.11	-- 커프링크(cuff-link)와 장식용 단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7.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8		주화	
		7118.10	- 주화(금화는 제외한다)로서 법정통화가 아닌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11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5부 비금속(卑金屬)과 그 제품				
72			철강	
	72.01		선철(鐵鐵)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피그(pig)·블록(block) 모양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1.1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1.20	- 비합금선철(인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5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1.50	- 합금선철과 스피그라이즌(spiegeleise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		합금철(ferro-alloy)	
		7202.1	- 페로망간	
		7202.11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2	- 페로실리콘(ferro-silicon)	
		7202.21	-- 실리콘의 함유량이 100분의 55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30	- 페로실리코망간(ferro-silico- manganes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4	- 페로크로뮴(ferro-chromium)	
		7202.41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4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50	- 페로실리코크로뮴(ferro-silico- chromium)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60	- 페로니켈(ferro-nickel)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70	- 페로몰리브데늄(ferro-molybdenum)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80	- 페로텅스텐(ferro-tungsten)과 페로실리코 텅스텐(ferro-silico- tungste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9	- 기타	
		7202.91	-- 페로티타늄(ferrotitanium)과 페로실리코티타늄(ferro-silico- titanium)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92	-- 페로바나듐(ferro-vanadium)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93	-- 페로니오븀(ferro-niobium)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3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과 그 밖의 해면질의 철제품[럼프 (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순도가 최 저 전 중량의 100분의 99.94인 철[럼 프(lump)·펠릿(pellet)이나 이와 유사 한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03.10	- 철광석을 직접 환원하여 제조한 철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4		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철강의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 (scrap ingot)	
		7204.10	- 주철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4.2	- 합금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7204.21	-- 스테인리스강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4.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204.30	- 주석을 도금한 철강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4.4	- 그 밖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7204.41	-- 선삭(旋削) · 세이빙(shaving) · 칩 · 밀링 웨이스트(milling waste) · 톱밥 · 파일링(filing) · 트리밍(trimming) · 스탬핑(stamping)(번들 모양인지에 상 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4.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4.50	- 재용해용 스크랩 잉곳(scrap ingo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5		알갱이와 가루[선철(銑鐵) · 스피그라 이즌(spiegeleisen) · 철강의 것으로 한 정한다]	
		7205.10	- 알갱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5.2	- 가루	
		7205.21	-- 합금강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6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primary form) 형태인 철과 비합금강 (제7203호의 철은 제외한다)	
		7206.10	- 잉곳(ingo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7		철이나 비합금강의 반제품	
		7207.1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207.11	-- 횡단면이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인 것(폭이 두께의 두 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7.12	-- 그 밖의 횡단면이 직사각형 (정사각형은 제외한다)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7.20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8.10	- 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2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고 산세(酸洗)한 것으로 한정한다]	
		7208.25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26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27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3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36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37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208.38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39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40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5	- 기타[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08.5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52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53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54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09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09.1	- 코일 모양인 것으로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15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16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17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18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2	- 코일 모양이 아닌 것으로 냉간압연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09.25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26	-- 두께가 1밀리미터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27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28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720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72.10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도금·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0.1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11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0.12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0.20	- 납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합석판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0.3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0.4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41	-- 물결 모양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0.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0.50	- 산화크로뮴이나 크로뮴과 산화크로뮴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0.6	- 알루미늄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7210.61	-- 알루미늄-아연 합금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0.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0.70	-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1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하고, 클래드(clad) · 도금 · 도포한 것은 제외한다]	
		7211.1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13	-- 4면을 압연한 것이나 크로스드박스 패스(closed box pass)로 한 것(폭이 150밀리미터를 초과하고, 두께가 4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하며, 코일 모양인 것과 부조(浮彫)된 무늬가 있는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1.14	-- 기타(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1.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1.2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1.23	-- 탄소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25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1.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2		철이나 비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서 클래드(clad) · 도금 · 도포한 것으로 한정한다]	
		7212.10	- 주석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2.20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2.3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2.40	- 페인팅한 것 · 바니시한 것 · 플라스틱을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2.50	-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2.60	- 클래드(clad)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3		철이나 비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3.1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모양의 마디 · 리브(rib) · 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3.20	- 기타[괘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3.9	- 기타	
		7213.91	--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지름이 14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3.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4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단조(鍛造) · 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열간(熱間)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고,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을 포함한다]	
		7214.10	- 단조(鍛造)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4.20	- 압연공정에서 발생하는 톱니 모양의 마디·리브(rib)·홈이나 그 밖의 모양으로 된 것, 압연 후 꼬임가공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4.30	- 기타[괘삭강(快削鋼)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4.9	- 기타	
		7214.91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 인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4.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5		철이나 비합금강의 그 밖의 봉	
		7215.10	- 괘삭강(快削鋼)의 것[냉간(冷間)성형 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5.50	- 기타[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 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 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		철이나 비합금강의 형강(形鋼)	
		7216.10	- 유(U)형강·아이(I)형강·에이치(H) 형강[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 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 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 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2	-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 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 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21	-- 엘(L)형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22	-- 티(T)형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3	- 유(U)형강 · 아이(I)형강 · 에이치(H)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6.31	-- 유(U)형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32	-- 아이(I)형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33	-- 에이치(H)형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40	- 엘(L)형강이나 티(T)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서 높이가 8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50	- 그 밖의 형강[열간(熱間)압연 · 열간인발(熱間引拔) · 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6	- 형강(形鋼)[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16.61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9	- 기타	
		7216.91	-- 평판압연제품으로부터 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6.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7		철이나 비합금강의 선(線)	
		7217.10	- 도금하거나 도포하지 않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것(연마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7.20	-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7.3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을 도금하거 나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8		스테인리스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스테인리스강의 반제품	
		7218.10	- 잉곳(ingot)과 그 밖의 일차제품 (primary form) 형태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8.9	- 기타	
		7218.91	-- 횡단면이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 인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8.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1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19.1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12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13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14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2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코일 모양인 것은 제외한다)	
		7219.21	-- 두께가 10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22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 10밀리 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23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 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24	-- 두께가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7219.31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2	-- 두께가 3밀리미터 이상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3	-- 두께가 1밀리미터를 초과 3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4	-- 두께가 0.5밀리미터 이상 1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35	-- 두께가 0.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1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0		스테인리스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0.1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않은 것	
		7220.11	-- 두께가 4.75밀리미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7220.12	-- 두께가 4.75밀리미터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219호의 것은 제외한다)
		7220.20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1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1.00	- 스테인리스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2		스테인리스강의 그 밖의 봉과 스테인리스강의 형강(形鋼)	
		7222.1	-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222.11	-- 횡단면이 원형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2.20	-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2.30	- 그 밖의 봉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2.40	- 형강(形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3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7223.00	- 스테인리스강의 선(線)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4		그 밖의 합금강[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primary form) 형태인 것으로 한정한다]과 그 밖의 합금강의 반제품	
		7224.10	- 잉곳(ingot)이나 그 밖의 일차제품 (primary form) 형태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5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5.1	- 규소전기강의 것	
		7225.11	-- 방향성(方向性)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5.30	- 기타[코일 모양인 것으로서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5.40	- 기타[코일 모양은 제외하고,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5.50	- 기타[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5.9	- 기타	
		7225.91	-- 아연을 전해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5.92	-- 그 밖의 방법으로 아연을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5.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6		그 밖의 합금강의 평판압연제품(폭이 600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7226.1	- 규소전기강의 것	
		7226.11	-- 방향성(方向性)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6.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6.20	- 고속도강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6.9	- 기타	
		7226.91	-- 열간(熱間)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6.92	-- 냉간압연(냉간환원)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6.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7		그 밖의 합금강의 봉[열간(熱間)압연한 것으로서 불규칙적으로 감은 코일 모양으로 한정한다]	
		7227.10	- 고속도강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7.20	- 실리코망간강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8		그 밖의 합금강의 그 밖의 봉, 그 밖의 합금강의 형강(形鋼), 합금강이나 비합금강의 중공(中空)드릴봉	
		7228.10	- 고속도강의 봉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8.20	- 실리코망간강의 봉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8.30	- 그 밖의 봉[열간(熱間)압연·열간인발(熱間引拔)·압출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8.40	- 그 밖의 봉[단조(鍛造)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8.50	- 그 밖의 봉[냉간(冷間)성형이나 냉간(冷間)처리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8.60	- 그 밖의 봉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8.70	- 형강(形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8.80	- 중공(中空)드릴봉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9		그 밖의 합금강의 선(線)	
		7229.20	- 실리코망간강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22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			철강의 제품	
	73.01		철강으로 만든 널말뚝(sheet piling)(구멍을 뚫은 것인지 또는 조립된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용접된 형강(形鋼)	
		7301.10	- 널말뚝(sheet pil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1.20	- 형강(形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2		철강으로 만든 철도용이나 궤도용 선로의 건설재료[레일(rail)·체크레일(check- rail)과 랙레일(rack rail)·스위치 블레 이드(switch blade)·교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 로싱피스(crossing piece)·받침목(크로 스타이)·이음매판 (fish-plate)·좌철 (座鐵)·좌철(座鐵)쌓기·밑판(sole plate) (베이스플레이트)·레일클립·받 침판 (bedplate)·격재(tie)와 레일의 접속이나 고착에 전용되는 그 밖의 재 료로 한정한다]	
		7302.10	- 레일(rail)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2.30	- 스위치 블레이드(switch blade)·교 차구류(crossing frog)·전철봉(point rod)과 그 밖의 크로싱피스(crossing piec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2.40	- 이음매판(fish-plate)과 받침판(sole plat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3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 일(profile)	
		7303.00	- 주철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 로파일(profil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4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무계목(無繼目)으로 한정한다]	
		7304.1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4.11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4.2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튜빙·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드릴파이프	
		7304.22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드릴파이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4.23	-- 그 밖의 드릴파이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4.24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4.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4.3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3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4.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4.4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4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4.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4.5	- 기타(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4.51	-- 냉간인발(冷間引拔)하거나 냉간압연(냉간환원)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4.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3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 [예: 용접·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으로서 횡단면이 원형이고, 바깥지름이 406.4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7305.1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5.11	-- 세로 방향으로 서브머지드아크 (submerged arc) 용접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5.12	-- 기타(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5.20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5.3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7305.31	-- 세로 방향으로 용접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5.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관(管)과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예: 오픈심(open seam)·용접· 리벳(rivet)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봉합한 것]	
		7306.1	- 오일이나 가스 배관용 파이프라인	
		7306.11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306.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6.2	- 유정용이나 가스정용 케이싱과 튜빙	
		7306.21	-- 용접한 것(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6.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6.3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철이나 비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6.4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6.50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인 것으로서 그 밖의 합금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6.6	- 기타(용접한 것으로 한정하며,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7306.61	-- 횡단면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6.69	-- 그 밖의 횡단면이 원형이 아닌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		철강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7307.1	- 주조한 연결구류	
		7307.11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2	- 기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7307.21	-- 플랜지(flang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22	-- 나선가공한 엘보(elbow) · 벤드(bend) · 슬리브(sleev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23	-- 버트(butt)용접용 연결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9	- 기타	
		7307.91	-- 플랜지(flang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92	-- 나선가공한 엘보(elbow) · 벤드(bend) · 슬리브(sleev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93	-- 바트(butt)용접용 연결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7.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8		철강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 · 수문 · 탑 · 격자주(格子柱) · 지붕 · 지붕틀 ·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 셔터 · 난간 · 기둥],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으로 만든 판 · 대 · 봉 · 형재(形材) · 관(管)과 이와 유사한 것	
		7308.10	- 다리와 교량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308.20	- 탑과 격자주(格子柱)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8.30	- 문·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8.40	- 비계(飛階)·차단기·지주·광도 받침에 사용되는 기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09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용이 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09.00	-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탱크·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압축 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 장치나 가열·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 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 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0		철강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탱크·통· 드럼·캔·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310.10	- 용적이 50리터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0.2	- 용적이 50리터 미만인 것	
		7310.21	-- 납땜이나 크림핑(crimping)으로 봉합되는 통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0.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3.11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311.00	- 철강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2		철강으로 만든 연선(stranded wire) · 로프 · 케이블 · 역은 밴드 · 사슬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312.10	- 연선(stranded wire) · 로프 · 케이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3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鉄) · 대 · 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7313.00	- 철강으로 만든 유자선(有刺鉄) · 대 · 평선을 꼰 것[유자(有刺)의 것인지에 상관없다]과 느슨하게 꼰 2중선으로서 울타리용으로 사용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4		철강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를 포함한다] · 그릴 · 망 · 울타리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7314.1	- 직조한 클로스(cloth)	
		7314.12	-- 기계용 엔드리스 밴드(endless band)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4.14	-- 그 밖의 직조한 클로스(cloth)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4.20	- 그릴 · 망 ·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선의 횡단면의 최대치가 3밀리미터 이상이고, 메시(mesh)의 크기가 100제곱센티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4.3	- 그 밖의 그릴 · 망 · 울타리(접점을 용접한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314.31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4.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4.4	- 그 밖의 클로스(cloth) · 그릴 · 망 · 울타리	
		7314.41	-- 아연으로 도금하거나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4.42	-- 플라스틱으로 도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4.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4.50	- 익스팬디드 메탈(expanded metal)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5		철강으로 만든 체인과 그 부분품	
		7315.1	- 마디가 있는 링크체인(link chain)과 그 부분품	
		7315.11	-- 롤러체인(roller chai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5.12	-- 그 밖의 체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5.19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5.20	- 스킨드체인(skid chai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5.8	- 그 밖의 체인	
		7315.81	-- 스터드링크(stud-link)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5.82	-- 기타(용접한 링크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5.8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5.90	- 그 밖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6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7316.00	- 철강으로 만든 닻과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7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 [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7317.00	- 철강으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물결 모양 못·스테이플 (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두부(頭部)가 그 밖의 다른 재료로 만든 것인지에 상관없으나 구리를 재료로 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8		철강으로 만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코치 스크루(coach screw)·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318.1	- 나선가공한 제품	
		7318.11	-- 코치 스크루(coach screw)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8.12	-- 그 밖의 목재용 스크루(screw)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8.13	-- 스크루 훅(screw hook)과 스크루 링(screw r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318.14	-- 셀프태핑 스크루(self-tapping screw)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8.15	-- 그 밖의 스크루(screw)와 볼트(bolt) [너트(nut)나 와셔(washer)가 붙어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8.16	-- 너트(nu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8.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8.2	- 나선가공하지 않은 제품	
		7318.21	-- 스프링 와셔(spring washer)와 그 밖의 록 와셔(lock wash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8.22	-- 그 밖의 와셔(wash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8.23	-- 리벳(rive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8.24	-- 코터(cotter)와 코터핀(cotter-pi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8.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9		철강으로 만든 수봉침·수편침·돛바늘 ·코바늘·자수용 천공수침과 이와 유 사한 물품으로서 손으로 사용하는 것, 철강으로 만든 안전핀과 그 밖의 핀(따 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19.40	- 안전핀과 그 밖의 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1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3.20		철강으로 만든 스프링과 스프링판	
		7320.10	- 판상 스프링과 그 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0.20	- 나선용 스프링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1		철강으로 만든 스토브(stove) · 레인지 (range) · 화상 (火床) · 조리기(중앙난방 용 보조보일러를 갖춘 것을 포함한다) · 바비큐(barbecue) · 화로 · 가스풍로 · 가열판과 이와 유사한 비전기식 가정 용 기구와 이들의 부분품	
		7321.1	- 조리용 기구와 가열판	
		7321.11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1.12	-- 액체연료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1.19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1.8	- 그 밖의 기구	
		7321.81	-- 가스연료용이나 가스와 그 밖의 연료 겸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1.82	-- 액체연료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1.89	-- 기타(고체연료용 기구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1.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3.22		철강으로 만든 방열기(중앙난방용으로 한정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동력구동식 송풍기를 갖춘 공기가열기와 온풍배분기(냉풍이나 조절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배분기를 포함하고, 전기가열식은 제외한다)와 이들의 부분품	
		7322.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7322.11	-- 주철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3		철강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7323.10	- 철강의 울, 철강으로 만든 용기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3.9	- 기타	
		7323.91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가 아닌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3.92	-- 주철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3.93	-- 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3.94	-- 철강(주철은 제외한다)으로 만든 것으로 법령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3.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3.24		철강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324.10	- 설거지통과 세면대(스테인리스강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4.2	- 목욕통	
		7324.21	-- 주철로 만든 것(법랑제의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4.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4.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5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주물제품	
		7325.10	- 비가단주철(非可鍛鑄鐵)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5.9	- 기타	
		7325.91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5.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6		철강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326.1	- 단조물(鍛造物)(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326.11	-- 분쇄기용 그라인딩볼(grinding ball)과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6.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6.20	- 철강선으로 만든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32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			구리와 그 제품	
	74.01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	
		7401.00	- 구리의 매트(mat)와 시멘트동(침전동)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2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7402.00	- 정제하지 않은 구리와 전해정제용 구리 양극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3		정제한 구리와 구리합금(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7403.1	- 정제한 구리	
		7403.11	-- 음극과 음극의 형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3.12	--- 와이어바(wire-ba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3.13	-- 빌릿(bille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3.2	- 구리합금	
		7403.21	-- 구리-아연의 합금(황동)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3.22	-- 구리-주석의 합금(청동)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3.29	-- 그 밖의 구리합금[제7405호의 모합금(master alloy)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4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404.00	- 구리의 웨이스트(waste)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스크랩(scrap)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5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7405.00	- 구리의 모합금(master alloy)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6		구리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406.10	- 비(非)총상조직인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6.20	- 총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7		구리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407.1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7.2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7.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7.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8		구리의 선	
		7408.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8.11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6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8.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8.2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08.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8.22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8.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9		구리의 판·시트(sheet)·스트립(두께 가 0.1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 정한다)	
		7409.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7409.11	-- 코일 모양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9.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9.2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7409.21	-- 코일 모양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9.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9.3	- 구리-주석 합금으로 만든 것(청동)	
		7409.31	-- 코일 모양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9.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09.40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409.90	- 그 밖의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0		구리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15밀리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7410.1	-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410.1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0.12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0.2	- 뒷면을 붙인 것	
		7410.21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0.22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1		구리로 만든 관(管)	
		7411.1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1.2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7411.21	-- 구리-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황동)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1.22	-- 구리-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백동)이나 구리-니켈-아연 합금으로 만든 것(양백)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1.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2		구리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412.10	- 정제한 구리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2.20	- 구리합금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3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역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7413.00	- 구리로 만든 연선·케이블·역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407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5		구리로 만든 못·압정·제도용 핀·스 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과 이와 유사한 물품[구리로 만든 것이나 구리로 만든 두부(頭部)를 가진 철강으 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구리로 만 든 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 (nut)·스크루훅(screw hook)·리벳 (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 pin)·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와 이와 유사한 물품	
		7415.10	- 못과 압정, 제도용 핀·스테이플과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5.2	- 나선가공을 하지 않은 그 밖의 물품	
		7415.21	-- 와셔(washer)[스프링와셔(spring washer)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5.3	- 그 밖의 나선가공한 물품	
		7415.33	-- 스크루(screw), 볼트(bolt)와 너트 (nu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5.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4.18		구리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구리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구리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418.10	-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 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8.2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9		구리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419.10	- 체인과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9.9	- 기타	
		7419.91	-- 주조·주형·압착·단조(鍛造)된 것(이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419.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			니켈과 그 제품	
	75.01		니켈의 매트(mat)·소결(燒結)한 산화니켈·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7501.10	- 니켈의 매트(ma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1.20	- 소결(燒結)한 산화니켈과 니켈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2		니켈의 괴(塊)	
		7502.10	- 합금하지 않은 니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2.20	- 니켈 합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3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503.00	- 니켈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4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504.00	- 니켈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5		니켈의 봉 · 프로파일(profile) · 선(線)	
		7505.1	- 봉과 프로파일(profile)	
		7505.11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5.12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5.2	- 선(線)	
		7505.21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5.22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6		니켈의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박(箔)	
		7506.10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6.20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7		니켈로 만든 관(管)이나 관(管) 연결구류[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7507.1	- 관(管)	
		7507.11	-- 합금하지 않은 니켈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507.12	-- 니켈 합금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7.20	- 관(管) 연결구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8		니켈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508.10	- 니켈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 · 그릴 · 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5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			알루미늄과 그 제품	
	76.01		알루미늄의괴(塊)	
		7601.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1.20	- 알루미늄 합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2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602.00	- 알루미늄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3		알루미늄의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603.10	- 비(非)총상조직인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3.20	- 총상조직인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4		알루미늄의 봉과 프로파일(profile)	
		7604.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4.2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4.21	-- 중공(中空)프로파일(profil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4.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5		알루미늄의 선	
		7605.1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7605.11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5.2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7605.21	-- 횡단면의 최대치수가 7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4 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6		알루미늄의 판·시트(sheet)·스트립 (두께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6.1	- 직사각형인 것(정사각형인 것을 포함한다)	
		7606.11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6.12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6.9	- 기타	
		7606.91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것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6.92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7		알루미늄의 박(箔)[인쇄한 것인지 또는 종이·판지·플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보강재로 뒷면을 붙인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그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7607.1	- 뒷면을 붙이지 않은 것	
		7607.11	-- 압연보다 더 가공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7.20	- 뒷면을 붙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8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7608.10	- 합금하지 않은 알루미늄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8.2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09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7609.00	- 알루미늄으로 만든 관(管) 연결구류 [예: 커플링(coupling) · 엘보(elbow) · 슬리브(sleev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0		알루미늄으로 만든 구조물(제9406호의 조립식 건축물은 제외한다)과 그 부분 품 [예: 다리와 교량 · 수문 · 탑 · 격자 주(格子柱) · 지붕 · 지붕틀 · 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 · 난간 · 기둥], 구 조물용으로 가공한 알루미늄으로 만든 판 · 봉 · 프로파일(profile) · 관(管)과 이 와 유사한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610.10	- 문 · 창과 이들의 틀과 문지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1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1.00	-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저장조 · 탱크 · 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고,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 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하며,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2		알루미늄으로 만든 각종 재료용 통 · 드럼 · 캔 · 상자와 이와 유사한 용기 (경질이나 연질의 튜브형 용기를 포함하고, 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은 제외하며, 기계장치나 가열 · 냉각장치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서 용적이 3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하고, 내장한 것인지 또는 열절연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7612.10	- 연질의 튜브형 용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3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7613.00	-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압축용이나 액화가스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4		알루미늄으로 만든 연선 · 케이블 · 엮은 밴드와 이와 유사한 것(전기 절연한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614.10	- 철강심으로 되어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5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제7605호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5		알루미늄으로 만든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알루미늄으로 만든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polishing)용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알루미늄으로 만든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7615.10	- 식탁용품·주방용품이나 그 밖의 가정용 물품과 이들의 부분품, 용기 세정용구와 세정용이나 폴리싱용(polishing)패드·글러브(glove)와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5.20	- 위생용품과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6		알루미늄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616.10	- 못·압정·스테이플(제8305호의 것은 제외한다)·스크루(screw)·볼트(bolt)·너트(nut)·스크루 훅(screw hook)·리벳(rivet)·코터(cotter)·코터핀(cotter-pin)·와셔(washer)와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6.9	- 기타	
		7616.91	-- 알루미늄선으로 만든 클로스(cloth)·그릴·망·울타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616.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8			납과 그 제품	
	78.01		납의괴(塊)	
		7801.10	- 정제한 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801.9	- 기타	
		7801.91	-- 안티모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주된 그 밖의 원소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80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8.02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7802.00	- 납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8.04		납의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가루와 플레이크(flake)	
		7804.1	- 판·시트(sheet)·스트립·박(箔)	
		7804.11	-- 시트(sheet)·스트립·박(箔) [두께(보강재의 두께는 제외한다)가 0.2밀리미터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80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804.20	- 가루와 플레이크(flak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8.06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806.00	- 납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9			아연과 그 제품	
	79.01		아연의 괴(塊)	
		7901.1	- 합금하지 않은 아연	
		7901.11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 의 99.99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901.12	-- 아연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 의 99.99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901.20	- 아연 합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79.02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7902.00	- 아연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9.03		아연의 더스트(dust) · 가루 · 플레이크 (flake)	
		7903.10	- 아연 더스트(dus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9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9.04		아연의 봉 · 프로파일(profile) · 선(線)	
		7904.00	- 아연의 봉 · 프로파일(profile) · 선 (線)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9.05		아연의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박 (箔)	
		7905.00	- 아연의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박(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79.07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7907.00	- 아연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0			주석과 그 제품	
	80.01		주석의 괴(塊)	
		8001.10	- 합금하지 않은 주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001.20	- 주석 합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0.02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8002.00	- 주석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0.03		주석의 봉 · 프로파일(profile) · 선(線)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003.00	- 주석의 봉 · 프로파일(profile) · 선 (線)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0.07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8007.00	- 주석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 서멧(cermet), 이들의 제품	
	81.01		텅스텐(월프람)과 그 제품[웨이스트 (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1.10	-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1.9	- 기타	
		8101.94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 는 봉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1.96	-- 선(線)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1.97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2		몰리브데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 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2.10	-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2.9	- 기타	
		8102.94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봉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2.95	-- 봉[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것은 제외한다], 프로파일(profile) · 판 · 시트(sheet) · 스트립 · 박(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102.96	-- 선(線)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2.97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3		탄탈륨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3.20	- 괴(塊)[단순히 소결(燒結)로 얻어지는 붕을 포함한다],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3.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		마그네슘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4.1	- 괴(塊)	
		8104.11	-- 마그네슘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99.8 이상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2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30	- 크기에 따라 등급을 매긴 줄밥(rasping) · 연삭설(tuming) · 알갱이, 가루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1.05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코발트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 (scrap)을 포함한다]	
		8105.20	- 코발트의 매트(mat)와 코발트 제련으로 생산된 그 밖의 중간생산물, 괴(塊),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5.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6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스트 (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6.00	- 비스무트(bismuth)와 그 제품[웨이 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 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7		카드뮴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7.20	- 카드뮴의 괴(塊),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7.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8		티타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8.20	- 티타늄의 괴(塊),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8.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1.09		지르코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09.20	- 지르코늄의 괴(塊),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9.3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0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0		안티모니와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0.10	- 안티모니의 괴(塊),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0.20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1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1.00	- 망간과 그 제품[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		베릴륨 · 크로뮴 · 게르마늄 · 바나듐 · 갈륨 · 하프늄 · 인듐 · 니오븀(컬럼븀) · 레늄 · 탈륨과 이것으로 만든 제품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2.1	- 베릴륨	
		8112.12	-- 괴(塊),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13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2	- 크로뮴	
		8112.21	-- 괴(塊),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22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5	- 탈륨	
		8112.51	-- 괴(塊),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52	--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9	- 기타	
		8112.92	-- 괴(塊),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가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1.13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 (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8113.00	- 서멧(cermet)과 그 제품[웨이스트 (waste)와 스크랩(scrap)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공구·도구· 칼붙이·스푼·포크, 이들의 부분품	
	82.01		수공구에 해당하는 것 중 가래·삽· 곡괭이·픽스(picks)·괭이·포크와 쇠스랑,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유사한 절단용 공구, 각종 전지가위, 낫·초절기(草切機)·올타리 전단기(剪斷機)·제재(製材)용 썰기와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공구	
		8201.10	- 가래와 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1.30	- 곡괭이·픽스(picks)·괭이·쇠스랑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1.40	- 도끼·빌훅(bill hook)과 이와 유사한 절단용 도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1.50	- 전정가위와 이와 유사한 한손용 전 정가위[가금(家禽)용 가위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1.60	- 올타리 전단기(剪斷機)·양손용 전 지가위와 이와 유사한 양손용 전지가 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1.90	-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수 공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2		수동식 톱, 각종 톱날 [슬리팅(slitting) ·슬로팅(slotting)·이가 없는 톱날을 포함한다]	
		8202.10	- 수동식 톱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2.20	- 띠톱의 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2.3	- 원형 톱날[슬리팅(slitting)이나 슬로 팅(slotting) 톱날을 포함한다]	
		8202.31	-- 작용하는 부분을 강(鋼)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2.3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2.40	- 체인톱의 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2.9	- 그 밖의 톱날	
		8202.91	-- 금속가공용 직선형 톱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3		줄·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 (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금속 절단용 가위·파이프커터(pipe-cutter) ·볼트크로퍼(bolt cropper)·천공편치 와 이와 유사한 수공구	
		8203.10	- 줄과 이와 유사한 공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3.20	- 플라이어(plier)[절단용 플라이어 (plier)를 포함한다]·집게·핀셋과 이 와 유사한 공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3.30	- 금속 절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공 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3.40	- 파이프커터(pipe-cutter)·볼트크로 퍼(bolt cropper)·천공편치와 이와 유 사한 공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4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 (wrench)[토크미터렌치(torque meter wrench)를 포함하나 탭렌치(tap wrench)는 제외한다], 호환성 스패너소 켓(spanner socket)(손잡이가 달린 것 인지에 상관없다)	
		8204.1	- 수동식 스패너(spanner)와 렌치 (wrench)	
		8204.11	-- 조절할 수 없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4.12	-- 조절할 수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4.20	- 호환성 스패너소켓(spanner socke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손잡이가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5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하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블로램프(blow lamp), 공작기계 또는 워터제트 절단기의 부분품·부속품 외의 바이스(vice)· 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모루, 휴대용 화덕, 프레임을 갖춘 수동식이나 페달식 그라인딩휠(grinding wheel)	
		8205.10	- 드릴링·드레딩(threading)이나 태핑용(tapping) 공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5.20	- 망치(hammer, sledge hamm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5.30	- 목재 가공용 대패·끌·동근끌과 이와 유사한 절단공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5.40	- 스크루드라이버(screwdriv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5.5	- 그 밖의 수공구(유리 가공용 다이아몬드공구를 포함한다)	
		8205.51	-- 가정용 공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5.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5.60	- 블로램프(blow lam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5.70	- 바이스(vice)·클램프(clamp)와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5.90	- 기타(이 호의 둘 이상의 소호에 해당하는 물품의 세트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2.06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돌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8206.00	- 제8202호부터 제8205호까지에 해당하는 돌 이상의 공구가 소매용 세트로 되어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7		수공구용(동력작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이나 기계용 호환성 공구 [예: 프레싱(pressing)용·스탬핑 (stamping)용·편칭(punching)용·태핑 (tapping)용·드레딩(threading)용·드 릴링(drilling)용·보링(boring)용·브로 칭(broaching)용·밀링(milling)용·터 닝(turning)용·스크루드라이빙(screw driving)용][금속의 인발(인발)용이나 압출용 다이(die)와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를 포함한다]	
		8207.1	- 착암용이나 굴착용 공구	
		8207.13	-- 작용하는 부분을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7.1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7.20	- 금속의 인발(인발)용이나 압출용 다이(di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7.30	- 프레싱(pressing)용· 스탬핑(stamping)용·편칭(punching) 용 공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7.40	- 태핑(tapping)용이나 드레딩(threading)용 공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7.50	- 드릴링(drilling)용 공구(착암기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7.60	- 보링(boring)용이나 브로칭(broaching)용 공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7.70	- 밀링(milling)용 공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7.80	- 터닝(turning)용 공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7.90	- 그 밖의 호환성 공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8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	
		8208.10	- 금속 가공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8.20	- 목재 가공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8.30	- 주방기구용이나 식품공업에 사용되는 기계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8.40	-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09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 [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209.00	- 공구용 판·봉·팁과 이와 유사한 것[서멧(cermet)으로 만든 것으로서 장착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0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공 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210.00	- 수동식 기계기구(음식물의 조리·제 공에 사용되는 것으로 한 개의 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1		칼(톱니가 있는지에 상관없으며 절단용 칼날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고 전정용 칼을 포함하며 제8208호의 칼은 제외 한다)과 그 날	
		8211.1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1.9	- 기타	
		8211.91	-- 칼날이 고정된 식탁용 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1.92	-- 칼날이 고정된 그 밖의 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1.93	-- 칼날이 고정된 것 외의 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1.94	-- 칼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1.95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손잡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2		면도기와 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 (blank)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 한다]	
		8212.10	- 면도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2.20	- 안전면도날[면도날의 블랭크(blank) 로서 스트립 모양인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2.90	- 그 밖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3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8213.00	- 가위, 재단용 가위와 이와 유사한 가위, 이들의 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4		그 밖의 칼붙이 제품[예: 이발기· 정육점용이나 주방용 칼붙이·토막용 칼(chopper)과 다지기(mincing)용 칼·종이용 칼], 매니큐어·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손톱줄을 포함한다)	
		8214.10	- 종이용 칼 · 편지 개봉기 · 지우개용 칼 · 연필깎이와 그 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4.20	- 매니큐어나 페디큐어(pedicure) 세트와 용구(손톱줄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5		스푼 · 포크 · 국자 · 스키머(skimmer) · 케이크서버(cake-server) · 생선용 칼 · 버터용 칼 · 설탕집게와 이와 유사한 주방용품이나 식탁용품	
		8215.10	- 위 물품이 조합된 세트(최소한 한 가지는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5.20	- 위 물품이 조합된 그 밖의 세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5.9	- 기타	
		8215.9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215.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각종 제품	
	83.01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물쇠 (열쇠식 · 다이얼식 · 전기작동식),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물쇠가 결합되어 있는 것, 이들 물품에 사용되는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열쇠	
		8301.10	- 자물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1.20	- 모터차량에 사용되는 자물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301.30	- 가구에 사용되는 자물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1.40	- 그 밖의 자물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1.50	- 걸쇠와 걸쇠가 붙은 프레임으로 자 물쇠가 결합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1.6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1.70	- 별도로 제시되는 열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2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 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가구·문·계단 ·창·블라인드·차체(coachwork)·마 구·트렁크·장·함이나 이와 유사한 것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 (卑金屬)으로 만든 모자걸이·브래킷 (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비금 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가 있는 카 스터(caster),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자동도어 폐지기	
		8302.10	- 경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2.20	- 카스터(cast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2.30	- 모터차량용에 적합한 그 밖의 장착 구·부착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2.4	- 그 밖의 장착구·부착구와 이와 유사 한 물품	
		8302.41	-- 건물용으로 적합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2.42	-- 기타(가구용에 적합한 것으로 한정 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2.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2.50	- 모자걸이 · 브래킷(bracket)과 이와 유사한 부착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2.60	- 자동도어 폐지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3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나 (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스 (strong-box), 스트롱룸(strong-room) 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8303.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갑하거 나(armoured) 보강한 금고, 스트롱박 스(strong-box), 스트롱룸(strong- room)용 문과 저장실, 현금함이나 손 금고와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4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함 · 카드인덱스함 · 페이퍼 트레이(paper tray) · 페이퍼 레스트(paper rest) · 펜 트레이(pen tray) · 사무실용 스탬프스탠 드(stamp stand)와 이와 유사한 사무실 용이나 책상용 비품 (제9403호에 해당 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8304.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서류정리 함 · 카드인덱스함 · 페이퍼 트레이 (paper tray) · 페이퍼 레스트(paper rest) · 펜 트레이(pen tray) · 사무실용 스탬프스탠드(stamp stand)와 이와 유 사한 사무실용이나 책상용 비품(제 9403호에 해당하는 사무실용 가구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5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루스-리프 (loose-leaf)식 바인더용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 서신용 클립 · 레터코너 (letter corner) · 서류용 클립 · 색인용 태그와 이와 유사한 사무용품, 비금속 (卑金屬)으로 만든 스트립 모양인 스테 이플(staple)(예: 사무실용 · 가구류용 · 포장용의 것)	
		8305.10	- 루스-리프(loose-leaf)식 바인더용 이나 서류철용 피팅(fitting)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5.20	- 스트립 모양인 스테이플(staple)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6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벨 · 징과 이와 유사한 것(전기식은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진틀 · 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거울	
		8306.10	- 벨 · 징과 이와 유사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6.2	- 작은 조각상과 그 밖의 장식품	
		8306.21	-- 귀금속으로 도금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6.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6.30	- 사진틀 · 그림틀이나 이와 유사한 틀, 거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7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플렉시블 튜빙(flexible tubing)(연결구류가 붙은 것인지에 상관없다)	
		8307.10	- 철강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7.90	- 그 밖의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8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걸쇠 · 걸쇠가 붙은 프레임 · 버클(buckle) · 버클(buckle)걸쇠 · 훅(hook) · 아이(eye) · 아일릿(eyelet)과 이와 유사한 것(의류 또는 의류 부속품 · 신발류 · 신변장식용품 · 손목시계 · 서적 · 차양 · 가죽제품 · 여행구나 마구 또는 그 밖의 제품으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된 물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구슬과 스팅글(spangle)	
		8308.10	- 훅(hook) · 아이(eye) · 아일릿(eyele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8.20	- 관 리벳(tubular rivet)이나 두 가닥 리벳(bifurcated rive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8.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9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栓) · 캡 · 뚜껑[병마개 · 스크루캡(screw cap) · 점적구용 전(栓)을 포함한다] · 병용 캡슐 · 나선형 마개 · 마개용 커버 · 실(seal)과 그 밖의 포장용 부속품	
		8309.10	- 크라운코르크(crown cork)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0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1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 · 명판 · 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 · 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8310.0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사인판 · 명판 · 주소판과 이와 유사한 판, 숫자 · 문자와 그 밖의 심벌(제9405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11		비금속(卑金屬)이나 금속탄화물로 만든 선 · 봉 · 관 · 판 · 용접봉과 이와 유사한 물품[금속이나 금속탄화물의 납땜 · 납접 · 용접 · 용착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플럭스(flux)를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 한정한다], 비금속(卑金屬) 가루를 응결시켜 제조한 금속 스프레이(metal spraying)용 선과 봉	
		8311.1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용접봉 [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11.2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선 [플럭스(flux)를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전기아크용접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11.3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봉과 선 [플럭스(flux)를 봉에 도포하였거나 심(芯)에 충전한 것으로서 불로 납땜· 납접·용접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31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6부 기계류·전기기와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향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4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 품	
	84.01		원자로,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원자로용 연료 요소(카트리지)와 동위 원소 분리용 기기	
		8401.10	- 원자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1.20	- 동위원소 분리용 기기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1.30	- 방사선을 조사(照射)하지 않은 연료요소(카트리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1.40	- 원자로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2		증기발생보일러(저압증기도 발생시킬 수 있는 중앙난방용 온수보일러는 제외 한다)와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8402.1	- 증기발생보일러	
		8402.11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을 초과 하는 수관(水管)보일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2.12	-- 증기발생량이 시간당 45톤 이하인 수관(水管)보일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2.19	-- 그 밖의 증기발생보일러(복합보일러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2.20	- 과열수보일러(super-heated water boil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2.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3		중양난방용 보일러(제8402호의 것은 제외한다)	
		8403.10	- 보일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4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예: 연료절약기·과열기·그을음 제거기·가스회수기)와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8404.10	- 제8402호나 제8403호의 보일러용 부속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4.20	- 증기원동기용 응축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4.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5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8405.10	- 발생로가스(producer gas)나 수성(水性)가스 발생기, 아세틸렌가스 발생기와 이와 유사한 습식가스 발생기(청정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5.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6		증기터빈	
		8406.10	- 선박추진용 터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6.8	- 그 밖의 터빈	
		8406.81	-- 출력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6.82	-- 출력이 40메가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6.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7		왕복이나 로터리 방식으로 움직이는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8407.10	- 항공기용 엔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7.2	- 선박추진용 엔진	
		8407.21	-- 아웃보드(outboard) 모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7.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7.3	-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왕복 피스톤 엔진	
		8407.31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7.32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 시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7.33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1,000 시시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7.34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를 초과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는 것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7.90	- 그 밖의 엔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8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엔진 이나 세미디젤엔진)	
		8408.10	- 선박추진용 엔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8.20	- 제87류의 차량 추진용 엔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8.90	- 그 밖의 엔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9		제8407호나 제8408호의 엔진에 전용되 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09.10	- 항공기 엔진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9.9	- 기타	
		8409.91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에 전 용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09.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0		수력터빈 · 수차와 이들의 조정기	
		8410.1	- 수력터빈과 수차	
		8410.11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0.12	-- 동력이 1,000킬로와트 초과 10,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0.13	-- 동력이 10,000킬로와트를 초과하 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0.90	- 부분품(조정기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		터보제트 · 터보프로펠러와 그 밖의 가스터빈	
		8411.1	- 터보제트	
		8411.11	-- 추진력이 25킬로뉴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12	-- 추진력이 25킬로뉴턴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2	- 터보프로펠러	
		8411.21	-- 출력이 1,100킬로와트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22	-- 출력이 1,1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8	- 그 밖의 가스터빈	
		8411.81	-- 출력이 5,000킬로와트 이하인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82	-- 출력이 5,00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9	- 부분품	
		8411.91	-- 터보제트나 터보프로펠러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		그 밖의 엔진과 모터	
		8412.10	- 터보제트 외의 반동 엔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2	- 수력엔진과 수력모터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12.21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2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3	- 압축공기식 엔진과 모터	
		8412.31	-- 리니어 액팅식(실린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8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2.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		액체펌프(계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1	- 펌프(계기를 갖춘 것이나 갖추 수 있도록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8413.11	-- 연료나 윤활유 급유용 펌프(주유소나 정비소에서 사용하는 형태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20	- 수지식 펌프(소호 제8413.11호나 제8413.19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30	- 연료·윤활유 급유용이나 냉각 냉매용 펌프(피스톤 내연기관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40	- 콘크리트 펌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13.50	- 그 밖의 용적형 왕복펌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60	- 그 밖의 용적형 회전펌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70	- 그 밖의 원심펌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8	- 그 밖의 펌프와 액체엘리베이터	
		8413.81	-- 펌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82	--- 액체엘리베이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9	- 부분품	
		8413.91	-- 펌프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3.92	--- 액체엘리베이터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		기체펌프나 진공펌프·기체 압축기와 팬, 팬이 결합된 환기용이나 순환용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에 상관없다)	
		8414.10	- 진공펌프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20	- 손이나 발로 작동하는 기체펌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30	- 냉장·냉동 설비용 압축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40	- 예인용 바퀴달린 새시 위에 장착된 기체압축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14.5	- 팬	
		8414.51	-- 테이블용 · 바닥용 · 벽용 · 창용 · 천장용 · 지붕용 팬(출력이 125와트 이하인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5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60	- 후드(hood)(수평면의 최대길이가 120센티미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8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4.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		공기조절기(동력구동식 팬과 온도나 습도를 변화시키는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습도만을 따로 조절할 수 없는 것도 포함한다)	
		8415.10	- 창문, 벽, 천장 또는 바닥에 고정되도록 설계된 것(일체형이나 분리형으로 한정한다)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415.20	- 자동차용(탑승자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8	- 기타	
		8415.81	-- 냉각유닛과 냉 · 열순환 반전용 밸브를 결합한 것(반전가능 열펌프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82	-- 기타(냉각유닛을 결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83	-- 냉각유닛을 결합하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5.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16		액체연료·잘게 부순 고체연료·기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 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8416.10	- 액체연료를 사용하는 노(爐)용 버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6.20	- 그 밖의 노(爐)용 버너[콤비네이션 버너(combination burner)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6.30	- 기계식 스토커(stoker)[이들의 기계식 불판·기계식 회(灰)배출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6.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		비전기식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노(爐)와 오븐(소각로를 포함한다)	
		8417.10	- 배소(焙燒)용·용해용이나 그 밖의 열처리용 노(爐)와 오븐(광석·황철광이나 금속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20	- 베이커리용 오븐(비스킷용 오븐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8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7.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		냉장고·냉동고와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8418.10	- 냉장고·냉동고(분리된 외부 문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2	- 가정형 냉장고	
		8418.21	-- 압축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30	- चेस्ट(chest)형 냉동고(용량이 8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40	- 직립형 냉동고(용량이 900리터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50	- 냉장용이나 냉동용 장치를 갖춘 저장과 전시 목적의 그 밖의 가구 [체스트(chest), 캐비닛, 전시용 카운터, 쇼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6	- 그 밖의 냉장기구나 냉동기구와 열펌프	
		8418.61	-- 열펌프(제8415호의 공기조절기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9	- 부분품	
		8418.91	-- 냉장기구나 냉동기구를 넣을 수 있도록 설계된 가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8.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		가열·조리·배소(焙燒)·증류·정류· 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증발 ·응축·냉각과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설비·실험실장치[전기가열식(제8514 호의 노(爐)와 오븐과 그 밖의 장비는 제외한다), 실험실용을 포함하며 일반 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제외 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	
		8419.1	- 즉시식이나 저장식 물 가열기(비전기 식으로 한정한다)	
		8419.11	-- 가스식인 즉시식 물가열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20	- 내과용 · 외과용 · 실험실용 살균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3	- 건조기	
		8419.31	-- 농산물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32	-- 목재용 · 제지펄프용 · 종이용 · 판지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40	- 증류기나 정류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50	- 열교환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60	- 기체 액화용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8	- 그 밖의 기기	
		8419.81	-- 뜨거운 음료 제조용이나 음식물의 조리용이나 가열용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8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19.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20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금속이나 유리 가공용은 제외한다)와 이것에 사용되는 실린더	
		8420.10	- 캘린더기(calendering machine)나 그 밖의 로울기(rolling machin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0.9	- 부분품	
		8420.91	-- 실린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0.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액체용이나 기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	
		8421.11	-- 크림분리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12	-- 의류탈수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2	- 액체용 여과기나 청정기	
		8421.21	-- 물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22	-- 물 외의 음료의 여과용이나 청정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23	-- 내연기관용 유류 여과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21.3	- 기체의 여과기나 청정기	
		8421.31	-- 내연기관용 공기 여과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9	- 부분품	
		8421.91	-- 원심분리기(원심탈수기를 포함한다)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2		접시세척기,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 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병·광통·상자 ·자루·그 밖의 용기의 충전용·봉합 용·실링(sealing)용·레이블 부착용 기 계, 병·단지·통과 이와 유사한 용기 의 캡슐 부착(capsuling)용 기계, 그 밖 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를 포함하 다),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8422.1	- 접시세척기	
		8422.11	-- 가정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2.20	- 병이나 그 밖의 용기의 세정용이나 건조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2.30	- 병·광통·상자·자루·그 밖의 용 기의 충전용·봉합용·실링(sealing)용 ·레이블 부착용 기계, 병·단지·통 과 이와 유사한 용기의 캡슐 부착 (capsuling)용 기계, 음료용 탄산가스 주입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2.40	- 그 밖의 포장기계(열수축 포장기계 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2.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3		중량 측정기기[감량(感量)이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은 제외하며, 중량측정식 계수기와 검사기를 포함한다]와 각종 저울 추	
		8423.10	- 체중기(유아용 저울을 포함한다)와 가정형 저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3.20	- 컨베이어용 연속계량식 저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3.30	- 정량저울과 설정된 양의 재료를 포대나 용기에 주입하기 위한 저울[호퍼 스케일(hopper scale)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3.8	- 그 밖의 중량 측정기기	
		8423.81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3.82	-- 최대 측정용량이 30킬로그램 초과 5,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3.8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3.90	- 각종 저울 추와 저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		액체나 가루의 분사용·살포용·분무용 기기(수동식인지에 상관없다),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8424.10	- 소화기(소화제를 충전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20	- 스프레이건과 이와 유사한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24.30	- 증기나 모래의 분사기와 이와 유사한 제트분사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4	- 농업용 또는 원예용 방제기	
		8424.41	-- 휴대용 방제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8	- 그 밖의 기기	
		8424.82	-- 농업용이나 원예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8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4.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5		폴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는 제외한다],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잭(jack)	
		8425.1	- 폴리 태클(Pulley tackle)과 호이스트(hoist)[스킵호이스트(skip hoist)나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는 제외한다]	
		8425.11	-- 전동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5.3	- 윈치(winch)와 캡스턴(capstan)	
		8425.31	-- 전동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5.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5.4	- 잭(jack)과 차량을 들어 올리는 데에 사용하는 호이스트(hoist)	
		8425.41	-- 차고용 고정식 재킹시스템(jacking system)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5.42	-- 그 밖의 잭(jack)과 호이스트 (hoist) (액압식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5.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6		선박의 데릭(derrick), 크레인(케이블크 레인을 포함한다), 이동식 양하대·스 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크레인 이 결합된 작업트럭	
		8426.1	- 천장주행 크레인·트랜스포터 크레인 · 갠트리 크레인(gantry crane)· 교각 (橋脚)형 크레인·이동식 양하대·스트 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8426.11	-- 고정식 천장주행 크레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6.12	-- 타이어가 달린 이동식 양하대와 스트래들 캐리어(straddle carri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6.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6.20	- 타워크레인(tower cran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6.30	- 문형이나 정치형 지브 크레인(jib cran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6.4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한다]	
		8426.41	-- 타이어가 달린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26.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6.9	- 그 밖의 기계	
		8426.91	-- 도로주행 차량에 장착하도록 제작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6.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7		포크리프트트럭(fork-lift truck), 그 밖 의 작업트럭[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8427.10	- 전동기로 구동되는 자주식(自走式) 트럭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7.20	- 그 밖의 자주식(自走式) 작업트럭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7.90	- 그 밖의 작업트럭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8		그 밖의 권양(捲揚)용·취급용·적하용 ·양하용 기계류[예: 리프트·에스컬레 이터·컨베이어·텔레페릭 (teleferic)]	
		8428.10	- 리프트와 스킵호이스트(skip hois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8.20	- 뉴매틱식 엘리베이터와 컨베이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8.3	- 그 밖의 연속작동(continuous- action)식 물품용이나 재료용 엘리베이 터와 컨베이어	
		8428.31	-- 지하 작업용으로 특수 설계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8.32	-- 그 밖의 버켓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28.33	-- 그 밖의 벨트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8.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8.40	- 에스컬레이터와 무빙 워크웨이(moving walkway)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8.60	- 텔레페릭(teleferic) · 의자 양하기 · 스키용 드래그라인(dragline) · 퓨니쿨러(funicular)용 견인장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8.90	- 그 밖의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9		자주식(自走式) 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angledozer) · 그레이더(grader) · 레벨러(leveller) · 스크래퍼(scraper)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 · 엑스커베이터(excavator) · 셔블로더 (shovel loader) · 탬핑머신(tamping machine) · 로드롤러(road roller)	
		8429.1	- 불도저(bulldozer) · 앵글도저 (angledozer)	
		8429.11	-- 무한 궤도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9.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9.20	- 그레이더(grader)와 레벨러(levell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9.30	- 스크래퍼(scrap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9.40	- 탬핑머신(tamping machine)과 로드롤러(road roll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9.5	- 메커니컬셔블(mechanical shovel)과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엑스커베이터(excavator) · 셔블로더(shovel loader)	
		8429.51	-- 프론트엔드 셔블로더(front-end shovel load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9.52	-- 360도 회전의 상부구조를 가진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29.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		그 밖의 이동용 · 정지(整地)용 · 지균(地均)용 · 스크래핑(scraping)용 · 굴착용 · 탬핑(tamping)용 · 콤팩팅(compacting)용 · 채굴용 · 천공용 기계(토양용 · 광석용 · 광물용으로 한정한다), 향타기와 향발기,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8430.10	- 향타기(杭打機)와 향발기(抗拔機)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20	- 스노플라우(snow-plough)와 스노블로어(snow-blow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3	- 석탄이나 암석 절단기와 터널 뚫는 기계	
		8430.31	-- 자주식(自走式)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4	- 그 밖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	
		8430.41	-- 자주식(自走式)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50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으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6	- 그 밖의 기계[자주식(自走式)이 아닌 것으로 한정한다]	
		8430.61	-- 탬핑(tamping)용이나 컴팩팅(compacting)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0.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1		제8425호부터 제8430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	
		8431.10	- 제8425호의 기계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1.20	- 제8427호의 기계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1.3	- 제8428호의 기계의 것	
		8431.31	-- 리프트·스킵호이스트(skip hoist) · 에스컬레이터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1.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1.4	- 제8426호·제8429호·제8430호의 기계의 것	
		8431.41	-- 버킷(bucket)·셔블(shovel)·그랩 (grab)과 그립(grip)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1.42	-- 불도저(bulldozer)나 앵글도저 (angledozer)의 블레이드(blad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1.43	-- 소호 제8430.41호나 제8430.49호 의 천공용이나 시굴용 기계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1.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기계(토양 정리용이나 경작용으로 한정한다)와 잔디용이나 운동장용 롤러	
		8432.10	- 플라우(쟁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2	- 하로우(쇄토기)·스카리파이어· 컬티베이터(중경기)·제초기와 호우	
		8432.21	-- 디스크 하로우(쇄토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3	-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8432.31	-- 무경간(無耕墾) 직접 농업용 파종기·식부기(植付機)·이식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4	- 퇴비 살포기와 비료 살포기	
		8432.41	-- 퇴비 살포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42	-- 비료 살포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80	- 그 밖의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2.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		수확기나 탈곡기(짚이나 건초 결속기를 포함한다), 풀 베는 기계,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제8437호의 기계는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33.1	- 공원이나 운동장의 잔디 깎는 기계	
		8433.11	-- 동력식(수평으로 회전하는 절단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20	- 그 밖의 풀 베는 기계[트랙터 장착용 커터바(cutter bar)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30	- 그 밖의 건초제조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40	- 짚이나 건초 결속기[픽업(pick-up) 결속기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5	- 그 밖의 수확기와 탈곡기	
		8433.51	-- 수확·탈곡 겸용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52	-- 그 밖의 탈곡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53	-- 구경(球莖)이나 괴경(塊莖)의 수확기[근채(根菜) 수확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60	- 새의 알·과실이나 그 밖의 농산물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4		착유기와 낙농기계	
		8434.10	- 착유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4.20	- 낙농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4.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5		포도주·사과술·과실주스나 이와 유사 한 음료의 제조에 사용되는 프레스 (press)·크러셔(crusher)와 이와 유사 한 기계	
		8435.10	-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5.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6		그 밖의 농업용·원예용·임업용· 가금(家禽) 사육용·양봉용 기계 (기계장치나 가열장치를 갖춘 발아용 기기를 포함한다)와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10	- 동물사료 조제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6.2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 가금(家禽) 의 부란기와 양육기	
		8436.21	-- 가금(家禽)의 부란기와 양육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6.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6.80	- 그 밖의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6.9	- 부분품	
		8436.91	-- 가금(家禽) 사육용 기계나 가금(家禽) 의 부란기와 양육기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36.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7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선별기, 제분업용 기계나 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가공기계(농장형은 제외한다)	
		8437.10	- 종자·곡물·건조한 채두류(菜豆類)의 세정기·분류기· 선별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7.80	- 그 밖의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7.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		식음료의 조제·제조 산업용 기계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 동물성 또는 비휘발성인 식물성 지방이나 기름의 추출용이나 조제용 기계는 제외한다)	
		8438.10	- 베이커리 기계와 마카로니·스파게 티·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품의 제조 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20	- 과자·코코아·초콜릿 제조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30	- 설탕 제조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40	- 양조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50	- 육류나 가금(家禽)육의 조제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60	- 과실·견과·채소의 조제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80	- 그 밖의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8.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9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와 종이· 판지의 제조용이나 완성가공용 기계	
		8439.10	- 섬유소 펄프의 제조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9.20	- 종이·판지의 제조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9.30	- 종이·판지의 완성가공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9.9	- 부분품	
		8439.91	-- 섬유소 펄프 제조용 기계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39.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0		제본기계(제본용 재봉기를 포함한다)	
		8440.10	-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0.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1		그 밖의 제지용 펄프·종이·판지의 가공기계(각종 절단기를 포함한다)	
		8441.10	- 절단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1.20	- 종이백·봉지·봉투 제조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41.30	- 카톤(carton) · 박스 · 케이스 · 튜브 · 드럼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기의 제조기계[몰딩(moulding)으로 하는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1.40	- 제지용 펄프 · 종이 · 판지 제품의 몰딩(moulding)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1.80	- 그 밖의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1.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2		플레이트 · 실린더나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의 조제용이나 제조용 기계류 · 장치 · 장비(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는 제외한다),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 [예: 평삭(平削) · 그레인 · 연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8442.30	- 기계류 · 장치 · 장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2.40	- 위의 기계류 · 장치 · 장비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2.50	-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부품, 인쇄용으로 조제가공 [예: 평삭(平削) · 그레인 · 연마]한 플레이트 · 실린더와 석판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		제8442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그 밖의 인쇄기 · 복사기 · 팩시밀리(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3.1	- 제8442호의 플레이트 · 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	
		8443.11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릴(reel)식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2	-- 오프셋(offset) 인쇄기계[시트(sheet)식 사무실용으로 접지 않은 상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태에서 한 변이 22센티미터 이하, 다른 변이 36센티미터 이하인 시트(sheet)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3	-- 그 밖의 오프셋(offset) 인쇄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4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5	-- 활판인쇄용 기계[릴(reel)식 외의 것으로 곡면인쇄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6	-- 곡면인쇄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7	-- 그라비어(gravure) 인쇄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3	- 그 밖의 인쇄기·복사기·팩시밀리 (함께 조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8443.31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며, 인쇄·복사·팩시밀리 전송의 기능 중 둘 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32	-- 자동자료처리기계나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그 밖의 기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9	- 부분품과 부속품	
		8443.91	-- 제8442호의 플레이트·실린더와 그 밖의 인쇄용 구성 부품을 사용하는 인쇄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3.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44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 · 늘림 (drawing)용 · 텍스처(texture)용 · 절단 용 기계	
		8444.00	- 인조섬유의 방사(紡絲)용 · 늘림 (drawing)용 · 텍스처(texture)용 · 절단 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		방적준비기계, 방적기 · 합사기(合絲機) · 연사기(捻絲機)와 그 밖의 방직사 제 조기계,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 를 포함한다]와 제8446호나 제8447호 의 기계에 사용되는 방직사를 제조하는 기계와 준비기계	
		8445.1	- 방적준비기계	
		8445.11	-- 카드기(carding machin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12	-- 코밍기(combing machin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13	--- 연조기나 조방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20	- 방적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30	- 합사기(合絲機)나 연사기(捻絲機)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40	- 권사기(捲絲機)[위권기(緯捲機)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6		직기(직조기)	
		8446.10	- 폭이 30센티미터 이하인 소폭직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6.2	-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 (셔틀형으로 한정한다)	
		8446.21	-- 직조기(동력구동식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6.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6.30	- 폭이 3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직기 [셔틀리스(shuttleless)형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7		편직기, 스티치본당기(stitch-bonding machine), 짐프사(gimped yarn) · 뿔(tulle) · 레이스 · 자수천 · 트리밍(trimming) · 브레이드(braid)나 망의 제조용 기계 · 터프팅(tufting) 기계	
		8447.1	- 원형 편기	
		8447.11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7.12	-- 실린더 지름이 165밀리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7.20	- 횡(橫) 편직기와 스티치 본당기(stitch-bonding machin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 ·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예: 도비(dobby)기 · 자카드기 · 자동정지기 · 셔틀교환기], 이 호나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 · 제8447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예: 스피들 · 스피들 플라이어 · 침포 · 코움(comb) · 방사니플 · 셔틀 · 종광(heald) · 종광 프레임 · 메리야스용 바늘]	
		8448.1	- 제8444호 · 제8445호 · 제8446호 · 제8447호의 기계의 보조기계	
		8448.11	-- 도비(dobby)기 · 자카드기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이들을 사용하기 위한 카드의 축소용 · 복사용 · 천공용 · 조립용 기계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20	- 제8444호에서 규정한 기계나 이들 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3	- 제8445호의 기계나 이들의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31	-- 침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32	--- 침포를 제외한 방적준비기계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33	-- 스핀들 · 스핀들 플라이어 · 스피닝 링 · 링트래블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4	- 직기(직조기)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 품과 부속품	
		8448.42	-- 직조기용 바디 · 종광(heald)과 종 광 프레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5	- 제8447호의 기계나 그 보조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48.51	-- 바늘땀(stitch) 형성에 사용하는 싱커(sinker) · 바늘과 그 밖의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48.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49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용 형(型)	
		8449.00	- 펠트나 부직포(성형인 것을 포함한다)의 제조·완성가공용 기계(펠트모자 제조용 기계를 포함한다)와 모자 제조용 형(型)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		가정형이나 세탁소형 세탁기(세탁·건조 겸용기를 포함한다)	
		8450.1	- 1회의 세탁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8450.11	-- 완전자동 세탁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12	-- 그 밖의 세탁기(원심탈수기를 내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20	- 1회의 세탁 능력이 건조한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0.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		세탁용·클리닝용·취어짜기용·건조용·다림질용·프레스용[퓨징프레스(fusing press)를 포함한다]·표백용·염색용·드레싱용·완성가공용·도포용·침지(沈漬)용 기계류[제8450호의 것은 제외하며, 방적용 실·직물류나 이들 제품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리놀륨과 같은 바닥 깔개의 제조에 사용되는 직물이나 그 밖의 지지물에 페이스트를 입히는 기계, 직물류의 감기(reeling)용·풀기(unreeling)용·접음용·절단용·핑킹(pinking)용 기계	
		8451.10	- 드라이클리닝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2	- 건조기	
		8451.21	-- 1회의 건조 능력이 건조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섬유제품의 중량으로 10킬로그램 이하인 것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30	- 다림질기와 프레스[퓨징프레스 (fusing press)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40	- 세탁기 · 표백기 · 염색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50	- 감기(reeling)용 기계 · 풀기 (unreeling)용 기계 · 접음기 · 절단기 · 핑킹(pinking)용 기계(직물용으로 한정 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80	- 그 밖의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1.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2		재봉기(제8440호의 제본용 재봉기는 제외한다),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 밀판 · 덮개, 재봉기용 바늘	
		8452.10	- 가정형 재봉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2.2	- 그 밖의 재봉기	
		8452.21	-- 자동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2.30	- 재봉기용 바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2.90	- 재봉기용으로 특수 제작된 가구 · 밀판 · 덮개와 그 부분품, 그 밖의 재봉기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3		원피나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 · 유피(柔皮)기 · 가공기계, 원피 · 가죽으로 만든 신발이나 그 밖의 물품의 제조용 · 수선용 기계(재봉기는 제외한다)	
		8453.10	- 원피 · 가죽의 유피(柔皮)준비기 · 유피(柔皮)기 · 가공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3.20	- 신발의 제조용이나 수선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3.80	- 그 밖의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4		전로 · 레이들(ladle) · 잉곳(ingot)용 주형과 주조기(야금용이나 금속 주조용으로 한정한다)	
		8454.10	- 전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4.20	- 잉곳(ingot)용 주형과 레이들(ladl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4.30	- 주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4.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5		금속 압연기와 그 롤	
		8455.10	- 관 압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5.2	- 그 밖의 압연기	
		8455.21	-- 열간(熱間)이나 열 · 냉간(熱冷間) 경용 압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5.22	-- 냉간(冷間) 압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5.30	- 압연기용 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5.90	- 그 밖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6		각종 재료의 가공 공작기계[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초음파·방전· 전기화학·전자빔·이온빔·플라즈마아 크(plasma arc) 방식으로 재료의 일부 를 제거하여 가공하는 것으로 한정하 다]와 워터제트 절단기	
		8456.1	- 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8456.11	-- 레이저 방식으로 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6.12	-- 그 밖의 광선·광자빔 방식으로 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6.20	- 초음파 방식으로 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6.30	- 방전 방식으로 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6.40	- 플라즈마아크(plasma arc) 방식으로 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6.50	- 워터제트 절단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57		금속 가공용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8457.1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7.20	- 유닛 컨스트럭션 머신(unit construction machine)(싱글스테이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7.30	- 멀티스테이션(multi-station)의 트랜스퍼머신(transfer machin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8		금속 절삭가공용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	
		8458.1	- 수평 선반	
		8458.11	-- 수치제어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8.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8.9	- 그 밖의 선반	
		8458.91	-- 수치제어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8.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		금속 절삭가공용 공작기계[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을 포함한다]로서 드릴링(drilling) · 보링(boring) · 밀링(milling) · 나선가공 · 태핑(tapping)에 사용되는 것[제8458호의 선반(터닝센터를 포함한다)은 제외한다]	
		8459.10	- 웨이타입(way-type) 유닛헤드머신(unit head machin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2	- 그 밖의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59.21	-- 수치제어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3	- 그 밖의 보링밀링머신(boring-milling machine)	
		8459.31	-- 수치제어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4	- 그 밖의 보링머신(boring machine)	
		8459.41	-- 수치제어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5	- 무릎형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51	-- 수치제어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6	- 그 밖의 밀링머신(milling machine)	
		8459.61	-- 수치제어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59.70	- 그 밖의 나사 절삭용 기계나 태핑머신(tapping machin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60		디버링(deburring) · 샤프닝(sharpening) · 그라인딩(grinding) · 호닝(honing) · 래핑(lapping) · 폴리싱(polishing)이나 그 밖의 완성가공용 공작기계로서 연마석 · 연마재 · 광택재로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가공하는 것 (제8461호의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는 제외한다)	
		8460.1	- 평면 연삭기	
		8460.12	-- 수치제어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0.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0.2	- 그 밖의 연삭기	
		8460.22	-- 무심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0.23	-- 그 밖의 원통연삭기(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0.24	-- 기타(수치제어식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0.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0.3	- 샤프닝머신(sharpening machine)(공구나 커터를 연삭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460.31	-- 수치제어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0.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0.40	- 호닝머신(honing machine)이나 래핑머신(lapping machin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1		플레이닝(planing)용 · 셰이핑(shaping)용 · 슬로팅(slotting)용 · 브로칭(broaching)용 · 기어절삭용 · 기어연삭용 · 기어완성가공용 · 톱질용 · 절단용 공작기계와 금속이나 서멧(cermet)을 절삭하는 방식으로 가공하는 그 밖의 공작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61.20	- 셰이핑머신(shaping machine)이나 슬로팅머신(slotting machin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1.30	- 브로칭머신(broaching machin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1.40	- 기어절삭기 · 기어연삭기 · 기어완성가공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1.50	- 톱기계나 절단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		단조(鍛造)용 · 해머링(hammering)용 · 다이스탬핑(die-stamp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 굽힘용 · 접음용 · 교정용 · 펼침용 · 전단용 · 편칭용 · 낫칭(notching)용 금속가공 공작기계(프레스를 포함한다)와 그 외의 가공 방법에 의한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가공용 프레스	
		8462.10	- 단조기(鍛造機) · 다이스탬핑기(die-stamping machine)(프레스를 포함한다)와 해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2	- 굽힘기 · 접음기 · 교정기 · 펼침기 (프레스를 포함한다)	
		8462.21	-- 수치제어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3	- 전단기(프레스를 포함하며, 편칭기와 전단기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8462.31	-- 수 치제어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4	- 편칭기나 낫칭기(notching machine) (프레스를 포함하며, 편칭기와 전단기 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8462.41	-- 수 치제어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9	- 기타	
		8462.91	-- 액압 프레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3		그 밖의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공 용 공작기계(재료를 절삭하지 않는 방 식으로 한정한다)	
		8463.10	- 드로우벤치(draw-bench)[봉 · 관 · 프로파일(profile) · 선이나 이와 유사한 것을 인발(引拔)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3.20	- 나사 전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3.30	- 선 가공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4		돌 · 도자기 · 콘크리트 · 석면시멘트나 이와 유사한 광물성 물질의 가공용 공 작기계와 유리의 냉간(冷間) 가공기계	
		8464.10	- 톱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4.20	- 연마기나 광택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5		목재 · 코르크 · 뼈 · 경질 고무 · 경질 플 라스틱이나 이와 유사한 경질물의 가공 용 공작기계(네일용 · 스테이플용 · 접착 용과 그 밖의 조립용 기계를 포함한다)	
		8465.10	-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 (공구의 교환없이 여러 가지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5.20	- 머시닝센터(machining centr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5.9	- 기타	
		8465.91	-- 톱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5.92	-- 평삭기 · 밀링머신(milling machine) · 몰딩머신(moulding machine)(절단 방식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5.93	-- 연삭기 · 샌딩머신(sanding machine) · 광택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5.94	-- 굽힘기나 조립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5.95	-- 드릴링머신(drilling machine)이나 모티싱머신(morticing machin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5.96	-- 스플리팅(splitting)기 · 슬라이싱(slicing)기 · 박피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5.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6		제8456호부터 제8465호까지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 속품[가공물홀더 · 툴홀더(tool holder) · 자동개폐식 다이헤드 (diehead) · 분 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을 포함한다]과 수지식 공구에 사용되는 각종 툴홀더(tool holder)	
		8466.10	- 툴홀더(tool holder)와 자동개폐식 다이헤드(diehead)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6.20	- 가공용 홀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6.30	- 분할대와 그 밖의 기계용 특수 부착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6.9	- 기타	
		8466.91	-- 제8464호의 기계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6.92	--- 제8465호의 기계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6.93	-- 제8456호부터 제8461호까지의 기계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6.94	-- 제8462호나 제8463호의 기계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		수지식 공구(압축공기식, 유압식, 전동 기를 갖추거나 비전기식 모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467.1	- 압축공기식의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67.11	-- 회전방식의 것(회전 진동자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2	- 전동기를 갖춘 것	
		8467.21	-- 각종 드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22	-- 톱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8	- 그 밖의 공구	
		8467.81	-- 체인톱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8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9	- 부분품	
		8467.91	-- 체인톱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92	-- 압축공기식 공구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7.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8		납땜용·땜질용이나 용접용 기기(절단 이 가능한지예 상관없으며 제8515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와 표면 열처 리용 기기(가스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 정한다)	
		8468.10	- 수지식 취관(吹管)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8.20	- 가스를 사용하는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8.8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68.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0		계산기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회계기·우편요금계기·표권발행기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계(계산 기구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금전등록기	
		8470.10	- 전자계산기(외부의 전원 공급 없이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한다)와 계산 기능을 갖춘 포켓사이즈형 전자수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0.2	- 그 밖의 전자계산기	
		8470.21	-- 인쇄 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0.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0.30	- 그 밖의 계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0.50	- 금전 등록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그 단위기기, 자기식이나 광학식 판독기, 자료를 자료매체에 부호 형태로 전사하는 기계와 이러한 자료의 처리기계(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71.30	- 휴대용 자동자료처리기계(중량이 10킬로그램 이하인 것으로서 적어도 중앙처리장치, 키보드,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4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	
		8471.41	-- 적어도 동일 하우징 속에 중앙처리장치와 입출력장치를 내장한 것(이들이 상호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49	-- 기타(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50	- 처리장치(소호 제8471.41호나 제8471.49호 외의 것으로서 기억장치·입력장치·출력장치 중 한 가지나 두 가지 장치를 동일 하우징 속에 내장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60	- 입력장치나 출력장치(동일 하우징 속에 기억장치를 내장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70	- 기억장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80	- 그 밖의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단위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2		그 밖의 사무용 기계 [예: 헥토그래프(hectograph)·스텐실(stencil) 등사기·주소인쇄기·현금 자동지불기·주화분류기·주화계수기나 주화포장기·연필깎이·천공기·지철기(stapling machine)]	
		8472.10	- 등사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2.30	- 우편물의 분류기·접음기, 우편물을 봉투나 밴드에 삽입하는 기계, 우편물의 개봉기·봉합기·실링기, 우표의 첨부기나 소인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3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커버·휴대용 케이스와 이와 유사한 물품은 제외한다)	
		8473.2	- 제8470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8473.21	-- 소호 제8470.10호·제8470.21호·제8470.29호에 해당하는 전자 계산기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3.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3.30	-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3.40	- 제8472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3.50	- 제8470호부터 제8472호까지에 해당하는 기계 중에서 두 개 이상의 기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파쇄기·분쇄기·혼합기·반죽기(고체 모양·분말 모양·페이스트 모양인 토양·돌·광석이나 그 밖의 광물성 물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조괴기(造塊機)·형입기·성형기(成形機)(고체의 광물성 연료·세라믹페이스트·굳지 않은 시멘트·석고·가루 모양이나 페이스트 모양인 그 밖의 광물성 생산품의 처리용으로 한정한다), 주물용 사형(砂型)의 성형기(成形機)	
		8474.10	- 선별기·기계식 체·분리기·세척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20	- 파쇄기나 분쇄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3	- 혼합기나 반죽기	
		8474.31	-- 콘크리트 혼합기나 모르타르 혼합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32	-- 역청질과 광물성 재료의 혼합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80	- 그 밖의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4.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5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와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10	- 전기램프나 전자램프·튜브·밸브·플래시벌브(flashbulb)(외피를 유리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의 조립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5.2	- 유리나 유리제품의 제조용이나 열간(熱間)가공용 기계	
		8475.21	-- 광섬유와 광섬유 예비성형품 제조용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5.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6		물품의 자동판매기(예: 우표·담배·식품·음료의 자동판매기)와 화폐교환기	
		8476.2	- 음료 자동판매기	
		8476.21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6.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6.8	- 그 밖의 기계	
		8476.81	-- 가열장치나 냉장장치를 갖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6.8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6.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7		고무나 플라스틱을 가공하거나 이들 재료로 제품을 제조하는 기계(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7.10	- 사출 성형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7.20	- 압출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7.30	- 취입 성형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7.40	- 진공성형기와 그 밖의 열성형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7.5	- 그 밖의 성형기	
		8477.51	-- 공기를 넣는 타이어 성형기나 재생기와 그 밖의 이너튜브(inner tube) 성형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7.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7.80	- 그 밖의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7.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8		담배의 조제기나 제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478.10	- 기계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8.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기계류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479.10	- 토목공사·건축이나 이와 유사한 용 도에 사용하는 기계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20	- 동물성이나 비취발성인 식물성 지방 이나 기름의 추출용·조제용 기계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30	- 파티클보드(particle board)나 건축 용 섬유판(목재나 그 밖의 목질 물질 로 제조된 것으로 한정한다)의 제조용 프레스, 목재나 코르크 처리용 그 밖 의 기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40	- 로프나 케이블 제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50	- 산업용 로봇(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60	- 증발식 에어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7	- 탑승교	
		8479.71	-- 공항에서 사용되는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7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79.8	- 그 밖의 기기	
		8479.81	-- 금속 처리용(전선권선기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82	-- 혼합기 · 반죽기 · 파쇄기 · 분쇄기 · 기계식 체 · 시프팅기(sifting machine) · 균질기 · 유화기 · 교반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8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79.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		금속 주조용 주형틀, 주형 베이스, 주 형 제조용 모형, 금속[잉곳(ingot)용은 제외한다] · 금속탄화물 · 유리 · 광물성 물질 · 고무 ·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10	- 금속 주조용 주형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20	- 주형 베이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30	- 주형 제조용 모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4	- 금속이나 금속탄화물 성형용 주형	
		8480.41	-- 사출식이나 압축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50	- 유리 성형용 주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60	- 광물성 물질 성형용 주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480.7	- 고무나 플라스틱 성형용 주형	
		8480.71	-- 사출식이나 압축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0.7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1		파이프·보일러 동체·탱크·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코크·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 (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	
		8481.10	- 감압밸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1.20	- 유압이나 공기압 전송용 밸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1.30	- 체크(논리턴)밸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1.40	- 안전밸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1.80	- 그 밖의 기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1.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		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8482.10	- 볼베어링(ball bearing)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20	-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콘과 결합된 원추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30	- 구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40	- 니들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50	- 그 밖의 원통형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80	- 그 밖의 베어링[볼베어링(ball bearing)과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9	- 부분품	
		8482.91	-- 볼 · 니들 · 롤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3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 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볼이나 롤러 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gear box), 그 밖의 변속기[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shaft coupling) [유니버설조인트(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8483.10	- 전동축[캠샤프트(cam shaft)와 크랭크샤프트(crank shaft)를 포함한다], 크랭크(crank)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3.2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3.30	- 베어링하우징(bearing housing)[볼베어링(ball bearing)이나 롤러베어링(roller bearing)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과 플레인 샤프트베어링(plain shaft bearing)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3.40	- 기어(gear)와 기어링(gearing) [날이 붙은 휠 · 체인스프로킷(chain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sprocket)과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는 제외한다], 볼이나 롤러스크루(roller screw), 기어박스과 그 밖의 변속기 [토크컨버터(torque converter)를 포함한다]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3.50	- 플라이휠(flywheel)과 풀리(pulley) [풀리블록(pulley block)을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3.60	- 클러치(clutch)와 샤프트커플링 (shaft coupling)[유니버설조인트 (universal joint)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3.90	- 날이 붙은 휠, 체인스프로켓(chain sprocket), 분리되어 제시된 그 밖의 전동(transmission)용 엘리먼트와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4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 (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재질이 다른 것을 세트로 하거나 소포장한 개스킷 (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작은 주머니와 봉투에 넣은 것이나 이와 유사한 포장을 한 것으로 한정한다),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8484.10	- 개스킷(gasket)과 이와 유사한 조인트(금속 외의 재료와 결합한 금속판으로 만든 것이나 금속을 두 개 이상 적층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4.20	- 메커니컬 실(mechanical seal)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		반도체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 반도체디바이스 · 전자집적회로 · 평판디스플레이의 제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기계와 기기, 이 류의 주 제9호 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그 부분품과 부속품	
		8486.10	- 보울(boule)이나 웨이퍼(wafer)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로부터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이상일 것
		8486.20	- 반도체디바이스나 전자집적회로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로부터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30	- 평판디스플레이 제조용 기계와 기기	이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로부터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40	- 이 류의 주 제9호다목에서 특정한 기계와 기기	이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로부터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6.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7		기계류의 부분품(접속자·절연체·코일 ·접촉자와 그 밖의 전기용품을 포함하 지 않으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 은 것으로 한정한다)	
		8487.10	- 선박이나 보트의 추진기와 그 블레이드(blad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48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			전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 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	
	85.01		전동기와 발전기(발전세트는 제외한다)	
		8501.10	- 전동기(출력이 37.5와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20	- 교류·직류 겸용 전동기(출력이 37.5와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3	- 그 밖의 직류 전동기와 직류 발전기	
		8501.31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3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33	-- 출력이 75킬로와트 초과 375킬로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34	-- 출력이 3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40	- 그 밖의 단상(單相) 교류 전동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5	- 그 밖의 다상(多相) 교류 전동기	
		8501.51	-- 출력이 750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52	-- 출력이 750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53	-- 출력이 75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6	- 교류 발전기	
		8501.61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62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63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7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1.64	-- 출력이 75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2		발전세트와 회전변환기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502.1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디젤엔진이나 세미디젤엔진의 것으로 한정한다)	
		8502.11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2.12	-- 출력이 75킬로볼트암페어 초과 375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2.13	-- 출력이 375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2.20	- 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을 갖춘 발전세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2.3	- 그 밖의 발전세트	
		8502.31	-- 풍력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2.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2.40	- 회전변환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3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03.00	- 부분품(제8501호나 제8502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예: 정류기)와 유도자	
		8504.10	- 방전등용이나 방전관용 안정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2	- 유입식 변압기	
		8504.21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22	-- 용량이 650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0,0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23	-- 용량이 10,0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3	- 그 밖의 변압기	
		8504.31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32	-- 용량이 1킬로볼트암페어 초과 16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33	-- 용량이 16킬로볼트암페어 초과 500킬로볼트암페어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34	-- 용량이 500킬로볼트암페어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40	- 정지형 변환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50	- 그 밖의 유도자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4.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5		전자석,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 구자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전자석이나 영구자석식 척(chuck)·클램프와 이와 유사한 가공물 홀더, 전자석 커플링 (coupling)·클러치와 브레이크, 전자석 리프팅헤드(lifting head)	
		8505.1	- 영구자석과 자화(磁化)한 후 영구자 석으로 사용되는 물품	
		8505.11	-- 금속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50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5.20	- 전자석 커플링(coupling) · 클러치 · 브레이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5.90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6		일차전지	
		8506.10	- 이산화망간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6.30	- 산화수은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6.40	- 산화은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6.50	- 리튬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6.60	- 에어징크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6.80	- 그 밖의 일차전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6.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이 나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	
		8507.10	- 피스톤식 엔진 시동용 연산(鉛酸)축전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20	- 그 밖의 연산(鉛酸)축전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30	- 니켈-카드뮴 축전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40	- 니켈-철 축전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50	- 니켈-수소합금 축전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60	- 리튬이온 축전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80	- 그 밖의 축전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7.90	- 부분품	2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		진공청소기	
		8508.1	- 전동기를 갖춘 것	
		8508.11	-- 출력이 1,500와트 이하이고, 먼지 백이나 그 밖의 20리터 이하 용량의 저장조를 갖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19	-- 기타	가. 가정용 진공청소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상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60	- 그 밖의 진공청소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8.7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9		가정용 전기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제8508호의 진공청소기는 제외한다)	
		8509.40	- 식품용 그라인더와 믹서, 과즙·채소즙 추출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9.8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09.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0		면도기·이발기·모발제거기[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510.10	- 면도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0.20	- 이발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0.30	- 모발제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0.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		불꽃점화식이나 압축점화식 내연기관의 점화용·시동용 전기기기(예: 점화용 자석발전기·자석발전기·점화코일·점화플러그·예열플러그·시동전동기), 내연기관에 부착되는 발전기(예: 직류발전기·교류발전기)와 개폐기	
		8511.10	- 점화플러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20	- 점화용 자석발전기, 직류 자석발전기와 마그네틱 플라이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30	- 배전기와 점화코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40	- 시동전동기와 겸용 시동발전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50	- 그 밖의 발전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8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1.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2		전기식 조명용이나 신호용 기구(제 8539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 윈드스크 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 (defroster) · 제무기(demister)(자전거용 이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512.10	- 자전거에 사용되는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2.20	- 그 밖의 조명용이나 시각 신호용 기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2.30	- 음향신호용 기구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2.40	- 윈드스크린와이퍼(windscreen wiper) · 제상기(defroster) · 제무기(demist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2.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3		휴대용 전등(건전지 · 축전지 · 자석발전 기와 같은 자체 전원기능을 갖춘 것으 로 한정하며, 제8512호의 조명기구는 제외한다)	
		8513.10	- 전등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4		공업용이나 실험실용 전기식 노(爐)와 오븐[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 (dielectric loss)식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공업용이나 실험실용의 전자유 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8514.10	- 저항가열식 노(爐)와 오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4.20	-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노(爐)와 오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4.30	- 그 밖의 노(爐)와 오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4.40	- 그 밖의 전자유도식이나 유전손실(dielectric loss)식 가열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4.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		전기식(전기발열에 따른 가스식을 포함 한다)·레이저나 그 밖의 광선식·광자 빔식·초음파식·전자빔식·자기펄스 (magnetic pulse)식·플라즈마 아크 (plasma arc)식 납땜용·땜질용이나 용 접용 기기(절단기능이 있는지에 상관없 다), 금속이나 서멧(cermet)의 가열분 사용 전기식 기기	
		8515.1	- 땜질용이나 납땜용기기	
		8515.11	-- 납땜용 인두와 건(gu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2	- 금속의 저항용접용 기기	
		8515.21	-- 전자동식이나 반자동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3	- 금속의 아크[플라즈마 아크(plasma arc)를 포함한다] 용접기기	
		8515.31	-- 자동식이나 반자동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8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5.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		전기식의 즉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 [예: 헤어드라이어·헤어컬러(hair curler)·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	
		8516.10	- 전기식의 즉식·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2	-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8516.21	-- 저장식 가열 라디에이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3	- 전기가열식 이용기구나 손 건조기	
		8516.31	-- 헤어드라이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32	-- 그 밖의 이용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33	-- 손 건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40	- 전기다리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50	-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60	- 그 밖의 오븐, 쿠키 · 조리판 · 보일 링 · 그릴러 · 로스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7	-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8516.71	-- 커피 · 차를 끓이는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72	-- 토스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7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80	- 전열용 저항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6.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 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와 음 성 · 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 · 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 통신망이 나 원거리 통신망과 같은 유선 · 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 하며, 제8443호 · 제8525호 · 제8527호 · 제8528호의 송신용 · 수신용 기기는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제외한다)	
		8517.1	- 전화기(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	
		8517.11	-- 유선전화기[무선 송수화기(cordless handset)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12	-- 셀룰러 통신망이나 그 밖의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18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6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송신용·수신용 그 밖의 기기(근거리통신망이나 원거리통신망과 같은 유선·무선 통신망에서 통신하기 위한 기기를 포함한다)	
		8517.61	--- 기지국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62	-- 음성·영상이나 그 밖의 자료의 수신용·변환용·송신용·재생용 기기 [교환기와 라우팅(routing)기기를 포함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7.7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	
		8518.10	-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2	-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18.21	-- 단일형 확성기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것으로 한정한다]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22	-- 복합형 확성기 [동일 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30	-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 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40	- 가청주파증폭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50	- 음향증폭세트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8.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		음성 녹음용이나 재생용 기기	
		8519.20	- 코인 · 은행권 · 은행카드 · 토큰이나 그 밖의 지급 수단으로 작동하는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30	- 턴 테이블(레코드 데크)	가. 자동교환 기능을 갖춘 턴 테이블: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상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50	- 전화응답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8	- 그 밖의 기기	
		8519.81	-- 자기식 · 광학식이나 그 밖의 반도체 매체를 이용하는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19.8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1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투 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1.10	- 마그네틱 테이프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2		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 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	
		8522.10	- 픽업 카트리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2.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		디스크·테이프·솔리드 스테이트 (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스마트카드와 음성이나 그 밖의 현상의 기록용 기타 매체[기록된 것인지에 상 관없으며 디스크 제조용 매트릭스 (matrices)와 마스터(master)를 포함하 되, 제37류의 물품은 제외한다]	
		8523.2	- 자기식 매체	
		8523.21	-- 마그네틱 스트라이프(magnetic stripe)를 갖춘 카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4	- 광학식 매체	
		8523.41	-- 기록이 안 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5	- 반도체 매체	
		8523.51	-- 솔리드 스테이트(solid-state)의 비휘발성 기억장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52	-- 스마트카드	이 소호 내 또는 다른 소호로부터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3.8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5		라디오 방송용이나 텔레비전용 송신기 기(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재생기기 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와 텔레비 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비디오카메 라레코더	
		8525.50	- 송신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5.60	-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5.80	- 텔레비전 카메라·디지털 카메라· 비디오카메라레코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6		레이더기기·항행용 무선기기·무선원 격조절기기	
		8526.10	- 레이더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6.9	- 기타	
		8526.91	-- 항행용 무선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526.92	-- 무선원격조절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7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음성기록기기· 재생기기, 시계가 동일한 하우징 내에 결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7.1	- 라디오방송용 수신기기(외부 전원 없이 작동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12	-- 포켓사이즈형 라디오카세트플레이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7.13	-- 그 밖의 기기(음성기록기기나 음성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7.2	- 라디오방송 수신용 기기(자동차용으로 서 외부 전원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7.21	--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7.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7.9	- 기타	
		8527.91	-- 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7.92	-- 시계와 결합된 것(음성기록기기나 재생기기와 결합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7.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		텔레비전 수신기기를 갖추지 않은 모니 터와 프로젝터,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 (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 상의 기록용 기기나 재생용 기기를 결 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528.4	- 음극선관 모니터	
		8528.42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5	- 그 밖의 모니터	
		8528.52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6	- 프로젝터(projector)	
		8528.62	-- 제8471호의 자동자료처리기에 사용하도록 설계된 것으로 직접 연결 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7	- 텔레비전 수신용 기기(라디오 방송용 수신기기·음성이나 영상의 기록용 기구나 재생용 기기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28.71	-- 영상디스플레이나 스크린을 갖추지 않은 것	가. 텔레비전 천연색 수신용의 기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그 밖의 상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72	-- 기타(천연색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8.73	-- 기타(단색)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9		부분품(제8525호부터 제8528호까지에 열거된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 는 것으로 한정한다)	
		8529.10	- 각종 안테나와 반사식 안테나,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29.90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0		철도용·궤도용·도로용·내륙수로용· 주차장용·항만용·공항용 전기식 신호 기기·안전기기·교통관제기기 (제 8608호의 것은 제외한다)	
		8530.10	-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0.8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0.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1		전기식 음향이나 시각 신호용 기기(예: 벨·사이렌·표시반·도난경보기·화재 경보기). 다만, 제8512호나 제8530호 의 것은 제외한다.	
		8531.10	- 도난경보기나 화재경보기와 이와 유사한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1.20	- 액정 디바이스(엘시디)나 발광다이 오드(엘이디)가 결합된 표시반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1.8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1.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		축전기[고정식·가변식·조정식(프리세 트)으로 한정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532.10	- 고정식 축전기로 50/60헤르츠 회로에서 사용하고, 무효(無效)전력 용량이 0.5킬로바르 이상인 것(전력용 축전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2	- 그 밖의 고정식 축전기	
		8532.21	-- 탄탈륨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22	-- 알루미늄 전해의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23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단층)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24	-- 세라믹 유전체의 것(다층)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25	-- 종이나 플라스틱 유전체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30	- 가변식이나 조정식(프리셋) 축전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2.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3		전기저항기[가감저항기(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를 포함하며, 전열용 저항체는 제외한다]	
		8533.10	- 탄소피막형 고정식 저항기 (컴퍼지션형이나 필름형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3.2	- 그 밖의 고정식 저항기	
		8533.21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533.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3.3	- 권선(捲線)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 (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 를 포함한다]	
		8533.31	-- 용량이 20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3.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3.40	- 그 밖의 가변저항기[가감저항기 (rheostat)와 전위차계(potentiometer) 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4		인쇄회로	
		8534.00	- 인쇄회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5		전기회로의 개폐용·보호용·접속용 기 기[예: 개폐기·퓨즈·피뢰기·전압제 한기·서지(surge)억제기·플러그와 그 밖의 커넥터·접속함] (전압이 1,000볼 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5.10	- 퓨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5.2	- 자동차단기	
		8535.21	-- 전압이 72.5킬로볼트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5.30	- 격리용 개폐기와 회로단속용 개폐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535.40	- 피뢰기 · 전압제한기와 서지(surge) 억제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		전기회로의 개폐용 · 보호용 · 접속용 기기[예: 개폐기 · 계전기 · 퓨즈 · 서지(surge)억제기 · 플러그 · 소켓 · 램프홀더와 그 밖의 커넥터 · 접속함](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와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 케이블용 커넥터	
		8536.10	- 퓨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536.20	- 자동차단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30	- 전기회로 보호용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4	- 계전기(繼電器)	
		8536.41	-- 전압이 60볼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50	- 그 밖의 개폐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6	- 램프홀더 · 플러그와 소켓	
		8536.61	-- 램프홀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70	- 광섬유용 · 광섬유 다발용 · 케이블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커넥터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6.9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7		전기제어용이나 배전용 보드·패널· 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 盤)(제8535호나 제8536호의 기기를 두 가지 이상 장착한 것으로 한정하고 제 90류의 기기와 수치제어기기와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제8517호의 교환기기는 제외한다)	
		8537.10	- 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7.20	- 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8		부분품(제8535호·제8536호·제8537 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8538.10	- 보드·패널·콘솔·책상·캐비닛과 그 밖의 기반(基盤)(제8537호의 물품용으로 한정하며, 이들 기기를 장착하여 조립한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		필라멘트램프나 방전램프[실드빔 램프유닛(sealed beam lamp unit)과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를 포함한다], 아크램프,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8539.10	- 실드빔 램프 유닛(sealed beam lamp uni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2	- 그 밖의 필라멘트 램프(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는제외한다)	
		8539.21	-- 텅스텐 할로겐의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22	-- 기타(전력이 200와트 이하 전압이 1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3	- 방전램프(자외선램프는 제외한다)	
		8539.31	-- 형광램프(열음극형으로 한정한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32	-- 수은램프나 나트륨증기 램프, 메탈 할라이드(metal halide) 램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4	- 자외선램프나 적외선램프, 아크램프	
		8539.41	-- 아크램프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50	- 발광다이오드(엘이디)램프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39.90	-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		열전자관 · 냉음극관 · 광전관 [예: 진공관 · 증기나 가스를 봉입한 관 · 수은아크정류관 · 음극선관 · 텔레비전 용 촬상관(camera tube)]	
		8540.1	- 텔레비전용 음극선관(영상 모니터용 음극선관을 포함한다)	
		8540.11	-- 천연색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12	-- 단색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540.20	- 텔레비전용 촬상관(camera tube), 영상변환관, 영상증강관(image intensifier), 그 밖의 광전관(photocathode tube)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40	-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천연색으로서 인광물질 도트화면 간격이 0.4밀리미터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가. 데이터/그래픽 직시관(display tube)(단색):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제8540.40호의 그 밖의 상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60	- 그 밖의 음극선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7	- 마이크로웨이브관 [예: 자전관(magnetron)·속도변조관(klystron)·진행파관(traveling wave tube)·카시노트론(carcinotron)]. 다만, 그리드(grid)제어관은 제외한다.	
		8540.71	-- 자전관(magnetron)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540.79	-- 기타	가. 속도변조관(klystron):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제8540.79호의 그 밖의 상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8	- 그 밖의 관	
		8540.81	-- 수신관이나 증폭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8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9	- 부분품	
		8540.91	-- 음극선관의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0.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 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 널로 구성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 함한다), 발광다이오드(엘이디),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8541.10	- 다이오드(감광성 다이오드나 발광다 이오드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2	- 트랜지스터(감광성 트랜지스터는 제외한다)	
		8541.21	-- 전력 낭비율이 1와트 미만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30	- 사이리스터(thyristor), 다이액(diac), 트라이액(triac)(감광성 디바이스는 제 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40	-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에 조립되었거나 패널로 구성되었 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와 발 광다이오드(엘이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50	- 그 밖의 반도체 디바이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60	-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1.90	- 부분품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2		전자집적회로	
		8542.3	- 전자집적회로	
		8542.31	-- 프로세서와 컨트롤러[메모리· 변환기·논리회로·증폭기·클럭(clock) ·타이밍(timing) 회로나 그 밖의 회로를 갖춘 것인지는 상관없다]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8542호의 복합부품집적회로(MC Os)가 아닌 상품에서 복합부품집적회로(MC Os)로 변경된 것
		8542.32	-- 메모리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8542호의 복합부품집적회로(MC Os)가 아닌 상품에서 복합부품집적회로(MC Os)로 변경된 것
		8542.33	-- 증폭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8542호의 복합부품집적회로(MC Os)가 아닌 상품에서 복합부품집적회로(MC Os)로 변경된 것
		8542.3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8542호의 복합부품집적회로(MC Os)가 아닌 상품에서 복합부품집적회로(MC Os)로 변경된 것
		8542.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또는 제8542호의 복합부품집적회로(MC Os)가 아닌 상품에서 복합부품집적회로(MC Os)로 변경된 것
	85.43		그 밖의 전기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지 않은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으로 한정한다)	
		8543.10	- 입자가속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20	- 신호발생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30	- 전기도금용·전기분해용· 전기영동(泳動)용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70	- 그 밖의 기기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4		절연(에나멜 도포나 산화피막처리를 한 것을 포함한다) 전선·케이블(동축케이 블을 포함한다)과 그 밖의 전기절연도 체(이것은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광섬유 케이블(섬유를 개별 피복하여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전기 도체나 접속자가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 없다)	
		8544.1	- 권선(捲線)용 전선	
		8544.11	-- 구리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4.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4.20	- 동축케이블과 그 밖의 동축 도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4.30	- 점화용 와이어링 세트와 그 밖의 와이어링 세트(자동차용·항공기용· 선박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4.4	-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8544.42	-- 접속자가 부착된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4.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4.60	- 그 밖의 전기도체(전압이 1,000볼트를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4.70	- 광섬유 케이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5		탄소전극·탄소브러시·램프용 탄소·전지용 탄소와 그 밖의 흑연이나 탄소 제품(전기용으로 한정하며, 금속이 함유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8545.1	- 전극	
		8545.11	-- 노(爐)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5.20	- 브러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6		애자(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8546.10	- 유리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6.20	- 도자제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5.47		전기기기용으로서 전부가 절연재료로 구성된 절연용 물품(나선가공 소켓과 같이 단순히 조립을 위하여 주조 과정에서 소량의 금속이 주입된 것을 포함하며, 제8546호의 애자는 제외한다),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전기용 도관(導管)과 그 연결구류(절연재료로 속을 댄 것으로 한정한다)	
		8547.10	- 도자제의 절연용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7.20	- 플라스틱으로 만든 절연용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8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기기의 전기식 부분품(이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8548.10	- 일차전지와 축전지의 웨이스트(waste)와 스크랩(scrap),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와 축전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54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7부				
차량·항공기·선박과 수송기기 관련품				
86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차량과 이들의 부분품, 철도용이나 궤도용 장비품과 그 부분품,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각종 교통신호용 기기	
	86.01		철도용 기관차(외부 전원이나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8601.1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1.20	- 축전지로 주행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2		그 밖의 철도용 기관차와 탄수차(炭水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車)	
		8602.10	- 디젤 전기기관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3		자주식(自走式)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와 화차(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3.10	- 외부 전원으로 주행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4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 [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 · 기중기차(crane) · 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 · 트랙라이너(trackliner) · 검사차 · 궤도검사차]	
		8604.00	- 철도나 궤도의 유지용이나 보수용 차량 [자주식(自走式)의 것인지에 상관없다][예: 공작차(workshop) · 기중기차(crane) · 밸러스트 템퍼(ballast tamper) · 트랙라이너(trackliner) · 검사차 · 궤도검사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5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 [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 · 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 [자주식(自走式)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8605.00	- 철도용이나 궤도용 객차 [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수하물차 · 우편차와 그 밖의 철도용이나 궤도용 특수용도차 [자주식(自走式)과 제8604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6		철도용이나 궤도용 화차 [자주식(自走式)은 제외한다]	
		8606.10	- 탱크차와 이와 유사한 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6.30	- 자기양하식(self-discharging) 화차 (소호 제8606.10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6.9	- 기타	
		8606.91	-- 덮개가 있는 것으로서 밀폐되어 있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6.92	-- 무개차로서 고정된 측면의 높이가 6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6.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7		철도용이나 궤도용 기관차나 차량의 부분품	
		8607.1	- 보기(bogie) · 비셀보기(bissel-bogie) · 차축 · 차륜과 이들의 부분품	
		8607.11	-- 구동식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7.12	-- 그 밖의 보기(bogie)와 비셀보기(bissel-bogi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7.19	-- 기타(부분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7.2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8607.21	-- 공기식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7.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7.30	- 축과 그 밖의 연결장치 · 완충장치와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7.9	- 기타	
		8607.91	-- 기관차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7.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8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교통관제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	
		8608.00	- 철도나 궤도선로용 장치물, 철도·궤도·도로·내륙수로·주차장·항만·비행장에서 사용되는 기계식(전기기계식을 포함한다) 신호용·안전용·교통관제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6.09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8609.00	- 컨테이너(액체운반용 컨테이너를 포함하며, 하나 이상의 운송수단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설계되거나 구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부속품	
	87.01		트랙터(제8709호의 트랙터는 제외한다)	
		8701.10	- 차축이 하나인 트랙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1.20	- 세미트레일러(semi-trailer) 견인용 도로주행식 트랙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1.30	- 무한궤도식 트랙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1.9	- 기타(엔진동력에 의한 것으로 한정한다)	
		8701.91	-- 엔진의 동력이 18킬로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1.92	-- 엔진의 동력이 18킬로와트 초과 37킬로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1.93	-- 엔진의 동력이 37킬로와트 초과 75킬로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701.94	-- 엔진의 동력이 75킬로와트 초과 130킬로와트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1.95	-- 엔진의 동력이 130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2		10인 이상(운전자를 포함한다) 수송용 자동차	
		8702.1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디젤이나 세미디젤(semi- diesel)]만을 갖춘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2.20	-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2.30	- 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2.40	- 추진용 전동기만 갖춘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2.90	- 기타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		주로 사람을 수송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승용자동차와 그 밖의 차량 [제8702호의 것은 제외하며, 스테이션왜건(station wagon)과 경주용 자동차를 포함한다]	
		8703.10	- 설상(雪上)주행용 차량, 골프용 차와 이와 유사한 차량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3.2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만을 갖춘 것)	
		8703.21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이하인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22	-- 실린더용량이 1,000시시 초과 1,500시시 이하인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23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3,000시시 이하인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24	-- 실린더용량이 3,000시시를 초과하는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703.3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만을 갖춘 것]	
		8703.31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이하인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32	-- 실린더용량이 1,500시시 초과 2,500시시 이하인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33	-- 실린더용량이 2,500시시를 초과하는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4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5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은 제외한다]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60	- 그 밖의 차량(불꽃점화식 왕복 피스톤 내연기관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70	- 그 밖의 차량[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디젤이나 세미디젤)과 추진용 모터로서의 전동기를 둘 다 갖춘 것으로서, 외부 전원에 플러그를 꽂아 충전할 수 있는 방식의 것으로 한정한다]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80	- 그 밖의 차량(추진용 전동기만을 갖춘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3.90	- 기타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4		화물자동차	
		8704.10	- 덤프차(비고속도로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4.2	- 그 밖의 압축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 [디젤이나 세미디젤(semi-diesel)]의 것	
		8704.2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704.22	-- 총중량이 5톤 초과 20톤 이하인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4.23	-- 총중량이 20톤을 초과하는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4.3	- 기타(불꽃점화식 피스톤 내연기관으로 한정한다)	
		8704.31	-- 총중량이 5톤 이하인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4.32	-- 총중량이 5톤을 초과하는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4.90	- 기타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5		특수용도차량(주로 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은 제외한다) [예: 구난차(breakdown lorry) · 기중기차(crane lorry) · 소방차 · 콘크리트믹서운반차 · 도로청소차 · 살포차 · 이동공작차 · 이동방사선차]	
		8705.10	- 기중기차(crane lorry)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5.20	- 이동식 시추용 데릭(derrick)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5.30	- 소방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5.40	- 콘크리트믹서 운반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6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6.00	- 엔진을 갖춘 새시(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7.07		차체(운전실을 포함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자동차용으로 한정한다)	
		8707.10	- 제8703호의 차량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		부분품과 부속품(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의 차량용으로 한정한다)	
		8708.10	- 완충기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2	- 차체(운전실을 포함한다)의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21	-- 안전벨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30	- 제동장치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40	- 기어박스와 그 부분품	가. 기어박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50	-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그 밖의 동력전달장치의 부분품과 구성품을 갖추었는지는 상관없다), 비구동 차축, 그 부분품	가. 차동장치를 갖춘 구동 차축 및 비구동 차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당사국 내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70	- 로드 휠(road wheel)과 그 부분품·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80	- 서스펜션 시스템(suspension system)과 그 부분품[쇼크업소버(shock-absorber)를 포함한다]	가. 서스펜션 시스템(쇼크업소버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9	- 그 밖의 부분품과 부속품	
		8708.91	-- 방열기와 그 부분품	가. 방열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92	-- 소음기(머플러), 배기관, 그 부분품	가. 소음기(머플러)와 배기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나. 부분품: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93	-- 클러치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8.94	-- 운전대·스티어링칼럼(steering column)·운전박스와 그 부분품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8.95	-- 팽창 시스템을 갖춘 안전 에어백과 그 부분품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이상일 것
		8708.99	-- 기타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09		공장·창고·부두·공항에서 화물의 단거리 운반에 사용하는 형으로 권양(捲揚)용이나 취급용 장비가 결합되지 않은 자주식(自走式) 작업차, 철도역의 플랫폼에서 사용하는 형의 트랙터, 이들의 부분품	
		8709.1	- 차량	
		8709.11	-- 전기식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9.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09.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0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8710.00	- 전차와 그 밖의 장갑차량[자주식(自走式)으로 한정하며, 무기를 장비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1		모터사이클[모페드(moped)를 포함한다]과 보조모터를 갖춘 자전거[사이드카(side-car)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사이드카(side-car)	
		8711.1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11.20	- 실린더용량이 50시시 초과 25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11.30	- 실린더용량이 250시시 초과 50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11.40	- 실린더용량이 500시시 초과 800시시 이하인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11.50	- 실린더용량이 800시시를 초과하는 왕복식 피스톤 내연기관의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8711.60	- 추진을 위해 전동기를 갖춘 것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11.90	- 기타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5퍼센트 이상일 것
	87.12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8712.00	- 모터를 갖추지 않은 이륜자전거와 그 밖의 자전거(배달용 삼륜 자전거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3		신체장애인을 위한 차량(모터를 갖추었는지 또는 기계구동식인지에 상관없다)	
		8713.10	- 기계구동식이 아닌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		부분품과 부속품(제8711호부터 제8713호까지의 차량의 것으로 한정한다)	
		8714.10	- 모터사이클의 것[모페드(moped)의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20	- 신체장애인을 위한 차량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9	- 기타	
		8714.91	-- 프레임과 포크,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92	-- 휠 림(wheel rim)과 스포크(spok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93	-- 허브(hub)[코스터 브레이킹허브(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는 제외한다], 프리휠(free-wheel) 스프로킷 휠(sprocket-wheel)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94	-- 브레이크[코스터 브레이킹허브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coaster braking hub)와 허브브레이크(hub brake)를 포함한다], 그 부분품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95	-- 안장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96	-- 페달과 크랭크기어(crankgear),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4.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5		유모차와 그 부분품	
		8715.00	- 유모차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6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기계구동식이 아닌 그 밖의 차량, 이들의 부분품	
		8716.10	-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이동주택형으로서 주거용과 캠핑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6.20	- 농업용 자동적재식이나 자동양하식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6.3	- 화물수송용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8716.31	-- 탱커 트레일러(tanker trailer)와 탱커 세미트레일러(tanker semi-trail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6.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6.40	- 그 밖의 트레일러와 세미트레일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6.80	- 그 밖의 차량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716.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			항공기와 우주선, 이들의 부분품	
	88.01		기구·비행선·글라이더·행글라이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8801.00	- 기구·비행선·글라이더·행글라이 더와 그 밖의 무동력 항공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2		그 밖의 항공기(예: 헬리콥터·비행기),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 (suborbital), 우주선 운반로켓	
		8802.1	- 헬리콥터	
		8802.11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2.12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2.20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2.30	- 자체 중량이 2,000킬로그램 초과 15,000킬로그램 이하인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2.40	- 자체 중량이 15,000킬로그램을 초과하는 비행기와 그 밖의 항공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2.60	- 우주선(인공위성을 포함한다)· 서보비틀(suborbital)·우주선 운반로켓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3		부분품(제8801호나 제8802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8803.10	- 프로펠러·로터(rotor)와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3.20	- 기체 지지부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3.30	- 비행기나 헬리콥터의 그 밖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부분품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4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a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8804.00	- 낙하산(조종 가능한 낙하산과 패러글라이더를 포함한다)과 로토슈트(rotachute),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5		항공기 발진장치,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지상비행 훈련장치, 이들의 부분품	
		8805.10	- 항공기 발진장치와 그 부분품, 갑판 착륙장치나 이와 유사한 장치,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5.2	- 지상비행 훈련장치와 그 부분품	
		8805.21	-- 모의공중전장치와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80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			선박과 수상 구조물	
	89.01		순항선·유람선·페리보트(ferry-boat)·화물선·부선(barge)과 이와 유사한 선박(사람이나 화물 수송용으로 한정한다)	
		8901.10	- 순항선·유람선과 이와 유사한 선박(주로 사람 수송용으로 설계된 것으로 한정한다), 각종 페리보트(ferry-boa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1.20	- 탱커(tank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1.30	- 냉동선(소호 제8901.20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1.90	- 그 밖의 화물선과 화객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2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8902.00	- 어선과 어획물의 가공용이나 저장용 선박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3		요트, 유람용이나 운동용 그 밖의 선박, 노를 젓는 보트와 카누	
		8903.1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3.9	- 기타	
		8903.91	-- 범선(보조모터를 부착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3.92	-- 모터보트[아웃보드 모터보트 (outboard motorboat)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3.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4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er craft)	
		8904.00	- 예인선과 푸셔크라프트(push- er craf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5		조명선·소방선·준설선·기중기선과 주로 항해 외의 특수기능을 가지는 그 밖의 특수선박, 부선거(艇船渠), 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시추대나 작업대	
		8905.10	- 준설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5.20	- 시추대나 작업대(물에 뜨거나 잠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6		그 밖의 선박(군함·노를 젓는 보트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외의 구명보트를 포함한다)	
		8906.10	- 군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7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 [예: 부교·탱크·코퍼댐(coffer-dam) ·부잔교(landing stage)·부표·수로부 표]	
		8907.10	- 인플랫터블(inflatable)식 부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50퍼센트 이상일 것
		890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89.08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 (해체용으로 한정한다)	
		8908.00	- 선박과 그 밖의 물에 뜨는 구조물 (해체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8부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시계, 악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			광학기기·사진용 기기·영화용 기기· 측정기기·검사기기·정밀기기·의료용 기기,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0.01		광섬유와 광섬유 다발, 제8544호의 것 외의 광섬유 케이블, 편광재료 (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콘택트렌즈를 포함하 다), 프리즘·반사경과 그 밖의 광학용 품으로서 장착되지 않은 것(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광학소자는 제외한다)	
		9001.10	- 광섬유·광섬유 다발과 광섬유 케이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1.20	- 편광재료(polarizing material)로 만든 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1.30	- 콘택트렌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1.40	- 유리로 만든 안경렌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1.50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안경렌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2		각종 재료로 만든 렌즈·프리즘·반사 경과 그 밖의 광학소자(장착된 것으로 서 기기의 부분품으로 사용하거나 기기 에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하 며, 광학적으로 가공하지 않은 유리로 만든 것은 제외한다)	
		9002.1	- 대물렌즈	
		9002.11	-- 카메라용·영사기용·사진 확대기 용·사진 축소기용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2.1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2.20	- 필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3		안경·고글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의 테와 장착구, 이들의 부분품	
		9003.1	- 테와 장착구	
		9003.1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3.19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900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4		시력교정용·보호용이나 그 밖의 용도의 안경·고글과 이와 유사한 물품	
		9004.10	- 선글라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5		쌍안경·단안경·그 밖의 광학식 망원 경과 이들의 장착구, 그 밖의 천체관측 용 기기와 그 장착구(전파관측용 기기는 제외한다)	
		9005.10	- 쌍안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5.8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5.90	- 부분품과 부속품(장착구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6		사진기(영화용은 제외한다), 사진용 섬광기구와 제8539호의 방전램프 외의 섬광전구	
		9006.30	- 수중촬영용·공중측량용· 장기(臟器)의 내과나 외과 검사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사진기와 법정비교용 사진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6.40	- 즉석인화 사진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6.5	- 그 밖의 사진기	
		9006.51	-- 렌즈를 통하여 볼 수 있는 뷰파인더(viewfinder)[싱글렌즈리플렉 스(SLR)]를 갖춘 것(폭이 35밀리미터 이하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6.52	-- 기타(폭이 35밀리미터 미만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9006.53	-- 기타(폭이 35밀리미터인 롤필름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6.5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6.6	- 사진용 섬광기구와 섬광전구	
		9006.61	-- 섬광기구(전자식 방전램프를 사용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6.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6.9	- 부분품과 부속품	
		9006.91	-- 카메라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6.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7		영화용 촬영기와 영사기(음성의 기록기기나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007.10	- 촬영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7.20	- 영사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7.9	- 부분품과 부속품	
		9007.91	-- 촬영기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7.92	-- 영사기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8		투영기·사진 확대기와 사진 축소기 (영화용은 제외한다)	
		9008.50	- 프로젝터, 확대기와 축소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08.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0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용 기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네가토스코프 (negatoscope), 영사용 스크린	
		9010.10	- 롤 모양인 사진용(영화용을 포함한다) 필름이나 감광지를 자동현상하는 기기, 현상된 필름을 사진용 감광지에 자동노출시키는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0.50	- 사진(영화를 포함한다) 현상실(現像室)용의 그 밖의 기기와 네가토스코프(negatoscop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0.60	- 영사용 스크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0.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1		광학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을 포함한다)	
		9011.10	- 입체현미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1.20	- 그 밖의 현미경(마이크로 사진용·마이크로 영화촬영용·마이크로 영사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1.80	- 그 밖의 현미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1.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2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 (diffraction apparatus)	
		9012.10	- 광학현미경 외의 현미경과 회절기기 (diffraction apparatu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2.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3		액정 디바이스(다른 호에서 더 구체적으로 규정한 물품을 구성하는 것은 제외한다),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그 밖의 광학기기(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3.10	- 무기용 망원조준기, 잠망경, 이 류나 제16부의 기기 부분품용 망원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3.20	- 레이저기기[레이저 다이오드(laser diode)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3.8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3.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4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와 그 밖의 항행용 기기	
		9014.10	- 방향탐지용 컴퍼스(compas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4.20	- 항공용이나 우주항행용 기기 [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4.80	- 그 밖의 항행용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4.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5		토지측량기기(사진측량용을 포함한다) · 수로측량기기 · 해양측량기기 · 수리계측기기 · 기상관측기기 · 지구물리학용 기기[컴퍼스(compass)는 제외한다] ·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거리측정기	
		9015.10	- 거리측정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5.20	- 경위의(經緯儀)와 시거의(視距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5.30	- 수준기(水準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5.40	- 사진측량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5.8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5.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6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 (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16.00	- 감량(感量) 50밀리그램 이하인 저울 (추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7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용구 (예: 제도기·축소확대기·분도기·제 도세트·계산척·계산반), 수지식 길이 측정용구[예: 공은 자와 줄자·마이크 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17.10	- 제도판을 갖춘 제도기(자동식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7.20	- 그 밖의 제도용구·설계용구·계산 용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7.30	- 마이크로미터·캘리퍼스(callipers)와 게이지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9017.8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7.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8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기 기[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 기·그 밖의 전기식 의료기기와 시력 검사기기를 포함한다]	
		9018.1	- 전기식 진단용 기기(기능 검사용이나 생리적 변화 검사용 기기를 포함한다)	
		9018.11	-- 심전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8.12	-- 초음파 영상진단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8.13	-- 자기공명 촬영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8.14	-- 신티그래픽(scintigraphic)식 진단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8.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8.20	- 자외선이나 적외선 응용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8.3	- 주사기·바늘·카테터(catheter)· 케놀러(cannula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018.31	-- 주사기(바늘이 부착되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8.32	-- 관 모양의 금속으로 만든 바늘과 봉합용 바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8.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8.4	- 치과용 그 밖의 기기	
		9018.41	-- 치과용 드릴엔진(하나의 베이스 위 에 그 밖의 치과기기를 부착하였는지 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8.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8.50	- 안과용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8.9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9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 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오존 흡입기· 산소 흡입기·에어로졸 치료기·인공호 흡기나 그 밖의 치료용 호흡기기	
		9019.10	- 기계요법용 기기, 마사지용 기기, 심리학적 적성검사용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19.20	- 오존 흡입기·산소 흡입기·에어로 졸 치료기·인공 호흡기나 그 밖의 치 료용 호흡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0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9020.00	- 그 밖의 호흡용 기기와 가스마스크 (기계적인 부분품과 교환용 필터를 모두 갖추지 않은 보호용 마스크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1		정형외과용 기기(목발·외과용 벨트와 탈장대를 포함한다), 골절 치료용 부목 과 그 밖의 골절 치료구, 인조 인체 부 분, 보청기, 결함·장애를 보정하기 위 하여 착용하거나 휴대하거나 인체에 삽 입하는 그 밖의 기기	
		9021.10	- 정형외과용이나 골절치료용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1.2	- 의치와 치과용품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9021.21	-- 의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1.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1.3	- 그 밖의 인조 인체 부분	
		9021.31	-- 인조관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1.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1.40	- 보청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1.50	- 심장박동기(부분품과 부속품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2		엑스선이나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 ·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엑스 선관과 그 밖의 엑스선 발생기·고압 발생기·조절반·스크린·검사용이나 치료용 테이블·의자와 이와 유사한 물 품을 포함한다)	
		9022.1	- 엑스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 과용·치과용·수의과용인지에 상관없 으며 방사선 사진용이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12	--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2.13	-- 기타(치과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2.14	-- 기타(내과용·외과용·수의과용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로 한정한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2.19	-- 그 밖의 용도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2.2	- 알파선·베타선·감마선을 사용하는 기기(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 용인지에 상관없으며 방사선 사진용이 나 방사선 치료용 기기를 포함한다)	
		9022.21	--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2.29	-- 그 밖의 용도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2.30	- 엑스선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2.90	- 기타(부분품과 부속품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3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 (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9023.00	- 전시용으로 설계된 기구와 모형 (예: 교육용이나 전람회용)(다른 용도 에 사용될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4		재료(예: 금속·목재·직물·종이·플 라스틱)의 경도·항장력·압축성·탄성 이나 그 밖의 기계적 성질의 시험용 기 기	
		9024.10	- 금속재료 시험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4.8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4.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90.25		액체비중계와 이와 유사한 부력식 측정기 · 온도계 · 고온계 · 기압계 · 습도계와 건습 습도계(이들을 결합한 것을 포함하며, 기록장치가 있는지에 상관없다)	
		9025.1	- 온도계와 고온계(다른 기기와 결합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25.11	-- 액체를 넣은 것(직시식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5.8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5.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6		액체나 기체의 유량 · 액면 · 압력이나 그 밖의 변량(變量)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예: 유량계 · 액면계 · 압력계 · 열 측정계). 다만, 제9014호 · 제9015호 · 제9028호 · 제9032호의 것은 제외한다.	
		9026.10	- 액체의 유량이나 액면의 측정용 · 검사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6.20	- 압력의 측정용 · 검사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6.8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6.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7		물리나 화학 분석용 기기(예: 편광계 · 굴절계 · 분광계 · 가스나 매연 분석기), 점도 · 포로서티(porosity) · 팽창 · 표면장력이나 이와 유사한 것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열 · 소리 · 빛의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노출계를 포함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다), 마이크로톰(microtome)	
		9027.10	- 가스나 매연 분석용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7.20	- 크로마토그래프와 전기영동 장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7.30	- 분광계 · 분광광도계 · 분광사진기 (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7.50	- 그 밖의 기기(자외선 · 가시광선 · 적외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7.8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7.90	- 마이크로톰(microtome)과 이 호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8		기체 · 액체 · 전기의 적산(積算)용 계기 (그 검정용 계기를 포함한다)	
		9028.10	- 기체용 계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8.20	- 액체용 계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8.30	- 전기용 계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8.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9		적산(積算)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사한 계기, 속도계와 회전속도계(제9014호나 제9015호의 것은 제외한다), 스트로보 스코프(stroboscope)	
		9029.10	- 적산(積算)회전계 · 생산량계 · 택시 미터 · 주행거리계 · 보수계와 이와 유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사한 계기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9.20	- 속도계와 회전속도계, 스트로보스코프(stroboscope)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29.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0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 스펙트럼 분석기와 그 밖의 전기적 양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제9028호의 것은 제외한다), 알파선 · 베타선 · 감마선 · 엑스선 · 우주선이나 그 밖의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9030.10	- 전리선의 검사용이나 검출용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0.20	-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와 오실로그래프(oscillograph)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0.3	- 전압 · 전류 · 저항 · 전력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9030.31	-- 기록장치가 없는 멀티미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0.32	-- 기록장치를 갖춘 멀티미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0.33	-- 기타(기록장치가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0.39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0.40	-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된 그 밖의 기기[예: 누화계(cross-talk meter) · 게인측정계(gain measuring instrument) · 만곡률계(distortion factor meter) · 잡음전압계(psophomet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0.8	- 그 밖의 기기	
		9030.82	-- 반도체 웨이퍼나 소자의 측정용이	6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나 검사용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0.84	-- 기타(기록장치를 갖춘 것으로 한정 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0.8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0.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1		그 밖의 측정용이나 검사용 기기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와 윤곽 투영기	
		9031.10	- 균형시험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1.20	- 테스트벤치(Test bench)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1.4	- 그 밖의 광학식 기기	
		9031.41	-- 반도체 웨이퍼와 소자 검사용이나 반도체 소자 제조에 사용되는 포토마 스크(photomask)나 레티클(reticle) 검 사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1.4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1.80	- 그 밖의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1.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2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	
		9032.10	- 온도 자동조절용 기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2.20	- 매노우스타트(manosta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2.8	- 그 밖의 기기	
		9032.81	-- 액압식이나 공기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2.89	-- 기타	6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2.90	-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0.33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 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033.00	- 제90류의 기계·기기·장치·장비용 부분품과 부속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 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			시계와 그 부분품	
	91.01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며, 케이스를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으로 한정한다)	
		9101.1	-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1.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1.2	-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1.21	-- 자동권(自動捲)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1.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9101.9	- 기타	
		9101.91	-- 전기구동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1.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2		손목시계·회중시계와 그 밖의 휴대용 시계(스톱워치를 포함하되 제9101호의 것은 제외한다)	
		9102.1	- 손목시계(전기구동식으로 한정하며, 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2.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2.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2.2	- 그 밖의 손목시계(스톱워치 기능을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9102.21	-- 자동권(自動捲)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2.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2.9	- 기타	
		9102.91	-- 전기구동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2.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3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를 갖춘 클록(clock)(제9104호의 것은 제외한다)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9103.10	- 전기구동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4		차량용 · 항공기용 · 우주선용 · 선박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9104.00	- 차량용 · 항공기용 · 우주선용 · 선박 용 계기반 클록(clock)과 이와 유사한 클록(clock)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5		그 밖의 클록(clock)	
		9105.1	- 자명종시계	
		9105.11	-- 전기구동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5.2	- 벽시계	
		9105.21	-- 전기구동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5.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5.9	- 기타	
		9105.91	-- 전기구동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5.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6		시각을 기록하는 기기와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서 시간을 측정 · 기록하거 나 알리는 기기 [예: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 · 타 임레코더(time-recorder)]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9106.10	- 타임레지스터(time-register)와 타임 레코더(time-recorder)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7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 춘 것으로 한정한다]	
		9107.00	- 타임스위치[시계의 무브먼트 (movement)나 동기(同期) 전동기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8		휴대용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완전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 한다)	
		9108.1	- 전기구동식	
		9108.11	-- 기계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이나 기 계식 표시부를 내장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8.12	-- 광전자식 표시부만을 갖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8.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8.20	- 자동권(自動捲)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9		클록 무브먼트(clock movement)(완전 한 것으로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9109.10	- 전기구동식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0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91.10		완전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불완전한 시 계의 무브먼트(movement)(조립된 것으 로 한정한다), 러프(rough)한 시계의 무브먼트(movement)	
		9110.1	- 휴대용 시계의 것	
		9110.11	-- 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 (미조립이나 부분적으로 조립한 것으로 한정한다)(무브먼트세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0.12	-- 불완전한 무브먼트(movement) (조립된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0.19	-- 러프 무브먼트(rough movemen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0.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1		휴대용 시계의 케이스와 그 부분품	
		9111.1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케이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1.20	-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케이스 (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1.80	- 그 밖의 케이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1.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2		클록(clock) 케이스, 이 류의 그 밖의 물품에 사용되는 이와 유사한 유형의 케이스와 이들의 부분품	
		9112.20	- 케이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2.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3		휴대용 시계줄 · 휴대용 시계밴드 · 휴대용 시계팔찌와 이들의 부분품	
		9113.10	- 귀금속으로 만든 것이나 귀금속을 입힌 금속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3.20	-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것(금이나 은을 도금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4		그 밖의 시계의 부분품	
		9114.10	- 스프링(헤어스프링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4.30	- 문자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4.40	- 지판과 브리지(bridg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11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			악기와 그 부분품과 부속품	
	92.01		피아노(자동피아노를 포함한다) · 하프 시코드(harpsichord)와 그 밖의 건반이 있는 현악기	
		9201.10	- 업라이트(upright) 피아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1.20	- 그랜드 피아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2		그 밖의 현악기(예: 기타 · 바이올린 ·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하프)	
		9202.10	- 활을 사용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5		관악기(예: 키보드 파이프 오르간 · 아 코디언 · 클라리넷 · 트럼펫 · 백파이 프)[페어그라운드 오르간(fairground organ)과 메커니컬 스트리트 오르간 (mechanical street organ)은 제외한다]	
		9205.10	- 금관악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6		타악기[예: 북 · 목금 · 심벌 · 캐스터네 츠 · 마라카스(maracas)]	
		9206.00	- 타악기[예: 북 · 목금 · 심벌 · 캐스터 네츠 · 마라카스(maracas)]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7		전기적으로 음이 발생하거나 증폭되는 악기(예: 오르간 · 기타 · 아코디언)	
		9207.10	- 건반악기(아코디언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8		뮤지컬박스 · 페어그라운드 오르간 (fairground organ) · 메커니컬 스트리 트 오르간(mechanical street organ) · 기계식 자명조(singing bird) · 뮤지컬소 (musical saw)와 그 밖의 악기로서 이 류의 다른 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 각 종 데코이 콜(decoy call), 휘슬 · 호각 과 그 밖의 입으로 불어서 나는 소리로 신호하는 기구	
		9208.10	- 뮤지컬박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9		악기의 부분품(예: 유지컬박스용 메카 니즘)과 부속품(예: 기계식 악기용 카드 · 디스크 · 롤), 박절기(metronom) · 소 리굽쇠, 각종 조율관(調律管)	
		9209.30	- 악기용 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9.9	- 기타	
		9209.91	-- 피아노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9.92	-- 제9202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9.94	-- 제9207호 악기의 부분품과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209.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19부 무기 · 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93			무기 · 총포탄과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 품	
	93.01		군용 무기[리볼버(revolver) · 피스톨 (pistol)과 제9307호의 무기는 제외한 다]	
		9301.10	- 포병 무기(예: 평사포 · 곡사포 · 박 격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1.20	- 로켓발사기, 화염발사기, 유탄발사 기, 어뢰발사관과 이와 유사한 발사장 치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93.02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 (제9303호·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2.00	- 리볼버(revolver)와 피스톨(pistol) (제9303호·9304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3		그 밖의 화기와 폭약으로 점화되는 이와 유사한 장치[예: 경기용 산탄총과 라이플(rifle), 총구장전 화기, 베리식 피스톨(Very pistol), 신호용 화염만을 발생하는 그 밖의 장치, 공포탄용 피스톨(pistol)·리볼버(revolver), 캡티브볼트(captive-bolt)형 무통(無痛) 도살기, 줄 발사총(line-throwing gun)]	
		9303.10	- 총구장전 화기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3.2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 표적사격용 산탄총[산탄총과 라이플(rifle) 기능이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3.30	- 그 밖의 스포츠용·수렵용· 표적사격용 라이플(rifle)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4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공기총· 가스총·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9304.00	- 그 밖의 무기(예: 스프링총· 공기총·가스총·경찰봉)(제9307호의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5		부분품과 부속품(제9301호부터 제9304호까지의 것으로 한정한다)	
		9305.10	- 리볼버(revolver)나 피스톨(pistol)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5.20	- 산탄총과 라이플(rifle)의 것(제9303 호의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5.9	- 기타	
		9305.91	-- 제9301호의 군용 무기의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5.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6		폭탄·유탄·어뢰·지뢰·미사일과 이와 유사한 군수품과 이들의 부분품, 탄약·그 밖의 총포탄·탄두와 이들의 부분품[산탄알과 탄약 안에 충전되는 와드(wad)를 포함한다]	
		9306.2	- 산탄총용 탄약과 그 부분품, 공기총 탄환	
		9306.21	-- 탄약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6.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6.30	- 그 밖의 탄약과 그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3.07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의 부분품과 집	
		9307.00	- 검류·창과 이와 유사한 무기, 이들 의 부분품과 집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0부 잡품				
94			가구, 침구·매트리스·매트리스 서포 트(mattress support)·쿠션과 이와 유 사한 물품,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램프·조명기구,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 사한 물품, 조립식 건축물	
	94.01		의자(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 없으며 제9402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그 부분품	
		9401.10	- 항공기용 의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9401.20	- 차량용 의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1.30	- 회전의자(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1.40	- 침대 겸용 의자[가든시트(garden seat)나 캠핑용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1.5	- 등나무·버드나무 가지(osier)· 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의자	
		9401.52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1.53	-- 등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1.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1.6	-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나무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61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1.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1.7	- 그 밖의 의자(프레임이 금속으로 된 것으로 한정한다)	
		9401.71	-- 의자의 속·용수철·커버 등을 댄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1.7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1.80	- 그 밖의 의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1.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2		내과용·외과용·치과용·수의과용 가 구류(예: 수술대·검사대·기계식 장비 를 갖춘 병원용 침대·치과용 의자), 회전·뒤로 젖힘·상하 조절 기능을 갖 춘 이발용 의자와 이와 유사한 의자, 이들의 부분품	
		9402.10	- 치과용 의자·이발용 의자나 이와 유사한 의자와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2.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		그 밖의 가구와 그 부분품	
		9403.10	- 금속으로 만든 사무실용 가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20	- 금속으로 만든 그 밖의 가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30	- 사무실용 목제가구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40	- 주방용 목제가구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50	- 침실용 목제가구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60	- 그 밖의 목제가구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60퍼센트 이상일 것
		9403.70	- 플라스틱으로 만든 가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8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가구[등나무· 버드나무 가지(osier)·대나무나 이와 유사한 재료로 만든 것을 포함한다]	
		9403.82	-- 대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83	-- 등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8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4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 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예: 매트리스 · 이불 · 우모이불 · 쿠션 · 푸프(pouff) · 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 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 에 상관없다)	
		9404.10	-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4.2	- 매트리스	
		9404.21	--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4.29	-- 그 밖의 재료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4.30	- 침낭(sleeping bag)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5		램프 · 조명기구[서치라이트 (searchlight) · 스포트라이트(spotlight) 와 이들의 부분품을 포함하고, 따로 분 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조명용 사인 · 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 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광원이 고정 되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이들의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부분품(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9405.10	- 샹들리에(chandelier)와 그 밖의 천장용·벽 부착용 전기식 조명기구[공공공지(公共空地)나 통행로에 사용되는 것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5.20	- 전기식의 테이블·책상·침대·마루스탠드 램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5.30	- 크리스마스 장식용 조명세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5.40	- 그 밖의 전기램프와 조명기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5.50	- 비전기식 램프와 조명기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5.60	- 조명용 사인·조명용 네임플레이트(name-plate)와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5.9	- 부분품	
		9405.91	-- 유리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5.92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5.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6		조립식 건축물	
		9406.10	- 나무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406.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			완구·게임용구·운동용구와 이들의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부분품과 부속품	
	95.03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9503.00	- 세발자전거·스쿠터·페달 자동차와 이와 유사한 바퀴가 달린 완구, 인형용 차, 인형과 그 밖의 완구, 축소 모형과 이와 유사한 오락용 모형(작동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퍼즐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4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	
		9504.20	- 각종 당구용구와 부속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4.30	- 그 밖의 게임용구(코인·은행권·은행카드·토큰과 그 밖의 지급수단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한정하며 자동식 볼링장용구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4.40	- 오락용 카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4.50	-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4.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5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마술용품과 기술(奇術)용품을 포함한다]	
		9505.10	- 크리스마스 축제용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육상·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 (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폴(paddling pool) 용품	
		9506.1	- 설상 스키와 그 밖의 설상 스키용품	
		9506.11	-- 스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12	-- 스키파스닝(ski-fastening) (스키바인딩)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2	- 수상스키·서프보드(surf board)· 세일보드(sailboard)와 그 밖의 수상 운동용구	
		9506.21	-- 세일보드(sailboard)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3	- 골프채와 그 밖의 골프용품	
		9506.31	-- 골프채(완제품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32	-- 골프공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3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40	- 탁구용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5	- 테니스용 라켓·배드민턴용 라켓이나 이와 유사한 라켓(줄을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9506.51	-- 론테니스(lawn-tennis) 라켓(줄을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맨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5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6	- 공(골프공과 탁구공은 제외한다)	
		9506.61	-- 론테니스(lawn-tennis) 공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62	-- 공기를 넣어 부풀게 하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6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70	- 아이스스케이트와 롤러스케이트 (스케이트가 부착된 스케이팅부츠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9	- 기타	
		9506.91	--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체조· 육상 경기에 사용하는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6.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7		낚싯대·낚싯바늘과 그 밖의 낚시용구, 낚시용 망·포충망(捕蟲網)과 이와 유사한 망, 조류 유인용구(제9208호나 제9705호의 것은 제외한다)와 이와 유사한 수렵용구	
		9507.10	- 낚싯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7.20	- 낚싯바늘(낚싯줄에 매는 짧은 줄이 있는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7.30	- 낚시 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9507.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8		회전목마·그네·실내사격연습장용품과 그 밖의 놀이공원용품과 순회서커스· 순회동물원·순회극장 용품	
		9508.10	- 순회서커스와 순회동물원 용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508.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			잡품	
	96.01		가공한 아이보리(ivory)·뼈·귀갑(龜 甲)·뿔·가지진 뿔·산호·자개·그 밖의 동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성 형품을 포함한다)	
		9601.10	- 가공한 아이보리(ivory)와 그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2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 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왁스· 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모델링페 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든 것으 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공한 비경 화(非硬化) 젤라틴 (제3503호의 젤라틴 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硬化) 젤라틴 의 제품	
		9602.00	- 가공한 식물성이나 광물성 조각용 재료와 그 제품, 성형품이나 조각품 [왁스·스테아린(stearin)·천연수지· 모델링페이스트(modelling paste)로 만 든 것으로 한정한다], 따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성형품이나 조각품, 가 공한 비경화(非硬化) 젤라틴 (제3503 호의 젤라틴은 제외한다)과 비경화(非 硬化) 젤라틴의 제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3		비·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 분품을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모터를 갖추지 않은 기계식 바닥청소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모프(mop)·깃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먼지떨이, 비나 브러시의 제조용으로 묶었거나 술(tuft)의 모양으로 정돈한 물품, 페인트용 패드·롤러·스퀴지(squeegee)[롤러스퀴지(roller squeegee)는 제외한다]	
		9603.10	- 비와 브러시(작은 가지나 그 밖의 식물성 재료를 단순히 묶은 것으로 한정하며, 자루를 갖춘 것인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3.2	- 칫솔·면도용 브러시·헤어 브러시·네일 브러시·아이래쉬(eyelash) 브러시와 그 밖의 인체용인 화장용 브러시(화장기구의 일부를 구성하는 브러시를 포함한다)	
		9603.21	-- 칫솔[덴탈플레이트(dental-plate) 브러시를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3.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3.30	- 회화용 붓·필기용 붓과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붓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3.40	- 페인트용·디스탬퍼(distemper)용·바니시(vernish)용이나 이와 유사한 용도의 브러시(소호 제9603.30호의 브러시는 제외한다), 페인트용 패드와 롤러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3.50	- 그 밖의 브러시(기계·기구·차량 등의 부분품을 구성하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3.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4		수동식 채와 어레이	
		9604.00	- 수동식 채와 어레이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5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9605.00	- 개인용 여행세트(화장용·바느질용·신발이나 의류 청소용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6		단추·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스냅파스너(snap-fastener) · 프레스스터드(press-stud) · 단추의 몰드(mould)와 이들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9606.10	- 프레스파스너(press-fastener) · 스냅파스너(snap-fastener) · 프레스스터드(press-stud)와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6.2	- 단추	
		9606.21	--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6.22	--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으로서 방직용 섬유재료로 피복되어 있지 않은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6.2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6.30	- 단추의 몰드(mould)와 단추의 부분품, 단추 블랭크(blank)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7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와 그 부분품	
		9607.1	- 슬라이드파스너(slide fastener)	
		9607.11	-- 체인스쿠프(chain scoop)를 비금속(非金屬)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7.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7.2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		볼펜,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만년필 · 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복사용 철필(鐵筆),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펜홀더 · 펜슬홀더와 이와 유사한 홀더, 이들의 부분품[캡과 클립(clip)을 포함하며 제9609호의 것은 제외한다]	
		9608.10	- 볼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20	- 팁(tip)이 펠트로 된 것과 그 밖의 포러스팁(porous-tip)으로 된 펜과 마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30	- 만년필·철필(鐵筆)형 만년필(stylograph pen)과 그 밖의 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40	- 프로펠링펜슬(propelling pencil)이나 슬라이딩펜슬(sliding pencil)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50	- 위 소호들의 물품이 두 개 이상으로 세트를 이루는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60	- 볼펜용 심(볼포인트와 잉크 저장기가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9	- 기타	
		9608.91	-- 펜촉과 님포인트(nib point)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8.9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9		연필(제9608호의 펜슬은 제외한다)·크레용·연필심·파스텔·도화용 묵탄·필기용이나 도화용 초크와 재단사용 초크	
		9609.10	- 연필과 크레용(건고한 집 속에 심을 넣은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9.20	- 연필심(검은색이나 색깔이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09.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0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지에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상관없다)	
		9610.00	- 석판과 보드(필기용이나 도화용 면을 갖춘 것으로 한정하며, 틀이 있는 지에 상관없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1		날짜 도장 · 봉합용 스탬프 · 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9611.00	- 날짜 도장 · 봉합용 스탬프 · 넘버링스탬프(numbering stamp)와 이와 유사한 물품[레이블(label)에 날인하거나 양각하는 기구를 포함하며, 수동식으로 한정한다], 수동식 조판용 스틱과 조판용 스틱을 결합한 수동식 인쇄용 세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2		타자기용 리본이나 이와 유사한 리본(잉크가 침투되어 있거나 인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인 것을 포함하며, 스펀에 감긴 것이거나 카트리지 모양인지에 상관없다)과 잉크 패드(잉크가 침투되어 있는지 또는 상자들이 있는지 여부에 상관없다)	
		9612.10	- 리본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2.20	- 잉크 패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3		담배ライター와 그 밖의ライター(기계식이나 전기식인지에 상관없다)와 이들의 부분품(ライター 돌과 심지는 제외한다)	
		9613.10	-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없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3.20	- 포켓형ライター(가스 주입식으로 다시 채울 수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3.80	- 그 밖의ライター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3.90	-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4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 · 시가홀더 · 시가렛홀더, 이 들의 부분품	
		9614.00	- 흡연용 파이프[파이프 볼(pipe bowl)을 포함한다] · 시가홀더 · 시가렛 홀더, 이들의 부분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5		빗 · 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 머리핀 · 컬링핀(curling pin) · 컬링그립(curling grip) · 헤어컬러 (hair curl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제 8516호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외한다) 과 이들의 부분품	
		9615.1	- 빗 · 헤어슬라이드(hair-slide)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15.11	-- 경화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5.19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5.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6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 (頭部), 화장용 분첩과 패드	
		9616.10	- 향수용 분무기와 이와 유사한 화장 용 분무기, 이들의 마운트(mount)와 두부(頭部)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6.20	- 화장용 분첩과 패드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7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품 (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9617.00	- 보온병과 그 밖의 진공용기(케이스 를 갖춘 것으로 한정한다)와 그 부분 품(유리로 만든 내부용기는 제외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8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9618.00	- 마네킹 인형과 그 밖의 모델형 인형, 자동인형과 그 밖의 쇼윈도 장식용인 움직이는 전시용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19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9619.00	- 위생 타월(패드)·탐폰(tampon), 유아용 냅킨·냅킨라이너(napkin liner)와 이와 유사한 물품(어떤 재질이라도 가능하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6.20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9620.00	- 일각대·양각대·삼각대와 이와 유사한 물품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제21부 예술품·수집품·골동품				
97			예술품·수집품·골동품	
	97.01		회화·데생·파스텔(손으로 직접 그린 것으로 한정하며, 제4906호의 도안과 손으로 그렸거나 장식한 가공품은 제외한다), 콜라주(collage)와 이와 유사한 장식판	
		9701.10	- 회화·데생·파스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701.90	- 기타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7.02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9702.00	- 오리지널 판화·인쇄화·석판화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7.03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9703.00	- 오리지널 조각과 조상(彫像)(어떤 재료라도 가능하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7.04		우표·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4907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	

류	호	소호 (HS2017)	품목명	원산지 부여 기준
			함한다)	
		9704.00	- 우표·수입인지·우편요금 별납증서 · 초일(初日)봉투·우편엽서류와 이와 유사한 것(이미 사용한 것이나 제4907 호의 것은 제외한 사용하지 않은 것을 포함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7.05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물 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학· 민족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5.00	- 수집품과 표본[동물학·식물학·광 물학·해부학·사학·고고학·고생물 학·민족학·고전학(古錢學)에 관한 것 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97.06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으로 한정한다)	
		9706.00	- 골동품(제작 후 100년을 초과한 것 으로 한정한다)	4단위 세번변경기준 또는 당사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40퍼센트 이상일 것

부속서 4-다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다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한다.
 - 가. 역외가공지역의 필요성 검토
 - 나. 위원회가 수립한 기준을 기초로,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 결정¹
 - 다. 원산지 최종상품의 총 투입 가치의 최대 한도를 포함한 역외가공지역의 원산지 지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준 수립, 그리고
 - 라. 역외가공지역과 관련된 상품 목록 및 구체적인 절차 작성
2. 위원회는 양 당사국의 공무원들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일 후 1년 내에 회합하며, 그 후 최소 연 1회 또는 상호 합의하는 대로 어느 때나 회합한다.

¹ 양 당사국의 대한민국의 헌법상 위임 및 안보 이익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증진을 위한 약속에 따라, 위원회는 한반도의 상황을 검토하고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는 지리적 구역을 결정한다.

제5장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

제5.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권한 있는 당국이란 각 당사국의 법에 따라 그 당사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운영과 집행을 담당하는 당국을 말한다.

관세법 및 규정이란 상품의 수입, 수출, 이동 또는 보관, 관세 당국에 구체적으로 위임된 운영 및 집행, 그리고 그 법적 권한에 따라 관세 당국이 제정한 모든 규제에 관한 법적이고 규제적인 규정을 말한다.

통관 절차란 당사국의 관세 당국이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대상이 되는 상품 및 운송수단에 적용하는 조치를 말한다.

특송화물이란 상품의 신속한 국경 간 이동을 위하여 특송 업무를 운영하고 그 상품에 대하여 관세 당국에 책임이 있는 기업에 의하여 또는 그 기업을 통하여 수입되는 모든 상품을 말한다. 그리고

운송수단이란 사람, 상품 또는 물품을 운송하여 양 당사국의 관세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관세 영역에서 나가는 다양한 종류의 선박, 차량 및 항공기를 말한다.

제5.2조 목적

이 장은 다음을 목적으로 한다.

- 가. 양 당사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적용에 대하여 예측가능성, 일관성 및 투명성을 보장하는 것
- 나. 통관 절차의 효율적인 운영 그리고 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증진하는 것
- 다. 양 당사국의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를 가능한 한도에서 관련 국제 표준과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
- 라.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 간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 그리고
- 마. 세계 및 역내 공급망을 위한 강화된 환경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는 것

제5.3조

적용범위

이 장은 양 당사국 간 교역되는 상품 및 양 당사국의 관세 영역으로 들어오거나 관세 영역에서 나가는 운송수단에 적용되는 통관 절차에 적용된다.

제5.4조

일관성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영역에 걸쳐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이행 및 적용을 보장한다.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는 당사국의 관세법 및 규정에 따라 재량이 부여되는 경우, 그 당사국의 관세 당국에 부여되는 그러한 재량의 행사를 금지하지 않는다. 다만, 그 재량은 그 당사국의 관세 영역에 걸쳐 그리고 그 당사국의 관세법 및 규정에 따라 일관되게 행사되어야 한다.

2.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할 때,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영역에 걸쳐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이행 및 적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하도

록 노력하고, 되도록이면 그 당사국의 지역 세관 간에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일관된 적용을 보장하는 행정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3. 한쪽 당사국이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를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제5.20조에 따라 그와 관련된 사안에 대하여 그 당사국과 협의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제2항에 언급된 행정 메커니즘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 행정 메커니즘과 관련된 자국의 관행과 경험을 다른 쪽 당사국과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제5.5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다음의 정보를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비차별적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능한 한도에서 인터넷에 신속하게 공표한다.

가.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항구, 공항 및 그 밖의 반입지점 절차를 포함한다), 그리고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나. 수입 또는 수출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모든 종류의 관세 및 조세의 실행세율

다. 정부기관에 의하여 또는 그를 위하여 수입, 수출 또는 통과에 부과되거나 이와 관련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과금

라. 통관 목적상 생산품의 품목분류 또는 평가에 관한 규칙

마. 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법, 규정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판정

바. 수입, 수출이나 통과 제한 또는 금지

사. 수입, 수출 또는 통과 절차의 위반에 대한 처벌 규정

아.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

자. 자국이 당사자인 수입, 수출 또는 통과와 관련된 국가 또는 국가들과의 협정 또는 그 일부, 그리고

차. 관세 할당의 운영과 관련된 절차

2. 특히, 각 당사국은 다음을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적절하게 갱신한다.

가.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를 포함하여, 수입, 수출 및 통과를 위하여 필요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정부,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알리는 자국의 수입, 수출 및 통과 절차에 관한 설명¹

나. 그 당사국 영역으로의 수입, 그로부터의 수출 또는 그를 통한 통과를 위하여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 그리고

다. 제5.6조에 규정된 대로 문의처의 연락정보뿐만 아니라 관세 사안에 대하여 문의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

3. 가능한 한도에서, 새로운 관세법 및 규정을 개발하거나 기존의 것을 개정하는 경우, 각 당사국은 그러한 제안된 새로운 또는 개정된 관세법 및 규정을 공표하거나 달리 쉽게 이용 가능하도록 하고, 이해관계인에게 그 제안된 관세법 및 규정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그러한 사전 공고가 배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한도에서 그리고 자국의 국내법 및 법적 체계에 합치

¹ 각 당사국은 이 설명의 법적 제한을 자국의 웹사이트에 명시하는 것에 대하여 재량을 가진다.

되는 방식으로, 통과 중인 상품을 포함하여 상품의 이동, 반출 및 통관에 관련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새로운 또는 개정된 법과 규정이 무역업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인지할 수 있도록 발효 전에 가능한 한 조기에 공표되거나 그에 대한 정보가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5. 이 조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의 언어 외의 언어로 정보의 공표 또는 제공을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5.6조

문의처

각 당사국은 관세 사안에 관한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인 문의에 답변하고 수입, 수출 및 통과에 요구되는 양식 및 서류에 대한 접근을 촉진하기 위하여,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지정한다.

제5.7조

통관 절차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통관 절차와 관행이 예측 가능하고, 일관되며, 투명하고, 상품의 신속한 통관을 통하는 것을 포함하여 무역을 원활히 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의 통관 절차는, 가능한 경우 그리고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세계관세기구의 표준 및 권고 관행을 준수한다.

3.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한 통관 절차의 간소화를 위하여, 자국의 통관 절차를 검토한다.

제5.8조

선적전검사

1. 각 당사국은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와 관련하여, 선적전검사의 이용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않는 그 밖의 유형의 선적전검사를 이용할 수 있는 양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각 당사국은 그 이용에 관한 새로운 요건을 도입하거나 적용하지 않도록 권장된다.
3. 제2항은 「선적전검사에 관한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선적전검사를 지칭하고, 위생 및 식물위생 목적상 선적전검사를 배제하지 않는다.

제5.9조

도착 전 처리

1. 각 당사국은 도착 즉시 상품의 반출을 신속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도착 전에 처리를 시작하도록 상품의 수입에 요구되는 서류 및 그 밖의 정보의 제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제1항에 언급된 서류 및 그 밖의 정보를 그러한 서류의 도착 전 처리를 위하여 전자적 형태로 사전에 제출할 것을 규정한다.

제5.10조

사전심사결정

1. 각 당사국은 각국의 법, 규정 및 행정적 결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한쪽 당사국의 상품이 자국의 영역으로 수입되기 전에, 모든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는 서면 요청을 제출한 수입자, 수출자 또는 정당한 사유를 가진 모든 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다음에 대하여 사전심사결정서를 발급한다.

가. 품목분류

나. 이 협정상 제4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상품이 원산지 상품인지 여부

다. 관세평가협정의 규정에 따라, 일련의 특정한 사실에 따른 관세 가격을 결정하기 위하여 사용될 적절한 방식이나 기준 및 그 적용, 그리고

라. 양 당사국이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사안

2. 당사국은 신청인이 자국의 영역에서 법적 대리 또는 등록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가능한 한도에서, 그러한 요구는 중소기업의 특정한 수요를 특히 고려하여, 사전심사결정을 신청할 자격이 있는 인의 범주를 제한하지 않는다. 이러한 요건은 명확하고 투명하며,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의 수단을 구성하지 않는다.

3.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하기 위한 다음의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가. 사전심사결정을 신청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정보를 명시하는 절차

나. 각 당사국이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평가하는 과정 중에, 상품의 견본을 포함할 수 있는, 그 신청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추가적인 정보의 제공을 언제라도 신청인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절차

다. 사전심사결정이 신청인이 제공한 사실과 상황, 그리고 결정권자가 가지고 있는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에 기초하도록 보장하는 절차, 그리고

라. 사전심사결정이 그 결정에 대한 사실 및 근거를 포함하도록 보장하는 절차

4. 각 당사국은 발급 당사국의 공식 언어 또는 그 당사국이 결정하는 언어로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한다. 사전심사결정은 모든 필요한 정보의 접수 시 90일 내에 신청인에게 발급된다. 각 당사국은 그러한 신청 전에 사전심사결정 발급 기간을 명시하고 공개한다. 권한 있는 당국은 신청의 접수 후 명시된 기간보다 늦게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할 합

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신청인에게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그러한 지연의 근거를 통보한다.

5.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과 상황이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 사전심사결정의 발급을 거부하는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발급거부결정에 관한 관련 사실, 상황 및 근거를 적시하여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신속하게 통보한다.

6. 당사국은 제3항나호에 따라, 서면으로 요청된 추가 정보가 합리적이고 명시된 기간 내에 제공되지 않은 경우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거절할 수 있다. 그 기간은 추가 정보의 요청 당시 결정되고 그 당사국은 추가 정보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7. 각 당사국은 사전심사결정의 근거가 되는 법, 규정, 행정규칙 그리고 사실 및 상황에 변동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여, 사전심사결정이 발급된 날 또는 사전심사결정에 명시된 다른 날부터 사전심사결정이 유효하도록 규정한다. 신청의 성격으로 인하여 더 짧은 기간이 사전심사결정에 규정되지 않는 한, 제8항을 조건으로 사전심사결정은 최소 3년 동안 유효하며, 이는 양 당사국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사전심사결정에 분명하게 명시된다.

8. 다음의 경우에 당사국이 사전심사결정을 철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 결정에 대한 관련 사실과 근거를 적시한 서면 통지를 신청인에게 신속하게 제공한다.

가. 자국의 법, 규정 또는 행정 규칙에 변경이 있는 경우

나.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거나 관련 정보가 보류된 경우

다. 사전심사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사실 또는 상황에 변경이 있는 경우,
또는

라. 사전심사결정이 잘못된 경우

9. 당사국이 사전심사결정을 소급하여 철회, 변경 또는 무효화하는 경우, 그 사전심사결정이 불완전한 정보, 부정확한 정보, 허위 정보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정보에 기초한 경우에만 그렇게 할 수 있다.

10. 당사국이 발급한 사전심사결정은 그것을 구한 신청인과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11. 각 당사국은 최소한 다음을 공표한다.

가. 제공되어야 할 정보와 양식을 포함한 사전심사결정 신청을 위한 요건

나. 당사국이 사전심사결정을 발급할 기간, 그리고

다. 사전심사결정이 유효한 기간

12. 각 당사국은, 상업적 비밀정보를 보호할 필요성을 고려하여, 자국이 그 밖의 이해당사자에게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으로 여기는 사전심사결정에 관한 모든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할 수 있다.

제5.11조

상품의 반출

1. 각 당사국은 양 당사국 간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상품의 효율적인 반출을 위한 간소화된 통관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이 항은 반출을 위한 당사국의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에게 상품의 반출을 요구하지 않는다.

2. 제1항에 따라,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법 및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기간을 넘지 않는 기간 내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도착과 통관 절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정보의 제출로부터 48시간 내에 상품이 세관으로부터 통관되도록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상품이 추가적인 검사를 위하여 선별된 경우, 그러한 검사는 합리적이고 필요한 것으로 제한되며, 과도한 지체 없이 행해지고 완료된다.

4. 각 당사국은 도착 전, 또는 도착 시 또는 도착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은 경우, 그러한 결정 전에 상품의 반출을 허용하는 절차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다만, 그 밖의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되고 있어야 한다. 그러한 반출의 조건으로, 당사국은 보증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납부할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지불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당사국이 요구하는 금액을 넘지 않는 보증을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5. 이러한 규정의 어떠한 것도 당사국의 법과 규정에 합치되는 어떠한 방식으로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몰수 또는 처리하는 그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6. 부패성 상품²의 피할 수 있는 손실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리고 모든 규제 요건이 충족된 경우로 한정하여, 각 당사국은 다음과 같이 통관 통제로부터 부패성 상품의 반출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가급적 가장 빠른 시간에, 그리고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이 도착하고 반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한 후 6시간 내, 그리고

나. 그렇게 하는 것이 적절할 예외적인 상황에서, 자국의 관세 당국의 업무 시간 외

7. 각 당사국은 요구될 수 있는 어떠한 검사를 조정하는 경우, 부패성 상품에 적절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8. 각 당사국은 반출을 기다리는 동안 부패성 상품의 적절한 저장 시설을 마련하거나 수입자가 마련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각 당사국은 수입자가 마련한 모든 저장 시설

² 이 규정의 목적상, 부패성 상품은 특히 적절한 저장 조건이 없는 경우 그 자연적 특성으로 인하여 급속히 부패되는 상품이다.

에 대하여 자국의 관련 당국이 승인 또는 지정하였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상품을 이동시키는 업체에 대한 인증을 포함하여, 그러한 저장 시설로의 상품의 이동은, 요구되는 경우, 관련 당국의 승인 대상이 될 수 있다. 각 당사국은 실행 가능하고 국내 법률에 합치되는 경우, 수입자의 요청에 따라, 그러한 저장 시설에서 반출이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5.12조

정보기술의 적용

1.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상품의 신속한 통관과 반출을 위한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기초하여 통관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적용한다.
2. 양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위험관리 선별을 위한 전자 또는 자동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선적된 상품 도착 전 자료의 제출을 포함하여 그 상품의 반출을 위한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정보기술을 사용한다.
3. 양 당사국은 무역행정문서를 대중이 전자적 형태로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4.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를 종이 형태의 그러한 문서와 법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수용하도록 노력한다.
5. 종이 없는 무역행정의 사용을 규정하는 이니셔티브 개발 시, 양 당사국은 국제기구 후원으로 만들어지는 국제 표준 또는 방식을 고려하도록 권장된다.
6. 양 당사국은 전자적으로 제출된 무역행정문서의 수용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협력한다.

제5.13조

공인업체에 대한 무역원활화 조치

1. 각 당사국은 제3항에 따라 수입, 수출 또는 통과 과정 및 절차와 관련된 추가적인 무역원활화 조치를 명시된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이하 "공인업체"라 한다)에 제공한다. 그렇지 않다면, 당사국은 모든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통관 절차를 통하여 그러한 무역원활화 조치를 제공할 수 있고 별도의 제도를 수립하도록 요구되지 않는다.

2. 공인업체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명시된 기준은 당사국의 법, 규정 또는 절차에 명시된 요건의 준수 또는 미준수의 위험과 관련된다.

가. 공표되는 그러한 기준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1)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에 관한 적절한 기록
- 2) 필요한 내부 통제를 허용하는 기록 관리 시스템
- 3) 적절한 경우 충분한 담보나 보증의 제공을 포함한 재무 건전성, 그리고
- 4) 공급망 안전성

나. 그러한 기준은

- 1) 같은 조건하에 있는 업체 간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을 하거나 유발하기 위하여 고안되거나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 2) 가능한 한도에서, 중소기업의 참여를 제한하지 않는다.

3. 제1항에 따라 규정된 무역원활화 조치는 다음의 조치 중 최소한 세 가지를 포함한다.³

³ 가호부터 사호까지에 열거된 조치는 모든 업체들이 일반적으로 이용 가능한 경우 공인업체들에게 제공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가. 적절한 경우, 낮은 수준의 서류 및 자료 요건

나. 적절한 경우, 낮은 비율의 물리적 검사와 조사

다. 적절한 경우, 신속한 반출 시간

라. 관세, 조세, 수수료 및 부과금의 납부 연기

마. 광범위한 보증 또는 감액된 보증의 사용

바. 주어진 기간 내 모든 수입 또는 수출에 대한 단일 세관신고, 그리고

사. 공인업체의 사업장이나 관세 당국이 인증한 다른 장소에서의 상품의 통관

4. 각 당사국은 국제 표준이 존재하는 경우, 그러한 표준이 추구되는 정당한 목적을 충족하는 데 부적절하거나 비효과적인 수단일 경우를 제외하고 그러한 표준에 기초하여 공인업체 제도를 개발하도록 권장된다.

5. 한쪽 당사국은 업체에 제공되는 무역원활화 조치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에 공인업체 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을 협상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6. 양 당사국은 적절한 경우, 각국의 공인업체 제도를 발전시키는 데 제5.20조의 접촉선을 이용하여 다음을 통하여 협력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 그러한 제도 및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관한 정보 교환

나. 비즈니스 관점 및 경험에 관한 시각, 그리고 비즈니스 지원활동에서의 우수 관행 공유

다. 그러한 제도의 상호 인정에 대한 접근 방법에 관한 정보 공유, 그리고

라. 무역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그러한 제도의 혜택을 증진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 그리고 우선, 관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인업체에 대한 조정자로서 세관 공무원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한 고려

제5.14조

위험관리

1. 각 당사국은 통관 통제를 위하여 위험관리시스템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자의적이거나 부당한 차별 또는 국제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피하기 위한 방식으로 위험관리를 설계하고 적용한다.
3. 각 당사국은 통관 통제 및 가능한 한도에서 그 밖의 관련 국경 통제를 고위험 탁송물에 집중하고, 저위험 탁송물의 반출을 신속화한다. 각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위험관리의 일부로 그러한 통제를 위한 탁송물을 무작위로 선별할 수 있다.
4. 각 당사국은 위험관리를 적절한 선별 기준을 통한 위험 평가에 기초한다. 그러한 선별 기준은 특히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HS) 부호, 상품의 성격 및 상품명, 원산지 국가, 상품이 선적된 국가, 상품의 가격, 무역업자의 준수 기록, 그리고 운송수단의 유형을 포함할 수 있다.

제5.15조

특송화물

1. 각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 및 선별을 유지하면서 최소한 항공 화물 시설을 통하여 들어오는 상품에 대하여 특송화물의 통관을 신속화하기 위한 통관 절차를 다음에

의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한다.⁴

- 가. 특송화물과 관련된 정보의 도착 전 처리를 규정하는 것
- 나. 가능한 한도에서, 전자적 수단을 통하여 특송화물에 포함된 모든 상품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정보의 단일 제출을 허용하는 것
- 다. 특송화물의 반출에 요구되는 서류를 최소화하는 것
- 라. 통상적인 상황하에서 가능한 한 신속하게, 그리고 가능한 경우 상품이 도착하고 반출에 요구되는 정보를 제출한 후 6시간 내에 특송화물이 반출되도록 규정하는 것
- 마. 당사국이 신고서 및 부가서류 그리고 관세 및 조세의 납부를 포함하여 추가적인 반입 절차를 요구하는 것이 허용된다는 것을 인정하며 모든 중량 또는 가격의 선적에 가호부터 라호까지의 대우를 적용하고, 그러한 대우를 상품의 유형에 기초하여 제한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것. 다만, 그 대우는 서류와 같은 저가의 상품에 제한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리고
- 바. 특정 규정 상품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도에서, 관세 및 조세가 징수되지 않을 최소허용 선적 가격 또는 관세부과 대상 액수를 규정하는 것. 1994년도 GATT 제3조에 합치되게 수입에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및 소비세와 같은 내국세는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2.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위험관리시스템의 사용과 관련한 것을 포함하여, 상품을 검사, 유치, 압수, 몰수 또는 상품의 반입을 거부하거나 통관사후심사를 수행하는 당사국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 제1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반출의 조건으로 추가적인 정보의 제출 및 비자동 허가 요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⁴ 당사국이 이 조에서 대우를 규정하는 기존 절차가 있는 경우, 이 규정은 그 당사국이 별도의 신속화된 반출 절차를 도입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이다.

제5.16조 통관사후심사

1. 상품의 반출을 신속화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관세법 및 그 밖의 관련 법과 규정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통관사후심사를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2. 각 당사국은 적절한 선별 기준을 포함할 수 있는 위험에 기초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위한 인이나 탁송물을 선별한다. 각 당사국은 투명한 방식으로 통관사후심사를 수행한다. 그 인이 심사 과정에 관여되고 확실한 결과가 달성된 경우, 그 당사국은 자신의 기록이 심사된 인에게 지체 없이 그 결과와 그 인의 권리 및 의무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이유를 통보한다.
3. 양 당사국은 통관사후심사에서 획득된 정보가 추가적인 행정적 또는 사법적 절차에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4. 양 당사국은 실행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위험관리 적용 시 통관사후심사의 결과를 이용한다.

제5.17조 반출 시간 연구

1. 각 당사국은 그들의 무역원활화 조치에 대한 평가 및 상품의 반출에 요구되는 시간을 더욱 개선하기 위한 기회에 대한 고려를 위하여, 세계관세기구가 발행한 상품의 반출에 요구되는 시간 측정 지침과 같은 수단을 이용하여 관세 당국에 의한 상품의 반출에 요구되는 시간을 주기적으로, 그리고 일관된 방식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권장된다.
2. 각 당사국은 사용된 방법과 식별된 장애물을 포함하여, 제1항에 언급된 반출 시간 연구에서 자국의 경험을 공유하도록 권장된다.

제5.18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각 당사국은 자국의 관세 당국이 행정 결정⁵을 내리는 모든 인이 자국의 영역에서 다음의 권리를 가지도록 규정한다.

가. 그 결정을 내린 공무원이나 부서보다 높거나 그로부터 독립된 행정 당국에 대한 행정적 불복청구 또는 그에 의한 재심사, 그리고

나. 그 결정에 대한 사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2. 당사국의 법률은 행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가 사법적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전에 개시되도록 요구할 수 있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가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제1항가호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결정이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이 내려지지 않는 경우, 청구인이 행정 당국 또는 사법 당국에 대한 추가 불복청구, 그들에 의한 추가 재심사 또는 사법 당국에 대한 그 밖의 모든 이용에 대한 권리를 가지도록 보장한다.⁶

가. 자국의 법 또는 규정에 명시된 정해진 기간 내, 또는

⁵ 이 조의 행정 결정이란 개별 사례에서 특정한 인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결정을 말한다. 이 조의 행정 결정은 1994년도 GATT 제10조의 의미에서의 행정 행위, 또는 당사국의 법과 법적 체계에 규정된 대로 행정 행위나 결정을 하지 않는 것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양해된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경우를 다루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제1항가호에 따른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에 대한 권리를 대신하여 관세 당국이 행정 결정을 신속하게 내리도록 지시하기 위한 대안적 행정 메커니즘이나 사법적 이용을 유지할 수 있다.

⁶ 이 항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청구인에게 유리한 결정으로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에 대한 행정부작위를 인정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나. 과도한 지체 없이

5.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인에게 행정 결정에 대한 이유가 제공되도록 보장하여 그러한 인이 필요한 경우 불복청구 또는 재심사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각 당사국은 제1항에 언급된 인이 제1항에 언급된 행정 결정 또는 누락에 대하여 재심사를 구한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인이 불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보장한다.
7. 각 당사국은 이 조의 규정이 자국의 관세 당국 외에 관련 국경기관이 내린 행정 결정에 적용 가능하도록 권장된다.
8. 행정적 또는 사법적 재심사나 불복청구에 대한 결정 및 그 결정에 대한 이유는 서면으로 제공된다.

제5.19조

관세 협력

1. 각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다음과 관련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관세 당국을 지원할 수 있다.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

나. 통관 우수 관행 및 위험관리 기술의 발전과 이행

다. 통관 절차의 간소화 및 조화

라. 기술력 및 기술의 사용 증진

마. 관세평가협정의 적용,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상호 결정할 수 있는 그 밖의 그러한 통관 사안

2. 각 당사국은 가능한 한도에서, 이 장의 운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중요한 행정적 변경, 법이나 규정의 수정 또는 수입이나 수출을 규율하는 자국의 법 또는 규정과 관련된 유사한 조치에 대한 시의 적절한 통지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한다. 그 통지는 영어나 그 당사국의 언어로 작성될 수 있다.

3.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적절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과 관세 행정의 발전에 관한 정보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

4. 양 당사국의 관세 당국은 각 당사국에서 수입 및 수출 통관 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제5.20조

통관 절차 및 무역원활화에 관한 협의

1. 당사국은 이 장의 운영 또는 이행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중요한 관세 사안에 대하여 그 사안에 대한 관련 세부사항을 제공하면서 언제든지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한 협의는 접촉선을 통하여 수행되고, 양 당사국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그 요청의 접수일 후 30일 내에 개시된다.

2. 그러한 협이가 그 사안을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그 사안을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3.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상 하나 이상의 접촉선을 지정한다. 접촉선에 대한 정보는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되고 해당 정보의 모든 변경은 신속하게 통보된다.

제5.21조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 및 관련 정부 당국⁷으로 구성되는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위원회는 원산지 규정, 원산지 절차, 무역 원활화 및 관세 사안을 다루는 일을 담당한다.

2. 위원회는 이 장과 제4장(원산지 규정)의 적절한 기능을 보장한다.

3.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가. 이 장 및 제4장(원산지 규정)의 효과적이고 통일되며 일관된 운영 보장

나.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HS)와 국가상품분류체계의 전환에 근거한 부속서 4-나(품목별 원산지 규정)의 개정

다. 국제 표준에 따라 양 당사국 간 상업적 교류를 원활히 하는 통관 관행 및 표준 채택

라. 품목분류를 포함하여, 이 장 및 제4장(원산지 규정)의 해석, 적용 및 운영과 관련된 문제의 해결

마. 양 당사국이 합의에 이르는 경우, 이 장 및 부속서 4-나(품목별 원산지 규정)를 포함한 제4장(원산지 규정)의 수정에 대한 제안을 공동위원회의 승인을 위하여 제출

바. 전자 증명 및 검증 시스템의 가능한 개발에 대한 작업

사. 이 협정에 따른 특혜 활용을 평가하기 위하여 통계자료를 정기적으로 교환하고 이 사안에 관하여 협의 개최

아. 공동위원회에 다음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 위하여 제안된 해결 방안 권

⁷ 이 조의 목적상, “관련 정부 당국”은 제4장(원산지 규정)과 관련된 사안에 대한 정책을 점검하고 검토하며 분석하고 개발하는 것을 담당하는 필리핀의 기관을 지칭한다.

고

- 1) 이 장 및 제4장(원산지 규정)의 해석, 적용 및 운영
- 2) 품목분류 및 관세평가
- 3) 역내가치포함비율의 산정, 그리고
- 4) 양 당사국 간 무역의 흐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장 및 제4장(원산지 규정)과 합치하지 않는 운영 관행을 한쪽 당사국이 채택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 그리고

자. 공동위원회가 위임할 수 있는, 또는 필요한 경우 그 밖의 기능 수행

4. 위원회는 이 장 및 제4장(원산지 규정)에 따라 수립된 메커니즘의 공동의 목적과 기능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결의, 권고 또는 의견을 형성할 수 있다.
5. 위원회는 매년 또는 달리 합의하는 바에 따라 회합한다.
6. 위원회는 공동위원회에 각 회의의 결과를 보고한다.

제6장 경쟁

제6.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경쟁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 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경쟁위원회 또는 그 승계기관

경쟁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그리고
- 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경쟁법」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소비자보호법이란 다음을 말한다.

- 가. 한국의 경우, 「소비자기본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그들의 이행 규정 및 개정, 그리고
- 나. 필리핀의 경우, 「필리핀 소비자법」과 그 이행 규정 및 개정

제6.2조

목적

이 장은 반경쟁적 행위를 금지하는 경쟁법의 유지를 통하여 그리고 양 당사국 간 경쟁법의 발전과 이행에 관한 양자 협력을 통하여,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경제적 효율성 및 소비자 후생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의 추구는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의 촉진을 포함하여 이 협정의 혜택을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제6.3조

기본 원칙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목적과 합치하는 방식으로 이 장을 이행한다.
2. 이 장에 따른 각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인정하며, 양 당사국은 다음을 인정한다.
 - 가. 각 당사국이 자국의 경쟁법과 경쟁정책을 개발, 수립, 관리 및 집행할 주권적 권리, 그리고
 - 나. 경쟁법과 경쟁정책 분야에서 양 당사국 간 존재하는 역량과 발전 수준의 중대한 차이

제6.4조

반경쟁적 행위에 대한 적절한 조치

1. 각 당사국은 반경쟁적 행위¹를 금지하는 경쟁법을 유지하고 그러한 경쟁법을 이에 따라 집행한다.

¹ 그러한 행위의 예는 가) 반경쟁적 합의, 나) 지배적 지위의 남용, 그리고 다) 반경쟁적 인수 및 합병을 포함할 수 있다.

2.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을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자국의 하나 또는 복수의 당국이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 독립성을 보장한다.
4. 각 당사국은 국적에 기초하여 차별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하고 집행한다.
5. 각 당사국은 상업적 활동에 종사하는 모든 인 또는 실체에 대하여 자국의 경쟁법을 적용한다. 각 당사국의 경쟁법의 적용으로부터의 모든 배제나 면제는 투명하고, 공정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한다.
6. 각 당사국은 내부 운영 절차를 제외하고 자국의 경쟁법과 경쟁법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발행 지침을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7. 각 당사국은 다음을 조건으로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근거, 그리고 그에 대한 모든 불복청구를 공개한다.

가. 1) 자국의 법과 규정

2) 비밀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또는

3) 공공정책 또는 공익에 근거하여 정보를 보호할 필요성, 그리고

나. 위 가호1)목부터 3)목까지의 어떠한 사유에 기초한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변경

8. 각 당사국은 어떠한 인 또는 실체에게 자국의 경쟁법 위반에 대한 제재나 시정조치가 부과되기 전에, 그러한 인 또는 실체에게 자국의 경쟁법에 위반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이유(가능한 경우 서면으로)와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공정한 기회가 부여

되도록 보장한다.

9. 각 당사국은 비밀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어떠한 변경을 조건으로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모든 최종 결정이나 명령의 근거를 그 제재나 시정조치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 또는 실체에게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10. 각 당사국은 자국의 경쟁법에 따라 제재나 시정조치의 부과 대상이 되는 모든 인 또는 실체가 그 제재나 시정조치에 대하여 독립적인 재심사 또는 불복청구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11. 각 당사국은 경쟁 사건의 처리에서 적시성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제6.5조

협력

양 당사국은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국의 경쟁 당국 간 협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그들의 경쟁 당국을 통하여 경쟁법 집행에 관련된 사안에 관하여 협력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자국의 경쟁법 집행 활동을, 가능한 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하는 것
- 나. 요청에 따라, 요청당사국의 중요한 이익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쟁법 집행과 관련된 어떠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논의하는 것
- 다. 요청에 따라, 이해를 증진하거나 효과적인 경쟁법 집행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 간 정보를 교환하는 것, 그리고

- 라. 요청에 따라, 동일하거나 관련된 반경쟁적 행위와 관련하여 양 당사국 간 집행 조치를 조정하는 것

제6.6조 정보의 비밀유지

1. 이 장은 당사국의 법, 규정 및 중요한 이익에 반하는 정보의 공유를 그 당사국에 요구하지 않는다.

2. 당사국이 이 장에 따라 비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요청당사국은 피요청당사국에 다음을 통보한다.

가. 요청의 목적, 그리고

나. 요청한 정보의 사용 목적

3. 양 당사국 간 비밀 정보의 공유와 그러한 정보의 사용은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된 조건에 기초한다.

4. 이 장에 따라 공유된 정보가 비밀유지를 조건으로 공유된 경우, 그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은

가. 제공받은 정보의 비밀을 유지한다.

나.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달리 승인하지 않는 한, 요청 시에 공개한 목적을 위해서만 그 정보를 사용한다.

다. 그러한 정보가 그 정보를 제공받는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외교적 경로나 양 당사국의 법에 따라 수립된 그 밖의 경로를 통하여 형사 절차에서의

그러한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지 않는 한, 그 정보를 법원이나 판사가 수행하는 형사 절차에서의 증거로 사용하지 않는다.

- 라.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승인하지 않은 그 밖의 당국, 인 또는 실체에 그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 그리고
- 마. 정보를 제공하는 당사국이 요구하는 그 밖의 조건을 준수한다.

제6.7조

기술 협력 및 역량 강화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 자원의 이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경쟁정책 개발과 경쟁법 집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 협력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는 것이 그들의 공동 관심사안임에 동의한다. 기술 협력 활동은 다음을 포함할 수 있다.

- 가. 경쟁법과 경쟁정책의 개발 및 이행에 대한 관련 경험과 비밀이 아닌 정보의 공유
- 나. 경쟁법과 정책에 대한 자문가 및 전문가 교류
- 다. 훈련 목적의 경쟁 당국 공무원 교류
- 라. 경쟁주창 프로그램에 대한 경쟁 당국 공무원의 참여, 그리고
-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그 밖의 활동

제6.8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제9장(분쟁해결)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사안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6.9조

협의

양 당사국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또는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특정한 사안을 다루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를 개시한다. 그 요청에서, 요청당사국은 관련이 있는 경우 그 사안이 양 당사국 간 무역 또는 투자를 포함하여 자국의 중요한 이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적시한다. 피요청당사국은 요청당사국의 우려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그리고 호의적으로 고려한다.

제6.10조

소비자 보호

1. 양 당사국은 제6.2조에 규정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비자 보호 관련 사안에 대한 양 당사국 간 협력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법 및 그러한 법의 집행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2. 각 당사국은 무역에서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관행이나 거짓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의 사용을 금지하기 위한 법 또는 규정을 채택하거나 유지한다.
3. 각 당사국은 또한 소비자 피해구제 메커니즘에 대한 인식 및 접근성 제고의 중요성을 인정한다.
4. 양 당사국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하여 협력할 수 있다. 그러한 협력은 각 당사국의 법 및 규정과 양립 가능한 방식으로 그리고 그들의 이용 가능한 자원 내에서 수행된다.

제6.11조

공기업

1.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공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거나 기업에 특별한 권리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하거나 그러한 권리를 유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2. 공기업과 특별한 권리² 또는 배타적 권리를 위임받은 기업에 대하여,

가. 어떠한 당사국도 제6.4조^{3,4}에 포함된 원칙에 반하는 어떠한 조치도 채택하거나 유지하지 않는다. 그리고

나. 양 당사국은 그러한 기업이 특별히 자신의 상업적 행위와 관련하여, 각국의 경쟁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보장한다.

다만, 이러한 원칙 및 경쟁법의 적용이 그 기업에 부여된 특정 업무의 수행을 법률상 또는 사실상 방해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² 특별한 권리는 당사국이 객관적, 비례적 그리고 비차별적인 기준에 따르지 않고, 상품이나 서비스 제공을 허가받는 기업을 지정하거나 그 수를 둘 이상으로 제한하거나, 동일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밖의 기업의 능력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법적 또는 규제적 우위를 기업에 부여하는 때에, 당사국에 의하여 부여된다.

³ 이 항에도 불구하고, 각 당사국은 제6.4조제4항이 이 협정의 발효일 후 채택된 법과 정책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양해한다.

⁴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제6.4조제4항과 제6.11조제2항가호는 정당한 공공정책 또는 공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공기업에 대한 법과 정책을 채택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7장 경제 및 기술 협력

제7.1조 기본원칙

1. 양 당사국 간 무역, 투자 및 경제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 협정의 완전한 활용과 이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경제 및 기술 협력이 중요함을 인정하면서, 양 당사국은 그들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호 관심 및 이익 분야에서 협력 이니셔티브를 수행한다.
2. 양 당사국은 필요하고 적절한 경우 각 정부 간 협력을 수행하며, 협력 이니셔티브를 확인하고 이행하는 데 민간 분야, 학계 및 그 밖의 관련 기관의 참여를 장려하고 촉진하도록 노력한다.
3. 이 협정에 따라 수립된 것 외에 기존 경제 및 기술 협력 메커니즘의 가치를 재확인하면서, 양 당사국은 그들의 기존 협력 메커니즘의 지속적인 이행을 존중하고 장려한다.

제7.2조 협력의 범위

1. 양 당사국은 상호 이익을 기초로 다음 분야에 집중하여 협력 활동을 발굴하고 수행한다.
 - 가. 보건 및 생명 과학 관련 제조와 기술 금속 가공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산업 개발
 - 나. 혁신과 연구 및 개발

- 다. 소상공인 · 중소기업
- 라. 영화에 대한 협력을 포함한 창의 및 문화 산업
- 마. 지식재산
- 바. 표준, 기술규정 및 적합성 평가절차
- 사.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아. 전자상거래, 그리고
- 자.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분야

2. 협력 분야는 양 당사국이 합의한 무역 및 투자 증진을 위한 우선순위 분야를 포함한다.

3. 양 당사국은 또한 부속서 7-가, 부속서 7-나 및 부속서 7-다에 규정된 협력을 추구한다.

제7.3조 협력 형태

경제 및 기술 협력의 형태는 다음을 포함할 수 있으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 가. 정보 교환
- 나. 우수 관행 공유

- 다. 인적자원 훈련
- 라. 전문가 교류
- 마. 무역 및 투자 증진
- 바. 비즈니스 포럼
- 사. 기술 지원
- 아. 공동 연구 및 개발
- 자. 기술 및 새로운 사업 모델 이전, 그리고
- 차.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제7.4조

자원

1.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 장의 경제 및 기술 협력의 이행을 위하여, 가장 효과적인 수단을 활용하도록 협력하고 필요한 재정적 자원 및 그 밖의 자원이 이용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2. 양 당사국은 상이한 발전 수준과 역량을 고려하여, 상호 합의에 따라 적절하게 이행 비용을 부담한다.

제7.5조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

1. 이 장의 효과적인 이행 및 운영을 목적으로, 양 당사국의 고위 공무원이 공동 의장을 맡는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는다.

가. 협력을 위한 제안을 검토, 평가하고 승인하는 것

나. 이 협정 내에 구성된 각 위원회가 개발한 협력 작업 계획을 수집하고 통합하는 것

다. 양 당사국 간 협력 분야를 합의하고 개발하는 것과 협력 개발을 위한 작업 계획을 수립하는 것

라. 협력 사업과 활동의 이행에 대한 진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것

마. 이 협정 제11.1조(공동위원회)에 따라 공동위원회에 정기 보고서를 제공하는 것,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

3. 양 당사국은 각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이 협정에 따른 협력 사업 및 활동의 이행을 위한 효율적인 메커니즘과 지침을 활용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양 당사국의 민간 및 공공 부문 간 협의를 촉진하고 무역, 투자 및 경제 협력을 증진하는 데, 「대한민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필리핀공화국 통상산업부 간의 통상 및 경제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에 따라 설치된 무역 및 경제 협력 공동위원회의 역할을 인정한다.

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위원회는 최소 연 1회 회합한다. 회의는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이용 가능한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수행될 수 있다.

6. 양 당사국은 기존의 양자 및 지역 경제 협력 사업, 이니셔티브와 활동에 기초하고 이를 보완한 이행약정에 대하여 합의한다.

7. 위원회는 이 장 및 이행약정에 따른 협력사업 및 활동을 효과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7.6조

분쟁해결의 비적용

이 협정의 분쟁해결 메커니즘은 이 장에 따라 발생하는 어떠한 사안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부속서 7-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¹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협력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1994년도 GATT, GATS 및 그 밖의 세계무역기구 대상협정에 따라 국가 이익을 확보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수립할 각 당사국의 권리를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 2019(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 서비스 및 인력의 지속적인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동 대응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도전 과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3.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을 포함한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의 사회경제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들의 개발 목표에 따른 적절한 활동의 개발 및 수행의 가능성을 인정한다.
4. 양 당사국은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며 무역 및 투자에 대한 협력 활동 및 프로그램을 이행함으로써 양국의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미래의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을 다루는 역량을 강화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글로벌 공급망 내 상품의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

5. 양 당사국은 무역원활화협정 및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필수 상품, 특히 식품, 개인보호장비 및 그 원재료를 포함한 중요 건강 및 의료 용품의 이동을 가능한 한도에서 용이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6. 양 당사국은 식품 · 의약품 · 중요 의료제품 및 그 원재료를 포함한 필수 상품에

¹ "팬데믹"이란 2020년 3월 11일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세계보건기구가 세계적 대유행으로 선언한 질병을 말한다.

대하여 수출 금지 또는 제한 및 비관세 장벽의 도입을 자제하도록 노력하고, 그러한 조치가 특정 대상을 목표로 하며 균형적이고 투명하며 일시적이고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합치하도록 보장한다.

필수 인력 이동의 원활화

7. 양 당사국은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을 방지하고 그 사회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들의 노력에 따라 공중 보건을 보호함을 보장하면서, 국외 출장을 포함한 필수 인력의 이동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8. 양 당사국은 또한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그리고 바이러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공급망 차질을 최소화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필수적인 국경 간 이동을 포함하여 서로에 대하여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인력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한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 유익함을 인정한다.

9. 양 당사국은 팬데믹의 영향을 받은 이들의 존엄, 건강 및 안녕, 안전과 공정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위하여 노력하면서, 상대방 국가에서 머무르고 일하며 공부하는 서로의 국민에게, 특히 가장 취약한 이들에게 적절하고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위하여 협력을 증대하도록 노력한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 회복의 원활화를 위하여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으로부터 발생하는 무역 및 투자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의 최소화

10. 양 당사국은 상호 합의한 대로, 무역 및 투자에 대한 협력 활동 및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행할 수 있으며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제회복을 원활하게 하고 국제공중보건 위기상황과 팬데믹의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대하여 우수 관행을 공유할 수 있다.

11. 양 당사국은 필수적인 의료제품과 중요 농산물 및 식품과 같은, 그 원재료를 포함한 필수 상품 및 서비스의 제조 및 공급을 안정화하고, 디지털 전환을 원활히 하며 금융에 대한 접근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강화를 포함한 양 당사국의 사회경제적 회복을 위한 공동 이니셔티브를 민간 부문과 함께 이행하도록 노력한다.

12. 양 당사국은 국제 무역 및 투자에 예측 가능한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채택할 때, 시의적절하게 관련 정보를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하고 우수 관행을 공유하도록 노력한다.

부속서 7-나 백신에 대한 협력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팬데믹이 전 세계적으로 야기한 영향을 인식하면서, 팬데믹을 종식하고 미래의 세계적인 보건 위협을 다루기 위하여 백신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2. 양 당사국은 또한 코백스 퍼실리티(COVAX facility)를 포함한 국제 기관과 함께 현재와 미래의 세계적인 보건 위협을 다루기 위하여 백신 생산 및 관련 공급과 제조 혁신을 확대하는 데 협력하기로 약속한다.

협력 활동

3. 양 당사국은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각국의 강점을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백신 부족 시에 백신 생산과 글로벌 공급을 가속화하기 위한 양 당사국의 기업 간 협력을 증진할 것이다.

가. 백신 제조

나. 백신 생산을 위한 원재료 공급

다. 백신 공동 개발을 위한 연구 및 개발

라. 백신 개발과 관련된 역량 강화와 지식 및 기술 이전, 그리고

마.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형태의 협력

4. 양 당사국은 임상 시험 및 백신의 전체 승인에 대하여 국내 규정, 관행 및 신청 과정에 대한 정보를 교환할 것이다.

5. 양 당사국은 적절한 통관 통제를 유지하면서 백신 및 백신 생산용 원재료에 대한 신속한 통관 절차를 채택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부속서 7-다

기후변화에 대한 협력

일반 규정

1.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와 그 부정적 효과가 긴급하고 집단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인류 공동의 관심사안인 것을 인정한다.
2. 양 당사국은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이하 “기후변화협약”이라 한다)이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에 대하여 확고한 기반을 마련함을 재확인하고 기후변화협약을 이행하는 데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와 「파리협정」이 중요함을 인정한다.

협력 활동

3. 양 당사국은 각국의 국가결정기여의 이행에 따라 기후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완화하는 역량을 향상하는 데 협력을 개발하고 강화하기로 합의한다.
4. 양 당사국은, 권한 있는 당국과 조율하여 국가결정기여 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 및 민간 적응·완화 프로그램 또는 사업을 증진하고 파리협정 제6조에 따른 기후 완화 투자를 지원하고 시장과 비시장 메커니즘의 혜택을 상호 모색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이전된 완화성과를 사용하는 수단을 찾기로 합의한다.
5. 양 당사국은 국가 재고의 측정, 보고 및 검증을 위한 역량 강화 활동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합의한다.
6. 양 당사국은 기후행동에 대한 우수 관행과 기술적 노하우 교환 및 더 깊은 이해를 얻기 위하여 양 당사국이 관심 있는 다양한 주제에 대한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 및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한다.

제8장 투명성

제8.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이란 그 범위에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모든 인과 사실 상황에 적용되고 행위규범을 형성하는 행정 판정 또는 해석을 말하나, 다음을 포함하지 않는다.

- 가. 구체적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행정 또는 준사법 절차에서 내려진 결정이나 판정, 또는
- 나. 특정 행위 또는 관행에 대하여 내려진 판정

제8.2조 공표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 및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 판정이 신속하게 공표되거나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보장한다.

2. 가능한 한도에서,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 가. 자국이 채택을 제안하는 제1항에 언급된 조치를 사전에 공표한다. 그리고

- 나. 이해관계인과 다른 쪽 당사국에 그러한 제안된 조치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제8.3조 정보의 제공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요청 당사국이 이 협정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여기는 제8.2조에 언급된 실제 조치 또는 제안된 조치와 관련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고, 이에 대한 질의에 응답한다.

제8.4조 행정절차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한 자국의 법, 규정, 절차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행정판정을 일관되고 공평하며 합리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구체적인 사건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특정한 인,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이 조치를 적용하는 자국의 행정절차에서 다음을 보장한다.

- 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자국의 적용 가능한 법과 규정에 따라, 절차가 개시된 때 그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절차의 성격에 대한 기술, 절차가 개시되는 법적 권한에 대한 진술, 그리고 쟁점에 대한 일반적 기술을 포함한 합리적인 통지를 제공할 것
- 나. 시간, 절차의 성격, 그리고 공익이 허용할 때, 절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게 최종 행정처분 전에 자신의 입장을 지지하는 사실과 주장을 제시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회를 부여할 것, 그리고
- 다. 자국의 절차는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를 것

제8.5조

재심사 및 불복청구

1.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행정처분의 신속한 재심사를 목적으로, 그리고 정당한 경우 그 정정을 목적으로, 사법, 준사법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수립하거나 유지한다. 그러한 재판소는 공평하고 행정 집행을 맡은 부서 또는 당국으로부터 독립적이며 사안의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실질적 이해관계도 가지지 않는다.

2. 각 당사국은 그러한 재판소나 절차에서 그 절차의 당사자에게 다음의 권리가 제공되도록 보장한다.

가. 각자의 입장을 지지하거나 방어할 수 있는 합리적 기회, 그리고

나. 증거와 기록된 제출자료, 또는 자국의 법과 규정이 요구하는 경우, 행정 당국이 취합한 기록에 기초한 결정

3. 각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규정된 불복청구 또는 추가적인 재심사를 조건으로, 문제가 된 행정처분에 관련된 부서 또는 당국이 제2항나호에 언급된 모든 결정을 이행하고, 그러한 결정이 이들의 관행을 규율하도록 보장한다.

제8.6조

다른 장과의 관계

이 장의 규정과 다른 장의 투명성에 관한 규정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의 한도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제9장 분쟁해결

제9.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중재패널이란 제9.7조에 따라 설치된 패널을 말한다.

중재인이란 제9.7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구성원을 말한다.

후보자란 제9.9조에 따라 세 번째 중재인으로 임명되는 것이 고려되는 개인을 말한다.

제소 당사국이란 제9.7조에 따라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하는 당사국을 말한다. 그리고

피소 당사국이란 제9.3조에 언급된 대로 이 협정을 위반했다고 주장되는 당사국을 말한다.

제9.2조 목적

1. 이 장은 이 협정에 따라 발생하는 분쟁의 회피 및 해결을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절차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 합의하도록 항상 노력하며, 이 장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력 및 협의를 통한 모든 시도를 한다.

제9.3조

적용범위

1. 이 협정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한쪽 당사국이 다음과 같이 여기는 경우에는 언제나, 이 장은 이 협정의 해석 또는 적용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분쟁의 회피 또는 해결에 대하여 적용된다.

가.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와 불합치한다. 또는

나. 다른 쪽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다.

2. 이 장은 다음으로부터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2.16조(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제6장(경쟁) 및 제7장(경제 및 기술 협력)

제9.4조

분쟁해결절차의 선택

1. 어떠한 사안에 대한 분쟁이 이 협정과 세계무역기구협정 또는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그 밖의 협정에서 발생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분쟁해결절차를 선택할 수 있다.

2. 제소 당사국이 제1항에 언급된 협정 중의 하나에 따라 분쟁해결패널의 설치를 요청했거나 사안을 분쟁해결패널에 회부했으면, 그 선택된 분쟁해결절차는 다른 절차를 배제하고 이용된다.

제9.5조

협의

1. 각 당사국은 이 협정의 해석과 적용에 관련된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9.3조제1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2. 협의를 요청하는 당사국은 서면으로 요청을 하고,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에 대한 적시와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에 대한 표시를 포함하여 그 요청의 이유를 제시한다.
3. 피소 당사국은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응답한다.
4. 양 당사국은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기 위하여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15일 내에 선의로 협의를 개시한다.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협의는 피소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된다.
5. 양 당사국은 협의 중에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의 이행과 적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양 당사국은 협의 과정에서 교환된 모든 비밀 정보를 그 정보를 제공한 당사국과 같은 기준으로 취급한다.
6. 이 조에 따른 협의는 비밀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9.6조

주선, 조정 또는 중개

1. 주선, 조정 및 중개는 분쟁의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자발적으로 행해질 수 있는 절차이다.
2.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어느 한쪽 당사국에 의하여 언제든지 요청될 수 있다. 이는 양 당사국의 합의로 언제든지 개시될 수 있고,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
3.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이 장에 규정된 중재패널의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에도 주선, 조정 또는 중개는 계속될 수 있다.

4. 주선, 조정 또는 중개와 관련된 절차와 특히 그 절차에서 양 당사국이 취한 입장은 비밀이며 어떠한 추가적인 절차에서도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를 저해하지 않는다.

제9.7조

중재패널의 설치

1. 제9.5조에 따라 협의 요청을 한 제소 당사국은 다음의 경우, 중재패널의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가. 피소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10일 내에 회신하지 않는 경우

나. 피소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15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개시하지 않은 경우, 또는

다. 양 당사국이 협의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60일 내에, 또는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30일 내에 그러한 협의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지 못한 경우

2.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은 피소 당사국에 서면으로 한다. 제소 당사국은 자국의 요청에서, 문제가 되는 특정 조치, 그리고 그 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하기에 충분한 제소의 사실적 및 법적 근거를 적시한다.

제9.8조

중재패널의 위임사항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20일 내에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의 위임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비추어 제9.7조에 따른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에 언급된 사안을 조사하고, 판단,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권고를 하고, 제9.12조 및 제9.13조에 규정된 대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

제9.9조

중재패널의 구성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3명의 중재인으로 구성된다.
2.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내에, 각각 자국의 국민일 수 있는 중재인을 한 명씩 임명하고, 중재패널의 의장이 되는 세 번째 중재인 역할을 할 최대 3명의 후보자를 제안한다. 세 번째 중재인 후보자는 어느 당사국의 국민도 아니고, 어느 당사국의 영역에도 통상적인 거주지가 없으며, 어느 당사국에 의해서도 고용되어 있지 않고, 어떠한 자격으로도 그 분쟁을 다루지 않았어야 한다.
3.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에 대한 요청을 접수한 날부터 45일 내에, 제안된 후보자들을 고려하여 세 번째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도록 노력한다. 양 당사국이 45일 내에 세 번째 중재인을 합의하여 임명하지 못하는 경우, 양 당사국은 45일의 만료부터 7일 내에 회합하여 양 당사국이 제안한 후보자 명부에서 추첨으로 의장을 선정한다.
4. 중재패널의 설치일은 세 번째 중재인이 임명되는 날이다.
5. 모든 중재인은 법, 국제무역 또는 이 협정과 관련된 그 밖의 사안, 또는 국제무역 협정상 발생하는 분쟁의 해결에 대한 전문성이나 경험을 보유한다. 각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개인 자격으로 업무를 수행하며, 그 분쟁과 관련된 어느 한쪽 당사국이나 기관과 연계되거나 이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부속서 9-나를 준수한다.

6. 한쪽 당사국이 중재인이 부속서 9-나의 요건들을 준수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 양 당사국은 협의하고,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그 중재인을 제7항에 따라 교체한다.

7. 이 조에 따라 임명된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경우, 후임자는 15일 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된 임명 방식에 따라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선정된다. 후임자는 원 중재인의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갖는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중재인이 사임하거나, 절차에 참석할 수 없게 되거나, 제6항에 따라 교체되어야 하는 날부터 정지된다. 중재패널의 업무는 후임자가 임명되는 날 재개된다.

제9.10조

중재패널 절차

1. 중재패널은 비공개 회의로 회합한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초청을 받는 경우로 한정하여 회의에 참석한다.

2. 양 당사국은 적어도 하나의 서면입장을 제출하고, 절차상 발표, 진술 또는 반박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의견과 중재패널의 질문에 대한 응답을 포함하여, 한쪽 당사국이 중재패널에 제출한 모든 정보 또는 서면입장은 다른 쪽 당사국이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다른 쪽 당사국의 조치가 이 협정과 불합치하다고 주장하는 한쪽 당사국은 그러한 불합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어떠한 조치가 이 협정상 예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당사국은 그 예외의 적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4. 중재패널은 적절한 경우 양 당사국과 협의하고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개발하기 위한 충분한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5. 중재패널은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포함한 국제공법에 관한 관습적인 해석규칙에 따라 이 협정을 해석한다.

6.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포함하여 컨센서스로 결정을 내린다. 다만, 중재패널이 컨센서스에 이를 수 없는 경우에는 과반수 투표로 결정할 수 있다.
7.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또는 자체 발의로, 중재패널은 모든 관련 정보원로부터 정보를 구할 수 있으며, 사안의 특정 측면에 관한 의견이나 기술적인 조언을 얻기 위하여 전문가와 협의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전에, 중재패널은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자신의 권리를 저해함이 없이 분쟁의 양 당사국의 의견을 구한다.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에 획득한 모든 조언이나 의견의 사본 그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제공한다.
8. 중재패널의 심의 및 중재패널에 제출된 문서는 비밀로 유지된다.
9. 제8항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쪽 당사국은 분쟁에 관한 자국의 견해에 대하여 공식 발표를 할 수 있으나, 다른 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하여 중재패널에 제출한 정보와 서면입장은 비밀로 취급한다. 한쪽 당사국이 비밀로 지정된 정보 또는 서면입장을 제공한 경우, 그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으로부터 20일 내에 대중에게 공개될 수 있는 비밀이 아닌 정보 또는 서면입장의 요약본을 제공한다.
10.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이 참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초안이 작성된다. 중재패널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과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에 기초하여 보고서를 작성하며, 중재패널에 제공된 그 밖의 모든 관련 정보를 고려할 수 있다.
11. 중재패널의 보고서는 양 당사국의 입장 및 주장을 요약하는 서술적 부분과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을 모두 포함한다.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분쟁의 해결을 위한 권고를 보고서에 포함할 수 있다. 중재패널의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어떠한 권고도 이 협정에 규정된 양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를 증가시키거나 축소시킬 수 없다.
12. 중재패널 절차의 장소는 양 당사국 간 상호 합의로 결정한다. 합의하지 않은 경우, 장소는 양 당사국의 수도가 교대로 되며 중재패널 절차의 첫 번째 회의는 피소 당사국의 수도에서 개최된다.

제9.11조

절차의 정지 또는 종료

1. 양 당사국이 합의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그렇게 합의한 날부터 12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언제라도 자신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정지된 중재패널 절차는 재개된다. 그러한 정지의 경우, 중재패널의 업무에 대한 기간은 업무가 정지된 기간만큼 연장된다. 중재패널의 업무가 12개월을 초과하여 지속적으로 정지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의 권한은 실효된다.
2. 양 당사국은 최종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되기 전 언제든지 중재패널의 의장에게 공동으로 통보함으로써 중재패널 절차를 종료하도록 합의할 수 있다.
3. 중재패널은 최종 보고서가 양 당사국에 제출되기 전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도 분쟁이 우호적으로 해결되도록 양 당사국에 제안할 수 있다.

제9.12조

잠정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중재패널의 설치일로부터 90일 내에 관련 규정의 적용 가능성과 모든 조사결과에 대한 기본 근거뿐만 아니라, 다음에 대한 서술적 부분, 조사결과 및 판정, 그리고 적용 가능한 경우 권고를 포함하는 잠정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가. 문제가 되는 조치가 이 협정상의 의무와 불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나. 당사국이 이 협정상의 자국의 의무를 달리 이행하지 못했는지 여부

2. 중재패널이 잠정보고서의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잠정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 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잠정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

일 후 12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3. 어느 한쪽 당사국은 잠정보고서의 제출로부터 15일 내에 그 보고서에 대한 서면 의견을 중재패널에 제출할 수 있다. 잠정보고서에 대한 양 당사국의 서면 의견을 고려한 후, 중재패널은 보고서를 수정할 수 있고 적절하다고 여기는 추가 검토를 할 수 있다.

제9.13조

최종보고서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잠정보고서의 제출일로부터 30일 내에 양 당사국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한다.

2.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의 기한을 맞출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지연의 이유와 패널이 최종보고서를 제출하기로 계획한 날을 적시한 서면 통보 후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최종보고서는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15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

3. 부패성 상품에 관한 경우를 포함하여 긴급한 경우, 중재패널은 제9.12조제1항 및 제9.13조제1항에 따른 각 기간의 절반 내에 잠정보고서 및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모든 노력을 한다.

제9.14조

최종보고서의 이행

1. 중재패널의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판정은 최종적이고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2. 중재패널이 최종보고서에서 피소 당사국이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른 자국의 의무에 합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는 경우,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피소 당사국은 그 불합치를 즉시, 또는 그것이 실행 불가능한 경우,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거한

다.

3. 제2항에 언급된 합리적인 기간은 양 당사국이 상호 합의한다. 양 당사국이 중재패널 최종보고서의 제출일부터 45일 내에 합리적인 기간을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으며, 해당 중재패널은 합리적인 기간을 결정한다.

4. 피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판정을 준수하기 위하여 자국이 행한 모든 조치를, 제3항에 따라 양 당사국이 합의하거나 원 중재패널이 결정한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제소 당사국에 통보한다. 피소 당사국이 제3항에 따라 결정된 합리적인 기간 내에 중재패널 최종보고서에서 판정된 대로 불합치를 제거했는지 여부에 대하여 양 당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어느 한쪽 당사국은 이 사안을 원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제9.15조

보상 및 혜택의 정지

1.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의 만료 전에 제소 당사국에 이행 조치를 통보하지 못하거나, 제소 당사국에 이행이 실행 불가능하다고 통보하는 경우, 또는 제9.14조제4항에 따라 사안이 회부된 중재패널이 피소 당사국이 합리적인 기간 내에 불합치를 제거하지 못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렇게 요청받는 경우 상호 만족할 만한 보상에 이르기 위하여 제소 당사국과 교섭을 개시한다.

2.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의 접수일부터 20일 내에 만족할 만한 보상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언제든지 피소 당사국에 대한 이 협정상의 혜택의 적용을 정지하려고 한다는 서면 통보를 피소 당사국에 할 수 있다. 제소 당사국은 그러한 정지의 통보로부터 30일 후에 혜택의 정지를 개시할 수 있다. 그 정지 통보는 제1항에 언급된 요청의 접수일부터 20일 내에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3. 제1항에 언급된 보상과 제2항에 언급된 정지는 임시적인 조치이다. 보상과 정지 모두 중재패널 보고서에서 판정된 대로 불합치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보다 선호되지 않는

다. 정지는 불합치가 완전히 제거되거나 상호 만족할 만한 해결에 이르는 때까지만 적용된다.

4. 제2항에 따라 어떠한 혜택을 정지할 것인지를 검토할 때,

가. 제소 당사국은 제9.13조에 언급된 중재패널 보고서가 이 협정상 의무를 준수하지 못했다고 확인한 그 동일 분야에 대하여 혜택의 정지를 우선 구해야 할 것이다.

나. 제소 당사국이 동일 분야에 대한 혜택을 정지하는 것이 실행 가능하지 않거나 효과적이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 제소 당사국은 그 밖의 분야에 대한 혜택을 정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그러한 정지의 통보는 그 기초가 되는 근거를 적시한다. 그리고

다. 제2항에 언급된 정지의 수준은 무효화 또는 침해의 수준과 동등하다.

5. 제소 당사국에 의한 혜택의 정지를 위한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규정된 요건들이 충족되지 못했다고 피소 당사국이 여기는 경우, 피소 당사국은 그 사안을 중재패널에 회부할 수 있다.

6. 이 조 또는 제9.14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은 가능한 경우에는 언제나 원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을 중재인으로 가진다. 이것이 불가능한 경우, 이 조 또는 제9.14조의 목적상 설치된 중재패널의 중재인들은 제9.9조에 따라 임명된다. 이 조 또는 제9.14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은 그 사안이 중재패널에 회부된 날 후 합리적인 기간에 대해서는 20일 내에 그리고 그 밖의 문제에 대해서는 45일 내에 보고서를 양 당사국에 제출한다. 중재패널이 위에서 언급된 기간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의 동의하에 해당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 보고서는 양 당사국을 구속한다.

제9.16조

절차 규칙

1. 이 장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는 부속서 9-가에 규정된 절차 규칙의 규율을 받는다. 양 당사국은 중재패널과 협의하여, 그 부속서의 규정과 불합치하지 않는 추가적인 절차 규칙을 채택하기로 합의할 수 있다.
2. 이 장 또는 부속서 9-가에 규정된 모든 기간 또는 그 밖의 중재패널 절차 규칙은 양 당사국의 상호 동의로 수정될 수 있다.

제9.17조

경비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각 당사국은 자국이 임명한 중재인의 비용과 자국의 경비 및 법무 비용을 부담한다.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의장의 비용과 절차 수행에 관련된 그 밖의 경비는 양 당사국이 동등하게 부담한다.

부속서 9-가

절차 규칙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자문인이란 당사국이 고용한 인으로서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하여 그 당사국에 자문하거나 그 당사국을 보조하는 인을 말한다.

보조인이란 중재인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중재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당사국의 대표자란 당사국이 자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임명한 인을 말한다.

행정 운영

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절차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중재절차의 행정 운영, 특히 심리의 행정사항을 담당한다.

통보

3.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중재패널이 전달하는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는 영수증을 받는 송달, 등기우편, 쿠리어, 팩스 또는 발송기록을 제공하는 그 밖의 모든 통신수단으로 전송된다.

4.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과 각 중재인에게 자국의 각 서면입장의 사본을 제공한다. 문서의 사본은 전자적 형식으로도 제공된다.

5. 모든 통보는 작성되어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필리핀의 통상산업부에 각

각 전달된다.

6. 중재패널 절차와 관련된 모든 요청, 통보, 서면입장 또는 그 밖의 문서에서 사무적 성격의 사소한 오류는 그 변경사항을 명확히 나타내는 새로운 문서의 전달로 시정될 수 있다.

7. 문서 전달 마감일¹이 어느 한쪽 당사국의 법정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문서는 다음 영업일에 전달될 수 있다.

최초 입장

8. 제소 당사국은 중재패널의 설치일 후 30일 이내에 자국의 최초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피소 당사국은 제소 당사국의 최초 서면입장의 접수일 후 30일 이내에 자국의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중재패널의 운영

9. 중재패널의 의장은 중재패널의 모든 회의를 주재한다. 중재패널은 행정적 및 절차적인 결정을 내릴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0. 이 장에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전화, 팩스 또는 컴퓨터 연결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하여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11. 중재인만이 중재패널의 심의에 참여할 수 있으나, 중재패널은 그러한 심의에 중재인의 보조인의 참석을 허락할 수 있다.

12. 모든 결정 및 판정의 초안 작성은 중재패널이 전적으로 담당하며, 위임되지 않는다.

¹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부속서의 목적상 전달일이란 제출된 문서가 목적지에 도달한 날이다.

13. 이 장이 다루지 않는 절차적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 후, 이 장과 불합치하지 않는 적절한 절차를 채택할 수 있다.

14. 중재패널이 절차에 적용 가능한 이 장에 규정된 기한을 수정하거나, 절차에 그 밖의 절차적 또는 행정적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기는 경우, 중재패널은 수정 또는 조정에 대한 이유를 필요한 기한 또는 조정내용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알린다.

15.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인에게 지급되는 보수와 비용은 통상적으로 세계무역기구의 기준에 따른다.

심리

16.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이 사건을 제출할 수 있도록 최소 1회의 심리를 규정한다. 의장은 양 당사국 및 중재패널의 나머지 구성원들과 협의하여 심리 일시를 정한다. 중재패널의 의장은 심리의 날짜, 시간 및 장소를 서면으로 양 당사국에 통보한다. 이 부속서 제21항에 따라 양 당사국이 심리를 대중에 공개하기로 결정하는 경우, 절차의 행정 운영을 담당하는 당사국은 그 정보를 또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17.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이 그렇게 합의하는 경우, 추가 심리를 열 수 있다.

18. 모든 중재인은 모든 심리의 전 과정에 참석한다.

19. 당사국의 대표자, 당사국의 자문인, 전문가, 행정 인력, 통역사, 번역사, 법원서기 그리고 중재인의 보조인은 심리가 대중에게 공개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심리에 참석할 수 있다. 중재패널이 달리 결정하지 않는 한, 당사국의 대표자와 자문인만이 중재패널에 발언할 수 있다.

20. 각 당사국은 심리일의 최소 5일 전에 그 당사국을 대신하여 심리에서 구두 변론

이나 발언을 할 사람과 심리에 참석할 그 당사국의 대표자, 자문인, 통역사 및 번역사의 명부를 중재패널에 전달한다.

21. 중재패널의 심리는 대중에게 비공개된다. 그러나, 양 당사국은 심리를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대중에게 공개하기로 결정할 수 있다.

22. 각 심리는 제소 당사국과 피소 당사국에 주장, 답변 및 반박 답변을 위한 동일한 시간이 부여되도록 보장하는 방식으로 중재패널이 수행한다.

23. 중재패널은 심리 동안 언제든지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전문가에게 질문할 수 있다.

24. 중재패널은 각 심리의 속기록이 준비되도록 주선하고, 속기록이 준비된 후 가능한 한 조속히 속기록 사본을 양 당사국에 전달한다. 양 당사국은 속기록에 대하여 의견을 밝힐 수 있으며, 중재패널은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결정한다.

25. 각 당사국은 심리일부터 10일 내에 심리 동안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응답하는 보충적 서면입장을 전달할 수 있다.

서면 질문

26. 중재패널은 절차 동안 언제든지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에 서면으로 질문을 제시할 수 있다. 중재패널은 질문이 제시된 당사국에 질문서를 전달하고 다른 쪽 당사국에 질문서 사본을 보낸다.

27. 중재패널이 질문서를 제시한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및 중재패널에 모든 서면 답변서 사본을 전달한다. 각 당사국은 답변 접수일부터 7일 내에 답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공할 기회를 가진다.

일방적 의사소통

28. 중재패널이 고려 중인 사안에 관하여 중재패널과의 의사소통은 일방적이지 않다.

29. 어떠한 중재인도 나머지 중재인의 참석 없이 한쪽 당사국 또는 양 당사국과 그 절차의 대상이 되는 사안의 어떠한 측면도 논의할 수 없다.

기술적 조언 요청에 따른 기한 정지

30.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 및 전문가와 협의한 후 전문가가 자신의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가가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자신의 의견 또는 조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중재패널은 양 당사국과 협의한 후 전문가에게 추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이 추가 기간이 이 항의 첫 번째 문장에 따라 정해진 기간의 절반을 넘지 않는다.

31. 전문가의 서면 보고서에 대한 요청이 있는 경우, 요청이 전달된 날부터 보고서가 중재패널에 전달되는 날까지 중재패널 절차에 적용 가능한 모든 기한은 정지된다.

언어

32.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중재패널 절차의 공동 작업언어는 영어이다. 당사국이 절차 중에 통역을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그러한 통역의 준비 및 비용 부담은 그 당사국이 진다.

33. 이 장에 따라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제출되는 모든 문서는 영어로 작성된다. 어떠한 원본 문서가 영어로 작성되지 않은 경우, 절차에서의 사용을 위하여 그 문서를 제출하는 당사국은 그 문서의 영어 번역본을 제공한다.

기한 계산

34. 이 장에 규정된 모든 기한은 달력상의 일로 계산되고, 첫째 날은 그 기한이 관련되는 행위 또는 사실의 다음 날이 된다.

35. 제7항의 이행을 이유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이 문서를 접수한 날과 다른 날 동일한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러한 접수에 의존하여 계산되는 모든 기한은 그러한 문서를 접수한 마지막 날부터 계산된다.

그 밖의 절차

36. 제9.14조제3항, 제9.14조제4항, 제9.15조제5항 및 제9.15조제6항에 따라, 사안을 회부하는 당사국은 자국의 최초의 서면입장을 사안의 회부일부터 15일 내에 전달하고, 피소 당사국은 최초 서면입장을 접수한 날부터 15일 내에 자국의 반박 서면입장을 전달한다.

37. 제9.14조 및 제9.15조와 이 부속서에 규정된 중재패널 절차의 기한에 따라 각 당사국에 같은 수의 서면입장을 작성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우, 중재패널은 반박 서면입장을 포함한 추가 서면입장의 전달 기한을 정한다.

38. 달리 규정되지 않는 한, 이 부속서는 제9.14조 및 제9.15조에 따라 정해진 절차에 또한 적용 가능하다.

부속서 9-나
중재인에 대한 행동 규범

정의

1. 이 부속서의 목적상,

보조인이란 중재인의 임명 조건에 따라 조사를 수행하거나 그 중재인에게 지원을 제공하는 인을 말한다. 그리고

직원이란 보조인을 제외하고 중재인의 지시와 통제하에 있는 인을 말한다.

절차에 대한 책임

2. 모든 후보자와 중재인은 분쟁해결절차의 완전 무결성과 공정성이 보존될 수 있도록 부정과 부정의 인상을 피하고,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직접적 및 간접적인 이해의 상충을 피하고, 고도의 행위 규범을 준수한다. 전임 중재인들은 제15항부터 제18항까지에 확립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공개 의무

3. 제9.9조에 따라 중재인으로서 자신의 임명이 확정되기 전에, 후보자는 자신의 독립성 또는 공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절차에서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공개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후보자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및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한다.

4. 일단 임명되면, 중재인은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인지하도록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계속하고, 이를 공개한다. 공개 의무는 절차의 어느 단계에

서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중재인이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속적인 의무이다. 중재인은 그러한 이해, 관계 또는 사안을 양 당사국의 검토를 위하여 서면으로 공동위원회에 전달함으로써 공개한다.

중재인의 임무

5. 임명되는 경우, 중재인은 절차의 과정 내내 자신의 임무를 철저하고 신속하게 수행한다.

6. 중재인은 모든 임무를 공정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7. 중재인은 절차에서 제기되고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문제만을 검토하며, 결정할 임무를 그 밖의 어떠한 인에게도 위임하지 않는다.

8. 중재인은 자신의 보조인 및 직원이 제2항, 제3항, 제4항, 제16항, 제17항 및 제18항을 인지하고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한다.

9. 중재인은 부속서 9-가의 제28항 및 제29항에 따라, 절차에 관한 일방적 의사소통을 하지 않는다.

중재패널 구성원의 독립성 및 공정성

10. 중재인은 독립적이고 공정하다. 중재인은 공평한 태도로 행동하며,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하는 것을 피하고, 자신의 이익, 외부 압력, 정치적 고려, 대중의 요구, 당사국에 대한 충성 또는 비판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11.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에 대한 적절한 수행을 어떠한 식으로든 방해하거나 방해할 인상을 주는 모든 의무 또는 혜택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부담하거나 수용하지 않는다.

12. 중재인은 개인적 또는 사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중재패널에서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지 않는다. 중재인은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지위에 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한다.

13. 중재인은 과거 또는 기존의 재정적, 사업적, 직업적, 가족 또는 사회적 관계나 책임이 자신의 행동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14. 중재인은 자신의 공평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나 합리적 기준으로 볼 때 부정 또는 편견의 인상을 야기할 수도 있는 관계를 맺거나 재정적 이익을 획득하는 것을 피한다.

전임 중재인의 의무

15. 모든 전임 중재인은 자신의 임무를 수행할 때 편파적이었거나 중재패널의 결정 또는 판정으로부터 이익을 도출했다는 인상을 야기할 수 있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

비밀 유지

16.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절차의 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절차에 관한 모든 비공개 정보 또는 절차 과정에서 획득된 모든 비공개 정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고, 개인적 이익이나 다른 사람을 위한 이익을 얻기 위하여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그러한 모든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공개하거나 사용하지 않는다.

17. 중재인은 공표에 앞서 중재패널 판정 또는 그 일부를 공개하지 않는다.

18. 중재인이나 전임 중재인은 중재패널의 심의 또는 중재인의 견해를 어느 때에도 공개하지 않는다.

제10장

예외

제10.1조

일반적 예외

제2장(상품 무역)의 목적상, 1994년도 GATT 제20조 및 그 주해는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이 협정에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

제10.2조

안보 예외

1.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다음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가. 공개되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에 반한다고 당사국이 여기는 모든 정보를 그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

나. 당사국이 자국의 필수적인 안보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다음의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1) 무기, 총포탄 및 전쟁 도구들의 거래와 관련되고 군사 시설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수행되는 그 밖의 제품 및 재료의 거래에 관련된 조치

2) 핵분열성 물질 또는 이들의 원료가 되는 물질과 관련된 조치

3) 중요한 공공 사회기반시설을 불능화하거나 기능을 저하하려는 계획적인 시도로부터 그러한 사회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 또는

- 4) 국내적 비상사, 전시 또는 그 밖의 국제관계에서의 비상사에 취하는 조치, 또는

다. 당사국이 국제평화 및 안보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헌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치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

2. 공동위원회는 제1항나호 및 다호에 따라 취해진 조치와 그 조치의 종료에 대하여 가능한 한 완전하게 통보를 받는다.

제10.3조

과세

1. 이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과세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조세협약상의 어느 한쪽 당사국의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협정과 그러한 조세협약 간에 불합치가 있는 경우, 그 불합치하는 한도에서 후자가 우선한다. 양 당사국 간의 조세협약의 경우, 그 협약에 따른 권한 있는 당국이 이 협정과 그 협약 간에 불합치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공동으로 결정할 전적인 책임을 진다.

3. 이 협정은 1994년도 GATT 제3조에 따라 규정되는 범위에서, 제2장(상품 무역)의 제2.14조(내국 과세 및 규정에 대한 내국민 대우)에 따라 권리나 의무가 부여되거나 부과되는 경우에만 과세 조치에 대하여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한다.

4. 이 조의 목적상

가. **조세협약**이란 양 당사국이 당사자인 소득 및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에 관하여 이중과세 제거와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협약 또는 그 밖의

국제조세협정이나 약정을 말한다.

나. 세금 및 과세조치는 제1.5조(일반 정의)에 정의된 관세, 그리고 그 정의 중 나호, 다호, 라호 및 마호에 예외로 기재된 조치를 포함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 권한 있는 당국이란 다음을 말한다.

- 1) 한국의 경우,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또는 그 승계인, 그리고
- 2) 필리핀의 경우, 재무부 국세청장, 또는 그 승계인

제10.4조

정보의 공개

이 협정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게 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게 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거나 그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제10.5조

비밀유지

이 협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에 이 협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를 비밀로 지정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은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그 정보를 비밀로 유지한다.

제11장 제도적 장치

제11.1조 공동위원회

1. 양 당사국은 각 당사국의 관련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공동위원회는 한국의 산업통상자원부와 필리핀의 통상산업부의 장관급 공무원 또는 그들 각자의 지명자들이 공동 의장이 된다.

2. 공동위원회는

가. 이 협정의 이행을 감독한다.

나. 이 협정에 따라 설치된 모든 위원회, 작업반 및 그 밖의 기구의 업무를 감독하고 조율한다.

다. 이 협정의 이행과 운영을 검토한다.

라. 양 당사국 간 무역 및 투자 관계를 보다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을 검토한다.

마. 제9장(분쟁해결)에 따른 절차를 저해함이 없이, 이 협정의 해석이나 적용에 관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또는 분쟁의 해결을 모색한다. 그리고

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대로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분야에 관련된 그 밖의 모든 기능을 수행한다.

3. 공동위원회는

가. 자신의 임무 완수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여기는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설치하고 그에 책임을 위임할 수 있다.

나. 양 당사국 각각의 적용 가능한 법적 절차의 완료를 조건으로, 부속서 및 부록을 포함한 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고 채택할 수 있다.

다. 이 협정의 규정에 대한 해석을 채택할 수 있다.

라. 자신의 절차 규칙을 채택할 수 있다. 그리고

마. 양 당사국에 권고할 수 있다.

4. 한쪽 당사국이 자국의 법과 규정에 따라 비밀로 여기는 정보를 공동위원회,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에 제출하는 때에는, 다른 쪽 당사국은 그 정보를 비밀로 취급한다.

제11.2조

공동위원회의 절차

1. 양 당사국이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발효부터 1년 안에 회합하고, 그 후에는

가. 각 당사국의 영역에서 교대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정기 회기로 매년 회합한다. 그리고

나.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개최되거나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그 밖의 장소에서 개최되는 것으로 하여, 어느 한쪽 당사국으로부터의 요청 접수로부터 30일 내에 특별 회기로 회합한다.

2. 공동위원회의 회합은 대면으로,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경우 이용 가능한 모

든 기술적 수단을 통하여 개최될 수 있다.

3. 공동위원회의 모든 결정과 권고는 상호 합의로 이루어진다.

제11.3조 위원회 및 작업반

1. 다음의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가 공동위원회 산하에 설치될 수 있다.

가. 상품무역위원회

나. 원산지 규정 및 통관 절차 위원회

다.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라. 무역구제위원회, 그리고

마. 경제 및 기술 협력 위원회

2.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의 구성, 회합 빈도 및 기능은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르거나, 이 협정과 합치하게 공동위원회가 결정하는 바와 같다.

3.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는 자신의 회합에 앞서 충분히 자신의 일정 및 의제를 공동위원회에 알린다. 그들은 공동위원회의 각 정기 회합에서 자신의 활동을 공동위원회에 보고한다.

4. 공동위원회는 이 협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에 할당된 임무를 변경 또는 수행하기로 결정할 수 있거나 위원회, 작업반 또는 그 밖의 기구를 해산할 수 있다.

제11.4조

접촉선

1. 이 협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모든 무역 관련 사안에 관한 양 당사국 간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양 당사국은 다음 접촉선을 수립한다.

가. 한국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그 승계기관, 그리고

나. 필리핀의 경우, 통상산업부 또는 그 승계기관

2. 어느 한쪽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의 접촉선은 이 협정의 이행과 관련된 사안을 담당하는 기관 또는 공무원을 적시하고 요청당사국과의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제공한다. 각 당사국은 자국 접촉선의 모든 변동 사항을 다른 쪽 당사국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제12장 최종 규정

제12.1조 부속서, 부록 및 각주

이 협정의 부속서, 부록 및 각주는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2.2조 개정

양 당사국은 이 협정의 개정에 서면으로 합의할 수 있다. 그러한 개정은 양 당사국이 개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 법적 절차를 완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후,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날에 발효한다. 개정은 이 협정의 불가분의 일부를 구성한다.

제12.3조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개정

양 당사국이 이 협정에 통합한 세계무역기구협정의 규정이 개정되는 경우, 양 당사국은 제12.2조에 따라 적절한 경우 이 협정의 관련 규정의 개정을 고려하기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제12.4조 협정의 검토

이 협정의 발효일부터 5년 후에 그리고 그 후 언제라도, 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이 협정은 그 목적을 증진하기 위하여 검토의 대상이 된다.

제12.5조

발효

이 협정은 양 당사국이 이 협정의 발효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국내 법적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상호 통지하는 서면 통보를 외교 경로를 통하여 교환한 날 후 두 번째 달의 첫째 날 또는 양 당사국이 합의할 수 있는 다른 날에 발효한다.

제12.6조

종료

어느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에 외교 경로를 통한 서면 통보로 이 협정을 종료할 수 있다. 그러한 종료는 통보일 후 6개월째 되는 날에 효력이 발생한다.

제12.7조

정본

이 협정의 한국어본 및 영어본은 동등하게 정본이다.

이상의 증거로, 아래의 서명자는 각자의 정부로부터 정당하게 권한을 위임받아 이 협정에 서명하였다.

2023년 9월 7일 자카르타에서 한국어 및 영어로 2부씩 작성하였다.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필리핀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